『국립서울대학교개학반세기사(1895~1946)』탑재에 붙여

국립서울대학교 개학반세기사 편찬위원회는 지난 2014~2015년간 서울대학교와 총동창회가 기획한 『국립서울대학교개학반세기사(1895~1946)』 편찬사업을 실행하여 2016년 12월에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업 기간이 너무 짧아 최근의 연구 성과를 망라하기에도 급급하였을 뿐더러 새롭게 발견되는 의미 있는 사실들도 적지 않아 송구스럽게도 마무리가 정연하게 되지 못한 점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던 끝에 오탈자도 적지 않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결함과 오류들을 바로 잡아 전자책을 만들어 **서울대학교 기록관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동문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후의 성의를 표하오니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그 동안 이러한 일련의 사후 조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류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동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편찬사업을 통해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는 국립대학교의 역사 편찬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멀지 않아 이런 기반이 갖추어지기를 염원해 봅니다.

2017년 10월 서울대학교 개교 71주년을 맞아

국립서울대학교 개학반세기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이태진

국립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사

서울대학교 개학
120년 기념

1895~1946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VERI
LUX
TAS
MEA

국립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사

서울대학교 개학
120년 기념

1895~1946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편찬위원장

이태진(인문대학 국사학과 명예교수)

상임편찬위원

김태웅(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정긍식(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안종철(튀빙겐대학 인문학부 교수)

각 대학 추천 편찬위원

김금순(간호대학 명예교수)

전효택(공과대학 명예교수)

김경욱(농과대학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교수)

최종고(법과대학 명예교수)

우용제(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윤계섭(경영대학 명예교수)

심창구(약학대학 명예교수)

정준기(의과대학 의과학과 교수)

백대일(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연구위원

김상태(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교수)

김종준(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박준형(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교수)

오제연(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준영(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편찬원

홍문기(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박사수료, 준 편찬위원)

김은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박사수료, 간사)

윤민경(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박사과정)

간행사



현재는 과거로부터 비롯됩니다. 과거의 족적, 즉 역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만 그 위에 오늘을 다지고 미래를 쌓아올릴 수 있습니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역사적인 연원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역사논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서울대학교는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설치령'에 의해 미국식 종합대학(University)으로 정식 개교했습니다. 한편으로 서울대학교의 설립은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던 여러 고등교육기관들을 통합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개교 기원이 언제인가에 관해서는 서울대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오래 전부터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서울대학교 평의원회는, 1946년 서울대학교에 포함된 여러 교육기관들 중 그 연원이 가장 오래된 법관양성소와 한성사범학교 개교년인 1895년을 서울대학교의 '개학(開學) 원년'으로, 1946년은 '개교(開校) 원년'으로 각각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듯 개학과 개교의 기원을 각기 달리하는 방식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1946년 개교 당시 초대 총장이 미국인, 심지어 미국 군인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대학교의 개교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모든 영역이 그러하듯, 서울대학교 또한 그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토론과 모색을 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협력하여 서울대학

교 통합개교 이전의 역사를 밝히고자 『서울대학교 개학 120년 기념 국립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사(1895~1946)』 간행사업을 추진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우리 선배들은 발전된 서양의 학문을 따라잡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서구 학문의 습득은 당시로서는 유일한 발전의 길이었고, 선배들의 노력을 통해 이제 서울대학교는 세계 어느 대학과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을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발(後發)의 단계를 넘어 세계 선진 대열에서 나란히 경쟁해야 하는 지금, 우리는 국제 학계의 보편적 기준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적 문제의식과 해법을 제기하여 세계와 소통하는 독자적이면서 창조적인 학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 속에서 우리 학계가 학문을 축적하고 교육을 실시한 맥락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와 현실로부터 유리된 세계화만큼 공허한 단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학 반세기사』는 서울대학교의 개교 전사(開校 前史)이자 대한민국의 근대지성사로서, 우리 학계가 확인해야 할 역사를 되짚어보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역사의 확립은 곧 정체성의 확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존재를 추구하는가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통해 가장 명확히 입증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가 밝은 영혼이 깃든 '선(善)한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참된 지식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을 피력해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울대학교가 받은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방법이며, 모두가 다 함께 발전하는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길입니다.

이번 간행과정을 통해서, 서울대학교의 전신(前身)에 해당하는 구한말 관립 학교들과 일제 강점기 전문학교들의 많은 선배들이 국망의 위기에 굴하지 않고 민족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최전선에서 싸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삶과 정신을 서울대학교의 역사적 의의로 계승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치로 체화시킬 때, 사회공동체를 향한 서울대학교의 '선한 의지'는 더욱 열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시대를 맞아낸 선배들의 기상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구한말 설립된 관립 학교의 학생들은 일제의 압박 속에서 학교 운영권을 일본에 강탈당하고 민족 차별적 교육을 강요당하면서도,

민족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배우며 싸우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광복 직후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전화(戰火)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공부하며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국민이 서울대학교에 기대하고 있는 바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대학법인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물적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기와 사명 속에서 끝내 굴하지 않았던 우리의 선배들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서울대인 역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서울대학교에 부여된 소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며, 최단기간에 가장 압축적으로 산업화를 이루고, 그 위에 민주화를 꽃피워냈습니다. 민족의 성원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 진보하여 오늘의 결실을 이뤄낸 것은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되새겨야 할 가치입니다. 그 역사와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될 『개학 반세기사』 발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구와 편찬의 짐을 전담하신 이태진 편찬위원장님 이하 편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책을 통해 서울대학교 역사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간행사



근본적으로, 미래를 향한 희망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불확실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큰 목표를 이루려 하는 사람은 그만큼 무거운 불안감을 감수해야 하며, 그러한 불안감은 오직 역사를 통해 쌓아올린 성취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한 번 반추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뚫어낼 방법과 의기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서 민족 발전의 사명을 안고 있는 서울대인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와 서울대학교가 협력하여 『서울대학교 개학 120년 기념 국립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사(1895~1946)』를 간행한 것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지도적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구한말 국망의 위협에 직면한 우리 선조들이 선택한 길 또한 근대적 학문을 습득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우수한 젊은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통용된 인재상이 그 효용을 다한 시점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면서 새 시대를 향해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동량(棟樑)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곧 새로운 국민을 창출하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그 모든 노력의 실체가, 바로 구한말 서울대학교의 개학(開學)이었습니다.

1895년 법관양성소의 개교를 시작으로 우리 선조들은 한성사범학교, 농상공학교, 의학교 등 여러 관립 학교들을 설립하여 국가 근대화를 추진할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관립 학교의 교사(校舍), 교원(敎員), 학생(學生)들은 국망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문학교에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전문학교 학생들은 나라를 잃은 국민의 설움을 삼키며 학업에 정진하여 민족 근대화를 위한 역량을 축적해갔습니다. 광복 직후부터 극도의 혼란을 겪어야만 했던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지성을 연마해 온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학교 학생들은 스스로 민족을 대표하는 지성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3·1 독립만세운동을 비롯한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대한독립을 선언하며 분사(憤死)한 이준, 전문학교 학생들의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던 한위건, 독립운동가의 부인으로서 만주 지역 독립운동단체의 산파 역할을 했던 박자혜, 상해임시정부의 버팀목이었던 홍진, 광복 후 대한민국의 부통령이 된 함태영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배들은 연마한 지성으로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열정과 의기야말로 서울대인이 갖춰야 할 가치인 지성, 겸손, 봉사의 전범(典範)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리고 이어나가야 할 바입니다.

서울대학교는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설치령'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개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대학교를 새로이 설립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광복 당시 한국 내 최대의 교육기관인 경성대학 외에, 여러 전문학교들이 통합하여 국립서울대학교로 개교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학교는 1946년 홀연히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민족교육기관들의 역사를 집대성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광복이 그러했듯이 서울대학교의 통합개교 또한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었고, 그렇기에 그 역사적 의미를 두고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논란과는 별개로, 서울대인들은 이미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광복 이후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모교 안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법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등 서울대학교의 여러 단과대학들은 서울대학교 차원에서 개교 기원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미 각 대학별로 구한말부터 이어온 역사를 기념해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각 전문학교의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통합개교 이후에 그대로 동문으로 인정받으며 서울대인의 정체성을 공유해 왔습니

다. 단적으로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을 역임하신 일곱 분의 동문 중에서 네 분이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등 일제강점기 전문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성대학과 전문학교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과 유리된 인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 책이 무사히 세상에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의 이태진 명예교수님께서는 1946년 통합개교 이전 서울대학교 역사에 대해 오래 전부터 큰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오셨으며, 이번에는 직접 편찬위원장을 맡아 이렇게 훌륭한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이 글을 빌어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이 책을 통해 서울대인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가치가 학교, 동문, 사회에 널리 공유되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노력과 기대가 보상받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

축사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 조건 중 하나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재들을 모집하고 양성하는 대학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넓은 국토도, 풍부한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일수록 사회발전의 근간이 되는 것은 오직 유능한 인재입니다. 실제로 국망과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제 경쟁의 대열에서 수위에 나설 수 있었던 것 또한 서울대학교를 위시한 우수한 대학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1946년 통합개교 이래 서울대학교는 뼈를 깎는 노력과 혁신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유수의 대학평가기관으로부터 30위권에 해당하는 순위를 안정적으로 부여받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의 대열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멈춘 뒤 지금까지 정체되었던 것처럼, 지난 10년 가까이 서울대학교의 발전은 그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세계 10위권 대학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천명하며 부단히 노력해왔음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제가 가장 고민한 지점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진행한 사업 중 하나는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서울대학교의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교 역사가 너무나 짧다는 것에 대해 세계의 명문대학들이 의문을 제기해왔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나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구성원들이 해외 대학과의 간담회에 참여한 자리에서 종종 받는 질문은 '이렇게 훌륭한 대학이라면 그 역사는 얼마나 됩니까?'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

울대학교가 1946년에 개교했다고 답하면 모두 의아해하며 개교 역사를 가지고 서울대학교를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를 접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총동창회장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더구나 해외에서 심사하는 명문대학 순위에서 그 대학의 역사와 전통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들었습니다. 아시아 유수의 대학으로서 서울대학교와 경쟁하고 있는 도쿄대학의 개교 기원은 1877년, 베이징대학은 1898년입니다. 구미의 명문대학들은 이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의 헌신과 열정을 통해 합당한 실력을 갖췄음에도, 행여나 너무 짧은 역사와 전통이 세계 명문대학 10위권 진입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이는 서울대학교와 서울대인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가 세계 일류 대학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이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며, 개교 원년 찾기 운동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 등 여러 단과대학이 설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훨씬 전부터 치르고 있고, 당시 졸업생들도 동문으로 인정받으며 활동했다는 명백한 역사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각 단과대학(원) 동창회장, 동창회보 논설위원과 관심이 있는 모교 교수 등을 여러 차례 초청하여 회의를 통해 중지를 모으는 한편, 1년여 동안 동창회보의 지상토론을 통한 사실상의 공청회를 거쳐 동문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많은 동문의 찬동과 격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과를 집대성하기 위해 모교 국사학과 이태진(李泰鎭) 명예교수님께 의뢰하여 「국립서울대학교 개교 원년 재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2009년 『정통과 정체성』이라는 책으로 집대성되었습니다. 이로써 국립서울대학교가 1946년 통합개교되기 훨씬 이전인 1895년 5월 6일 법관양성소 개교일을 서울대학교의 개학 원년으로 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문적 성과는 대중에게 공유되어야만 사회에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참으로 중요한 연구 성과를 동문과 사회에 알리고자, 저는 2013년 이태진 교수님에게 1946년 통합개교 이전의 역사를 다시 서술할 것을 의뢰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저는 총동창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롭게 제25대 총동창회장으로 서정화 회장님이 취임하셔서 이 뜻깊은 사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게 된 것에 대해 참으로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학교의 역사는 곧 학교의 정체성이며 발전의 기반입니다. 당장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속에서 그것을 검증해내지 못한 집단은 결국 존중받지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또한 그 위상에 합당한 역사를 갖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당당히 경쟁해나가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역사 확립에 비할 바 없는 공헌을 하신 이태진 교수님과 서정화 회장님, 성낙인 총장님, 그리고 이장무 전임 총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 동문들의 가슴 속에 당당한 자부심이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15일

전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임광수

축사



역사(history)라는 단어는 그리스 어의 'histo', 즉 '이것을 알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국립서울대학교 개학 120년을 기념해서, 우리 총동창회가 서울대학교의 근원이었던 전신(前身) 대학들의 잊혀졌던 역사를 복원해서 『서울대학교 개학 120년 기념 국립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사(1895~1946)』를 편찬하여 널리 알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낙인 총장님, 서정화 총동창회 회장님과 임직원, 그리고 집필진 여러분에게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개학 반세기사 사업을 시작하신 임광수 전 총동창회장님과 편찬위원장이신 이태진 명예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보이는 증거에 기초해서 쓰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 이야기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현재를 음미(吟味)하고 미래를 내다보게 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예지와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법인화를 이루고 세계적 글로벌 연구대학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개학 반세기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학 반세기의 상당 부분이 일제 강점기와 시기를 같이하고 있어서, 서울대학교의 전신 대학들이 전통을 이어 받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학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잊고 싶고, 흔적을 지우고 싶은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고난을 함께 담고 있는 반세기 역사를 그대로 인정해서, 개학 1895년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서울대학교 구성원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축하를 보냅니다.

저는 총장 재직 중에 외국의 여러 명문대학을 방문해 각 대학 총장과 많은 석

학을 만나 교류한 바 있습니다. 2009년 8월에는 하버드 대학의 드류 파우스트(Drew Gilpin Faust) 총장을 고색창연한 총장실에서 만나 두 대학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미국이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인 1636년에 매사추세츠 주 의회(General court)의 의결로 설립되었고, 목사 양성을 위한 종교 교육을 의무화한 작은 대학으로 출발했습니다. 2008년에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싱가포르의 명문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시춘풍(Shih Choon Fong) 총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그는 총장실에서 대학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1905년에 해협을 지배하는 총독의 승인을 얻어서 말레이시아에 소규모의 의학 학교를 설립했고, 이 대학이 다른 대학들과 합병해서 말레이시아 대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1980년에 말레이시아 대학의 싱가포르 캠퍼스와 난양(南洋) 대학이 합병하여,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 30위권의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된 대학 역사를 소상히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도 전신 관립 대학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는 국왕 고종의 조칙에 따라 1895년 3월 23일에 설립된 법관양성소와 뒤이어 설립된 한성사범학교 등 많은 관립 학교가 있었습니다. 외국의 명문대학들도 모두 시기와 지역이 달랐을 뿐, 우리의 대학과 역사가 유사했던 것입니다.

저는 총장 재임 중 거의 매년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총장회의를 개최했는데, 외국 대학 총장들에게 우리 대학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1946년에 기존의 관립 대학교들을 통합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종합대학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왕립) 대학은 고구려 왕조 372년에 설립된 태학이었고, 그 후의 국립 대학은 고려 왕조 990년에 설립된 국자감, 조선 왕조 1394년에 설립된 성균관인데, 이러한 맥을 이은 대학이 국립서울대학교입니다." 유럽 명문대학의 총장들은 한국 국립 대학의 역사가 유럽 대학의 역사 못지않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여러 외국 명문대학의 역사 이야기를 당시 동창회 회장이셨던 임광수 회장께 말씀드렸고, 임 회장께서 동창회가 주도해서 1895년을 개학 원년으로 하는 역사 되찾기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개학 원년 정립 사업은 후에 학장회의, 교수협의회,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고, 개학 반세기사 편찬 사업으로 이어져서 이제 반세기사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학 반세기사에는 국립서울대학교 뿌리 찾기의 민족사적 의의가 명쾌하게 기

술되어 있습니다. 반세기사는 단순하게 기존의 사료를 편집한 것이 아니라 장장 3년에 걸쳐 국내는 물론 일본 등을 방문해서 새로운 사료들을 찾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여 집대성한 역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세기사를 통해 우리는 최초의 관립 대학이 서양의 근대 교육제도가 표방하는 "국가의 동량(棟梁)을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설립되었다는 사실과 전신 학교들의 수많은 학생이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했다는 자랑스러운 역사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일으킨 뛰어난 인재들을 양성한 서울대학교 전신 대학들의 빛나는 역사를 다시 발굴하여 편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세계 30위권 대학으로 도약한 서울대학교가 반세기 역사 편찬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세계적인 대학으로 더 높이 솟구쳐 오르기를 기원하면서 축사의 글을 맺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전 서울대학교 총장
이장무

편찬의 취지와 경위



1. 편찬사업의 취지

1895년 2월 청일전쟁이 종반에 접어든 시점에 군주 고종은 '교육조칙(敎育詔勅)'를 반포하고, 이어서 3월, 4월에 조칙의 뜻을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법관양성소와 한성사범학교를 출범시켰다. 한두 해 뒤에는 소학교령을 내리고 관립으로 여러 전문학교와 중학교의 설립을 후속시켰다. 이 바쁜 걸음을, 일본이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 병력을 출동시킨 상태에서 저지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를 배경으로 1905년 11월 대한제국에 대해 보호조약을 강요하고 이듬해 2월부터 통감정치를 시작했다. 외교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 간섭하면서 교육 부면에서 대한제국 정부가 추진하던 근대교육 기반 구축을 제지 또는 방해했다. 한국인들로부터 아예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식민지 교육체제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1910년 8월 '한국병합'이 강제된 뒤, 기존의 관립 전문학교들은 모두 격하 조치를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단한 투쟁으로 교육의 명맥은 유지되었지만 뒷걸음질만 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근대국가 수립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사에 '잃어버린 반세기'가 펼쳐졌다.

『서울대학교 개학 120년 기념 국립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사(1895~1946)』(이하 『개학 반세기사』로 약칭) 편찬사업은 그 '잃어버린 반세기'의 역사를 되찾기 위해 기획되었다. 광복 70년이 된 시점에서도 우리의 근대적 고등교육이 일제에 의해 비로소 갖추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우리 스스로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인재 양성 목표의 고등교육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

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역사의식이 방치된 상태에서 진정한 발전이 과연 가능한가? 구한말 우리 선조들은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각종 고등교육 기관들을 '관립'으로 설립했다. 당시 '관립'은 정부 주도란 뜻으로 오늘날 '국립'에 해당한다. 반면 지방 관청에서 세운 학교는 '공립'이라고 하여 이와 구분했다. 관립 전문학교들의 실체와 위상이 이러하다면 국립서울대학교가 그 역사를 끌어안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개학 반세기사』 편찬사업은 곧 뒤늦게나마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2. 편찬사업의 배경: 개교 원년 찾기 운동

지난 2009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개교 원년 찾기 운동을 벌였다. 1946년 8월 22일 미군정은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법령 제102호)을 공포했다. 국립서울대학교는 이 법령에 따라 종합대학교로 출범했고, 서울대학교의 연령도 이 해를 기준으로 헤아려졌다. 그로부터 60여 년을 넘긴 2009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임광수(林光洙) 회장의 주도 아래 개교 원년 찾기를 새롭게 할 것을 학교 당국에 건의했다. 위 법령에 따르면 1946년 당시 처음 대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9개 전문학교와 1개 대학을 합쳐 종합대학교로서 서울대학교를 설립한 것이며, 따라서 1946년을 개교 원년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다. 여러 학교를 통합해 새로운 학교를 설립할 경우, 통합된 학교 중 가장 먼저 설립된 학교의 창설 연도를 개교 원년으로 삼는 것이 세계적 관례였다. 이를 근거로, 하나로 통합된 9개 전문학교 가운데 1895년 3월에 창설된 법관양성소의 설립 시기가 가장 앞서므로 이를 개교 원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이장무(李長茂) 총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 최종 의결기구인 평의원회에 보냈다. 평의원회는 여러 차례의 심의 끝에 2010년 "1895년 개학, 1946년 개교"라는 안을 내놓았다. 이미 60여 년간 1946년을 개교 원년으로 삼아 온 상황에서 갑자기 50여 년을 더 보태는 것이 초래할 혼란과 반발을 우려하여 1895년은 '개학' 원년으로 하고 1946년 '개교'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었다. 총동창회 측은 미진한 감이 있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제안한 측으로서 소임을 다한다는 뜻에서 그 50여 년간 '개학 반세기'의 역사를 정리하는 사업을 다시 학교 본부에 제안했다. 당초

에는 1946년 이후의 역사를 통합하는 '120년사 편찬'이 되기를 바랐지만 평의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개학 반세기사』를 편찬하기로 결정했다.

3. 『개학 반세기사』 편찬사업의 발족

총동창회의 제안은 2013년 초에 재임 중인 오연천(吳然天) 총장에 의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이 사업을 국립대학재단법인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공동편찬사업'으로 추진하되 총동창회가 편찬사업을 주관할 것을 제안했다. 총동창회는 이를 수락한 다음, 편찬위원 구성에 착수했다. 총동창회 임광수 회장은 2013년 11월 15일 인문대학 국사학과 명예교수 이태진과 사범대학 역사교육학과 김태웅 교수를 초치하여 편찬사업을 이끌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태웅 교수는 평소에 관립 고등교육기관 역사 정리의 중요성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태진은 2008~2009년에 총동창회의 위촉을 받아 개학 원년 찾기의 근거 자료로 「국립서울대학교 개교 원년 재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2009. 2. 28)[1]를 총괄한 경험이 있어 자문 대상이 되었다. 총동창회는 편찬위원 구성을 두 사람에게 일임하고 편찬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원고를 완성해 주기를 바랐다. 두 사람은 임광수 회장의 요청을 수락하고 곧 편찬위원단 구성에 들어가 2013년 12월 30일 자로 「국립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 편찬계획서(안): 1895년에서 1946년까지」를 제출했다. 총동창회가 바로 이를 접수함으로써 편찬사업은 2014년 신년을 맞이하며 연구공원 건물 5층에 편찬실을 마련해 착수되었다.

4. 편찬사업의 경위

『개학 반세기사』 편찬사업은 (가) 상임 편찬위원, (나) 각 대학 편찬위원, (다) 연구위원 등 세 그룹을 구성하여 착수되었다.

(가) 상임편찬위원은 『개학 반세기사』의 본론을 집필할 역사 전공자들로 구성했다. 이태진(인문대학 국사학과 명예교수), 김태웅(사범대학 역사교육학과 교수), 정긍식(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종철(독일 튀빙겐 대학교 교수) 등 네 명이 참여하고 이 가

1 이 보고서는 같은 해 11월에 『정통과 정체성: 서울대학교 개교 원년, 왜 바로 세워야 하는가?』(삶과 꿈 출판사)로 간행되었다.

운데 이태진은 편찬위원장, 김태웅은 편집부장, 정긍식은 교열부장의 임무를 각각 맡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편찬업무를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총괄 한 명을 두기로 하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홍문기를 위촉하는 한편 준편찬위원의 자격을 부여했다. 본론 집필자 네 명은 다음과 같이 집필 시기를 분담했다.

이태진: 서장 및 대한제국 시기 일부(1904~1910)
홍문기: 개항기 및 대한제국 초기(1875~1904)
김태웅: 일제 침략기(각 전문학교 변천, 1910~1945)
정긍식: 일제 침략기(경성제국대학, 1924~1945)
안종철: 미군정기(1945~1948)

상임 편찬위원회는 이 외에 간사 한 명(김은영, 역사교육학과 박사과정)을 두고 국사학과 및 역사교육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보조 인력을 위촉하여 편찬위원들의 자료 수집 작업을 돕게 했다.

(나) 각 대학 편찬위원은 각론 형식에 따라 각 단과대학의 유래를 서술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들 가운데는 오래전부터 단과대학사를 편찬하면서 1946년 이전의 역사를 포함시킨 대학들이 있었다. 각 대학 편찬위원은 이 전통을 살려 본론 서술과는 별도로 각 단과대학의 '개학 반세기사'를 집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의 위촉은 총동창회가 직접 각 대학 학장들에게 요청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금순(간호대학 명예교수)
전효택(공과대학 명예교수)
김경욱(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최종고(법과대학 명예교수)
우용제(사범대학 교수)
윤계섭(상과대학-경영대학 명예교수)
심창구(약학대학 명예교수)
정준기(의과대학 교수)

백대일(치과대학 교수) *대학명 가나다 순

각 대학 편찬위원들은 해당 단과대학의 1946년 이전의 역사를 각론의 형식으로 집필했다. 즉 각 전문학교의 교육 상황(강의 과목, 교수 확보 상태, 학생 인원 등)을 특별히 유의하여 서술하기로 했다. 해당 전문학교 졸업생의 사회 진출 상황도 가급적 파악하기로 했다.

(다)의 연구위원은 한국사 전공자로서 상임편찬위원들이 수행해야 할 본론 서술 부분 가운데 이미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연구 실적을 가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2009년도 「국립서울대학교 개교 원년 재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오제연(현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종준(현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을 비롯해 박준형(인하대학교 연구교수), 정준영(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김상태(서울대학교 병원역사문화원 교수) 등이 편찬사업의 취지에 동의하여 위촉을 수락해 주었다. 김종준은 근대 성균관제도의 변천, 김상태는 근대 의학교의 역사, 정준영은 경성제국대학의 역사 등의 집필에 각각 참여했다. 그리고 박준형은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로 통합될 때까지 각 전문학교의 소재지(캠퍼스) 역사를 공간사의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정리, 집필했다.

이상 세 그룹의 편찬위원 또는 연구위원은 여러 차례의 회합을 가졌다. 상임편찬위원회는 자체 회의를 23회, 연구위원과의 합동 회의를 8회, 각 대학 편찬위원회와의 연석 회의를 9회 수행했다.

5. 자료 발굴의 성과

『개학 반세기사』 편찬사업은 단순히 국립서울대학교의 유래를 천착하는 것을 넘어 한국 근현대 고등교육사의 발굴이란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그간에 교육사 분야에서 이 주제에 관한 연구가 적지 않았지만 1875년에서 1946년까지 70여 년간의 근대적 교육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정리한 실적은 없었다. 근대 교육 역사에 관한 것은 시대적 여건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관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리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관립 고등교육의 전통을 잇는 국립서울대학교가 이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통사적 정리가 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한국 아카데미즘의 중심인 서울대학교가 크게 반성할 대목이다.

이번 편찬사업은 본론 서술의 경우, 이 시대 연구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실

록, 『승정원일기』, 『관보』, 정부 각 부처의 등록, 신문, 잡지 등의 자료가 기본적으로 활용되었다. 일본 측이 침략을 위해 탐문하고 조사·보고한 자료로서 『일본외교문서』, 『주한일본공사관 기록』, 『통감부문서』, 『통감부 공보(公報)』, 『조선총독부관보』 등도 주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고자 2014년 11월에 도쿄, 2015년 3월에 교토로 출장을 다녀왔다.

도쿄에서는 일본의 국립공문서관, 국회도서관, 외무성 외교사료관, 적십자사 자료실, 다쿠쇼쿠대학(拓殖大學) 하치오지(八王子) 캠퍼스 도서관 등을 두루 방문했다. 확인이 필요한 자료들을 보기 위한 조사 방문이었다. 국회도서관 신문자료실에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제공되고 있는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의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에 관한 보도 가운데 학생들의 시가지 시위가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심지어 경성고등보통학교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등 관립 학교 학생들이 앞장선 기사를 발견하고 환호했다.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으로, 관립 전문학교 역사 편찬에서 크게 강조하여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립공문서관에서 일본 내각 각부의 『공문잡찬(公文雜纂)』 수십 권에서 1908년부터 1910년까지 일본 정부의 중앙, 지방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국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여 약 2,000명이 채용된 사실을 발견하고 저들이 대한제국의 관립 고등교육기관을 억제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였다. 도쿄부 외곽 하치오지로 이전한 다쿠쇼쿠대학 도서관에서도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2015년 3월 교토대학 도서관 방문은 제3대 통감으로 부임하여 '한국병합'을 강제하고 초대 총독이 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공간(公刊) 자료 수십 책을 열람하기 위한 것이었다.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 이어 한국 국권 탈취의 중심인물인 그의 자료를 보지 않고 이 시기의 고등 교육사를 집필한다는 것은 어불성(語不成)이란 판단 아래 이루어진 조사 여행이었다. 이 대학 도서관은 『데라우치 마사다케 관계문서(寺內正毅關係文書)』를 비롯해 그가 남긴 기록들을 편찬하여 공간한 도서들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주요한 자료들을 찾아내는 성과가 이루어졌다. 상임 편찬위원회는 중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둘러보고자 도서관 담당관에게 연락을 취한 결과, 뜻밖에도 1975년 관악캠

퍼스 종합화 때 서울 시내에 산재했던 단과대학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던 장서들 가운데, 1946년 이전 각 전문학교 소장 도서들이 별도로 분리·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에 중앙도서관의 협조를 얻어, 법관양성소,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대학,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광업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 등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 책들을 열람할 수 있었다. 이 책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개교 원년' 찾기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물증으로서, 그 가운데 몇 책의 장서인들을 선별하여 「부록」에 사진으로 제시하여 공유의 기회를 만들었다.

편찬위원회의 '뿌리 찾기' 노력은 교무처와 협력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교무처는 관악캠퍼스 이전 때 각 대학이 가지고 있던 각 전문학교의 학적부를 이관받아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학적부는 개인 신상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무처가 공개적으로 홍보할 대상은 아니어서 연구자들도 이의 존재를 잘 알지 못했다. 편찬위원회는 이 소식을 듣고 교무처와 상의하여 학생의 성명, 본적, 출생연도, 입학 및 졸업 연도에 한하여 공개하는 것에 합의를 보고 이를 별도로 입력하는 작업을 거쳐 「부록」 자료의 하나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자료 또한 각급 관립 전문학교들이 국립서울대학교의 뿌리라는 것을 명증해 주는 것으로 이의 발굴은 편찬사업이 거둔 주요한 성과라고 자부한다. 학적부를 남긴 전문학교들을 계통별로 제시하면서 학생 수를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인 학생 수는 ( ) 안에 표기한다.

공학 계열: 경성고등공업학교 1,509(341)명

경제상업 계열: 경성경제전문학교 139(139)명, 경성고등상업학교 564(240)명

법학 계열: 전수학교 337(337)명, 경성전수학교 165(139)명,
경성법학전문학교 2,456(1,990)명

사범 계열: 경성사범학교 3,637(3,386)명, 경성여자사범학교 2,897(1,504)명

약학 계열: 조선약학교 365(146)명, 경성약학전문학교 1,107(386)명

치의학 계열: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311(70)명

경성제국대학 예과 853(314)명

경성제국대학 본과 1,557(809)명

경성대학 273(273)명

6. 앞으로의 교사 편찬사업에 대한 기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2013년 『개학 반세기사』 편찬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도쿄대학백년사(東京大學百年史)』(1984, 도쿄대학출판회), 『교토대학백년사(京都大學百年史)』(1998, 재단법인교토대학후원회)를 구입하고, 2014년 편찬사업이 시작되면서 편찬실로 이관했다. 전자는 통사 2책, 부국사(部局史) 4책, 자료 3책 등 도합 9책, 후자는 총설편 1책, 부국사 3책, 자료편 2책 등 도합 6책으로 구성되었다. 각 책이 모두 1,000쪽을 넘는 분량이다. 부국사는 대학의 학과와 소속 기관의 역사로서, 집필 자체를 해당 학과와 기관이 담당했다. 편찬위원회는 학교 전체 역사의 줄거리를 잡는 데 치중하고 각 학과와 기관들은 각자에게 맡기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평소에 각 학과, 기관들이 자체 역사의 자료를 모은 것이 이런 방대한 편찬을 가능하게 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1966년의 20년사 편찬에서부터 10주년 단위로 교사를 편찬해 왔다. 그런데 그 과정을 살피면 약 1년 전에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때부터 자료 수집에 동분서주하여 집필을 서두르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다. 일본의 대표적인 두 대학의 편찬사업의 틀과 규모는 본받아야 할 점이다. 그래서 부록에 두 대학과 함께 베이징대학(北京大學)의 교사 편찬물들을 함께 소개하여 앞으로의 참고 자료로 삼고자 했다.

우리 서울대학교가 1946년을 개교 원년으로 삼고 있을 때 베세토하(BESETOHA) 정례 회의에 참석한 어느 총장은 다른 세 대학이 모두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데 서울대학만 60년으로 최연소인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교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마저 위와 같이 외국 대학들에 비해 매우 소홀히 해 온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개학 반세기사』 편찬사업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6년 12월 15일

국립서울대학교개학반세기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차례

간행사 _ 성낙인 iii

간행사 _ 서정화 vii

축사 _ 임광수 ix

축사 _ 이장무 xii

편찬의 취지와 경위 _ 이태진 xv

서장

국립서울대학교 뿌리 찾기의 민족사적 의의 • 이태진

제1절 국립서울대학교 역사 재정립을 위한 기본 과제 3

1) 국립서울대학교 '설립령'에 명시된 근대 교육기관과의 승계 관계 3
2) 한국 근대사와 '근대'를 이끈 군주 고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 7
3) 일본제국의 대외 팽창주의와 교육 침략: '정한론'과 군국주의 11

제2절 미국에서 구한 근대 고등교육제도의 모델 17

1) 1881년 조사시찰단의 메이지 정부 교육제도 조사 17
2) 1883년 보빙사의 미국 고등교육제도 수용 건의 24
3) 1886년 미국식 '칼리지(College)' 육영공원(育英公院)의 창설과 운영 32
4) 『한성순보』, 『한성주보』의 서양 대학에 관한 정보 41

제3절 근대 한국을 제어한 일본제국의 침략주의 실체 48

1) 메이지 번벌 정권과 천황주의: '대일본국가헌법'(1889)의 성립 48
2) 국가주의 교육체제와 천황이 지배하는 새로운 '동양' 건설 표방 55

제4절 '국민교육' 선언 속에 탄생한 법관양성소와 한성사범학교 67

1) 일본의 침략주의에 맞선 조선 군주의 '교육조칙' 반포 67
2) 청일전쟁 종료와 조선 정부의 자력 근대화 시도: 을미개혁 85

제5절 자랑스러운 역사 되찾기: 항일 민족운동의 중심에 선 관립 전문학교들 101

1) 국권 피탈 시기 관립 전문학교 학생 및 그 출신들의 투쟁 101
2) 고종황제의 죽음과 3 · 1 독립만세 운동: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의 활약 111
3) 시위 구속 학생 판결문에 보이는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의 활약 120

제6절 '개학 반세기' 편찬의 성과와 '개교 원년 조정'의 문제 129

1) 1946년 8월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 오천석 박사의 증언 129
2) 20년사~50년사에 남겨진 교사(校史) 인식의 실태 133
3) '1949년 개교 원년' 결정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139

제1부 조선 · 대한제국기

제1장 고종 재위 전기(前期, 1863~1894) 교육개혁론 및 교육정책 • 김상태, 홍문기 149

제1절 한국 근대 교육개혁의 사상적 연원 149

1) 조선 후기 실학교육론 149
2) 고종 대 교육개혁론의 양상 156

제2절 근대적 교육개혁론의 수용 165

1) 개항 직후 일본을 통한 근대교육 수용 165
2) 보빙사 파견과 조선 교육정책의 변화 172
3) 『한성순보』, 『한성주보』의 교육개혁론 177

제3절 고종 재위 전기 신식 교육기관 설립 186

1) 동문학 186
2) 원산학사 189
3) 육영공원 192
4) 선교사 교육기관 지원을 통한 보통교육 확충 198

제4절 의술의 근대화와 제중원 설립 201

1) 고종 대 의료 근대화와 제중원의 설립 201
2) '제중원의학당', 한국 최초 국립 의과대학 206

제2장 1890~1900년대 관립 고등교육기관의 발달: 국립서울대학교 각 단과대학의 시원 211

• 김상태, 김종준, 홍문기

제1절 일본의 '내정간섭'과 갑오개혁 211
1) 청일전쟁과 일본의 조선 침략 211
2) 갑오개혁의 역사적 의의 217

제2절 1895년 '교육조칙(敎育詔勅)'과 근대적 교육개혁 222
1) 고종의 '교육조칙' 발표 222
2) 전문학교 설립 237
3) 전통 교육의 개편과 공교육 확충 252

제3절 대한제국 수립과 관립 고등교육기관의 발달 268
1) 대한제국 수립의 역사적 의의 268
2) 관립 농상공학교의 설립 274

제4절 대한제국의 의료정책과 의학 교육 281
1) 관립 의학교 설립과 광제원 281
2) 의료기관의 증설 283

제3장 1904~1910년 일본의 국권 침탈과 관립 고등교육기관의 시련 • 이태진 286

제1절 러일전쟁과 국권 피탈 286
1) 러일전쟁과 한반도 286
2) 군사 침략과 외교권 탈취(1904~1905) 288

제2절 러일전쟁 전후 국권 위협 속의 교육 기반 확충 노력 295
1) 러일전쟁 중의 '황실특파' 일본 유학생: 최초의 항일 동맹휴학 사건 295
2) 1904~1905년 '시정 개혁'을 통한 교육 침략 전초 302
3) 황실의 보성전문학교 설립: 최초의 종합대학교 지향 306
4) 1904년 정부의 농상공부 체제 강화와 관립 농상공학교 성립 312

제3절 1905년 '보호조약' 강제 후 통감부의 관립 전문학교 해체 정책 321
1) '보호조약' 무효화 투쟁 321
2) 1906년 이후 통감부의 관립 전문학교 해체 및 왜곡 326
3) 통감부의 한국 중립국화 정책 봉쇄와 관립 의학교의 왜곡 342
4) 통감부의 사법권 탈취, 법관양성소(법학교)의 도구화 358
5) 통감부의 보성전문학교 탄압 364

6) 황제의 사립 학교 설립 촉구 조령과 '대한민(大韓民) 교육광복' 유서(諭書) 367

제4절 '한국병합' 강제와 교육 차별: 동화주의의 허구 373

1) 한국병합 강제와 융희황제의 저항 373
2) 병합 강제에 대한 문명론적 변명과 동화주의 378
3) 일본 신문 보도에 보이는 동화(同化) 논설들의 허구 380

제2부 일제 강점기

제1장 강점 초기 관립 고등교육기관의 변화와 한국인 학생의 동향 • 김태웅 389

제1절 일제의 고등교육시책과 관립 전문학교 개편의 연속 389

1) 1910년대 전반기 관립 전문학교의 운영 기조와 학교 위상의 약화 389
2) 1910년대 후반기 관립 전문학교 운영 기조 조정과 학교 교육의 변화 396
3) 동양협회 경성분교의 개편과 조선약학교의 설립 403

제2절 전문학교 학생들의 연학(研學)과 졸업 이후 활동 406

1) 연학 406
2) 졸업 이후 활동과 민족운동 416

제2장 3·1 독립만세운동과 전문학교 학생들의 참여 • 김태웅 422

제1절 3·1 독립만세운동 전야 422

제2절 3·1 독립만세운동의 전개 424

1) 민족대표 33인의 '기미독립선언서'와 만세 시위의 확산 424
2) 관·공·사립 전문학교 학생들의 만세시위운동 429

제3절 관립 전문학교 및 조선약학교 학생들의 시위 참여 상황 440

1) 경성의학전문학교 440
2) 경성공업전문학교 442
3) 경성전수학교 444
4) 조선약학교 445

제4절 3·1 독립만세운동 후 관립 전문학교 및 조선약학교 출신 독립유공자의 삶 447

1) 경성의학전문학교 447
2) 경성공업전문학교 453
3) 경성전수학교 454
4) 조선약학교 455

제3장 3 · 1 운동 이후 중일전쟁 직전(1919~1937) 한국인의 고등교육 요구와 고등교육기관의 성장 • 김태웅, 정긍식, 정준영 457

제1절 한국인의 고등교육 요구와 일제의 고등교육시책 변화 457

1) 3 · 1 운동의 충격과 제2차 조선교육령 체제의 등장 457
2) 민립대학설립운동과 조선총독부의 대응 462

제2절 경성제국대학의 설립과 운영 466

1) 경성제국대학의 설립 경위 466
2) 경성제국대학의 조직과 운영 478

제3절 각급 전문학교의 개편과 위상 강화 513

1) 관립 전문학교의 위상 강화와 학교 운영 513
2) 일제식 사범 양성의 전문화와 경성사범학교 · 경성여자사범학교의 설립 517
3) 경성치과의학교의 설립 · 변화와 조선약학교의 승격 522

제4절 고등교육기관 한국인 학생의 연학과 활동 528

1) 전문학교 한국인 학생의 학업과 활동 528
2) 경성제국대학 한국인 학생의 학업과 활동 566

제4장 중일전쟁 발발 후 일제의 고등교육시책 전환과 고등교육기관의 변화 • 김태웅, 정긍식, 정준영 582

제1절 일제의 전시 동원 교육 체제 구축과 고등교육시책 전환 582

1) 전시 동원 교육 체제 수립과 '민족말살 교육' 시도 582
2) 고등교육시책의 전환과 고등교육기관 개편 606

제2절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한국인 학생의 활동 619

1) 전문학교 · 사범학교의 운영 실태 619
2) 한국인 학생의 학업과 활동 622

제3부
광복 이후

제1장 해방 이후 미군정 아래 고등교육과 한국사회(1945~1948) • 안종철 649

제1절 해방 후 관립 전문학교의 현황과 변화 649

1) 해방과 남북 분단 649
2) 미군정 아래 식민지 교육제도의 청산 문제 650
3) 경성제국대학에서 서울(경성)대학으로 651
4) 관립 전문학교 현황과 새로운 방향 모색 652

제2절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 공포: 관립 전문학교와 경성대학의 통합 656

1) 미군정의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 공포 656
2) 관립 전문학교의 통합 경위 658
3) 국립서울대학교의 종합대학교로서의 면모 659

제2장 국립서울대학교 출범의 터전: 각 전문학교 캠퍼스 종관 • 박준형 667

제1절 개교 당시의 캠퍼스 667

제2절 캠퍼스 공간의 기원과 변천 670

1) 성내 중부 및 북부 지역의 원 캠퍼스(1895~1907) 670
2) 성내 동부 지역 설치기(1907~1926) 678
3) 성 밖 동교 지역 및 경성 밖 설치기(1924~1945) 685

제3절 구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현재 689

제4부
각 대학
전사(前史)

제1장 간호대학 전사 • 김금순 697

제1절 개학기의 간호교육 698

1) 관립 간호교육의 시작(1907) 698
2)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간호과와 산파과 설치(1909. 2~1910. 9) 699

제2절 일제 강점기의 간호교육 702

1)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간호부과, 조산부과 (1910. 10~1916. 4) 702
2) 조선총독부의원 의육과(1916. 4~1920. 10) 708
3)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 · 조산부 양성소(1920. 10~1928. 6) 713

4)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 · 조산부 졸업생 누계와 취업 현황 721
5)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간호부양성과, 산파양성과 (1928. 6~1945. 8) 724
6)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간호부양성소(1929. 5~1945. 8) 730

제3절 광복 이후 간호교육(1945. 8~1946. 12) 732

제2장 공과대학 전사 • 전효택 757

제1절 개화기의 공학 교육 757

1) 상공학교, 농상공학교 757
2) 관립 공업전습소 759

제2절 일제 강점기의 공학 교육 760

1)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후)경성공업전문학교 762
2) 경성광산전문학교 772
3)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775

제3절 8·15 광복 직후의 공학 교육 779

1) 경성대학 이공학부 780
2) 경성공업전문학교 783
3) 경성광산전문학교 784

제3장 농업생명과학대학 전사 • 김경욱 787

제1절 대한제국기 788

1) 농상공학교 788
2) 농림학교 789

제2절 일제 강점기 794

1) 조선총독부농림학교 794
2) 수원농림전문학교 797
3) 수원고등농림학교 802
4) (후)수원농림전문학교 809

제3절 교원과 학생 810

1) 교원 810
2) 학내 활동 812
3) 학생 항일운동 815

제4절 졸업생과 교우회보 819

1) 졸업생 819
2) 『교우회보』 820

제4장 법과대학 전사 • 최종고 825

제1절 법관양성소 826

1) 설립과 운영 826
2) 교수진 828
3) 교과목 829
4) 졸업생 831

제2절 법학교 833

1) 설립과 운영 833
2) 교과목 834
3) 교수진 834
4) 졸업생 835

제3절 경성전수학교 835

1) 설립과 운영 835
2) 교과목 836
3) 교수진 836
4) 졸업생 837

제4절 경성법학전문학교 840

1) 설립과 운영 840
2) 교과목 841
3) 교수진 842
4) 졸업생 844

제5절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844

1) 설립과 운영 844
2) 교수진 845
3) 교과목 846
4) 졸업생 848
5) 도서관 848

제5장 사범대학 전사 • 우용제 850

제1절 근대 개혁기의 사범학교 851

1) 사범학교 설립 851
2) 교과 운영 852
3) 입학과 졸업 854

제2절 일제 강점기의 사범교육 855

1) 통감부 시기의 한성사범학교 855
2) 고등보통학교 부설 형태의 교원양성 과정 857

3) 관 · 공립 사범학교의 설립과 운영 858
4) 사범학교의 체제 정비(1929~1945) 860

제3절 신국가건설기의 사범대학 설립 862

제4절 경성사범학교 864

1) 설립과 운영 864
2) 교과과정과 실습 866
3) 학교 생활 872
4) 학생 현황 877
5) 교직원 현황 882

제5절 경성여자사범학교 884

1) 설립과 운영 884
2) 교육과정 885
3) 학생 현황 888
4) 교원 현황 890

제6절 맺음말 891

제6장 상과대학 전사 · 윤계섭 897

제1절 개화기의 상학 교육 897

1) 상공학교와 농상공학교 897

제2절 일제 강점기의 상학, 경제학 교육 902

1) 경성고등상업학교와 경성경제전문학교 902
2) 경성제국대학과 경성대학 법문학부 921

제3절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의 설립 923

1) 교과과정 925
2) 교수와 졸업생 928
3) 학생 활동 929

제7장 약학대학 전사 · 심창구 932

제1절 조선약학강습소의 설립 전후(前後) 933

1) 1910년 대한의원부속의학교 약학과 설립의 무산 933
2) 1914년 약품취급강습회의 개최 934
3) 1915년 조선약학강습소의 설립 934
4) 조선약학강습소의 운영과 강의 내용 935
5) 조선약학강습소 졸업생의 사회 진출 상황과 활동 935

제2절 조선약학교 936

1) 조선약학교의 설립과 발전 936
2) 조선약학교의 학사 운영 939
3) 조선약학교 학생의 3 · 1 운동 참여 941
4) 조선약학교 졸업생의 사회 활동 943

제3절 경성약학전문학교 946

1) 전문학교로 승격 946
2) 경성약학전문학교의 학사 운영 948
3) 1941년 경성약학전문학교 축구부의 비밀결사 발각 사건 951
4) 경성약학전문학교 졸업생의 사회 활동 953
5) 부속기관 955

제4절 서울약학대학 956

1) 서울약학대학(사립)의 설립 956
2) 서울약학대학의 학사 운영 959
3) 서울약학대학의 학생 활동 962
4) 서울약학대학 졸업생의 사회 활동 964

제5절 맺음말 966

제8장 의과대학 전사 • 정준기, 김옥주 972

제1절 의학교 972

1) '의학교'의 설립 972
2) 교수진 974
3) 학생 현황 976
4) 의학교의 의의 977

제2절 대한의원 의육부와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978

1) 대한의원 의육부 978
2)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979
3)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981

제3절 경성의학전문학교 983

1) 설립과 운영 983
2) 교수진 986
3) 졸업생의 학술 활동 993

제4절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995

1) 설립 배경 및 주체 995
2)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설립 996
3) 의학부 기초의학 강좌 교수진과 수업 997

4) 의학부 임상 강좌의 교수진과 수업 1000
5) 의학부 제1기 졸업생의 활동 1003
6) 전시체제로 전환 1004
7) 일본의 패전과 경성대학 1007

제9장 치과대학 전사 • 백대일 1009

제1절 경성치과의학교 1012

1) 설립 배경 1012
2) 학사 운영 1013
3) 학술 활동 1015
4) 졸업생 1016

제2절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016

1) 설립 배경 1016
2) 교사 1017
3) 학사 운영 1018
4) 학술 활동 1021
5) 학생 생활 1023
6) 한국인 치과의사 의학박사 1027

제3절 경성치과대학 1029

1) 설립 배경 1029
2) 학사 운영 1030

제4절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 1032

1) 국립서울대학교의 출범 1032
2) 학술 활동 1034

별책 부록

1. 각 대학 화보
2. 각 대학 소장 도서 장서인 화보
3. (미공개 자료) 국립서울대학교의 모태가 된 각급 고등교육기관 학적부
4. 관련 법령 목록
   1) 병합 이전 교육 관련 법령 목록
   2) 일제 강점기 교육 관련 법령 목록
5. 연표
6. 참고문헌 및 기타
   1) 참고문헌
   2) 서울대학교 교사(校史) 및 도쿄대학, 교토대학, 베이징대학 교사 목차
   3) 개화기 서적 광고
   4) 육영공원(育英公院) 학원(學員)의 주요 경력

표 차례

[표 1] 국립서울대학교설치령에 따른 각 전문학교의 단과대학 재편 상황 5
[표 2] 1894년 10월 이노우에 가오루 일본공사 '개혁안' 20조와 1894년 12월 '홍범 14조' 비교 74
[표 3] 1894년 7월 5일 청일전쟁 발발 전후 일본의 조선 '내정개혁' 거론 사항 일람표 77
[표 4] 3월 1일 및 5일 독립만세운동을 위한 학생대표 모임 일람표 122
[표 5] 3·1 독립만세 운동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피검 상황: 〈예심종결결정서〉 분석 128
[표 1-2-1] 1896~1910년 법관양성소 예산 241
[표 1-2-2] 역대 법관양성소 소장과 법학교 교장 243
[표 1-2-3] 법관양성소 교과목과 시간표(1895) 244
[표 1-2-4] 법관양성소 교과목 변천 244
[표 1-2-5] 한성사범학교 교과목 250
[표 1-2-6] '성균관경학과규칙'에 규정된 교과목(1895. 9. 27) 253
[표 1-2-7] 학부 예산 중 성균관 예산의 비중 256
[표 1-2-8] 역대 성균관장과 임명 날짜 258
[표 1-2-9] 소학교 심상과 교육목별 매주 배당시간 수 263
[표 1-2-10] 소학교 고등과 교과목별 매주 배당시간 수 263
[표 1-3-1] 1895년(개국 504년) 3월 25일 칙령 제48호 농상공부관제 및 1904년 7월 12일까지의 변천 314
[표 1-3-2] 1905년 2월 26일 칙령 제25호 농상공부관제 및 1906년 1월 29일 개정 비교 315
[표 1-3-3] 1895년 소학교령과 1906년 보통학교령의 주요 내용 비교 329
[표 1-3-4] 1906년 1월 29일 농상공부관제(개정)와 같은 해 7월 27일 개정 비교 330
[표 1-3-5] 1903년 4~5월 즉위 40주년 칭경 축전 행례 일정표 346
[표 1-3-6] 1907년 12월 27일 '대한의원관제'의 주요 변동 사항 356
[표 1-3-7] 융희(순종)황제의 서명을 위조해 제정, 개정한 주요 법령 일람 359
[표 1-3-8] 법관양성소, 법학교 규정 변천 일람표 362
[표 1-3-9] 법관양성소 입학과 졸업 상황 363
[표 2-1-1] 1907~1915년 전신학교 경비, 학생 수, 교직원 현황 394
[표 2-1-2] 1916~1921년 전신학교 경비, 학생 수, 교직원 현황 402
[표 2-1-3] 이의경 학생의 입학시험 과정 406
[표 2-2-1] 3·1 독립만세운동 당시 학생단의 진용 434
[표 2-2-2] 3·1 만세 시위와 3·5 만세 시위 이후 학교별 구속 학생 현황 437
[표 2-2-3] 1919년 2학기 경성 소재 중등 이상 학교의 개교 상황 439

[표 2-2-4] 3·1 독립만세운동 참가로 입건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441
[표 2-2-5] 3·1 독립만세운동 참가로 입건된 경성공업전문학교 학생 444
[표 2-2-6] 3·1 독립만세운동 참가로 입건된 경성전수학교 학생 445
[표 2-2-7] 3·1 독립만세운동 참가로 입건된 조선약학교 학생 446
[표 2-2-8]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 독립유공자 448
[표 2-2-9] 경성공업전문학교 출신 독립유공자 453
[표 2-2-10] 경성전수학교 출신 독립유공자 454
[표 2-2-11] 조선약학교 출신 독립유공자 456
[표 2-3-1]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 교과목 변천 484
[표 2-3-2] 경성제국대학 예과 이과 교과목 변천 485
[표 2-3-3] 경성제국대학 예과 교수와 대학 조수 정원 변천(1924~1944) 487
[표 2-3-4] 경성제국대학 예과 교원의 구성 487
[표 2-3-5] 경성제국대학 학부 강좌 수 추이 489
[표 2-3-6] 법문학부 법과 계열 강좌 변천 491
[표 2-3-7]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교과과정 변천 493
[표 2-3-8]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문과계 강좌 편제 496
[표 2-3-9]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3전공 교과목 497
[표 2-3-10] 1927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3전공 교과목 498
[표 2-3-11] 1935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3전공 교과목 499
[표 2-3-12] 제국대학 의학부의 강좌 구성과 경성제국대학 502
[표 2-3-13]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강좌별 관련 교과목 504
[표 2-3-14]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연구실(1929~1942) 510
[표 2-3-15] 1922~1937년 전신학교의 경비, 학생 수, 교직원의 현황 514
[표 2-3-16] 1922~1937년 경성사범학교 및 경성여자사범학교의 경비, 학생 수, 교직원 현황 519
[표 2-3-17] 경성약학전문학교 재적 학생 수 현황(1930~1935) 527
[표 2-3-18] 경성법학전문학교 학생 학비 계산 내역 531
[표 2-3-19] 1920년대 후반 남자전문학교 학생의 생활비 532
[표 2-3-20] 경성고등공업학교 전람회 현황(1921~1934) 536
[표 2-3-21] 1927년 4개 관립 전문학교 민족별 지원과 입학 현황 553
[표 2-3-22] 1925년 민족별 국세 납입액과 관립 학교 학생 수 556
[표 2-3-23] 1930년대 전반 관립 전문학교의 민족별 입학 경쟁률 557
[표 2-3-24] 1926년의 예과 입학시험 과목 567
[표 2-3-25] 1924년 제1회 경성제국대학 예과 시험 결과 569
[표 2-3-26] 1924년 제1회 경성제국대학 예과 합격자 민족별 구성 570
[표 2-3-27]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생 취업 현황(1929~1941) 579
[표 2-3-28]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졸업생 취업 현황(1930~1941) 580
[표 2-4-1] 1938년 근로보국 노동에 동원된 전신학교 학생들의 작업 현황 588
[표 2-4-2] 1943년 만주건설근로보국대의 학생대 특기반 만주 파견 현황 593

[표 2-4-3] 학생 동원 실시 개황(1944년 전반기) 597
[표 2-4-4] 대학 · 전문학교 학생 동원 실시 개황 598
[표 2-4-5] 학도지원병 지원 상황 600
[표 2-4-6] 경성제국대학 및 5개 관립 전문학교 학도지원병 지원 상황 600
[표 2-4-7] 경성제국대학 부속 이과교원양성소 교과목 및 시수 618
[표 2-4-8] 1937~1942년 전신학교 경비, 학생 수, 교직원의 현황 619
[표 2-4-9] 1937년 전신학교 학생들의 축발자(蓄髮者) 현황 623
[표 2-4-10] 경성부 내 13개 전문학교 학생 중 퇴학 제명 현황(1938. 1~6) 631
[표 2-4-11] 194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성약학전문학교 축구부 학생 현황 634
[표 2-4-12]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제1연구반 구성 638
[표 3-1-1] 서울 소재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재개교 현황 653
[표 3-1-2] 초대 서울대학교 총장과 학장 명단 660
[표 3-1-3] 국립종합대학교안과 국립서울대학교안의 주요 차이점 663
[표 3-2-1] 서울대학교 개교 당시 단과대학과 그 연원 668
[표 4-1-1]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간호과와 산파과 학과목 701
[표 4-1-2]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학과목 705
[표 1-4-3] 간호부과 졸업 후 1년 과정 조산부과 학과목 706
[표 4-1-4] 1916년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과, 조산부과의 입학 자격, 시험과목, 수업연한 709
[표 4-1-5] 조선총독부의원 의육과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학과목 710
[표 4-1-6]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시간표 716
[표 4-1-7] 1924년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매주 교육 시간표 717
[표 4-1-8] 1926년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매주 교육 시간표 719
[표 4-1-9]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 · 조산부 양성소 졸업생 수 722
[표 4-1-10] 간호부과 졸업생의 조선 내 취직 상황(1926년 말 기준) 724
[표 4-1-11] 조선총독부의원 재직 간호부과 졸업생의 근속 상황(1926년 말 기준) 724
[표 4-1-12]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간호부양성과 학과목 및 주별 교수 시간 수 727
[표 4-1-13]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산파양성과 학과목 및 주별 교수 시간 수(본과) 728
[표 4-1-14] 경성의학전문학교 간호부과 학과목 및 주별 교수 시간 수 731
[표 4-1-15] 1946년 고등간호학교 간호원과 조산원 교과과정 734
[표 4-2-1] 경성공업전문학교 설립 당시의 각 과 교과목 763
[표 4-2-2] 경성고등공업학교로 개편 당시의 교과과정 764
[표 4-2-3] 경성고등공업학교의 1941년 4월 현재 교과과정 765
[표 4-3-1] 농림학교 본과 2년제 교과과정(1906) 791
[표 4-3-2] 농림학교 본과 3년제 교과과정(1909) 792
[표 4-3-3] 농림학교 연구과 교과과정(1906) 793
[표 4-3-4] 조선총독부농림학교 교과과정(1910~1918) 796
[표 4-3-5] 수원농림전문학교 교과과정(1918~1922) 799
[표 4-3-6] 수원농림전문학교 제복과 제모 규정(1922) 802

[표 4-3-7] 수원농림전문학교 학비(1922) 803
[표 4-3-8] 수원고등농림학교 농학과 교과과정(1922) 807
[표 4-3-9] 수원고등농림학교 임학과 교과과정(1922) 808
[표 4-3-10] 농과대학 교원 수(1904~1945) 811
[표 4-3-11] 농과대학 교장(1906~1946) 812
[표 4-3-12] 서울대학교 통합개교 이전 농과대학 한국인 교원(1906~1945) 813
[표 4-3-13] 농과대학 졸업생(1907~1949) 820
[표 4-3-14] 주요 졸업생의 활동 821
[표 4-3-15] 학계로 진출한 졸업생 822
[표 4-3-16]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로 재직한 졸업생 823
[표 4-4-1] 법관양성소 교수진 828
[표 4-4-2] 법관양성소 졸업생 832
[표 4-4-3] 역대 경성전수학교 교원 명단 837
[표 4-4-4] 구(舊) 경성전수학교 졸업생 838
[표 4-4-5] 신(新) 경성전수학교 졸업생 839
[표 4-4-6]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생 843
[표 4-4-7]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생 847
[표 4-5-1] 한성사범학교 설치 학과 및 학과목(1895) 853
[표 4-5-2] 한성사범학교의 졸업자 수(1895~1905) 855
[표 4-5-3] 관립한성사범학교 졸업생 현황(1906~1911) 856
[표 4-5-4] 1910년대 교원양성 과정 현황 857
[표 4-5-5] 관립 사범학교와 공립(도립) 사범학교의 목적과 편제(1922) 859
[표 4-5-6] 공립 사범학교 재학생 현황(1928) 860
[표 4-5-7] 관립 사범학교 현황(1942) 861
[표 4-5-8] 사범학교 보통과와 고등보통학교 학과목 및 교수 시수(1922) 867
[표 4-5-9] 사범학교 연습과 학과목 및 주당 교수 시수(1922) 868
[표 4-5-10] 사범학교 보통과 학과목 및 주당 교수 시수(1938) 869
[표 4-5-11] 사범학교 연습과 학과목 및 주당 교수 시수(1938) 869
[표 4-5-12] 경성사범학교 교육학 교과목의 편성과 주당 교수 시수(1934) 870
[표 4-5-13] 경성사범학교 교육학 교과목의 편성과 주당 교수 시수(1939) 870
[표 4-5-14] 경성사범학교의 학사력(1934) 874
[표 4-5-15] 경성사범학교의 과외 학생 단체 현황 875
[표 4-5-16] 경성사범학교 입학 지원 현황(1921~1934) 878
[표 4-5-17] 경성사범학교 연도별 학생 수 879
[표 4-5-18] 경성사범학교 졸업생들의 보통학교와 소학교 임용 현황 881
[표 4-5-19] 경성사범학교 교직원 수 현황 883
[표 4-5-20] 경성사범학교 교직원 명부 883
[표 4-5-21] 사범학교 심상과 주당 교수 시수(1938, 여학생) 887

[표 4-5-22] 사범학교 연습과 주당 교수 시수(1938, 여학생) 887
[표 4-5-23] 경성여자사범학교 연도별 학생 수(1934~1943) 889
[표 4-5-24] 경성여자사범학교 교직원 수 현황 891
[표 4-5-25] 경성여자사범학교 교직원 명부 일람 891
[표 4-6-1] 농상공학교 보조금 예산표 901
[표 4-6-2] 경성고등상업학교 1922년 교과과정 905
[표 4-6-3] 경성고등상업학교 1931년 교과과정 906
[표 4-6-4] 경성고등상업학교 1938년 교과과정 908
[표 4-6-5] 경성고등상업학교 1939년 교과과정 910
[표 4-6-6] 경성고등상업학교 1943년 교과과정 911
[표 4-6-7] 경성고등상업학교 1944년 교과과정 912
[표 4-6-8] 경성고등상업학교 교수 및 강사 914
[표 4-6-9] 초기 졸업생 전체의 취업 동향 918
[표 4-4-10] 한국인 졸업생의 취업 동향 918
[표 4-6-11] 경성고등상업학교 말기와 경성경제전문학교 한국인의 취업 상황 919
[표 4-6-12] 국립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의 교과과정 926
[표 4-6-13] 국립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상학과의 교과과정 927
[표 4-6-14] 국립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전문부의 교과과정 927
[표 4-7-1] 대한의원부속의학교 약학과 학과표 933
[표 4-7-2] 조선약학교 2년제 교과목 940
[표 4-7-3] 조선약학교 3년제(본과) 교과목(1930년 기준) 940
[표 4-7-4] 조선약학교 학기별 수업료와 실습비(1926년 기준) 940
[표 4-7-5] 조선약학교의 개교 당시 교원과 강사(1918년 6월 1일 기준) 941
[표 4-7-6] 3·1 운동에 참여하여 체포된 조선약학교 학생에 대한 판결 내용 942
[표 4-7-7] 조선약학교 졸업생 통계 944
[표 4-7-8] 경성약학전문학교 교과과정(1944년 기준) 949
[표 4-7-9] 경성약학전문학교 학기별 수업료와 실습비 950
[표 4-7-10] 경성약학전문학교 개교 당시의 교원(1930년 4월 1일 기준) 950
[표 4-7-11] 1942년 3월 13일에 일경(日警)의 취조를 받은 경성약학전문학교 축구부 관련자(14명) 952
[표 4-7-12] 경성약학전문학교 졸업생 통계 954
[표 4-7-13] 경성약학전문학교 졸업자의 직장별 취업 현황(1935년 11월 기준) 955
[표 4-7-14] 서울약학대학 3년제 전문부의 교과과정 960
[표 4-7-15] 서울약학대학의 역대 교원 961
[표 4-7-16] 서울약학대학 졸업생 통계 965
[표 4-8-1] 의학교(1899~1907) 교수진 975
[표 4-8-2] 의학교 졸업 횟수별 졸업생 현황 977
[표 4-8-3] 대한의원관제 변천에 따른 교육 부서 변화 979
[표 4-8-4] 대한의원교육부, 의육부, 부속의학교의 교관과 교수(1907~1910) 980

[표 4-8-5]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의학과 학과표 980
[표 4-8-6]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의과 학과표 982
[표 4-8-7]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졸업생 983
[표 4-8-8] 경성의학전문학교 재직 조선인 교수 987
[표 4-8-9] 경성의학전문학교 교과표(1916) 989
[표 4-8-10] 경성의학전문학교 교과표(1926) 991
[표 4-8-11]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 수 994
[표 4-8-12] 3·1 독립만세운동 때 구금된 서울 지역의 학교별 학생 수 995
[표 4-8-13] 경성제국대학 교원 연누계(延累計) 수(1927~1942) 998
[표 4-8-14]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교수진 999
[표 4-8-15]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1, 2학년의 기초의학 교과목 1001
[표 4-8-16]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3, 4학년 임상과목 1002
[표 4-8-17]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졸업생 수와 한국인 졸업생 수 1005
[표 4-8-18]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의학 박사학위 수여자 수(1932~1945) 1006
[표 4-9-1] 경성치과의학교 졸업생(1922. 4. 1~1933) 1016
[표 4-9-2] 기초과목 주당 시간표 1019
[표 4-9-3] 임상과목 주당 시간표 1020
[표 4-9-4]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교직원의 변동 상황 1022
[표 4-9-5] 학교 등 연구기관에 진출한 한국인 졸업생 1026
[표 4-9-6]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졸업생 수(1929. 1. 25~1945. 10. 31) 1028

그림 차례

[그림 1] 편복 차림의 고종 7

[그림 2] 『코리아 레퍼지터리(*Korea Repository*)』(1896년 10월호) 기자들이 인터뷰를 마친 뒤 찍은 사진 7

[그림 3] 근대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변천도 19

[그림 4] 보빙사 일행 27

[그림 5] 미국 교육국장 존 이튼, 보빙사를 따라 온 미국 공사관 무관 포크 중위, 육영공원 교수로 부임한 호머 헐버트 34

[그림 6] 『육영공원등록』의 표지와 첫면 35

[그림 7] 『배재학당합동』 97

[그림 8] 영국 유명 언론인 윌리엄 스테드가 평화회의 보도를 위해 4개월간 발행한 『평화회의 소식』에 실린 세 특사와 "공고사" 전문 보도 105

[그림 9] 1910년 2월 7일부터 뤼순지방법원에서 열린 안중근 공판정 방청석에 앉아 있는 안병찬 110

[그림 10]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신한민보』에 실린 순종황제의 유조 112

[그림 11] 『도쿄니치니치신문』의 3·1 독립만세운동 첫 기사 118

[그림 12] 경성지방법원 〈예심종결결정서〉 120

[그림 13] 3월 1일 시위 중, 대한문 앞에서 조의를 표하는 학생들 126

[그림 1-1-1] 환재(桓齋) 박규수(朴珪壽) 159

[그림 1-1-2] 일본 요코하마에서 기록된 김기수의 수신사 행렬 168

[그림 1-1-3] 보빙사 일행의 기념사진 173

[그림 1-1-4] 『한성주보』 1886년 1월 25일, 「사의(私議) 논학정(論學政)」 기사 179

[그림 1-1-5] 육영공원에서 강의하는 헐버트와, 헐버트가 제작한 한글 교과서 『사민필지(士民必知)』 195

[그림 1-2-1] 청일전쟁 당시 인천에 상륙 중인 일본군 213

[그림 1-2-2] 『고종실록』에 기재된 1895년 2월 고종의 '교육조칙' 232

[그림 1-2-3] 1900년대 초반 광화문 앞 육조거리 풍경 239

[그림 1-2-4] 한성사범학교관제 246

[그림 1-2-5] 1900년대 관립 한성사범학교 교사(校舍) 248

[그림 1-2-6] 『고종실록』에 기재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272

[그림 1-3-1] '제1차 일한협약'으로 불리는 각서. '제1차 일한협약'의 영어 번역본 291

[그림 1-3-2] 보호조약인 '제2차 일한협약' 첫 장과 끝장. '제2차 일한협약'의 영어 번역본 292

[그림 1-3-3] 1904년 11월 도쿄부립 제일중학교에 입학한 대한제국의 황실특파 유학생 296

[그림 1-3-4] 시데하라 다이라와 메가다 다네타로 303

[그림 1-3-5] 보성전문학교 전경 307

[그림 1-3-6] 1901년 종로 거리 일대 312
[그림 1-3-7] 1910년 「경성시가전도」의 현 명동 일대 316
[그림 1-3-8] 낙산 밑에 자리 잡은 공업전습소와 낙산 밑 공업전습소 일대 335
[그림 1-3-9] 1902년에 준공된 돈덕전 345
[그림 1-3-10] 1905년 대동(경복궁 영추문 건너편)에 임시로 선 대한적십자병원 351
[그림 1-3-11] 1908년에 준공된 대한의원. 황제의 내탕금으로 1902년 종로에 세워진 한성전기회사 353
[그림 1-3-12] 통감부 직원이 위조한 황제 서명들 358
[그림 1-3-13] '한국병합조약'의 한국 측 전권위임장 375
[그림 1-3-14] '한국병합조약' 전권위원들의 기명날인 375
[그림 1-3-15] '한국병합조약'의 한국 황제 '칙유'와 일본 천황 조칙 376
[그림 1-3-16]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신한민보』 1926년 7월 18일 자에 실린 순종황제의 유조 377
[그림 1-3-17] '한국병합조약'의 한 · 일 양 국어 재질 비교 377
[그림 2-1-1]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학제도(1911~1922) 393
[그림 2-1-2] 경성의학전문학교 국어(일본어)과 입학시험 문제 407
[그림 2-1-3] 『조선총독부관보』, 1912. 4. 18, '의학강습소졸업증서수여' 공문 410
[그림 2-1-4] 백관수의 경성전수학교 제1학년 수료증서(1914) 417
[그림 2-3-1]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학제도(1922~1938) 461
[그림 2-3-2] 경성부와 부근의 관공유지 469
[그림 2-3-3] 경성의학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정경 471
[그림 2-3-4] 1888년에 그려진 추밀원 회의 모습(枢密院会議之図) 474
[그림 2-3-5] 1924년 경성제국대학 개교 당일의 예과 건물과 수업 풍경 476
[그림 2-3-6] 경성제국대학 『법학회논집』 507
[그림 2-3-7] 1929년 경성고등공업학교 연극반원 537
[그림 2-3-8] 『개벽』 58호, 1925. 4. 1, 「형형색색의 경성 학생상」 539
[그림 2-3-9]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입학경쟁률(1924~1943) 568
[그림 2-3-10] 1928년도 경성제국대학 예과 시험 문제 571
[그림 2-3-11] 정규무(鄭圭斌) 동문의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제13회 졸업증서(1941. 3),
이영섭(李英燮) 동문의 경성제국대학 예과 제14회 수료증서(1940. 3) 573
[그림 2-3-12]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생들이 발행한 『신흥(新興)』 창간호 표지와 제9호(종간호) 목차 577
[그림 2-4-1]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학제도(1938. 8~1943. 4) 583
[그림 2-4-2]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학제도(1943~1945) 594
[그림 2-4-3] 수원 서호 준설 작업 광경 595
[그림 3-2-1]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각 캠퍼스의 위치 668
[그림 3-2-2] 경운동 관립한성외국어학교 위치 672
[그림 3-2-3] 관립한성외국어학교 평면도 673
[그림 3-2-4] 1903년 「한국경성전도」의 경운동 일대 673
[그림 3-2-5] 관립한성외국어학교 부지 내 구 일어학교, 구 덕어학교(=의학교), 구 은언군 저택 권역 674
[그림 3-2-6] 수송동의 관립한성사범학교 부속보통학교 신축 교사와 제용감 676

[그림 3-2-7] 관립한성사범학교 및 부속보통학교의 평면도 676
[그림 3-2-8] 서대문 밖 유동의 위치(1911) 677
[그림 3-2-9] 1908년경 육조앞길 678
[그림 3-2-10] 대한의원 680
[그림 3-2-11] 공업전습소 680
[그림 3-2-12] 한성부 지적도에 표시된 공업전습소 부지 681
[그림 3-2-13] 1924년 당시 조선총독부의원 평면도와 동숭동에서 바라본 경모궁 682
[그림 3-2-14] 경모궁 자리에 들어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와 맞은편의 법문학부 683
[그림 3-2-15] 경성사범학교 및 부속학교의 소재지 684
[그림 3-2-16] 1936년 당시 서울대학교 원 캠퍼스의 위치 685
[그림 3-2-17] 동교 지역 서울대학교 원 캠퍼스의 분포 689
[그림 3-2-18] 서울대학교 소속 기관 조감도 690
[그림 3-2-19] 서울대학교 구 캠퍼스의 현재 691
[그림 4-1-1] 『구한국관보』, 1907. 3. 13. 699
[그림 4-1-2] 1915년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과 수업 광경 706
[그림 4-1-3] 조선총독부의원 초기의 간호부 기숙사 707
[그림 4-1-4] 1915년 이창순 조산부 졸업증서 712
[그림 4-1-5] 박자혜 산파원, 박자혜와 신채호 713
[그림 4-1-6] 조선총독부의원 간호학생의 재봉 실습 모습 715
[그림 4-1-7] 조선총독부의원 외래 접수 창구 716
[그림 4-1-8] 간호부가 환아(患兒)의 체중을 재는 모습 718
[그림 4-1-9] 1933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간호부양성과 726
[그림 4-2-1] 농상공학교(구한국 시대) 758
[그림 4-2-2] 1907년 3월 준공된 구(舊) 공업전습소 본관과 공업전습소 본관 준공 기념 식수비 760
[그림 4-2-3] 경성공업전문학교 · 경성고등공업학교 · (후)경성공업전문학교 본관 766
[그림 4-2-4] 지질광물 실습 여행길에서 박동길 교수가 경성공업고등학교 광산과 학생들과 함께(1934) 768
[그림 4-2-6] 경성광산전문학교 전경 773
[그림 4-2-6] 8 · 15 광복 후 촬영한 경성대학(구 경성제국대학), 이태규 이공학부장(1945. 10~1946. 8. 22) 781
[그림 4-2-7] 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시 노원구 공릉 2동 172번지),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제1호관 (등록문화재 제12호) 782
[그림 4-2-8] 경성대학 이공학부 제1회 졸업 기념(1946. 7. 3) 783
[그림 4-3-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교명 변화 787
[그림 4-3-2] 농상공학교 농업과 교사(1904) 788
[그림 4-3-3] 농림학교 초기 학생들 790
[그림 4-3-4] 농림학교의 학사 구성(1906~1910) 790
[그림 4-3-5] 조선총독부농림학교 학사 구성(1910~1918) 795
[그림 4-3-6] 조선총독부농림학교 입학 지원자 점검(1916) 795
[그림 4-3-7] 수원농림전문학교 학생모집 광고(1918) 797

[그림 4-3-8] 수원농림전문학교 개교 기념식(1918. 4. 15) 797
[그림 4-3-9] 수원농림전문학교 입학시험 문제 801
[그림 4-3-10] 수원고등농림학교 정문 804
[그림 4-3-11] 수원고등농림학교 신축 도서관(1933) 804
[그림 4-3-12] 수원고등농림학교 신축 기숙사(1933) 804
[그림 4-3-13] 수원고등농림학교 신축 교사 상량식(1936. 10. 29) 804
[그림 4-3-14] 수원고등농림학교 교가 805
[그림 4-3-15] 수원고등농림학교 야외 교련(1935) 806
[그림 4-3-16] 수원고등농림학교 과수실습 806
[그림 4-3-17] 농림학교 3대 교장 혼다 고스케(1908~1919) 812
[그림 4-3-18] 수원고등농림학교 7대 교장 요카와 마타오(1932~1945) 812
[그림 4-3-19] 수원농림전문학교 8대 교장 조백현(1945~1946) 812
[그림 4-3-20] 수원농림전문학교 전선(全鮮)정구대회 우승 선수 환영(1920) 814
[그림 4-3-21] 수원고등농림학교 제7회 운동회 장애물 경기(1929) 814
[그림 4-3-22] 수원고등농림학교 조전(朝專)육상경기대회 우승 기념(1929) 814
[그림 4-3-23] 수원고등농림학교 10회 운동회 사이클 경기(1932) 814
[그림 4-3-24] 수원고등농림학교 승마부(1935) 814
[그림 4-3-25] 수원고등농림학교 유도부(1935) 814
[그림 4-3-26] 제1차 수원고등농림학교 사건 보도 817
[그림 4-3-27] 『수원학보』와 『교우회보』 표지 823
[그림 4-5-1] 경성사범학교 본관 851
[그림 4-5-2] 경성여자사범학교 정문 851
[그림 4-5-3] 경성사범학교 평양박물관 참관(1939) 876
[그림 4-5-4] 경성여자사범학교 체조시간(1931) 887
[그림 4-7-1] 조선약학교 교사(황금정 6정목 18번지 소재) 937
[그림 4-7-2] 조선약학교 제1회 졸업식(1920. 5. 1) 945
[그림 4-7-3] 경성약학전문학교의 신축 교사 947
[그림 4-7-4] 경성약학전문학교 축구부(1941년경) 952
[그림 4-7-5] 경성약학전문학교 제1회 졸업식(1931. 3. 28) 953
[그림 4-7-6] 『약우』 창간 멤버 963
[그림 4-7-7] 1950년 발간된 서울약학대학 학보 『약우』 2호의 표지 963
[그림 4-7-8] 서울약학대학 학생들의 제1회 연극 〈큐리 부인〉의 공연 장소인 시공관의 외부 모습 964
[그림 4-7-9] 연극 〈큐리 부인〉의 한 장면 964
[그림 4-7-10] 서울약학대학 졸업 기념(1950. 5) 965
[그림 4-9-1] 1942년 나기라 다쓰미가 세운 저경궁 비기(碑記) 1014
[그림 4-9-2]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신축 교사 및 부속병원(1928. 9. 29) 1017
[그림 4-9-3] 일부만 4층이었던 교사를 전부 4층으로 증축 후의 교사(1933. 7) 1017
[그림 4-9-4] 태평양전쟁이 끝난 다음날 교정에 모인 교수와 학생들(1945. 8. 16) 1031

[그림 4-9-5]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박명진 1034
[그림 4-9-6]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부속병원 원장 이유경 1035
[그림 4-9-7] 국립서울대학교 제1회 졸업 기념(1947. 7. 11) 1036
[그림 4-9-8] 서울대학교 치과대학기 1036

VERI
LUX
TAS
MEA

서장

국립서울대학교 뿌리 찾기의 민족사적 의의

VERI
LUX
TAS
MEA

서장

국립서울대학교 뿌리 찾기의 민족사적 의의

제1절 국립서울대학교 역사 재정립을 위한 기본 과제

1) 국립서울대학교 '설립령'에 명시된 근대 교육기관과의 승계 관계

일본은 서양 근대 문명 수용의 우등생인 반면, 조선·대한제국은 열등생이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이 한·일 양국에서 아직도 통용되고 있다. 일본 측에서 견지하는 한국병합 합법론은 기본적으로 이런 역사 인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국 안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객관적 역사 인식이란 미명으로 엄연히 존속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립서울대학교의 '개교'에 관한 종래의 통념도 이런 인식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립서울대학교는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이하 '미군정')의 1946년 8월 22일 자 법령 제10호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이하 '서울대학교설립령')을 근거로 출범했다. 이 법령은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설립 '목적'을 밝힌다.

본령은 조선 국민에게 우수한 고등교육시설을 제공하고 활용케 하여 조선 청년으

로 하여금 개인으로서의 조선인 자신 및 현대사회 국민으로서의 조선 인민의 향상을 위하여 그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온갖 이익의 기회를 적의이용(適宜利用)함으로써 목적함.

국립서울대학교는 '조선 청년'이 개인으로서 또는 현대사회 국민으로서 조선 인민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교육하는 고등교육 시설로 기능할 것을 목표로 하여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반포에 2년 앞서 설립되었다. 국립 대학교는 국민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정부 수립을 기다릴 문제가 아니었다.

이 법령 제5조에 새로 발족하는 '국립서울대학교'의 구성에 대해, 아래 열거한 기존의 각 전문학교를 폐지하여 국립서울대학교에 흡수하고, 각 학교와 소속 기관의 재산, 설비, 문서, 자금, 인원 등을 모두 이관한다고 밝힌다.

(가) 경성경제전문학교
(나)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다) 경성법학전문학교
(라) 경성의학전문학교
(마) 경성광산전문학교
(바) 경성사범학교
(사) 경성공업전문학교
(아) 경성대학
(자) 경성여자사범학교
(차) 수원농림전문학교

기존의 7개 전문학교, 2개 사범학교, 그리고 경성대학 등을 흡수하여 국립서울대학교를 설립했던 것이다. 이어서 제6조는 기존 전문학교 및 대학을 흡수하여 새롭게 구성된 단과대학들을 아래와 같이 망라했다.

(가) 농림과대학
(나) 상과대학

(다) 치과대학

(라) 사범대학

(마) 공과대학

(바) 예술대학

(사) 법과대학

(아) 문리과대학

(자) 의과대학(간호 및 간호교육학교 포함)

(차) 대학원

즉, 국립서울대학교는 단과대학(college)을 기본 단위로 삼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두기로 한 것이다. 양자의 흡수 개편 상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을 통해 1946년 8월 22일 현재 서울에 위치한 각 전문대학 및 경성대학(미군정이 이전의 경성제국대학을 인수하여 경성대학으로 함)을 재편하거나 일부(예술대학, 대학원)를 신설하여 국립서울대학교가 성립한 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표 1] 국립서울대학교설치령에 따른 각 전문학교의 단과대학 재편 상황

순번	1946년 8월 이전	1946년 8월 이후	비고
1	경성경제전문학교	상과대학	
2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치과대학	
3	경성법학전문학교	법과대학	
4	경성의학전문학교	의과대학	간호 및 간호교육학교 포함
5	경성광산전문학교	공과대학	
6	-	예술대학	신설
7	경성사범학교	사범대학	
8	경성공업전문학교	공과대학	경성광산전문학교와 통합
9	경성대학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공과대학	법문학부, 의학부, 이공학부 등 3개 학부의 분산 재편
10	경성여자사범학교	사범대학	경성사범학교와 통합
11	수원농림전문학교	농과대학	
12	-	대학원	신설

서울대학교는 정부 수립을 앞두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엘리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 대학교였다. 실제로 출범 후 한국의 최고 엘리트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은 한국 현대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치였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는 설립 이후 최근까지 9개 단과대학의 연원인 각종 전문학교와의 계승 관계에 대한 역사 의식을 확립하지 못했다. 이는 '개교기념일' 설정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는 지금까지 1946년의 설치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단과대학들의 개강이 완료된 시점인 그해 10월 15일을 '개교기념일'로 삼아왔다(서울대학교 평의원회, 2010). 교사 편찬도 이를 기점으로 20년사, 30년사, 40년사, 50년사, 60년사라는 10년 단위의 명칭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조선 말기 및 대한제국에서 서양의 신문명을 수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국가 운영에 필요한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발족한 각종 관립 전문학교가 국립서울대학교의 모태를 이룬다는 인식은 그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단과대학 가운데 전문학교에서 시원을 찾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학교 전체적으로는 예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승계 의식의 부재는 곧 조선·대한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 인식의 소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식민지로 전락한 것이 일본의 침략성보다 대한제국 정부의 무능의 소산이며 그런 역사를 굳이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선 말, 대한제국의 역사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역사, 버리고 싶은 역사로 간주되어온 결과였다. 1946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경우 1924년부터 시작된 일제 경성제국대학의 역사를 서울대학교 역사로 간주해야 하는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한몫을 했다. 이러한 역사 버리기는 후술하듯이 2008년에 와서야 비로소 멈췄다. 그해에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학교 당국은 '개교 원년' 찾기에 나섰고, 2010년에 평의원회를 통해 경성법학전문학교의 시원인 법관양성소가 세워진 1895년을 '개학 원년'으로 삼게 되었다. 국립서울대학교 설립 후 64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 인식의 일대 변화였다.

2) 한국 근대사와 '근대'를 이끈 군주 고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

일본이 메이지(明治) 유신을 계기로 서양 문명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보다 앞서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조선에서 뒤늦게 서양 근대 문물을 수용하기 시작했을 때 일본에서 거둔 성과를 참고하려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조선·대한제국의 근대가 일본에 뒤지거나 일본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조선 문명 낙후설은 문제다. 이런 종류의 설명이나 인식은 일본제국 정부가 식민통치를 합리화하려는 데서 나온 것으로 조선·한국인의 개화, 근대화 의지 자체를 근원적으로 부정한다.

최초의 근대적 국제관계인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조차 일본의 시혜의 산물이라 하였고, 청일전쟁도 '문명'이 '야만'을 축출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선전되었다. 일본은 '문명', 청국은 '야만'으로 비유하며 '야만'의 영향 아래 놓인 조선을 구출해 '문명'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이 전쟁의 명분이었다. 일본이 이 전쟁과 동시에 조선 정부에 요구한 '내정개혁'은 엄연한 내정간섭인데도 야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거로 미화되었다. 일본이 서양 문명 수용에서 앞섰기 때문에 한국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인식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제국주의 일반론이 동원되기도 했



[그림 1] 편복 차림의 고종. 친근한 느낌을 준다.



[그림 2] 『코리아 레퍼지터리(*Korea Repository*)』(1896년 10월호) 기자들이 인터뷰를 마친 뒤 찍은 사진. 군주는 피살된 왕비의 상중이어서 흰 상복 차림이다.

다. 즉,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제국의 식민지화는 제국주의 시대의 일반적인 현상의 하나로서 일본만이 저지른 '악행'일 수 없다고 당당하게 변론되어 왔다.

한국 근대의 후진성은 비단 한·일 양국사의 비교 차원을 넘어 한국 근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는 패배주의 사관을 낳아 한국 근대사 자체의 개발을 지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근본적으로는 조선·대한제국의 군주와 그 정부의 무능이 지적되는 가운데 일본제국의 보호국화 및 병합의 정당성이 강조되었다. 즉, 조선·대한제국의 군주(고종)는 유약한 군주로서 근대국가를 만들 능력이 없었으며, 따라서 열강의 다툼 장이 되어 동양 평화의 화근이 된 이 나라를 일본이 보호국으로 만들어 발전시키는 한편, 국제관계에서 분란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군주 고종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한국 근대사에 대한 평가를 결정짓는 문제가 된다.

일본인이 아니라 서양인으로서 고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남긴 사람도 있다. 예컨대 선교사로 조선에 처음 와서 제중원을 맡았던 호러스 뉴턴 알렌(Horace Newton Allen)은 고종을 가리켜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군주(the muddle-minded monarch)"라는 표현을 썼다(김원모, 1999: 115).[1] 그런가 하면, 조미 수교 초기에 고종을 만난 미국인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인 평가다. 초대 주미공사 루셔스 하우드 푸트(Lucius Harwood Foote)는 조선 군주를 "가장 현명하고 사리에 밝은 사람(a most sensible and enlightened man)"이라고 평했다(김원모, 1999). 그리고 미국 공사관 무관 조지 클레이턴 포크(George Clayton Foulk) 해군 중위는 한국 여행 중에 미국의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조선의 군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그는 키는 작지만 늘 웃는, 천진난만해 보이면서도 매우 지적인(intelligent in the extreme) 밝은 표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절대로 계집아이 같지 않으며 그를 한 번 보면 그의 표정과 태도에 반하고 말 것이다(Hawley, 2007).

포크 중위는 1884년 6~9월 사이 보빙사(報聘使) 일행이 미국에 갔을 때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일행을 안내한 뒤 조선 주재 공사관

1 김원모는 알렌의 평가를 "머리가 모자라는"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럴 경우 'the muddle-minded'가 아니라 'the muddle-headed'로서 이는 잘못된 번역이다. 단, 김원모는 고종을 무능한 군주로 보는 입장은 아니다.

의 미국인 무관으로서는 아마도 최초로 국내 여러 곳을 여행했다(Hawley, 2007).

1886~1890년간 고종의 정치외교 고문을 지낸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Owen N. Denny)도 조선의 군주를 "위대한 국가의 통치자답게 확고부동한 결의와 기꺼이 대처하겠다는 마음의 자세와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다(a firmness, cheerfulness and patience worthy of a ruler of a great nation)"고 했다. 1896년 『코리아 레퍼지터리(*Korea Repository*)』 10월호의 군주 인터뷰 기사는 "폐하는 진보적이며 … 교육적인 일에 아주 관심이 많으며" "자비로운 통치자이며, 그리고 진실로 그의 나라의 복지와 발전을 열망한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태진, 2000: 98~102).

서울에서 활약하던 일본 기자들도 본래는 고종을 군주로서 자질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의 능력 여부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1905년 11월 '보호조약' 이후 황제가 이의 불법 무효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특사를 파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달라졌다. 통감부와 일본 신문들은 그를 암군(暗君)으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암군은 명군(明君)의 반대어로 고종이 일본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현명하지 못한 군주라는 뜻으로 쓴 단어였다(이태진, 2000: 103~107). '보호조약' 강제의 주역이었던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이 사건으로 난처해져 본국 정부에 한국 황제를 퇴위시킬 것을 스스로 제안하여 20여 일 만에 이를 실현시켰다. 자신이 작성한 거짓 조칙으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기까지 한다. 고종황제 무능설은 이처럼 침략국 일본의 의도적인 이미지 조작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고종황제 강제 퇴위는 한국민의 광범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해산당한 군인들을 비롯해 각지의 유생, 평민, 천민들이 항일 전선에 나섰다. 일본군의 통계에 따르면 1908년 한 해에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한국 의병은 69,832명, 전투 횟수는 1,452회에 달한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 새해를 맞아 한국인들의 저항을 회유하기 위해 통감부와 대한제국 정부의 공동행사로 황제의 지방 순행(巡幸)을 기획했다. 1월 10일부터 2월 4일 사이에 부산, 마산을 다녀오는 남순(南巡), 평양, 의주를 다녀오는 서순(西巡)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황제를 맞이하는 수만, 십수만 군중의 환호를 보고 자신의 '보호통치'가 실패했음을 자인했다. 귀경하자마자 그는 2월 10일에 통감 사임을 결심하고 귀국했다(이태진, 2016a: 5장).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의 퇴진은 한국인의 자유가 아니라 더 큰 압박을 의미한다.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면서 한국 문제는 더 강경한 입장을 추구하던 야마가타 아리토모

(山縣有朋)를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에 자리를 내주었던 것이다. 이토는 이 계열의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총리대신 가쓰라 타로(桂太郎) 등이 나서 한국병합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했다.

같은 해 7월 통감직 인수인계를 마치고 추밀원 의장으로 물러나 있던 이토 히로부미에게 정치적 입지를 만회할 기회가 왔다. 이 무렵 그는 러시아 정부가 내놓은 만주 일원의 동청철도(東淸鐵道; 치타-하얼빈-우수리스크)를 일본이 매입하는 일을 비밀리에 추진하게 되어 10월 26일 매각 주체인 러시아 재정대신 코코브초프를 만나기 위해 하얼빈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대한의군 참모부의 특파대 대장 안중근에 의해 최후를 맞이한다. 하얼빈 의거는 고종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한 후 형성된 한국 의병의 항일 전선이 거둔 '대첩'이었다.

이 시기에 『한성신문(漢城新聞)』 기자인 기쿠치 겐조(菊池謙讓)는 『대원군전: 부(附) 왕비전』이란 저술을 집필하고 있었다. 기쿠치 겐조는 이 책에서 대원군과 왕비 민씨(명성황후)를 조선 당대의 영웅호걸이라고 묘사한다. 그런데 두 사람을 비교하여, 대원군은 서원 철폐에서 보듯이 개혁적인 면이 있지만, 왕비는 여성 본능으로 제 몸에서 난 왕자를 태자로 책봉하는 데 집착하여 이를 실현하는데 지모를 쏟은 인물로 그렸다. 시아버지인 대원군이 집정 중에 궁인 이씨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완화군(完和君)]를 원자(元子)로 책봉하려는 것을 보고(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고증되었다) 이때부터 원한을 품고 정치적 도전을 일삼았다고 했다. 여기서 비롯한 두 사람의 권력 싸움은 한 시대를 뒤덮었고, 왕정의 책임자인 군주는 그 틈바구니에서 우왕좌왕하여 조선의 국정은 방기 상태가 되다시피 했다고 왜곡한다.

이 책은 본래 1895년 10월 8일 발생한 왕비 살해가 일본인들의 소행이란 국제적 비난을 피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비난은 심각한 수준에 달해 일본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변명이 필요했다. 이것이 이 책의 일차적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종황제 무능설을 크게 조장하는 데 일조했다. 저자의 변명은 이렇다. 왕비 살해는 대원군과 왕비 두 사람의 암투의 소산이며 일본인들은 방조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대원군이 늦게나마 다시 개혁 정치 도모를 위해 왕비 제거에 나서기로 한 것을 보고 조선이 개혁을 이루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를 도왔을 뿐이라고 했다. 대원군과 왕비 영웅설은 결국 군주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구도에서 군주 고종은 아버지와 왕비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유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이태진, 2007). 통감부, 조선총독

부 당국으로서는 이 유약설의 효용성을 장기적으로 기대했다. 고종이 군주로서 자질이 있었다면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머물 이유는 없게 된다. 일본은 국제사회에 한국인들은 일본의 보호국이 된 것을 환영한다고 선전하기까지 했다. 일본제국은 후술하듯이 일본 천황이 통치하는 새로운 동양(東洋) 건설이란 큰 그림 아래 한국 침략을 단행했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악행도 선행으로 꾸며낼 필요가 있었다.

3) 일본제국의 대외 팽창주의와 교육 침략: '정한론'과 군국주의

일본제국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 일본 역사학계는 지금까지 주로 상황론으로 설명해 왔다. 국제정세의 변화로 일본은 '동양 평화'를 위해 부득이 한반도로 진출하여 이를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청국의 영향력 우세는 동아시아를 '야만'의 상태로 머물게 하여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공멸을 가져올 위험이 높아 일본이 '야만'의 상태를 지양하고자 전쟁(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백인들이 지배하는 동아시아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 일본이 위험을 무릅쓰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변설이 많은 전쟁을 일으킨 역사에 대한 반성을 어렵게 한 것은 오늘의 일본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일본의 변론이 허위라는 것이 하나씩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 자료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일본 정치인들이 메이지 유신 초기부터 조장한 공로증(恐露症: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대외 팽창을 위해 조작 내지는 조장된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조일수호조규〉를 통해 일본이 처음 조선과 국교를 수립하는 단계에서 러시아는 일본을 경계하는 외교적 대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1900년대 초 만주 지역 철도 부설사업을 근거로 뤼순(旅順), 다롄(大連)을 조차지로 얻었을 때도 뤼순 항의 요새화는 한반도 진출보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만주 진출에 대한 야망 억제가 목표인 것으로 밝혀졌다(和田春樹, 2010).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불가

피한 한반도 진출이란 변론은 결국 침략 의도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1853년 미국 매슈 캘브레이스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 제독의 함대가 도쿄 만에 도착하여 개항을 요구했다. 이 함대가 희망봉을 출발했을 때 네덜란드 정부는 이 사실을 도쿠가와 막부(幕府)에 알렸다. 막부는 이 정보를 접하고 숙의 끝에 미국의 요구에 응하기로 해 협상 준비를 시작했다(井上勝生, 2006). 막부는 서양 열강이 동아시아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통상(通商)을 통해 일본이 살아남는 길을 찾기로 했다. 반면에 1868년 막부 타도에 앞장선 조슈(長州) 세력은 서양 세력이 신성한 일본 열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추구했다. 조슈 세력은 처음부터 존왕양이(尊王攘夷), 즉 천황을 받들어 이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를 새로 만들어 서양 오랑캐를 물리쳐야 한다는 기치를 내세웠다. 그리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길로서 정한론(征韓論)을 내세웠다. 정한론의 '한(韓)'은 한국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만 포괄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이웃 외국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조슈 세력의 스승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이 바로 정한론의 창도자였다.

요시다 쇼인은 조슈 세력의 본거지인 하기(萩)의 하급 무사였다. 그는 무사로서 독서와 일본 열도 순회 답사를 통해 지리적 형세에 대한 지식을 쌓은 뒤 고향에 쇼카손주쿠(松下村塾)라는 학교를 설립하고 하급 무사 이하의 청소년들을 모아 가르쳤다. 그 문하에서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桂小五郎), 다카스키 신사쿠(高杉晉作),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 등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고 한국 침략에 '수훈'을 세우는 인물이 수십 명 배출되었다.[2] 그는 제자들에게 존왕양이와 정한론 두 가지를 일본이 나아갈 길, 살아남을 길이라고 가르쳤다. 전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제 중

2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세력은 하기를 중심으로 한 조슈 세력과 가고시마(種子島)의 사쓰마(薩摩) 세력이다. 조슈 세력은 요시다 쇼인의 문하생들이 중심이기도 하지만, 한편 번(藩)의 무사 집안 출신으로서 번교(藩校)인 메이린칸(明倫館) 출신도 있었다.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가쓰라 타로(桂太郎) 등이 그 예다. 출신 학교는 다르지만 조슈 번이 막부 타도를 외치면서 번주(藩主) 모리 가(毛利家) 아래 하나로 뭉쳐 여러 전투, 전쟁을 주도하면서 조슈 세력이 형성되었고, 이런 가운데 이념적 지향은 요시다 쇼인의 노선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다. 3대 한국 통감으로 부임하여 1910년 한국병합을 주도한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는 조슈 번의 하급 무사 출신으로 보신전쟁(戊辰戰爭), 세이난전쟁(西南戰爭)에서 공을 세워 야마가타 아리토모-가쓰라 타로 계열에서 유력해지지만 출신 학교는 불명이다. 海原徹(1994, 2003: 120~123) 등 참조.

앙집권 국가를 수립하여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실제로 막부 타도의 중심 논리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정한론은 일본의 지정학적 조건을 앞세운 침략론이다. 즉, 일본 열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지금까지는 외세에 대한 성벽 기능을 했지만, 증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사방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여건으로 일변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길은 일본이 힘을 키워 서양 열강에 앞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여 일본의 영토로 삼는 것밖에 없다는 논리다.

요시다 쇼인은 막부에 의해 두 차례 투옥되었다. 1854년 페리 제독이 〈일미화친조약(日米和親條約)〉 체결을 위해 재차 왔을 때, 요시다는 이렇게 큰 증기선을 만들 수 있는 미국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이 배에 접근하여 밀항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한다. 이 사실이 막부에 알려지면서 취조를 받고 구금된 다음, 하기 번(藩)으로 보내져 투옥된다. 그리고 1858년 막부가 천황의 칙허를 받지 않고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것을 보고 쇼인은 막부에 대해 강하게 항변했다. 이때 그는 일본 발전의 최대 장애가 막부라고 생각하고 막부 타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다 다시 체포되어 옥에 갇히고 1859년 참형(斬刑)을 당한다.

정한론은 첫 번째 투옥 때 쓴 『유수록(幽囚錄)』에 장문으로 실렸다. 서양 세력이 증기선을 타고 동아시아에 출현한 상황에 대한 그의 서술은 서양의 여러 나라가 당장 일본을 집어삼킬 듯이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무사(武士) 사회 특유의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글이다. 그러한 서술에 이어 앞으로 일본이 나라를 잘 보전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海原徹, 2003: 350~351; 吉野誠, 2002: 56~57).

> 해는 뜨면 지고, 달은 차면 비고, 나라는 융성하였다가 바뀌게[替] 된다. 그러므로 나라를 잘 보전하려면 오로지 가진 것을 잃지 않게 해야 할 뿐더러 없던 것을 (차지하여) 늘려야 한다. 지금 서둘러 무비(武備)를 닦고, 함선 계획[艦略]을 세우고 총포 계획[礮略]을 충분히 하면, 곧 하이[蝦夷]를 개척[開墾]하여 제후(諸侯)를 봉건(封建)하고, 기회를 봐서 캄차카, 오호츠크를 탈취하고, 류큐를 타일러[諭] 조근회동(朝覲會同)하게 하여 내제후(內諸侯)와 나란히[比] 하고, 조선을 꾸짖어[責] 인질을 보내고[納質] 조공을 바치게[奉貢] 하여 옛 성시(盛時)와 같게 하고, 북쪽 만주의 땅을 빼앗고[割], 남은 타이완(臺灣), 필리핀[呂宋]의 여러 섬을 거두어, 점진적

으로 진취의 세를 보여야 한다. 그런 뒤에 민(民)을 사랑하고[愛] 사(士)를 양성하고, 신중히 변방 주위[邊圍]를 지키면 곧 나라를 잘 보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얼마 안 되어 많은 오랑캐[群夷]가 다투어 모인 가운데 앉아서, 능히 다리를 들거나 손을 흔들지 않고서도 나라가 오래 동안 바뀌지 않을 것이다.

『유수록』은 위기 극복의 길을 타국, 타지의 탈취에서 찾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이태진, 2014. 이하 요시다와 도쿠토미 소호에 관한 서술은 이 논문에 근거함). 러시아의 캄차카(Kamchatka)와 오호츠크(Okhotsk), 오스트레일리아, 조선과 만주 등이 선점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하이 곧 홋카이도(北海島)의 개척은 캄차카, 오호츠크 등지로 진출하기 위한 전진 기지 확보의 의미를 가진다. 일본인의 오스트레일리아 진출은 영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설정되어 흥미롭다. 조선과 만주의 진출은 역사 속에서 근거를 찾았다. 즉, 조선은 본래 고대 일본에 신속(臣屬)되었던 땅이므로 마땅히 다시 회복하고, 이를 발판으로 만주로 진출해야 한다고 밝힌다. 요시다는 이 대목에서 신공황후(神功皇后)의 신라 정벌, 곧 정한(征韓)의 역사를 장문에 걸쳐 세밀하게 거론했다.

요시다 쇼인이 『유수록』에서 제시한 미래 일본의 진로는 실제로 그대로 침략 전쟁의 형태로 실천에 옮겨졌다.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홋카이도 개척에 이어 타이완(臺灣)을 정복한 다음 조선으로 진출하여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쳐 만주를 차지했다. 그다음에는 몽골을 넘보면서 중일전쟁을 일으켜 중국 진입을 시도하고,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로 방향을 잡으면서 미국에 도전장을 던졌다. 요시다 쇼인은 그야말로 메이지에서 쇼와(昭和)에 이르는 동안 제국 일본의 운명을 결정한 존재였다. 두 번째 투옥 중에 제자들에게 남긴 『유혼록(留魂録)』은 "몸은 죽어서 무사시(武蔵) 들판에 묻혀도 썩지 않고 야마토(大和) 혼으로 남을 것"이라는 문구로 서두를 풀었다. 고대 야마토 조정의 천황제(天皇制) 재현만이 일본이 살 길이란 의지를 강하게 보인 이 문구는 그의 제자, 후배들을 침략주의자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쇼인의 유언에 언급된 '무사시'와 '야마토'는 1938년 일본제국이 태평양전쟁을 위해 건조한 초대형 전함 3척 중 2척에 그 이름으로 붙여졌다.

일본제국이 한반도로 진출하여 합병에 이른 것은 러시아의 진출과 같은 국제적 상황 변화에 따른 결과가 아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요시다 쇼인은 메

이지 유신이 이루어지기 전 1859년에 사망했다. 그의 문하생들이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유신(1868)에 성공했지만 스승 요시다 쇼인을 추장하는 사업은 189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작된다. 유신 정부가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데 1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메이지 정부는 1880년대 중반에 내각제를 실시한 뒤 징병제 시행, 육군의 사단편제 도입, 제국헌법의 반포, 국가신도의 창립 등으로 국가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었다. 1890년대에 접어들면서 집권 기반을 확실하게 다진 조슈 번벌(藩閥) 세력은 요시다 쇼인의 정신을 천황제 국가의 이데올로기 확립에 활용하기 시작한다.

1890년 요시다 쇼인의 고향 하기에 그를 기리는 신사(神社)가 세워졌다. 이어 1891년(메이지 24) 8월에 요시다 쇼인의 글들을 모은 『요시다 쇼인전(吉田松陰傳)』 전 5권(野口勝一, 富岡政信 편찬)이 출판되었다. 그의 제자로 알려진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야마다 아키요시, 시나가와 야지로(品川彌二郎) 등이 백작, 자작의 신분으로 이 편찬사업의 주체 내지 지원자로 표지를 장식했다. 또한 조슈번의 번주(藩主) 모리 모토노리(毛利元德)도 공작의 신분으로 첫 번째 제자(題字)를 보내왔다. 편찬사업은 오늘의 정권 안정이 선생의 가르침의 결과라는 칭송을 표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활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요시다 쇼인전』은 자료집으로서 그 내용이 대중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를 대중서로 만드는 작업은 민권운동가 출신의 저널리스트이면서 청일전쟁 직전에 조슈 번벌과 손을 잡은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 1863~1957)가 주로 담당했다.

도쿠토미 소호는 메이지에서 쇼와에 이르는 기간에 일본제국의 대표적 언론인, 평론가로서 요시다 쇼인의 팽창주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든 주역이었다. 1880년대에 그는 『국민의 벗(國民之友)』, 『국민신문(國民新聞)』 등과 같은 매체를 창설하여 평민주의 민권운동을 열렬하게 벌였다(和田守, 2011). 그러나 1890년대에 들어와 청일전쟁(1894. 7)을 앞두고 국수주의로 '전향'하여 이 전쟁을 문명(일본)이 야만(청국, 조선)을 격멸하는 성전(聖戰)이라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규정에 동조하면서 일본 국민이 세계를 상대로 자부심을 키우는 기회로 미화하는 데 앞장섰다. 당시 전쟁에 관한 보도에서 그의 『국민신문』이 가장 선동적이었다.

도쿠토미 소호는 1892년 봄에 혼고(本鄕) 회당에서 요시다 쇼인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가졌고, 강연 원고를 고쳐 같은 해 5~9월 발간한 『국민의 벗』에 10회에 걸쳐 연재했다. 그리고 이 무렵 민권운동에서 벗어나 대일본주의(大日本主義)를 표방하면서 단행본으로 『요시다 쇼인(吉田松陰)』(1893)을 출판했다. 요시다 쇼인의 정신만이 일본을 세계적인 대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저술이다. 이 책은 1908년까지 13판을 거듭했다. '국민적' 호응을 받은 베스트셀러였다. 이러한 '성공'은 그를 정치적인 인물로 만들어 갔다.

도쿠토미 소호는 1904년 러일전쟁 때 총리대신 가쓰라 다로(桂太郎) 계열 정파의 일원이 되어 러일전쟁을 미화하는 국제 언론 활동을 주관했다. 그는 한국인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것을 환영한다는 논조의 기사를 전 세계에 거리낌 없이 퍼트렸다. 1905년 '보호조약'에 따라 1906년 초에 통감부가 들어선 뒤, 1908년에는 대한제국 언론 통제의 권한을 부여받아 한국 신문들을 폐간하는 탄압정책에 간여한다. 그 공로로 그는 1910년 8월 '한국병합'이 강제된 후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로부터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京城日報)』를 총괄하는 '감독'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1918년 8월까지 8년간 도쿄와 서울을 왕래하면서 '무단정치'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정일성, 2005).

한국 언론 탄압에 개입하기 시작한 1908년에 그는 개정판(改訂版) 『요시다 쇼인』을 출간했다. 개정판은 러일전쟁의 전승국으로서 일본이 세계 열강의 대열에 오른 것을 스스로 찬양하면서, 집권 조슈 번벌의 요청에 따라 이 시점에 이미 형성된 황실 중심주의에 대한 교본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이 책은 1942년에 무려 27판을 낼 정도로 '일본제국 신민'에게 널리 읽히는 '국민독본'의 하나가 되었다. 저자는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인 시기에 쓴 서문에서 결함이 많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4년간 전후 33판을 내게 된 것은 오로지 요시다 쇼인의 인격이 사회적으로 높은 추앙을 받은 결과라고 하면서 '요시다 선생, 그는 죽었어도 현 시대에서 생생한 감화를 널리 비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령적(精靈的) 쇼인(松陰)"의 "군국(君國)에 목숨을 바친 대절청조(大節淸操)"를 찬양하면서 군국주의를 선도했다.

일본제국의 군국주의는 만주사변(1931), 중일전쟁(1937), 태평양전쟁(1941)을 잇달아 일으켰다. 도쿠토미 소호는 전쟁의 시대에 전의(戰意)를 부추기는 데 필력을 아끼지 않았다. 1939년에 『쇼와국민독본(昭和國民讀本)』, 1940년에는 『만주건국독본(滿洲建國讀本)』을 냈다. 이 독본들에서 그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열강들이 영토할거 경쟁을 벌여 이웃 나라들을 구렁에 빠트리는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오늘의 세계 추세라며 일본이 일으키는 전쟁을 정당화했다. 그러면서 "원정에 나선 장병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후방 동포의 열성에 감동하여" 한 노병이 전장에서 달리는 마음으로, 작으나마 나라에 보답하고자 쓴다고 했다. 그는 무려 200권에 달하는 저술을 통해 일본제국의 천황절대주의를 만들고 선전하는 데 앞장섰다. 도쿠토미 소호는 1945년 12월 2일 동경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전범용의자'로 지명되어 자택구금의 징벌을 받는다. 1947년 9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그의 행적은 전범으로 규정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요시다 쇼인의 팽창주의는 도쿠토미 소호의 문필 활동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로 기능했던 것이 명백하다. 이런 정신세계의 추구가 곧 조선·대한제국 신교육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조선은 이미 1880년대 초 서구 문물에 대한 직·간접적인 탐방을 통해 미국식 교육제도를 받아들여 그 성과를 거두면서 유럽 교육제도의 장점에 대해서도 인식과 지식을 축적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기반 구축이 요시다 쇼인의 침략사상 실천 차원에서 계획된 청일전쟁 중에 '내정개혁'이란 이름으로 짓밟혔다. 이런 파괴 행위는 비단 이 시기뿐만 아니라 보호국 시대를 거쳐 강제 병합 이후까지 전 기간에 관통하는 현상이다. 한국 근현대 교육사의 체계는 일본제국의 침략주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는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제2절 미국에서 구한 근대 고등교육제도의 모델

1) 1881년 조사시찰단의 메이지 정부 교육제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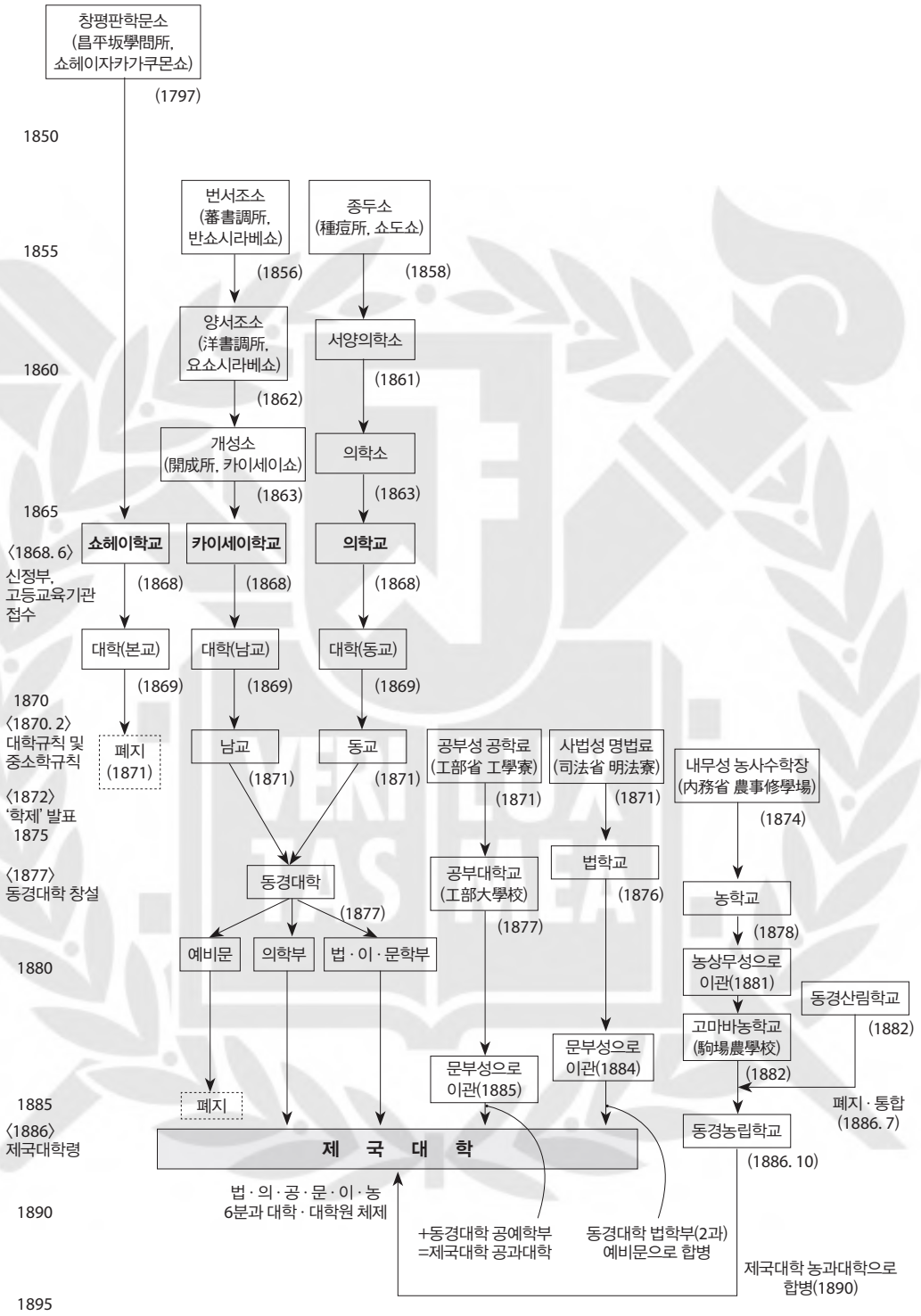
일본제국의 침략주의는 한국 근대 교육기관의 발전을 저해할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침략주의는 교육제도의 발달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대 교육제도에 대한 역사 인식을 왜곡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왔다. 한국의 근대적 교육제도나 교육기관들은 일본의 영향이 크다든지, 일본에 의해 형성된 것이 많다든지 하는

인식이 굳게 자리잡은 가운데, 한 걸음 더 나가 한국 근대 교육기관의 수준이나 규모는 일본에 비교할 것이 못 된다는 부정적 역사 인식이 은연중에 널리 생성되어 통념이 되어버렸다. 이런 역사 인식이 지금까지 국립서울대학교가 그 전신으로 인식할 만한 근대의 여러 관립 고등교육기관의 역사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청산,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대 한국의 국가적 차원의 고등교육 기관 설립의 청사진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1881년 4월 조선 정부는 일본에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을 파견했다. 이것은 조선 정부가 외국 근대 문물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보낸 최초의 공식 조사단이었다. 그리고 이듬해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뒤, 1883년 4월 초에 미국의 공사 푸트가 비준서를 가지고 부임한 다음달에 3개월간 미국을 다녀온 보빙사 일행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다. 보빙사는 양국이 '수호통상'을 약속한 조약 체결에 따라 파견된 최초의 친선 사절단이었지만 정보 수집의 역할을 수행했다.[3] 두 차례의 조사 보고에서 교육제도에 관한 것은 실제로 조선 정부의 신식 교육제도 구상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선포된 뒤, 메이지 정부는 1871년에 새 수도가 된 도쿄(東京)의 군사적 방어 조직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학제(學制)'를 처음으로 공포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쿠가와 막부는 1854년 미국 페리 제독의 함대가 도쿄 만에 도착하여 개항을 요구한 이후 서양 문물을 아는 관리 양성을 위해 어학 교육을 비롯해 신식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들을 여럿 세웠다. [그림 3] 근대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변천도는 1984년에 도쿄대학교가 편찬한 『도쿄대학 100년사』, 「통사 편」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막부 최말기인 1868년 6월 현재 도쿄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쇼헤이학교(昌平學校), 카이세이학교(開成學校), 의학교 셋이 나란히 있는 상태였다. 쇼헤이학교는 막부의 유학(儒學)을 담당한 유시마세도(湯島聖堂)가 위치한 지명을 딴 것으로서, 이때는 유학에 황학(皇學; 천황에 대한 공부)이 보태진 인문학 교육기관이었다. 반면 카이세이학교는 서양의 각종 언어와 기술에 관한 교육을 담당했다. 막부 말기의 서양학 교육은 난학(蘭學)

3 일행은 정사 민영익(閔泳翊), 부사 홍영식(洪英植), 서기관 서광범(徐光範), 수행원 변수(邊修) 유길준(俞吉濬)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3] 근대 일본의 고등교육기관 변천도

을 근간으로 하면서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열강의 교육이 중요시되었지만, 메이지 신정부의 '학제'는 프랑스식 자유주의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었다.

[그림 3]에 보듯이 1869년 메이지 신정부는 쇼헤이학교를 대학 본교, 카이세이학교를 남교, 의학교를 동교로 개칭했다. 이어 1871년에 정부 조직으로 성(省) 제도가 마련되면서 본교, 곧 쇼헤이학교 자리에 문부성(文部省)이 들어서고 남교와 동교, 양교 체제가 되었다. 이 해 12월 서양의 문물을 직접 시찰하기 위해 현직 관료 64명으로 구성된 이와쿠라(岩倉) 사절단이 미국과 유럽 제국을 둘러보고 1873년 9월에 돌아왔다. 사절단이 돌아온 뒤, 세이난전쟁(西南戰爭)과 같은 정치적 분쟁도 있었지만 국가 운영 조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877년 메이지 정부가 동교와 남교를 합하여 도쿄대학이라고 한 것도 그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때의 도쿄대학은 아직 외형으로만 내세워지고 내용적으로는 대학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것이 많았다. 1879년에 공포된 '교육령'은 미국식 자유주의 교육을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서양 교육제도 도입의 방침은 18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식 모형을 구해 국가주의 교육체제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라졌다.

1881년 고종은 일본에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여 메이지 개혁의 성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시찰단원들은 각각 일본의 정부 부처를 담당하여 조사활동을 시행했으며, 이 중 교육제도는 조준영(趙準永)이 담당하여 귀국 후 보고서를 제출했다(허동현, 2007). 이 보고서는 시찰 연도인 1881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879년 '교육령' 때까지의 변천을 담고 있으며, 그 보고가 어느 정도로 충실한 것인지를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조준영의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문부성에 대한 소개로 시작한다.

> 문부성(文部省): 일주(日主; 메이지 천황을 뜻함 - 필자) 4년(1871) 신미에 본성을 창설했다.
>
> 일주 초원(初元, 1868)에 도쿄(東京)의 옛 개성소(開成所)를 학교로 삼아 외국인을 교사로 고용하고 양법(洋法)을 크게 행했다. 또 도쿄 옛 창평교(昌平校)를 학교로 삼고, 이듬해(1869)에 창평교를 고쳐 대학교라 칭했다. 이어서 대학교를 고쳐 대학이라고 하면서 개성교(開成校)는 남교(南校), 의학교는 동교(東校)라고 했다. 이 해(1871)의 7월에 이르러 대학을 폐하고 문부성을 두어 교육 사무를 총제하고 대·중·소학교를 관장하게 했다.

이 소개에 언급된 고등교육기관의 변천은 잘못된 것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창평교와 대학, 대학교, 문부성의 연혁 관계는 매우 사실적이다. 보고서는 이어서 문부성의 소관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이에 앞서 대학의 소관은 대학 동·남교(東·南校), 오사카(大阪)의 개성소, 이학소(理學所), 의학교(醫學校), 나가사키(長崎)의 광운관(廣運館), 의학교, 해외 유학생도 관리에 그쳤으며 전국 학정(學政)에 이르지는 않았다. 본성을 두면서 전국의 교육 위생 사무까지 맡아 옛 대학 면목에 큰 변혁이 있었다. 이로부터 직제의 폐지나 설치가 같지 않아 세비의 증감이 무상하고 사무장정이 자주 바뀌고 학소(學所)와 교령(教令)이 해마다 개정되어 모든 연혁을 다 서술할 수 없으니, 지금 시행되는 것의 대강만을 들어 좌(아래)와 같이 나열하여 기록한다(밑줄은 필자).

이에 따르면 당초 창평의 대학은 초기의 서양식 교육과 관련되는 기구 또는 학생들의 관리 담당 조직이었다. 하야시(林) 가문의 주관 아래 막부의 교육 업무를 총괄하던 유시마세도의 전통을 잇는 위치였다. 이를 '본교'라고 한 까닭도 짐작할 수 있다. 1871년 문부성이 교육 담당 중앙관부로 출범하면서 명실공히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을 창설, 관리하는 주체가 되었던 것이다. 보고서는 이후의 여러 행정 사항의 치폐(置廢)를 망라하기 어려우므로 현행의 주요한 것들만 적는다고 하고, '직제', '사무장정', '경비', '학교지략(學校誌略)', '교육령'(1880. 12. 개정) 등 5개 항을 세워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다. 그 내용을 여기에 다 옮길 필요는 없지만 각 사항의 주요한 내용을 제시하여 시찰단의 관심사를 주목한다.

'직제'는 문부성의 신구 관제의 변천을 살핀 다음, 경(卿) 이하 각 관원의 월급액수를 제시했다. 경 1명 500원(圓)에서 권소서기관(權少書記官) 1명 100원에 이르기까지 7등급 관원의 보수를 적었다.

'사무장정'은 문부성 내 각 부서 업무의 개정에 관한 것들을 연도별로 정리했다. 예컨대 1871년(메이지 4)에 동·남 양교의 교칙을 개정하고, 각국에서 외국어 교사를 초빙하여 그 인원을 늘리고 다시 준수한 생도를 뽑아 외국에 유학시켰다고 하고, 이듬해에는 전국에 학제를 반포했다. 1875년에는 박물회(博物會; 박람회-필자), 사무국(事務局), 박물관(博物館), 서적관(書籍館), 고이시카와식물원(小石川植物園) 등을 모두 본성에 소속시켰고, 1877년에는 대학에서 쓸 교과서를 번역했

다. 1878년 사무로는 전년도 7월부터 본년 6월까지 문서를 처리하여[調理] 왕복한 것이 8,958건, 본성 제3년보를 인쇄한 것이 5,000부, 교육 잡지를 간행한 것이 246,950부, 본성 잡지를 간행한 것이 1,800부, 교과도서 등 29종을 간행한 것이 36,873부라고 한다.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문서 처리 건수는 4,341건, 본성 제4년보를 인쇄한 것이 5,500부, 본성 일지를 간행한 것이 8,400부, 교육 잡지를 간행한 것이 105,750부, 교과도서 등 11종을 간행한 것이 22,500부라고 적었다. 같은 해의 난에는 나라의 교육이 지(知)를 기르는 데에 치우쳤고 체(體)를 기르는 데에는 박하므로 체조전습소(體操傳習所)를 설치하고 외국 체조전문교사를 초빙하여 생도를 가르쳤다는 기록도 있다. 이것은 당시 지, 덕, 체의 교육 인식이 생성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경비'에서는 1872년부터 1880년까지의 문부성 정액 예산의 증감을 표시했다. 1880년도 예산 총액(1,181,100원)을 사용한 기관별 액수를 밝혔다. 본성 258,558원, 도쿄대학교(東京大學校) 267,703원, 도쿄의학부(東京醫學部) 139,449원, 오사카중학교(大阪中學校) 59,000원, 도쿄외국어학교(東京外國語學校) 48,332원, 도쿄사범학교(東京師範學校) 32,000원, 도쿄여자사범학교(東京女子師範學校) 22,200원, 도쿄직공학교(東京職工學校) 35,000원, 도서관 10,000원, 교육박물관(教育博物館) 15,000원, 학사회원(學士會院) 8,278원, 체조전습소 15,580원, 부·현(府·縣) 사범학교 보조 70,000원, 부·현 소학교 보조 200,000원 등이 열거되었다.

'학교지략'에서는 문부성 설치 후 각 학교의 연혁, 즉 도쿄 개성교를 대학 남교로, 도쿄의학교를 대학 동교로 고쳤는데 동교, 남교로만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한 다음, 이것이 다시 전국적인 학구제(學區制)로 바뀐 상태를 소개한다. 즉, 동교를 제1대학구 도쿄의학교, 남교를 제1대학구 도쿄제1번중학(番中學), 양학소(洋學所)를 제2번중학으로 고쳤다고 한다. 이어서 오사카개성소(大阪開成所)는 제4대학구 오사카제1번중학, 오사카의학교(大阪醫學校)는 제4대학구 오사카의학교, 나가사키(長崎) 광운관(廣運館)은 제6대학구 나가사키제1번중학, 나가사키의학교는 제6대학구 나가사키의학교가 되었다고 한다. 이밖에 도쿄에 독학국(督學局), 사범학교, 여자학교, 여자사범학교를 설치한 것, 오사카중학교를 개명학교(開明學校), 나가사키중학을 광운학교(廣運學校)로 한 것 등을 소개한다.

전국의 8대 학구제는 1873년에 도입된 것으로, 각 대학구의 대학 본부를 둔 곳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제1대학구 도쿄 부(東京府), 제2대학구 아이치 현(愛知縣), 제3대학구 오사카 부(大阪府), 제4대학구 히로시마 현(廣島縣), 제5대학구 나가사키 현(長崎縣), 제6대학구 니가타 현(新潟縣), 제7대학구 미야기 현(宮城縣)

끝으로 '교육령'은 1880년 12월에 개정·반포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문부경(文部卿)의 책임 아래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제시되었다. 이를 옮기면 아래와 같다.

一. 소학교: 아동에게 보통교육을 가르치는 곳으로 그 학과는 수신, 독서, 습자, 산술, 지리, 역사 등 …
一. 중학교: 고등 보통 학과를 가르치는 곳이다.
一. 대학교: 법학, 이(理)학, 의학, 문학 등 여러 전문과를 가르치는 곳이다.
一. 사범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곳이다.
一. 전문학교: 전문 1과를 가르치는 곳이다.
一. 농학교: 농경학업을 가르치는 곳이다.
一. 상업학교: 상매(商賣) 학업을 가르치는 곳이다.
一. 직공학교: 백공직업(百工職業)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상과 같은 조영준의 시찰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첫째, 조사시찰단의 각 기관별 조사는 2개월 반에 불과했지만 보고서는 비교적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부성 보고서의 경우, 메이지 시기의 교육제도 변천 자료로서도 활용가치가 있어 보일 정도로 자세하다.

둘째, 일본에서 시행된 새로운 교육제도 및 체계는 1880년 현재 상당히 정비된 상태이고 나름대로 새로운 입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도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정부가 실제로 시행한 각급 교육기관에 이를 그대로 직접 반영한 느낌을 주는 것은 드물다. 특히 학구제 같은 것은 기존의 8도제 때문인지 수용된 흔적이 없다. 그러나 끝의 '교육령'을 통해 소개된 각급 학교의 구분은 조선·한국에서 많이 활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셋째, 보고서에 반영된 일본의 교육제도는 아직 미국, 프랑스의 자유주의적 교육제도를 따르는 초창기 제도다. 이는 후술하듯이 조사시찰단이 다녀온 후 1885

년부터 국가주의 교육제도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때 새로 정립되는 일본 제국의 교육제도와는 더욱 거리가 멀어진다. 결론적으로 한국 근대의 교육제도는 먼저 출발한 일본의 근대 교육제도를 조사는 했지만 이로부터 직접 영향 받은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1883년 보빙사의 미국 고등교육제도 수용 건의

1863년 12월 왕위에 오른 군주(고종)는 겨우 11세 소년이었다. 따라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집정으로 국사를 이끌었다. 대원군은 내치에서는 고질적인 문벌중심의 세도정치를 종식시켰지만, 외치에서는 배외주의(쇄국정책)를 취하여 역사의 흐름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알리면서 새로운 국교 수립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한 것부터 문제였다(1869. 12). 기존의 중국 중심의 책봉체제를 존중하여 일본국의 군주가 황제를 칭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일본은 이를 일본제국에 대한 모멸로 간주해 이후 정한론 실현의 구실로 삼았다. 1866년 7월의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 호 사건, 같은 해 8월의 병인양요, 그리고 1871년 4월의 신미양요 등은 모두 그의 배외주의의 산물이었다.

1875년 군주는 20세가 넘은 청년으로서 직접 정치에 나서 대원군의 집정을 중단시켰다.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문호를 개방하여 서양의 앞선 문물을 수용하는 것이 곧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신하들에게 일본과의 수교를 재수립하도록 지시했다. 한 나라가 황제를 칭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제이므로 이웃나라가 간여할 것이 아니라고 여겼다. 그는 서양 열강의 문호 개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선도 머지않아 자주 독립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1880~1881년 사이에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군함이 조선에 도착하여 통상을 요구하고, 또 양무운동(洋務運動)을 추진하던 청국의 북양대신 리훙장(李鴻章)이 서양과의 통상을 권유하는 상황에서 왕은 외교 사절이 가지고 가는 국서에 '이덕지보(以德之寶)' 대신에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로 글자를 바꾼 국새를 만들어 사용하게 했다(1881. 윤 7. 27). 이러한 새로운 국체 의식은 1897년 대한제국의 탄생을 가져왔다.

1876년 2월의 〈조일수호조규〉 체결에는 조선, 일본 간에 서로 다른 의지 또는 의도가 작용했다. 일본으로서는 대륙 진출이 궁극적인 목표였고, 그러자면 우선 조선에 대한 청국의 영향을 밀어내는 것이 선결 과제였다. 이 조약은 곧 대륙 진출을 위한 발판 만들기였다. 반면에 조선은 순수하게 일본과 국교를 수립해서 이미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양 문물 수용의 성과를 배우려고 한 것이었다. 대원군 집정 10년간에 생긴 낙차를 서둘러 좁히려는 의도였다.

1880년 3월 23일 김홍집(金弘集)이 제2차 수신사로 임명된 직후인 3월 26일에 미국의 로버트 윌슨 슈펠트(Robert Wilson Shufeldt) 제독이 부산에 와서 통상을 요구했다. 같은 해 5월 3일 일본이 미국과의 통상을 권유한 가운데 5월 9일 프랑스 군함 한 척이 부산에 와서 통상을 요구했다. 5월 28일 수신사 김홍집 일행이 일본으로 출발하여 7월 6일 도쿄에 도착했다. 수신사 김홍집은 일본 정부 측뿐만 아니라 청국 공사관도 방문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8월 28일 귀국하여 왕에게 보고할 때, 청국 공사관에서 입수한 황쭌센(黃遵憲)의 『사의 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1880년 저술)을 올렸다. 이 책은 러시아가 이미 일본에서 사할린, 중국에서 헤이룽장(黑龍江) 동쪽을 얻은 것으로 비추어 보아 다음 차례로 조선이 위험하다는 전제 아래,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밀하고[親中國], 일본과 결속하고[結日本], 미국과 연결할[聯美國]"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군주는 9월 3일 개화승 이동인(李東仁)을 밀명으로 일본 나가사키로 보내 그곳의 동서 교섭 실황을 보고 오도록 했다.

1881년 2월부터 유생들이 『조선책략』을 비난하는 상소문을 끊임없이 올렸다. 군주는 개방, 개화에 대한 의지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일본에 조사시찰단을 파견했다. 이 해 5월에는 영국 군함 한 척이 원산에 와서 통상을 요구했다. 왕이 외교 문서에 사용할 국새에 '대조선국보'라고 새기게 한 것은 이 무렵이었다(윤 7월). 한 달 뒤 8월 30일에 조사시찰단이 귀국하여 시찰 결과를 보고했다. 군주는 바로 이어 9월 26일에 김윤식(金允植)을 영선사(領選使)로 삼아 유학생 28명을 데리고 청국 북양대신 리훙장이 양무운동을 벌이고 있는 톈진(天津)으로 가서 각종 기술을 배워 오도록 했다. 조선 정부는 뒤늦게나마 이렇게 활발한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양 열강 가운데 미국을 첫 수교 대상으로 택한다.

1882년 4월 6일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어 영국(양력 4. 21), 독일(양력 5. 15)과도 같은 조약을 체결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 나라들과 본

격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영어 교육이 필요했다. 왕은 그해 12월에 동문학(同文學)이란 통변학교(通辯學校)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아래에 설치한다. 영선사 일행이 톈진에서 리훙장에게 해관 설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을 구하던 끝에 독일인 파울 게오르크 폰 묄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를 소개받았다. 그는 1882년 12월 조선에 도착하여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협판 겸 총세무사가 되었다. 동문학은 그의 건의에 따라 세우기로 하여 이듬해 3월 이후 40명의 학생을 선발해 교육을 시작했다. 영어에 능통한 2명의 중국인 선생이 교수를 담당하여 영어, 일본어, 산수 등을 가르쳤다.

군주의 개화정책은 순탄하지 않았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후 2개월이 지난 6월 5일에 대원군이 임오군란을 일으켰다. 1년 전에 일본 교관을 초빙하여 별기군(別技軍)이란 이름으로 신식 군사훈련이 시작된 이래, 이에 뽑히지 못한 구식군인들이 불만에 차 있는 것을 이용해 대원군이 왕의 개방정책을 저지하려는 정변을 일으킨 것이다. 이 정변은 정부의 개방정책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 구식 군인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일본인 교관이 살해당하고 일본 공사관이 불타는 참변이 일어났다. 공사관 방화는 위기를 느낀 일본 공사관 직원들이 탈출을 꾀하면서 스스로 불을 지른 것이지만(金正明 編, 1986: 해제 참조), 사후 협상에서는 조선 군인들의 소행으로 간주하여 큰 배상금을 요구하는 근거로 이용된다. 7월 17일에 양국 간에 체결된 〈제물포조약〉은 피해 보상으로 50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했다. 이듬해에는 지금까지 미루어 온 통상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7월 25일에 체결된 〈일본인민무역규칙급해관세목(日本人民貿易規則及海關稅目)〉에서 일본에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할 것을 확정했고 말미에는 최혜국 조관까지 포함시켰다(이태진, 2004). 일본과 관세에 관한 협상이 이렇게 귀착되자 미국, 영국, 독일도 같은 조건을 요구하여 이른바 불평등 조약의 시대가 열리고 말았다.

다른 하나의 손실 상황은 청국과의 관계에서 벌어졌다. 조선 국왕은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준비하면서 1882년 1월 청국 정부에 이 조약이 체결되면 조선, 청국, 미국 3자가 서로 조약을 통해 자주 독립국의 관계를 공인하는 상태가 되므로, 앞으로 조선이 청국에 보내던 사신 왕래를 중단하고 대신 공사를 파견해 상주시키는 체제로 바꾸어야 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타진했다. 이에 청국은 당황했다. 북양대신 리훙장이 조선에 대해 미국과의 통상교섭을 권유해 온 처지에 조선 정부의 제안은 합당한 것이었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한반도가 청국의 영향권에서

멀어져 그만큼 세력 관계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6월 초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이 정변이 조선 군주가 원하지 않는 것이란 점을 구실로 '책봉주'인 청국의 천자는 정변의 주모자를 색출할 의무가 있다며 천자의 친병 4,000여 명을 조선에 파견해 주모자인 대원군을 잡아 톈진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청국군은 한성에 계속 주둔하여 책봉체제의 수준에서 조선 정부를 압박하다가 1885년 10월에는 위안스카이(袁世凱)를 주차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箚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란 직함으로 조선에 상주시켰다(이태진, 2004).

조선의 군주는 이 뜻하지 않은 상황에도 개화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1883년 4월 초에 미국 공사 푸트가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비준서를 가지고 한성에 도착했다. 그해 7월 조선 군주는 이에 대한 답례로 보빙사를 미국에 보냈다. 정사 민영익, 부사 홍영식 등의 일행은 미국에 도착하여 체스터 앨런 아서(Chester Alan Arthur) 대통령에게 비준서를 직접 전달한다. 워싱턴 D.C.와 뉴욕 등지를 순력하면서 새로운 문명 세계를 보고 10월에 뉴욕에서 대통령에게 고별 인사를 올리고 11월에 귀국했다. 부사 홍영식은 11월 22일 왕에게 귀국 보고를 올렸다. 정사 민영익은 유럽을 경유하여 나중에 돌아왔다. 군주는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홍영식에게 무려 60가지의 질문을 쏟았다. 이 질문들은 조선 군주가



[그림 4] 보빙사 일행. 앞줄 가운데 정사 민영익, 그 왼쪽에 부사 홍영식, 오른쪽에 서장관 서광범이다. 홍영식 옆 미국인은 로웰로 안내역을 맡은 포크는 그를 매우 싫어했다고 한다.

가진 최초의 미국 및 유럽에 대한 관심 표명이기 때문에 장황하지만 소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 열거한다. 군주는 이 보고 자리에 사관을 불러 문답한 내용을 기록하게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다(김원모, 1999).

〈국왕이 부사 홍영식에게 질문한 60가지〉(답변은 생략)

1. 갈 적에는 더위가 한창이었으나 올 적에는 매우 추운 날씨다. 먼 여행길에 과연 무사히 돌아왔는가.
2. 일행 모두 배 멀미는 없었는가.
3. 그러면 민영익 전권대신 일행은 언제쯤 돌아온단 말인가.
4. 왕래 수로의 이수는 모두 얼마나 되는가.
5.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舊金山)까지 수로로 몇 리나 되는가.
6. 참으로 멀고도 멀구나. 왕래하는 수로는 모두 새로 난 항로인가.
7. 대통령을 만나 보았는가.
8. 그들의 대접은 과연 관곡(款曲)했는가.
9. 그 나라를 처음 가보았는데 마땅히 그 장점을 취할 바 있겠다.
10. 그 나라의 사치하고 화려함은 일본과 비교해서 어떠하던가.
11. 이같이 그 나라가 부강하다면 그 나라의 병제(兵制)는 어떠하던가.
12. 그렇다면 집집마다 양병(養兵)한단 말인가.
13. 해군은 모든 육군에 비해서 어떠하던가.
14. 정치제도는 어떠하던가.
15. 대통령의 교임(交任)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
16. 조정의 관직도 다 4년마다 교임되는가.
17. 신구의 정권교체 시 큰 폐단이 없지 않은가.
18. 미국의 관제는 유럽과 다른가.
19. 민주제도는 등위(等威)의 차별이 현격하지 아니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른바 존위(尊位)와 제민(齊民) 간에 그다지 심한 계급 차별이 현절하지 않다는 말이 되겠구나. 그런데 부통령은 매양 대통령으로 승진하는가.
20. 현금 민주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몇 나라나 되며, 유럽에도 민주국가가 있는가.
21. 기왕 외국에 가보았으니, 천하의 형편을 알 수 있는가.
22. 미국에 며칠 동안 체류했는가.

23. 미주와 구주 간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24. 대서양의 풍파의 험난함이 태평양에 비해서 어떠한가.
25. 러시아는 그곳 미국으로부터 멀겠구나.
26. 대통령 궁실의 제도는 어떠하던가.
27. 대체로 가옥의 모양은 어떠한가.
28. 모든 백성은 범사에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던가.
29. 무릇 사업[興作]에 있어서는 민간기업[民辦]이 많던가.
30. 기계가 정예하기로는 과연 천하제일이라 말할 수 있던가.
31. 계절의 춥고 따뜻함은 어떠하던가.
32. 이번에 같이 온 (외국인) 동행은 몇 분이나 되는가.
33. 미국에 있을 때 언어는 어떻게 소통했는가.
34. 미국의 접반사(통역관)는 어떤 벼슬의 인물인가.
35. 각 부가 주관하는 업무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36. 농사 업무는 어떠한가.
37. 가고 오는 데 모두 며칠이 걸렸는가.
38. 어느새 150여 일이나 되었구나. 미국에 있을 때 이곳 본국 소식을 또한 들어보았는가.
39. 이번이 외국에 나가기는 초행길인데 필연코 여러 가지 생소한 일이 많았겠다.
40. 미국은 참찬관을 많이 기용하고 있던가.
41. 로웰 참찬관이 우리 사신 일행을 위해 극력 도와주었다니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모름지기 그를 잘 대접하라.
42.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우리나라가 영국, 독일과 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 소식을 들었는가.
43. 영국 사신을 접견했을 때, 저들도 또한 흡족해 하고 있는 것 같더라.
44. 프랑스도 우리나라와 입약을 위해 곧 내조(來朝)하겠는가.
45. 워싱턴에 있을 적에 각국 공사를 만나 보았는가.
46. 미국 사신 푸트의 친구들도 역시 조선사절단을 방문한 일이 있었던가.
47. 슈펠트도 만나 본 일이 있는가.
48.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49. 거기 있을 때 침식은 편안했는가.

50. 워싱턴은 미국의 서울인데, 응당 주둔 육군의 수가 적지 않겠다.
51. 미국은 이미 병력을 민병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군대 수가 적어도 걱정이 없겠다.
52. 낮에는 그 직무에 충실히 근무하고 밤이면 그 무사(군사훈련)를 익히고 있다니, 이것이 바로 부강하게 된 까닭이 아닌가. 남미, 북미의 나뉨[分合]은 어떠한가.
53. 미국 땅에서 배를 타고 며칠이면 일본에 도달하는가(25일).
54. 그렇다면 어찌 이다지도 지체되었는가.
55. 바다 가운데에는 또한 섬들[島嶼]이 있었던가.
56. 이를 가리켜 바닷물과 하늘[水天]의 일망무제(一望無際)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해상에서 선함의 왕래를 본 일이 있는가.
57. 듣자니, 대서양에는 왕래하는 선척이 많다고 하는데 태평양에는 어찌 희소하단 말인가.
58. 미국의 생산물 가운데 어떤 것이 많이 생산되는가.
59. 그러면 금과 은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가.
60. 대통령의 나이는 몇인가.(강조는 필자)

왕의 관심은 두루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고 구체적이다. 사전 지식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질문이 태반이다. 특히 미국의 군사제도, 대통령제도 및 정부조직에 관심이 많았다. '등위의 차별이 없는' 민주제도에 대한 관심이 눈길을 끈다(19). 그리고 미국에 비해 역사가 오랜 유럽에 같은 민주국가가 몇이나 되는지를 묻는 것도 범상한 질문이 아니다. 자원과 산업의 발달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던 것을 읽을 수 있다. 미국에 그치지 않고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유럽 주요 국가와의 관계, 미국 체류 중에 조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는 대목은 교통과 통신의 세계적 상황에 대한 확인으로 특별히 주요하게 느껴진다. 왕의 질문에 대한 홍영식의 답변은 군주와 정부가 이후 실제로 실행하는 개화, 근대화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홍영식은 왕의 아홉 번째 질문, "그 나라를 처음 가보았는데 마땅히 그 장점을 취할 바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교육제도를 반드시 본받아야 할 첫째 대상이라고 보고한다.

신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자가 같지 아니해서 눈으로 보고

> 귀로 들으면서 기록했지만 온전하게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기(機器)의 제조 및 배, 차, 우편, 전보 등속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급선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교육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데, 만약 그 제도를 본받아 인재를 양성해서 백방으로 대응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꼭 반드시 그 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切須效法者矣; 강조는 필자, 김원모, 1999).

반드시 미국 교육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홍영식의 건의는 한국 근대 교육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홍영식은 이 건의 후 1년도 되지 않아 김옥균, 박영효 등과 함께 갑신정변(1884. 10)을 일으켰다가 실패해 처형된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군주는 그가 제안한 대로 미국식 교육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했다. 적어도 1880년대에는 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신식 학교를 세우고자 했고 성과도 적지 않았다.

갑신정변은 임오군란의 여파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었다. 임오군란 진압 과정에서 청국이 개입하여 지나치게 종주국 행세를 하자 김옥균, 박영효 등은 일본의 힘을 빌려 정국을 바꾸어 보려고 한다. 당초 일본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특히 이때 조선에 출동한 청국군의 병력은 양무운동의 성과로 일본군에 비해 훨씬 우세했다(大谷正, 2014: 20~34). 일본은 이 격차를 단기간에 줄일 필요성을 느끼고 앞서 언급했듯이 1882년 8월 15일에 육군 참의 겸 참모본부장인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육·해군 확장에 관한 재정 상신(上申)'을 올리고 이듬해부터 1890년까지 8년간 육·해군 군비확장 계획을 수립하여 착수한다.

당초 김옥균 등이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 일본 공사에게 정변을 꾀하고자 접근했을 때는 면담조차 허용하지 않았다(이태진, 2004). 오히려 일본 공사는 청국 측과 유화적인 관계 유지에 힘썼다. 그런데 1884년 9월 본국 정부의 소환을 받고 돌아온 뒤에는 태도가 달라졌다. 우선 1882년의 〈제물포조약〉에서 일본이 요구한 배상금 50만 원 가운데 40만 원을 일본 천황이 탕감한 사실을 조선 군주에게 전했다. 그런 다음 김옥균을 공사관으로 따로 불러서 우정국 개소날 거사에 공사관 수비대 1개 중대 병력의 동원을 약속했다. 갑신정변의 주모자들은 청국군 4,000여 명이 서울에 주둔한 상태임에도 1개 중대에 불과한 일본 수비대 병력을 믿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다.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일본 정부의 계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이태진, 1997).

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난 뒤 일본 측은 조선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한성조약〉(1885. 1. 9)에서, 일본 공사관이 2년 전처럼 불탔는데도 조선에 대해 배상금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대단히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협상과정에서 조선 대표는 일본 공사관 직원들이 스스로 불을 지른 것이라고 시종일관 주장한다). 반면에 청국과의 〈톈진조약〉(1885. 4. 18)에서 조선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여 병력을 동원해야 할 때는 서로 사전 통고하면서 동시 출병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넣었다. 이것은 한반도 진출의 침략주의 꿈을 가진 일본 외교의 큰 성과였다. 9년 전의 〈조일수호조규〉가 그 발판을 마련했다면 이 조약은 군사 진출을 가능하게 한 큰 행보였다. 일본 정부는 바로 이 무렵에 국가 운영체제를 내각제로 바꾸고 국가주의의 깃발 아래 군비 확장에 매진하고 있었다.

조선 군주는 이 정변 속에서 일본군의 손에 유능한 신하 여러 명을 잃었다. 국왕의 소명이라는 거짓 전갈을 받고 경우궁(景祐宮)으로 입궐하던 대신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던 일본 군인들에 의해 차례로 살육되었다[피살자: 후영사(後營使) 윤태준(尹泰駿), 전영사(前營使) 한규직(韓圭稷), 좌영사(左營使) 이조연(李祖淵),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겸 해방총관(海防總管) 민영목(閔泳穆),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 민태호(閔台鎬),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조영하(趙寧夏) 등]. 일본 식민주의 역사학은 1910년 전후 강제 병합을 추진할 때 일본이 오랫동안 지원한 김옥균을 근대화의 선각자로 높이면서 정변 피살자들을 수구파 또는 사대당으로 몰았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군주의 개화정책을 열심히 돕던 신하들이었다. 수구파, 사대당이란 용어는 조선·한국의 근대화는 일본의 보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라거나 일본에 의해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라는 시혜론을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김태웅, 2000). 군주는 정변이 정리되자마자 김옥균 등이 3일간 선포한 여러 조치를 모두 무효로 돌렸다. 그 후 전환국 설치, 전기 및 전신선의 부설, 우정총국의 업무 시작 등 개화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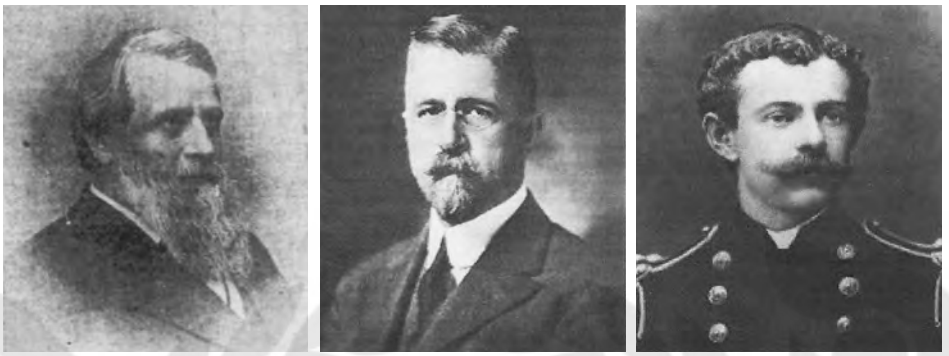
3) 1886년 미국식 '칼리지(College)' 육영공원(育英公院)의 창설과 운영

1883년 미국에 간 보빙사는 포크 해군 중위의 안내를 받으며 워싱턴, 보스턴, 뉴

욕을 돌아봤다. 포크 중위는 미 해군 아시아 함대(Asiatic Squadron)에 6년간 선상 근무를 하면서 일본 기항 중에 배운 일본어가 유창했다. 1882년에 그는 2명의 동료와 함께 시베리아와 유럽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하면서 미국인 최초의 여행자로서 부산과 원산을 방문한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한 달 뒤였다(1882. 5).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해군성(Navy Department)의 문서관(Archives)에 근무하면서 그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익히고 있었다. 1883년 조선의 보빙사가 워싱턴에 왔을 때 그는 미국 정부 안에서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이었다(Hawley, 2005: 59~86). 그는 조선 보빙사 일행을 안내한 뒤 조선으로 함께 와서 조선 주재 미국공사관의 무관으로 근무했다. 포크 중위는 조선 정부가 육영공원을 설립하고 교사를 초빙하는 일을 도왔다.

보빙사 일행은 귀국 후 3개월 만인 1884년 9월에 왕으로부터 학교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낸다. 포크 무관의 주선으로 푸트 공사는 1884년 9월 10일 자로 국무장관에게 3명의 젊은 교사를 선발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 의뢰서는 저명한 교육국장(Commissioner of Education) 존 이튼(John Eaton Jr.)에게 건네졌다(Hawley, 2005: 59~86; 김동진, 2010: 35). 보빙사 일행은 워싱턴에 체류할 때 포크 중위의 주선으로 내무성 교육국에서 이튼 국장을 만났다. 보빙사 일행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교육국사(教育局史)와 연보를 기증받았다. 귀국 후 왕이 학교 설립을 허락하자 포크 중위는 그 협조 의뢰서를 작성해 이튼 국장에게 보냈던 것이다.

이튼은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 출신으로 미국 남북전쟁에서 북군(Union Army) 장군으로 활약한 뒤 교육에 밝은 전문가로서 교육국장이 되었다. 그는 조선 정부가 의뢰한 신학교 출신 교사 3명을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Uni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하기로 한다. 조합교회(Congregational Church)의 목사이면서 다트머스 대학과 인연이 많은 캘비어 헐버트(Calvier B. Hulbert, 다트머스 창설자인 Eleazon Wheelock의 딸과 결혼)와 협의하여 3명을 선발했다. 헐버트 목사의 둘째아들로 다트머스 대학을 나와 유니언에 재학 중인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 프린스턴 대학을 나와 유니언을 막 졸업한 조지 윌리엄 길모어(George William Gilmore; 1886년에 귀국하여 Daniel Lyman Gifford가 대신 옴), H. E. 번(H.E. Burne)이 그들이다. 번은 중도 포기하여 달젤 벙커(Dalzell A. Bunker)로 대체되었다. 3명은 조선 정부와의 계약 관계를 확인한 뒤, 1886년 6월 3일 조선에 도착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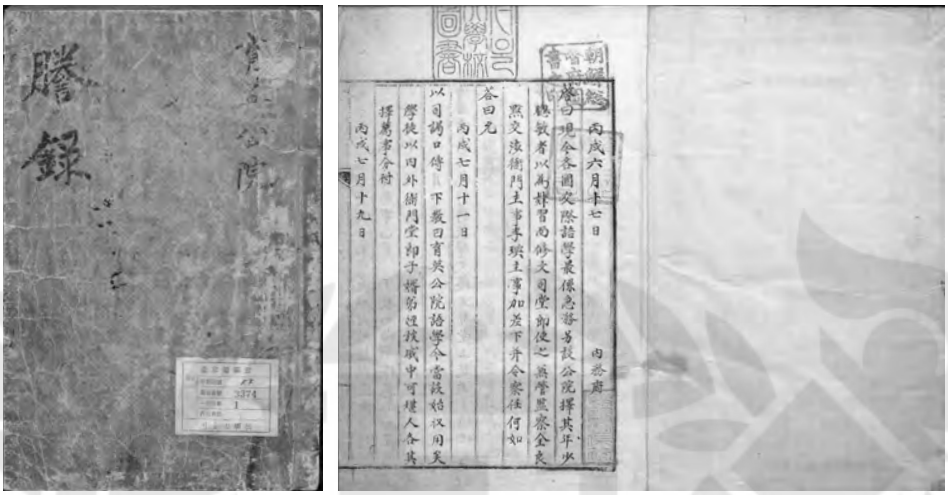


[그림 5] 미국 교육국장 존 이튼(왼쪽), 보빙사를 따라온 미국 공사관 무관 포크 중위(오른쪽), 육영공원 교수로 부임한 호머 헐버트(가운데)

다. 이들이 도착한 후 학교 설립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육영공원등록(育英公院謄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규 3374)에 따르면 같은 해(1886) 6월 17일 내무부(內務府)가 왕에게 다음과 같은 건의를 올렸다. 즉, 각국과 교섭하면서 어학이 가장 긴급하니 따로 공원(公院)을 설립하여 나이가 어리면서 총민한 자들을 뽑아 배우게 하도록 하되, 수문사(修文司)의 당상관과 낭관들이 이를 감찰하게 하자고 했다. 보빙사 일행이 돌아와 신식 학교 건립에 관한 국왕의 동의를 1884년 9월에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이 갑신정변(1884. 10)이 일어나 실현할 기회가 없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재론하게 되었다. 이를 건의한 내무부, 그리고 담당 관서로 지정된 수문사 등은 왕의 측근에서 개화의 전반을 담당한 근시직(近侍職) 부서였다.

1885년 5월 왕은 현재 군국의 일반 사무가 너무 많고 총괄하여 살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니 대궐 안에 내무부(內務府)란 이름의 1개 국(局)을 따로 설치하여 궁중 안의 사무를 겸하도록 지시한다(『고종실록』, 1885. 5. 25). 내무부는 청국 황제의 근시 부서 이름이다. 조선 군주는 10여 년 전 직접 정치에 나설 때도 경복궁에 거처이자 집무 공간으로 '궁 안의 궁'을 새로 짓게 하고 그 이름을 북경 자금성 안의 전각 이름인 건청궁(乾淸宮)이라고 붙였다. 내무부 설립은 두 차례의 정변을 겪은 뒤 청국의 정치적 압박에 대처하면서 군주 중심의 개화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그런데 내무부는 왕의 지시 후 해를 넘겨 1886년 6월 26일에서야 산하에 수문사(修文司), 농무사(農務司), 군무사(軍務司), 전헌사(典憲司) 등 4개의 부서를 두었다. 내무부의 위상은 전래의 승정원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림 6] 『육영공원등록』의 표지와 첫면

과 마찬가지로 근시 관부이지만 6조 체제가 아니라 당시 개화 시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수문(외교), 농무, 군무, 전헌 등의 4국 체제로 구성된 차이가 있었다. 내무부의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육영공원 설립도 구체적으로 건의되어 수문사가 이 일을 주관하게 되었다.[4]

수문사는 외교 업무와 이에 필요한 조약 협정 등의 문서를 관장하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에 역점을 둘 새 교육기관의 주관 부서가 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어 7월 11일 왕은 "육영공원(育英公院) 어학(語學)을 이제 시작하여 사람을 수용해야 하겠으니, 학도들을 내외 아문의 당상관과 낭청(郎廳)의 아들·사위·아우·조카·친척 가운데서 감당할 만한 사람을 선발하여 추천하도록 분부하라"고 한다(『고종실록』, 1886. 7. 11). 7월 28일에는 다시 육영공원에서 앞으로 교육을 시작[設學]해야 하므로 수문사 당상관은 총리대신에게 가서 토의하여 절목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지시한다(『고종실록』, 1886. 7. 28). 나흘 후인 8월 1일에 내무부는 그 결과를 〈육영공원설학절목(育英公院設學節目)〉이란 제목으로 올렸다(『고종실록』, 1886. 8. 1). 이 절목은 새로 세우는 육영공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미국인 교사 3명과

4 『육영공원등록』과 『고종실록』의 날짜에 차이가 있다. 6월 17일은 4개 부서를 두었다는 실록의 6월 26일보다 11일이 앞선다. 착오로 보인다.

의논하여 만들었다. 이를 내용 중심으로 번안하여 옮기면 아래와 같다(『고종실록』, 『일성록』의 해당 날짜에 함께 실려 있다).

〈육영공원설학절목〉(1886. 8. 1)

1. '육영공원(育英公院)'이라 부르고, 내무부 수문사 당상관이 주관한다. 당상은 하루 건너, 주사는 매일 출근한다.
2. 외국인 3명을 초빙하여 '교사(敎師)'라고 부르며 가르치는 일을 전적으로 맡긴다. 외국의 말과 글을 이미 배워 잘 아는 사람을 따로 선발하여 교사가 명령하는 대로 도와주는 자를 '교습(敎習)'이라고 한다.
3. 좌원(左院)과 우원(右院)을 설립하여 각각 학생을 충원하여 매일 공부한다.
4. 별도로 과거 급제 출신의 7품 이하 관료로서 나이 젊고 원문(原文)에 밝은 문벌 있는 집안의 재능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10명을 한정해서 좌원(左院)에 넣어 공부하게 한다. 한문이나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같은 것은 본래 시종여일하게 그만둘 수 없다. 또 서양어도 부지런히 공부하며 중단함이 없어야 한다. 혹 벼슬에 임명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장 없이 왕래하게 한다. 설사 품계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졸업하기 전에는 그만 둘 수 없다. 매일 묘시(卯時, 오전 7시)에 출근했다가 신시(申時, 오후 6시)에 퇴근하게 하되 공부하는 시간은 일체 우원(右院)의 규정과 같이 한다.
5. 재주가 있고 똑똑하며 나이 15살부터 20살까지 20명을 선발하여 우원에 넣어 공부하게 한다.
6. 매달 6,000냥(兩)씩 호조(戶曹)와 선혜청(宣惠廳)에서 절반씩 나누어서 원내(院內)의 필요한 경비로 쓴다.
7. 공부할 때는 전심전력하여 공부하게 할 것이며 산만하게 떠들거나 시간을 틈타서 하는 잡된 놀음은 허락하지 않는다. 부모가 앓거나 선친의 제사와 실지로 자신이 병이 든 이외에 무슨 일을 핑계대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처벌하되 고치지 않는 사람은 내쫓도록 한다.
8. 졸업하기 전에는 언제나 공원에 있게 한다.
9. 월과(月課), 계고(季考), 세시(歲時), 대고(大考)로 나누어서 성적을 매긴다. 월과와 계고는 매달 마지막, 세시는 12월, 대고는 3년마다 거행한다.
10. 월과와 계고는 해당 관청의 당상과 교사가 주관하여 과장(科場, 시험)을 감독하

고, 세시는 내무부 독판(內務府督辦)과 해당 관청의 당상과 교사가 주관하여 과장을 감독하고, 대고는 총리대신과 내무독판, 해당 관청의 당상과 교사가 과장을 감독한다.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골라서 보고하고 벼슬을 준다.

11. 월과와 계고 시험에서 우수한 자는 종이·붓·먹·책 등으로 상을 준다.
12. 방성(房星), 허성(虛星), 묘성(昴星)의 날을 만나게 되면 하루 전 오후부터 당일까지 휴가를 준다(대체로 일요일에 해당한다). 또한, 명절에는—정월 보름 전과 한식, 추석 전후에 각각 1일—휴가를 준다. 성절(聖節)—2월 8일, 7월 25일, 9월 25일, 12월 6일—이 되면 휴가를 주고, 별도로 서양 달력의 휴일—즉 서력 1월 1일, 2월 22일, 7월 4일, 11월 20일—에도 휴가를 준다. 섣달(12월 25일부터 30일까지)과 무더운 때(초복부터 말복까지) 방학(放學)을 한다.
13. 매일 학습하는 차례(每日學習次第)는 첫째, 독서, 둘째, 습자, 셋째, 글자 쓰는 법 배우기, 넷째, 셈 배우기, 다섯째, 익힌 셈법 연습하기, 여섯째, 지리, 일곱째, 문법 배우기다. 초학을 졸업한 후에 배우는 것은 첫째, 대산법(大算法), 둘째, 각국의 언어, 셋째, 여러 가지 배운 법을 빨리 쉽게 깨닫기(諸般學法 捷經易覺者), 넷째, 만물의 이치를 이해하기[格致萬物: 의학·농리(農理)·지리·천문·기기(機器)], 다섯째, 각국 역사, 여섯째, 정치와 각국 조약법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사를 쓰는 전술(富國用兵之術), 금수초목(禽戰草木, 생물)으로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육영공원은 영어 등의 외국어뿐만 아니라 서양의 신학문을 배우는 3년 과정의 정규 학교다. 직무가 있는 현직 관리들이 참여하는 좌원(1886년 14명, 1887년 6명)과 15~20세의 연소 총명한 자제들을 뽑아 가르치는 우원(1886년 21명, 1887년 14명, 1889년 57명) 두 과정으로 나누어 3년간 배우도록 했다. 좌원 학원(學員 - 학생의 뜻)은 직무 관계로 2일 또는 3일에 한 번씩 출석하도록 하지만, 우원은 매일 출석을 요구한다. 그리고 휴일과 방학에 대한 규정도 엄밀하게 설정되었다. 학업 성과에 대해서는 매월(월과), 3개월(계고), 1년(세시), 3년(대고) 단위의 시험 과정이 설정되고, 우수자에 대한 상급이 정해져 있다. 시험은 해당 관서의 당상관과 교사가 감독하되, 3년 졸업 시험 때는 총리대신과 내무부 독판도 참여하게 하고 우수자는 선정해서 벼슬을 주었다.

육영공원의 교육은 외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어 등 외국어가 일차적이었지만 〈절목〉의 끝에 제시된 '매일 학습 차제(차례)'는 두 단계로 나누어 있다. 첫

과정에서는 언어의 읽기, 쓰기, 문법과 수학, 지리를 배우고, 다음 과정은 대산법, 각국 언어, 여러 학문 분야의 기초지식, 의학, 농학, 지리, 천문, 기기 등의 과학, 각국 역사, 정치 및 외교 국방, 생물학 등을 가르쳤다. 이것은 거의 미국의 대학(College) 과정 과목들에 해당한다. 교사들이 이 학교를 영어로 칼리지(College)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교육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이광린, 1963, 1977; Gifford, 1896: 285).

육영공원은 일차적으로 서양 열강과의 새로운 국제관계 추진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란 특별한 목적 아래 설립되었다. 매월 지급되는 경비 6,000냥은 다른 관서와 비교하면 특별한 지원이었다. 성균관의 동상(東庠), 서상(西庠)에 식량을 공급하지 못해 머리 흰 진사(進士)들의 얼굴에 굶주린 빛이 감돌고 봄·가을 제사 때 재실(齋室)이 모두 무너져서 오모(烏帽)의 제관(祭官)들이 몸 붙일 곳을 찾느라 겨를이 없는 반면, 육영공원과 같은 곳은 대청이 환하고 방이 화려하며 교사에게 녹봉을 주고 교원들에게 음식을 준다고 비교되었다(『고종실록』, 1887. 3. 29). 한편, 육영공원 학원들의 출석은 그만큼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1년이 넘을 무렵 왕은 학원을 계속 선발할 뜻을 밝히면서 어학에 대한 지식을 넓히라고 주문하며(『고종실록』, 1887. 8. 28) 전강(殿講)을 지시하고 미국인 교사들을 불러 만났다(『고종실록』, 1888. 4. 11, 12, 13).

3년째로 접어든 1889년(고종 26년) 3월에는 학도들의 공부 분위기가 태만해지고, 또 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에 대한 주의를 내리면서 좌원 학원은 지난해 3일에 한 번씩 출석하게 한 것을 격일로 바꾸고 출석이 나쁘면 부형이나 천거인에게 경고를 내리겠다고 주의를 주었다(『고종실록』, 1889. 3. 20). 그해는 3년 과정이 끝나는 시점이었다. 왕은 육영공원에 시강(侍講)을 하도록 요구한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왕이 직접 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입시하는 학원(학도)들의 복장을 과거 출신(합격자)의 모자와 띠 차림으로 하도록 하고 이를 정식으로 삼았다(『고종실록』, 1889. 5. 21). 육영공원 학도들이 유학 공부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언어와 지식을 함양하고 있었으므로 군주는 과정 수료자들을 과거 급제자로 대우하도록 한 조치다. 다음 날 육영공원 당상이 교사를 데리고 어전으로 입시하여 학원(학생)들에게 시강을 하도록 했다. 시강은 하루에 끝나지 않고 24일까지 3일간 이어졌으며, 왕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 육영공원을 설치한 데에는 목적이 있으며, 3년 동안 학업을 전공하는 것은 일찍이 정식(定式)이 있다. 지금 4년 만에 다시 시험을 쳐보니, 성적이 우수하고 나쁘기가 각각 다르므로 장려하고 선발하는 뜻을 보여주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 들어온 학도나 종전부터 있던 학도를 막론하고 비교시험을 보여 조(粗) 이상 한 사람들은 응제시를 보게 하여 인재를 뽑도록 하라(『고종실록』, 1889. 5. 24).

시강에서는 강의뿐만 아니라 3년 과정을 마칠 때 총리대신이 임석하여 치르도록 규정한 대고가 이루어진 듯하다. 육영공원 과정 시험에서 조(粗, 중간이란 뜻) 이상의 성적을 받은 자들에게 응제시를 볼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서양 학문을 공부한 다음 그것에 근거한 제술시를 보게 한 것이다. 이 응제시는 6월 2일 경무대(景武臺)에서 왕세자가 시좌한 상태에서 거행되어 시(詩) 부문에서 2명[유학(幼學) 신대균(申大均), 진사(進士) 서상훈(徐相勳)]이 합격점을 받아 전시(殿試)에 직부하도록 하고, 유학의 신분인 4명은 내외 관청의 주사(主事)로 임명하고, 다른 5명의 유학은 진사 방목(榜目) 끝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생원, 진사가 아니더라도 출석일수를 채운 합격자들은 과거 대과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고종실록』, 1889. 6. 2). 이 평가는 곧 육영공원을 성균관과 동급의 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종래 육영공원은 실패한 교육기관으로 규정하다시피 했다. 즉, 현직 관리까지 섞인 학원의 구성이 학습 태만으로 이어져 미국인 교사들의 교육 열의가 식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가 1894년 영어학교로 전환하여 어학을 가르치는 외국어 학교가 되어버렸다고 평가되었다(이광린, 1963; 김경미, 1999). 하지만 최근 육영공원의 학생이던 박경원(朴經遠)이 남긴 『육영공원일록』의 분석 결과는 반대로 학생의 학습 열의가 교사의 근무 자세를 능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김경용, 2010). 실제로 후술하듯이 육영공원 출신은 신식 산업 관련 기관이나 외교관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인 사람들이 많았다. 1892년(고종 29) 3월 국왕은 "육영공원에서 학도들이 익힌 것이 점점 성과가 있다"고 하고, 한 번도 직무에서 벗어나지 않은 교사 벙커[房巨]에 대해 성실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해설하여 여러 해 동안에 공로를 나타냈으니 매우 가상한 일이이므로 특별히 호조참의(戶曹參議)의 직함을 제수하라고 한다(『고종실록』, 1892. 3. 24).

육영공원은 서양 열강과 새로운 국제관계 형성 과정에서 미국의 대학 교육제

도를 전통적인 고등교육 학습 소양을 가진 현직 관리 또는 사대부 자제 등 학습 조건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근대 관립 교육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과거에는 고종 시대를 부정적으로 인식해 이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했으면서도 제대로 그 의의를 규정하지 못했다. 미국식 '칼리지' 교육과정으로 평가해야 할 이 최초의 관립 고등교육기관은, 본 서의 부록 편에 수록된 〈육영공원 학원 주요 경력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대 외교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들을 다수 배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육영공원의 이름은 1894년 7월 18일 일본 공사관의 압력 아래 발족한 군국기무처에서 올린 의안(議案)과 각 부, 각 아문 소속 관청 명세를 최후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 군국기무처 의안에서 육영공원은 관상감, 사역원 등과 함께 학무아문(學務衙門)의 산하 기관으로 열거되었다. 육영공원이 1894년에 발족하는 외국어 학교들 가운데 영어학교로 전환되었다는 연구도 있다. 1896년 음력 11월 21일 독립문 기공식에 관한 『독립신문』의 보도는 회장 안경수, 한성판윤 이채연, 외부대신 이완용, 피제손 씨 등이 연설한 뒤, "배재학당 학원들이 진보가(進步歌)를 부르고 육영공원 학원들이 체조연습을 끝낸 뒤 회석(會席)을 본회 독립관(獨立館)으로 옮겨 다과로 내빈을 향연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육영공원은 어학교로 개편되지 않고 1896년 말에도 그대로 존속한 것이 된다. 그러나 존속으로 보기에는 후속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이 기사는 1896년 현재 육영공원 학원이던 자들이 배재학당 학생들과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1894년 7월 25일 일본이 청국과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의 대원군을 이용하여 군국기무처를 세워 '내정개혁'을 강요했다. 이때 일본은 조선 정부가 자립적으로 추진해온 개화, 근대화의 시책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교육 면에서는 오히려 조선 자체의 고등 인재 양성을 저지하고 관비로 일본의 교육기관에 데려가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육영공원은 존속하기 어려웠다. 육영공원이 제도적으로 없어지는 시점인 1895년 2월에 왕과 왕비는 선교사 언더우드 부처에게 비밀리에 선교사 이름으로 대학을 세워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이 내정간섭 차원에서 육영공원의 폐지를 압박해오자 대안으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이에 대신하는 더 큰 규모의 새로운 고등교육기관, 즉 대학을 설립하려고 한 것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 이것이 같은 해 5월에 발족하는 법관양성소, 한성사

범학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앞으로 더 천착되어야 하겠지만 조선왕조 근대 고등교육기관은 미국 제도의 도입에 방향을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지금까지 살폈듯이 조선 정부는 미국에 앞서 일본의 교육제도를 먼저 조사했지만 실제 시행에서는 일본 것은 거의 따르지 않았다. 지금까지 근대 교육사에서 지나치게 일본의 영향을 상정하거나 의식했다면 불식해야 마땅하다.

4) 『한성순보』, 『한성주보』의 서양 대학에 관한 정보

1882년 6월 임오군란이 일어나 일본이 피해국의 입장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제물포조약〉(7월 17일)이 체결된 뒤 8월 9일 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 도쿄로 갔다. 이후 앞에서 서술했듯이 1883년 4월 초에 미국 푸트 공사가 비준서를 가지고 서울에 도착하고, 7월에는 보빙사 일행이 미국으로 떠났다. 한 달 뒤인 8월 17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내에 박문국(博文局)을 설치하여 신문을 발간하도록 한다. 박문국 초대 총재에 외아문 독판인 민영목(閔泳穆), 부총재에 김만식(金晩植)이 임명되고 그해 10월 1일에 『한성순보(漢城旬報)』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실무진으로는 부사과(副司果) 김인식(金寅植)이 주사, 유학 장박(張博)·오용묵(吳容默)·김기준(金基俊) 등이 사사(司事)로 임명되고, 일본인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가 편수를 담당했다(『고종실록』, 1885. 3. 28). 이노우에 가쿠고로의 참여는 제3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던 박영효가 건의하여 『한성순보』가 창간되었다는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박영효가 도쿄에 갔을 때 게이오의숙(慶應義塾)과 『지지신보(時事新報)』를 운영하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를 만났고, 그가 문하의 이노우에를 추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노우에는 어디까지나 박문국의 편수를 담당한 것이지 『한성순보』의 편집을 주관한 것은 아니다. 이 신문은 어디까지나 조선 정부가 개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서양의 신문물에 대한 정보 입수와 공유의 필요로 발간한 것이었다. 『한성순보』는 1884년 10월 17일 갑신정변으로 박문국이 불타서 10월 19일부터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1886년 1월 25일 『한성주보(漢城週報)』로 이름을 바꾸어 다시 발간되었다. 그러나 1884년 2월 최초의 민간 인쇄소인 광인사(廣印社)에서 인쇄하다가, 1888년 6월 6일 박문국이 재정난으로 어려워져 통리교섭통상

사무아문이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고종실록』 1886. 6. 6) 신문의 간행도 중단되고 말았다.

기존의 조보(朝報)는 어디까지나 조정 각 부서의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외국의 사정을 알 수는 없었다.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당연히 지식과 정보를 전하는 매체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한성순보』나 『한성주보』는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발간했다. 『한성순보』, 『한성주보』의 기사 출처에 대한 한 연구는 약 70퍼센트가 청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 통신 등이 출처이며 일본에서 얻은 정보는 20퍼센트 안팎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한보람, 2005; 2006). 당시 청국은 양무운동이 진행된 결과 상하이 중심으로 부설된 해저 케이블을 통해 구미 지역의 정보를 담은 각종 매체를 접할 수 있었다. 『한성순보』가 한문 문장인 반면, 『한성주보』는 국·한문 혼용체로 기사가 작성되었다. 두 신문이 1880년대 조선 정부의 서양 문물에 관한 정보원이었다면 이 신문들에 실린 서양 교육제도에 대한 보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성순보』 1884년 3월 18일 자에 「학교(學校)」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서양 각국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학교를 세워 국민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법은 대략 서로 같다면서 대학·중학·소학 3등 학교를 소개했다. 소학교는 마을 단위로 세우되 인구비로 한 고을에 2, 3개를 세우기도 하며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5세에서 13세까지 학령에 따라 취학하는 것을 설명하고 재정에 관해서도 세금, 기부금, 사례금, 부·현·정부의 보조금 등이 있음을 소개했다. 중학교는 부·현에서 각 2, 3개를 설치하여 14세 이상 보통학교 졸업자가 취학하고, 농업·공업·상업·양어(洋語, 영어)의 분과가 있어 각각 한 가지를 전공하여 생업에 도움을 얻는다고 했다. 대학교는 대개 나라의 수도에 세우는데, 이학(理學)·화학·법학·의학 등의 과가 있고, 치국경세(治國經世)에 뜻을 둔 총명한 자들이 입학하며 국립학교로 소학교 교사를 배출하는 사범학교를 소개했다. 이밖에 가난하여 취학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부·현 정부의 지원, 야간학교, 폐인학교(장애자 학교), 감옥 내 학교까지 전했다. 주목되는 것은 재정 지원에 따른 학교 구분이다. 즉, 국고의 재정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학교는 관립학교, 공공기관의 재정 충당은 공립학교,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 등의 구분이 있지만, 모두 문부성에서 통괄해서 감독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일반적 차원의 소개에 이어 구체적으로 프러시아[普魯士國]의 학제

를 소개했다. 프러시아에서는 소학교 운영에 위원회가 주체가 되고 학부형들이 도회지와 시골에 따라 내는 돈의 액수가 다른 점, 빈곤한 자는 전액 면제 등 차등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과(科)에 대해서는 소학교 제1, 상민학교(商民學校) 제2, 양어학교(洋語學校) 제3, 사범학교 제4, 중학교 제5, 공업학교 제6, 건축학교 제7, 광산학교 제8, 농업학교 제9, 수의학교 제10, 대학교 제11을 제시했다. 즉, 제1의 소학교 다음, 제2에서 제10까지의 직업학교가 소개된 다음, 제11의 대학교로 나뉘는 것으로 소개했다. 여기서 제2~10의 직업 교육 학교는 앞에서는 중학교로 구분되었다. 소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과목으로 ① 독서, ② 습자, ③ 지리서(地理書) 해제(楷梯, 입문), ④ 일이만사기(日耳曼史記, 독일역사), ⑤ 가감승제(加減乘除), ⑥ 보통 지리서, ⑦ 세계 각국 사기(史記), ⑧ 분수술(分數術), ⑨ 비례술(比例術), ⑩ 급수(級數, 수열) 등이 열거되었다.

글을 쓴 이는 끝에 서양의 학제를 보고 서양의 부강함이 인재를 양성함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우리도 "지금 서양의 방법대로 하여 각각 그 업(業)을 배워 능력에 따라 직분을 나누면, 준재들이 날로 창성하여 정치가 밝아지고 우리도(道)가 광명해질 것은 날짜를 정해 놓고 기약할 수 있으며, 각종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이 공을 들여야 하며, 나라의 부국강병은 금방 이루어질 것이니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겠는가?"라고 마무리 지었다.

『한성주보』 1886년 8월 16일 자의 「대학(大學) 학구(學區)」에서는 프랑스의 학구제를 소개했다. 즉, 전국을 17개의 대학구(大學區)로 나누어 1구마다 여러 주(州)의 학무를 겸해서 관리하는데, 각 학구는 대학구장이 총리하고, 각 주에는 모두 감독관 1명을 두어서 대학구장의 부(副)로 삼는다. 다만 파리부(府)만은 문부대신이 대학구장이 되고, 별도로 부구장(副區長) 1명을 둔다고 했다. 각 대학구 아래 초등, 중등, 상등의 학교가 있는 관계를 설명했다. 여기서의 대학구는 물론 오늘의 교육청 단위에 비견되는 것으로, 앞서 1880년대 이전 일본에서 비슷한 제도가 채택되었다.

1886년 1월 25일 자의 「학정을 논함[論學政] 제1」은 교화(敎化)의 관점에서 학교 제도를 논했다. 조선이 말세에 와서 학정이 해이하여 학교가 흥기되지 못한 가운데 선비들이 격물치지의 방법에 깜깜하여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은 데 반해, 현재 구주의 여러 나라가 부강을 과시하는 것은 교화를 국가 통치의 요점으로 삼은 때문이라고 논했다. 그런 다음, 앞에서 예시한 것과 비슷한 소학교, 중학

교, 대학교 교육과정의 차이를 지적하고 '우리 주상(主上)'은 "군사(君師)의 덕을 지니셨고, 신하들도 모두 적격자들이어서 보필에 미진한 점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앞날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 … 그리하여 모두들 서구의 제도를 모방하여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세상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고 또한 먹고사는 것[資生]의 기본이 되게 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지극히 어리석은 하민(下民)이라도 모두 기꺼이 달려가 취학하게 될 것이니, 이 아니 성대한 일인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해외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화친을 맺고 있다. 따라서 화친하면 서로 상리(商利)를 다투게 되고 전쟁이 나면 병리(兵利)를 다투게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데리고 그들과 경쟁하여 승부를 다투기는 참으로 곤란한 것이다. 아, 학정이 1개월 신장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국운이 한 걸음 물러나게 되고 5개월간 신장되지 않으면 다섯 걸음 퇴보하게 되는 것이다. 1~2년이 지나도록 끝내 신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오늘날 해야 할 급무는 학정을 신장시키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 학교를 널리 설립하여 옛사람이 교화하던 도리를 회복시키고 겸하여 농·공·상·병·의(醫) 등의 기술을 연구하게 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 앞으로 주보(週報)의 호수에 따라 이에 대해 상세히 논하겠다(강조는 필자; 『한성주보』, 1886. 1. 25, 「학정을 논함[論學政] 제1」).

위 논설이 나온 1886년 1월 하순에는 서구식 학교로는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이 설립되어 있었다. 육영공원은 아직 미국 공사관을 통해 교사 초빙을 교섭하던 중이었다. 글을 쓴 이는 군주가 군사(君師)[5]의 덕을 갖추고 근신들도 보필을 잘하는 이들을 두고 있으므로 앞으로 새로운 서양식 교육제도의 보급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미 조약을 통해 외국과 교류하는 상황이므로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학정을 진작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았으며, 서양의 학정 소개를 위해 앞으로 주보는 지면을 더 할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위 약속은 2월 1일, 15일 자에서 「학정을 논함」 제2, 제3으로 이어졌다. 1886

5 임금으로서 수기치인의 경지가 높다는 뜻 - 필자.

년 2월 1일 자 「학정을 논함 제2」에서는 우리의 전통 학문과 서양 학문의 차이를 논했다. 먼저 백성 교화의 방법은 백성으로 하여금 일정한 산업을 가지게 하는데 달려 있어서 지금까지도 농업·상업(桑業)·공업·상업 등을 통해 각자가 자신의 업을 가지고 재화를 증식시켜 이용후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논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의 열국들이 천하 부강을 독점하는 것은 산업과 재화 증식에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해내는 데 힘쓴 결과라고 지적했다.

농경으로 말하면 우리는 인력을 사용하는데 저들은 기력(汽力)을 사용하며, 우리는 퇴비나 인비를 쓰는데 저들은 화학비료를 만들어 쓴다는 것이다. 잠상으로 말하면 우리는 손을 사용하는데 저들은 기계를 사용하고, 공장(工匠)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람의 기교를 사용하는데 저들은 기계의 기교를 사용하며, 상판(商販)으로 말하면 우리는 단독으로 운영하는데 저들은 회사를 설립한다고 차이를 지적했다. 그리고 주거(舟車)·창포(鎗礮)·전광(電鑛)·화폐에 이르기까지 모두 저들은 공교한데 우리는 졸렬하고, 저들은 빠른데 우리는 느리고, 저들은 예리한데 우리는 무디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저들의 장점을 취해다가 우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의 단점을 버리고 저들의 장점으로 나아가 그것으로 산업을 제정하고 재화를 증식시켜 날로 부강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첫째 할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람이 가난하면 이웃집에 가서 장점을 취해 오면서도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흔히 우리의 장점은 인의(仁義)의 도로서 저들의 기교나 기술은 취할 것이 못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부당한 말이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에서 시를 짓고 글을 지을 적에 옛사람이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을 창의라 하고, 격조를 옛사람의 그것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모방이라고 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화륜이나 배와 차 같은 기기를 창조하고, 각국이 이를 모방하는 것 또한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민(士民)은 신체의 강건함과 지식의 발달이 유럽 사람에게 그렇게 뒤지지 않으니, 정신을 모아 강구하여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며, 서구 사람이 재화를 증식시킨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땅에서 솟아난 것도, 귀신이 가져다 준 것도 아니고 오직 인공의 노력 여하에서 생긴 것이므로,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계책을 세우자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어린이는 학교에 입학시켜 다 같이 재화 증식하는 기술에 통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월 15일 자의 「학정을 논함 제3」에서 우리나라는 성명(性命), 의리의 학문은 완비되었다 할 만하지만 전곡(錢穀)·갑병(甲兵)의 기술과 농·공·상의 학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정을 세우고 학문의 종류를 구별하여 서로 혼동됨이 없이 성취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서구의 각급 학교의 학문 종류를 여럿 소개했다. 이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1. 유럽 소학교 교과 사례
   1) 소학교(小學校) 14문(門): 학문(學文)·습자(習字)·가감승제(加減乘除)·지리초보(地理初步)·세계지략(世界誌略)·생물초보(生物初步)·본국사략(本國史略)·각국사략(各國史略)·비례산(比例算)·이식산(利息算)·급수산(級數算)·인의학초보(仁義學初步)·농공상등학대의(農工商等學大意)·화학대의(畵學大意)
   2) 대학(大學)·중학(中學): 학교가 높아질수록 학업도 복잡해짐.

2. 일본 직공학교(職工學校) 교과 사례
   1) 1학년 8문(門): 대수학·대수용법(對數用法)·기하학(幾何學)·삼각술(三角術)·물리학·화학·화학(畵學)·화법기하학(畵法幾何學)
   2) 3학년: 화학공예(化學工藝)와 기계공예(機械工藝) 중 선택
      (1) 화학공예(化學工藝) 11문(門): 무기화학·유기화학·분석화학·응용화학·중학(重學)·화학(畵學)·직공경제학(職工經濟學)·부기학(簿記學)·실지강습(實地講習)·수신학(修身學)
      (2) 기계공예(器械工藝) 13문(門): 수학·물질강약론(物質强弱論)·수조공구론(手操工具論)·기교공구론(機巧工具論)·발동기론(發動機論)·중학·화학(畵學)·제조소용기계론(製造所用器械論)·공장용도(工場用圖)·직공경제론(職工經濟論)·수신학·부기학·실지강습

이 논설은 기술교육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직공학교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의 대학·중학·소학에서 모두 본국의 문자와 언어로 가르치는 점을 유의한 것은 매우 주목된다. 즉, 그들의 글자는 26자인데 자모가 상련(相連)하여 단어를 만들고, 나뉘고 합침[分合]에 따라 소리가 달리 생기는 것이 우리나라

의 언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를 설립하여 의당 언문으로 학생들을 교습시킬 것을 역설했다. 공맹 성현의 책에서부터 유럽인의 식화술(食貨術)에 이르기까지 모두 언문으로 번역해 가르쳐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번역하는 기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끝으로 어떤 서양인이 말하기를 "조선에 그 나라 글자가 있는데 동양 각국의 글자 가운데 가장 간편하다. 만약 조선의 사민(士民)들이 그 나라의 글자를 이용하여 모두 그 편의함을 채득한다면 정치와 학정이 틀림없이 동양에서 으뜸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이상 『한성순보』, 『한성주보』의 교육 관계 논설들은 프러시아, 프랑스 등 유럽의 학교제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기술교육, 즉 전문학교 과정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다. 성명, 의리의 형이상학은 조선이 오랫동안 닦아온 것이므로 그보다 기술에서 훨씬 뒤진 점에 대한 배려가 크다. 전통적인 이용후생의 도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실현을 위한 일대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유럽의 새로운 기술들을 시 짓기의 창의에 비견하고 후학들이 선현들의 좋은 시구를 모방해서 쓰듯이 서구의 새로운 기술들을 '모방'하는 것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직설했다. 이는 곧 일대 지적 전환을 뜻한다. 나아가 교육 수단으로 한문이 아니라 언문(한글)을 택하면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언문으로 번역하는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크게 일으킬 것을 제안한 점은 올바른 방향 정립이다. 요컨대 1880년대 조선의 근대 교육제도의 확립 방향은 미국과 유럽에서 모범을 구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은 주목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이 무렵 일본은 제국의 팽창을 위해 교육제도 전체를 국가주의로 바꾸는 데 전력을 쏟고 있었다.

제3절 근대 한국을 제어한 일본제국의 침략주의 실체

1) 메이지 번벌 정권과 천황주의: '대일본국가헌법'(1889)의 성립

(1) 메이지 유신과 조슈, 사쓰마 번벌 세력의 형성

일본은 1853년 페리 제독의 내항 이후 서양의 열강으로부터 개국을 요구받는다. 당시 도쿠가와 막부는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존왕양이'를 기치로 내세워 이에 반대하는 번들이 있었다. 조슈(長州), 사쓰마(薩摩), 도사(土佐) 등이 대표적인 번이다. 이들은 1600년 세키가하라(關ヶ霞)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동군(東軍)과 대결하다가 패한 서군(西軍)에 속하는 번들의 후예다. 도쿠가와 막부는 이 대항자들을 새 막부 체제에서 도자마 다이묘(外樣大名)로 따로 분류하여 막부 정치에 개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서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의 가문을 그의 사후에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으며,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그 후예들은 조선 · 대한제국과의 관계에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못 이룬 꿈을 자신들이 실현시키겠다는 침략주의 의식이 강했다.

1658년에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 체결을 계기로 존왕양이 파는 막부에 거세게 반발했다. 막부가 국가 중대사를 천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시켰다고 비난, 성토했다. 이에 막부의 지도자들은 공무합체(公武合體), 즉 막부[公]와 유력한 번[雄藩, 武]이 함께 의사를 결정한다는 타협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조슈 번 등의 속뜻은 막부 타도에 있었으므로 공무합체는 해결책이 못 되었다. 막부는 반대세력의 중심인 조슈 번 정벌에 나서 성공했지만 1866년 '삿조(薩長) 연합'이 이루어지고, 제2차 조슈 정벌이 실패하면서 오히려 수세에 몰렸다. 1867년 1월 고메이(孝明) 천황이 '돌연히' 사망했다. 이에 둘째아들이 14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메이지(明治) 시대가 시작되었다.

메이지 천황은 1867년 10월 14일 자로 사쓰마, 조슈 측에 '막부 타도의 밀칙'을 내렸다. 이것은 막부의 공직[公家]을 띤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사쓰마 번의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와 오쿠보 도시미쓰(大久保利通) 등이 합작하여 성사

시킨 것으로 알려진다. 같은 날 도사 번 측에서 천황에게 대정봉환(大政奉還), 통치권을 천황에게 반환하라는 명령을 막부에 내려야 한다는 건의를 올렸다. 그해 12월 9일 천황은 '왕정복고(王政復古)의 대호령(大號令)'을 삿·죠 무력 토막군(討幕軍)에게 내려 존왕 파의 우세로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868년 1월 신정부군과 구막부군 사이에 이른바 보신전쟁(戊辰戰爭)이 시작되었다. 전세도 정부군에 유리하게 돌아가, 4월에 막부의 에도(江戶) 성이 점령되고 7월에 에도를 도쿄(東京)로 이름을 고쳐 천황이 교토(京都)에서 이곳으로 천도하여 막부 쇼군(將軍)의 어성(御城)을 천황의 황거(皇居)로 삼고 9월에 메이지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했다[메이지 유신]. 1869년 5월 동북쪽으로 밀린 막부군이 항복하여 보신전쟁은 끝이 났다.

신정부는 태정관(太政官) 제도를 정치의 중심으로 두었다. 수상격인 태정대신(太政大臣) 아래 7관제(1869. 윤4), 2관(官) 6성(省) 제도를 거쳐(1869. 2) 3원(院) 제도가 이루어졌다. 3원제는 정원(正院)과 좌원, 우원으로 이루어지되, 태정대신, 좌대신, 우대신, 참의(參議)의 합좌제가 국무회의 구실을 했다. 좌원은 행정, 우원은 입법을 주관하도록 입안되었지만, 좌원은 원로원(元老院)으로 바뀌고(1871. 7) 우원은 1875년에 폐지되어 산하의 각 성은 정원에 직속하는 체제로 조정되었다. 이로써 태정대신과 4명의 참의가 정사를 합의하여 처리하는 형태가 갖추어지면서 참의의 수를 늘렸다. 3원제는 1871년 7월 전국의 번(藩)을 없애고 군현제를 시행하는 '폐번치현(廢藩置縣)'의 조치와 함께 이루어진 다음, 제도적 조정을 거쳐 1885년 내각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14년간 정치의 중심을 이루었다.

초기에 막부 공가(公家) 출신의 산죠 사네토미(三條實美)가 태정대신, 우대신은 이와쿠라 도모미가 임명되고, 4명의 참의로는 기토 다카요시(木戶孝允, 조슈 출신), 사이고 다카모리(사쓰마 출신), 이다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도사 출신),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히젠(肥前) 출신] 등이 임명되었다. 참의들은 막부 타도에 적극적으로 나선 4개 번을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각기 좌장 노릇을 하는 가운데 '삿조도비(薩長土肥) 번벌'을 형성했다. 정원은 산하에 행정부처인 신지성(神祇省-敎部省), 대장성, 육군성, 해군성, 내무성, 문부성, 농상무성, 공부성, 사법성, 궁내성, 개척사 등을 두었다.

1871년에 삿조 토사(薩·長·土)의 병사들로 어친병(御親兵)이 편성되고, 도쿄부(東京府)에 경찰 조직으로서 나졸(邏卒) 제도가 도입되는 한편, 지방의 주요 거점

4곳에 진다이(鎭台: 지구 병영)를 설치했다. 천황의 경호를 위한 어친병은 이듬해에 근위병으로 이름을 고쳤다. 이 해에 나온 천황의 '징병의 조(詔)'는 앞으로 군사조직은 번 중심에서 벗어나 징병제 시행을 통해 국민병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같은 해에 '학제(學制)'가 처음으로 공포되었다. 1854년 개국 이후 막부는 서양 문물을 습득한 관리 양성을 위해 어학교육을 비롯해 신식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를 여럿 세웠다. 막부 말기의 서양학 교육은 난학(蘭學)을 근간으로 하면서 프랑스, 영국, 러시아에 대한 교육이 중요시되기 시작했다. 메이지 신정부의 '학제'는 프랑스식 자유주의 교육을 추구하고 있었다.

1873년 지방을 지키는 진다이가 여섯으로 늘고 징병령이 처음 공포되었다. 그 해에 육군경(陸軍卿)으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가쓰 요시쿠니[勝義邦, 나중에 가쓰 카이슈(勝海舟)로 개명]가 해군경(海軍卿)으로 각각 임명되었다. 조슈 출신의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육군을 맡은 것은 이후 조슈 군벌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지만, 가쓰 요시쿠니가 해군을 맡은 것은 그가 막부 해군 창설의 주역이었던 것에 대한 배려에 불과했다. 그는 태정대신 산죠나 이와쿠라처럼 막부의 공직자 출신으로 신정부에 참여했지만, 신정부의 중심인 조슈와는 노선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가쓰 요시쿠니는 요시다 쇼인의 정복주의와는 반대로 일본이 통상을 진작하여 해양국가로 발전하기를 바랐다. 그는 해군경으로서도 프랑스 자문단의 의견을 쫓아 연안 방어체제 구축에 주력하여 함대 편성 위주의 공격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았다(이런 차이로 그는 1875년 의원면직으로 신정부를 떠났다). 신정부는 그해 내무성을 설치하여 지방행정, 식산흥업, 경찰 등을 총괄했으며, 도쿄부의 나졸 제도를 바꾸어 경시청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도쿄 천도 후 5년째인 1873년 비로소 내정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

(2) 정한론 실행을 둘러싼 갈등과 내전(內戰)

신정부는 1871년에 청국과 수호조규를 체결하여 새로운 국교관계를 수립했다. 청국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황의 나라로서 청국과 대등한 국교를 수립했다. 그것은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과 같은 팽창주의 국제관에서는 반드시 수립해 두어야 할 과제였다. 그해에 류큐(硫球) 왕국을 가고시마(鹿兒島) 현에 편입시켜 청국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신정부는 항의를 외면한 채 이듬해 이곳에 류큐 번을 설치한 다음,

1874년에는 타이완에 출병하면서 청국에 류큐 포기를 압박했다. 류큐 편입과 타이완 출병은 조정에 진출한 사쓰마 출신의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가 주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존왕양이 파가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을 실천으로 옮긴 첫 걸음이었다.

이에 앞서 1869년 메이지 신정부는 조선에 사절을 보내 국교 수립을 요청했다. 청국과의 국교 수립보다 2년 앞서 조선에 새로운 국교 수립을 요청한 것은 조선이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을 적용할 우선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집정이던 흥선대원군은 이 국서가 황(皇), 칙(勅)의 문자를 사용했다고 하여 접수를 거부했다. 1873년 일본 정계에서는 조선의 이러한 태도를 일본 천황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를 응징할 정복사업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했다. 이에 참의 사이고 다카모리는 군사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과연 조선이 일본을 능멸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을 사절로 보내주기를 요청했다(煙山專太郎, 1908).

이와쿠라 견외사절단이 2년 동안 구미 시찰을 마치고 그해에 돌아왔다. 이 사절단에 참가한 조슈 출신들은 그동안 사이고 다카모리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신장된 것을 확인했다. 조슈 계열과 사이고 다카모리 사이에는 조선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부분에서 의견 충돌이 잦아졌고 사이고는 끝내 낙향을 결심했다. 1875년 9월 해군성은 조선에 운양호(雲揚號)를 보내 강화도 포격 사건을 유발했다. 운양호는 국기를 달지 않고 연안을 왕래하면서 조선 포대의 포격을 유도했다(이태진, 2002; 鈴木淳, 2002).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여 개국 요구에 유리한 입지 확보를 노렸다. 이 일련의 사태는 요시다 쇼인이 주장했던 '정한론'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1873년 당시 신정부의 정치제도는 최소한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사회적 동요는 이제 시작인 것처럼 보였다. 신정부가 발표한 징병제, 학제, 지조(地租) 개정 등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반발한 농민들은 1873년부터 대규모 반란[一揆]을 곳곳에서 일으켰다. 사족(무사)들은 사민평등, 징병제, 폐도령(廢刀令), 질록처분(秩祿處分, 사족이 번주에게 받던 녹봉을 정부가 현금 또는 공채로 일괄 지급하는 조치) 등으로 특권을 상실하게 된 데 불만을 품고 여러 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메이지 정부는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했다. 징세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입헌주의 도입에 대한 선언이 필요했다. 1875년 신정부는 천황으로 하여금 '입헌정체의 조(詔)'를 내리게 했다.

그러나 이 과제를 착수하기 전에 1877년 가고시마 현의 사족들이 참의를 사직하고 내려온 사이고 다카모리를 수령으로 하여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 이들과 정부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세이난전쟁). 반란군은 전통적인 무사들로서 정예군이었지만, 농민으로 구성된 정부군은 엄청난 전비로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여 승리했다. 50일간의 전쟁은 사이고 다카모리의 자결로 끝났다.

세이난전쟁은 막부 체제가 천황제 유신 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빚어진 대표적 내부 갈등이었다. 사이고 다카모리를 제거한 신정부 측은 전쟁 후에 그를 대표적인 정한론자로 몰았다. 사이고는 공자, 주자, 양명(陽明)을 두루 섭렵하여 유가적(儒家的) 의리론에 충실한 무사의 면모를 보였다. "도(道)가 아니면 병(兵)을 일으킬 수 없다"는 그의 유훈(遺訓)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山田済斎 編, 1939). 그가 조선이 실제로 일본을 능멸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 유훈과 상통한다. 그러나 조슈 계열이 주도하는 신정부는 그를 패퇴시킨 뒤 대표적인 정한론자로 몰았다. 구미 시찰에서 돌아온 후 신정부는 '정한(征韓)'이란 표현 대신 '대한정책(對韓政策)'이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화를 보였다. 구미 국가 어디에서도 이웃나라를 정복한다는 용어를 외교 관계에서 드러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877년 메이지 정부는 교육 부문에서 이전의 동교(東校)와 남교(南校)를 통합해 도쿄대학(東京大學)을 설립했다. 구미 시찰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존재와 비중을 실제로 보고 돌아와 취한 조치였다. 그러나 도쿄대학은 아직 내용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았다. 그후 1879년, 미국식 자유주의 교육을 따르겠다는 취지의 '교육령'을 공포했다. 이것 또한 구미시찰에서 받은 충격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1880년대에 접어들어 일본식 모형을 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교육제도에 대한 선망은 사라진다.

(3) 1880년대 내각제도 성립과 천황주의 헌법 반포

1875년 국회를 세우라는 천황의 '입헌의 조(詔)'는 세이난전쟁으로 실행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1880년 원로원이 '일본국헌안(日本國憲案)' 작성에 착수했고, 이듬해 천황은 '국회개설의 칙유'를 반포했다. 그러나 이때 설치된 국회는 농민들의 조세 부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라는 성격이 강했다. 실제로 1890년 개회 후 국회는 예산심의 기능만 부여받았을 뿐이었으며, 의원 선

출의 투표권도 유사자 층에게만 있었다.

한편 1880년대에 들어와 정국은 조슈, 사쓰마 양대 번 세력이 이끌어가는 가운데 참의(參議) 구성에 변동이 생겼다. 사쓰마를 대표한 사이고 다카모리가 반란을 일으킨 그해, 곧 1877년에 조슈의 좌장 기토 다카요시(木戸孝允)도 병사했다. 이듬해에는 사이고 다카모리와 함께 사쓰마를 대표한 오쿠보 도시미쓰가 암살되었다. 이후 사쓰마에는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가, 조슈 측에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역할이 부상했다. 기토는 생전에 이토 히로부미의 능력을 인정하여 참의의 인원이 늘어났을 때 그를 추천했다. 실제로 이토 히로부미의 정치적 능력은 기토 사후 탁월하게 발휘되어 내각제도 도입, 제국헌법 제정 등 메이지 정치사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다. 조슈 계열은 이제 이토 히로부미의 관료파와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군부파로 양분하여 경쟁 관계에 들어갔다.

18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 정국은 천황을 앞세운 국가주의의 길로 새롭게 접어들었다. 이토 히로부미의 관료파,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군부파가 형성되어 조슈 계열이 정국을 주도했다. 사쓰마 계열은 해군을 맡았지만 세이난전쟁의 탓으로 이후 조슈 번벌의 우세에 눌리는 형세를 면치 못했다. 조슈 세력은 대외정책에서 스승 요시다 쇼인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제국 일본의 실체를 만들어 갔다.

이토 히로부미는 1882~1883년간 유럽에 체류하면서 독일의 국법학자 로렌츠 폰 슈타인(Lorenz von Stein),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Rudolf von Gneist)에게 국가주의적인 독일 헌법 이론을 배웠다. 독일에서 돌아온 이토 히로부미는 1884년 제도취조국(制度取調局)을 설치하여 입헌 조사기반을 구축했다. 한편 육군의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1882년 '군인칙유'의 발포를 주관하여 천황에 대한 절대복종을 군인의 신조로 삼게 하는 한편, 1883년 징병령을 개정하여 의무 병력의 증원을 도모했다.

1885년 12월 중앙정부 조직으로 내각(內閣) 제도가 도입되었다. 내각은 총리대신(국무대신) 아래 행정부처로 9개 성(省; 외무, 내무, 대장, 육군, 해군, 사법, 문부, 농상무, 통신)을 두었다. 성은 대부분 이전의 것들이지만 태정대신을 총리대신으로 바꾸고 내각 관방실(官房室)을 두어 내각회의를 국무회의로 삼았다.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은 현역으로 임명했고 천황 보좌 기구도 이때 강화되었다. 천황을 상시보필(常侍輔弼)하는 내대신(內大臣), 황실 사무 총괄 및 화족(華族, 주로 번주와 막부 공

가 출신)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궁내대신(宮內大臣) 제도가 이때 함께 설립되었다. 초대 내각총리대신으로는 새로운 체제 수립의 주역인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되었다.

내각제도가 출범한 직후, 1886년 내각제의 첫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는 독일의 국가주의 교육체제를 모델로 하여 교육제도를 일신하는 '학교령'을 공포하고, 이어 각급 교육기관에 관한 규정으로 제국대학령, 사범학교령, 중학교령, 소학교령 등을 발포했다. 국가주의를 표방한 '학교령'은 다음 절에서 보듯이 일본제국이 나아갈 방향을 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886년 말에 총리대신 주재 아래 헌법 초안 작성이 착수되었다. 1888년 4월 30일 천황의 자문기관으로 추밀원(樞密院)이 창설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추밀원은 '중요 국무의 심의'를 본무로 하는 기관이지만 이듬해 '원로(元老)' 제도를 세워 그 원로들이 추밀원의 주체가 되었다. 이들은 국가 중대사가 생겼을 때 내각과 함께 어전회의에 참석하여 내각 대신들보다 우위의 위치에서 의견을 제출했다. 추밀원은 설립되자마자 6~7월에 헌법 초안을 심의했다.

한편 1878년 육군은 세이난전쟁의 경험을 살려 천황 직속[直隸]의 군령 통수기관으로 참모부를 설치했다. 1879년에는 10년 전 보신전쟁의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세웠던 도쿄초혼사(東京招魂社)를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로 개칭했다. 1888년 육군 조직은 지금까지의 진다이 체제를 버리고 사단(師團)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일본제국의 군사조직이 방어가 아니라 해외 출정체제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국의 모습을 일신하는 시기에 이런 전환이 시도된 것은 오랜 염원인 '정한론'의 실현을 위한 정복 전쟁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1889년 육군대신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제3대 내각총리대신이 되어 징병령을 전면 개정한 것은 해외 출정 병력을 크게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

1889년 2월 마침내 '대일본제국헌법'이 발포되었다. 7개의 편장 가운데 제1장 '천황'은 이 헌법의 성격, 곧 일본제국의 국가 구성이 천황주의란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천황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皇位)는 황실전범(皇室典範)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皇男) 자손

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①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②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천황은 신성한 존재로서, 국가의 원수로서 모든 통치권을 총람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천황은 육해공군을 통수하고 전쟁을 선언하거나 외국과의 조약 체결의 주체로 내세워졌다. 국가 운영의 세 영역인 내각(행정), 재판소(사법권), 제국의회(입법권)가 모두 천황의 예하에 편제되었다. 지금까지 살폈듯이 메이지 정부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여러 제도를 수립했다. 그 모든 제도는 '대일본제국헌법'의 완성에 따라 천황을 중심에 두고 재정리되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천황을 중심으로 집중시켜 대외 정복사업을 도모하여 일본제국의 안전과 영광을 획득하는 것이 천황 중심 체제 수립의 목표였다.

2) 국가주의 교육체제와 천황이 지배하는 새로운 '동양' 건설 표방

(1) 국가주의 교육체제 확립과 '교육칙어'(1890)

1885년 12월 내각(內閣) 제도의 도입에서부터 1889년 2월 '대일본제국헌법'의 반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제도적 변혁, 즉 '학교령'의 반포, 추밀원 제도의 도입, 사단제로의 육군 편제 개편, 국가 신도(神道)의 창설, 교육칙어 공포 등은 유신 이래 일본제국이 모색한 국가 형태의 도착점이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한 이 작업은 독일 헌법을 모델로 했다고 하지만 국가주의 성향 전반은 독일에서도 유형을 찾아보기 어려운 면이 많다. 지금까지 서양 문명 수용에서 자유주의적 성향을 띤 프랑스와 미국의 제도가 선호되었던 것과는 판이한 형세였다. 이 재편에서 교육 분야는 군사조직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모든 제도의 이행에서

국가주의적 정신교육이 강조되었다.

초대 내각에서 모리 아리노리가 문부대신으로 임명되었다. 1886년 교육제도를 일신하는 칙령으로 발포된 '학교령'은 그의 주관 아래 이루어졌다. 앞서 근대적 공교육(학교) 제도의 도입을 위해 1872년 '학제', 1879년 '교육령'이 각각 제정되었지만, 이 법령들은 큰 틀에서 학교제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학교제도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규정했다. 따라서 급속한 확충, 발전을 가져오는 효과가 없었다. 1886년에는 이전과는 달리 3월 2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제국대학령, 사범학교령, 중학교령, 소학교령, 제학교통칙(諸學校通則) 등이 상호 연관 관계 아래 잇따라 공표되었다. '학교령'은 총칭, '제국대학령'은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기관, '사범학교령'은 교원양성기관, '중학교령'은 중등교육 관련 기관을 각각 규정하고, '제학교통칙'은 관립 학교들의 학교 설비 등을 규정했다. '학교령'은 교육 전반에 대한 변혁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교육에 대한 국가 지배를 강하게 추구하는 특징을 가졌다.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는 사쓰마 번의 무사 출신으로 막부 말기에 영국으로 밀항하고, 거기서 먼저 밀항해 와 있던 '조슈 5걸'[長州五傑: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엔도 긴스케(遠藤謹助), 이토 히로부미, 야마오 요오조(山尾庸三), 이노우에 마사루(井上勝)] 등을 만났다. 그는 당초에 열성적인 구화주의자(歐化主義者)로서 신정부 초기에 외교 활동에 참여하면서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1879~1884년 영국 주재 공사로 근무하던 중 헌법 제정 자료 수집 관계로 유럽에 온 이토 히로부미를 파리에서 만나 입헌정체(立憲政體)하의 교육 형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 인연으로 1885년 12월 초대 내각 출범 때 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문부대신으로 발탁되었다. 국가주의적 교육제도의 확립은 모리 아리노리 자신이 역설하던 것이었다. 그는 "국가 장래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을 크게 주의"하여 강력한 국가 건설의 목적을 교육에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범교육, 즉 교원 양성에서부터 국가주의를 실현할 것을 지론으로 삼았다. '학교령'은 5개의 법령으로 구성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취지와 방안을 하나로 관철시키고 있었다.

메이지 신정부는 1872년 문부성의 '소학교사 교도장(小學教師教導場)' 건립의 입안에 따라 도쿄부에 '사범학교'를 처음 설립했다. 이 학교는 앞으로 전국에 설립될 교원 양성기관의 모델이 될 예정이었다. 미국인 교육자 마리온 M. 스콧(Marion McCarrell Scott)을 교사로 초빙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때에

는 미국식 실용주의 교육을 추구했다. 그러나 1886년 '학교령'의 국가주의 성향은 이와는 극히 대조적이었다. 문부성은 도쿄부 소재의 사범학교를 고등사범학교(高等師範學校)로 이름을 바꾸고, 현역 육군보병 대령인 야마가와 히로시(山川浩)를 초대 교장으로 임명했다. 이 학교는 소학교 교원 양성을 담당하는 주요 지방거점 도시의 심상(尋常)사범학교의 교장과 교원, 그리고 중등학교 교원 양성을 담당했다. '고등'사범학교의 운영은 '심상'사범학교와 함께 국가의 강력한 지배 아래 두어 국가주의적 교육 정신 구현의 중심이 되었다. 고등사범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부임한 야마가와는 충군애국(忠君愛國) 교육의 추진을 기치로 기숙사 생활부터 복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군대식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국가주의 교육은 1890년 천황의 '교육칙어' 반포로 뒷받침되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1889년 2월 반포한 대일본제국헌법은 제28조에 "일본 신민(臣民)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거나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신교(信教,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같은 해 칙령 제12호는 관립, 사립의 모든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금지했다. 헌법 제28조의 단서, 즉 "방해하지 않거나"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라는 단서의 범위가 중요했다. 칙령 제12호는 학교의 종교 교육을 금지하는 한편으로 헌법과 동시에 발족시킨 국가신도(國家神道)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초월한 교육의 기초"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가신도를 신민 교육의 기초로 삼기 위해 1890년 10월 천황의 '교육칙어(教育勅語)'가 반포되었다.

국가신도는 본래 서양 기독교의 일본 '침투'를 방어할 목적으로 준비되었지만, 구현 과정에서 종교, 정치, 교육을 하나로 묶는 기능이 부여되었다. '교육칙어'는 후술하듯이 메이지 천황의 뜻에 따라 유교의 삼강(三綱), 곧 충효사상을 교육에 실현시키는 것으로 서두를 열고 있지만(笠原英彦, 2006), 황조황종(皇祖皇宗)이 열어준 신성한 천황의 나라를 지키는 신민의 도리를 교육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요체로 삼았다. 즉, 신민은 "언제나 국헌(國憲)을 무겁게 여겨 국법을 준수해야 하며, 일단 국가에 위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의용(義勇)을 다하며 공(公)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천지와 더불어 무궁한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해야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대들은 짐의 충량한 신민이 될 뿐만 아니라 족히 그대들 선조의 유풍(遺風)을 현창(顯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는 실로 우리 황조황

종의 유훈으로 자손인 천황과 신민이 함께 준수해야 할 것들이다."라고 했다.

1890년 교육칙어가 공포된 시기에 요시다 쇼인의 고향에 그의 신사가 세워졌다. 그리고 다음해 8월 요시다 쇼인의 글을 모은 『요시다 쇼인전』 전 5권이 조슈번의 번주 출신을 비롯한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의 주관 아래 출판되었다.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교육칙어로 마무리되는 일본제국의 국가주의 표방의 중심에 요시다 쇼인의 대외 팽창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2) 새로운 '동양' 건설 위한 '동양사' 창출

'교육칙어'가 강조하는 '황조황종'은 일본 고대의 야마토 조정을 연 천황들을 가리킨다. 즉 요시다 쇼인이 『유수록』에서 조선을 신하의 나라로 복속시킨 역사의 주인공들을 뜻한다. '교육칙어'는 곧 고대 일본의 영광을 오늘의 일본제국 신민들이 천황을 받들어 다시 찾기 위해 신민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 정신을 되찾아 고대 일본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오늘의 제국의 과제라는 뜻이다. 이것은 대외 팽창주의만이 실현할 수 있는 과제로서 이를 위해 일본 천황이 지배하는 새로운 '동양'의 건설 주장이 뒤를 이었다.

메이지 유신 초기에 일본 지식인들은 서양 문명에 관한 지식의 수용과 이해에 열중했다. 이 사조를 대표하는 것이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문명개화론(文明開化論)'이었다. 막부 말기나 유신 초에 교육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나타난 프랑스의 자유주의나 미국의 실용주의에 대한 선망은 이 차원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1880년대 중·후반에 일어난 국가주의는 이 사조를 뒤엎는 큰 변혁이었다. '서양(西洋)' 심취가 초래하고 있는 일본 '실종'에 대한 우려, 단순한 '본방(本邦)' 존재 표방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제국 건설에 대한 자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본 천황이 지배하는 새로운 '동양(東洋)'이 등장했다. 이 새로운 세계로서 '동양'은 그 세계에 대한 연구에서 '동양사' 설정을 통해 출현했는데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나이토 코난(內藤湖南) 등이 '동양사' 창설의 주역들이었다. 이들은 둘 다 한학(漢學)에 소양이 깊은 가문 출신으로서 일찍이 신학문 교육의 기회도 누린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친교가 있는 사이였다.

나카 미치요(1851~1908)는 난부번[南部藩, 현 이와테 현(岩手縣) 모리오카 시(盛岡市)]의 번사 출신으로 번교(藩校)에서 수학했고, 그곳의 한학자이자 요시다 쇼인

과도 교분이 있었던 에바타 미치다카[江幡通高, 통칭 고로(梧楼)]의 양자가 되었다. 이후 양부가 나카(那珂)로 개명하면서 본인도 나카 미치요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나카 미치요는 메이지 유신 후 1872년에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생(書生)으로 게이오의숙에 입학하여 사제관계를 맺었다. 졸업 후, 후쿠자와의 추천으로 사범학교, 중학교, 파성학사[巴城学舎; 야마구치 현(山口縣) 야마구치, 하기, 이와쿠니 등지의 '변칙중학'] 등에서 교사로 근무한 뒤, 치바(千葉)사범학교, 도쿄여자사범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이후 제일고등학교, 고등사범학교의 교수가 되고, 1896년에는 (도쿄)제국대학 문과대학의 강사를 겸했다. 1894년 고등사범학교 교수 시절, 교수과목에 관한 연구 모임에서 역사과의 외국 역사를 '서양역사'와 '동양역사'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청일전쟁 시기에 있었던 이 제안이 일본에서 '동양사' 성립의 시원이 되었다(田中正美, 1992). 이후 역사 과목은 본방사(本邦史; 본국사), 동양사, 서양사 셋으로 나뉘었다.

나카 마치요의 중국사에 대한 이해는 정체성(停滯性)을 강조한 점에서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脫亞論)의 영향을 받았다. 그가 제안한 '동양사'는 중국 중심의 역사를 의미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중국은 정체의 역사에 불과하다는 전제 아래 '문명'의 일본에 의해 새로 건설될 세계로서 '동양'이 설정된 것이다. 이 '동양'에는 타이완, 조선, 만주, 몽골,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국이 포함되었다. 그는 '동양사' 교수과목 제안을 구상하면서 스승 후쿠자와에게 의견을 구해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이 무렵 후쿠자와는 서양 문명 예찬론에서 천황 중심의 국가주의에 대한 지지로 학문적 태도에 변화를 보이면서 청일전쟁이 곧 '야만'을 박멸하는 '문명'의 전쟁이라는 독전 슬로건을 앞장서서 외쳤다.

나카 미치요의 '동양사'는 치바중학교, 제일고등학교(대학예비문)에서 직접 가르쳤던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가 제국대학에 동양사학과를 개설하면서 실현되었다. 도쿄제국대학(1906년 교토에 제국대학이 설립되면서 제국대학은 '도쿄제국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은 학제와 교수 요원 충원 문제로 1904년에 지나사학과(支那史學科, 지나는 중국에 대한 비칭)가 생기고, 1910년에 이를 동양사학과로 바꾸었다. 제국대학의 이러한 지연은 어디까지나 관련 교수 요원 확보 문제의 제약에 따른 것일 뿐, 동양사란 이름 아래 연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치무라 산지로(市村瓚次郎, 1864~1947)도 전통 한학을 먼저 배우고 1883년에 개설된 도쿄대학 고전과(古典科)의 한서과(漢書課)를 나와 지나사[중국사] 연구에

업적을 세워 1897년 7월 제국대학의 조교수가 되었다. 이치무라와 시라토리는 가쿠슈인(學習院, 황족 및 화족의 자제들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지나사와 동양 여러 외국[諸外國]의 역사"를 나누어 맡아 가르치다가 나중에 (도쿄)제국대학의 동양사학과를 함께 운영했다. 이치무라가 1897년에 제국대학의 교수로 옮겨간 반면, 시라토리는 1901년부터 3년간 유럽 유학을 거쳐 1904년 귀국 후 가쿠슈인 교수로서 제국대학 사학과 교수를 겸임하다가 1911년 도쿄제국대학 교수를 본직으로 하고 가쿠슈인 교수를 겸임했다. 이와 같은 교수 요원 확보 문제 때문에 (도쿄)제국대학에 동양사학과가 생긴 것은 1910년으로 나카 미치요가 '동양사'를 창도한 지 16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반면에 1906년에 설립되는 교토제국대학에서는 창설과 동시에 동양사학과가 생겼다. 이곳에서는 나이토 코난(1866~1934)이 중심이었다.

나이토 코난[본명은 나이토 도라지로(內藤虎次郎)]은 1866년에 우고 국[羽後國, 가즈노 군(鹿角郡)]의 게마나이[毛馬內, 현 아키타 현(秋田縣) 가즈노 시]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모리오카(盛岡) 번의 지번(支藩) 소재지로서, 집안 대대로 지번의 유학(儒學)을 담당했다. 아버지는 나카 미치요의 양부와 같은 번 출신으로 서로 교분이 있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도라지로(虎次郎)로 지은 것은 요시다 쇼인을 좋아하여 그의 본명 '寅次郎'을 본뜬 것으로 전한다(寅과 虎는 모두 호랑이를 뜻함). 이것은 곧 그가 익힌 가학이 존왕사상에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모리오카 번은 나이토 도라지로가 태어난 2년 뒤 보신전쟁에서 막부군 지원 전선에 가담해 신정부의 관군에 패하여 '조정의 적'[朝敵] 취급을 받았다. 게다가 '폐번치현'으로 대부분의 옛 번의 영역은 이와테 현(岩手縣)으로 편입되면서 나이토 가문이 있던 지역은 아키다 현에 분리, 편입되었다. 나이토 코난 집안은 무사의 신분을 잃고 귀농하여, 아버지는 소학교나 광산의 사무소에 근무했다. 모리오카 번의 무사들 가운데 근왕파에 속했던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나이토 코난의 사상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나이토 코난은 요시다 쇼인 못지않은 팽창주의자로서 일본제국의 '동양사' 수립에 한 기둥을 이루었다. 도라지로(코난)는 어린 시절부터 도쿠가와 막부 말기의 국학자 라이산양(賴山陽)의 존왕양이 사상 계열의 저작이나 중국 고전을 접했으며, 문장이 뛰어났다. 20세가 되어 아키다 현의 현립 사범학교 고등사범과를 졸업하고, 소학교 교원이 되었다. 그리고 촌(村)의 신사나 절에서 이곳 출신의 국학

자이자 신도가(神道家)인 히라다 아쓰타네(平田篤胤)의 저서를 읽으면서 한편으로 루소의 『민약론』도 가까이 했다. 1877년 22세의 나이토 도라지로는 그의 문장력을 인정한 사범학교 교장의 소개장을 가지고 도쿄로 가서 불교운동 단체인 명교사(明教社)의 잡지 『명교신지(明教信誌)』의 기자가 되었다. 몇 년간 이 잡지 편찬에 종사하다가 타이완 총독부 직속의 『타이완일일신보(臺灣日日新報)』의 기자가 되었다. 1898년 도쿄로 돌아와 『만조보(万朝報)』를 거쳐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에서 건필을 휘둘렀다. 그가 타이완에 관해 쓴 신문 논설들은 총독 고타마 겐타로(兒玉源太郎)나 내무담당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등 관료 지도부보다도 더 침략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러시아에 대한 주전론(主戰論)을 펴 이름을 떨쳤다. 1899년의 중국 여행을 계기로 중국 문제에 전념하면서 역사학에 가까이 가기 시작했다(小山正明, 1988; 溝上瑛, 1992: 55).

1902, 1905년에 만주를 중심으로 한 중국 현지 시찰 때 청조사(清朝史) 관련 사적지와 사료를 조사했다. 1906년 오사카아사히신문사를 퇴사하고, 외무성 촉탁으로서 조선·만주에서의 '간도(間島) 문제'와 청조사 관련 자료 수집에 종사했다. 1909년 통감부의 '일본-청국 간 간도에 관한 협약'은 이 조사에 기초했다. 이 협약은 일본이 러일전쟁 후,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척 장소가 간도 방향으로 이동할 것에 대비한 것이었다(田中正美, 1992). 1906년 교토제국대학 문과대학이 신설되면서, 나이토는 '관학(官學)' 경력이 없는 저널리스트 출신으로는 이례적인 초청을 받아 1907년 사학과 강사가 되어 동양사 제1강좌를 담당하고, 1909년 교수가 된 이후 '교토제국대학 문화사학(文化史學)'의 기초를 세웠다. 문화사학이란 정치사보다 문헌을 통한 사상사의 추이를 중시하는 역사학을 의미한다.

나이토는 1914년 교토제국대학 동양사학과 교수로서 중국사에 대한 거대 담론으로 당송시대의 사회적 변혁을 논한 『지나론(支那論)』을 발표했다. 중국(지나)이 당나라, 송나라 때 '근세'라고 할 정도로 발전했음을 논한 것이다. 청일전쟁 때 중국을 정체론의 관점에서 '야만'으로 간주하던 것과는 판이한 학설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그는 근현대 일본 역사학을 대표하는 중국사 연구자로 평가받았다. 『지나론』은 1911년 신해혁명을 보고 구상한 것으로 중국사를 발전적으로 볼 것을 제안한, 일본 역사학에서 보기 드문 저술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중국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일본제국이 통치할 중국 사회의 발전 정도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지 중국의 정치사적 미래까지 기대하면서 제시한 것은 아니

었다. 그에게도 '지나'는 어디까지나 일본 천황이 지배해야 할 땅이었다. 그는 교토제국대학의 동양사학과 교수가 된 후, 후술하듯이 조선총독부의 '반도사' 편찬, '조선사' 편수에도 직접 간여했다. 그는 조선사, 한국사에 대해서는 고대부터 '정한론'의 차원에서 한국병합을 지지하는 논설을 발표했고, 1934년 사망할 때까지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3) 새로운 '동양' 건설의 첫 걸음 청일전쟁(1894. 7~1895. 2)

1882년 조선에서 일어난 임오군란은 일본군이 청국군의 위세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청국은 1850년대 중반부터 태평천국의 난을 비롯한 대규모 반란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군사조직이 점진적으로 발달했다. 청국 정부는 정규군이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지방의 유력자에게 임시로 군대를 징모(徵募)하여 반란을 진압하게 했다. 쩡궈판(曾國藩)의 상군(湘軍), 쭤쭝탕(左宗棠)의 초군(楚軍), 리훙장의 회군(淮軍) 등 향용(鄕勇)으로 불리는 군대들이 등장했다. 리훙장의 회군은 태평천국의 난 때 상하이에 진입하여 풍부한 재원과 최신형 무기를 확보해 병력의 근대화와 규모 확대를 동시에 이루어 난 진압에 공적을 쌓았다. 1870년대에는 리훙장 자신이 직예총독(直隸總督), 북양대신(北洋大臣)으로 취임하여 톈진으로 본거지를 옮겼다. 이후 양무운동이란 이름으로 소총과 탄약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배지역인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톈진 등지에 건설했다. 동시에 독일에서 군함을 포함한 신형 병기를 구입하고, 1885년에는 독일 군사교관을 초청하여 육군사관 양성을 위한 톈진 무비학당(武備學堂)을 세우기에 이르렀다(大谷正, 2014).

1880년 무렵 회군의 규모는 십수만 명에 달했다. 1882년 임오군란 때 조선에 파견된 우창칭(吳長慶) 부대도 회군 소속이었다. 한편 해군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창설되었다. 1870년대 초 일본이 타이완 출병과 류큐 처분을 단행하자 청국에서는 해방(海防) 문제가 제기되어 북양해군과 남양해군의 창설이 이루어져 리훙장이 북양해군을 담당했다. 예하에 팅유창(丁汝昌) 제독을 기용하여 북양해군 육성을 전담하게 했다. 1881년 독일에서 주력함으로 정원(定遠), 진원(鎭遠)을 발주했다. 7,000톤 급의 장갑함에 구경 30센티미터의 주포와 15센티미터의 부포(副砲)를 탑재한 동아시아 최초의 견함(堅艦)이었다. 이 외에도 독일, 영국에서 4척의 장갑 포함과 순양함을 발주하여 정원, 진원과 함께 대함대를 이루었다.

1882년 현재 일본의 군사력은 전반적으로 청국에 비해 크게 열세였다. 당시

육군은 상비병 1만 8,600여 명, 예비 병력 2만 7,600여 명, 총 4만 5,000여 명 정도로 회군 10여 만 명에도 못 미쳤다. 해군은 총 24척, 2만 7,000톤으로 소형 함과 구식 함이 전부였다. 이러한 열세는 팽창주의를 꿈꾸고 출범한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882년 8월 15일 참의 야마가타 아리토모(참모본부장 겸임)는 '육해군 확장에 관한 재정 상신(上申)'을 조정에 제출했다. 청국군에 대비하기 위해 해군은 군함 48척을 갖추고, 육군은 상비병 정원 4만 명으로 증원할 필요를 제기하며 이를 위한 재정 대책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조정은 이를 받아들였고, 육군과 해군은 1883~1890년 8년간 군비 확장 계획을 세워 태정대신에게 제출했다. 대장성(大藏省)은 이를 받아 주조세와 연초세를 신설하여 연간 750만 엔을 증수하고, 군함 제조비는 매년 300만 엔, 육군 병력 증원비는 매년 150만 엔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 군비 확장 예산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1885년 이후 '마쓰카타(松方) 디플레이션'[6]의 긴축정책과 충돌하여 1886년 예산 편성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는 제1차 이토 내각(1885. 12~1888. 4)에서 대장대신이 된 후,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清隆) 내각(1888. 4~1889. 12), 제1차 야마가타 아리토모 내각(1889. 12~1891. 5)에서 줄곧 대장성을 담당했다. 이토 내각에서 그는 조슈 번벌의 관료파 핵심인 총리 이토 히로부미와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의 협력을 받아 외교정책상 청국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군비 예산의 과도한 압박을 조절했다. 그러나 조슈 군부파의 중심으로서, 군비 확장의 선봉에 선 야마가타 아리토모 내각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1890년 7월 야마가타 내각 아래에서 국회가 처음 열렸다. 당시 국회는 정부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본무의 전부였다.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과 그룹은 여럿이었다. 그러나 정부 예산 심의가 본무의 거의 전부였기에 이를 놓고 민당(民党), 이당(吏党)이란 호칭이 정당 명칭보다 더 많이 쓰였다. 민당은 정부 예산에 반대 또는 비판하는 부류(야당), 이당은

6 1877년 세이난전쟁에서 메이지 신정부는 많은 군사비를 응급 지출하여 그 후유증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불환지폐가 남발되었기 때문에 후유증은 심각했다. 대장경(大藏卿)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는 불환지폐를 회수하여 소각하면서 중앙은행으로 일본은행을 세워 은(銀) 태환의 지폐를 새로 발행하는 정책을 썼다. 동시에 긴축재정을 실시해 디플레이션을 유도하여 1885년에 지폐 가치를 은화 100엔에 일치시키는 데 일단 성공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육군과 해군에서 군비 확장의 요구가 높아 이에 대응하여 연초세와 주조세 등을 신설해 국세의 증수를 단행했기 때문에 농촌이 요동을 치는 현상이 일어났다.

정부를 지지하는 부류(여당)라는 뜻으로, 지주로 구성된 자유당이 곧 민당의 중심을 이루었다. 초기에는 민당이 우세하여 정부가 곤혹을 치르기 일쑤였다.

첫 의회는 야마가타 내각의 군사 증강 예산에 대해 800만 엔 삭감을 요구하면서 부결되었다. 재편성 예산이 상정되었지만 다시 부결되어, 야마가타 총리는 600만 엔을 타협점으로 하고 의원의 일부를 매수하여 실현시켰다. 마쓰카타는 대장대신으로 총리 야마가타의 강경노선을 저지할 수 없었지만, 1891년 5월 자신이 총리로 지명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의회는 군부 측이 올린 군함 건조비 등의 군비 확장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1892년 9월 제2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 아래 해군의 군함 건조 예산은 의회에서 부결되는 난항을 거쳤지만, 1892년 11월 29일 천황의 '협화(協和)의 조칙'이 내려지면서 의회도 가결로 돌아섰다. 천황은 군함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궁정 비용을 절약하고 문무관의 봉급 일부를 내놓도록 종용했다. 천황에 대한 신민의 절대적 충성을 촉구한 '교육칙어'가 이미 공포된 가운데 천황의 조칙에 누구도 맞서지 못했다. 1894년 8월 청국과의 전쟁을 시작한 상황에서 임시의회가 대본영(大本營)이 설치된 히로시마에서 열리고, 여기서 전쟁 수행을 위한 임시 군사 예산을 단기에 가결했다. 결국 마쓰카타의 경제 논리는 군부의 팽창주의를 이기지 못했고, 여기서 빚어진 예산 불균형은 전후에 전쟁 배상금으로 처리되었다. 1894년 7월 하순에 시작된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육군 병력은 12만 3,000명(청국군 35만 명), 해군의 군함은 총 5만 9,000톤(청국 8만 5,000톤, 실제 전쟁 참가는 4만 톤)에 달했다.

일본 육군은 1883년부터 군비 확장비를 사용하여 6개의 진다이를 6개 사단(師團)으로 바꾸고 근위병을 개조한 근위사단을 더해 7개 사단의 야전군(전시 병력 약 20만 명)을 운용할 수 있는 체제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다. 1888년에 계획대로 6개 사단을 설치하고, 1892년에 근위병을 사단으로 개조한 다음 1893년에 전 사단 편성이 거의 완결되었다. 사단은 1894년 초에 평시편제(平時編制)와 전시편제(戰時編制)로 재편하여 전시에 예비역, 후비역(後備役)의 동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통수권은 천황 1인이 가지되 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 참모본부를 두었다. 참모본부는 1886년 이후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까지 아울렀고, 참모총장에는 황족이 칙명으로 임명되게 하여, 메이지 천황의 신임이 두터운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루히토(有栖川宮熾仁) 친왕이 임명되었다. 현역 최고위 참모차장으로는 육군의 가와

카미 소로쿠(川上操六)가 임명되었다.

1879년에 관서국장(管西局長)으로 부임했던 가쓰라 다로(桂太郎)는 중국 화북(華北) 일대를 시찰하고 돌아와 '투청책안(鬪淸策案)'(청국과 싸우는 책략 방안)을 작성했다. 이것은 해군이 화북의 푸저우(福州)를 공격하는 것과 함께, 육군 3개 사단이 화북의 직예성(直隸省)에 상륙하여 베이징을 공격한다는 단기 결전 구상이었다. 조슈 계열이 주도하는 번벌 정권은 1876년 조선과 국교를 수립한 지 3년이 지난 이때부터 전통적으로 조선에 영향을 끼치는 청국을 밀어내는 방략을 이미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 제일주의 체제를 새롭게 다지던 시기인 1887년 2월 오가와 마타지(小川又次)는 '대청정토책안(對淸征討策案)'을 기초했다. 오가와는 참모차장 가와카미 소로쿠의 심복으로 참모본부의 제2국장으로 재임했다. 이 계획에서는 일본 해군을 청국 해군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해군의 원호를 받아 8개 사단의 원정군을 파견하여, 6개 사단을 산해관 부근에 상륙시키고 베이징을 공략, 나머지 2개 사단을 창장[長江, 양쯔 강(揚子江)] 연안에 파견하여 남쪽 병력의 북상을 저지한다는 전략이었다. 이것은 참모본부가 가쓰라의 '투청책안'에 더하여 청국 본토의 병참지지(兵站地誌) 조사에 힘을 쏟아 얻은 성과를 반영해 구체화시킨 것이었다(大谷正, 2014: 33~34).

메이지 정부는 1885년 거문도 사건을 계기로 일본, 청국, 영국 3국의 협조체제를 성립시켜 러시아가 조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견제했다. 그러나 이 임시적 방략이 '정한론'의 꿈을 실현하려는 본령을 대치할 수는 없었다. 참모본부는 이와는 별개로 대규모 사단 동원을 통한 청국과의 일전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방략에 입각하여 6진다이를 7개 사단체제로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한편 1885년 4월 갑신정변을 마무리 짓는 〈톈진 조약〉에서 일본 정부는 조선에 갑신정변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여 군대 파견이 필요할 때는 청, 일 양국이 동시 출병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다. 오가와 안은 그 연장선상에서 수립된 것으로, 이 무렵 메이지 정부는 이러한 군사적 진출을 전제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주의적 교육체제를 수립했던 것이다.

1894년 1월 10일 전라도 고부군에서 동학농민군이 군수 조병갑(趙秉甲)의 탐학을 규탄하며 봉기했다. 3월 25일 전봉준이 호남창의대장소(湖南倡義大將所)를 설치하자 조정은 4월 2일 홍계훈을 양호(兩湖) 초토사로 임명했다. 4월 6~7일에

동학농민군은 공주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했다. 일본 참모부는 조선 정부가 청군의 출병을 요청했다는 소식에 1886년 〈톈진 조약〉의 동시 출병 규정에 따라 오시마(大島) 여단 8,000병력을 출동시켰다. 청국군은 동학농민군의 활동지와 가까운 아산만으로 들어온 반면 일본군은 인천에 상륙하여 바로 서울로 진입했다. 조선 정부의 관리나 외국인 고문들이 나서서 영등포 일대에서 길을 가로막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용산 효창원 일대에 진을 친 일본군은 조선의 내정개혁(內政改革)을 요구했다. 내정이 개혁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농민봉기가 일어날 것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으로 내정개혁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준비한 '내정개혁안'을 내놓았다. 조선 정부는 이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일본군은 궁지에 몰려 청국과의 공동 개혁을 제안했지만 청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효창원의 오시마 여단은 7월 23일 0시 30분에 전 병력이 도성 바깥 주요 지점을 둘러싼 가운데 1개 대대 병력이 경복궁을 침범하여 조선 병력과 수시간 교전을 벌인 끝에 오전 7시경 경복궁을 완전히 장악했다. 조선 군주는 그들에게 '감금'된 상태가 되었다(中塚明, 1997). 7월 23일 야반의 경복궁 침입은 한반도에 시설된 전신선(電信線)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였다. 일본군은 이 시설을 관리하는 전보총국(電報總局)을 장악하고 국왕을 감금하다시피 했다(金文子, 2009). 통신시설의 장악은 최소한 청국군이 이를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자체 군사통신시설을 보완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일본군은 이틀 뒤인 7월 25일 충청도 성환에 주둔한 청국군을 공격하는 한편 서해 풍도(豊島) 앞바다에서 청국군 함정을 공격했다. 선전포고는 8월 1일에 선포되었다. 일본군의 이러한 선제공격은 주효하여 초전에 청국군을 궁지에 몰아 개전 후 7개월 만인 1895년 2월에 웨이하이웨이(威海衛)를 점령하면서 전쟁을 쉽게 끝낼 수 있었다.

제4절 '국민교육' 선언 속에 탄생한 법관양성소와 한성사범학교

1) 일본의 침략주의에 맞선 조선 군주의 '교육조칙' 반포

(1) '내정개혁' 강요에 대한 단력적 대응: '홍범 14조' 발표

◆ 군국기무처 설립과 갑신정변 연루자의 사면 기용

앞에서 살폈듯이 1894년 7월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에 청국의 영향력을 없애고 대신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려 했다. 일본이 요구한 '내정개혁'은 어디까지나 조선을 손아귀에 넣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구실일 뿐이었다. 일본은 조선 군주에게 '내정개혁'을 요구하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대원군을 회유, 동원했다. 대원군은 결코 일본과 노선을 같이할 '개혁적'인 인물이 아니었지만 일본 공사관은 막후교섭으로 그를 내세우는 데 성공했다. 공사관은 대원군에게 준비한 '내정개혁안'을 실행하게 될 때 주관자로 삼겠다는 언질로 그를 나서게 했다. 대원군의 재등장은 조선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소지가 많았다. 일본 공사관은 대원군을 앞세워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공사를 입궐시키는 데 성공했다. 일본 공사관 측은 6월 25일 조선의 '내정개혁'을 구실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여 조선 군주의 왕정을 차단했다. 군국기무처를 발족한 뒤 10여 명의 의원(議員)이 선정되었지만 대원군에게 주재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이선근, 1963: 290).

일본은 군국기무처 의원으로, 국교 수립 후 일본을 왕래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었던 부류를 우선 교섭 대상으로 삼았다. 조선 국왕의 왕권 행사를 가능한 한 억제하면서 일본에 협조할 수 있는 자들을 모아 친일 정권을 세우려 했던 것이다. 실제 의원으로 선정된 인물들을 보면, 영의정(領議政) 김홍집이 총재가 되고, 내무독판(內務督辦) 박정양(朴定陽), 협판(協辦) 민영달(閔泳達), 강화유수(江華留守) 김윤식, 내무협판(內務協辦) 김종한(金宗漢), 장위사(壯衛使) 조희연(趙羲淵), 대호군(大護軍) 이윤용(李允用), 외무협판(外務協辦) 김가진(金嘉鎭), 우포장(右捕將) 안경수(安駉壽), 내무참의(內務參議) 정경원(鄭敬源)·박준양(朴準陽)·이원긍(李源兢)·김학우(金鶴羽)·권형진(權瀅鎭), 외무참의(外務參議) 유길준(俞吉濬)·김하영(金夏英),

공조 참의(工曹參議) 이응익(李應翼), 부호군(副護軍) 서상집(徐相集) 등이 임명되었다. 이 가운데 김가진, 안경수, 조의연은 나중에 왜당(倭黨)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 공사관에 협력했지만, 그 외는 반청 독립사상이 강하고, 양반 서자 또는 중인 출신으로 외국어 교육을 받거나 신문물 업무에 종사한 자가 많았다(유영익, 1990: 142~143). 이는 일본 공사관 측의 의도대로 구성된 명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6월 28일 6조(六曹)를 7아문(七衙門; 내무, 외무, 탁지, 군무, 학무, 법무, 공무)으로 바꾸고 각 아문대신을 통솔하는 지위로 총리대신을 두었다. 김홍집이 총리대신으로 선정, 임명되었다. 흔히 이를 제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부르지만 7아문의 대신회의를 '내각'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 관제 개정은 1882년 개화 정책의 중심 기관으로 세운 통리기무아문, 통리내무아문 등의 예에 가깝다. 다만 왕실 업무를 주관하는 관부로서 궁내부(宮內府)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일본의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의 분리 원칙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첫 궁내부 대신으로 대원군의 서자인 이재면(李載冕)이 임명된 것은 대원군 측에 대한 공사관의 배려로 간주된다. 군국기무처는 11월 말까지 존속하면서 190건의 의정안(議定案)을 제출했다.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안건을 취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준비, 검토된 것들을 중심으로 소임을 진행한 결과였다. 7월 20일 왕은 함화당(咸和堂)에 총리대신과 궁내부 대신, 각 아문의 대신 이하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 등 모두 39명을 불러 만났다. 경장의 윤음을 선포하는 자리였지만, 이때 총리대신 김홍집에게 당분간 경복궁 내 수정전(修政殿)을 내각(內閣)으로 하여 이곳에 숙직할 것을 명했다.

내각은 정조 때부터 근시직 기구인 규장각의 별칭으로 쓰이던 것인데 이때는 각부 대신의 합좌기구를 지칭했다. 이 명칭은 일본 정부의 것을 그대로 딴 것이지만 명칭에 걸맞게 국왕의 편전인 사정전 옆의 수정전에 내각을 둠으로써 오히려 국왕이 대신들과 접하는 기회는 더 잦아졌다. 이와 동시에 '주상전하(主上殿下)'를 '대군주폐하(大君主陛下)', '왕비전하'를 '왕후폐하'로 바꾸는 호칭 변개가 12월 17일 자 『관보』에 실렸다. 대군주란 호칭은 이미 1880년대 초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과의 수호통상조약 체결 때 왕 측에서 어보에 새겨 쓰던 호칭이다. 이를 확대하여 왕실 구성원 전체의 호칭을 고친 셈이다. '갑오경장'은 전쟁 중에 일본이 청국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그 기준에서 강요된 것이었지만, 한편 조선 측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치려 하던 것을 그 기회에 정리한 사항도 없지 않았다.

군주는 전시 상황 아래 일본 공사관 측의 내정 개입에 대해 처음부터 유연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전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청국에도 가능한 한 우호적인 태도를 비밀리에 표하기도 했다. 동학농민군 진압을 구실로 진행된 청·일 양국군의 '동시 출병'이 끝내 전쟁으로 발전한 것은 조선으로서는 엄중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었다. 국토가 타국의 전장이 된 것은 분노를 금치 못할 일이었다. 후술하듯이 전쟁이 끝난 뒤 공포된 '교육조칙'을 통해 군주는 나라의 치욕을 씻을 자가 바로 "너희 신민이 아니던가"라고 표현했다.

1894년 4월, 홍종우(洪鍾宇)가 상하이에서 갑신정변의 주동자인 김옥균을 암살하고 그 시신을 배에 실어 서울로 보내왔다. 형조가 김옥균의 시신을 확인한 다음 반역죄를 적용해 시신을 능지처참했다.[7] 그러나 4월 말 왕은 나머지 정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대사령(大赦令)을 내렸다. 홍영식(洪英植), 박영효(朴泳孝), 김봉균(金奉均), 이인종(李寅鍾), 서광범(徐光範), 서재필(徐載弼) 등이 죄를 면제받았다. 그 후 전쟁 상황에서 8월 1일 박영효가 원정문(元情文)을 제출했다. 7월 20일 〈경장의 윤음〉을 반포하고 총리대신 김홍집을 궁 안에서 숙직하라는 명을 내린 지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다. 의금부는 왕의 대사령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했지만 왕은 이를 강행했다. 이어 8월 4일에는 박영효의 죄명을 말소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튿날 내부대신에 임명했다. 박영효는 왕실의 부마 신분이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 일본 생활을 한 그의 식견이 왕에게는 난국 타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것 같다. 신하들이 박영효의 사면, 기용을 반대했을 때에도 왕은 "나름대로 참작한 것이 있으니 즉시 반포하라"고 지시했다. 왕은 12월에 다시 서광범 등에 대해서도 죄명을 말소해 관리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박영효는 김옥균과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왕실 부마의 신분으로서 김옥균과는 다른 점이 많았다. 그는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일본으로 도망한 뒤, 1885년 6월 서광범, 서재필 등과 함께 미국으로 갔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 도쿄, 요코하마 등지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동서양의 서적을 읽으면서 1888년에는 조선의 개혁에 관한 장문의 상소문을 군주에게 보내기도 했다. 일본 망명 생활 중에 김옥균이 다시 정변을 계획하려 하자 그와 절교하고 고베(神戶) 육갑산

7 김옥균은 갑신정변 당시 승지의 직함으로 왕 곁을 지켰다. 그는 이때 왕의 머리 옥관자에 칼을 대었다고 한다. 고종은 이 때문에 그를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말비사(韓末祕史)』(윤효정, 1995 참조)

(六甲山) 아래 우거하며 '동지의 청년들'을 키우면서 세월을 보내다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곧 바로 인천으로 귀국했다. 그리고 8월 1일에 왕에게 "눈물로 쓴" 원정문을 올렸다(菊池謙讓, 1939: 330~332). 박영효의 귀국이 사전에 군주 측과 연락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최소한 4월 말의 대사면이 그로 하여금 귀국을 결심하게 했을 것은 분명하다. 흥미로운 것은 11월 12일 이노우에 가오루 공사가 왕과 왕비를 알현했을 때, 박영효를 기용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다. 기쿠치 겐조는 위 책에서 이노우에가 박영효의 입각을 허용하는 단안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기술했지만(菊池謙讓, 1939: 353~354), 필자는 후술하듯이 국왕 측에서 오히려 양해를 구한 것으로 파악한다.

서광범의 경우, 1885년 6월 박영효, 서재필 등과 샌프란시스코를 통해 미국으로 간 후,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선교사 형제의 도움으로 미들섹스 카운티에서 생활하다, 1888년 워싱턴의 교육국에서 일했다. 서광범은 「조선왕조의 교육제도」란 논문을 써서 미국 정부의 교육국, 내무성, 하원 등 4종의 보고집에 기고했고, 심지어 한국을 소개하는 글로 평가받아 프랑스 어로 번역되기도 했다(방선주, 1987). 그러나 1893년 미국 정부의 교체로 교육국의 도움이 끊어져 교육국 도서관에서 사서 조수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다 청일전쟁이 일어난 후 조선 정부의 사면 소식을 듣고 귀국했다. 그가 미국 정부의 교육국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조선 정부의 육영공원 설치가 같은 교육국의 지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주목된다. 서광범은 1894년 12월 6일 법부대신 임용 초에 의금사(義禁司, 의금부의 새 이름)를 법무아문의 임시 재판소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비롯해 새로운 재판소 설치에 관한 안을 제시하는 등 법률 분야에 정통했지만 미국에서 이 방면에 관한 공부를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Pang, 1984).

◆ 이노우에 가오루 신임 공사의 '개혁' 요구와 '홍범 14조'

1894년 9월 청국과 일본은 한반도 북부에서 교전 중이었고, 동학농민군도 봉기하여 '척왜'의 깃발을 내걸었다. 그 와중인 9월 28일, 이노우에 가오루가 조선 주재 일본공사로 부임해 조선 군주를 알현하고 국서를 봉정했다. 이노우에는 일본 정부에서 외무경과 내무대신을 역임한 비중 있는 정치인이었다. 일본 정부는 오토리 공사로는 조선 군주의 저항,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시 중의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노우에로 교체한 것이다. 이노우에 공사

는 조선의 내정에 아직도 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군국기무처의 의결은 단기간에 많은 법안을 내놓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실행된 것이 없다고 통박했다. 그동안 조선의 내정에 대한 일본의 간여가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노우에 공사는 군국기무처 폐지부터 단행하기를 요구했다. 군국기무처의 활동은 10월 1일로 마감되었다. 이것은 그간 군국기무처가 일본 공사관이 아니라 조선 군주에게 주도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월 23일 일본군과 조선 관군이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 농민군을 패퇴시킨 다음날, 이노우에 공사는 조선 군주에게 개혁안 20개 조를 내밀었다. 6일 뒤에는 그 한문 번역문을 들고 들어와 왕에게 봉정하면서 압박했다. 그 개혁안에는 왕실의 사무를 국정과 분리하는 방안도 있었다. 이노우에는 새 개혁에 대한 왕의 결심을 종묘사직에 서고할 것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일본군이 뤼순을 점령했다는 보고도 함께 올렸다. 전황이 일본에 유리하게 돌아가면서 일본 정부는 이제 본래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관철하려 했다.

그러나 조선의 군주는 이 상황에서도 왕정의 주도권을 견지했다. 11월 1일 자 『관보』에 탁지, 법무, 공무, 농상무 등 4명의 협판 임명이 게재되었다. 이노우에 공사는 자신이 모르는 이 인사 조치에 대해 총리대신 김홍집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11월 6일 총리대신 및 해당 4대신이 어전에 나왔다. 국왕은 동석한 이노우에 공사에게 4명의 협판 인선은 민간의 평판이 양호하여 자신이 천거를 명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이노우에 공사의 불만을 달랬다. 이노우에 공사는 처음부터 왕이 알게 모르게 국정 주도권을 행사한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일부러 불만을 표했던 것이다. 이렇게 조선 군주의 주권 지키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11월 12일 이노우에가 왕을 알현하는 자리에 왕비가 함께 했다(이태진, 2009a: 54~55). 이 자리에서 그간 이미 이루어졌던 박영효의 기용에 대해 일본 공사가 양해할 것을 요구했다. 4명의 협판 인사에 대한 이노우에 공사의 행위에 비추어 박영효의 기용을 뒤늦게 문제 삼을 우려가 없지 않아 왕비까지 나서서 왕실의 일로서 양해하기를 요구한 듯하다. 이노우에 공사는 왕비까지 나선 자리라는 것을 의식하여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보았듯이 기쿠치 겐조는 오히려 이노우에 공사가 요청한 것으로 기술했지만 그런 전환적 발상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기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 다음날(9일) 『관보』에 박영효의 직첩(職牒) 환수 및 탕척서용(蕩滌敍用, 죄과를 모두 없애고 기용함)의 성명이 실렸다. 바로 이어

서 11월 21일에 새로운 내각이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칙령 제4호로 공포되었다.

> 총리대신 김홍집, 궁내부대신 이재면
> 내무대신(內務大臣) 박영효(朴泳孝, 신), 탁지대신(度支大臣) 어윤중(魚允中), 군무대신(軍務大臣) 조희연(趙羲淵, 신), 법무대신(法務大臣) 서광범(徐光範 신), 공무대신(工務大臣) 신기선(申箕善, 신), 농상대신(農商大臣) 엄세영(嚴世永), 내무협판(內務協辦) 이중하(李重夏), 외무협판(外務協辦) 이완용(李完用), 탁지협판(度支協辦) 안경수(安駉壽), 학무협판(學務協辦) 고영희(高永喜), 군무협판(軍務協辦) 권재형(權在衡), 법무협판(法務協辦) 정경원(鄭敬源), 공무협판(工務協辦) 김가진(金嘉鎭), 농상협판(農商協辦) 이채연(李采淵), 경무사(警務使) 윤웅렬(尹雄烈), 중추원(中樞院) 의장 김병시(金炳始), 좌부의장 조병세(趙秉世), 우부의장 정범조(鄭範朝)

1894년 6월 23일 청일전쟁과 함께 시작된 일본 공사관의 조선 국정 개입 후 조선 군주의 인사는 순탄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위의 인사 조치는 비교적 모습이 갖추어진 것에 해당한다. 중추원(中樞院)은 군국기무처를 혁파하면서 사헌부, 사간원 등의 간쟁 기관을 새롭게 구성한 국왕 자문기관이었다(1897년 대한제국에서는 국왕 천거 25명, 사회단체 천거 2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 바뀜). 총리대신은 여전히 김홍집이지만, 대신 급에서는 박영효를 비롯해 박정양, 신기선, 협판급에서는 이중하, 이채연 등 끝까지 군주를 적극 보필하는 인사들이 명단에 올랐다. 중추원의 의장과 부의장들도 모두 왕이 신뢰하는 자들이었다. 다만 총리대신 김홍집, 외무대신 김윤식, 군무대신 조희연 등은 이미 공사관 측에 가까워진 인물들이었다. 이 인사는 결국 일본 공사관 측과 국왕 측이 상호 타협으로 이루어낸 성격이 강하다.

국왕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일본과의 타협점을 찾아 왕정을 유지하는 길을 모색했다. 과거에는 이 인사에 대해 박영효, 서광범 등의 '갑신개화파', 김홍집 등의 '갑오개화파', 그리고 그 외 왕비 민씨(명성황후) 중심의 척족세력 등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상호 대립이란 관점에서 해석했다(이선근, 1963). 이런 시각은 고종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서 비롯한 것으로 잘못된 해석이다. 당시의 정국에서 국왕은 엄연히 제자리에서 국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왕은 국권 침해에 저항하면서 전시 군사력을 배경으로 공사관이 제

시하는 '개혁' 방안 가운데 취할 것은 받아들이며 신축적으로 대응했다. 일본의 개입이 아니더라도 국왕 스스로 개혁의 과제로 인식했던 것은 그대로 수용했던 것이다. 왕이 신뢰하여 새 대신과 협판으로 임명된 자들은 국왕의 이러한 대응에 직 · 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을 것이다.

위 인사 조치가 발표된 20일 뒤 1894년 12월 12일 국왕은 종묘에 가서 역대 선왕들의 신위 앞에 '홍범(洪範) 14조'를 서고했다. 14개조 가운데 일본 공사 측이 요구한 것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개혁 지향의 군주가 수용할 만한 것도 많았다. 서고의 문장에 실제로 "우방(일본 - 필자)의 도움이 조정의 의견과 일치되어" (청국으로부터의) 자주 독립을 선언한다는 문구가 머리에 들어 있다. 일본 공사관 측은 물론 일본의 국익을 노려 제안한 것이지만, 조선 군주로서는 국정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면 이것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서고문은 윤음과 함께 다음날 한문체, 국문체, 국한문 혼용체 3가지로 작성해 동시에 발표했다.

[표 2]는 10월 23일 이노우에 공사가 왕에게 제시한 개혁사항 20개조와 '홍범 14조'의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14개조가 대부분 20개 개혁사항과 연관된다. 다만 '홍범 14조'의 문구가 훨씬 정돈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20개조에서 언급된 공무아문(工務衙門)의 불필요성 같은 것은 아문제도의 도입에서 산업 근대화를 중시하여 공무아문뿐 아니라 농상무아문까지 이미 세운 상태였다. 각 아문에 일본인 고문을 초빙하라는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다. 내각의 명예 고문관으로서 관제 규정을 개정하고 정부의 제반 사무에 힘쓴 일본인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에게 상금 1,000원(元)을 내린 사실이 있지만(『고종실록』, 1895. 9. 7), 이것은 후술하듯이 군주 측에서 관제 개정을 위해 능동적으로 취한 조치로 일본 정부의 요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서고문 제1조 "청국에 의존한다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割斷附依淸國慮念, 確建自主獨立基礎)"고 한 선언은 조선의 국체(國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일본이 이를 요구한 것은 한반도에 대한 청국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1876년 2월의 〈조일수호조규〉 제1조에서 이미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서 일본과 '평등한 나라'라고 명시되었다. 1894년 현재로서는 일본 천황이 지배하는 '동양' 건설을 위해 근 10년간 군비 확장을 통해 강화한 군사력으로 '야만의 청국'을 퇴치하여 조선을 '문명의 나라' 일본의 품에 넣으려는 참이다.

[표 2] 1894년 10월 이노우에 가오루 일본공사 '개혁안' 20조와 1894년 12월 '홍범 14조' 비교

1894. 10. 23. 20개조	1894. 12. 12. '홍범 14조'
	제1조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1. 정권은 한곳에서 나오게 함.	제3조 왕후 · 비빈 · 종실 및 척신이 간여함을 용납치 아니한다.
2. 대군주에게 정무 직접 결재권	제3조 국왕(大君主)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3. 왕실 사무는 나라 정사 분리	제4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4. 왕실 조직 규정	제2조 왕실 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 · 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5.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 정하기	제5조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6. 조세는 탁지아문으로 통일, 제정된 조세 부과 비율 준수	제6조 세금부과[賦稅]는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제7조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장한다.
7. 왕실, 아문의 비용 미리 정함	제8조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 절약,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제9조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 예산 세워 재정의 기초 확립
8. 군사 정무를 정하기	제12조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 기초 확립한다.
9. 허식, 사치 폐단 교정	-
10. 형률 제정	제13조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1. 경찰권 통일	-
12. 관리 복무 규율 제정, 엄수	-
13. 지방관 권한 제한, 중앙 정부 장악 강화	제10조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14. 관리 등용 · 파면 규정, 임의적 인사 배제	-
15. 권세 다툼, 시기와 이간 폐단 척결, 정치적 보복 관념 불식	-
16. 공무아문(工務衙門)은 아직 불필요	-
17. 군국기무소(軍國機務所) 권한 개정	-
18. 고문관(顧問官) 각 아문 초빙	-
19. 유학생 일본 파견	제11조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20. 국시(國是)를 일정하게 함.	-
	제14조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반면 자주독립국은 조선 군주가 일본과의 수호조규 이후 1880년대에 미국을 비롯한 서양 열강과의 수호통상조약을 통해 실현하고자 노력해온 목표다. 이제 청국이 일본에 패하여 책봉관계가 없어진다면 조선 군주로서는 굳이 거부하고 나설 일이 아니다. 다만 일본이 다음으로 내미는 수순이 무엇인지가 문제였다.

'홍범 14조' 가운데 일본의 요구사항으로 눈에 띄는 것은 종실과 척신, 왕비 등의 정사 간여의 배제였다. 일본은 왕비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파악한 점이 많았다. 왕비는 지식과 지혜를 갖춘 인물이지만 일본이 파악하듯이 정사를 농단한 것이 아니라 외국과의 관계로 정무가 많아진 왕을 보필하는 선을 넘지 않았다(이태진, 2007). 일본의 왕실, 종실에 대한 변별 요구는 오히려 군주가 대원군에게서 받던 부담을 청산하는 기회가 되었다. 국왕의 정전(正殿) 친임의 요구는 왕에게 부담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일본은 물론 자신들이 내세우는 내각 총리대신 외에 국정 개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였지만, 조선의 왕정체계에는 왕을 보좌하는 근시직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제는 한계가 있었다(홍문기, 2004; 서영희, 1990).

(2) 보호국화 정책의 저지

국왕은 일본의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때로는 미국 정부에 외교적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전쟁 직전인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 사건 당시 국왕은 주미 공사 이승수(李承壽)에게 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이승수 공사는 7월 5일 월터 그레이엄(Walter Q. Graham) 국무장관을 접촉하여 〈조미수호통상조약〉 제1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선 정부가 일본군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거중조정에 나서주기를 요청했다. 7월 7일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대해 전쟁 중에 조선의 독립과 주권이 존중되기 바라며 "만약 일본이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인 이웃 나라에 불의의 전쟁 피해를 입힐 경우 본 대통령은 침통한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공한을 보냈다. 이에 일본은 조선을 전장으로 삼았지만 조선인과 그 재산에 노골적인 침해 행위는 하지 않았다(유영익, 1990: 56).

1895년 초 일본군이 청국 리훙장의 회군의 보루인 뤼순을 함락하면서 일본 정부의 태도는 달라졌다. 앞에서 살폈듯이 이즈음 이노우에 공사는 조선 정부의 '개혁'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면서 승전을 눈앞에 둔 기대감에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 정부로 이관하게 만들려고 했다. 1895년 1월 8일 이노우에 공사는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濬) 서기관으로 하여금 조선 외부(外部)를 방문하여 미국 주재 조선공사관의 사무를 주미 일본공사관에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 군주는 1월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조선 주재 존 실(John M. B. Sill) 미국 공사에게 미국 정

부가 개입하여 일본의 이러한 음모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이노우에 공사의 요구는 되풀이되지 않았다(유영익, 1990: 57). 당시 일본은 서구 열강을 상대로 하는 '조약 개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요구에 맞설 수 없는 형편이었다.

조선 군주는 미국 정부의 지원에 크게 고무되었다. 1895년 1월에 접어들어 왕은 전쟁이 끝나고 일본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펼칠 국정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해 고등교육기관을 확대하고 국민교육을 일으켜야 함을 절감했다. 후술하듯이 왕은 이때 비밀리에 내무대신 박영효가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에게 일본이 모르게 대학 설립을 주관해줄 것을 교섭하게 한다. 그리고 이때 국민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조칙'을 공포했다.

(3) 일본의 관비 유학생 파견 요구

일본 정부는 청일전쟁 중 조선 정부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내정개혁 사항을 제시했다([표 3] 참조). 이에 따르면 일본의 관심은 재정 · 정치제도와 관리의 인선, 군사제도, 재판 및 법률제도, 산업 및 교통(철도)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교육은 소학교 설립부터 시작한다는 초보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는 데 반해 문벌 자제의 외국 유학을 강조했다. 이는 1894년 6월 동학농민군 진압을 구실로 일본군이 서울에 진입하여 내놓은 '내정개혁' 사항에서부터 거론되어 그해 10월 23일 이노우에 공사의 20개조를 거쳐, 1894년 12월 12일 '홍범 14조'에 이르기까지 줄곧 요구한 사항이다. 1895년 2월까지 실제로 '문벌자제' 약 150명을 선발해 도쿄로 보냈다. 조선 정부의 학부대신(學部大臣)이 비용을 조달하고 관리를 전담하는 형식을 취했다. 조선 군주는 이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한 자주 개혁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본의 간여와 이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혼재하는 가운데 '관비유학생'이 파견되었다. 이는 일본의 압박을 완충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도 있다.

선발된 자제들은 2월 22일 학부대신 박정양의 훈시가 있은 후 바로 출발하여 3월 13일 동경에 도착했다. 그들이 간 곳은 후쿠자와 유키치의 게이오의숙이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유학생에 대한 교육을 전담했으며, 모든 학비는 그에게 전달되었다. 관비 유학생들은 1896년 2월 11일 조선 군주가 일본군의 감시를 피

[표 3] 1894년 7월 5일 청일전쟁 발발 전후 일본의 조선 '내정개혁' 거론 사항 일람표

분야	6. 15 무쓰(陸奧) 외무대신 지시	6. 28 일 · 청 양국 상설위원 구성 때 조사 사항	7. 3 (7. 11) 내정개혁방안 강령	7. 7 내정개혁방안 강목
재정	一. 재정 조사 一. 세입보다 세출 절약, 잉여금 이자로 국채 모집, 국익을 위한 이편(利便) 사업	一. 회계 출납 엄정 一. 화폐제도 개정	一. 재정 정리, 부원(富源) 개발	-
정부조직	一. 중앙정부 및 지방관리 도태	一. 관리 직책 분명히, 지방관리 정폐(情弊) 교정 一. 외국 교섭 사의(事宜) 존중, 직책과 역할 인재 선택	一. 중앙정부와 지방제도 개정, 인재 채용	-
군사, 치안	一. 필요 경비병 설치, 국내 안녕 보지(保持)	一. 군사제도 개량, 경찰제도 설립	一. 국내 민란 진정, 안녕 유지에 필요한 준비	-
사법	-	一. 재판 공정히 할 것	一. 법률 정돈, 재판법 개정	一. 법률 정돈, 재판법 개정
교통	-	一. 교통 편리하게 할 것	-	-
교육	-	一. 문벌자제 중 준수한 자 선발, 우내(宇內) 형세를 알게 함과 더불어 전문적 학술강습을 받도록 외국에 유학시킬 것	一. 교육제도 확립	一. 학제 신정, 각 지방 소학교 설립, 자제 교육 一. 소학교 설립 준비 기다려 점차 중학 및 대학 설립 一. 학생 중 준수한 자 선발 외국 유학

해 경복궁을 빠져나와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주(移駐)하여 내각제를 없애고 왕권을 회복하려 한 아관파천 이후 학비 지급이 중단되면서 저절로 해체되었다(이태진, 2000: 39~50; 박찬승, 2000). 이후 유학생들은 미국을 비롯해 서구 여러 나라에서 학업을 계속한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 가운데는 주한 일본공사관과 관계가 이어져 친일 성향을 띤 부류도 있었다.

관비 유학생들은 1년여 유학 중에 친목회를 조직하고 『친목회회보(親睦會會報)』를 간행했다. 친목회의 초대 회장은 윤치오(尹致昊), 2대 회장은 어윤적(魚允迪)이었고, 의화군(義和君) 강(堈)을 친목회 통상찬성위원장, 후쿠자와를 별찬성위원장으로 삼았다. 의화군은 1894년 10월 청일전쟁 당시 일본이 조선왕실에 파견한 위문사절에 대한 보빙사로 일본에 가서 체류했다. 윤치오, 어윤적도 모두 보빙사절단으로 따라갔다가 유학생 신분이 되었다.

(4) 1895년 2월 26일 '교육조칙' 반포: 국민교육 선언

청일전쟁은 1895년 2월 12일 일본군의 웨이하이웨이(威海衛) 점령으로 끝났다. 조선 군주는 열하루 뒤인 1895년 2월 23일에 앞으로는 문벌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구한다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이것은 '홍범육조(洪範六條)'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국한문 혼용의 조령이었다.

> 사람[人]을 씀에 있어 문벌에 구애하지 않고 선비[士]를 구하니 조선에 두루 미치는 일로 짐이 종묘사직에 몸소 맹세하여 고했다. 덕행과 재주가 있고 현명하고 단정한 선비가 있으면 소재지의 지방관이 직접 권하여 [관직이 있는 곳으로 – 필자] 떠나게 해서 짐의 뜻에 맞게 하라(人을 用ᄒᆞ믹 門地를 拘치 아니하고 士를 求ᄒᆞ믹 朝鮮에 遍及ᄒᆞᄂᆞᆫ 事로 朕이 廟社에 親히 旣誓告한지라. 其 德行才藝賢能方正한 士가 有ᄒᆞ거든 在ᄒᆞᆫ바의 地方官이 身으로 勸ᄒᆞ야 爲ᄒᆞ야 駕하게 하야 써 朕意에 稱케ᄒᆞ라).

앞으로 인재를 쓰는 데 양반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겠으며, 이 원칙은 온 조선에 두루 적용한다는 선언이다.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과 같은 것은 철폐한다는 뜻도 담았다. 덕행과 재주가 있고 현명하고 단정한 선비가 있으면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쓰겠으니 그런 사람이 고을에 있으면 지방관은 가서 서울로 올라가도록 권하라는 지시다. 여기서 선비, 곧 사(士)는 독서로 글을 아는 사람으로 양반을 뜻하지 않는다. 조선 군주는 1886년 노비세습제 철폐를 선언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인재 등용에서 전면적인 신분제 철폐 선언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것은 일본의 거듭되는 '내정개혁' 요구에도 없던 것이다. 이후 실제로 중앙 부처 특히 궁내부 산하의 신문명 기술을 담당하는 20여 개의 관서에 서얼, 상인, 군인 출신의 관리를 다수 등용했다. 조선 정부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1880년대에 실학적 개화 차원에서 종종 사용하던 '법고창신(法古創新)' 대신에 '구본신참(舊本新參)'이란 표어를 개혁의 슬로건으로 자주 사용했다. 전자는 유교의 상고(尙古) 정신이 남아 있는 반면, 후자는 옛것[舊]이 바탕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으로는 강조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종은 1880년대 근대화(개화) 시책에서 조정에 나온 재주 있는 사대부 또는 그 자제 중심으로 외국어를 교육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취했다. 이 방식은 앞 시대에 실학적 사대부들이 부르짖었던 '개방, 선진문

명 수용'의 사상에 가까운 것으로, 이를테면 실학적 개화정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었다(이태진, 2011). 그러나 1880년대 사대부 간의 파쟁으로 군주의 근대화 추진이 외세의 개입으로 난항을 겪고 나아가 동학농민운동의 대중적 힘을 경험하면서 군주는 신분제를 벗어난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 정책의 시행만이 근대화 시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특히 대규모 일본군의 상륙에서 백성의 힘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새로운 인재 등용에 관한 방침을 모든 백성이 읽을 수 있는 방식인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해 내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였다.

그런데 이 조령에 이어 사흘 뒤인 2월 2일에 다시 국한문 혼용의 조칙이 반포되었다. 그것은 교육에 관한 장문의 조칙이었다. 이를 다섯 문단으로 나누어 아래에 소개한다.

① 짐(朕)이 생각하건대 나의 조종(祖宗)이 나라를 세우고 법통을 내려주심이 이제 504년을 거쳤으니, 실로 나의 열성조의 교화와 덕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미었음이며, 또 나의 신민(臣民)이 충성과 사랑을 능히 다했음에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짐은 끝이 없는 대운(大運)을 물려받아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직 조종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으니 너희 신민은 짐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들일지어다. 오직 너희 신민의 선조가 나의 조종이 돌보고 키우신 선량한 신민이었으며, 너희 신민도 너희 선조의 충성과 사랑을 잘 이었으니 짐이 보육하는 선량한 신민이다(朕惟我祖宗이 業을 創ᄒᆞ사 統을 垂ᄒᆞ심이 玆에 五百四年을 歷有ᄒᆞ시니 實我列朝의 敎化와 德澤이 人心에 浹洽ᄒᆞ심이며 亦我臣民이 厥忠愛를 克殫홈을 由홈이라. 이럼으로 朕이 無疆ᄒᆞᆫ 大歷服을 嗣ᄒᆞ야 夙夜에 祇懼ᄒᆞ야 오작 祖宗의 遺訓을 是承ᄒᆞ노니 爾臣民은 朕衷을 體ᄒᆞᆯ지어다. 오작 爾臣民의 祖先이 我祖宗의 保育ᄒᆞ신 良臣民이니 爾臣民도 亦爾祖先의 忠愛를 克紹ᄒᆞ야 朕의 保育ᄒᆞᄂᆞᆫ 良臣民이라).

② 짐은 너희 신민과 함께 조종의 큰 터를 지켜 억만 년의 아름다운 운수를 이어나갈 것이니 아! 백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니, 세계의 형세를 두루 살펴보면 부유하고 강성하여 독립하여 웅시(雄視)하는 여러 나라는 모두 그 인민의 지식이 개명하고 지식의 개명함은 교육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니,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이런 까닭으로 짐이 군사(君師)의 지위에 있으면서 교육하는 책임을 스스로 맡으니, 교육에는 또한 그 길이 있다. 허명(虛名)과 실용(實用)의 분별을 먼저 세워야 옳으니, 책을 읽고 글자를 익혀 고인(古人)의 찌꺼기만 주워 모으고 시대의 큰 형국에 어두운 자는 문장이 고금을 능가하더라도 한낮 쓸모없는 서생이다(朕이 爾臣民으로 더부러 祖宗의 丕基를 守ᄒᆞ야 萬億年의 休命을 迓續ᄒᆞ노니 嗚呼라 民을 敎치 아니면 國家를 鞏固케ᄒᆞ기 甚難ᄒᆞ니 宇內의 形勢를 環顧ᄒᆞ건ᄃᆡ 克富ᄒᆞ며 克强ᄒᆞ야 獨立雄視ᄒᆞᄂᆞᆫ 諸國은 皆其人民의 知識이 開明ᄒᆞ고 知識의 開明홈은 敎育의 善美홈으로 以홈인 則 敎育이 實로 國家保存ᄒᆞᄂᆞᆫ 根本이라. 是以로 朕이 君師의 位에 在ᄒᆞ야 敎育ᄒᆞᄂᆞᆫ 責을 自擔ᄒᆞ노니 敎育도 또ᄒᆞᆫ 其道가 有ᄒᆞᆫ지라. 虛名과 實用의 分別을 先立홈이 可ᄒᆞ니 書를 讀ᄒᆞ고 字를 習ᄒᆞ야 古人의 糟粕만 掇拾ᄒᆞ고 時勢의 大局에 矇昧ᄒᆞᆫ 者ᄂᆞᆫ 文章이 古今을 凌駕ᄒᆞ야도 一無用ᄒᆞᆫ 書生이라).(강조는 필자)

③ 이제 짐은 교육하는 강령(綱領)을 제시하여 허명을 제거하고 실용을 숭상하노니, 덕양(德養)은 오륜의 행실을 닦아 세속의 기강을 문란하지 않도록 하고, 풍교를 부식함으로써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행복을 증진케 하라. 체양(體養)은 사람의 동작에 불변의 도가 있어서 근면함으로 주로 하고, 나태 안일을 탐하지 말며, 고난을 피하지 말아서 너희 근육을 굳게 하고 너희 뼈를 튼튼하게 하여 강장하여 병이 나지 않는 기쁨을 누려라. 지양(智養)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데서 지식을 지극히 하고 원리를 깊이 연구하는 것에서 성질을 다 헤아려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 장점과 단점에 자타의 구역을 세우지 않고 상세히 연구하고 널리 통달하여 한 개인의 사사로움을 꾀하지 말며 공중의 이익을 도모하라. 이 세 가지가 교육하는 기강이니 짐이 정부에 명하여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너희 신민의 학식으로 나라를 중흥(中興)하는 큰 공로를 이룩하기 위함이다(今에 朕이 敎育ᄒᆞᄂᆞᆫ 綱領을 示ᄒᆞ야 虛名을 是祛ᄒᆞ고 實用을 是崇ᄒᆞ노니 曰'德養'은 五倫의 行實을 修ᄒᆞ야 俗綱을 紊亂치 勿ᄒᆞ며 風敎를 扶植ᄒᆞ야써 人世의 秩序를 維持ᄒᆞ고 社會의 幸福을 增進ᄒᆞ라. 曰'體養'은 動作에 常이 有ᄒᆞ야 勤勵홈으로 主ᄒᆞ고 惰逸을 貪치 勿ᄒᆞ며 苦難을 避치 勿ᄒᆞ야 爾筋을 固케ᄒᆞ며 爾骨을 健케 ᄒᆞ야 康壯無病ᄒᆞᆫ 樂을 享受ᄒᆞ라. 曰'智養'은 物을 格ᄒᆞᄆᆡ 知를 致하고 理를 窮ᄒᆞᄆᆡ 性을 盡ᄒᆞ야 好惡、是非、長短에 自他의 區域을 不立ᄒᆞ고 詳究博

通ᄒᆞ야 一己의 私를 經營치 勿ᄒᆞ며 公衆의 利益을 跂圖ᄒᆞ라. 曰此三者ᄂᆞᆫ 敎育ᄒᆞᄂᆞᆫ 綱紀니 朕이 政府를 命ᄒᆞ야 學校를 廣設ᄒᆞ고 人材를 養成홈은 爾臣民의 學識으로 國家의 中興大功을 贊成ᄒᆞ기 爲홈이라).(강조는 필자)

④ 너희 신민은 임금에게 충성하고 애국하는 심성으로 너희 덕성, 너희 체력, 너희 지혜를 기르라. 왕실의 안전도 너희 신민의 교육에 달려 있고 나라의 부강도 너희 신민의 교육에 달려 있으니, 너희 신민의 교육이 훌륭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짐이 어찌 일러 "나의 정사가 성공했다"고 하며 짐의 정부가 어찌 감히 말하여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爾臣民은 忠君、愛國ᄒᆞᄂᆞᆫ 心性으로 爾德、爾體、爾智를 養ᄒᆞ라。王室의 安全홈도 爾臣民의 敎育에 在ᄒᆞ고 國家의 富强홈도 爾臣民의 敎育에 在ᄒᆞ니 爾臣民의 敎育이 善美ᄒᆞᆫ 境에 抵치 못ᄒᆞ면 朕이 엇지 긋ᄋᆞᄃᆡ '朕의 治가 成ᄒᆞ다'ᄒᆞ며 朕의 政府가 엇지 敢히 긋ᄋᆞᄃᆡ '其責을 盡ᄒᆞ다'ᄒᆞ리오?)

⑤ 너희 신민도 교육하는 도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합하여 아버지가 이것으로 그 아들을 이끌어주고, 형이 이것으로 동생을 권면하며, 벗이 이것으로 서로 도와주는 길을 가면서 분발하여 멈추지 말지어다. 나라의 분개를 풀어줄 사람이 오직 너희 신민이며, 나라의 모욕을 막을 사람이 오직 너희 신민이며, 국가의 정치 제도를 닦아나갈 사람도 너희 신민이니 이 모든 것이 너희 신민의 당연한 직분이거니와, 학식의 등급에 따라 그 효과의 높고 낮음이 결정되니, 이러한 일을 하는 데서 조그마한 결함이라도 생기면 너희 신민도 또한 이르되, "우리의 교육이 밝지 못한 까닭이라" 하여 상하가 마음을 하나로 하기를 힘쓰라. 너희 신민의 마음은 또한 짐의 마음인 만큼 힘써 할 것이다. 이러해야 짐이 조종의 덕을 일으켜 사방에 빛낼 것이며 너희 신민도 또한 너희 조상의 효성스러운 자손이 될 것이니 힘써 할 것이다. 너희 신민이여, 짐의 이 말을 따르라(爾臣民도 敎育ᄒᆞᄂᆞᆫ 道에 心을 盡ᄒᆞ며 力을 協ᄒᆞ야 父가 是로써 其子에게 提誘ᄒᆞ고 兄이 是로써 其弟에게 勸勉ᄒᆞ며 朋友가 是로써 輔翼ᄒᆞᄂᆞᆫ 道를 行ᄒᆞ야 奮發不已ᄒᆞᆯ지어다. 國家의 愾를 敵ᄒᆞᆯ 이 惟爾臣民이며 國家의 侮를 禦ᄒᆞᆯ 이 惟爾臣民이며 國家의 政治制度를 修述ᄒᆞᆯ 이 亦惟爾臣民이니 此皆爾臣民의 當然ᄒᆞᆫ 職分이어니와 學識의 等級으로 其功效의 高下를 奏ᄒᆞᄂᆞ니 此等事爲上에 些少ᄒᆞᆫ 欠端이라도 有ᄒᆞ거든 爾臣民도 亦惟曰호ᄃᆡ '我

等의 敎育이 不明ᄒᆞᆫ 然故라'ᄒᆞ야 上下同心ᄒᆞ기를 務ᄒᆞ라. 爾臣民의 心은 ᄯᅩᄒᆞᆫ 朕의 心이니 勖ᄒᆞᆯ지어다. 若玆ᄒᆞᆯ진ᄃᆡ 朕이 祖宗의 德을 揚ᄒᆞ야 四表에 光ᄒᆞᆯ지며 爾臣民도 亦惟爾祖先의 肖子孝孫이 되리니 勖ᄒᆞᆯ지어다。爾臣民이여 惟朕此言).

①은 왕조의 오랜 전통 속에 이루어진 군주와 신민(臣民) 간의 유대를 언급하여 서두로 삼았다. 너희 신민의 조선(祖先)이 나의 조종(祖宗)이 보육하신 선량한[良] 신민이고 너희 신민 또한 너희 조선의 충애(忠愛)를 잘 이어서 짐이 보육(保育)하는 선량한 신민이라고 하여 오늘의 군신관계가 오랜 역사를 통해 생성된 것임을 강조한다. 군주와 신민의 상호관계에 대한 언설은 100년 전 정조의 군민일체론(君民一體論)을 연상케 한다(이태진, 1992; 1993).

②는 이런 훌륭한 유대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신민의 교육이 새롭게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먼저 백성[民]의 교육을 나라[國家]를 굳건하게 하는 필수 과제라고 제시한다. 세계 형세를 둘러보건대 아주 부유하고 아주 강성하여 독립하여 주위를 웅시(雄視)하는 나라는 모두 그 인민의 지식이 개명(開明)한데, 그 개명은 교육이 잘 되어서이니 교육은 실로 국가 보전의 근본이라고 한다. 그래서 짐은 '군사(君師)'의 지위에서 교육의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고 한다. 교육을 위해서는 허명과 실용의 분별을 먼저 세워야 하는데, 글을 익히고 쓰면서 옛 사람의 찌꺼기만 주워 모으고 시세의 대국(大局)을 알지 못하면 한낱 쓸모없는 서생이 될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군주가 군사의 지위에서 민의 교육을 자임한 것이다. 군사는 임금이 학문적으로도 노력하여 사대부들의 스승의 지위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 표현으로, 영조·정조가 탕평군주, 곧 요·순을 모범으로 삼아 노력한 임금의 학문적·정치적 경지를 추구하면서 표방한 것이다(김문식, 2007). 고종은 이제 사대부 제어의 목적이 아니라 인민을 교육하는 주관자로서 '군사'의 역할을 명시한다. 왕조의 국기(國基)로서 향교(鄕校), 사학(四學), 성균관(成均館) 등을 설립하여 왕정을 보필하는 사대부를 양성하던 과제가 이제 국가의 주체로서 인민, 신민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기반 구축으로 그 내용이 바뀌고 있다.

③에서는 그토록 중요한 신민 교육의 강령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실용 교육을 표방한 가운데, 덕양(德養) 체양(體養) 지양(智養), 즉 지덕체 함양의 교육을 내세운다. 이 삼양(三養)의 교육을 위해 군주가 정부에 명하여 학교를 널리 세워 인

재를 양성할 것인데, 신민의 학식 개발은 곧 국가의 중흥대공(中興大功)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 너희 신민은 충군 애국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지, 덕, 체를 기르라고 당부한다. 덕, 체, 지 삼양의 교육은 미국 교육사상의 축을 이룬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체양, 덕양, 지양에 가까워 주목된다. 이에 대한 지식은 육영공원 교사로 부임한 미국인 호머 헐버트(Homer Hulbert), 벙커(D. A. Bunker) 등의 영향을 받았거나 『한성순보』, 『한성주보』를 통해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서도 헐버트는 이 조서를 근거로 설립되는 한성사범학교의 교사로 활약한 것으로 볼 때, 그의 영향이 가장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④에서는 왕실의 안전과 국가의 부강이 모두 너희 신민(臣民)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한다. ⑤에서는 국가의 분노를 싸워 없애주고, 국가가 당할 수 있는 모멸을 막아줄 자는 오직 여러분 신민이며, 국가의 정치제도를 닦아서 이어갈[修述] 자 또한 여러분 신민이라고 한다. 이것은 거의 주권 재민의 근대적 국민의식에 근접한 신민 의식이다. 소민(小民)이 포함된 신민의 정치적 능동성, 자율성이 크게 부각된 언설이다.

◆ 일본 메이지 천황의 '교육칙어'와 비교

이 '교육조칙'은 지금까지 교육사 연구에서 일본 메이지 천황의 '교육칙어'(1890)와 비교하여 이를 본뜬 것으로 간주해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이해는 옳다고 보기 어렵다. 메이지 천황의 '교육칙어'는 500자 정도의 단문인 데 비해 조선 군주의 조서는 국한문 혼용 1,382자에 달하는 장문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차이다. '교육칙어'의 전문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일본어 원문 생략).

> 짐이 생각건대, 나의 황조황종(皇朝皇宗)께서 널리 나라를 세웠고 깊고 두텁게 덕을 베풀었다. 나의 신민(臣民)들은 마땅히 충효를 다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대대로 아름다움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우리 국체(國體)의 정화(精華)이며 교육의 연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신민들은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며 부부가 화목하고 친구는 서로 믿으며, 공검하게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박애하며 학문을 닦고 기예를 배우며 덕을 이루고 공익을 넓히며 국헌(國憲)을 존중하고 국법(國法)을 준수해야 한다. 위급할 때는 스스로 몸을 바쳐 천지 간의 무궁한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짐의 충량(忠良)한 신민이 될 수 있으

며 선조의 유풍을 현창하게 된다. 이러한 도리는 실로 황조황종의 유훈으로서 자손과 신민이 모두 준수해야 할 바이며, 고금을 통해 오류가 없고 이를 세상에 펼쳐도 어긋남이 없다. 짐은 그대들 신민과 함께 진심으로 한시도 잊지 않고 한결같이 그 덕을 닦기를 바란다.

메이지 천황의 '교육칙어' 내용은 의외로 간단하다. 천황은 나의 황조황종(皇祖皇宗)이 나라를 세워 덕을 베풀었으니 나의 신민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마땅히 충효를 다하라고 한다. 이 일방적 충성 논리는 조선군주의 '교육조칙'이 왕실과 신민의 선조 간의 상호 의지 보육이 강조된 것과는 크게 다르다. 충효 관계가 '국체의 정화'이며 교육의 연원이라고 한 것은 천황을 중심으로 삼는 국가주의 실천이 곧 교육의 목표란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신민들은 국헌을 존중하고 국법을 준수하면서 위급할 때는 스스로 몸을 바쳐 천지 간의 무궁한 '황운'을 일으키는 데 이바지하는 임무를 요구한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충량한 신민'이 되는 데 유의해야 할 교육적 과제로서, 부모에 대한 효, 형제 간의 우애, 부부 간의 상화(相和) 등 유교적 삼강(三綱), 친구 간의 신의, 공검한 생활, 이웃 사랑 등 사회적 윤리가 강조되고, 그 위에 기예와 지능의 계발, 공익의식 등이 거론되었다. 조선의 '교육조칙'이 지, 덕, 체 삼양을 지향하는 명료한 체계를 제시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후자는 여러 교육 대상을 나열한 느낌을 주는 정도다.

메이지 천황은 청년기에 시보(侍補) 제도 아래 유학자들로부터 유교 교육을 받으면서 유교의 가치에 심취했다. 유교적 덕목에 심취한 결과 순행(巡行) 때 학교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구화주의의 잘못을 지적하기까지 했다. 천황의 이러한 의식은 모토다 나가사네(元田永孚)와 같은 시보들에 의해 천황 친정체제 운동으로까지 발전했다. 천황의 유교 윤리의식에 대한 선호는 '교육칙어' 기초에 모토다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지만, 끝내 번벌 집권세력이 추구한 국가주의 교육 노선의 정립에 도구로 활용되는 데 그쳤다(笠原英彦, 2006). 이는 조선 '교육조칙'이 신민의 교육은 곧 '국가 보존의 원동력'의 양성이란 인식, 신민이 곧 국가의 기반이며, 그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인식을 제시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2) 청일전쟁 종료와 조선 정부의 자력 근대화 시도: 을미개혁

(1) 1895년의 '을미개혁': 자주성 재평가

청일전쟁이 1895년 2월 12일(양력) 일본군의 산둥 반도의 웨이하이웨이 점령으로 끝나고 4월 17일(양력)에 교전 당사국인 청, 일 양국 대표들이 일본 시모노세키(下關)에서 만나 조약을 체결한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전승의 대가로 랴오둥(遼東) 반도를 할양받고 배상금 2억 달러를 받기로 하는 한편, 타이완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의 열강이 이른바 '삼국간섭'(4. 23, 양력)을 하게 되어 가장 큰 소득인 랴오둥 반도를 포기했다.

조선 정부는 이 조약이 체결된 이틀 뒤인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34건의 법률과 칙령을 반포하고 시행일을 4월 1일로 했다. 이어 5월 26일에는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공포했다. [표 2]에서 보듯이 이 시기의 법률과 관제 개정은 이전의 개정과 비교해 단연 체계적이었으며, 법관양성소의 관제도 이때 함께 반포되었다. 당시 내각은 총리대신 김홍집, 내무대신 박영효, 외무대신 김윤식, 탁지대신 어윤중, 군무대신 서리 권재형, 학무대신 박정양, 법무대신 서광범, 공무대신 서리 김가진, 농상대신 서리 이채연으로 구성되었다. 이 개혁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각 아문에 대신 아래 관방(官房) 제도를 둔 점이다. 이것은 명칭으로 보아 일본의 관제를 본뜬 것이 분명하다. 당시 이노우에 공사는 부임 초에 조선 정부가 각 부처마다 일본인 고문을 초빙하기를 바랐지만, 조선 정부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 해(1895) 9월 7일 조선 군주는 내각의 명예 고문관으로서 관제 규정을 개정하고 정부의 제반 사무에 힘쓴 일본인 이시즈카 에이조(1866~1942)에게 상금 1,000원을 내렸다(『고종실록』, 1895. 9. 7). 이시즈카 에이조는 10월 8일에 왕비 시해 현장에서 일본 장사패의 만행을 직접 보고 당시 일본 정부의 법제국 장관이던 스에마쓰 겐조(末松謙澄)에게 보고서를 비밀리에 보낸 인물이다. 일본 장사패들이 시해한 왕비의 시신을 음간했다는 내용이 담겨 주목을 받은 보고서의 작성자다. 이시즈카 에이조는 당시 29세의 청년으로 일본 정부 법제국의 참사관 겸 서기관으로 조선 정부가 초청해 '명예고문관'으로 건청궁에 와 있었다. 법제국장 스에마쓰 겐조는 그의 상관이었다. 조선 정부 각료 중에서 일본 정부 법제국에 사적으로 추천을 의뢰할 만한 사람으로는 일본에서 근 10년을 보낸 박영효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군주가 1894년 3월 김옥균의 시신을 처분한 뒤, 갑신정변의 다른 연루자들을 모두 사면하고 8월 하순에 박영효를 받아들여 내부대신으로 기용한 것은 파격적인 감이 없지 않았다. 박영효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돌아온 서광범까지 기용하여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틀을 잡고 내각의 관제를 전면 개정한 3월 25일의 발표는 군주가 이들을 사면, 기용한 까닭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군주나 박영효는 일본 내각제에서도 취할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본 정부의 법제국장 스에마쓰 겐조를 접촉하여 젊고 유능한 참사관 이시즈카 에이조를 추천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박영효는 이때 총리대신 김홍집과는 달리 여러 부면에서 이노우에 공사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행정, 군사, 교육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되 이 나라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왜식'의 모방보다는 오히려 구미식 채택을 주장하며, 이노우에 공사의 요구와 청탁에도 공순하지 않았다(이선근, 1963: 527). 박영효는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 선교사들과 우호적이었다는 평을 받았다(McKenzie, 1908: 54). 그는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참작하여 일본의 강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군주를 충실하게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3월 25일부터 6일간 34건의 법률과 칙령 반포는 이른바 을미개혁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정부의 조직 자체를 대폭 바꾸는 개혁안들은 4월 1일이 시행일이었다. 이렇게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이노우에 공사가 본국 정부에 자진 사임을 신청하고 5월 8일에 이를 허용하는 전문이 도착한다. 그는 5월 13일에 조선 군주를 알현하고 하직 인사를 했다. 만약 4월의 을미개혁이 그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렇게 자진해서 사직, 귀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노우에는 결국 박영효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한 군주의 '자주적' 개혁을 저지하는 데 실패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임을 결정한 것이다.

5월 5일 총리대신 김홍집도 사임한다. 군주는 그의 사직 상소를 즉시 받아들이고 학무대신 박정양을 총리대신으로 임명하면서 5월 8일에 신임 총리대신과 내부대신 박영효를 함께 소견했다. 이어 6월 4일 중요한 조칙이 『관보』에 실렸다. "지난 11월 12일 종사에 서고하여 청국의 간섭을 끊고 대조선국의 고유한 독립 기초를 확정한 뒤, 〈시모노세키 조약〉을 거쳐 세계에 드러내는 빛을 더했으니 이 영예를 기념하는 독립 경축일을 정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14일 창덕궁 연경당 일대에 축하 원유회(園遊會)를 열고 국한문 혼용의 조서를

내렸다(『고종실록』 해당일 조). "오늘 원유가회(園遊嘉會)에 날씨가 맑고 아름다운데 우리 정부와 각국 사신(외교관)과 신사와 기업인[士商]이 하나가 되어 즐기니 이는 참으로 '세계상(世界上)의 화평(和平)한 복(福)'"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일본인 기자 출신 역사가는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이 가든 파티에 내외의 신사 숙녀 3,000여 명이 초대되었는데, 이는 내무대신 박영효의 뜻이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독립제(獨立祭)라고 불렀다고 전한다(菊池謙讓, 1939: 381). 이노우에 공사는 바로 이 계획이 『관보』를 통해 알려진 다음날 입궐하여 하직 인사를 했기 때문에 군주는 이 원유회에서 그의 송별연을 함께 했다. 이노우에 공사로서는 씁쓸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1894년 9월에 부임해 약 7개월간 조선 군주와 벌인 씨름은 결국 군주의 승리로 끝났다.

(2) '을미개혁' 속의 법관양성소와 한성사범학교 탄생

◆ 법관양성소 탄생

1894년 12월 12일 '홍범 14조' 반포 후 4일째인 12월 16일 법무대신 서광범은 재판의 관할과 형구(刑具) 사용에 대한 의견을 왕에게 아뢰었다. 즉, 지방에서 하는 재판 외에 법무아문의 일체 재판은 의금사에서 임시로 하고 있는데, 의금사를 법무아문 임시 재판소로 이름을 고쳐 여러 가지 재판을 모두 이 재판소에서 하고, 본 아문에서는 재판과 형벌 적용 등의 일은 일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형 집행 기구인 의금부를 근대적인 재판소 제도로 개편한다는 계획 아래 과도적인 조치로 새로운 임무 부여에 대한 건의였다. 법무대신은 형구에 관해서도 사형 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형장(刑杖)으로는 태형(笞刑)만 적용하고, 칼과 족쇄도 가두는 곳에서만 사용하게 하되 가벼운 죄를 지은 죄인이나 노약자에게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으며, 중앙과 지방의 각 감영, 각 읍, 각 진영(鎭營) 모든 곳에서 이 규례를 따르게 하겠다고 건의했다. 왕은 서광범의 건의를 모두 윤허했다.

'홍범 14조'는 청국으로부터 자주 독립, 왕실의 전범, 왕의 국정 방식,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부세의 법령 근거,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 왕실과 각 관부의 재정 기초, 지방 관제의 개정과 지방관의 직권 개정 등(이상 1~10조)에 이어 자질이 있는 젊은이의 외국 유학(11조), 장교(將校) 교육과 징병제도 확립(12조), 민법 및 형법을 엄정하게 해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못하게 하여 백성의 생명과

재산 보호(13조), 문벌을 가리지 않는 인재 등용(14조) 등을 규정했다. 서광범의 이러한 건의는 곧 '홍범 14조' 중 13조의 실행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취지는 같은 해 3월 25일 반포된 '재판소구성법'(법률 제1호)에서 완성된다. 1895년 3월 25일의 법률과 관제 개정에 관한 칙령은 곧 '홍범 14조'의 실현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왕조 통치체제의 진정한 근대적 개혁의 실현이었다. 법관양성소는 특히 형률의 공정한 적용, 집행을 위한 근대적 재판제도의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것이다. 이때 이루어진 재판소 제도와 내각 관제의 개정은 다음과 같다.

1895년 3월 25일에 반포된 '재판소구성법'은 총리대신 김홍집과 법무대신 서광범이 병서(竝書)했다. 이 법은 제1편 재판소, 제2편 재판소 직원, 제3편 사법사무 장리 등 3편으로 구성되었다. 재1편 재판소는 제1장 총칙에 이어 제2~6장에서 지방재판소,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 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 등을 규정했다. 그리고 재판소 직원으로 판사, 검사, 서기, 정리(廷吏) 등을 둔다고 했다. 그리고 법률 제1호와 함께 내각 관제를 비롯해 다음과 같은 각부 관제들이 칙령으로 반포되었다.

내각 관제, 내각 소속 직원의 관제(칙령 38~39호)
중추원 관제와 사무장정(40호)
각부 관제 통칙(41호)
외부 관제, 외교관 및 영사관 관제, 공사관과 영사관 직원령(42~44호)
법부 관제, 학부 관제, 관상소 관제, 농상공부 관제(45~48호)
법관양성소 규정(49호)
재판소 처무 규정 통칙, 판사, 검사의 관등 봉급령, 정리의 봉급(50~52호)

나머지 중앙 부처인 내부, 탁지부, 군부, 관세사(管稅司) 및 징세서(徵稅署)의 관제는 3월 26일 칙령 제53~56호로 반포되었다. 이 가운데 칙령 제45호 법부 관제는 제12조에 "법부에 법관양성소를 치(置)하야 법부대신의 직할에 속하게 한다"고 했다. 칙령 제49호로 반포된 법관양성소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법관양성소는 속성함을 기하고 생도를 범모(汎募)하야 규정하는 학과(學課)

를 교수하고 졸업 후에 사법관으로 채용함이 가한 자격을 양성하는 처(處)로 함.

제2조 직원: 소장 1인, 교수 약간인

제4조 무릇 본소의 생도 되는 자는 나이 20세 이상으로 입학시험에 급제한 자 혹은 현재 관서에 봉직하는 자를 한함. 입학시험과목은 좌와 같음: 한문작문, 국문작문, 조선역사 및 지지(地誌) 대요

제10조 본소 규정한 학과(學科)를 이수하여 졸업시험에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함.

제11조 본소 졸업증서를 영유한 자는 사법관에 채용할 수 있음.

제12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함.

이상과 같이 법관양성소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자주적 근대화라고 할 수 있는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탄생한 최초의 관립 전문학교다. 그것도 이 개혁에서 가장 중요시한 재판소 제도의 확립을 내세워, 이 신식 제도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 한성사범학교 탄생

3월 25일에 시작된 관제 개혁은 5월 하순까지 계속되었다. 3월 25일의 학부관제 개정에 관한 칙령은 제6조에 학무국의 사무 분야로, 1. 소학교(小學校)와 학령 아동(學齡兒童)의 취학에 관한 사항, 2. 사범학교에 관한 사항, 3. 중학교에 관한 사항, 4. 외국어학교, 전문학교 및 기술학교에 관한 사항, 5. 외국에 파견하는 유학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에 근거하여 4월 16일에는 사범학교에 관한 것으로 '한성사범학교관제(漢城師範學校官制)'(칙령 제79호)와 '한성사범학교직원관등봉급령(漢城師範學校職員官等俸給令)'(칙령 제80호)이 반포되었다.[8] 이것은 소학교와 중학교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범학교의 설립이었다.

한성사범학교는 2월 26일에 내린 백성과의 약속으로서 모든 국민의 교육 기회 제공에 필요한 교원 양성 기관으로 발족된 것이다. 소학교에 관한 칙령은 이보다 훨씬 뒤인 7월 19일에 내려졌다. 한성사범학교에 관한 칙령은 "교관 양성을 목적

8 칙령집에는 칙령 제79호, 제80호 아래 "짐이 보통학교 교수인 영직칭직명건(另職稱職名件)을 재가하여 반포케 하노라."라고 되어 있다.

으로" 하되 6개월 과정의 속성과(速成科)와 2년 과정의 본과(1899년 4년으로 개정)를 두고, 교육자의 덕목으로 정신 단련, 덕행 함양, 지조 양성 등을 중시하고, 국왕을 높이고 나라를 사랑하며 충효와 대의를 밝히는 교육을 강조했다. 한성사범학교의 생도들은 처음부터 외국 지리에 앞서 조선의 지리와 역사를 반드시 이수해야 했으며 이 점은 법관양성소도 마찬가지였다. 중학교에서는 실업 종사를 권장하면서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의 도를 가르치게 했다.

(3) 육영공원의 발전적 해체: 미국 선교사들에게 의뢰한 대학 창설 계획

◆ 국립 기독대학 설립 계획

앞에서 서술했듯이 1883년 미국에 보빙사로 다녀온 홍영식은 11월 22일 왕에게 귀국 보고를 올리면서 미국의 여러 문물제도가 다 우수하지만 교육 한 가지는 반드시 그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선 주재 미국 공사 푸트를 통해 미국 국무장관에게 젊은 교사 3명을 선발해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국무성의 저명한 교육국장 존 이튼이 이를 수령하여 헐버트 등 3명의 교사를 조선에 보냈다. 1886년 6월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왕의 근시 기구인 내무부 산하에 육영공원을 설립했다. 육영공원은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서양 문물에 관한 지식을 갖춘 관료를 다수 배출했다. 그러나 이 해 일본 공사관의 압력으로 군국기무처가 발족하면서 기존의 관부들이 개편되어 육영공원은 제도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1894년 6월 28일 군국기무처의 의결 사항으로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 개정에서 학무아문의 전문학무국(專門學務局) 소관 기관으로 중학교, 대학교, 기예학교(技藝學校), 외국어학교와 전문학교 등이 열거되었다. 이 체제 중 1895년 3월 25일의 관제 개정에서 학무국의 소관 사무 가운데 '외국어학교'가 그대로 존속했다. 육영공원은 영어를 주로 가르쳤기에, 1894~1895년의 외국어학교 설치를 통해 영어학교로 개편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순리적이다. 그러나 육영공원 교사들이 스스로 일컬은 칼리지(College) 기능은 외국어학교에서 충족되기는 어려웠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전문학무국이 관리할 교육기관 가운데 '대학교'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1895년 3월 25일의 학무아문 관제에서는 소학교, 사범학교, 중학교, 외국어학교, 전문학교, 기술학교 등이 열거되나 대학교는 보이지 않

는다. 이는 당시에는 대학교 설립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하지만 1895년 초에 내부대신 박영효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선교사들에게 왕과 왕비의 요청으로 대학교 설립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릴리어스 언더우드(Lillias Horton Underwood, 1851~1921) 여사는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선교사의 부인으로 본래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소속으로 1888년 3월 조선에 와서 제중원 의사이면서 왕비의 시의가 되었다. 언더우드 여사는 1895년 2월 2일(양력) 자로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 본부의 총무 프랑크 엘린우드(Frank F. Ellinwood) 박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김인수 역, 2006).

> 내부대신이면서 지금 정부의 수반인 박(영효)이 며칠 전에 언더우드 씨를 불러 국립대학의 주체가 기독교인이어야 하고, 그것을 왕비가 지지하고 있다면서 언더우드 씨의 의견을 묻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 그는 또 감리교 스크랜튼 의사도 불러 똑같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언더우드 박사가 그의 부름을 받고 돌아온 직후 그는 내 남편[언더우드 박사 - 필자]에게 국립 기독대학 설립을 위해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다시 제안했는데, 교과과정을 짜고, 교사들을 뽑고, 학교의 위치를 선정하며, 건물 건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모든 일의 시작을 전적으로 책임지되 처음에는 개인 자격으로 그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왕은 은화 3만 달러를 줄 수 있는데, 처음에는 건물과 일용품을 위해 2만 달러를 주고, 임금을 위해 1만 달러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해는 정부의 특성상 기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의 말에 따르면 일본 사람들이 그 일을 맡으려 하며 대학을 일본인 교사들로 채우고 곧 대학을 장악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 일을 곧 시작하면 왕은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 물론, 모든 일이 제대로 정착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일이 국왕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선교부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의 성격상 선교부가 아니라 박사님의 허락과 동의를 요청해야만 합니다. … 오, 저희는 이 나라가 전환의 때를 맞이할 날들에 와 있다고 느낍니다. 실로 수확물들이 낫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조는 필자)

언더우드 여사가 이 편지를 쓴 1895년 2월 2일(양력)은 청일전쟁이 종반에 접

어든 때였다. 1894년 12월 12일에 '홍범 14조'가 반포된 뒤 2월 2일에 '교육조칙'이 나오기 전, 다시 말하면 '교육조칙'이 준비되고 있던 중이었다. 그리고 관제는 1894년 6월 28일 자로 반포된 학무아문제도가 유효한 상태였으며 전문학무국이 소관 기관으로 대학교의 설립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였다. 당시 박영효는 내부대신으로서 군주의 신임을 받고 있던 때였고, 미국의 사정도 한 차례의 여행을 통해 알고 있었다. 따라서 박영효가 왕과 왕비의 뜻을 받들어 선교사 언더우드 부부에게 대학교 설립을 의논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되는 조건이다. 왕과 왕비는 국립 (기독)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학교의 위치와 건축 계획을 언더우드 부부에게 의뢰하고, 일차로 건물과 일용품을 위해 2만 달러, 임금으로 1만 달러를 지불할 수 있다고 하는 박영효의 전언은 당시 정부가 대학을 설립할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언더우드 부부가 이 일이 '국왕의 사업'으로서 이 나라의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일이므로 자신들이 이 일에 관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선교 사업부 총무에게 허락을 요청한 것에서도 사안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내무대신 박영효와 함께 개혁을 추진하던 법무대신 서광범이 미국 망명 중에 워싱턴의 미국 정부 교육국의 동아시아 서적 도서관 사서 생활을 했다는 것도 조선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릴리어스 언더우드의 부군 호러스 언드우드 박사는 이 편지에 추신을 붙여, 자신은 지금 편지를 쓸 시간이 없어서 아내가 읽어준 편지 내용을 듣고 간단히 몇 자를 적는다고 밝혔다. 아내가 조선 정부 관리들이 감리교 측에도 의논할 것이라고 썼지만(위 인용문에서는 생략했음 - 필자) 정부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은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시작 단계로서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자세히 쓰겠다고 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언더우드 박사는 1886년에 이미 경신학교(儆新學校, 연희전문학교의 전신)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조선 국왕이 대학 설립 계획을 맡길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다.

이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더 들어 있다. "남편 언더우드 박사는 왕의 계획을 전해 듣고 올리브 에비슨(Olive R. Evison) 의사와 상의해 왔는데 에비슨 씨는 언더우드 씨가 그 일을 수행하도록 열정적으로 격려하고 있고, 대학이 실제로 문을 열게 되면 언더우드 박사 자신은 1주일에 3~4시간만 가르치고 선교사로서의 본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맡는 시간도 모두 넘겨받을 분이 미국에서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에비슨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

학 출신으로 교수생활을 하다가 1893년 6월 조선으로 왔다. 그는 제중원 원장으로 부임하여 1894년 9월 청일전쟁 중 병원에 대한 일본의 위협을 막기 위해 국왕이 그에게 제중원 관리를 위탁했다.

이 에피소드는 왕과 왕비가 국립 대학 설립을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맡기려 한 의도와 매우 비슷하다. 왕이 대학 설립을 청일전쟁 중에 비밀리에 서둘러 진행한 것은 일본 정부가 '내정개혁'을 요구하면서 관비 유학생을 일본에 보내길 요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즉, 왕은 일본이 재능 있는 '문벌자제들'을 뽑아 데려가 일본 교육기관에서 교육하여 친일 관료를 양산한다면 국가의 장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감리교 주교 힌데의 알현 예정에 관한 내용이다. 릴리어스 언더우드는 힌데 주교가 서울에 와서 왕을 알현할 예정이며, 왕은 그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힌데 주교는 조선의 국왕이 "선교사는 우리에게 신문명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므로, 더 많은 선생을 보내달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이처럼 1895년 2월 국왕은 서양 문명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학을 설립하려는 의지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릴리어스 언더우드 여사가 이 편지를 쓴 1895년 2월 2일(양력)은, 이노우에 공사가 스기무라(杉村) 서기관으로 하여금 조선 정부 외부를 방문하여 미국 주재 조선공사관의 사무를 주미 일본공사관에 위임할 것을 요구한 바로 그날이다. 일본군이 리훙장의 북양함대의 거점인 뤼순을 함락한 전승 분위기를 이용한 압박이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조선 군주는 조선 주재 실 미국 공사에게 미국 정부가 개입하여 일본의 이러한 음모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노우에 공사는 조선 보호국화의 의도를 가진 이 압박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는 않았다. 조선 왕실 측에서 대학 설립을 미국 선교사를 앞세워 추진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 시기의 대학 설립 의지가 1895년 3월 25일 반포된 관제 개정에서 사라진 까닭은 달리 파악할 문제다. 학무아문의 학무국 규정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전문학교, 기술학교만을 들고 대학교를 뺀 것은 아마도 현재 기반으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시기에 조선 정부의 배재학당에 대한 특별한 지

원이 이루어지고, 이 지원 아래 배재학당 안에 대학부가 설치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 배재학당에 대한 정부 지원

미국 감리교 목사 아펜젤러(H. G. Appenzeller)는 1885년 6월 인천에 도착하여 조선 주재 미국 공사관 포크 중위의 편지를 받았다. 포크 중위 자신이 조선 국왕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당신(아펜젤러)이 이곳에 학생을 가르치러 왔으므로 이제 학교와 학생을 제공해 달라고 조선 군주에게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조선 국왕이 당신을 좋게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김세한, 1965: 97).

아펜젤러 목사는 서울로 와 정동에 집을 사서 자리잡고 같은 해 8월 학생 2명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조선 군주는 곧 10명의 학생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1886년 6월에 '배제학당(培材學堂)'이란 교명을 지어 당대 명필인 정학교(丁學喬)의 글씨로 편액을 만들어 하사했다. 당시는 육영공원의 설립을 추진하던 중이었지만 왕은 선교사에 의한 교육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와 같은 군주의 특별한 배려 아래 배재학당은 1887년 서양식 건물의 교사를 짓고 학생 수도 67명이나 되어 학교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

1890년에 발표한 '배재학당규칙'에 따르면 수업료는 매월 3냥 정도였다. 『배재 80년사』(1965)는 이 학교를 다닌 주시경 선생의 이력서, 『이승만 박사전』(李北 저), 유병민(劉秉敏) 교수의 기록 등에 근거하여 이 학당의 '성장기의 학제'로 보통과(특별과, 4년 과정), 한문과(본과, 5년), 만국지지과(특별과, 5년), 영어과(본과, 5년), 대학부(3년) 등이 있었던 것으로 재구성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대학부의 존재다. 규장각 도서 가운데 조선 정부가 배재학당을 지원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서로 ①「배재학당합동(培材學堂合同)」(규 23177), ②「배재학당보조속합동(培材學堂補助續合同)」(규 23187),「배재학당교사속합동(培材學堂敎師續合同)」(규 23201) 등 3점이 있다. 문서의 '합동'(합의)의 연월일과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1895년 2월 16일(양력)

외무아문대신의 명을 받들어 주사 현채(玄采) - 배재학당 교사 아펜젤러(亞扁薛羅, Henry G. Appenzeller, 미국)

② 1898년 3월 26일(양력)

학부(學部) 학문국장(學務局長) 한창수(韓昌洙), 외부교섭국장 이응익(李應翼) - 배재학당 교사 아펜젤러

③ 1900년 3월 1일

학부 학무국장 김각현(金珏鉉), 외부교섭국장 이응익(李應翼) - 배재학당 교사 아펜젤러

1. 본 학당은 조선 정부가 보내는 학생 200명을 맡아 교육한다.
2. 학생은 영문을 사업(肆業)하면서 점차 지리, 산학(算學), 화학, 의학 같은 공부를 늘인다.
3. 출척의 권한은 교사에게 전임한다.
4. 탁지아문은 지금부터 2월 초1일에 은화 200원(元)을 학무아문에 보내 학당에 전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비[紙筆丹墨等費]로 한다. 단 현재는 학생이 다 모아지지 않았으므로 매 1명 1원씩으로 하여 그 다과에 따라 학당에 보낸다. 이번에 50명이 차지 않더라도 50원을 보내어 수요에 충당하게 하고, 60명이 되면 60원, 70명이면 70원을 지급하여 200원을 한도로 한다(은화는 일본 지폐도 가하다).
5. 매월 말에 학당은 학생인수와 성명을 외무아문에 보내어 학무아문에 전하도록 한다.
6. 학생이 매우 재능이 못 미치면 퇴학[斥外]을 시키되 3년까지는 마음대로 진퇴시킬 수 없다.
7. 학생이 200명이 되면 교사(教師)는 반드시 3~4명을 써야 되므로 이는 특별비용으로 충당한다(不用給辛金). 부교사(副校師)는 조선인으로 하여 학생 매 50명에 교사 1명씩 정하고, 가르치는 해원[教授該員] 월급[月銀]은 삭일에 20원을 지급하여 다음해 정월에 5원을 더하고 해마다 5원을 더한다. 교육에 힘쓰지 않으면 정부에서 퇴척한다.
8. 이 합동(계약서)은 5건을 작성하여 3건은 학무, 외무, 탁지 3아문에 두고, 2건는 미국 공관 및 본 학당에 둔다.

이는 조선 정부가 배재학당에 대해 최대 200명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의뢰하면서 학비로 학생 1인당 1원 기준으로 최대 200원을 지급하며, 교사에 대한 비

용도 정교사의 경우 매월 20원(해마다 5원씩 증액)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다. 배재학당 측은 창설자인 아펜젤러 목사, 조선 정부 측은 외무아문, 탁지아문, 학무아문의 담당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었다. 이 계약은 1895년 2월 16일(양력)에 시작하여 1900년 3월 1일(양력)까지 세 차례 연속해서 이루어졌다. 60명 안팎의 학생을 가르치던 배재학당에 정부가 최대 200명까지 수용하여 운영할 수 있게 지원을 한 것이다. 계약서에서 주목되는 것은 교육 내용을 "학생은 영문을 사업(肄業)하면서 점차 **지리, 산학(算學), 화학, 의학** 같은 공부를 늘인다"고 한 점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의학이 교과목으로 들어간 사실이다. 의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 의학전문 교육에 필요한 예비 학습 과목이라면 배재학당은 1899년에 창설되는 학부 의학교에 대비한 기초 교양에 해당하는 교육을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조선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관립 중학교가 설치되는 1900년을 끝으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배재학당은 1886년 육영공원과 함께 미국 선교사 또는 교육 당국의 관심 아래 설립된 공통점이 있다. 배재학당은 육영공원과 달리 선교사가 세웠지만 군주가 교명을 지어줄 정도로 조선 정부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일본의 강압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육영공원은 해체되었지만 배재학당은 정부의 대학 설립 의지를 대리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이런 연고는 1896년 12월 독립문 기공식 때, 배재학당 학생들이 진보가를 부르고 육영공원의 남은 학생들이 체조하는 모습에서 행사를 빛내는 형태로 이어졌다.

(4) 을미개혁의 좌절과 을미사변: 왕비 시해의 참극

1895년 상반기에 진행된 조선 정부의 자주적 근대화의 노력은 5월 14일에 창덕궁 연경당 일대에서 '내외 인사 3,000명'을 초대한 원유회를 열면서 정점에 달했다. 독립 축제로 내건 명분은 일본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일본 공사관이 조선 정부가 일본의 요구를 무시한 채 자주성을 발휘하면서 진행한 과정을 모를 리 없었다. 이 축제가 준비되고 있던 시기에 이노우에 공사가 사임을 각오한 상황은 어느 모로나 일본의 반격이 예상되는 일이었다. 이노우에 공사는 8월에 후임 미우라 고로(三浦梧楼) 공사와 함께 다시 조선에 와서 그와 함께 조선 군주를 알현하고 돌아갔다.

1895년 4월 27일 왕은 내부대신 박영효에게 내각 총리대신의 사무를 서리하

도록 명했다. 그에 대한 왕의 신임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다. 이 날 '군인현역정한연령조(軍人現役定限年齡條)'(칙령 제84호)가 반포되었다. 군부에서 고령의 상위 계급자를 줄여나가는 방안이었다. 이때 내각 총리대신 박영효는 당시 군사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 경무청 순검(警務廳巡檢)에게 서양총[洋鎗]을 나누어주고 사격 연습시키는 일을 건의하여 즉석에서 왕의 허락을 받았다. 박영효는 총리대신으로서 왕실의 호위와 수도 치안에 대한 방책을 강구했다. 열흘이 지난 5월 8일 왕은 총리대신으로 박정양을 임명한 뒤, 내부대신 박영효를 함께 소견했다. 인사 교체를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5월 14일 박영효의 날이라고까지 불린 창덕궁 원유회가 있은 뒤, 5월 16일 육군 무관의 진급령과 훈련대 사관 양성소 관제가 반포되었다. 훈련대는 박영효가 왕궁 경호의 방책으로 공을 들이던 현안이었다.


培材學堂合同 英語

開國五百四年乙丑正月二十二

培材學堂合同

朝鮮政府所送學生

[그림 7] 『배재학당합동』



하지만 그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고 말았다. 윤5월 1일 어전에서 왕궁의 위병을 훈련대로 바꾸기를 건의했을 때, 왕이 뜻밖에도 이를 거절하자 박영효는 그날로 사표를 냈다. 그리고 윤5월 14일 왕은 법부에서 그를 조사해 정죄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갑신년의 문제를 용서해 주고 특별히 충성을 다할 기회를 주었는데 "도리어 끝까지 나쁜 생각을 고치지 않고 반역을 은근히 꾀하여 그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는 혐의를 받았다. 박영효가 권세를 믿고 왕비를 폐하는 역모를 꾸몄다는 혐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영효의 폐비 모의 사건은 일본 공사관에서 꾸민 무고였다. 기쿠치 겐죠의 『근대조선사』(하)는 「밀고와 망명」란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소개한다(383~384쪽). 당시 진고개(현 명동) 일본인 거주지에 사사키(佐佐木留吉)란 자가 천하의 지사를 자처하면서 조선 인사들과 교류했는데 하루는 조선인 모(某)를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필담하던 중, 박영효가 "근일 폐비할 것(近日將廢妃)"이라는 문자를 몰래 가슴에 거두어 돌아와서 이것을 왕비 민씨 일족과 가까운 심상훈(沈相薰)에게 보이고, 심상훈은 이를 바로 왕비에게 가져가 보고했다. 왕궁(군주)에서는 이를 당시 박영효가 추진하던 위병(衛兵) 문제와 연결시켜 실제로 그가 불궤모반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에 박영효 체포를 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 공사관에서는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濬) 대리공사(이노우에 가오루 공사 귀국 중)가 외무대신 김윤식의 연락을 받고 박영효를 돕기 위해 그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고 또 사복 순사 10명과 보병 1소대를 보내 호위하여 용산을 갈 수 있게 조치를 한 것으로 적었다. 그런데 기쿠치 겐죠는 쫓기는 박영효에 대해 일본인 사이에서는 그가 "돌아온 살찐 말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거리를 누비는 위세[歸來肥馬輕衣街頭風]로 군중을 휩쓰는 귀공자로 뽐내어, 10년 유우(流寓)한 제2의 고향의 친구들을 돌아보지 않는 냉혈무정을 분개했는데 이 두 번째 망명을 보고 냉소 악매(惡罵)를 던지는 자 적지 않았다"고 했다.

박영효의 귀국은 청일전쟁 전에 조선 군주가 김옥균을 처단한 후 나머지 갑신정변 가담자들에게는 일괄적인 사면 조치를 내린 것이 계기가 되었다. 전쟁 중에 이루어진 그의 귀국에 대해 일본은 그가 조선 조정에서 활약하면서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내정개혁'에 도움을 주리란 기대로 조선 군주의 기용을 막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오히려 조선 군주의 자주성 발휘를 도우면서 큰 활약을 보여 이노우에 공사가 사직을 각오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자 이노우에 공사 귀국 중에 스기

무라 대리공사의 지휘 아래 무고로 그를 실각시켰던 것이다. 스기무라 공사가 박영효 체포령을 듣고 사복 순사와 1개 소대를 동원하여 그가 용산을 통해 서울을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왔다는 것은 일본 공사관이 그를 도운 것으로 위장한 행위였다. 그런데 7월 6일 왕이 그를 체포하여 엄하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내버려두고 따지지 말라"고 한 점은 주목된다. 이것은 널리 용서해 주는 은전(恩典)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군주 측이 박영효가 무고하다는 것을 알고 일본 공사관의 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를 피하게 내버려 둔 것일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1895년 5월부터 일본 군부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 조선에서 일본군의 철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했다. 1880년대 중반부터 근 10년간 많은 예산을 들여 군비를 증강하여 전쟁에 승리했지만 '삼국간섭'으로 랴오둥 반도를 '포기'하고 철군하는 상황에서 과연 완전 철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군부 지도자들은 최소한 조선에서 일본군이 획득하여 이용한 군사시설, 즉 전신선의 관리만은 기득권으로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金文子, 2009). 이 정도의 소득도 없이 본국으로 병력을 철수시킨다는 것은 대륙 진출의 구실로 내세웠던 새로운 동양 건설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일본 군부는 정부에 군사시설 관리를 위한 일본군의 잔류를 조선 정부에 요청하도록 요구했다.

윤5월 7일 스기무라 대리공사 앞으로 외부대신 김윤식의 이름으로 작성된 '주병(駐兵) 의뢰서'가 전달되었다. 이것은 조선 군주의 재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5월 30일 조선 정부 각의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었지만 완전 철수를 주장한 군주의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스기무라 대리공사가 도쿄의 이노우에 공사에게 보낸 윤5월 8일 자 전보에는 수비병 주둔 의뢰 문제는 국왕의 반대로 취소되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5월 12일, 스기무라 대리공사가 국왕을 알현했을 때, 박영효 내부대신과 어윤중 탁지대신 역시 철수를 주장하여 국왕이 신뢰를 표시했다. 당시 일본군은 조선에 약 6,000명이 주둔해 있었지만 국왕은 공사관 호위를 위한 1개 중대(200명)만 허락했다. 스기무라 대리공사와 이노우에 공사는 5월 하순 군부의 강력한 잔류 의지에 대비해 국왕이 알지 못하는 '주병 의뢰서'를 만들어 본국 정부에 전달하여 일본군 주둔을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자, 스기무라 대리공사의 알현 직후 사사키를 동원해 박영효 역모설을 날조하여 그를 실각시키면서 조선

정부에 파동을 일으킨 것이다. 일본 공사관의 이러한 작란은 3개월 뒤인 8월 20일 왕비 살해의 참극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한편 박영효가 일본으로 재차 망명한 후 10일째인 윤5월 25일에 왕은 그가 관여했던 훈련대의 연대장으로 부령(副領) 홍계훈(洪啓薰)을 임명하고, 시위대의 연대장으로 미국 주재 공사관 경력이 있는 부령 현흥택(玄興澤)을 임명했다.

일본 군부는 7월에 접어들어 조선 병력 잔류를 위한 적극적인 방책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대원군을 다시 등장시켜 그가 왕비를 살해하는 형식으로 비상사태를 만들고, 이때 일본군이 서울을 장악하여 친일정권을 세워 국왕을 무력화하는 방안이었다(金文子, 2009). 이웃나라의 왕비를 살해한 전대미문의 참극이 실제로 8월 20일 일어났다. 왕비 피살의 참극은 청일전쟁 아래서 일본 정부의 압박 아래 진행된 조선의 '개혁'이 자주성을 발휘한 데 대한 일본의 제동이자 보복이었다. 왕비가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던가, 그 때문에 대원군과의 갈등이 깊어져 살해되었다는 등의 해석은, 사실은 일본이 가해자의 진실을 덮기 위해 꾸며낸 것이다(이태진, 2007). 1894년 12월의 '홍범 14조' 선포 이후에 추진된 '을미개혁'에 대한 해석이, 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박영효의 '역모'의 진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혼미 속에 빠져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빚어진 것이다. 을미개혁은 극일의 노력으로 진행된 진정한 자주적 근대화의 행보로서, 법관양성소의 탄생은 이 개혁의 중심에 있었다. 한성사범학교의 탄생 또한 이 개혁이 지향하는 국민교육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제5절 자랑스러운 역사 되찾기: 항일 민족운동의 중심에 선 관립 전문학교들

1) 국권 피탈 시기 관립 전문학교 학생 및 그 출신들의 투쟁

(1) 1904년 러일전쟁 후 일본의 조약 강제를 통한 한국 국권 탈취

1895년 8월 20일의 명성황후 시해사건으로 국제적인 궁지에 몰린 일본은 타이완 식민지배 체제 구축에 집중했으며 한국에 대한 간여는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군부는 러시아와의 결전을 위해 임시 특별예산 제도를 도입해 거액의 국가 예산을 군비 증강에 투입했다. 일본이 조선을 거쳐 랴오둥 반도로 진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동양 건설론(정한론)에 뿌리를 둔 팽창주의의 강박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주도면밀한 준비 끝에 1904년 2월 8일 인천항과 뤼순 항의 러시아 군함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이어 2월 10일에 '선전(宣戰)의 조칙(詔勅)'을 내렸다. 한국에는 한국임시파견대가 들어와 서울에 주둔했는데 1개 사단 규모의 이 병력은 전시 편제의 제1군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동원되었다. 이 부대는 곧 한국주차군(韓國駐箚軍)으로 이름을 바꿔 서울에 장기 주둔하면서 국권 관련 조약을 강제할 때 동원되어 한국 정부에 군사적 압력을 가했다. 일본이 러일전쟁을 계기로 대한제국에 강요한 조약은 아래와 같다.

① 1904. 2. 23. 의정서
② 1904. 8. 22. 제1차 일한협약
③ 1905. 11. 17(18). 제2차 일한협약
④ 1907. 7. 24. 한일협약
⑤ 1910. 8. 29. 한국병합조약

①은 군사기지 사용권을 요구하고, ②에서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교와 재정 부문의 고문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③은 가장 중요한 국권인 외교권을 일본 정부가 보내는 통감이 대행하겠다는 것이다. ③의 요구에 대해 황

제는 끝까지 응하지 않고 사후에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특사를 보내 그 불법성을 폭로하자 이를 조약 위반이라 규정하고 한국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면서 ④를 통해 통감이 한국의 내정까지 감독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국의 신민들이 의병 투쟁을 벌이자 ⑤를 강제하여 한국의 영토와 인민을 일본제국에 합병시켜 버렸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조약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문서 변조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②는 각서(Memorandum)에 불과한 것인데 영어 번역에서 'Agreement'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임의로 제목을 붙여 약식 조약(Agreement)처럼 보이게 했다. 각서는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것인 반면, 조약은 약식이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었다. ③의 '제2차 일한협약', 즉 을사보호조약의 경우도 원문에는 비어 있는 제목 란에 'Convention'이란 단어를 집어넣어 정식 조약처럼 보이게 했다. 이렇게 변조된 영문본이 영국, 미국 정부에 전달된 뒤,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묵인받는 '제2차 영일동맹',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성사시켰다.

이 조약들은 모두 대한제국의 국권에 관한 것들이었으므로 당연히 국가 원수가 발행하는 협상 대표 위임장, 비준서 등을 갖추는 정식 조약의 형식이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단순히 문서 형식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 무력 동원으로 한국 황제와 정부 대신들을 위협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1907년 7월에는 고종황제가 일본의 불법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대표를 보냈을 때,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본국 정부에 대해 현 대한제국의 황제를 강제 퇴위시킬 것을 제안하여 성사시켰다. 고종황제가 이를 거부하자 영친왕을 인질로 데려가는 술책으로 대한제국 황실을 압박하여 그 목적을 달성했다.

(2) 1905년 11월 '보호조약' 강제 시 법관양성소 학생들의 저항

나라의 주권이 이렇게 강제로 탈취당하는 상황에서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했던가? 1905년 11월 17일 '보호조약'이 강제된 4일 뒤인 11월 21일에 한국 정부 경무(警務) 고문 경시(警視) 마루야마 주우도시(丸山重俊, 1855~1911)는 하야시 곤스케(林権助) 특명전권공사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렸다.

> 어제 법관양성소 교당(敎堂)에서 슬피 우는[哀號] 소리로 통곡하는 것이 오랜 시간 교당을 가득하게 하여 이웃 주민들이 놀라서 그 까닭을 알아보니 자기들은 여러 해 법률을 공부하였고 또 배우고자 교당에 있는 것인데 이제 나라가 망하고 산하(山河)가 비어서 법률의 온오(蘊奧)를 다 안다고 해도 어디에 이를 써먹을 수 있을까,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것만 못하다. 전 생도들이 이래서 통곡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각자 자택으로 돌아가 이날부터 교문을 닫고 통학하는 자 없다고 하였다 ….[9]

이어 마루야마 경시는 경성학당(京城學堂) 같은 곳도 100여 명의 학생이 어제 왠지 퇴학을 신청했는데 이유는 앞과 마찬가지로 원망스런 전망[怨觀]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11월 27일 마루야마 경시는 하야시 공사에게 다시 법관양성소 생도들에 대한 후속 보고를 올렸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24권, 「128. 시국에 관한 보고(時局ニ關スル報告)」]. 법관양성소 학생들이 비관을 못 이겨 휴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학생들은 신조약(보호조약) 파훼(破毁)의 상소문을 지어 다수가 연서하여 교관 정명섭(丁明燮)이 이를 가지고 입궐해 상소를 올렸다고 한다. 당시 많은 개인이나 단체가 황제에게 상소하여 보호조약의 파훼를 선언할 것을 간언했다. 법관양성소 학생들도 법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통곡만 하고 있을 수 없어서 우국충정으로 파훼 상소를 올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학생들의 시위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러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상태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침을 세웠다(稻葉千晴, 2016). 1904년 2월 6일 일본군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한반도에 제일 먼저 진출해 서울에 1개 사단을 상주시켰다. 타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모든 조치는 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많은 시설을 일본군이 장악하고 사용했다. 한국인이 러시아와 통모하여 군기를 누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보사와 우체사를 빼앗았다. 전쟁이 끝나면 돌려준다고 했지만 이후 계속 점거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매천야록』 4: 301). 통신시설은 전시나 평시나 국가 운용에서 가

9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권, 「76. 한국황제(韓國皇帝)의 병환(病患)과 법관양성소생도(法官養成所生徒) 및 경성학당학생(京城學堂學生)의 배일운동(排日運動) 등 동정(動靜)에 관한 건(件)」

장 중요한 시설이었다.

전쟁 중인 11월에 하야시 공사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사령관은 한국의 경찰력이 치안을 유지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며, 전국의 경위권을 일본군이 담당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한국 정부와 각국 공사에 전했다. 이후 한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일본 군사경찰의 명을 따라야 한다는 19개조의 법령을 반포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일본 사령관의 손을 거쳐 직접 형사상의 처분을 한다고 했다. 원래 계획한 계엄령을 실제로 선포한 것이다. 그 가운데 제4조는 무리를 지어[結黨] 일본에 반항하거나 일본군에 항적(抗敵)하는 자, 제15조는 결집회사(結集會社)하거나 신문·잡지 광고 혹은 다른 수단으로 치안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17조는 군사령관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처벌한다고 했다(『매천야록』 4: 325).

당시 서울에는 서북학회, 관북학회, 기호, 양남, 관동 등의 학회가 잇따라 설립되어 서울에 본부, 지방에 지회를 설립하는 등 학교와 사회단체가 많이 생겼다. 그중 사립은 조금 나은 형편이었으나, 관립, 공립 학교는 모두 일본군의 검제(鈐制)에 묶여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웠다(『매천야록』 4: 395). 1905년 보호조약은 이런 상황에서 강요되었고, 이에 대한 법관양성소 학생들의 저항도 앞에서 서술했듯이 학교 안 교당에서 호곡하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3) 1907년 6월 제2차 만국평화회의 특사 이준(李儁)의 순국

1905년 9월 대한제국 황제(고종)는 러시아 황제(니콜라이 2세)로부터 특별한 초청장을 받았다. 1899년 만국평화회의에 이어 제2차 만국평화회의를 1906년 8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기로 했으니 대한제국도 대표를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 9월의 포츠머스 강화회의로 종결되었지만 이 전쟁을 계기로 여러 가지 국제 문제를 경험한 만큼,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회의가 필요한 때였다. 제2차 회의는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지만, 제1차 회의의 제안자인 러시아 황제도 초청권을 가져서, 그간 양국이 일본에 대한 외교에서 공동보조를 취해 온 것이 많았으므로 대한제국 황제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일본 정부는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특파대사로 한국에 보내 보호조약을 강제했다. 한국 황제는 조약을 강요받는 자리에서 이 평화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가졌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 18. — VENDREDI 5 JUILLET 1907

Courrier de la Conférence

DE LA PAIX

Rédigé par WILLIAM T. STEAD

Publié sous les auspices de la FONDATION POUR L'INTERNATIONALISME à La Haye

Directeurs-Editeurs: MAAS & VAN SUCHTELEN

BUREAUX: Princessegracht 6A, La Haye. — Téléphone No. 287. — Adr. Télégr. MAASSUCHTELEN.

AVIS.

Le squelette de la fête.

Qu'est-ce que la Contrebande de Guerre?

[그림 8] 영국 유명 언론인 윌리엄 스테드가 평화회의 보도를 위해 4개월간 발행한 『평화회의 소식』에 실린 세 특사와 "공고사" 전문 보도. 왼쪽이 이준 열사다.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조약 강제를 마친 뒤인 12월에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바로 주최국인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이 회의를 연기하는 교섭을 벌였다. 한국 황제는 1906년 6월 22일 자로 미국인 호머 헐버트에게 전권위임장을 발부하고 동시에 같은 날짜로 9개 수교국 국가 원수에게 보호조약을 인정하지 않고 공사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교섭이 성공하여, 제2차 만국평화회의는 결국 1907년 6월로 연기되었다.

대한제국 황제는 이에 굴하지 않고 1907년 4월부터 비밀리에 이상설(李相卨), 이준(李儁), 이위종(李瑋鍾) 3명을 특사로 임명하여 비밀리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경유하여 헤이그로 파견했다. 3명의 특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사 이범진(李範晉)을 통해 평화회의 입장 문제에 대한 러시아 측의 도움 여부를 마지막으로 타진했다. 3명의 특사는 여기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개회 후 10일이 지난 6월 24일경 헤이그에 도착했다. 이들은 도착과 동시에 6월 25일 '국제분쟁평화적 처리방법 및 국제재판소에 관한 건'을 다루는 제1분과 위원회에 직접 나가 일본의 불법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의제로 삼도록 제안하면서 황제의 친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제1차 회의에서 이미 회원국이 된 일본의 반대로 의제 채택에 실패했다.

그리하여 3명의 특사는 6월 27일 자로 '공소사(控訴詞)'를 각국 대표 및 의장에게 전달했다. 1905년 11월의 '보호조약'은 일본인이 한국 황제의 재가 없이 체결한 것으로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한제국 정부에 무력을 행사했으며, 대한제국의 법률이나 전통을 무시하고 행동했음을 밝히고, "이번 평화회의에 참가 자격이 있는데도 일본의 방해를 받고 있으니 각국 대표 여러분의 중재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대한제국과 우방국과의 외교관계 단절은 대한제국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침해당한 결과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요구한 것이다(尹炳奭, 1984: 67~69).

헤이그에서의 한국 특사 3명의 활동은 7월 1일 자로 세계 각지에 타전되었다.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은 7월 1일 발 '倫敦路透(런던 로이터 - 필자) 전보'로 「소위 조선의 항의(所謂朝鮮の抗議)」란 제목의 기사를 7월 3일 지면에 실었다. 세 특사의 활동은 각국 신문기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7월 9일에 기자단 조직인 국제협회에 이상설, 이위종이 귀빈으로 초대되었으며, 이위종은 유창한 외국어(불어, 영어)로 '한국의 호소(A Plea for Korea)'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세 명의 특사 가운데 이준이 법관양성소 제1회 졸업생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준은 1859년 함남 북청에서 출생했다. 본관은 전주이며 자는 순칠(舜七), 호는 일성(一醒), 해사(海史), 청하(靑霞), 해옥(海玉) 등을 썼다. 이성재(李性在), 이여천(李汝天), 이선재(李璿在)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다. 법관양성소에 등재된 이름은 이선재이며, 이 이름은 1896년 아관파천으로 일본에 망명하기 전까지 공문서에 기재되던 것이다. 이선재는 1887년 1월 1일 초시에 합격한 이후 상경해 안동 김씨 문중의 일원으로 명망이 높던 김병시(金炳始)의 문하에 들어갔다. 청일전쟁이 진행 중이던 1894년 8월 7일 순릉 참봉을 지냈으며, 1895년 4월 16일 법관양성소 속성과에 입학하여 11월 11일 졸업했다. 『구한국관보』에 따르면 졸업 후 안성군수, 법부주사 등의 관직을 거쳐 1896년 3월 10일 한성재판소 검사시보 주임 6등에 임명되었다. 장지연의 「이준전」(『韋巖文稿』)에 따르면 법부협판 김학우의 추천으로 평리원 검사가 되었으며, 당시 법부대신이던 장박에게 법률학을 배웠다고 한다(정숭교, 2008).

이준은 검사시보로 임명된 지 1개월 만에 면관되었다. 같은 해 2월 11일에 일어난 군주의 러시아 공사관 이주에 따라 정국이 불안한 가운데 그는 일본으로 망

명했다. 일본에서 그는 1895년 7월에 실각하고 일본으로 재망명한 박영효와 접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준의 행적은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그가 귀국한 시기도 1898년, 1900년으로 엇갈린다. 1904년 후반에 그는 공진회(共進會)라는 단체에 가입했다. 공진회는 개화노선을 표방하면서 민회를 열어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벌였다. 독립협회 운동의 한 갈래였다.

1904년 8월 연동교회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목사의 집에서 비정치적인 계몽운동을 추진했던 국민교육회가 조직되자 이준은 이에 참여하면서 1905년 1월에 입교했다. 1905년 5월 24일 헌정연구회가 창립되었을 때는 부회장이 되었다. 이 단체는 국가는 중민(衆民)의 합성체로서 군주만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입헌군주제를 추구했다. 1905년 11월 '보호조약'이 강제될 때, 이준은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운동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전덕기, 정순만 등이 이끈 상동교회 청년회는 황제에게 이 조약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이준이 상소문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로 이준은 1904년 이전까지는 주로 독립협회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다, 이후 러일전쟁을 통해 일본의 침략주의가 드러나자 반일운동에 앞장섰으며,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고종황제는 본래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내장원경을 지낸 이용익(李容翊)을 중심으로 특사를 보낼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용익이 1907년 2월에 사망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는 시점에서 이용익은 황제의 최측근으로 현상건(玄尙建), 이학균(李學均) 등과 함께 반일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용익을 체포하여 일본 '만유(漫遊)'를 시키고 조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까닭에 이용익은 주로 해외로 돌면서 러시아 공사 이범진과 연락하여 블라디보스토크 동의회(同義會)의 최재형(崔在亨) 등과 접촉하던 중 사망한 것이다. 이용익이나 최재형은 모두 함경도 출신이었다. 이준이 함경도 북청 출신인 것이 이용익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과정에 크게 참작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하튼 이준은 만국평화회의 특사의 일원으로 소임을 수행하다 객지에서 '병사'로 순국했다.

(4) 안병찬의 안중근 변호 활동

1907년 7월 초순 '헤이그 특사사건'이 알려지자 통감부나 일본 정부는 크게 긴장

했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제국에 대한 '온건 보호정책'을 포기했다. 황태자를 황제(순종)의 위에 오르게 하고 황제는 태황제(太皇帝)로 정치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 황세제(皇世弟, 영친왕)를 유학을 구실로 도쿄로 데려가 인질로 삼았다. 그리고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상대로 '한일협약'(1907. 7. 24)을 체결하여 통감이 대한제국의 내정 전반을 '섭정(攝政)'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내각 총리대신에게 별개의 '각서'를 제시하여 재판소와 감옥의 신설, 군대 해산, 일본인 관리의 채용 등에 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그해 7월 31일~8월 1일에 자신이 지은 거짓 조칙으로 '군대 해산'을 단행하자 전국적으로 의병의 저항이 일어났다.

한국의 의병 투쟁은 1908년 일본군과의 교전 횟수 1,976회, 참가 의병 수 82,767명, 1909년 2~6월간 교전 횟수 1,738회, 참가 의병 수 38,593명으로 집계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森山茂德, 1992: 171~172; 海野福壽, 2000: 334). 이토 히로부미는 최후의 수단으로 1909년 1~2월에 황제를 앞세운 지방 순행(巡幸)을 계획했다. 1909년 1월 7~12일까지 기차를 이용해 대구-부산-마산[남순(南巡)]을 다녀오고, 1909년 1월 27일~2월 3일까지 평양-의주-개성[서순(西巡)]을 다녀왔다. 황실과 통감부의 '협조' 관계를 과시하여 한국인들의 저항을 진정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황제를 보기 위해 환영 나온 수십만의 인파 물결을 보고 이토 히로부미는 자신의 정책에 한계를 느끼고 사임을 결심했다. 『황성신문』은 "대구에 3,000명, 부산에서는 '항구를 가득 메운 군중', 마산 3만, 평양 10여 만 명, 의주 1만 5,000명, 개성 10만 명에 달했다"고 환영 인파의 규모를 보도했다. 통감은 서순에서 돌아온 뒤 4일 만인 2월 8일 한국 황제에게 하직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는 4월 하순에 총리대신 가쓰라 다로(桂太郎)와 외무대신 고무라 쥬타로(小村壽太郎)의 방문을 받고 한국에 대해 보호국 대신 병합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7월 6일 각의를 통해 "적당한 시기"에 한국병합을 결행하기로 결정했다(이태진, 2016a).

1909년 상반기 이토 히로부미가 사임 절차를 밟는 기간에 일본군의 한국 의병 토벌작전은 잔혹성을 더해갔다. 의병 지도자들이 체포되거나 살해되는 가운데 서간도나 연해주 등 국외로 근거지를 이동하는 의병부대가 늘었다(森山茂德, 1992).연해주는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당할 때 이곳 항일운동 지도자들에게 군자금을 보내 대한의군(大韓義軍)이 창설된 곳이다. 1909년 10월 26일 추밀원 의장

자격으로 하얼빈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의군 특파대 대장 안중근(安重根)에게 저격당해 쓰러졌다.

안중근은 당초 러시아 헌병대에 체포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의식해 당일 저녁에 바로 안중근을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으로 넘겼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의군 참모부는 안중근 '구제'에 나섰다. 1908년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명운, 장인환 두 의사가 통감부가 추천한 대한제국 외부 고문 스티븐스(D. W. Stevens)를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에 회부된 두 의사는 미국 법정에서 수년의 징역을 언도받았다.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었다. 대한의군 참모부는 당초 이토 히로부미 저격을 모의하면서 러시아 법정이 사건을 담당하면 미국의 예와 같이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안중근의 신병이 일본 법정으로 넘겨진다면 극형에 처해질 것이 불 보듯 뻔했다.

대한의군 참모부 구실을 하던 대동공보사(大同共報社)의 명의상 사장이던 러시아인 미하일로프(P. Mihailov)는 급히 상하이로 가서 영국인 유명 변호사 더글러스(J. E. Douglas)를 만났다. 미하일로프 자신이 변호사였지만 더 명성이 높은 더글러스를 찾아간 것이다. 더글러스는 안중근 변호를 쾌히 응락했다. 대한제국 황제와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이곳에서 활동하던 민영철(閔泳喆)·민영익(閔泳翊)·현상건(玄尙健) 등이 1만 엔(円)을 마련하여 미하일로프에게 건넸다. 영국 '제일등의 변호사'로 알려진 더글러스는 미하일로프와 함께 뤼순으로 가서 재판장을 면회하여 변호 허가를 얻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직접 안중근을 면회하고 결코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돌아갔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의군 참모부는 안중근 변호와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해 '안중근 구제회'를 조직하여 국제변호인단 구성에 나섰다. 러시아, 영국, 스페인, 심지어 일본의 유명 변호사들이 변호를 자청했다. 도쿄의 유명 변호사 기요시(紀嘉), 다롄 거주의 고바야시(小林) 및 그 외 1명 등 일본인 변호사 3명이 안중근 변호에 참여하겠다고 나서 일본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일본 정부는 결국 2월 7일부터 재판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하면서, 법정에는 외국인 변호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2명의 관선 변호사를 채택했다. 안중근 변호를 위해 이들과는 별도로 안중근 어머니(조 마리아 여사)의 요청으로 한국인 변호사 1명이 뤼순에 와 있었다. 그는 법관양성소 제3기 출신으로 평양에 거주하고 있던 안병찬(安秉瓚)이었다(이태진, 2010).

통감부는 1910년 1월 7일 외무성에 평양에 거주하는 변호사 안병찬이 안중근의 어머니 요청으로 변호인 신청을 위해 곧 뤼순으로 갈 것이라는 보고를 올렸다. 안병찬은 보호조약 체결 때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극단적인 배일사상(排日思想)"을 가진 자이므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붙인 보고였다. 안병찬은 1월 11일 기차로 출발했고, 이후 뤼순에서의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일본 경찰에 의해 빠짐없이 보고되었다. 한국 통감부에서는 그의 출발을 앞두고 그를 설득하여 출발을 저지하거나 구속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변호를 허락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안병찬은 법원의 이러한 조치에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시일이 너무 촉박하여 7일부터 시작된 법정에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2월 7일에 열린 첫 재판은 200여 명의 방청객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일본 측의 한 보고서에는 한국인 변호사 안병찬 및 통역, 상하이 변호사 더글러스, 러시아 영사 부부, 러시아 변호사 야우덴스키 등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하일로프는 법원이 요구하는 일본어가 능통한 통역으로 나가사키(長崎)에 거주하는 한기동(韓基東)을 동반하고 2월 9일 뤼순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들은 변호에는 실패했다(이태진, 2010).

중국의 『화쯔일보(華字日報)』는 당시 변호사들의 동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그림 9] 1910년 2월 7일부터 뤼순지방법원에서 열린 안중근 공판정 방청석에 앉아 있는 안병찬. 그는 변호인으로 신청했지만 법정은 외국인 변호사를 채택하지 않아 변호에는 실패했다.

현재 일본 변호사 기요시(紀嘉)는 스스로 법정에 나서 안중근을 위해 변호할 것을 청원했다. 한때 동서의 여론은 모두 그를 인도주의의 변호사로 여겼다. 근일 안병찬이란 사람은 뤼순으로 와서 안중근을 위해 변호하려고 한다. 안병찬은 이미 전일에 뤼순에 도착해 일본 마나베(眞鍋) 법원장, 구리하라(栗原) 전옥관 등을 두루 방문했다. 그는 "일본이 문명국가인데 내가 어찌 감히 재판에 대해서 미리 의심을 품겠는가. 그러나 안중근이 한국인이며 이 안건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혹 불공평한 재판이 있으면 일본의 명예와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화쯔일보』, 1910. 2. 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2010: 361에서 재인용].

2) 고종황제의 죽음과 3·1 독립만세운동: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의 활약

(1) 한국병합 강제와 식민통치의 시작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을 일본 천황의 나라로 만드는 '병합조약'을 강제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병합 사실을 알리는 두 나라 황제의 조칙이 반포되었다. 일본 천황의 조칙에는 천황 이름자[睦仁] 친필 서명 아래 '천황어새(天皇御璽)'란 글자가 새겨진 어새가 찍히고 11명의 대신이 각기 친필 서명을 나란히 했다. 반면에 한국 황제(순종)의 조칙은 '칙유(勅諭)'라고 이름하고 '칙명지보(勅命之寶)'라는 글자가 새겨진 어새만 찍혔을 뿐이다. 황제뿐만 아니라 대신의 서명도 없어서 일본 천황의 조칙과는 사뭇 달랐다. 황제가 서명을 거부한 것이다. 한국병합은 이렇게 대한제국 황제가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진행되었다. 한국병합의 강제로 대한제국은 조선(朝鮮)으로 국호가 바뀌고 황제는 조선왕으로 격하되어 일본 천황가에 '이왕가(李王家)'로 편입되었다. 조선에는 천황의 명령으로 총독부가 세워지고 천황에 '직예(直隷)'하는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통치되었다. 타이완에 이어 한반도에도 천황이 지배하는 새로운 '동양'이 건설되었다.

한국병합은 1909년 5월 당시 일본 정부의 육군대신이던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가 제3대 통감으로 임명되어 7월 하순에 한국으로 와서 직접 추진했다. 그는 조슈 군벌의 총수격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의 양자인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를 부통감으로 삼고, 또 조선총독부에서도 그를 부총독 격인 정


新韓民報
전 융희황데의 유조

[그림 10]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신한민보』에 실린 순종황제의 유조. 필기체가 조정구 씨가 받아 쓴 유조 원문이다.

무총감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타이완 초대 총독을 역임하고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창설한 고타마 겐타로(兒玉源太郎)의 장자인 고타마 히데오(兒玉秀雄)를 총독부 관방 회계국장 겸 비서관으로 삼았다. 고타마 히데오는 데라우치 총독이 1916년 내각 총리대신으로 영전했을 때 함께 귀국하여 내각의 서기관장이 되었다. 한일병합은 결국 메이지 유신 세력 가운데 신동양건설의 가장 핵심이던 조슈의 군벌이 주동했고, 조선총독부 지배체제도 그들이 장악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현직 대소 관리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그들이 통치조직을 장악하고 한국인 관리들은 2선으로 물러나게 했다. 1907년 7월 한국 황제(고종)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통감이 한국 정부의 내정을 감독하는 체제를 만들었을 때부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의 현직 대소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국 근무 희망자를 공모하여 수천 명을 한국 정부의 돈으로 기용했다. 이들이 조선총독부의 통치체제 기간을 담당하게 했다. 그리고 같은 조슈 출신으로 러일전쟁 직후부터 한국주차군의 사령관을 담당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후쿠오카 출신 화족 신분으로 러일전쟁 직전 러시아 주재 일본공사관의 무관으로 막대한 활동자금

을 할당받아 러시아 사회를 균열시켜 차르의 통치기반을 흔들어 전승에 크게 기여한 아카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를 헌병사령관 겸 경무총장 등으로 기용하여 이른바 무단정치(武斷政治) 체제를 만들었다.

강제병합 당시는 한국인도 일본 천황의 신민이란 슬로건 아래 동화정책(同化政策)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의 열등성을 내세워 각종 교육기관을 격하시키거나 우민정책을 지향하여 소극적인 교육정책을 폈다. 대한제국의 황실 재산은 본래 궁내부 내장원(內藏院)이 관리하면서 반(半) 공공성을 지녔는데 조선총독부는 이 재산을 대부분 국유화하여 총독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일반 토지도 소유권 미발달이란 미명 아래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미신고 토지를 국유로 처분하여 조선총독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했다.

1915년 조선총독부는 시정(施政) 5년의 성과를 선전하기 위해 공진회(共進會)란 이름으로 산업박람회를 경복궁에서 열었다. 이때 궁내의 근정전, 수정전, 사정전, 교태전, 경회루 등 중심 건물들만 남기고 대부분의 건물을 철거했다.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상징을 없애는 일종의 구물훼철(舊物毁撤)이었다. 식민통치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만은 날로 높아갈 수밖에 없었다.

(2)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과 고종황제 독살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식민지 경쟁은 날로 심해졌다. 1870년대에 등장한 제국주의(Imperial)란 말은 점차 일반화되어 갔다. 일본제국은 1904~1905년의 러일전쟁 승리를 계기로 이를 선호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의 천황제를 받들어 황도주의(皇道主義)를 개발하면서 제국주의가 일본에서는 고대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라고 자처하기까지 했다(이태진, 2014). 제국주의 열강이 서로 비밀협약을 통해 약소국의 국권이나 재부를 탈취하는 비행의 길로 접어들자 이를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갔다. 구미 지식인 세계에도 인도주의적 국제평화운동이 같은 시기에 퍼져갔다. 1901년부터 시상을 시작한 노벨 평화상은 이 새로운 추세를 상징했다.

1899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1차 만국평화회의는 제국주의와 국제평화운동이 모순적으로 함께 복재(伏在)한 회의였다. 육전(陸戰) 포로에 관한 법이나 병원선에 대한 평화적 공약이 다자 조약으로 처리되기도 했지만, 비밀협약에 따른 약소국 탈취에 대한 방어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다만 구미의 언론이 열강

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지적하며 감시 기능이 발휘되었다. 1907년 6월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제2차 만국평화회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제1차 평화회의 취재로 명성을 올린 영국 언론인 윌리엄 스테드(William Thomas Stead)와 같은 국제평화 운동가들의 활동 영역이 더 확대된 것이 변화라면 변화였다.

윌리엄 스테드는 헤이그 평화회의 현장에서 4개월간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평화회의 통신(*Courrier de la Conférence*)』란 매체를 직접 발행했다. 1905년 보호조약의 불법 강제를 알리기 위해 대한제국 황제가 이 회의에 보낸 세 명의 특사가 '공고사(控告辭)'(프랑스 어)를 발표했을 때, 스테드는 그 전문(全文)을 『평화회의 통신』에 실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대한제국의 주권 지키기 운동은 외로운 항쟁이 결코 아니었다. 그는 세 명의 특사를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해 주었다. 프랑스어와 영어에 능통한 이위종이 회견장에서 연설한 '한국의 호소(A Plea for Korea)'는 여러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의 초청을 받아 미국에 다녀오기까지 했다. 1909년 10월 26일에 하얼빈 철도정거장에서 한국 국권탈취의 선봉에 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이 신문 중에 거듭 밝힌 동양평화론도 실은 이런 구미의 국제평화운동의 조류와 무관하지 않았다.

1914년 7월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 전쟁이 각국의 국민을 전장으로 이끌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자 국제평화운동가들은 더 큰 자극을 받았다. 미국 윌슨 대통령은 19015년부터 대통령 직속 기구로 '조사국(Inquiry)'을 비밀리에 운영하면서 130여 명의 미국 교수와 법률가들을 동원하여 전쟁 후의 평화체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했다. 이것이 1919년 파리강화회의를 통해 논의되어 1920년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의 탄생을 가져왔다. 이 새로운 시대적 조류는 한국인들의 편이었다. 그러나 그 조류는 고종황제의 독살이란 비극을 가져오기도 했다.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1916년 10월 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 영전했다. 그는 총리대신으로서 미국 윌슨 대통령의 '조사국'을 통한 국제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1918년 1월 8일 윌슨 대통령이 상원에서 행한 '14개조(The Fourteen Points)'에는 예상대로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맹국의 일원으로 전승국이 되자 패전국 독일이 확보하고 있었던 중국 산둥 반도의 이권을 인계받고자 했다.

일본은 이 문제로 영국, 미국과 갈등이 없지 않았으나 새로 탄생한 국제연맹에서 '5대 강국(Big Five)'의 하나로 높은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총리대신 데라우치는 민족자결주의의 선언이 '조선인들'에게 줄 자극이 더 염려스러웠다. 그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육군대신으로서 그 배후 조사에 깊이 간여하고 있었다. 그때 퇴위당한 '태황제(고종)'가 이 사건의 핵심 배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중근이 속한 대한의군(大韓義軍)은 황제가 퇴위당할 때 비밀리에 연해주 독립운동가들에게 보낸 군자금으로 창설되었고, 저격 사건 직전에도 서울의 황실로부터 대한의군의 핵심 인물인 최재형(崔在亨)에게 "사주(使嗾; 시킴)가 왔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데라우치는 헤이그 특사 파견 사건이나 하얼빈 사건에 비추어 보아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계기로 한국 황제[당시는 조선 이태왕(李太王)]가 해외 항일독립운동 세력과 손잡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만약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때처럼 파리강화회의에 조선 대표가 파견되어 1905년의 보호조약이 강제된 것이란 사실을 폭로하면 일본제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그리하여 데라우치는 두 가지 방책을 썼다. 하나는 국제사회에 일본과 한국은 민족자결주의가 적용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도쿄에 인질처럼 잡혀와 있는 '이태왕'의 아들이자 다음 왕위 계승권자인 영친왕(英親王)과 일본 천황가의 황족인 마사코(方子)를 결혼시켜 평화회의가 열릴 예정인 파리로 신혼여행을 가게 했다. 다른 하나는 후임 조선총독인 하세가와 요시미치에게 덕수궁 이태왕에게 '보호조약'에 추인을 요구하되 거부하면 독살하라는 비밀지령을 내린 것이었다.

데라우치는 1918년 9월 이른바 쌀 소동으로 총리대신에서 물러났지만 조선총독에 대한 지령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이태진, 2009b). 1919년 1월 20일(?) 윤덕영(尹德榮), 민병석(閔丙奭) 등 이른바 친일분자들이 총독의 지시로 사회대표를 빙자하여 덕수궁의 '이태왕'을 찾아 총독이 시킨 대로 추인 문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호통을 듣고 물러났다. 그 다음날 대한제국을 세운 황제는 온몸이 부푼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3) 고종황제의 국장과 3·1 독립만세운동

1919년 1월 21일 함령전의 '이태왕', 곧 고종황제가 붕어했다. 1월 27일 일본 천황의 '고(故) 대훈위(大勳位) 이태왕'의 장례를 국장으로 행한다는 고지와 함께 장의의 주체와 관계자들이 발표되었다. 먼저 장의사무소(葬儀事務所)는 도쿄 궁성 내 내각(內閣)에 설치하고, 분실(分室)을 조선총독부 중추원(中樞院) 내에 설치하고 서로 연락하여 그 사무를 진행한다고 했다. 강제 병합으로 황실이 '이왕가'로 지칭되어 천황가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의식이 천황가의 일로 발표되었다. 장의괘장(葬儀掛長)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政務總監)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 차장은 식부차장(式部次長) 공작(公爵) 이토 히로쿠니(伊藤博邦),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 백작(伯爵) 이완용 등이고 그 아래 괘원(掛員)으로 일본 정부 내각 서기관장(內閣書記官長) 이하 9명, 서울에서는 이왕직 차관(李王職次官) 이하 12명, 육해군에 각 1명으로 하고, 제관장(祭官長)에 공작 이토 히로쿠니, 제관 부장(祭官部長)에 자작(子爵) 윤덕영이 각각 임명되었다. 1905년 보호조약을 강제하고 또 헤이그 특사 파견 건으로 황제의 퇴위를 강제한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히로쿠니가 제관장이 된 것이나,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 대신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사부로가 장의괘장으로 지명된 것은 어느 면으로나 순리적이지 않다. 총독 하세가와는 장안에 파다한 독살의 주역이었던 탓인지 초상 9일째인 1월 29일에야 빈청에 나타나 문상했다.

'이태왕'의 붕어가 공포되자마자 한국인들 사이에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3월 1일 장례 예행연습 날에 터진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 전 민족적 차원으로 쉽게 확산된 데는 독살 소문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경성지방법원은 1919년 8월 30일 자로 경성(서울)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에서 검거된 248명에 대한 〈예심종결결정서〉를 발표했다. 이 결정서(판결문)를 통해 당시 시위의 배경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결정서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의 각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듣고 상하이에서 도쿄 및 조선에 사람이 파견되었다. 이들은 학생 및 조선 서부에 있는 기독교도의 일부에게 위 사상을 선전하여 홀연히 인심 동요의 세를 드러내기에 이르렀다. 도쿄에서는 금년(1919) 1월 초순을 기하여 최팔용(崔八龍) 등 불령(不逞)한 무리들이 도쿄 유학생을 규합해 의론을 모아 경시청에 출두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불온한 행동을 하여 경성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천도교 교주 손병희와 그 당여인 최린, 권동진, 오세창 등은 민심의 기미를 간취하고 최남선, 송진우 등과 상담했다. 이어 예수교 전도자인 이승훈, 함태영, 박희도, 이갑성 기타 불교 승려 등 23명과 서로 결속했으며, 주모자 중 박희도와 세브란스병원 사무원 이갑성은 경성에 있는 학생들을 규합하여 실행 방면을 담당하기로 하고 비밀리에 학생들과 접촉했다. 박희도가 학생들과 접촉한 시기는 고종황제가 독살된 뒤인 1월 하순이라고 했다. 이처럼 3·1 독립만세운동은 곧 1918년 1월 초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이 배경이 되었지만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의 독살이란 일제의 만행이 직접적 동인이 되었던 것이 분명하다(〈경성지방법원 예심종결 결정서〉, 1919. 8. 30; 『매일신보』, 1919. 9. 7~11, 14~16; 국사편찬위원회 편, 1966).

고종황제의 국장은 일본 천황가가 주관하여 일본식으로 거행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다만 조선의 민심을 고려하여 대여(大輿)만은 조선의 전통식을 따르기로 했다. 3월 1일은 대여 부분에 대한 예행연습이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예정된 날이었다. 33명의 민족대표는 이 날 정오를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했고, 거리 시위는 후술하듯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준비되어 실행에 옮겼다.

(4) 3·1 독립만세운동과 관립 전문학교: 3월 7일 자 『도쿄니치니치신문』 보도

3·1 독립만세운동은 예정대로 3월 1일 정오에 시작되어 연일 각지로 퍼져갔지만 신문 보도는 1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당국의 보도 통제 때문이었다. 시위에 관한 보도 가운데 『도쿄니치니치신문』의 기사는 가장 체계적인 것 중 하나였다. 이 신문은 다음과 같이 경성에서의 거리 시위가 관립 학교 학생들이 주동한 것으로 보도했다. 3월 7일 자에 처음 상세히 보도된 독립만세운동의 실황은 다음 세 가지다.

① 조선 각지의 폭동, 일단 진정하는 모습이다가 다시 발발, 경관대와 충돌하여 사상자를 내다. 주모자는 천도교 및 기독교 = 6일 경성특파원 발

지난 1일 조선 경성을 비롯해 평양, 선천, 의주 기타에서 조선인의 불온한 소요 발발했지만 당국(その筋)의 주의로 충분히 보도할 자유를 얻지 못하고 약보(略報)해 두었는데, 그 뒤 사건은 일단 진정세를 보였지만 4일에 이르러 또 다시 소요를


朝鮮各地の暴動
鎮南浦の騒擾
四百名
宣言書を發表
此運動の首謀者は
百萬の信徒を有する
京城を中心として

[그림 11]『도쿄니치니치신문』의 3·1 독립만세운동 첫 기사. 관립 고등보통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여자보통학교 학생들이 앞장선 것을 보도했다.

시작해 경성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요를 연출하기에 이르렀다.

1일의 운동은 경성(京城)을 중심으로 하여 각지로 연락을 취한 것 같다. 또 이 운동의 수모자(주모자)는 현재 전 조선에 무릇 100만의 신도를 가진 천도교 일파의 사람 및 기독교인들이다. 3월 1일의 운동은 오로지 고등보통학교, 공업 의학 전문학교 생도단 및 고등여자보통학교 학생 기타의 관·사립 학교 생도의 손에 의해 행해지고, 경성에서는 1일 오후 2시 파고다 공원에서 선언서를 발표하고 그 길로 덕수궁으로 가서 일으킨 것으로서 당시 진남포, 평양, 상원, 의주, 선천, 개성, 원산 방면에서 같은 운동을 개시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관헌의 경계 엄중 때문에 일단 폐식(廢息)했지만 다시 날을 격하여 발발했다(강조는 필자).

② 미국인 간호부, 격문을 살포하고 돌아다니다. 대군중 반우(返虞) 행렬에 참가하여 덕수궁 앞에 이르다.

반우(返魂, 장사 지낸 뒤에 혼백 신주를 집으로 모셔오는 일 – 필자)의 행렬은 이미 보도한 것같이 5일 오후 6시 무사히 종료 덕수궁에 귀환했는데 동 행렬이 오후 6시 동대문 바깥 동전(東殿, 동묘 – 필자) 부근에 도착하자 약 300명의 학생은 행렬의 뒤에 붙어서 예의 만세를 연호하면서 동대문에 왔지만 헌병 경관에 의해 차단되어 다행히 무사할 수 있었다. 이 운동에 참가한 남녀학생 간호부 등은 무엇인가 왼팔에 적포(赤布)를 두르고 있었는데 검거된 자 100여 명에 이르렀다. 그 반수는

기독교 학생 및 간호부였다. 5일부터 학업을 시작[始業]할 것 같았는데 중등 조선인 학교는 1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또 다른 방면에서는 다수의 학생과 지방에서 모인 동지로 보이는 젊은이들은 5일 오전 9시 남대문 통(거리 - 필자)에서 불온한 언동을 하고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또 다시 만세를 불렀다. 이러는 중 그들의 집단은 더욱 늘어나고, 남대문 역 방면에서도 또 1대가 나타나 다시 1일과 같은 형세가 되어 우리 경계대(警戒隊)는 극력 방지에 노력하여 아주 가차 없는 방침으로 한쪽 언저리[片端]부터 잡아끌어 냈다[引致]. 이들의 집단에는 미국인 경영의 세브란스병원 간호부 5, 6명이 있었다. 그 간호부들의 손에 의해 많은 선언서가 살포되었는데 그중 1명은 당국에 잡혀갔다. 지난 며칠 이래의 소요에 제하여 꼭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수명의 외국인이 군중 가운데 보였다. (6일 경성 특전)

③ 학생의 검거 400명, 전차 상무원(常務員)에게도 참가를 강요

조선인 중등 남녀학교 생도는 6일에 이르러서도 1명의 출석자도 없었다. 그들은 급장의 이름으로 매일 파고다 공원에 모이라고 권유받았다. 또 전차 상무원에 대해서도 참가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당국에서는 극력 경계하고 군대 역시 각 방면에서 활동하여 만일을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1일부터 검거된 남녀학생 무릇 400명에 이르러 재판소 검사는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에 출장하여 취조를 계속하고 있다. (6일 경성 특전)

①은 3월 1일의 시위 상황에 관한 보도로, 여기서 거리 시위의 주체로 보도된 "고등보통학교, 공업 의학 전문학교 생도단 및 고등여자보통학교 학생"에 해당하는 학교는 관립 경성고등보통학교, 관립 경성공업전문학교, 관립 경성의학전문학교 및 관립 경성고등여자보통학교 외에 달리 없다. 모두 조선 말기 또는 대한제국 시기에 국가가 세운 학교들이다. 관립, 즉 국립 학교들이 시위에 앞장섰다는 것은 역사 일반으로나 교육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②는 상주인 순종황제(이왕)가 3월 3일의 장례 후 2일째에 장지인 홍릉에 가서 혼백을 모셔오는 날에 벌어진 제2차 시위에 관한 보도다. 학생들이 주도한 두 번째 거리 시위가 반혼제 날을 택했다는 것은 독립만세운동이 고종황제에 대한 애도에서 비롯한 것이란 점을 명증한다. 남대문 근처에서 벌어진 시위는 3월 1일의 1차 시위에 못지않은 규모로 보도되었다. 특히 이때 세브란스병원의 미국인 간호부들이 참여

하고 있는 것은 일본 측으로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 ③은 3월 6일에도 학생 시위의 기세가 여전하다는 것, 검거 학생이 400명에 이르러 검찰의 검사들이 총독부의 경무 총감부로 출장 나가서 취조를 했다는 내용이다.

3) 시위 구속 학생 판결문에 보이는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의 활약

(1) 3월 1일 제1차 독립만세운동과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

3월 1일 고종황제 국장 예행연습 날과 5일의 반혼제 날을 기해 일어난 서울(경성)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 학생, 시민 가운데 많은 인원이 일본 군경에 검거되었다. 이들은 경성지방법원 취조를 통해 예심을 받고 8월 30일에 경성 독립만세운동 관련자 김형기(金炯璣) 이하 210명, 이계창(李桂昌) 이하 30명 및 윤익선(尹益善) 이하 8명에 대한 예심이 종결되어 공판에 회부되었다. 그 가운데 학생의 〈예심종결결정서〉는 시위의 계획 과정과 당일 시위 광경을 생생하게 전한다. 이 〈예심종결결정서〉에도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심종결결정서〉는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안건 '김형기(金


豫審終結決定正本

豫審終結決定

大正八年八月三十日

京城地方法院

[그림 12] 경성지방법원 〈예심종결결정서〉

炯璣) 이하 210명의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사건'이 곧 3월 1일과 5일에 있었던 제1차, 제2차 학생시위에서 체포된 학생들을 검사들이 조사하여 판단한 결과다. 대표로 내세워진 김형기(金炯璣)는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으로 같은 학교 한위건(韓偉鍵)과 함께 주동자로 활동했다. 한위건은 체포되지 않아서 재판의 대상은 되지 않았지만 전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된다. 〈예심종결결정서〉는 33명의 사회 대표들이 독립선언의 주체였지만 시위는 학생들이 담당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33명 가운데 젊은 박희도(朴熙道), 이갑성(李甲成) 두 사람이 학생들과 접촉하기로 하고, 이들이 학생대표부를 이루어 시위의 계획, 실행 과정을 소상하게 밝혔다. [표 4]는 〈예심종결결정서〉의 내용에 따라, 고종황제 붕어가 알려진 직후인 1월 하순부터 시작하여 다섯 차례의 학생대표 모임, 그리고 3월 4일의 2차 시위 준비 모임 등에 참석한 학생대표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가운데 ⑤의 모임 때 참석한 5명의 학생은 '전문학교 유력자'라고만 표시되어 소속 학교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속 학교가 밝혀진 학생대표 13명 가운데 관립 전문학교 대표는 8명(진한 색 표시)으로 비중이 크다. 이는 『도쿄니치니치신문』의 학생 시위에 대한 보도, 즉 거리 시위는 전적으로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되 관립 학교 학생들이 중심이었다는 보도 내용과 일치한다.

지금까지 3·1 독립만세운동에 관한 연구는 33명의 대표 및 선언서의 제작, 천도교, 기독교 등 종교조직에 의한 전국적 확산 등의 측면에 대한 것이 많고, 만세운동의 핵심에 해당하는 서울 시위에 관한 것은 적었다. 경성지방법원의 〈예심종결결정서〉란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데도 이를 활용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설령 박희도, 이갑성의 학생 측과의 접촉에 관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초기 접촉 대상이었던 연희전문학교의 김원벽(金元璧),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의 강기덕(康基德) 등이 언급되는 정도에 그쳐 관립 전문학교가 시위의 중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예심종결결정서〉는 ① 33명의 민족대표 가운데 박희도, 이갑성 두 사람이 전문학교 학생들과 접촉한 과정, ② 시위는 전적으로 전문학교 학생들이 담당하기로 한 점, ③ 전문학교 간부회가 구성된 뒤, 2차 시위를 위해 선언문 배포는 중등 정도 학교 학생들이 담당하도록 한 점, ④ 3월 5일 반혼제 날에 맞추어 제2차 시위가 실제로 큰 규모로 이루어진 점 등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비밀리에 진행된 집회는 [표 4]에 적시한 대로지만 중등 정도

[표 4] 3월 1일 및 5일 독립만세운동을 위한 학생대표 모임 일람표

성명	① 1월 하순 박희도 소집	② 2. 12, 14 이갑성 집 모임 (세브란스 구내)	③ 2. 20 승동교회(제1회 간부회)	④ 2. 25 이필주 목사 집 모임 (정동교회 구내)	⑤ 2. 26 이필주 목사 집 모임	⑥ 3. 4 2차 시위 모의 (4일)
김원벽(金元璧, 연희전문)	○	○	○	○	-	○
강기덕(康基德, 보성법률상업전문)	○	-	○	○	-	○
한위건(韓偉鍵, 경성의전)	○	○	○	○	-	○ (주모)
김형기(金炯璣, 경성의전)	○	○	○	○	-	1차 시위 피체
주종선(朱鍾宣, 경성공전)	○	-	-	-	-	1차 시위 피체
김공후(金公厚, 경성전수)	○	-	-	-	-	1차 시위 피체 (이공후)
주익(朱翼, ?)	○	-	-	-	-	-
윤화정(尹和鼎, ?)	○	-	-	-	-	-
윤자영(尹滋英, 경성전수)	-	○	○	○	○	1차 시위 피체
김문진(金文珍, 세브란스의전)	-	○	○	○	○	-
배상(裵爽, ?)	-	○	-	-	-	-
전성득(全性得, 경성전수)	-	-	○	○	-	-
이용설(李容卨, 세브란스의전)	-	-	○	○	○	-
김대우(金大羽, 경성공전)	-	-	○	○	-	1차 시위 피체
한창식(韓昌植, 보성전문)	-	-	○	○	-	○
김탁원(金鐸遠, 전문학교 유력자)	-	-	-	-	○	1차 시위 피체
최경하(崔景河, 전문학교 유력자)	-	-	-	-	○	1차 시위 피체
라창헌(羅昌憲, 전문학교 유력자)	-	-	-	-	○	-
박윤하(朴潤夏, 전문학교 유력자)	-	-	-	-	○	1차 시위 피체
김영조(金榮洮, 전문학교 유력자)	-	-	-	-	○	-
이형영(李亨永, 경성공전 부속 공업전습소)	-	-	-	-	-	1차 시위 피체

* 경성지방법원 〈예심종결결정서〉 등에 근거하여 피검 학생들의 소속 학교에 대해 조사, 분석한 정세현의 선행연구가 있다. 이에 따르면 관립 경성전수학교 학생 12명, 관립 경성의학전문학교 31명, 관립 경성공업전문학교 14명, 관립 경성고등보통학교(관립 중학교 후신) 22명 등 5개교 총 7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외 사립학교로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휘문고등보통학교, 배재고등보통학교, 보성고등보통학교,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 이화고등보통학교 등 16개 학교의 학생들은 88명으로 집계되었다. 5개 관립 학교 학생이 전체 피검의 47.3퍼센트, 학교당 평균은 15.8명으로 나타나는 반면, 사립 학교는 학생은 52.7퍼센트를 차지하되 학교당 5.5명이 된다. 수치상으로도 관립 학교들이 주동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확인된다(정세현, 1975).

학교 학생들과의 접촉은 전문학교 대표들이 사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많았다. 〈예심종결결정서〉는 그 대소의 모임 및 연락 관계를 소상하게 밝힌 끝에 관립 전문학교 학생 대표의 동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경성의학전문학교 피고 한위건, 김형기 등, 경성공업전문학교에서는 피고 김대우 부속공업전습소에서는 피고 이형영, 경성전수학교에서는 전성득 및 피고 윤자영 등이 모두 주장이 되어 2월 하순경부터 기타 경성 소재 각 학교에서도 각각 주모자가 있어 학생 일반에 대하여 개인적 혹은 집회의 방법에 의하여 그 정(情)을 고하고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 참집할 뜻을 발표했더라.

이 기술에 따르면 관립 전문학교 대표들은 다른 사립 학교들과의 연대에 충실히 따르면서도 관립이란 공통적 전통 위에서 시위의 성공을 위해 관립 학교 간의 유대 확대에 특별히 배려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의학전문학교와 공업전문학교는 같은 지역에 위치해 결속 강화가 그만큼 쉬웠을 것이다. 이런 유대가 실제로 시위 행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도쿄니치니치신문』의 위와 같은 보도가 나왔을 것이다. 관립 전문학교는 대부분 대한제국 출범 전후에 새로운 근대국가의 운영을 담당할 인재 양성을 위해 창설되었다. 소속 학생들은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도 관립 전문학교 창설의 이런 내력을 숙지하고 창설의 주역인 황제의 비참한 죽음을 애도하면서 항일 시위에 앞장섰던 것이다.

(2) 전문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제1차 독립만세운동 모습

〈예심종결결정서〉는 3월 1일의 시위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밝혔다.

> 이렇게 조선독립시위운동이 성립되자 3월 1일 정오를 기해 앞에서 밝힌 각 학교 생도들을 위시하여 수만의 군중은 파고다 공원에 빽빽이 모여들었다[殺到蝟集]. 손병희 외 32명의 주모자는 밀의(密議) 후에 장소를 변경해 주모자들이 회합할 장소를 파고다 공원 뒤편 인사동 요리점 명월관 지점[구 태화관(太華館)]으로 변경했다. 파고다 공원에서는 씨명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不詳한 人]이 선언서를 낭독하여 시위운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오후 2시 30분경에 이 공원 내 육각당(六角堂, 팔각당의

잘못)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자가 일어나 손병희 이하 33명이 서명한 앞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여 조선이 독립국이 되어야 하는 것을 선언하자 군중은 열광하여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또는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고 다중(多衆)의 위력을 믿고 제국정부와 세계 각국에 대하여 조선인은 모두 독립자유의 민이므로 조선이 한 독립국이 되기를 늘 마음속으로 바란다[翹望]는 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라 정치변혁의 목적을 이루고자 이 목적으로 모인 다중은 이 공원 문 앞에서 수모자의 지휘에 따라 동·서 2파로 나누어 시위에 들어갔다. …

두 방향의 시위대 경유지도 자세하게 밝혀져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서(西)로 향한 일대(一隊)

종로 1 정목(丁目; 1가의 뜻) 전차 교차점에 이르러 2대(隊)로 나뉘었다.

〈1대〉 남대문역 앞 – 의주로 – 정동(貞洞) – 미국 영사관 – 이화학당 내 – 대한문 앞 – 광화문 앞 – 조선보병대 앞 – 서대문정(西大門町) – 장곡천정(長谷川町, 현 소공로 – 필자) – 본정 2정목(本町 2丁目, 현 충무로) 부근. 여기서 경찰의 제지로 대부분 해산함.

〈다른 1대〉 무교정(武橋町) – 대한문(문 안으로 돌입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한 후에 물러나옴) – 정동 미국 영사관 – 대한문 앞. 여기서 다시 갑을(甲乙) 2대로 나누어 행진.

갑대(甲隊): 광화문 앞 – 조선보병대 앞 – 서대문정 – 프랑스 영사관 – 서소문정 – 장곡천정 – 본정(현 충무로)

을대(乙隊): 무교정 – 종로 – 창덕궁 앞 – 안국동 – 광화문 앞 – 프랑스 영사관 – 서소문정 – 서대문정 – 영성문(永盛門, 현 덕수궁 서편) – 대한문 앞 – 장곡천정 – 본정. 여기서 해산함. 일부는 다시 나가 영락정(永樂町, 현 영락교회 부근) – 명치정(明治町, 현 명동) – 남대문통 – 동대문 방면으로 감.

• 동(東)으로 향한 일대(一隊)

창덕궁 앞 – 안국동 – 광화문 앞 – 서대문 앞 – 프랑스 영사관. 여기서 일부 서소문정으로 가고, 일부는 정동의 미국 영사관 또는 영성문을 거쳐 대한문 앞 – 장곡천정 – 본정으로 갔다. 여기서 일부는 경찰의 제지로 해산하고, 일부는 종로통 –

• 파고다 공원 기미독립선언서 낭독자 – 경성의학전문학교 대표 한위건의 증언

경성지방법원 〈예심종결결정서〉는 위에서 보듯이 파고다 공원에서 2시 30분경 씨명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不詳한 人]이 선언서를 낭독했다고 밝힌다. 선언서 낭독은 만세운동의 취지를 천하에 천명하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서'가 언급한 "氏名 不詳"의 선언서 낭독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2008년 1월에 출판된 고춘섭의『수양산인 정재용 전기』(수양산인기념사업회)에서 경신학교 출신으로서 당시 감리교 해주읍 교회 전도사로 있던 정재용이 낭독자라고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정재용은 2월 17일 박희도가 인편으로 보낸 편지를 받고 서울로 와서 그에게서 독립선언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거사 전날인 28일 아침에 다시 일찍 상경해 중앙감리교회로 김창준 목사를 찾았는데 김 목사로부터 그날 아침 기차로 원산으로 가는 원산 감리교회 곽명리 전도사에게 원산으로 갈 독립선언서를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독립선언서를 전하는 과정에서 빼낸 한 장의 선언서를 가지고 있다가 파고다 공원에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언서를 꺼내 읽었다고 했다. 수양산인 정재용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정재용은 1885년생으로 당시 34세로서 2015년 6월에는 탄신 130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정재용 낭독설은 경성지방법원 〈예심종결결정서〉가 밝힌 준비과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 박희도가 2월 중순까지도 만세운동의 준비에 관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지도부는 어디까지나 시위를 서울의 공 · 사립 학교의 학생들에게 맡기는 방침을 세워 학생 간부회를 조직하는 것에 열중했고 지방 교회 관계자들을 이에 관련시켰을 가능성은 적다. 3월 1일 당일 각 학교 학생들은 치밀한 사전 조직에 의해 정해진 시간대에 파고다 공원으로 집결했다. 그리고 33명의 대표들이 공원으로 오지 않고 인근 요리점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시간이 지체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학생 지도부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선언서를 낭독했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생 지도부는 선언서를 중등정도 학교의 학생들의 손을 통해 비밀리에 선언서를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 몇몇 학생이 선언서를 미리 소지했을 가능성도 높다. 정재용 설은 설령 정재용이 생전에 남긴 얘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의 증언이 나오지 않는 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수양산인 정재용 전집』보다 앞서 2005년에 경성의학전문학교 대표 한위건이 학생을 대표해 독립선언문을 읽었다는 증언이 있다. 한국현대사 연구의 권위자인 재미 역사학자 이정식이 면담을 하고 김학준 교수가 편집해설을 담당하고, 김용호가 수정 증보를 맡은『혁명가들의 항일 회상: 김성숙, 장건상, 정화암, 이강훈의 독립투쟁』(민음사, 2005)에 실린 김성숙(1898~1969)의 증언이 바로 그것이다.

김성숙은 당시 경기도 봉선사(奉先寺)의 승려로 3월 1일 서울에서 시위에 참가한 후 고향인 양주로 내려가 광천시장의 시위를 주모하다가 체포되어 1년간 복역을 하기도 했다. 그는 출옥 후 1923년에 중국으로 망명해 1939년에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외교 담당)으로 활동하고 광복 후에는 임시정부 제2진으로 귀국했다. 1949년 독립노동당에 입당하고 진보당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그는 이정식의 질문에 대해 "서울에서는 파고다 공원 팔각정에서 한위건이 학생을 대표해 독립선언문을 읽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답했다고 한다. 한위건은 지금까지 살폈듯이 김형기와 함께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학생 대표로서 시위 계획에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또 3월 5일의 2차 시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중요한 시위 주동자이면서도 일본 군경에 체포되지 않았다. 그래서 선언서 낭독자에 대한 일본 군경의 정보는 씨명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남았던 듯하다.



[그림 13] 3월 1일 시위 중, 대한문 앞에서 조의를 표하는 학생들

동아연초회사 앞 - 동대문 부근으로 가서, 여기서 일몰하여 해산함.

이 밖에도 경성부 내 도처에서 군중이 소리를 질러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또는 독립만세를 절규했다.

시위대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지만 대한문 앞을 찾은 사례가 가장 많다. 서쪽으로 간 일대 중 한 갈래는 대한문을 통해 덕수궁으로 돌입하여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고 나오기도 했다. 이것은 조선총독부, 아니 일본 정부 고위층에 의해 독살된 고종황제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영사관과 프랑스 영사관을 찾은 것은 파리강화회의 개최를 주도할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시위대가 하세가와쵸(長谷川町, 현 소공로)를 거쳐 혼마치(本町, 충무로) 또는 에이라쿠쵸(永樂町, 영락교회 일대)에서 해산한 것은 그곳이 곧 일본인 거주지의 입구였기 때문이다.

(3) 3월 5일 제2차 독립만세운동: 총 지휘자 경성의학전문학교 한위건

3월 1일 정오를 기해 돌입한 학생들의 서울 거리 시위는 성공적이었다. 한국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민, 민족의 이름으로 그리고 독립과 평화를 위해

의사를 표시한 예는 없었다. 새로운 역사의 창조였다. 일본의 언론보도 통제로 근 1주일을 격하여 세계 각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국제 평화 운동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한국에 관심을 가졌다. 2월 20일 승동 예배당에서 제1회 학생 간부회가 열렸을 때, 경성전수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 등 주요 전문학교는 2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그중 1명씩 2차 시위를 주도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경성전수학교의 윤자영,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한위건,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이용설,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의 한창식 등이었다. 1차 시위에서 많은 대표가 체포당할 것에 대한 대비였다. 다행히 [표 5]에서 보듯이 3명 외에 연희전문학교의 김원벽,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의 강기덕과 한창식 등은 무사했다. 강기덕, 한위건, 김원벽 등 3명은 1차 시위 준비에서 중등 정도 학생 대표자를 선정하여 중등학교 학생들의 결속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 사이이기도 했다.

3월 4일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한위건이 중심이 되어 3월 4일 정동의 배재고등보통학교에서 전문학교 생도 및 각 중학교 대표자인 장채극, 전옥영, 강우열(康禹烈) 등이 모였다. 3월 5일 오전 9시를 기해 남대문역 앞 광장을 집합지로 하여 학생주최의 독립만세운동을 하기로 했다. 강기덕과 김원벽이 현장 지휘 임무를 맡기로 했다. 배재고등보통학교에서 회의가 끝난 뒤, 한위건, 강기덕, 한창식, 장기욱, 전옥영 등은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구내에서 다시 모여 시위 수단을 협의했다. 같은 날 밤에 이 모임과는 별도로 사립 중동학교 생도 김종현(金宗鉉), 경성고등보통학교 최강윤(崔康潤), 사립 국어보급학관 생도 채순병(蔡順秉) 등은 안국동 39번지 박태병(朴台秉)의 집에 모여 다음날 많은 군중을 서대문역 앞에 모이게 하여 만세운동을 성대하게 하기로 공모했다. 김종현이 소유한 탄산지(炭酸紙)와 골필(骨筆) 세 자루를 사용하여 다음날 오전 8시 30분 남대문역 앞에서 모여 제2회 시위운동을 개최하고자 하니 태극기를 준비해 오라는 내용의 통고문 약 40매를 제작하여 세 명이 각기 송현동 방면, 소격동 방면, 중학동 방면을 중심으로 각 호에 배포했다.

3월 5일 오전 8시 전후에 남대문역 앞에 쇄도하는 군중은 무려 수만을 헤아렸다. 현장 지휘의 임무를 맡은 강기덕과 김원벽은 각각 인력거를 타고 '조선독립'이라고 크게 쓰인 기를 달고 달려 제2차 만세운동의 뜻을 선언하자 군중은 일제히 독립만세를 목청껏 외치며 선두에 선 강기덕과 김원벽의 지휘에 따라 남대문

[표 5] 3·1 독립만세운동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피검 상황: 〈예심종결결정서〉 분석

연번	이름	판결	학년	나이	본적	비고
01	김형기(金炯璣)	징역 1년	4학년	24세	경남 양산군	경성의전 학생대표 1921년 졸업
02	이익종(李翼鐘)	징역 10월	2학년	23세	경기도 진위군	중퇴
03	김탁원(金鐸遠)	징역 7월	4학년	22세	대구부	1921년 졸업
04	최경하(崔景河)	징역 7월	4학년	26세	함남 문천군	1921년 졸업
05	채정흠(蔡禎欽)	징역 6월	2학년	28세	함북 경원군	1922년 졸업
06	김영진(金永珍)	징역 6월	3학년	27세	경기도 수원군	1921년 졸업
07	김양수(金瀁秀)	징역 6월	2학년	20세	평북 평원군	중퇴
08	김병조(金炳祚)	징역 6월	1학년	21세	평남 대동군	중퇴
09	한병만(韓秉萬)	징역 6월	2학년	22세	함남 함흥군	1922년 졸업
10	허익원(許益元)	징역 6월	3학년	24세	평북 용천군	1921년 졸업
11	이규선(李奎璿)	징역 6월	4학년	30세	함남 장진군	1920년 졸업
12	허영조(許永祚)	징역 6월	4학년	23세	부산부	1920년 졸업
13	이강(李橿)	징역 6월	2학년	20세	함남 북청군	1923년 졸업
14	김창식(金昌湜)	징역 6월	1학년	24세	평남 순천군	1923년 졸업
15	김중익(金重益)	징역 6월	4학년	24세	평북 강계군	1920년 졸업
16	장세구(張世九)	징역 6월	2학년	21세	경기도 김포군	1923년 졸업
17	함병승(咸秉昇)	징역 6월	2학년	24세	경성부	1922년 졸업
18	강학용(姜學龍)	징역 6월	3학년	27세	평북 정주군	1921년 졸업
19	백인제(白麟濟)	징역 6월	3학년	22세	평북 정주군	1921년 졸업
20	오태영(吳泰泳)	징역 6월	1학년	25세	함남 정평군	중퇴
21	황용주(黃龍珠)	징역 6월	1학년	22세	경남 동래군	중퇴
22	정인철(鄭寅喆)	징역 6월	1학년	21세	황해도 재령군	중퇴
23	오용천(吳龍天)	징역 6월	1학년	18세	평북 철산군	1923년 졸업
24	함태홍(咸泰鴻)	징역 6월	2학년	27세	함남 함흥군	1922년 졸업
25	현창연(玄昌燕)	징역 6월	1학년	20세	함남 함흥군	1923년 졸업
26	전진극(全鎭極)	징역 6월	1학년	27세	함남 북청군	1923년 졸업
27	이형원(李亨垣)	징역 6월	1학년	21세	함남 북청군	1924년 졸업
28	김종하(金鐘夏)	징역 6월	1학년	20세	함남 함흥군	1924년 졸업
29	유완영(劉完榮)	징역 6월	1학년	21세	평남 평원군	1923년 졸업
30	길영희(吉瑛羲)	징역 6월	1학년	20세	평북 희천군	중퇴
31	송영찬(宋榮璨)	징역 6월	4학년	22세	황해도 안악군	1920년 졸업

* 경성의학전문학교 재학 중 3·1 운동에 참여했으나 체포되지 않고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물

한위건: 3·1 운동 경성의전 학생대표, 이후 사회주의운동 참여

나창헌: 3·1 운동 참여 직후 대한민국청년외교단, 대동단에서 활동, 중국의 철혈단, 한국노병회, 병인의용대에서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 내무부 차장 역임

유상규: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국에서 활동, 흥사단 단원

이의경(이미륵): 대한민국청년외교단에서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제공.

으로 향했다. 그중 간혹 당일 독립운동의 표시를 명료하게 하고자 수많은 적포(赤布)를 나누어 주고 이를 높이 휘날리며 남대문에 이르자 출동한 경찰관헌의 제지를 받았다. 여기서 강기덕과 김원벽 등 검속을 당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검속을 면한 1대는 남대문시장으로 조선은행 앞을 거쳐 종로 보신각으로 향하고, 다른 1대는 남대문에서 대한문 앞을 거쳐 무교동, 종로 보신각 앞으로 진출하여 거기서 앞 1대와 합류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자 소요가 극에 달했다.

3월 5일의 시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신조선신문(新朝鮮新聞)』(27호에 독립가 게재), 『각성호회보(覺醒虎回報)』 등 시위대 신문들이 등장한 사실이다. 이 가운데 『각성호회보』에는 한위건이 제작한 「동포들아 이러나거라」라는 글이 수록되었다.

제6절 '개학 반세기' 편찬의 성과와 '개교 원년 조정'의 문제

1) 1946년 8월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 오천석 박사의 증언

오천석(吳天錫, 1901~1987) 박사는 국립서울대학교 탄생에 대한 '증언'으로 「군정문교(軍政文敎)의 증언」이란 글을 남겼다. 미군정청 문교부 차장·부장(1945~1948)을 역임하면서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산파역으로 활약한 경위에 관한 기억을 '그때의 증언'으로 남겼다. 그에 따르면 국립 대학교 설립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도 프랑스의 파리 대학, 독일의 베를린 대학, 일본의 도쿄대학 등에 비견할 만한 명망 높은 대학을 가지고 싶다.
② 국가 재원의 현실에 맞춘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③ 기존의 각 고등교육기관들의 개별성을 어떻게 통합하여 규모 있는 종합대학을 탄생시킬 것인가.

②, ③이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당시 국가 재원은 극히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①의 목표를 "성취하는 빠른 길은 경성대학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기존 기관을 통합하는 일"이라고 밝혔다(오천석, 1972: 84). 이것은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이라 할 경성대학을 확대하여 종합대학으로 만드는 이른바 '종대안'('종합대학안'의 준말)을 취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다만 이때 관련 기관들 간에 동일 계통이 복수로 있을 경우(예컨대 경성의학전문학교와 경성대학 의학부), "관련 기관들이 과거의 전통과 기득권을 내세워 통합을 곤란케 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각 기관들이 보이던 배타주의를 '먼로 사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고충거리로 여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을 일단 전부 폐지하고 새로운 학교로 출발하게 하느냐"가 검토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일단 전부 폐지"가 좌익 세력으로부터 반발을 사서 이른바 국대안(국립서울대학교안) 반대 투쟁이 벌어진 사연도 언급했다. 좌익 계열의 교수, 학생들은 '폐지' 과정에서 자신들의 배제를 우려했다는 것이다. '국대안' 발의자 오천석은 한 캠퍼스에 여러 대학이 함께 있는 종합대학교를 만들기를 바랐지만, 당시 현실로는 대형 캠퍼스를 새로 마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고등교육기관들을 통합하여 종합대학교를 만드는 방법을 취했으며, 각 기관의 개별적인 '먼로 사상'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일단 전부 폐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읽혀진다.

여기서 오천석 박사의 '증언'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들을 일단 전부 폐지하고 새로운 학교로 출발하게 하느냐"는 기술 내용이 유발할 오해의 소지 때문이다. 그 '폐지'의 조치가 기존 고등교육기관들과 새로 탄생하는 국립서울대학교와의 연속성을 부정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국립종합대학교'로서의 서울대학교는 어디까지나 1946년 8월에 탄생했다는 주장이 이를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술하듯이 2009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제출한 1895년 개교 원년 재조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2010년 서울대학교 평의원회가 연구결과보고서 「'개교 원년' 조정에 관한 연구」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단절'을 중시하되 총동창회의 제안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오천석 박사는 문교차장으로서 상관인 유억겸 부장, 그리고 라커드 대위, 아서 러치(Archer L. Lerch) 장관 등에게 자신의 의견을 차례로 피력하여 찬성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법령화하여 나온 것이 1946년 8월 22일 자 미군정 법령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이다.

이 법령에서 기존 기관 통합과 관련된 조항은 제5조 '국립서울대학교에의 흡수에 의한 기존 학교의 폐지'다. 이 조문의 표현은 '흡수에 의한 폐지'로서 오천석 박사가 기술한 '전부 폐지에 의한 새로운 출발'과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제5조는 위 제목 아래 "이에 폐지되어 국립서울대학교에 흡수되는" 각 전문학교와 교육기관 10개 학교를 들었다.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대학, 경성여자사범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등이 그것이다. 제5조의 제목 아래 조치에 관한 문구는 '폐지 후 흡수'로서 오천석 박사의 '증언' 기술에 가깝다. 그러나 기존 기관들의 폐지는 새로운 기관으로 흡수하기 위한 경과 조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식민지 시대와의 단절을 위한 의도적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종대안'을 취해 경성제국대학 후신인 경성대학에 대해 '폐지'라는 경과 조치를 가하여 국립서울대학교를 탄생시킬 때도 마찬가지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오천석 박사는 「군정문교의 증언」의 서두 "국대안의 발상" 첫 문단에 '폐지 흡수'의 대상인 각 고등교육기관들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국대안'이란, 물론 국립서울대학교 창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당면 문제인 각급 기존 학교들을 재개(再開)하는 일과 우리 교육의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 심의회의 일이 끝나 일단 숨을 돌리게 된 (미군정 - 인용자) 문교부로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고등교육기관(高等敎育機關)에 대한 문제였다. 일정시대로부터 상속(相續) 받은 각종 고등교육기관의 현상을 살펴볼 때, 거기에는 경영상, 체제상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일인(日人)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설립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거기에는 일정한 체계도 계획도 없었다. 예를 들면 의학도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비교적 역사가 긴 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學專門學校)가 있었는가 하면,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안에 의학부가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공과 계통 기관으로서 경성고등공업학교(京城高等工業學校)와 경성제국대학 내에 이공학부(理工學部)와 신설된 경성광산전문학교(京城鑛山專門學校)가 병립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아무리 좋게 보아도 합리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강조는 필자, 오천석, 1972: 83~84).

오천석 박사는 교육학자다. 따라서 그에게 정확한 역사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1946년 현재, 역사학자라도 1895년 창설된 법관양성소를 비롯한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여 평가한 예는 찾기 어렵다. 일제의 식민지 교육이 심어놓은 조선·대한제국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 인식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근대적 교육기관을 설립한 역사가 있다는 지식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오천석 박사에게 정확한 역사 지식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전부 폐지에 의한 새로운 출발'을 놓고 지나친 의미 부여는 가급적 삼가야 할 것이다. 후술하듯이 2010년 '평의원회 연구결과보고서'는 이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단절'을 경시하는 입장을 오히려 강하게 비판했다.

오천석 박사는 국립서울대학교를 종합대학교로 탄생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그것도 미국의 주립대학교들처럼 하나의 캠퍼스 안에 여러 단과대학이 함께 모여 있는 상태를 이상으로 그렸던 듯하다. 그러나 당시의 국가 재정 형편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기존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종합대학교를 발족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상황이 아니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럴 경우 '폐지'는 '흡수'를 위한 경과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식민지 교육 청산을 목표로 한 특단의 조치처럼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의미 부여로 보인다. 그러려면 '종대안'을 택해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인 경성대학을 '폐지'하여 새로운 종합대학교를 만드는 쪽이 더 극적이지 않은가. 오천석 박사로서는 이쪽이 더 끌렸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기존 전문학교들에 대한 재정 부담이 여전히 따로 남게 되므로 기존 기관 통합에 의한 종합대학교 출범이 최종안이 되었던 것이다.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먼로 사상)은 경과 조치 같은 것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종합대학교 탄생에 결부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어느 방안이든 장기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문제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대 고등교육기관의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은 오천석 박사의 증언에 한정하지 않고 서울대학교가 출범 후 20년 만에 내놓은 『서울대학교 20년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2) 20년사~50년사에 남겨진 교사(校史) 인식의 실태

서울대학교는 1956년에 개교 10주년을 맞이했다. 1946년에서 1956년까지 기간은 남북 분단과 정부수립, 한국전쟁, 휴전 등 험난한 역사가 이어지는 시기였다. 10년사 편찬과 같은 사업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는 『대학신문』이 1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소개하고, 총장의 기념사를 게재한 다음, 사설 「개교 10주년을 맞이하여」를 싣는 선에서 그쳤다. 총장 기념사가 1946년의 설립령에 근거한 각 단과대학의 발족 경위를 설명하고 배출된 학생 수를 알리는 정도였다.

1966년에 개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첫 교사로서 『서울대학교 20년사』가 편찬·간행되었다. 이 책은 '국립 대학의 역사와 서울대학교의 사명'이라는 「서설(序說)」의 '(一) 국립 대학의 역사'에서 국립서울대학교의 역사적 연원을 살폈다. 이 글은 "서울대학교는 1946년 8월 22일 우리나라 최초의 유일한 국립 종합대학으로서 창설되었다"고 서두를 푼 다음, 서울대학교의 창설은 실로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국립 대학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국립 대학의 '오랜 역사'로서 고구려의 '태학(太學)'에서부터 통일신라의 국학(國學), 고려시대의 국자감을 거쳐 조선의 성균관에 이른 역사를 서술했다. 근대의 '국립 대학'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성균관이 1895년에 근대적으로 변화한 측면을 소개하고 일제 강점기에서 그것이 경학원(經學院)으로 개편되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국립 대학은 없어진 상태가 되었다고 했다.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의 설립은 그렇게 사라진 '국립 대학의 부활'로 규정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국립 대학인 성균관의 이름은 사립 성균관대학교에서 사용하게 되었지만, 국립 대학으로서의 기능은 종합대학교인 국립서울대학이 수행하게 된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20년사가 조선 말 성균관의 제도적 변화를 언급하면서 이 시기에 실제로 새로 등장한 신식 고등교육기관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전술한 오천석의 '증언'의 인식과 동일하다. 2010년 평의원회의 「'개교 원년' 조정에 관한 연구」는 이 점을 오히려 식민지 시대와 함께 전근대 역사와의 단절로 보고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서울대학교 20년사』의 서설은 '(二) 서울대학교의 창립과 그 의의'에서 국립대학으로서의 서울대학교 '부활'의 법적 근거를 예의 미군정 법령 제102호로 들

었다. 미군정 학무국이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재정을 가장 유효하게 쓰려는" 목적 아래 현대적인 종합대학교를 설치하기로 하고, 서울과 그 근교의 관립 고등교육기관들을 통합, 개편했다고 밝혔다. 통합된 각 전문학교들에 대해서는 "유서 깊은 학교들"이란 표현을 썼다. "서울대학교의 모체가 된 전기 학교들이 오랜 전통과 관록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유수의 고등교육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1년 동안 이미 각자가 대학으로서의 내용을 충실히 갖추어 가고 있었던 만큼 단과대학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언급했다(서울대학교 20년사편찬위원회, 1966: 6). 그러나 그 "오랜 전통과 관록"에 관한 구체적인 역사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오천석의 '증언'처럼 국립서울대학교에 흡수된 기존의 학교들이 모두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설립했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조선 · 대한제국의 근대화 노력으로 세워진 것으로 언급하지도 않았다. '국립 대학'의 역사를 고구려의 태학에서부터 찾으면서 근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이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1976년에 간행된 『서울대학교 30년사』 또한 「서설」에서 '국립서울대학교의 전통과 서울대학교의 사명'을 다루었다. '㈠ 국립 대학의 역사'는 20년사에서 피력된 국립 대학 전통의 부활로 국립서울대학교 발족의 의미를 찾았다. 조선시대의 국립 대학인 성균관의 이름을 잇는 "성균관대학교는 하나의 사립 대학으로서 존속되어졌고, 국립 대학의 전통은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종합대학교로 발족한 서울대학교로 이어졌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30년사는 '㈡ 최초의 현대적 국립 대학'에서 서울대학교 창립의 역사적 의의를 논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국립 대학'이란 점에 더하여 '민립 대학'의 이상을 실현한, 민중의 저력에 의해 이루어진 '민족여망의 최고 학부'라는 것을 덧붙여 강조했다. 이는 20년사에서 보지 못한 것이지만, 태학에서 성균관에 이르는 '국립 대학의 역사'를 줄기로 하면서 1920년대의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역사적 배경으로 동시에 거론한 것은 독자로 하여금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30년사는 이뿐만 아니라 '민중의 여망'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글은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국립 종합대학교란 점을 거듭 강조한 다음, "이것은 당시의 민중의 여망과 아울러 한국의 비약적인 학문 발전과 사회 발전을 위하여 문교행정 당국이 취한 바 일대 영단이었다"고 했다. 1946년 '창립' 당시의 시대에 대한 인식이 있

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서술이다. 필자가 서울대학교의 출범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표현을 쓰기가 어렵다는 의심이 간다.

결론적으로 1976년에 이르도록 서울대학교는 한국 근대 교육사에 대해 무지한 상황에서 교사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평의원회 보고서는 30년사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논설에 대해 과연 그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 앞선다. 20년사, 30년사가 근대, 곧 고종 시대의 자력 근대화의 노력으로 등장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서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일제 식민주의 역사학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치다. 당시 역사학계 일반이 이를 지양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단계이므로 교사 자체만의 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렇게 잘못 인식, 서술된 것을 2010년의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975년 서울대학교는 서울 시내에 흩어져 있던 각 대학들을 대부분 관악산 아래로 집결했다. 이 대이동은 서울대학교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으며, 1970년대 경제 발전에 힘입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으로는 이른바 유신체제가 대학 사회로부터 비판과 반발을 사고 있었다. 1970년대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일어나는 여러 발전적 변화에 대해 그 힘의 원천을 역사를 통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민족의 힘, 민중의 힘을 의식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이를 강조했다. 개교 30주년을 맞아 『대학신문』은 1976년 10월 11일 자 사설로 「회고와 전망: 개교 30주년을 맞이하여」란 글을 실었다. 역사와 관련되는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 그러나 본교의 이 같은 단시일 내의 성장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숭학사상(崇學思想)을 주축으로 고도한 문명의 유산을 남겼으며 그러한 전통은 이민족(異民族) 통치하에서도 끊겨지지 않고 온존했다. 그리고 그 열의는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활화산과 같이 분출하여 이 나라 교육일반의 향상과 특히 본교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승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본교가 사회로부터 받아온 정신적 및 물질적 성원과 지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동안의 본교에 대한 민족적 여망과 기대가 없었다면 오늘날 본교가 갖는 자부와 긍지는 생길 수 없었겠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따르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실을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

이 사설은 이어서 서울대학교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부단한 자기 쇄신을 기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지하다시피 본교는 국내 최대의 대학 규모를 자랑한다"고 했다. "역사를 따져 본다면 19세기 말엽 개항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며, "지금도 본교의 개교를 30년 전으로 국한해서 보려는 견해는 매우 희박하다"고 했다. 여기서 30년으로 국한해서 보는 견해가 희박하다고 한 것은 20년사, 30년사에서처럼 고구려의 국학에서 국립 대학의 연원을 찾는 역사 인식이 당시에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사설은 이전과는 달리 서울대학교의 전통을 "19세기 말엽 개항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좁혀서 보는 인식을 새롭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역사 인식이지만 불행하게도 19세기 말엽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런데 같은 신문, 같은 날짜에 실린 「30주년 총장 기념사」(총장 윤천주)는 앞의 '19세기 말엽'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이 기념사는 막 이루어진 관악 캠퍼스로의 이전으로 동숭동(東崇洞) 캠퍼스 시대가 막을 내린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핵심 부분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 본교의 과거와 미래를 더듬으며 하나의 포부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반항의 대상을 항상 의식케 하면서 음울과 절망을 쉴 사이 없이 느끼게 하던 동숭동 캠퍼스는 이제 지난날의 역사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동숭동에서의 역사는 고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36년간의 일제 지배에 의한 수난사에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본교의 기원이 되는 구 법관양성소가 창설된 1895년, 더욱 백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개항의 해 1876년부터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 우리의 대학사는 한말의 기울어져가는 국운과 유관하게 되어 버립니다. … 우리의 대학은 19세기 말기 뒤늦게 창립되기는 했으나 당시의 정세하에서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설립의 취지에 알맞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비극이 바로 대학의 비극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강조는 필자).

국립서울대학교의 기원을 1895년 법관양성소의 창설로 인식한 것은 이 기념사가 처음이다. 현재까지의 조사로는 그렇다. "우리의 대학은 19세기 말기 뒤늦게 창립되기는 했으나"라고 한 부분은 법관양성소의 거론이 낮은 지식으로 우연하게 거론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때 와서야 비로소 우리 역사

상 근대적 대학이 등장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생겼다. 30주년 총장 기념사에 새로운 역사인식을 담게 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는 1984년 5월 24일 정기총회에서 '법대백년사발간준비위원회'의 설립을 결의했다. 그리하여 1987년 『서울법대백년사』 자료집(광복 전 50년)을 출간하고, 이어서 1989년 자료집 제2집(1945~1989)을 출간했다. 본편에 해당하는 『서울법대백년사(1895~1995)』는 2004년에 출간했다. 20년간에 걸친 편찬 사업이었다. 발간준비위원회 위원장 전봉덕(田鳳德) 교수가 첫 자료집(광복 전 50년)에 붙인 '간행후기'에 따르면, "이 땅에 전통적 율학(律學)을 벗어나 근대적 법학이 출발된 것은 서기 1895년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 설립부터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한국 최초의 법학 교육기관은 당시 국운이 기울어짐과 함께 법학교, 경성전수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로 개명되었고, … 이처럼 많은 변화 속에서도 꾸준히 법학 교육을 선구적으로 담당해온 본 대학의 역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논의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했다. 30주년 총장 기념사는 '법대백년사 발간준비 위원회'가 발족한 1984년보다 7년 앞서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법대 쪽의 역사 정리에 관한 논의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1986년에 간행된 『서울대학교 40년사』는 서장이나 서론을 따로 두지 않고 제1장 '광복과 서울대학교의 창건'을 서두로 삼아 제1절 '민족해방의 교육사적 의의'에서 관련 역사를 서술했다. 이 글은 '우리나라 근대 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들을 많이 거론했다. 개항 후 1880년대에 박영효, 김옥균 등의 개화사상을 통한 근대교육에 대한 의지, 뜻있는 민간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근대 교육기관으로 1883년의 원산학교,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1885년의 배재학당, 1886년의 이화학당 등이 거론되고, 정부에 의한 서양 언어교육기관으로 1883년의 동문학(同文學), 1886년의 육영공원 등을 언급했다. 이어서 1895년 내외에 발표된 '홍범 14조'에서 근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힘쓸 것을 천명한 '교육입국조서', 1895년 '소학교령' 등을 의미있게 서술했다. 그다음으로 1905년 전문학교인 양정의숙 그리고 1906년 휘문의숙, 숙명학교, 진명학교 등 중등학교와 보성학교, 한성법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의 개설을 민족의 교육 의지로 서술했다. 그리고 1910년 일제의 한반도 무력 강점으로 "순종하는 도구적 인간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민지 교육정책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근대 교육사의 흐

름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당시 역사학계, 교육학계가 자주적 근대화의 역사를 찾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40년사에는 위에서 제시한 30주년 총장 기념사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편찬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법관양성소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없다. 신기할 정도로 그 부분만 빠졌다. 이것은 서울대학교의 10년 단위 교사 편찬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40년사는 근대 교육사를 자세히 언급하면서도 광복 후 새 역사의 지도적 인물을 양성해야 하는 국립서울대학교의 사명은 오히려 고구려 태학에서 조선시대 성균관으로 내려오는 국학기관의 전통에 잇대어 놓는 착종(錯綜)을 범하고 있다.

1996년은 국립서울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세기로는 반을 지나 교사 편찬에서 역사적 성찰이 어느 때보다 더 강화될 시점이었다. 50년사는 실제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했다. 제1편 '창건과 시련, 그리고 발전(1945~60)'의 제1장 제1절 '민족의 해방과 민주, 민족 교육'의 전통에서 20년사 이래 서술에 포함되어온 고구려 태학 이후 국립기관의 교육제도를 서술했다. 이어서 40년사에서 처음으로 자세히 다룬 근대 교육사를 거의 그대로 요약해 옮겼다. 해방 후의 상황으로는 미군정의 로커드가 오천석을 만나는 과정, 그리고 9월에 한국교육위원회가 조직되는 경위, 교육계를 대표하는 10인 위원회를 배경으로 미군정의 학무국이 1946년 3월 말에 문교부로 승격하여 초대 부장에 유억겸, 차장에 오천석이 임명된 연역을 엄상섭(嚴詳燮)이 소개했다. 20년사 이래 소루했던 근현대사 관련 서술을 대폭 강화했다.

더 주목되는 것은 제1장 제2절 '창학의 배경' 부분에 관한 서술을 1919년 3·1 운동 후의 '조선민립대학 설립운동'에서 시작한 점이다. 이 운동은 주지하듯이 1923년 조선총독부가 '경성제국대학령'을 발표하게 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서술을 '창학의 배경'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 시도된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경성대학자치회'가 등장한 것에 이어 9월 8일 미군 진주, 9월 19일부터 시작된 미군정으로 서술을 이어간 것은 3·1 운동 이후의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국립서울대학교 창설의 배경으로 삼아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견지에서는 30주년 총장 기념사의 1895년 법관양성소 기원에 관한 관심은 배제되어 찾아볼 수 없다.

2006년에 나온 『서울대학교 60년사』는 새로운 면모를 많이 보였다. 편찬위원

장(이태진)이 쓴 간행사는 50년사까지 서술 방식을 편년체로 일관해 왔지만 각 부 면에서 이루어진 학사의 내용이 많아져 분류사적인 편찬이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분류사 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관악 캠퍼스 이전에 각 대학 캠퍼스의 역사도 정리해 남길 필요가 있어서 '공간'의 역사를 독립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의 전사(前史)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단과대학은 서울대학교 전체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역사를 일제 강점기 이전의 역사로 소급하여 설명하는 혼조 현상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장에서 '서울대학교의 전사'를 다룬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교사가 보인 역사 인식의 착종 상태를 해결해 보기로 한 것이다. 대한제국 출범 전후에 법관양성소, 의학교, 농상공학교 등 각급 관립 전문학교가 실제로 설립되었고, 이를 근거로 '국립 대학교'를 설립하려는 구상도 없지 않았다. 이것이 일본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광복 후의 국립서울대학교는 오히려 이 전통을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 제안은 역사학계의 근현대사 연구의 성과가 많아지고, 교내에서도 법대 100년사 편찬 외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병원사연구소를 세워 뿌리 찾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발전적 변화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시도였다.

서장의 제1절 '서울대학교 전사: 한국 근대의 국립 대학 구상과 경성제국대학'(집필자: 병원사연구소 전우용 교수)은 1) 개항 이후 신교육 기관의 설립, 2) 갑오교육 개혁과 학제의 정비, 3) 대한제국기 대학 설립 구상과 그 좌절, 4) 일제 강점기 민립대학 설립운동과 경성제국대학 설립, 5) 경성제국대학의 변천 등으로 서술되었다. 한국 근대 관립 고등교육기관의 역사가 비로소 서울대학교 전사로 들어오게 되었다. 2006년 교사 체계의 이러한 변화는 우연치 않게 2009년에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시작한 '개교 원년 재조정' 운동과 만나게 된다.

3) '1949년 개교 원년' 결정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2009년, 1946년 8월의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에 근거하여 「국립서울대학교 개교 원년 재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준비해 이장무(李長茂) 총장에게 제출하면서 서울대학교의 개교 원년 재조정을 요청

했다. 세계의 많은 대학교가 작은 기관에서 종합대학교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통합될 경우, 가장 오래된 학교의 창설 시기를 현재의 개교 원년으로 취하는 관행이 많다. 따라서 1946년 고등교육기관 10개를 통합해 서울대학교가 탄생했다면, 국립서울대학교도 그 가운데 가장 앞서는, 경성법학전문학교의 전신 법관양성소의 개교 시기인 1895년을 개교 원년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임광수, 2009).

서울대학교 본부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가을 서울대학교의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에 회부했다. 평의원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반대 측은 1946년 이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제국주의가 이 땅에 세운 경성제국대학을 서울대학교 역사에 포함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고, 나아가 종합대학교로서의 서울대학교는 어디까지나 1946년 8월의 '설립령'에 근거하여 최초의 종합대학교로 탄생했으므로 그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평의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연구 팀을 구성했고, 연구팀은 약 1년의 연구 기간을 통해 2010년 9월 「평의원회 연구 결과보고서: '개교 원년' 조정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평의원회, 2010년 9월)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연구를 통해 드러난 서울대학교 정체성의 근간에 해당하는 세 가지 특징을 근거로 1946년 설립된 국립서울대학교는 새로운 출발이지 역사적 연속성이 의식되지 않았다고 했다. 세 가지 특징을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서울대학교 평의원회, 2010: 60). (「결과보고서」에 정리된 특징을 옮기고 이에 대한 논평을 가하는 형식을 취한다.)

• 특징 1

해방된 조선(한국)을 위한 최고 대학으로서 국립서울대학교의 체제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교육 방식과 그 제도적 틀과는 완전하게 단절되고 영미식 종합대학교(University) 체제를 도입하는 특징이 처음부터 매우 명확하게 확인된다. 특히 '일제 강점기의 관립 학교들과의 관련성을 단절'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입안자인 미군정 문교 차장 오천석 박사 자신은 식민지 시대의 교육 방식을 새로 설립할 국립 대학교에 그대로 존속시킬 의향이 없었던 것

은 확실하다. 특히 그가 '먼로 사상'이라고 표현한 기성 교수들의 배타주의, 특히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의 독일식 자치주의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김기석, 1996). 오천석 차장은 미국의 코넬 대학교, 노스웨스턴 대학교,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차례로 받은 학력의 소지자다. 경성제국대학의 독일식 유풍에 대해 거부감이 컸을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1946년 미군정 아래 한국의 교육 행정은 독일식, 미국식의 선택 이전에 기존의 고등교육기관들을 재정 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종대안'과 '국대안' 두 가지를 검토하던 끝에 후자를 선택한 것은 그것이 기존 기관들을 모두 살리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성대학을 확장해 종합대학으로 만드는 '종대안'을 택할 경우,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지원 문제가 따로 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식민지 유산과의 '단절'을 위한 '폐지' 조치는 '종대안'에서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식민지 시대와의 단절을 위해 '국대안'을 택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폐지'라는 경과 조치는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에 해당하는 경성대학을 대상으로 했다면 효과가 더 컸을 것이다. 당시 각급 전문학교들에 취했다는 '폐지' 조치가 사회적으로 식민지 잔재 청산이란 뜻으로 받아들여져 갈채를 받았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 특징 2

해방시대, 새로운 근대국가 체제를 건립하는 데 필요한 지식인의 양성, 고등 지식의 전수와 연구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 대학을 건립해야 한다는 당시의 집합적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

이 지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가장 좋은 최고의 대학을 세워야겠다는 의지는 하나의 시대적 여망으로 역사적 승계 의식과는 무관하다. 역사적 승계 의식이 있어도, 또는 없어도 가질 수 있는 의지다. 그런 여망 사항을 역사적 승계 의식 부재의 증거로 삼는 것은 논리 설정의 오류라고 할 수밖에 없다.

• 특징 3

식민지 시대와의 단절을 위해 그 이전 전통시대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려는 논리는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조선 민족의 오랜 문화적 전통과 학문적 저력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만 서울대학교의 출발을 구한말의 교육기관과 연결시키려는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의 건국 과정 전반이 그러하듯 서울대학교 출발은 과거 전통과의 연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시대적 함의와 함께 미국식 University 제도의 새로운 도입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했다.

최고 대학 건립이라는 현재적 의지 실현을 위해 실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식민지시대와의 단절' 의지였고, '전통시대와의 연속성'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었다. 나아가 "개교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 개교 10년사, 20년사, 30년사를 서술하는 속에서도 이 관점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20년사의 경우, "오래된 국립 교육기관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까지 했지만, 1946년 개교의 의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에서 구체적으로 살폈듯이 오천석 박사의 '증언'에서부터 20년사, 30년사에 이르기까지 구한말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 요컨대 구한말의 역사와 연결시키지 않은 것은, 그 시대에 서구식 고등교육기관 설립의 역사 자체에 대한 지식 부재에 따른 것이지 알면서도 '전통시대와의 연속성'을 배제하려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천석 박사처럼 모든 전문학교가 "일정시대 일인들이 세운 것으로" 아는 상황에서 전통시대와의 연속성 유무를 논하는 것은 난센스다. 그렇게 앞 시대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 또는 관련 자구에 매달려 1946년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오류의 확대 재생산 행위가 되고 만다.

「결과보고서」는 같은 판단 기준에서 50년사와 60년사가 유별나게 1946년 개교가 갖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비판했다. 개교 20년사에는 '오랜 국립 교육기관의 부활'이라고 간주하면서도 1946년 서울대학교의 새로운 개교가 갖는 역사적 의의를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에 반해 50년사와 60년사는 전사에 대한 서술도 소략해지고 더불어 서울대학교 개교의 역사적 의의도 뚜렷하게 강조되지 못한 느낌을 준다고 했다. 60년사는 서장의 제1절을 '서울대학교 전사(前史)'로 설정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해 관련 역사를 자세히 소개하는 특별한 편집 방식을 취했다. 이를 두고 전사에 대한 언급이 소략하다는 지적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60년사는, '1946년 개교'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참작하지 못했던 근대 고등교육의 역사가 관련 학계에서 새로운 성과를 많이 내고 있으므로 이를 시야에 넣어 국립서울대학교의 장원한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체계화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1946년 개교' 자체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두지 못했을 뿐이다. 「결과보고서」는 그 '소루'를 "'국대안'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평가, 미군정하에서 주도된 학교 설립에 대한 거리감, 그리고 초대 총장이 미국인이었다는 점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60년사는 지금까지의 그러한 협착한 시야에서 바라본 서울대학교의 역사를 벗어나게 하려는 뜻을 담았지 구태의연한 논조를 되풀이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결과보고서」는 "요약하자면 서울대학교의 정체성은 1946년 개교와 뗄 수 없고, 그것은 식민지적 유산과의 단절은 물론이고 새로운 근대국가의 창출에 필요한 고등지식의 전수 및 연구라는 시대적 과제, 미국식 종합대학 모델의 최초 도입과 같은 여러 요소가 맞물려 있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의 이러한 정체성을 떠나 개교를 논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합대학교로서 서울대학교의 '개교', 단과대학의 '개학'을 구분하여 병기하는 절충을 취해 1895년을 '개학 원년', 1946년은 '개교 원년'으로 각각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서울대학교 평의원회, 2010: 67). 이 방안이 당시로서는 교내의 상반하는 견해를 해소하는 효과를 보았지만, 총동창회의 「연구보고서」가 조사한 "「The Times」 선정 2008년 University Top 200 중 상위 50위 내 대학의 연혁"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구분한 예는 세계적으로 찾아 볼 수 없다. 종합대학교의 개교를 '개교'라고 하고 단과대학(College)의 개교를 '개학'으로 구분한 예는 하나도 없었다. "1895년 개학 원년"이란 표현은 일반적일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최초의 종합대학교인 국립서울대학교의 기원에 대한 공식 규정으로 타당한 것인지 재검토가 요망된다.

평의원회의 결정은 국립서울대학교의 장원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그러므로 '개교 원년'의 역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 인식에 문제점이 많았음을 직시하고, 그 선상에서 이번 『서울대학교 개학 120년 기념 국립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사(1895~1946)』 편찬사업을 통해 새로이 밝혀진 사실들을 점검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데 과감히 나설 필요가 있다. 설혹 결론과 처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 밝혀진 역사적인 사실들은 서울대학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 참고문헌

자료

『각성호회보(覺醒號回報)』, 『고종실록(高宗實錄)』,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서울대학교)대학신문』, 『신조선신문(新朝鮮新聞)』, 『오사카아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평화회의 편지(*Courrier de la Conference*)』, 『화자일보(華字日報)』, 『황성신문(皇城新聞)』

단행본 및 논문

고춘섭, 2008, 『수양산인 정재용 전기』, 수양산인기념사업회.

국사편찬위원회 편, 1955, 『매천야록(梅泉野錄) 4』,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편, 1966,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 4권, 국사편찬위원회.

김경미, 1999, 「육영공원의 운영방식과 학원의 학습실태」, 『한국교육사학』 21.

김경용, 2010, 「『육영공원일록』 연구」, 『교육사학연구』 20(2).

김기석, 1996, 「해방 후 분단국가교육체제의 형성, 1945~1948: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등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53.

김문식, 2007,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김동진, 2010, 『파란눈의 한국혼 호머 헐버트』, 참좋은 친구.

김세한, 1965, 『배재 80년사』, 배재학당.

김원모, 1999, 『한미수교사』, 철학과현실사.

김인수 역, 2006, 『언더우드목사의 선교 편지(1885~1916)』, 장로회신학대학교.

김정명 편, 1986, 『조선주차군역사(朝鮮駐箚軍歷史)』, 암남당.

김태웅, 2000, 「일제 강점기 김옥균 추앙과 위인교육」, 『역사교육』 7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2010,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집 제27 중국신문 안중근의거 기사집』, 독립기념관.

방선주, 1987, 「서광범(徐光範)과 이범진(李範晉)」, 『최영희(崔永禧) 선생 화갑 기념 한국사학논총』, 탐구당.

박찬승, 2000, 「1890년대 후반 관비유학생의 도일유학」, 『한일공동연구총서』 2.

서영희, 1990,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宮內府)」, 『한국사론』 23.

서울대학교 20년사편찬위원회, 1966, 『서울대학교 20년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30년사편찬위원회, 1976, 『서울대학교 30년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40년사편찬위원회, 1986, 『서울대학교 40년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50년사편찬위원회, 1996, 『서울대학교 50년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60년사편찬위원회, 2006, 『서울대학교 60년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 편, 1987a, 『서울법대 백년사 자료집 제1집: 광복 전 50년』, 법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 편, 1987b, 『서울법대 백년사 자료집 제2집: 1945~1987』, 법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 편, 2004, 『서울법대 100년사: 1895~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2010,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연구결과보고서: '개교원년' 조정에 관한 연구」, 2010년 9월.

오천석, 1972, 「오천석 회고록」(서울대학교 평의원회, 2010, 『'개교원년' 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수록).

유영익, 1990, 『갑오경장 연구』, 일조각.

윤효정, 1995, 『한말비사(韓末祕史)』, 교문사.

윤병석, 1984, 『이상설전(李相卨傳): 해아특사(海牙特使) 이상설의 독립운동론』, 일조각.

이광린, 1963, 「육영공원의 설치와 그 변천에 대하여」, 『동방학지』 6.

이광린, 1977, 「육영공원의 설치와 그 변천」, 『한국개화사연구』, 일조각.

이선근 저, 진단학회 편, 1963, 『한국사 현대편』, 을유문화사.

이정식 외, 2005, 『혁명가들의 항일 회상: 김성숙, 장건상, 정화암, 이강훈의 독립투쟁』, 민음사.

이태진, 1992, 「정조의 '대학' 탐구와 새로운 군주론」, 『이회재(李晦齋)의 사상과 그 세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이태진, 1993 「정조: 유교적 계몽절대군주」, 『한국사시민강좌』 13, 일조각.

이태진, 1997, 「갑신정변 '일사래위(日使來衛)' 어서(御書) 진위고(眞僞考)」,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와 신국가건설』, 지식산업사.

이태진, 2000,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이태진, 2002, 「운양호 사건의 진상: 사건 경위와 일본 국기게양설의 진위」, 『최승희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조선의 정치와 사회』, 집문당.

이태진, 2004, 「19세기 한국의 국제법 수용과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 청산을 위한 투쟁」, 『역사학보』 181.

이태진, 2007, 「역사소설 속의 명성황후 이미지: 정비석의 역사소설 『민비』의 경우」, 『한국사시민강좌』 41.

이태진, 2009a, 「명성황후 사진 진위 논쟁에 오른 사진 자료의 종합적 고찰」, 『대한제국 황실사진전』, 한미사진미술관.

이태진, 2009b, 「고종황제의 독살과 일본정부 수뇌부」, 『역사학보』 204.

이태진, 2010,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사상』, 지식산업사.

이태진, 2011, 「해외를 바라보는 북학파」, 『한국사시민강좌』 48.

이태진, 2014,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 도쿠토미 소호(德富蘇峰): 근대 일본 한국 침략의 사상적 기저」, 『한국사론』 60.

이태진, 2016a, 『일본의 한국병합 강제 연구: 조약 강제와 저항의 역사』, 지식산업사.

이태진, 2016b, 『끝나지 않은 역사』, 태학사.

임광수 편, 2009, 『정통과 정체성: 서울대학교 개교 원년, 왜 바로 세워야 하는가』, 삶과 꿈.

정세현, 1975, 『항일 학생 민족운동사 연구』, 일지사.

정숭교 저, 2008, 「이준의 행적 및 고종황제의 특사로 발탁된 배경」, 이태진 편, 『백년 후에 만나는 헤이그 특사』, 태학사.

정일성, 2005, 『일본군국주의의 괴벨스 도쿠토미 소호』, 지식산업사.

한보람, 2005 · 2006,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을 위한 국제정보수집: 『한성순보』의 관련기사 분석」, 『진단학보』 100 · 101.

허동현 편, 2007, 『조사시찰단관계자료집 5』, 국학자료원.

홍문기, 2004, 「갑오개혁 이후 비서기관의 변천과 군주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稻葉千晴, 2016, 「日本による韓国占領1904年2月」, 『을사조약110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1905년 '보호조약',

그 세계사적 조명』, 2016. 11. 20.
溝上瑛, 1992,「内藤湖南」, 江上波夫 編,『東洋學の系譜』, 大修館書店.
菊池謙讓, 1910,『大院君傳: 朝鮮最近外交史』, 日韓書房.
菊池謙讓, 1939,『近代朝鮮史』, 鷄鳴社.
吉野誠, 2002,『明治維新と征韓論: 吉田松陰から西郷隆盛へ』, 明石書店.
金文子, 2009,『朝鮮王妃 殺害と日本人』, 高文研.
大谷正, 2014,『日清戰爭: 近代日本初の對外戰爭の實像』, 中央公論新社.
東京大學百年史編集委員會 編, 1984,『東京大學百年史: 通史』, 東京大學出版會.
鈴木淳, 2002,「雲揚艦艦長井上良馨の明治八年九月二十九日付江華島事件報告書」,『史學雜誌』111-112.
笠原英彦, 2006,『明治天皇: 苦悩する「理想的君主」』, 中央公論新社.
山田済斎 編, 1939,『西郷南洲遺訓』, 岩波文庫.
森山茂德, 1992,『日韓併合』, 吉川弘文館.
小山正明, 1998,「内藤湖南」, 永原慶二 鹿野政直 編,『日本の歷史家』, 日本評論社.
煙山專太郎, 1908,『征韓論の實相』, 早稻田大學出版部.
田中正美, 1992,「那珂通世」, 江上波夫 編,『東洋學の系譜』, 大修館書店.
井上勝生, 2006,『幕末 · 維新』, 岩波新書.
中塚明, 1997,『歷史の僞造をただす』, 高文研.
海野福壽, 2000,『韓國併合史の研究』, 岩波書店.
海原徹, 1994,『朝日日本歷史人物事典』, 朝日新聞社.
海原徹, 2003,『吉田松陰と松下村塾』, ミネルバ.
和田守, 2011,「德富蘇峰と平民主義」,『聖學院大學總合研究所紀要』49.
和田春樹, 2010,『日露戰爭』, 岩波書店.
Gifford, Daniel Lyman, 1896, "Education in the Capital of Korea", *The Korean Repository*, Vol. 3.
McKenzie, F. A., 1908, *The Tragedy of Korea*, London: Hodder and Stoughton.
Hawley, Samuel, 2005, "Journey in Korea: The 1884 Travel Diary of George C. Foulk",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80, Seoul: The Branch.
Hawley, Samuel ed., 2007, *America's Man in Korea: The Private Letters of George C. Faulk, 1884-1887*, Lanham: Lexington Books.
Pang, Sun Joo, 1984, "The Life of an Exile in the United States", Data & Research Series K-2.

제1부

조선·대한제국기

VERI
LUX
TAS
MEA

제1장

고종 재위 전기(前期, 1863~1894) 교육개혁론 및 교육정책

제1절 한국 근대 교육개혁의 사상적 연원

1) 조선 후기 실학교육론

건국 초기 조선의 사대부가 추진했던 국가재건작업 중 하나는 유교 사상에 입각한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고려 대의 교육제도는 대중교육이 아닌 소수 관료 양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며, 그나마도 무신정권기 및 원간섭기에는 국내외적인 사정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고려 말, 조선 초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하여 조선을 유교적 이상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사회 전반의 개혁에 착수했으며, 교육제도 개혁 또한 그 연장선에서 추진되었다.

조선시대 교육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의 향교와 중앙의 사학, 그리고 국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이 과거제도의 각 단계와 정확히 부합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유교적 전문지식을 갖춘 관료를 양성하는 한편, 관료 후보생이자 국가의 사상적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방대한 유생층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고려 대에 비해 크게 증액되어 그 공공성이 제고되었기에, 신분 간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가 체제를 건강하

게 발전시키는 데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

한편 조선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초 교육기관인 서당은, 조선 건국 이후 관의 지원과 향촌 사대부의 자원에 힘입어 대폭 증설되었다. 학자, 교육자, 향촌 엘리트로서 자치 역량 확보를 중시한 사대부는 자신들의 유교적 가치관을 보급하는 한편 국가와는 별개로 향촌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서당 설립에 힘썼다. 조선 정부는 지방관들을 통해 서당을 지원·감독하면서 공교육제도의 일부로 포섭하고자 했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유교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관료층을 창출하며 다수의 국정지지층을 양성하고 일반 대중에게까지 유교적 가치를 보급할 것을 시도한, 당대로서는 매우 앞서나가는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교육제도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대부 집단들 사이의 경쟁이 격화되고 그 와중에 소수 문벌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유학자적 능력을 갖춘 관료를 선발한다는 과거제도의 목적이 약화되었다. 일례를 들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정기시험인 식년시(式年試)보다 증광시(增廣試), 알성시(謁聖試), 별시(別試) 등 비정기시험이 증가했다. 비정기 시험은 시험 방식이 경학(經學)이 아닌 제술(製述)을 위주로 하고 있어 유행하는 문장이나 학풍을 알고 있는 경화유생(京華儒生)들에게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시험 공고 기간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중앙권력과 밀착된 사대부들에게 매우 유리한 시험 형태였다(이선엽 외, 2007: 6). 여기에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각 정치집단들이 경쟁적으로 과거시험을 개최한 결과, 실제 관리로 임용 가능한 수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수의 과거 합격자가 배출되었다[『성호사설(星湖僿說)』 7권, 인사문(人事門), 「과천합일(科薦合一)」]. 또한, 시험 절차나 과목이 간단했던 생원·진사시의 경우는 요행을 바라는 응시자 수가 폭증하여 과거 시험의 정상적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나타나는 등 과거제도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박현순, 2009: 137). 이러한 상황은 곧 교육제도의 사회적 의의를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조선 후기 교육 체제가 직면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기관 자체의 질적 저하였다. 권력이 안정화된 15~16세기 이후, 조선은 많은 비용이 드는 교육 체제를 유지하기보다는 과거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관료집단을 육성하고자 했다. 그 결과 각 교육기관의 예산이 삭감되고 교관의 자질은 점차 하락

하여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교육 기능을 상실한 채 유교성현이나 지방 사대부들의 선친에게 제사를 지내는 역할만 수행할 정도로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다(손세영, 2015: 5~6). 대신 서원이나 가학 등 사적 영역의 교육기관이 증가하면서 조선 후기 지성계를 이끌어갔다. 그 결과 유력 가문과 정치집단을 중심으로 지식의 독점이 증가하고 교육의 공공성은 약화되었다. 이는 과거제도의 문란과 더불어 조선의 공교육제도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다양성마저 파괴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듯 조선 후기 교육제도의 문란은 조선사회 전체의 위기와 직결되는 문제였고, 많은 학자가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내놓았다. 특히 노론 계열의 보수적 성리학계가 사상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에서 개혁적·대안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던 그룹이 바로 실학자들이다. 흔히 실학자들을 예의지학(禮義之學)에 치우친 조선 후기 성리학의 폐쇄성에 반발하여 나타난 신흥지식인이라고 단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실학자들 또한 노론, 소론, 남인 등 조선 후기 각 학파-정파 집단별로 다양한 배경 속에서 그 나름의 성리학적 훈련을 거친 지식인들이라는 주장이 정론으로 인정받고 있다(유봉학, 2011: 42~46). 따라서 조선 후기 교육제도에 대한 실학자 집단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성리학적 사상 배경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구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긴 하지만,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크게 남인 계열과 노론 계열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조선 후기 사상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불러온 사건은 흔히 호락논쟁(湖洛論爭)으로 알려진 인물성동이논쟁(人物性同異論爭)이다. 성리학적 이기론(理氣論)에 입각하여,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놓고 벌어진 이 논쟁은 노론 학자인 권상하(權尙夏)의 문하에서 시작하여 조선 학계 전체로 파급되었다. 인성과 물성이 동일하다고 파악할 경우, 이는 중화(中華)와 이적(夷狄), 정통(성리학)과 이단

1 최근에는 실학자 집단 내의 분파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경화사족(京華士族)이라는 지역적·계층적 토대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교류, 발전한 총체적 지식인 집단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유봉학, 2011: 51). 그러나 이렇게 실학자들이 붕당분파와는 무관하게 활발히 교류했던 것은 정조대 이후의 특징으로 실학자 집단 전체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교육제도에 대한 정책의 경우에는 양 분파가 제시한 내용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실학자 집단의 분파 구분을 전제하여 서술함을 밝힌다.

을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중화주의적인 명분론을 강조했던 보수성리학적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노론학자들 중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한 인물들이 주로 낙하(洛下, 지금의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에 동조하는 그룹들은 거의 호서(湖西, 지금의 충청도 지역)에 살고 있었기에 호락논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박지원(朴趾源, 1737~1805), 홍대용(洪大容, 1731~1783), 이덕무(李德懋, 1741~1793), 박제가(朴齊家, 1750~1805) 등 흔히 북학파(北學派)로 알려진 일군의 실학자들은 이 호락논쟁에서 모두 호론(湖論)의 입장에 서있는 인물들이었다. 예를 들어 홍대용은, "천지(天地)에 가득 찬 것은 다만 이 기(氣)뿐이고 이(理)가 그 중에 있다. … 이는 사람과 물(物)이 같다"[『담헌서(湛軒書)』, 내집(內集) 권1, 「답서성지론심설(答徐成之論心說)」]고 하여, 유기론(唯氣論)의 관점에서 인성과 물성을 동일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그 연장선에서 홍대용은 중화와 비중화의 차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담헌서』, 내집 권4, 보유(補遺), 「의산문답(毉山問答)」]. 중국과 서양을 상대적인 가치로 파악함으로써 중화주의, 성리학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창출한 것이다. 나아가 중화와 서구 사이에서 제3의 천하로서 조선의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반면, 흔히 '중농주의학파(重農主義學派)' 혹은 '경세치용학파(經世致用學派)'로 지칭되는 남인 실학자들의 경우, 인물성동이논쟁에 대해서 북학파와는 사뭇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성호 이익(李瀷, 1681~1763)은 이황(李滉) → 정구(鄭逑) → 허목(許穆) → 이익으로 이어지는 근기남인(近畿南人)의 사상적 정통을 이은 인물이면서, 또한 남인 실학계의 비조(鼻祖)에 해당하는 지식인으로서 후대의 여러 실학자에게 큰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이익은 인성과 물성에 대하여 논한 『사칠신편(四七新編)』이라는 글에서 "천지의 상도(常道)는 그 마음이 만물에 두루 미치지만 심(心)이 없어 사람의 마음이 하는 것처럼 정의(情意)와 지각의 발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 어찌 혼원(混元)의 묵묵히 운행하는 이치로써 억지로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응하여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 같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그 동일성을 부정했다[『사칠신편』, 「독이율곡서기의(讀李栗谷書記疑)」]. 이러한 주장은 인성-물성 논쟁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연역되어, 부자(父子), 군신(君

臣), 형제(兄弟), 부부(夫婦) 간에는 그 이치와 위상이 다름을 강조하고 있다[『성호사설』 권22, 경사문(經史門), 「격치성정(格致誠正)」]. 이러한 학문 경향은 이발(理發)을 강조했던 퇴계학파의 정통을 이은 남인 학자가 갖는 특징으로 보인다. 이익의 인물성이론은 이후 정약용(丁若鏞, 1762~1836)에게도 계승되어, 남인 실학적 사상의 토대를 형성하게 된다(조은영, 2012: 3장).

실학은 조선 후기 사회 모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학문이기 이전에 성리학의 내재적 발전·변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리학의 핵심 논쟁에 대한 실학자들의 세계관적 차이는 곧 그들의 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남인 실학자들의 교육개혁론은 대체적으로 전통적 공교육제도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상기한 대로 조선 후기 성균관, 학당, 향교 등은 교관이 수적, 질적으로 감소하거나 혹은 시설 자체가 향사기관(享祀機關)으로 전락하거나 당파투쟁의 온상이 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남인 실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이익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던 성균관의 생도들이 학업에 힘쓰지 않고 당쟁에 이용되는 등 질적 저하가 나타난 현실을 비판했다[『성호사설』 권7, 인사문(人事門), 「통경과시관학유생(通經科試館學儒生)」]. 그리고 이에 대한 개혁안으로 한성 및 지방의 진사(進士)들이 성균관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는 규정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성호선생전집(星湖先生全集)』 권45, 잡저(雜著), 「논학제(論學制)」]. 나아가 지방의 향교와 중앙의 사학(四學) 및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행정구역별로 계통화하고 그 교육 및 과시(科試) 규정을 강화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정상화할 것을 제안했다(조봉례, 1996: 34~36).

이러한 공교육제도 정비개혁안은 같은 남인 실학자로 분류되는 유형원(柳馨遠), 정약용 등의 저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유형원은 최고 교육기관인 태학(太學)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학제를 행정구역별로 일원화하고, 이러한 학제 속에서 엄정한 천거 및 과거에 의해 인재를 선발하는 교육개혁안을 구상했다(손세영, 2015: 66). 정약용도 최고 교육기관인 태학을 중심으로 교육기관 편제를 주장했다. 특히 태학 안에 왕족의 교육을 전담하는 국자감(國子監)을 설립하여 일반 사족이나 백성과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밟도록 했다. 그리고 천민층은 교육 대상에서 배제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사족과 평민의 구별을 분명히 하는 등

신분질서를 전제로 한 교육개혁안을 제시했다[『경세유표(經世遺表)』 권13, 「지관수제(地官修制)」].

이렇듯 남인 실학자들이 교육제도를 지방제 및 신분제도와 연계하여 정상화하는 개혁안에 주목한 것은, 그들의 개혁사상이 근본적으로 유교적 복고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사회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송(唐宋) 이후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는 고제(古制) 복구를 개혁의 명분으로 주장했다(임재윤, 1999: 116~117). 왕족에 대한 교육을 확충하여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고 신분제의 토대 위에서 교육제도의 공공성을 회복하도록 제안한 이들의 개혁안은 성리학 이전 유교 고학(古學)의 정신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주(程朱) 성리학의 사대부 중심주의가 과격한 붕당주의로 귀결되어 조선 정치를 경색시켰다는 문제의식 아래 도출한 대안으로서 시대적 의미가 있으나 근대교육의 시발점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북학파(北學派)로 알려진 노론 실학자들의 교육제도 개혁론은 남인 실학자들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인성과 물성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관념은 중화의 독점적 가치, 양반 사대부들의 신분적 지위를 상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북학파 실학자의 대표격인 박지원(朴趾源)의 저술에서 그러한 경향이 잘 나타난다. 박지원은 선비를 중심으로 아래는 농(農), 공(工), 위로는 왕공(王公)이 동등하며, 천자 또한 원래 선비[原士]라고 주장했다.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작위가 더해지는 것뿐 그 신분[身元]은 동일하다는 것이다[『연암집(燕巖集)』 권10, 별집, 엄화계수일잡저(罨畫溪蒐逸雜著), 「원사(原士)」]. 그의 시각에서 선비란 가난한 유자(儒者)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선비이며, 각자의 위치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뤄야 하는 사람들이었다[『연암집』 권5, 영대정승묵척독(映帶亭賸墨尺牘), 「답창애지륙(答蒼厓之六)」].

홍대용은 사·농·공·상에 관계없이 놀고먹는 사람(遊衣遊食者)이 없도록 하되 재능과 학식이 있다면 농부나 상인의 자제일지라도 교육을 받고 고관이 될 수 있으며, 재능과 학식이 없다면 공경(公卿)의 자식이라도 하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전제 위에 각 면 단위의 8세 이상의 모든 자제들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담헌서』, 내집 권4, 보유, 「임하경륜(林下經綸)」]. 소론 출신이나 북학파의 일원으로 분류되는 유수원(柳壽垣, 1694~1755)도 삼국 이전에는 사·농·공·상의 구분이 없었으나 고려시대부터 선비를 높이고 잡기(雜技)를 싫

어하며 공상(工商)을 금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했다[『우서(迂書)』 권1, 「논려제(論麗制)」]. 나아가 중국의 사례를 들어 향촌의 모든 자제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우서』 권1, 「총론사민(總論四民)」, 「논학교선보지제(論學校選補之制)」]. 이처럼 북학파도 남인 실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공교육제도의 회복을 강조했으나, 신분제의 제약을 극복하고 근대적인 공교육을 지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제안한 교육 과목에서도 남인 실학자와 북학파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정약용은 선비들에게 교육할 내용으로 지(知)·인(仁)·성(聖)·의(義)·충(忠)·화(和)의 여섯 가지 덕(德)과 효(孝)·우(友)·목(睦)·인(婣)·임(任)·휼(恤)의 여섯 가지 행(行)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詩)』·『서(書)』·『예(禮)』·『악(樂)』·『역(易)』·『춘추(春秋)』 등 육경(六經)과 『논어(論語)』·『맹자(孟子)』·『대학(大學)』·『중용(中庸)』의 사서(四書), 그리고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수(數)의 육예(六藝)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유교 고학(古學)을 공부하던 유자들이라면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반면 박지원이 제안한 교육 콘텐츠는 정약용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 그는 유교 일변도의 학문 경향 때문에 독창적인 학문을 하는 선비들이 사라졌고 '이단의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없어졌다고 지적했다[『연암집』 권7, 별집, 종북소선서(鍾北小選序), 「풍악당집서(楓嶽堂集序)」]. 이러한 점은 노론 실학자들의 인물성동론이 중화주의와 성리학 중심주의를 해체하면서 발생한 사상적 발전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주장에 입각해 박지원은 이용후생(利用厚生)의 학문을 선비들에게 가르쳐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선비들이 공맹(孔孟)의 유학과 정주(程朱)의 성리학 외에 농법에도 천착해야 한다는 '실학적 교육론'을 주장했다[『연암집』 권16, 별집, 과농소초(課農小抄), 「경간(耕墾)」]. 나아가 공업, 상업 등에 필요한 실용적 지식들 또한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했다[『연암집』 권7 별집, 종북소선(鍾北小選), 「북학의서(北學議序)」]. 이익 또한 "경서를 다 외우면서도 정사(政事)를 옳게 해내지 못하고 사신으로서 외국에서 전대(專對)를 해내지 못하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성호사설』 권20, 경사문(經史門), 「송시(訟詩)」]라고 하여 학문의 실용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학자인 동시에 관료인 유자의 정체성을 전제한 것으로, 신분제 자체를 비판하면서 산업적 실용성을 교육 분야에까지 적용할 것을 주장한 박지원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편 유수원은 고대에는 사농공상의 신분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양반들의 실제 행동이 공상(工商)보다 더 부도덕하고 비루한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고, 말업(末業)이라고 천대받는 공상업이 본래 바르지 않고 비루한 일이 아니며 몸소 수고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는 정당한 직업으로서 양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우서』 권1, 「논학제(論學制)」].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유년기부터 유교적 소양을 교육하되 이후 각자 소질에 따라서 사의 길을 계속 걷는 사람과 농, 상, 공의 길을 택한 사람은 각자에게 필요한 기술을 나누어 가르칠 것을 주장했다[『우서』 권1, 「총론사민(總論四民)」]. 이는 그의 교육개혁론이 지향한 실용성이 근대적 교육개혁과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위와 같이 조선 후기 실학자 집단들은 각자의 철학적 기반에 근거해 나름의 교육개혁론을 제시했다. 이들의 개혁론은 양인(良人)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 강화론으로 귀결되었는데, 특히 북학파라고 불린 노론계 실학자들은 호락논쟁(湖洛論爭) 중 인물성동론의 영향을 받아 교육에서 신분차별 폐지와 농상공학(農商工學) 교육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 체제를 확립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근대 역사 속에서 유례가 없는 교육사상으로 주목될 만하다. 이들의 교육개혁론은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이 즉위한 이후, 북학파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 개명군주를 지향하며 개화정책을 추진한 고종과, 북학파의 사상적 · 정치적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개화파(開化派)들에 의해 계승되었다.

2) 고종 대 교육개혁론의 양상

고종(高宗, 1852~1919)은 1863년 12월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고종은 1873년 소위 '친정(親政)'을 선포한 이후 그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 1820~1898)과는 달리 적극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고종의 개화사상이 형성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성장한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흥선대원군은 추사체(秋史體)를 창안한 서예가로 이름이 알려진 김정희(金正喜, 1786~1856)에게 사사했다. 김정희는 박지원의 문인이자 『북학의(北學議)』를 저술한 북학파 사상가인 박제가(朴齊家, 1750~1805)의 제자로서, 서예 외에 고증학(考證學), 금석학(金石學), 고고학(考古學) 등 각 학문 분야에서 실사

구시적인 학풍을 발전시킨 저명한 실학자였다. 호포세(戶布稅)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며 서원을 철폐하는 등 양반의 신분제적 특권을 약화시키며 정부 재정을 확충하고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킨 흥선대원군의 실용적 개혁정책은, 박지원-박제가-김정희-흥선대원군으로 이어지는 사승(師承)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가학(家學)을 통해 고종에게도 계승되었을 것이다.

한편 고종의 처가인 여흥 민씨(驪興閔氏) 집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종의 왕비인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가 여흥 민씨의 일원이기에 흔히 고종의 처가로 알려졌지만, 대원군의 모친, 부인도 여흥 민씨이며 고종의 아들이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純宗, 1874~1926)의 황비인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 또한 여흥 민씨 출신이다. 즉 여흥 민씨 집안은 4대에 걸쳐서 고종의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어왔으며, 고종에게는 조모가(祖母家)이자 외가(外家)이자 처가(妻家)로서 어린 시절부터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은 친족집단이었다. 그런데 고종 친정 당시 명성황후의 12촌 형제로서 여흥 민씨 집안의 주축을 이뤘던 민태호(閔台鎬, 1834~1884), 민규호(閔奎鎬, 1836~1878) 형제는 흥선대원군과 함께 김정희의 문인이었다. 민태호는 1883년 근대적 화폐개혁을 위해 설치된 전환국(典圜局) 관리사무를 거쳐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 독판(督辦, 지금의 장관)을 역임하는 등 고종의 근대화 정책의 일선에서 활동했다. 민태호의 아들인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은 명성황후의 양오빠인 민승호(閔升鎬, 1830~1874)가 의문의 폭사를 당한 후 민승호의 후사를 잇게 된 인물로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개화 추진과 군주권 강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민규호 또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당시 대원군의 쇄국주의에 반대하고 개국론을 전개했던 인물이다(한영우, 2001: 37).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대원군 일가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 서울의 경화학계(京華學界)는 실사구시에 입각한 경세(經世)적 학문과 고증학의 학풍을 발전시켰으며, 특히 최한기 등 신흥경화사족층은 북학(北學) 외에 서학(西學) 지식을 토대로 한 새로운 학문으로 현실 문제를 탐구하고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등 혁신적인 사상을 개진했다(유봉학, 2011: 46). 부친인 흥선대원군이나 외가인 여흥 민씨 집단의 성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종 또한 즉위하기 전 어렸을 때부터 경화학계의 실학적 학풍과 인맥 속에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고종은 국왕으로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집단 간의 갈등 및

타협의 결과 1863년 12월 급작스럽게 즉위했다. 때문에 즉위 후 10년간 군주로서 통치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업에 전념했다. 정조 사후 조선 왕실은 순조, 헌종, 철종 등 국왕으로서의 수업을 충분히 받지 못한 왕들이 연이어 즉위한 점을 감안하여 국왕에 대한 공식 교육 절차인 경연(經筵)보다 형식이 간편한 권강(勸講)을 자주 시행했다. 고종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위시한 유교경전을 학습했으며(김세은, 2000: 152~154), 이를 통해 기본적인 군주관을 확립할 수 있었다(김성혜, 2011).

고종은 1873년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린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을 옹호함으로써 대원군을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친정 이후 고종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영의정에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을, 우의정에 박규수(朴珪壽, 1807~1877)를 임명했다. 이유원은 대원군 정권기였던 1864년 좌의정에 임명되었을 정도로 유력한 정치가였으나 대원군과 반목한 뒤 1865년 수원유수로 좌천되었다. 그 후 판중추부사를 거쳐 영중추부사로 전임되고 『대전회통(大典會通)』 편찬의 총재관으로서 대원군 당시 정치개혁에 기여한 인물이다. 또한 강연관으로 진강(進講)에, 시원임의정으로 인견(引見)에 다수 참가해 고종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유원은 1845년과 1875년 연행사(燕行使)로 북경에 다녀오면서 중국에서 많은 서적을 입수했다. 이 중에는 조선의 개화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해국도지(海國圖志)』, 『주해도지(籌海圖誌)』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2차 연행 당시 리훙장(李鴻章)과 교섭하면서 조선이 처한 국제적 상황을 알게 되었다. 이유원은 청국이나 일본과의 근대적 외교를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으나 조선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상 수교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사상적 유연함을 갖고 있었다(김성은, 2012: 214). 고종은 이러한 이유원의 능력을 인정하여 친정 체제를 총괄하는 영의정 자리에 임명하는 한편, 1875년 청국의 리훙장과 조선 세자책봉 문제를 교섭하도록 했고, 1882년 전권대신으로서 일본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와 제물포조약을 조인하게 하는 등 고종 친정 이후 외교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리훙장과 친교를 맺고 빈번하게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조선과 중국의 막후교섭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권혁수, 2003).

한편 이유원과 함께 고종 친정을 보조한 박규수는 실학의 연장선에서 형성

된 개화론을 체득하고 이를 고종에게 전수한 장본인이었다.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는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가 1827년 이후 대리청정을 하던 순조대 말 세자와 돈독한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다[『매천야록(梅泉野錄)』: 15~16]. 효명세자는 특히 박지원의 실학사상에 관심을 갖고 박규수를 통해 그 내용을 배우려고 했다(박종채, 2005: 270~271). 그러나 1830년 효명세자가 요절한 이후 상심하여 오랜 기간 관직을 멀리하다 18년 후인 1848년 40세가 되어서야 효명세자의 부인인 신정왕후 조씨(조대비)의 안배로 과거에 급제했다(『매천야록』: 15~16). 이후 사헌부 장령, 경상좌도 암행어사 등으로 봉직하다가 1861년 연행을 다녀오면서 1856년 애로호 사건 이후 서구 열강들이 청국을 침략한 국제정세를 목격하는 한편 중국 문인들과 폭넓은 교류를 할 수 있었다. 1862년에는 진주민란 수습을 위한 안핵사(按覈使)로 파견되어 세도정치 말기 조선의 문제에 직면해야만 했다.


[그림 1-1-1] 환재(桓齋) 박규수(朴珪壽)

박규수가 본격적으로 정부의 요직에 진출한 것은 고종이 즉위한 이후였다. 고종의 즉위는 안동 김문이라는 공통의 적을 갖고 있던 흥선대원군 이하응(종친세력)과 신정왕후 조씨(풍양 조문)의 합의에 의해 성사된 사건이었다. 사후 익종(翼宗)으로 추증된 효명세자의 부인인 조대비의 요구에 따라 고종은 효명세자 부부의 자식으로 입양된 후 즉위했다. 그리고 조대비는 1866년 2월까지 3년간 수렴청정을 시행하면서 익종 생전 측근이었던 박규수를 특별히 도승지로 발탁하여 고종의 근신(近臣)으로 배치했다. 수렴청정을 시작한 조대비가 고종 즉위 첫해(1864) 1월 1일 원단에 가장 먼저 내린 지시가 박규수를 특별히 가자(加資)하라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익종과 특별히 뜻이 합치되어 은혜를 받았음은 내가 깊이 알고 있는 바다. 오늘에 있어 이러한 뜻을 표시하는 조치가 없을 수 없으니, 부호군 박규수에게 특별히 자급(資級)을 올려주도록 하라"(『고종실록』, 1864. 1. 1).

고종 또한 박규수의 학문적 성취를 존중했다. 조대비에 따르면 고종은 사저에 있을 때부터 대원군이 칭찬하는 말을 듣고 박규수의 학문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박규수가 경연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부족한 학문이 드러날 것을 부

끄러워하여 걱정했다고 한다[『용호한록(龍湖閒錄)』 3권 no. 763, 「이십일차대연설(二十日次對筵說)」]. 그리고 1866년 박규수를 평양감사로 보내면서 "내가 즉위 초부터 박규수를 평안감사로 특별히 기용한 것은 평소에 그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학문을 맛보기 위함이었으며, 그는 지금까지 맡겨진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해주었다. 하물며 지금은 경연에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있는데 어찌 나를 두고 멀리 떠나게 할 수 있겠는가만, 변경을 안정시킬 방도를 생각하면 그와 잠시 이별할 수밖에 없으니…"(『승정원일기』, 1866. 3. 22)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경세제민의 학문'과 정치적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다.

평안도 관찰사로 임명된 박규수는 1866년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불법적으로 통상을 요구했던 미국의 무장상선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 호의 소요를 진압했다. 그리고 이후 제너럴 셔먼 호 생존자 송환을 위해 미국이 파견한 와추세트(Wachusett) 호, 셰넌도어(Shenandoah) 호의 내항이나 독일인 에른스트 오페르트(Ernst J. Oppert)의 대원군 부친 남연군묘 도굴 사건, 그리고 미군이 강화도를 침공한 신미양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서구와의 외교적인 갈등에서 조선의 외교업무를 사실상 전담했다. 그리고 고종이 친정을 선포한 이후에는 우의정에 임명되어 고종을 보좌했으며, 특히 1876년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조선의 관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박규수는 외국과의 분쟁에 대해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실용적 · 절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갔던 유교적 현실주의자로서 19세기 조선 정치사에서 매우 특이한 지점에 섰던 인물이다(강상규, 2012: 128). 가학 및 경화학계의 북학파적 학풍 속에 성장했던 고종은 박규수의 이러한 학문적 성취를 중요한 모델로 받아들였다.

박규수는 박지원이나 정약용 등 널리 알려져 있는 실학자들과는 달리 학문적인 저술을 남기지 않았기에 실학자로서의 성과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저술에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기록들을 통해 그의 학풍을 짐작할 수 있다. 박규수는 고염무(顧炎武)의 저술에 붙이는 발문(跋文)에서 "무릇 학(學)이라는 것은 모두가 실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니 천하에 실(實)이 없는데 어찌 학이라고 이르겠는가?"[『환재집(瓛齋集)』 권4, 잡저, 「녹고정림선생일지록론화발(錄顧亭林先生日知錄論畫跋)」]라고 실학의 필요성에 관해 강변한 바 있다.

특히 박지원의 실학적 학풍이 강하게 드러난 부분은 그의 서구관(西歐觀) 및 외교론이었다. 그는 미국 군함이 제너럴 셔먼 호 생존자들을 송환받기 위해 조

선 해안에 도착했을 당시 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청국에 보낸 자문(咨文)의 초안에서 "미국은 지구상의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공평하다고 일컬어지고 분쟁의 해결을 잘하며 또 6주(州)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토를 확장하려는 욕심도 없다고 하니 저쪽에서는 비록 말이 없다고 하나 우리는 마땅히 먼저 수교 맺기를 힘써 굳은 맹약을 체결한다면 고립되는 우환은 면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환재집』 권7, 자문(咨文), 「미국병선자요자(美國兵船滋擾咨)」]. 박규수가 바로 제너럴 셔먼 호를 침몰시킨 장본인임을 감안한다면 그의 이러한 주장은 매우 진보적인 의견 표명이었다.

비슷한 시기 박규수는 강관(講官)으로서 고종의 진강(進講)에 나와 맹자를 강의하는 자리에서 "신이 일찍이 중국인들이 말하는 바를 들으니, 저 오랑캐들 가운데 매양 중국의 경적(經籍)을 많이 사들여 자기 나라로 싣고 가는 자들이 계속 있는데 그들 오랑캐의 말로 번역해서 읽는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와 같이 하여 마지않는다면 저들의 허다한 사람들 가운데 마침내 하루아침에 크게 깨닫는 자가 있어 그들의 설이 사망(邪妄)됨을 자각하고 중국 성인의 가르침에 다 귀의하게 될 것입니다."(『승정원일기』, 1870. 3. 7)라고 발언하여 고종의 동의를 얻어냈다. 진강을 하는 자리였기에 성리학적 종법질서(宗法秩序)가 전제되기는 했지만 서양을 소통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적극적 외교론을 왕과 정부에 공식 제안한 것이다. 특히 이 발언이 나왔던 시기는 제너럴 셔먼 호 사건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근대적 외교관계 수립 여부를 놓고 격심한 논쟁이 벌어지던 때였다. 실제로 박규수는 이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당시 조선 정부 안에서 심각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외국과의 갈등 및 수교 문제가 심각해지자 고종은 1874년 4월 30일 신미양요 이후 연행사로 봉직한 민치상(閔致庠) 등을 불러 청일강화조약, 청 황제의 친정 등을 자세히 질문했다. 그리고 같은 날 박규수를 차기 연행사절 정사로 파견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박규수는 연행을 마치고 귀국해 고종을 소견(召見)하여 당시 세계 정세가 난세인 것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양 국가의 기술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올린다(『일성록』, 1872. 4. 30, 12. 26). 이처럼 박규수는 고종 친정 전후 개화 외교의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박규수의 학문적 성향을 알 수 있는 보다 중요한 통로는 그의 지인들의 증언이다. 고종 대 가장 대표적인 개명 관료이자 박규수의 문인 중 하나였던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은 "[박규수] 선생의 사상은 크게는 체국경야(體國經野)의

제(制)로부터 작게는 금석(金石), 고고(考古), 의기(儀器), 잡복(雜服) 등의 일에 이르기까지 정밀하면서도 실사구시의 자세로 연구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라고 회고한 바 있다(강상규, 2012: 120). 익히 알려진 것처럼 박규수는 오경석(吳慶錫, 1831~1879), 유대치(劉大致)와 함께 개화파의 3대 비조(鼻祖)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영효의 회고에 따르면 박규수의 집 사랑방에서 김옥균(金玉均, 1851~1894), 홍영식(洪英植, 1855~1884), 서광범(徐光範, 1859~1897) 등 고종대 개화 관료들이 양성되었다고 한다. 박규수는 이유원이 영의정이었을 때 우의정으로 있다가 이유원과 불합(不合)하여 사직하고 자기 집에서 영준(英俊)한 청년들을 모아놓고 조부의 연암문집(燕巖文集)을 강의하고 중화(中華) 사신(使臣)들이 듣고 오는 새로운 사상을 고취하기도 했다[『동광(東光)』, 「박영효씨를 만난 이야기」, 1931. 3]. 박규수는 만년에 김옥균 등의 앞에서 지구본을 돌려보면서 "오늘에 중국이 어디 있느냐. 저리 돌리면 미국이 중국이 되고 이리 돌리면 조선이 중국으로 되어 어느 나라든지 중앙에 오도록 돌리면 되는데 금일 중국이 어디 따로 있는가"라고 했다고 한다(신채호, 1975: 384). 이처럼 박규수는 일본 및 서구와 교류할 것을 주장할 정도로 다원적 · 현실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이를 그의 문인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실학과 개화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김영호, 1978: 5). 그의 활동은 주로 외교적인 분야에 국한되었으나 그를 통해 실학의 학문적 성과가 고종과 개화파를 포함한 고종 대 정치세력들에게 전달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박규수를 중심으로 전래된 북학파 실학사상이 고종 대 교육정책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고종이나 개화파들이 그와 직접 교육문제를 논의한 기록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고종 친정 이후 발표된 교육 관련 주요 법령이나 언술을 통해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박규수 사후 6년 뒤인 1882년 12월 28일, 고종은 윤음(綸音) 하나를 발표한다. 바로 유명한 '교육에 관한 윤음'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팔도(八道)와 사도(四都) 백성들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예로부터 치화(治化)를 갱신(更新)하려면 먼저 선입관을 깨버려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문벌을 세습하는 유풍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귀족들은 지서(支庶)가 수없이 뻗어나가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기를 밑천이 없고, 천민(賤民)은 문벌이 한미하다는 이유로 먼 옛날부터 억눌려 살아왔다. 번성하게 하고픈 마음은 비록 간절하였지만 도와서 계도하는 것

이 어려워 나는 몹시 안타깝다. 지금 통상(通商)과 교섭(交涉)을 하고 있는 이때에 관리나 천한 백성의 집을 막론하고 다 크게 재화(財貨)를 교역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치부(致富)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농(農)·공(工)·상고(商賈)의 자식도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여 다같이 진학하게 한다. 오직 재학(才學)이 어떠한가만을 보아야 할 것이요, 출신의 귀천(貴賤)은 따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헛되이 작록(爵祿)만 축내고 나라에 보탬이 없는 자들은 더욱 시세의 요구에 따라 분발하고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음으로써 온 도가 똑같이 풍화(風化)되는 정사를 이룩할 것이며, 착한 자를 드러내고 악한 자를 물리치는 권도(權道)에 맞게 하라. 이 내용을 팔도와 사도에 함께 유시하는 바다." 하였다(『고종실록』, 1882. 12. 28).

요약하면 신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통상을 확대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하겠다는 논리다. 이는 박지원을 비롯한 북학파 실학자들의 교육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 대원군 세력이 와해되고 삼군부가 폐지되었으며, 대신 통리군국사무아문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을 중심으로 고종이 독자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하던 때였다. 고종은 새로운 교육제도를 포함한 근대적 개혁정책을 뒷받침하는 논리로서 북학파의 실학사상을 제시하여 관민을 설득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개화파 중 대표적 인물로서 갑오개혁 이후 조선 정계에 복귀했던 박영효가 망명 시절 고종에게 보낸 '개화를 위한 건백서'[2]에 교육 관련 부분이 있어, 박규수 문인들의 교육론을 확인할 수 있다. 박영효는 이 건백서에서 『대학(大學)』의 구절을 인용하여 덕을 밝혀(明德) 백성을 새롭게 해야 할(新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 통치를 위해서는 학술과 교육, 즉 격물치지(格物致知)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대학』에 주자(朱子)가 주석으로 붙인 "왕궁과 수도 및 민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람이 8살이 되면 왕공에서 서인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小學)에 들어간다…"는 잘 알려진 구절을 인용하여 신분과 상관없이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는 후술할 『한성

2 건백서는 『일본외교문서』 제21권(명치 21년/1888)에 사항(事項) 10, 조선국관계잡건(朝鮮國關係雜件), 문서번호 106으로 기재되어 있다. 건백서 번역은 김갑천 역, 박영효의 건백서-내정개혁에 대한 1888년의 상소문, 『한국정치연구』(서울대) 제2호, 1990, p. 245~292.

주보(漢城週報)』의 교육론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역시 북학파 실학자들이 교육 공공성을 강조한 논리를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영효가 구체적으로 제안한 교육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① 소학교와 중학교를 세워 남녀 여섯 살 이상의 백성은 모두 학교에 나아가 수업을 받게 할 것.
② 성인 학교를 세우고 한문이나 언문으로 정치, 재정, 국내외 법률, 역사, 지리, 산술(算術), 이화학(理化學) 등의 책을 번역하여 관리 중에서 젊고 의기가 왕성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거나 팔도에서 장성한 선비들을 뽑아 교육시킨 뒤 과거를 통해 문관으로 발탁할 것.
③ 국사, 국어, 국문을 먼저 가르칠 것.
④ 외국인을 고용하여 법률, 재정, 정치, 의술, 궁리(窮理)와 여러 가지 재주, 기술을 가르칠 것.
⑤ 서적을 넉넉히 생산할 것.
⑥ 박물관을 설립하여 인민의 견식을 넓힐 것.
⑦ 인민 중 혹 지식인들로 하여금 때때로 군중을 모아 세상일을 연설하여 그들의 고루함을 열게 할 것.
⑧ 동서양 여러 나라의 어학을 융성하게 하여 교류 · 친선에 편하게 할 것.
⑨ 인민이 신문국(新聞局)을 설치하여 신문을 인쇄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
⑩ 종교는 백성들의 자유의사에 맡기되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당(敎堂)의 건축은 허가하지 말 것.

상기의 각론들 또한 모든 국민에게 교육을 시행할 것과 현실적인 산업과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칠 것을 주장한 북학파 실학자들의 교육론의 맥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갑신정변 이후 고종과 박영효의 정치적 관계가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영효의 주장은 고종 집권기 교육정책 및 사회정책과 거의 모순되지 않는다.[3] 이는 이들이 갖고 있었던 교육

3 한편 박영효의 교육론이 고종을 중심으로 한 조선 정부의 교육정책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

관과 그 뿌리가 되는 개화사상이 박규수라는 동일한 인물에 의해 전승되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제2절 근대적 교육개혁론의 수용

1) 개항 직후 일본을 통한 근대교육 수용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일본은 전통적인 막부(幕府) 정권이 붕괴되고 죠슈 번(長州藩), 사쓰마 번(薩摩藩)을 중심으로 한 웅번(雄藩)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이후 메이지 정부는 근대적인 내정 개혁을 시도하는 한편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열강들과 대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개혁 대상으로 우선 중화사대질서의 탈피를 제안했다. 중국을 중화(中華)로 존숭하는 가운데 그 조공국(朝貢國)으로서 각국의 국제적 지위를 확인하고 상호 교류하는 사대질서는 대등한 독립국들 사이의 국제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서구 중심의 '만국공법적(萬國公法的)' 외교 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4]

분은 교육을 통해 향상된 민지(民智)가 민권(民權)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박영효는 군주가 전권(專權)을 행사하면 백성이 우둔해지고 유식한 백성들은 압제와 폭정에 저항하기 마련이므로, 군권(君權)을 적절히 감소하고 인민이 응당한 자유를 행사하게 하면 각각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고 문명을 진보케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민국(民國)이 태안(泰安)하고 종묘사직과 군주의 자리도 영원히 보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를 비롯한 일본 개화사상가들의 민권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민권을 신장하고 군주권을 견제하는 것은 필수 요소다. 그러나 당시 박영효를 비롯한 갑신개화파는 쿠데타에 실패하고 일본에 망명 중인 상황이었으며, 이들의 개화론이 일본 정부가 조선 정부를 압박하는 논리와 무관하지 않아 일본 정부 또한 이를 이용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2장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4 '만국공법'은 미국의 법학자 헨리 휘튼(Henry Wheaton)의 국제법 저서 『국제법 원리, 국제법학사 개요 첨부(*Elements of Intenational Law with a Sketch of the History of the Science*)』를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마틴(William A. P. Martin, 1827~1916)이 1864년 청국 동문관(同文館)에서 한역(漢譯)하여 출판한 책이다. 한말 지식인 사회에 전해져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만국공법'은 중화사대질서를 대신하는 서구적 국제 질서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근세사와 만국공법』(김세민, 2002), 『만국공법』(Henry Wheaton,

사대질서 속에서 조선과 일본은 전통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대마도를 본거지로 하는 소[宗] 가문이 중심이 되어 조선에 왜관(倭館)으로 알려진 일본의 외교공관 겸 무역상관을 설치하고 일본인들을 상주시켰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를 조선에 전달할 때에는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를 파견했다. 반면 조선은 일본에 인원을 상주시키지 않았고 다만 비정기적으로 일본에 통신사(通信司)를 파견했을 뿐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1811년까지 총 12번의 통신사가 파견되었는데 주로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요청에 의해서였다. 일본국왕사의 조선 방문이 조선에서 크게 이목을 끌지 못했던 것과 달리 조선통신사의 일본 방문은 막부뿐만 아니라 일본 민간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 국제 이벤트였으며, 막부는 이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소모하여 일본 지식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메이지 유신 이전 조선과 일본은 대등한 관계였으며 일본국왕사 및 통신사가 교환하는 외교문서 또한 대등한 지위로 상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에 상주 공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조선은 그러한 시스템을 굳이 갖추지 않았다. 또한 일본국왕사에 비해 조선통신사의 외교적 위상이 훨씬 높았던 것도 상기한 바와 같다. 이처럼 조·일 외교관계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분히 조선이 더 우월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조선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조선-일본 사이의 중개무역권을 유지하려 했던 대마도의 소 가문이나, 불안정했던 일본 여론을 안정시키고 정권의 역량을 국내외에 과시하려 했던 도쿠가와 막부의 '필요'가 반영된 외교적 현상이었다고 봐야 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 1868년 일본은 왕정복고를 알리는 사절단을 조선에 파견했으며, 그들이 지참한 문서에는 '황제(皇帝)', '황상(皇上)' 등 사대조공체제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인장(印章)도 본래 조선의 것이 아닌 일본 정부가 새로 만든 것을 사용했다. 이는 이전까지 사대조공질서 속에서 조선과 맺었던 외교관계를 부정하고 새로운 근대적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막부 말기 일본의 대표적인 근대 사상가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이래 메이지 정치가들에게 공유되어 왔던 정한론(征韓論)

1981), 『만국공법』(김용구, 2008)을 참고할 만하다.

을 추진하기 위해 조선과 중국 사이의 전통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한편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조처이기도 했다.

이 서계 문제는 조선 정부 내에서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양반 관료층 다수는 일본의 새로운 서계를 절대로 접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실제로 양국 사이에 합의되어 있던 외교적인 관례와 체제가 한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했다. 다만 박규수 등 북학파의 영향을 받은 실용주의적 관료들은 일본 서계의 부적절성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외교적 갈등을 이어가는 것이 조선에 유리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척화정책으로 조야(朝野)의 지지를 얻고 있었던 대원군이 집권한 시절에는 이들의 주장은 소수의견으로 사장되고 말았으나, 고종이 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는 달리 적극적인 개화정책을 내세우며 친정을 시작하자 서계 문제를 포함한 조선의 대일 외교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조선과 일본의 조약 체결을 유도하여, 조선을 서구 열강의 침략을 견제할 수 있는 중립 지역으로 만들고자 했던 중국 북양대신(北洋大臣) 리훙장의 권고도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876년 〈병자수호조규(丙子修好條規)〉, 즉 강화도조약이 체결된다.

강화도조약은 전문(前文)과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제2조는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京城)에 가서 직접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그 사신(使臣)이 주재하는 기간은 그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조선국 정부도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국 동경(東京)에 가서 직접 외무경(外務卿)을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당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 역시 그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라고 결정되었다. 일본은 제2조에 근거해 새로운 조 · 일 관계를 구체화하는 일련의 조약들을 협상하기 위해 조선에 수차 사신을 파견했다. 그리고 양국 외교관계를 '동등한 예의'로써 진행하기 위해, 계획된 절차에 따라 1811년 마지막 조선통신사 이후 단절된 조선의 대일(對日) 사신 파견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기존의 통신사 대신 수신사(修信使)라는 새로운 외교사절이 파견되었다.

1876년 파견된 제1차 수신사에는 예문관(藝文館) 응교(應敎)였던 김기수(金綺秀)가 임명되었다[『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76. 2. 22]. 일본 정부는 6개월 내에 사신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으나 조선 정부는 즉각 이에 응대하여 수신사를 파견했다. 이는 조선 정부가 대일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했음을 보여준다. 수신사 일행



[그림 1-1-2] 일본 요코하마에서 기록된 김기수의 수신사 행렬. 1876년 *Illustrated Londen News* 게재

76명은 4월 4일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과 시모노세키(下關),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등을 거쳐 도쿄(東京)에 도착했다. 일본 정부는 김기수를 열렬히 환대하여 예정에도 없던 일황(日皇)과의 회담도 주선했으며, 최고 직위인 태정대신(太政大臣)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를 포함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등 일본 정계 요인들의 초대를 받았다. 또 원로원(元老院), 의사당(議事堂), 육군성(陸軍省), 해군성(海軍省), 내무성(內務省), 공부성(工部省), 문부성(文部省), 대장성(大藏省), 경시청(警視廳), 개척사(開拓使) 및 각 군사시설과 훈련 상황, 박물관, 소방기관 등 일본이 추진하고 있던 근대화 개혁의 현장을 견학했다. 이처럼 외교 의례상 유례가 없는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은 물론 김기수를 포섭해 조선 정부를 설득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김기수가 파견되었을 당시 고종은 김기수가 사폐(辭陛)할 때 "보고할 만한 일들은 모름지기 빠짐없이 하나하나 써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다(『고종실록』, 1876. 4. 4). 아직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다시 성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조선 국내의 반발도 심한 상황에서 일본의 근대화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찰은 무리였다. 게다가 수신사인 김기수는 일본의 근대적 문물 시찰 권유를 대부분 거

부했을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시찰에 참가했던 상황에서도 체면이 깎일 것을 염려해 질문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보수적인 인물이었다. 때문에 1차 수신사의 시찰 활동은 주로 일본의 새로운 군비 확충 정황에 집중되었으며[『수신사일기(修信使日記)』 권1: 29~130] 그 나마도 매우 피상적으로 시행되었다. 다만 김기수가 수신사행에 관해 작성한 기록인 『일동기유(日東記游)』, 『수신사일기』는 조선 정부가 일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2차 수신사는 1880년 파견되었다. 근대 문물의 수용이라는 점에서는 큰 성과가 없었던 1차 수신사와는 달리, 2차 수신사의 파견은 여러모로 다른 정황 속에서 추진되었다. 1879년 청의 리훙장은 서양 여러 나라와 수교하여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할 것을 조선 정부에 권고했으며(김정기, 1993: 34), 고종의 개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 안에서 소수에 불과했던 개화론은 큰 동력을 얻게 되었다. 그 결과 청에서 근대 무기 제조 기술을 수입하려는 정책이 기획되어 1881년 영선사(領選使) 파견으로 결실을 보았으며, 1880년에는 2차 수신사 파견이 추진되었다. 이처럼 2차 수신사는 1차 수신사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일 교섭과 근대 문물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2차 수신사로 임명된 김홍집(金弘集)은 1차 수신사였던 김기수와는 달리 북학파의 후예이자 개화파의 시조인 박규수의 제자로서, 박규수와 함께 조선 정부 내에서 고종의 개화정책을 지지했던 소수 중 하나였다. 그는 수신사로서 일본과의 관세 협정, 미곡 수출 제한, 인천 개항 등 외교 현안을 가지고 파견되었으나, 이에 대한 교섭 외에 일본의 근대적 발전상을 시찰하는 한편 주일청국공사 허루장(何如璋), 참찬관 황쭌셴(黃遵憲) 등과 수차례 면담을 갖고 조선의 외교정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황쭌셴이 조선의 외교정책으로 '친중(親中)·결일(結日)·연미(連美)'를 제안한 『조선책략(朝鮮策略)』을 갖고 돌아왔다. 이 『조선책략』은 사대의 대상이었던 청국의 관료가 정식으로 조선에 개국정책을 제안한 문건이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어떤 개국론보다도 조선의 조야(朝野)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고종은 이 문건을 계기로 정국을 주도하여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창설, 인천 개항과 일본공사의 서울 상주, 〈조미조약(朝美條約)〉 체결 등 보다 적극적인 개화정책을 강행했다.

위와 같이 1, 2차 수신사 파견이 조선의 외교정책을 쇄국에서 개국으로 전환시키는 데에는 큰 기여를 했으나, 교육정책의 수용이라는 점에서는 별다른 기여를

못한 것이 사실이다. 조선 정부가 본격적으로 일본의 교육제도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881년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 속칭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파견부터였다. 수신사의 주 업무가 조·일 간 외교 교섭이었고 문물 시찰은 부수적인 역할이었다면, 조사시찰단은 처음부터 일본의 근대화 개혁의 경과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고종은 1881년 1월 11일 박정양(朴定陽), 조준영(趙準永), 엄세영(嚴世永), 강문형(姜文馨), 심상학(沈相學), 홍영식(洪英植), 어윤중(魚允中)을 동래암행어사로 임명했다. 1월에 임명된 이들은 순서대로 일본의 내무성, 문부성, 사법성(司法省), 공부성, 외무성, 육군성, 대장성의 사무를 시찰하는 임무를 받았으며, 특히 어윤중과 홍영식에게는 미국과의 수교와 관련된 외교 사무를 조사하는 임무도 추가되었다. 또 어윤중은 유길준(俞吉濬)을 비롯한 자신의 수행원들을 일본에 유학시키는 일도 맡고 있었다. 2월 2일에는 이헌영(李鑢永), 민종묵(閔種默), 조병직(趙秉稷), 이원회(李元會)가 추가로 동래암행어사로 임명되었다. 앞의 세 사람은 세관 사무를, 이원회는 육군 조련 상황을 별도로 조사하여 보고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들이 일본 시찰의 밀명(密命)을 받고 동래암행어사라는 형태로 파견된 것은 그만큼 당시 조정 안팎에서 개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이들 '조사(朝士)'들은 대부분 종실이나 명문가 소속으로 과거급제 후 10년 가까이 관직을 경험한 중견 관료들이었다. 특히 군직이었던 이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언관(言官)을 경험할 정도로 학식과 문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개화정책을 지지했으며, 대원군을 배제하고 친정을 추진한 이후 고종이 중용한 인물들이었다. 일본공사 하나부사 요시타다(花房義質)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박정양, 어윤중, 조준영, 홍영식, 심상학, 엄세영, 강문형 등을 모두 '민씨당'의 일원으로 파악하고 있었다(허동현, 1995: 20~26). 당시 일본 정부가 대원군과 반대 입장에서 개화를 지지하며 고종이 중용한 인물들을 일괄적으로 '민씨당'으로 분류한 것을 감안할 때[5] 이들의 정치적 성

5 예를 들어 위 인물 중 조준영은 구한말 여흥 민씨 못지않게 세도를 누린 풍양 조씨의 일원이었다. 홍영식은 여흥 민씨들 중 개화에 호의적이었던 민영익, 민영준(閔泳駿) 등의 인물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개화파였으며, 조사시찰단 복무가 끝나고 3년 뒤인 18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켜 여흥 민씨의 중심인물인 민영익을 암살하려 했다. 이러한 인물들을 모두 '민씨당'으로 분류한 것은 조선 후기 정치 구도를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세도가문 중심으로 파악했던 일본 측의 인식 때문이다.

향을 파악할 수 있다.

조사시찰단은 3월 25일 동래부에 집결해 4월 10일 출항했다. 4월 11일 대마도에 도착한 뒤 일본 지방관들의 영접을 받으며 나가사키(長崎), 오사카, 교토, 고베(神戶), 요코하마(橫濱) 등지를 시찰한 다음 4월 28일 도쿄에 도착했다. 조사시찰단은 스스로 공식 사절이 아님을 누차 밝혔으나 일본 정부는 각 기관과 세관,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을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다. 이들의 시찰 활동은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상술한 것처럼 조사시찰단원 중 교육 부분의 시찰을 담당한 사람은 조준영이었다. 그는 이봉식(李鳳植), 서상직(徐相直) 등 두 명의 수행원과 함께 일본의 교육제도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일본문부성시찰기(日本文部省視察記)』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규 7765). 이 문서에서 조준영은 문부성의 연혁·직제·사무장정·교육령 등을 기록하고, 대학, 전문과, 의학부,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등 각급 학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연혁, 규칙, 편제, 학과과정, 각 학년별 교과세목, 부속학교 규칙, 각 학과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어 체조전습소(體操傳習所), 도서관, 교육박물관, 학사공원(學士公院) 등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조선이 최초로 접한 근대적인 교육제도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건은 법제, 규칙, 자료들에 대한 기계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으며, 조준영 자신의 논평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박정양, 이헌영, 어윤중 등 다른 시찰단원들이 다양한 시설을 직접 시찰하고 관계(官界) 내외의 인물들과 면담한 기록들을 남긴 것에 비하면 조준영의 기록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는 조사시찰단원의 성향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양, 홍영식, 어윤중 등 소장 관료로서 개화사상에 심취한 인물들의 보고서와 조준영, 심상학, 엄세영 등 이미 관료로서 경력을 쌓았으나 개화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인물들의 보고서 사이에는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조준영은 시찰 임무를 완료하고 귀국한 뒤 통리기무아문사(統理機務衙門事), 전선사당상경리사(典選司堂上經理事), 협판군국사무(協辦軍國事務),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 등 개화 관련 기구들의 요직을 담당하지만 핵심 이무(吏務)를 전담했을 뿐 개화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조준영은 향후 교육 분야의 개화 실무를 담당할 요원으로서 파견되었다기보다는 명문가의 일원

이자 중견 관료로서 시찰단의 리더 격으로 합류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한 당시 일본의 근대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던 조선 관료들 중 다수는 주로 군사와 산업 분야에 주목했을 뿐, 학문과 교육 분야에서는 조선이 훨씬 우월하다고 인식하여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또한 교육 분야의 시찰이 소략했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조사시찰단 파견 당시 일본의 교육개혁은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였다. 조사시찰단이 목격한 일본의 교육제도는 프랑스의 학구제(學區制), 독일의 독학제(督學制), 미국의 교육자치제(教育自治制) 등 구미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결과물로, 일본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메이지 일본이 추구하던 서구화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국수주의적 사상이 교육 분야에서 충돌하면서 일본의 교육정책은 점차 황도주의(皇道主義)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갔다(이규수, 2013: 3장). 이렇듯 일본 교육정책의 방향이 혼선을 빚는 상황에서 조사시찰단의 시찰 내용이 조선의 교육개혁을 촉진하기란 어려운 노릇이었다.

2) 보빙사 파견과 조선 교육정책의 변화

1882년 조선은 미국과 〈조미조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조선은 공식적으로 척사쇄국(斥邪鎖國)을 지양하고 개국정책을 공식화했다. 미국 의회는 1883년 1월 9일 조미조약을 비준했고, 3월 9일 루셔스 푸트(Lucius H. Foote)가 초대 주조선미국특명전권공사(駐朝鮮美國特命全權公使)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조미조약〉 중 제2조 "본 조약을 입약하고 통상화호(通商和好)한 뒤에 양 체약국(締約國)은 각각 외교 대표를 상대국 수도에 주재할 수 있다. 이는 자국의 편의에 따른다."라는 규정에 따라 초대 주한미국공사 푸트는 1883년 5월 19일 서울에 부임하여 정동(貞洞)에 주조선미국공사관을 개설했다. 조선 또한 미국에 전권공사를 파견해야 하지만 재정적 부담 때문에 상주 공사관을 개설하기 어려웠다. 이에 푸트는 조선 정부에 우선 사절단을 먼저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 7월 9일 푸트의 건의를 수용하여 보빙사(報聘使)를 미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조선의 국내외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다. 1882년 6월 발발한 임오군란은 고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개화정책의 정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드러냈다. 또한, 청은 임오군란의 진압 과정에 전격적으로 개입하여, 전통적인 사대조공질서를 근대적인 속국·보호국의 관계로 변화시키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사회에서 공인받고자 했다. 이에 미국은 조미조약을 대등한 두 독립국 간의 조약으로 체결하여, 독립국으로서 조선의 지위를 확인하고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 주장을 봉쇄하고자 했다. 조선의 보빙사 파견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외교정책에 부응해 조선의 독립 외교를 확립하고자 한 시도였다.

또한, 보빙사 파견을 통해 조선 정부는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적 자원을 미국에서 확보할 계기를 얻었다. 청이 임오군란을 진압하면서 대원군을 톈진(天津)으로 압송하고 조선의 내정에 간섭한 것은 명백히 제국주의적 침탈이었으나, 그 결과 개화를 반대하던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일소된 가운데 전격적으로 개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견된 보빙사는 미국에서 서구적 근대의 실상을 확인하고 향후 개화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과 접촉할 기회가 되었다. 실제로 푸트는 보빙사 파견 직전 본국에 "그들은(보빙사절) 특별히 우리의 관세, 우편제도, 공교육제도를 배우고 싶어 하고 우리의 군수공장을 시찰하고자 합니다."라고 보고했으며, 특별히 조선 정부가 외교, 군사, 교육 분야에서 일할 미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그림 1-1-3] 보빙사 일행의 기념사진. 앞줄 왼쪽 두 번째가 보빙사 전권대신 민영익, 그 왼쪽이 부대신 홍영식이다.

국인 고문관을 고용할 생각이 있음을 확인했다(손정숙, 2007: 255).

1883년 7월 16일 조선 정부는 보빙사절단을 임명했다. 전권대신(全權大臣)에는 민영익(閔泳翊), 부대신에 홍영식(洪英植), 종사관에 서광범(徐光範)이 임명되었으며, 수행원으로 유길준, 최경석(崔景錫), 변수(邊燧), 고영철(高永喆), 현흥택(玄興澤) 등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안내 겸 통역을 전담할 요원으로 주일미국공사 존 빙햄(John A. Bingham)의 추천에 따라 퍼시벌 로웰(Percival Rowell)이 임명되었다(김원모, 1999: 21~22). 로웰은 일본인 통역관 미야오카 쓰네지로(宮岡恒次郎)를 따로 고용하여, 한국어-일본어-영어의 2단계 통역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보빙사 일행은 미국 군함 편으로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 도쿄에서 1개월간 체재한 뒤 8월 15일 출항하여 9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이후 대륙횡단철도로 약 1주일 뒤 시카고를 거쳐 9월 13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미국 정부는 보빙사단의 현지 수행원으로 해군 대위 테오도르 메이슨(Theodore B. Mason)과 소위 조지 포크(George C. Foulk)를 배정했다. 이 중 포크는 중국어, 일본어를 독학으로 체득한 인물로 당시 워싱턴의 주요 관리 중 일본어가 가능한 유일한 인물이었다. 실제로 보빙사단의 통역 겸 안내역으로 로웰보다 포크가 더 큰 역할을 했으며 보빙사들의 미국 내 활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9월 18일 보빙사단은 미국 대통령 체스터 아서(Chester A. Arthur)를 접견했다.[6] 이 자리에서 민영익은 미국 대통령에게 '대조선국국서(大朝鮮國國書)'를 전달했는데, 이 국서는 최초로 '대조선국', '대군주(大君主)'라는 호칭을 사용한 조선의 문서였다. 또한 조미조약에는 청국의 광서(光緖) 연호와 조선개국연호(朝鮮開國年號)를 함께 기재했는데 이 국서에는 개국연호만을 사용했다. 게다가 포크의 주선을 통해 조선국 국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미국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조선이 중국과는 다른 고유한 문화를 가진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이로써 보빙사단의 외교적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서 전달 이전 보빙사단은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상공회의소, 유니온 철강공장 등을 시찰했다. 국서 전달 이후에는 보스턴에서 외국박람회(Boston Foreign

6 이때 사절단 전원이 사모관대(紗帽冠帶)로 정장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큰 절을 한 모습은 미국 신문에 삽화로 보도되어 지금까지 남아 있다.

Exhibition), 월컷(J. W. Walcott) 시범농장, 방직공장, 공립 학교 등을 시찰했고, 다시 뉴욕에서 상공인들과 회담하는 한편 뉴욕 병원, 웨스턴유니온 전신회사, 보험회사, 신문사(이브닝포스트, 뉴욕헤럴드), 우체국, 티파니 상점,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그리고 워싱턴으로 돌아와 국무부, 육군부, 해군부, 내무부 교육국, 농무부 등 주요 정부기구들을 시찰한 것이 보빙사단의 주요 일정이었다(손정숙, 2007: 261).

보빙사단 시찰 활동의 특징은, 그들이 시찰한 결과가 조선 정부의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대신 홍영식은 미국 뉴욕에서 우체국을 견학하고 뉴욕 상공인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산업 진흥을 위한 우편제도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그리고 귀국 후에 1884년 홍영식의 주도로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우편기구인 우정국이 창설되었다. 또한 보빙사단은 보스턴 월컷 시범농장의 최신 농기구와 농업시설 등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워싱턴에서 농무부를 방문했을 때에도 미국 영농기술 도입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여 각종 농작물 종자 및 영농 책자를 얻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보빙사단의 귀국 후 그 수행원 중 한 명이었던 최경석이 농무목축농장(農務牧畜農場)을 개설하면서 구체화되었으며,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에서 재배 가능한 모든 농작물의 종자를 제공했다.

한편, 웨스턴유니언 전신회사를 방문했을 때 보빙사의 일원이었던 유길준은 전기 조명에 대해 감탄하면서 "귀국하면 한국에서 전기등부터 개설해야겠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보빙사가 귀국한 후 얼마 안 되어 미국 에디슨 전기회사는 창덕궁의 전등 가설권을 획득했다. 또한 홍영식은 미국의 교육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교육제도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얻으면서 한국에서 근대식 학교를 이끌어갈 교사의 초빙 의사를 밝히고 미국인 교사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귀국 후 고종에게 근대식 학교인 육영공원(育英公院) 설립을 제안했으며, 1886년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를 포함한 세 명의 미국인 교사가 내한하여 육영공원이 개교되었다(손정숙, 2007: 270~272).

이러한 정책적 결실은 1881년 파견된 조사시찰단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조사시찰단의 경우 시찰 활동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명망가'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보빙사 전권대신인 민영익은 명성황후의 측근이자 고종의 총신이었으며 임오군란 이후 청과도 긴밀히 제휴하고 있던 조선 조정 내 실권자였다. 한편 박규수의 제자인 부대신 홍영식과 종사관 서광범은 개화파 중에서도 가장 급진

적인 인물들이었으며, 이들의 유연한 식견과 추진력은 푸트, 포크 등 미국 관료들도 인정한 것이었다. 이처럼 보빙사는 조사시찰단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원 구성이 가능했던 것은 임오군란으로 대원군파가 일소되어 정치적 장애물이 없어졌기 때문이며, 또한 조미조약을 전후한 조 · 미 교섭의 결과 조선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요컨대 보빙사는 조미조약의 조항에 따른 국서 교환을 위한 사행(使行)으로서, 조선이 청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다. 이는 임오군란 이후 청이 조선의 내정을 장악한 가운데,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 조선 정부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외교적 노력의 결과였다. 또한 보빙사행은 본격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하려던 조선 정부가 미국을 통해 개화의 요체를 학습하고 기술과 인재를 수용하는 통로라는 의의를 지녔다. 그 학습 결과는 신속하게 조선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보빙사단의 활동이 육영공원의 설립을 이끌어낸 직접적인 동력이었다. 이후 조선 정부의 지원 아래 배재학당(1885), 이화학당(1886), 정동여학당(1886) 등 근대적인 학교들이 연이어 설립된 것 또한 보빙사행 이후로 형성된 조선과 미국 사이의 교육 관계의 영향이었다.

그러나 보빙사절들은 이후 조선 근대화의 주축으로서 계속 활약하지 못하고 분열의 길을 걷게 된다. 대신이었던 민영익은 미국 문물에 큰 관심이 있었음에도 임오군란 이후 조선의 내정에 깊이 개입하던 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때문에 보빙사행 중에도 청의 종주권을 의식하여 미국 정부와의 제휴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 반면 홍영식, 서광범은 청의 영향에서 독립하기 위해 미국의 문물과 인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하면서 민영익과 자주 충돌했다. 그 결과 민영익은 미국 정부의 초청에 응해 조선으로 귀국하기 전에 유럽을 여행했지만 홍영식은 유럽 여행에 참여하지 않고 먼저 귀국길에 올랐다. 그리고 귀국 도중 일본에 있던 김옥균을 만나, 친청파를 축출하고 급진개화파가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를 모의하게 된다. 이러한 보빙사절 내의 갈등은 곧 청의 강압으로 촉발된 개화세력 내 전체의 분열 양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갑신정변 실패 이후 조선의 주체적 근대화를 가로막는 심각한 내부적 장애물로 작용했다.

3) 『한성순보』, 『한성주보』의 교육개혁론

1881년 조사시찰단 파견 이후 조선의 개화파들은 일본을 개화사상 도입을 위한 중요한 통로로 인식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조사시찰단의 수행원이었던 유길준은 귀국하지 않고 일본의 개화지식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설립한 게이오의숙(慶應義塾, 지금의 게이오대학 전신)에 유학했다. 조사시찰단의 일원은 아니었으나 그 발족에 지대한 공헌을 한 김옥균은 1881년 12월 스스로 일본으로 건너가 임오군란 직전까지 체류하면서 일본의 정치가, 지식인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이들 개화파 집단은 개화사상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전파하기 위한 매체로서 조선에도 근대적인 신문을 간행할 것을 계획했다. 그 결실이 바로 1883년 간행된 『한성순보』였다.

『한성순보』의 발간을 주도한 사람은 박영효다. 그는 1882년 8월 제3차 수신사 겸 전권대신으로 임명되어 도일(渡日)했다. 이는 같은 해 6월 임오군란이 발발한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과 일본인들이 공격당한 것을 계기로 7월 17일 체결된 〈조일강화조약(朝日講和條約)〉의 후속조치 때문에 파견된 것이다. 이 조약에 따르면 조선 정부는 폭도들을 처벌하고 일본 정부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한편 대관(大官)을 직접 보내 일본에 사과해야만 했다. 바로 그 대관으로 박영효가 임명된 것이다.

박영효가 일본에서 수행해야 할 주된 임무는 수신사 겸 전권대신으로서 일본 정부에 사과의 뜻을 표하는 국서를 전달하는 한편 배상금 지불 일정 교섭이었다. 그러나 이때 박영효는 당시 일본에서 주어진 임무 외에 후쿠자와 유키치와 조선에 근대적 신문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주력했다. 조선에서도 신문을 발간하겠다는 박영효의 계획을 후쿠자와는 적극 지지했다. 그 결과 1883년 1월 6일 박영효가 귀국할 때 후쿠자와의 추천으로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를 포함한 문하생 3명이 신문 발간을 돕기 위해 함께 조선으로 향했다.

귀국 후 박영효는 1883년 2월 6일 한성판윤(漢城判尹, 지금의 서울시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 등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신문을 발간하라는 하교(下敎)를 받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한성부 산하에 박문국(博文局)을 설치하고,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유길준을 책임자로 임명하여 신문 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외에 도로를 관장하는 치도국(治道局),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순국(警巡局) 등을 설치하여 한성 내에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한성순보』의 간행이 박영효를 위시한 소위 '급진개화파'들에 의해서만 주도된 것은 아니었다. 임오군란 이후 개화정책의 노선 문제, 대청(對淸) 외교정책 문제 등을 놓고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는 끊임없이 충돌했다. 그리고 1883년 3월 박영효는 온건개화파 및 보수 관료들의 공격을 받고 한성판윤에서 광주유수로 좌천되었다. 유길준도 신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말았다. 대신 김윤식, 민영익 등 온건개화파들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부속기구인 동문학(同文學) 산하에 박문국을 새로 설치하고 1883년 10월 30일 자로 『한성순보』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그 후 1884년 갑신정변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김홍집에 의해 1886년 1월 25일 『한성주보』로 복간되었다. 그리고 약 2년 반 간행된 뒤 재정난으로 정간되었다(이광린, 1999: 60~88).

이처럼 『한성순보』, 『한성주보』는 급진개화파가 기획했으나 발간은 온건개화파들이 시작했다. 그리고 급진개화파가 초빙한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계속 간행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민주권론, 삼권분립제도, 의회제도 등 당시의 기준에서는 급진적인 내용도 다수 소개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성순보』는 특정 정파의 논리에 제약되지 않고 당시 조선이 접할 수 있었던 개화사상을 폭넓게 수용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문성규, 1990: 164).

근대 초기 신문들의 특징은 사실에 대한 보도보다 외국의 문물이나 편집자 논설의 비중이 훨씬 더 컸다는 점이다. 『한성순보』, 『한성주보』 또한 한국 최초의 근대 신문으로서 외국 문물 소개와 개화론 논증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교육에 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당시 개화파들이 접했던 교육개혁론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는 외국 문물을 소개하고 개화론을 전파하는 일환으로 근대적 교육개혁에 관한 내용을 종종 다루었다. 관련 기사들은 크게 ① 교육의 목적 및 내용, ② 서구의 교육 실태로 분류할 수 있다. 1884년 2월 7일 자 기사에서, 초기 『한성순보』 편집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교육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 서양 각국에서는 국학(國學)과 의학(義學)을 세워 국내의 남녀노소가 학교에 들어가 글과 역사와 법률을 배워 식견이 발달하고 애국심이 커진다. 그래서 자신이 무

용한 인간이 아님을 알고 자신이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더구나 신문관을 많이 세워서 국정의 시비와 인물의 현명 여부를 품평하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국정이 옳은 것이며 어떤 국정이 잘못된 것인가를 빠짐없이 알게 되며, 어떤 사람이 현명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가를 안다. 그러니 시골의 무지한 사람들과 비교해 말할 수 있겠는가[『한성순보』, 1884. 2. 7, 「각국 근사(各國近事) 민주주의와 각국의 장정(章程) 및 공의당(公議堂)에 대한 역해(譯解)」].

이 기사는 교육의 목적으로 국민의 식견 발달, 권리의식 각성, 애국심 배양 등을 꼽고 있다. 남녀노소를 포함한 국민 전체를 교육하여 민지(民智)를 배양하고, 배양된 민지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며, 이를 국가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연결시키는 '국민국가 프로젝트'는 후쿠자와 유키치를 포함한 메이지 일본 사상가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교육론이었다. 이러한 주장이 개화파 내부의 급진과 온건 세력이 모두 관여했던 『한성순보』를 통해 공유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한국의 개화파들은 각자의 사상적 지향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서구 문물을 피상적으로 접하는 것을 넘어 근대적 국민교육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할 수 있어야만 의미 있는 개화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그동안 사대부들이 유교사상 안에서 독점해 왔던 학문과 교육을 전체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米一升二兩三錢下米一升一兩大豆一升二兩四錢小豆一升二兩 鍮鐵屬熟鐵一斤八兩銅一斤二兩五錢鉛錫一斤八兩五錢 綿子屬搖花一斤八兩 雜穀柴一駄十五兩炭一駄七兩醬一石十三兩 菜子屬菜一斗三十兩菜一斗十兩

私議

論學政 第一

夫治國之道莫先於敎化敎化之道莫先於學學者所以牖民生之心志開民生之耳目使之有知覺知覺明於內則萬事應於外如鑑之照物斯能自彫知衆之辨物蠹自夠故古者王宮國都以及閭巷莫不有學上自天子之元子衆士之適子與凡民之俊秀人生八歲皆入小學十五以上皆入大學焉之以愛親敬長格物窮知之義以是而人倫明於上敎化行於下士皆爲大有之學民皆享仁壽之福矣泰西學以降學政廢而不舉庠序廣而不興爲民者疎於受敎之道爲士者昧於格致之方然而能治其國者歟之有也現查歐洲各國之獨擅富强者亦未必不由乎以敎化爲治國之要也歐洲各國必設學校爲幼三等曰小學校設於閭井之間其敎曰普通皆庄民普通之實也滿其土地廣衍戶口繁阜或一郡而一校萬或二三萬不論貴賤男女齡五歲至十三歲皆令就學非有事故不敢偷惰閒斷各曰學齡四中學校則府縣各設二三處使齡十四以上既通小學之業者就學焉又有農學工學商學師學等諸校各令專究一業以資生利曰大學校設於國都之中有理學法學醫學兵學等諸科而其生徒皆聰明才國有志於治國經世者也凡自政府辦耐充費者謂之官立學校以公共之力滿充者謂之公立學校自人民私設不借政府之力者謂之私立學校皆由掌敎衙門監督事務學校漸增生徒雖遍滿無不挾册童幼戶口不識書男女而其入學遊藝者皆有以知其才分之所固有職分之所當爲而各勉焉以盡其力故使之農桑日盛便之貿易而貿易日振使之製造而製造日精引伸觸長能舉要矣此所以歐洲各國之獨擅富强者也嗚呼我國雖自艱

[그림 1-1-4] 『한성주보』 1886년 1월 25일, 「사의(私議) 논학정(論學政)」 기사. 이런 기사들을 통해 『한성순보』, 『한성주보』는 서구의 교육론과 교육제도를 조선에 소개했다.

이는 『한성주보』 시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성순보』 당시 서양의 교육제도를 소개한 기사가 주로 '각국 근사(各國近事)' 형식으로 소개되었다면, 『한성주보』 때에는 「논학정(論學政)」이라는 제목의 3회 시리즈 기사로 정리되었다. 1886년 1월 25일 그 첫 번째 기사에서 "소학교는 여항(閭巷) 사이에 설립하는데 그 교육의 내용은

보통적인 것이다. 즉 모든 백성들이 보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보통 교육'이란 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성순보』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한 또 다른 주제는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 능력의 전수'다. 『한성순보』는 일찍부터 각종 실업교육에 관심을 보였다. 1883년 12월 9일 자 기사 「태서(泰西)의 농학교(農學校)」에서는 서양의 농업학교를 소개하면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의 농업학교 숫자와 학생 수, 개략적인 운영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1884년 7월 3일 자 기사 「각국 근사 직공학교규칙(職工學校規則)」에서는 서구 각국의 '직공학교' 사례를 소개한 후 일본의 '동경직공학교'에 대해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 방법 등을 설명했다.

그리고 8월 31일 자 기사 「각국 근사 태서각국소학교(泰西各國小學校)」에서는 서양 근대 초등교육의 목적이 질서의 유지와 함께 실용적 지식을 전수하는 데 있음을 밝혔다.

> 오늘날 서양 여러 나라는 위로 수도에서부터 아래로 촌락에 이르기까지 모두 학교를 설치하여 교육을 시키고, 보통학교라 부르는데 바로 중학교, 소학교가 이것이다. 소학교는 전적으로 국내의 어린이를 위해 설치하여, 글을 통하고 이치를 밝혀 공수법(公守法)을 받들도록 하고, 읽고 쓰는 데 능하여 먹고 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평생의 큰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민간의 어린이를 가르치는 데 부지런히 한다. 대개 학제는 일정하여 조금의 문란도 용납하지 않고, 등급을 건너뛰지도 못하게 한다. … 어떤 학교를 막론하고 강의하는 것은 모두 같고 생도들은 모두 매우 숙달되어야 한다(『한성순보』, 1884. 8. 31, 「각국 근사 태서각국소학교」).

어린이들에게 글과 이치를 가르치는 이유는 우선 그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며(公守法), 이는 위에서 말한 공교육을 통한 국민 만들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학제와 등급, 교육 내용 등을 엄격히 통일시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전통적인 유교 교육에서 글을 읽고 쓰는 교육의 목적을 기본적으로 도덕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데 비해, 이 기사는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시킨다. 문해(文解)야말로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며 국가는 이를 모든 국민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 교육관은 『한성주보』 시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지금 유럽의 학제는 학과를 분류하여 각각 한 가지씩 전문적인 것을 성취하게 하고 있다. 소학교의 경우에는 세상의 실용에 필요한 학문으로 유익한 점이 적지 않다. 그 과목이 14개가 있는데 다음에 기록한다. 학문(學文), 습자(習字), 가감승제(加減乘除), 지리초보(地理初步), 세계지략(世界誌略), 생물초보(生物初步), 본국사략(本國史略), 각국사략(各國史略), 비례산(比例算), 이식산(利息算), 급수산(級數算), 인의학초보(仁義學初步), 농공상등학대의(農工商等學大意), 화학대의(畫學大意).

… 일본도 유럽의 제도를 모방하여 직공학교(職工學校)를 설립했는데, 이 학교를 졸업하면 역시 공인(工人)이 되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그 학과는 4년 만에 완성하는 것으로 하는데, 입학한 첫해에 가르치는 과목이 8개이며 다음과 같다. 대수학, 대수용법(對數用法), 기하학(幾何學), 삼각술(三角術), 물리학, 화학(化學), 화학(畫學), 화법(畫法).

그 뒤 3학년은 화학공예(化學工藝)와 기계공예(機械工藝)의 구별이 있는데 학생으로 하여금 그중 하나를 독학하게 한다. 화학공예는 과목이 모두 11개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무기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응용화학, 중학(重學), 화학(畫學), 직공경제학(職工經濟學), 부기학(簿記學), 실지강습(實地講習), 수신학(修身學)

기계공예(器械工藝)는 과목이 모두 13개이며 다음과 같다. 수학, 물질강약론(物質强弱論), 수조공구론(手操工具論), 기교공구론(機巧工具論), 발동기론(發動機論), 중학(重學), 화학(畫學), 제조소용기계론(製造所用器械論), 공장용도(工場用圖), 직공경제론(職工經濟論), 수신학(修身學), 부기학(簿記學), 실지강습(實地講習)

… 유럽의 각급 학교에서는 모두 본국의 문자와 언어로 가르치는데 사물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들의 글자는 26자인데 자모가 서로 연결되어 단어를 만들고 소리가 달리 생기는 것이 우리나라의 언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를 설립하여 의당 언문으로 학생들을 교습시켜야 한다. … 우리나라는 본디 학과를 분류하는 제도가 없는데다가 더구나 근세에 비로소 개발된 학술을 언문책으로 가르치므로 학문이 있는 사대부들이 거개 입학하는 것을 수치스

> 럽게 여기고 있다. … 정부 차원에서 의논하여 특별히 번역하는 기관을 설치, 각종 학과의 기술을 모두 언문으로 하게 해주기 바란다. 그리하여 번역된 것을 책자로 만들어 국내에 반포하여 사민(士民)들로 하여금 이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주지시키게 해야 한다[『한성주보』, 1886. 2. 15, 「논학정제삼(論學政第三)」].

이 기사의 전반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서양의 교과목들은 조선 정부의 기관지를 통해서 사대부들에게 알려진 최초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소학교의 교과목들은 같은 해 설립된 육영공원의 교과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당시 조선 사대부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그다음에 자세히 소개한 일본 직공학교의 학과와 교과목은 사대부 대부분에게는 생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으며, 『한성주보』가 염두에 둔 '신학문'의 요점이 이공학(理工學) 쪽에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생경함'을 불식시키기 위해, 1886년 10월 11일 자 「사의(私議) 광학교(廣學校)」라는 논설에서는 서구의 천문, 역산(曆算), 화학, 중학(重學), 광학(鑛學), 기학(汽學), 전기(電氣) 등의 학문이 모두 중국에서 비롯되었으나 서양의 실용적 학풍으로 인해 서양에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논리 전개는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유럽의 경우를 근거로 하여 교육과정에서 한글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교육의 확충을 통한 '국민 만들기'를 위해서도, 실용적인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도 조선 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전 국민 중 15% 이하만 숙지할 수 있었던 한문의 어려움이었다. 언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근대적인 교육개혁을 실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글의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당시 개화파들에게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한성순보』는 1883년 11월 10일 자 「각국 근사」에서 "학문은 날로 새로워져서 어느 곳이나 학교가 없는 곳이 없고, 어느 것이나 학문의 대상이 아님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한성순보』, 1883. 11. 10). 그리고 중국과 서구의 교육제도 및 인재선발제도를 비교하면서, 서양에도 각 지방마다 공숙(公塾), 즉 공립 학교를 설치하여 언어와 문자를 가르치고 겸하여 천문·지리·산법(算法) 등 사람이 배워야 할 일을 모두 가르치며, 수도에는 대서원(大書院)을 두어 관학(官學)·법학(法學)·격치(格致) 등의 학문을 가르치고 관리가 될 사람을 선발하게 한다고 소개한다[『한성순보』, 1884. 1. 30, 「중서법제이동설(中西法制

異同說)」]. 이처럼 학교를 중앙과 지방에 분리하여 설치하고 역할을 분리하는 것은 중국과 조선을 비롯한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미 확립된 학제 운영 방식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서구가 중화와 동일한 방식의 교육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특히 이 논설에서는 중국의 경우 제예(制藝, 작문 - 필자)로만 선비를 평가하여 관료를 임명하기 때문에, 실용적 학문을 다루는 서구의 학제와 관리선발제에 비해 손색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884년 3월에는 서양의 학교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사가 게재되었다.

> 서양 각국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학교를 세워 국민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법은 대략 서로 같다. 대체로 학교를 대학·중학·소학 3등(等)으로 나눈다.
>
> 소학교는 마을 사이에다 세워 보통교육을 실시하는데, 국민의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을 가르친다. 소학교는 토지의 광협(廣狹)과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혹 한 고을에 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혹 2, 3개를 세우기도 한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 모두가 5세에서 13세까지 취학을 허용하는데, 사고가 없으면 감히 게으름을 피우거나 중단하지 못하니 이를 학령(學齡)이라 한다. 그 재정은 본래 그 지방의 국민이 거두어 충당하지만 혹 부자들의 기부금과 생도들의 사례금으로 충당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현·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
> 중학교는 부·현에서 각 2, 3개를 설치하여 14세 이상으로 이미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가 취학한다. 중학교는 농업·공업·상업·서양어(英語)의 과가 있어 각각 한 가지를 전공하게 하여 생업에 도움이 되게 한다.
>
> 대학교는 나라의 수도에 세우는데, 이학(理學)·화학·법학·의학 등의 과가 있다. 생도들은 모두 총명과 재기가 있는 장차 경세치국(治國經世)에 뜻을 둔 자들이다.
>
> 또 국립 학교에 사범학교가 있는데, 소학교의 과목과 교수법을 가르쳐 정통하게 되면 소학교 교사에 임명한다.
>
> 모든 학교는 그 학과별로 몇 개의 학급으로 나누어 학업 성적을 보아 생도를 장려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평가하여 교사를 내쫓기도 하고 올려주기도 한다. 또 만약 집이 가난하여 취학하지 못하는 자는 지방 정부에서 학비와 의식을 지급해 취학하도록 한다. 또 낮에 일을 해서 시간이 없는 자가 총명하면 별도로 야간학교를 설립해서 가르치기도 한다. 또 폐인(廢人)학교가 있으니 거기서는 벙어리·

소경 등을 각각 적당한 방법으로 가르친다. 또 옥내(獄內)학교가 있어 죄수들로 하여금 글과 산수를 배우게 해서 죄과를 뉘우쳐 수양하게 된다.

대저 국고의 재정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학교를 관립 학교라 하고, 공공기관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을 공립 학교, 국민들이 사사로 설립해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학교를 사립 학교라 하는데, 모두 문부성에서 통괄해서 사무를 감독하기 때문에 학교가 해마다 늘어나고 생도가 날로 증가해서, 길에는 책을 끼고 다니지 않은 아이가 없고, 집에는 남녀의 책 읽는 소리가 나지 않는 집이 없으며, 재주가 있고도 쓰이지 못하는 탄식이 없으니, 나라를 위해 인재를 기른다 하겠다. 이는 서양 각국의 제도가 다 같다.

…

내가 서양의 학제를 보고 서양의 부강함이 인재를 양성함에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았다.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쓴다는 말은 고훈(古訓)에 있으며, 인재를 잘 쓰는 것은 옛 성인도 귀하게 여긴 바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뜻을 둔 자는 어찌 거울삼아 하(夏)나라나 주(周)나라의 학교제도의 손익을 헤아려 격치(格致)와 치평(治平)의 학문을 장려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한성순보』, 1884. 3. 19, 「학교」).

학제를 소학교-중학교-대학교 등의 위계로 구분하는 것은 조선의 서당-향교-성균관의 시스템과 유사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에서 교수 활동을 담당하던 교원들은 교육자로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 결과 조선시대의 초·중등 교육은 각 지역에 따라 일정치 않게 운영되었다. 이런 방식으로는 근대적인 보통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웠다. 실제로 조선 후기 교육제도에 관해 가장 많이 지적되던 문제 중 하나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사범학교를 별도로 설치하여 균질한 교원을 양성하고 전 국민에 대한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시 세계적인 추세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도 이러한 교육제도를 도입했으며, 갑오개혁 이후 조선 정부의 교육개혁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학교 운영 재원(財源)에 따라서 관립 학교(官立學校), 공립 학교(公立學校), 사립 학교(私立學校)로 학교를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조선의 전통적인 학교제도 중 지방의 초등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서당의 경우 각

지방의 상황에 따라 국가 재정과 민간 재원이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나 향교 및 성균관의 경우 공식적으로 국가 재정만 편제되었다. 조선 후기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향교 재정 또한 심각하게 부족해졌고, 그 결과 향교의 운영을 위해 사실상 지방 사대부들의 재원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재정 동원이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방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향교의 운영을 일률적으로 관리할 수도 없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 공교육의 형해화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사립 학교'를 공식적으로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이를 '문부성'[7]의 관할로 배치함으로써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사립 교육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도 갑오개혁 이후 조선 정부의 교육개혁안에 적극 반영되었으며, 초대 학무대신(學務大臣)이었던 박정양은 고시(告示)를 통해 사립 학교의 설치를 적극 권장했다(본서 1부 2장 참조).

같은 해 8월 31일에 게재된 기사에서는 서구의 학교 운영체계를 소개하면서 미국과 유럽 각국의 초등교육 취학률을 상세히 소개했다(『한성순보』, 1884. 8. 31, 「각국 근사 태서각국소학교」). 그리고 서양과 아울러 일본의 근대적 학교제도의 성과를 국가별로 소개하기도 했다[『한성순보』, 1884. 2. 17, 「각국 근사 미국지략(美國誌略)」]. 이 기사에서는 1880년 기준 각국의 전국 학교 수, 교사 수, 학령 아동 수와 취학 아동 수를 전하고 있다. 6월 13일 기사에서는 일본의 근대 교육개혁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그 과정에서 일본 황제 및 '영의(英毅)한 세신(世臣)'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한성순보』, 『한성주보』는 1880년대 조선 개화파들이 습득하고 구상했던 교육개혁론을 대중에 공식적으로 전파하는 첫 번째 통로였다. 비록 갑신정변 등 정치적 변란과 재정난의 문제로 그 논의가 지속되지는 못했으나 이곳에서 소개된 논의들은 이후 조선 정부의 교육정책 및 조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

7 문부성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 설립된 교육 담당 기구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한성순보』의 제작에 깊이 관여한 결과로 보인다.

제3절 고종 재위 전기 신식 교육기관 설립

고종 대 개화지식인 및 관료들의 개혁론이 본격적으로 정책화된 계기는 1874년 고종의 친정 선포였다. 척화쇄국론을 정권의 정당성으로 제시했던 대원군을 배제하고 정권을 장악한 고종은 1876년 최초의 근대적 외교 조약인 병자수호조규를 체결했다. 이후 수신사, 조사시찰단, 영선사의 파견을 통해 개혁정책을 추진할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1880년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했다. 이 통리기무아문은 근대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 개혁 기구였다. 동시에 조선 후기 세도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제도적 요점인 비변사(備邊司)와 비변사를 대체하여 대원군이 군부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삼군부(三軍府)의 뒤를 이은 권력의 중심기구로 새로 만들어졌다. 1882년 임오군란의 발발 이후 통리기무아문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과 통리군국사무아문으로 분리되었고, 각 기관들이 외아문(外衙門)-외무부(外務府)과 내아문(內衙門)-내무부(內務府)로 이어지면서 복잡하게 변화되었으나, 고종 대 전반기 개혁 정치의 전반은 이러한 통리기무아문의 후신 기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갑오개혁 이전까지 조선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과 개혁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북학파 이래 축적한 근대적 개혁론에 기반하여 근대적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으며, 교육 분야에서 동일한 노력들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조선 근대화에 기여한 한편 향후 갑오-을미개혁 및 광무개혁 때보다 전격적인 개혁을 실시하는 기반으로 축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동문학

근대적 교육개혁의 방향을 크게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통교육의 실시와 ② 국익과 민생을 위한 실용적 교육의 실시로 나눈다고 할 때, 고종 재위 전기의 교육은 전반적으로 ②에 집중되었다. 특히 〈조일조약(병자수호조규)〉, 〈조미조약〉, 〈조영조약〉 등 구미 열강들과의 외교관계가 구축되면서 통역 인력에 대한 수요

었기 때문에 외국어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조선 정부의 당면한 교육 과제였다.

본래 조선시대 외국어 통역관이었던 역관(譯官)의 양성 기관은 사역원(司譯院)이었다. 예조(禮曹) 산하의 독립기구였던 사역원은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여진어를 통역할 수 있는 역관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기구였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 표류한 서양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중 1626년 제주도에 표류하여 조선에 정착한 얀 야네스 벨테브레[Jan Janes Weltevree, 한국명은 박연(朴燕)]처럼 조선에 정착하여 서양의 무기 제작 기술을 전수한 사람들도 있었다. 따라서 사역원 안에서도 서양 언어를 교습할 서양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전통적 화이관(華夷觀)에 의해 정책화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사역원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된 것은 조선이 서구와 근대적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였다.

조선이 구미 열강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1882년 〈조미조약〉이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조선이 〈조미조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청국 리훙장의 권유가 크게 작용했다. 1880년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된 김홍집은 현지에서 주일 청국공사관 황쭌셴을 접촉하여 조선의 외교정책에 관한 조언을 구했으며, 리훙장의 심복 중 하나였던 황쭌셴은 널리 알려진 『조선책략』이라는 문건을 통해 '친중·결일·연미'라는 방향의 외교정책을 조선에 제안했다. 『조선책략』은 조선의 개국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조선 외교가 청국의 영향 아래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고종은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동력을 얻기 위해 1880년 통리기무아문을 설립했다. 그러나 1882년 6월 발발한 임오군란 와중에 폐지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통리군국사무아문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분화되어 재설치되었다. 그리고 1882년 11월 리훙장의 추천으로 청국주재 독일영사관에 근무하고 있던 파울 게오르그 폰 묄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고문으로 임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동문학(同文學) 설치의 배경이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에 따르면 동문학은 북경의 동문관(同文館)을 참조해 설립되었으며, 외무(外務)와 상무(商務)의 업무를 담당할 실용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곳이었다. 위 장정에 따르면 "청준자제(聽俊子弟)[8] 중 만 15세 이상인 자를 택하여 먼저 외국어를 배우게 하고

8 문맥 상 총준자제(聰俊子弟)가 맞으나 원문 내용을 그대로 표기했음.

그다음에 정치이재지도(政治理財之道)를 가르쳐서 전문 관료로 준비시키되 호학심사지사(好學深思之士)가 있으면 현직 혹은 전직을 가리지 않고 나이가 장년(壯年)을 넘었더라도 가르친다"고 했다. 여기서 정치이재지도란 개화정책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1883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독판이던 김윤식은 동문학 산하에 박문국을 설치하고, 박영효가 추진했던 『한성순보』 간행 계획을 이어받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신문을 발행한 바 있다. 이처럼 동문학은 외국어에 능통한 관료를 양성한다는 실용적 목적 외에, 김윤식을 중심으로 한 소위 친청 온건개화파들의 사상적 기반으로 기획되었다.

1883년 4월, 김윤식의 종형인 김만식(金晩植)이 동문학 장교(掌敎)의 직임을 담당하는 한편 묄렌도르프가 데리고 온 청국인 교사가 40여 명의 학생들에게 서양어를 교습하기 시작했다[『음청사(陰晴史)』, 1882. 11. 21]. 7월부터는 묄렌도르프와 함께 조선에 온 전신기사였던 영국인 토마스 핼리팩스(Thomas E. Hallifax)도 교사로 초빙되었다(『한성순보』, 1884. 2. 21). 핼릭패스는 영어와 일어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교사로 임용되었으나 당시 학생들은 그의 강습법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교사를 임명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통서일기(統署日記)』, 1885. 8. 3]. 청국어 통역관으로서 영선사행에 참여하여 서양어를 배웠던 고영철(高永喆)이 동문학 주사(主事)에 임명되기도 했으나 이 또한 당시 실무 현장의 필요에 부응할 만한 자질을 갖춘 외국어 교사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이처럼 동문학은 적절한 교사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성순보』에 소개된 동문학의 교학규례(敎學規例)에 따르면 생도를 오전과 오후로 절반씩 나누어 수업하게 하고, 하루는 장어(長語) · 단어(短語), 그리고 문장을 해석하고 응용하는 법을 가르치며, 하루는 장어는 빼고 단어와 서양 계산법을 가르쳤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도강(都講)으로 시험을 치러 우등생을 선발하고 학업을 장려했다(『한성순보』, 1884. 2. 21).

동문학 설립에 깊이 개입한 묄렌도르프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고문 겸 세관(稅關) 총세무사(總稅務士)로 조선 정부에 초빙되었다. 그 영향으로 동문학 출신자들도 주로 각 항구의 세관에 채용되었다(김경미, 2009: 71). 이들은 동문학 교육의 목적대로 대외교섭과 개화정책에 관련된 관서에서 실무적인 일을 담당했으나, 통역 업무를 수행할 만큼 충분한 외국어 훈련을 이수했는지는 의문이다. 1886년 1월 시험에서 우등으로 졸업한 남궁억은 1년도 되지 않아 과정을 마치고 졸업했

다고 한다(김세한, 1960: 44). 교육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관 현장의 필요에 따라 관료로 파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술한 것처럼 1885년부터 동문학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대우가 열악해졌고 학규도 점차 해이해져서 교육과정 및 등급 절차가 문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통서일기』, 1885. 8. 3). 이는 당시 고종이 친청파로 알려진 김윤식 등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계열의 관리들을 배제하고 통리군국사무아문의 후신인 내무부를 통해 정국을 주도하려고 했던 결과로 보인다(연갑수, 1993: 131~133). 이러한 상황에서 동문학은 근대적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상실하고 통역관 등 말단 실무 관료를 배출하다 1886년 육영공원이 설립되면서 폐교되었다.

2) 원산학사

원산학사(元山學舍)는 1883년 1월경 설립되었다. 원산은 1880년 4월 개항과 동시에 일본인 거류지가 생성되고 일본 상인들의 상업 활동이 시작된 지역이다. 그러나 개항 초기 외국 상인들은 거류지에서 10리가 넘는 내륙 지역에서는 상행위를 할 수 없었고 조선의 상업관행에도 어두웠기 때문에 개항장의 객주(客主)·여각(旅閣) 등 조선 상인 세력들의 중개를 거쳐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상인들과 협력 혹은 경쟁하면서 원산 지역에서 성장한 조선의 신흥 상인들은 새로운 경제 여건에 적응하기 위해 외국어를 비롯한 서구의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다. 이에 개항장의 유력 상인들과 지역 유지들이 갹출하여 기금을 마련해 근대적 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신용하, 1974: 191~203).

원산학사 설립에 큰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요인은 고종을 비롯한 조선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였다. 상술한 것처럼 1882년 12월 28일 고종은 '교육에 관한 윤음'을 발표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통교육정책과 부국강병을 위한 실용교육정책을 천명했다. 그리고 1883년 1월 덕원부사(德源府使) 겸 원산감리(元山監理)로 정현석(鄭顯奭)이 부임했다. 그는 1817년생으로 1883년 당시 60대의 노령이었으나 '일찍부터 개화를 사모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梅泉野錄』, 1894). 고종은 새로 개항된 원산항의 감리로 정현석을 특별히 발탁한 것이다.

정현석의 부임 직후, 원산 지역의 상민들은 정현석에게 학교 설립 기금을 모금할 뜻을 밝히고 새로운 근대적 학교의 설립을 요청했다. 정현석은 원산학사의 '학사절목(學舍節目)'에서 학사 설립의 의의로 "지금 전 세계는 다사(多事)한데 지력을 서로 숭상하여 모두 부강지업(富强之業)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임금은 치평지책(治平之策)을 깊이 생각하여 흥학지정(興學之政)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 … 어찌 감히 대양(對揚)하여 명령을 받들지 않겠는가."라고 밝히고 있다[『춘성지(春城誌)』, 「학사절목(學舍節目)」]. 조사시찰단의 일원이었으며 당시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일원으로서 청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로 파견된 어윤중(魚允中)도 정현석과 함께 원산학사의 학제를 결정하는 데 참여했다[『춘성지』, 「덕원부지서(德源府之序)」]. 즉 원산학사의 설립은 조선 정부의 근대적 교육개혁정책이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여론과 부합하여 만들어진 성과다. 정현석은 1883년 8월 학교 설립을 의정부에 보고했고, 같은 해 10월 고종의 승인을 얻었다(『고종실록』, 1883. 10. 14).

원산학사를 설립하기 위한 기금으로, 원산의 민간인 118명이 도합 5,325냥을 기부했으며 원산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240냥을 갹출하고 매년 200냥의 경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또 같은 해에 설립된 원산상업회의소도 50냥을 보조했다. 정현식과 어윤중이 각 100냥, 승지이며 정현식의 아들인 정헌시(鄭憲時)가 100냥을 기증했다. 원산해관에 고용되어 있던 외국인들도 이에 참여하여 중국인, 영국인, 미국인, 덴마크인 등이 도합 760냥을 찬조했다[『덕원부지(德源府誌)』, 「흥학(興學)」].

원산학사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전에 밝고 시무를 잘 아는 유자(儒者)를 사장(師長)으로 삼고, 문사(文士)는 먼저 경의(經義)를 가르치고 무사(武士)는 먼저 병서(兵書)를 가르친 후, 같이 시무의 긴요한 것으로서 산수격치(算數格致)부터 각종 기계와 농잠광채(農蠶礦採) 등의 일까지 가르쳐 배우게 한다(『덕원부지』, 「흥학」).

원산학사의 학생들은 각자의 관품(官品)에 따라 유교 경전 혹은 병서를 학습한 후 산수학, 격치학[理科學], 서양의 기계 및 농업, 광업 등 실용적인 학문을 습득하게 된다. 다만 당시 학사에 서양의 기계류나 농업·광업실습지와 같은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경전에 밝고 시무를 잘 아는 유자'로

서 실제 어떤 인물이 임명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대신 학사에 『영지(瀛志)』, 『연방지(聯邦誌)』, 『기기도설(奇器圖說)』, 『일본외국어학(日本外國語學)』, 『법리문(法理文)』, 『대학예비문(大學豫備文)』, 『영환지략(瀛環之略)』, 『만국공법(萬國公法)』 등 청국이나 일본을 통해 수입된 개화 관련 서적이 비치되어 있었다(『춘성지』, 「학사절목」). 따라서 개화 관련 지식은 이러한 책들을 강독하는 형태로 교수했으리라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이 원산학사에서 수학했으며 졸업 후 어떠한 직위에 임용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정현석이 원산학사의 운영에 대해 의정부에 올린 장계(狀啓)의 내용을 통해 그 대략을 추측할 수 있다.

> 문사는 달마다 시험을 보아 우등자 1명을 뽑아 매년 가을에 감영에 보고해 공도회(公都會)에 응시하도록 하고, 무사는 동래부의 규례에 따라 출신(出身, 과거에 이미 합격한 사람)과 한량(閑良, 무과에 합격하지 못한 무반인) 200명을 선발하고 별군관(別軍官)을 두어 달마다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아 시상했으며 … 별군관들에게 매달 시험을 치르게 해 연말에 우등을 한 2인 중 출신은 특별히 절충장군(折衝將軍, 정3품 무관 품계)으로 임명하고 한량은 특별히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하게 하도록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아뢰주십시오. … 북쪽 해안은 요충지로 항구의 사무 또한 번잡합니다. 지금 가장 급한 문제는 오직 인재를 선발하여 쓰는 데 달려 있습니다 …(『고종실록』, 1883. 10. 14).

위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산은 개항장인 동시에 동북해안의 요충지로서 청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방 활동에 긴요한 지역이었다. 때문에 원산학사도 문사와 무사를 모두 교육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무사에 대한 교육에 치우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사의 경우 매년 1명이 공도회, 즉 지방의 초시(初試, 과거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에 불과했다. 반면 무사는 200명을 선발해 별군관으로 임명하여 지방 사무를 보조하게 했으며, 이들 중 2명을 선발하여 정3품이라는 높은 품계를 하사하거나 전시(殿試, 과거 최종 시험)에 곧바로 응시하게 했다. 이는 원산학사가 다분히 '근대적 지식을 습득한 무관'을 양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렇게 배출된 무관들이 개항장의 외국인 관련 사무에 투입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원산학사는 현재까지 사료를 통해 최초로 확인되는 지방에서 설립된 근대적 학교였다. 그러나 근대적 학문을 유효하게 가르칠 교수 요원 없이 개화 관련 서적들을 강독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화의 실무 지식을 갖춘 문무 관료들을 배출하기 위한 학교임에도 원산학사를 통해 선발된 졸업생들에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신학문을 습득해야 할 동기 부여를 박탈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과거제도라는 전통적 관리선발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던 때에 지방에서 반자생적으로 설립된 학교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육영공원

상술한 대로 1883년 조선 최초의 전권공사인 민영익을 필두로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 일행 중 홍영식은 개화에 관한 민영익과의 노선 차이로 먼저 귀국길에 올랐다. 1883년 11월 12일 고종에게 복명하는 자리에서 홍영식은 미국의 장점 중에서도 특별히 그 교육제도를 본받아 인재를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김원모, 1981: 216).[8] 당시 고종은 임오군란 이후 가중되고 있던 청의 내정간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접촉하려 했다(유영렬, 1985: 40). 1884년 말 발발한 갑신정변으로 한동안 교섭이 중지되었으나, 1885년 이후 다시 미국과 교섭을 재개하여 독자적으로 정국을 주도해 나가고자 했다.

그때까지 개화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관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동문학이었다. 그러나 상술한 것처럼 동문학은 적절한 교육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가, 동문학 설립에 관여했던 김윤식이나 묄렌도르프 등이 모두 친청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고종은 그 운영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8 홍영식이 보빙사 부대신으로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고종에게 복명한 기록은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조선시대의 어떤 공식 사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민영익의 복명문답기만 『승정원일기』에 간략히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홍영식이 복명 자리에서 고종과 나눈 대화 내용은 김원모 교수가 1981년 개인적으로 입수한 〈홍영식문서(洪英植文書)〉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본서에서는 김원모 교수가 이 문서를 번역하여 1981년 간행한 논문을 활용했다. 한편 홍영식의 복명문답서가 공식 사료에서 누락된 것은 갑신정변 실패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 대신 보빙사 활동을 통해 교감을 가진 미국과의 제휴를 통해서 외국어 능력과 개화 관련 지식을 겸비한 관료를 양성하고자 했다. 이것이 육영공원 설립의 배경이다.

홍영식의 복명 이후 조선 정부는 미국인을 초빙해 외국어와 서양의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 설립을 계획했다. 1886년 6월 3일 미국에서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 조지 길모어(George W. Gilmore), 달젤 벙커(Dalzell A. Bunker)가 조선에 도착하여 본격적으로 육영공원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교사들이 도착하자 고종은 내외아문의 당상관과 당하관의 자제, 사위, 아우, 조카, 친척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선발하여 추천할 것을 지시했다(『고종실록』, 1886. 7. 11). 동문학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후신인 외아문의 부속기관이었으나, 육영공원은 내무부 소속인 수문사(修文司)의 관리가 그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육영공원의 설립 목적은 어학 능력을 습득한 관리 양성이다. 그러나 『육영공원등록(育英公院謄錄)』에 따르면, 외국과의 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국어 능력만이 아니라 농상(農桑), 의약, 공기(工技), 상무(商務) 등 이용후생의 학문 또한 학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육영공원등록』, 「육영공원학교규칙서(育英公院學校規則序)」]. 나아가 다른 나라의 선책(善策)을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형정병농(刑政兵農)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외국의 언어와 문자를 익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외국어를 습득하여 외교와 내치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관료를 양성하는 것이 육영공원 설립의 목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8월 1일 내무부가 작성한 '육영공원절목(育英公院節目)'에 따르면 공원 내에 좌원(左院)과 우원(右院)을 두었다. 좌원에는 과거급제자 혹은 참하관(參下官)으로 연소하고 능력을 갖춘 자를 10명에 한해 선발하여 학습하게 했다. 그리고 우원에는 15세에서 20여 세 중에서 재질이 뛰어난 20명을 선발하여 교육하기로 했다. 이들은 서양어와 개화지식을 배우되 한문 및 경사(經史) 등 전통적인 학업도 병행하도록 요구받았다. 고종은 이들 학도를 내아문과 외아문 당랑관(堂郎官)의 아들, 사위, 동생, 조카 등 친족 중에서 직접 선정했다(『육영공원등록』 병술 7월 11일). 이는 주로 역관 출신자들이 수학했던 동문학에 비해 높은 지위의 관료를 양성하려는 의도였다.

육영공원 설립 당시 운영을 맡은 관리들은 다음과 같다.

수문사당상(修文司堂上): 민종묵(閔種默), 민응식(閔應植), 정하원(鄭夏源)

주사(主事): 서상교(徐相喬), 이전(李琠), 정문섭(鄭文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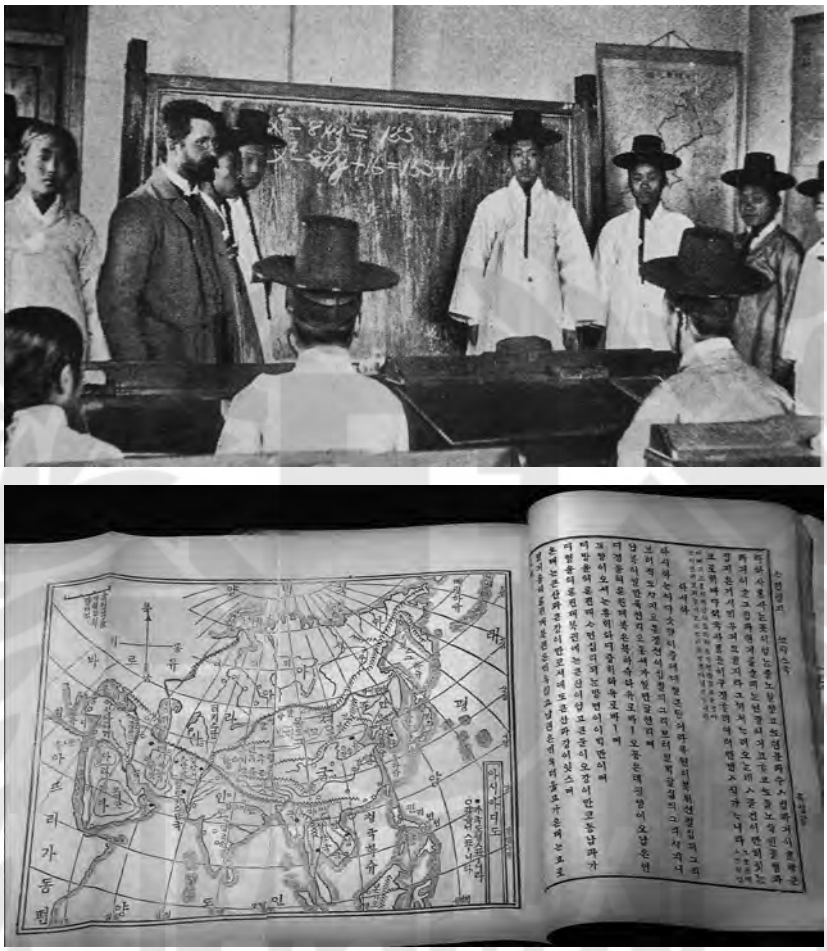
교습(敎習): 권유섭(權柔燮), 유찬(劉燦), 최영하(崔榮夏)(『육영공원등록』)

특히 민종묵, 민응식 등 권력을 장악했던 소위 '척신(戚臣)'이 당상(堂上)으로 배치된 것은 그만큼 육영공원의 위상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신식 교육을 이해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동문학 설립을 주도했던 김윤식이나 원산학사에 관여했던 어윤중 등이 영선사 혹은 조사시찰단 활동을 통해 직접 신식 학문을 접했고 당대의 대표적인 개화지식인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이는 보빙사 활동을 통해 육영공원의 설립을 구상하고 귀국 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홍영식, 서광범 등이 갑신정변 실패 이후 조선 정계에서 물러나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대신 조선 정부는 육영공원의 운영을 미국 공사관과 미국인 교사들에게 일임하려 했으며,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결국 후일 육영공원 운영에 한계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이광린, 1965: 110).

육영공원에서 매일 학습하는 과목은 독서, 습자, 학해자법(學解字法), 산학(算學), 사소습산법(寫所習算法), 지리, 학문법(學文法) 등이었다. 초학(初學) 과정 후에는 대산법(大算法), 제반학법첩경제반이학자(諸般學法捷徑諸般易學者), 의학(宜學) · 농리(農理) · 지리 · 천문 · 기기 · 화훼 · 금수(禽獸) · 초목 등 만물격치(萬物格致), 각국 역사, 정치[각국 조약법 및 부국용병술(富國用兵術) 포함] 등을 가르쳤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학 외에 초등 보통학, 국제법과 정치경제학의 초보 수준 정도를 가르쳤다고 한다(김경미, 2009: 86).

육영공원 설립 초기에는 학생들의 수학 태도가 매우 근면했던 것으로 보인다. 육영공원 설립 당시 교습(敎習)에 임명된 권유섭과 최영하는 동문학에서 먼저 외국어를 습득한 사람들이었다. 처음에는 이들이 외국인 교사들의 보조 역할을 맡았으나 곧 필요 없게 되었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영어에 더 익숙하게 하려는 의도였기도 했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그러한 교사들의 요구에 부응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한용진, 2012: 146).

고종 또한 육영공원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고종이 총리대신에게 지시해 내무부를 통해 작성한 「육영공원절목」은 학생들 매일의 일과, 갖춰야 할 수업 태



출처: 『배재백년사』 수록.

[그림 1-1-5] 육영공원에서 강의하는 헐버트(위)와, 헐버트가 제작한 한글 교과서 『사민필지(士民必知)』(아래)

도, 교과 구성, 학업 평가, 휴가 및 휴일에 관한 규칙들을 상세히 규정해 놓았다. 육영공원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학업을 게을리 할 것을 염려해 방학 중에도 5일에 한 번씩 시험 실시를 지시할 정도였다.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인해 육영공원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재정 부족이었다. 육영공원의 운영비는 설립 당시 호조와 선혜청에서 매월 6,000냥을 분담했으나 곧 인천항의 객주에게 부담시켰다가 1890년 8월부터는 인천, 부산, 원산 3항의 해관세로 충당되었다(『통서일기』, 1990. 1. 24). 당시 조선의 국가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 상태였으며, 개화에 관한 재정 수요

는 주로 해관세로 충당되었는데 육영공원의 운영비도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육영공원의 미국인 교사 헐버트, 벙커, 길모어는 1886년부터 2년 동안 매년 미화 125달러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조선 정부와 계약을 했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인 1888년 길모어는 봉급 인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직하고 귀국했다. 이후 교사들의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헐버트 또한 1891년에 사직했다. 1894년 2월에는 벙커마저도 사직해 이 시점에는 육영공원이 거의 폐쇄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고종은 육영공원의 교육을 혼자 책임지고 있던 벙커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제수했으나, 그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종실록』, 1992. 3. 24). 재정 문제가 교사 수급 문제와 연결되면서 육영공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상술한 것처럼 육영공원은 좌원과 우원으로 나누어 학생들을 선발했으며 좌원에는 과거에 합격했거나 이미 관료가 된 인원이 배정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좌원 학생들이 병을 핑계로 결석하는 일이 빈번하자, 1889년 고종은 우원은 매일, 좌원은 격일로 출석하여 수업을 받되 수업 태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부형(父兄) 혹은 상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를 내렸다(『고종실록』, 1889. 3. 20).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좌원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개선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미 관직에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학문을 배우도록 동기부여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관리들의 인사 고과에 육영공원 수학 경력을 반영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그 결과 1889년 3월에는 좌원 학생을 배제하고 우원 학생만 선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원 학생들의 경우도 여러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상술했듯이 육영공원의 학도는 자원과 평가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아문 및 외아문 당랑의 친족 중에서 명단을 작성하여 국왕이 직접 선발했다. 자발적인 입학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이었다. 게다가 본래 유력한 관료의 친족이었기에 육영공원에서 학업 성적과는 관계없이 높은 지위에 오를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는 양반 신분이라는 우월감에 젖어 출석에 관한 학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던가, 고관의 자제가 불합격할 수 없다고 하여 특별수험서를 준비하는 등 부정행위를 자행하고, 심지어 학교 관리자와 결탁하여 학교 유지비를 횡령하는 사태도 발생했다(김미진, 1998: 50). 이러한 태도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서양인 교사와 조선인 학생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육영공원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저하시킨 또 하나 요인은 동문학과 마찬가지로 육영공원에서의 학습 성적이 관로 진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좌원과 마찬가지로 우원 또한 육영공원에서 수학했다고 해서 관료로 진출하는 데 이점을 얻는다는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육영공원을 졸업하고 내외아문이나 지방 해관(海關)의 관리로 임명된 학생들 중 상당수가 고위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 과거에 다시 응시했다(김경미, 2009: 90). 특히 당하관에 재직하고 있던 중인 출신 관료의 친척으로 육영공원에 입학한 이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육영공원에서는 학업 성적과 학업 태도를 기준으로 매월, 매년, 3년[大考]마다 시험을 실시하여 시상했는데, 1889년에는 시험에서 조(粗)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는 육영공원응제시(育英公院應製試)라는 이름으로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기회를 주었다(『고종실록』, 1889. 5. 22).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시험 과목은 육영공원에서의 학업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득천하영재이교육지(得天下英材而教育之)'라는 『맹자(孟子)』의 한 구절을 주제로 시를 짓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원 학생들은 육영공원에서 수학하는 기간에도 전통적인 과거 공부를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육영공원은 점차 위축되어갔다. 1894년 마지막 교사인 벙커가 사직한 이후에는 강화도의 해군무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영국인 윌리엄 허친슨(William. F. Hutchinson)과 동문학 교사였던 핼리팩스가 교수직을 담당했으나 원활하게 운영되지는 못했다. 1894년 7월부터 시작된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가 작성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육영공원은 새롭게 신설된 학무아문(學務衙門) 소속 기관으로 잔존했다. 그러나 육영공원으로서의 명칭과 조직은 형해화되고 실제로는 영국인 교사들에 의해 '영어학교'로 운영되다가(김원모, 1984: 140), 1895년 5월 발표된 '외국어학교관제'에 의해 서류상으로도 폐지되고 관립 영어학교로 개편되었다.

육영공원은 국왕을 중심으로 조선 정부가 기획 단계부터 역량을 집중해 시작한 근대적인 관립 학교였다. 그 기관의 존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한계를 보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기획과 운영 과정을 통해 조선 정부는 근대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는 1895년 육영공원의 뒤를 이어 설립된 관립 영어학교를 포함하여, 갑오개혁 이후 본격화된 근대적 학교 설립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4) 선교사 교육기관 지원을 통한 보통교육 확충

개신교회의 조선 선교는 1884년 호러스 알렌(Horace N. Allen, 장로교)이, 1885년 헨리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감리교)와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장로교)가 조선에 입국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입국 직후 언더우드는 알렌이 담당하던 제중원(濟衆院)에서 수학, 물리, 화학 등을 가르치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반면 아펜젤러는 1885년 8월 3일 의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게 된 것을 계기로 직접 영어학교를 설립했다. 이때 공사관 주재무관이면서 임시 대리공사를 맡고 있던 포크의 주선을 통해 고종의 윤허를 받을 수 있었다(이만열, 1985: 474). 본래 아펜젤러는 당시 외아문 협판(協辦, 지금의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묄렌도르프에게 육영공원 교사 직책을 제의받았으나 본인이 시작한 학교 때문에 이를 사양했다.

처음에는 같은 선교사였던 윌리엄 스크랜튼(William B. Scranton)의 집을 빌려 두 칸짜리 방의 벽을 헐고 교실을 만든 것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찾아왔던 것은 동문학 입학생들은 대개가 역관 집안 출신이었고 육영공원은 아예 내아문과 외아문 관료의 인척으로 제한되었기에, 신식 학문을 배워 입신양명하려는 의욕은 있으나 정부에서 설립한 학교에 입학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선교사 학교에 입학하려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어를 배우러 찾아온 학생들에게 아펜젤러가 입학의 이유를 물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벼슬을 얻으려고"라고 답변했다(이만열, 1985: 475).

개학 초기에는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 1886년 7월 첫 학기가 끝난 시점에서 아펜젤러가 선교보고서에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등록 학생 6명 중에서 한 명은 '시골에 볼 일이 있어서' 자퇴했고, 다른 학생은 더운 6월에는 외국어를 배우기 어렵다고 떠나 버렸으며 가족 중에 초상이 나서 학업을 포기한 학생도 있었다. 1886년 9월 1일 2학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단 한 명만 등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10월 6일에는 재적생이 다시 18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이만열, 1985: 475). 조선사회에서 서양식 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학교 운영에 애로는 있었으나 선교사 학교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1887년 2월 고종은 이 학교에 '배재학당(培材學堂)'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9]

9 고종이 학교명을 하사한 시점을 『배재 80년사』에는 1886년 6월 8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

아펜젤러의 기록에 따르면 외아문 독판을 통해 배재학당(Hall for Rearing Useful Men)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으며, 2월 21일 외아문 직원이 한자가 쓰인 간판을 직접 들고 왔다고 한다. 이를 통해 '비록 국립 학교는 아니지만 사립 학교가 아닌 공립 학교가 된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이만열, 1985: 476). 실제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립 교육기관이었던 서원의 경우도 임금이 직접 이름을 내려준 사액서원(賜額書院)은 정부가 각종 재정 지원을 하고 국가기관에 준하는 대우를 했다. 고종이 배재학당이라는 학교명을 하사한 것 또한 동일한 의미로 당시 조선사회는 받아들였을 것이다. 실제로 1887년 1학기를 마쳤을 때 재적 학생은 43명, 실제 출석 학생 수는 3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국립 외국어학교였던 육영공원에 준하는 실적이었다. 그해에 배재학당의 학생들 중 한 명은 왕실 통역관으로 종종 불려갔으며 6명의 다른 학생이 전신국(電信局) 등 신식 기관의 관리로 임명되기도 했다(이만열, 1985: 311).

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가 모두 조선 정부의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도 1888년 "귀국의 유망한 청년들을 영어와 기타 외국어 및 모든 과학 분야를 망라해서 가르쳐서 귀국에 큰 이득을 주고 싶다"고 하며 교육기관 설립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며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겠다는 조건도 붙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육영공원(the Royal University)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구한국외교문서(舊韓國外交文書)』 제10권, 미안(美案) 1, 1888. 9. 8].

언더우드와는 달리 왜 아펜젤러의 학교 설립이 승인되었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883년 조선이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한 후 미국 감리교회 안에서 조선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당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감리교 목사 로버트 맥클레이(Robert S. Maclay)가 조선에 파견된 바 있다. 이때 맥클레이는 1883년 6월부터 7월까지 서울에 체류하면서 미국 감리교회가 한국에서 교육과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선 정부와 협상하여 허가를 받고 돌아간 일이 있다(이만열, 1984: 171~194). 배재학당이 설립 초기부터 조선 정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육영공원이 1886년 설립되었음에도 고종이 왜 선교사의 외국어학교 설립을

할 명확한 사료가 없으며, 아펜젤러가 매년 선교본부에 보고하는 연례보고서에도 언급이 없다. 반면 아펜젤러의 일기에는 1887년 2월에 고종이 학교명을 내렸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본서에서는 아펜젤러 일기의 기록을 따랐다.

허가했을까? 조선 정부의 공식 기록에서 배재학당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찾아볼 수는 없다. 다만 상술한 것처럼 고종은 1882년 12월 28일 발표한 '교육에 관한 윤음'에서 "농·공·상고의 자식도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여 다같이 진학하게 한다. 오직 재학(才學)이 어떠한가만을 보아야 할 것이요, 출신의 귀천(貴賤)은 따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선은 아직 국민 일반을 위한 보통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동문학과 육영공원 등 조선 정부가 직접 관여해 설립한 신식 학교들은 당장 필요한 관료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이었으며, 하층민들은 여전히 신식 교육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재학당에 사액(賜額)함으로써 국가 교육제도에 편입시킨 것은, 『한성순보』에서 소개한 서구의 관립 학교-공립 학교-사립 학교의 시스템을 조선에 적용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을 확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펜젤러는 배재학당의 설립 의의에 대해 일기에서 "나의 학생들은 가난하고 관직이 없는 데 반해서 국립 학교[육영공원] 학생들은 잘살고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벼슬을 할 게 확실하다. [배재학당의] 어떤 학생들은 서울에 계속 남아 있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시골집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학생이 시골 출신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이만열, 1984: 477).

1888년에는 새로운 교사가 완공되면서 배재학당의 교육 활동도 대폭 확대되었다. 아펜젤러는 1892년 선교보고서에서 배재학당의 교육 목표가 단순히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교양을 겸비한 근대적 지성인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만열, 1984: 481). 그리고 1889년부터 대학 과정 설치를 구상했으며 1891년부터는 선교본부에 학교 이름을 'Pai Chai College'라고 표기했다. 이 명칭은 1902년 아펜젤러가 사망하고 벙커가 학장에 취임하여 'Pai Chai High School'로 개편할 때까지 사용되었다.

1889년의 교과과정을 보면 예비부(Preparatory Department)와 학술부(Academic Department)로 과정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이 외에 의학부와 일본어과 등도 설치되었다(배재백년사편찬위원회, 1989: 53~55). 1893년에는 신학부(Theological Deparment)와 학술부로 개편했고, 학술부는 1895년부터 영어과(English Deparment)와 국한문과(Chinese and Unmun Department)로 분리되었다. 이처럼 배재학당은 단순한 외국어 교육기관을 넘어 보통교육을 시행하는 고등교육기관을

지향하고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교육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작한 조선 정부는 1895년 2월 16일 아펜젤러와 최대 200명의 학생을 배재학당에 위탁 교육시킨다는 계약을 맺었다(배재백년사편찬위원회, 1989: 62~63). 이 계약서 영문본에도 배재학당은 Pai Chai College로 표기되어 있었다. 본래 조선 정부가 근대적인 학교로 설립했던 육영공원은 재정 및 제도의 제약으로 한계에 봉착했고 1894년 2월에는 '영어학교'로 축소되어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1894년 발발한 동학농민전쟁 및 청일전쟁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웠던 조선 정부의 재정은 더욱 심각해졌다. 배재학당과의 위탁교육 계약은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근대적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선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제4절 의술의 근대화와 제중원 설립

1) 고종 대 의료 근대화와 제중원의 설립

1884년 12월 4일 저녁,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우정국 개국 축하 연회가 벌어졌다. 조선 정부의 고위 관리와 서구 열강의 외교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 연회가 끝나갈 무렵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이 자객의 칼에 찔려 죽어갔다. 역사적 대사건인 갑신정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미국북장로회 선교사 겸 의사인 알렌은 당시 일본인 의사를 제외하면 조선에 거주하던 유일한 서양 의사였다. 그는 민영익을 정성껏 치료하여 완치시킴으로써 서양 의학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그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신임을 얻은 후 서양식 국립 병원 설립을 제안했는데, 고종과 조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제중원 설립이 갑신정변이라는 돌발 상황에 의해 갑자기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조선에서 서양 근대 의학의 수용과 서양식 국립 병원의 설립은 시간문제일 뿐이었다. 19세기에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은 서양 의학에 관심이 많아 여러 저술을 남겼다. 1877년 부산에는 제생의원(濟生醫院)이라는 서양식

일본인 병원이 생겨 조선인들도 진료했다. 1883년에는 서울에도 일본공사관의원이 생겨 서양식 진료를 시작했다. 지석영은 종두법을 익힌 후, 1879년 역사적인 종두 시술에 성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고종과 조선 정부가 서양 근대 의학의 도입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1876년 문호개방 이후 국가 차원의 개화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 실천에 나섰는데, 이때 의료 근대화에도 주목했다. 1881년 일본에 파견한 조사시찰단을 통해 서양식 의료를 탐색했다. 이듬해에는 전통의학에 기초한 국립 의료기관이었던 혜민서(惠民署)와 활인서(活人署)를 폐지하여 국가 의료정책의 전환을 모색했다. 1884년 정부 기관지 『한성순보』를 통해 백성들에게 서양 의학 교육의 필요성을 알렸다. 같은 해 미국 감리회 선교사 맥클레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양식 병원 설립을 제안했을 때는 이를 허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갑신정변 때 알렌이 민영익을 치료한 사건이 서양식 국립 병원 설립의 촉매제로 작용한 것이다.

1885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 병원인 제중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갑신정변이 발생한 지 불과 4개월 만의 일이다. 갑신정변의 충격과 여운이 완전히 사라지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다. 더구나 한의사들, 혜민서와 관련되었던 사람들은 제중원 개원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도 제중원 개원은 매우 빨리 이루어졌다. 고종과 조선 정부가 서양식 국립 병원의 개원을 강력히 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885년 4월 3일, 통리교섭통사무아문에서는 서울의 사대문과 종각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문(榜文)을 붙이고, 한성부가 동네마다 이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 본 아문(本衙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시의원(施醫院) 한 곳을 북부 재동 본 아문 북쪽 두 번째 집에 설치하고 미국 의사 안련(安連, 알렌)을 초빙했으며, 더불어 학도(學徒)와 의약(醫藥) 및 여러 도구를 갖추었다. 오늘부터 매일 미시(未時, 오후 1~3시)부터 신시(申時, 오후 3~5시)까지 병원을 열고 약을 제공할 것이다. 이 의사는 학술이 뛰어난데, 특히 외과에 장점이 있어 한번 진찰을 받으면 신묘한 효과를 본다. 현재 본원에는 남녀가 기거할 방이 있으니, 무릇 질병이 있는 자는 와서 치료를 받도록 하라. 약값은 나라에서 지급할 것이다(『통서일기』 1, 1885. 2. 18).

이 방문은 조선 정부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서양식 국립 병원이 개원했음을 알리는 공식 안내문이었다.

제중원은 의료기관인데도 특이하게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산하에 설치되었다. 당시 정부 조직 편제상 오늘날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관서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외교통상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소속된 것은 특이한 일이었다. 그 이유는 당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외국인 교육자나 기술자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이다. 동문학, 박문국 등 대다수 신문물 도입 기관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관할에 속했는데, 제중원이 서양인 의사가 진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제중원을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는 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서양의 새로운 의학 지식과 의술을 도입하고 학습하는 기관으로 삼고자 하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로 조선 정부는 제중원 개원 1년 후 제중원의학당을 설치하여 조선인 양의사 양성을 모색했다.

1885년 4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문을 연 서양식 국립 병원의 처음 이름은 광혜원(廣惠院)이었다. 개원 후인 4월 12일에 지어졌다. 이 이름은 조선 초기의 제생원(濟生院)이나 1882년에 폐지된 혜민서, 활인서와 같은 조선시대 전통 의료기관의 이름을 계승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2주일 후인 4월 26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는 '광혜원'이라는 병원 명칭을 백지화하고 '제중원'이라는 새 명칭을 사용하고자 했다. 고종은 이를 즉시 재가(裁可)하여 병원 명칭으로 제중원을 소급 적용했다. '제중'은 『논어(論語)』에 나오는 '박시제중(博施濟衆)'의 준말로, '널리 베풀어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제중원은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홍영식의 집에서 개원했다. 홍영식의 집은 갑신정변이 실패한 후 국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어 있었다. 조선 정부는 그의 집을 제중원 부지와 건물로 내놓음으로써 별다른 노력과 비용이 필요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홍영식의 집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건물에서 북쪽으로 두 번째 집으로, 거리가 가까워 연락이나 감독 등 여러 면에서 편리했다. 흉가가 되어버린 홍영식의 집을 수리하고 개조하여 병원으로 꾸미는 작업은 3월 27일경 끝났다. 여기에 든 600~1,000달러의 비용은 모두 조선 정부가 부담했다(Allen, 1885). 이렇게 해서 '역적' 홍영식의 집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 병원인 제중원이 문을 열었다. 지금의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자리다.

제중원은 600평 남짓한 공간으로 외래 진료실, 수술실 겸 약국, 일반 병동, 외

과 병동, 여성 환자 전용 병동, 특별 병동을 두루 갖춘 소규모급 종합병원이었다. 모든 병실은 온돌방이었고, 40명 정도의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었다.

제중원은 혜민서와 활인서에서 행하던 일반 백성 진료, 또는 빈민 구호 사업을 승계했다. 가족이나 따로 의지할 곳이 없는 환자는 무료로 치료했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무연고자는 장례를 치러주었다. 따라서 일반 병원 운영비 외에도 빈민 진료와 장례를 위한 비용을 감당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호조와 선혜청에서 예전에 혜민서와 활인서에 지급하던 돈과 포목, 쌀 등으로 충당했다. 재정 측면에서도 제중원은 혜민서와 활인서를 잇는 기관이 된 셈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제중원 경비를 다 충당할 수 없었다. 1887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조선 정부는 제중원에 안정적인 재정 공급이 가능했다. 부산, 인천, 원산 등 개항장의 해관 수입이 안정되어가자, 조선 정부는 5월 20일 이 세 곳의 관세 3,000원을 제중원에 보내 운영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후 제중원 운영비는 1년에 3,000원으로 고정되었다(신동원, 1997: 84~89).

고종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이나 협판에게 병원장 격인 제중원 당상을 겸임시켰다. 그래서 온건개화파의 대표적 인사인 김윤식을 시작으로 민종묵, 남정철 등 외무 관료들이 제중원 운영을 총괄 지휘했다. 외국어에 능숙하고 서양 정세에 밝은 젊은 관리들은 제중원 주사로 발령받아 일했다. 특히 제중원 초창기에는 우리나라 최초 국립 영어 교육기관인 동문학의 우수한 학생들이 배치되었는데, 이는 고종과 조선 정부가 제중원에 거는 기대가 컸음을 알 수 있다(김상태, 2010: 131~139).

당시 우리나라에는 아직 서양 의술을 갖춘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고종과 조선 정부는 알렌에게 환자 진료를 맡겼다. 그 후 미국감리회의 윌리엄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미국북장로회의 존 헤론(John W. Heron), 캐나다 YMCA의 로버트 하디(Robert A. Hardie), 미국북장로회의 캐드월레이더 빈턴(Cadwallader C. Vinton), 올리버 에비슨(Oliver R. Avison) 등 선교사 겸 의사들이 제중원 의사로 고용되어 근무했다.

제중원에서 치료한 환자는 대체 얼마나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제중원 진료 실적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없다. 다만 알렌과 헤론이 제중원 개원 이후 첫 1년 동안의 진료 실적을 보고한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의 기록에 따르면, 제중원은 첫 1년 동안 1만 46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같은 시기 정부의 관보인 『한성주보』

의 기사를 근거로 추산하면 3,500~7,000명 정도 된다(『한성주보』, 1895. 12. 28; 신동원, 1997: 92~94). 제중원 초창기의 환자들을 보면, 일반 백성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걸인, 나병 환자부터 위로는 궁중의 귀인까지 조선의 전 계층이 망라되어 있었다. 여성 환자도 800명이 넘었다. 양반층은 주로 왕진을 요청했으며, 지방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도 적지 않았다.

1885년 4월 제중원 개원 후 제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대개 어떤 질환을 앓고 있었을까? 제중원에서 첫 1년 동안 치료했던 환자들의 주요 질환을 살펴보면 말라리아가 가장 흔했다. 소화불량, 각종 피부병, 성병(매독) 등도 많은 편이었다. 그밖에도 결핵, 나병, 기생충병, 각기병 등이 있었다. 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는 모두 150명이었는데, 팔과 다리 등의 절단 수술이 많았다. 괴사병 환자의 대퇴골 절제수술, 척추골 수술처럼 대수술도 있었다. 백내장 수술도 열 건이나 되었다. 입원 환자 중 폐렴 환자, 각기병 환자 등 일곱 명은 사망했다.

제중원에서는 개인의 질병 치료 못지않게 전염병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9월이 되면 콜레라 등의 전염병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오랜 장마, 오염된 식수, 비위생적인 하수도 사정, 일상생활에서 개인 위생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그 원인이었다.

1886년 7월 초순, 콜레라가 전국을 휩쓸었다.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수백 구의 시체가 성 밖으로 실려 나갔다. 들것 하나에 시체 세 구가 한꺼번에 실려 나가거나, 심지어는 시체 다섯 구를 운반해서 얕은 구덩이에 묻어버리는 모습도 흔히 목격할 수 있었다. 알렌은 고종의 윤허를 받아 반드시 물을 끓여 먹고, 유황을 태우며, 집 안팎을 청결하게 유지하라고 전국에 포고령을 내렸다. 정부 관리들도 알렌을 적극 지원했다. 하수도 주위나 집 주변에 석회를 뿌려 전염을 차단했다. 조선인들은 석회가 콜레라를 막는 데 효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저분한 도랑에 석회를 뿌렸다. 석회를 하얗게 바른 호로병을 콜레라를 쫓아 버리는 부적으로 여겨 문간에 매달아 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제중원에서는 황산, 아편, 박하, 고추 등의 혼합물로 약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다. 하루에 1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콜레라 약을 구하기 위해 제중원을 찾았다. 1886년 8월 27일경 콜레라가 자취를 감추었다. 이렇게 제중원 의사 알렌은 조선 정부에 여러 방역 조치를 내놓고, 제중원에서는 콜레라 약을 백성에게 제공하여 콜레라 예방과 퇴치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

2) '제중원의학당', 한국 최초 국립 의과대학

제중원 설립안에는 의학교 운영 계획이 있었으나 실행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알렌과 헤론 등 의료진이 제중원 환자 진료에 치중하느라 여념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조선 정부의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의학교 설립 논의가 더는 진전되지 못해서였을 수도 있다.

그러던 차에 미국감리회의 목회 선교사 아펜젤러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을 통해 고종에게 학교(배재학당) 설립 허가를 요청했는데, 고종은 열 명의 학생을 보내주겠다며 적극 호응했다. 이를 지켜본 알렌은 이때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는 곧장 의학교 설립 계획안을 작성했고, 고종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알렌은 제중원에 이어 의학교 설립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한 셈이다.

고종이 의학교를 승인한 것은 알렌의 요청도 작용했으나, 조선 정부는 근대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의학교 설립을 모색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에서 발간하던 『한성순보』를 보면, 1884년 4월 중국 신문의 논설을 인용해 "서양 의학은 외과술을 장기(長技)로 하는데 이 외과술은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군대에 꼭 필요하므로 각 항구에 서양 의학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총명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서국(西國)의 명의를 초청하여 가르치자"라는 제안이 실려 있다(『한성순보』, 1894. 1. 1). 이 무렵 조선 정부의 외교와 재정 문제를 주관했던 묄렌도르프도 조선 정부가 운영하는 의학교 설립 계획을 갖고 있었다. 알렌도 갑신정변 발발 전인 1884년 10월 미국북장로회 해외선교 본부 총무인 프랭크 엘린우드(Frank F. Ellinwood)에게 편지를 보내 "조선인 관리들이 일본처럼 의학교 설립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근대 인재를 키우려는 움직임에서 양의를 양성하는 일이 빠질 수는 없었다. 양의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 의학교의 설립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고종이 알렌의 제안을 신속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고종은 알렌이 물리, 화학, 해부 장비에 관한 견적서를 올리자 곧바로 이를 윤허하고, 조선 정부는 알렌에게 250달러를 선지급했다. 조선 정부는 고종의 명을 받들어 제중원 바로 북쪽에 위치한 한옥을 매입하고 수리하여 교사(校舍)로 사용하도록 했다. 교사는 제중원만큼이나 큰 규모로, 크게 세 동으로 이루어졌다. 큰 건물에는 강의실과 화학 실험실을 마련했고, 작은 두 건물은 학생들의 숙소로 사용하도록 했다.

1886년 3월 29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서양 의학 교육기관이 문을 열었다. 이

른바 제중원의학당이 그것이다. 강의는 제중원 의사인 알렌, 헤론과 목회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담당했다. 언더우드는 미국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공부했고, 조선말을 가장 잘했기 때문에 영어와 물리를 맡았다. 알렌은 화학, 헤론은 의학 실무를 강의했다.

1886년 3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8도 감영에 관문(關文, 조선시대에 동등한 관부 상호 간 또는 상급 관부에서 하급 관부로 보내던 공문서)을 내려보냈다. 각 도에서 열네 살에서 열여덟 살의 총명한 학생 서너 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지체와 문벌을 따지지 않겠다고 천명하며 학생 선발을 독려했다[『구도사도관초(九道四都關草)』, 1886. 1. 5]. 각 도 감영에서 추천한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 모두 16명이 선발되었다.

4개월 후에 12명만이 본과에 진출했다. 본래 매년 12명씩 선발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1887년 말에 한 번 더 학생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헤론이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제중원의학당이 다소 등한시되어오다가 고종이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어명을 내려 새 학생들을 보내고 기존 재학생들을 적절하게 지원했다고 한다.

제중원의학당 학생들은 영어, 물리, 화학, 해부 등 기초 과목을 공부했고, 나아가 약을 조제하는 법, 의료 기구를 다루는 법, 환자 간호법 등을 배웠다. 수업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 휴일 외에는 제중원의학당과 학생 숙소를 떠나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다. 성적 우수자는 표창을 했고, 중도 퇴학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과 교수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주사 벼슬을 받았다.

의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1886년 3월 29일 개교 당시 입학한 16명의 학생 가운데 7월 말에 본과생으로 진입한 학생은 12명이었다. 조금이나마 입학 당시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학생은 진학순과 이진호뿐이다. 진학순은 제중원의학당 입학 바로 전 해인 1885년 의과(醫科)에 합격했다. 7대조부터 부친까지 모두 의과에 합격했으며, 그중 네 명은 내의(內醫)로 활동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한의사 집안에서 성장한 셈이다. 그런데 진학순은 개인의 의지인지, 집안의 독려인지, 정부의 강권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제중원의학당에 입학해 서양 의학을 배우고자 했다. 이를 통해 당시 사회적으로도 이미 서양 근대 의학 수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김상태, 2010: 273).

이진호는 1882년 16세 때 무과에 급제했다. 그러나 무관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듬해에 정부가 설립한 동문학에 입학했다. 그리고 1886년에는 제중원의학당에 입학했다. 무관, 문관(통역관), 양의까지 그의 청년기 진로는 매우 복잡했다. 자신의 적성을 잘 몰랐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사회적인 출세에 민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제중원의학당 학생들이 어떤 신분에 속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조선시대에 의원이 중인직에 속했고,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생도들은 대개 중인층에 속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진학순의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한의사 집안 출신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양 의학을 배우기 위해 입학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개화에 대한 신념을 가진 청년들로서 국내외 정세 변화에 가장 민감한 중인, 특히 역관 집안 출신이 많았을 것이다. 또한 시대의 변화를 읽어 서양 의학보다는 미국인 교사들의 수업과 대면을 통해 영어를 배워 관직을 얻으려는 학생들도 있었을 것이다.

본과생 12명 중 나중에 양의로 성장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1890년경에는 제중원의학당의 의학 교육이 아예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중원의학당의 의료인 양성은 중도에 흐지부지되어 실패로 끝난 셈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초창기 교수진인 알렌, 헤론, 언더우드가 제중원의학당에서 이탈하면서 교육 내용이 예비 과정 수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알렌은 1887년 7월경 제중원에서 물러나 외교관으로 직업을 바꾸었다. 헤론은 1887년 하반기부터 제중원 환자 진료와 개인 병원의 외국인 진료 때문에 강의를 맡지 않았다. 이로써 1887년 하반기부터 의사의 강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공동 창립자인 언더우드도 선교 사업차 종종 지방 전도 여행을 다녔고, 그 기간 동안에는 강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제중원은 전임 교사 없이 육영공원 교사로 근무하던 호머 헐버트 등이 대신 강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의학 수업을 할 만큼의 실력은 없었기에 영어와 인문학, 자연과학 등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데 그쳤다. 두 개 반의 수업 시간도 하루 2시간에 불과했다. 언더우드는 1899년 7월 뉴욕 선교 본부의 엘린우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중원의학당을 '의예과'라고 지칭하고, 그마저도 시기상조였다고 평가했다. 제중원 의사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Lillias Horton Underwood)도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 견문록』에서 제중원의학당에 대해 "장차 세워질 의과대학의 주춧돌이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정식 의학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 2008: 14).

둘째, 학생들의 학구열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알렌과 헤론의 언급에 따르면 개교 초반 학생들은 영어도 웬만큼 알아듣고, 학습 열기도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이는 언어 장벽에 부담을 느꼈거나 서양 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중도 포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세가 목표였던 사람들은 다른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학습 열기가 떨어지게 된 데는 조선 정부도 한몫을 했다. 정부는 제중원의학당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통역관으로 발탁해 갔다. 제중원의학당은 의학교였지만, 영어 교육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조선에 입국해 활동하는 외국인 교사와 고문이 늘어남에 따라 통역관 수요가 급증했다. 미국감리회에서 운영하는 배재학당 학생도, 미국북장로회에서 운영하는 고아원 학교(훗날의 경신학교)의 학생도 통역관으로 뽑혀 가던 시절이었다.

셋째, 학생들이 제중원의학당에서 이탈하게 된 데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다. 1889년 제중원의학당에 기독교를 믿는 학생이 생겼다. 그는 학우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려 했다. 그러자 학우 네 명이 제중원 원장 역할을 맡고 있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협판에게 기독교인과 함께 공부할 수 없다고 한 일이 발생했다. 이 협판은 기독교인이라서 나쁜 점이 무엇이냐고 되묻고는 그와 함께 공부할 의사가 없다면 제중원의학당을 떠나도 좋다고 했다. 그러자 몇몇 학생이 제중원의학당을 떠났다. 교사들이 기독교 선교사이기 때문에 배어나올 수밖에 없는 종교 교육에 대해서 거부감이 컸을 수도 있다.

넷째, 조선 정부의 재정난을 들 수 있다. 1889년 조선에 기근이 들어 쌀이 부족해지고, 쌀값이 폭등했다. 재정난에 빠진 정부는 군인들에게 4개월째 녹봉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제중원도 여러 달 예산이 없었다. 돈이 없는데 의학당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 장래가 밝지 않으니 학생들이 의학 수업에 열중할 수 없고, 정부 또한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든 개인 차원에서든 새로운 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그것이 서양의 의술이었으니, 여러 가지로 무리가 많았을 것이다

(김상태, 2010: 238~243).

1894년 겨울, 제중원이 문을 연 지 9년 5개월 만에 고종과 조선 정부는 에비슨의 요구를 수용하여 미국북장로회에 제중원 운영권을 이관했다. 조선 최초의 서양식 국립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은 어디로 가고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 제중원 운영권 이관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94년이라는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94년은 우리 역사에서 파란만장한 해였다. 전라도에서 시작된 동학농민전쟁, 그로 인해 조선에서 시작된 청일전쟁,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갑오개혁. 세 사건 모두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국제관계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대사건들이었다. 특히 1894년 7월 23일 새벽,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린 사건은 고종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종은 위풍당당한 군주의 모습을 지킬 수 없었다. 국왕으로서의 자존심과 권위에 큰 타격을 입고 자연인으로서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아야 했다. 조선 정부도 온전한 정부로서의 권위와 기능을 상실한 채 외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과 조선 정부가 설립한 제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의료선교사 에비슨의 요청을 수용해 미국북장로회에 제중원의 운영권을 이관했다. 일본이 국정을 장악한 상황에서 제중원을 일본에게 빼앗기는 것보다는 미국북장로회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구나 일찍부터 미국이야말로 약소국 조선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라고 기대했던 만큼, 미국에 도움을 청하기에는 제중원 운영권 이관이 유리한 카드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김상태, 2010: 266~270)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 에비슨에게 제중원의 위탁 운영을 맡긴 것이지 소유권 양도가 아니었다. 에비슨이 향후 제중원 개·보수에 사용한 비용을 조선 정부가 지불하기만 하면 제중원의 모든 자산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 근거다. 그리고 1904년 에비슨 등이 제중원을 떠나 세브란스병원을 개원하자, 이듬해 대한제국 정부는 개·보수 비용을 지불하고 제중원 부지와 건물을 환수했다.

제2장

1890~1900년대 관립 고등교육기관의 발달: 국립서울대학교 각 단과대학의 시원

제1절 일본의 '내정간섭'과 갑오개혁

1) 청일전쟁과 일본의 조선 침략

1894년 발발하여 1895년 종결된 청일전쟁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청국과 일본이 각축을 벌인 국제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소위 '탈아입구(脫亞入歐)'를 달성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급격히 제고되었다. 그리고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여 군사적·경제적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반면 베트남, 조선 등 전통적인 조공국들을 보호국화하여 중화사대질서를 근대적인 식민체제로 만들고자 했던 청국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조선은 청일전쟁의 결과 청국의 간섭과 국내 보수파의 견제를 일소하고 적극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되었으나, 일본의 노골적인 침략에 직면해야만 했다.

19세기 후반 청·일 양국은 류큐(琉球, 지금의 오키나와), 타이완(臺灣), 조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거듭했다. 특히 조선과 관련해서는,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등 구한말 한국사의 중요한 사건 때마다 청국과 일본은 크고 작은 충돌을 거듭하며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해 왔다.

조·청·일 관계 문제의 핵심은 청국을 중심으로 조선을 포괄하며 동아시아 세계에 형성되어 있던 중화사대질서였다. 이 질서 아래 조선과 일본은 형식상으로나마 청국의 신하 국가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스스로 황제국을 선포하며 중화사대질서에서 벗어났음을 선언하고, 서구 열강에 대한 청·일의 공동 대응을 약속하며 청국과 대등한 독립국으로서의 조약을 체결했다(彭澤周, 1969: 24~32).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1870년대 조선은 일본과도 독립국가 사이의 근대적 외교관계를 체결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었다.

1876년 체결된 병자수호조규는 조선과 일본이 대등한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로써 조선은, 청국과 일본 사이에서 복잡한 국제법적 논쟁을 감수해야만 했다. 일본은 병자수호조규를 통해 조선과 청국 사이의 전통적인 중화사대관계를 단절시켜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고자 했다. 반면 청국은 중화사대질서를 더욱 강화시켜 청국과 조선과의 관계를 근대적인 속국(屬國) 혹은 보호국 관계로 재설정하고자 했다. 그러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계기가 바로 임오군란이었다. 대원군의 지시를 받은 구식 군인들의 쿠데타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에 파견된 청국 군대는 진압과정에서 대원군을 불법적으로 청국에 압송했고, 진압이 완료된 다음에도 계속 주둔하면서 조선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조선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라는 불평등한 협약을 강요당했다. 이후로 조선은 정치적·경제적·외교적·군사적으로 청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구선희, 1999: 86).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선은 청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을 비롯한 열강과 수호조약을 체결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독립국의 지위를 공인받고자 했다. 1883년 보빙사 활동을 통해 미국 사회에 조선이 청국과는 별개의 독립국임을 알렸고, 1887년에는 박정양(朴定陽)을 전권공사로 임명하여 미국에 주재시키는 한편 유럽에도 전권공사를 파견했다(정경민, 2012: 9). 또한 청국과 북만주 및 연해주 지역에서 계속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었던 러시아와 접촉하여 1884년 조러수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을 상호 견제해 조선이 외교적으로 자주(自主)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다(민경현, 2008: 69~70).

한편 일본은 병자수호조규를 이용해 끊임없이 조선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조선을 두고 청국과 계속 경쟁해왔다. 임오군란 당시에는 하나부사 요시토모(花房



[그림 1-2-1] 청일전쟁 당시 인천에 상륙 중인 일본군. 1894년 *The Illustrated London News* 게재

義質)에게 병력을 이끌고 조선에 가서 직접 담판하여 청국의 종주국 지위를 부인하고자 시도했다. 이것이 실패하자 일본은 1882년 8월 30일 조선과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을 체결하여 조선의 수도에 병력을 주둔할 권한을 획득했다. 임오군란 이후 조선주재 일본공사로 부임한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는 군란 당시 일본공사관 피해액 중 미상환액 40만 원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조선에 청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제안하기도 했다(유영익 외, 2000: 30).

1884년 발생한 갑신정변은 조선의 급진개화파가 청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한 쿠데타지만, 조선주재 일본공사관은 그 기획 단계부터 김옥균 등 주도 세력과 공모하며 쿠데타를 지원했다. 그러나 갑신정변의 실패로 조선 정계 안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후 동학농민전쟁의 발발로 조선 내 상황이 일변하기 전까지 청국의 우위가 유지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전라도 지역에서 시작되면서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농민군을 독자적으로 소탕할 수 없었던 조선 정부는 친청파였던 민영휘(閔泳徽)를 통해 청국에 군사원조를 요청했다.[1] 한편 1880년대

1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조선 정부는 처음부터 청군 파병 요청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정부 안에서 파병요청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민영휘는 위안스카이(袁世凱)의 심복이었으며, 위안스카이는 민영휘를 만나 원군의 파병을 강력히 주장했다. 고종은 위안스카이가 현지에 가서 직접 병력

부터 청국과 군사적 대결을 벌일 것을 상정하고 군비를 확충해온 일본은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국이 군대를 파견할 것을 탐지하고 동일하게 조선에 파병할 준비를 했다(陸奥宗光, 1994: 36, 54~55). 그 결과 1894년 5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2,000여 명의 청군이 아산만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며칠 전인 5월 2일, 일본은 약 7,000~8,000명의 대병력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공사관 및 한성 내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사관 수비대에 해군 400명을 5월 7일 서울에 주둔시켰으며, 13일에는 청국군의 두 배를 넘어서는 약 4,500명의 일본군이 인천과 서울 사이에 집결했다(유영익 외, 2000: 40).

뜻밖의 상황에 당황한 조선 정부와 농민군은 청 · 일 양국 군대의 공동 출병에 위기감을 느끼고 5월 7일 전주화약(全州和約)을 체결하여 내전을 잠시 중단했다. 이를 근거로 조선 정부는 청국군과 일본군에게 철군을 요청했다. 청국 정부는 조선의 제안에 동의했으나 일본 정부는 조선 안에서의 군사 행동을 중지할 생각이 없었다. 이에 〈병자수호조규〉 내의 '독립국' 조항을 들어 조청 간 종속관계에 대한 조선의 입장을 추궁하는 한편 6월 1일 조선의 내정 문제가 국제적인 분쟁을 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조선 정부에 '내정개혁안'을 제시하고 10일 이내에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 정부는 "우선 일본군을 철수한 후 조선 정부 스스로 개혁을 시행하겠다."라고 답하며 일본 측의 개혁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의 대응과는 무관하게 조선 내에서 군사작전을 추진할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었다. 6월 14일 일본 외무대신인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는 조선주재 전권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에게 "단호히 조치해나갈 필요가 있다. 어떤 구실을 사용해서라도 행동하라"고 지령했다. 그리고 17일 일본 대본영과 외무성은 선전포고 없이 군사 행동을 할 권한을 조선 파견군에게 허용했다(陸奥宗光, 1994: 103~104). 그리고 6월 21일, 오토리는 경복궁을 점거하고 조선 정부를 힘으로 장악했다. 일본의 조선침략정책이 만천하에 드러난 최초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6월 25일 풍도(豊島) 앞바다의 해전에서 청일 양군이 충돌하여 청군이 대패했으며, 7월 1일 양국이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청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을 지휘할 것이며 일본 군대가 개입할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수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휘하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종시대의 재조명』(이태진, 2000), 191~228쪽을 참조.

경복궁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일본공사관은 조선 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처음에 대원군과 손을 잡았다. 그러나 오토리가 6월 25일 내정개혁, 즉 갑오개혁 추진의 모체가 되는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발족하고 김홍집, 유길준 등에게 개혁 작업을 맡기면서 대원군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간여하게 되었다(杉村濬, 1986: 12). 이로써 군국기무처라는 개혁 추진 기구를 통해 조선의 내정을 일본이 장악하게 된 것이다.

7월 20일 일본은 조선과 〈잠정합동조관(暫定合同條款)〉을 체결했다. 이 조약의 제1조는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가 내정 개혁을 희망하며 조선 정부도 개혁이 급선무임을 알고 (일본 정부의) 권고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 각 조항대로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이로써 조선 정부는 일본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내정개혁을 추진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제6조의 "일본 정부는 평소 조선국을 도와서 독립과 자주의 대업을 성취하게 할 것을 희망하므로 앞으로 조선국의 독립과 자주를 공고히 하는 문제는 일의 적의성에 상관되므로, 따로 두 나라 정부에서 파견하는 관리들이 모여서 협의하여 대안을 결정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조선과 청국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한반도를 일본이 독점적으로 장악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 외에도 조선은 이 조약을 통해 경부·경인 간 철도부설권을 일본에 허가할 것을 약속하고 전라도 해안에 개항장을 추가로 제공하는 한편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과정에 대한 일체의 항의를 포기했다. 대신 일본은 조약 비준 후 경복궁에서 군대를 철군시켰다(『잠정합동조관』).

7월 26일 조선은 일본의 강요로 〈대조선대일본양국맹약(大朝鮮大日本兩國盟約)〉이라는 대청(對淸) 공수동맹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내외에서 일본의 군사작전에 대해 조선 정부는 적극 지원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군수 공출을 빙자한 일본의 조선 내륙 침략이 정당화되었다. 특히 일본의 압박으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포함한 조·청 간 외교 관계가 일체 단절된 상태에서 체결된 공수동맹은, 실질적으로 조선의 대청 선전포고와 같은 성격을 띤 것이었다(『대조선대일본양국맹약』).

청일전쟁의 분수령은 1894년 8월에 벌어진 평양전투였다. 풍도해전과 성환전투에서 패전한 청국군은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8월 중순 평양에 집결했다. 일본군은 곧바로 북상하여 8월 13일 평양성을 포위한 뒤 15일 총공격을 개시했다. 이 전투가 일본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사실상 한반도에서 청국 육군은 축출

되었으며, 일본군은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 다시 봉기한 농민군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1894년 일본군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최대 5만 명의 농민군을 학살했다. 이는 청일전쟁 당시 전사한 일본군(약 2만 명)이나 청국군(약 3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였다(이노우에 가쓰오, 2014: 145~155).

8월 17일 서해 압록강 하구에서 일본의 연합함대와 청국의 북양함대가 벌인 해전에서 일본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고 이후 서해의 제해권 또한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후 일본군은 9월 24일 압록강을 건너 중국 영토를 공격했으며 10월 8일에는 다롄(大連), 22일에는 뤼순(旅順)을 점령했다. 이 시점에서 청일전쟁은 사실상 일본의 승리로 종결되었으며, 1895년 3월 23일 시모노세키(下關)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청일전쟁은 완벽한 일본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한 뒤, 조선 정부에 대한 압박을 보다 강화할 것을 결정했다. 오토리가 조선의 내정개혁에서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당시 일본 정계 내 거두였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대신 파견했다. 9월 26일 조선에 부임한 이노우에는 일본인 고문을 조선 정부에 보내 내정에 간섭하는 한편 철도부설권 등 조선의 각종 이권을 장악해갔다. 또한, 내정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조선 정부가 일본 정부에 300만 엔의 차관을 강제로 빌리게 함으로써 조선 정부의 예속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노우에의 조선침략정책은 순탄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우선 김홍집, 유길준, 박정양 등 군국기무처 창설 당시부터 조선의 '내정개혁'을 담당했던 이들뿐만 아니라, 이노우에가 조선 정부를 장악하기 위해 데리고 온 박영효(朴泳孝), 서광범(徐光範) 등 갑신정변 망명자들조차도 이노우에의 조선 정부 장악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다. 또한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을 견제하고자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제휴해 나갔으며 이는 1895년 3월 23일 소위 '삼국간섭'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정부에 대한 이노우에의 장악력은 계속 축소되었으며 결국 7월 29일 일본 정부의 명령으로 공사직을 그만두고 귀국하게 되었다. 이노우에의 후임으로 조선 주재 일본공사에 임명된 미우라 고로(三浦梧樓)는 대조선 강경론자로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 지배를 주장했던 인물이었다. 그가 조선 정부 내에서 친러 세력을 축출하고 일본의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을미사변을 일으키면서 조·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최문형 외, 1992: 44~50).

2) 갑오개혁의 역사적 의의

갑오개혁은 넓은 의미에서는 1894년 6월 군국기무처 설치부터 1896년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근대적 개혁을 총칭한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갑오년, 즉 1894년 군국기무처가 활동했을 당시 시행된 개혁을 말한다. 갑오개혁의 역사적 의의는 그 '좁은 시기의 갑오개혁'에서 한층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가 주도했다.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210건에 달하는 의안을 발표하여 개혁을 주도했다. 개혁안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행정, 군사·치안, 교육, 사법 등 전 분야를 망라한다. 그중에서 특히 신분제 철폐, 근대적 보통교육과 전문 관료 교육의 시행, 근대적 사법제도 확립, 독립 외교 구체화, 지방제도 개혁 및 조세행정의 효율화, 화폐제도 개혁, 경찰 권력의 독립과 일원화 등은 조선의 근대 지향 개혁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며 전면적인 성과였다. 그런 점에서 갑오개혁이야말로 한국 근대의 시초라는 주장도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천관우, 1954: 24).

그러나 이 개혁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의한 폭력적인 강요를 계기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타율성이 지적되어온 것도 사실이다(왕현종, 2005: 400). 예를 들어,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기관인 군국기무처부터 조선 주재 일본공사관 직원인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濬)가 오카모토 류노스케(岡本柳之助), 유길준 등과 협의하여 설립한 것이다.

> 나는 … 신정부 조직에 앞서 평의회를 만들고 그 평의회에서 모두의 의견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를 동지들과 상의했더니 모두 동의하므로 공사관에 돌아가 오토리 공사께 말씀드렸다. … 26일 오전 11시 왕궁에 가서 대원군을 배알하고 모두의 의견을 통일하기 위한 평의회를 만들 필요성을 말하자, 대원군께서는 굳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다. 이에 돌아가 다시 의논하여 의원으로 적합한 사람 등을 찾아, 다음날 27일 오전 11시 왕궁에 가서 대원군께 말씀드리자 대원군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여, 명칭을 '군국기무소(軍國機務所)'로 하도록 명하셨다. 이날 김굉집(金宏集, 김홍집 - 역자 주)이 영의정으로 임명되는 동시에 군국기무소 총재로 임명되었다(杉村濬, 1986: 62~63).

이후 군국기무처는 스기무라 후카시의 주장에 따라 일본의 원로원 혹은 추밀원을 모델로 하여 설치되었다. 그리고 일본 측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재의 지명에 따라 상임 기초위원 약간명을 두되 군국기무처 회의에 상정할 의안(議案)은 미리 기초위원이 스기무라 서기관과 오카모토 류노스케 등과 협의를 거쳐 원안을 작성하여 총재가 회의에 상정하는 방법을 취했다(이나바(稻葉) 쓰기오, 2006: 7). 또한, 일본공사관 서기생(書記生) 시오카와 이치타로(塩川一太郎)가 가낭청(仮郎廳, 임시 실무직 관료 - 필자 주)으로 총재를 보좌했다. 이처럼 군국기무처의 정책 의결 구조는 철저히 일본의 감시와 통제 아래 진행되도록 기획되었다.

갑오개혁의 실제 개혁 내용에도 그러한 타율성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 군국기무처 설치 이후 일본이 제일 공을 들여 추진한 안건은 조선을 중화사대질서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었다. 6월 25일 군국기무처가 설치된 지 3일 뒤인 6월 28일부터 의안을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그중 하나가 "청국의 연호(年號)가 아닌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사용할 것"이었다. 그리고 같은 날 "청국과의 조약을 개정한 뒤 특명전권공사를 각국에 파견할 것"을 발표했다[『의안(議案), 칙령(勅令)』, 1894. 6. 28].

이러한 조치는 고종이 청국의 견제를 배제하고 주권 국가로서의 외교권을 확립하기 위해 보빙사 파견, 박정양 주미공사 파견 등 기회를 얻을 때마다 시도했던 일이다. 그러나 군국기무처는 청일전쟁 개전과 함께 설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국과의 관계를 급격히 단절한 것은 곧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청일전쟁 선전포고가 발표된 7월 1일 군국기무처는 "이번에 일본정부에서 출력(出力)하여 우리 고유의 자주를 보인(保認)하였으므로 급히 전권대사를 파견하여 후의를 치사하고 인호(隣好)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이라는 의안을 내어, 일본의 조선 출병을 변호하는 한편 전권대사를 파견하여 대일 관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의안, 칙령』, 1894. 7. 1). 그리고 상술한 것처럼 7월 26일에는 〈대조선대일본양국맹약〉이라는 공수동맹을 체결하여 사실상 조선을 일본의 병참기지로 만들었다.

갑오개혁의 타율성은 개혁의 파급력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청일전쟁 와중에 농민군을 비롯한 조선 민중은 일본군의 침략에 완강하게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군이 조선에 끼친 피해도 막대했다. 이로 인해 민간에서는 반일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상황이었다(유영익 외, 2000: 48~51). 비록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

로 끝나고 일본의 영향 아래 조선의 내정개혁이 시작되었지만 이에 대한 조선 조야(朝野)의 반응이 호의적이기는 힘들었다. 갑오정권은 일본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개혁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군을 적대시함으로써 조선의 농민 대중들에 대한 설득력을 상실했다. 이는 갑오정권의 개혁 방향이 상당 부분 시대적 정당성을 갖고 있음에도 결국 정권이 조기 붕괴되어 개혁에 차질을 빚고 마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선의 정치개혁에 관한 개혁안 또한 일본의 영향이 강하게 개입된 부분이었다. 군국기무처 의안에 따라 6월 30일에 '의정부관제(議政府官制)', 7월 18일에는 '궁내부관제(宮內府官制)'가 별도로 제정되었다. 본래 조선의 정치제도에서는 국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연청(經筵廳, 국왕 교육기관), 승정원(承政院, 국왕 비서기관), 홍문관(弘文館, 국왕 자문기관), 사간원(司諫院, 국왕 견책기관) 등의 기구와 일반 행정기구가 특별한 구분 없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왕실 전담기구를 따로 '궁내부'라는 이름으로 묶어 다른 행정기구와 구분한 뒤 궁내부 관료와 여타 기구의 관료는 서로 겸직을 금한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국왕권을 궁내부 안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의안, 칙령』, 1894. 6. 30, 7. 1). 그리고 '명령반포식(命令頒布式)'을 발표하여 모든 법령은 총리를 위시한 내각 대신들의 초안(草案)을 통해서만 제정되도록 했다(『의안, 칙령』, 1894. 7. 12). '문관수임식(文官授任式)'을 통해 중하급 관리에 대한 임명권을 국왕이 아닌 대신들이 독점했다(『의안, 칙령』, 1894. 7. 14). 또 왕실에 바치는 진공(進供)과 왕실의 전매품이었던 홍삼 경영을 탁지부(度支部,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도록 하여 국왕의 재정권도 박탈했다(『의안, 칙령』, 1894. 7. 24, 9. 3). 이러한 요소는 12월 12일(양력 1895년 1월 7일)[2] 종묘(宗廟)에 서고(誓告)된 홍범(洪範) 14조[3]의 제4조에도 "왕실에 관한 사무와 나라 정사에 관한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키고 서로 뒤섞지 않는다."라는 형태로 반영되었다.

조선의 전통적인 통치제도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국왕 전담기구, 왕실 전담기구, 일반 행정기구가 섞여 있어 상하 명령 체계가 불분명하고 역할이 중복되어 비능률적이었다. 또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

2 조선은 1895년부터, 일본은 1872년부터, 중국은 1912년부터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양력을 괄호 속에 표기했다.

3 홍범 14조는 한글, 국한문, 한문의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원문은 국회도서관(『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p. 133~137).

미비했기 때문에 고종은 1881년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을 시작으로 별치기구(別置機構)들을 설치하여 개혁 작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행정의 충돌과 낭비가 발생했다. 형식상 국왕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갑오개혁의 정치개혁안을 조선 정치 구조의 근대화, 효율화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천관우, 1954: 24).

그러나 1894년 6월 군국기무처가 설치된 이후 조선이 처한 상황은 청일전쟁과 경복궁 점령, 이 두 사건으로 압축될 수 있다. 그러한 초유의 비상사태 속에서 국정의 구심점인 군주권(君主權)을 축소하고 신권(臣權)을 강화하는 조치는, 국민에게 개혁안을 납득시키는 설득력과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고종의 군주권이 제한되었던 1894년에는 청일전쟁 와중에 발생한 일본의 조선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나, 1894년 12월 '홍범 14조' 발표 이후 군주권이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는 미국과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외교 교섭을 벌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삼국간섭을 이끌어내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갑오개혁이 한국 민족사에서 전혀 무의미했다고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의 개혁 방향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 당시 대조선(對朝鮮) 외교를 주도한 일본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는 조선의 내정개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나는 이전부터 조선의 내정개혁이라는 것은 정치적 필요(일본의 조선 침략 - 필자주)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의협심에서 십자군을 일으킬 필요는 조금도 없기 때문에 조선의 내정개혁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나라의 이익을 주안으로 하여, 조선의 내정개혁 때문에 우리나라가 손해를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내정개혁을 논하면, 원래 조선의 내정개혁이라는 것은 일본과 청국 사이에 복잡하게 엉켜 풀기 힘든 난국을 조정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정책 중 하나지만, 상황이 일변해 결국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맡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처음부터 조선의 내정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고 또한 조선 같은 나라가 만족할 만한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陸奥宗光, 1994: 34).

이처럼 일본은 조선에 내정개혁안을 제시했음에도 실제로 그것을 추진할 의지나 준비는 부족했다. 대신 군국기무처에서 주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김홍집과 유길준이었다. 특히 유길준은 영의정이자 군국기무처 총재로 임명된 김홍집의 신뢰를 받아, 일본공사관과 대원군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사실상 군국기무처 회의의 추진 세력으로 평가받았다(田保橋潔, 1944: 41).

한편 갑오개혁이 실시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정부 안에서도 위기상황에 반응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정부는 노인정회담이 결렬된 뒤 6월 11일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여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교정청의 운영이 무산되자, 고종은 유배되었던 여러 죄인과 수감되어 있던 경죄수(輕罪囚)들을 석방하도록 지시했다(『고종실록』, 1894. 6. 21). 이 석방 조치는 보수파와 개화파를 아우르는 것이었는데, 특히 온건개화파이자 친청파 관료였다가 여흥 민씨 집단과 충돌하여 실각했던 김윤식을 석방하여 다시 정부에 불러들인 것이 주목된다.

그리고 다음날인 22일에는 신정희(申正熙), 조희연(趙羲淵) 등 개화에 호의적이었던 중견 관료, 김가진(金嘉鎭), 유길준 등 일본 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신진개화파, 어윤중(魚允中), 박제순(朴齊純) 등 주로 대청 교섭에서 큰 역할을 했던 온건개화파, 박정양 등 전권공사 활동을 통해 미국 정부와 교섭했던 친미파 등 다양한 인물을 요직에 등용했다(『고종실록』, 1894. 6. 22). 갑오정권의 형성 및 개혁 추진 과정에 일본의 영향이 개입된 것은 사실이나, 그 정권의 성격을 단순히 '친일'로 규정할 수는 없다.

개혁안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상술한 것처럼 조선에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일본이 개입하여 추진한 정책도 있었다. 그러나 군국기무처가 제출한 의안 중 사법권의 독립, 재정개혁, 신분제 철폐, 조세의 금납화(金納化), 입헌군주정 등 그 진보성으로 주목받는 개혁안들은 고종을 위시하여 조선에서 개화를 지향하던 집단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한 것이었다. 조선의 개화파들은 『한성순보』, 『한성주보』 등 근대적 신문을 통해서 서구의 문물과 제도를 조선 사회와 공유해 왔다.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이나 박영효의 '건백서(建白書)' 등에서 피력된 내용들은, 개화파들의 사상적·정책적 지향이 갑오개혁으로 계승되었음을 보여준다(이나바(稻葉) 쓰기오, 2006: 7~13).

동학농민군은 조선 정부와 전쟁을 벌이던 와중에 천민에 대한 대우 개선, 양반

들의 불법적 특권 박탈, 무명잡세(無名雜稅) 폐지, 토지 평균 재분배 등 농민층의 입장에서 지향하는 개혁안을 제기하는 한편 집강소(執綱所)를 통해 자치적으로 개혁을 수행하고자 했다.[4] 당시 동학농민군의 위세는 외세의 개입이 없었다면 정권 교체가 가능할 정도였다. 갑오정권은 동학농민군과 대립적 입장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농민층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요컨대 갑오개혁은 조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명백한 침략 의지에 영향을 받아 추진되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개혁안의 대부분은 개항 이후 조선의 개화파들이 축적한 지식이 정책화된 결과물이자 농민군의 요구가 집권층에 의해 수용된 것이었다. 실제로 1895년 을미사변과 1896년 아관파천으로 갑오정권이 붕괴되고 1897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이 수립된 뒤에도, 갑오개혁안의 대부분은 그대로 수용되었다. 이를 통해 구한말 근대화의 중요한 과정으로서 갑오개혁의 역사적 의의를 가늠할 수 있다.

제2절 1895년 '교육조칙(敎育詔勅)'과 근대적 교육개혁

1) 고종의 '교육조칙' 발표

(1) 을미개혁의 역사적 의의

1894년 청일전쟁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을 계기로 시작된 갑오개혁은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차 시기(1894. 7~12)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후 군국기무처가 설립되고 김홍집이 내각 총리대신에 임명되어 개혁 과정을 주도했던 시기다. 2

4 동학농민군의 개혁안은 '호남유생원정(湖南儒生原情) 8개조', '전라도유생등원정(全羅道儒生等原情) 14개조', '원정열록추도자(原情列錄追到者) 24개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으나,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5월 20일 전라감사(全羅監司) 김학진(金鶴鎭)에게 제출된 '12개조 개혁안'이다. 여기에는 문벌 타파, 인재등용, 탐관오리 척결 등 전통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과부 재가 허용, 노비 문서 소각 등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 '12개조 개혁안'을 기록한 『동학사(東學史)』라는 자료가 1940년 천도교인 오지영(吳知泳)이 집필한, 다분히 소설적 특징이 강한 저작이라는 점에서 그 진위가 논쟁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차 시기(1894. 12~1895. 7)는 군국기무처가 폐쇄되고 이노우에 가오루가 조선 주재 일본특명전권공사로 부임하며 박영효가 귀국하여 김홍집과 연립내각을 구성했으며, 3차(1895. 7~1896. 2) 시기는 이노우에 가오루가 경질되고 박영효가 시해 미수 혐의로 재차 일본에 망명한 이후 김홍집, 유길준, 어윤중 등이 내각을 주도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유영익 외, 2000: 8). 특히 2~3차 시기는 을미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1차 시기를 갑오개혁, 2~3차 시기를 을미개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갑오개혁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를 수행한 유영익 이후로, 이노우에 가오루와 박영효의 부임 이후 을미개혁이 시작되었다고 서술되어 왔다. 그 결과 을미개혁은 갑오개혁보다 더 타율성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 유영익은 이노우에가 고종과 첫 알현에서 조선 국왕과 정부에 대한 자문권까지 부여받음으로써 조선의 내정에 깊이 간여할 수 있는 최고 고문관 내지 외신(外臣)으로 자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 이노우에가 위안스카이(袁世凱)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유영익 외, 2000: 208). 갑오개혁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한 명인 왕현종 또한 이노우에가 동학난 진압 활동을 조선 정부에 대한 외교적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한편 동학난에 의한 조선 정부 재정 부족 상황을 이용해 차관을 강요하고 철도부설권을 획득해가는 등 경제적인 침략을 강화하면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고 보호국화를 추진했다고 평가한다(왕현종, 2009: 64~75).

그러나 왕현종의 표현을 빌어도 "당시 일본의 정책은 문자 그대로 보호국화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왕현종, 2009: 66). 특히 조선의 내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에는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새로운 법제를 제정하는 작업이 가능했으나 1894년 12월 이후 다시 권력의 중심이 내각 및 내각회의로 복귀되고 고종이 직접 정치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일본공사관이 조선 정부에 관여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상실한 것이다. 대신 이노우에는 각 부서에 파견된 일본인 고문관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영향력은 1905년 이후 나타난 2차 고문관 정치와 비교해도 그렇거니와 1894년 군국기무처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도 훨씬 후퇴한 것이었다.

특히 고종의 정치 복귀는 갑오개혁 직후부터 있었던 조선 정부와 일본공사관 사이의 정치적 갈등의 귀결이기도 하다. 상술한 대로 갑오개혁은 조선 내 개화세력들의 주체적 노력의 결과인 동시에 청일전쟁과 경복궁 점령 이후 일본이 조

선 내정에 관여하기 위해 요구한 '내정개혁'의 일환이기도 했다. 일본은 경복궁 점령 이후 청일전쟁의 책임이 내정에 실패하여 국제적 혼란을 초래한 조선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고종의 정치 관여를 저지하고자 했다. 실제로 군국기무처가 설치된 뒤 가장 먼저 제출한 개혁안은 의정부 관제를 개편하는 한편, 궁내부를 신설하여 왕실과 정부를 분리하는 것이었다(『의안』, 1894. 6. 28).[5] 나아가 모든 법률과 칙령은 총리대신 혹은 각 아문의 대신들만 기초할 수 있으며 국왕에게는 결재권만 허락되었고(7. 12), 궁궐을 엄숙히 한다는 명목으로 외전(外殿)에서만 업무를 보게 하여 사실상 고종의 정사(政事) 참여를 제한했다(7. 13). 또한 관리들의 임면권도 제한을 받아, 갑오개혁 이전 정3품 이상에 해당하는 칙임관(勅任官)들에 대해서는 추천권이 없이 비준권만 갖게 되었으며, 주임관(奏任官) 및 판임관(判任官)에 대해서는 비준권도 없이 보고만 받게 되었다(7. 14). 이처럼 1894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군국기무처를 통해 전격적으로 제정된 일련의 법안들은 고종의 국왕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행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압박이 조선 정부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철되지는 못했다. 새로운 정부 체제에 동의하지 않았던 관료들은 국왕의 비서기관이었던 승정원의 후신인 승선원(承宣院)을 통해 사직상소를 제출했고 고종은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 총리대신 김홍집, 탁지아문대신 어윤중, 학무아문대신 박정양, 중추원 판사 신정희, 공무아문대신 서정순, 농상아문대신 엄세영, 외무아문대신 김윤식 등 의정부의 핵심 구성원들이자 군국기무처 의원이었던 이들까지도 사직상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은, 개화파 관료들마저도 일본이 주도한 조선 내정개혁에 당혹해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 외에 친군통어영(親軍統禦營) 등 군무와 관련된 인사행정은 차후에도 계속 승선원을 통해서 처리되었다. 이처럼 조선 정부에 대한 고종의 지배력을 봉쇄하고 내정에 간섭하려 했던 일본의 시도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군국기무처의 개혁안들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노우에 가오루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

5 이때 발표된 의정부에 대해서는 세세한 절목이 다 마련되었으나 "궁내부는 중요하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직무만 분류하여 초안을 올린다"고 하며, 궁내부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이름만 거론되고 있다. 이는 군국기무처 의원들이 의정부 개혁안에 대해서는 군국기무처 설치 이전부터 충분히 숙고해왔으나 궁내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음을, 나아가 궁내부 관련 사안이 군국기무처 의원들의 제안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었던 것이다.

전임 공사였던 오토리 게이스케가 군국기무처라는 시설조직을 이용해 정부기구에 개입하려 했던 것과는 달리 이노우에는 본인이 직접 고종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각 관청에 고문관을 파견하여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노우에는 10월 23일 2차 내정개혁안 20조를 제의하는 한편, 1894년 11월 22일 고종의 정치적 경쟁자였던 대원군을 실각시켰고[6] 고종을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개혁 법안을 발표해 왔던 군국기무처도 21일 폐지했다. 요컨대 이노우에의 외신(外臣) 자처 및 고문관 파견은 고종의 국왕권 회복과 상호 교환 형태로 추진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한편 박영효, 서광범 등 과거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에 망명 중이던 소위 '급진개화파'들이 대거 조선으로 귀국하여 요직을 차지한 것을 지적하며 을미개혁의 타율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다(유영익 외, 2000: 206~213). 그러나 2차 내각을 주도했던 갑신정변 망명자들이 과연 김홍집이나 유길준 같은 이들보다 더 친일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박영효는 군부 내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이노우에의 의향에 반대하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거나 일본 정부의 조선 차관 조건이 너무 가혹함을 비판했고, 조선 철도 및 전신선 부설권을 일본이 독점하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등 독자적인 정책 노선을 걷고자 했다. 고종 또한 김옥균에 대한 가혹한 처벌에 비해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윤치호 등 갑신정변 주동자와 그 추종자들을 가능한 한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즉 기존의 통설과는 달리 을미개혁은 갑오개혁 당시에 비해 고종을 중심으로 한 조선 정부의 자주권이 도리어 확대된 상황에서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6 유영익은 대원군의 친청반일 활동을 강조하면서 대원군을 '항일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노우에의 대원군 축출을 항일 세력에 대한 탄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유영익 외, 2000: 211~212). 한편 왕현종은 대원군의 반일 성향에는 동의했지만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불법으로 청일전쟁을 감행했던 당시 조선 주재 일본공사인 오토리는 대원군에게 조선 정부에 대한 통수권을 맡도록 제안했고 대원군 또한 이에 수긍한 바 있다. 군국기무처의 개혁안이 너무 과격했기 때문에 결국 대원군과 오토리 사이의 제휴는 무산되었지만, 애초에 대원군은 자신의 아들이자 가장 중요한 정적이었던 고종을 배제하고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오토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므로, 그를 '항일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대원군이 갑오개혁의 어떤 내용에 저항하려고 했는가에 따라서 그 '항일'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단적인 증거가 바로 1894년 12월 12일(양력 1895년 1월 7일) '홍범 14조'와 '독립서고문'을 종묘에 아뢴 사건이었다. 갑오개혁이 일본에 의해 굴욕적인 내정 지적을 받는 와중에 일본군의 위협 속에서 출발했다면 을미개혁은 종묘사직에 그 시작을 알리고 한글로 백성들에게 취지를 공표하며 당당히 시작되었던 것이다. '독립서고문'과 '홍범 14조'는 박영효의 주도 아래[7] 유길준이 기초(起草)한 것으로 보이며(유길준, 1971: 4권, 205~208), 중화사대주의를 극복하고 독립국임을 선포하는 한편 국왕, 왕실, 정부, 민간의 개혁 방향을 총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대한제국기의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일제 강점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과 함께 광복 이전 대한민국의 헌정(憲政) 전통의 일부로서 적극적으로 평가된 바 있다(이승우, 2007).

(2) 갑오개혁 이후 교육개혁과 '교육조칙'

1894년 6월 25일 설립된 군국기무처는 일련의 개혁안을 제출하면서 갑오개혁을 이끌었다. 이때 조선의 교육정책, 교육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개혁안은 7월 3일 발표된 과거제 폐지였다. 군국기무처 의안에 따르면 "과문(科文)으로 선비를 뽑는 것은 조정에서 정해진 제도지만 형식적인 글로 실물에 밝은 인재를 등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과거 제도를 변통하도록 품주하여 재가를 받은 후에 별도로 선거조례(選擧條例)를 정할 것"(『고종실록』, 1894. 7. 3)이라고 하여, 당대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던 허문(虛文)인 과문(科文, 과거시험 응시 때 사용하던 문체)으로는 현실 정치에 유용한 인재들을 선발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7월 12일에는 관리들을 선발하는 규정인 '선거조례'와 관리들의 채용 및 승급 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인 '전고국조례(銓考局條例)'를 발표했다. '선거조례'에 따르면 관리로 선발되는 절차는 "조정과 민간의 관리와 선비, 서울과 시골의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따질 것 없이 품행이 단정하고 재주와 기술이 있고 겸하여 시무(時務)를 아는 사람"을 추천하여 "전고국에 보내 재능에 따라 시험을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학교를 널리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기 전에는 … 향공법(鄕貢法)에 의해 추천"한다고 했다. 즉 새로운 관리 선발 기준에 '시무를 아는 자'라는 기준을 추가하여 개화정책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관리의 필수 요건

7 박영효는 『일본외교문서』 21권, 문서번호 106번, 292~322쪽에 기재된 「박영효건백서(朴泳孝建白書)」에서 개혁 서고(誓告)를 제안한 바 있다.

으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설치하여 새로운 교육을 널리 시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전고국조례'에 따르면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에서 시행하는 과목은 국문(國文), 한문(漢文), 사자(寫字, 글쓰기), 산술(算術), 내국정략(內國政略), 외국사정(外國事情), 내정외사(內情外事) 등으로 규정하여 전통적 과거시험과는 완전히 다른 선발제도를 시행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 중 산술, 국제법, 정치경제학 등은 육영공원에서도 가르쳤던 과목으로, 조선 사회가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했던 새로운 교육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서 갑오개혁 추진자들이 구상하고 있었던 교육정책의 대강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군국기무처는 6월 28일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하면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학무아문을 설치했다. 전통적으로 교육과 외교를 담당했던 예조(禮曹)가 외무아문(外務衙門)과 학무아문으로 분리된 것이다. 이 중 학무아문의 주요 관제는 다음과 같다.

〈학무아문관제〉

1. 학무아문에서는 국내 교육, 학무(學務) 등에 관한 행정을 맡아본다.
1. 대신 1원, 협판 1원, 참의 6원, 주사가 18원이며, 아래와 같이 각 국을 분설한다.
1. 총무국. 미처 설치하지 못한 각 국의 서무를 맡아본다. 참의 1원, 주사가 2원인데 비서관을 겸임한다.
1. 성균관상교서원사무국(成均館庠校書院事務局). 옛날의 성인(聖人)들과 선현(先賢)들의 사당(祠堂)과 서적을 보관하는 등의 사무를 맡아본다. 참의 1원, 주사가 2원이다.
1. 전문학무국(專門學務局). 중학교(中學校), 대학교(大學校), 기예학교(技藝學校), 외국어학교(外國語學校)와 전문학교(專門學校)를 맡아본다. 참의 1원, 주사가 4원이다.
1. 보통학무국(普通學務局). 소학교(小學校), 사범학교(師範學校)를 맡아본다. 참의 1원, 주사가 4원이다.
1. 편집국. 국문 철자, 외국문 번역과 교과서 편집 등의 일을 맡아본다. 참의 1원, 주사가 4원이다.
1. 회계국. 본 아문에서 출납하는 재정 문서를 맡아본다. 참의 1원, 주사가 2원이다(『고종실록』, 1894. 6. 28).

관제에 따르면 학무아문 조직은 ① 총무국, ② 성균관 · 상교(庠校, 향교) · 서원(書院)사무국, ③ 전문학무국, ④ 보통학무국, ⑤ 편집국, ⑥ 회계국으로 구분된다. 이 중 사실상 민영(民營)의 성격이 강했던 서당을 제외한 전통 국립 교육기관이었던 향교와 성균관, 그리고 민영이긴 하나 사액(賜額)을 통해 국가 교육체제에 편입되었던 서원에 대한 관리는 성균관상교서원사무국으로 일원화되었다. 기구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교육기관을 총괄하는 조직이지만 실제 업무는 성인들과 선현들의 사당(祠堂)과 서적을 보관하는 등의 사무에 국한되어 있어 교육 기능은 상실한 상태가 되었다. 즉 갑오개혁 당시 조선 정부는 일시적이긴 하나 전통적인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8]

대신 보통학무국이 소학교와 사범학교, 전문학무국이 중학교, 대학교, 기예학교, 외국어학교, 전문학교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 기관들이 통괄해야 할 '학교'들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관제의 변화는 소학교를 통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교육과 중학교 이상의 중고등교육을 함께 추진하려고 했던 갑오정부의 정책적 지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 학제들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는 8월 2일과 9월 3일 발표된 고시문(告示文)이었다. 이 고시문을 기초한 사람은 학무아문이 설립된 이후 1895년 3월 25일 학부(學部)로 개편되기까지 학무아문대신을 역임한 박정양이었다(박정양, 1984: 4권, 373). 그는 1881년 조사시찰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시찰한 후 내무부,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등 개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1887년에는 조선 최초의 전권공사로서 미국에 파견되었으며 이때 미국의 교육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박정양, 1984: 6권, 612~613). 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차 고시문(1894년 8월 2일)

1) 소학교

- 목적: 모든 제도를 경장하는 때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

8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전통교육의 위상에 대해서는 본서의 제1부 제2장 제3절 중 "성균관과 향교의 근대화"를 참조.

- 대상: 7세 이상 남자 전체. 우선 경내(京內)에서 시행.
- 과정: 3년. 오륜행실(五輪行實), 진문(眞文, 한문), 수신(修身), 문자(文字), 우리나라 및 만국의 지지(地誌), 역사초보(歷史初步)

2) 사범학교

- 목적: 소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함.
- 대상: 15세 이상 20세 이하의 남자로 한문을 조금 아는 자 중에서 선발. 우선 경내(京內)에서 시행.
- 과정: 언문철자(諺文綴字), 국문기사(國文記事)·진문기사(眞文記事)·논설, 우리나라와 만국의 역사, 지리, 경제, 법률, 박물, 산수

3) 대학교 및 전문학교

- 차후 차례로 설치하려고 함.

2. 2차 고시문(1894년 9월 3일)

- 배움을 높이는[尊崇] 것은 군사(君師)이며, 이 배움을 가르치는[講明] 것은 종사(宗師).
- 나라의 백성이 많으니 한두 학교로 가르칠 수가 없다. … 뜻있는 사람이 자제를 가르쳐 키우려 하면 반드시 먼저 사숙(私塾)을 설치하고 본 아문에 와서 고하면 장차 학업의 차례를 일러주려 하며, 아울러 규칙 책자를 일일이 나눠줄 것.

1차 고시문은 학무아문 관제에서 언급된 신식 학교 중 우선 소학교, 그리고 소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양성할 사범학교를 설립할 것을 밝히고 있다. 소학교에서는 오륜행실 등 유교적 덕목 이외에 한문, 수신(修身) 등 전통적인 과목과 한글, 한국 및 세계 지리, 역사 등 새로운 학문을 함께 가르치도록 하고 있어, 박정양이 구상한 소학교 교육의 목표는 신구(新舊)의 학문적 소양을 겸비한 사람을 양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학교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박정양이 "이렇게 모든 제도를 경장하는 때에 즐거이 영재(英材)를 기르는 일은 제일의 급무(急務)이다(當此百度更張之時 樂育英材第一急務也)."라고 1차 고시문에 제시한 것을 근거로, 갑오정부의 소학교 정책은 어디까지나 인재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지 국민 양성을 위한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었다(김경미, 2009: 113). '소학교'라는 명칭은

유교 경전 중 『소학(小學)』에서 나왔으며 박정양도 고시문에서 소학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소학은 유교적 덕성을 갖춘 인재의 기초를 형성하는 관문[入德之門]이며 소학교 교육 또한 그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양, 유길준 등 갑오정부의 요인들은 미국 체류 경험을 통해 서구의 국민보통교육제도를 이미 숙지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정말 유교적 덕성과 실무적 능력을 겸비하여 개혁정책을 추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면, 7세 이상의 모든 남아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 대신 영특한 자제들을 선발하여 별도로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했을 것이다. 조선 정부는 육영공원 등을 통해 이미 그러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다. 따라서 박정양의 고시문에는 유교적 인재 양성이라는 『소학』 및 『대학(大學)』의 지향과 함께, 국민보통교육의 실시라는 보다 근대적인 목적이 혼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게 옳다.

한편 사범학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과목으로는 한글 철자(綴字), 한글 및 한자로 쓰여진 기사와 논설, 세계의 역사, 지리, 경제, 법률, 박물(博物), 산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기사와 논설'이란 쓰기, 읽기를 위한 교재를 의미하는 듯하며, 이는 전통적인 서당-향교-성균관 교육이 고대 유교 경전에 근거한 과문(科文)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던 데 반해, 박정양을 비롯한 갑오정권은 당대의 언어를 반영한 한글 및 한문을 교육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사, 지리, 경제, 법률, 산수 등은 육영공원 이후 조선의 개혁적 교육정책에서 이미 실시했던 과목이었다. 전문학교 및 대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고시문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사범학교를 통해서 고등교육과정이 지향할 바에 대해 일정 부분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1차 고시문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2차 고시문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학문을 권장하는 것은 군사(君師), 즉 왕이나 실제 교육을 행하는 민간의 종사(宗師)들임을 강조하고 가숙(家塾) 혹은 사숙(私塾) 등 사립 학교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서당, 가학 등 전통적인 조선의 교육 주체들을 포섭하려는 시도였다. 갑오개혁이 다분히 일본의 영향력 아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선 사회에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갑오농민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조선 제일의 곡창지대였던 삼남 지방에서의 조세 수입이 전무했기 때문에 조선 정부의 재정 상황은 매우 어

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갑오정부가 군국기무처를 통해 제출한 개혁 법안들은 대부분 재정 문제 때문에 좌초될 위기에 있었다.[9] 이는 농민전쟁과 외국 군대 주둔이라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 타율적인 계기로 시작되었다는 갑오개혁의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고종이 조선 정부의 전면으로 복귀하는 을미개혁 이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을미개혁은 답보상태에 빠진 조선의 내정개혁을 완료하고자 했던 이노우에 가오루와, 정치 일선에 복귀하여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고종의 합의 아래 시작되었다. 고종이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을 분리한다'는 군국기무처의 선언에 따라 정치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시작된 갑오개혁과는 달리 을미개혁은 1894년 12월 '홍범 14조'를 고종이 종묘에 서고(誓告)하여 그 정치적인 정당성을 조선 사회에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고종이 최초로 내린 조칙은 1895년 1월 29일 '문지(門地)를 불문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건'(『고종실록』, 1895. 1. 29)이다. 이는 '홍범 14조' 중 마지막 조항이기도 하며, 고종은 이 조칙에서 "사람을 등용할 때 문벌이나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사(士)를 구할 때에 조야(朝野)를 두루 살피는 일은 짐이 묘사(廟社)에 이미 서고(誓告)했다"고 밝히면서 덕행과 재주가 있고 현명하며 단정한 인사들을 추천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제도 실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선비들의 불안을 무마하는 한편, 국왕이 직접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선포한 일성(一聲)이라고 하겠다.

그 뒤를 이어 1895년 2월 2일 공표된 것이 바로 유명한 '교육조칙(教育詔勅)'[10]이다. 이는 고종이 추구했던 교육정책의 뼈대가 되는 강령에 해당되기에 전문을 소개한다.

> 짐(朕)이 생각해 보면 우리 조종(祖宗)이 나라를 세우고 정통(正統)을 물려준 것이 이제는 504년이 지났으니, 실로 우리 열성조의 교화와 은덕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고 또 우리 신하와 백성들이 충성과 사랑을 능히 다한 것에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짐은 한없는 큰 대운(大運)을 물려받고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

9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5권, 5. 기밀제방왕(機密諸方往) 2, (12) 내정개혁(內政改革)을 위한 대한정략(對韓政略)에 관한 보고.

10 교육조칙의 전문 번역은 국회도서관(『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p. 180~181).

하면서 오직 조종의 가르침을 이어나갈 뿐이다. 너희들 신하와 백성은 짐의 마음을 체념하라. 오직 너희들 신하와 백성의 선조는 우리 조종이 돌보고 키워준 어진 신하와 백성이었으니, 너희들 신하와 백성들도 너희 선조의 충성과 사랑을 능히 이어서 짐의 돌봄과 키움을 받는 어진 신하와 백성들이다. 짐은 너희들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조종의 큰 기반을 지켜 억만 년의 아름다운 운수를 이어나갈 것이다.

아! 백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를 굳건히 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상 형편을 돌아보면 부유하고 강성하여 독립하여 웅시(雄視)하는 여러 나라들은 모두 그 나라 백성들의 지식이 개명(開明)하고 지식이 개명함은 교육이 잘됨으로써 말미암은 것이니,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짐이 임금과 스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교육하는 책임을 스스로 떠맡고 있다. 교육에는 또한 그 방도가 있으니, 허명(虛名)과 실용(實用)의 분별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다. 책을 읽고 글자를 익히어 고인(古人)의 찌꺼기만 주워 모으고 시대의 큰 형국에 어두운 자는 문장(文章)이 고금(古今)보다 뛰어나더라도 쓸모가 전혀 없는 서생(書生)이다. 이제 짐은 교육하는 강령(綱領)을 제시하여 허명을 제거하고 실용을 높인다. 덕양(德養)은 오륜(五倫)의 행실을 닦아 풍속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지 말며, 풍속과 교화를 세워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다. 체양(體養)은 동작에는 일정함이 있어서 부지런함을 위주로 하고 안일을 탐내지 말며 고난을 피하지 말아서 너의 근육을 튼튼히 하며 너의 뼈를 건장하게 하여 병이 없이 건장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지양(智養)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데서 지식을 지극히 하고 도리를 궁리하는 데서 본성을 다하여 좋아하고 싫어하며 옳고 그르며 길고 짧은 데 대하여 나와 너의 구별을 두지 말고 상세히 연구하고 널리 통달하여 한 개인의 사욕을 꾀하지 말며 대중의 이익을 도모하라. 이 세 가지가 교육하는 강령이다.



[그림 1-2-2] 『고종실록』에 기재된 1895년 2월 고종의 '교육조칙'

짐이 정부(政府)에 명하여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너희들 신하와 백성의 학식으로 나라를 중흥(中興)시키는 큰 공로를 이룩하기 위해서다. 너희들 신하와 백성은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너의 덕성, 너의 체력, 너의 지혜를 기르라. 왕실의 안전도 너희들 신하와 백성의 교육에 달려 있고 나라의 부강도 너희들 신하와 백성의 교육에 달려 있다. 너희들 신하와 백성에 대한 교육이 훌륭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짐이 어찌 나의 정사가 성공했다고 하며 짐의 정부가 어찌 감히 그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 신하와 백성들도 교육하는 방도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협조하여 아버지는 이것으로 그 아들을 이끌어주고, 형은 이것으로 그 동생을 권하며, 벗은 이것으로 도와주는 도리를 실행하여 그치지 않고 분발해야 할 것이다. 나라의 적에 대적할 사람은 오직 너희들 신하와 백성이요, 나라의 모욕을 막을 사람도 너희들 신하와 백성이며, 나라의 정치 제도를 닦아나갈 사람도 너희들 신하와 백성이다. 이것은 다 너희들 신하와 백성의 당연한 직분이지만 학식의 등급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서 조그마한 결함이라도 있으면 너희들 신하와 백성들도 오직 우리의 교육이 명백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상하가 마음을 합치기에 힘쓰라. 너희들 신하와 백성의 마음은 또한 짐의 마음인 만큼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해야 짐은 조종의 덕을 드러내어 천하에 빛내고 너희들 신하와 백성들도 너희 조상의 효성스러운 자손으로 될 것이니, 힘써야 할 것이다. 너희들 신하와 백성들이여, 짐의 이 말대로 하라(『고종실록』, 1895. 2. 2, 밑줄은 저자).

위 교육조칙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실용적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의 목표를 밝히고 있다. 허명(虛名)을 배제하고 실용(實用) 추구를 명시함으로써 1882년 12월 28일 교육에 관한 윤음(綸音)을 계승하는 교육 총론을 확립한 것이다. 실용적 교육의 강령으로 덕양, 체양, 지양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의 교육 분류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일본 또한 1880년대부터 동일한 교육론을 채택하고 있었다(김경미, 2009: 136). 이 중 덕양은 전통적인 유교 교육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나 이 조칙에서는 오륜(五輪) 외에는 '사회의 질서 유지와 행복 증진'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로 축약되어 있다. 지양 또한 성리학적 전통에 따르면 덕을 체득하기 위한 지(智)이지만, 여기서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통해 지식을 축적하여 자신과 타인을 이롭게 하라는 실용적인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둘째로 국가 운영의 동반자로서 신민(臣民)의 위상이 강조되고 있다. 부유하고 강성하며 독립하여 세계에서 웅시(雄視)하는 나라는 모두 백성의 지식이 개명한 결과라고 분석하면서, 왕실의 안전도, 국가의 부강도 모두 신민의 교육 여하에 달려 있으며, 국가의 적과 맞서 싸워 모욕을 막을 사람도 신민이며, 심지어 국가의 정치제도를 만들어나갈 사람들도 신민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한편 왕실의 조종과 고종은 국가의 중심이며 대표지만, 국왕에 대한 강력한 충성을 신민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국왕은 '신민과 함께' 조종의 기반을 이어나갈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박영효, 유길준 등 개화파 사상가들의 영향도 있겠으나, 국왕인 고종이 직접 내린 조칙임을 감안할 때 당연히 고종의 군신관(君臣觀)을 반영했다고 봐야 한다. 이는 국민 교육론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한편 일본 또한 메이지 유신 이후 교육제도 확립을 위한 일련의 총론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선언된 것은 1879년 발표된 '교학성지(教學聖旨)'로서, 근대화 이후 일본이 오로지 지식만을 숭상하고 문명개화의 말단에 빠져 인의충효(仁義忠孝)의 풍속이 손상되고 군신부자(君臣父子)의 대의(大義)가 망각되었음을 지적하며, 조종(祖宗)의 훈전(訓典)과 유교의 도덕을 가르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당시 웅번(雄藩)들의 권력 독점에 반대하며 나타나던 자유민권운동을 교육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박균섭, 1999: 548~549).

이러한 교육정책의 연장선이 바로 1890년 10월 31일 메이지 일왕의 명령으로 발표된 '교육칙어(教育勅語)'다. 고종의 '교육조칙'과 자주 비교되는 이 문서는 일본 제국 신민들의 수신과 도덕 교육의 기본 규범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식민지에서 시행된 조선 교육령과 타이완 교육령이 기초되었다는 점에서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의 교육 경험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짐이 생각건대 황조황종(皇祖皇宗)께서 이 나라를 여러 굉원(宏遠)한 덕을 세움이 심후(深厚)하도다. 우리 신민이 지극한 충과 효로써 억조창생(億兆蒼生)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대대손손 그 아름다움을 다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국체(國體)의 정화(精華)인 바 교육의 연원 또한 여기에 있을 터다.

그대들 신민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며,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붕우가 서로 신뢰하며, 스스로 삼가 절도를 지키고 박애를 여러 사람에게 끼치며, 학문을 닦고 기능을 익힘으로써 지능을 계발하고 훌륭한 인격을 성취하며, 나아가 공익에 널리 이바지하고 세상의 의무를 넓히며, 언제나 국헌을 무겁게 여겨 국법을 준수해야 하며, 일단 국가에 위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의용(義勇)을 다하며 공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천지와 더불어 무궁할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대들은 짐의 충량한 신민이 될 뿐만 아니라 족히 그대들 선조의 유풍(遺風)을 현창(顯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는 실로 우리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으로 자손인 천황과 신민이 함께 준수해야 할 것들이다. 이는 고금을 통하여 오류가 없으며, 이를 중외에 베풀더라도 도리에 어긋나는 바가 없다. 짐은 그대들 신민과 더불어 이를 항상 잊지 않고 지켜서 모두 한결같이 덕을 닦기를 바라는 바다('교육칙어', 밑줄은 저자)

'교육칙어'는 당시 법제국 장관이었던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가 '황국주의(皇國主義)'를 강조하여 기안하고 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가 협력하여 완성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의 연원은 황조황종(皇朝皇宗)에 대한 충성이며, 교육의 내용 또한 황조황종의 유훈이다. 조선의 교육조칙이 국왕과 신민이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을 독려했다면, 교육칙어는 황조황종의 유훈을 따르고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하면 국왕의 충량한 신민이 될 수 있으리라 제안하고 있다. 반면 교육성지에 언급되고 있던 유교적인 도덕교육의 경우 그 덕목들은 제시가 되고 있지만 유교라는 명칭 자체는 언급되지 않는다. 즉 '교육성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주의적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의 '교육조칙'과 일본의 '교육칙어' 사이의 차이는, 아직 근대적 교육제도를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확립하려 했던 조선과 이미 실시하고 있던 근대적 교육에 대한 비판점을 정책화하고자 했던 일본의 입장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기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내용만 놓고 보면, 군권과 민권의 관계를 보다 전향적으로 설정하고 교육 방향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자 했던 교육조칙의 역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조칙'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인 1895년 3월 25일, 조선 정부는 학무아문

을 개편한 학부의 관제를 발표한다. 학무아문 시절의 교육정책이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면, 1895년 학부로의 개편은 고종이 국정의 전면에 복귀하여 추진한 을미개혁의 교육정책을 위해 정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기구의 관제를 비교함으로써 을미교육개혁의 정책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학부관제(學部官制)〉

제1조 학부대신(學部大臣)은 학교 정책과 교육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2조 대신관방(大臣官房)에서는 관제 통칙에 든 것 외에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공립 학교 직원의 진퇴(進退), 신분에 관한 사항이다.
2. 교육의 검정(檢定)에 관한 사항이다.
3. 본 부에서 관할하는 경비와 모든 수입의 예산과 결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다.
4. 본 부에서 관할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그 장부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제3조 학부 전임 참서관은 3인을 정원으로 한다. 학부 참서관은 관제 통칙에 든 것 외에 학사(學事)의 시찰과 학교의 검열을 맡는다.

제4조 학부에 다음의 2개 국을 둔다. 학무국(學務局), 편집국(編輯局).

제5조 학무국은 2등국이고 편집국은 3등국이다.

제6조 학무국에서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소학교(小學校)와 학령 아동(學齡兒童)의 취학에 관한 사항이다.
2. 사범학교(師範學校)에 관한 사항이다.
3. 중학교(中學校)에 관한 사항이다.
4. 외국어학교, 전문학교 및 기술학교에 관한 사항이다.
5. 외국에 파견하는 유학생에 관한 사항이다.

제7조 편집국에서는 교과서의 편집, 번역과 검정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제8조 학부 주사(主事)는 11인을 정원으로 한다.

제9조 교과서의 편집, 검정을 위하여 혹 위원을 특별히 두어 학부대신에게 소속시키는 일이 있다.

제10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종실록』, 1896. 3. 25).

학무아문이 ① 총무국, ② 성균관 · 상교(庠校, 향교) · 서원(書院)사무국, ③ 전문학무국, ④ 보통학무국, ⑤ 편집국, ⑥ 회계국 등 많은 조직으로 구성된 반면 학

부는 대신관방(大臣官房), 학무국(學務局), 편집국(編輯局)으로 조직이 간소화되었다. 총무국, 회계국의 역할은 대신관방이 관할하고, 전문학무국과 보통학무국은 학무국으로 통합되었으며 편집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특히 성균관·상교(庠校, 향교)·서원(書院)사무국이 아예 폐지되어 학부의 소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운영을 하게 된 것이 주목된다. 이는 을미개혁이 지향하는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보여준다.

또한, 학무아문 관제에서 보통학무국은 소학교와 사범학교, 전문학무국은 중학교, 기예학교, 외국어학교, 전문학교 외에 대학교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학부 관제 중 학무국은 소학교, 사범학교, 중학교, 외국어학교, 전문학교, 기술학교와 '외국에 파견하는 유학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이로써 국민 일반에 대한 공교육을 소학교와 중학교로 세분화하는 한편, 대학교육의 수요는 해외 유학으로 대신 충당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후 전문학교 관련 서술을 통해서도 후술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충분한 교수 요원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되며, 1894년 11월 20일 이노우에 가오루가 조선 정부에 제시한 개혁안 중 '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할 것'이라는 조항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종실록』, 1894. 10. 23).

이처럼 고종은 을미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총론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요약하면 ① 근대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실용적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② 국왕과 함께 국가를 운영할 주체로 성장할 신민을 양성하기 위한 국민교육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 중 전자는 법관양성소와 외국어학교 설립으로, 후자는 한성사범학교 및 소학교·중학교 설치령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2) 전문학교 설립

(1) 법관양성소

조선시대 사법제도는 행정체제와 유착된 상태로 운영되었다. 형조(刑曹)의 지위 아래 사법권은 각급의 관료들에 의해 집행되었으며, 따라서 사법적 지식이나 철학이 부족한 관료가 부적절하게 사법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작 전문적

사법지식을 갖춘 율사(律士)들은 잡과(雜科) 출신의 일원으로서 관료 체제 속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재판 중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백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취급되었고 이를 위해 고신(拷訊, 고문)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으며 처벌 과정에서 연좌제(連坐制)가 적용되는 등 조선시대 사법제도에는 다양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기되었다. 조선에서 근대적인 사법개혁을 최초로 제기한 집단은 김옥균, 박영효 등 갑신개화파들이었다. 갑오농민군이 주창한 '폐정개혁안', 군국기무처에서 제출한 '의안'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개혁안이 나타났다. 이 시기 제안된 사법개혁안들은 징역형과 같은 근대적 자유형의 도입, 능지처참형 등 잔혹형의 폐지, 연좌제의 폐지, 신분제도와 사법제도의 분리,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소의 일원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 정부에 내정개혁을 강요한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1833~1911) 공사가 제시한 개혁안 중에도 '법령을 정비하고 사법제도를 개혁할 일'이라는 조항이 있었다. 당시 조선의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의도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조선에 파견된 일본 외무성 구리노 신이치로(栗野慎一郎, 1851~1937) 정무국장이 지참한 '조선국 내정개혁안'이다. 이 중 사법제도에 관한 개혁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재판을 공정히 할 일
> 조선의 현재 재판제도에 의하면, 지방장관이 소송 건을 수리하고 그 판결로 종심을 삼고 다시 항소, 상소의 길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비곡직(理非曲直)이 기처(其處)를 잃고 왕왕 원왕(冤枉)한 상황에 이르고 다시 회복할 길을 얻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외교상 사무 또한 번잡을 가져오고 있다. 고로 송정(訟廷)을 공개하고 심리의 공평을 기해야 한다. 차제에 재판제도를 설비하고, 재판관을 상치(常置)하고 재판소의 계급을 확정하여 항소의 길을 개통함이 가(可)하다.

사법적 전문성이 없는 지방 관료가 사법관을 대리할 뿐만 아니라 항소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등 조선의 사법제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적한 부분은 나름의 일리가 있었고, 상술한 대로 조선 사회 내부에서도 인지하던 것이다. 그러



출처: 리하르트 분쉬(1999: 103).

[그림 1-2-3] 1900년대 초반 광화문 앞 육조거리 풍경. 1907년 사진 중 가장 우측의 건물(지금의 KT 광화문지사 자리)에 법관양성소가 이전되었다.

나 이러한 '개혁 요청'이 방곡령 철폐, 일본인의 조선 내 부동산 구입, 일본 상인과 조선 상인 사이의 소송 문제 등 일본의 '외교상의 사무'를 순탄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처럼 구한말 사법제도 개혁은 민족의 자주적 개혁과 외세의 침탈이라는 복잡한 배경 속에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적 사법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전문적 법조인의 양성이었다. 이를 위해 1894년 12월 16일 법부대신 서광범이 '앞으로 설립할 재판소에서 근무할 인원을 양성할 것을 건의'하면서 법관양성소의 설치를 건의했다. 그 결과 1895년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법률 제1호)과 동시에 공포된 법부관제(칙령 제45호)에서는 법무대신의 직속으로 법관양성소를 두도록 했고(제12조), 이에 따라 같은 날 법관양성소관제(칙령 제49호)를 공포하여 법관양성소가 설치되었다.

〈법관양성소규정(法官養成所規程)〉

제1조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는 속성(速成)을 목적으로 하고 생도(生徒)를 널리 모집하여 규정한 학과를 가르치고 졸업 후에 사법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양성하는 곳으로 한다.

제2조 본 양성소에는 다음의 직원을 둔다.

소장(所長) 1인, 교수(教授) 약간 인

제3조 소장은 법부참서관(法部參書官)으로 채우고 교수는 수시로 임용한다.

제4조 본 양성소의 생도로는 20살 이상으로서 입학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나 또는 현재 관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한다. 입학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한문 작문 / 국문 작문 / 조선 역사와 지리대요(大要)

제5조 입학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자는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갖추어 제출한다.

제6조 이미 입소 허가를 받은 자는 다시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증서를 갖추어 제출한다.

제7조 본 양성소의 학과와 과목은 다음과 같다.

법학통론(法學通論) / 민법(民法) / 형법(刑法) / 형사 소송법(刑事訴訟法) / 기타 현행 법률 / 연습(演習)

제8조 본 양성소는 6개월을 졸업 기한으로 정한다.

제9조 3개월에 1차 시험을 치러 우등생에게 졸업 증서를 특별히 주는 일이 있다.

제10조 본 양성소에서 규정한 학과를 이수(履修)하고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 증서를 수여한다.

제11조 본 양성소 졸업 증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사법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제12조 본령은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관양성소의 설립 목적은 "생도를 널리 모집하여 학과를 속성으로 교수하여 졸업 후에 사법관으로 채용할 것"(제1조)이라고 밝혀, 실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수업연한은 6개월(일반), 3개월(우등) 등 단기로 설정했다(제8, 9조). 같은 해 5월 6일 처음 학생을 모집하여 1895년에는 47명, 이듬해는 3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나, 곧이어 발생한 을미사변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지면서 생도를 새로 모집하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다가 1903년 다시 개소했다. 재개소 이전까지는 1900년 법어학교(法語學校, 프랑스어학교) 교사로 임용된 로랭 크레마지(Laurent Crémazy, 金雅始, 1837~1910)가 법률도 함께 가르쳤다고 하며(『황성신문』, 1901. 3. 13), 당시 법어학교 졸업생 중 김우식(金迂植), 정기학(鄭基學), 이신우(李信宇), 최병옥(崔炳玉) 등은 크레마지의 추천으로 법관양성소의 교관이 되기도 했다(김효전, 1999: 67~68). 이후 법관양성소는 1908년까지 총

[표 1-2-1] 1896~1910년 법관양성소 예산 단위: 원(元)

연도	법부	법관양성소	연도	법부	법관양성소
1896	39,674	600	1907	167,674	5,795
1904	63,967	5,212	1908	867,514	21,984
1905	68,671	5,236	1909	1,390,820	24,860
1906	46,259	3,522	1910	433,640	228,738

주: * 1896년 전체 예산: 6,316,831원
** 1907년부터는 결산 예산
*** 1910년 학부 및 전체 관립 학교 예산
출처: 김효전(2014: 137~150) 참조.

20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한국 근대 법조 인력의 산실로서 기능했으며, 1909년 11월 법부에서 학부로 이관되면서 그 명칭도 법학교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1911년 11월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로 개편되어 일제 강점기를 맞게 된다.

법관양성소는 처음 서대문 밖 유동(鍮洞, 놋전거리)[11]에서 개교했으며, 1903년 재개교했을 때도 장소는 동일했다. 이후 교사를 몇 차례 이전했다. 광화문 앞 육조거리의 옛 호조(戶曹) 자리로(1907. 4), 다음에는 전 농상공부와 사직동 어의궁(於義宮, 1908. 2)으로 이전하면서 시설을 보수했다. 그리고 곧 야주현(夜珠峴) 무관학교로 옮겼으며(1908. 4), 1909년 6월 광화문 앞으로 이전했다. 이후 법학교와 경성전수학교를 거쳐 다시 경성법학전문학교가 사용하다가 1938년 4월 청량리 소재 구 경성농업학교로 이전되었다.(김효전, 2014: 21~24).

1896년부터 1910년까지 법관양성소 예산은 [표 1-2-1]과 같다. 여러 관립 학교와 마찬가지로 법관양성소 역시 재정 궁핍에 시달렸다. 교관 역시 박봉이었으며 대우가 좋지 않았다. 법부 소관 예산이 1896~1906년은 전체 예산에서 1% 미만이었다가 1907년부터는 경상부에서만 9% 이상으로 증대했다. 이는 법부행정의 근대화를 위한 일본의 차관에 기인한 것인데, 이는 결국 일본의 사법권 침탈로 귀결되었다(김대준, 2004: 257).

1895년 개소 당시 법관양성소의 입학 자격은 20세 이상으로 입학시험 합격자 또는 관직에 재직 중인 자로, 품청장(稟請狀)과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증인은 1905년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했으며, 1896년에는 연령 제한이

11 현재의 서대문 우체국 뒤편이며, 당시에는 한성부 서서(西署) 반송방(盤松坊) 중 조판부사계(曺判府事契)다.

20세 이상 35세 미만이었다. 1905년에는 '신체 건강자'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다시 1906년 '품행방정자'로 대체되었다. 입학시험 과목은 1895년에는 한문, 국문, 조선 역사, 대지대요(地誌大要)가 있었고, 1905년에는 한문, 독서·작문, 산술, 문대(問對), 역사, 지리 등이었으며, 사범학교 및 외국어학교 졸업생과 관직 재직자는 입학시험이 면제되었다. 이는 법관양성소가 실무 관료를 양성한다는 구체적인 목적 때문으로 보인다. 1908년에는 법부대신의 인가 아래 법관양성소 소장이 입학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학칙에 따르면 입학 자격을 "17세 이상 35세 이하의 남자"로 한정하되 '신체 건강'과 '품행방정'을 동시에 요구했으며, 특히 관립 일어학교 졸업자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1895년 개교 당시 법관양성소의 소장은 법부 참서관이 겸임하며 그 외에 약간의 교관을 임명했다. 이후 잦은 관제의 변화가 있었지만 기본 직제는 계속 유지되었다. 1903년 1월 소장은 법부 칙임관·주임관 또는 다른 부서에서 법률에 익숙한 사람들이 임명되었으며, 때로는 법부 협판이나 참서관, 국장이 겸직하기도 했다. 1904년 9월에는 3등 이상의 전·현직 법관을 부장(副長)으로 임명했으나 3개월 후 폐지되었고, 1906년에는 수반(首班) 교관이 학감(學監)을 겸임하도록 했다. 교관에 대해서는 1895년에는 특별히 그 자격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1903년부터는 주임관이나 판임관으로 임명했고 인원의 변화도 잦았다. 1908년부터는 주임 전임교수 3명, 간사 1명, 주임 또는 판임 조교수 3명 등으로 세분화했다. 1903년부터는 법관양성소 출신을 장차 사법관으로 채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박사(博士)로 임명했다. 1908년부터는 주임 번역관, 판임 주사, 판임 번역관보를 두는 등 직제가 세분화되었고, 교관의 자격도 법관양성소를 졸업한 자나 기타 법학을 통달한 자로 제한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했으나, 당시에는 이미 일본의 영향력 아래 법학 교육 및 사법행정의 주권이 약화일로에 있던 시기였다(박병호, 1996: 174).

법관양성소 역대 소장과 법학교 교장은 [표 1-2-2]와 같다. 법관양성소 소장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 관료가 대부분이나, 초대 피상범, 7대 및 10대 소장 김낙헌, 8대 이면우는 법률가였다. 초대 피상범은 1882년 율과에 장원급제한 후 1894년 법부 주사, 이후 법부 검사국장, 법률기초위원, 평리원 판사 및 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전통 율학과 근대 법학의 가교를 담당한 인물이다. 김낙헌은 가학으로 법률을 공부하여 1895년 법부 주사, 1898년 고등재판소 검사시보, 법부 검사에 임용되었으며, 1900년 형법교정관으로 『형법대전(刑法大全)』의 편찬에

[표 1-2-2] 역대 법관양성소 소장과 법학교 교장

	성명	재임 기간		성명	재임 기간
초대	피상범(皮相範)	1895. 5. 19~1896	7대	김낙헌(金洛憲)	1905. 3~1905. 12. 11
2대	이인영(李寅榮)	1903. 1. 21~1904. 6. 4	8대	이면우(李冕宇)	1905. 12. 11~1906. 6. 13
3대	심상익(沈相翊)	1904. 6. 4~1904. 7. 5	9대	민형식(閔衡植)	1906. 6. 13~1906. 6. 30
4대	이지용(李址鎔)	1904. 7. 5~1904. 10. 11	10대	김낙헌(金洛憲)	1906. 6. 30~1907. 7
5대	김규희(金奎熙)	1904. 10. 13~1905. 2. 21	11대	노자와 다케노스케(野澤武之助)	1907. 7~1909. 10. 31
6대	이근상(李根湘)	1905. 2. 21~1905. 3	초대	노자와 다케노스케	1909. 11. 1~1911. 10. 31

출처: 김효전(『법관양성소와 근대한국』), p. 225.

관여했고, 1904년에는 법률기초위원, 1905년 12월 법부 형사국장에 임명되었다. 반면 이면우는 관립 일어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에 유학한 후 귀국하여 판검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특히 을사늑약 체결 직후 법관양성소장에 임명되었으며 합방 후에는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한성변호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노자와 다케노스케(野澤武之助, 1866~1941)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뮐하임 시립공업학교를 졸업하고 스위스의 제네바대학에 유학하여 「일본의 헌법」이란 논문으로 법학박사의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메이지(明治) 법률학교와 도쿄전문학교(와세다대학 전신)에서 국제사법을 강의했다. 이후 대학이나 정계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지내다가 1906년 12월 한국 정부의 법부 참여관으로 형법교정관에 임명되고 이후 법관양성소 소장과 법학교 교장을 역임했다(김효전, 『법관양성소와 근대한국』, 2014: 406~409).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전후로 법관양성소 교관의 구성도 크게 변화되었다. 1903년 이후 법관양성소 교관으로 활동했던 정명섭(丁明燮), 윤태영(尹泰榮), 김종호(金鍾濩), 고익상(高翊相), 조세환(趙世煥) 등은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해임되었고, 대신 일본 유학생 홍재기(洪在祺), 유동작(柳東作), 유문환(劉文煥), 윤헌구(尹憲求), 석진형(石鎭衡), 나진(羅璡) 등이 임용되었다.

이들 일본 유학파 교관들은 기존의 법관양성소 3년생에 대해 "신학문이 부족하지만 기득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졸업을 허용한다"고 말하는 등 그 학문적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이계옥(李啓玉), 이호정(李鎬楨) 등이 반박하는 등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대한매일신보』, 1905. 12. 12). 이는 조선·대한제국이 양성한 법조인들을 배제하고 친일적 법조계를 부식(扶植)하려 했던

일본의 의도가 노골화되면서 벌어진 갈등이었다. 이후로도 일본 유학파 교관들이 기존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 논란이 되었다(김효전, 2014: 241). 1908년 이후에는 일본의 관료들이 한국 정부의 초빙이라는 형식으로 한국 사법 관료로 대거 부임하여 한국 법조계를 장악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12]

한편 사법 관료를 속성으로 양성하려는 법관양성소의 목적은 설립 초기부터 교과목에 반영되었다. 1895년 창립 당시에는 6개월 과정으로 교과목은 법학통론, 민법 및 민사소송법, 현행법률, 소송연습이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했다. 그 일과표는 [표 1-2-3]과 같다.

이러한 교과목은 1903년 재개교한 이후 크게 세분화되었다. 1895~1908년의 교과목 변화는 [표 1-2-4]와 같다.

1895년의 교과목은 법조계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되

[표 1-2-3] 법관양성소 교과목과 시간표(1895)

	9~11시	11~12시	1~2시
월	민법(高田)	민사소송법(高田)	법학통론(日下部)
화	형법(堀口)	형법(堀口)	민사소송법(高田)
수	형법(堀口)	형법(堀口)	법학통론(日下部)
목	민법(高田)	민사소송법(高田)	형사소송법(高田)
금	형사소송법(高田)	형사소송법(高田)	법학통론(日下部)
토	현행법률(皮相範)	소송연습(高田, 堀口, 日下部)	

출처: 김효전(2014: 78~82).

[표 1-2-4] 법관양성소 교과목 변천

연도	1895	1904	1906	1907	1908
과목	법학통론, 민법 및 민사소송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현행법률, 소송연습	**좌동. 추가 과목**: 헌법, 행정법, 국제법, 상법, 현행법률, 산술, 작문, 외국율례, 경제학	**좌동. 추가 과목**: 재정학, 프랑스어, 형법대전, 대명률, 무원록	법학통론, 형법(총론), 민법(총론 물권 채권 상속), 상법(총론 회사 상행위),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경제학, 국제공법(평시), 일본어	법학통론, 민법총론, 민사소송법, 형법총론, 형사소송법, 상행위법, 채권법1부, 채권법2부, 물권1부, 물권2부, 평시국제법, 상속법, 경제학, 회사법, 상법총칙, 어험법, 수학, 일어실무연습

주: 1907년 교과목은 〈진급증〉상의 실제 개설된 강의이며, 이외는 제도상의 교과목이다.
출처: 김효전(2014: 78~82).

12 이에 대해서는 본서 제1부 제3장에서 상술한다.

어 있다. 반면 1904년에는 공법, 국제법, 경제학 외에 특히 헌법이 추가되는 등 사법 실무자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넘어 수준 높은 법조인과 법학자 양성을 위한 형식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교과목 체계에 더해 을사늑약 이후인 1906년에는 형법대전, 대명률, 무원록 등 전통적인 형법 관련 과목들이 법관양성소 교과목으로 추가되었다. 이는 근대적인 법 관념과 함께 한국 법 체계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한제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1906년부터는 졸업생에게 성법학사(成法學士)라는 칭호를 수여함으로써 일종의 학위와 같은 성격을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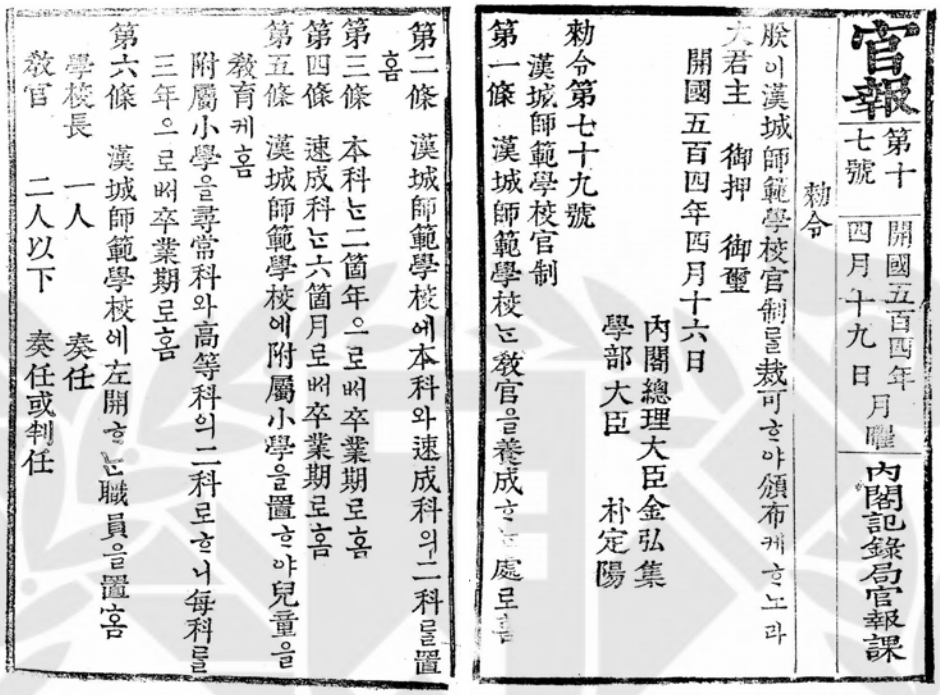
그러나 1907년 이후에는 기존의 교과목 구조가 전격적으로 개편되고 일본에 의한 법학 교과 교육이 추진되기에 이른다. 일본의 법조 인력이 대거 한국에 유입되어 한국 사법 체계를 장악하게 된 1908년에는 1904년에 추가된 헌법, 행정법, 국제법 등의 과목과 1906년에 추가된 형법대전, 대명률, 무원록 등 한국의 법적 현실을 반영한 교과목들이 모두 삭제되었다. 또한 기존의 법관양성소 교과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서적을 통해 소개되고 있었던 법리학 등의 과목도 반영되지 않았다.[13] 이는 당시 일본이 구상한 법학 교육이 실무 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다시 퇴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한성사범학교

1894년 12월 12일(양력 1895년 1월 7일) 발포된 '홍범 14조'와 '독립서고문'을 계기로 을미개혁(1895년 초부터 시행된 조선정부 주도의 관제 및 사회제도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일환으로 1895년 3월 25일 학부관제 개편안이 공포되고 학무아문은 학부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1895년 3월 29일 각의에서 '각대신간규약조건(各大臣間規約條件)' 56조가 결의되었다. 이는 갑오개혁 이후 구법령과 군국기무처 의안을 통해 새로 제정된 신법령이 충돌하면서 국정의 혼란을 가져오자 이를 정리하기 위해 각 관청에서 마련한 개혁 방안이었다. 이중에는 '지방 제학교 교원양성을 위해 한성부에 1개 학교를 설립할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의주(議奏)』 1, 202] 그리고 1895년 4월 16일 '한성사범학교관제'가 반포되었다.

---

13 1905년에 간행된 유성준의 법학통론에는 기초 법학의 일부로 법리학을 소개하고 있다(최종고, 1982: 323).



官報 第十七號 開國五百四年四月十九日 月曜 內閣記錄局官報課

勅令

朕이 漢城師範學校官制를 裁可ᄒᆞ야 頒布케 ᄒᆞᄂᆞᆫ 바라

大君主 御押 御璽

開國五百四年四月十六日

內閣總理大臣 金弘集

學部大臣 朴定陽

勅令第七十九號

漢城師範學校官制

第一條 漢城師範學校ᄂᆞᆫ 敎官을 養成ᄒᆞᄂᆞᆫ 處로 ᄒᆞ

第二條 漢城師範學校에 本科와 速成科의 二科를 置

ᄒᆞᆷ

第三條 本科ᄂᆞᆫ 二箇年으로써 卒業期로 ᄒᆞᆷ

第四條 速成科ᄂᆞᆫ 六箇月로써 卒業期로 ᄒᆞᆷ

第五條 漢城師範學校에 附屬小學을 置ᄒᆞ야 兒童을 敎育케 ᄒᆞᆷ

附屬小學을 尋常科와 高等科의 二科로 ᄒᆞ니 每科를 三年으로써 卒業期로 ᄒᆞᆷ

第六條 漢城師範學校에 左開ᄒᆞᄂᆞᆫ 職員을 置ᄒᆞᆷ

學校長 一人 奏任

敎官 二人以下 奏任或判任

출처: 『구한국관보』.

[그림 1-2-4] 한성사범학교관제

〈한성사범학교관제(칙령 제79호)〉

제1조 한성사범학교는 교관을 양성하는 곳으로 한다.

제2조 한성사범학교에 본과와 속성과의 두 과를 둔다.

제3조 본과는 2년 과정으로 한다.

제4조 속성과는 6개월 과정으로 한다.

제5조 한성사범학교에 부속소학교를 두어 아동을 교육하게 한다.

부속소학교는 심상과(尋常科)와 고등과(高等科)의 두 과로 하여 각 과를 3년 과정으로 한다.

제6조 한성사범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학교장 1명(주임관)

교관 2명 이하(주임관 혹은 판임관)

부교관 1명(판임관)

교원 3명 이하(판임관)

서기 1명(판임관)

제7조 학교장은 학부 참서관(參書官)으로 겸임하게 하며 학부대신의 명령을 받아 교무(校務)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통솔한다.

제8조 교관은 생도의 교육을 관장한다.

제9조 부교관은 교관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10조 교원은 부속소학교 아동의 교육을 관장한다.

제11조 서기는 학부주사가 겸임하도록 하며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서무회계에 종사한다.

제12조 본과와 속성과 및 부속소학교의 학과정도(學科程度)는 학부대신이 정한다.

제13조 본 칙령은 18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구한국관보』 1895. 4. 19).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일본의 영향 아래 설립된 군국기무처는 사범학교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1895년 다시 한성사범학교가 개교하고 관제까지 새로 만든 것은, 그 전의 사범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894년 개설된 사범학교 관련 공식 문서는 현재 그 관제조차 남아 있지 않다. 대신 관련 기관에서 주고받은 행정문서나 일본 측 기록을 통해서만 단편적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의 와중에 조선 정부가 일본의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사범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성사범학교의 개교는 이러한 비정상성을 극복·단절하고 명실상부한 근대 사범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조선 정부의 노력이었다.[14]

한성사범학교는 당시 중부 교동(校洞, 지금의 경운동 일대)의 소학교 교사를 빌려 처음 시작되었다. 한성사범학교 관제 중 제7조 "학교장은 학부 참서관(參書官)으로 겸임하게 하며 학부대신의 명령을 받아 교무(校務)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통솔한다."라는 조항을 통해 학부 참서관 이응익이 한성사범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실제 교수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학생들의 교육은 교관으로 임명된 정

14 편찬위원회는 1894년 8월의 사범학교와 1895년 한성사범학교는 마땅히 구별해야할 사안으로 이해한다. 즉 사범학교는 1894년 7월 25일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정부에 대해 소학교 교육을 담당할 교사양성을 위해 제안하여 발족시키려했던 것에 불과하고, 1895년 2월 군주(고종)의 교육조서를 계기로 시작되는 조선정부 자체의 근대교육제도 시행인 법관양성소, 한성사범학교의 창설과 무관하다는 것이 편찬위원회의 공식 견해이다.



출처: 동아일보사 편(2007: 24).

[그림 1-2-5] 1900년대 관립 한성사범학교 교사(校舍)

운경과 한의용이 담당했다. 정운경(鄭雲櫻)은 그 이력을 추적하기 어려우나 이후 성균관 교수까지 역임했던 것으로 보아 한학과 신학문에 두루 능통했던 인물로 보인다. 한의용(韓義容)은 1863년생으로 1886년 부산항 일어사숙(日語私塾)에서 수학한 뒤 1889년부터 부산항 감리서에서 번역업무를 담당했으며, 1895년 1월부터는 학부 편집국에서 번역업무와 통역을 담당했다. 그리고 4월부터 한성사범학교 부교관에 임명되었으며 이곳에서도 번역업무를 겸했다(『대한제국관원이력서』 10책: 290). 상기의 경력을 감안할 때 한의용은 교원 외에 일본어 도서를 번역하여 한성사범학교의 교과서로 간행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역시 일어학교 출신으로서 한의용의 후임으로 부임한 현백운도 비슷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4월 19일, 학부는 한성사범학교의 학생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본과생(2년 과정)은 연령 20세 이상, 25세 이하 100명, 속성과는 20세 이상, 35세 이하(6개월 과정) 60명을 모집했다. 본과생의 입학시험 과목은 국문 및 한문의 독서와 작문이었으며, 속성과생들은 본과 응시과목 외에 조선지리, 조선역사를 추가로 응시해야 했다(『구한국관보』 1895. 4. 19). 모집 결과를 보면 속성과는 정

원을 채웠으나 본과는 정원을 대폭 줄여 40명만 입학했다(『구한국관보』 1895. 8. 14).

7월 24일, '한성사범학교규칙'을 제정하여 한성사범학교 교육 요강을 알렸다(『구한국관보』 1895. 7. 24, 「학부령」 제1호 '한성사범학교규칙'). 이 규칙은 총 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학과 및 과정, 교육 요지, 입학/재학/퇴학, 학생 정원, 휴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제1조와 제13조에서 다음과 같이 한성사범학교의 교육 목적을 밝히고 있다.

〈한성사범학교규칙〉

제1관 총론

제1조 '한성사범학교는 칙령 제79호에 의해 교원에 임용할 학생을 양성함. 단 학생들로 하여금 순량공검(順良恭儉)하며 신애위중(信愛威重)한 기질을 갖추게 하는 일에 주의할 것.

…

제3관 한성사범학교 교육 요지

제13조 한성사범학교 교육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정신을 단련하며 덕조(德操)를 연마하는 것은 교육자에게 중요한 바다. 그러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평소에 이를 유의하도록 해야 한다.

(2) 존왕애국(尊王愛國)의 지기(志氣)를 넉넉히 하는 것은 교육자에게 중요한 바다. 그러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평소에 충효의 대의에 밝고 국민으로서의 지조를 떨쳐 일으키도록(振起) 해야 한다.

(3) 규율을 지키며 질서를 보호하여 스승으로서의 위의(威儀)를 갖추는 것은 교육자에게 중요한 바다. 그러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평소에 윗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복종하며 생활과 언동을 바르게 하도록 해야 한다.

(4) 건강한 신체는 성업(成業)의 기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평소에 위생에 유의하고 체조에 힘써 건강을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

(5) 교수 방법은 교원에게 적절하고 소학교 교칙에 부합하게 하도록 한다.

'한성사범학교규칙'은 상술한 1895년 2월 2일 교육조서(敎育詔書)에 명시된 지양(智養), 덕양(德養), 체양(體養)의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근대적인 교원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선정부가 모색한 결과물로서 주목할 만하다. 제13조

[표 1-2-5] 한성사범학교 교육 과목

본과		속성과	
수신(修身)	인륜도덕의 요지 및 교수법	수신	인륜도덕의 요지 및 교수법
국문	강독	국문	강독
한문	강독	한문	강독
교육	내외 교육의 연혁 및 저명한 교육가의 전기와 교육 및 교수원리를 가르치는 것과 함께 부속 소학교에서 실제 수업방법을 연습한다	교육	내외 교육사 및 저명한 교육가의 전기와 함께 실제 수업방법을 연습한다
역사	본국 및 세계역사	역사	본국역사 및 세계역사대요
지리	본국 및 세계의 정치, 지리와 지문 초보	지리	본국역사 및 세계지리대요
수학	산술 및 대수기하의 초보와 교수법	수학	산술
물리	물리상의 긴요한 현상과 정률	이과	대의
화학	보통화학상의 현상, 긴요한 원소와 무기화합물의 성질		
박물	동식물의 생리와 위생		
습자(習字)	해서, 행서, 초서의 3체 및 그의 교수법	습자	해서, 행서, 초서의 3체 및 그의 교수법
작문	일용서류 기사문 및 논설문	작문	일용서류 기사문 및 논설문
체조	보통체조 및 병식체조(兵式體操)	체조	보통체조

출처: 한성사범학교규칙.

한성사범학교 교육요지(教育要旨)에서 전체적으로 삼양(三養) 중 덕양에 해당하는 순량공검(順良恭儉), 존왕애국(尊王愛國) 등의 도덕적 규범이 강조된 것은 제5항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한성사범학교 졸업생들이 소학교 교수(教授)를 목적으로 양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제2항에서 한성사범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충효의 대의에 밝고 국민(國民)으로서의 지조를 떨쳐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힌 조항은 유교적 전통에 기반하여 근대적 국민을 창출할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동도서기(東道西器)에서 구본신참(舊本新參)으로 이어지는 조선정부의 개혁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한성사범학교규칙'에 따르면 한성사범학교 본과와 속성과의 교과목은 [표 1-2-5]와 같이 발표되었다. 여기에 1899년부터 지구개론(地球槪論)이 추가되었다.

한성사범학교의 교장은 학부의 참서관, 학무국장, 편집국장이 겸직했다. 교관과 부교관은 대부분 단기간에 퇴직했으며 이중 정운경(鄭雲櫻, 1895. 4~1900. 3), 김형식(金亨湜, 1900. 11~1905. 12), 이인순(李寅純, 1897. 12~1904. 2), 이상익(李相益, 1899. 11~1905. 2), 주도환(朱道煥, 1896. 6. 19~1897. 6. 9), 이용우(李用雨, 1895. 5~1898. 8) 등 정도가 1년 이상 근무한 인물들이다. 그리고 통감부기 이후 1906년 9월 관립한성사범학교로 개정될 당시 교원 조직은 교장 채범석(蔡範錫), 교관(주임관) 이기(李沂), 교관(판임관) 윤정로(尹定老), 현공렴(玄公廉) 등 3명이었다(후루카와 아키라, 2006: 156).[15]

1906년 통감부 설치 이후, 8월 27일 '사범학교령'과 '사범학교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9월 1일 한성사범학교는 관립한성사범학교로 개편되었다. 그 결과 일본인 교관이 직접 초빙되어 교육학과 교수법을 가르쳤으며 특히 일본어의 비중이 커진 것과 실업적 교과목이 새롭게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당시 한국 사범교육에 대한 통감부의 인식은 1909년 4월 다와라 마고이치(俵孫一, 1869~1944) 학부 차관이 훈시한 내용을 학부가 간행한 『한국교육의 기왕 및 현재(韓國教育ノ既往及現在)』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다와라는 통감부 설치 이전 한국 사범교육의 시설여건이 매우 열악했으며 학과 과정은 주로 한학이고 다른 보통과목이 부실했고, 훈련된 교사들도 부족했다고 평가했다(학부 편, 1909: 3).

실제로 통감부기 관립한성사범학교의 교육시설, 교과목, 교수 요원, 학생 수 등이 대폭 확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 중에는 민족운동적 입장에서 통감부 주도의 사범교육에 반대했던 이들도 많았다. 학부는 학부대신의 명령으로 한성부윤과 각 도 관찰사에게 "…교직원 및 학생이 자주 그 본분을 망각하여 직무태만과 경거망동을 일삼고 때로는 정권에 이론을 말하며 또한 사회문제를 논하거나 언동 행동이 상식을 벗어나는 자도 있다 … 교육에 종사하는 자와 교육을 받는 자가 만일이라도 본분을 잊고 정치에 깊이 관여하여 일탈하거나 다른 일로 가벼운 행동을 하여 국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 없도록 교직원 및 학

15 일본인 古川昭의 『舊韓末近代學校の形成』(ふるかわ海事事務所, 2002)의 번역서인 이성옥 역,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경인문화사, 2006)은 관보를 원문대로 인용하지도 않았고, 한국인의 인명이나 지명의 표기에 오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관련 사료가 부족하기에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고 인용하였다.

생 모두에게 엄중히 주의하고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하라"(『구한국관보』 1910. 2. 2, 「학부훈령」 제1호)는 훈령을 내렸다. 실제로 1908년 5월 관립한성사범학교 제9회 졸업생으로서 평안북도 공립영변보통학교 본과 훈도 겸 교장으로 부임한 이기현(李箕鉉)은 학생을 소집하여 시사문제를 논하고 불온한 거동을 했다고 하여 이듬해 1910년 2월로 면관된 바 있다. 이처럼 통감부기 한국 사범교육은 식민지적 근대화의 길을 미리 밟으며 국망을 맞게 되었다.

3) 전통 교육의 개편과 공교육 확충

(1) 성균관과 향교의 근대화

성균관은 명실상부한 전통 시대 최고 학부였다. 조선은 지방의 중등교육기관인 향교와 중앙의 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이 연계된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성균관의 위상은 1894년 갑오개혁 때의 근대적인 교육 개혁 속에서 급속히 추락했다. 사실상 방기와 다름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연구자 간 이견이 없다.

갑오개혁 이후의 성균관 정책들도 결과만 놓고 보면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만한 것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외형상의 모습만이 아니라 해당 정책이 산출되었을 당시의 정치 상황, 재정 실태, 담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야기는 좀 달라진다. 즉, 전통 교육기관인 성균관과 향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던 당대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성균관 교육은 부진했고, 재정도 풍족하지 못했다(성균관대학교 교사편찬위원회, 1998: 228~231). 그러나 갑오개혁 이전에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유학 교육기관의 정비가 추진된 바가 있어 주목된다. 즉, 1887년 국도(國都)에는 경학원(京學院), 열읍(列邑)에는 관학원(官學院)을 설립하기로 했다(구희진, 2004: 65).[16] 정확한 구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지방과 중앙을 잇는 교육기관 정비의 필요성은

16 『고종실록』 1887년 7월 20일 자에는 '經學院'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일성록』 10월 20일 자에는 '京學院'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에 있는 것은 '京學院', 통칭할 때는 '經學院'이라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는 종래 유학 교육이 제한되어 있었던 함경도, 평안도 지방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되었다.

[표 1-2-6] '성균관경학과규칙'에 규정된 교과목(1895. 9. 27)

과목명	교육 내용
삼경(三經), 사서(四書), 언해(諺解)	강독
강목(綱目)	송, 원, 명사
작문(作文)	일용서류(日用書類), 기사(記事), 논설, 경의(經義)
역사	본국 및 만국역사
지리	본국 및 만국지리
산술(算術)	가감승제(加減乘除), 비례(比例), 차분(差分)

출처: 『구한국관보』, 1895. 8. 12.

인식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갑오개혁기 때 성균관은 강학(講學) 기능을 상실하고 향사(享祀) 기능만 담당하게 되었다(『구한국관보』, 1895. 6. 28). 정부는 소학교를 새로 세워 초등교육을 담당케 하고, 고등교육은 일본 유학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균관과 향교의 교육 기능은 외면당했다.

변화는 1895년 8월 성균관이 학부 소속으로 들어온 관제에서 나타났다(『구한국관보』, 1895. 7. 4). 표면상으로는 위상의 격하지만, 국가가 관할하는 교육제도의 틀 속에 성균관을 집어넣으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강명숙, 2000: 159). 곧이어 '성균관경학과규칙'에서 체제가 갖추어졌다. 수업 목표로 경학, 덕행, 문명 진보가 제시되었고, 학기제, 42주의 수업일수, 28시간의 수업시수 규정도 정해졌다. 20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한성 거주 보증인이 있으면 시험이나 추천을 통해 입학할 수 있었다. 교과목도 이때 정립되었다.

사서삼경 강독과 중국의 역사, 작문 등이 여전히 주된 과목이지만, 역사, 지리, 수학 등이 첨가되었다. 특히 본국 및 만국의 역사와 지리를 익힌다고 한 부분에서 자국 및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확대시키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세계 역사와 지리 속에서 본국의 역사와 지리를 탐구함은 실학자들의 정신이 계승된 것이자(이옥진, 2004: 29), 근대 국민국가의 인문 고등교육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대로 이 시기 조선 정부에 대한 일본인 고문관들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고종의 정치 복귀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성균관경학과규칙'은 개화파 정부의 교육정책이 갑작스레 바뀌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학 교육기관을 정비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1896년 개화파 정부가 무너지자 성

균관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학부대신 신기선은 을미의병에 대한 선유(宣諭)가 마무리되자, 1896년 6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개편을 추진했다. 개정된 '성균관경학과규칙'에서 성균관은 최고 학부로 규정되었고, 졸업생들의 관직 진출도 명문(明文)으로 보장되었다(『구한국관보』, 1896. 7. 16). 이후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광무개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성균관 정책은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되었다. 1898년 5월 박사 자리를 증설하고, 1899년 3월 지방에서 노유(老儒)를 뽑아 성균관 박사로 임명하겠다는 칙령이 그것이다. 대한제국 정부는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유교의 종교화를 천명하며 정신적 기반으로 삼고자 했는데, 성균관에 대한 대우 역시 지방 유생들에 대한 위무책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당시 신기선은 경장 이후로 학문에 능한 노유를 수용할 방도가 전혀 없다는 점, 독서인이 사라지고 종교를 부식할 방도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지방 노유의 성균관 박사 임용 정책을 제안했다[『각부청의서존안(各部請議書存案)』(규 17715) 10책]. 고종 역시 1897년 4월 27일의 조칙에서 "성균관 안에 초현당(招賢堂)을 설치하여 풍부한 학문을 지니고 숨어 있는 선비를 맞이할 것"이니 "학부에서 성균관관제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조칙(詔勅)』(규 17708) 7책].

그러면 이 시기 성균관은 유학에 바탕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다. 1899년 소학교, 사범학교, 각국어학교, 무관학교, 법률양성소, 의학교 등 개혁 이후 새로 만들어진 학교들과 비교하면 성균관이 유명무실하여 세계의 대학교와 견줄 수 없다거나(『황성신문』, 1899. 9. 7), 향교에는 무식한 자들이 자리를 차지하여 술 취해 행패를 부리고 소속 전토를 투매(偸賣)하며 교임(校任) 자리를 내세워 토색질이나 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황성신문』, 1899. 12. 7). 1902년에도 수십 명의 성균관 유생들은 찬 음식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데, 시취(試取)의 방법은 여전히 문제가 많아 옛날 과거시험장의 폐해들이 계속되며, 뽑힌 후에는 박사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얻는 데 불과할 뿐 교양 실용의 지식은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황성신문』, 1902. 12. 10).

이 시기 개신유학자들은 고종 등극 40주년을 맞아 제후국이 아닌 황제국의 전례에 걸맞도록 성균관을 벽옹(辟雍, 고대 중국에 천자의 나라에 설치한 대학)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준, 2016a: 7~11). 초현당을 설치하겠다는 고종의 약

속을 근거로 해서 위로는 성균관부터 아래로는 주군(州郡)에 이르기까지 양사재(養士齋)를 두어 황제에게 추천케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조회원본(照會原本)』(규 17234) 1책]. 또한 성균관의 이름을 태학(太學)으로 바꾸고 지방 각 부군(府郡) 향교에도 교관, 참봉을 1명씩 두어 업무를 담당시키자고 했다[『조회원본』(규 17234) 1책]. 당시 지방 향교 자리에는 공립 소학교가 들어서고 있었다. 성균관과 향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 개편에 대한 개신유학자들의 구상은 다음 기사에 잘 나타난다.

> 각 부(府), 각 군(郡)에 명령하여 일체 학교를 설립하되 향교를 학교로 정하게 한다. (중략) 모든 인민 자제 중 8세 이상인 자는 모두 서원(書院), 이숙(里塾)에 들어가 취학(就學)했다가 15세가 되면 군(郡) 학교에 들어간다. 몇 년 후 졸업한 다음에 그 우등자를 선발해 각 부(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게 하고, 다시 부학(府學)에서 경성(京城)에 선발 보고하여 혹은 사범중학에 입학하고 혹은 태학(太學)에 입학시킨다. 시험을 치르고 뽑고 직(職)에 붙이는 일은 모두 정해진 제도에 따라 수용(需用)의 방법으로 삼는다. 사족(士族)과 평민을 막론하고 그 자제가 나이 8세가 되었는데 입학시키지 않는 자는 죄를 부모에게 묻는다(『황성신문』, 1902. 12. 12).

개신유학자들의 성균관과 향교 운영에 대한 비판과 기대는 곧 고종과 대한제국 정부가 내세운 유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제도 정비 방침에 대한 호응이기도 했다. 즉, 대한제국 정부가 지방 향교를 체계적으로 소학교로 변모시키고 신설된 전문학교들은 중등학교로 정립하며 성균관을 최고 학부에 걸맞게 지원했다면 당대인들의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성균관의 실제 운영이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우선 재정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시기 학부 예산의 비율이 높지 않았다. 학부 예산은 1896년부터 1910년까지 평균 206,225원, 비율로 1.8%를 차지한다. 가장 비중이 높을 때인 1896년에는 2.93%였고, 1905년에는 1.14%로 가장 낮았지만 이는 전체 예산의 증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학부 소관 예산 액수 자체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김대준, 2004). 광무개혁이 본격화된 이후 대한제국 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교를 설립·유지하는 것보다는 당장의 군주권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자원을 동원하는 데 있었다. 학부 예산 중 성균관비의 비중

[표 1-2-7] 학부 예산 중 성균관 예산의 비중 단위: 원(元)

항목	1896년	1905년	1906년	1907년
성균관 예산	7,986	9,059	6,486	6,210
학부 전체 예산	126,752	218,736	154,942	286,853
학부 예산 중 성균관 예산 비율(%)	6.30	4.14	4.18	2.16

출처: 김대준(2004); 『구한국관보』, 1896. 1. 20.

도 크지 않았다.

1906년 시점에서 보면 대한제국 정부가 성균관 운영에 사용한 비용은 사범학교, 중학교, 의학교, 농상공학교, 일어학교, 영어학교 등에 각각 사용된 액수에 비해 적었다. 일어학교 비용으로 7,170원이 책정된 시점에 성균관에는 6,486원이 할당되었다. 1897년부터 1904년까지도 대체적으로 그러한 경향이 유지되었으리라 추정된다. 당대 성균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른 자료에서도 증명된다(김종준, 2016b). 앞서 1895년에는 성균관 직원의 봉급과 학생비 등으로 매달 228원씩 지급되던 돈이 6개월 동안 나오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불만이 올라왔다[『탁지부청의서(度支部請議書)』(규 17716) 2책]. 1899년 이후에는 내장원의 황실 재정 강화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여주(驪州), 양근(楊根) 등지 성균관 소속 시장세(柴場稅)였다. 학부는 성균관 관할이라며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했으나, 내장원경 이용익은 황제의 명령임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훈령조회존안(訓令照會存案)』(규 19143) 25책]. 성균관을 정점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정비를 표방한 것도 고종이고, 우선순위에서 이를 배제한 것 역시 고종이었다. 독립협회가 해산된 이후에는 성균관 우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04년 이후 대한제국 정부의 학교 정책이 변화하는 것 역시 고종의 뜻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내정 간섭이 전개된 1904년, 고종은 학교 설립을 권장하는 조칙을 연이어 내렸다. 1906년 3월 26일에는 사학(私學) 설립 조칙을 내렸는데 학교 설립 방안으로 학부, 부(府), 군(郡) 등 국가 행정조직을 동원한다고 했다(『고종실록』, 1906. 3. 26). 각 지방에서는 이에 호응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설립된 사립 학교들은 내장원 소관의 역둔토 등을 학교 재원으로 삼고자 했고, 대한제국 정부도 이전과 달리 이를 용인했다(김종준, 2009: 102~103). 역으로 생각해보면 애

초부터 고종과 대한제국 정부가 학교 설립과 유지를 등한시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904년 이전에는 재정을 일단 내장원으로 일원화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하려고 했다.

그런데 학교 설립 및 유지의 경우, 아직 거기까지 지출을 확장시킬 여유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국권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고종과 대한제국 정부는 재원을 지역사회에 맡겨 스스로 학교를 설립·유지케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는 성균관의 경우 여전히 크게 손댈 수는 없었다. 즉, 고종과 대한제국 정부는 본래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전통적 지식인과 개화 지식인들을 두루 포섭하여 교육을 확대할 생각이었는데 1904년 이후에야 불완전한 형태로 급작스럽게 일부 실현되었던 것이다.

성균관관제는 통감부 아래 1908년 11월 20일 다시 변했다. 이때의 '성균관학칙'으로 성균관의 체제는 한층 명확해졌다. 이전까지 모호했던 정원이 30명으로 고정되었고, 학년에 따른 수업 일정과 학과목, 시수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본국 역사와 지리, 동양 역사와 지리, 만국 역사와 지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도록 했으며, 수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에 해당하는 교과목들도 세분화되었다(『구한국관보』, 1908. 11. 25). 본래 통감부는 성균관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김경용, 2011: 47~48).[17] 그러나 통감부 입장에서 성균관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학칙이 만들어지기 5개월 전에 순종이 성균관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 이때 순종은 경학(經學) 과목만 공부한다는 말을 듣고 "반드시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종실록』, 1908. 6. 13). 일단 외형적으로는 성균관을 고등교육기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황제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 정밀한 성균관 학칙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균관의 고등교육기관화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와 지식인들의 열망, 그리고 유생층의 포섭을 통해 지방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던 통감부의 정치적 목적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17 학정참여관(學政參與官)이었던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는 성균관을 대학으로 해서 고등학교 또는 사범학교 졸업생이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했으나(幣原坦, 1905), 그의 경질 후 학부의 기본 입장은 "학제를 단순화해서 과정을 간이하게 하고 오로지 실용에 적합하게 한다"는 것이었다(學部, 1909). 1906년 6월, 성균관을 독립시킨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통감부 총무장관 쓰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는 우리 정부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황성신문』, 1906. 6. 13; 『통감부문서』 1권).

[표 1-2-8] 역대 성균관장과 임명 날짜

역대 성균관장	임명 날짜
조병건(趙秉健)	1895. 7. 7
박승봉(朴勝鳳)	1895. 10. 15
이상설(李相卨)	1896. 1. 20
이경직(李庚稙)	1896. 2. 28
김복한(金福漢)	1896. 6. 15
서상봉(徐相鳳)	1896. 8. 15
신두선(申斗善)	1898. 6. 3
이경직(李庚稙)	1899. 4. 25
이종원(李種元)	1900. 5. 1
서상훈(徐相勛)	1901. 5. 18
임선준(任善準)	1907. 1. 9
김유제(金有濟)	1907. 5. 30

출처: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구한국관보』.

한다.

마지막으로 성균관장에 임명된 인물은 [표 1-2-8]과 같다. 대체로 갑오개혁기에는 근대적인 지식을 갖춘 실무 관료가 맡았으나 아관파천 이후에는 전통적 유학 지식을 구비한 문과 급제자 출신의 인물들이 성균관장을 맡았다(성숙경, 2006: 136). 이상설은 1896년 1월 성균관 교수 겸 관장을 맡았다가 한성사범학교 교관으로 전임했다. 1900년 5월 이경직은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유생들의 집단 행동으로 쫓겨났다(『제국신문』, 1900. 3. 20, 22, 23). 1907년에는 성균관 학생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의연(義捐)하려 했는데 성균관장 임선준이 방해하자 이에 항의하며 일제히 퇴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대한매일신보』, 1907. 3. 16, 23).

(2) 관립 소학교 · 중학교 설립

고종 대 교육개혁의 목표는 전문 관료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교육 실시였다. 법관양성소, 외국어학교가 전자를 위한 것이었다면 소학교 및 중학교는 한국에 근대적 공교육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상술한 것처럼 1894년 6월 28일 발표된 학무아문 관제에 따르면 소학교 및 사범학교는 보

통학무국에서, 중학교는 전문학무국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학교, 중학교를 포함한 공교육기관 설립을 한국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범학교와 마찬가지로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공교육기관 설치에 관한 공식 문서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청일전쟁 발발 후 조선의 사정을 전했던 『아사히신문(朝日新聞)』, 『호치신문(報知新聞)』의 보도에 따르면 1894년 10월 한성에 소학교가 개설되었으며, 소학교는 장동(壯洞), 정동(貞洞), 묘동(廟洞), 계동(桂洞)의 네 곳에 설립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언문(諺文), 수신(修身), 물명사(物名辭), 조선지리 초보, 만국지리 초보, 조선역사 초보, 만국역사 초보, 작문, 산술 등을 교육했다. 그러나 재정난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아사히신문』, 1894. 11. 27, 1895. 3. 20; 『호치신문』, 1895. 1. 24). 이후 을미개혁이 진행되기 전까지 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공식 문서로 확인되는 최초의 기록은 1895년 9월 7일 공포된 '소학교령(小學校令)'이다. 총 3장 2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이 기안하여 내각회의를 통해 고종의 결재를 얻어 반포되었다. 그 중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소학교령〉

제1장 소학교의 본지(本旨)와 종류 및 경비

제1조 소학교는 아동 신체의 발달을 살펴 국민교육의 기초와 그 생활상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능을 전수함을 본지(本旨)로 한다.

제2조 소학교를 나눠 관립 소학교, 공립 소학교 및 사립 소학교의 3종으로 한다. 관립 소학교는 정부가 설립하며 공립 소학교는 부(府)나 군(郡)이 설립하고 사립 소학교는 개인이 설립한 것을 말한다.

…

제2장 소학교의 편제 및 남녀 아동의 취학

제6조 소학교를 나눠 심상(尋常), 고등(高等) 2과로 한다.

제7조 소학교 수업연한은 심상과는 3년, 고등과는 2~3년으로 한다.

제8조 소학교 심상과 교과목은 수신(修身), 독서, 작문, 습자(習字), 산술, 체조로 한다. 시의(時宜)에 따라 체조를 제외하며 또 본국지리, 본국역사, 도화(圖畵),

외국어 중 한 과목이나 여러 과목을 더하고 여자아이를 위해 재봉을 더할 수 있다.

제9조 소학교 고등과의 교과목은 수신(修身), 독서, 작문, 습자, 산술, 본국지리, 본국역사, 외국지리, 외국역사, 이과(理科), 도화(圖畵), 체제로 하고, 여자아이를 위해 재봉을 더한다. 시의(時宜)에 따라 외국어 한 과목을 더하며 또 외국지리, 외국역사, 도화(圖畵) 한 과목 혹은 여러 과목을 제할 수 있다.

…

제16조 만 7세에서 만 15세까지 8개년을 학령으로 한다.

제3장 소학교의 설치 및 감독

제17조 각 부군(各府郡)의 관내에 학령 아동이 취학할 공립 소학교를 설치한다.

제18조 각 부의 관찰사는 공립 소학교를 설치하기 전 사립 소학교로 대용할 수 있다.

…

제20조 관립 소학교는 학부의 직할, 공립 소학교는 각 부군(各府郡)의 관할에 속하며, 사립 소학교는 해당 관찰사의 감독을 받는다.

…

부칙

…

제29조 당분간 관립 소학교 및 공립 소학교 예산 중에서 외국 교사를 고용할 수 있다(『구한국관보』, 1895. 7. 22).

이 중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교육 목적은 1890년에 발표된 '일본소학교령' 제1조에서 밝히는 교육 목적, "소학교는 아동 신체의 발달을 살펴 도덕교육 및 국민교육의 기초와 그 생활상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능을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와 거의 동일하다. 또한 학제 편성도 일본과 동일하게 심상과(3년), 고등과(2~3년)로 했으며 가르치는 과목도 일본 학제와 대동소이했다(후루카와 아키라, 2006: 15~16). 실제로 학부대신 이완용은 7월 14일 이 법안을 내각에 청의(請議)했는데, 내각에서는 학부에 "소학교 규칙을 이해하는 관원이 내각 고문관의 처소로 가서 강정(講定, 토론하여 결정)하라"고 지시했고, 18일 학무국장 이응익(李應翼)이 내각 고문관 이시쓰카 에이조(石塚英藏)를 방문해 규칙에 대해 협의하여 19

일 각의에서 몇 가지 수정을 거친 후 고종의 재가를 받아 반포했다[『학부래거문(學部來去文)』, 1895. 7. 19; 김경미, 2009: 147에서 재인용]. 또한 『한성신보(漢城新報)』에 따르면 제8, 9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국어 교과목은 일본어이며(『한성신보』, 1895. 9. 9, 15, 17), '소학교령' 중 외국인 교사 고용과 관련한 제29조는 상술한 이응익과 이시쓰카의 면담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다(김경미, 2009: 155). 이처럼 갑오개혁에 이어 을미개혁 당시의 소학교 시행 계획은 일본의 사례를 상당 부분 차용했으며 그 추진 과정에서도 일본인들의 영향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소학교령'은 전 국민에 대한 보통교육을 시행한다는 뚜렷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령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소학교령 수정안에 관한 내각의 의결 문서에는 소학교령을 공포하는 목적은 "점차로 각 지방에 소학교를 설치ᄒᆞ야 국민교육이 보급ᄒᆞ믈 도ᄒᆞ고져 홈"이라 했다. 또 원안에는 심상과의 수업연한을 3~4년으로 정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를 3년으로 수정했고 그 이유를 "보통교육은 소수자에 깊히 급ᄒᆞᄂᆞᆫ 것 보담 엿터도 일반인민에게 협흡(浹洽)ᄒᆞ믈 주지로 홈"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원안에는 소학교 관련 각종 규정들이 관립 소학교에만 해당된다고 했으나, 수정안에는 '보통교육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이를 공·사립 소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여아 교육에 대해서도, "여아 교육이 긴절ᄒᆞ기ᄂᆞᆫ 남아에 비ᄒᆞ야 소차(小差)업다"는 이유로 각의에서 새로 규정하여 포함시켰다(『의주』 2: 425; 김경미, 2009: 148에서 재인용). 국민 전체에 대한 보편적 공교육 시행은 북학파 이래 조선 후기 실용적 교육개혁론의 요체 중 하나이며, '소학교령'은 이를 최초로 법제화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상술한 것처럼 일본의 신문 보도에 따르면 1894년 갑오개혁 당시 한성의 소학교는 장동, 정동, 묘동, 계동의 네 곳에 설립되었다.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으나 1895년 '소학교령' 발표 이후 학부는 을미의숙(乙未義塾)의 교사(校舍)에 소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한성신보』, 1895. 9. 15). 을미의숙은 1895년 김윤식을 비롯한 온건개화파 관료가 중심이 되어 한성 내에 7개교 정도를 설치·운영했으며 아유카이 후사노신(點貝房之進) 등이 근대 학문 및 일본어 교육을 담당했던 학교였다.[18] 학부는 관보의 광고를 통해 장동(8. 8), 정동(8. 9), 계동(8. 12),

18 을미의숙에 대해서는 김경미(1998) 참조.

묘동(8. 13)에서 각각 학교의 개학을 알리고 학생을 모집했다. 그리고 을미의숙 시절 각 지역의 소학교에서 수학했던 생도들 중 일부가 그대로 관립 소학교 재학생으로 승계되었다(『구한국관보』, 1895. 8. 28: 학사).

1895년 11월 16일에는 기존의 학교 건물이 협소해 정동 이외 세 곳의 관립 소학교를 이전했다(『고종실록』, 1895. 9. 28). 그리고 한성부 소관 공립 소학교는 대략 10월 1일경에 성 밖의 한성부 관할 구역에 설립되었다(『구한국관보』, 1895. 8. 15). 각 지방의 공립 소학교는 1896년 1월부터 설립되기 시작해 한성사범학교 1회 졸업생들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1896년 9월 17일 제5호 학부령에 따라 한성부, 경기(수원), 충청북도(충주), 충청남도(공주), 전라북도(전주), 전라남도(광주), 경상북도(대구), 경상남도(진주), 황해도(해주), 평안남도(평양), 평안북도(정주), 강원도(춘천), 함경남도(함흥), 함경북도(鏡城), 개성, 강화부, 인천, 부산, 원산, 경흥항, 제주목, 양주, 파주, 청주, 홍주, 임천, 남원, 순천, 영광, 경주, 안동, 안악, 의주, 강계, 성천, 원주, 강릉, 북청군 등 38곳에 공립 소학교를 설치하게 되었다(『구한국관보』, 1896. 9. 21). 교사로는 사범학교 및 한성사범학교 졸업생들이 충원되었으며 학생들은 주로 중인 출신이었다(김경미, 2009: 169~170).

1895년 10월 3일, 학부는 '소학교교칙대강(小學校敎則大綱)'(학부령 제3호)을 발표했다. 총 15조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목표, 각 과목의 교수 방법, 각 과정의 교육 방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소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행하려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목표로는 '덕성함양'과 '실용지식 전수'를 같이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심상과에서는 효제(孝悌), 우애(友愛), 예경(禮敬), 인자(仁慈), 신실(信實), 의용(義勇), 공검(恭儉) 및 존왕애국(尊王愛國)의 사기(士氣)와 국가에 대한 신민(臣民)의 책무를 교육할 것을 제시했다. 독서와 작문은 국한문 혼용문과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서 등을 학습하도록 했으며, 그 외의 과목들도 모두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반복 학습을 통해 전수하는 것이 교수 방침이었다. 구체적인 과목별 매주 수업시간은 [표 1-2-9], [표 1-2-10]과 같다.

소학교의 실제 운영 상황에 관해서는 1903년 일본 농상무성에서 한국토지농산조사단의 일원으로 파견된 기사(技師) 우도 요시오(有働良夫)의 보고서가 참고할 만하다. 그는 1904년 순회 중 진주공립소학교의 공개수업에 참관한 기록을 보고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진주공립소학교의 학습 과목은 독서, 습자(習字), 역

[표 1-2-9] 소학교 심상과 교육목별 매주 배당시간 수 단위: 시수

교과	1년	2년	3년	계
수신	3	3	3	9
독서	6	6	6	18
작문	3	3	3	9
습자	5	5	3	13
산술	6	6	6	18
지리역사	-	-	3	3
체조	5	5	4	14
계	28	28	28	84

출처: 후루카와 아키라(2006: 50) 참조하여 작성.

[표 1-2-10] 소학교 고등과 교과목별 매주 배당시간 수 단위: 시수

교과	1년	2년	3년	계
수신	3	3	2	8
독서	4	4	4	12
작문	2	2	2	6
습자	2	2	2	6
산술	5	5	5	15
지리역사	4	3	4	11
이과	3	3	4	10
도화	2	2	2	6
체조	2	2	2	6
일어	3	4	3	10
계	30	30	30	90

출처: 후루카와 아키라(2006: 50) 참조하여 작성.

사, 지리, 산술, 체조이되 교과서는 학부에서 간행한 『심상소학(尋常小學)』, 『만국지지(萬國地誌)』 외에는 『천자문』, 『사략(史略)』, 『통감(通鑑)』, 『논어(論語)』, 『중용(中庸)』, 『주역(周易)』, 『시경(詩經)』, 『서경(書經)』 등 모두 한학 서적이었다. 특히 상급반으로 올라갈수록 전통 교육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입학 연령, 졸업연한,

수업시간도 정해진 규정이 없거나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후루카와 아키라, 2006: 51~53). 통감부에서 간행한 『한국시정일반(韓國施政一般)』에서도 창립 당시의 소학교가 "단지 한학의 음독에 전력을 다하고 습자를 가르치는 정도에 그쳤으며, 역사, 지리, 이과 등은 모두 읽고 외우는 것에 불과했다. 산술도 마찬가지로 수업하지 않는 것이 많았다"고 평가했다(통감부, 1906: 197). 이처럼 당시 소학교의 운영 실태는 전통적인 서당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우선 예산 문제였다. 공립 소학교가 전국에 설치되던 1896년 당시 정부 예산을 보면 학부 소관 예산 126,752원 중 각 지방에 신설된 공립 소학교 보조비는 13,800원으로 10.8%에 달하여 사실상 지방 공립 학교 보조비 중 대부분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의 예산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고 외국어 학교 등 기타 단기적 효과가 큰 전문학교에 대한 투자가 더 시급하다는 인식 때문에 소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점차 줄어들었다(김경미, 2009: 189~190). 1901년 1월에는 탁지부가 각 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공립 소학교의 보조비를 전혀 줄 수 없었다(『제국신문』, 1901. 1. 19). 본래 공립 소학교의 경비를 부담해야 했던 지방 부군(府郡)의 재정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부는 각 도군의 향교 및 서원의 재원 중 일부를 지방 소학교로 이관하도록 했다(『독립신문』, 1898. 5. 24; 『황성신문』, 1899. 1. 18). 그 결과 지방의 유림들이 공립 소학교 운영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실제로 1896년 2월 25일 발표된 '보조공립소학교규칙'에서 공립 소학교의 교원은 학부에서 파견하고 부교원은 각 관찰사가 해당 지방 안에 학행(學行)이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도록 한 것은(『구한국관보』, 1896. 2. 25) 이러한 현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조선 정부 안에서 벌어진 교육정책에 관한 논쟁도 소학교 교육의 일관성에 영향을 끼쳤다. 상술한 것처럼 갑오개혁 이후 한국 정부의 교육개혁을 주도한 사람은 박정양이었다. 박정양은 1894년 7월 15일 학무아문 대신으로 임명된 후 1895년 5월까지 재직하면서 갑오~을미년간 각종 교육개혁사업을 직접 장악하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1895년 조선의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갑신개화파 출신인 박영효가 재차 일본으로 망명하고 총리대신 김홍집도 잠시 실각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박정양은 총리대신, 내부대신 등 정치적 요직을 담당하게 되었다. 대신 학부대신은 박정양이 주미공사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휘하에서 공사관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미국 교육을 목격했던 이완용이나, 고종과 이노우에의 합의 아래 조

선에 귀국하여 개혁정치의 일선에 있었던 갑신개화파의 일원인 서광범(徐光範)이 1895년 10월까지 담당했다. 이 기간에는 교육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을미사변, 아관파천 등을 통해 조선 정국에 심각한 변동이 찾아오고 고위 관료들이 교체되면서 교육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을미사변 직후 서광범은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어 미국에 파견되었으며 대신 군부대신 이도재가 학부대신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이도재는 그 전임들과는 달리 근대적 정책을 접한 경험이 없었던 보수 관료로서 단발령과 연호(年號) 제정에 반대하며 직첩(職牒)을 거부하다가 한 달 만에 체직되었다. 그 후임으로 임명된 조병직(趙秉稷)도 비슷한 성향의 인물이었다.

특히 조병직 이후 학부대신으로 임명되어 1896년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한 신기선(申箕善)은, 기호학계(畿湖學係)에서 성리학을 수학한 인물로 1880년대에는 동도서기론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갑오개혁 이후에는 일본의 침략으로 급격한 근대화가 강요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전통적인 교육으로 복귀를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사범학교 및 소학교의 한글 교과서를 한문본으로 교체했고 체조를 폐지했으며 의관을 전통식으로 되돌리고 외국인 교사의 임용을 제한하는 훈령을 발표하기도 했다[『교육시론』 405호, 1896. 7. 15, 「조선학사휘보(朝鮮學事彙報)」]. 이러한 복고주의적 정책은 학생들과 언론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독립신문』, 1896. 6. 4, 11, 13), 서양을 비판하는 교육 방침을 제시하여 외국 공사관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학부래거문』 조복(照覆) 제22호, 1896. 10. 8]. 이후 정국의 변동에 따라 신기선 체직 이후 학부대신이 민종묵(閔種默), 이완용, 조병직, 조병호(趙秉鎬), 이도재(李道宰) 등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인물로 교체되면서 그때마다 교육개혁의 방향도 변경되었다. 고종과 개화파를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추진된 교육개혁이었음에도 한국 정부 내에서 충분한 의견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1904년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이 한국 내정을 장악하게 되면서 개혁의 주도권은 통감부가 장악하게 되었고,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의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보통학교'로 변화하게 된다.

한편 공교육제도 중 '중학교관제'는 1899년 4월 4일 발표되었다(『구한국관보』, 1899. 4. 6). 이 관제는 총 17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에서 중학교 설립의 목적을 "실업(實業)에 종사하고자 하는 인민(人民)에게 덕을 바르게 하고 이용후생(利用厚生)하는 중등교육을 보통으로 교수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업연한은 심상과(4

년제)와 고등과(3년제)를 두었으나(제2, 3조) 구체적인 과목은 "학부대신이 정함"이라는 조항(제4조) 외에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사범학교처럼 외국인 교사를 둘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외국어 교육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제10조).

소학교와 비교해 가장 특이했던 점은 지방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을 따로 밝힌 것이다. 지방에 설립될 중학교에는 심상과만 두며(제12조) 학교 건물은 해당 군(郡)의 향교를 사용하도록 했고(제13조) 교장 및 서기는 지방관원 중에서 겸임하도록 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공립 소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 관청이나 유생들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같은 해 5월에는 학무국장 김각현(金珏鉉)을 관립 중학교 겸임교장으로 발령했으며 민달식(閔達植), 박승원(朴承源) 등이 교관으로 임용되었으나 대부분 1~2개월 안에 경질되었다. 11월에는 전임교장 이필균(李弼均)이 발령되었으나 여전히 학교는 개교되지 않은 채로 직원의 잦은 임면만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9월 3일이 되어서야 '중학교규칙'(학부령 제12호)이 제정되었다(『구한국관보』, 1899. 9. 7). 총 6관(款) 30조(條)로 이뤄진 이 규칙은 총칙, 학과 · 교육 정도, 학급 · 학기 · 학년, 입학 · 휴학, 재학 · 퇴학 · 출학(黜學) · 처벌, 시험 · 졸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학교규칙'에 따르면 심상과의 과목은 윤리, 독서, 작문, 역사, 지지(地誌), 산술, 경제, 박물(博物), 물리, 화학, 도화, 외국어, 체조로 정해졌다. 고등과는 심상과의 과목 중 윤리가 제외된 대신 법률, 정치 등 지식인이나 관료가 이수해야 할 교과나 공업, 농업, 상업, 의학, 측량 등 전문 실업인이 학습해야 할 과목들이 포함되었다(제2관 제2조). 상기한 대로 '중학교관제'가 중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업에 종사하는 인민을 양성함"으로 명확히 제한한 반면, '중학교규칙'은 "국민에게 필요한 중등교육을 교수함"으로 하여(제1관 제1조) 그 의미를 확대했다. 특히 중학교 고등과 졸업생은 판임관(判任官)과 전문학교 학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여(제1관 제3조) 지식인 및 관료 후보생을 양성하는 것이 중학교 교육의 목적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중학교를 관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한 것은 소학교와 동일했다. 그러나 중앙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학교를 관립으로,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를 공립으로 규정한 소학교 관련 규정과는 달리, "관립 중학교는 정부가 설립하고 공립

중학교는 관민(官民)이 경비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설립하고 사립 중학교는 사인(私人)이 경비를 지급하여 설립함"이라고 밝히고 있다(제1관 제6조). 또한 공·사립 중학교의 경우 지방관과 관찰사 또한 그 인·허가에 관여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제1관 제7조). 이는 '중학교규칙'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재정난 때문에 지방 관아 및 지방 유생들의 재정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학부는 1900년 9월 11일 고등소학교 졸업자로서 만 17세 이상, 25세 이하인 자 중에서 학생을 선발하여 1901년 10월 제1기생이 입학했다. 중학교관제를 공포한 이후 2년이 지나서야 학교를 개교한 것은 당시 소학교 운영도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학교육의 필요성이 그리 강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관립 중학교는 김옥균 가옥 터에 교사를 신축하여 10월 3일 개교했다[『경성공립제일고등보통학교학우회지(京城公立第一高等普通學校學友會誌)』, 1935: 77~78].

그러나 중학교의 실제 운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우선 교관들의 근무 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학부는 중학교 교관들을 징계하는 한편(『황성신문』, 1901. 10. 16) 교관들의 태만한 자세를 개선하라는 훈령을 발표했다(『황성신문』, 1902. 1. 10). 실제로 중학교에서 '신학문(新學問)'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일본인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를 임명했으나 통역관이 출근하지 않아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황성신문』, 1903. 4. 23).

교관들의 이러한 행태는 비단 중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었으나,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 태도 또한 매우 불량했다. 학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학 당시 80여 명이던 학생이 개교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1902년 5월에는 30여 명으로 감소했다(『황성신문』, 1902. 6. 4). 작문 수업 등 인기가 없는 과목의 경우 학생들이 나가버려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황성신문』, 1903. 4. 23.). 이는 '중학교규칙'에서 중학교육의 목적을 관료 후보생 양성으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중학교 졸업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딱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학교 졸업생이 아니면 관직에 진출할 수 없다는 법적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관리 선발 시험에서 별도의 이점을 얻지도 못했다. 사범학교, 법관양성소, 외국어학교 등 구체적인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1904년 4월 2일 '각학교졸업자수용규칙'(칙령 제10호)을 발표해 사범학교 졸업생, 각 전문학교 졸업생, 외국 유학생과 함께 중학

교 졸업생도 각 관청에 순차적으로 임용하도록 했으며(『구한국관보』, 1904. 4. 5), 실제로 1904년 7월 관립 중학교 심상과 제1회 졸업생들은 전원 중학교 교관으로 발령되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교관직에 임용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당시 학부 소관 관직 중에서 선호되는 직위는 아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관립 중학교는 통감부 설치 이후 1906년 관립 한성고등학교로 개편되어 '고등보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일제 강점기 조선인을 위한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고등보통학교'로 변화하게 된다.

제3절 대한제국 수립과 관립 고등교육기관의 발달

1) 대한제국 수립의 역사적 의의

경화거족(京華巨族)을 중심으로 한 소수 가문의 권력 독점, 국가 재정의 사유화로 인한 재정의 문란, 별치기구(別置機構)의 남설(濫設)로 인한 행정의 문란 등 19세기 말 조선왕조는 분명히 여러 가지 내부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구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박영효, 박정양, 유길준 등 개화파들은 각각 나름의 '군민공치론(君民共治論)'을 발전시켜 근대적 국가 체제를 구상했다(왕현종, 2005: 64). 그리고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을 계기로 시작된 갑오-을미개혁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개혁안의 선진성에도 불구하고 갑오-을미정권은 처음부터 명백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김홍집, 유길준 등 친일개화파를 중심으로 성립된 갑오-을미정권은 일본과 협력하여 조선 전통 권력의 구심점인 고종을 배제했다. 그 결과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많은 개혁안이 발표되기는 했으나 정작 이를 행정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관료집단을 장악하지 못했다. 개혁안을 피지배층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권위를 행사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1895년 8월 20일 일본의 왕후 시해 폭거에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갑오-을미정권은 개혁의 추진은

고사하고 존속을 위한 정당성마저 상실했다.

이를 통해서 구한말 조선 왕실이 갖고 있었던 역사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왕실은 500년 동안 이어진 조선의 정치적 구심점으로서 조선 사회의 내부적 모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왕권(王權)과 민권(民權)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1890년대 조선 사회의 대부분은 아직 근대적 민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의 폭력을 정치적 동력으로 활용하여 추진된 정치개혁이 조선인들의 지지를 받기란 요원한 일이었다.

이는 당시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고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을 보여준다. 고종에 대한 정치가 개개인들의 호오(好惡)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한말 조선 사회를 결집시킬 수 있는 절대적이며 유일한 구심점이었다. 백범 김구는 34세 무렵(1910년경) 개최했던 집회에서 '대황제(고종)의 사진' 앞에 참석한 일동을 기립하여 국궁(鞠躬)한 뒤 강연을 시작했으며, 이때 국궁한 일동 중에는 일본 장교와 경관들까지 있었다. 1946년 귀국한 뒤에도 7월 24일 고종황제의 홍릉을 참배할 정도였다(이태진 외, 2005: 190~191). 전형적인 유학자도 아니었으며 조선 정부나 왕실의 행태에 대해 도리어 비판적이었던 김구가 고종에 대해 이러한 존경의 뜻을 표한 것은, 고종 개인의 인격이나 업적뿐만 아니라 500년 동안 이어진 조선 왕실에 대한 존숭의 감성이 당시 사회에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왕을 배제하고 추진하는 개혁이란 현실성을 결여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갑오-을미개혁의 비현실성은 결국 을미사변이라는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왕실과 국가의 존속을 위해, 또한 개혁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종이 군주권 강화를 추구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을미사변 이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고종은 10월 12일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하려 했던 춘생문사건(春生門事件)을 일으켰으나 사전에 계획이 누설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1896년 2월 11일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아관파천). 일국의 군주가 타국의 공사관에 피신한 것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었으나, 이를 통해 일본 군사력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경쟁시킴으로써 조선의 자주권을 다시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러시아 공사관에 기거하는 동안 고종은 친

일 내각을 축출하고 의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확보했으며, 갑오-을미개혁 당시 23부로 재편되었던 지방행정제도를 다시 기존의 8도에 기초한 13도 체제로 복귀시켜 지방의 여론을 무마하고 행정조직을 장악했다.

특히 고종이 군주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은 황제국 선포였다. 이는 조선이 개항한 이래 국내외에서 여러 번 제안된 바 있다.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최초 제안자는 김옥균이었다. 그는 갑신정변 당시 청국에 대한 조선의 사대조공외교를 폐지하고 조선 국왕을 청국 황제와 동등하게 격상시킬 것을 주장했다. 1894년에는 오토리 게이스케가 조선 정부에 내정개혁을 요구했을 때도 황제국 선포를 언급한 바 있다.[19] 갑신개화파들이나 일본 정부가 조선의 황제국 선포를 지지한 것은 조선과 청국의 관계를 분리시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을미사변 직후에도 황제국 선포가 제안된 바 있다. 조희연(趙羲淵), 권형진(權瀅鎭), 정병하(鄭秉夏) 등 을미사변에 관여했던 내각 내 친일 관료들이 주축이었다(『윤치호일기』, 1895. 10. 15). 을미사변으로 인한 국내외의 부정적인 여론을 일축하고 고종을 포섭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살해된 황후가 사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폐서인(廢庶人)이 된 상황이었기에 조야(朝野)의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고종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을 포함한 외국 공사들도 반대한 상황이었다. 결국 아관파천을 계기로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고종이 직접 황제국 선포를 추진한 것은 1897년 2월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온 이후부터였다. 환궁(還宮) 직후부터 전 군수 정교(鄭喬), 전 승지 이최영(李最榮), 유학(儒學) 심의승(沈宜承), 권달섭(權達燮), 강무형(姜懋馨), 중추원(중추원) 의관(議官) 임상준(任商準) 등 고종 지지 세력들은 고종의 황제 즉위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라, 고려 대에 이미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여 황제국의 전통을 만든 적이 있다. 고종의 덕(德)과 공(功)이 충분하기에 황제의 칭호를 사용할 만하다.
2. 영토가 넓지 못해 황제국을 선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서 옥저(沃沮), 탐라(耽羅) 등 여러 왕국을 병합하여 만든 제국이다. 또

1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7, 一. 기밀본성왕복(機密本省往復), (26) 황제칭호의 연원 및 그 승인에 관한 의견 상신(皇帝稱號ノ起因竝ニ其承認方ニ關スル意見上申).

한 중요한 것은 공법(公法)의 인준이지 영토의 크고 작음이 아니다.

3. 중국을 통일한 후에야 황제국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역대 중국의 황조 중에서도 중화를 통일하지 못하고 제국을 선포한 사례가 더 많다. 유럽의 국가 또한 각 대륙을 다 통일하지 못했는데도 제국을 선포했다.
4. 이미 1895년부터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사용해 왔다.
5. 근래 관료와 선비들이 상소를 올려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을 권한 것 또한 민심을 반영한 것이다.
6. 황제로 높여도 외국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만국공법(萬國公法)』에 따르면 "각국의 자주(自主)란 자기 나라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칭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황제국을 선포한 후 내정과 외교를 충실히 한다면 외국이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7. 아시아의 큰 나라인 청국과 일본도 모두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는데 우리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외교상 문제가 있다.
9. 갑오개혁 이후 독립의 이름만 있고 독립의 실질이 없다. 황제국을 선포하여 타국에 의존하는 습성을 떨쳐버려야 한다[『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1897. 10; 『고종실록』, 1897. 9~10. 참조].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소들은 황제국 선포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조선 안에서도 황제국화를 반대하는 집단들이 다수 존재했다. 최익현(崔益鉉) 등 보수 유생들은 중화중심적 사대주의에 근거해 황제국 선포에 반대했다. 한편 윤치호(尹致昊)를 비롯한 일부 개화지식인들은 재정을 절약하여 자주독립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종은 위의 상소들을 축적해가면서 황제국 선포를 위한 논리를 조야에 관철시켜 나갔다. 특히 명성황후의 국장을 대규모로 추진하면서 이를 황제국 건설을 위한 계기로 적극 활용했다(한영우, 2001: 139~179). 그리고 1897년 8월 16일 연호를 광무(光武)로 개정하고 10월 3일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0월 11일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결정했다.

한편 고종은 황제 즉위와 대한제국 선포를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공사들에게 알려 본국 정부의 승인 여부 회답을 요청했다. 당시 국제법상 국가의 칭호 문제는 타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나, 고종은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국가의 위신을 높이는 한편 대한제국이 각국 중 어느 나라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국이

자 중립국임을 열강에 주지시키고자 했다[『구한국외교문서(舊韓國外交文書)』, 「일안(日案)」·「미안(美案)」·「영안(英案)」·「아안(俄案)」, 1897. 10. 18].

각국 공사들은 대한제국 선포의 실효성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고종이 황제국을 선포한 의도가 한국에 대한 각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중립 외교를 통한 독립을 달성하려는 것임이 확인되었기에,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열강의 입장에서는 이를 흔쾌히 승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일본은 청일전쟁 전후에는 조·청 관계를 단절시키는 한편 조선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고종에게 황제 즉위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관파천 이후 고종이 권력을 직접 장악한 상태에서 대한제국 선포를 추진하자 이를 허식이라고 비판했으며 외무대신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는 조선 주재 일본공사에게 고종의 황제 즉


俱將有待於今日此法規校正所之所以設也而今伏奉詔勅自臣所商立國制登聞取旨者乃敢撫取衆議援照公法擬定國制一編以明本國政治之爲何樣政治君權之爲何等君權此誠法規之大頭腦大關鍵也是制一頒則千法萬規自可迎刃而破竹其於校正乎何有哉玆已經臣所會議謹將標題開錄請聖裁上覽畢仍敎曰此奏本衆議皆同而外國人所議亦可云乎容善曰衆議皆同而外國人所議亦同矣上命書批曰以此定制頒示天下

大韓國國制

第一條大韓國은世界萬國에公認되은바自主獨立하은帝國이니라

第二條大韓帝國의政治는由前則五百年傳來하시고由後則亘萬世不變하오실專制政治이니라

第三條大韓國大皇帝께옵서는無限하은君權을享有하옵시나니公法에謂하은바自立政體이니라

第四條大韓國臣民이大皇帝의享有하옵신君權을侵損하은行爲가有하면其已行未行을勿論하고臣民의道理를失하者로認하지니라

第五條大韓國大皇帝께옵서는國內陸海軍을統率하옵셔編制를定하옵시고戒嚴解嚴을命하시나니라

第六條大韓國大皇帝께옵서는法律을制定하옵셔其頒布와執行을命하옵시고萬國의公共하은法律을効倣하사國內法律도改正하옵시고大赦特赦減刑復權을命하시나니公法에謂하은바自定律例이니라

第七條大韓國大皇帝께옵서는行政各府部의官制와文武官의俸給을制定或改正하옵시고行政上必要하은各項勅令을發하옵시나니公法에謂하은바自行治理이니라

第八條大韓國大皇帝께옵서는文武官의黜陟任免을行하옵시고爵位勳章及其他榮典을授與或遞奪하옵시나니公法에謂하은바自選臣工이니라

第九條大韓國大皇帝께옵서는各有約國에使臣을派送駐紮케하옵시고宣戰講和及諸般約條를締結하옵시나니公法에謂하은바自遣使臣이니라

命正二品李乾夏正三品閔景植竝特免懲戒○掌禮院卿李亥翼任宮內府特進官敍勅任官三等○十八日頒下軍部官制中改正○議政府議政尹容

[그림 1-2-6] 『고종실록』에 기재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 황제권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대한제국의 국가 이념을 보여준다.

위를 철회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이민원 외, 1999: 31~35).

그러나 고종이 황제 즉위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국제법에 근거해 이를 방해할 방법은 없었다. 조선이 청국의 속국이라는 태도를 견지했던 청국을 제외한 각국의 공사들은 대한제국 선포와 고종의 황제 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대한제국의 독립이 실제로 존중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황제국 선포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의 국권과 고종의 군주권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대한제국의 정치 구조와 군주권에 관한 내부적인 논쟁은 1898년 독립협회(獨立協會)의 중추원(中樞院) 개혁과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추진으로 촉발되었다. 권력분립론과 주권재민론 등 서구 근대 정치 이념에 크게 영향을 받은 독립협회 회원들은 중추원을 의회 기구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노륙제(孥戮制), 연좌제(連坐制) 등 전근대적인 형벌을 부활시키려던 보수 대신들을 탄핵하는 한편 의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적극 수행하려고 했다. 나아가 외국에 대한 이권 양여 문제, 내각 구성 문제 등에 관여하고자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의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시민집회를 실시하여 일시적이나마 내각을 교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정국(政局)이 군주와 독립협회가 서로 충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결국 1898년 12월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만다. 그리고 고종은 1899년 8월 17일, 황제의 군주권을 최대한 강조한 '대한국국제'를 발표하여 정치 구조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켰다.

1898년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은 사회과학계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시원으로 인정받는 사건이다(전인권 외, 2011: 서장). 때문에 독립협회를 해산하고 군주권을 강화한 고종의 조치는 시민의 역량에 기초한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을 무산시킨 행동으로 비판받기도 했다(이태진 외, 2005: 34~39). 그러나 고종은 정조 이래의 민국론(民國論)을 통치 이념으로 제시하면서 "국은 민에 의존하고 민은 국에 의존하는" 정치체제를 지향했다. 이는 서양의 정치제도를 직접 도입한 것이 아닌, 동도서기(東道西器) 혹은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점진적 정치개혁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태진, 2000: 25). 독립협회 회원들이 중추원의 의회 기능을 강조할 때, 고종이 중추원을 '간관(諫官)을 계승한 언론기관'으로 규정한 것도 위와 같은 고종의 정치사상을 반영한 것이다(『고종실록』, 1898. 10. 30).

고종과 독립협회가 공존할 수 없었던 것은 한국사의 큰 비극이다. 그러나 열강의 노골적인 침략을 극복해야만 했던 구한말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립협회 안에서 정권 탈취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자 했던 계열은, 일본에 망명한 정객(政客)들의 지휘를 받으며 일본 정부와 교감하는 가운데 만민공동회 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사실이다(주진오, 1995: 154~155). 그런 점에서 대한국국제의 선포는 황제권을 강화하여 국권의 구심점을 견고히 하는 한편, 여타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기반을 조성한 조치로서 평가할 수 있다.

강력한 군주권을 기반으로 한 대한제국 정부는 근대화의 물적 토대인 산업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다. 양전(量田)을 시행하여 지계(地契)를 발급했으며, 은행을 설립하는 한편 본위제 화폐 발행을 추진하는 등 근대적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닦았다. 근대화의 기간산업으로서 철도의 설치를 시도했으며, 국가·황실·민간자본을 결합하여 근대적 상회사(商會司)들의 설립을 촉진하거나 직접 주도했다. 근대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광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대적 산업에 관한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관료들이 필요했으며, 대한제국기 설립된 관립 농상공학교, 관립 광무학교, 관립 공업전습소 등 서울대학교의 전신 학교들이 바로 그러한 전문 관료들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관립 농상공학교의 설립

상술한 것처럼 갑오개혁 이후 조선이 실시한 교육개혁 정책의 기본 이념은 1895년 2월 2일 발표된 '교육조칙'을 통해 확립되었다. 그로부터 4년 남짓 지난 1899년 4월 27일, 고종은 다시 교육에 관한 조칙을 발표했다.

> 나라에 학교를 설치한 것은 인재를 양성하여 장차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더욱 전진하게 하여 만물의 도리를 알고 일을 처리하여 이루며 기물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여 재물을 풍부하게 하는 기초의 근본을 삼자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인재가 외국보다 크게 못한 것이 아니며 다만 일상적인 교육이 없기 때문에 인민들의 식견이 열리지 못하고 농상(農商)의 공업(功業)이 흥기하지 못하여 백성들의 생업이

날로 영락하고 나라의 재정이 날로 궁해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 설치한 학교는 겨우 형식을 갖추는 데 그치고 교육의 방도에는 전혀 어두워 5, 6년 동안 조금도 전진한 성과가 없다. 상공학교(商工學校)에 이르러서는 더욱 급선무가 되니 일찍이 지난해에 명령을 내렸으나 아직도 개설(開設)에 대한 의논이 없다. 이와 같이 질질 끌어서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개탄할 노릇이다. 정부(政府)에서 해부(該部)에 단단히 신칙하여 종전의 폐풍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일관되고 진지하게 해 나간다면 기어코 이루어서 개진하는 성과가 있을 것이다(『고종실록』, 1899. 4. 27).[20]

고종은 갑오개혁 이후 새로 설치된 학교들에 대해서 "겨우 형식을 갖추는 데 그치고 교육의 방도에는 전혀 어두워 조금도 전진한 성과가 없다"고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백성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농상(農商)의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공학교 설립에 관해 지난해(1898년) 지시한 바가 있는데 여전히 추진된 바가 없음을 지적했다.[21] 교육, 특히 실업교육의 미비점을 고종이 이토록 강력하게 지적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조칙의 말미에 의정부에서 담당 부(部), 즉 학부와 농상공부(農商工部)에 확실히 지시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실업교육의 조속한 실시를 향한 고종의 의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의정부 참정(參政) 신기선(申箕善)은 이 조칙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인 4월 28일 농상공부대신 민영기(閔泳綺)에게, 5월 2일에는 학부대신 민병석(閔丙奭)에게 이 조칙을 조회(照會)를 통해 전달하여 기록으로 남겼다(『조회』, 1899. 4. 28, 5. 2).

그리고 1899년 6월 15일, 학부대신과 농상공부대신은 '상공학교관제'를 제정하기 위한 청의서를 의정부회의에 제출했다. 이 청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청의안 그대로 '상공학교관제(商工學校官制)'로서 1899년 6월 28일 다음과

20 한편 같은 날 발표된 또 다른 조칙에서 고종은 유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균관의 관제를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1898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대중운동에 의해 야기된 보수층의 불만을 무마하고 지지층으로 포섭하기 위한 조치였다.

21 지난해 내린 지시사항이란, 1898년 10월 30일 독립협회가 제안한 '헌의육조(獻議六條)'를 받은 고종이 바로 다음 날인 31일 내린 조칙을 말하는 듯하다. 여기에서 고종은 '민국(民國)의 급선무'로서 중추원 장정 개정, 신문조례 제정, 부정부패 척결과 함께 상공학교를 설립할 것을 거론했다(『구한국관보』, 1898. 10. 31).

같이 발표되었다.

〈상공학교관제(칙령 제28호)〉

제1조 상공학교는 상업과 공업에 필요한 실학(實學)을 교육하는 곳으로 정한다.

제2조 상공학교에 상업과와 공업과를 나누어 설치한다.

제3조 상업과와 공업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정한다. 처음 1년은 예과(豫科), 그 후 3년은 본과(本科)로 수학한 후 졸업한다.

제4조 상공학교의 학과 및 학습 정도와 기타 규칙은 학부대신이 정한다.

제5조 상공학교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학교장 1인 주임(奏任)

교관 10인 이하 주임(奏任) 혹 판임(判任)

서기 2인 판임(判任)

제6조 학교장은 학부대신의 명령으로 주무국장(主務局長)의 지휘를 따라 모든 학교 업무를 담당하며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7조 교관은 생도의 교육을 담당하며 생도를 감독한다.

제8조 서기는 상관의 명령을 받아 서무회계에 종사한다.

제9조 학교장은 시의에 따라 학부의 주임관이 겸임할 수 있다.

제10조 교관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충원할 수 있다. 그 인원은 학부대신이 시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11조 교관을 외국인으로 충원할 때에는 교육만 담당한다.

제12조 지방의 상황을 고려해 상공학교를 지방에도 설립한다.

제13조 지방에 공·사립 상공학교를 설치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허가한다.

제14조 이 칙령은 반포일부터 시행한다.

광무 3년 6월 24일(『구한국관보』, 1899. 6. 28)

위 관제에 따르면 상공학교는 상업과와 공업과로 나누어 설치되며 1년의 예과와 3년의 본과로 구성된 4년제 교육과정을 시행하게 되었다. 먼저 설치되었던 법관양성소의 교육 기간이 본래 6개월이었고 한성사범학교의 교육 기간이 최대 2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공학교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학부대신이 정했어야 할 상공학교의 규칙을 포함한 기타 자료들은 현재

까지 확인되지 않아 그 자세한 운영 상황은 알 수 없다. 다만 『구한국관보』에 약 64건의 상공학교 교직원의 임면 기록이 확인되어, 상공학교가 실제로 운영되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그 운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한국 최초의 관립 실업학교는 1904년 설립된 관립 농상공학교(官立農商工學校)였다. 상공학교의 경우 국립 학교가 분명하지만 공식 서류에서 '관립(官立)'이란 명칭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농상공학교의 경우 관보를 포함한 각종 서류에서 관립 학교임을 명시하고 있다.

1904년 5월 10일 학부대신 민영환은 "상공학교를 이제 바야흐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인데도 농업 교과가 없어서 경작하고 재배하는 데 이익이 적다면 자못 흠결이 있을 것이기에 상공학교를 농상공학교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히며, '농상공학교관제'의 칙령안을 회의에 제출했다. 그리고 6월 8일 '농상공학교관제'가 발표되었으며, 그 내용은 '상공학교관제'와 거의 유사했다.

8월 18일 총 5관(款) 28조(條)로 구성된 '관립농상공학교규칙(官立農商工學校規則)'이 학부대신의 명의로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전에 설립된 다른 관립 학교와 마찬가지로 관립 농상공학교 학생들 또한 교과서와 지필묵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필요한 기계와 물품을 구매하여 학생들에게 실습교육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농상공학교 교육이 현장 중심의 실용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입학 자격은 만 17세 이상으로 25세 이하인 신체 건강한 자로서 한글 독서와 작문, 한문 독서와 작문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예과의 교과는 본국역사, 본국지리, 세계역사, 세계지리, 화학, 무리학, 경제학, 산술, 도화, 외국어로 정했으며, 본과의 교과목은 임시로 정했다. 수업시간은 하루에 5시간이되 계절에 따라 변통했다. 매 학기, 매년 시험을 치르되 매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은 『관보』에 그 이름을 광고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유급시키도록 했다(『구한국관보』, 1904. 8. 22).

농상공학교관제에 따르면 상공학교와 마찬가지로 각 지방에 공·사립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제국의 교육제도상 관립 학교는 순수한 중앙재정으로 운영하며, 공립 학교는 지방 재정, 사립 학교는 개인 재정의 협조를 얻어 설립하는 학교다. 따라서 지방에 공·사립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실업학교

의 확충이라는 뜻과 함께 당시 만성적으로 부족했던 국가 재정을 대신할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구한말의 개화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실업교육을 통해 산업을 진흥해야 한다는 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단 일반학교와는 달리 농상공업을 위한 실업교육은 실습을 위한 각종 장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립 교육기관 외에는 추진하기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관립 농상공학교와 그 후신 관립 학교들은 동시대의 유일한 실업학교였다.

농상공학교의 학생은 약 20~30명 정도로 그 수는 많지 않았다. 제1회 졸업생은 1908년 2월에 배출되었으며 상당수가 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실무 관료로 흡수되었다. 대한제국 정부는 농상공학교의 실무 교육을 위해 1905년 일본인 공학사(工學士) 구노 스에고로(久野末五郎)와 농학사(農學士) 아카카베 지로(赤壁次郎)를 초빙했으며, 일본 구마모토농학교(熊本農學校)를 졸업한 이장로(李章魯)가 통역을 담당했다.

농상공학교의 교사는 종로구 수송동의 제용감(濟用監)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1904년 편입될 당시 농업과(農業科) 건물은 훈동(勳洞)에 따로 있다가 편입되면서 제용감 건물로 통합되었다. 1905년에는 현재의 성수동 뚝섬 자리에 약 80정보(町步)의 밭을 확보해 학생들의 실습과 각종 농업시험을 위한 시설을 갖추었다. 이후 1906년 8월 농상공학교 중 농업과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전신인 수원농림학교(水原農林學校)로 분리되어 이전되었고, 상업과(商業科)는 일본의 동양협회에 그 경영이 위탁되어 명동의 구 경성학당(京城學堂) 자리로 옮겨졌다. 이 상업학교는 일제 강점기 경성고등상업학교로 이어져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으로 발전했다. 공업과(工業科)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신인 공업전습소(工業專習所)로 분리되어 지금의 대학로에 자리를 잡았다. 이처럼 농상공학교는 대한제국기 관립 실업교육의 효시(嚆矢)이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농과대학, 상과대학의 전신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한편 농상공학교 농업과가 분리되어 수원으로 이전한 이유는, 한성 내에서는 충분한 공간의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데다가 농업교육의 특성상 실습장이 항상 필요한데도 뚝섬에 있던 농업과 실습농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었고 실습장의 확장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1906년 8월 27일 칙령으로 '농상공부소관농림학교관제'를 새로 만들어 농상공학교에서 농림학교를 분리시켰다(『고종실록』, 1906. 8. 27). 농림학교는 1906년 9월 1일 농상공학교의 예과 교실에서 개교했으

며 모두 33명의 학생을 본과 1학년으로 편입시켜 9월 10일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한편 고종은 경기도 수원의 서둔동 일대에 교사, 기숙사, 관사 등 560평 규모의 농림학교 시설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1907년 1월 학교를 수원으로 이전했다. 실습 장소로는 수원에 설립된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을 활용했다.

농림학교는 본과 2년제로 시작하되 농학과 임학을 더 깊게 연구할 학생들을 위해 1년의 연구과를 두었다. 1909년부터는 본과가 3년제로 변경되었다. 또한, 1906년 10월부터 6개월 과정의 임학속성과(林學速成科), 1908년 3월부터는 수의속성과(獸醫速成科)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농학과 관련된 제반 실업교육을 확충해 갔다. 학생들은 수신, 국어, 일본어, 수학, 지리, 물리, 화학, 박물(博物), 토양학(土壤學), 비료학(肥料學), 작물론(作物論), 축산학(畜産學), 잠사학(蠶絲學), 농산제조학(農産製造學), 임학통론(林學通論), 삼림생산학(森林生産學), 삼림경영학(森林經營學), 수의학대의(獸醫學大意), 경제 및 법규 등의 과목을 매주 24시간씩 학습했다(『구한국관보』, 1909. 6. 3).

근대적 농학 지식을 주로 일본인 교사들이 전수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교 교육은 이들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었다. 1906년 초대 교장으로 임명된 서병숙(徐丙肅)과 1907년 2대 교장으로 임명된 정진홍(鄭鎭弘)은 모두 농상공부 현직 관료들이었기 때문에 대한제국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08년 3대 교장은 도쿄제국대학 농학부 교수이자 당시 권업모범장장(水原勸業模範場長)이었던 혼다 고스케(本田幸介)가 겸임하게 되었다. 이는 농학 교육의 발전과는 반비례하여 학교의 운영이 일본에 장악되는 과정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공업과의 후신인 공업전습소는 '공업전습소관제'(칙령 제6호)를 통해 1907년 2월 1일 그 설치의 법적 준거가 마련되었다(『고종실록』, 1907. 2. 1). 공업전습소의 운영규칙은 농상공부령으로 1907년 3월 8일에 발표되었다(『구한국관보』, 1907. 3. 8). 그리고 수송동에 있었던 농상공학교 교사를 떠나 당시 한성 이화동, 지금의 대학로 자리에 관립 공업전습소가 설립되었다. 이는 대한제국 정부가 근대적 산업화를 위한 공학 발전의 가치를 그만큼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공업전습소규칙에 따르면 공업전습소는 2년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염직(染織), 도기(陶器), 금공(金工), 목공(木工), 응용화학(應用化學), 토목(土木) 등 6개 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염직과에는 색염(色染), 기직(機織), 도기

과에는 도기(陶器), 자기(磁器), 금공과에는 주공(鑄工), 단공(鍛工), 판금세공(板金細工), 목공과에는 조가(造家), 가구(家具), 응용화학과에는 화학제품(化學製品), 분석(分析), 토목과에는 측량(測量), 제도(製圖) 등의 전습과정을 운영했다. 그 외에 학생들은 각 과에서 물리, 화학, 수학, 도화, 일어, 간이영어(簡易英語) 등을 '보조과목'으로 학습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은 공업전습소가 철저하게 실습 중심의 실업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농림학교와 마찬가지로 공업전습소 또한 주로 일본인 교관들이 교육을 담당했다. 이는 당시 서구적 과학기술에 능통한 교수 요원을 갖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1905년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내정간섭이 노골화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공업전습소의 입학 자격은 "공업가(工業家)의 자제와 장래 공업에 종사하거나 공업에 관한 직문(職門)에 종사할 의지가 확고한 자"로 규정되었다(『구한국관보』, 1907. 3. 8). 이처럼 특정 직역이나 신분을 학생 선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보통교육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그만큼 공업전습소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학생을 산업 현장에 기술인 및 기술 관료로 곧바로 투입하기 위한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렇듯 관립 농림학교와 관립 공업전습소는 관립 농상공학교의 후신으로서 대한제국기 실업교육을 담당하며 산업 발전의 토대를 닦았다.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농업 및 공업 분야의 교육은 국가가 직접 담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관립 학교들의 역사적 의의와도 직결된다. 그러나 1910년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이 강제병합당하면서 관립 농림학교는 수원에 있던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부속 농림학교로, 관립 공업전습소는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부속공업전습소로 각각 귀속되고 만다. 이 과정에서 학생, 주요 교수진, 교사와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후 상기 학교들은 1916년 경성공업전문학교, 1918년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각각 전문학교 인가를 받아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의 농공학 교육을 담당하던 한 축으로 발전하게 된다.

제4절 대한제국의 의료정책과 의학 교육

1) 관립 의학교 설립과 광제원

1898년 11월 7일 지석영(池錫永)은 학부대신(學部大臣) 이도재(李道宰)에게 의학교의 설립을 청원하는 서신을 보냈다. 그는 이 청원서에서 "의원(醫員)은 병을 고치고 생명을 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전제한 후, 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의학교의 장소, 교수 확보, 학생 선발 및 교육, 졸업생의 활용 등 총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틀 후 이도재는 1899년 봄에 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황상익, 2013: 527~528).

1899년 8월 29일, 3년 6개월 전 아관파천 때 비운의 죽음을 맞은 전 총리대신 김홍집의 집(현재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종로경찰서 서쪽 끝)에서 한국 의료사에 한 획을 긋는 모임이 열렸다. 보름 전에 치러진 의학교 입학시험 합격생 53명이 교장 지석영, 교관 경태협(景台協), 남순희(南舜熙) 등과 상견례를 했다. 학생 중에는 이미 한의학을 공부했거나 종두의사 자격을 갖추었으면서도 길고 험난한 배움의 길을 일부러 선택한 이들도 있었다. 3년 후 이들 중 19명은 의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어 근대 의학 보급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대한제국 정부가 국립의학교관제를 공포한 것은 1899년 3월 24일이었다. 의학교의 교육연한은 3년이었으며, 모든 경비는 나라에서 부담했다.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했지만, 당시에는 중학교가 없었으므로 따로 입학시험을 치렀다(『구한국관보』, 1899. 3. 28). 이는 의학교가 당시의 학제상으로는 법관양성소와 더불어 최고 수준의 학교였음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 의학과 의원을 낮추어 보아왔던 관념에 비추어 본다면 놀라운 변화였다.

의학교는 관제 반포 6개월 뒤인 1899년 9월 4일 개학했다. 학과, 입학, 시험, 졸업 등 모든 학사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다. 교과목은 동물, 식물, 물리, 화학, 해부, 생리, 약물, 진단, 내과, 외과, 안과, 부영(婦嬰), 위생, 법의(法醫), 종두, 체조 등 16과목이었다. 시험은 월말고사, 학기말고사, 학년말고사 세 가지였다. 학기말고사와 학년말고사에 진급하지 못한 생도와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한 생도는 유급시켰다. 그리고 졸업시험은 3학년 말에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치렀다. 퇴학과 출학(黜學) 등 처벌 규정은 대단히 엄격했다. 중도에

자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했다. 졸업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경우, 품행이 좋지 않아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뉘우치지 않는 경우, 교칙을 위반한 견우, 학업이 부진해서 연속 3학기를 진급하지 못한 경우, 무단결석이 일주일이 넘는 경우 등에는 교장이 출학을 명했다[의학교규칙(醫學校規則); 황상익, 2013: 527~535 재인용].

학교 운영은 우리나라 정부와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일본인 후루시로 바이케이(古城梅溪)와 고다케 다케지로(小竹武次郎)가 의학교 교수로 학생 교육의 일부분을 맡았고, 특히 고다케는 1902년에 개원한 부속병원에서 학생들의 임상교육과 더불어 진료를 담당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활동은 한국인들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인 교수의 역할은 규정에 따라 학생 교육에 국한되었으며, 모든 학사 운영은 학부대신, 교장, 교관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당시에도 남아 있던 전근대적인 정부 운영 등으로 인사에 난맥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학교 존속 기간 내내 교장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지석영을 비롯해 남순희, 김익남(金益南), 장도(張燾), 유세환(劉世煥), 유병필(劉秉珌), 최규익(崔奎翼) 등 당시 최고 수준의 인사들이 학생 교육을 비롯해 학교 운영을 주도해 나갔다.

1902년 7월 4일, 마침내 19명의 학생이 졸업시험을 통과했다. 이 땅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근대식 의사들이 배출된 것이다. 이어서 1903년 13명, 1905년 4명이 의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개원할 수 있는 자격을 비롯해 의사로서의 모든 자격과 권리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1907년 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될 때까지 개원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그들은 주로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장병의 질병 치료에 주력했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 근대의학을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처럼 관립 의학교는 한국 최초의 정식 의학교로서 구한말 의학 교육을 통한 의료인 양성을 담당한 교육기관이었다. 그러나 1910년 일본에 의해 대한제국이 강제병합당하면서 의학교는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로 편입되었다. 이후 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전문학교 인가를 받았으며, 1928년에는 부속의원까지 신축하여 일제 강점기 의학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으로 자리 잡았다.

2) 의료기관의 증설

(1) 한성종두사와 종두의양성소

1897년경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우두법 실행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1897년 6월경 학부가 인허하는 종두의양성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종두의양성소가 설치되어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종두의양성소가 관립이었는지, 정부가 민간에 위탁한 기관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학부, 즉 조선 정부가 이 학교 운영에 밀접하게 관련되었던 것은 틀림없다. 학부는 종두의양성소 졸업자에게 우두의사 졸업장, 곧 우두의사 인정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학부는 각 처에 종두의양성소 지원생 모집 공고를 내주었고, 교재에 해당하는 『종두신서(種痘新書)』를 출판해 주었다. 궁내부, 학부, 내부는 졸업생을 위해 적지 않은 금액과 교재, 우두시설 기기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종두의양성소규칙(種痘醫養成所規則); 『구한국관보』, 1897. 7. 10].

종두의양성소는 1897년에 첫 졸업생을 낸 이후 1899년까지 총 3회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1897년 7월에 10명, 11월에 18명, 1899년 4월에는 53명이 졸업했다. 졸업생 중 일부는 이미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었으며, 졸업 후에는 전국 각지의 종두위원으로 파견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의료의 다른 부분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후 의학교 졸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한제국 시기 보건의료의 중요 인력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1897년 내부는 28명의 종두의사를 확보하자, 1895년 '종두규칙'에 의거한 종두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1898년 4월 19일 세부 지침을 담은 '종두소세칙'을 반포하여 이에 입각해서 한성을 대상으로 종두사업을 펼쳤다. 내부 본부에 우두종계소를 두어 의사 2명에게 접종액을 만들게 했고, 서울 전 지역을 5서로 나누어 각 곳에 종두소 1곳씩을 두어 종두의사 1명이 우두를 시술하도록 했다. 서울 지역의 우두접종은 국가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한 무료 접종이었다. 조선 정부는 실적에 따라 종두의사의 월급을 지급했다. 비록 정부가 봉급을 주기는 했지만, 종두소 의사는 관제에 포함된 관리가 아니었으며 관에서 위촉한 형태를 띠었다.

1899년 4월에 내부병원(이듬해 광제원으로 개칭)이 창설되면서 한성 5서의 종두소는 내부병원의 관할이 되었다. 다시 종두사업의 독립과 격상이 고려되어 한성종두사가 설치되었다. 이는 대한제국의 종두사업이 독립적인 행정 체계를 갖추

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900년 6월 4일에 공포된 '한성종두사관제'에 따르면, 한성종두사는 한성 5서 내의 종두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내부대신 직속 기관이었다. 한성종두사의 사장(司長)은 위생국장이 겸했으며, 사장 휘하에 의사, 기수, 서기 등이 배치되었다. 의사는 종두사무를, 기수는 두묘(痘苗) 제조 사무를, 서기는 서무와 회계사무를 담당했다. 이전에는 관직의 형태를 띠지 않았던 종두 종사자들이 정식 관직을 획득한 것이다.

대한제국의 종두 행정 기구는 1905년에 다시 정비되었다. 광제원(廣濟院)과 동급으로 있던 한성종두사는 광제원 안의 종두소로 편입되었다. 아울러 각 지방의 종두 행정도 광제원으로 완전히 통합되어, 각 지방의 종두소는 광제원 종두지소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1898년부터 시작된 대한제국의 종두사업은 7년 만에 단일 조직으로 통일되었다.

(2) 육군병원 설립과 군의 양성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군부에 의무국 설치와 일본군 군의(軍醫)를 초빙하려 했으나, 정국의 급격한 변동이 계속되면서 무산되었다. 그 후 1897년 4월경 러시아 군의가 초빙되어 시위대와 무관학교 군의로 근무했다. 조선인 군의는 1897년 6월에 처음으로 임명되었다. 한의 출신인 이기원, 최두현, 배기수, 허현, 곽종구, 정석영 등이 군의로 각 대대에 배속되어 의료 활동에 종사했다(『구한국관보』, 1897. 6. 19). 이후 군의는 각 군의 필수 요원으로 자리 잡았다.

1904년 9월 대대적인 군제 개편에 따라 군의관제가 개정되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군부 의무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서 산하에 의무 1과와 의무 2과가 설치되는 등 조직이 확대되었다. 의무 1과에서는 위생 · 방역사무를, 즉 위생부 교육 및 위생 재료에 관한 사항, 방역 및 치료에 관한 사항, 군의학교 병원 및 위생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다. 의무 2과에서는 의사(醫事) 사무를, 즉 위생부의 인원 보충 및 군의 이상의 군적에 관한 사항, 위생에 관계된 규정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적십자사 및 기타 일체 위생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다.

초대 군부 의무국장으로는 의학교 교관인 김익남이 임명되었으며, 군부 의무국 의관으로 의학교 졸업생 10명이 서임되었다. 이는 군의들이 모두 일본 또는 의학교에서 서양 의학을 전공한 인물로 채워졌음을 뜻한다.

한편 1898년 2월 초 육군병원 설치가 승인되었다. 육군병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군부대신 이종건의 청의를 고종황제가 재가한 것이다. 1901년 11월 육군병원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육군병원은 원수부 소속으로 친위 1대대 병영 안에 자리 잡았다. 육군병원에 임명된 의사 2명은 한의였다. 이 육군병원은 무관학교가 그 자리로 옮겨옴에 따라 1902년 8월 말 옛 비변사 자리로 이전했다.

1903년 2월 10일, 육군병원은 육군위생원이라는 독립 기관으로 승격되어 대한제국 육군의 의무(醫務)를 총괄하게 되었다. 육군위생원은 의관 산하에 간호와 병원 행정 사무를 보는 조호장, 조호수 등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육군의생원의 의관은 시위대, 친위대 각 대대에 딸린 군의보를 지휘 감독했다(신동원, 1997: 202). 그러나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면서 육군위생원은 유명무실해졌다. 1909년 군부관제가 폐지되면서 육군위생원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제3장

1904~1910년 일본의 국권 침탈과 관립 고등교육기관의 시련

제1절 러일전쟁과 국권 피탈

1) 러일전쟁과 한반도

1895년 일본은 청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지만, 5일 만인 4월 23일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이 '삼국간섭(三國干涉)'을 함으로써 타이완에 대한 지배권을 제외한 대부분을 잃었다. 요동반도를 '포기'하고 조선 내의 철도·전신·광산에 대한 이권도 무효가 되었다. 일본은 백인 국가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면서 같은 해 10월에 조선의 왕비를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제국의 군부는 랴오둥(遼東) 반도 '포기' 이후, 최소한 조선에 시설된 전신선(電信線)의 관리권 확보를 강하게 주장했다. 조선 정부에 이를 정식으로 제안했지만 조선 군주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전군의 완전 철수를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본영(大本營)의 참모차장 가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대본영 내 현역으로는 최고위)가 주도해 조선에 비상사태를 만들고, 그 구실로 일본군이 서울[京城]을 장악하여 친일정권을 출범시킨 후 일본군의 한반도 잔류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대원군을 앞세운 왕비 살해 사건은 그 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 저지른 범죄 행위였다(金文子, 2009).

조선 군주(고종)는 1896년 2월 11일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여 군주권을 회복한 다음, 1897년 10월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국체를 바꾸었다. 또한, 서울 도시개조사업을 비롯해 산업 근대화를 목표로 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다. 일본은 1896년부터 1900년까지 '타이완 정복 전쟁'에 국력을 쏟아 조선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간여할 여유가 없었다. 1899년 일본은 유신 전후에 조약 체결에 따른 서양 열강과의 불평등 관계를 해소할 '조약 개정'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같은 해 중국 화북 지역 일대에서 의화단(義和團)이 외세에 저항의 봉기를 들었다. 이듬해인 1900년 의화단은 북경에 들어가 외국 공사관들을 점령했다. 이에 영국,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등 8개국이 병력을 동원하여 베이징 입성을 위한 공동 군사작전을 벌였다. 이때 일본이 출병시킨 병력은 9,000명으로 러시아 3,500명, 영국 2,500명, 미국 2,000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일본은 병사들에게 국제법적으로 모범이 되는 행동을 지시해 '극동의 헌병'이라고 불릴 만큼 열강들의 환심을 샀다. 이는 일본이 스스로 열강의 대열에 올라서면서 러시아와 대립적인 영국, 미국과 유대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 결과다.

한편 러시아는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청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 1900년부터 만주 일대의 철도 시설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뤼순(旅順), 다롄(大連)을 조차지로 얻었다. 뤼순 항은 러시아 제1태평양 함대의 기지로 개발되고 육상 외곽에는 콘크리트 벙커를 구축하여 요새로 만들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항을 얻는 한편, 러시아의 이러한 극동 진출에 대한 타국의 도전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것은 천황이 지배하는 새로운 동양 건설을 꿈꾸는 일본으로서는 큰 장애였다. 일본제국은 1901년부터 러시아군과 싸울 수 있는 군사력 증강에 국력을 쏟기 시작했다. 같은 해에 타이완 식민 지배 체제 구축을 완료하면서 한반도 정책을 위해 내부적으로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의 이름을 따서 '고무라 노선(路線)'이란 방책을 세웠다. 앞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북철도(경의선) 부설권을 일본 정부가 탈취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많은 병력이 한반도를 거쳐 만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철도 부설을 일본이 장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일본제국은 7~8년간의 특별회계 예산을 통해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추진했다. 미국, 영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2억 달러(약 7억 엔)에 달하는 외자를 얻기도 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 1904년 2월 4일, 일본은 러시아와 국교를 단절하고 2월 8일 밤 구축함대를 뤼순 항에 보내 정박 중인 러시아 군함을 습격했다. 9일에는 인천 앞바다에 있던 러시아 군함 2척을 포격해 침몰시켰다. 그리고 2월 10일 천황의 '선전의 조칙'을 반포했다. 일본은 청일전쟁 후 육군 5개 사단을 더 창설해 전 12개 사단을 4개 군단으로 나누어 전장에 투입했다.

일본은 이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정복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를 만주에서 물러나게 하고 한국을 일본의 세력 아래 놓는 것이 목표였다. 10년 전 청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시도했다가 실패한 '조선 보호국화'를 이번에 다시 실현하고, 이를 발판으로 만주 진출을 본격적으로 꾀한다는 것이었다. 대한제국의 국권 탈취, 그것이 목표였다(和田春樹, 2010).

2) 군사 침략과 외교권 탈취(1904~1905)

(1) 〈의정서〉 강제: 군사기지 사용권 획득

1904년 2월 러일전쟁에 동원된 일본군 4개 군단 가운데 제1군은 한국에 상륙한 병력으로 제12사단이 주력이었다. 제1군은 1904년 5월 1일 압록강변의 가벼운 전투에서 러시아군 동부지원대를 격파하고 주롄청(九連城), 안둥(安東) 일대를 점령했다. 이어서 제2군은 5월 5일 엔타이오(塩大澳)에 상륙하여 진저우(金州) 반도의 목줄에 해당하는 난산(南山)의 러시아군 진지에 대한 정면 공격을 감행했다. 3배 병력인 제2군은 해상으로부터 엄호 포격을 받는 등 극심한 전투를 치러 하루 4,300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끝내 난산을 점령, 뤼순의 러시아군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6월 6일 제3군을 편성해 뤼순 요새를 포위한 다음, 제2군은 북진하여 랴오양(遼陽) 남쪽 더리시(得利寺) 일대의 러시아군을 격파했다. 7월 중순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총사령관, 고다마 겐타로(兒玉源太郎) 참모장의 만주군 총사령부가 현지에 도착한 가운데 독립 제10사단을 증강시켜 제4군을 편성, 8월 말부터 랴오양의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했다(藤原彰, 2006: 126~129).

제1군으로서 제12사단이 서울에 진입한 상태에서 2월 23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안에서 일본군의 기지 사용을 허용하는 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가 서울에 진주한 제12사단의 무력을 배경으로 한국 정부에 〈의정서(議定書)〉 체결을 요구했다. 조약은 본래 어떤 현안을 두고 두 나라가 각기 전권위원을 선임하여 두 위원이 만나 협상한 결과를 조약문에 담는 것이 원칙이고 통례다. 그런데 러일전쟁 이후 일본 정부는 이런 절차를 거의 무시하고 일본 측이 미리 준비한 조약 문안을 내놓고 한국 정부의 외부대신에게 서명 날인하기를 요구했다. 〈의정서〉부터 그러한 방식을 취했다.

〈의정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제1조 동양 평화를 위해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을 믿고 시정개선에 관한 일본 정부의 충고와 조력을 받는다.
> 제2조 대한제국 황실의 안전과 강령을 보장한다.
> 제3조 대한제국의 독립 및 영토를 확실히 보전(保全)한다.
> 제4조 일본 정부가 필요로 하는 군략상(軍略上) 필요한 지점을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 이 조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의 협상은 제3국과 가질 수 없다.

제1조는 청일전쟁 때 이미 조선 정부를 상대로 시도했던 것이지만 조선 군주의 탄력적 대응으로 결국 실패하고 만 사항으로, 이번 전쟁 중에 다시 이를 실현하여 한국을 일본의 속국처럼 만들겠다는 뜻이다. 제2조와 제3조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는 보장하겠다는 뜻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끼였다. 제4조는 전시나 평시에 일본군이 한반도 내 군략상 필요한 지점에 군사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협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위에서 살폈듯이 전시라는 핑계로 일본군은 이미 한반도에 무단 진입했지만 사후에 합법적 근거를 얻겠다는 뜻이었다. 한국 황제는 처음부터 이를 주권 침탈로 간주하여 거부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황제의 측근들을 체포한 가운데 이를 수용할 것을 거듭 강요해 성사시켰다.

일본은 〈의정서〉가 체결되기 전부터 서울 남쪽 용산 일대에 대규모 병영 건설을 계획하다가 이의 '체결' 후 바로 착공에 들어갔다. 용산 일대는 이후 수십 년간 일본군 기지가 되었다. 2월 23일 자로 〈의정서〉가 '체결'된 뒤 3월 10일에 한국임시파견대는 한국주차군(韓國駐箚軍)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는 일본군의 '항

구적인' 주둔을 명시한 것으로 한반도는 이때 일본에 의해 군사 강점된 상태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주차군 사령부는 4월 30일 서울 도성 안으로 들어왔다. 대한제국이 영빈관으로 사용하던 대관정(大觀亭, 현 웨스틴 조선호텔 건너편 공터)을 점거하여 주차군 사령부 겸 사령관의 숙소로 사용했다(金正明 編, 1986: 35~36). 이곳은 한국 황제의 거처인 경운궁(慶運宮, 현 덕수궁)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지점으로 주차군 사령관이 궁 안의 황제의 동정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제1차 일한협약'의 기만: '각서'로 빼앗아 간 재정권과 외교권

일본군은 8월 초에 뤼순 항을 함락하여 승기를 잡았다. 전세의 호전과 더불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다음 단계의 요구를 제시하여 8월 23일 이른바 '제1차 일한협약'을 강제했다. 이 '협약'은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고용할 것,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고용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 업무는 그의 의견을 물어 시행할 것, ③ 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을 비롯한 외교 안건 처리에서 미리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등을 규정했다. 한국 정부의 재정과 외교를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장악하는 내용이다. 재정과 외교는 한 나라 주권의 양대 기둥과 같다. 이 '협약'의 강제로 재정고문에 일본인 메가다 다네타로(目賀種太郎), 외교고문에 미국인 더램 스티븐스(Durham W. Stevens)가 각각 부임했다.

이 '협약'는 본래 각서(memorandum)의 형식으로 요구되었다. 각서는 당사자(당사국) 둘 간의 약속으로,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서 체결되는 조약(treaty)이나 약식 조약인 협약(agreement)이 당사국 외에 제3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다르다. 8월 23일 자의 요구사항은 한국 정부의 저항으로 난항 끝에 한국 외부대신 서리의 서명으로 처리되었지만 문건 보전에서도 조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외교조약은 본래 당사국이 서로 자국어로 조약문을 작성하여 전권위원이 서로 서명한 후 한 벌씩 보관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 '협약'은 해당 문건이 일본어로만 작성되어 일본 외무성 사료관에만 보관되어 있고 한국 측의 외교조약 원문들이 보관되어 있는 규장각도서(서울대학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1차 한일협약'이란 명칭은 사후에 '각서'를 '조약'처럼 보이도록, 약식 조약을 의미하는 '협약'이란 용어를 임의로 동원하여 차수를 붙인 것에 불과하다.

'제1차 일한협약'은 재정뿐만 아니라 외교에 관한 업무를 일본 정부와 사전에



一 韓國政府ハ日本政府ノ推薦スル日本人一名ヲ財務顧問トシテ韓國政府ニ傭聘シ財務ニ關スル事項ハ總テ其意見ヲ詢ヒ施行スヘシ

一 韓國政府ハ日本政府ノ推薦スル外國人一名ヲ外交顧問トシテ外部ニ傭聘シ外交ニ關スル要務ハ總テ其意見ヲ詢ヒ施行スヘ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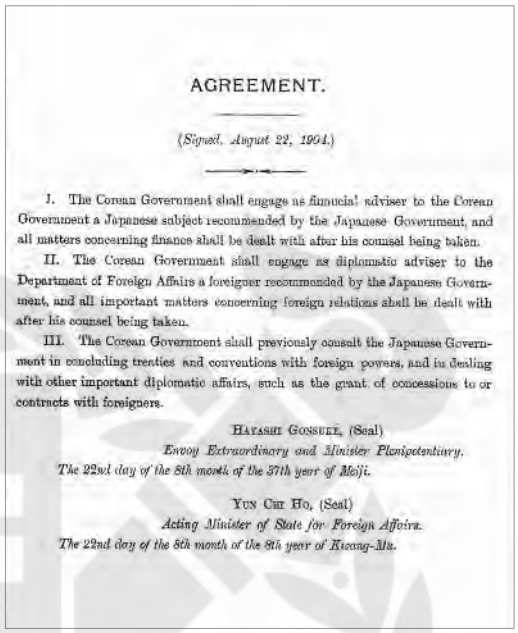
一 韓國政府ハ外國ト條約締結其他重要ナル外交案件即外國人ニ對スル特權讓與若ハ契約等ノ處理ニ關シテハ豫メ日本政府ト協議スヘシ

明治三十七年八月二十二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光武八年八月二十二日

外部大臣署理 尹致昊



AGREEMENT.

(Signed. August 22, 1904.)

I. The Corean Government shall engage as financial adviser to the Corean Government a Japanese subject recommend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all matters concerning finance shall be dealt with after his counsel being taken.

II. The Corean Government shall engage as diplomatic adviser to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 foreigner recommend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all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foreign relations shall be dealt with after his counsel being taken.

III. The Corean Government shall previously consult the Japanese Government in concluding treaties and conventions with foreign powers, and in dealing with other important diplomatic affairs, such as the grant of concessions to or contracts with foreigners.

HAYASHI GONSUKE, (Seal)
Envoy Extraordinary and Minister Plenipotentiary.
The 22nd day of the 8th month of the 37th year of Meiji.

YUN CHI HO, (Seal)
Acting Minister of State for Foreign Affairs.
The 22nd day of the 8th month of the 8th year of Kwang-Mu.

출처: 『한국조약류찬(韓國條約類纂)』(총독부, 1908) 수록.

[그림 1-3-1] '제1차 일한협약'으로 불리는 각서(왼쪽). 제목도 없고 대표 위임에 관한 언급도 보이지 않는다. 외교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본은 없었다. '제1차 일한협약'의 영어 번역본(오른쪽). 원문에 없는 제목(Agreement)이 들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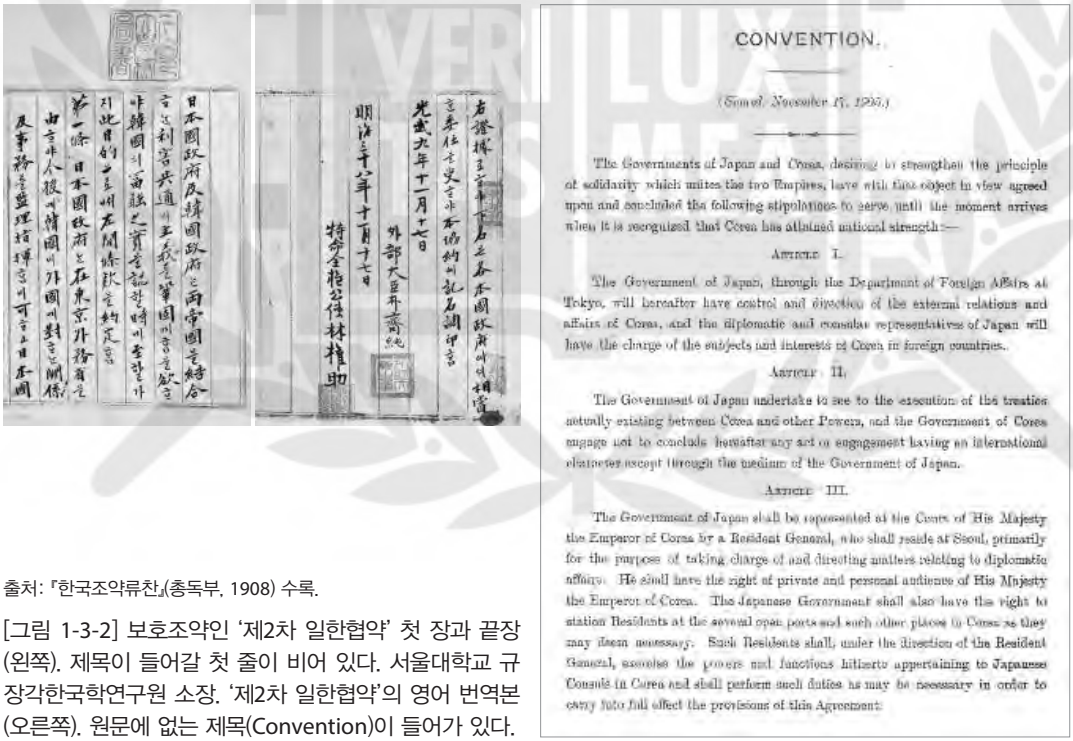
협의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주권을 크게 침범하는 것이다. 1년여 뒤인 1905년 11월 17일 요구되는 '보호조약'은 이 '협약'에서 규정한 외교 고문을 바꾸어 '통감'이란 직책의 일본인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한국의 외교를 직접 담당하는 것으로 고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주권 침해의 사항이 '각서'의 형식으로 처리되어 사후에 외교 협정으로 고쳐진 것은 명백한 범법 행위였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영국, 미국 등 서구 열강 정부에 알리기까지 했는데 이 영어 번역본은 'Agreement'란 단어를 제목으로 붙였다. 당시의 외교 조약은 영어 번역본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당사국어로만 작성했는데 일본 정부가 영어 번역본을 굳이 만든 것은 어디까지나 대한제국 정부가 그 외교권을 일본 정부에 이미 넘겼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의도였다.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 7. 29), '제2차 영일동맹'(1905. 8. 12) 등이 모두 '제1차 일한협약' 이후 비밀리에 체결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3) 계엄령 선포(1904. 11) 아래 진행된 1905년 '보호조약' 강제

1904년 10월 한국주차군 사령관이 육군 소장 하라구치 겐사이(原口兼濟)에서 하

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로 교체되었다(金正明, 1986: 36). 하세가와 사령관의 부임과 함께 계엄령이 포고되었다. 11월에 하야시 공사와 하세가와 사령관은 한국의 경찰력이 치안 유지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므로 지금부터 전국의 경위권(警衛權)을 일본군이 담당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한국 정부와 각국 공사에 알렸다. 그리고 이후 한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일본 군사경찰의 명을 따르라는 19개조를 반포했다. 이를 어기는 자는 일본 사령관이 직접 형사상의 처분을 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1904년 2월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입할 때 계엄령 선포를 준비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稻葉千晴, 2015). 19개조 가운데 제4조는 무리를 지어[結黨] 일본에 반항하거나 일본군에 적대 항거[抗敵]하는 자, 제15조는 결집회사(結集會社)하거나 신문, 잡지 광고 혹은 다른 수단으로 치안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17조는 군사령관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를 처벌한다고 했다[『매천야록(梅泉野錄)』 권4: 325].

러일전쟁은 1905년 5월 하순에 러시아의 제2태평양함대(발틱 함대)가 동해 앞바다에서 패함으로써 종결되었다. 그리고 9월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미국 대통령의 주선으로 미국 포츠머스(Portsmouth)에서 강화회의가



CONVENTION.

(Signed November 17, 1905.)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Corea, desiring to strengthen the principle of solidarity which unites the two Empires, have with this object in view agreed upon and concluded the following stipulations to serve until the moment arrives when it is recognized that Corea has attained national strength:—

ARTICLE I.

The Government of Japan, through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t Tokyo, will hereafter have control and direction of the external relations and affairs of Corea, and the diplomatic and consular representatives of Japan will have the charge of the subjects and interests of Corea in foreign countries.

ARTICLE II.

The Government of Japan undertake to see to the execution of the treaties actually existing between Corea and other Powers, and the Government of Corea engage not to conclude hereafter any act or engagement having an international character except through the medium of the Government of Japan.

ARTICLE III.

The Government of Japan shall be represented at the Court of His Majesty the Emperor of Corea by a Resident General, who shall reside at Seoul,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taking charge of and directing matters relating to diplomatic affairs. He shall have the right of private and personal audience of His Majesty the Emperor of Corea. The Japanese Government shall also have the right to station Residents at the several open ports and such other places in Corea as they may deem necessary. Such Residents shall, under the direction of the Resident General, exercise the powers and functions hitherto appertaining to Japanese Consuls in Corea and shall perform such duties as may be necessary in order to carry into full effect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출처: 『한국조약류찬』(총독부, 1908) 수록.

[그림 1-3-2] 보호조약인 '제2차 일한협약' 첫 장과 끝장(왼쪽). 제목이 들어갈 첫 줄이 비어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제2차 일한협약'의 영어 번역본(오른쪽). 원문에 없는 제목(Convention)이 들어가 있다.

열리고 러시아, 일본 간에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본은 이 회의와 조약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배타적 지배권을 러시아가 묵인하는 것을 약속받았다. 10월에 강화조약이 발표된 후, 한반도에서 작전을 펼치던 주차군 예하의 여러 부대는 하나씩 일본 본토로 귀환했다. 그러나 제13사단과 제15사단은 그대로 남았다.

제13사단은 함경도 방면의 수비를 전담하고 제15사단은 안둥 현(縣)과 펑톈(奉天) 간의 철도 수비, 의주 부근의 진지 유지 및 함경도 방면의 사단 수비구(守備區)와 그 밖의 수비가 필요한 지역의 수비 임무를 담당했다. 이후 안펑(安奉) 철도 수비 임무는 곧 관둥도독부(關東都督府)로 넘겨졌지만 다른 큰 변화는 없었다. 야전 병기창(1904. 11), 진해만 요새사령부(1905. 4)와 요새포병대대(1904. 11), 영흥만(永興灣) 요새사령부와 요새포병대대(1905. 5), 군용 목재창(1905. 10) 등도 상설부대로 한국 주차군에 속해 남았다(金正明, 1986: 29~30). 요컨대 '보호조약'이 강제된 1905년 11월 현재, 한국주차군은 제13사단, 제15사단 등 2개 사단 병력을 주축으로 하여 사령부가 있는 서울(용산)을 포함해 진해만, 영흥만의 요새사령부와 포병대대, 기타 군용시설을 갖춘 대규모 지구군(地區軍)을 이루면서, 주차군 사령관은 천황을 대원수로 하는 대본영(大本營)에 '직예(直隸, 직속)'하여 계엄사령관의 임무를 띠고 있었다. 이 부대가 전시편제에서 평시편제로 바뀌는 것은 1907년 7월에 한국 황제(고종 광무제)를 강제로 양위(讓位)시켜 저항 요소를 제거한 뒤인 10월 9일이었다(金正明, 1986: 39). 다시 말하면 1905년 11월 17일 '보호조약'은 일본군의 계엄령 아래서 강제되었던 것이다.

1905년 9월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체결된 직후인 10월 28일 일본 정부는 한국 보호국화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완료하여 11월 17일을 시행일로 잡았다. 이 조약 체결을 위해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특사로 현지에 파견되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금까지 본국 외무대신이 현지 공사에게 전보로 지시를 내리던 것과 달리 특사를 현지에 직접 보내 그가 모든 것을 지휘하여 처리하게 했다.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 한국의 외교를 대신 수행할 일본 정부의 '대표자'를 통감이란 직명으로 한국에 둔다는 것이 핵심 사항이었다.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는 10일 전쯤 한국에 미리 들어와 동정을 살피면서 사전 교섭을 벌인 다음, 당일에는 아침부터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한국 대신들을 상대로 일을 진행시키고 본인은 대관정에서 하세가와 사령관과 함께 보고를 받으면서

기다렸다.

한국 대신들과 황제의 반대는 완강했다. 오전 10시에 일본 공사관으로 초치된 한국 대신들은 일본 정부의 뜻을 하야시 공사에게 들었지만 모두 찬성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오후 3시경 한국 대신들이 황제가 있는 중명전(重明殿)으로 가겠다고 하여 하야시 공사도 따라갔지만 황제와 대신들은 모두 일본 정부의 요구를 강력히 거부하고 법적으로 필요한 의정대신 회의(국무회의)도 열지 않기로 했다. 하야시 공사는 한국 측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저녁 6시경 대관정으로 사람을 보내 대사가 직접 나서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사 이토는 하세가와 사령관이 지휘하는 일본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중명전에 도착해 퇴궐하려는 한국 대신들을 가로막고 황제에게 알현을 요청했다. 황제는 이틀 전 폐현 때 이미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대사에게 전했으므로 더는 할 얘기가 없다고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 특사 이토는 대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황제가 자신에게 대신들과 협상을 지시했다고 거짓으로 알리고 모아놓은 대신들 한 사람씩 찬반 의견을 물었다. 당시 한국 대신들이 반대의 뜻을 표했는데도, "그 말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찬성의 뜻으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견강부회(牽强附會)하여 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결론짓고 한국 외부 대신의 직인을 가져오게 하여 하야시 공사와 외부대신 박제순이 함께 기명날인한 것으로 종결지었다. 11월 17일 자정을 넘겨 18일 새벽 1시 30분 전후 무렵에 이토 특사 일행은 물러났다.

'보호조약'으로 불리는 이 협정도 제목이 들어갈 첫 자리가 비어 있었다.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측의 협정 주도자들 간에 오간 전보에는 '한국외교위탁조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정작 조약문에는 제목이 들어갈 첫 줄이 비어 있었다. 한국 정부의 『관보』에는 '한일협상조약'이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이것은 황제의 지시에 따라 대신들과 협상을 거쳤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임의로 붙인 명칭에 불과하다. 일본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한일신협약' 또는 '제2차 일한협약'이라고 차수를 붙인 명칭을 취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1차 일한협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후에 편의적으로 붙인 것에 불과하다. 11월 23일 자로 발표된 영문 번역에서는 제목이 없는 자리를 'Convention'이라는 단어로 채웠다. 'Convention'은 'treaty'와 동급의 정식 조약을 의미하지만, 영어에서는 우편 가입 협정과 같은 다자 조약에 사용하는 용어이며, 프랑스어에서는 'treaty'란 의미의 단어가 따로 없어 'Convention'이라는 단어를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되는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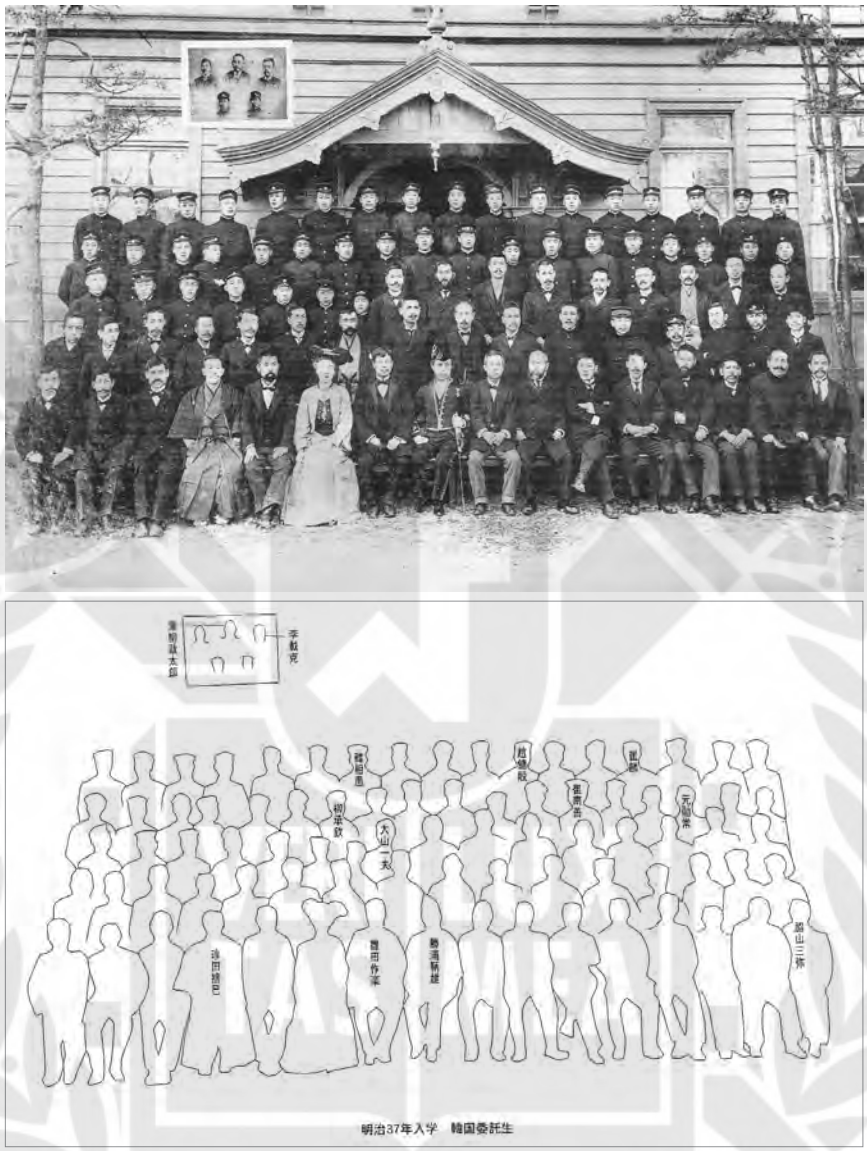
식 조약에서도 사용했다. 프랑스가 튀니지아 등 약소국을 보호국으로 만들 때 조약의 명칭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어의 조약 원본에 없는 단어를 임의로 정식 조약의 뜻을 가지는 단어로 넣은 것은 명백한 문서 위조 행위다.

한 나라의 외교권 이양에 관한 조약은 국가 원수가 발부하는 전권대신에 대한 위임장과 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서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위임 사실은 조약문 하단에 두 사람(한국 외부대신 박제순, 일본 공사 하야시)은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았다"고만 적혀 있다. 국가의 주권 중 가장 중요한 외교권 이양에 관한 조약이 이런 식으로 처리된 것은 동서의 조약 역사에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 정부는 이 '협약'에 근거하여 이듬해 1905년 2월 1일 자로 서울에 통감부를 세우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임명했다. 한국주차군 사령관이 아직도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권한은 외교에 한정되지 않았다. 대한제국이 근 10년간 추진한 자력 근대화의 성과를 '자치육성책'이란 미명 아래 자신의 업적처럼 가로채기까지 했다.

제2절 러일전쟁 전후 국권 위협 속의 교육 기반 확충 노력

1) 러일전쟁 중의 '황실특파' 일본 유학생: 최초의 항일 동맹휴학 사건

러일전쟁이 한창 열기를 더하던 시기인 1904년 10월 9일, 50명의 한국 청년들이 일본 유학을 목적으로 인천에서 의주환(義州丸)에 승선하여 6일 후 동경 신바시(新橋) 철도역에 도착했다. 이들은 광무 황제가 특별히 내장원의 비용으로 보낸 '황실특파' 유학생들이었다. 일본 문부성은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11월 12일 자로 도쿄부립 제일중학교[東京府立第一中學校, 현 도쿄도립 히비야(日比谷)고등학교]에 입학 수속을 밟게 했다. 일본 문부성은 한국 정부의 목적대로 이들이 각 전문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일본어 습득과 기초 교육으로 '고등보통교육'을 받을



출처: 武井一(2005).

[그림 1-3-3] 1904년 11월 도쿄부립 제일중학교에 입학한 대한제국의 황실특파 유학생(위). 1919년 3 · 1 독립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최린, 최남선, 조용은(조소앙) 등이 입학생으로 표시되어 있다(아래).

수 있도록 도쿄부립 제일중학교에 교육과 기숙 감독 일체를 위촉했다. 문부성 보통학무국장 사와야나기 세이타로(澤柳政太郎)가 한국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자신의 모교이기도 한 이 학교에 위탁 업무를 부여했다. 부립 제일중학교는 이 유

학생들을 위해 '특설한국위탁생과'를 두었다(武井一, 2005).[1]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가운데 일본에 유학생을 파견하는 조치는 10년 전 청일전쟁 중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150명의 사대부 자제를 선발하여 관비로 일본에 유학 보내기를 요구했던 것을 그대로 연상시킨다. 이미 살폈듯이 그때는 전적으로 일본이 조선의 보호국화를 위해 친일 관료 양성을 목적으로 강요하다시피 한 것인 데 반해, 이번은 가장 반일적인 황제가 나서서 자발적으로 보낸 조치였다. 부립 제일중학교 측에서도 교육의 목적 중 "한국 황제가 부여한 권리 능력"을 특별히 강조했다(武井一, 2005: 43). 황제는 9월 27일 학부대신 이재극(李載克)에게 일본의 학문을 시찰하고 오라는 칙명을 내리면서 유학생 명단을 가지고 가 일본 정부에 특별히 요청하게 할 정도로 유학생 파견에 관심이 컸다.

일본 정부는 10월 7일 한국 학부대신으로부터 유학생 명부를 수령하면서 두 차례 정도 나누어 수용할 생각이었지만, 참가자들의 강한 희망으로 50명 전원을 한꺼번에 받아들였다. 황실 유학생 파견은 3월에 처음 거론되었다고 하지만 누가 무슨 목적으로 발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일본이 한반도를 전장으로 이용하면서 한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란 추측이 있지만, 러일전쟁 초기 일본 정부는 한국에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로 고압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런 회유 조치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황제 측에서 전쟁에 동원된 일본군의 병력이 예상 밖으로 규모가 크고 장비의 위세가 주는 충격이 커서 그 동안 일본의 발전을 실제로 가서 배우게 할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 황제는 국체를 조선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어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면서 산업 근대화를 나름대로 꾀했지만, 청일전쟁 후 근 10년간 다시 군비 확장을 위해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이룬 성과는 충격을 주고도 남을 만했다. 일본이 서양의 기술문명 수용에서 이 정도로 앞선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배우기 위해 유학생 특파를 구상했을 가능성이 높다. 유학생 선발은 16세 이상, 25세 이하라는 연령 제한을 두어 공개 모집했다.[2]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30세를 넘은 자도 있었다고 한다. 1895년 2월에 이미 인재 등용에서 문벌을

1 이하의 서술도 전적으로 武井一(2005)에 근거한다.

2 응모자 700여 명 가운데 50명을 선발했다는 최린의 회고가 있다(武井一, 2005).

철폐한다는 선언이 있었으므로 이때는 1895년의 관비 유학생과는 달리 재주 있는 자들을 공개로 모집했을 가능성이 높다. 선발된 50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이들은 일본 문부성의 방침에 따라 도쿄부립 제일중학교에 다수가 입학했지만, 6명은 다른 학교에 입학했다. 50명 가운데 후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은 최남선(崔南善), 조용은(趙鏞殷, 조소앙), 최린(崔麟), 한상우(韓相愚, 대한국민회 총무), 유승흠(柳承欽) 등이다.

(1) 도쿄부립 제일중학교(44명): 현태섭(玄台燮) 고의행(高義行) 이약우(李若雨) 박유병(朴有秉) 이상목(李相穆) 홍창식(洪昌植) 이창환(李昌煥) 임대규(林大圭) 조범구(趙範九) 김영식(金永植) 김용성(金龍聲) 정사영(鄭師永) 양치중(楊致中) 김성목(金聖睦) 어윤빈(魚允斌) 윤철중(尹喆重) 김영호(金榮浩) 강전(姜荃) 유승흠(柳承欽) 최린(崔麟) 이상진(李相鎭) 곽상탁(郭相倬) 구자학(具滋鶴) 윤태진(尹台鎭) 이종상(李鍾祥) 유병민(劉秉敏) 박이병(朴彝秉) 원훈상(元勛常) 김진용(金晋鏞) 한상우(韓相愚) 민정기(閔正基) 이범서(李範緖) 이승근(李承瑾) 최남선(崔南善) 지성연(池成沇) 홍종욱(洪鍾旭) 전태영(全台榮) 서병윤(徐丙輪) 전태진(全台鎭) 조용은(趙鏞殷) 이상욱(李相旭) 한규회(韓奎會) 이석균(李奭均) 문창규(文昌奎)
(2) 순천중학교(順天中學校)(3명): 현구(玄渠) 김영은(金英殷) 박용희(朴容喜)
(3) 메이지법률대학(明治法律大學)(1명): 현석건(玄奭健)
(4) 농과대학(農科大學)(1명): 김동완(金東完)
(5) 와세다실업학교(早稻田實業學校)(1명): 윤여중(尹呂重)

유학생들은 황실의 특별한 배려로 충분한 학비 지원을 받아 큰 기대를 하고 학업에 임했지만 일본 측이 계속 중학교 과정에 묶어놓은 것에 불만이 많았다. 이 학교가 제공한 수업 과목은 '고등보통교육 교수'를 목표로 일본어, 일본지리, 수신, 산술, 박물, 이화(理化, 물리, 화학), 체조 등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유학생들의 불만은 1905년 12월 초에 폭발했다. 1905년 11월 하순 '보호조약' 체결의 소식을 듣고 유학생들은 울분에 빠져 있었다. 그런 가운데 『호치신문(報知新聞)』 1면에 12월 2~3일 이틀에 걸쳐 이 학교 가쓰우라(勝浦) 교장의 '한국 유학생'에 관한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최린의 자서전과 조용은의 일기에 따르면, 당시 유학생들은 '보호조약' 체결 소식을 듣고 한국 방향을 향해서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이렇게 유학생들이 슬픔과 침울한 심경이었는데, 인터뷰 기사는 교장이 한국 학생들은 일본어 학습의 진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지만, 수학을 비롯해 과학에 관한 관심이 적어 성적이 열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학생들은 크게 격노하여 제일중학교 유학생 44명 전원이 수업을 거부하고 동맹휴교에 들어갔다(武井一, 2005: 75). 유학생들은 이 학교는 "유학생들에게 불친절하고 일본인 학생과 학과 정도를 달리하여 대학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황제의 명에 의해 일본에 온 목적은 제일중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문명을 배우는 것이므로, 일중이 우리가 바라는 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선언했다(武井一, 2005: 87).

황실특파 유학생들의 동맹휴교는 일본에서 일어난 최초의 항일 민족운동의 사례였다. 황실특파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보호조약'으로 폐쇄 직전에 놓였던 주일 한국공사관의 유학생 감독 한치유(韓致愈)가 가쓰우라 교장을 방문하여 수습을 꾀했다. 학교 측은 주동자의 복학을 거부하고 학생들도 복교를 강하게 거부했다. 이런 대치 상태에서 12월 21일 위탁이 해제되는 사태로 발전했다. 『호치신문』은 12월 18일 자로 정정 보도를 내면서 기자의 과장 표현이 있었다고 사과성 보도를 냈다. 12월 24일 주일 한국공사관은 복학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희망하는 전문학교 이름을 제출하게 하여 전학 수속을 취했다. 동맹휴교를 주동한 조용은, 최린, 유승흠, 한상우 등은 메이지대학 법학부에 입학 수속을 했다. 이미 한국에서 의학교를 졸업한 홍종욱(洪鐘旭), 지성윤(池成沇)은 오카야마(岡山)의학전문학교(현 오카야마대학 의학부)로 학교를 옮겼다.

그런데 같은 해(1905) 12월 30일 주한 일본공사관 측에서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가 이 일에 개입하고 나섰다. 시데하라 다이라는 1893년 도쿄제국대학 국사과를 졸업하고 8월에 가고시마(鹿兒島)고등중학교 조사관(造士館) 교수로 부임했다가 1896년 폐교되어 도쿄로 돌아오고, 1898년 야마나시(山梨)현립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다. 1900년 한국 정부는 관립 중학교를 설립하면서 외국인 교사로 미국인 호머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외에 일본인도 채용하기로 하여 일본 정부에 추천을 의뢰했다. 일본 문부성은 시데하라 다이라를 보내기로 하고 그를

1900년 도쿄고등사범학교 교수로 전직시킨 다음 11월에 문부성의 명령으로 고등사범학교 적을 가진 채 한국으로 와서 관립 중학교에 근무했다. 일본 문부성은 한국 정부의 의뢰를 한국 교육에 간여할 좋은 기회로 판단하여 그를 특별히 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1906년 2월 1일 통감부가 설립될 때 한국 정부의 학정 참여관(參與官)으로 부임하게 된다. 1905년 11월 30일 현재 그는 공식적으로는 일본 도쿄고등사범학교 교수 겸 한국 관립 중학교 교사의 신분이었다. 그런데도 그가 특파유학생 동맹휴교 사건 수습에 직접 개입하고 나선 것은 주한 공사관 측이 그를 앞으로 한국 학부에 직접 투입할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인다.

시데하라 다이라는 사건 수습에서 강경한 방침으로 일관했다. ① 유학생의 임의 퇴교자는 학자금 송부를 중단한다. ② 발송 중지 학자금은 새로운 유학생 파견 여비로 사용한다. ③ 임의 퇴학자의 씨명을 제일중학교로부터 통보받아 타일(他日) 이력 조사의 유력한 자료로 한다는 방침 등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1906년 1월 23일 이재완(李載完)이 보빙대사로 일본에 오게 되어 유학생들은 신바시 역에 마중 나왔다. 강경 방침을 표방한 시데하라 다이라가 동행하여 1월 31일 유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유학생들은 분노하여 다른 유학생들까지 함께 공사관에 모였다. 최린, 한상우, 유승흠 등을 제외한 다수의 유학생들은 제일중학교로 복학을 희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사관의 유학생 감독인 한치유도 복학을 권유했지만, 시데하라는 이들에게 귀국 조치를 내리고 새로운 학생 선발을 학부에 요구할 뜻을 표했다.

사태는 1개월을 넘겨 비로소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3월 3일 학생 대표 2명을 선출하여 18명이 복학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3월 17일 일본 외무성이 나서 만 23세 이상의 12명은 실업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게 하고, 22세 이하는 제일중학교에 복학하도록 했다. 특파 유학생들까지 중학교에 묶어놓은 데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조치로 무마 국면을 만들었다. 10명 정도의 결원은 한국에서 학부가 새로 선발하거나 도쿄의 사비 유학생 가운데 우수자를 선발하여 충원하는 방침도 세웠다. 3월 31일 정식 복학 조치가 취해졌지만 학생들의 신분이 황실특파 유학생에서 정부파견 유학생으로 바뀌었다. 17명이 제일중학교에 복학하고 23세 이상 12명 가운데 8명이 타교로 진학했다. 도쿄제국대학 농학부에 4명(김만규, 강전, 원훈상, 김지간), 치바의학전문학교에 1명(강병옥), 고등상업학교[현 히도쓰바시대

학(一橋大學)]에 1명(문창규) 등이었다.

2월 1일 발족한 통감부는 당초에 복학을 거부하던 주모자 7명과 다른 3명은 징벌로 귀국 명령을 내렸다. 유승흠, 지선윤, 강원영(姜元永), 전태영(全台泳), 이승근(李承瑾), 최린, 한상우, 윤정하(尹定夏), 곽한탁(郭漢倬), 홍종욱(洪鐘旭) 등이 그들이다. 통감부도 최종적으로는 복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승인을 해 주었다. 유학생 감독이나 학부가 36명 전원이 일본에서 유학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원래 황제의 특별한 뜻으로 보내진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강경 일변도로 갈 수 없었던 것이다. 최린, 유승흠, 한상우 등이 특히 생활이 어렵다는 소식이 황제에게 전해졌다. 이에 황제는 이들에게 내장원의 황실비로 비공식적인 학비를 지불하도록 조치했다.

최린, 유승흠은 본인의 희망대로 메이지대학 법학부, 조용은은 마사노리(正則)중학에서 영어를 배운 뒤 메이지대학 법학부로, 한상우는 전수학교(현 센슈대학)에서 주오대학(中央大學) 경제학부로, 윤정하는 고등상업학교, 오카야마의학전문학교로 옮긴 지성윤, 강원영은 같은 학교에 그대로, 이승근은 1907년 9월 와세다대학에 입학했다. 최남선은 퇴학하고 귀국했다가 다시 사비로 와세다대학 역사지리학과에 입학했다.

러일전쟁은 침략 전쟁이긴 하지만 일본이 서양의 기술 문명 수용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황실특파 유학생은 그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보내졌지만, 일본 당국과 학교는 처음부터 차별적으로 대해 학생들의 불만을 샀다. 1년을 넘기는 시점에서 국권을 빼앗기는 사태까지 일어나자 유학생들은 차별에 대한 항의로 동맹휴학 운동을 펼쳐 정당한 권익을 찾고자 했다. 이 사건은 국내외를 막론한 최초의 항일 운동으로서,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항일 운동의 기본 성격을 내포한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특히 이 사건을 주동한 최린, 최남선, 한상우, 조소앙 등은 1919년 국내에서 3·1 독립만세운동, 연해주에서 국민회 독립선언서 운동에 각각 중심적 역할을 했다.

동맹휴학 사건의 초기 단계인 1905년 12월 30일, 유학생 감독인 한치유는 주일 한국공사관으로 유학생들을 소집하여 매월 1회 단결을 굳게 하고, 서로 어려움을 돕고, 학업을 서로 배우기 위해 대한유학생구락부(大韓留學生俱樂部)를 결성했다. 도쿄에 와있는 사비 유학생도 참여했다. 유학생 잡지를 출간하여 계몽운동을 하고, 유학생 합동운동회도 열기로 했다. 이후 도쿄에는 유학생들이 태극학교

[혼고 구(本鄕區)-분쿄 구(文京區)], 광무학교[고지마치 구(麴町區)-치요다 구(千代田區)], 동인의숙[同寅義塾, 고이시카와 구(小石川區)-분쿄 구(文京區)] 등 일본어 학교를 운영했다. 1906년부터 사비 유학생이 급증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먼저 온 학생들이 일본어를 가르쳤다(武井一, 2005: 122). 이 외에도 기독교 청년회, 공수회(共修會, 관비 유학생 단체) 등이 조직되어 계몽운동을 벌였다. 동맹휴교의 에너지가 계몽운동으로 승화하는 추세였다. 『대한유학생회학보』 제1호가 1907년 3월 3일 자로 '재일본 동경 대한유학생회'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국운이 크게 기우는 가운데 후세를 위해 기획된 '황실특파 유학생' 사업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배출했다. 그것은 국가적 사업이란 점에서 관립 고등교육 사업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

2) 1904~1905년 '시정개혁'을 통한 교육 침략 전초

1904년 2월 러일전쟁 때 한반도에는 일본군이 대규모로 진입 또는 통과하면서 점령 상태가 되었다. 2월 23일 자로 체결된 〈의정서〉는 제1조에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신하고 시정(施政)의 개선에 관하여 그 충고를 받아들일 것"을 규정했다. 제3조에 "대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확실하게 보증한다"고 했지만 제1조는 내정에 개입할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많았다. 그런 우려는 6개월 뒤, 8월 22일 '협정서(일한협약)'의 강제로 현실로 나타났다. '협정서'는 첫째,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무고문으로 하여 한국 정부에 용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상은 모두 그 의견을 물어서[詢]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러일전쟁을 배경으로 한국에 요구된 협정들은 모두 비정상적이었다. 전시 무력을 배경으로 강제된 협정들이었다. 당시 한반도에 진입한 일본군이 내부적으로 계엄령을 수행하는 중이었고 10월경에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대한 기밀 유출 감시라는 미명 아래 계엄령을 표면화했다. '협정서'에 따라 10월에 메가다 다네타로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했다. 일본 정부는 그에게 재정적 측면에서 한국 정부의 '시정 개선'에 임하도록 했다.

1900년 한국 정부는 관립 중학교를 세우면서 미국인 호머 헐버트 외에 일본인 교사를 초빙했다. 일본 문부성은 도쿄제국대학 국사과 출신으로 1898년부터 야





출처: 『文化の建設: 幣原坦六十年回想記』(위); 『男爵目賀田種太郎』(아래).

[그림 1-3-4] 시데하라 다이라(위)와 메가다 다네타로(아래)

미나시(山梨)현립중학교의 교장으로 근무 중이던 시데하라 다이라를 도쿄고등사범학교 교수로 임명한 다음 이 직임 상태로 한국 파견을 명했다. 일본 정부는 1904년 8월의 '협정서'에 근거하여 1905년 2월에 그가 한국 정부 학부의 학정참여관(學政參與官)에 임하도록 했다. 메가다 다네타로와 시데하라 다이라는 1906년 2월 '보호조약'에 근거한 통감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한국 정부에 대한 '시정 개선'에 임한 일본 정부의 중심 인물이었다. 1900년 한국 정부의 학부가 일본 문부성에 교사 빙용을 의뢰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화를 자초한 것이 되었지만, 1895년의 '관제개혁' 때 내각 명예고문관으로 역할한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의 성공 사례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메가다 다네타로는 대학남교(大学南校, 현재의 도쿄대학)의 제1회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하버드 법률학교(현 하버드 로스쿨)를 나온 인재로, 귀국 후 문부성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유학생 감독으로 도미했다. 그 후에는 사법성 대변인을 거쳐 1883년부터 대장성(大藏省)에 들어가 서기관, 주세관(主稅官), 요코하마(橫濱) 세관장 등을 거쳐 1894년에 주세국장을 역임하면서 세제와 재정제도 정비에 힘썼다. 1899~1903년 사이에 진행된 오키나와(沖繩) 토지조사사업 때 삼각측량(三角測量)법을 도입하여 지적도를 작성하는 공적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경력의 소유자가 한국 정부의 재정고문으로 선발된 것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시정 개선'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암시한다. 일본은 청일전쟁 후 타이완을 식민지로 만들 때 타이완에 임시토지조사국(1898~1905)을 설치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진행하면서 오키나와에 대해서도 같은 사업을 병행했다.

일본 정부가 메가다를 한국 정부에 보낸 것은 증세를 위해 타이완, 오키나와에 이어 한국에서도 토지조사사업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메가다는 실제로 재정고문 취임 후 측량기술을 가르치는 양지학교(量地學校)를 자신의 탁지부 산하 사세국(司稅局)에 설립했다. 그는 삼각측량법을 한국의 지적도 작성에 도입하려 했다. 1906년 2월 통감부 설치 후에는 평양, 전주 등지에 출장소를 냈다. 1906년 5월 타이완에서 토지조사를 담당했던 오다 신타로(雄田信太郎)를 초빙하여 측량기

술자 양성과 측량조사 실지 훈련을 담당하도록 했다. 그는 한국 정부 내 '재정고문부'에 일본인 직원 35명(본부 24명, 지방 지부 11명)을 거느리고 한국의 재정을 비롯한 국정 주요 분야의 실태를 조사해 1905년 12월 자로 「한국재정정리보고(韓國財政整理報告)」(제1회)를 임시 외무대신 가쓰라 다로(桂太郎, 총리대신)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화폐와 금융에 관한 사항, 궁중과 부중의 혼동, 행정 정리 문제(관제, 군제, 봉급령의 개정), 서계(歲計) 정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었다. 이 보고서에 따라 한국 안에 일본 제일은행권(第一銀行券)을 통용시켜 한국 정부의 재정을 일거에 일본에 예속시키는 상황이 일어나 한국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인력 양성 문제로 이토 히로부미 통감과 의견이 대립되어 1907년 7월 '한일협약(정미조약)' 후에는 사직해야 했다(이계형, 1998).

시데하라 다이라는 1905년 2월 1일 한국 정부로부터 학정참여관을 임명받았다. 한국 정부의 자의라기보다 주한 일본공사관이 본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시정 개선' 차원에서 초빙을 요구한 결과였다. 같은 해 2월 23일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외무대신은 시데하라 참여관에게 '내훈(內訓)'으로 반드시 외무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을 것과 우선 대한제국 학정의 주요 현황과 개혁 방안들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 지시를 받아 같은 해 4월 '한국 교육개량안'을 완성하여 제출했다. 그의 참여관실에는 참여관보의 자격으로 히로타 나오사부로(廣田直三郎), 다나카 겐코(田中玄黃), 고스기 히코지(小彬彦治), 야마구치 이치로(山口一郎) 등 4명의 일본인 관리가 배당되었다. 일본 정부는 그의 임명과 거의 동시에 한국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부성 시학관(視學官) 노지리 세이이치(野尻精一)를 한국에 파견했다. 문부성 자체의 직접적인 조사였다. 노지리는 1894년 대일본교육회 산하에 '조선국교육연구회'를 조직하여 한국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제도와 방법을 연구했다. 일본 문부성은 외무성의 요청에 따라 한국 교육 전문가를 차출하여 시데하라와 함께 한국의 교육 실태를 조사하게 했던 것이다. 노지리는 2월 한국에 도착하여 3개월간 지방의 재한 일본인 교육시설과 한국의 교육 사무를 시찰·조사하여 문부성의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그는 한국의 교육 관련 규칙들과 '교육 조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보고했다(이계형, 1998: 43~45).

시데하라의 '한국 교육개량안'은 교육을 통해 한국인들의 품성을 바꾸어 놓는

것을 목표로 했다. 즉, 한국인들은 떠들썩하고 거친 기질[噪暴險惡]이 있으며, 이를 선량하고 평화스러운 미성(美性)을 함양하여 앞으로 일본인과 감정적 충돌이 없도록 하려면 일본의 언어와 풍속을 이해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어 보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교육제도는, 어렵고 복잡한 것[繁縟]을 피하고 주위에 흔하게 가까이 있는 것[卑近]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상호 이해를 위해 한국의 유교 문화를 다 없앨 필요는 없지만, 일본 문화를 수입하여 한국을 개발시키는 데 역점을 두려 했다. 따라서 시데하라는 관립 중학교 교사로 와있던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사립 경성학당의 교장 와다세 쓰네키치(渡瀨常吉) 등을 학부 편집국 임시편수 촉탁으로 임명하여 일본어 교과서 『일어독본(日語讀本)』 편찬에 착수했다. 그는 또 관립 소학교를 변질시킬 목적으로 일본인 교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일본어와 타 교과를 가르치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한국 신문들은 학부에서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데하라는 소학교 교육에서 일본 문화 전달을 위한 일본어 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농상공학교를 바꾸어 일본인 교수를 임명해 그들이 한국 농업을 일본 농법으로 개량하고 또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데 필요한 공업교육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저항으로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재정고문 메가다 다네타로, 학정참여관 시데하라 다이라는 1904년 2월부터 시작된 러일전쟁 와중에 한국의 내정 가운데 중요한 부면을 우선적으로 식민지배 체제로 바꾸어 놓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초기 상황에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한국 정부가 이미 착수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무는 작업 없이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시데하라도 1906년 2월 통감부가 설치되어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시정협의회'를 통해 한국의 내정 가운데 교육에 대한 정책을 직접 지휘하게 되면서 사임해야 했다. 이토 통감은 그의 '한국 교육 개량안'을 소극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불만이 많았다. 이토는 다와라 마고이치(俵孫一)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다와라는 도쿄제국대학 법과 출신으로 타이완, 오키나와 토지조사 사업에 참가했지만 교육 관계 경력은 대한제국 학부의 학정참여관을 거친 학부 차관밖에 없었다.

3) 황실의 보성전문학교 설립: 최초의 종합대학교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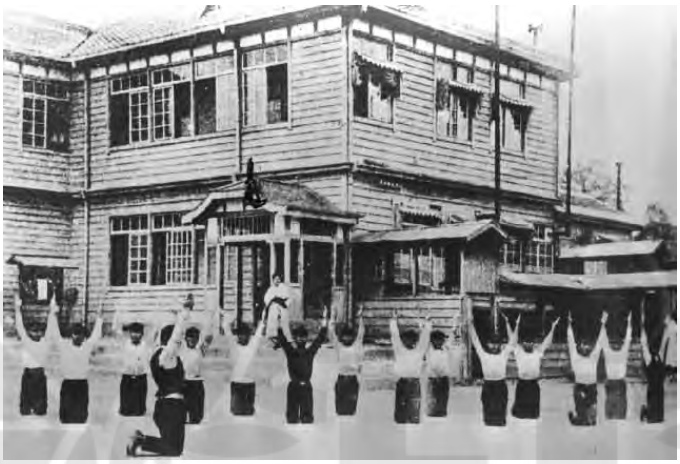
(1) 설립 경위: '피랍' 이용익의 석방 귀국과 설립 건의

일본 정부는 1904년 2월 6일 러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대한제국 정부 요인 가운데 이용익(李容翊), 현상건(玄尙建), 길영수(吉永洙), 이학균(李學均) 등 4명을 체포하려 했다. 황제의 측근인 이들이 전시 중립국 선언을 주도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한정책(對韓政策)'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서영희, 2003). 일본군은 내장원경 이용익 체포에만 성공했다. 다른 3명은 중국 취푸(曲阜)로 도주하여 그곳에서 서울의 황제 측과 연락 취하며 항일 전선을 폈다.

일본군은 이용익을 납치하다시피 일본으로 데려가 '만유(漫遊)'란 이름으로 여러 곳을 돌아보게 했다. 그는 그해 말에 돌아올 수 있었다. 12월 17일 도쿄를 출발해 24일 부산에 내려 경부선을 타고 26일 서울에 도착했다. 그는 황제를 폐현한 자리에서 일본의 교육제도를 평가하고 우리도 서둘러 교육기관을 더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이미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황실특파 유학생'을 선발하여 도쿄에 보낸 일이 있는 황제로서는 그런 건의를 해주는 신하가 반가웠다. 이용익이 귀국한 지 한 달이 되는 무렵인 1905년 1월 23일 『황성신문』은 「학교광설(學校廣設)」이란 기사에서 "부장(副將) 이용익 씨가 일본을 유람하여 일본의 교육제도를 시찰하고 귀국 때 각종 서적 3천원 가치를 사올 계약이 있다 하고 자금을 자담하여 한성 내외에 보성학교 7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용익의 건의로 시작된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 설립 문제는 1905년 4월 1일 개학으로 이어졌다. 『황성신문』은 4월 1일 자로 「개설전문(開設專門)」이란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먼저, 대한제국에는 아직까지 '전문대학교'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성법학교(漢城法學校)가 몇 달 전에 창설되었지만 야학 형태로 온전한 전문대학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북부 박동(礡洞)에 새로 설립하는 보성전문학교는 온전한 주학(晝學)의 전문대학이라고 했다.[3]

3 1905년 1월 설립된 한성법학교는 예비보통과와 법학전문과로 구성되어있었다. 예비보통과는 내국지지, 내국역사, 외국지지, 외국역사, 보통물리학, 작문, 산술, 일어 등 일반교양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강습하며 주학으로 개설되었으나, 법학전문과는 법학통론, 명률, 민법, 상법, 형법, 재판소구성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국제공법, 국제사법, 증거법, 파산법, 국가학, 경제학, 재정학, 의률의판, 소송연습 등 전문적인 법학 과목을 학습하는 과정이되 야학으로 개설되었다(『황성신문』 1905. 1. 16.「학원모집광고」). 한성법학교는 반 년 만에 재정난으로 문을 닫고 학생들은 보성



출처: 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2008).

[그림 1-3-5] 보성전문학교 전경. 관립 한성사범학교와 마찬가지로 목제 2층 건물로 지어졌다. 지, 덕, 체 교육을 강조한 황제의 교육 이념에 따른 듯한 체육 교육의 장면이 찍혔다.

다음으로 '대황제 폐하'가 내탕전에서 매달 수천 원(元)을 지불하여 학교 운영비로 삼는다고 했다.[4] 특히 도서관을 부설하고 각 전문 교과서 수천 권을 학교가 직접 간행한다고 했다. 학교 운영의 책임자로 신해영(申海永, 교장), 조제환(趙齊桓, 교감), 정영택(鄭永澤, 학감) 3명이 임명되었고, 이외에 20여 명의 강사가 초빙되었는데, 이들은 일찍이 일본에 유학하여 졸업한 사람들로서 월급 30원씩을 특별히 지급하기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끝으로 2년 만에 졸업하는 것으로 했는데 황제가 속히 쓰실[速需] 뜻을 특별히 내려 당일부터 개학한다고 했다.

보성전문학교는 1905년 4월 신입생 모집 공고를 신문에 냈다. 이에 따르면, 2년제 전문학교로서 법률, 이재(理財), 농학, 상학, 공학 등의 5개 전문학과를 두었다. 개교에 앞서 '사립보성전문학교규칙'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도 5개 학과의 교과과정이 규정되어 있다. 학칙 제1장 제2조에도 "본교는 내외국 법률 및 실업학 등의 원리원칙을 참고, 교수하여 일반학원의 전문 학업을 양성하려고 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학칙 제2장 제3조에 위의 5개 전문학과를 두고 모두 '본방어(本邦語)', 곧 우리말로 교수한다고 했다. 그러나 5개 과정 이수 외에 외국어학 1개과를 특설 부속한다고도 했다. 5개 전문학과는 크게 법률과 경제 두 과로 분정하기도 했다(『황성신문』, 1908. 1. 30).

전문학교로 이적되었다. 이때 이적된 한성법학교 법학전문과 학생들의 요청으로 보성전문학교에도 1905년 9월 23일 법학 야학과(夜學科)가 개설되었다(『황성신문』 1905. 9. 20. 「광고」). 보성전문학교의 주학과 및 야학과 졸업생 명단에 대해서는 김효전, 2014, 132~134쪽 참조.

4 『황성신문』 1908년 6월 기사로는 매월 1,200원(圓).

전문학교의 학생 수는 당초 50명에서 80명 사이에서 선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1회 입학생들의 1학년 1, 2학기 시험의 성적 분류에 오른 인원이 59~74명, 2학년 1, 2학기에는 각 53명이다(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2008: 162). 1908년 3월 "새로 모집하는 학원(학생)은 수백 인인데 추후 원입자가 날로 증가하여 1개반을 증설했다"고 하고(『대한매일신보』, 1908. 3. 19), 1909년 2월 21일 모집 시에는 응시자 수가 '수백인'이었고 그중에 합격자가 90여 명이라고 보도했다(『대한매일신보』, 1909. 2. 27; 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2008: 156 재인용).

(2) 왕립=국립을 내세우지 못한 까닭: 일제의 방해

보성전문학교의 구성 내용은 황실에서 세운 왕립 또는 국립 전문학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학교 운영에 관한 규칙, 교칙에서 '사립 보성전문학교'를 표방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10년 전, 일본 정부가 청일전쟁을 일으킨 가운데 조선 정부에 유학생 150명을 선발해 관비로 일본으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때 조선 군주는 내부대신 박영효를 통해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Underwood) 선교사 부부에게 선교사들의 이름으로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여 조선 정부의 관립 대학으로 삼을 것을 종용하는 은밀한 움직임이 있었다. 러일전쟁 중에 보성전문학교가 만약 한국 황실의 이름으로 세워진다면 일본이 크게 방해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황현은 1906년 9월 현재 사립 학교가 나라 안에 가득하다고 할 정도로 크게 일어나고 있지만 "관립, 공립은 모두 왜의 검제(鈐制; 규제)를 받아 자유로이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사립이 구속은 덜 하지만 재력이 부족하여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매천야록』 권5, 1906년 9월조).

보성이란 학교 이름도 황제가 직접 지어내린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황제는 이용익에게 고전에 나오는 '성인지미(成人之美)', 주나라 문왕(文王)이 일컬은 '성인지덕(成人之德)'이란 말에 근거하여 학교 이름을 '보성'으로 짓기를 바랐다. 보성은 널리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널리 인간성을 계발한다는 뜻이다(유광렬, 1932; 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2008: 39~40 재인용). 당초에 사립으로 설립하기로 했어도 영친왕을 찬성장(贊成長, 이사장),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을 찬성부장으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궁내부 대신 이재극, 이용익이 각각 정 · 부찬성장으로 취임했다. 황제는 개교에 즈음하여 교장 신해영에게 황실의 오

얏꽃[李花] 문장을 교표로 내리기도 했다.

『황성신문』은 개교 1년을 넘긴 시점인 1906년 4월 6일 자로 「보교성황(普校盛況)」이란 기사를 실었다. 즉, "박동(礡洞) 보성전문학교가 창설 이래 갈수록 흥왕함은 성은이 아닐 수 없다. 교사와 생도들이 교수 수업에 아주 열심히 하면서 항상 황상 폐하의 보육하시는 성덕을 감축함을 이기지 못하더니 근자에 듣기로 이 학교가 한층 일대 확장이 되어 부근 김교헌(金敎獻) 씨 가사를 매수해 강습소를 통창(通暢)케 크게 수리하고 제반 교무를 정비해 곧 사용하게 되어 모든 사람이 황은을 송축하여 그치지 않다더라."라고 했다. 보성전문학교는 1905년 9월 기존의 한성법학교가 폐교되어 그 학생을 인수해 법과 야간부를 신설했다. 그리고 1906년 9월 보성중학교를 개교하기로 해 7월에 인접한 김교헌의 가옥 200여 칸을 매입해 수리·확장했다. 이때 신문이 전하는 황제의 교육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어느 모로 보나 보성전문학교를 사립이라고 할 수 없는 면모를 보여준다.

(3) 창설 초기의 5개 과 체제와 법률, 경제의 두 과 체제

대한제국 광무황제는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크게 자극받아 황실 비용으로 일본에 유학생 50명을 특파했다. 그 유학생들이 일본으로 출발한 약 2개월 뒤에 이용익이 10개월간의 강제 '만유'에서 풀려나 귀국하자마자 규모를 갖춘 전문교육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황제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듯한 건의였기에 즉각 승낙을 받았다. 그동안 서양의 언어와 기술 문명을 배우기 위해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을 여럿 세웠지만 대부분 한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기관에 불과했다. 이용익의 제안은 정규 대학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필요한 서적들을 예약하고 출판을 위한 인쇄기기까지 사 왔다. 황제는 예약한 책들을 사게 하여 도서관을 만들고 출판사도 운영하여 필요한 교재와 서적을 출판하게 했다. 보성전문학교는 부속도서관을 설립하고 편집소인 보성관(普成館), 인쇄소인 보성사(普成社)를 두었다. 이는 이전 학교들에서 볼 수 없던 것들이었다(최남선, 1946: 210). 황제는 나라의 위기를 구출해 나갈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보성전문학교가 당초 법률, 이재, 농학, 상학, 공학 등의 5개 전문학과로 출발한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칙 제1장 제2조에도 "본교는 내외국 법률 및 실업학 등의 원리원칙"을 강조했다. 이재, 즉 협의의 경제학 외에

농학, 상학, 공학 등 '실업학'을 가르치는 종합대학을 지향하고 시작한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5개 과 체제는 1907년 신입생 모집에서 "단지 법률, 경제 양 과로 분정(分定) 설립"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때 후술하듯이 협의의 경제학으로서 '이재학'을 '경제학'으로 바꾸었다.

보성전문학교의 교수, 강사진은 1905년 7월 이후에 재직한 인원만이 아래와 같이 알려진다(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2008: 46).

교장: 신해영(경제)
교감: 조제환(경제)
학감: 정영택(중국어), 박승혁(朴承爀, 2대)
강사: 석진형(石鎭衡, 법률), 장도(張燾, 법률), 유문환(劉文煥, 법률), 신우선(申佑善, 법률), 이면우(李冕宇, 법률), 홍재기(洪在祺, 법률), 유치형(俞致衡, 법률), 장헌식(張憲植, 법률), 원응상(元應常, 경제), 유승겸(俞承兼, 경제)

총 14명 중 경제 전공 4명, 법률 8명, 중국어 1명, 불명 1명으로 분류된다. 5개 과 체제가 없어진 뒤의 교수진이다. 종합대학 지향성을 가진 5개 과 체제는 대단히 중요한데 3년째에서 목표를 바꾼 까닭은 무엇인가?

황제는 1899년 3월 하순 의학교 설립을 마친 뒤, 4월 하순에 농상공학교를 빨리 설립하여 농상공 교육에 치중하라는 조칙을 발표했다. 그 후 6월 24일 '상공학교관제'가 공포·시행되어 상공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3년 뒤 1902년에 공업전습소가 설립되었다. 러일전쟁이 일어난 뒤인 1904년 6월 상공학교를 농상공학교로 개편했다(예과 1년, 본과 3년 - '농상공학교관제'). 농상공학교 출범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인 1905년 4월 초에 보성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농상공학교는 같은 해 7월에 '예비과' 졸업생 28명을 배출했다. 그리고 9월 16일 정규과정 첫 신입생 모집 광고를 냈다. 17~25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문·국문의 독서·작문 시험을 본다는 신문 광고가 나왔다. 1905년 4월 현재 보성전문학교가 당초 농학, 상학, 공학 3개의 전문학과를 둔 것은 이제 막 첫 신입생을 뽑은 농상공학교를 흡수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1907년 이를 포기하고 법률, 경제 양 과 체제로 굳힌 것은 농학과의 실습장 문제 때문인 듯하다.

1905년 12월 29일 농상공학교의 '부속농사시험장관제'가 공포되어 서울 동대

문 밖 뚝섬에 실습농장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보성전문학교가 출범한 5개월 뒤인 1906년 9월 1일 농상공학교의 농과를 농림학교로 독립 개편했다. 이 농림학교는 이듬해 1907년 1월 8일 수원으로 이전했다. 이런 경위를 참작한다면 당초 1904년 6월에 결정 내린 농상공학교를 1905년 4월 보성전문학교 개교에서 '실업학' 3과로 통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농학이 필요로 하는 실습농장 확보 문제에서 이 구상은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1907년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3년제로 개정함과 동시에 법률, 경제 두 과 체제로 바꾸었던 것이다. 1907년의 학제 개편은 보성전문학교가 기반을 제대로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학교의 종합대학 지향성은 2년 뒤 다시 '보성대학' 설립 운동으로 나타난다.

◆ 이재와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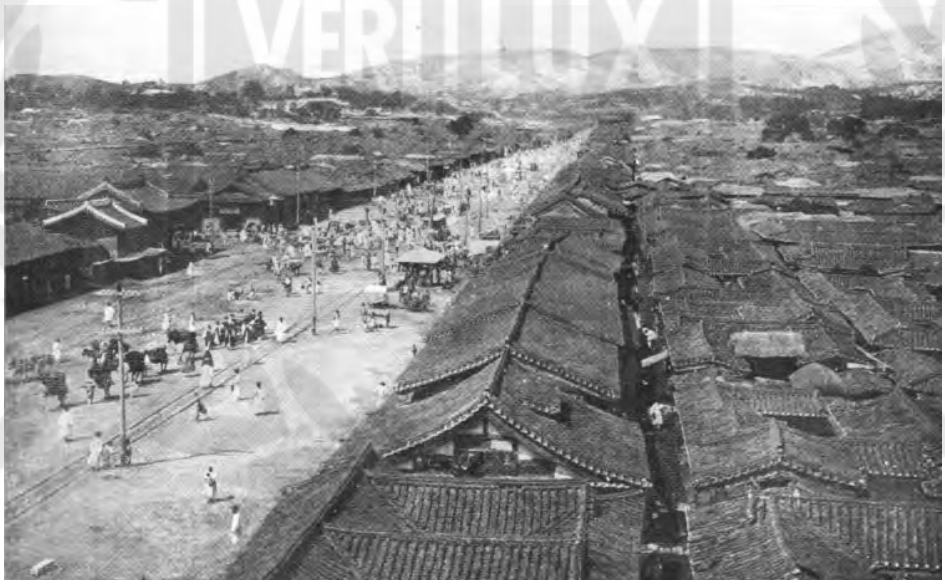
법률, 경제 두 과 체제로의 전환에서 '이재(理財)'를 '경제(經濟)'로 바꾼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904~1905년 현재 일본의 고등교육기관들은 대부분 경제과를 이재과(理財科)라 부르고 있었다. 당초 경제과라고 한 것도 이재과로 고쳤다. 따라서 보성전문학교가 쓴 이재과란 학과명은 일본의 영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설립 초의 교수, 강사진에 게이오의숙(慶應義塾)의 유학생 출신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1907년 3년제로 전환하면서 이재과를 경제과로 바꾼 것은 제 행보 찾기에 따른 변화였다. '경제'는 'economics'의 번역어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로서 올바른 정치, 도덕적 교화, 민생 안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이재(理財)는 재화의 효율적 관리를 의미하는 협의의 경제에 해당하는 용어다. 보성전문학교 교우회가 1907년에 발행한 경제법률 잡지인 『법정학계』 창간호에 설린 취지문에 "소위 경제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요, 세상을 구제하는 활동이니 이 원리, 원칙을 연찬하여 그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를 보충하고 미래를 살펴 국가의 성쇠를 판결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한 것에서 변화의 의미를 읽을 수 있다(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2008: 73~74). '경국제세(經國濟世)'의 전통적 유교정치사상이 'economics'의 본뜻을 바로 읽기 시작했다. 보성전문학교는 농, 공, 상 실업학 3과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 분야의 학문을 협의의 경제학인 '이재'에 국한할 수 없어서 대신 광의의 경제학을 택해 이름을 고쳤던 것이다. 여기에 농, 공, 상학이 어떻게 투영되었는가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다.

4) 1904년 정부의 농상공부 체제 강화와 관립 농상공학교 성립

(1) 농상공부 체제의 강화

1895년 3월의 관제 개혁 반포는 근대 국가 만들기와 산업 근대화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외의 상황은 뜻대로 이를 수행하도록 두지 않았다. 군주 측이 박영효, 서광범 등을 기용해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공사 측의 압박을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궁극적으로 자주적 개혁 체제를 만들어내면서 (청일전쟁) 종전 후 일본군의 완전 철수까지 강하게 주장하자 일본 군부는 왕비 살해의 참극(1895. 10. 8)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군주는 다시 경복궁 안에 갇히다시피 했고, 이듬해(1896) 2월 6일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주(移駐)하여 일본의 포위망에서 벗어나 왕권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피살된 왕비의 국장, 왕조를 제국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업을 동시에 진행시켰다. 그리하여 1897년 10월에 황제로 즉위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이어서 왕비를 황후로 추존하여 국장을 지냈다.

이런 정황에서도 군주는 1896년 9월 말부터 서울도시개조사업에 착수하여 황



출처: The Burton Holmes Lectures, Battle Creek, Michigan: Little-Preston, 1901.

[그림 1-3-6] 1901년 종로 거리 일대. 1896년 9월 말 내부령으로 도로를 침범한 가가(假家) 철거로 넓어진 거리에 전차 선로가 놓이고 전차 정거장이 보인다. 1901년 미국의 여행 사진가 엘리어스 버튼 홈즈(Elias Burton Holmes)가 종로 2가 일대에서 멀리 서대문 쪽을 보고 찍은 장면

성(皇城)으로서 서울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물심양면에서 산업근대화의 계기가 되는 사업이었다(이태진, 2000). 1899년 5월 넓어진 종로와 남대문로에 전차가 달리는 광경은 서울 주재 외국 공사들이 한국 근대화의 자력 의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했고, 이에 따라 금광 개발, 철도 부설, 은행 설립 등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에 투자하려는 외국 회사들의 수도 늘었다. 농상공부라는 부서를 둔 지 5년 만에 일어난 큰 변화였다(이태진, 2000).

1895년 3월 25일의 관제 개혁은 '을미개혁'의 핵심으로 조선 정부의 자력 근대화 의지를 담았다. 이때 반포된 '농상공부관제'는 농무국, 통신국, 상공국, 광산국, 회계국 등 5국 체제였다. 이후 1904년 7월까지 아래와 같이 다섯 차례의 부분 관제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표 1-3-1]에서 보듯이 1900년에 통신국을 통신원으로 독립시키고 인쇄국을 두어 5국 체제를 유지했다. 1901년 다시 인쇄국을 제외시켜 4국 체제가 되었다. 기사(技師), 기수(技手), 주사(主事) 등 소속 관원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였다. 1895년 을미개혁 이후 1897년에 대한제국이 출범하고 여러 방면에서 산업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농상공부의 역할은 더 커지는 추세였다. 후술하듯이 1904년 6월 8일 자로 농상공학교를 설립한 것은 이러한 산업근대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함이었다.

① 1897년 6월 23일 칙령 25호 농상공부관제 중 개정건
② 1900년 3월 23일 칙령 제50호 농상공부관제 중 개정건
③ 1901년 3월 8일 칙령 제8호 농상공부관제 중 개정건
④ 1902년 10월 30일 칙령 제17호 농상공부관제 중 개정건
⑤ 1904년 7월 12일 칙령 제19호 농상공부관제 중 개정건

농상공부의 기간 체제는 [표 1-3-2]에서 보듯이 1905년, 1906년 두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관제 개정이 가해졌다. 1905년 2월 26일의 개정에서는 농무국, 상공국, 광산국, 회계국의 4국 체제가 철도국, 농광국, 상공국 3국 체제로 바뀌었다. 이전의 현안이던 서북철도 부설을 위한 서북철도국을 궁내부 산하에 두었지만, 1904년 러일전쟁 때 일본군이 직접 이 사업을 경의선 부설 사업으로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철도 관리 사업이 농상공부로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에 회계국은 독립국으로 두지 않고, 농무와 광무(鑛務)를 합쳐 농광국으로 바

[표 1-3-1] 1895년(개국 504년) 3월 25일 칙령 제48호 농상공부관제 및 1904년 7월 12일까지의 변천

	1895년 3월 25일 농상공부관제	1897~1904년간 개정
제1조	대신소임: 농업, 상업, 공업, 우체, 전신, 광산, 선박, 해원(海員) 등에 관한 일체 사무 관리함	② 해원 아래에 철도인쇄 4자, 관리 아래에 통신원 감독 8자 첨입 ③ 인쇄 4자 삭제
제2조	대신관방: 통칙 외, 박람회 및 포상	② 포상 아래 우체 전신 선박 해원 등 9자 첨입
제3조	전임 참서관 4인 정원	② 참서관 5인 ⑤ 참서관 6인
제4조	5국: 농무국, 통신국, 상공국, 광산국, 회계국	② 통신국 삭제, 광산국 다음에 인쇄국 첨입 ③ 인쇄국 삭제
제5조	농무국, 통신국 = 2등국. 상공국, 광산국, 회계국=3등국	
제6조	농무국: 농업, 삼림, 수산, 목축, 수렵, 잠차(蠶茶), 삼(蔘, 參)업 및 농사에 관한 사무	① 삼업 삭제
제7조	통신국: (1) 우제, (2) 전신 전화 및 그 건설 보존, (3) 선박 해원 및 항로 표지, (4) 정부로서 보호 수운회사(水運會社) 및 기타 수륙운재(水陸運載)사업의 감독	② 삭제
제8조	상공국: 상업, 공업, 도량형 및 영업 제회사	② 제7조로 ⑤ 공업 아래에 박람회 권업 첨입
제9조	광산국: (1) 광산의 조사 및 기타 민업에 속한 광산 관련, (2) 지질 및 분석	② 제8조로 인쇄국: 인쇄 및 조각 도회 27자 첨입
제10조	회계국: (1) 본부 소관 경비 및 제수입의 예산 결산 및 회계, (2) 본부 소관 관유 재산 및 물품 아울러 그 장부 조제(調劑)	
제11조	기사 7인 이하 기수 12인 이하(專任)	② 기사 6인, 기수 6인 ④ 기사 10인
제12조	주사 18인 정원	② 20인 ⑤ 27인
제13조	개국 504년 4월 1일부터 시행	

출처: 『구한국관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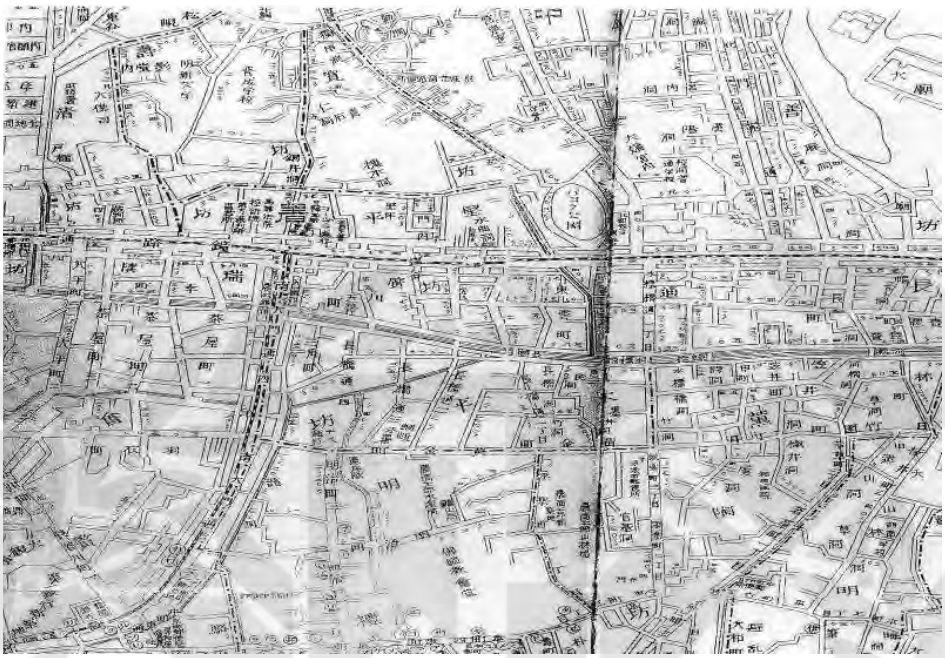
꾸었다. 1895년 체제에서는 국의 등급을 농무국과 통신국을 2등국, 상공국, 광산국, 회계국 등을 3등국으로 삼았다. 그런데 1905년 3국 체제에서는 새로 생긴 철도국이 2등국, 농광국, 상공국은 3등국이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헤아리기는 어렵다. 일본은 러일전쟁 중 1904년 10월 재정고문을 한국 정부에 투입했지만 주로 금융, 화폐, 은행을 중심으로 일본에 예속시키는 데 주력하여 농상공부의 기간 체제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고, 한국 정부는 이 틈을 이용해 기존 체제를 더 확장해 나가고자 했다.

[표 1-3-2] 1905년 2월 26일 칙령 제25호 농상공부관제 및 1906년 1월 29일 개정 비교

조문	1905. 2. 26. 농상공부관제	1906. 1. 29. 개정
제1조	대신 소임: 농무, 상무, 공무, 광산, 철도 등	통상항해
제2조	대신관방, 통칙 외 사무: 포상, 본부 소관 경비 및 제수입의 예산 결산 및 회계. 소관 관유 재산 및 물품 아울러 그 장부 조제	-
제3조	농상공부 참서관(參書官)은 6인	8인
제4조	3국: 철도국, 농광국, 상공국	상공국 · 상무국, 공무국
제5조	철도국 2등국, 농광국, 상공국 3등국	철도국, 상무국 2등국, 농광국, 공무국 3등국
제6조	철도국 사무: (1) 관설 철도 부설 보존 및 운수, (2) 사설 철도 허부(許否) 및 관리, (3) 관설 철도의 세입 · 세출 예산 · 결산과 수용(需用)물품 구매 관리 및 출납	-
제7조	농광국 사무: (1) 농업, 산림, 수산, 목축, 수렵과 잠업 및 상차(桑茶), (2) 광산 조사 및 기타 관민업에 속한 광산, (3) 지질 및 분석	-
제8조	상공국 사무: (1) 상업 및 영업 제회사, (2) 박람회, (3) 내외국산 진열품, (4) 공업 및 공장, (5) 도량형	-
제9조	기사 3인, 기수 8인 정원	실업 장려 위해 명예원 수시 증설
제10조	주사는 22인 정원	주사 26인 정원
제11조	반포일부터 시행	-
제12조	1895년 칙령 48호 농상공부관제와 1897년 칙령 25호 농상공부관제 중 개정 건, 1900년 칙령 제50호 농상공부관제 중 개정 건, 1901년 칙령 제8호 농상공부관제 중 개정 건, 1902년 칙령 제17호 농상공부관제 중 개정 건, 1904년 칙령 제19호 농상공부관제 중 개정 건 폐지	-

출처: 서울대학교 도서관 『칙령(하)』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 근대법령집, 1991.

1905년 11월 '보호조약'이 강제되고, 이듬해 2월 1일 통감부가 생기기 직전 1906년 1월 29일 자로 다시 한 차례 관제 개정이 있었다. 이때의 변화로 주목할 것은 농상공부 대신(大臣)의 소임에 '통상항해'가 추가되고, 상공국을 상무국, 공무국으로 분리하여 철도국, 농광국, 상무국, 공무국 4국 체제로 만들었다. 그리고 국의 등급에서도 철도국과 함께 신설된 상무국을 2등국으로 삼고 농광국, 공무국은 3등국으로 했다. 참서관, 주사를 각 2명, 4명으로 늘리고 기사, 기수의 직도 "실업 장려를 위해 명예원을 둘 수 있는" 것으로 개정했다. 전반적으로 인원을 늘려나가는 추세를 견지했다. 이것은 1906년 2월 1일 통감부가 들어서기 직전까지도 대한제국의 산업근대화 노력이 계속 강구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목된다.



출처: 『서울지도』 중 「경성시가전도」(1910).

[그림 1-3-7] 1910년 「경성시가전도」의 현 명동 일대. 농상공부 수산국, 광산국, 산림국 표시는 1910년 9월 말 이래 조선총독부의 해당 국 위치 표시다. 당시 총독부의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등은 대한제국의 동일 기구를 축소한 것이며, 통감부가 1907년 3월 31일 폐지하여 일본 기업가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의 선린학교에 넘겨준 농상공학교가 '명동'에 있었다. 종합하면 대한제국은 1906년 전후 산업근대화 목적으로 농상공부 자리를 이곳에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2) 관립 농상공학교의 성립

1895년 3월 25일 '농상공부관제'가 반포된 후에 정부는 이와 관련되는 전문 고등교육기관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4년 뒤인 1899년 6월 24일에 칙령으로 '상공학교(商工學校)관제'가 비로소 반포되었다. 상업과와 공업과를 둔 4년 과정의 학교였다. 교관 확보가 문제였는지 외국인을 교관으로 고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1899년의 상공학교는 상업, 공업 분야에 인재를 양성하여 대한제국의 산업근대화를 뒷받침하려는 뜻을 담았다. 그러나 상공학교는 예산 문제 때문이었는지 활성화되지 못했다. 서울도시개조사업이나 광산 개발은 실제로 황제 직속의 궁내부 내장원(內藏院)의 예산에 크게 의존했다. 1900년에 재임한 교관에 관한 기록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1895년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 게이오의숙에 유학했다

가 이듬해 영국 ·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1900년에 귀국한 여병현(呂炳鉉)이 상공학교 교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1906년 통감부가 생긴 뒤 농상공학교를 없애버린 탓인지 1906년에 교관의 직이 아니라 중추원 부찬의(副贊議)에 임명되어 한성(漢城) 자치제를 건의했고, 1907년 '한일협약(정미조약)'으로 황제가 강제 퇴위되는 상황에서 천안군수에 임명되었지만 부임하지 않고 대한자강회의 평의원이 되어 계몽운동에 참여했다. 앞서 1903년 10월에는 질레트(P.L. Gillett), 민영환(閔泳煥), 최병헌(崔炳憲), 민찬호(閔贊鎬), 육정수(陸定洙), 호러스 알렌(Horace N. Allen), 언더우드, 헐버트, 브라운(J.M. Brown) 등과 함께 황성기독교청년회(皇城基督敎靑年會)를 창설했다(국사편찬위원회, 1987). 황성기독교청년회 창설에 참여한 민영환이 이듬해 1904년 7~8월에 상공학교를 농상공학교로 개편하여 제도적 기틀을 혁신적으로 바꾼 것은 여병현의 영향 여부로 주목할 만하다.

1904년 2월 일본제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것은 대한제국 정부를 크게 긴장시켰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그해 4월에 '황실특파 유학생' 50명을 선발하여 일본에 보낸 직후인 5월에 육군 부장(副長) 민영환이 학부대신에 임명되었다. 그는 1899년에 발족한 상공학교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을 혁신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했다. 1904년 5월 10일 자로 학부대신 민영환은 의정부 참정 조병식(趙秉式) 앞으로 상공학교 교육에 농업을 포함하여 '농상공학교'로 바꾸는 청의서를 올렸다. 곡물 생산이 많은 우리나라에 농업교과가 없는 것은 경식(耕植)의 이익을 적게 하는 것이므로 상공학교를 농상공학교로 개정하는 관제 개정의 칙령안을 작성하여 의정부 회의에 제출했다(『각사등록』, '상공학교 관제개정청의서' 제8호). 이에 근거하여 1904년 6월 8일 자로 '농상공학교관제'가 반포되었다.

'농상공학교관제'는 제1조에 이 학교는 농업, 상업, 공업에 필요한 실학(實學)을 교육하는 곳이라고 하고, 제2조에 농업과, 상업과, 공업과 등 3과를 나누어 둔다고 했다. 수학연한은 4개년이되, 첫 1년은 예과, 후 3년은 본과로 구분했다. 교관을 10명까지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외국인을 교사로 고빙해 충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었다. 지방의 사정에 따라서 농상공학교를 지방에도 설립한다고 했다.

같은 해 8월 22일 『관보』(제2911호)에는 '관립농상공학교규칙'(학부령 제16호)이 공고되었다. 5개 조관으로 구성된 규칙은 '관제'에 비해 구체적인 사항을 많이 명시했다. 제1관 제1조는 "본교는 농상공 실업에 필요한 학리(學理)와 기술을 교수"한다고 했다. 제2관의 제2조는 예과 과정의 학과목을 본국역사, 본국지지, 만

국역사, 만국지지, 화학, 물리학, 경제학, 산술, 도화, 외국어 등을 명시했지만, 본과 과정은 곧 의정한다[臨時議定]고 했다. 아직 3개 과의 본과 3년간의 교과는 확정짓지 못한 상황을 보여준다. 제3조는 각 과의 교수시간을 매일 5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제3관은 학년, 학기, 수업, 휴학 등을 3개 조에 걸쳐 명시했다.

학년은 9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로 하되 봄학기(1. 4~6. 30) 가을학기(9. 1~12. 30)로 한다고 규정했다(제1조). 휴일은 만수성절, 천추경절, 개국기원절, 흥경절(興慶節), 계천(繼天) 기원절, 일요일이고, 하기 휴학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 동기 휴학은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로 했다. 음력 명절은 음력 12월 25일부터 정월 15일까지, 한식 전일에서 한식일까지, 추석일 전일부터 추석일까지 휴일로 정하기도 했다(제2조). 제4관의 입학, 퇴학, 출학에 관한 규정에서는 입학 시기를 매년 추기 초나 춘기 초 두 번으로 설정하고(제1조), 학령은 만 17세부터 25세 이하(제3조), 입학시험은 국문의 독서와 작문, 한문의 독서와 작문을 치른다고 했다(제4조). 제5관의 시험과 졸업에 관한 규정에서는 졸업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정한 점이 눈에 띈다. 즉, 졸업시험은 최종 학년의 끝에 행하되 전 과목에 대해 학력을 검정한다고 하고(제6조), 졸업시험을 거쳐 졸업증서를 부여하는데 품청증서, 보증서, 진급증서, 수업증서, 졸업증서 등 5개 증서를 나열하고 있다(제7조).

위 '규칙'이 공고된 4일 뒤인 8월 26일 『관보』(제2915호)에 '관립농상공학교 모집광고'가 나왔다. 이때는 '관립 중학교 학원(學員) 모집 광고', '각 외국어학교 학원 모집 광고'가 함께 게시되었다. 그 다음 날 8월 27일 『관보』(제2916호)에 다시 '각 외국어학교 학원 모집 광고'와 함께 반시되었다. 학생을 학원이라고 한 것은 육영공원 이래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학교 입학시험에 관한 규정이다. 중학교는 입학 연령도 농상공학교와 마찬가지로 17세 이상, 25세까지로 했지만(각 외국어학교는 17~23세), 입학시험은 두 학교가 국문, 한문의 독서와 작문만 본 것과 달리 국문의 독서와 작문사자(作文寫字), 산술 문대(算術問對, 산술 문답), 역사 문대, 한문의 독서와 작문사자, 지리 문대 등 과목이 훨씬 많았다. 8월 26일 모집 광고에 모집 규모는 공업과 50명, 상업과 30명으로 명시되었다.

농상공학교는 '관제'와 '규칙'을 통해 그 규모와 조직을 확실하게 세웠지만 공업과부터 먼저 입학 학원을 선발한다고 했다. 이상과 같은 『관보』의 모집 광고는 『황성신문』 1904년 9월 3일, 5일, 6일 자에 잇따라 공고되었다. 9월 10일 자 『관

보』(제2929호)는 '법관양성소 학원 모집 가선(加選, 추가 모집)' 공고와 함께 농상공학교에 대해서는 "상공업과를 먼저 교수할" 것이라고 하여 상업과 모집을 추가했다. 이 추가 내용은 9월 13일 『관보』(제2930호)에 단독 재광고 형태로 나오고 『황성신문』 9월 8일 자에 광고했다. 『황성신문』을 통한 광고는 9월 21, 22일 두 차례 더 나왔는데, 이때의 광고 내용에는 "상공업 양 과를 교수하는데 예과 1년의 과정은 대한역사지지, 만국역사, 물리학, 화학, 경제학, 법학통론, 도화, 산술, 일어 등"을 가르친다고 했다. 1학년 과정에서 문과, 이과, 사회과 3과 기초 과목을 가르친다는 것이 명시된 셈이다.

농상공학교가 교명대로 농업, 상업, 공업 3개 과 학생을 함께 모집한 것은 이듬해 1905년 가을학기부터였다. 『황성신문』 1905년 9월 6~13일(10일 결)간의 모집 광고에 "본교에서 농상공 3과 학원을 증선(增選)할 터이니, 입학을 원하는 자는 9월 16일 상오 10시에 본교로 와서 응시하라"고 공고했다. 학교장 홍우관(洪禹觀)의 명의로 나온 광고였다. 홍우관은 학부참서관으로서 외국어학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었다. 이 무렵에 농상공학교 교관으로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파악된다(이계형, 1998).

이만규(李晩奎): 관립 소학교 교관

김상연(金祥演): 1895년 제4차 권업박람회 시찰차 일본행, 1898년 일본 유학, 1899년 도쿄(東京) 전문학교[5] 방어정치과(邦語政治科) 입학, 1902년 졸업, 1903년 귀국(대한제국관원이력서 20책, 537쪽)

송재관(宋再觀): 1899년 개성중학교 졸업. 일본 유학, 도쿄상업학교 입학, 1903년 졸업(대한제국관원이력서 21책, 558쪽)

안형중(安衡中): 1895년 관비 유학생으로 게이오의숙, 1899년 도쿄공업학교 염직과 졸업(대한제국관원이력서 24책, 624쪽)

홍인표(洪仁杓): 1895년 관비 유학생, 도쿄공업학교 응용화학과 졸업(대한제국관원이력서 42책, 908쪽)

---

5 와세다대학은 1892년 도쿄(東京) 전문학교로 출발했으며 1902년 9월부터 와세다(早稻田)대학으로 개명한다. 이것은 전문학교령(1903년) 하의 명칭만의 대학이며 제국대학과 동격의 대학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와세다대학이 정규의 대학이 된 것은 대학령(1918년)이 공포된 1920년부터이다(김효전, 2014; p. 259~260).

변지상(卞志祥): 관립 일어학교 재학 중 관비 유학생 선발, 게이오의숙, 1년 후 귀국, 1898년 양지아문(量地衙門) 견습생, 측량 견습생 거쳐 1904년 탁지부 양지국 기수(대한제국관원이력서 23책, 615쪽)

권홍주(權鴻周): 전 상공학교 서기로 유임

이장로(李章魯): 구마모토(熊本)농학교 졸업. 농업과 교관[『각사등록』 조회(照會)2-7, 통첩(通牒), 학부 참서관 민건식, 의정부참서관 김준용 좌하(座下), 1905. 5. 3].

1905년 가을학기부터 농상공학교는 상학, 공학에 이어 농학의 교관까지 확보하여 모양새를 갖추었다. 그런데 앞서 밝혔듯이 이 시기 한국 정부의 시책은 일본 정부의 간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1904년 10월 재정고문으로 부임한 메가다 다네타로, 1905년 초에 학부 학정관으로 임명된 시데하라 다이라는 나름대로 기조를 가지고 한국 정부의 해당 분야 시정에 영향을 끼쳤다. 이들의 간여는 1906년 3월부터 시작되는 통감부의 개입과는 달리 한국 정부의 시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해 조직에 일본인을 투입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메가타는 재정 분야에서 한국 정부에 일본 자본을 투입하여 예속 관계를 만드는 일에 집중했고, 시데하라는 한국 정부가 정한 교육기관에 일본인 교관을 '고빙'하여 일본식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시데하라는 1905년 7월 본국 문부성의 추천으로 농학사 아카카베 지로(赤壁次郎)를 농상공학교 농학과 교관으로 임명했다. 이어서 하야시 공사에게 한국 정부가 공업, 상업과의 교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제안했지만 이 일은 한국 정부의 반발 탓인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같은 해 10월 11일 임시대리공사 하기와라 슈이치(萩原守一)가 공학사 구노 스에고로(久野末五郎)를 공학과에 추천하여 교관으로 임용했다. 구노는 주로 철도, 도로에 관한 과목을 담당했다. 시데하라는 1905년 후반기 한국 정부가 서울 근교 뚝섬에 농상공학교의 농업교육 실습장을 마련하는 일에도 개입했다. 그는 10월 11일 도쿄제국대학 농과대학 조수 오시기리 유사쿠(押切祐作)와 육군 군마보충부 기수 오이소 닌타로(大磯仁太郎) 등을 실습장 개발에 투입했다.

농상공학교의 3개 과 중 농학과는 농학 교육의 필수 선행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실습장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해 개교와 동시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듯하다. 『황성신문』은 1905년 11월 3일 자로 「농장계획」이란 기사를 실었다. 즉 농상

공학교의 부속 농사시험장을 뚝섬 부근에 창설하여 "토지 측량[量地]도 이미 끝내고 경계 표시도 마쳤다고 하고, 국익을 증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 이 일대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줄 터이니 해당 토지 소유의 인민에게 이 뜻을 게시하여 안도케 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진 뒤 1905년 12월 29일 자 '농상공학교부속농사시험장관제'(칙령 제60호)가 반포되었다. 제1조에 학부 소관의 농상공학교에 부속한다고 하여 직원으로 장장(場長)을 두되, 농상공학교 교장이 겸임할 수 있다고 하고, 외국인이 본 농장의 직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농업의 근대적 개량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

그런데 이 무렵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를 배경으로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드는 정책 실현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도 '농장관제'가 반포되었지만, 1905년 11월 17일에 강제한 '보호조약'에 근거하여 이듬해 2월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3월에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시데하라 식의 '시정' 개입을 중단하고 한국의 농업을 식민지 농업으로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위 농장도 1906년 5월 31일 자 칙령 25호를 통해 폐지하고 원예농장으로 바꾸었다. 통감 이토가 구상한 식민지 농업 실현의 중심지는 서울이 아니라 수원이었다.

제3절 1905년 '보호조약' 강제 후 통감부의 관립 전문학교 해체 정책

1) '보호조약' 무효화 투쟁

(1) 헤이그 특파 사건과 광무황제의 퇴위 강제

1905년 11월 17~18일에 강제된 '보호조약'은 대한제국의 국가로서의 '독립'을 사실상 말살하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12월 21일 자로 '통감부관제'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1906년 1월 27일 자로 대한제국의 정부 부처 가운데 외부(外部)가 폐지되고 2월 1일 자로 일본의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3월 2일 자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했다.

고종황제는 '보호조약'을 강제당한 직후부터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피나는 저지 투쟁을 벌였다. 황제는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중명전(重明殿)에서 물러난 직후인 11월 18일 새벽 1시 30분 베를린 주재 대한제국 공사관의 민철훈(閔哲勳)에게 일본의 조약 강제 사실을 독일 황제에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 11월 26일에는 미국에 체류 중인 전 주한공사 알렌에게 미국 국무성에도 이의 부당성을 알릴 것을 요청했다. 1906년 1월에는 독일 황제에게 친서를 써서 이를 전하려고 했다.

1905년 11월 '보호조약'을 강제당하고 있을 때, 고종황제는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황제로부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해 달라는 초청장을 받았다. 러시아 황제는 포츠머스 강화조약 체결 직후인 1905년 9월 하순, "1899년 헤이그 만국회의 발기자 자격"으로 '예비적인 초청장(개최의 조회)'을 각국에 발송했고, 한국도 통지 대상이었다. 제2차 회의에 대한 러시아 안은 1906년 7월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1906년 5월 9일에서야 알게 되었고, 이후 6월 18일의 각의(閣議)에서 개최 시기를 1907년 4, 5월경으로 연기할 것을 희망하는 국제 로비를 벌이기로 했다(金庚姬, 2000). 러시아 황제의 제안은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의 제안은 개최국인 네덜란드 정부에 넘겨져 여기서 정식 초청장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일본 정부의 로비가 성공해 제2차 회의는 1907년 6월에 열리게 되었다.

고종황제는 1906년 2월 초에 통감부가 설립된 뒤에도 이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일본의 조약 강제를 알리고 이를 무효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고문 역할을 해온 미국인 호머 헐버트를 특별위원으로 선정하여 한국 황실과 정부에 관계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청국 등 수교국 원수들에게 친서를 전하고 한국의 제반 고난의 상황을 각국 정부에 전달하게 했다(김기석, 1995: 28~31). 그러나 회의가 연기됨으로써 이 문서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황제는 연기 시일에 맞추어 1907년 4월부터 비밀리에 3특사를 보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1906년 4월경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연기된 제2차 만국평화회의는 1907년 6월 15일 헤이그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제국 황제가 비밀리에 보낸 이상설(李相卨), 이준(李儁), 이위종(李瑋鍾) 등은 러시아 황제와 접촉을 시도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개회 후 10일이 지난 6월 24, 25일경 헤이

그에 도착했다. 이들은 도착과 동시에 6월 25일 제1분과위원회에 직접 나가 일본의 불법성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의제로 삼도록 제안하면서 황제의 친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제1차 회의에서 이미 회원국이 된 일본의 반대로 의제 채택에 실패했다. 세 특사는 6월 27일 자로 '공소사(控訴詞)'를 각국 대표 및 의장에게 전달했다. 1905년 11월의 '보호조약'은 일본인들이 한국 황제의 재가 없이 체결한 것이며,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한제국 정부에 무력을 행사하고, 대한제국의 법률이나 전통을 무시하고 행동했음을 밝혔다. 또한, 이번 평화회의에 참석 자격이 있는데도 일본의 방해를 받고 있으니 각국 대표가 중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한제국과 우방국과의 외교관계 단절은 대한제국의 자의가 아니라 일본에 침해당한 결과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 기회를 마련해주기를 간청하는 내용이었다(尹炳奭, 1984: 67~69).

헤이그에서 한국 세 특사의 활동은 7월 1일 자로 세계 각지에 타전되어 일본에서도 7월 3일 자 신문에 「소위 조선의 항의」란 제목으로 보도되었다.[6] 세 특사의 활동은 각국 신문기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7월 9일에 기자단 조직인 국제협회(國際協會)에 이상설, 이위종이 귀빈으로 초대되었다. 이위종이 유창한 외국어(프랑스어, 영어)로 〈한국의 호소(A Plea for Korea)〉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7월 초순에 '헤이그 밀사사건'이 알려지자 한국의 통감부나 일본 정부는 크게 긴장했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7월 7일에 본국 정부의 총리대신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에게 한국 황제의 퇴위를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관한 전권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통감에게 일임했다. 일본 정부는 광무황제가 1905년 11월의 '보호조약'을 위반했다는 구실로 7월 22일 황태자에게 황제의 위를 양위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군대 해산을 지시하는 거짓 조칙을 기안하여 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 저항을 최소화했다. 한반도는 이때까지 한국주차군이 주체가 된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였다.

(2) 통감부 체제와 항일 독립운동

1905년 11월 17~18일간에 강요된 보호조약은 중대한 대한제국 국권 침해였다.

---

6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은 7월 1일 발[倫敦路透(런던 로이터 - 필자) 電報]로 「소위 조선의 항의(所謂 朝鮮の 抗議)」 제목의 기사는 7월 3일 지면.

고종황제는 조약을 강제당한 4일 후 11월 22일 밤 전 참정 최익현을 불러 반일 의병투쟁을 전개하라는 비밀지령을 내리면서 도체찰사로 삼아 조령(詔令)을 7도에 보냈다(국사편찬위원회, 1970: 588; 리종현, 2009: 415). 이 시기의 의병 봉기는 황제의 밀칙(密勅)을 받고 있는 점이 이전과 달랐다. 1906년 3월 전 판서 민종식(閔宗植)이 밀칙을 받고 홍주(洪州)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같은 해 4월에는 영남의 의병장 김도현(金道鉉)에게도 밀지가 내려졌다. 일본군의 감시가 심한 가운데 황제의 지령은 '밀칙'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황제는 조정에서 일본의 사주를 받은 대신들이 의병에 대해 '파병 토벌'을 건의했을 때는 이에 응하지 않고 시종 '효유해산(曉諭解散)'을 지켰다(李求鎔, 1991: 167).

1907년 7월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황제가 강제로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당하는 상황은 의병 봉기의 여건을 한층 높였을 뿐만 아니라 황제의 독전(督戰) 의지도 더 고조되었다. 1907년 7월 황제는 다음과 같은 조서를 비밀리에 내렸다. 즉 "선전관(宣傳官) 이강년(李康秊)을 도체찰사로 삼아 지방 4도에 보내니 양가의 자제들로 의병을 일으키게 하며 소모장(召募將)을 임명하되 인장(印章)과 병부(兵符)를 새겨서 쓰도록 하라. 만일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관찰사와 수령들을 먼저 베고 파직하여 내쫓을 것이며 오직 경기 진영의 군사는 나와 함께 사직(社稷)에 순절할 것이다"(국사편찬위원회, 1970: 223~224; 리종현, 2009: 417).

1907년 12월 각지 의병대장들은 의병 활동의 연계, 통합을 위해 허위(許蔿), 이강년, 이인영(李麟榮) 등이 중심이 되어 양주에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했다. 1908년 1월 1만의 대군으로 서울로 진공하여 일본군 축출을 목표로 한 전국 연합군의 조직이었다.[7] 의병 활동의 기세는 이듬해 1908년 봄까지 승승장구였다. 『매천야록』은 이해 4월의 월보에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의병이 일국에 편만(遍滿)했다"고 적었다. 그 수를 일일이 헤아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의병 측은 그해 4월 통감부에 투서하여 ① 태황을 복위시킬 것, ② 통감은 일본으로 철수하여 돌아갈 것, ③ 일본인 관리를 혁파할 것, ④ 외교권을 반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일본은 이 상황에 대해 당초에는 병력이 부족하여 이전부터 사용한 회유정책을 한동안 유지하며 개별 격파 작전을 썼다. 그러나 전혀 효과가 없어 '일한협

7 그러나 이 계획은 사전에 일본군에게 탐지되어 선발대(지휘자 허위)가 일본군의 선제공격을 받아 패퇴하여 좌절되었다. 森山茂德(1992: 120) 참조.

약' 추진 및 군대 해산에 대비하여 요청했던 1개 여단 증파에 더해, 1907년 10월에 1개 기병 연대, 1908년에 2개 연대를 각각 증파했다. 이해 5월 헌병 보조원을 뽑아 13도 각 군에 10여 명 혹은 4~5명을 두어 각지에 주둔 지점을 확보하면서 작전을 세밀화해 갔다. 기본적으로 유화정책에서 소탕전으로 방침을 바꾸어 의병 봉기 지점에 대한 포위와 주변 지역의 초토화 작전을 폈다. 이에 따라 의병의 활동 양상도 게릴라전으로 바뀌어 갔다. 『매천야록』의 6월 의보(義報)는 의병 출현 건수가 91회로 강세를 보였지만 이때 의병장 이강년, 허위 등이 잇따라 피체된 것을 알리고 있다(이태진, 2016). 일본군의 통계에 따르면 1908년 전투 횟수 1,452회, 참전 의병 수 69,832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다른 통계로는 1908년 후반기가 전투 횟수 1,976회, 참전 의병 수 82,767명, 1909년 전반기가 각각 1,738회, 38,593명으로 집계되어 있다(森山茂德, 1992: 171~172).

국내 상황이 일본군의 적극적인 공세로 크게 불리해지자 각지 의병들은 활동 지역을 국외로 이동하기도 했다. 1908년 6월 젠다오 관리사 이범윤(李範允)과 러시아 이주 교민 최재형(崔在亨)이 중심이 되어 연해주 연추(煙秋)에서 대한의군(大韓義軍)을 창설하자 이곳으로 찾아가는 의병의 수가 7,000여 명에 달했다. 이 부대는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될 때, 이곳으로 보낸 30만 원의 군자금(쌀 10만 석 상당액)으로 창설된 국가적인 의병 조직이었다. 의보는 이 무렵 경기, 해서(황해도), 전남이 아직도 강성한 반면, 전북, 관동, 북관, 호서, 영남, 관서 등지는 잦아들었다고 했다. 후자는 간도, 연해주로의 이동에 따라 '좀 진정[稍靖]'된 것으로 보인다.

통감 이토는 1909년 1~2월에 황제(순종)를 앞세워 영남과 서북 두 지역으로 순행(巡幸)을 감행했다. 그간 빈발한 의병으로 자신의 회유와 자치육성 정책이 힘을 잃어갔기에, 의병의 기세가 다소 꺾이는 상황을 배경으로 만회해 볼 속셈이었다. 그러나 황제가 순행 중에 펼친 항일 의지에 대한 암시적 독려, 황제를 맞이하는 수만을 헤아리는 지역민들의 열렬한 충성 표시 등은 통감의 점진주의 정책이 오산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 통감 이토는 서순(西巡)을 끝내고 돌아오자마자 귀국하여 통감 사임 절차를 밟았다.

2월 5일 황제는 낮에 통감 관저에 행차하여 남순, 서순 때 따라갔던 통감 이토[8] 이하, 주임관(奏任官) 이하 호위하고 갔던 각 관리들과 오찬[陪食]을 가졌다.

8 『순종황제실록』의 이때 통감의 호칭은 '伊藤太師'로 되어 있다.

이때 내려진 조칙은 통감이 "전후로 노령과 병든 몸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추위를 무릅쓰고 호종하여 짐을 도와주었으며, 가는 곳마다 열심히 깨우쳐주어 우매한 백성들에게 환히 마음이 풀리게 하고 누구나 기쁘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에 거류(居留)하고 있는 일본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함께 달려와서 한 마음으로 환영하여 화락한 기운이 무르녹게 했는데 이것이 모두 통감이 평소에 두 나라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한 결과라고 칭양했다. 어느 모로 봐도 조칙은 서순 중에 강하게 나타난 항일 분위기를 의식해 이를 무마하려는 의도에서 특별히 내려진 것이었다. 황제로서는 외교 아닌 외교를 위한 방문이었다. 황제가 환궁한 뒤에 통감 이토는 답례로 대궐로 와서 알현을 올렸다. 통감 이토의 귀국 인사는 2월 8일의 접견에서 이루어졌다. 통감이 군사령관 오쿠보 하루노(大久保春野)를 대동하고 입궐하여 인정전에서 오찬회를 가졌다. 각 대신들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통감 이토는 '사폐(謝陛)', 즉 사직 인사를 올렸다. 같은 기사에 "황후에게도 사폐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분명한 사임을 결심한 귀국 인사였다.

일본 정부는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曾彌荒助)를 통감으로 승진시킨 상태에서 의병 소멸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1909년 9월부터 시작된 '남한대토벌작전(南韓大討伐作戰)'은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남아 있는 의병 세력에 대해 잔인한 방식으로 소탕전을 벌여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森山茂德, 1992: 177). 그러나 이 작전이 진행되던 중 10월 26일 만주를 방문한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철도 정거장에서 대한의군의 특파대 대장 안중근이 저격하는 전과를 올렸다.

2) 1906년 이후 통감부의 관립 전문학교 해체 및 왜곡

(1) 소학교와 중등 실업교육 편중 정책

1905년 11월 17일 '보호조약'이 강제된 후, 한국의 재외공관은 모두 철수하고 서울에 주재하던 외국 공사관들도 모두 총영사관으로 바뀌었다. 다만 주한 일본공사관만은 1906년 2월 1일 통감부로 바뀌어 한국의 외교권을 대행했다. 3월 2일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도착했다. 그는 3월 13일부터 통감부의 간부들과 한국 정부의 각부 대신들이 동석하는 '한국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국을 주도했다. '협의회'는 1909년 12월까지 모두 97회에

걸쳐 열렸다. 한국 대신들과의 협의라고 하지만 거의 통감부의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협의'였다.

제1회 협의회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對韓) 식민교육' 방침을 제시했다. 학교를 설립할 때는 자금과 교사(校舍), 교과서가 필요하며 현재 교사의 수도 매우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교육이 농사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지금 한국은 일본처럼 정부, 지방 및 인민이 모두 협동하여 교육비를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기는 어렵다. 먼저 정부 자금으로 학교를 만들어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지를 밝혔다. 각지 인민의 도움은 오히려 통감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해 정부에 의한 교육 기반 주장을 편 것이다. 이에 대해 학부대신 이완용은 교사 양성의 필요성을 말하고 인구 약 2만 명 이상 되는 1개 군에 1개교를 설치하고 학부형에게 다소 부담을 줄 필요가 있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은 이토의 안중에 없었다.

3월 21일에 제2회 '협의회'가 열렸다. 메가타 다네타로 재정고문이 3월 16일 일본 흥업은행(興業銀行)의 기업공채 1,000만 원을 차관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그 가운데 500만 원은 3월 내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고하고 지출 계획을 제시했다. 실제 수령 액수는 450여만 원이며 그 가운데 교육 자금은 50만 원으로 배당되었다. 인천의 수도 시설에 약 217만 원, 농업(한국농공은행 보조)에 약 50만 원, 도로 건설 149만 6,000원(평양-진남포-원산 63리, 65만 6,000원, 광주-목표 25리, 약 30만 원, 대구-경주-영일만 35리, 약 42만 원, 전주-군산 9리, 약 12만 원: 리 수는 당해년 건설 거리), 합계 466만 6,000원으로 보고했다. 도로망 건설에 절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배당되었다.

통감 이토는 이때 한국 정부 학정참여관 시데하라 다와라의 교육 정책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일본어 교과서 편찬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수하에 측근을 기용하는 편중 인사 등을 이유로 경질하고 통감부의 서기관 다와라 마고이치(俵孫一)를 기용하여 '교육 확장'의 사무를 담당하게 했다. 다와라는 일본 제일고등학교를 나와 1895년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영법과를 졸업하고 내무 관료로 관계에 들어왔다. 메가타 다네타로와 마찬가지로 오키나와 토지조사사업에 일시 관여했다. 4월 11일에는 학부의 관제를 개정하여 학부 참서관이 담당하던 학사 시찰과 학교 검열 규정을 폐지하고, 시학관(視學官) 2명을 두어 이를 전담하도록 했다. 5월에 어용선(魚瑢善)과 이만규를 학부 시학관에 임명했다. 통감부가 교육 '시정'

을 주관하되 한국인을 참여시켜 한국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

통감부는 1906년 8월 27일 교육제도에 관한 '칙령' 6개를 반포했다. 한국 황제의 칙령이라고 하지만 '협의회'를 통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빙자해 황제의 재가를 받아냈다. 이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칙령 제39호 농상공부소관농림학교관제
칙령 제40호 학부직할학교급공립학교관제
칙령 제41호 사범학교령
칙령 제42호 고등학교령
칙령 제43호 외국어학교령
칙령 제44호 보통학교령

앞에서 살폈듯이 조선 군주는 1895년 2월 '교육조칙'를 통해 국민교육을 선언하고, 3월에 법관양성소, 한성사범학교를 창설하고, 7월에 소학교령을 반포했다. 통감부가 주도한 위 칙령들은 조선, 한국의 교육이 그동안 어렵게 거둔 성과들을 대부분 부정하고 식민교육 체제로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이 가운데 '보통학교령'(칙령 제44호)과 '고등학교령'(칙령 제42호)은 우민화의 기틀을 잡는 것이었다. 전자는 기존의 6년제 소학교 과정을 4년제 보통학교로, 후자는 7년제 중학교를 4년제 고등학교로 대체했다. 단계별로 이뤄지는 형태의 학제를 각 과정이 개별적인 목적을 가진, 식민통치에 필요한 기능인을 만드는 학교로 바꾸려는 의도였다. 초등교육 확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교육이 농업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6년제를 4년제로 바꾼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한국인은 농사짓는 농부로 만족해야 한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한국을 일본의 식량 공급지로 삼으려는 의도가 역력한 조치였다. 국민교육의 뜻을 담은 1895년의 '소학교령'과 식민주의를 지향한 1906년 '보통학교령'의 차이는 [표 1-3-3]에서 쉽게 비교해 살필 수 있다.

1900년에 처음 세운 관립 중학교는 그 교육 목적을 "실업에 나아가고자 하는 인민에게 정덕(正德), 이용(利用), 후생(厚生)을 할 수 있게 하는 중학교육을 보통으로 교수"하는 것이라고 했다('중학교관제'). 이 규정에는 조선 후기 이래의 실학적 정신도 내포되어 있지만 덕성 교육을 내세운다. 당시는 황제가 자주적 발전과

[표 1-3-3] 1895년 소학교령과 1906년 보통학교령의 주요 내용 비교

	1895. 7. 19. 소학교령	1906. 8. 27. 보통학교령
본지(목적)	아동 신체발달, 국민교육 기초, 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능 교수	학도의 신체발달 유의, 도덕교육 및 국민교육 시행,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예 수(授)
학과와 수업 연한	심상과 3개년, 고등과 2개년	4개년
교과목	**심상과**: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체조. 시의에 따라 체조를 제하고 본국지리, 본국역사, 도화, 외국어의 1과 혹은 수과 더하고, 여아를 위해 재봉을 더한다. **고등과**: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본국지리, 본국역사, 외국지리, 외국역사, 이과, 도화, 체조. 여아를 위해 재봉, 시의에 따라 외국어 1과 더하며 또 외국지리, 외국역사, 도서 1과 혹은 수과 제한다.	수신, 국어, 한문, 일어, 산술, 지리 · 역사, 이과, 도화, 체조, 여자는 수예 더한다. 시의에 따라 창가와 수공(手工), 농업, 상업 중 1과목 혹은 몇 과목 더할 수 있다.
수업일수	휴업은 일요일 외 동기, 하기를 합쳐 매년 90일 이내	수업일수 1년간 200일 이하
학령	만 7세에서 15세까지 8개년	만 8세부터 만 12세까지. 현금간(現今間) 14세 입학도 할 수 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2011).

부강을 목표로 광무개혁을 펼쳐나가던 때다. 실업 전문학교로 1899년 6월 상공학교, 1900년 의학교, 광무(鑛務)학교, 우무(郵務)학교, 전무(電務)학교 등의 관제와 규칙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에 맞추어 관립 중학교는 심상과 4년, 고등과 3년의 7년제 과정으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통감부의 고등학교령은 '고등'이란 상등위를 내세워 7년 과정의 중학교를 없애고 4년 과정의 고등학교로 대치했다. 결국 전문학교 이상으로 진학하기 위한 7년제의 건실한 중학과정을 4년 과정으로 단축하여 "극히 실용적인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체제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2) 통감부의 농상공부 체제 왜곡

1906년 2월 1일 주한 일본공사관이 통감부로 바뀌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3월 초에 부임하여 3월 13일부터 '시정개선협의회'를 통해 대한제국 정부에 간여하기 시작하면서 농상공부의 상황도 크게 바뀌었다. 통감부는 '협의'의 형식을 빌려 1906년 7월 27일 자 '농상공부관제 개정'으로 농상공부의 체제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표 1-3-2]에 제시된 1906년 1월 29일 관제와 이를 비교하면 [표 1-3-4]와 같다.

[표 1-3-4]에서 주목되는 것은 부처 대신(大臣)의 소임 규정에 '선박 영업'이

[표 1-3-4] 1906년 1월 29일 농상공부관제(개정)와 같은 해 7월 27일 개정 비교

	1906. 1. 29. 개정	1906. 7. 27. 개정
제1조 대신 소임	농무, 상무, 공무, 광산, 철도, 통상항해 등	선박 영업 추가
제2조 대신관방	통칙 외 사무: 포상, 본부소관 경비 및 제수입의 예산 · 결산 및 회계. 소관 관유재산 및 물품 아울러 그 장부 조제	좌와 같음
제3조	농상공부 참서관은 8인	10인
제4조	4국: 철도국, 상무국, 농광국, 공무국	5국: 농무국, 상무국, 광무국, 공무국, 철도국
제5조	철도국, 상무국은 2등국 농광국, 공무국은 3등국	농무국, 상무국, 광무국은 2등국 공무국, 철도국은 3등국
제6조	철도국 사무 관련사항: (1) 관설철도 부설 및 운수, (2) 사설철도 허부 및 관리, (3) 관설철도의 세입 · 세출 예산 · 결산과 수용물품 구매관리 및 출납	농무국 사무: 농업 삼림 수산 목축 수렵과 잠업 및 상차
제7조	상무국 사무 관련사항: (1) 상업 및 영업 제회사, (2) 박람회, (3) 내외국산 진열품, (4) 통상항해 수륙운수	상무국 사무: (1) 상업 및 영업 제회사, (2) 박람회, (3) 내외국산 진열품, (4) 선박 영업 및 조사, (5) 통상항해 수륙운수
제8조	농광국 사무; (1) 농업, 산림, 수산, 목축, 수렵과 잠업 및 상차, (2) 광산조사 및 기타 관민업에 속한 광산, (3) 지질 및 분석	광무국 사무: (1) 광산 조사 및 기타 관민업에 속한 광산, (2) 지실 및 분석
제9조	공무국 사무: (1) 공업 및 공장, (2) 도량형	공무국 사무: (1) 공업 및 공장, (2) 도량형 제조 및 행정
제10조	농상공부 기사 3인, 기수 8인 정원이되 실업 장려 위해 명예원을 수시 증설	철도국 사무: (1) 관설철도 부설 및 운수, (2) 사설철도 허부 및 관리, (3) 전기철도 및 마차철도, (4) 관설철도 세입 · 세출 예산 · 결산, 수용물품 구매관리 출납
제11조	농상공부 주사는 26인 정원	기사, 기수의 수는 좌와 같음. 단 명예원은 농상공각 과 졸업인에 한함.

출처: 서울대학교 도서관, 『칙령(하)』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 근대법령집, 1991.

추가되고, 철도국, 상무국, 농광국, 공무국 등의 4국 체제가 농무국, 상무국, 광무국, 공무국, 철도국 등의 5국 체제로 바뀐 점이다. '선박 영업'은 일본 선박이 앞으로 한국 연안에 많이 왕래할 것을 염두에 둔 조치였으며, 농광국을 농무국, 광무국으로 분리한 것은 통감 이토의 농업 중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농무국, 상무국, 광무국을 2등국, 공무국, 철도국을 3등국으로 한 것도 농업 중시 정책의 일단을 보여준다. 철도는 사실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이 경부선, 경의선을 직접 부설하여 관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대한제국 농상공부와 무관한 상태였기 때문에 철도국의 비중을 높일 이유가 없었다. 공업에 대해서도 통감 이토는 발전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무국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 철도국 사무

에 관설(官設), 사설(私設)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것은 앞으로 일본의 사설 철도회사가 한국에 진출할 여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또 철도국의 사무로 전기철도, 곧 전차 관리 외에 마차철도를 삽입한 것도 일본식 발상이다.

마차철도란 철제 궤도(rail)를 부설하고 그 위를 달리는 승합차를 복수의 말이 끄는 형태의 대중교통 수단이다. 이 교통수단은 19세기 초·중반에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 실제로 운영되던 대중교통으로 일본 도쿄에 메이지 유신 이후 도입되었다. 그러나 마차철도는 '전기철도', 즉 전차(electric street car)가 개발되면서 활용도가 떨어졌다. 서울은 미국의 콜브란 보스트위크(Collbran Bostwick) 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1899년 5월 전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반면에 도쿄는 마차철도를 부설해 이용하다가 1902년 말에 비로소 전기철도로 바꾸었다. 통감부가 1906년 7월 뒤늦게 서울에 마차철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만 앞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더 늘린다면 비용이 많이 드는 전기철도보다 마차철도를 선택하겠다는 의미일 수는 있다. 후술하듯이 서울의 전차는 황제가 내장원의 자본 20만 원을 들여 한성전기회사를 건립하여 미국 콜브란 보스트위크 사의 기술 협조 아래 시설한 것으로서, 통감부는 이 회사를 일본 와사(瓦斯) 주식회사로 편입해 버린다. 요컨대 통감부는 1906년 7월 '농상공부관제'를 농업 중시 형태로 바꾸어 놓고 8월 27일에 농림학교, 사범학교, 고등학교, 외국어학교, 보통학교에 관한 '칙령' 개정의 절차를 밟았다. 그것은 한국의 상공업 근대화가 아니라 식민 농업 창출에 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교육제도의 확립이었다.

(3) 관립 농상공학교의 왜곡 1: 농업 식민주의와 수원농림학교

앞에서 서술했듯이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1906년 4월부터 '시정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기존 대한제국의 근대화 사업을 변경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무렵 4,000원의 예산을 들여 농상공학교 부설 농사시험장을 건설하고 있었지만 통감 이토는 이를 중지하도록 했다(『구한국관보』, 1906. 4. 14, '예비금중지출사'). 그 대신 약 60만 원으로 수원에 권업농장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구한국관보』, 1906. 4. 13, '시정협의회' 제3회; 제4회). 이에 1906년 5월 31일 정식으로 '농사시험장관제'가 폐지되었다(『구한국관보』, 1906. 6. 4. 칙령). 앞의 뚝섬 농장 계획지는 원예모범장을 설치토록 했다. 한국을 식량 공급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계획한 통감 이토는

교육용으로 건설하는 뚝섬의 농장에 만족할 수 없었다. 앞서 살폈듯이 1906년 7월 27일 '농상공부관제'를 개정하여 농무의 비중을 높였다. 즉, 기존의 3등국 농광국을 농무국과 광무국으로 분리하여, 농무국은 상무국과 함께 2등국으로 승급했다.

농무국은 농업과와 식산과로 나누어, 농무의 개량·개선을 위해 매주 수요일 농상공부대신 주재로 농사 강의회를 개최했다. 종묘소, 창업시험장, 면화재배 채종포, 원예모범장, 삼림모범장, 임업사무소, 잠업강습소 등을 설립했다. 통감의 지시에 따라 수원에 총 면적 약 87정보를 매입하여 1907년 5월 15일 경비 16만 원을 들여 수원 서둔리에 '권업모범농장'을 설치했다. 양잠, 과물, 미맥, 면화 등의 농법을 개발하여 이를 모범으로 삼아 보급하고, 일본에서 농업 조사차 내한하는 자본가 혹은 실업가에게 소개할 방침이었다. 그리고 곧 설립할 동양척식회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도 있었다. 일본 자본과 일본 농민이 주체가 되는 다노다비(多勞多肥)의 '메이지 농법'을 이식·보급하여 한국 농업을 장악, 지배하려고 했다. 이 농법의 이식 방법 중 하나는 지주제에 기초한 대규모 농장을 설립하여 한국 농민을 직접 장악해 일본 농법에 적응토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한 일본 농민이 직접 농법을 이식하는 것이었다.

한국 농업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정책 아래 농업 전문학교도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통감부는 1906년 8월 27일 농상공부 소관의 '농림학교(農林學校)관제'(칙령 제39호)를 반포했다. 농업과 임업에 필요한 교육을 내세우고(제1조) 당분간 "일본국 학술가를 초빙하여 그 사무를 임시 대변할 수 있게" 했다. 이런 변화 속에 농업, 상업, 공업 간의 유기적 발전을 강구하는 교육을 추구한 농상공학교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웠다. 통감부는 1907년 3월 22일 '농상공학교관제 폐지'(칙령 제14호)와 '권업모범장관제'(칙령 제17호)를 동시에 반포했다. 후자는 소관 사무(제1조)로 ① 산업의 발달 개량에 이바지할 모범 조사 및 시험, ② 물산의 조사, 아울러 산업상 필요한 물료(物料)의 분석 감정, ③ 종자, 종묘, 잠종, 종금(種禽) 및 종축(種畜)의 배부, ④ 산업상의 지도 통신 및 강화 등을 규정했다. 그리고 농상공부 대신은 필요한 지방에 권업모범장 지장(支場) 혹은 출장소를 두어 권업모범장 직원을 파견해 본장의 사무를 분장케 할 수 있다(7조)고 규정하고, 당분간 본장 직원 중에 일본 학술가를 초빙하여 해당 사무를 임시 대변케 할 수 있다(9조)고 했다.

농림학교는 1906년 9월 1일 농상공학교의 예과 교실에서 개교했다. 구 농상공학교의 농업과 학생(1904년 12월 입학생) 25명과 한성학당(일본어 교육을 위한 보통학교)의 농업 속성과 학생 8명을 합하여 모두 33명을 수업연한 2년의 본과 1학년에 편입시켜 9월 10일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1907년 10월에는 농림학교 수원교사가 준공되어 이전이 이루어지고, 1908년 7월 수원농림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관립 전문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통감 이토의 식민지 농업정책 덕으로 그나마 모양을 갖춘 전문학교가 되었다. 1909년 6월 1일 '농림학교규칙'을 개정하여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본과 120명, 연구과 40명으로 정원을 대폭 늘렸다.

(4) 관립 농상공학교의 왜곡 2: 공업전습소의 관리 주역 변경

대한제국 정부는 1906년 1월 29일 '농상공부관제'(개정)를 공포했다. 통감부가 설치되기 바로 직전이다. 이때까지 농업, 상업, 공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교육 방향이 견지되었지만 3개월 뒤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시정개선협의회'를 통해 한국을 일본의 식량 공급지로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3자 균형 유지의 교육 지향은 피기도 전에 꺾이기 시작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1899년 창설한 상공학교를 1904년에 농상공학교로 개편하여 농·상·공업 동시 육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런 의지는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탈취하기 위해 러일전쟁을 일으킨 상황에서 실현되기 어려웠다. 실제로 개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 중에 진행된 경부선 철도 부설 공사에 공업과 학생들이 동원되어 일본인 기술자들을 보조하거나 한국인 노동자의 통역 혹은 감독직을 맡기도 했다. 통역은 일본어학교 출신으로 이 학교에 입학한 소수의 학생들이 동원되었다. 이런 위압적 상황에서 많은 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퇴학 처분을 당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교관들 가운데도 사직하는 이들이 나와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다. 1905년 7월 농상공학교 예비과를 졸업한 학생은 28명에 불과했다(이계형, 1998).

전쟁이 끝난 뒤, 통감부가 '보호국' 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공학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통감부는 1906년 8월 27일 농상공부 소관의 '농림학교관제'를 반포하여 실업 전문 교육을 농, 상, 공 3부에서 농업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고, 1907년 3월 22일 농상공학교를 폐지했다. 『황성신문』은 1906년 3

월 26일 자에 "관립 농상공학교에서 일본인 오니시(大西) 씨를 공과 조교사로 초빙했는데 일간에 학교에 가서 시무(視務)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통감 이토는 3월에 부임하여 '시정개선협의회'를 주관하면서 바로 농상공학교의 공업 교육에 간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같은 신문 4월 17일 자에 「공학전폐(工學全廢)」라는 제목 아래 "상과 교사(敎師)가 폐무를 청원한 지 지금 2개월 만에 학도(학생들)의 공과를 전폐했다"고 보도했다. 오니시는 통감부의 공학 폐지를 위해 투입된 요원이었던 셈이다.

1906년 7월 27일 '농상공부관제' 개정 이후 농업, 상업, 공업 분야의 제반 시책에는 사실상 대한제국 정부의 뜻이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906년 8월 9일 자의 '농상공부소관광산사무국관제'(칙령 제38호)는 지금까지 광산에 대한 소유권이 궁내부에 있었던 것을 '국유'로 바꾸기 위한 전초 작업의 하나였다. 이 관제는 제1조에 광산 사무국이 앞으로 광산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전담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에 총재는 농상공부대신이 겸한다고 했다. 대한제국 황제는 일본의 국권 탈취에 대해 국정의 총책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다. 황제가 직접 통할하는 궁내부는 산업근대화의 중심으로서 금광을 비롯한 광산의 소유권과 개발권이 모두 이에 편입되었다. 이 구조가 통감부로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국유'의 명분 아래 관리권을 농상공부대신이 갖도록 하여 친일내각 구성을 통해 하나씩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 관제도 "본국 직원 중에 혹 일본국 학술가로 초빙하여 그 사무를 임시 대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잊지 않았고 두었다(제8조).

대한제국 정부는 통감부의 '시정 개선' 일환으로 1907년 2월 1일 자로 '농상공부소관공업전습소관제'(칙령 제6호)를 반포했다. 주요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공업에 관한 기술 전습

제2조 직원: 감독 1인, 소장 1인(전임), 기사 6인(전임), 기수 20인(전임), 사감 1인, 서기 3인

제3조 감독은 공무국장 겸임

제8조 전습상 필요한 때에는 농상공부대신의 인가를 얻어 강사를 촉탁하여 전습을 분담한다.

제9조 현금(당분)간은 본소 직원 중 일본인을 초빙하여 그 사무를 임시 대변함도 가하다.

관립 공업전습소는 농상공학교 폐지 후, 농업 분야에서 (수원)농림학교처럼 공업 분야에서 유일한 전문 교육 기능을 수행했다. 따라서 중요성이 크다. 그런데 그 설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로 기일을 달리하는 기록이 있다.





출처: 『日本之朝鮮』, 1911, 有樂社, 東京.

[그림 1-3-8] 낙산 밑에 자리 잡은 공업전습소(위)와 낙산 밑 공업전습소 일대(아래). 서쪽 인왕산 방향에 '대한의원'이 새로 지어지고 있는 광경이 보인다. 공업전습소는 '1907년 설립'이라고 했다.

① 1906년 4월 20일. "동서 리화동에 설립된 공업전습소의 개소식이 거행되었다. 소장으로 고등공업학교 출신인 노다 츄조(野田忠藏)가 임명되고, 기타 기사, 기수, 서기 등은 일본인을 고빙하기로 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메이지(明治) 39. 4. 20, '농공상무부 사무 공적(公績)']

② 1906년 12월 19일. "농상공부 소관 공업전습소관제를 반포하다"(『일성록』, 1906. 12. 19).

③ 위 인용문(『칙령』, 1907. 2. 1, 칙령 제6호)

①에 따르면 공업전습소는 이미 1906년 4월 20일에 발족했다. 설립 장소인 서울의 동서 구역 내 이화동은 나중까지 공업전습소가 있던 곳이다. 그리고 개소식이 있었던 1906년 4월 20일은 통감 이토가 제3회 '시정협의회'를 주재한 1주일 되던 날이다. 앞에서 이미 살폈듯이 시정협의회는 제1회부터 제3회까지 농업 정책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공업전습소 개소는 곧 학부 학정관 시데하라가 추진하던 교육 정책의 하나로서 통감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과는 구별된다. 통감부 이전, 대한제국 학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간여는 학정관 시데하라 다이라를 통해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데하라는 1905년 7월에 본국 문부성의 추천으로 농학사 아카카베 지로(赤壁次郎), 10월에 임시 대리공사 하기와라 슈이치(萩原守一)가 공학사 구노 스에고로를 공학과에 추천하여 교관으로 임용하는 일

에 간여했다. 그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대한제국이 추진하는 교육제도의 틀 속에서 일본인 교관을 투입시키는 것이었다.

시데하라는 자신이 쓴 『조선교육론』(1919) 209쪽에서 1906년 8월 농림학교 설립과 더불어 한국의 공업고문으로 임명된 공학박사 히라가 요미시(平賀義美)로 하여금 공업전습소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회고한다(이계형, 1998: 100). 학교 부지를 이화동 낙산으로 정하고, 1906년 10월 서울 동서 이화동에서 기공했다고 적었다. 그런데 『대한매일신보』에서는 기공일을 1906년 9월 20일 자로 보도한 것을 감안할 때, 그의 회고가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개소식 날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할 것은 주한 일본공사관이 본국 외무성에 보고한 날짜, 1906년 4월 20일이다. 주한 일본공사관은 이에 이어 4월 29일에 다시 "공업전습소는 학생 74명으로써 수업을 개시했다. 수업 과목은 염직과·도기과·금공과·응용화학과·목공과·토목과 등 6개 과목이다."라고 보고했다(『주한일본공사관기록』 메이지 39. 4. 29, '농공상무부 사무 공적'; 국사편찬위원회 편, 2015, 『신편 고종시대사』, 1906. 4. 29). 그리고 각 과목의 내용을 세분하여 염직(색염, 기지), 도기(도기, 자기), 금공(주공, 단공, 판금세공), 목공(조가 가구), 응용화학(화학제품 분석), 토목(측량, 제도)을 보충했다. 이 기록들에 따르면 공업전습소는 1906년 4월 20일 개소(개교)한 것이 확실하며, 이와 차이가 나는 다른 기록들은 이를 기준으로 그 이유를 유추해야 한다.

②의 1906년 12월 19일 "농상공부 소관 공업전습소관제 반포"에 관한 『일성록』의 기록은 개소에 앞서 관제를 미리 반포하지 못한 어떤 사연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제1차 통감부 통계연보' 제12재정 제213표에 1906년도의 '한국정부 기정 계속비 예산년 배액(配額)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국사편찬위원회 편, 2015, 『신편 고종시대사』, 1906. 12. 31).

> 임시 치도비(治道費) 16,000원(圓), 수도 공사비 105,500원,
> 병원 건설비 8,797원, 학사(學事) 확장비 244,985원,
> 공업전습소 건설비 43,600원, 재판소 건축비 2,000원,
> 해관(海關) 공사비 496,066원. 합계 916,948원

이 가운데 병원 건설비(8,797원)는 본래 대한제국 궁내부 산하의 적십자병원

신축 예산이다. 통감 이토가 1906년 4월 '시정협의회'를 주관하면서 이를 '대한의원'으로 변경, 왜곡해 건설 관계로 궁내부와 상당한 마찰을 빚었다. 즉, 대한제국 황실이 중립화 정책 실현을 위해 그 필수 조건의 하나로 국제적십자사연맹에 가입하기 위해 적십자병원을 짓기로 했는데, 통감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십자병원을 비롯해 모든 의료기관과 의학 교육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통감의 치적으로 둔갑시키려 했다. 공업전습소도 본래는 황제가 산업근대화를 위해 건설비를 1906년 예산으로 책정하여 진행하던 중 통감부의 개입으로 난항을 겪게 된 것이다. 이 문제가 1907년 3월 22일에 통감부가 탁지부로 하여금 공업전습소 건축비 증액(19,000원)을 건축소 공업부 연와제조소(煉瓦製造所) 자본금(265,000환)과 함께 자신들이 마련한 '기업자금'에서 지출하게 한 것으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일본 측에서 공업전습소의 주관 비중을 높이기 위해 자신들이 마련한 자본을 쓰게 한 것이다(국사편찬위원회 편, 2015, 『신편 고종시대사』, 1907. 3. 22; 『구한국관보』, 1907. 3. 26)

③의 1907년 2월 1일 자 '농상공부소관공업전습소관제'는 통감부가 공업전습소의 관할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농상공학교가 해체된 상태에서 공업전습소는 공업기술을 가르치는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소중하기 짝이 없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8년 10월 24일 자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공업전습소 5개 과 학생들은 주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공업연구회를 조직하고 매월 2번씩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로간의 지식을 교환하고 수당금에서 50전씩 갹출하여 잡지를 발간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공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1909년 4월 졸업식에서 염직과 8명, 도기과 9명, 금공과 7명, 목공과 7명, 응용화학과 3명, 토목과 12명, 총 46명의 학생들이 졸업했다.

(5) 관립 농상공학교의 왜곡 3: 관립 상업학교의 실종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의 산업정책과 이를 지원하는 교육체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상업전문과에 대한 조치가 가장 가혹했다.

『황성신문』 1906년 4월 18일 자 「잡보」에 실린 '상업학도청원(商業學徒請願)' 기사가 상업 전문 교육의 어두운 앞날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기사는 관립 농상공학교의 학도 이호영(李灝榮), 최영완(崔永玩) 등이 학부에 제출한 청원서를 소개

한 것으로 그 요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우리들이 관립 농상공학교의 상업전문과에 입학한 지 지금 2학기가 되었다. 대개 상업은 농산(農産)과 공작(工作)의 사이에 각기 수요, 공급의 편의를 이루게 하고 유무(有無)를 상자(相資)하고 장단(長短)을 상보(相補)하여 농업은 농업일 수 있게 하고 공업은 공업일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이른바 농·공·상 3자가 정족의 세를 이루어 하나라도 결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교환 무역이 발달하고, 대차(貸借) 매매가 확장하고, 사회가 크게 열리고[大開],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도 모두 상업에서 유래한다. 이러므로 상업은 금일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하루도 쉬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상학과가 지금 2개월이나 중지되어 학도들이 걱정에 싸여 있다. 학생들의 지적에 따르면 농상공학교의 상업전문과는 2학기 곧 1년 전 1905년 3월에 첫 입학생을 받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1906년 2월 중순부터 수업이 중지되어 4월 18일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 통감부는 1906년 2월 1일 설립 직후 바로 관립 농상공학교 상업전문과의 교육을 중지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의 청원서는 학교 당국이 교관의 수업 시간 변경을 구실로 수업을 중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속히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상과 교관 김대희(金大熙)는 일찍이 외국에서 상학 전문을 졸업한 사람으로 본교 설립 이래 교관으로서 열심히 교육했는데 지난 음력 2월 초에 부득이한 일로 하오의 2개 시간을 상오로 바꿀 것을 여러 번 교장에게 요청했다. 그때 학도들도 시간을 바꾸어 김 교관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교장에게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런데 교장은 김 교관이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보다 앞세우는[重私輕公] 사람이라고 하여 상과를 폐지하더라도 김 교관의 교수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고, 김 교관 대신 외국에서 교사를 고빙하겠다고 하여, 몇 주를 기다리는 사이에 2개월간 폐학(廢學)이 되어 학도들은 더욱 미혹(迷惑)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사적인 것을 중시하고 공을 가벼이 한다고 하지만, 김 교관이 시간을 바꾸어 달라고 한 것은 생활의 압박으로 부득이한 일로서 정말 사를 중히 여기고 공을 가벼이 한 것이 아니다. 대저 사(私)가 살은 연후에 공(公)도 받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2개 시간을 개정하는 것을 공적 일을 가벼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2개월의 폐학이 교육을 중시하는 것이 못 되지 않은가? 설사 시간을 개정하여 공이 해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작은 일이고, 교육이 전국의 흥폐와 사회의 융체(隆

替)에 끼치는 영향 관계는 심히 큰 것이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것, 무거운 것을 먼저 하고 가벼운 것을 뒤로 하는 것은 일을 맡은 사람의 의무이다. 시간 개정과 학과 폐지의 대소, 경중은 어떠한가?

학교 당국의 처사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 학교장의 처사는 결국 통감부로부터 김대희 교관의 수업을 정지하고 대신 일본인 교사를 고빙하라는 요청을 받고 그가 요청한 시간 변경을 불허했던 것이다. 통감부가 농상공학교의 상업 교육을 일본 교관이 가르치게 하거나 아예 없앨 방침이 '상업학도청원' 기사에 여실히 나타난다.

학생들은 외국 교사, 즉 일본인 교수 고빙 건에 대해서도 이론을 제기했다. 외국인 교사 고빙은 국내에 자격자가 없을 때 가능한데 김대희 교관이 있음에도 외국 교사를 특별 고빙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고 거액을 들여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려는 본의에 어긋나며, 도리어 외국의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했다. 국내 교관의 월급이 20원(元)인데, 외국(일본인) 교사 월급을 100원이나 지급하는 것도 이해득실에서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교육 과목으로도 외국무역, 부기, 상품 3자는 상업전문에서 가장 긴요한 것인데 1학기를 배우고 지금 중도에 폐지하면 학식 발달의 희망이 오히려 위축되니 교육의 뜻이 이렇게 되어도 좋은가를 물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김대희 교관에게 시간 변경을 허용하여 수업을 정상화시켜 학생들이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런 청원은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07년 3월 31일 농상공학교 폐지로 이어졌다.

1904년 10월에 부임한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는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설립 계획을 저지하고 일본 제일은행권을 한국에 통용시키는 임무를 수행했다. 1906년 설립된 통감부는 이어서 대한제국의 국책 은행에 해당하는 대한천일은행의 임원진으로 일본인을 투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상업전문과의 폐지는 이런 한국의 금융과 상권에 대한 억제책의 일환이었다.

농상공학교 상업전문과의 교육이 정지된 상태에서 같은 해(1906) 9월에 일본 기업가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가 한국에 상업학교 설립을 희망했다. 그는 이듬해 4월 일본인들이 세운 구 경성학당(京城學堂; 일본인 학교) 자리에 '대창(大倉)상업학교'를 설립할 목표로 통감부와 교섭했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이 제

안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이름을 '선린(善隣)'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황성신문』은 1907년 3월 15일 자에 「선린상교(善鄰商校)」라는 기사에서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 씨가 남촌 등지에 선린상업학교(善隣商業學校)를 설립했으니 인허하라고 규칙 책을 만들어 학부(學部)에 청원했다고 한다."라고 보도했다. 통감부는 1907년 3월 31일 자로 서울 명동에 위치한 관립 농상공학교를 폐지시키고 그 교사와 교구를 모두 선린상업학교에 넘겨주었다. 농상공학교의 상업전문은 이와 같이 통감부가 일본인들이 한국의 상업을 장악하도록 철저하게 억압했다.

『황성신문』은 1906년 4월 20일 자 「잡보」에 '수력발전사 인허 요청[水力電社請認]'이란 기사에서 일본인 시부자와 에이이치(澁澤榮一),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 나리노 도쿠이치로(成野德一郎), 구사카 요시오(日下義雄) 등 유력한 실업가들이 자본금 70만 원으로 경성에 수력전기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통감부를 경유하여 농상공부에 청원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쿠라는 이미 통감부 발족 초기에 기업가로서 한국에 진출했고, 9월에 한국에서의 상업 활동을 영구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상업학교 설립을 통감 이토와 의논하여 진행했던 것이다. 『황성신문』은 선린상업학교가 개교한 즈음인 1907년 4월 1일 자로 「선린상업학교(善鄰商業學校)」라는 기사에서 오쿠라가 20만 원을 기부하여 재단을 만들었고, 첫 학생 모집은 50명가량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1908년 2월 27일 자 「상교과목(商校科目)」이란 기사에서는 그의 기부금과 함께 "우리나라 정부[我國政府]의 보조로써 설립했고, 그 교수 과목으로 수신, 일어, 산술, 부기, 상업요항, 상업실천, 상업지리, 상품법률, 경제 등"이라고 소개했다. 선린상업학교는 대한제국 농상공학교의 건물과 부지를 그대로 넘겨받은 점에서 특별하다.

『황성신문』은 1908년 11월 29일 자 「학대축사(學大祝辭)」라는 기사에서 "선린상업학교가 어제 개교식을 가졌다"고 한 다음, "되돌아보건대 우리나라에 실업교육기관은 다만 관립 농상공학교가 있는 것에 불과했으나 시운의 추세는 실업교육 발달이 아주 필요하게 되어 광무 11년(1907) 학칙 개혁 때에 각 과를 분리하여 독립한 학교를 시설하여 농과는 농림학교로 하고 공과는 공업전습소로 했는데 상업학교의 건설 또한 급무인 까닭으로 점차 이에 시설을 진행하는 중에 마침 그때 일본국 오쿠라 기하치로 씨가 선린의 우의로서 우리나라 상업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경영 중에 있는 상업학교의 터, 가옥들을 모두

다 이부(移付)하여 이에 재단법인 선린상업학교의 설립을 보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본래 관립 상업학교를 건립 중이었지만, 통감부가 개입하여 오쿠라의 '기부', 한국 정부의 부분 투자로 재단을 만들어 선린상업학교가 개교한 것으로 정리했다. 상업전문과는 결국 통감부의 식민지 경제 체제 구축 과정에서 일본 자본이 주재하는 학교로 둔갑하여 '관립'에서 벗어났다.

1895년 일본제국은 타이완 총독부를 설립했다. 타이완의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1898년 타이완협회(臺灣協會)란 조직이 만들어지고, 1900년에 이 조직은 '타이완협회 학교'를 도쿄에 세웠다. 조슈 군벌의 주요 인물인 가쓰라 다로(桂太郎)가 중심이었다. 1907년 2월에 타이완협회는 이름을 동양협회(東洋協會)로 고쳤다. 1905년 일본은 러일전쟁에 승리함으로써 한반도와 만주 진출의 근거를 확보했다. 그해 11월 대한제국에 '보호조약'을 강제하여 1906년 2월 통감부를 세우고, 같은 해 후반기에 만주 다롄에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를 설립했다. 타이완협회는 본래 타이완의 식민 경영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발족했지만, '식민'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그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타이완의 대안인 남청(南淸, 남부 청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북청(北淸)이 천황이 지배하는 '동양'의 영역으로 가시화되자 동양협회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이다. 타이완협회 학교도 동양협회 전문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동양협회 전문학교가 1907년 10월 서울에 경성분교(京城分校)를 세웠다. 1907년 6월 헤이그 특사 파견 사건이 일어나 통감 이토는 7월에 대한제국 황제(고종)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통감부가 대한제국 정부를 섭정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한국의 황태자가 즉위를 거부하자 이를 압박하기 위해 10월에 일본제국 황태자[나중의 다이쇼(大正)]가 한국을 방문하고 이에 대한 답례의 형식으로 영친왕(英親王)을 도쿄로 데려갔다. 이때 동양협회 전문학교의 교장인 가쓰라 다로가 황태자를 수행하여 경성분교의 개교를 장식했다. 이 학교는 한국어와 상업교육에 역점을 둔 식민학교로서 한국의 심장부에 세워졌던 것이다. 러일전쟁은 이렇게 대한제국의 주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3) 통감부의 한국 중립국화 정책 봉쇄와 관립 의학교의 왜곡

(1) 대한제국 중립화 정책 봉쇄

청일전쟁 후에도 일본은 군비를 계속 강화했다. 1896년 삼국간섭 직후부터 일본은 해군과 육군의 군비를 크게 확장하는 사업을 벌였다. 해군은 전함, 순양함의 건조 계획, 육군은 6개 사단 증설을 결정했다. 임시 특별예산제도를 채택하여 필요한 비용을 조달했다. 1898년에는 원수부를 설치하고 또 이듬해에는 육·해군의 대신을 현역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채택했다.

1900년 1월 1일 대한제국은 '만국 우편연맹'에 가입하여 외국과 직접 우편물을 교환했다. 1901년 3월 23일에는 유럽의 신흥 공업국가로서 중립국으로 국제적 공인을 받고 있던 벨기에와, 이어 1902년 7월 15일에는 또다른 중립국인 덴마크와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대한제국은 국제 사회로부터 중립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중립국으로서 입지를 굳힌 벨기에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국제적십자회 가입과 만국평화회의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구했다.

1902년(광무 6) 11월 1일 외부대신 서리 조병식(趙秉式)은 당시 만국평화회의 의장을 겸하고 있던 네덜란드 외부대신에게 공한을 보내 "만국적십자회(萬國赤十字會)에의 입참(入參)과 만국평화회의(萬國平和會議)에 파사(派使)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두 건을 협의하기 위해 방문한 주차 법·비 양국특명전권공사(駐箚法·比兩國特命全權公使) 민영찬(閔泳瓚)에게 베풀어준 우대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구한국외교문서(舊韓國外交文書)』 21권, 하안(荷案) 2호, 1902. 11. 1]. 프랑스 주재 공사 민영찬은 1903년 7월 2일에 정식으로 대한제국의 적십자사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민영찬은 앞서 프랑스와 벨기에 주차 특명전권공사로서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적십자회(사)에 참석했다. 국제적십자사 가입과 만국평화회의 참여 자격 획득은 어느 나라건 중립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었다. 대한제국은 1903년 1월 국제적십자회의 회원국이 되었다.

1902년은 대한제국 광무황제가 1862년 즉위한 지 40년이 되는 해였다. 황제는 이를 기념하는 칭경식(稱慶式)을 수교국들(미국,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청국, 일본)의 대사를 초청하여 서울에서 국제행사로 치르도록 계획했다. 그해 5월 13일 주한 일본공사관의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공사는

본국 고무라 외무대신에게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금년은 한국 황제의 즉위 40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는 10월 18일에 어극(御極) 40년 칭경예식이 거행되므로 이에 관한 4월 24일 자의 조칙(詔勅) 별지 갑호(甲號) 사본을 첨부하여 이곳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지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금년 1월 11일 자의 기밀(機密) 제10호 및 3월 11일 자의 기밀 제44호로 말씀드린 일도 있습니다. 이곳 황실에서는 이번에 각 조약국으로부터 대사(大使)의 파견을 희망하고 있으며, 더욱이 일찍이 이곳 외교단은 만일 대사의 파견을 희망하는 것 같은 경축식의 거행이라면 미리 6개월 이전에 통지를 얻고자 하는 뜻을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지에는 대사 파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통지가 거의 6개월 전에 관계된 것으로 보건대 그 저의는 스스로 미루어 알기에 어렵지 않은 일로 생각됩니다. … 아무튼 위의 공식적인 통지에 대해 이곳 외교단은 지난 6일 우리 공사관에서 회합하여 별지 을호(乙號)와 같이 의결했으므로, 이로써 제국 정부에도 열국과 같이 이곳에 주재하는 사신을 특파대사로 바꾸어 친서 봉정(捧呈)의 임무를 맡기도록 조처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본 제국과 한국의 관계는 본디 타국과는 다르므로 자연 이런 시기를 적당히 가늠하여 황족이 승선한 제국의 군함을 인천에 파견하시되, 이런 기회에 입경하여 축하의 뜻을 표하시는 등의 조처를 취한다면 한국 황제는 대단히 환영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본 공사의 사견으로 참고하여 도움되기를 바라 말씀드립니다.[9]

이에 따르면 대한제국 정부는 서울 주재 각국 공사관에 4월 24일 자로 10월 18일 예정의 40주년 칭경예식 초청장을 보냈고, 이를 접수한 각국 공사관의 공사들은 5월 6일 일본공사관에서 모여 서울 주재 공사들이 '칭경 대사'로 참석함을 원칙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하야시 공사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다른 열국과는 다르므로 황족이 칭경 대사로 군함을 타고 인천을 통해 입경하면 한국 황제가 대단히 환영하여 외교적으로 효과가 클 것이라는 사견을 붙였다.

그런데 불행히도 칭경예식은 그해 심한 가뭄 속에 전염병(콜레라)이 돌아 이듬

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7권 칠(六). 본성왕복(本省往復) (14). 즉위 40년 칭경식(稱慶式) 거행에 관한 건, 제53호, 1902. 5. 13.

해로 연기되었다. 하야시 공사는 10월 22일 본국 외무대신에게 러시아의 특사 베베르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황제의 측근인 조병식(趙秉式)이 외부 서리대신으로 임명된 것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보냈다.[10] 이어서 같은 날 러시아 특사 베베르 내한에 관한 의견을 보고했다. 하야시 공사의 주요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베르 특사는 10월 16일 러시아 태공(太公) 게오르그 친왕(親王) 전하 일행과 함께 군함 나히모프 호를 타고 뤼순에서 한국으로 와서, 그 다음 다음날인 18일 계천기원절(繼天紀元節, 황제 즉위 기념일)에 알현하고 국서를 봉정했다.

둘째, 금년의 칭경예식은 이미 1개월 전에 연기 발표되었는데도 베베르 특사는 여전히 공식적인 칭경예식 특파사절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서를 봉정했다. 다른 열국 공사들도 이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본인도 그를 만난 답례 자리에서 체한(滯韓) 기한을 물었지만 자신의 진퇴에 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애매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셋째, 최근 동경 주재 러시아공사가 덴마크로 전근했다고 하는데, 현임 주한공사 파블로프 씨가 후임자가 되면 베베르 씨가 주한공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베베르의 내한 전 이곳에는 그의 내한과 동시에 러시아와의 사이에 어떤 교섭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한국 조정 안에서 러시아파로 지목되는 일당 중에 베베르 씨가 내한한 기회를 틈타 중립의 실행을 시도하려는 자가 있음을 시오가와(塩川) 통역관이 한국 관리로부터 전해들은 일이 있다.

다섯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베베르 공사가 한국 황제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칭경예식 참석을 위한 특사이지 정치적인 특별한 사명을 띠고 온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베베르 씨의 내한 후의 거동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만, 중요한 안건을 갖고 한국 조정과 협상을 개시한 일이 아직은 없다. 금후의 사태를 예의 주시하겠다(강조는 필자).[11]

---

1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7권 육(六). 본성왕복(本省往復), 제127호, (23) 조병식(趙秉式)이 외부서리대신(外部署理大臣)에 임명된 건, 1902. 10. 22.

1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8권 일(一). 기밀본성왕(機密本省往), (37) 러시아 특사(特使) 「베베르」 내한(來韓)에 관한 건, 기밀(機密) 제126호, 1902. 10. 22.

대한제국의 황제는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 다툼이 한국의 주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유지 세력(Status-quo power)인 영국과 프랑스, 현상변경 세력(revisionist)인 러시아, 일본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전자가 후자를 억제하는 틀이 형성되도록 한다던가, 한국이 그들의 상호 견제 관계 속에서 중립국으로 자리 잡는 것을 구상했다(최덕규, 2015).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황제의 노력은 러일전쟁 발발 후에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만, 1902년 10월로 예정된 자신의 등극 40주년 칭경예식을 그 실현의 한 기회로 삼아 수교 열국의 대사들을 초청하고자 했다. 위에 정리한 내용 중 네 번째에서 '중립의 실행 시도'라는 말이 한국 조정에서 흘러나왔다고 한 것이 단순한 소문만은 아니었다. 한국 황제는 경운궁 내에 돈덕전(惇德殿)이란 이름의 최신 서양식 2층 건물을 짓고 칭경예식을 치르는 중심 장소로 삼았다.



출처: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소장.

[그림 1-3-9] 1902년에 준공된 돈덕전. 석조전이 먼저 착공되었지만 돈덕전을 서둘러 먼저 준공했다. 경운궁(덕수궁) 석조전 뒤편에 세워졌지만 1920년대 총독부의 덕수궁 공원화 시책 때 헐리고 그 자리에 동물원이 들어섰다.

칭경예식은 1903년 4월로 연기하여 각국에 다시 초청장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일본제국은 야마시나노미야 기쿠마로오(山階宮菊麿王, 해군대좌)를 파견한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 외부대신 이도재(李道宰)는 1903년 3월 26일 자로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에게 '치사와 예식 일정'을 보냈다. [표 1-3-5]에 정리된 일정표에 따르면 돈덕전이 칭경예식의 본 행사장으로 예정된 것을 알 수 있다.[12] 그러나 콜레라 창궐이 해가 바뀌어도 멈추지 않아 1903년 4월로 변경된 행사마저 열리지 못해 이 행사는 결국 국내 행사로 행해지고 말았다.

대한제국 광무황제는 1896년 9월 말부터 수도 서울의 모습을 일신하는 도시 개조사업을 벌였다. 간선도로(종로, 남대문로)를 넓혀 전차를 달리게 하고 그 전차

1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0권 삼(三). 외부래(外部來) (7) 「일국마왕(日菊魔王)의 칭경축전참석통보(稱慶祝典參席通報)에 대한 치사(致謝) 및 동례식절목(同禮式節目) 송정(送呈)」, 조복제삼일호(照覆第三一號), 1903. 3. 26, 대한외부대신(大韓外部大臣) 이도재(李道宰) → 대일본특명전권공사(大日本特命全權公使) 임권조(林權助).

[표 1-3-5] 1903년 4~5월 즉위 40주년 칭경 축전 행례 일정표

일자	시간	행사 명칭	장소	참석 인원 복장
4월 27일 (월)	-	각사 영접(各使迎接)	-	-
28일 (화)	상오 10시~하오 1시	국서봉정 앞서, 각국 공사 및 특사를 외부대신에게 안내하고 회사(回謝)함.	-	-
	하오 2시	국서봉정 폐현(陛見)	돈덕전	대례복(大禮服) 착용, 대수장(大綬章) 패착
	하오 8시	황제 참석 만찬	돈덕전	대례복 착용, 대수장 패착
29일 (수)	상오 9시~상오 12시 하오 2시~하오 6시	답례 (숙소) 방문	-	-
30일 (목) 칭경일	상오 9시	원구단(圜丘壇) 행례(行禮)	환구단	관계관보다 30분 전 도착
	상오 12시	오찬 연회	돈덕전	대례복 착용, 대수장 패착
5월 1일 (금)	-	진하(陳賀)	-	-
	하오 8시	황태자전하 참석 만찬 연회	준명전	대례복 착용, 대수장 패착
2일 (토)	하오 2시	원유회(苑遊會)	창덕궁 금원	높은 모자[高帽] 통상예복
3일 (일)	-	-	-	-
4일 (월)	하오 2시	관병식(觀兵式)	경희관	대례복 착용, 대수장 패착
	하오 8시	시위(侍衛) 2대 각대 공연	-	대례복 착용, 대수장 패착
5일 (화)	하오 8시	외부 주최 연회	-	연미복 착용
6일 (수)	하오 8시	황제 참석 만찬	돈덕전	대례복 착용, 대수장 패착
7일 (목)	상오 11시	작별 인사[辭陛]	돈덕전	각 대사, 예복 착용, 대수장 패착

주: 콜레라 창궐로 행사 취소.

출처: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0권 삼(三). 외부래 (7) 「일국마왕의 칭경축전참석통보에 대한 치사 및 동례식절목 송정」.

가 철도 정거장에 연결되어 철도로 전국 각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도심에 공원을 만들고 국악 공연장(협율사), 활동사진관(광무대), 상설시장(창외장, 현 남대문시장), 현대식 병원 등을 새로 지어 깨끗한 도시 면모를 열국 특사들에게 보여주고 자력 근대화의 능력을 가진 자주 독립국으로서 대한제국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중립국으로 인정받기를 바랐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꿈은 동아시아를 휩쓴 콜레라로 인해 실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1903년 봄 칭경예식이 취소된 후 러시아-일본 양국의 관계는 날로 악화되어

갔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3년 8월에 이미 일본이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와 전쟁을 벌일 것을 예상했다. 황제는 1903년 8월 15일 자로 비밀리에 러시아 황제에게 친서를 보내 양국이 전시 협조 관계를 사전에 약속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 황제(고종)는 그해 5월 육해군 창설을 위한 '징병령' 시행을 예고했는데, 이것은 이제 중립국이 되기 위한 국방력의 확보를 넘어 러·일 양국 간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의 중립국화 정책은 그해 가을에 러시아를 매개로 일본 정부와 교섭하는 단계에까지 갔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전운이 짙어진 가운데 1904년 1월 21일 중립국을 선포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해 2월 6일 러시아와 국교를 단절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리 별도로 편성해 둔 한국 임시파견대 5개 대대를 제1군의 선발대로 한반도에 진주시켰다. 임시파견대가 서울에 도착한 후에도 제1군의 병력 다수가 서울을 통과하면서 위협적 분위기를 조장했다.

(2) 대한적십자병원 해체와 대한의원 설립

◆ 국제적십자사 가입과 대한적십자병원 창설

대한제국은 황제의 지시로 1902년 10월에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적십자사 회의에 대표를 보내 회원 가입을 신청했고, 1903년 1월 회원국으로 등록된 것을 통고받았다. 바로 그해 7월 8일 황제는 적십자병원 설립을 명하는 조칙을 내렸다(『승정원일기』, 1905. 6. 6; 『고종실록』, 1905. 7. 8; 『구한국관보』, 1905. 7. 12). 이 과정은 1902년 10월, 1903년 4월로 예정되었던 칭경예식과 시기를 같이하고 있었다. 대한제국이 국제적십자사 가입을 통해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견지하려는 노력이었다. 정부는 이 가입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한제국적십자사공포취지서(大韓帝國赤十字社公布趣旨書)〉를 언론기관에 보내고, 『대한매일신보』는 1906년 2월 6일 자, 『황성신문』은 1906년 2월 12일 자에 각각 전문을 그대로 실었다. 국제적십자사의 유래, 가입 경위, 병원 설립을 위한 황제의 하사금 내역 등이 자세히 보도되었다. 이 보도로 국제사회의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높아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13]

---

13 1919년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는 10년 전에 일본이 없앤 대한적십자사를 부활하여 회장 이희경(李喜儆), 부회장 안정근(安定根), 손정도(孫貞道)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각지의 지회, 간호원양성소 등의 설립에 나서 약 2,000명에 달하는 회원을 확보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다. 국사편찬위

대한적십자병원의 설립은 1904년 2월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전쟁이 끝나고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진행 중이던 1905년 8월에 황제가 다시 병원 설립의 명을 내리고 그해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 규칙(大韓赤十字社規則)'(칙령 제47호)이 반포되었다. 전문 15개조를 현대문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제1조 본사는 황제폐하의 지존지인(至尊至仁)하신 보호에 의하여 성립하고 빈곤한 상병자(傷病者)를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천재(天災) 혹은 사변(事變)을 만난 상병자도 구호한다.

제2조 본사는 통상직원 외에 총재 1인을 두되 황족으로 칙명하여 사무를 통할케 하고 부총재 1인, 사무관 1인을 두어 그 사무를 보좌하게 한다.

제3조 본사는 서력 1863년 10월 서서국(西瑞國, 스위스) 제네바부에 개설한 만국회의 의결과 동력 1864년 8월 이곳에서 체결한 조약과 관련한 조규의 주지(主旨)를 따른다.

제4조 본사는 흰 바탕[白質]에 적십자로 기장을 만든다.

제5조 본사는 앞의 조항의 본무 외에 겸하여 일반 상병자의 특별한 소원을 따라 진찰치료와 병실을 차여(借與)할 수 있다.

제6조 본사는 일반 공중의 위생 관련 설비에 대한 자순(諮詢)에 답하고 겸하여 위생기관의 실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본사의 유지비는 다음과 같다.

1. 제실(帝室)의 은사금, 2. 독지가의 기증, 3. 본사 업무에서 생기는 특별 수입금

제8조 본사에 다음 직원을 둔다.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의원(醫員) 3인(1인은 궁내부 관원이 겸한다), 약제사 1인, 약국 조수 3인, 회계 1인, 간호부장 5인, 통역 2인

단, 의원 이하는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9조 사장은 총재에 예속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사중(社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0조 본사 내규는 사장이 정한다.

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3권 임정편 III, 三. 중국에서의 임정 산하 및 후원단체 9. 대한적십자사 참조.

제11조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사장이 유고할 때에는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제1조의 구호 환자는 본사에서 발행하는 치료표(治療票)를 휴지한 자에 한한다.

제13조 제5조의 일반 환자는 본사에서 정한 진찰료와 약값과 병실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한 자로 한정한다.

제14조 본사는 경성(京城) 대동(帶洞)에 임시로 둔다(姑寘).

제15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강조는 필자).

광무 9년 10월 27일

1863~64년에 앙리 듀낭(Henry Dunant)이 적십자사를 창설할 때 내세운 중요한 정신은 전장에서 부상자의 구제, 구호였다. 위 '규칙'은 제3조에서 이를 따르는 것을 명시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제1조는 황제의 '지인(至仁)'의 정신으로 전시 부상자를 넘어 '빈곤한 상병자' 일반에 대한 보호가 내세워지고 천재 혹은 사변(전쟁 포함)의 상병자도 구호 대상으로 규정했다. 조선왕조의 유교적 왕정은 하늘의 뜻으로서 인정(仁政)을 표방하여 백성의 의식주 해결을 가장 중요시했다. 하늘이 수많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정신, 곧 '생생지덕(生生之德)'을 인간의 치세에 실현하는 것을 추구하여 농정(農政)과 의술의 개발을 중요시했다. 기근이나 전염병이 돌 때 왕정은 빈민 구제와 치병(治病)을 모든 것에 우선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서양 의술에 처음 접하여 제중원(濟衆院)의 조기 창설을 가져왔다. 위 '규칙'에 앞서 1905년 7월 8일 대한적십자병원 설립을 명하는 황제의 조칙에도 이런 뜻이 그대로 표명되어 있다.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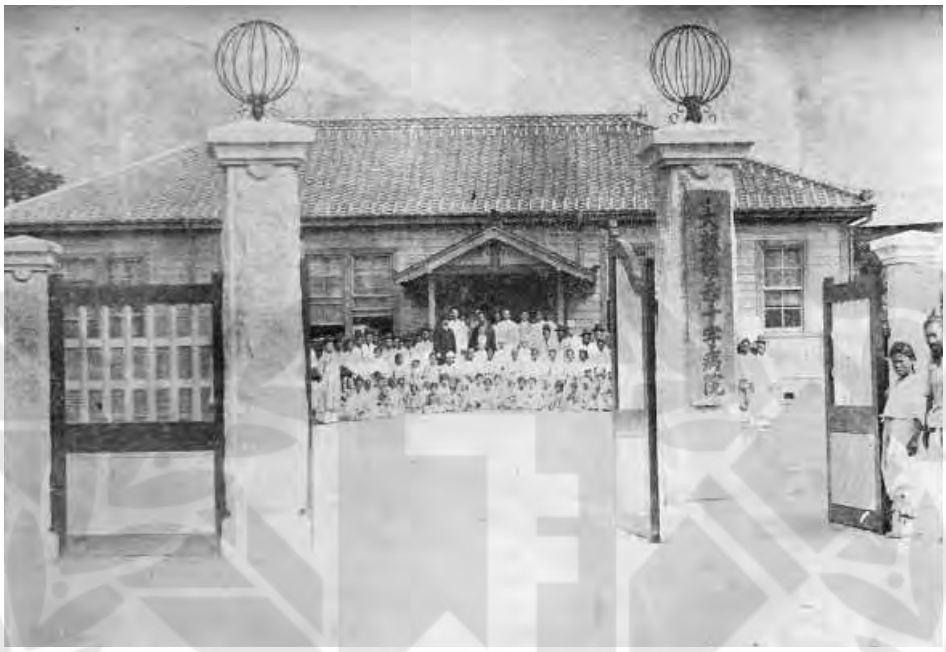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가 편안한 법이다. 백성들을 길러 장수하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융성한 정사와 교화, 덕을 잘 닦아나가는 데 달려 있지만 만일 질병이 생겨 백성들을 늘리는 데 해를 끼치면 생명을 보호하는 데 대책을 세우고 의약으로 치료를 진행해야 백성들이 일찍 죽을 우환이 없이 천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생각건대 우리 조정 이래로 이 법이 처음부터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활인서(活人署)나 혜민서(惠民署) 등이 바로 조종조(祖宗朝) 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덕에서 나온 것이다. 백성들을 널리 구제하는 일을 어찌 한갓 당요나 우순 때만 잘했겠는가? 어째서인지 근래에 이르러 옛 법이 하나

와 같이 해이되고 새 제도가 미처 서지 않아서 뭇 백성들이 병에 걸리고 궁지에서 신음하건만 묘당(廟堂)에 구제 대책이 섰다는 말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짐은 매우 개탄하고 있다. 옛것과 지금 것을 참작하고 여러 나라의 규정을 널리 취해서 이처럼 대한국 적십자 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대체로 다치고 병든 우리 군사들과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찾아오게 하여 잘 치료해주어 위로는 조종조(祖宗朝) 때에 베푼 어진 정사를 계승하고 아래로는 우리 백성들의 생명을 늘리는 방도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 병원을 가상히 여겨 내탕고(內帑庫)의 재물을 내어 적절히 획급(劃給)하니 짐의 뜻을 잘 받들어 시행하라(『고종실록』, 1905. 7. 8, 강조는 필자).

제중원 이후, 대한제국은 1899년 3월에 학부 산하에 관립 의학교를 설립하고, 4월 내부(內部)에 '병원'(1900년 광제원으로 고침)을 설립하는 등 서양 의술의 수용과 보급에 박차를 가했다. 위 '규칙'의 제5조, 제13조의 '일반 상병자'에 대한 치료는 조건부로서 제1조의 적십자사 본래의 목적에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의 이러한 전통 승계 의식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국제적십자사의 정신, 즉 전시(戰時) 부상병 치료 의무는 그만큼 감소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대한제국은 1905년 10월 '대한적십자사규칙'(칙령 제47호)에 이어 같은 날 '육군위생원관제(陸軍衛生院官制)'(칙령 제48호)를 공표했다.

대한제국은 이보다 앞선 1903년 2월 10일 '육군위생원관제'(칙령 제2호)를 반포했다. 1905년 10월 27일의 '육군위생원관제'는 이를 대폭 고친 것이다. 1903년 관제는 제1조에 육군위생원은 "육군 군대의 의무를 장리(掌理)한다"고 하고, 대한제국의 중앙군인 시위대, 친위대의 의무 조직으로 규정했다. 의관(醫官)은 "군대(시위대, 친위대)의 위생 사무를 관장하며 군인의 병자(病者)를 치료하고 원내의 군기 풍기를 유지한다"(제4조)고 했다. 이에 반해 1905년 10월의 관제는 제1조에 "육군 위생원은 육군 군인의 질병 치료와 군대의 위생사무 일부를 장리한다"고 하여 육군 전체의 병원으로 기능하게 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창설이 육군위생원의 개편을 동반한 것은 국제적십자사의 전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한 배려로 간주된다.

'대한적십자사규칙'은 제14조에 "본사는 경성(京城) 대동(帶洞)에 임시로 둔다"고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경복궁 영추문(迎秋門) 건너편 대동에 실제로 병원을 개원했다. 그런데 위 규칙은 이를 '임시로 두는[姑寘]' 것이라고 했다. 새 건물을 지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제공.

[그림 1-3-10] 1905년 대동(경복궁 영추문 건너편)에 임시로 선 대한적십자병원. 병원장 요시모토 준료(吉本潤亮)는 일본인이면서도 통감부의 시책에 반대한 탓인지 1908년 10월 20일 대한의원창립위원에서 해임되었다(『기안(起案)』 규장각도서 17746). 사진 설명에 호근하(扈根夏)가 건물 기증자라고 한다. 그는 대한의원 통역관으로 배치되었으나 곧 이곳을 떠난다.

을 때까지 임시로 둔다는 뜻이다.

◆ 통감부의 대한적십자병원 해체와 대한의원 설립

1905년 8월에 설립 명령이 내려진 대한적십자병원은 궁내부(宮內府) 소속으로 건립이 추진되었다. 그해 10월 10일 『황성신문』은 「적원설시(赤院設始)」, 즉 적십자병원이 처음 문을 연다는 제목으로 "대한적십자병원 총재 이재각(李載覺) 씨가 각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본원 설비가 지금 완전히 갖추어져 이달 15일을 시작으로 개원하여 시료(施療)할 터이므로 해당 시료표(施療票) 50장을 이에 보내니 수시로 빈민 상병자(傷病者)에게 배급하여 구료 요청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궁내부 산하 적십자병원은 빈민 환자 우선 원칙 아래 1905년 10월 15일 개원했다. 그 시점은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보호조약을 강제하기 약 1개월 전이었다.

대한제국 황제는 적십자병원 건립을 명하면서 병원의 건축비로 20,000원(元)을 하사했다. 이 가운데 11,885원(圓) 10전 6리는 가옥 건축 및 옛 가옥 수선비, 7,866원 35전은 의술기계와 약품 구입비로 사용했다. 그리고 의원 이하 직원의 급료 및 기타 잡비로 매달 2,000원씩 하사했다.[14] 이 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19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약(施藥)된 환자가 약 27,378명, 창립 이후 1907년 3월 22일까지 환자의 누계 수는 30,725명으로 집계되었다.[15] 병원 이용자의 수는 예상 외로 많았다.

1906년 4월 9일 통감부는 제3차 한국시정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대한적십자병원을 비롯해 광혜원, 한성종두사, 육군위생원, 학부의학교 등 모든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을 대한의원(大韓醫院)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농상공부와 농상공부학교에 대한 통감부 측의 해체 공작과 시기를 같이 했다. 농상공부처럼 이 안건도 '시정 협의'란 이름 아래 통감부 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1906년 8월 마등산(馬登山, 함춘원: 현 서울대학교병원 자리) 일대를 대한의원 신축 부지로 확정짓고(『대한매일신보』, 1906. 8. 22, '측량이유'), 7월에 창설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에 착공했다. 그리고 10월 25일에는 적십자사, 의학교, 광제원 등의 기구를 의정부 직속으로 바꾸었다. 황제가 직접 영향력을 미치는 궁내부에 비해 의정부 회의를 구성하는 대신들은 통감부가 압박하기에 용이한 점을 고려해 그 소속을 바꾼 것이다.

통감부의 일방적 진행에 대해 대한제국 황실의 반응은 어떠했던가? 앞서 여러 경우에서 보았듯이 1906년 2월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3월에 부임하여 '한국시정협의회'를 구성한다. 한국 대신들을 여기에 참석하게 하여 일방적으로 한국 내정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상황에서 황제도 속수무책이었다. 대한적십자병원 건은 자신의 중립국화 정책과 연관된 것으로 황제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이었지만, 일본군이 서울을 장악한 상태에서 통감부의 강행을 저지할 길이 없었다. 1906년 11월 6일 『황성신문』은 「궁조이건(宮照移建, 이건에 관한 궁내부의 조회)」이란 제목으로 "대한의원을 동궐(창덕궁, 창경궁) 부근 함

14 『각부군래첩(各府郡來牒)』, 규 19146, 제13책, 궁내부 내장원 편, '적십자병원의 경비 집행내역 보고관련', 대한적십자병원감독(大韓赤十字病院監督) 국분상태랑(國分象太郎) → 궁내부경리원경(宮內府經理院卿) 고영희(高永喜), 1907. 3. 22.

15 위의 책.

춘원 등지에 건축하고자 기지를 확정했기 때문에 궁내부에서 조회하되 막중 금원(禁苑) 부근에 건축함이 타당하지 않으니[未妥] 타처로 이전케 하라 했더라"고 보도했다. 이것은 황제 측에서 직접적으로 표명한 거의 유일한 반응이었다. 황실을 대변하는 궁내부는 대한의원이 함춘원에 건축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 분명하다.

창덕궁의 동편 정원으로 알려진 함춘원은 당시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의료기관, 특히 대한적십자병원처럼 병에 걸린 빈민들이 이용할 의료기관을 접근이 불편한 곳에 세운다는 것은 병원 설립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 1905년 11월에 개원한 대한적십자병원의 '임시 설치' 장소인 대동(帶洞)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다. 「궁조이건」의 기사에 따르면 궁내부가 정식으로 건물을 짓고자 한 장소도 따라서 함춘원처럼 격절된 곳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하다. 대한의원의 설계도는 현재 일본 측에서 그린 것으로 알려지지만 이런 정황에 비춰보면 궁내부가 새로 짓고자 준비했던 것을 통감부가 장소를 바꾸어 이용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통감부 측이 대한의원 설립을 제안한 것은 1906년 4월이었고, 함춘원(마등산)을 부지로 지정한 것은 같은 해 6월이었다. 그리고 10월에 관련 기관을 모두 의정부 직속으로 바꾸어 황실의 저항 여지를 없애고, 1907년 3월 10일에 '대한의원관제'를 발표했다. 이어 3월 22일 자로 통감부에서 한국어에 능통한 고쿠분 쇼



[그림 1-3-11] 1908년에 준공된 대한의원(왼쪽). 황제의 내탕금으로 1902년 종로에 세워진 한성전기회사(오른쪽). 조선시대 유교정치에서 시각 측정은 군주의 임무이자 권한으로 표준시계로 자격루를 궁중에 두었다. 서양의 기계추 시계탑은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군주(황제) 권한의 상징이었다.

타로(國分象太郎)가 '대한적십자병원 감독'이란 직함으로 궁내부가 적십자병원에 지급할 비용 가운데 미지급분을 정산하여 속히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와 같은 진행 과정에서 통감부가 신규 대한의원 건물에 대한 설계 작업을 벌일 시간 여유는 상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건립된 '대한의원'이 황제권의 상징인 시계탑과 첨탑 4면에 태극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것도 통감부 측의 새로운 설계로 보기는 어렵다. 대한제국 궁내부가 대한적십자병원으로 신축할 건물을 설계하면서 왕권의 한 상징인 시계탑이 첨탑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유의하고 그 4면에 태극 문양을 넣도록 주문했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황제가 내장원 자산으로 설립한 한성전기회사가 마찬가지로 시계탑을 가진 건물로 종로 대로에 세워진 것과 견주어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통감부는 대한적십자사가 대한제국의 주권 유지 운동의 본령이었던 중립국화 정책의 일환이란 점, 그리고 새로 설계된 건물이 황제에 대한 국민의 충성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이용하되 부지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궁원 지역으로 택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통감부는 1907년 3월 10일 '대한의원관제'(칙령 제9호)를 반포하게 했다. 조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1조 의정부에 직예하여 한성에 설치, 위생, 의육(醫育), 치병(治病)의 일을 관장
제2조 직원. 원장 1인, 고문 1인, 의원(醫員) 17인, 교관 7인, 학감 1인, 약제사 9인, 통역관 3인, 사무원 10인, 기사 3인
제3조 원장은 내부대신이 겸한다.
제4조 원장은 고문과 협의한 후에 원무를 정리한다.
제5조 원장 관방(官房)에서는 중요한 문서를 처변, 전 의원의 서무 및 회계 총괄
제6조 3개 부를 둔다. 1. 치료부, 2. 교육부, 3. 위생부
제7조 치료부 관장 업무. 1. 질병 구료, 2. 빈민 시료(施療)
제8조 교육부 관장 업무. 1. 의사 양성, 2. 약제사 양성, 3. 산파 및 간호부 양성
제9조 위생부 관장 업무
1. 의사, 약제사 및 산파의 업무. 아울러 약품 매약 취급에 관한 조사
2. 전염병 및 지방병의 예방, 종두. 기타 모든 공중위생에 관한 조사

3. 검징, 검역 및 정선(停船)에 관한 조사

4. 위생회 및 지방병원에 관한 조사

제10조 각 부원은 서로 겸무할 수 있다.

제11조 지방 정황에 따라 대한의원 지사(支司)를 둘 수 있다.

제12조 당분간 본원 직원 중 외국인을 초빙하여 그 사무를 대신 맡게 할 수 있다.

제13조 대한국 적십자사의 촉탁을 받아서 해(該) 병원에 속하는 일체 업무를 관장한다.

제14조 각 부의 세칙은 별도로 의정부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15조 본령은 광무 11년(1907)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광무 9년 칙령 제18호 광제원관제 및 공무 칙령 제7조 의학교관제를 모두 폐지한다.

통감부는 1906년 4월부터 '시정 개선'의 미명 아래 대한적십자병원을 해체할 목적으로 대한제국의 모든 의료 시설과 교육기관을 통합하여 대한의원을 발족하는 정책을 폈다.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한적십자병원을 없애는 것이었다. 대한적십자병원의 해체는 곧 대한제국이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자주 독립 운동의 근거를 말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 일본 정부는 1909년 7월 23일 드디어 대한적십자사를 일본적십자사에 편입시켜 버렸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의병의 저항으로 통감의 직을 사임하고 부통감에서 통감이 된 소네 아라스케(曾彌荒助)에게 사무 인계를 마친 시기에 취해진 조치였다. '대한의원관제' 제13조에서 적십자병원의 업무는 "대한국 적십자사의 촉탁을 받아서 해(該) 병원에 속하는 일체 업무를 관장한다"고 회유적인 문구를 남겼지만 실제로 기능한 것은 없었다.

◆ 대한의원의 의육부(醫育部) 및 부속의학교

관립 의학교는 대한의원으로 통합되면서 3부 중 하나인 교육부로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다. 그런데 '대한의원관제'는 5개월 만인 1907년 12월 27일에 칙령 제73호로 다시 바뀌었다. 1907년 3월 10일의 관제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살피면 [표 1-3-6]과 같다.

[표 1-3-6]에서 〈가〉와 〈나〉의 중요한 차이는 전자는 광무황제, 후자는 융희

[표 1-3-6] 1907년 12월 27일 '대한의원관제'의 주요 변동 사항

조문	〈가〉 1907. 3. 10. 관제	〈나〉 1907. 12. 27. 관제
1	의정부 직예(직속)	내부대신 관할
2	원장 1, 고문 1, 의원 17, 교관 7, 학감 1, 약제사 9. 통역관 3, 사무원 10, 기사 3	원장 1, 부원장 1, 의관 10, 교수 6, 부교수 3, 학생감 1, 약제관 4, 사무관 2, 기사 4, 주사 6
3	원장, 내부대신 겸함.	원장, 내부대신의 지휘감독 받아 원무를 총리
4	원장, 고문과 협의하여 원무 정리	부원장, 원장 보좌 원무 관장
5	1. 치료부, 2. 교육부, 3. 위생부	1. 치료부, 2. 의육부, 3. 위생부

출처: 서울대학교 도서관 『칙령(하)』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 근대법령집, 1991.

황제의 시대에 각각 이뤄진 점이다. 1907년 7월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광무황제가 통감부에 의해 강제로 퇴위되고, 황태자가 억지로 황제의 위에 올려졌다. 광무황제 강제 퇴위 때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 정부의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상대로 7월 23일 '한일협약'을 강제하여 통감이 한국 정부의 내정을 직접 감독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가〉에서 남겨진 간접성이 〈나〉에서는 모두 거두어졌다. 이전의 중심병원인 대한적십자병원이 궁내부 소관이었기에 〈가〉의 대한의원은 궁내부와 동급 기관인 의정부 직속체제가 되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병원 다음으로 비중이 큰 광혜원이 내부 소관, 의학교는 학부대신 소관이었기 때문에 대한의원 원장도 내부대신이 겸임하도록 했다. 통감부는 고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나〉의 시기에서는 차관제도를 도입하고 각 부에 많은 일본 관료들을 직접 투입하기 시작했으므로 일본인 직접 경영 체제로 만들었다. 내부대신 관할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이었고, 내부차관의 비호 아래 일본인 원장, 부원장이 직접 대한의원을 지배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교관, 교수, 부교수, 학감에 한국인이 남아 있었지만 일본인이 다수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3개 부서 체제는 그대로 지속했지만 '교육부'가 의육부(醫育部)로 이름을 바꾸었다.

〈나〉의 관제는 1907년 11월 18일부터 1908년 1월 18일까지 약 60건의 관제 개정에 관한 공문은 통감부 관료들이 융희황제의 서명을 위조하여 처리한 것 중의 하나다. 1907년 12월 30일 자의 '농림학교관제 개정', '공업전습소관제 개정', '보통학교령 중 개정 건' 등도 마찬가지다. 통감부의 '시정협의회' 단계에서는 대

한제국 정부의 근대화 사업을 일본의 식민지 구축의 방향으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두었지만, 한국의 관료 조직이나 관료를 활용하는 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1907년 7월 23일의 '한일협약' 이후 융희 연간에는 차관 정치 체제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의 주요 기관들에 직접 투입되어 관장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 체제는 1907년 7월 하순 일본 측이 황태자에게 즉위를 요구했지만 황태자는 이에 순응하지 않다가 일본 측이 영친왕을 동경으로 데려가는 방식으로 압박해오자 11월 18일에서야 광무황제의 종용 아래 태묘에 가서 즉위 서고(誓告)를 올리고 서고장에 이름자[坧]를 친필로 서명했다.

통감부 직원들은 대한제국의 통치 체제를 통감부 아래로 예속시키는 문건 60여 건을 준비해 두고 있다가 이날부터 이 이름자 서명을 흉내 내어 일괄 처리했다(김기석, 1995).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제국 국권 탈취 과정의 최종 단계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 1908년 10월 24일 자로 되어 있는 대한의원 개원에 관한 융희황제의 칙서는 대한제국 조칙 철에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융희황제의 이름자 친서가 빠져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순종은 통감부의 의료 관련 기관 통합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한의원은 통감부의 식민체제 구축 방침 아래 등장한 기구다. 그러나 그 속에 흡수된 치료부, 교육부, 위생부 등 3부의 기능은 대한제국에서 창설된 의료시설 및 의학 교육의 성과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 대한의원이 1907년 12월 30일 한국 정부의 내부대신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본인 원장에 의한 독립 운영 체제로 바뀌었지만, 대한제국의 의료 정신과 기능은 왜곡된 형태나마 그 속에 남아 있었다. 따라서 '대한의원'을 전적으로 일본에 의해 세워진 의료기관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내력을 살피지 못한 독단일 수 있다. 통감부는 1908년 일본인 원장 기쿠치 죠사부로(菊池常三郎)를 임명하고 1909년 2월 4일 '대한의원관제'를 개정하여 의육부를 '부속의학교'로 고쳤다. 1910년 2월 7일에는 내부령(內部令)으로 '대한의원부속의학교규칙'을 공포하고 의학과, 약학과, 산파과, 간호과 등 4개 과를 설치했다.

4) 통감부의 사법권 탈취, 법관양성소(법학교)의 도구화

통감부는 1907년 10월 19일 자로 통감관방(統監官房)을 신설하여 장관은 문서과, 인사과, 회계과 등 3과를 거느리고, 대한제국 각 부의 대신관방(大臣官房), 내각의 서기관장(書記官長) 등 신설 문서 담당 부서들을 통령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어느 모로 보나 일본이 대한제국 지배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을 대규모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였다.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인 1907년 11월 18일 황제(융희)가 태묘에서 서고식(誓告式)을 올리고 서고장에 이름자[坼]를 기입했다. 이를 신호로 2개월간 통감부 직원들이 무려 60건에 달하는 조칙, 법률, 칙령을 황제의 서명을 위조해 처리했다. 일본 정부는 1907년 7월 24일 '한일협약'을 통해 통감의 내정 감독 권한을 명문화하면서 일본식으로 모든 법령 결재에 황제의 이름자 친필 서명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융희황제의 이름자 서명을 일단 확보한 뒤, 통감부 직원들이 이를 흉내내어 결제 대기 문서들을 처리해 버렸다. 1907년 11월 18일부터 1908년 1월 18일까지 60건의 결재 문서에 5~6개의 서로 다른 필체로 서명이 가해졌다. 이 가운데 관제와 학제, 사법권과 관련된 것들만 뽑아 제시하면 [그림 1-3-12]와 같다.



출처: 이태진(1995).

[그림 1-3-12] 통감부 직원이 위조한 황제 서명들. 1907년 11월 18일부터 이듬해 1월 18일까지 통감부 직원들이 멋대로 자행한 황제 이름자 서명을 모은 것이다.

[표 1-3-7] 융희(순종)황제의 서명을 위조해 제정, 개정한 주요 법령 일람

연도	법령
1907. 12. 4	경리원(經理院) 소관 잡세(雜稅) 처리에 관한 건 (칙령)
1907. 12. 13	각부관제통칙(各部官制通則), 내부관제(內部官制) 개정, 한성부관제(漢城府官制) 개정, 경시청관제(警視廳官制) 개정, 지방관관제(地方官官制) 개정, 탁지부관제(度支部官制) 개정, 건축소관제(建築所官制) 개정, 인쇄국관제(印刷局官制), 재무감독국관제(財務監督局官制), 재무서관제(財務署官制), 세관관제(稅關官制), 임시관세공사부관제(臨時關稅工事府官制), 등대국관제(燈臺局官制), 토지측량사무종사탁지부림시직원증치(土地測量事務從事度支部臨時職員增置) 건, 법부관제(法部官制) 개정, 감옥관제(監獄官制), 법관양성소관제(法官養成所官制) 개정, 학부관제(學部官制), 학부직할학교급공립학교관제(學部直轄學校及公立學校官制) 개정, 학부직할학교직원령정원령(學部直轄學校職員令定員令) 개정, 농상공부관제(農商工部官制) 개정 (이상 칙령)
1907. 12. 23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 재판소구성법시행법(裁判所構成法施行法), 재판소설치법(裁判所設置法) (이상 법률) 법전조사국관제(法典調査局官制) (칙령)
1907. 12. 27	각관제중(各官制中) 참서관(參書官), 서기관(書記官) 지위조정 건, 경시청관제중(警視廳官制中) 개정 건, 평양광업소관제(平壤鑛業所官制), 회계조사국관제(會計調査局官制), 연와제조소관제(煉瓦製造所官制), 판사검사관등정원급봉급령(判事檢査官等定員及俸給令), 재판소서기장급서기관등정원령(裁判所書記長及書記官等定員令), 재판소번역관급번역관보관제(裁判所飜譯官及飜譯官補官制), 대한의원관제(大韓醫院官制) 개정, 대한의원장(大韓醫院長)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건, 공립보통학교직원봉급령(公立普通學校職員俸給令) 개정 건, 평양광업소특별회계법(平壤鑛業所特別會計法), 토지가옥증명규칙중(土地家屋證明規則中) 개정 건, 자금회계법(資金會計法) (이상 칙령)
1907. 12. 30	농림학교관제중(農林學校官制中) 개정 건, 공업전습소관제(工業傳習所官制) 개정, 원예모범장관제중(園藝模範場官制中) 개정 건, 보통학교령(普通學校令) 개정 건 (이상 칙령)
1908. 1. 18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관제(臨時帝室有及國有財產調査局官制) 개정 (칙령)

출처: 규장각자료총서 금호 시리즈 근대 법령 편, 『조칙(詔勅) · 법률(法律)』, 『칙령(勅令)』(하) (1991, 서울대학교도서관); 이태진(1995).

[표 1-3-7]에 제시된 법령들의 중요성은 법령의 명칭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칙령 52건 가운데 첫 번째, 12월 4일의 "경리원(經理院) 소관 잡세(雜稅) 처리에 관한 건"은 궁내부 산하 경리원이 관장해오던 잡세, 즉 상공업세를 국유(國有)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경리원(본래는 내장원)이 취급하는 재원은 황제 직속으로 그간 황제가 각종 산업근대화에 조달하던 것이다. 이제 그것을 국유화해 통감부가 장악하기 위한 개정 조치였다. 국유로 할 경우, 통감이 한국 대신들을 압박해 각 부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므로 중요 재원 장악이란 차원에서 가장 앞세운 개정이었다(이상찬, 1992: 150~155).

다음으로 12월 13일 하루에 처리된 22건은 모두 중앙 관부(官部)의 관제 개편에 관한 것으로 통감의 "한국 내정의 전권 장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각부관제통칙(各部官制通則)'에 이어 내부와 그 산하 한성부(漢城府), 경시청(警視廳), 지방관(地方官), 탁지부 및 그 산하 건축소, 인쇄국, 관세국, 재무부감독국, 재무서, 임시세관공사부(臨時稅關公司部), 등대부 등의 임시 직원(일본인) 증치의 건, 법부와 그 산하 감옥 · 법관양성소, 학부와 그 산하 직할학교 및 공립 학교의 학부 직원, 학교 직원 정원, 농상공부 등 중앙관서 대부분의 관제들이 대상이었다. 농상공학교, 의학교(대한의원), 법관양성소 등 고등교육기관들의 관제 개정이 황제 서명 위조로 처리할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각부관제통칙'에 따르면 무더기 관제 개혁의 목적은 대신관방(비서실)과 차관의 실권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침이었다. 1905년 2월 26일 '각부관제통칙'에서 각 부의 차관은 "대신을 보좌하여 부중(部中) 사무를 정리하여 각 국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된 반면, 1907년 1월 개정에서는 "대신을 보좌하여 부의 업무를 통리하고 소관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권한이 훨씬 더 강화되었다. 1907년 7월 24일의 '한일협약' 제4조는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할 것"을 규정했다. 대신관방과 차관의 권한 강화는 결국 이 조약의 의도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당초 일본 측은 대한제국의 각 부 대신들까지도 일본인으로 임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일협약' 조인 당일에 수정되었다. 통감은 고종황제의 퇴위를 강제하는 상황에서 대한제국 각 부 대신들의 협조 없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楢崎桂園, 1907: 136). 각 부의 차관, 내부 경무국장, 경무사, 내각 서기관 및 서기랑(書記郎) 약간명, 각 부 서기관 및 서기랑 약간명, 각 도의 사무관 1명, 각 도 경무관, 각 도 주사 약간명 등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도록 합의했다. 1907년 11월 18일부터 12월 말까지 반포된 법령들은 대한제국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것들이었다. 통감부가 황제의 서명을 위조해 이 법령들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였다.

12월 23일 자의 법률 세 건은 재판소 구성에 관한 것들이었다. '한일협약' 제3조에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이를 구별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사법 사무 일체는 통감부가 완전히 장악할 의도였다. 법률 세 건은 이를 위해 재판소 신설에 관한 시행령들을 새로 제정한 것이다. ① 재판소 구성법, ② 재판소 구성법의 시행법, ③ 재판소 설치법 등이 12월 23일 하루에 황제의 서명 위조로 함께

처리되었다. 이 법령들은 대한제국의 기존 재판소 구성, 즉 지방재판소, 한성부 및 각 개항장 재판소, 순회 재판소, 평리원, 특별법원 등의 체제[16]를 없애고 일본식의 구재판소(區裁判所),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공소원(控訴院) 등의 체제로 바꾸었다. 재판소 설치와 운용에 있어 특히 법부대신의 역할이 일체 배제되었다. 각종 처벌 권한인 재판권의 탈취는 한국인들의 저항력을 분쇄하려는 의도였다.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부임 초기인 1906년 7월에 이미 한국의 법률적 기반을 식민지화로 개편하기 위해 도쿄제국대학의 민법 교수인 법학 박사 우메 겐지로(梅謙次郎, 1860~1910), 형법 전공인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郎, 1853~1948)를 초빙했다. 전자는 내각 부동산법 조사회장(內閣不動産法調査會長), 후자는 법부 차관(法部次官)으로서 법전조사국 위원장(法典調査局委員長)에 각각 임명되었다(『순종실록』, 1907. 12. 30, 1908. 1. 1). 이들은 탁지부의 임시재산정리국과 협력하면서 관습 조사를 바탕으로 토지제도, 법률제도, 조세법제도의 법률 개정을 실시했다. 통감 이토는 1907년 7월 24일 '한일협약'을 강제한 다음, 당일에 대한제국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각서'를 제시했다. 위 12월 23일 자의 재판소 신설에 관한 3개의 법률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일본제국의 조선 · 한국 주재 공사관은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조약, 법령들과 외교를 취합한 자료집 『한국에 관한 조약 및 법령(韓國ニ關スル條約及法令)』을 편찬했다. 1906년 2월 설립된 통감부는 외교 대행기관이란 명분 아래 조약 자료를 따로 모아 『한국조약유찬(韓國條約類纂)』(1908. 12)을 간행했다. 위에서 보았듯이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이미 내정에도 깊이 간여해 법률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1910년 8월 20일 내부 지방국이 주관하여 법령 관련 자료집 『법령유찬(法令類纂)』이 간행되었다. 통치에 관한 모든 법적 기반이 이렇게 식민지 체제 구축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학 교육이 온전할 수가 없었다. [표 1-3-8]은 법관양성소가 통감부 시기에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잘 보여준다. 1907년 12월 13일 '법관양성소관제'는 이전에 비해 법부대신의 개입(관리, 지휘 감독)이 강조되고, 번역 관계자의 역할이 새로 들어갔다. 이것은 법관양성소가 이제 일본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08년 1월 1일, 법관양성소의 한국인 교수 및 소장으로 재직한 김낙헌(金洛憲), 유성준(俞星濬) 등은 법부 차관 구라토

16 1899년 5월 30일 확정안. 『조칙 · 법률』, p.600, 법률 2, 법률 제3호, '재판소 구성법개정안'.

[표 1-3-8] 법관양성소, 법학교 규정 변천 일람표

	1895. 4. 19	1905. 2. 26	1906. 6. 6(개정)	1907. 12. 13	1909. 10. 28(법학교)
관리 및 목적	속성, 생도 모집, 규정 학과 교수, 졸업 후 사법관 채용 자격 양성	법부 관할, 법률학습 사무	-	법부대신 관리, 사법관 양성	학부대신 관리, 법관 자격자 양성
직원	소장 1, 교수 약간	장 1(법부 참서관 겸임) 교관 6	장 1(법부 협판 또는 국장 겸임) 학감 1(수반 교관 예겸), 교관 6, 박사(명예, 본소 출신)	소장 1, 교수 3, 간사 1, 조교수 3, 번역관 2, 주사 2, 번역관보 2	학교장 1, 교수 3, 조교수 8, 학원(학생)감 1, 서기 2
입학 졸업	20세 이상, 입학시험 합격 또는 현직 봉직자 시험과목: 한문과 국문 작문, 조선역사 및 지지(地誌) 대요. 졸업시험 및 증서	-	-	-	-
직무	-	소장: 법부대신 지휘 감독 아래 일체 사무 관리 교관: 법률학 졸업인으로 선임, 상관의 영으로 교수 사무 장리 교관의 징계: 소장이 법부대신에 신청	소장: 소 내 사무 관리, 소속 관리 감독 학감: 소 내 일체 사무 처리	소장: 법부대신의 지휘 감독 받아 부하 감독 교수: 학생 교수 간사: 서무 관장 조교수: 교수를 보조하여 수업 종사 번역관: 소장의 명으로 번역 관장 주사: 서무 종사 번역관보: 상관의 지위로 번역 종사	학교장: 학부대신 명으로 교무 관장, 소속 직원 감독 교수, 조교수: 학원 교육 학원감: 교수, 조교수 겸임 학교장은 대신 승인 아래 강사 촉탁. 학교장은 학칙 제정하여 대신 인가

출처: 서울대 법과대학 총동창회 편(1995); 김효전(2014)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

미 유자부로가 법전조사국 위원장으로서 각종 법률 제정을 지휘하는 가운데 법부 형사국장, 내각 법제국장(內閣法制局長)으로 역할하고 있었다(『순종실록』, 1908. 1. 1). 이미 자율성을 잃은 지 오래였다.

1909년 10월 28일의 '법학교관제'는 1908년 이래 일본이 한국 의병의 거센 저항을 경험하면서 '대한제국의 사법 및 감옥에 대한 사무 위탁'을 각서로 강요하여 대한제국 정부에 법부를 아예 없앤 데 따른 것이었다. 즉 법부가 없어질 예정인 가운데 법관양성소를 없애고 학부 관하의 법학교로 바꾼 것이다. 1909년 11월 1일 내각고시(內閣告示) 제33호는 사법 및 감옥에 대한 사무를 위탁한 결과 일본국에서 다음과 같은 법령과 규칙을 공포한다고 했다(『순종실록』, 1909. 11. 1).

통감부재판소령(統監府裁判所令)

사법사무취급령(司法事務取扱令)

한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규(法規)를 적용(適用)하는 것에 관한 영(令)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犯罪)의 즉결(卽決)에 관한 영

통감부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안건[統監府裁判所設置件]

통감부감옥의 설치에 관한 안건[統監府監獄設置件]

변호사규칙(辯護士規則)

대한제국의 사법권은 이로써 완전히 소멸했고, 법학 교육도 식민지 형태로 새로운 차원에 들어갔다. 최초의 관립 전문학교로 세워졌던 법관양성소가 법학교로 개편되기까지, 주요 연혁과 학생 수, 수업연한, 학교장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표 1-3-9]와 같다.

[표 1-3-9] 법관양성소 입학과 졸업 상황

연도	입학	졸업	연한 및 교사 위치	학교장
1895	4월 12일(개소)	11월 10일 47명(1회)	수업연한: 6개월(속성) 서대문 유동	피상범(皮相範)
1896	-	4월 22일 39명(2회)	장기 휴교	-
1903	2월 17일(재개소)	-	수업연한: 1년 6개월 광화문	이인영(李寅榮)
1904	-	7월 21일 28명(3회)	-	심상익(沈相翊, 협판) 이지용(李址鎔, 대신) 김규희(金奎熙, 협판) *겸임제
1905	-	-	-	이근상(李根湘, 협판) 노자와 다케노스케(野澤武之助, 고문) 이면우(李冕宇, 참서관)
1906	-	1월14일 20명(4회)	-	-
1907	-	-	-	-
1908	본과 52명(응시 132) 예과 90명(응시 254) 생도 135명	1월 5일 22명(5회) 연차 내 졸업 54명(6회) (법관양성소 최종 졸업)	-	-
1909	예과 90명(응시 700여) 생도 138명	-	-	10월 28일 법학교로 개칭

출처: 서울대 법과대학총동창회 편(995); 김효전(2014)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

5) 통감부의 보성전문학교 탄압

(1) 재정 기반의 위협

1906년 2월 초 통감부가 들어선 뒤 4월에 보성전문학교는 전문교육의 기반을 다지고자 산하에 중학교를 설립했다. 하지만 1907년 6월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 세 명의 특사를 보낸 사실이 빌미가 되어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하고 통감부가 내정을 감독 내지 직접 관장하는 상황이 되면서 황실의 비용으로 설립된 보성전문학교가 온전할 리 없었다.

1907년 3월 당시 보성전문학교 교장으로서 국민교육회 사범학교장, 학부 편집국장 등을 겸임하던 신해영(申海永)이 갑자기 재일 한국 유학생 감독으로 임명되어 도쿄로 가게 되었다. 당시는 이미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황제(고종)를 압박하여 이완용을 총리대신으로 앉혀 놓고 '시정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한국 정부의 내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였다. 보성전문학교 교장 신해영에 대한 갑작스런 인사 조치는 보성학교의 운영 체제를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보기 어렵다. 그 뒤 7월 통감부가 광무황제를 교체하고 통감 섭정 체제를 만든 뒤 보성전문학교에 대한 압박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1907년 12월 17일 자 『황성신문』은 「보교(普校) 정황」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 보성학교는 원래 경리원(經理院)에서 경비를 지급하더니 근일 경리원의 각종 세부(稅簿)를 일체 탁지부에 이속하여 이후로는 이 학교 경비가 탁지부에 전관(專管)됨으로써 이 학교를 관립(官立)으로 인정한다는 설이 성행하여 본지가 이미 이를 게재했거니와 그 내용을 들어본 즉 이 학교의 생도들이 (이를 듣고) 격앙하여 이르기를 만약 보성학교가 관립으로 된다면 일반 학도들이 모두 퇴학하려고 결심한다 함에 ….

1904년 8월의 '제1차 일한협약'은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재정고문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에 근거하여 9월에 일본인 메가다 다네타로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했다. 그는 '시정 개선'이란 이름으로 일본의 제일은행권을 한국에 통용시키면서 한국 정부의 재정 전반을 장악했다. 전시라는 특수상황을 빙자하여 자국 화폐를 이웃나라에 강제로 통용해 국가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면서 재

정고문이란 직책으로 한국 정부의 금고 속을 모두 뒤졌다. 한국 정부의 재정 자주권을 거의 빼앗다시피 했지만, 정부와는 별도로 운영되던 황실 자금만은 손을 대지 못했다. 의정부의 내각은 장악했지만 황제 직속의 궁내부는 간섭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 측은 1905년 3월 4일 궁내부 아래 여러 속사(屬司)들 가운데 근대화사업에 관련되는 부서들을 대폭 줄였다(서영희, 1990). 대한제국 황제가 주도하던 근대화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킨 것이다. 이때 내장원도 경리원(經理院)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보교 정황」의 기사에서 경리원의 각종 부세 장부[稅簿]가 모두 탁지부로 옮겨졌다고 한 것은 경리원(내장원)의 황실 재산 관리권을 통감부가 조정하여 내각(의정부) 산하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성전문학교는 지금까지 황제로부터 받던 적극적인 지원이 중단되고 정부, 즉 통감부의 조정을 받는 처지로 급변한 것이다. 경리원의 각종 부세 장부는 황실 소유의 궁장토(宮庄土)를 비롯한 각종 세원을 관리하는 장부다. 그것들이 탁지부 소관으로 바뀐 것은 이후로 학교 경비가 황실이 아니라 통감부가 감시하는 정부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상황이 초래할 보성전문학교의 미래는 불을 보듯 하여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자퇴하겠다고 반발했던 것이다.

1907년 말 보성전문학교가 통감부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유지회(維持會) 사건'이 일어났다. 학교가 경리원이 아니라 탁지부에서 지원받게 되면 교주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강사들이 보성전문학교 유지회를 조직하여 학교 운영의 주체가 되겠다고 나섰다. 유지회 결정에 통감부의 조종이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여 집단적으로 자퇴했다. 12월에 교장으로 부임한 유성준이 사건을 수습하고자 했지만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1909년 2월에 교장, 교감(조제환)이 함께 사임했다. 학교는 재일 유학생 감독인 신해영을 다시 교장으로 영입하고 정영택을 교감, 1회 졸업생 윤익선(尹益善)을 학감으로 임용하여 수습의 전기를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신해영은 교장 업무를 위해 1909년 9월 22일 잠시 귀국했다가 도쿄로 돌아가던 중 시모노세키에서 당시 유행하던 콜레라에 걸려 객사했다. 정영택이 제4대 교장으로 취임했지만 1910년 7월에 사임하고 윤익선이 교장대리를 거쳐 1911년 1월 정식 교장으로 부임했다. '유지회 사건' 이후, 앞에서 서술한 대로 이용익의 아들 이종호(李種浩)가 나서서 10만 원에 달하는 사재를 동원하여 관립으로 전환을 막으면서 수습되었다. 교장 윤익

선은 1919년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여 체포될 때까지 교세 만회에 진력했다.

(2) '보성대학교' 설립 움직임

보성전문학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1906년 4월에 중학교를 설립하고, 9월에는 야학인 한성법학교의 학생을 인수하여 전문학교 안에 야학과를 설치했다. 1909년 4월에는 법학과 교외생(校外生) 제도를 신설하여 강의록을 우편으로 배달하고 순회 강연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각지에서는 그 강의록을 근거로 사설 강습소가 등장하기도 했다. 1909년 2월 8일에는 본래 보성소학교에서 관할하던 임학과를 본교에 이관하여 그 수준을 높였다. 현 마포구 도화동 지대에 있던 임업시험장을 정부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토대로 개설했던 임업에 관한 속성 강습과를 전문학교 내 소학교에 두었다. 그해 6월 13일 모집 광고는 "본교에서 야학 임업속성과 및 측량과를 합설하고 양 과에 관한 학리기술을 교수할 터이니 … 내교 응시하라"고 했다.

수업 과정은 조림학총론, 조림각론, 묘포론(苗圃論), 삼림보호론, 삼림경리학, 삼림이용학, 식물학, 측수학(測樹學), 토양학, 비료학, 농학대의 측량 학술 등으로 구성되어 단순히 중등학교로 가기 위한 소학교 과정이 아니었음을 살필 수 있다. 농학과는 별개로 임학 교육을 보성전문학교 내 소학교 과정의 이름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전문학교 안에 소학교를 설립하여 임업을 교육한 것은 제도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당시 통감 이토가 농림학교뿐만 아니라 소학교 과정에서도 임업 교육을 시행하려 한 것을 유화적으로 수용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실 비용으로 출발한 보성전문학교는 기본적으로 국립 대학교의 지위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요구하는 분야의 인재 양성은 이곳으로 모두 모으려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종합대학 지향성은 1910년 초에 '보성대학 설립' 추진으로 나타났다. 1907년 7월 광무황제 퇴위 강제 후 내정 감독 체제를 강화한 통감부는 황실에서 세운 보성전문학교의 동향을 예의 주시했다. 1908년 통감부에서 '사립학교령'을 내려 관립뿐만 아니라 사립 학교에 대해서도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보호정치'에 놓인 정부가 통감부의 지시에 따라 사립 학교를 단속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심지어 사립 학교 폐지설까지 있어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보성대학 설립'설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황성신문』은 1910년 3월 10일 자로 보성전문학교가 법률, 경제 양 과에 상과 전문을 증치하여 점차 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2008: 81). 『대한매일신보』는 3월 9일 자로 구체적인 기사를 냈다. 즉, 보성전문학교 교주 이종호(李種浩: 이용익의 아들) 씨가 기본금 10만 원(圓)을 적립하고 학교 확장에 이 현금을 쓰라고 하며, 학교의 명칭은 보성대학이라 하고 그 안에 법과, 경제과, 상과, 정과 4과를 분치하고 또 중학부, 소학부, 도서부, 활판부를 배치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신문은 3월 13일 자에 "일전에 학부에 청원했다고 하더라."라고 속보를 냈다. 『황성신문』도 같은 날에 보성이 전문학교를 대학교로 개칭하고, 중학교는 중학부, 소학교는 소학부로 모두 개칭하여, 인가를 얻기 위해 대한제국 학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무렵,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로 지연된 '한국병합' 조치를 본격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했다.

6) 황제의 사립 학교 설립 촉구 조령과 '대한민(大韓民) 교육 광복' 유서(諭書)

(1) 광무황제의 사립 학교 설립 촉구 조령(1906. 3. 26)

광무황제는 왕조를 제국으로 재탄생시키기 전, 1895년 2월에 '교육조칙'을 반포한 뒤 법관양성소, 한성사범학교 설립을 통해 근대적 교육 확장의 뜻을 확실히 했다. 청일전쟁이 종반에 접어든 시점이었다. 1904년 5월 23일 러일전쟁 초반에 황제는 다시 '대소 민인(民人)에게 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칙유(勅諭)'를 내렸다. "지금 정부에 명하여 학교를 증설하고 인재를 양성해 쇠퇴한 시운을 만회하고 중흥의 업적을 이룩하고자 하니 나의 뜻을 받아들여 소홀히 하지 말아 달라"는 것, 그리고 "지금 세계의 각국들은 인민의 지식이 날로 개명에 힘써 더욱 더 부강해지고 독립의 모습을 과시하고 있거늘, 짐이 백성을 가르치는 책임으로서 군사(君師)의 위치에 있으면서 교육의 성취를 보지 못해 마음이 답답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애타게 토로하고 모두 함께 분발하여 국위와 국광(國光)을 선양하자고 독려했다. 그동안 정부를 통해 학교 증설에 힘썼지만 성과가 크지 못했으므로 다같이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이 비록 침략전쟁이지만

그동안 유신을 통해 키운 국력(군사력)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앞에서 이미 살폈듯이 황제는 이 칙유을 낸 뒤, 스스로 내탕금을 동원해 황실특파 유학생 50명을 선발하여 10월 상순에 일본으로 향하게 했다.

황제의 칙유는 이듬해인 1905년 황실 또는 측근 인사들이 학교를 설립하는 데 나서는 성과를 가져왔다. 경선궁(慶善宮, 엄비)과 영친왕(英親王)궁에서 토지 200만 평을 내서 양정의숙(養正義塾)을 설립하고, 1906년 민영휘(閔泳徽)가 휘문의숙(徽文義塾), 그리고 경선궁과 영친왕궁에서 다시 토지 200만 평을 내주어 진명여학교, 숙명여학교를 세웠다. 황제는 1905년 말에 일본에서 돌아온 전 내장원경 이용익이 본격적인 대학 설립을 건의하자 '보성'이란 교명을 내리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내탕금을 내어 지원했다. 황제 스스로 국민의 교육 없이 자주 독립을 유지하는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다.

1906년 3월 25일 봉상시(奉常寺: 나라의 제사 담당 관서) 부제학 이필화(李苾和)가 교육진흥에 관한 상소를 올렸다. 근세 이후로 학교가 폐지되고 교양에 대한 말을 들을 수 없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책을 읽는 사람조차 다시 볼 수 없게 되어 나라의 형세와 백성들의 운명이 이처럼 극도에 달한 것은 모두 교육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교육을 앞세우면 우리도 열국들과 동등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황제의 마음과 같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성균관을 대학교로 만들고 서울에는 하나의 서(署)에 각각 하나의 중학교를 설치하고 하나의 방(坊)에 각각 하나의 소학교를 설치할 것이고, 각 군(郡)에는 향교를 중학교로 삼고 하나의 면(面)마다 각각 소학교를 설치하며 하나의 리(里)에 각각 하나의 글방[村塾]을 설치하여 소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중학교로 올라가게 하고,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교로 올라가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리고 교과 과목을 정하고 성적의 고하를 평가하고 우수한 자를 뽑아서 정부에 추천하여 걸맞은 직책에 보충한다면 10년을 지나지 않아서 조정에 벼슬하는 사람들이 모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일 것이며, 농업, 상업, 공업의 경우에도 모두 이렇게 하여 그 사람의 재주에 맞게 각 국으로 파견해 각각 해당하는 기술을 닦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 학교를 세운 자와 보조를 넉넉히 베푼 자들을 채록하여 표창하면 몇 년이 못 되어서 국비를 들이지 않고도 반드시 온 나라에 학교가 널리 설립될 것이라고 했다. 황제의 비답은 상소를 바로 의정부로 보내 처리하여 보고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필화의 상소문은 『대한매일신보』

1906년 3월 28일, 30일 이틀에 걸쳐 전문이 실렸다. 그의 건의는 체계적이란 면에서 예가 드물어 황제와 언론의 지지를 받았던 듯하다.

놀랍게도 황제는 바로 다음날 3월 26일 자로 사립 학교 설립에 관한 조령(詔令)을 내렸다. 조령은 삼대 이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의 설립이 중요시되지 않은 적이 없음을 지적한 다음, "오늘날의 급선무는 오직 학교를 일으켜 인재를 양성하는 길만이 밭을 일구고 재물을 불리는 도구가 될 것이다. 유학을 닦은 백성들을 몰아다가 그들로 하여금 책을 끼고 학교에 들어가게 한다면 일 년도 되기 전에 그 공효가 반드시 열국보다 배로 나타날 것이다. 학부에서 학교를 널리 설치하는 한편 각 부와 각 군에서도 학교의 설립에 대해 특별히 신칙하고 마음을 다해 가르치는 방도를 강구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하루 전 이필화가 올린 상소의 논지를 그대로 따르면서 내린 조령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황제는 바로 4월과 5월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관찰부에 내탕전 1,000원(圓)을 지급했다. 1906년 4월에는 고아학교에 1,000원을 지급했다. 황제가 내린 내탕전은 학부, 관찰사를 거쳐 군수에게 전달되어 군내 학교에 공동분배되었고 유지들의 모금을 독려하는 기능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1906년 6월 경북 지역에서는 41개 군에 370개 학교가 설립되어 학생 수가 4,500명에 달했다(유영철, 1997). 궁내부 경리원에서 각종 학교에 교육비로 지출된 액수가 1906년 26,250냥, 1907년 291,750냥이란 집계가 있다(이윤상, 1996: 309).

황제는 1906년 3월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임하여 '한국시정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면서 '관립'의 이름으로 학교를 세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보성전문학교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듯이 이제는 '사립'으로 학교를 세우고 더불어 각지 유지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황제의 이러한 사립 학교 설립 운동은 이른바 계몽운동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씨앗이 되었다. 그러나 통감부는 이 바람이 계속되도록 방치하지 않았다.

1908년 8월 26일 '사립학교령'을 반포했다. 사립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학교의 목적, 1개년의 예산, 교지·교사의 평면도 등을 갖추어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2조),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도서는 학부가 편찬한 것이나 학부대신의 검정을 거친 것을 택해야 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 징계 처분에 의해 면관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교원 허가증 환수 천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성행이 불량한 자 등은 설립자, 교장 또는 교원의 자격이 없다고 하

고(제8조), 학부대신은 학교를 폐쇄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10조), 학교 직원 성명, 담당 과목, 재적 학생 수, 교과 도서명 및 회계 상황에 관해 보고할 것(12조) 등을 세세하게 요구했다. 또한, 지방관에게 학부대신의 지위 아래 소관 내 사립 학교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13조). 철저한 감시, 감독이 그 어떤 규정에서보다 강하게 강구되었다. 같은 날 바로 뒤이어 반포된 '학회령(學會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학회는 대부분 학교 설립을 주요한 사업으로 삼고 있었다. 이 법령도 학부대신의 인가 조건을 요구하고(2조), 회장은 매년 1월 전년의 재산 및 회무 상황과 회원 수를 학부대신에게 보고해야 하고(7조), 인가 조건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것이 인정될 때는 학부대신이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8조), 지방관은 학부대신의 지휘 아래 소관 내의 학회를 감독하는 것(10조) 등을 규정했다. 어느 모로 보나 사립 학교 설립 운동을 통한 자주 독립의 주권 회복 노력에 대한 제동이었다.

(2) 태황제의 '대한민 교육광복' 유서(1909. 3. 15)

1909년 2월 10일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황제에게 고별인사[사폐(辭陛)]를 올리고 도쿄로 떠났다. 그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인 3월 15일에 태황제(광무)는 〈서북간도 및 부근 각지 인민 등 처에 내리는 유서[諭西北間島及附近各地民人等處]〉를 내렸다.[17] 태황제는 재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 교육을 지향하는 교서를 내렸지만 통감부가 내정의 권한까지 침탈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 칙유는 그런 와중에 지금까지 가해의 중심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통치의 실패를 자인하고 물러나는 시점에서 내려진 것이어서 그 뜻이 더욱 절실하다. 1895년 2월에 처음 내린 '교육조칙'이 그러하듯이 이 칙유도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현대문으로 옮겨 아래에 제시한다.

---

17 이 자료는 본서 서장 제1절 '대한제국 조약 원본의 압수'에서 다룬 고종황제의 주요 보관 문건으로 1910년 5월 통감부에 압수된 목록 중 갑호(甲号) 일(一)의 사(四) 「서북간도급부근각지민인등처(西北間島及附近各地民人等處)에 대한 태황제(太皇帝)의 밀유(密諭)」로 나온다. 따라서 원본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 왕실도서관에 필사부본이 전한다. 『궁중비서(宮中秘書) 전(全) Ⅴ. 1』(1927, 이왕직실록편찬회)에 수록되어 있다. 은정태 씨가 이 자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서북간도 및 부근 각지민인등처(各地民人等處)에 효유(曉諭)한다〉

태황제가 말한다. 슬프다! 짐이 조종의 크고 큰 터전을 이어받아 지위진 짐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졌으니 나 한 사람에게 죄가 있어 후회해도 다할 수가 없도다.

짐이 참으로 부덕하니 너희 만성이 누가 나를 믿고 따르겠는가. 짐이 참으로 부덕하여 민이 기대지 못하거니와 생각건대 나의 조종은 그래도 너희의 선철왕(先哲王)이며, 너희의 조선(祖先)은 나의 조종(祖宗)의 어진[良] 신민이 아니던가.

멀리 단군과 기자에서부터 팔역(八域)을 차지하여 신라에 이르고 고려에 이르고 대한에 이르렀느니라.

슬프다! 짐이 너무 상심하여 차마 말을 못하노라. 꿈틀거리던 도이(島夷)가 긴 뱀[長蛇]이 되고 큰 멧돼지[封豕]가 되어 우리 팔역을 먹고 또 흉한 무리가 이(利)를 쫓고 세(勢)에 붙어 너희 만성을 짓밟고 으깨어 절단냈다.

슬프다! 짐이 얼굴이 두껍고 겸연쩍다. 짐이 제왕이 아니던가. 짐이 재위 45년에 참으로 하늘의 뜻에 부합치 못하고[格天] 은혜 배풂이 민에 다하지 못하여 스스로 그 패배를 재촉했다.

(그래도) 이미 망했다고 말하지 말자. 너희 만성이 있느니라. 훈(訓)에 있기로 민유방본(民惟邦本)이라 하니, 이는 나 한 사람의 대한이 아니라 실로 너희 만성의 대한이니라.

독립이사 바로 국이며, 자유라사 바로 민이니, 나라는 곧 민이 쌓인 것[積民]이오, 민은 선량한 무리[善群]가 될 수 있다.

오호라! 너희는 지금 하나가 되어 그 심력을 우리 대한을 광복하는 데 써서 자손만세에 영원히 의뢰케 하라.

너희 몸[體]을 튼튼히 하고, 너희 피를 뜨겁게 하고, 너희 배움을 닦아 그 기(器)에 채우거든[藏] 때를 기다려 움직이고 함부로 덤비지[妄躁] 말며, 게을러 늘어지지 말며, 너무 나서지도 뒤지지도 말고, 그 기회를 적중시키되 반드시 모험을 하면서 인내하다가 마지막에 대훈을 이루라.

오호라! 어찌 내가 일깨운다는[有誥] 말을 쓸 수가 있겠는가. 짐은 참으로 부덕하다.

개국 517년 2월 15일

태황제

태황제는 1895년 2월의 '교육조령'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먼저, "너희 신하와 백성의 선조는 우리 조종(역대 왕실)이 돌보고 키워준 어진 신하와 백성이었고 또 너희 신하와 백성들도 너희 선조의 충성과 사랑을 능히 이어서 짐의 돌봄과 키움을 받는 어진 신하와 백성들이며, 짐은 너희들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조종의 큰 기반을 지켜 억만 년의 아름다운 운수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하여 군주와 백성이 왕조를 이어가는 공동 주체인 것을 밝혔다. 그리고 교육은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으로서 "허명을 제거하고 실용을 높이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덕양(德養), 체양(體養), 지양(智養)을 교육의 영역으로 내세웠다. 그리하여 "나라의 한(恨)에 대적할 사람은 오직 너희 신하와 백성이요, 나라의 모욕을 막을 사람도 너희 신하와 백성이며, 나라의 정치제도를 닦아나갈 사람도 너희 신하와 백성이다."라고 언명했다. 실제로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신식 교육제도가 여러 형태로 강구되었다.

그러나 1904년 2월에 일어난 러일전쟁은 상황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위 칙유는 그 후의 상황을 "꿈틀거리던 섬 오랑캐[島夷]가 긴 뱀[長蛇]이 되고 큰 멧돼지[封豕]가 되어 우리 팔도의 땅[八域]을 집어 먹고 또 흉한 역신의 무리가 이(利)를 쫓고 세(勢)에 붙어 너희 만성(萬姓)을 짓밟고 으깨어 절단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는 오로지 나의 부덕의 소치라고 거듭 통탄했다. 그러나 이미 망했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 만성이 대한의 주인으로서 독립과 자유를 스스로 누리는 주체가 되어 달라는 당부를 절절하게 호소한다. 나라에 대한 인식도 민이 쌓인 것[積民]이라고 선언하면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사상에 거의 도달하고 있다. "대한은 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실로 너희 만성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에 보지 못한 표현이다.

태황제의 인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 칙유에서 훨씬 더 진전되고 체계화되었다. 1909년 1월, 2월의 황제 순행 때 인민이 보여준 황제에 대한 충성과 항일의지가 태황제로 하여금 '만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져다 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08년 후반 이후 국내 의병들은 일본군의 집중 토벌 작전으로 국외 특히 서북간도, 연해주 쪽으로 활동 근거지를 이동하고 있었다. 1907년 7월 태황제가 강제 퇴위당할 때, 그는 연해주 지역에 근거를 잡기 시작한 항일 지사들에게 10만 원의 군자금을 비밀리에 보냈다. 이 군자금으로 1908년 5월에 5,000~6,000명 규모의 대한의군(大韓義軍)이 창설되었다. 1909년 9월 통감부가 '남한대토벌

작전'을 착수하여 많은 의병과 주민이 참혹한 죽음을 당한 그해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경 '하얼빈 의거'가 일어났다.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은 공판정에서 자신은 대한의군의 참모중장으로서 적장을 처단한 것이므로 1899년의 제1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통과된 '육전(陸戰) 포로에 관한 법'을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안중근은 황제가 내린 군자금으로 1908년 봄에 조직된 대한의군의 우장군(右將軍)으로, 1909년 10월 10일부터 일본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의 하얼빈 방문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대한의군 참모부가 특파대를 조직할 때 제일 먼저 자원하여 대장이 되어 저격에 성공했던 것이다. 사건 후 철저하게 추진된 일본 측의 사건 배후 조사의 한 보고서는 "한인 밀정이 말하는 것에 따르면 배일(排日)의 근체(根蒂)는 황실이라"고 하며 사건 전에 대한의군 중심 인물의 한 명인 최재형(崔在亨)에게 사주가 왔다고 했다(이태진, 2010: 73). 『매천야록』은 1909년(융희 3) 11월조에 "태황제가 이토의 죽음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天顔大悅]"고 기록했다.

제4절 '한국병합' 강제와 교육 차별: 동화주의의 허구

1) 한국병합 강제와 융희황제의 저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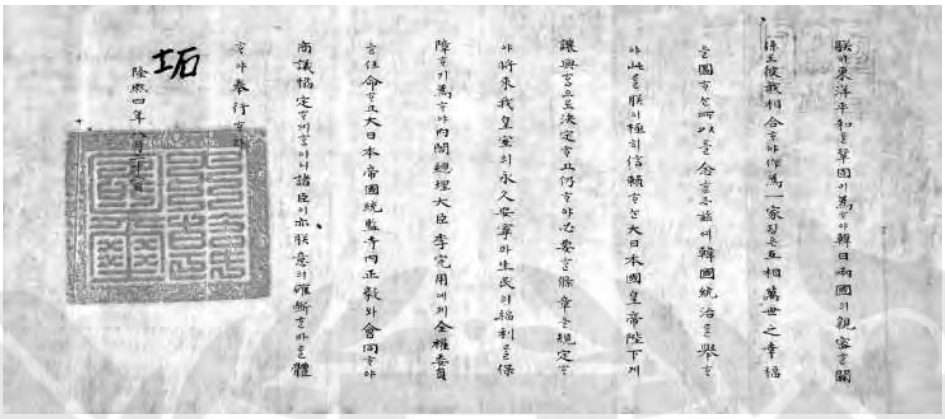
광무황제가 강제 퇴위당한 후 무력 투쟁을 벌이는 의병들의 기세는 국내외에서 날로 높아갔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감의 직임에서 물러난 이토는 1909년 10월 일본의 만주 진출에 한몫 하고자 동청철도(東淸鐵道: 하얼빈 경유 우수리스크 노선) 매입 건으로 하얼빈으로 갔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본거를 둔 대한의군의 참모중장 안중근이 이끄는 특파대에 의해 처단되었다.

일본 정부의 지도자들은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에서 물러나기로 작심한 무렵에 보호정책을 버리고 병합 강행 주장에 대해 찬성인 것을 확인했다. 이토 히로부미의 후임으로는 부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가 임명되었지만 1910년 1월 그는 위암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하얼빈 사건 후 배후 조직에 대

한 철저한 탐문 조사를 마치고 3월에 안중근 장군을 극형에 처한 뒤, 5월 말에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제3대 통감으로 임명했다. 데라우치는 육군대신으로서 통감을 겸하여 육군성(陸軍省) 안에서 한국병합의 방안을 먼저 준비하고, 6월에 내각 차원에서 '한국병합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육군성의 방안과 외무성에서 따로 준비한 안을 함께 검토했다. '한국병합준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각 부처의 장관, 국장급의 한국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海野福壽, 2000: 3~4).

내각 서기관장 시바타 카몬(柴田家門, 의장 역할)
외무성 의정무국장 구라치 데쓰키치(倉知鐵吉, 외교 관련 사항 담당 주임)
통감부 참사관 겸 외무부장 고마쓰 미도리(小松綠, 한국 관련 사항 담당 주임)
법제국 장관 야스히로 반이치로(安廣伴一郎)
척식국 부총재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체신상(遞信相), 철도원 총재 겸임]
대장(大藏) 차관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礼次郎)
법제국 서기관 나카니시 세이이치(中西清一)
척식국 서기관 에기 다스쿠(江木翼)
통감부 관방회계 과장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서기관 나카야마 시즈타로(中山成太郎)

'한국병합준비위원회'는 육군성과 외무성의 방안들은 검토하여 7월 8일 '한국병합 실행에 관한 방침'을 내각에 회부하여 수정 없이 접수, 처리해 총리대신 이하 10명의 대신들이 서명했다.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제3대 통감으로 이 문건들을 들고 7월 하순에 서울로 와서 약 15일간 한국의 동정을 살폈다. 그리고 16일 한국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통감부로 초치하여 '한국병합' 실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의 실행 방침은 한국이란 국호도 없애고 황제, 태황제는 공(公)으로 지칭하도록 했다. 한국인들의 반발을 우려한 이완용은 최소한 한국이란 국호를 존속시키고 태황제, 황제는 태왕, 왕으로 지칭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데라우치는 국호를 대한제국 이전의 조선으로 부르게 하고 황제, 태황제는 왕, 태왕으로 부르되 이왕가는 일본 천황가에 예속하는 절충안을 냈다. 이후로는 일본 측이 준비한 대로 진행되었다.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림 1-3-13] '한국병합조약'의 한국 측 전권위임장. 국새가 날인되고 그 위에 순종황제의 이름자 서명이 보인다.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림 1-3-14] '한국병합조약' 전권위원들의 기명날인

8월 22일 아침 통감 데라우치는 시종원경 윤덕영과 궁내대신 민병석을 불러 통감부에서 준비한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병합조약 체결을 위한 전권위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내놓고, 오전 중에 황제의 서명 날인을 받아내기를 요구했다. 황제는 이를 앞에 놓고 2시간 이상 내려다보면서 침묵 시위를 했다. 창덕궁 낙선재에 갇힌 몸이 된 그에게는 이미 저항할 아무런 수단이 없었다. 황제는 불가항력으로 '대한국새(大韓國璽)'라는 글자가 새겨진 국새를 찍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자 척(坧)을 직접 썼다([그림 1-3-13]).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오른쪽) 및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왼쪽).

[그림 1-3-15] '한국병합조약'의 한국 황제 '칙유'(오른쪽)와 일본 천황 조칙(왼쪽). 전자는 국새가 아닌 것이 찍히고 황제의 이름자 서명이 없는 반면, 후자는 '천황어새(天皇御璽)'란 문구가 새겨진 어새가 찍히고 그 위에 메이지 천황의 이름자 서명, 그리고 대신들의 서명까지 보인다.

총리대신 이완용은 이를 받아들고 남산 아래 통감 관저로 달려가서 위임장을 내보이고 통감 데라우치가 내놓은 조약 본문에 기명날인했다([그림 1-3-14]).

데라우치는 다시 '각서(覺書)'라는 제목이 붙은 문건 하나를 더 내놓았다. 병합의 사실을 알리는 양국 황제의 조칙을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도록 양측이 함께 준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조약은 체결과 동시에 한 나라가 사라지기 때문에 비준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으므로 병합을 알리는 조칙의 공포로 비준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일 양국 황제들의 조칙은 8월 29일 자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한국 황제의 조칙은 '칙유(勅諭)'로 이름이 바뀌고, 위임장과는 달리 국새가 아니라 '칙명지보(勅命之寶)'라는 문구가 새겨진 어새가 찍혔다. 그 위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황제의 이름자 서명이 없다([그림 1-3-15]).

'칙명지보'는 황제의 행정 결재용으로서 통감부가 광무황제를 강제 퇴위시킬 때 빼앗아간 것이었다. 따라서 이 날인은 융희황제(순종)의 의사와는 무관했다.

융희황제는 1926년 4월 26일 운명하기 직전에 곁을 지키고 있던 조정구(趙鼎九)에게 유언을 구술로 남겼다. 자신은 나라를 내주는 조약의 조칙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구술 유언 조칙은 멀리 샌프란시스코 교민들이 발행하던 『신한민보(新韓民報)』에 실렸다([그림 1-3-16]). 이 진술은 '칙유'의 서명 결함 상태와 일치한다.


新韓民報

[그림 1-3-16]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신한민보』 1926년 7월 18일 자에 실린 순종황제의 유조. 병합 인준은 일본이 제멋대로 한 것이요, 내가 한 바가 아니라고 밝히고 "여러분들이여 노력하여 광복하라, 짐의 혼백이 명명한 가운데 여러분을 도우리라"고 끝맺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병합조약'만은 정식 조약의 구비 조건을 다 갖추려 했다. 그러나 계획과는 달리 비준서를 대신할 한국 황제의 조칙은 황제가 거부하여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한국 황제는 전권위임장에는 강요에 못 이겨 서명했지만, 공포 조서(詔書)에 서명하는 것은 끝내 거부했던 것이다.

일본은 병합 조약에서도 결정적인 강제의 흔적을 남겼다. [그림 1-3-17]에서 보듯이 이 조약은 한·일 양 국어본이 똑같은 용지에 똑같은 필체로 작성되고 똑같은 끈으로 묶여 있다. 한국 정부가 준비해야 할 한국어본도 일본 측에서 함께 준비한 결과다. 이는 이 조약이 일본 쪽의 의사로 강제되었다는 명백한 물증이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림 1-3-17] '한국병합조약'의 한·일 양 국어 재질 비교. 앞표지, 첫 페이지, 그리고 뒤표지

다. 세계 조약사상 이런 예는 찾아볼 수 없다.

2) 병합 강제에 대한 문명론적 변명과 동화주의

한국 융희황제의 이름으로 공포하려 했던 '칙유'는 "짐이 황제가 된 뒤 유신(維新)의 신정(新政)을 도모했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여 차라리 남에게 대임(大任)을 맡기는 것만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신의앙(親信依仰)하던 인국(隣國) 대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讓與)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케 하고 안으로 팔역(八域)의 민생을 보전케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곧 한국 황제가 스스로 나라를 이끌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본 천황에게 통치권을 양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천황에게 나라를 내준 당사자인 융희황제가 1926년 붕어 직전에 남긴 유조(유언 조칙)는 이와 반대로 "지난날의 병합 인준(認准)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강린(强隣, 일본)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공포한 것이라"고 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칙유'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의 황제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갖기 바라던 인식이었지 한국인 중 그런 생각을 가진 자는 소수의 '역신', 즉 친일파에 국한될 뿐이었다. 하지만 '칙유'와 같은 인식은 당시 일본의 언론 매체를 통해 다수의 한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인들에게 홍보되었다. 1965년 '한일협정'이 타결된 뒤, 11월 15일 일본 중의원의 일본조약 특별위원회에서 당시 수상인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는 1910년 병합 조약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또 자유의지로서 이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은 한국병합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을 잘 보여주는 예다. 정치 지도자의 이런 발언에 대해 당시 대부분의 일본 지식인들은 적어도 불법은 아니라고 인식했는데, 이는 병합 당시의 신문들이 하나같이 한국 황제가 자진하여 나라를 내놓은 것으로 보도한 것이 만들어 놓은 결과였다.

일본 신문들도 공정한 보도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다. 예컨대 1905년 11월 17일의 '보호조약' 강제 때 『도쿄니치니치신문』은 11월 19일 자 지면에 「일한신협약(日韓新協約)」이란 기사에서 "한국 황제와 주요

인사들이 이를 두려워하고 주저하여 쉽게 우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라고 하여 한국 황제와 정부 대신들이 찬성하지 않은 점을 사실대로 보도했다. 그런데 6일 뒤인 11월 25일 자의 「한국어전회의(韓國御前會議)」란 기사의 논조는 사뭇 다르다. 즉 "한국 황제는 ('보호조약'에 대해)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처음부터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때문에 각 대신도 드디어 하나같이 다 동의하여 박제순 외부대신은 외부(外部)에서 관인(官印)을 가져와 완전하게 조인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썼다. 외부의 관인은 실은 황제뿐만 아니라 한국 대신들까지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를 이토가 협박하여 누르면서 통역관(마에마 고사쿠)이 헌병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 가져와 날인했던 것이다. 일본 신문들은 정부의 뜻에 따라 12월에는 한국 황제가 대신들에게 특사 이토 히로부미와 협상을 하라는 지시를 내려 이토가 대신들과 함께 협상을 벌여 동의하게 된 것이라는 보도까지 했다. 이 '협상 지시'설은 통감부의 압력으로 한국 정부 『관보』에도 이 조약을 '한일협상조약'이란 명칭을 붙여 내게 하여 오늘날까지 일본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되다시피 했다. 1910년 8월의 '한국병합조약'은 왜곡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형세였다.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7월 하순에 한국으로 갔을 때부터 이미 '합방'이란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이에 관한 지면 배려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도쿄니치니치신문』은 8월 12일 자에 기밀에 속하는 사실을 보도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즉, 「한국기밀비(韓國機密費) 문제」라는 제목 아래 "통감부 기밀비는 고 이토 공(伊藤公)의 통감 시대에 한국의 대세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외국 신문기자의 조종을 비롯해 기타 공작에 거액의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각 기밀비의 약 2배가 되는 22만 원(圓)(통감부 기밀비 20만 원, 사법 기밀비 2만 원)이나 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 외국 기자들을 초청하여 일본에 대해 호의적인 보도를 유도했다. 1907년 헤이그 사건을 계기로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거나 의병 진압에 관한 호의적 보도를 위해 과도한 섭외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1910년 8월 '한국병합' 강행을 앞두고 이제 이러한 불필요한 경비도 종식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이 보도가 나왔다.

한국인의 한반도 내외에서의 강제 병합에 대한 저항은 끊임없이 지속되었지만 이에 관한 보도는 서울(경성) 일원에서 발생한 소동으로 축소되는 한편, 한반도

각지에 배치되었던 일본군 병력의 대부분이 이 기간에 경성으로 이동하여 창덕궁, 덕수궁을 포위한 가운데 조약이 강제된 상황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3) 일본 신문 보도에 보이는 동화(同化) 논설들의 허구

『동경니치니치신문』은 8월 중순부터 '합방'을 기정사실로 전제하여 논설을 실었다. 8월 16일 자의 「합방과 한인(韓人)」, 25일 자의 「한국병합과 축하」, 28일 자의 「한국병합 기념」, 30일 자의 「한국병합조약」 등이다. 이 글들은 대개 한국병합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병합 후 양 국민의 관계를 논하는 것으로서, 당시 일본 관리나 지식인들의 의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 가운데 8월 30일 자의 「한국병합조약」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병합은 조약 제1조, 제2조에 명기된 것같이, 두 나라 황제폐하 사이에서 한국통치권의 양여(讓與)와 수락에 의해 원만히 또 평화로이 성립한 것이다.

② 일본과 한국 사이는 본래 정복자, 피정복자의 관계가 아니었으니, 하물며 주인과 종복[主僕]의 인연에서랴. 주권을 주고받는 것[讓受]이 담소(談笑)하는 가운데 성립하고, 주권 양수(讓受)의 결과는 조약에 의해서 명확하게 상호적으로 규정되어, 한국 황제 기타는 각기의 지위에 응하는 상당한 존칭, 위엄, 명예를 향유하는 외에, 이를 보지(保持)하는 데 충분한 왕실비가 제공되고 훈공이 있는 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③ 이들의 대우 은상(恩賞) 혹은 권리 유지는 정복자, 피정복자의 관계에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병합은 세계문명사상(世界文明史上)의 일대 영예로서 영구히 인류의 기록에 이를 기념할 만하다.

④ 이미 자국의 문명을 건설한 일본은 다시 나아가 다른 민족도 동화(同化)하는 솜씨를 시험해 본다고 하는 것은, 한국병합에 대하여 외국에서 가해지는 비평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의 하나이니, 한국병합은 일면으로는 현대 일본 민족의 동화력(同化力)을 시험하고, 동시에 다른 일면에서는 현대 일본 문명의 포용력을 시험할 만한 절호의 기회다.

⑤ 한국병합은 시설과 경비와 주의(注意)에서 제국 정부에 다소의 번민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본 민족의 동화력과 일본 문명의 포용력은 이 사이에서 스스로 실제적인 시험을 거쳐야 하므로 정부 국민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니, 우리들은 메이지(明治) 빛나는 시대[昭代]의 하나의 큰 사실로서 나타난 한국 병합의 결과가 폐하의 성려(聖慮)에 어긋나지 않기를 기원한다.[18]

자만과 허구의 극치를 다한 내용이다. 병합조약 제1조, 제2조의 주권 양수(讓受)는 담소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빼앗아 간 것이다. 그 때문에 한국 황제는 최종 단계에서 서명을 거부했다. 한국, 일본의 역사적 관계를 주복(主僕)의 관계로 본 것은 고대사에 대한 일본 측 황도주의(皇道主義, 천황제일주의)의 일방적 해석이며, 두 나라의 현실적 관계는 일본이 굳이 감추고자 하는 정복과 피정복의 관계 그것일 뿐이다. 한국병합은 "세계문명사상의 일대 영예"란 미사여구는 침략의 마수를 감추기 위한 말장난일 뿐이다. 서양 문명 수용의 선진국인 일본이 포용력을 발휘하여 한국 문명화의 기회로 한국병합을 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국 근대사 연구에서 대한제국 광무(光武) 연간의 자력 근대화의 성과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킨 통감 이토는 대한제국의 전기, 전차, 철도, 병원 시설의 성과를 자신의 '자치육성책'의 성과로 가로챈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직시하면 동화력, 포용력이란 어휘의 동원은 침략주의를 은폐하는 언어의 구사일 뿐이다.

현대 일본인들이 100년 전 선조, 선배들의 역사 인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가 불행이다. 이런 역사 인식은 아마도 이 시대에 대한 일본인들의 '빛나는 시대[昭代]' 의식이 존속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메이지 시대의 해외 팽창 정책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정한론[아시아 웅비론]을 실현하는 침략행위다.

---

18 이태진, 2014, 「'한국병합조약(韓國併合條約)' 진행에 관한 일본 신문의 왜곡 보도: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의 기사를 중심으로」(2014. 12. 5), 2010년 한국병합에 관한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기념 제4회 학술회의 발표문.

• 참고문헌

자료

『경성공립제일고등보통학교학우회지(京城公立第一高等普通學校學友會誌)』, 『경세유표(經世遺表)』, 『고종실록(高宗實錄)』, 『공보(公報)』, 『교육시론(教育時論)』,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구한국외교문서(舊韓國外交文書)』, 『담헌서(湛軒書)』,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대한제국관원이력서(大韓帝國官員履歷書)』, 『덕원부지(德源府誌)』, 『동광(東光)』, 『동유약초(東遊略抄)』, 『매천야록(梅泉野錄)』, 『비서원일기(秘書院日記)』, 『사칠신편(四七新編)』, 『성호사설(星湖僿說)』, 『성호선생전집(星湖先生全集)』, 『순종실록(純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여암문집(如菴文集)』, 『연암집(燕巖集)』, 『용호한록(龍湖閒錄)』, 『우서(迂書)』, 『윤치호일기』, 『음청사(陰晴史)』, 『일본(日本)』,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일본지조선(日本之朝鮮)』, 『일성록(日省錄)』, 『제국신문』,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춘성지(春城誌)』, 『통서일기(統署日記)』, 『통감부문서(統監府文書)』, 『한성순보(漢城旬報)』, 『한성신보(漢城新報)』, 『한성주보(漢城週報)』, 『호치신문(報知新聞)』, 『환재집(瓛齋集)』, 『황성신문』

『각부청의서존안(各部請議書存案)』,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 17715).

『관초존안(關草存案)』,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 18087).

『구도사도관초(九道四都關草)』,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 18079).

『농상공부거첩존안(農商工部去牒存案)』,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 18152).

『대조선대일본양국맹약(大朝鮮大日本兩國盟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 23010).

『수신사일기(修信使日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想白古 951.053-G418s).

『육영공원등록(育英公院謄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 3374).

『의안(議案), 칙령(勅令)』, 1991, 서울대학교 도서관.

『의주(議奏)』 1, 2, 1994, 서울대학교 규장각.

『잠정합동조관(暫定合同條款)』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 23009).

『조칙(詔勅)』,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 17708).

『조회(照會)』,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 17754).

『조회원본(照會原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 17234).

『탁지부청의서(度支部請議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 17716).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 15323).

『학부래거문(學部來去文)』,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7798).

『韓國敎育ノ旣往及現在』, 학부 편, 1909.

『한국시정일반(韓國施政一般)』, 통감부 편, 1906.

『훈령조회존안(訓令照會存案)』,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 19143).

박정양, 1984, 『박정양전집』, 아세아문화사.

신채호, 1975, 『단재 신채호 전집』, 형설출판사.

유길준, 1971, 『유길준전서』, 유길준전서편찬위원회.
杉村濬, 1984, 『재한고심록(在韓苦心錄)』, 민족문화.
幣原坦, 「韓國教育改良案」, 1905년 4월, 外務省記錄, 10-11(『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 朝鮮編』 63, 別集 舊韓末教育史資料-幣原坦 · 隈本繁吉關係文書, 東京: 龍溪書舍, 1991).
學部, 『韓國教育』, 1909년 9월 編纂(『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 朝鮮編』 63, 別集 舊韓末教育史資料-幣原坦 · 隈本繁吉關係文書, 東京: 龍溪書舍, 1991).

단행본 및 논문

강명숙, 2000, 「갑오개혁 이후 성균관의 변화」, 『교육사학연구』 10.
강상규, 2012, 「박규수와 고종의 정치적 관계 연구」, 『동양정치사상사』 11-1.
고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편, 2008, 『고려대학교 100년사』, 고려대학교출판부.
구선희, 1999, 『한국근대 대청정책사 연구』, 혜안.
구희진, 2004, 「한국 근대개혁기의 교육론과 교육개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국사편찬위원회 편, 1987, 『한민족독립운동사 9』,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편, 2014~2015, 『신편 고종시대사』, 국사편찬위원회
권혁수, 2003, 「한중관계의 근대적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비밀 외교채널: 이홍장과 이유원의 왕복서신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연구』 37.
김경미, 1998, 「을미의숙의 성격 규명에 관한 소고」, 『한국교육사학』 20.
김경미, 2009, 『한국 근대교육의 형성』, 혜안.
김경용, 2011, 「대한제국기 성균관사업시선(成均館司業試選) 연구」, 『교육사학연구』 21(2).
김기석, 1995, 「광무제의 주권 수호 외교」, 이태진 편,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김대준, 2004, 『고종시대의 국가재정 연구: 근대적 예산제도의 수립과 변천』, 태학사.
김명호, 2005,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 역사비평사.
김문자, 2011, 『명성황후 시해와 일본인』, 태학사.
김미진, 1998, 「육영공원의 폐원 요인 분석(1883~1894)」,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상태, 2010, 『제중원 이야기』, 웅진지식하우스.
김성은, 2012, 「귤산 이유원의 개항기 대외 인식과 대응모색」, 『동아인문학』 22.
김성학, 2015, 「개화기 교원양성체제의 변천과 그 성과」, 『교원양성체제의 역사적 전개와 과제』(한국교육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김성혜, 2011, 「고종 즉위 초기 군주관 형성과 그 내용」, 『이화사학』 42.
김성혜, 2013, 『재위전기 고종의 통치활동(1864~1876)』, 선인.
김세민, 2002, 『한국 근세사와 만국공법』, 경인문화사.
김세은, 2000, 「고종초기(1864년~1873년)의 경연(經筵)」, 『진단학보』 89.
김세한, 1960, 『한서 남궁억 선생의 생애』, 동아출판사.
김영호, 1978, 「박규수전집 해제」, 『박규수전집』 상, 아세아문화사.
김용구, 2008, 『만국공법』, 소화.
김원모 역, 1981, 「견미사절 홍영식 복명문답기」, 『사학지』 15.
김원모, 1984, 『근대한국외교사연표』, 단국대학교출판부.
김원모, 1999, 『한미수교사』, 철학과현실사.
김정기, 1993, 「청의 조선정책(1876~1894)」,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 농민전쟁의 정치 · 사상적 배경』, 역사

비평사.
김종준, 2009,「대한제국기 '학교비 분쟁'의 양상」,『한국문화』46.
김종준, 2016a,「대한제국기 성균관의 고등교육기관화를 둘러싼 담론」,『역사문화연구』57.
김종준, 2016b,「대한제국기 성균관 정책과 재정 및 운영 실태」,『역사교육』137.
김효전, 1999,「법관양성소의 실제운용」,『동아대학교대학원논문집』24.
김효전, 2014,『법관양성소와 근대한국』, 소명.
김효전, 2016,「경성전수학교의 법학교육; 새 출발 100주년을 기념하여」,『학술원논문집』제55집 1호.
동아일보사 편, 2007,『사진으로 보는 한국 백년 4권: 싹트는 신교육』, 동아일보사.
리종현, 2009,「조선민족의 거족적인 반일항거는 구'조약'의 무효성에 대한 역사적 실증」, 이태진 · 사사가와 노리가츠 공편,『한국병합과 현대』, 태학사.
리하르트 분쉬(Richard Wünsch), 김종대 편, 1999,『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 학고재.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Lillias Horton Underwood) 저, 김철 역, 2008,『(언더우드 부인의) 조선 견문록』, 이숲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 저, 김승일 역, 1993,『건건록(蹇蹇錄)』, 범우사.
문성규, 1990,「한성순보의 개화사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민경현, 2008,「수교와 교섭의 시기 한러관계 :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조선정책과 조러수호조약」,『대동문화연구』61.
박균섭, 1999,「교육칙어와 일본근대교육」,『일본학보』43.
박병호, 1996,「한국법학교육의 기원: 법관양성소제도와 경성제대」,『근세의 법과 법사상』, 지원.
박종채,『과정록(過庭錄)』(박희병 역, 2005,『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박현순, 2009,「17세기 과거(科擧) 관리의 정비: 응시자 증가와 관련하여」,『조선시대사학보』49.
박형우, 2002,『제중원』, 몸과마음.
배재백년사편찬위원회, 1989,『백재백년사: 1885~1985』, 배재학당.
서영희, 1990,「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宮內府)」『한국사론』23.
서영희, 2003,『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대학교법과대학동창회 편, 2004,『서울법대 100년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동창회.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2006,『서울지도』,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성균관대학교교사편찬위원회, 1998,『성균관대학교 600년사: 통사편』, 성균관대학교
성숙경, 2006,「갑오개혁 이후 성균관의 근대적 재편」,『한국근현대사연구』39.
손세영, 2015,『조선 후기 남인 실학자들의 체제개혁과 실학교육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손정숙, 2007,「한국최초 미국외교사절 보빙사의 견문과 그 영향」,『한국사상사학』29.
신동원, 1997,『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아카데미.
신상준, 1977,「일제통감부의 통치조직에 관한 연구」,『한국사회사업대학논문집』7.
신용하, 1974,「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의 설립에 대하여」,『한국사연구』10.
연갑수, 1993,「개항기 권력집단의 정세인식과 정책」,『1894년 농민전쟁연구』3, 역사비평사.
왕현종 외, 2009,『청일전쟁기 한 · 중 · 일 삼국의 상호 전략』, 동북아역사재단.
왕현종, 2005,『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유광렬, 1932,「보전론(普專論)」,『동방평론』5월호.
유봉학, 2011,「실학의 계보와 학풍」,『한국사시민강좌』48.
유영렬, 1985,『개화기의 윤치호연구』, 한길사.
유영익 외, 2000,『신편 한국사 40: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국사편찬위원회.

유한철, 1997,「1906년 광무황제의 사학설립 조칙과 문명학교 설립 사례」,『한국민족운동사연구』, 우송조동걸선생정년기념론총간행위원회.

윤병석(尹炳奭), 1984『이상설전: 해아특사 이상설의 독립운동론』, 일조각.

이계형, 1998,「구한말(1895~1905) 공립소학교의 설립과 운영」,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광린, 1965,「육영공원의 설치와 그 변천」,『한국개화사연구』, 일조각.

이광린, 1999,「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대한 일고찰」,『한국개화사연구』, 일조각.

이구용, 1991「한말 의병항쟁에 대한 고찰: 의병진압의 단계적 대책」,『국사관논총』23.

이규수, 2013,「근대 일본의 학제 형성과 역사 지식의 제도화」,『한국사상사학보』27.

이나바 쓰기오(稻葉繼雄) 저, 홍준기 역, 2006,『구한말 교육과 일본인』, 온누리.

이노우에 가쓰오(井上勝生) 저, 동선희 역, 2014,『메이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 홋카이도에서 조선까지』, 어문학사.

이만열, 1984,「맥클레이 목사와 한국선교」,『기독교사상』7월호.

이만열, 1985,『아펜젤러, 한국에 온 첫 선교사』, 연세대학교출판부.

이민원 외, 1999,『신편 한국사 42 – 대한제국』, 국사편찬위원회.

이방원, 2010,『한말 정치변동과 중추원』, 혜안.

이상찬, 1993,「일제 침략과 황실재정정리(1)」,『규장각』15

이선엽 외, 2007,「과거제도에 관한 비판적 성찰: 조선의 '문과시험'을 중심으로」,『한국행정사학지』21.

이승렬, 2007,『제국과 상인』, 역사비평사.

이승우, 2007,「건국헌법 이전의 한국헌정사」,『헌법학연구』13.

이영훈, 1990,『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이옥진, 2004,『갑오개혁기-대한제국기 성균관에 대한 고찰』,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완재, 1989,『초기 개화사상연구』, 민족문화사.

이윤상, 1996,「통감부시기 황실재정의 운영」,『한국문화』18.

이태진 외, 2005,『고종황제 역사청문회』, 푸른역사.

이태진 편, 1995,『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이태진, 2000,『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이태진, 2009,「고종황제의 毒殺과 일본정부 首腦部」,『역사학보』204.

이태진, 2010,「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고종황제」,『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 지식산업사.

이태진, 2014,「고종시대의 '민국' 이념의 전개」,『식민지배체제와 3 · 1 독립만세운동』(2014년 12월 한일 공동세미나 제1차 회의 발표문).

임재윤, 1999,『다산 정약용의 교육개혁사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전인권 외, 2011,『1898, 문명의 전환』, 이학사.

정경민, 2012,「조선의 초대 주미전권공사 파견(1887~1889)과 청국의 대응」,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봉례, 1996,『성호 이익의 교육사상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은영, 2012,『다산사상 형성의 이론적 배경과 체계에 대한 연구: 천관(天觀), 인성물성론(人性物性論), 미발론(未發論)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주진오, 1995,『19세기 후반 개화개혁론의 구조와 전개: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천관우, 1954,「갑오경장과 근대화」,『사상계』12월호.

최남선, 1946,『국민조선역사(國民朝鮮歷史)』, 동명사.

최덕규, 2015,「파리강화회의(1919)와 김규식의 한국독립외교」,『서양사학연구』35.
최문형 외, 1992,『명성황후시해사건』, 민음사.
최종고, 1982,『한국의 서양법수용사』, 박영사.
한영우, 2001,『명성왕후와 대한제국』, 효형출판.
한용진, 2012,『근대 한국 고등교육 연구』,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허동현, 1995,「1881년 조사시찰단의 활동에 관한 연구」,『국사관논총』66.
헨리 휘튼(Henry Wheaton), 1981,『만국공법(萬國公法)』, 아세아문화사.
황상익, 2013,『근대 의료의 풍경』, 푸른역사.
후루카와 아키라(古川昭) 저, 이성옥 역, 2006,『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 경인문화사.
金庚姬, 2000,「ハーグ'密使'と'國際紛爭平和的處理條約'」,『明治大學文學研究論集』12.
金文子, 2009,『朝鮮王妃 殺害と日本人』, 高文研.
金正明 編, 1986,『朝鮮駐箚軍歷史』, 巖南堂書店.
吉村道南 監修, 故目賀田男爵傳記編纂會 編, 2002,『男爵目賀田種太郎』, ゆまに書房
楢崎桂園, 1907,『韓國丁未政變史』, 日韓書房.
田保橋潔, 1944,「近代朝鮮に於ける政治的改革」,『近代朝鮮史研究(朝鮮史編修会研究彙纂 第1輯)』, 朝鮮総督府.
稻葉千晴, 2015,「日本による韓国占領1904年2月」『을사조약110주년기념국제학술회의: 1905년 '보호조약', 그 세계사적 조명』, 2015년 11월 20일.
藤原彰, 2006,『日本軍事史 上』, 社會批評社.
武井一, 2005,『皇室特派留學生-大韓帝國からの 五十人』, 白帝社.
幣原坦 著, 永島広紀 編, 2010,『文化の建設: 幣原坦六十年回想記』, ゆまに書房.
彭澤周, 1969,『明治初期日韓淸關係の研究』, 塙書房.
海野福壽, 2000,『韓國併合史研究』, 岩波書店.
和田春樹, 2010,『日露戰爭』, 岩波書店.
Allen, H. N. 1885, "Medical Work in Korea", *The Foreign Missionary* Vol. 44, No. 2.

제2부

일제 강점기

VERI
LUX
TAS
MEA

제1장

강점 초기 관립 고등교육기관의 변화와 한국인 학생의 동향

제1절 일제의 고등교육시책과 관립 전문학교 개편의 연속

1) 1910년대 전반기 관립 전문학교의 운영 기조와 학교 위상의 약화

(1) 제1차 조선교육령 공포와 고등교육시책의 부재

일제가 1910년 8월 대한제국을 강점한 뒤 1911년 '조선교육령'을 제정할 때 궁극적으로는 한국인의 일본인화에 목표를 두면서도 '시세(時勢)와 민도(民度)'를 내세워 고등교육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한국인의 초등교육과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었다(조선교육연구회, 1913: 1~2). 이른바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보다는 점진적 동화주의(同化主義)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면서 차별 교육을 실행하고자 했다. 1910년 당시 학무과장이었던 구마모토 시게키치(猪本繁吉)는 〈교화의견서(教化意見書)〉에서 '조선인' 교육의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조선민족의 교육에서 시설해야 할 것은 … 당분간 주로 초등교육 및 직업교육으로 충분함을 분명히 할 것. … 초등교육은 주로 일본어를 보급하는 기관으로 급진적으로 하는 것을 피하고 오로지 옛 그대로 민도에 상응하는 간단한 것으로 시설한

> 다. … 직업교육은 초등교육을 이어받아 그것을 완성하는 것으로 한다. … 초등교육 이외의 교육시설은 그들의 생업에 직접 관계되는 것에 한해 착실 온건한 교육을 주도록 하여 제국통치하에서 행복한 생활을 향락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의 동화론자와 같이 일본처럼 여러 종류의 고등한 학교를 주어 문화의 급격한 발달을 꾀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생활난으로 빠지게 하고 나아가 제국의 화평을 해하기에 이른다[『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植民地 朝鮮教育政策 史料集成)』; 강명숙, 2009: 18~19;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2013: 212~215].

일제는 내지연장주의에 입각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점진적 동화주의에 입각하여 보통교육·실업교육 위주의 차별적 교육을 실시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1911년 8월 23일 발표된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동화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시세와 민도의 차이를 이유로 보통교육과 저급 실업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그것은 본국과 한반도의 농공분업 체제의 실현이라는 전제 속에서 조선을 일본의 단작농업지대(單作農業地帶), 즉 원료 공급 지대로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기 때문이다(정연태, 1988: 417~427; 김근배, 1996: 129; 박지원, 2014: 162~170). 당시 학무과장을 역임했던 유게 고타로(弓削幸太郎)는 이른바 식민지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과 설명에 앞서 다음과 같이 조선의 역할을 강조했다.

> 식민지를 영유하는 목적은 식민지로부터 본국에 필요한 원료를 용이하게 또는 유리하게 공급하거나 본국 제품의 확실한 판로를 얻기 위한 것이다(弓削幸太郎, 1923: 2).

이에 따르면 조선은 원료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에 중점을 둔 반면 일본은 공업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조선총독부 자체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일본 본국의 지침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일본 내각과 제국 의회 유력자의 주요 의론을 전하는 『신한민보』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같은 식민지로 말할지라도 혹 자본을 다져 공업을 일으킬 공업 식민지도 있으며 혹은 본국에 물품을 발매할 상업 식민지도 있으나 조선은 다만 농업 식민지에 지나지 못하니 고로 농업 식민지에 대하여는 고등교육을 베풀 필요가 없으며 조선 인민은 다만 좋은 농민이 되게 하였으면 넉넉하며 농업상 지식만 있었으면 그 외에 한문이나 혹 고등 학술은 필요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극해가 될 줄 믿노라(『신한민보』, 1911. 8. 9).

또한 일제의 통치방침을 대변해 온 『매일신보』는 농업학교 설립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배경을 보도하고 있다.

시이(是以)로 각종 요지(要地)에 농업학교를 설치하고 혹은 모범장을 설치하여 이를 일반 농민들에게 유시지도(誘示指導)할 뿐 아니라, 한편 농법(農法, 여기서 法은 業의 오기로 보임 - 필자 주) 졸업자로 하여금 장려지도(奬勵指導)케 하나니, 무릇 농업학교를 졸업한 자는 그 배운 바를 현장에서 시험하고 또는 다른 몽매한 농부를 지도함이 즉 본직(本職)이며 … 이렇다면 지금 이후 조선은 농산국(農産國)의 본성을 발휘하여 부력(富力)을 증진하리니 근자(近者)에 기뻐할 만한 소식을 들은 즉 내지(內地) 고베(神戶) 항의 어떤 상회(商會)는 조선 햅쌀 이천석대(石袋), 미쓰이(三井)물산회사는 제석정백미(除石精白米) 오십대(袋)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하는지라 … 고로 한 마디로 말하면 조선의 금융을 원활하게 하려면 외자(外資)의 수입을 바라지 않을 수 없으며 외자의 수입은 즉 정수(精粹)한 미곡을 수출함에 있다 할지며, 정수한 미곡을 조제하는 일은 농업학교 졸업자가 일반 국민을 잘 지도함에 있다 하노라(『매일신보』, 1914. 12. 13).

여기서 조선총독부가 일본의 미곡 수요와 대외 수출에 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조선 농법을 개량하고 미곡 생산을 증대시키는 데 필요한 농업교육에 중점을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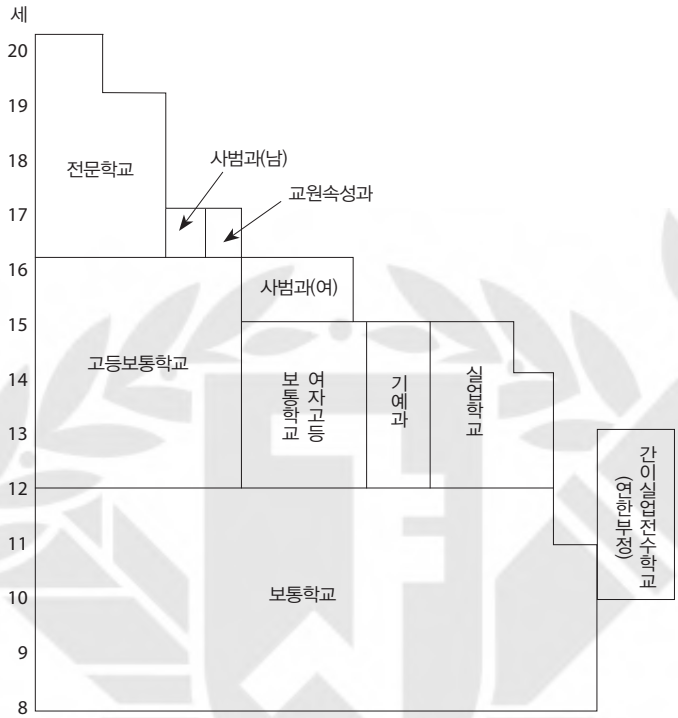
반면에 일제는 근대 개혁기 한국 정부가 설립하여 고등교육의 주축으로 삼아 운영해 온 기존 관립 학교의 위상을 낮추거나 폐교시켰다. 이는 유게 고타로가 다음과 같이 펼친 언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 식민지 교육은 우선 본국어(일본어 - 필자 주) 보급을 주로 하고 고등교육을 피해 실업교육으로 그쳐야 한다. … 이와 같은 설의 근거 이유는 식민지 인민의 자각을 막는 데 있다(弓削幸太郎, 1923: 2).

즉 일제는 한국인들이 자주적 인민으로서 자각하고 대일(對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일제의 순량한 국민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우선 일제는 법학교와 성균관, 관립 외국어학교를 폐지했다(임광수, 2009: 146~147). 또한 관립 사범학교는 '학통(學統)의 분립(分立)'을 피하고 '경비의 절약'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폐지하고 대신에 경성고등보통학교 임시교원양성소(1911)를 설치했으며 궁극적으로 동교 사범과 설치(1914)로 매듭지었다(안홍선, 2004: 13~20). 농상공학교는 조선교육령 공포를 전후하여 일반 실업학교가 아닌 부속학교로 격하시켰다(임광수, 2009: 142~145). 예컨대 관립 농림학교는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부속농림학교로 강등되었으며(1910), 농상공학교(1904)는 농상공부 관립 공업전습소(1907)를 거쳐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부속공업전습소(1912)로 전환되었다(정인경, 1994: 33~41). 의학교 역시 대한의원 부속의학교(1909)를 거쳐 조선총독부 의학강습소(1910)로 강등되었다(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2009: 85).

고등교육기관의 이러한 강등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모자 형태다. 대한제국기 시절에는 학생들이 전문학생을 상징하는 각모(角帽)를 착용했는데 이때부터는 중학생을 상징하는 환모(丸帽)를 착용해야 했던 것이다. 특히 총독 데라우치가 각모를 착용한 학생을 두고 '거만한 단계'라고 질책하며 속히 환모로 바꾸도록 지시함으로써 한국인 학생들의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했고 "학과를 쉬게 하는 대소동"이 일어나 종로 경찰서장이 중재에 나설 정도였다(佐藤剛藏, 1956: 56; 최규진, 2011: 37~38) 이 점에서 1910년대 전반(前半)에는 실상 전문학교가 거의 없는 셈이다. 다만 법학교(1909)에서 전환된 경성전수학교(1911)는 학제 내 전문학교는 아니지만 여타 실업학교와 달리 입학 자격을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전문학교 '수준'의 교육을 행하는 학교로 인정받고 있었다(『조선총독부관보』, 1911. 10. 20, 조선총독부령 제115호 '경성전수학교규정'; 조선교육연구회, 1913: 1~2; 『매일신보』, 1916, 1.



[그림 2-1-1]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학제도(1911~1922)

1; 김호연, 2011: 11). 무엇보다도 경성전수학교 학생들을 식민지 법제 확립과 법률 집행의 실행자 그리고 한국인의 순응, 의무를 이끌어낼 당사자로 양성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림 2-1-1]은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 학제를 표시한 것이다.

한편, 일제의 이러한 고등교육시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해외에서 발행되던 신문으로 당시 조선 국내의 소식을 전하던 『신한민보』와 『신한국보』, 『권업신문』 등은 총독 데라우치가 "한국인에게 고등교육이 필요 없다", "농업식민에 필요한 교육만 할 것", "영국은 인도인에게 고등교육을 시켜 문제가 됨", "일본인 교사 왈 우리가 한인을 알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하고자 함"이라고 보도하여 일제의 이른바 우민화(愚民化) 방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신한민보』, 1910. 9. 21; 『신한국보』, 1911. 1. 3; 『권업신문』, 1912. 8. 21).

(2) 관립 전문학교 위상의 약화와 교육 수준의 저하

일제는 1910년 전후 이러한 고등교육 방침을 세우고 전신학교 운영을 통해 이

[표 2-1-1] 1907~1915년 전신학교 경비, 학생 수, 교직원 현황 경비 단위: 원(圓)

학교 / 연도	농림학교	경성전수학교	공업전습소	의학강습소	동양협회전문학교 경성분교
1907	24,552 (63/7)	-	136,224 (66/19)	5,885 (46/7)	-
1908	40,346 (82/7)	-	85,974 (124/25)	7,816 (33/7)	-
1909	63,639 (101/14)	25,980 (138/21)	61,467 (178/26)	10,204 (73/5)	-
1910	42,052 (94/12)	25,980 (116/23)	75,028 (68/23)	19,110 (105/4)	-
1911	34,675 (94/12)	15,681 (64/19)	76,751 (68/23)	(111/40)	10,080 (14/43)
1912	31,955 (101/12)	22,500 (67/18)	99,551 (74/23)	(126/36)	12,995 (15/14)
1913	31,117 (112/14)	21,140 (113/17)	66,530 (55/26)	(140/45)	11,844 (28/13)
1914	31,498 (106/14)	20,800 (143/16)	? (55/26)	(171/47)	10,256 (35/11)
1915	28,454 (105/12)	20,800 (141/16)	66,020 (89/37)	(234/32)	9,356 (13/17)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각각 한국인 학생 수와 교직원을 가리킴. 다만 동양협회전문학교(東洋協會專門學校) 경성분교(京城分校) 학생은 모두 일본인임. 이 학교는 관립 학교는 아니지만 1922년 관립 경성고등상업학교의 전신학교라는 점에서 '전신학교'에 포함시킴.

출처: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 연도.

방침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실행은 당시 전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배정과 학생과 직원 정원에서 잘 드러났다. [표 2-1-1]은 일제가 고종 강제 퇴위를 눈앞에 둔 1907년 이래 1915년까지 전신학교에 투입한 경비와 학생, 교직원 정원의 현황을 보여준다.

부속농림학교의 경우, 1910년 이전에 이미 시설비가 투입된 까닭에 이후에 커다란 변동이 보이지 않는다.[1] 입학자 역시 1910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경성전수학교의 경우, 매년 경비가 불규칙하지만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1 1909년에 신영비(新營費)와 설비비로 각각 28,098원과 902원이 투입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조선총독부수원고등농림학교(1931: 117~119) 참조.

한국인 학생 역시 1914년에 140명이 넘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들 한국인 학생은 법학뿐만 아니라 상학(商學)도 전공한다는 점에서 일제는 경성전수학교 교육을 통해 상업 전공자도 육성하고자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2] 당시 경성전수학교의 교과목을 보면 상업 관련 과목이 상당수 포함되었다.[3] 이는 농상공학교가 폐교되어 한국인 상업 전공자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취한 고육지책의 결과로 보인다.

공업전습소의 경우, 학생 정원과 무관하게 1912년 개축(改築)과 증축을 위해 32,011원이 투입되면서 전체 경비가 증가했다(『매일신보』, 1912. 4. 7). 의학강습소는 통계 미비로 운영 경비를 추산할 수 없지만 입학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전문학교의 학생은 일제가 하급 기술자 내지 최소한의 의료 인력 확보 차원에서 정원을 점차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 학생은 동양협회전문학교 경성분교를 제외하고는 전원 한국인으로 충원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속의학강습소의 경우, 1910년 이후 일본인 학생이 이전 시기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했다. 물론 한국인 학생 수도 증가했다. 그러나 일본인 학생 입학 자체의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후 일본인 학생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의학강습소 예산을 확인할 수 없어 운영 실태를 추정하기 힘들다. 아울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간호과를 간호부과로 명칭만 변경하여 유지했다. 그러나 이 역시 입학에 필요한 기본 학력이 간호부과는 보통학교 3년 수료, 조산부과는 보통학교 4년 수료인 사람의 경우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고, 이 학력에 미치지 못한 학생은 입학시험을 치렀다. 이후 부속의학강습소가 1916년 총독부의원에서 분리·승격되는 가운데 간호부과와 조산부과는 조선총독부 부속의원에 잔류했다(『조선총독부관보』, 1916. 4. 25).

반면에 1907년 10월 1일 동양협회 회장 가쓰라 다로(桂太郎)가 조선 통치에 필

2 1921년 경성전수학교 교장 아비코 마사루(吾孫子勝)는 사립 경성고등상업학교가 관립 경성고등상업학교로 전환되어 한국인 학생이 입학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면서 경성전수학교 법학 전공 학생들이 더 이상 경제·상업 관련 과목을 배우지 않게 되어 대단히 만족할 것임을 강조했다(『매일신보』, 1921. 2. 22).

3 『조선총독부관보』, 1915. 4. 1, 조선총독부령 제26호 '경성전수학교규정'에 따르면 총 3년 동안 경제원론 4시간, 상사요항(商事要項), 은행론, 기타 응용경제학 5시간, 재정학 2시간을 수강해야 했다.

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통감부 보조 아래 동양협회전문학교 도쿄본교의 분교로서 경성부 대화정 1정목에 설립한 경성분교는 일본인만 입학하는 학교였다. 예산 내역을 보면 1915년 농림학교의 경비가 학생 1인당 270여 원인 데 비해 이 분교의 경비는 720원가량이었다.[4] 조선총독부의 매년 지원 규모는 확인할 수 없지만 1912년의 경우, 총경비 12,995원 중에서 7,000원을 조선총독부에서 지원할 정도였다. 이러한 비율은 여타 일본인 사립 학교와 비교해 월등히 높다. 일제가 경성분교를 통해 조선 침략과 통치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5]

2) 1910년대 후반기 관립 전문학교 운영 기조 조정과 학교 교육의 변화

(1) 민족공학 체제의 시도와 전문학교 운영 기조 조정

조선총독부의 이러한 관립 전문학교 운영 기조는 191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조정되기 시작했다. 당시 일제가 척식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이민자들을 일본 척식의 향도자(嚮導者)로 활용하기 위해 이민을 장려했지만 이들 자녀들이 진학할 학교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을 절감하기에 이른 것이다(弓削幸太郎, 1923: 275~276; 김한종, 2007: 259). 더욱이 총독 데라우치가 "조선의 식민정책을 위한 시정 방침은 하나의 통일 정치 아래 식민지 조선을 일본인의 이주지화하는 것"이라고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본인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문제는 매우 심각했다(강만길 외, 2004: 25). 당시 일본인 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이들 자녀가 입학할 소학교와 중학교가 부족한 데다가 중학교 졸업생이 진학할 고등교육기관이 매우 부족했던 것이다(『매일신보』, 1913. 1. 3; 정재철, 1989: 8).

---

4 동양협회전문학교 본교에서는 상급생 중에서 조선으로 지망자를 파견하여 반년 내지 1년간 공적 또는 사적 업무에 종사케 하여 척식의 향도자로 육성하고자 했다. 동양협회전문학교 경성분교에 관해서는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 편(1915: 111); 경성고등상업학교 편(1939: 3~4); 조선총독부(1912: 423~424); 『동아일보』, 1920. 5. 16 참조.

5 동양협회전문학교는 사립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도쿄외국어학교, 도쿄고등공업학교, 도쿄고등상업학교, 도쿄제국대학 등과 마찬가지로 관에서 학비를 대여해 주었다. 이에 관해서는 帝国青年指導会 編(1913: 43) 참조.

이에 일제는 1912년에서 1913년에 걸쳐 '조선공립소학교관제'를 비롯하여 '조선공립고등여학교관제', '조선실업전습학교관제' 등의 제 규칙 관제를 공포하고 일본인 학교를 증설함으로써 일본인 학교 관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일본인 학생의 진학 기회를 확대했다. 이어 1914년 관립 전문학교 설치를 둘러싼 논의를 진행하면서 경성전수학교를 제외한 각 관립 전문학교에 일본인 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조미은, 2013: 74~75).

부속의학강습소는 1913년 가을부터 전문학교로의 승격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 사토 고죠(佐藤剛藏)가 일본 본국의 국·사립 의학전문학교를 시찰한 뒤 승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족공학(民族共學), 즉 '내선공학(內鮮共學)'을 통한 '내선인 융화'를 내세워 이 기회에 일본인 학생의 입학을 수용하자는 건의안을 후지타 쓰구아키라(藤田嗣章) 원장에게 제출했다(佐藤剛藏, 1956: 53). 이후 1914년 6월 후지타 원장은 데라우치 총독에게 건의했고 총독은 이에 동의했다.

또한 1915년을 전후하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등을 비롯한 미국 선교사 계열이 대학 설립을 시도하자 조선총독부는 인가 시점을 늦추면서 교육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전문학교 설립을 공식화할 필요성을 절감했다(이성전, 2007; 정선이, 2009; 정준영, 2010: 207~211; 최재건, 2012; 김도형, 2015). 당시 이들 선교사 계열은 1910년대에 들어와 서울에 세속주의적 교육을 지향하는 기독교대학을 설립하려 했고 드디어 1915년에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되었다. 반면, 일제는 조선에 대학은 물론 전문학교 등 명실상부의 고등교육기관을 아직 설립하지 못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제는 학자금 낭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국인의 일본 유학을 억제했다. 그러나 실상은 한국인 학생이 일본이나 중국, 미국 유학 등을 통해 독립 의식과 혁명 사상에 접할 것을 우려했다(『매일신보』, 1913. 2. 26, 1914. 7. 28, 1916. 5. 3). 특히 한국인 유학생들은 피지배 민족으로서 일본에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양 지역 학제상의 차이를 이유로 상급학교 본과로의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선에서의 학제가 보통학교 4년-고등보통학교 4년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일본에서의 학제는 심상소학교 6년-고등소학교 4년으로 편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제는 한국인 학생들을 되도록이면 조선 국내에서 수학케 함으로써 한국인들의 고등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한국인 학생을 통제하고자 했다. 1911년에 제정된 '조선총독

부유학생규정'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박찬승, 2003: 116~117). 이후 한국인 일본 유학생은 일제의 이러한 통제와 여론 조성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된 나머지 1913년 682명이었지만 1915년에는 607명, 1917년에는 658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일제는 일본인 이민자 자녀들의 진학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개신교 선교사 계열의 고등교육기관 설립 요구 및 한국인 유학생 문제를 체제 내로 흡수하기 위해서 전문학교에 대한 기존 방침을 조정하고자 했다. 먼저 경성전수학교, 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중앙시험소 부속공업전습소를 전문학교로 개편할 계획을 수립했다(『매일신보』, 1914. 11. 4; 조은진, 2015). 이어서 1914년 12월 전문학교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했다. 여기에는 의학전문학교위원 6명, 전수학교위원 5명, 고등공업학교위원 6명을 두고 학교별 위원회를 구성했다(『매일신보』, 1914. 12. 18). 이러한 위원회의 수차례 토론과 의결을 거친 뒤 일본인 입학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매일신보』, 1915. 1. 20). 그 결과 총독 데라우치는 1915년 3월 24일 다음과 같은 훈령을 통해 관립 전문학교로의 승격을 공식화했다.

> 朝鮮에 在한 現行의 敎育制度로는 普通敎育은 普通學校, 高等普通學校 및 女子高等普通學校에서, 實業敎育은 實業學校에서, 專門敎育은 專門學校에서 此를 施함을 本體로 하고 專門學校에 關하여는 旣히 朝鮮敎育令으로 大體의 方針을 定했으나 其 細則에 至하여는 普通敎育의 發達을 待하여 此를 設하기로 했더니 今則 普通敎育의 施設이 其 進步와 共히 法律, 經濟, 醫術 工業, 農林 등에 관한 專門敎育을 施하는 學校에 適用할 規定을 設할 必要를 認하고 專門學校規則을 發布하여써 朝鮮人의 子弟로 하여금 高等의 學術技藝를 修得하여 國家에 有用한 智能德性을 涵養케 함을 期하니 此 趣旨에 依하여 總督府에서는 民度의 進境과 時勢의 要求에 鑑하여 必要한 專門學校 設置의 計劃을 樹하여 近히 其 實行에 着手코자 하니 또 民間에서 經營코자 하는 此種의 學校는 基礎가 最히 견고하고 相當한 設備 및 敎員이 有함이 아니면 到底히 其 効果를 收치 못하므로써 私立專門學校의 設置는 特히 그 유지에 堪할 財産이 有한 法人에 限한 것으로 定하니라(『조선총독부관보』, 1915. 3. 24. '總督 寺內正毅의 훈령'; 『전문학교 설치에 관한 훈시요령 송부의 건』, 1916. 4. 18, 국가기록원 소장).

일제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세와 민도'의 차이를 들어 전문학교의 필요성

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때는 '민도의 진경(進境)'과 '시세의 요구'에 비추어 전문학교로의 승격을 정당화했다. 다만 사립 전문학교의 설치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제시했다. 이날은 바로 '전문학교규칙'(부령 제26호)을 공포하는 날이었다(『조선총독부관보』, 1915. 3. 24, '전문학교규칙'; 『매일신보』, 1915. 4. 7). 이어서 예산 확보 문제와 일본 본국과의 조율 문제로 1년을 연기한 끝에 1916년 4월 1일 '전문학교관제'(칙령 제80호)를 공포했다(『조선총독부관보』, 1916. 4. 1,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제'). 다만 소요되는 예산과 기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관립 전문학교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개별 학교를 전문학교 단계로 지정하여 승격시키고자 했다. 아울러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제' 제10조에 "조선총독은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전문학교 또는 부속공업전습소에 일본인을 수용하고 전문교육 혹은 실업교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형식상 고등교육이 시작되는 동시에 일본인 중심의 전문학교 교육이 시작되도록 여건을 조성했다.[6] 그 시발은 경성의학전문학교와 경성공업전문학교였으며 1916년부터 이미 일본인이 학생 총수의 3분의 1 이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매일신보』, 1916. 4. 21, 7. 19; 조선교육회, 1916: 3; 조선총독부의원, 1928: 52).

전수학교는 기존의 '전수학교규정'이 폐기되고 1916년 4월 1일 '경성전수학교규정'(총독부령 제26호)이 공포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1916. 4. 1, '경성전수학교규정'). 규정 제1조 제2항에서 볼 수 있듯이 국헌(國憲)을 중히 여기며 국법에 복종할 것을 강조함에서 전수학교의 존립 이유를 찾고 있다. 다만 학교명은 바뀌지 않고 4월 15일 개교식을 거행했다(『매일신보』, 1916. 4. 12). 아울러 제1조 첫 번째 교육강령에서 '조선인 남자'라는 문구가 빠졌다. 이것은 일본인 학생의 입학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다음 조선총독부 부속의학강습소는 1916년 4월 1일부로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시켰다. 학교의 소관 부서는 기존의 내부 위생국이 아니라 학무국이 되었고 '경성의학전문학교규정'(총독부령 제27호)과 동시에 훈령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상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공포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1916. 4. 1). 이어서 경성의학전문학교는 4월 20일 개교식을 거행했다(『매일신보』, 1916. 4. 20). 그러나 명

6 '전문학교관제'가 『시정삼십년사(施政三十年史)』(1940)에서는 '내지인 교육 편'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문학교 교육이 일본인 위주의 교육임을 암시한다.

분상으로는 '조선 교육의 발달 결과', '보통학교 졸업자의 진학 희망 고려', '조선인의 성질과 풍토를 잘 아는 의사 양성 필요' 등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재학생 중에서 일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일본인의 입학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비쳤다.

1916년 당시 일본인은 지원자 67명 중 25명이 입학한 데 비해 한국인은 지원자 261명 중 50명만 입학했다. 일본인 학생의 합격률이 37.3%인 데 반해 한국인 학생의 합격률은 19.2%에 지나지 않았다(『매일신보』, 1916. 7. 19). 그러나 실제 이들 일본인 학생의 80%는 졸업 후 일본으로 돌아가길 원해 조선 내 의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동아일보』, 1924. 1. 13, 1929. 3. 10). 더욱이 조선총독부는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설립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선전했으나 일본 국내 의학전문학교 직원 수에 비하면 1/10도 안 되었다(박윤재, 2002: 193~194). 심지어 교수 3명, 조교수 1명은 의학강습소에서 임시로 충원한다 해도 교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경성의학전문학교에는 부속병원이 없어 임상실습은 물론 임상강의도 조선총독부의원에서 받았다.

한편,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한 일본인은 5년제 중학교를 졸업했고 한국인은 4년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학제에 대한 일본인 입학생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이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1918년 관제를 개정하여 일본인 입학생을 위한 '특별의학과(特別醫學科)'를 설치하여 일본인 학생을 여기에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어, 해부학, 조직학 등 주요 교과목의 수업 시수를 더 많이 배정했다. 1921년 4월 현재 경성의학전문학교 특별의학과에는 일본인 학생 121명 모두가 편성된 반면에 한국인 학생은 1명도 편성되지 않았다(조선총독부, 1921: 8). 일본인 졸업생에게는 일본 영토 어디에서나 개업할 수 있는 '일본 문부성 지정 의학전문학교' 졸업 자격이 부여되었지만, 한국인 졸업생에게는 조선 안에서만 개업할 수 있는 '조선총독부 지정 의학교' 졸업 자격만 허용되었다(박윤재, 2002: 192~193). 게다가 수업은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수신 시간에는 일본식 가치관을 숭상하고 한국의 역사를 업신여기는 식민사관이 주입되었다. 이에 한국인 학생들은 일제의 민족 차별 정책에 많은 불만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민족을 차별하는 일제의 운영 방식은 1922년 조선교육령의 개정으로 고등보통학교가 5년제가 되고 특별의학과가 폐지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훗날 이러한 요인들은 경성의학전문학교 한국인 학생들이 3·1 독립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역시 여타 관립 전문학교와 마찬가지로 1916년 4월 1일부로 경성공업전문학교로 승격했다(『조선총독부관보』, 1916. 4. 1, '경성공업전문학교규정'). 경성공업전문학교는 '조선 공업의 유일한 기관'으로 수업 연한이 예과 1년, 본과 3년이었으며, 4월 25일 개교식을 거행했다(『매일신보』, 1916. 4. 20). 그러나 승격 취지에서 "교수(教授)는 헛되이 고원(高遠)한 학리(學理)에 달림이 없이 간명(簡明)을 위주하고 실지에 유용한 지식을 교수함과 함께 기능의 습숙에 효의(效意)하여 실습을 숭상하고 실험을 중히 하여 응용자재(應用自在)케 함을 기할 것"이라고 언명하고 있듯이 고급 과학기술자보다는 하급 기술자 양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매일신보』, 1916. 4. 13).

농림전문학교 졸업자들은 농림 관련 분야에 진출했다. 이 중 지역 농회에서 기수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 어떤 이들은 직접 과수원을 경영하기도 했다(吳元錫, 1919년 졸업).

끝으로 부속농림학교는 여타 관립 학교와 달리 1918년 4월 1일 칙령 제48호로 농림전문학교로 승격되었으며 권업모범장 소관에서 학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1918. 4. 1). 당시 예산 사정으로 승격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와 마찬가지로 전문과를 설치하여 일본인 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2) 관립 전문학교 학생 구성의 변동과 학교 교육의 변화

일제가 기존의 전신학교를 전문학교로 승격시키는 가운데 경비, 학생과 교직원 정원 등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일본인 학생 수의 증가와 경비 증액에서 두드러졌다. [표 2-1-2]는 일제가 1916년 '전문학교관제'를 제정한 이래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직전까지 배정한 경비와 학생, 교직원 현황이다.

수원농림전문학교는 1917년 일본인 학생 7명이 입학한 이래 점차 늘어나 1920년대에는 20명 전후로 증가했음이 확인된다. 다만 1920·1921년에 학생 수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비가 급증한 것은 당시 산미증식계획, 면작장려계획, 잠견증수계획 등의 농업 기반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시설 투자를 늘린 결과로 보인다. 예컨대 운동장을 없애고 만든 동식물 실험실 97평, 화학실험실 99평을 비롯하여 양잠실, 부장(釜場), 돈사(豚舍), 계사(鷄舍) 및 빙고 등을 들 수 있다(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80년사편찬위원회 편, 1986: 31~32; 구자옥, 2010: 109).

[표 2-1-2] 1916~1921년 전신학교 경비, 학생 수, 교직원 현황 경비 단위: 원(圓)

	수원농림 전문학교	경성전수학교	경성공업 전문학교	경성의학 전문학교	경성고등 상업학교	경성사범학교
1916	24,670 (102/18)	20,800 (120/9)	78,116 (29:25/43)	29,497 (204:25/41)	10,250 (18/24)	-
1917	26,954 (65:7/17)	19,866 (129/10)	80,159 (59:52/62)	22,739 (194:48/42)	8,650 (18/17)	-
1918	25,917 (52:11/17)	20,157 (137/9)	99,197 (70:56/61)	30,336 (197:70/45)	12,531 (50/20)	-
1919	32,442 (26:20/19)	20,381 (110/10)	189,635 (53:58/54)	106,302 (141:93/45)	21,385 (85/21)	-
1920	167,424 (17:22/17)	30,983 (107/12)	314,282 (46:51/66)	134,573 (166:97/45)	84,000 (80/28) 사립고상	-
1921	133,306 (31:34/18)	51,043 (132/11)	255,163 (57:54/66)	112,975 (204:112/60)	69,232 (162/26)	235,676 (74:105/29)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각각 한국인 학생 수, 일본인 학생 수와 교직원을 가리킴.
1907년 10월 한성에 설치된 동양협회전문학교 경성분교(1907)가 1918년 동양협회경성전문학교로 변경되었으며, 1920년 5월에는 동양협회와 분리되어 사립 경성고등상업학교로 개칭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조선총독부 문서과(1922: 325) 참조.

출처: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 연도.

또한, 교지도 약 24정보로, 4정보에 달하는 시설·건물 부지와 기타 20정보에 이르는 학습·실습원이 갖추어졌다. 그리고 면적이 큰 연습림은 별도로 1919년도 전라북도에서 국유림 2,916정보를 인수하고 민유지 4정보를 매수하여 산림 묘목을 생산하고 학생들의 임업실습에 공여했다. 그리하여 1919년에 토지건물과 물건 가격이 134,202원에 불과했지만 1920년과 1921년에는 각각 145,568원과 167,145원에 이르렀다(『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22: 53).

경성공업전문학교는 전문학교로 승격하자마자 1919년 일본인 학생 수가 한국인 학생 수를 넘어서는 동시에 경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인 학생 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일본인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한국인 학생은 70~80명대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1919년 교실을 비롯한 학교 시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7]

7 1910년대 후반에 그려진 경성공업전문학교 교실 설계도를 비롯한 각종 설계도면의 다수가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다.

경성의학전문학교 역시 일본인 학생이 1916년 입학한 이래 급속하게 늘어났다. 비록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학생 수를 넘어서지 않았지만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1919년과 1920년에 경성공업전문학교와 마찬가지로 부지 구입 및 시설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여타 전문학교와 달리 당시 조선총독부의원 구내에 있었던 부속의학교를 활용하지 않고 새롭게 부지를 선정하여 신축할 수 있었다(서울대학교병원사 편찬위원회, 1993: 193~196).

다음 경성사범학교의 경우는 제2차 교육령 개정과 관련되어 있어 제2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끝으로 동양협회전문학교 경성분교는 1918년 인력 수요의 증가로 동양협회와 분리된 데 이어 1920년에 지망자가 상업과에만 몰리고 행정과에 지원하지 않는 데다가 일반에서 학교의 성격을 잘 모르고 있어 명칭을 '사립경성고등상업학교'로 변경했다(『동아일보』, 1920. 5. 16). 또한 일본인 학생 정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조선총독부의 지원이 대폭 증가했다(『매일신보』, 1918. 6. 5). 특히 1921년에는 학생 정원이 이전 해에 비해 배로 증가한 162명에 이르러 여타 전문학교에 못지않는 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일제의 이러한 운영 기조는 1921년 9월 13일 문부성고시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즉 일제는 문부성령 전문학교령(1919년) 제10조에 입각하여 경성전수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를 타이완고등상업학교, 타이완상업전문학교, 타이완농림전문학교, 뤼순공업학당 등과 더불어 준전문학교로 지정함으로써 이들 학교는 명실상부한 전문학교로 승격할 수 있는 전기를 맞았다(『매일신보』, 1921. 9. 15).

3) 동양협회 경성분교의 개편과 조선약학교의 설립

(1) 동양협회 경성분교의 개편

동양협회 경성분교는 1907년 10월에 설립되었다. 1912년 당시 정식 명칭은 동양협회전문학교 경성분교이며 일본인 각종사립학교의 하나였다(『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12). 이러한 명칭은 1919년까지 지속되었다(『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20, 제7편 제12~17표).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1915년 8월 '내지인을 교육하는 사

립학교규칙'(부령 제84호)을 근거로 1916년 1월 7일 설립 신청을 하여 같은 해 6월 28일 인가되었다. 그리하여 7월 10일 사립 동양협회 식민전문학교 경성분교의 재단법인이 설립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1916. 7. 10). 사무소는 경성부 대화정이며 교육사업 경영이 내세운 목적이었다. 자산 총액은 3,100원이며 도서, 교구, 기구의 추정 가격은 2,534원 24전이었다. 출자 방법은 사단법인 동양협회 지출금, 총독부 보조금 및 수업료, 기타 수입이었다. 이사는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와 오기타 에쓰조우(荻田悅造)였다. 그리고 1918년 4월 동양협회 도쿄분교의 학교 이름을 다쿠쇼쿠대학(拓殖大學)으로 개칭하면서 경성분교를 도쿄분교와 완전 분리시킴으로써 이 학교는 동양협회 경성전문학교가 되었다. 1918년 6월 6일 개교했으며 수업연한 3년에 행정과와 고등상업과로 구성했다. 입학 자격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규정하고 한국과 동양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강사들 중에는 조선역사, 서지학 등을 연구하는 전공자들도 있었다.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은 1867년 미야기 현(宮城縣) 모토요시 군(本吉郡) 마쓰이와 촌(松岩村)에서 출생한 뒤 1894년에 조선으로 건너왔으며 1895년 을미사변 직전에 대원군을 만나기도 했다.[8] 또한, 평양탄광 개발, 목포 매축사업 등 각종 이권 사업에 관여하기도 했다. 1917년 당시에는 이 학교 강사로 재직했다. 그는 한국고대신분사 및 상업사, 민속학, 고고학 등의 분야에 깊이 관여하면서 식민지 조선문화정책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대표 저서로 1931년 5월부터 1938년 5월에 걸쳐 경성에서 출판된 『잡고(雜攷)』를 들 수 있다.

(2) 조선약학교의 설립

우리나라 약학 교육기관의 뿌리인 조선약학강습소(1915년 6월 12일 개소)와 조선약학교(1918년 6월 21일 개교)는 조선시대 약재상들의 계(契)인 장진계(長進契)를 모체로 한 조선약업총합소(朝鮮藥業總合所, 소장 이석모) 소속 약업인들의 노력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1910년 일본에 병합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듯, 친일파 조중응(趙重應, 1860~1919, 외무대신 및 농상공부대신 역임)을 초대 강습소장 및 약학교장으로 내세워야 했다.

---

8 『주한일본공사관기록(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발신자 재경성(在京城) 일등영사(一等領事) 우치다 사다쓰치(內田定槌) '1895년 10월 8일 왕성사변(王城事變)의 전말(顚末)에 관한 구보(具報)/기밀(機密) 제36호', 1895. 11. 7.

일제는 전통적으로 한방(韓方)을 중시하는 한국 의료사회에 침투하기 위해 1912년 '약품및약품영업취체령'을 발포했다(『조선총독부관보』, 1912. 3. 28). 이러한 조치는 1900년에 제정된 '약제사규칙'(내부령 제27호) 내 한방 위주 약제사의 자격 요건 및 처방 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에 1914년 7월 한국인 한약업자들의 모임인 조선약업총합소는 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약종상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의 근대적 약학 지식을 가르칠 약품취급강습회를 개최했다(『매일신보』, 1921. 9. 15). 이어서 이들 한약업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1년제 근대적 약학 기관인 조선약학강습소를 설립했다. 여기에는 한국인 약업자는 물론 일본인 약업자들도 참여했다. 일제는 1915년 5월 28일 경성부 장교장 소재 경성장훈학교 내 조선약학강습소를 인가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약학교였다. 그 결과 1916년 4월 3일 1년간 수업을 받은 조선약학강습소 학생들이 졸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졸업생이 정식 약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령이 제정되어야 했다.[9] 당시 일제도 약제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을 뿐더러 자격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1916년 4월 28일 '조선약제사 시험규칙'을 발포했고 이어서 10월 11일 시험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조선약학강습소 출신 한국인 3명을 포함한 총 18명이 응시했다. 하지만 강습소 졸업생은 전원 불합격되었다. 1년 과정인 약학강습소 수료로는 약종상 자격에 머무르기 때문이었다.

경성의 한국인, 일본인 약종상 유지들은 약제사의 면허 취득이 가능한 2년제 사립 약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조중응을 설립위원장으로, 약학사 고지마 다카사토(兒島高里)와 요시키 요미조(吉木彌三)를 설립고문으로, 아라이 도라타로(新井虎太郎), 방규환, 이응선 등 33명을 설립위원으로 선정하여 설립 방법을 강구했다. 그 결과 설립비 약 3만 원은 한국인, 일본인 유지의 헌금으로 충당하기로 그 방침을 세웠다. 한국인과 일본인 생도 50명을 모집하고 6월부터 수업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며 조선총독부에서도 매년 경상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 학교 졸업생들에게 약제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했다.

조선약학교 초대 교장은 조중응, 명예고문은 방규환(方奎煥), 단바 게이조(丹波

9 조선약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는 여타 전신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4부 "각 대학 전사" 참조.

敬三), 나가이 나가요시(長井長義), 이사는 아라이와 야마기시 유타로(山岸祐太郎), 상의원(常議員)은 이응선(李應善, 화평당약방 및 조선매약 2대 사장), 민강(閔橿, 동화약방), 최성필(崔聖弼, 영창당 건재약방), 이옥인(李玉仁, 모범매약), 이익열(李益烈), 기타하라 마사토(北原正人), 이시카와 시게다이라(石川茂平) 등이 취임했다.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경우, 각각 보통학교 졸업과 고등소학교 졸업을 입학 자격으로 규정했으며 1918년 6월 16일 입학시험[국어(일본어), 산술, 이과 3과목]을 실시하여 수험자 125명 가운데 80명을 선발했다. 조선약학강습소 출신을 추가로 포함해 총 99명의 학생이 6월 20일 입학식을 거행했고, 1918년 6월 21일에 수업을 시작했다.

제2절 전문학교 학생들의 연학(研學)과 졸업 이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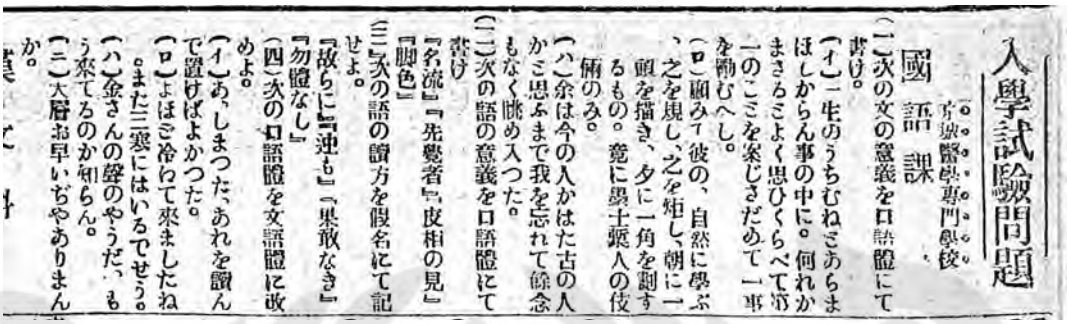
1) 연학

중등학교 학생들이 전문학교에 입학하려면 소정의 입학시험을 치러야 했다. 현재 입학 분위기를 전하는 기록이 없어 1916년에 경성의학전문학교 입학시험을

[표 2-1-3] 이의경 학생의 입학시험 과정

시험 전	지원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시험응시허가 통지서를 받음. 붓과 먹, 연필과 자 준비 해주 읍내의 시립 병원에서 시험을 치름.
첫째 날	시험을 치르기 전에 시험응시서와 함께 제출했던 사진을 통해 본인인지 확인함.
둘째 날	수학 시험
셋째 날	일본어와 한문 시험
넷째 날	물리와 화학 시험
다섯째 날	구두시험 구두시험에서는 왜 의학 전공을 택했는지 물어봄.
시험 후	고전 일본어와 고전 한문이 가장 어려워 사실상 당락을 좌우했음. 3주일 후 합격통지서를 받았으며, 4월 초까지 학교 총무처로 나오라는 통지를 받음.

출처: 이미륵(1973); 최규진(2011: 27) 재인용.



京城醫學專門學校

入學試驗問題

國語 課

(一)次の文の意義を口語體にて書け。

(イ)一生のうちむねとあらまほしからん事の中に。何れかまさるとよく思ひくらべて第一のことを案じさだめて一事を勵むべし。

(ロ)顧みて彼の、自然に學ぶ、之を視し、之を炬し、朝に一頭を擡き、夕に一角を劃するもの。竟に學士碩人の伎倆のみ。

(ハ)余は今の人かはた古の人かと思ふまで我を忘れて餘念もなく眺め入つた。

(二)次の語の意義を口語體にて書け

『名流』『先變者』『皮相の見』『脚色』

(三)次の語の讀方を假名にて記せよ。

『故らに』『迚も』『果敢なき』『勿體なし』

(四)次の口語體を文語體に改めよ。

(イ)あ、しまつた、あれを讀んで置けばよかつた。

(ロ)よほど冷えて來ましたね。また三寒にはいるでせう。

(ハ)金さんの聲のやうだ、もう來てるのか知らん。

(二)大層お早いぢやありまんか。

출처: 『매일신보』, 1921. 4. 14.

[그림 2-1-2] 경성의학전문학교 국어(일본어)과 입학시험 문제

보았던 이의경(필명 이미륵)의 경우를 통해 입학 절차와 시험 일정을 엿보면 [표 2-1-3]과 같다.

1916년 당시 시험문제가 남아 있지 않아 1921년 국어(일본어) 시험 문항을 보면 [그림 2-1-2]와 같다.

전문학교 학생들은 입학하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했다. 이전보다 교과목이 줄어들었지만 이채로운 과목도 신설되어 학문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었다.

(1) 경성전수학교

3년제로 3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제1학기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고,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여름방학을 거쳐,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계속되었으며, 12월 29일부터 다음해 1월 4일까지의 겨울방학을 거쳐, 제3학기는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속되었다.

1911년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조선총독부관보』, 1911. 10. 20, 조선총독부령 제115호 '경성전수학교규정').

1학년에는 수신, 국어, 법학통론,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제공법, 국제사법, 경제, 실무연습, 체조였다. 2학년은 수신요지, 읽기와 작문, 행정법, 상법, 형법각론, 민사소송법, 은행론, 공용문이다. 3학년은 수신요지, 읽기와 작문, 조선행정법규, 민법 4·5편, 상법 3편, 형법 2편, 형사소송법, 국제사법, 재정학, 부기계산, 체조다. 이들 교과목 중에서 주목해야 할 과목은 대한제국기에는 개설되지 않았던 수신, 국어(일본어) 등이다. 교육강령에서 나온 바와 같이 수신, 체조 등에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과목이 일

제가 자신들의 동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긴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등법률가로서 법학을 발전시키는 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외국어 과목은 대한제국기와 달리 누락되어 있다.

이후 1916년 경성전수학교가 전문학교로 승격되었지만 교과 과목은 추가된 교련을 제외하고는 달라진 점이 없다. 오히려 군사교육이 강화되었다고 하겠다. 일제는 1914년 '학교체조교수요목'을 공포하고 이를 각급 학교의 체조과 교재로 삼게 했기 때문이다(표영수, 2008: 7~8). 교련 과목의 이러한 신설은 여타 관립 전문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대한제국기 법학교보다 한 단계 낮은 전문학교 수준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16년 이후에도 내용상으로는 승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일본인 학생이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이전과 달라진 변화라 하겠다.

(2) 조선총독부 부속의학강습소

이름 자체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학교'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고 '강습소'로 추락했다. 수업연한은 의과 4년, 조산부과(助産婦科) 2년으로 종전과 다름없으나, 간호부과는 1년 반으로 줄었다. 이는 간호부 양성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또한, 종전에 설치되었던 약학과가 강습소로 강등되면서 폐지되었다(이충호, 2011: 117).

이 시기 교과과정을 보면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으나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의학과 제1, 2학년에는 기초의학을 배우고, 제3, 4학년에는 응용의학을 배워 일반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조산부과와 간호부과는 모두 실제에 적합한 자의 양성을 도모하여 조산부는 정상 및 이상 분만을 구별할 능력과 정상 분만에 대한 처치, 산욕(産褥)의 여러 주의 등을 배워 실지에서 연습한다. 간호부는 간호법, 치료 개보(介補) 연습 외에 환자의 간호와 의료의 보조자로서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배웠다. 이처럼 임상 위주의 교육을 강요한 것은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의학 교육을 수행하기보다 실무에 필요한 요원 양성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 역시 교육강령에서 표방한 바와 같이 "교구 내용은 기초학문과 임상의학을 불문하고 고원적(高遠的)·학문적 이치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간명함을 취지로 삼아 실제로 유용한 새로운 지식과 기능

을 가르치고 부단히 연마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이래 수강했던 국어(일본어) 외에도 수신을 매년 수강해야 했다. 수신 과목은 교장인 후지타 쓰구아키라(藤田嗣章)가 직접 강의했다. 후지타 원장 사직 이후에는 시가 기요시(志賀 潔) 원장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직접 강의했다. 이 교과는 일제 통치 수행을 위한 정치 학습 목적으로 매 학기 필수로 교육했던 것이다. 아울러 이전에는 통역을 통해 강의를 진행했으나 1911년부터는 직접 일본어로 강의를 진행했다(조선총독부, 1915). 이는 조선에서 최초로 진행된 일본어 수업이었다. 그리고 교수 방법을 바꾸어 가급적 실용적 인물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역시 경성전수학교와 마찬가지로 일제의 동화정책 기조 속에서 하급 의학 교육을 시행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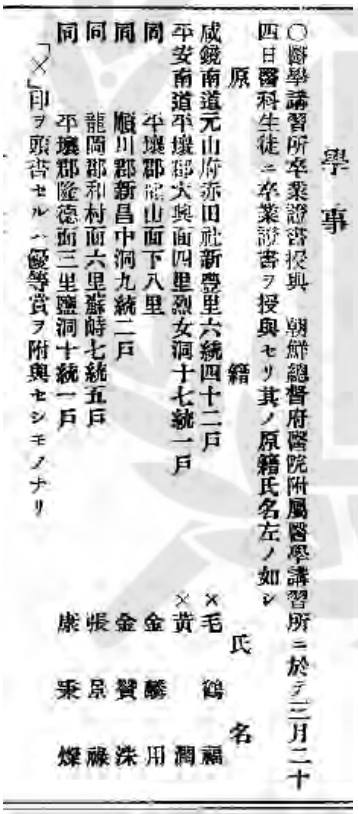
대부분의 교수들은 조선총독부의원의 의관들이 겸임하면서 몇 시간씩 맡아 주었다. 제1회 졸업생은 실상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출신으로 4년간 의사 교육을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대한의원 부속의학교의 이름으로 졸업 증서를 받았다. 반면에 제2회 졸업생 수는 국권 피탈 이후 한국인 학생들이 의학강습소를 매우 부끄럽게 여겨 자퇴한 까닭에 급격하게 줄어들어 6명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강습소란 명칭에 대한 한국인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막고자 강습소 졸업 증서에는 조선총독부의원 의육과를 졸업하는 취지를 쓰고 원장의 이름으로 졸업장을 수여했다(이충호, 2011: 150).

이러한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 1912년 86명을 모집했으나 그해 졸업생은 단지 28명에 지나지 않았다. 1913년과 1914년, 1915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각각 38명, 24명, 35명에 머물렀다. 그것은 일제가 의사 양성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한국인의 교육 수준이나 의료 수준으로 볼 때 일본의 의학교와 동등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다(佐藤剛藏, 1956: 60).

그러나 무엇보다 조선을 본격적으로 통치함에 앞서 일본인 의사들은 의학 교육의 진전에 따른 한국인 의사 양성의 확대가 가져올 결과를 염려했다. 즉 "조선인을 의사로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일본인 의사에게는 가지 않게" 될지 모른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치료라는 시혜를 베푸는 일본인 의사, 그 수혜를 받는 한국인 환자라는 권력 관계를 통해 지배자인 자신에 대한 적대감을 희석시키고자 했던 일제가 한국인 의사의 확산에 따라 이러한 구도가 흔들리게 될 것을 염려했던 것이다(박윤재, 2002: 185).

조산부는 1912년에 9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간호부는 1914년에 7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여타 전문학교와 달리 의료 계통에 진출했다. 특히 1918년 3월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제2회 졸업식에서 3명의 여의사 김영흥(金英興), 안수경(安壽敬), 김해로(金海老)를 배출했다(신영숙, 1989: 13). 이전에도 여의사가 배출되었지만 국내 배출 여의사로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 여학생이 최초였다. 그리고 후일 안수경은 『동아일보』, 1921년 3월 5일 자 「미신과 위생사상」이라는 글에서 병자에게 약은 안 쓰고 푸닥거리하는 잘못을 금할 뿐더러 젊은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들에게 산파와 의사의 중요성을 알려줌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학업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학자금 결핍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 퇴학하는 자도 많았다. 1914년의 경우, 의과 제1학년 16명, 제2학년 2명, 간호부과 제1학기 2명, 제2학기 1명, 제3학기 1명이었다. 그리고 강습소 초기에는 학자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했으나 1915년부터 학자금 지급 제도를 폐지했다. 이는 이전과 달리 빈곤한 학생을 받기보다는 한국인 고관들의 자제를 적극 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럼에도 의료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까닭에 의학강습소 지원자는 여전히 증가했다. 다만 학생들이 강습소란 이름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일제 당국은 조선총독부의원 의육과란 이름을 졸업장에 명기하여 수여하기도 했다(이충호, 2011: 117).



學事

○醫學講習所卒業證書授與　朝鮮總督府醫院附屬醫學講習所ニ於テ二月二十四日醫科生徒ニ卒業證書ヲ授與セリ其ノ原籍氏名左ノ如シ

原籍	氏名	
咸鏡南道元山府赤田社新豊里六統四十二戶	×毛	鶴福
平安南道平壤郡大興面四里烈女洞十七統一戶	×黃	麟潤
同　平壤郡龍山面下八里	金	醪用
同　順川郡新昌中洞九統二戶	金	贊洙
同　龍岡郡和村面六里蘇峙七統五戶	張	景祿
同　平壤郡隆德面三里鹽洞十統一戶	康	秉燦

「×」印ヲ願書セルハ優等賞ヲ附與セシモノナリ

[그림 2-1-3] 『조선총독부관보』, 1912. 4. 18, '의학강습소졸업증서수여' 공문

한편, 학교 측의 민족 차별은 여전했다. 무엇보다 1916년 부속의학강습소에서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었음에도 한국인 학생들은 여전히 환모(丸帽)를 착용해야 했다. 교모 문제는 사소할 수 있으나 전문학교 학생이 착용하는 각모(角帽)를 착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국인 학생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1916년 한국인 학생들은 사비로 400개의 각모를 제작하는 등 강력한 항의 행동을 펼쳤다. 일제는 한국인 학생 18명을 종로경찰서에 잡아 가두었으며 학교 측은 김형익 등에게 1년 정학 조치를 취했다(최규진, 2011: 37~38). 이후 일본인 학생들이 특별의학과로 입학

하여 각모를 착용하면서 한국인 학생들의 자존심은 더욱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3·1 독립만세운동에 놀라서인지 일제는 1920년 2월 20일부터 정모를 환모에서 각모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고, 3월 23일 졸업식장에는 한국인 학생들이 각모를 착용하고 행사에 임할 수 있었다(『매일신보』, 1920. 3. 3).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교수 사이에서도 마찰이 자주 일어났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어느 일본인 교수의 망언이었다. 1921년 6월 한국인 학생들이 해부학교실에서 분실된 두개골 문제를 논의하던 중 구보 다케시(久保 武) 교수가 "조선 사람은 원래 성격이 흐릿하고 야만인이라서 분명히 조선인 학생의 행위"라고 폭언을 하고 나갔다. 구보 교수는 해부학 시간마다 "조선 사람은 해부학상으로 야만인"이라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주장하곤 했는데, 한국인 학생들은 1학년 교실에 모여 두개골 분실이 조선 학생의 행위라는 증거와 조선 사람의 흐릿한 성격에 대하여 확실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학칙 위반으로 판단하고 9명에게는 퇴학, 185명에게는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동아일보』, 1921. 6. 8; 신영전·윤효정, 2005: 5~6). 당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4학년 양봉근, 이필근, 3학년 이약유, 장세구, 신진우, 전진극, 본과 2학년 김정상, 백승진, 1학년 박경진이었다. 이 가운데 양봉근은 이 사건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3·1 독립만세운동에도 적극 가담한 뒤 부산 구포 시위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무기정학에 처해진 학생들은 동맹퇴학을 결의하고 학교에 퇴학원을 제출했지만, 학교는 접수를 거절했고 우편 역시 접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이 7~8명의 학생을 연행해 밤 12시까지 심문했다.

사건이 이처럼 비화되자 6월 11일 인사동 계명구락부에 모여 교섭위원 6명을 선정하고 중재에 나섰다. 학부형회도 같은 달 16일 운니동 교동공립보통학교에 모여 교섭위원 4명을 선정하고 교섭에 나섰다. 여기에 『동아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이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자 학교에서는 퇴학·정학 처분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신영전·윤효정, 2005: 6).

이러한 민족 차별 속에서도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한국인 학생들은 학업에 진력했다. 당시 유학(儒學) 분위기에서 성장한 한국인 학생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해부 실습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동양의 인간관이 서양의 근대 과학 앞에서 무너지는 고통을 보여주는 동시에 근대 과학을 체화하고자 했던 학생들의 희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훗날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망명

의 길을 걸었던 이의경은 그러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 교수가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오늘은 장부(腸腑) 기관의 위치만을 보라고 했다. 시체의 해부는 인간의 권위에 대한 침범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들이 그의 지상의 그림자를 고귀한 학문의 제단에 바침으로써 사자에게 큰 명예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 그는 우리들 중의 한 사람이 용감히 시작하여 처음에는 횡경막 근처의 피부를 아래로 절개하라고 했다. 우리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급기야 한 학생이 천천히 주저하면서 그의 기계 상자를 끄집어내어서 명령한 대로 했다. 그다음에는 다른 학생의 차례가 왔고, 우리는 마지막에는 오멘툼 마유스(Omentum majus, 복막의 한 부분인 큰 그물)가 깨끗이 드러날 때까지 함께 작업했다.
>
> 우리들이 등불 아래서 모든 기관을 보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무렵, 밖은 벌써 어두워져 있었다. 집에 들어온 우리는 먹는 것도 잊고 온밤을 침묵으로 보냈다. 우리는 서로가 주고받을 만한 이야깃거리를 몰랐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학문, 철학, 자연, 인간의 생활—이 우리에겐 무의미하게 보였다. 아니 더럽게 보였다. 우리가 시체 해부를 마치고 학교에서 나올 때, 우리는 더운 물로 깨끗이 목욕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자신의 육체를 보아야 하며 피부를 손으로 만지는 게 겁이 났다. 나는 오늘 오후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있던 그 시체에 대한 무서운 광경을 잊어버리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다(이미륵, 1973: 158~159).

학생들은 졸업생 선배들과 더불어 사회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성의우구락부(京城醫友俱樂部)는 1921년 3월 통속위생강연단을 조직하여 경성 이남 8개 도시에서 가장 알아듣기 쉽고 가장 적절한 말로써 지방 인사들에게 위생사상을 선전했다(『동아일보』, 1921. 3. 16). 여기에 양봉근, 이필근, 김정상, 박경진 등 구보 교수 망언 사건에 맞서 동맹휴학을 주도했던 학생들이 적극 가담했다. 양봉근의 경우, '지방적 노력', '조선인의 조로성', '우리의 죄악' 등을 합천 등지에서 강연했다(신영전·윤효정, 2005: 7). 이필근과 김정상, 박경진 등은 각각 '생(生)'과 '위업(偉業)의 원가(原價)', '애(愛)의 력(力)'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동아일보』, 1921. 8. 2, 13). 이들은 동맹휴학운동 경험을 통해 민족 차별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현실의 실태를 파악하고 계몽하

는 데 역점을 두었다.

3·1 독립만세운동 후 학교에 남아 있던 한국인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민족의식을 상실하지 않았다.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한국인 학생은 모두 49명이었는데 이들은 자기들만의 졸업 앨범을 만들었다. 앨범 이름은 『형설기념(螢雪記念)』으로 일본인 학생들이 주도권을 쥔 관립 학교에서 극심한 민족 차별을 받아가면서도 꿋꿋하게 학업에 힘써 졸업에 성공한 그 감격스러운 느낌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49명의 졸업생 중에서 훗날 김동익, 박병래, 최상채, 이선근, 이종륜 등 9명의 의학박사가 나온 만큼, '형설'이라는 어휘는 잘 부합되었다. 졸업생들은 졸업 앨범에 한국 지도를 넣고는 그 위의 자기 고향 지점에 이름을 올렸다. 자신과 고향에 대한 애정을 당당하게 표현한 것이다. 아울러 공부하던 상머리를 비춘 '형설'만이 아니라 작지만 민족의 미래를 비출 '형설'이 되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를 밝혔다. 졸업생들의 민족의식은 이 앨범의 머리말에도 잘 나타나 있다.

> 심술 많은 서모(庶母, 일본)에게 때로 죄 없는 구박을 받고 불쌍한, 외로운 형제들, 옛 어미(한국)나 생각하고 머리를 맞대고 울어본 적이 몇 번이며, 등을 때려서 밖으로 쫓아낼 때 젖 먹던 힘을 모아 반항한 적이 몇 차례냐!(서울대학교병원사 편찬위원회, 2015: 74~75 재인용)

그럼에도 이들의 희망과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재학 중에도 차별을 받았지만 졸업 이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졸업 후 한국인은 제한된 지역에서만 개업이 허락되는 한지(限地) 의사격인 총독부 면허가 발급되는 반면, 일본인은 경성의학전문학교 의학사의 칭호와 문부성 면허가 수여되어 조선 지역은 물론 일본 지역에서 개업할 수 있는 등 민족 차별은 여전했다. 이후 이러한 차등 교육은 1922년 2월 4일 '제2차 조선교육령'의 공포로 고등보통학교가 5년제 학교가 되고 '경성의학전문학교규칙'의 개정으로 특별의학과가 폐지됨으로써 다소 완화되었다(『동아일보』, 1923. 3. 23, 4. 5, 6. 13). 과거 4년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본과 학생들을 위해서 구본과(舊本科)라는 보충과를 신설했으며 이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특별의학과 졸업생과 같은 자격을 인정하였고, 본과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당연히 경성의학전문학교 의학사의 칭호도 부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졸업생들은 일제의 이러한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인 농민의 열악한 보건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고자 사회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양봉근의 경우, '농촌문제대관(1927)', '노동 운동의 사적 고찰(1929)' 등의 주제로 대중 강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보건운동사를 설립하고 『보건운동』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는 등 민중보건운동을 펼쳐 나갔다(신영전·윤효정, 2005: 9~14). 이 단체는 무산아동과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펼쳤으며 도시세민층을 대상으로 시민 객담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농민층을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하기도 했다. 나아가 양봉근은 '나병환자구제연구회'를 조직하고 여수, 대구, 부산 등지에 간이수용소 설치를 결의했다.

(3) 조선총독부농림학교

의학강습소와 달리 '학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권업모범장 소속이었기 때문에 실상 의학강습소와 크게 다를 게 없었다. 아울러 교과과정을 보면 이전과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1910년 12월 교칙을 개정하여 학생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구과를 폐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80년사편찬위원회 편, 1986: 27). 그리하여 토지개량론, 농구론(農具論)을 추가하는 대신에 수학 시간 수를 줄이고 측량을 수학에서 분리하여 강화하는 한편 지리학을 삭제했다. 농학의 원리와 이론적 탐색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실무에 필요한 농학 지식 주입에 초점을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름방학에는 실습으로 농작물을 가꾸기에 더 바쁘고 힘들었다.

또한 여타 전문학교와 마찬가지로 수신(인륜, 도덕), 국어(일본어)가 대폭 확충되었다. 국어(일본어)는 학년마다 개설되어 있으며 1, 2학년의 경우 6시간이 배정되어 전체 수강 시간의 1/5을 넘었다. 또한 이전에는 통역을 통해 강의를 진행했으나 이때부터는 일본어로 직접 강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교수 방법을 바꾸어 가급적 실용적 인물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역시 의학강습소와 마찬가지로 일제의 동화정책 기조 속에서 하급 농학 교육을 시행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그 밖에 이들 학생은 경성부로 올라가 또 다른 농장이 설치되어 있는 뚝섬을 시찰하곤 했다(『매일신보』, 1911. 10. 7).

아울러 한국인 위주의 학교여서 조선총독부의 처우는 매우 열악했다. 1915년에 입학했던 장면(張勉)은 입학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학교 당국이 지원자의 숙

박 시설에 난방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회고하기도 했다. 또한 관비가 매우 낮아 기숙사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학교 생활에 고통을 당해야 했다. 그리고 1916년에는 입학 지원자가 매우 많다는 이유로 학자금 지급 제도마저도 폐지되었다(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80년사편찬위원회 편, 1986: 28).

(4) 관립 공업전습소

상공학교의 후신인 관립 공업전습소도 명칭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학교라기보다는 기술전습소에 가까웠다. 특히 전습소가 1912년에 설립된 중앙시험소에 소속된 까닭에 교과과정 역시 그리 개선되지 못했다. 즉 중앙시험소의 기능이 조선총독의 관리에 속한 공업에 관한 시험, 분석과 감정의 사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교과과정 역시 이러한 업무를 뒷받침하는 과목으로 구성되었다(정인경, 1994: 39). 공업전습소는 염직과, 도기과(陶器科), 금공과(金工科), 목공과, 응용화학과로 교과목을 개설했다(『매일신보』, 1912. 5. 1). 여기서는 이들 분야의 간단한 개량기술을 전습하도록 했고 중앙시험소에서는 시험, 분석, 감정을 통해 새로운 원료를 조사하고 가공할 방법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5) 동양협회 경성분교

일본인 사립 전문학교라 할 동양협회 경성분교의 경우, 동양협회 식민학교 학칙에 따르면 분교의 목적이 타이완, 조선 및 지나[중국] 기타 남양에서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학술을 가르치는 것에 역점을 두고 교과과정이 편성되었다. 즉 법률, 경제, 식민에 관한 학술과 영어, 지나어[중국어], 타이완어, 조선어가 설정되어 있다. 이 점에서 여타 관립 학교와 달리 일본인의 식민정책 수행에 필요한 교과를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학교가 경제뿐만 아니라 법률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한국인 위주의 경성전수학교와 대비된다. 1학년에는 타이완어, 지나어, 조선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배우며 영어, 식민사, 동양사정, 한문, 부기, 수학, 작문, 지문학, 법률요론, 경제학, 체조 등을 배웠다. 2학년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아 1학년과 유사했으며 재정학이 포함되었다. 3학년 역시 연속 과정으로 이러한 과목 틀 속에서 법률요론으로 상법, 행정법, 국제사법 등을 배웠다(동양협회, 1917). 끝으로 학생 전원이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수신, 일본어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았다. 여타 전문학교와 달리 한국인

학생을 가르치지 않았다.

전문학교 역시 일제의 교육시책에 근간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일제 당국은 학생들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에게 일본의 위용을 보여준다든가 현장교육을 위해 학생들을 외부로 이끌었다. 예를 들면, 경성전수학교 학생들은 1912년 1월 인천에 정박 중인 함대를 참관하기도 했다(『매일신보』, 1912. 1. 24). 또한 축제일을 일본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일본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힘을 기울였다(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80년사편찬위원회 편, 1986: 27).

한편 전문학교 학생들 간에 스포츠 교류가 지속되었다. 다만 화재로 인해 경성전수학교와 부속의학강습소의 정구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다(『매일신보』, 1915. 1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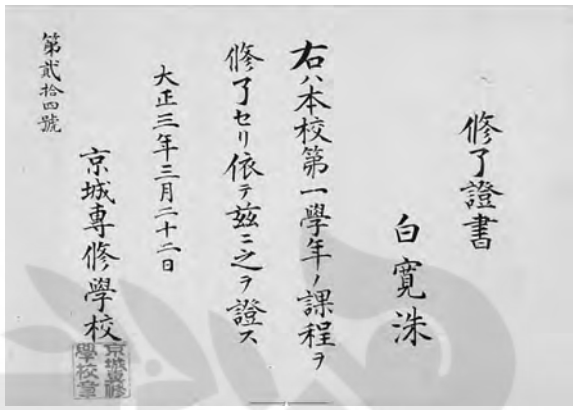
2) 졸업 이후 활동과 민족운동

(1) 경성전수학교

졸업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법조계(사법관청, 행정관청, 변호사)를 비롯하여 은행, 회사 등에 취직하여 활동했다. 『경성법학전문학교일람』(1926)에 따르면 1916년 4월 말 현재 판사 9명, 검사 2명, 재판소 서기 18명, 행정관서 13명, 경찰관서 5명, 변호사 21명, 은행·회사원 4명, 신문기자 3명, 가업 55명, 사망 11명으로 파악된다.

일부 학생들은 독립운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의주 출신인 이유필(李裕弼)은 1909년 24세의 나이로 법학교에 입학해 1915년 경성전수학교를 마쳤다. 그는 이미 신민회에 가담하여 활동하는 가운데 1912년 6월 일제의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진도로 유배를 당했다(이현희, 1993: 200). 그러나 그는 고립된 유배생활에서도 야간학교를 설립하여 그곳 농민들의 아동을 교육하는 한편, 메이지대학 법과 교외생으로 졸업을 하는 등 구국투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했다. 이후 그는 1년간의 유배생활을 끝내고 상경하여 법학전문학교에 복학, 졸업했다. 취직이 마땅치 않던 그는 영변군의 공직을 수행했는데 직책은 서기로 추정된다. 이어 32세가 되던 1917년 고향인 의주군으로 전임되자, 그의 목표가 해외로 나가 독립

투쟁을 하는 것이었기에 서기직을 사임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관망했다. 이어서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뒤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합류해 독립운동을 벌였다. 특히 군자금 조달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윤봉길 의사의 의거 직후 1933년 3월 프랑스 공무국원을 앞세운 일경에 체포되어 신의주로 압송되었다. 이때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修了證書

白寬洙

右ハ本校第一學年ノ課程ヲ
修了セリ依テ玆ニ之ヲ證ス

大正三年三月二十二日

京城專修學校

第弐拾四號

출처: 윤재근(1996).

[그림 2-1-4] 백관수의 경성전수학교 제1학년 수료증서(1914)

또한 김성수, 송진우와 더불어 금호학교를 졸업한 백관수(白寬洙)는 1913년 4월에 경성전수학교에 입학하여 이곳에서 일본 유학을 마치고 교수직에 취임한 김병로(金炳魯)를 만났다. 그리고 1915년에 졸업한 뒤, 그는 YMCA에 들어가 청년지도자의 길을 걸었으며 1917년 29세의 나이에 현해탄을 건너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여기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러시아 10월 혁명을 듣고 2·8 독립선언을 주도했다. 이 사건으로 그는 금고 9개월을 선고받았다(오수열, 2011).

1913년 4월에 입학한 어수갑(魚秀甲)은 경성중앙학교 출신으로 1914년 3월까지 경성전수학교에서 공부한 뒤 4월 2일 포천 사립 청성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했으며, 1916년 5월 철원 사립 봉명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러나 북경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1922년 2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제령(制令) 7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출옥 후 『시대일보』 기자가 되었다. 1924년 11월 화요회에 가입했다. 1926년 3월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경성부 제1구 제7야체이까, 언론기관 프랙션에 배속되었다. 7월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1928년 2월 경성지법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1929년 4월 만기 출옥했다. 1945년 11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에 김포군 대표로 참석했다. 1946년 2월 민주주의민족전선 경기지부 서기부장을 지냈다(강만길·성대경 엮음, 1996).

1913년 3월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한 이관용(李灌鎔)은 1914년 3월 영국 옥스퍼드 대학 문과에 입학했으나 중퇴하고, 1916년 스위스 대학에 입학했다. 1919년 4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파리위원부 부위원장이 되어 위원장 김규식과 함께

파리에 파견되었다. 7월 17일, 국제사회주의자회의인 루체른 회의에 조소앙과 함께 한국사회당 대표로 참석하여 한국의 현재 상황과 독립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국독립승인요구안'을 제출했다. 8월 9일, 김규식의 뒤를 이어 파리위원부 위원장 대리로 활동했다. 1921년 6월 20일 임시정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독립을 선전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있던 그를 영국과 프랑스에 파견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관용은 고국을 떠난 지 10년 만에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1923년 2월 17일 고국으로 돌아왔다. 1923년 5월부터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되었으며 사회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1924년 3월 1일 소년척후단 조선총연맹발기회(少年斥候團朝鮮總聯盟發起會)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10월경 조선기근구제회의 집행위원이 되었다. 1925년 태평양문제연구회를 조직하고 종교·경제·이민·외교 문제를 연구하며, 하와이 범태평양회의에 상주위원을 파견할 것을 협의했다. 11월 30일, 사회 각 방면에 종사하는 여러 유지가 조선사정조사연구회를 조직하자 이에 가입하여 한국의 사회·가정 및 상업·공업·농업·재정과 금융·법제·교육 문제 등을 학술적으로 조사 연구했다. 1927년 1월 19일 신간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간사로 활동했다. 12월경, 신간회 경성지회 제2회 정기대회에서 임시집행부 서기장에 선임되었으며, 12월 10일 재만동포옹호동맹 집행위원회에서 홍명희(洪命憙)·김기전(金起田)과 함께 성명서 작성위원이 되었다. 귀국 후,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사전편찬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사건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신간회 간부들과 같은 해 12월 13일 민중대회를 개최하고자 결의문 배포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이관용은 1931년 4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1932년 1월 22일 가출옥했다. 출옥 후 철학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1933년 8월 13일 함북 청진에서 사망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윤선자, 2007).

(2) 경성의학전문학교

1911년에 졸업한 김태진(金台鎭)은 한국인 최초로 규슈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했으나 1919년 에스파냐 독감 유행 때 34세로 요절했다(황상익, 2010). 1913년에 졸업한 심호섭(沈浩燮)은 1926년에 도쿄제국대학 의학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광복 직후 10월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했고,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초대 학장에 취임하여 한국 현대 의학 교육의 기반을 닦았다. 또한 1918년 졸업한 윤치형(尹治衡)은 관비 유학생으로 규슈제국대학 제2외과에서 근무하다 한국인 최초로 독일 브레슬라우 대학으로 유학했다. 이후 규슈제국대학으로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24년 일본어와 독일어로 집필한 학위논문 「건강폐(健康肺)와 폐결핵(肺結核)에 미치는 기흉(氣胸)의 작용」을 제출하여 한국인 최초로 의학박사가 되었다(『매일신보』, 1924. 6. 11; 1935. 7. 21).

(3) 경성공업전문학교

1919년에 졸업한 건축과 박길룡(朴吉龍)은 1932년 한국인 최초로 사설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조선건축기사협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화신백화점, 경성제국대학 본부 등을 설계하여 근대 건축을 선도했다. 1921년에 졸업한 토목과 민한식(閔漢植)은 토목기술자 면허제도를 창시(토목기술자 면허 제1호 취득)하고, 전남 여수와 북한 성진 축항을 건설했으며, 조선총독부 내무국 토목과에 근무했다. 해방 후에는 교통부 항만국에서 근무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수원농림전문학교

농학, 식물학, 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졸업생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1915년에 졸업한 백남운(白南雲)은 그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경제학자였다. 그는 일본에 유학하여 도쿄상과대학을 졸업한 뒤, 1925~1938년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했고, 1933년에는 우리나라 원시·고대사회 경제에 관한 최초의 사회경제사 저서라 할 수 있는 『조선사회경제사』(1933)를 발간했다. 이어서 『조선사회경제사』의 속편이라 할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상(上)』(1937)을 발간했다. 이러한 저작들은 방법론의 성격 여하를 불문하고 한국의 원시·고대·중세에 해당하는 삼한·삼국·고려조까지의 사회경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큰 업적을 남김으로써 한국 경제사학 발전에 개척자적 구실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편, 1920년에 졸업한 이훈구(李勳求)는 백남운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유학하여 도쿄대학 농학과를 수료한 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31년 숭실전문학교 교수로 농과과장을 지냈으며 『조선농업론』(1935)

을 발간했다. 이 저서는 1931년 여름부터 겨울에 걸쳐 조사원이 13개 도, 48개 군, 133개 리에서 1,556호의 농가를 호별로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것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당시 농업에 관한 각종 현안 문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농업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17년에 졸업한 장면(張勉)은 가톨릭 관련 교육기관 언론 단체에서 주로 활동했다. 광복 이후에는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유엔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국제 승인을 얻어냈다. 4·19 혁명 후 제2공화국 시절에는 5·16 군사정변으로 실각하는 비운의 국무총리를 역임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20년에 졸업한 조백현(趙伯顯)은 일본으로 유학하여 규슈제국대학 농학부 농학과에 입학했으며 1년 후 신설된 농예화학과로 전과하여 1925년 1회로 졸업했다. 이후 모교인 수원고등농림학교에 강사로 부임하고 조교수를 거쳐 30세에 교수로 승진했다. 「토양의 모세관 수분이동 속도 연구」 외에 「한국산 야생 식용식물의 식품적 가치 연구」, 「전통발효식품에 관한 연구」, 「콩나물 생장 중 성분변화에 관한 연구」, 「개량메주 제조에 관한 연구」 등 주로 한국 전통·고유 식품에 관한 생화학적 연구에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다. 1945년 8·15 광복 후 수원농림전문학교 교장에 임명되었으며, 이어서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출범과 동시에 농과대학 학장으로 임명된 이래 교육과 연구에 힘씀으로써 한국 농학 교육의 기반과 농학 연구의 기틀을 다져 놓았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원농림전문학교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대표적인 인물로 1916년에 졸업한 유흥식(柳興湜)을 들 수 있다. 그는 무정부주의자 유자명(柳子明)으로 더 알려져 있으며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당시 충주 간이농업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 시위를 준비하다가 일제 경찰에게 탐지되자 중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충청도 대표의원으로 선출되고, 나석주의 소개로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에 가입했다. 8·15 광복 이후 귀국하지 못하고 중국 후난성(湖南省) 창사(長沙)에서 대학교수 생활을 했다. 윈난(雲南) 고원지대에서 최초로 특수벼 재배에 성공하여 농학박사가 되었고, 특히 독립운동가 출신 원예학자로 중국인들의 신망이 두터웠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조선총독부 부속의학강습소

3·1 독립만세운동에 가담한 여성들 가운데 조선총독부 부속의원 간호부과 출신인 박자혜(朴慈惠)는 가장 주목할 만한 독립운동가였다. 그녀는 1916년 10월 조선총독부 부속의학강습소 간호부과를 거쳐 조산부과에 입학하여 1917년 10월에 졸업했다. 이후 조선총독부 부속병원의 조산원(助産員)으로 근무하던 중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이필주 목사와 연락을 취하며 동 병원의 조산원과 간호원들로 조직된 간우회(看友會)의 회원들을 규합하여 비밀리에 각종 유인물을 배포했다. 또한 같은 해 3월 10일 간우회원들을 주도하여 독립만세시위운동을 펼쳤다. 그녀는 같은 해 3월 동 병원 동료들과 김형익 등 한국인 의사를 규합하고 시내 국·공립 병원 직원들의 동조를 얻어 태업을 주도하다 일경에 피체되었다. 1920년 동 병원에서 근무하던 김용채(金容採) 등 3명의 의사가 사직하자 그녀는 더 이상 일제를 위해 일할 수 없다는 각오 아래 병원을 그만두고 중국 지린성(吉林省)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신채호와 결혼한 후 남편을 따라 각지를 전전하면서 온갖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1924년 신채호가 일경에 피체되어 다롄(大連)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게 되자 그녀는 베이징, 톈진 등지의 독립운동가와 국내 인사들과의 연락 임무를 띠고 귀국했다. 1926년 12월 나석주 의사의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파 의거 당시 사전에 위치·지리를 안내하는 등 독립지사들과 연락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일경의 끊임없는 감시 속에 수없이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6) 동양협회 경성분교

1919년 동양협회 식민전문학교 본교 파견 학생들이 모두 졸업한 12년 동안 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전부 총독부 관리, 은행 및 금융조합, 철도국, 전매국 등과 산업 부문의 경영자로 취업했다.

제2장

3·1 독립만세운동과 전문학교 학생들의 참여

제1절 3·1 독립만세운동 전야

세계 정세가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과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급변하면서 세계 여러 지역의 피억압 민족들은 이 전쟁과 혁명을 전제정치와 식민지배에 대한 진보와 문명의 도전으로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수립과 민족국가의 건설에 매진했다. 특히 일제의 무단통치에도 불구하고 1910년 이전부터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을 통해 자주독립 의식을 높이고 민족운동의 역량을 준비해 왔던 한국의 국내외 민족주의자들은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우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를 '세계 개조의 신시대'로 받아들여 세계 열강의 도움을 얻어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포착하고 독립운동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신용하, 1990: 30~36). 또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러시아혁명으로 집권한 레닌이 1917년 11월 제정러시아 치하 100여 개 이상의 억압받는 민족과 동양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언한 '민족자결의 원칙'에 고무되었다(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1989: 41~66; 이윤상, 2009: 4~8).

'민족자결주의'가 이처럼 피압박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외에서 독립에 대한 희망과 반일운동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정세 변화에 민감했던 국외에서 먼저 일어났다(이윤상, 2009: 74). 1917년 7월 중국에서

조소앙, 박용만, 박은식, 신채호, 윤세복 등 14명은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여, 나라 밖 독립운동단체들이 대표자대회를 열어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으로 임시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동환, 1988: 159~161). 또한 국민주권론을 주장함으로써 공화주의를 운동 이념으로 뿌리내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대동단결선언은 1919년 2월 '대한독립선언'으로 이어져 3·1 운동 뒤 임시정부를 만든 기초가 되었다.

미주 교포사회에서도 독립 기운이 일기 시작했다(신국주, 1988: 225). 1918년 12월 대한인국민회는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조선의 실정을 알리며 독립을 호소하려고 재미 한인 전체대표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파견대표로 뽑힌 이승만과 정한경 등은 일본과 마찰을 우려한 미국이 여권을 내주지 않아 강화회의가 열린 파리에 갈 수 없었다.

한편, 파리강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연해주에도 전해지자 러시아 한인 독립운동가들은 1919년 2월 전로한족회중앙총회를 대한국민의회로 개편하고 윤해와 고창일을 파견하여 조선독립을 호소했다. 상하이의 신한청년당도 1919년 1월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독립청원서를 만들고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했다.

그리하여 1919년 2월 1일(음력 1918년 11월) 만주와 연해주 및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독립운동가 39명 명의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김동환, 1988: 162~167). 이때가 음력으로 무오년인 1918년 11월(양력 1919년 2월 1일)이었기에 무오독립선언으로 불린다. 조소앙이 기초한 선언서에는 사기와 강박으로 이루어진 일본과의 병합(한일병합조약)은 무효이며 육탄혈전으로라도 독립을 쟁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쿄의 한국인 유학생들도 1918년 말부터 독립 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했다(김호일, 2005: 85~100). 이들은 이듬해 1월 웅변대회를 위장한 모임을 갖고 최팔용과 송계백 등 10명의 대표를 뽑아 조선 독립을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10명의 유학생 대표들은 비밀결사인 '조선청년독립단'을 세우고 '민족대회소집청원서'와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다. 2월 8일 오전 유학생들은 이 문서들을 일본 내각과 각국 공사에 보내고, 오후 2시 도쿄의 조선YMCA 강당에서 열린 유학생 총회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1919년 1월 22일 고종의 갑작스런 죽음은 한국인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고종은 매우 건강한데다가 국외 독립운동가들과 연락

하면서 망명을 추진하던 차에 죽음을 맞았기 때문이다(이정은, 2009: 341~342). 국내에서는 고종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퍼져 한국인들의 민족적 울분을 자아냈다. 당시 지방마다 백성들이 흰 갓을 쓰고, 양반·유생 주도 아래 망곡식(望哭式)이 열렸다. 경북 지방 1부 23군에서만 230개소에서 거행될 정도였다. 그리고 3월 3일 국장일이 결정되자 국장 배관(拜觀)을 위해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이에 고종 붕어 이전부터 만세 시위를 물밑에서 준비해 왔던 민족대표를 비롯한 종교계 인사들은 인산일(因山日)을 기화로 전국적인 시위로 발전시키고자 했다. 천도교에서는 손병희, 최린 등이, 기독교에서는 이승훈 등이, 불교계에서는 한용운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고, 대내적으로는 대중화, 비폭력 등의 원칙에 따라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서명한 '독립선언서'도 비밀리에 준비되어 전국에 미리 배포되었다.

제2절 3·1 독립만세운동의 전개

1) 민족대표 33인의 '기미독립선언서'와 만세 시위의 확산

드디어 국내에서도 1918년 말부터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의 지도자와 언론, 교육계 등의 지식인 등 이른바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을 논의해 왔다. 그리고 1919년 2월 27일 독자적으로 독립선언을 추진하던 학생대표들과 '민족대표'들은 비밀리에 인쇄한 독립선언서를 종교·학생 조직을 통해 전국에 배포하고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월 28일 '민족대표'들은 "내일 많은 학생과 시민이 모이면 군중심리에 따라 뜻밖의 동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학생들과 약속한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 민족대표들은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 요리집 명월관 분점인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읽은 뒤 경무총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독립선언서

서명자 일동이 명월관 지점(분점)에 연행·구속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투항해 버렸다(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1989: 230~232).

3월 1일 탑골공원에 민족대표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강기덕과 김원벽, 한위건 등 학생대표 세 명이 태화관으로 달려가 '민족대표'들에게 장소 변경에 항의하면서 탑골공원으로 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국사편찬위원회 편, 1987: 267). 그러나 이들 학생은 "우리가 나서면 사태가 더 크게 번질 것이니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민족대표들의 답변을 듣고 돌아와야 했다. 민족대표들은 독립을 선언하여 이 운동에 도화선은 되었지만 '평화적인 방법'을 내걸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현장에서 지도하지 못하여 스스로 민족대표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셈이다. 또 민족대표들은 재판 과정에서 민중의 폭력시위에 대해 "우리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폭동은 우매한 것으로 우리의 독립선언과 폭동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한결같이 말했다. 또 일부 대표는 한일 '병합'에 대해서도 "조선이 병합된 것은 러일전쟁의 당연한 결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며, 조선 정치는 지독한 악정이어서 도저히 조선의 안녕·행복을 유지·증진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병합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피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여 일제의 조선 침략 논리에 매몰되어 있었다(김호일, 2005: 100~106).

이에 학생들은 오후 2시가 지날 무렵 탑골공원의 육각정에 뛰어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자 '조선 독립 만세'의 함성은 온 하늘을 뒤덮었다. 이 시간 평양, 의주, 원산, 선천, 안주, 진남포 등 6개 도시에서도 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2일에는 함흥, 대동, 해주, 개성 등으로 번져갔다(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1989: 246).

3·1 독립만세운동은 그동안 온 민족의 가슴속 깊숙이 묻어 두었던 독립 의지를 한꺼번에 터뜨린 것이었다. 만세 시위는 서울과 주요 6개 도시에서 중소 도시로, 다시 시골 장터로 이어졌다. 독립 만세 시위는 처음(3월 상순)에는 서울과 경기도, 황해도, 평안남도 등 종교 조직의 뿌리가 강한 곳에서 종교 지도자, 학생, 중소 상인 등이 이끌었다. 3월 10일 무렵부터는 차츰 지방의 군 단위 지역까지 번졌다. 3월 말, 4월 초에는 전국적인 시위로 발전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차츰 농민과 노동자가 운동을 이끌었고 시위 양상도 비폭력의 틀에 얽매이지 않았다(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1989: 239~242).

이때 청년, 학생, 종교단체의 하급 지도자, 마을의 유력자들은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시위를 조직하는 데 큰 몫을 했다. 이들은 시위 첫날부터 '민족대표'를 대신해 시위를 주도했을 뿐더러 독자적으로 3월 5일 서울 시위를 계획했고 실제로 주도했다. 특히 학생들은 서울을 비롯한 도시 지역에서 선언서, 각종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심지어 태극기, 독립만세기를 제작함으로써 시위를 확산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이 확산·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시위 군중은 스스로 경성의 국민회, 강경의 결심대, 개성의 광민회 등과 같은 비밀결사나 단체를 조직하여 시위를 꾸려 굳건하게 저항했다. 이들은 곳곳에서 격문이나 벽보, 포스터, 전단 등의 여러 선전물을 만들어 운동이 퍼져가는 데 이바지했다. 새로운 선전물인 신문의 종류도 『조선독립신문』, 『노농회보』, 『반도의 목탁』, 『충북자유보』, 『혁신공부』, 『각성호회보(覺醒號回報)』 등 30여 종에 이르렀다(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1989: 234~235).

이들 매체에는 독립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면서 민족의 총궐기와 결사 항쟁을 촉구하는 글이 많이 수록되었다.

> 대포 철함은 제군의 가슴 속에 있다. … 제군의 철함 대포로 천하의 어떤 물건인들 부서지지 않겠는가! 우리 신성형제는 생존하려면 분발할 것이요, 분발은 생존의 길이다(『각성호회보』 3호, 1919. 3. 18).

> 조선의 독립은 확실하다. 이때 우리 동포는 죽음을 맹세하여 분기하라(『반도의 목탁』 1호, 1919. 3. 7).

이어서 3월 1일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서울 등 도시에서 시위가 한때 주춤해지자 3월 5일 학생들은 남대문역(지금의 서울역) 앞에서 독자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고종의 장례식을 참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참배객들에게 운동을 전파하려는 것이었다. 강제 해산된 뒤에도 학생들은 등교 거부, 동맹휴업 등의 형태로 시위를 이어갔다. 나아가 공립 학교 거부, 일본인 교사 배척, 일본어 사용 배척 등 식민지 노예 교육을 거부했다.

노동자들도 시위와 동맹파업으로 운동에 앞장섰다. 3월 2일 종로 시위를 첫 출발로 3일에는 황해도 겸이포제철소 노동자 200여 명, 7일에는 서울의 동아연초

공장 노동자 500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9일에는 철도국 노동자가 파업에 이어 만세 시위를 벌이자 전차운전수·차장 등도 함께 참여했다. 3월 중순에는 서울의 여러 공장 노동자가 10% 정도밖에 출근하지 않아 대부분의 공장이 조업을 중단할 정도였다(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1989: 241). 이때 독립 시위를 계획하려다 해고된 철도기관수 차금봉(車今奉)은 3월 22일 봉래(오늘날 만리동) 철도 교차점 부근의 음식점에 아침을 먹으러 온 잡역 노동자와 전차 차장, 공장 직공, 자유 노동자, 일반 시민 700~800여 명을 이끌며 독립문까지 만세 시위를 벌였다(김인덕, 1995: 163). 그는 27일에도 만철 경성관리국 노동자의 시위를 이끌어내는 한편 서울역 앞에서 '노동대회'·'조선 독립'이란 깃발을 내걸고 몇천 명의 노동자 파업 시위를 이끌었다. 이 사건은 조선노동운동사상 파업 시위의 효시였다.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투쟁은 3월 하순부터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만세 시위를 다시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황해도 제철 노동자, 평양의 인쇄 직공, 직산·운산 금광 등의 광산 노동자들도 힘을 모아 일제와 맞서 싸웠다.

도시의 잡화상·곡물상·음식점 등 중소 상인들은 철시(輟市)하여 일제에 맞섰다(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편, 1989: 243). 3월 4일 평양, 선천의 철시에 이어, 3월 9일 서울 시내 주요 상점이 '경성시상민공약서'에 따라 철시했다. 이날 시작된 철시는 헌병과 경찰이 문을 다시 열라고 협박해도 굴하지 않고 20여 일 동안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철시는 민중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광범한 민중의 이해와 동조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서울에서 내려온 학생들의 선전 활동도 상인들을 철시 행동으로 이끌었다.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러한 시위는 급속하게 농촌으로 퍼져가면서 투쟁 방법도 다양해지고 투쟁 모습도 더욱 격렬해졌다. 농민들은 사람이 가장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고 또 시위를 확산하기에 가장 좋은 장날의 장터를 이용해 시위를 벌였다. 많은 경우 군중을 더 끌어들이려고 마을마다 전단을 뿌리거나 벽보를 붙이는 등 미리 준비를 했다. 이 밖에도 농촌 곳곳에서는 조선 후기 농민항쟁 때 썼던 봉화(烽火)·산호(山呼: 산에 올라가 독립 만세나 구호를 외치는 것) 등의 전통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만세꾼'이라 부르는 시위 지도자가 생겨나, 시위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만세꾼은 시위에 참가한 군중을 가리키기도 하나, '삼베 주머니로 도시락을 만들어 망태에 넣어' 원거리 시위에 참가하는 의도적인 시위 군중인 동시에 수십 명씩 떼를 지어 다니며 봉기

를 유도하거나 지역적 연계를 도모하는 이른바 '바람 몰이꾼'이기도 했다(조동걸, 1970).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격문을 뿌리며 농민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 우리 동포형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삼천리 강토를 탈환하라. 죽음은 한 번뿐이고 두 번도 아니다. 동포여 이때가 어느 때냐. 한 번 분발하라.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피와 피, 대한독립만세!(1919. 3. 15, 경상북도 청도군 용문면의 격문)

장터에 모인 시위 군중은 주동자가 연설을 하거나 격문을 읽고 나면 곧바로 태극기를 높이 흔들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일제 경찰과 군인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으면서 농민들은 맨손으로 외치는 평화 시위가 허망한 죽음만을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덧 농민들은 낫, 괭이, 몽둥이, 죽창, 도끼, 삽 등으로 무장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군중 사이에 총검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제 일제의 탄압에 부딪히거나 시위자, 주동자가 잡혀가면 바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또 이들은 면사무소, 군청 등을 습격해 세금 징수 장부 등을 불태우고 헌병주재소나 경찰관서를 습격하여 순사를 살해하거나 쫓아 버렸다. 금융조합, 시장 관리인 같은 일제의 착취 기구나 그 대리자들 그리고 일본인 지주나 상인, 고리대업자들도 공격했다. 이처럼 농민들의 항쟁은 일제의 통치 자체를 거부했고 그 바탕에는 생활상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었다(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1989: 252).

이에 일제는 이러한 비폭력 평화적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경찰과 헌병 이외에도 용산에 주둔한 보병 3개 중대와 기병 1개 소대를 동원했으나, 결사적으로 행진하는 시위대에 의해 저지선이 뚫리자 주동자로 보이는 학생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3월 하순에 접어들어 한국인들의 시위가 점점 치열해지고 확산되자 일제 군경은 시위대에게 무차별적으로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화성 제암리·천안 아우내·정주 곽산·남원 광한루·익산 이리 등 전국 각지에서 시위대에 총격을 가한 학살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만행이었다. 그리고 시위자들을 체포하여 가혹한 고문을 서슴지 않았다. 당시 일제의 통계에 따르면 3·1 운동 이후 3개월 동안 시위 진압 과정에서 7,509명이 사망했으며, 15,961명이 상해를 입었다. 46,948명이 구금되었고, 교회 47개소,

학교 2개교, 민가 715채가 소각되었다.

그러나 3·1 운동은 초기에 소수의 식자층과 학생이 주도했지만 점차 노동자, 농민, 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거족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했다. 조선총독부의 공식기록에 따르면 집회 참여 인원이 106만여 명이고 그중 사망자가 7,509명, 구속자가 4만 7,000여 명이다(국사편찬위원회 편, 1987: 576). 이러한 참여 규모와 피해자 수치는 한민족의 독립 의지와 저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넓혀 독립운동을 체계화·조직화·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은 그 성과라고 하겠다. 한편, 민중들은 3·1 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족의식과 정치의식을 높일 수 있었으며, 이는 1920년대에 다양한 사회운동과 조직이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은 참가 경험과 민족적 자각에 바탕하여 민족이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면서 학업과 사회 운동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기 시작했다.

2) 관·공·사립 전문학교 학생들의 만세시위운동

3·1 운동이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으로 시작되었지만 전국으로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관·공·사립 전문학교 학생들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다. 학생들이 민족대표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민중과 연대하는 데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민족대표자들의 논의와 별개로 운동을 이끌어나간 계기는 1919년 1월 6일 관수동 중국음식점 대관원(大觀園)에서 모인 기독교 인사 박희도와 전문학교 학생들의 회합이었다(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박희도 신문조서). 참석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한위건(韓偉健)과 연희전문학교 학생 김원벽(金元壁) 등은 보성전문학교 졸업생 주익(朱翼), 기독교 청년회 간사 박희도 등과 독립운동에 관해서 논의했다.

이후 박희도는 김원벽과 독립 문제를 재차 상의한 뒤, 같은 해 1월 26일 다가오는 봄에 전문학교 졸업 예정인 졸업생들을 기독교 청년회에 가입시킨다는 핑계를 대고 주익, 강기덕, 김원벽 외에 연희전문학교를 중퇴하고 배화여학교 교사

로 있던 윤화정(尹和鼎), 이공후(李公厚), 보성법률상업학교의 강기덕(姜基德), 경성의학전문학교 김형기(金炯璣) 등 8명을 대관원으로 초대했다. 이 모임에서 주익은 "우리도 조선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참석한 학생들과 합의를 보았다(장규식, 2002: 124). 이들은 신문과 잡지 등을 열람하러 중앙YMCA에 출입하다 만나기도 하고 서북학생친목회와 교남학생친목회 등을 통해 친분을 쌓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한위건이다. YMCA 회원이자 서북학생친목회의 간부인 한위건은 대관원 모임의 양대 축을 이루었던 학생 YMCA와 서북학생친목회의 인물들과 교분이 있었다. 또한 교남학생친목회의 김형기와는 같은 학교로, 윤자영과는 함께 정구를 치며 친분을 쌓았다. 대관원 모임이 한위건을 연결고리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장규식, 2002: 126).

한편, 세브란스병원의 직원인 이갑성은 박희도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같은 해 2월 1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음악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전문학교 대표인 김원벽, 김형기, 윤자영, 김문진, 배동석, 한위건 등을 초대하여 독립운동 전개 방안을 토의하고 그 자리에서 독립선언문 기초를 주익에게 맡길 것을 합의했다(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김원벽신문조서; 김호일, 2005: 100~113).

또한 김원벽, 한위건, 강기덕은 박희도와 접촉하여 각 전문학교의 책임자를 결정, 그들의 찬동을 받았으니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성전수학교: 김성득, 윤자영
경성의학전문학교: 김형기, 한위건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김문진, 이용설
경성공업전문학교: 김대우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 강기덕, 한창환
연희전문학교: 김원벽

이에 따라 김원벽은 동교 청년학생회장 이병주에게 학생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그의 동의를 얻고, 이병주는 회원 40명의 찬동을 얻어냈다(김호일, 2005: 103).

이렇게 학생들의 독립운동 거사계획이 진행되고 있을 때, 기독교계의 운동 모

의자였던 박희도가 천도교와 기독교가 연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교섭이 있으니 학생들은 독자적 운동을 중지하고 기성인들과 합동할 것을 제의해 왔다. 2월 20일 각 전문학교 대표들은 승동예배당(勝洞禮拜堂)에서 제1회 학생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전성득(전수학교), 김형기(경성의전), 김문진(세브란스의전), 김대우(경성공전), 강기덕(보성법률상업), 김원벽(연희전문)은 각자 학교대표로서 제반의 책임을 지고 이용설, 한위건, 윤자영, 한창식은 대표들이 체포될 때 동창생 규합을 담당했다(김호일, 2005: 103).

이후 2월 23일 김원벽은 박희도에게 손병희 등의 독립선언서 발표에 "한 구역인 경성에서 2개의 선언서를 발표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학생단의 선언서 발표를 중지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이틀 뒤인 2월 25일 각 대표들은 정동예배당 내 이필주 목사 집에 모여 3월 1일 전문학교 및 중등학교 정도 학생이 모두 3월 1일 2시 정각에 탑동공원에 집합하여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고, 상황에 따라 계속 각 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일대 독립운동을 결의했다(김진호, 2014: 19). 이러한 방안은 민족대표가 탑골공원에 나타나지 않거나 중등학교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전문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시위를 전개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도쿄 유학생들의 2·8 학생운동에도 자극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기성인들의 독립운동에 상당한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었다(김대상, 1969). 따라서 3월 1일 독립선언식이 요리점 태화관에서 민족대표들만의 행사로 끝났다면, 거족적인 독립만세시위운동으로서 3·1 운동은 불발에 그쳤을 것이다.

거사일이 가까워옴에 따라 학생들은 2월 26일 김문진, 이용설, 윤자영, 김탁원, 최경하, 나창헌, 박윤하, 김영조 등이 이필주 목사 집에 다시 모여서 학생들만의 독자적 시위는 3월 5일에 전개하되 기성층의 3월 1일의 시위에 합류할 것, 3월 5일에 전개할 독립운동에서 체포를 면한 학생은 뜻을 굽히지 말고 더욱 독립운동을 계속하여 최후 목적을 완수할 것을 결정했다(김호일, 2005: 104). 이에 따라 강기덕, 김원벽, 한위건은 중등학생 동원에 나섰다. 그 결과 경신학교, 경성고등보통학교, 중앙학교, 선린상업학교, 보성고등보통학교 등 많은 학생이 대열에 참가하기에 이르렀다.

독립만세시위운동 준비가 이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2월 26일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었고 강기덕은 2월 28일 밤 승동예배당에서 김문진의 손을 거쳐 이갑성에게서 독립선언서 약 1,500장을 인수했다. 이날 밤 승동예배당에는 전문

학교 대표자인 김문진·김형기·한창환·이용설 외 2, 3명과 중등학교 학생 김백평·장채극·전옥결·이규송·장기욱·전동환·이용재 등 십수 명이 모였다. 강기덕이 3월 1일 오후 2시 조선독립선언을 하고 선언서를 발표하며 만세운동을 할 것이니 각자 학생들을 결속하여 참가할 것과 독립선언서를 각 학교를 중심으로 배포하라고 전했다. 이어 김문진이 각 배포 장소를 지정하여 학생 12~13명에게 선언서 100~300장을 교부했다(김진호, 2014: 20).

이와는 달리 각 종교계와 연결된 학생들은 시내를 3개 지역으로 나누어 불교 학생들은 종로 이북, 기독교 학생들은 종로 이남, 천도교 학생들은 남대문 이외 각 지역을 담당하고 집집마다 선언서를 나누어 주었다.

드디어 대표 학생들이 학교 조례 시간을 이용해 독립만세시위의 취지를 전해 주자, 서울 시내 각급 학교 학생들은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를 기해 탑골공원으로 모여들었다. 4,000~5,000명의 학생들이 육각정 단상에 태극기를 내걸고 오후 2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태화관에서 1차로 독립선언을 하고 탑골공원으로 합류하기로 한 민족대표들이 예정을 바꾸어 현장에 나오지 않자 2시 30분경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인 한위건이 단상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이정식, 1988: 39). 이에 군중은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또는 독립만세를 고창하여 일제 및 세계 각국에 '조선인은 모두 독립 자유민이다. 조선은 한 독립국이 될 것을 요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탑골공원의 광경을 목격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이의경(필명 이미륵)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내가 공원에 갔을 때 이미 공원은 경관들로 포위를 당하고 있었다. 담장 내부는 단 열 발자국도 걷지 못하게 사람이 꽉 차 있었다. … 갑자기 깊은 정적이 왔고 나는 누군가가 조용한 가운데 연단에서 독립선언서를 읽는 것을 보았다. … 잠깐 동안 침묵이 계속되더니 다음에는 그칠 줄 모르는 만세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좁은 공원에서는 모두 전율했고, 마치 폭발하려는 것처럼 공중에는 각양각색의 삐라가 휘날렸고 전 군중은 공원에서 나와 시가행진을 했다. 우레와 같은 만세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삐라를 날리며 행진했다(이미륵, 1973: 163~164).

한편, 정오(正午) 태화관에서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길선주, 김병조, 유여대, 정춘수 등 4명이 빠진 29명이 모여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가 되자 한용운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최린이 태화관 주인 안순환(安淳煥)에게 민족대표들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있노라고 조선총독부에 전화를 하게 하여 모두 경찰에 연행되어 갔다.

반면에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마친 학생과 군중들은 가두시위행진을 했다. 이때 국장(國葬)으로 전국에서 올라온 민중이 합류하여 군중은 수십만 명에 이르렀다. 이에 탑골공원에서 시위에 나선 학생과 일반 시민들은 2대로 나뉘어 1대는 종로 1가 → 남대문역 → 서소문동 → 정동 미국영사관 앞 → 대한문 → 광화문 → 조선헌병대 앞 → 프랑스영사관 앞 → 소공동 → 을지로를 거쳐 충무로 2가까지 행진했으나 여기서 일경에게 저지당하여 해산했다. 다른 1대는 종로 1가 → 무교동 → 대한문 → 정동 미국영사관 앞 → 대한문으로 나와 여기서 2대로 또 갈라져 시위행진을 하다가 모두 충무로에서 해산당했다.

3월 1일 오후에 종로 2가 YMCA 건물 2층에서 시위 현장을 내려다본 기독교계의 거물 윤치호는 일기에 목격담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1시 30분쯤 거리 쪽에서 군중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거리를 가득 메운 학생들과 시민들이 '만세'를 외치며 종로 광장(지금의 종각 앞 사거리를 가리킴)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우리의 눈에 들어왔다. 소년들은 모자와 손수건을 흔들었다. 이 순진한 젊은이들이 불을 보듯 빤한 위험 속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 곧바로 군인, 기마 경찰, 형사, 헌병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그들은 군중 속에서 주동자들을 붙잡으려고 바삐 움직였다. 시내 전체가 흥분의 도가니였다(김상태, 2001: 77~78).

서울에서의 3·1 만세 시위는 이처럼 학생이 주도했으며 시민과 인산에 참가하러 상경한 많은 군중이 합세하여 대대적인 시위로 발전했던 것이다.

이후 학생들은 계획했던 대로 3월 5일 학생들만의 시위운동 준비에 들어갔다. 전날인 3월 4일 오전 한위건, 강기덕, 김원벽은 시내 각 전문학교 및 중등학교 대표자들을 배재고등보통학교 기숙사에 모이게 했다(김호일, 2005: 107). 이때 참석한 학생들은 3월 1일 이전에 이미 결정한 학생 주최의 제2차 만세 시위를 3월 5일 오전 9시 남대문역 앞에서 강행할 것을 결의하고 당일의 지도자로 보성전문학교의 강기덕, 연희전문학교의 김원벽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표

[표 2-2-1] 3·1 독립만세운동 당시 학생단의 진용

구분	이름	나이	출신	학교	비고
민족 대표	박희도	31세	황해도 해주	숭실전문학교 졸업	중앙YMCA 간사
	이갑성	34세	경북 대구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중퇴	세브란스병원 제약주임
학생 대표	김원벽	26세	황해도 안악	연희전문학교 3년	연전 YMCA 회장 역임, 경신학교 교사
	강기덕	30세	함남 덕원	보성법률상업학교 3년	서북학생친목회 간부
	김형기	24세	경냠 양산	경성의학전문학교 4년	YMCA, 교남학생친목회
	김문진	?	경북 대구?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3년	세브란스의전 YMCA 회장
	전성득	?	함경도?	경성전수학교 재학	서북학생친목회?
	김대우	20세	평남 강동	경성공업전문학교 2년	서북학생친목회?
배후 세력	한위건	24세	함남 홍원	경성의학전문학교 2년	YMCA, 서북학생친목회 간부
	이용설	25세	평남 평양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4년	세브란스의전 YMCA 회장 역임
	윤자영	26세	경북 청송	경성전수학교 1년	교남학생친목회

출처: 장규식(2002: 132).

2-2-1]과 같이 학생단의 진용이 구성되었다.

이어서 그날 밤 강기덕, 한위건, 한창식, 장기욱(張基郁), 김옥쾌(金玉快) 등은 별도로 시위 전개의 구체적 방법을 논의했다. 또한 김종현(金宗鉉, 중동학교), 최강윤(崔康潤, 보성학교), 채순병(蔡順秉, 국어보급관) 등은 안국동 박해병 집에 동숙하면서 5일 오전 8시 30분 남대문역 앞에서 제2차 만세 시위를 전개할 때 각자 태극기를 가지고 참가하라는 요지의 「경고」라는 격문 400장을 등사했다(김호일, 2005: 108). 그날 밤 최강윤은 수송동·송현동 방면, 김종현은 중학동 방면, 채순병은 소격동 방면을 담당하여 일경 몰래 집집마다 배부했다.

드디어 3월 5일 9시경 수천 명의 중등 이상 학생들이 남대문역 앞에 집결했다. 그것은 3월 3일의 인산을 보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군중이 많을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시위에는 평양 방면의 학생들이 서울 시위에 가담하기 위해 200명 이상의 학생결사대를 조직하여 서울로 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터였다.

이날의 시위 계획에 따르면 남대문역 앞에서 만세 시위를 벌인 다음 남대문에서 덕수궁으로 향하는 일정이었다. 오전 8시 전후 남대문역 앞에 운집한 군중이 수만 명에 이르자 학생들은 강기덕, 김원벽이 미처 도착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각종 유인물을 군중에게 나누어주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남대문 방면으로 시

위를 전개했다. 이때 총지휘자인 강기덕, 김원벽은 예정 시각에 닿지 못하자 인력거를 타고 '조선독립기'를 휘날리며 제2회 시위운동을 선포했다(김호일, 2005: 109). 군중은 이들의 지휘에 따라 일제히 독립만세를 부르며 남대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군중이 남대문을 지나치려 할 때 일경의 저지를 받았고 이때 강기덕, 김원벽 등 많은 학생들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학생과 군중들은 남대문의 저지선을 뚫고 두 갈래로 나뉘어 시가행진을 감행했다. 한 갈래는 남대문에서 조선은행 앞을 거쳐 종로 보신각에 집결했고, 다른 한 갈래는 남대문, 태평로, 대한문 앞, 무교동을 거쳐 종로 보신각에서 합류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했다. 그러나 일경의 탄압으로 보신각 앞에서 시위대는 해산당하고 말았다. 또한, 이날 오전 11시에는 고양군 흥영학교 여학생 60여 명이 마포 방면으로 진출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려다 해산당하기도 했다(김호일, 2005: 109).

1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하고 많은 사상자와 수백 명이 체포되어 오전의 시위운동은 실패했지만, 학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이날 밤 11시경 시내에 있던 학생들과 도쿄 유학생 등 63명이 다시 송현동 62번지 이인식(李仁植) 집에 모여 사후 수습과 앞으로의 시위 전개 방법을 숙의하던 중 일경의 급습으로 전원 체포되었다. 일경은 6일 새벽 3시부터 사건 관계자 수색에 나서 43명이 다시 체포되고 『독립신문』, 『국민회보』, 『경고문』 등의 독립운동 관련 문건들이 압수당했다. 아울러 일제는 경성공업전문학교를 비롯해 4개 관립 전문학교의 수업을 3월 4일, 5일 양일을 시작으로 중지시켰다(정세현, 1975: 127). 학생들이 학교에 모여 시위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3·5 독립만세시위는 이처럼 학생으로만 구성된 지도부의 주도 아래 최대의 인원이 참가한 독립만세시위로서 이날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지방 학교와 학생들의 독립만세시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지방 학교 학생이 여기에 고무되어 자신의 고장 시위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3·5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한 일부 전문학교 학생은 서울과 도시 지역에서 벌인 만세 시위 경험에 힘입어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시위를 선동하고 조직함으로써 만세시위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산의 대표적인 만세 시위로 일컫는 구포 만세 시위의 경우 1919년 3월 29일 경성의학전문학교생인 양봉근(楊奉根)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이곳 면서기 임봉래

(林鳳來)를 만나 서울의 3·1 독립만세운동 실황을 상세하게 전하고 계속해서 김옥겸(金玉兼)·유기호(柳基護) 등과 거사하기로 결정하여 태극기 수백 매를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다. 그는 이날 1,2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구금된 동지들의 석방을 외치며 주재소로 돌진하는 등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한편 3·5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그들만의 시위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만세시위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단적인 예로 경성약학교 학생인 김공로와 엄창근 등은 서울 봉래동(蓬來洞) 공터에서 노동자의 만세운동 참가를 촉구하는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중림동(中林洞), 화천정(和泉町, 현 순화동) 부근의 노동자 300~400명을 포함하여 700~800명의 군중이 참여했다. 이들은 의주로로 진출했다. 선두에는 경성약학교 학생 엄창근이 '노동자대회',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손에 들고 행진했다. 이들 시위 대열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아현(阿峴) 고개까지 행진했고, 다른 대열은 독립문까지 이르렀다(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이에 당황한 일제는 종로경찰서와 본정(本町)경찰서, 고양군 주둔 일본군 병력까지 출동해 강제로 시위를 해산시켰다.

그 밖에 일부 학생은 일경의 체포를 피하면서 독립만세시위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경성전수학교 학생 최치환은 유병륜(劉秉倫)의 집에서 장종건(張悰鍵)과 함께 『조선독립신문』 제5호를 약 700매 인쇄하여 각 집에 배부했다. 3월 15, 16일경 같은 장소에서 『조선독립신문』 제6호를 약 900매 인쇄하여 배포케 했다. 이어서 16, 17일경 견지동 이인렬(李麟烈) 방에서 『조선독립신문』 제7호 원고를 장종건에게 받아 인쇄하게 했다. 3월 22, 24일에는 장종건과 함께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龍江面) 공덕리(孔德里) 남정훈(南政勳)과 공모하여 『조선독립신문』 제8호·제9호를 작성하여 제8호는 약 600매, 제9호 및 부록은 약 2,000매를 인쇄하여 각지에 배포했다(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3·1, 3·5 독립만세시위 이후 서울 시내 학교의 학생 중 시위에 가담하여 구금된 학생의 학교별 상황을 보면 [표 2-2-2]와 같다.

두 차례 만세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을 비롯한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이 57명에 이른다. 이 수치는 전체 학생 중 33% 이상에 해당하며 당시 학생 정원에 비추어 보면 매우 높았다. 특히 건학 이념이나 학교 통제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관립 학교 학생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사립 전문학교 학

[표 2-2-2] 3·1 만세 시위와 3·5 만세 시위 이후 학교별 구속 학생 현황

학교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비고
경성전수학교	4	5	3	-	12	
경성의학전문학교	10	9	5	7	31	
경성공업전문학교	4	9	1	-	14	
경성고등보통학교	3	5	9	5	22	
사립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3	-	-	1	4	
사립 연희전문학교	3	2	1	1	7	
사립 배재고등보통학교	3	1	2	3	9	
사립 휘문고등보통학교	1	1	-	2	8	
사립 보성고등보통학교	-	8	5	2	15	
사립 보성법률상업학교	1	1	2	-	4	
사립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	1	1	-	2	
이화학당	-	1	-	1	2	
정신여학교	1	1	-	-	2	
불교중앙학교	1	-	-	-	3	학년 미상
경신학교	-	-	-	-	1	〃
국어보급관	-	-	-	-	2	〃
중동학교	-	-	-	-	3	〃
사립 조선약학교	6	-	-	-	6	
사립 중앙학교	5	5	1	5	16	
사립 선린상업학교	1	7	-	-	8	
합계					171	

주: 이 숫자는 이후 신문을 받았던 학생 수와 조금 다르다. 중간에 풀려났거나 추가로 신문을 받는 학생이 늘어나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매일신보』, 1919. 5. 13; 김호일(2005: 111~112).

생이 단지 2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의 참여 비율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이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 이미륵이 언급하고 있듯이 '반(半) 왜놈'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교 당국의 혜택을 받는 데다가 취직이 보장된 엘리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과 함께 공부하면서 당한 차별과 매우 밀접했다(이미륵, 1973: 162). 단적인 예로 한국인 경성의학

전문학교 학생들은 일본인 학생들이 특별의학과에 편성되어 많은 혜택을 받는 것에 큰 불만을 품었다. 그리고 이들 학생은 평균 연령이 매우 높았다. 만세 시위를 하다가 체포된 한국인 경성의학전문학교생들의 평균 연령이 23.38세로 이들은 대한제국 강점 이전 1900년 전후에 태어나 대한제국 정부 아래 보통교육을 받은 세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성공업전문학교 학생의 경우도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보다 평균 연령이 낮지만, 이들 역시 대한제국 정부 아래 민족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리고 일제 강점 이후 관립 전문학교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선배와 교수들을 통해 자신들의 관립 전문학교가 대한제국의 광무황제 시기에 '위국학부(爲國學府)'라는 이름으로 탄생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동아일보』, 1926. 1. 19). 따라서 이들 학생은 1910년 이후 일제의 식민교육을 받았음에도 1910년 이전 독립국가 시절에 민족적 정체성을 이미 함양했다.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이의경(이미륵)은 자신의 참여 배경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 그 [시위 참가 결정] 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유구한 문화와 우리 조상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일본 놈은 얼간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우리들은 맨 처음 발명된 인쇄 활자며, 거북선, 도자기 기술, 특별한 종이와 우리들 조상이 이 세계의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했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비교적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인 [허]익원까지도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
> "잘 됐어, 하자!"
>
>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이미륵, 1973: 162~163).

당시 한국인 학생들은 1910년 이후 일제의 식민사관 주입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독창적 문화를 어린 시절부터 학습함으로써 자부심이 대단했다. 예컨대 세계 최초의 인쇄 활자는 프랑스 서지학자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이 1901년 『한국서지(韓國書誌)』에서 소개한 『직지심체요절』 인쇄본을 가리키는데 당시 한국인 학생들이 이러한 정보를 학교나 신문을 통해서 습득했음을 보여준다(문중양, 2006). 또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제작한 거북선을 가리키는데 이는 많은 학생이 충무공 이순신의 임진왜란 승리를 알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들 전문학교 학생은 우수하고 독창적인 한민족의 후손이자 왜군을

[표 2-2-3] 1919년 2학기 경성 소재 중등 이상 학교의 개교 상황

관립 학교	재적 수 (명)	출석 수 (명)	출석률 (%)	사립 학교	재적 수 (명)	출석 수 (명)	출석률 (%)
경성고등보통학교	631	402	64	보성고등보통학교	309	74	24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160	106	66	휘문고등보통학교	290	108	37
경성공업전문학교	107	30	28	중앙학교	242	40	17
경성의학전문학교	133	59	44	양정고등보통학교	183	86	47
경성전수학교	122	44	58	계	1,024	308	30
계	1,153	71	58	합계	2,177	976	45

출저: 강덕상 · 梶村秀樹 편(1966: 509); 정세현(1975: 127~129); 김기주(2010: 14).

격파한 이순신 장군의 후예로서 일제의 무단통치와 차별 정책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사상자와 구속자가 늘어났음에도 학생들의 시위 열기는 동맹휴학으로 맞서거나 결석으로 이어졌다. 경성전수학교의 경우, 6월 19일 급장이 수업 후 교사에게 동창생이 감옥에 구류되었으므로 동정심에서 맹휴하겠다고 하여 학교에서는 휴학을 허용할 정도였다. 2학기에 들어와서도 출석률은 여전히 낮았다. [표 2-2-3]은 1919년 2학기 경성 소재 중등 이상 학교의 개교 상황이다.

[표 2-2-3]에 따르면 관립 학교 학생들의 출석률이 관립 학교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사립 학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높은 편이 아니다. 참고로 [표 2-2-3]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사립 전문학교인 연희전문학교는 재적 학생 37명 중 출석자는 5명이었다. 따라서 경성공업전문학교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출석률이 [표 2-2-3]에서 보다시피 사립 학교의 평균 출석률보다 낮을 정도로 학생들의 저항 열기가 일제의 탄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제3절 관립 전문학교 및 조선약학교 학생들의 시위 참여 상황

1)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은 구속자의 숫자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학생 중 20%에 이를 정도로 다른 관·공·사립 전문학교 학생들에 비해 참가자가 많았다. 서울에서만 입건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 참가를 이유로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매일신보』 보도에 따르면 1학년 20명, 2학년 19명, 3학년 6명으로 총 45명이었다(『매일신보』, 1919. 4. 26). 예심종결서에 언급된 3학년 학생 3명 이외에 추가로 3명이 정학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주동자로 도피한 학생들은 유상규처럼 퇴학을 당했다(최규진·황상익·김수연, 2009: 160). 특히 학생들의 항일의지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4월 20일 이래 학생 총수 197명 중 매일 11~63명만이 등교함으로써 정상 수업이 어려웠다(정세현, 1975: 127).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이 이처럼 만세 시위에 적극 참가한 데는 무엇보다 만세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형기, 한위건 같은 출중한 인물들의 지도력과 참가 학생들의 민족의식이 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김형기와 한위건은 2월 20일 서울 승동예배당 전문학교 대표 학생의 모임인 첫 학생간부회의에 적극 참여했고 이어서 2월 26일 이필주 목사 집 회합에는 같은 학교 학생 김탁원(金鐸遠), 최경하(崔景河), 나창헌(羅昌憲) 등 동료 학생들이 참석했다. 특히 한위건은 조선독립단 명의로 「동포여 일어서라」를 작성하여, "우리들이 민족자결에 따라 행하는 이 거사는 결코 경거망동이 아니다. 동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분기하라"고 촉구할 만큼 지도적 위치에서 맹활약했다(국사편찬위원회 편, 1992: 293) 또한, 김탁원은 "평화적 수단으로 일본에 독립을 요구하고, 만약 일본이 이를 허용치 않는다면 세계의 여론을 환기시킬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나아가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여 고향인 평안남도 강서에서 개업을 한 강기팔은 함종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표 2-2-4]는 3·1 운동에 참가한 죄목으로 입건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

[표 2-2-4] 3·1 독립만세운동 참가로 입건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성명	연령	학년	본적
이형원(李亨垣)	21	1	함남 북청군 청해면 덕음리 1665
이익종(李翼鍾)	29	2	경기 진위군 고덕면 율포리 25
이규선(李奎璿)	30	4	함남 장진군 북면 구정리 1의 3
이강(李橿)	20	2	함남 북청군 청해면 승평리
김성주(金成柱)	29	4	평북 용천군 부라면 덕암동 3의 1
김형기(金炯璣)	24	4	경남 양산군 상북면 외석리 189
김종하(金鍾夏)	20	1	함남 함흥군 함흥면 신창리 84
김병선(金秉璿)	26	2	함남 이원군 서면 남문리
김탁원(金鐸遠)	22	4	대저부 동성정
김영진(金永珍)	27	4	경기 수원군 수원면 신풍리 420
김중익(金重益)	24	4	평북 강계군 읍내면 서부동 366
김창식(金昌湜)	24	1	평남 순주군 군내면 관하리
김병조(金炳祚)	21	1	평남 대동군 임원면 상오리 3의 4
김양수(金瀁秀)	20	2	평남 평원군 한천면 감팔리
김봉렬(金鳳烈)	22	1	평양부 수옥리 26
정인철(鄭寅喆)	21	1	황해 재녕군 재녕면 문창리 60
오용천(吳龍天)	22	1	평북 철산군 고성면 중부동
오태영(吳泰泳)	23	1	함남 정평군 부내면 문봉리
최경하(崔景河)	22	4	함남 문천군 도초면 주교리
장세구(張世九)	21	2	경기 김포군 양동면 가양리 1의 5
방천경(龐天慶)	24	3	경성부 임정 199
윤민섭(尹旻燮)	29	2	평북 의주군 광평면 상광동
송영찬(宋榮璨)	22	4	황해 안악군 읍내면 수삼리
한병만(韓秉萬)	22	2	함남 함흥군 주서면 나촌 2의 4
함태홍(咸泰鴻)	27	2	함남 함흥군 주서면 오리 26
함병승(咸秉昇)	24	4	경성부 숭삼동 105
강학룡(姜學龍)	27	3	평북 정주군 안흥면 호현리
나창헌(羅昌憲)	24	2	평북 희천군 진면 행천동 30의 10
전진극(全鎭極)	27	1	함남 북청군 가회면 종고리 6
서영완(徐永琓)	21	1	부산 부좌천동
허익원(許益元)	24	3	평북 용천군 내중면 송산동
허영조(許永祚)	23	4	부산부 초량동 531
현창연(玄昌燕)	20	1	함남 함흥군 주서면 서상리 39
김태하(金泰河)	22	4	충북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570
유완영(劉完榮)	21	1	평남 평원군 숙천면 김산리 119
김동익(金東益)	20	2	경성부 다옥정 1의 5
길영희(吉瑛羲)	20	1	평북 희천군 읍내면 읍상동 93
백인제(白麟濟)	22	3	평북 정주군 남면 남양동 324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편(1990: 3~17); 국가기록원 소장, 해당자 「판결문」.

의 명단이다.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은 해외로 도피하여 형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의경처럼 영원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그 밖에 옥고를 치르지 않았지만 학교 측의 징계로 많은 학생이 학교를 떠나야 했다. 퇴학생의 경우, 예년에는 매년 1~2명 나왔지만 1919년에는 79명이나 나왔다. 투옥된 학생 30여 명과 기타 중도 퇴학한 학생을 제외한 40여 명은 투옥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힘들게 입학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던 것이다.

또한 옥고를 치른 뒤 복학하여 학문적인 업적을 쌓은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 가운데 단연코 백인제(白仁濟)를 들 수 있다. 그는 1899년 평안북도 정주 출신으로 이승훈이 설립한 오산학교를 거쳐 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1919년 3·1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예심재판을 거쳐 10개월 만에 출옥했다. 학교는 퇴학당한 처지여서 중국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아 포기하던 중 복학을 허용하는 통보를 받고 1920년 4월 4년생으로 복교했고, 1921년 3월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후 조선총독부의원에서 부수(조수보다 낮은 지위)와 의원을 지내는 동안 논문 「실험적 구루병의 연구(전편): 실험적 흰쥐 구루병의 생성 및 그 일반적 제 검색」으로 1928년 4월 6일 도쿄제국대학 의학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백낙환, 1999: 89). 심호섭, 최일문에 이은 세 번째 박사학위 취득이었다. 이어서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여섯 번째 모교 강사가 되어 이후 1941년 말까지 외과 주임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외과 과목을 가르쳤다. 그리고 외과의사로서 실력을 인정받아 일본이나 만주에서 환자들이 찾아올 정도였다. 해방 후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와 경성대학 의학부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1946년 10월 새롭게 탄생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진으로 참여했다.

2)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학생들 중에서 3·1 운동에 참가하여 체포된 숫자가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무엇보다 학생 지도부에 김대우 같은 학생이 학교 대표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는 2월 20일과 25일 3·1 독립만세운동 준비 모임에 적극 참여했다.

이 가운데 양재순(梁在恂)은 직조업자 김호준(金鎬俊) 등과 함께 3월 8일에서 11일까지 『각성호회보』를 1호에서 4호까지 각 호 약 80장씩 인쇄하여 배포했다(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양재순 신문조서). 또한, 3월 8일 조선독립 민족대회 명의로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고문 참의, 기타 조선인 고등관에게 서장을 보내 "세계의 대세에 통요한 각하가 속수방관하고 있고, 남녀학생, 노동자가 의거를 하고 있는 때에 한양 시내의 관리가 동맹퇴직하면 용서받으리라"고 경고했다. 조선인 형사·순사보에게도 경고장이 발송되었다.

김세룡은 당시 경성공업전문학교 부속공업전습소 2년생으로, 3월 6일 관훈동의 자기 집을 방문한 경성보통학교 3년생인 박노영(朴老英)과 함께 독립 취지를 고양하는 격문을 발행하기로 결의했다(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격문의 원고는 3·1 학생 만세 시위의 주도자인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한위건에게 부탁하여, 방재룡(方在龍)·박수찬(朴秀燦)과 함께 유석우(庾錫祐)에게 등사판을 빌려 자기 집에서 조선독립단(朝鮮獨立團) 명의로 된 격문 800여 매를 인쇄했다. 민족대표 33인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을 쟁취하자는 내용으로, 3월 8일 박수찬이 관훈동 일대에 250여 매를 배포하고, 소격동 신용식(申傭植)의 집에서 방재룡이 주선한 사람에게 250여 매를 전달해 서울 일대에 배포하도록 했다. 한편 그는 가회동 조홍식(趙弘植)의 집에서 최사열(崔士烈)에게 50여 매를 전달하고 그 동리에 배포케 하는 등 독립정신을 고취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성공업전문학교는 3월 25일 졸업식을 거행했다. 한국인 학생은 한 사람밖에 참석하지 않아 일본인만의 졸업식이 되었다(『매일신보』, 1919. 3. 26).

[표 2-2-5]는 3·1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 죄목으로 입건된 경성공업전문학교 학생들의 명단이다. 그 밖에 옥고를 치르지 않았지만 학교 측의 징계로 많은 학생이 학교를 떠나야 했다. 퇴학생의 경우, 예년에는 경성공업전문학교 본교와 부속공업전습소에서 각각 5~10명, 20~30명 정도 나왔지만 1919년에는 각각 48명과 49명으로 총 89명에 이르렀다. 투옥된 학생 10여 명과 가정형편으로 중도퇴학한 기타 학생을 제외한 30여 명은 투옥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힘들게 입학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것이다.

[표 2-2-5] 3·1 독립만세운동 참가로 입건된 경성공업전문학교 학생

성명	연령	학년	본적
손홍길(孫洪吉)	28	2	함남 북청군 양화면 호만포리
이형영(李亨永)	24	공업전습소 전습생	전남 여수군 여수면 서정
김세룡(金世龍)	18	2	평북 의주군 광성면 성외동
김대우(金大羽)	20	2	평남 강동군 강동면 하달리 24
박동진(朴東鎭)	20	2	평북 정주군 갈산면 익성리 7의 1
박창배(朴昌培)	20	2	평남 강서군 강서면 정화리
안상철(安尙哲)	22	1	함남 함흥군 함흥면 신창리 24
진연근(陳演根)	22	2	함남 홍원군 룡원면 운동리 114
유만종(劉萬鍾)	21	공업전습소전 1년생	경기 이천군 설성면 수산리
주종의(朱鍾宜)	22	3	함남 함흥군 천서면 운동리 2의 9
양재순(梁在順)	22	2	경성부 광희정 1정목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편(1990: 3~17); 국가기록원 소장, 해당자 「판결문」.

3) 경성전수학교

경성전수학교 학생들 중에서 3·1 운동에 참가하여 체포된 숫자는 여타 관립 전문학교에 못지않게 많다. 이는 무엇보다 학생지도부에 윤자영 같은 걸출한 학생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는 2월 1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음악회를 내걸고 열린 전문학교 대표 모임에 참석할 정도로 일찍부터 지도부 모임에 참석했다. 이후 그는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제1차 만세 시위 실패 이후를 대비해 배후에서 활동했다. 그럼에도 그는 탑골공원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되었다(임경석, 2008: 21~22).

경성전수학교의 많은 학생이 3·1 만세 시위에 참가하자 학교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휴교에 들어갔고 개교 이후 결석자가 많을 것을 우려해 개교일자도 잡지 못했다. 졸업 예정자도 1919년 4월 현재 45명 가운데 태반이 시험을 보지 않는 실정이었다(『매일신보』, 1919. 4. 26). [표 2-2-6]은 3·1 운동에 참가하여 입건된 경성전수학교 학생들의 명단이다. 1923년 『경성법학전문학교일람』의 졸업자 명단과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징역을 면했지만 징계로 인해 학교를 떠나야 했다. 퇴학생의 경우, 예년에는 매년 10명 정

[표 2-2-6] 3·1 독립만세운동 참가로 입건된 경성전수학교 학생

성명	연령	학년	본적
이공후(李公厚)	22	3	평북 태천군 원면 안심동
이유근(李有根)	22	1	충북 청주군 강서면 수의리 74
이남규(李南圭)	23	2	경기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554
박세균(朴世均)	21	3	함남 함흥군 하조양면 상한리
박승영(朴勝英)	21	2	평북 박천군 덕안면 남오동
박윤하(朴潤夏)	25	1	평남 순천군 오운면 초송리 1의 2
정구철(鄭求喆)	22	1	충북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77의 2
윤자영(尹滋瑛)	26	1	경북 청송군 청송면 김곡동 749
한수룡(韓秀龍)	20	2	함남 함흥군 함흥면 풍서리
한창달(韓昌達)	23	2	함남 신흥군 가평면 풍상리
임승옥(林承玉)	26	2	평남 룡강군 다미면 난마리
최치환(崔致煥)	23	1	평북 의주군 월화면 오천동 4통 7호
김영조(金英洮)	22	2	평남 평원군 조운면 갈산리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편(1990: 3~17); 국가기록원 소장, 해당자 「판결문」.

도 나왔지만 1919년에는 35명이나 나왔다. 투옥된 학생 약 13명과 기타 중도 퇴학한 학생을 제외한 10여 명은 투옥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힘들게 입학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

4) 조선약학교

조선약학교는 개교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립 전문학교였지만 이 학교 학생들도 다수가 3·1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 특히 2월 28일 밤 조선약학교 대표 전동환(全東煥)·이용재(李龍在)는 강기덕과 한창환에게 독립선언서 100장을 전달받아 같은 학교 학생들을 통해 동대문 지역에 배포함과 동시에 다음날 학생들을 인솔하여 탑골공원에 집합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국사편찬위원회 편, 1992: 262~264). 박희봉은 만세운동 당일에 사용할 태극기 등을 제작하는 한편 동지 규합에 힘을 쏟았다. 3월 1일 오후 2시 30분경 탑골공원에서 거행된 독립선언식에 참가한 뒤, 시위행렬의 선두에 서서 보신각과 남대문 등지를 비롯해 시내 각처를 행진하면

[표 2-2-7] 3·1 독립만세운동 참가로 입건된 조선약학교 학생

성명	연령	학년	본적
김유승(金裕昇)	26	1	함남 북청군 덕성면 니망지리 15의 5
김광진(金光振)	21	1	평남 성천군 성도면 흥덕리
박준영(朴俊榮)	23	1	경성부 죽첨정 1 정목 91
박병원(朴炳元)	23	1	평북 의주군 비현면 노남동 8의 3
박흥원(朴興源)	23	1	경기 개성군 송도면 동본정 171
박희창(朴喜昌)	21	1	경북 상주군 모동면 수봉리 5의 3
오충달(吳忠達)	24	1	강원 통천군 학이면 송현리 299
전동환(全東煥)	34	1	함남 풍산군 안수면 감토리 9의 4
김정오(金正悟)	22	1	경남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강일영(姜日永)	19	1	경성부 다옥동 5
김용희(金用熙)	19	1	경성부 사직동 190
이인영(李寅永)	19	1	경성부 팔판동 157
정태화(鄭泰和)	24	1	황해도 해주군 나덕면 통산리 507
이응재(李龍在)	25	1	함북 성진군 학성면 성진욱정 234
김공우(金公瑀)	18	1	경성부 중림동 52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편(1990: 3~17); 국가기록원 소장, 해당자 「판결문」.

서 만세 시위를 전개했다.

한편, 조선약학교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노동자와 연대하여 시위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3월 22일 오전 9시 반경 경성약학교 학생 김공우와 엄창근은 휘문고등보통학교 학생 정지현 등과 함께 중림동·순화동 지역의 노동자 300~400명을 포함한 군중 약 700명을 봉래동 공터에 모이게 하여 노동자의 독립운동 참가를 촉구하는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1989: 248). [표 2-2-7]은 3·1 운동에 참가하여 구금된 조선약학교 학생들의 명단이다. 1935년 『경성약학전문학교일람』의 졸업자 수와 비교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징역을 면했지만 징계로 인해 졸업하지 못했다. 그 밖에 입건되지 않았지만 징계를 받아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으리라 추정된다.

제4절 3·1 독립만세운동 후 관립 전문학교 및 조선약학교 출신 독립유공자의 삶

3·1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 관립 전문학교 및 조선약학교 학생들은 일제의 체포와 신문, 징역 등으로 온갖 고초를 당했다. 그리고 주동자가 아니어서 방면되었지만 학교에서는 징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표 2-2-8]~[표 2-2-11]은 3·1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일제에 옥고를 치른 학교별 3·1 운동 독립유공자의 명단이다.

1) 경성의학전문학교

이들 중 일부는 옥고를 치른 뒤 복학하여 졸업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편을 잡거나 의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일부는 사회운동에 관여하여 조국의 독립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이들 중 3·1 운동 후에도 사회운동과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행적을 국가보훈처에서 편찬한 『독립유공자공훈록』과 기타 문헌에 입각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길영희

3·1 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후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한 그는 교육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1923년 배재고등보통학교에 편입했다. 1925년에는 일본으로 유학,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廣島高等師範學校) 지력과(地歷科)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배재고등보통학교와 경신고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했다. 한편 1938년경부터는 인천에서 농촌계몽운동과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 김영철

3·1 운동 이후 일제의 검속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 그는 1919년 5월에 신현구(申鉉九) 등에 의해 조직된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표 2-2-8]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 독립유공자

이름	생몰	훈격	출신	형량
길영희(吉瑛羲)	1900. 10. 9~1984. 3. 1	대통령표창(2005)	평북 희천	보안법 ·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김영철(金永喆)	1898. 10. 27~1987. 7. 28	건국포장(2000)	경북 영일	도피
김창식(金昌湜)	1896. 12. 23~1970. 1. 4	대통령표창(1993)	평남 순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김탁원(金鐸遠)	1898. 7. 16~1940. 3. 14	애족장(2007)	경북 대구	징역 7월
김형기(金炯璣)	1896. 8. 9~1950. 8. 20	애족장(1990)	경남 양산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나창헌(羅昌憲)	1896. 1. 29~1936. 6. 26	독립장(1963)	평북 희천	구금
송영찬(宋榮璨)	1898. 7. 2~1966. 8. 25	건국포장(1992)	황해 안악	출판법 ·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유상규(劉相奎)	1897. 11. 10~1936. 7. 18	애족장(1990)	평북 강계	도피
이의경(李儀景, 이미륵)	1899. 3. 8~1950. 3. 20	애족장(1990)	황해 해주	도피
이익종(李翼鍾)	1898. 4. 20~1950. 10	건국포장(1995)	경기 진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이형원(李亨垣)	1899. 10. 27~1969. 11. 17	대통령표창(1993)	함남 북청	보안법 ·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최경하(崔景河)	1894. 7. 24~1989. 1. 26	애족장(1990)	함남 문천	보안법 ·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7월
한위건(韓偉健)	1896~(1937)	독립장(2005)	함남 홍원	도피
함태홍(咸泰鴻)	1893. 9. 9~1929. 12. 2	대통령표창(1993)	함남 함흥	보안법 ·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허영조(許永祚)	1897. 9. 15~1929. 10. 10	대통령표창(1996)	부산	보안법 ·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홍치학(洪致學)	?~1919. 3	애국장(1998)	평북 선천	옥중에서 순국

출처: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여기서 독립운동의 선전 활동과 재정자금의 조달, 국내 조직망을 통한 임시정부 연통부(聯通府)의 역할 등을 수행했다. 한편, 그는 조선독립대동단에도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회 각층의 인사들을 단원으로 포섭하여 전국적인 조직을 계획하고 주로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선전 활동을 전개했다. 이어서 〈선언서〉, 〈경고문〉, 〈일본 국민에게 고함〉 등의 항일 문건을 제작하여 국내 각지는 물론 중국을 거쳐 파리강화회의의 각국 대표 및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그는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20년 12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죄처벌령, 출판법,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 김탁원

3·1 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후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단체를 조직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다. 좌우 합작을 추구했던 신간회(新幹會)에서는 집행위원 및 회계를 맡았으며, 1931년 조선물산장려회의 상무위원을 맡기도 했다. 이 외에도 조선소년총연맹(朝鮮少年總聯盟) 특별위원, 조선나병환자구제연구회(朝鮮癩病患者救濟研究會) 상무위원 등을 역임하며 열악한 한국의 보건·의료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중국 관헌의 단속과 수해 등으로 실의에 빠진 만주 동포를 구제하고자 만주동포문제연구회(滿洲同胞問題研究會)를 조직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한성병원(漢城病院), 경성의학강습소 등을 운영하며 한국 의료계를 주도하여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가 태동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김형기

3·1 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후 1926년 부산 영주동에 동산병원을 열어 인술을 베풀었으며 독립운동 자금 제공처 역할을 맡았다. 해방 후 미군정청 고문단에 관여해 귀환동포 후원위원장을 맡아 귀환동포 구호에 재산과 시간을 모두 바쳤으며, 이념 대립 속에 6·25 전쟁 직후 정보기관에 연행된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 나창헌

3·1 운동 이후 1919년 5월 동지 안재홍, 연병호, 송세호, 이병철 등과 청년외교단(青年外交團)을 조직, 활동했다. 민족운동에 첫발을 디딘 후 대동단(大同團)의 비밀단원이 되어 이강(李堈) 공(公)을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모셔 가려다 발각되자 1920년 1월 상하이로 탈출하여 대동단 총재 김가진(金嘉鎭)을 도와 대동단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했다. 이곳에서 기관지 『독립』을 간행하여 독립정신을 앙양했으며, 1920년 11월에는 노무용(盧武用), 김재희(金載熙) 등 7명과 함께 철혈단(鐵血團)을 조직하고 그 단장이 되어 철(鐵)과 혈(血)로써 왜적을 배제(排除)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김구(金九), 손정도(孫貞道), 여운형(呂運亨) 등과 함께 한국노병회(韓國勞兵會)를 창립하는 데 참여했다가, 1920년 10월 28일 동회(同會) 이사에 취임했으며, 같은 해 11월 2일에는 동회 교육부원(教育部員)으로 노병회 설립 취지를 살려 나갔다. 이어 1924년 6월 15일에는 임노공부원(任勞工部員)으로 노병(勞

兵)을 초모하고 훈련시키는 데 앞장선 바 있다. 한편 그는 1924년 1월 12일 교민단 의사회(僑民團議事會)의 학무위원으로 취임하여 노병회를 이끌면서 상하이 일대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임시정부의 지원을 호소하는 등 독립운동에 진력했다. 같은 해 9월 8일에는 교민단의 의사원(議事員)으로 선출되어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을 도와 민주공화제 정착과 그 활동에 크게 기여했으며, 독립운동선상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참여했다. 1925년 3월 11일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기 위한 심판위원장이 되어 그 해 3월 13일 드디어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여 결국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원과 임정의 경무국장, 내무부차장 등을 역임하면서 독립운동에 몸바쳤으며, 병인의용대장을 역임하면서 상하이에 있던 일본영사관을 폭파할 계획을 세우고 두 동생과 같이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했으나 사전에 탄로 나서 두 동생은 체포되고 그는 항저우(杭州)로 피신했다. 그후 쓰촨 성(四川省) 완현(萬縣) 성내에서 완현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종사했으며, 1933년 1월에는 흥사단(興士團) 원동대회에 참가하여 선우혁(鮮于爀)과 함께 제6반에 소속되어 활동했고, 같은 해 7월에는 비밀리에 상하이로 돌아와 병인의용대를 부흥시키는 등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1936년 6월 그가 경영하던 만현병원(萬縣病院)에서 신병으로 영면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 송영찬

3·1 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후 1920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 근무하면서, 1932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여 스승인 김구 모자(母子)의 안악(安岳) 탈출을 지원했다. 1935년 여름 안악군 내 청소년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김홍량(金鴻亮)·김용정(金庸鼎)·김용진(金庸震) 등과 함께 안악중학교(安岳中學校)를 세우기 위한 기성회를 조직하여 활동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 유상규

3·1 운동 이후 1919년 11월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국내에 있는 유력 재산가, 학교 및 종교계 등을 조사하여 독립운동의 자료로 삼기 위해 조직한 임정

조사원의 평북 강계지역 책임자로 임명되어 활동했다. 이듬해인 1920년 2월에는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이던 안창호의 비서로 활약했고, 같은 해 2월 22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租界) 내에서 조직된 흥사단(興士團) 원동지부(遠東支部)에 가입했다. 1925년 귀국 후 다시 경성의학전문학교 3학년으로 복학했다. 학업을 계속하면서도 수양동우회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그의 학교 동문으로는 백병원 설립자인 백인제, 의사 유석창 등이 있다. 졸업 후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외과의사로서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후배 양성과 환자 치료에 전념했다. 한편, 박사학위를 준비하며 동아일보사 등 여러 출판물에 대중의 보건위생 계몽과 강연회에 꾸준히 연사로 활동하면서도 1930년 조선의사협회 그리고 조선위생협회 창설도 주도하고 임원으로서 활동하는 등 잠시도 일에서 벗어나질 않았다. 그러다 1936년 환자를 치료하던 중 단독에 감염되어 순직했다(1936. 7. 18).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이의경(필명 이미륵)

3·1 운동 때 체포를 면해 상하이로 망명한 이후 1919년 5월 외교 활동을 독립운동의 행동지침으로 표방한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이 결성되자 이에 가입하여 동단의 편집부장으로 활약했다. 『외교시보』의 발간을 주도했고, 동단에서 1919년 8월 29일 국치기념일(國恥紀念日)을 기해 거행한 만세 시위 때 사용되었던 〈경술국치경고문〉 등의 선전물 인쇄 책임을 맡았다. 이후 유럽행 여권을 받아 1920년 독일에 도착했다. 1921년 3월부터 뷔르츠부르크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계속했으나 건강 때문에 휴학했다가 1923년 하이델베르크 대학, 1925년부터는 뮌헨 대학에서 동물학(動物學)과 철학을 전공하여 1928년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획득했다. 1931년 『다메(*Dame*)』 지에 「하늘의 천사」를 처음으로 발표, 그 후 민족적인 경향이 짙은 단편 문학작품을 독일어로 독일 신문·잡지에 수시 발표했다. 그의 문학은 주로 한국을 배경으로 동양문화의 전통과 풍습을 주제로 했으며, 1946년에는 대표작인 『압록강은 흐른다』가 독일에서 발간되어 전후 독일 문단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소설은 영문과 국문으로 번역되었으며, 그 일부는 독일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독일 학생들에게도 애독되었다. 1947년부터 뮌헨 대학교 동양학부 강사로 있다가 1950년 3월 위암으로 사망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 한위건

3·1 운동 후 일제의 체포망을 피한 그는 서울에서 생겨난 비밀결사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다. 상하이에서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위원,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함경도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과 여운형의 일본 방문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 신채호가 상하이에서 발간하던 주간신문『신대한(新大韓)』발간에 참여하기도 했다. 1920년 잠시 귀국한 그는 일본으로 유학하여 와세다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 일본 유학 당시인 1923년 조선인유학생학우회(朝鮮人留學生學友會)에 참가하여 위원·총무 등을 맡았으며 국내 순회강연도 벌였다. 이 무렵 그는 조선기독교청년회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1924년 1월 이광수가『동아일보』에「민족적 경륜」을 게재하자, 재동경조선인대회 명의로 동아일보사의 사죄 및 논설 취소를 요구했다.

1924년 귀국한 뒤『시대일보』와『동아일보』기자로 재직하면서, 조선사정연구회(朝鮮事情研究會) 등 사회단체에 가입하면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일본 유학 시절부터 공감해 오던 사회주의 사상의 실천을 위해 1926년 11월 정우회(正友會)에 가입하여 안광천(安光泉)과 함께 〈정우회 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12월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27년 초 신간회(新幹會) 발기에 참가하여 창립총회에서 간사로 선정되었으며, 조선공산당 선전부장을 맡았고, 1928년 2월 조선공산당 제3차 대회에 참석하여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일제의 검거망을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다. 이후 그는 중국에 머물면서 잡지『계급투쟁』을 발간하고 당 재건운동과 항일투쟁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이론가로 활동하는 한편 이철부(李鐵夫)라는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면서, 공산주의자협의회(共産主義者協議會)·학생공산당(學生共産黨)·노동계급사(勞動階級社)·북평반제동맹(北平反帝同盟) 등을 조직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1933년 한때 중국 국민당 정부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출옥 후 중국공산당 허베이 성(河北省) 위원회 선전부장이 되었다. 노선상의 차이로 중국공산당과 잠깐 동안 단절한 뒤에도 1935년 12월 톈진(天津)에서 항일집회 및 시위운동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1936년 봄 중공 북방국(北方局) 서기 류사오치(劉少奇)에 의해 허베이 성 위원회 서기 겸 톈진 시 위원회 서기로 임명되었으며, 1937년 5월 연안에서 소비에트 구역 당대표대회가 열릴 때 국민당지구 대표로 참

석했다. 건강이 좋지 않던 그는 대회가 끝난 후 옌안(延安) 요양소에서 사망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 허영조

3·1 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후 1923년 여름에 의열단원(義烈團員) 강홍렬(姜弘烈)의 지시를 받고 독립운동 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 홍치학

3·1 운동으로 체포된 후 일경의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옥중에서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2) 경성공업전문학교

이들 중 일부는 옥고를 치른 뒤 복학하여 졸업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편을 잡거나 과학 기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일부는 사회운동에 관여하여 조국의 독립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3·1 운동 후에도 사회운동과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행적을 국가보훈처에서 편찬한 『독립유공자공훈록』과 기타 문헌에 입각하여 정리하면 [표 2-2-9]와 같다.

[표 2-2-9] 경성공업전문학교 출신 독립유공자

이름	생몰	훈격	출신	형량
김세룡(金世龍)	1901. 10. 10~1943. 10. 24	애족장(1990)	평북 의주	보안법 ·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김진목(金鎭睦)	1899. 12. 8~미상	애족장(1990)	충북 제천	증거 불충분 석방
이형영(李亨永)	1896. 7. 4~1923. 2. 5	건국포장 (2005)	전남 여수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최사열(崔士烈)	1899. 10. 16~1982. 1. 14	애족장(1990)	전남 완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안상철(安尙哲)	1898. 3. 25~1982. 4. 2	건국포장(2007)	함남 함흥	출판법 ·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출처: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 김진목

3·1 운동 후 일본어 서적을 모두 태우고 졸업반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 관립 학교라는 이유로 등교하지 않았다. 1921년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과 같이 독립운동 대열에 적극 참여, 활동했다. 192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1927년 시카고의 루이스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면서 재미 동포들과 교우하는 가운데 이승만·임병직 등과 의기투합하여 대한인동지회(총재 이승만)에 가입, 활동했다. 1932년부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일간지 『삼일신보(三一申報)』를 발행하여 교포들에게 배포했으며, 1942년에는 대한인동지회 로스앤젤레스 지방회장으로서 임병직 등과 외교 활동을 했다. 그리고 미국 내의 유력한 인사들을 찾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3) 경성전수학교

윤자영은 현재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인물로 3·1 운동 이후에도 사회운동과 독립운동에 관여했다. 국가보훈처에서 편찬한 『독립유공자공훈록』과 기타 문헌에 입각하여 정리하면 [표 2-2-10]과 같다.

• 윤자영

3·1 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뒤 곧 청년운동에 참여하여 조선청년회연합회 기성회의 집행위원과 지방부 위원을 맡았고, 1920년 12월 창립총회에서 상무위원에 선임되었다. 1921년 1월에는 서울청년회 조직에 참여하여 기관지인 『아성(我聲)』의 편집위원으로 많은 글을 투고했으며 순회강연 활동 등을 펼쳤다. 1921년 3월에는

[표 2-2-10] 경성전수학교 출신 독립유공자

이름	생몰	훈격	출신	형량
윤자영(尹滋瑛)	1894. 9. 13~1938. 10. 14	독립장(2004)	경북 청송	보안법 ·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최치환(崔致煥)	1897. 6. 3~1966. 1. 11	애국장(2008)	평북 의주	보안법 ·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출처: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조선노동공제회에 참여했으며, 5월에는 고려공산당(상하이파)에 입당하고 기관지 편집에도 참여했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그는 1921년 말에서 1922년 초 무렵 국외로 망명했다. 1922년 10월 러시아의 베르흐네우진스크에서 개최된 고려공산당 연합대회에 상하이파 소속 마산지역 대표라는 직함으로 참가했고, 의장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이 대회가 끝나고 1923년 1월 그는 대표 자격으로 코민테른에 파견되었고, 코민테른에 의해 꼬르뷰로(조선공산당 중앙총국)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그는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 국민대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곧 상하이로 돌아왔다. 국민대표회의에서 그는 고려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 지도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개조파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국민대표회의가 끝난 뒤 그는 잠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했고, 1923년 6월에는 김지섭(金祉燮)의 투탄의거를 지원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는 일경의 추적을 받았으나, 1924년 4월 청년동맹회를 결성하고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1926년 만주로 건너간 그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을 조직하고 선전부 책임이 되었으나, 그해 말 상하이파와 화요파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출당 조치를 당했다. 1929년 3월 하순에는 돈화현 향수하자(香水河子)에서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직부의 책임이 되었다. 1930년 10월 귀국해 활동하던 그는 일경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이듬해 5월 다시 만주로 탈출하여 중국공산당 동만특위 선전부에서 활동했다. 이후 유학을 위해 모스크바로 가서 동방공산대학을 다니던 중 1938년 소련 정부에 의해 처형당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4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4) 조선약학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옥고를 치른 뒤 복학하여 졸업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편을 잡거나 약재업에 종사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일부는 사회운동에 관여하여 조국의 독립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국가보훈처에서 편찬한 『독립유공자공훈록』과 기타 문헌에 입각하여 3·1 운동 후 이들의 행적을 정리하면 [표 2-2-11]과 같다.

[표 2-2-11] 조선약학교 출신 독립유공자

이름	생몰	훈격	출신	형량
박희봉(朴喜鳳)	1899. 6. 22~1950. 5. 23	대통령표창(1995)	경북 상주	보안법 ·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엄창근(嚴昌根)	1881. 4. 26~미상	애족장(2011)	충북 면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출처: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 박희봉

3·1 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뒤 계속 항일운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세우고 사회운동에 투신했다. 이에 그는 민족운동 세력이 전국적으로 조직한 조선청년회연합회의 결성 초기에 참가하여 1920년 7월 7일 조선청년회연합기성회 지방부 위원으로 활동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제3장

3·1 운동 이후 중일전쟁 직전 (1919~1937) 한국인의 고등교육 요구와 고등교육기관의 성장

제1절 한국인의 고등교육 요구와 일제의 고등교육시책 변화

1) 3·1 운동의 충격과 제2차 조선교육령 체제의 등장

1919년 3·1 운동으로 큰 타격을 받은 일제는 종전까지의 통치정책을 조정하여 이른바 '문화정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노골적인 차별정책에 폭발했던 한국인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친일세력 양성을 통해 한국 사회를 분열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조선 통치를 영속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특히 한국인의 불만이 제일 컸던 교육제도의 경우, 조선총독부는 일본 본토의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를 표방했다(강명숙, 2009a;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2015: 104~112). 3·1 운동의 원인 중 하나가 한국인들의 고등교육 요구를 묵살하고 실시한 차별적인 교육이라고 진단한 일제로서는 한국인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일부 허용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까지 일본인 학교들에 비해 수업기한이 짧았던 한국인 학교들을 단번에 바꾸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학제 개혁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의 학년을 일본의 소학교 및 중학교와 같은 정도로 연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매일신보』, 1920. 3. 5). 고등보통학교에는 2년 이내의 보습과

를 두어, 예전 학제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수업 연수를 채워서 진학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대학 설립 가능성을 비치면서 조선 안팎의 여론의 동향을 지켜보았다. 주요 제국대학 교수들이 즉각 건백서를 제출했다. 조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국의 학문 체계를 확장하려는 의도였다(『매일신보』, 1920. 3. 5). 조선의 전문학교들도 조선총독부의 의도를 간파하고 대학 승격 추진에 관한 의향을 내비쳤다. 특히 경성의학전문학교는 하가 에이지로(芳賀榮次郎) 교장을 중심으로 이전부터 의과대학 승격을 모색해 온 터였다(佐藤剛藏, 1956: 77). 경성상공회의소를 비롯한 한국인 자산가들 중 일부도 조선총독부에 호응하여 기존의 전문학교생들이 유학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존 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매일신보』, 1919. 9. 19).

이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반응은 신중했다. 이른바 본토 밖 외지(外地)에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전체의 판도에서도 전례가 없기도 했고, 당시 조선총독부 전문학교의 위상이 일본 본토의 전문학교와 동등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다. 중등교육까지의 수업연한이 본토에 비해 짧았던 것이다. 우선 전문학교의 입학 대상을 일본 본토와 동등하게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경성전수학교는 입학 대상을 일본 본토 중학교 정도의 졸업자로 올리면서 경성법학전문학교로 전환되었고, '조선총독부' 전문학교로 규정되었던 조선의 다른 전문학교들, 즉 의학전문학교, 공학전문학교, 농학전문학교 등도 동일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사립 경성고등상업학교는 관립으로 전환되어 조선총독부는 전문학교 수준의 실업교육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매일신보』, 1921. 2. 22).

이것은 전문학교의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거니와 한국인 학생 위주의 전문학교에 일본인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입학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실제로 '진학난(進學難)'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본인 학생들은 조선의 전문학교가 일본 본토 전문학교와 동일한 자격을 얻자 대거 몰려들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이를 '내선공학'의 성과로 선전했지만, 한국인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전문학교들은 이제 일본인 학생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내선공학' 원칙이라는 것이 결국 특정한 비율 이상으로 일본인을 입학시키겠다는 의도로 비치면서, 한국인 학생의 처지에서는 진학의 길은 열렸지만 진학할 수 있는 학교들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일본인들과 같은 시험으로 경쟁해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 12월 임시교육조사위원회(臨時教育調査委員會)를 설치해 교육령의 전면 개정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일본 본토에서 교육 관련 사항은 천황대권의 영역으로 규정되어 제국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계,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통한 각계각층의 반응을 취합해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이 제도를 부분적으로 채용해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조선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는 자세를 취했다. 조선총독부의 핵심 관료들과 유력 친일인사, 한국인 교육계 인사들, 그리고 일본 본토 교육계 중진들이 참여한 이 위원회에서는 두 번의 회의를 거쳐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조선학제개정안요령'을 확정했는데, 여기서 고등교육기관인 고등학교와 대학의 설립을 명시했다.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은 '관립'을 기본으로 하며, '사립'은 가급적 피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1921년 7월 두 번째 회합에서 임시교육조사위원회는 '조선교육령개정안요강'을 확정했다. 주목할 점은 1920년 말 단계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설립'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대학 및 그 예비교육'으로 대체된 것이라 하겠는데, 그 사이에 고등학교 대신에 대학 예과를 설립하여 한국인 진학자의 일본 진출을 최대한 막아 보자는 의도가 정책적으로도 확정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여기서 확정된 조선교육령의 전면개정안은 일본 법제국과 내각, 그리고 최고자문기관인 추밀원 회의를 거쳐서 1922년 2월 4일 '조선교육령'(칙령 제42호)으로 확정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1922. 2. 6). 이 교육령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실제 교육정책으로 실시될 것이 천명되었다. ① 내지연장주의에 의거해서 조선의 교육제도는 원칙적으로는 일본과 동일하게 만든다. ② 내선공학을 원칙으로 하지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현행대로 한국인 학교 체제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막는다. ③ 한국인 위주의 현행 전문학교는 내선공학의 원칙으로 일본인의 입학을 허용할 뿐 아니라 그 비율을 늘려나간다. ④ 대학 및 그 예비 교육기관의 설립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기존의 전문학교들은 조선교육령 선포를 계기로 '조선총독부 전문학교'라는 특수 지위를 벗어나 일본 본토의 '전문학교령'에 입각한 실업전문학교로 새로 정비되었다.[1] 이전까지 조선의 전문학교는 수업연한이 짧은 한국인 중등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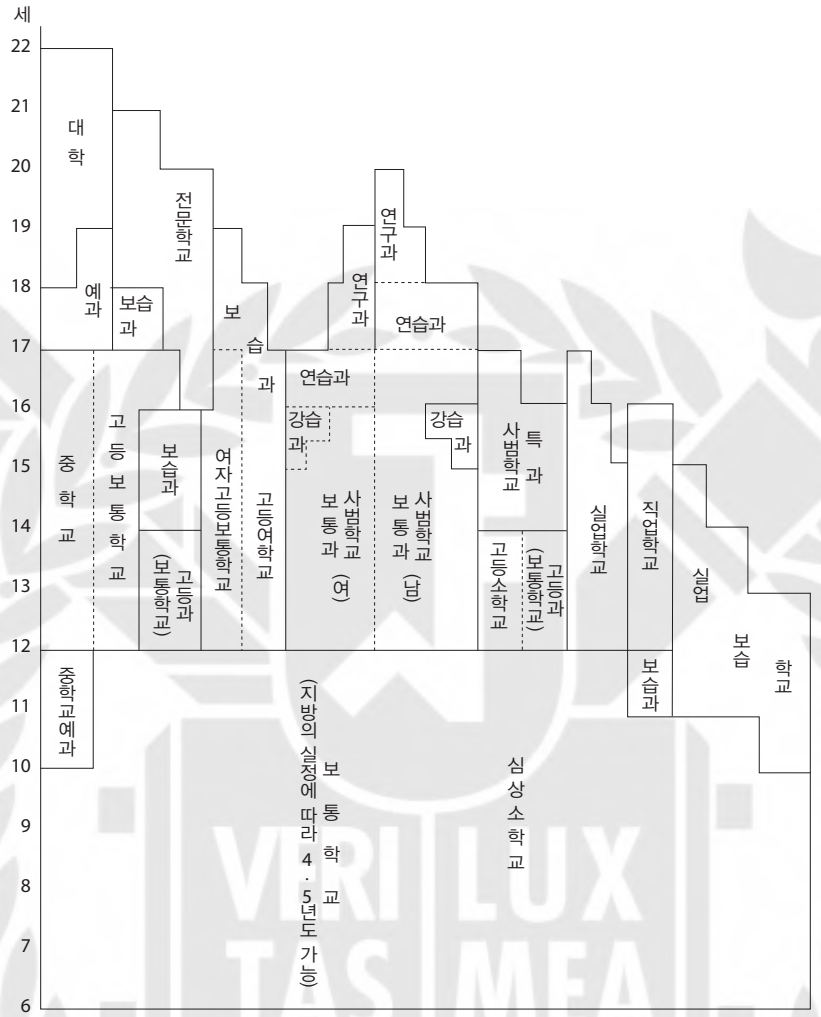
1 '조선교육령' 제12조에 따르면 전문학교는 '전문학교령'에 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 졸업자를 입학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본 본토의 관점에서 보면 이름만 전문학교일 뿐, 사실상 전문학교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 본토의 전문학교 출신이 가지는 여러 특혜와 자격 등이 부여되지 않았고, 설령 부여되더라도 조선총독부에서 별도로 공포한 '전문학교관제'와 '전문학교규칙'에 의거해서 조선 사회만 한정해서 인정받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교육령이 개정되면서 이런 차별이 사라졌다. 각 전문학교의 명칭은 전문학교의 실업교육을 중시했던 당시 일본 본토의 고등교육정책에 맞추어 바뀌었다.

1922년 4월 자로 경성전수학교는 경성법학전문학교로, 경성공업전문학교는 경성고등공업학교로, 수원농림전문학교는 수원고등농림학교가 되었다. 이전부터 시책에 부합되었던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는 그대로였다. 그리고 각 학교는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입학생들을 기존의 재학생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당시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는 것은 일본 본토의 학제를 마친 일본인 학생이나 가능했던 것으로, 기존의 한국인 중심 교육에서 일본인 중심 교육으로 개편하는 빌미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는 특히 의학, 공학, 상학 등의 전문 분야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참고로 [그림 2-3-1]은 제2차 교육령 시기 학제를 보여준다.

한편, 학제 개편 이후에도 한국인 학생들이 주류였던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조선총독부의 대학 설립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경성법학전문학교를 대학 법과로 승격하려는 노력을 했다(『매일신보』, 1923. 7. 13). 경성법학전문학교의 동창회와 재학생들은 신설될 대학이 의과, 문과, 법과를 포함하는 종합대학이라면 새로 법과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경성법학전문학교를 대학 법과로 전환, 승격시키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충실한 법학 교육을 위해서라도 승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본의 관립 전문학교들이 대체로 대학으로 승격되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전문학교로 머물게 하는 것은 조선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처럼 동창회와 재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승격 운동을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자,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은 우선 전문학교는 전문학교로서 내용 충실을 기해 초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경성의학전문학교 및 경성법학전문학

전문학교령은 1903년 일본 본국에서 칙령으로 공포된 '전문학교령'을 지칭한다(가타기리 요시오·기무라 하지메 외, 2011: 162~163). 다만 칙령의 내용 중에서 문부대신이 맡아야 할 직무를 조선총독이 대신 맡는 것으로 했다.



출처: 정재철(1989: 68).

[그림 2-3-1]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학제도(1922~1938)

교는 "양교 입학자의 주요한 자는 한국인이며, 그 학부형은 속히 사회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므로 대학의 법과, 의과 6년에 비해 양교는 현재 3, 4년"인 편이 편리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언론에 발표하고 여론을 무마하는 데 고심해야 했다(『동아일보』, 1924. 3. 10). 결국 관립 전문학교는 대학으로 승격하지 못했지만, 그 대신 1924년 5월 22일 조선총독부에 의해 고등학교, 대학 예과와 동등 이상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조선총독부관보』, 1924. 6. 9).

2) 민립대학설립운동과 조선총독부의 대응

이처럼 식민 당국은 3·1 운동 이후 차별적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하면서 대학의 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화정책을 통해 식민지 한국인들의 험악한 민심을 회유하는 한편, 친일인사를 양성하여 식민통치를 영속화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허용되는 대학은 식민권력이 주도권을 가져야 하며, 그 밖의 가능성은 전혀 안중에 두지 않았다. 사립대학의 설립 가능성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어려운 실현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식민지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대학 설립의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 이상 이것을 계기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인들을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도 사실이었다. 제2차 교육령의 공포 이후 한국인 유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제기된 것은 이런 맥락 속에서였다. 민립대학 설립은 이미 한일병합 이전, 즉 애국계몽운동 시기에 제기되고 추진된 바 있었던 민족적 의제였다. 그 단초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었는데, 1910년 무산된 기금을 민립대학설립기금으로 전용을 신청했으나 조선총독이 거부하여 성사되지 못했다. 그런데 3·1 운동 이후 근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은 다시 한 번 구체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식민지에서 활동했던 한국인 교육계 인사들은 1920년 6월 20일 '조선교육회'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우여곡절을 거쳐 1922년 1월 24일 '조선교육협회'라는 이름으로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 시기는 조선총독부가 사실상 대학 설립을 염두에 두고 조선교육령 개정에 몰두하던 상황이었고, 당연히 한국 사회의 이목도 대학 설립에 쏠려 있었다. 어쨌든 대학 설립의 논의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차원에서 제기되고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여기에 주목한 『동아일보』는 조선교육령 개정안이 추밀원 심의를 막 통과한 1922년 2월 3일, 사설 「민립대학의 필요를 제창하노라」를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민립대학의 필요를 제창하노라: 부호(富豪)의 일고(一考)를 촉(促)함」: 대학교육은 최고 학문을 성취하는 교육이라. 일면에 재(在)하야는 국민적 교육계통의 최고위

> 를 점령하고 타면에 재하야는 전문적 진리연구의 총합점이 되나니, 국민의 완전한 상식을 구비하야 원만한 생을 경영케 하랴 할진대 불가부(不可不) 대학교육의 보급을 기(期)치 아니치 못할지며 사물에 대하야 정밀한 진리를 연구하야써 인생 생활에 대광명을 조(照)하고자 할진대 불가부 대학교육의 완비를 도(圖)치 아니치 못할지라(『동아일보』, 1922. 2. 3).

위 사설에 따르면, 대학은 국민적 교육 계통의 최고 단계이며, 전문지식 및 학술지식을 연구하는 총합점이 된다. 따라서 대학 교육은 사람들이 상식을 가지고 원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진리를 밝혀 인간 생활에 빛을 비추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런 대학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남에게 주어진다면, 그 정신의 종속은 심각할 것이며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동아일보』는 조선총독부가 추진하는 '관립'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배움의 독립, 정신의 독립 차원에서 민립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정선이, 2002: 56~57). 식민당국의 엄혹한 검열이 있는 상황에서, 『동아일보』의 이러한 문제 제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는 한글 독자는 당시에 없었을 것이다. 이 사설은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 조선교육협회가 이러한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1922년 11월 산하에 '민립대학기성준비회'를 발족하기에 이른다.

이상재, 이승훈, 유진태 등 47명의 발의로 조직된 이 민립대학기성준비회는 이후 『동아일보』와 긴밀히 연계하여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힘쓰는 한편, 전국 단위의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그 성과를 지역별로 신문에 알리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한국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 특히 지역 '유지'들의 지지와 후원 약속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민립대학의 설립 운동이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합법 운동이었고 내용도 표면적으로는 정치 운동과는 거리가 있어서, 적극적인 활동 전개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던 탓도 있었다. 이런 호응을 기반으로 1923년 3월 29일에는 조선민립대학기성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전국 대의원 1,170명 중 462명이 참가했다. 이 총회에서는 이상재 의장의 주도 아래 〈민립대학 발기취지서〉, 〈민립대학 설립계획서〉를 채택·발표했다. 『동아일보』는 총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개회된 민대총회(民大總會)」: 교육에도 단계와 종류가 유(有)하야 민중의 보편적 지식은 차(此)를 보통교육으로써 능히 수여할 수 잇스나 심원한 지식과 온오한 학리는 차를 고등교육에 기(期)치 아니하면 불가할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업거니와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여 유용유위(有用有爲)의 인물을 양성하랴면 최고 학부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도다. 그 뿐만 아니라 대학은 인류의 진화에 실로 막대한 관계가 유하니 문화의 발달과 생활의 향상은 대학을 지(持)하야 비로소 기도할 수 잇고 획득할 수 잇도다. (…) 그럼으로 오인(吾人) 한국인도 세계의 일우(一隅)에서 문화민족의 일원으로 타인과 견(肩)을 병하야 오인의 생존을 유지하며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기도하랴면 대학의 설립을 사(捨)하고는 경(更)히 타도가 무(無)하도다(『동아일보』, 1923. 3. 30).

민립대학설립기성회는 총회에서 민립대학의 교육 이념을 ① '심원한 지식과 온오한 학리'의 추구, ② 유능유기(有能有技)한 인물의 양성, ③ 인류와 민족의 문화 발달 및 생활 양상으로 설정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은 모든 학문을 망라하는 종합대학으로 결정하되, 모금 활동을 통해 우선 1기 사업으로 400만 원을 모금하여 법과, 문과, 경제과, 이과 등 4개 분과대학과 대학 예과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기 사업으로 공과대학을, 3기 사업으로 의과대학과 농과대학 설립을 목표로 했다(馬越徹, 2001: 104~105; 정선이, 2002: 24~26; 정준영, 2009: 102~103). 대학 설립의 목적에는 국권 회복, 민족 독립 등 정치적 문구는 없고 "진리 탐구를 통한 인재양성과 인류문화에 공헌"이라는 이상적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인에게도 대학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려는 전략적 의도의 산물이었다(馬越徹, 2001: 107).

이처럼 민립대학설립운동은 초기 단계에서는 기성회 지방부 100개가 설립되는 등 활기를 띠었지만, 1923년과 1925년의 대홍수, 1923년의 관동대지진, 1924년의 남부지방 가뭄 등으로 점차 모금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대학 설립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반비례해서 외부적으로도 운동은 정체되는 양상을 드러냈다. 민립대학설립운동의 역사는 병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 전개과정을 보면 식민당국의 대학 설립 움직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출현하여 조선교육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 내적 운동의 한

계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또한 사립대학의 설립 요건이 되는 기금 마련에만 총력을 기울인 나머지, 관립대학과 차별화되는 대학의 구체적인 구상, 즉 ① 교수진, ② 커리큘럼, ③ 학생 규모나 선발 방법, ④ 기존 교육기관과의 연계 등이 완전히 빠져 있는 점도 문제였다(馬越徹, 2001: 109~110).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운동이 왜 민립대학인가의 문제와 관련해 『동아일보』에 실린 사설 이외에 고민을 나누고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운동은 대중의 동참을 전제로 하는 모금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참가자 전원이 합의하는 구체적인 대학상을 제시하기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일부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민립대학이 소수를 위한 것, 계급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을 때에도 이에 대한 소통의 노력은 없었다. 그저 민족의 지도자 양성이라는 점만 반복해서 강조되었을 뿐이다. 결국 민립대학운동은 조선총독부와의 대학 설립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처럼 되고 말았다. 1924년 조선총독부가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을 확정하자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유야무야 되어버린 것도 이 때문이었다(馬越徹, 2001: 109~110; 정준영, 2009: 103~104).

이상재는 민립대학설립운동이 좌절된 이후 경성제국대학 예과 개교식에 참석하여, 이유를 묻는 동료에게 "오늘은 우리 민립대학이 탄생하는 날"이라면서 이 대학은 장차 우리 대학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는 일화는 역사를 가로지르는 이상재의 혜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시에 여기에서 이상재와 같은 문화주의자들이 대학을 실력양성론의 입장에서 근대적 기술과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만 인식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정선이, 2002: 58~61).

어쨌든 민립대학운동은 세계적 경제 불황의 외적 요인과 대학상에 대한 구체적 합의 도출의 실패 등 내적 한계가 없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식민당국과의 설립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식민당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충분했다. 사실 조선총독부 입장에서도 1919년 3·1 운동 직후에는 성난 한국인의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대학 설립이란 카드를 급히 꺼내들 수밖에 없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경제 불황과 이에 따른 재정 감소 등의 상황 속에서 관립대학 신설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을 쉽게 마련하기 어려웠다.

민립대학설립운동을 비롯한 식민지 사회 안팎에서의 압박이 없었더라면, 즉 서양인 선교사들이나 한국인들에 의해 '불완전한' 사립대학이 먼저 생길 수도 있

다는 위기의식이 없었다면 그렇게 단기간에 식민지 최초의 제국대학 설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어 신문의 역할은 적지 않았다. 『경성일보』 등 일본어 신문은 대학의 설립 과정에 대해서 대체로 사실 전달에 치중했지만, 『동아일보』는 민립대학설립운동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 소개를 넘어서서, 식민당국의 대학 설립 계획 및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비판했다. 그리고 미국 등의 대학을 소개하고 유학 문제 등을 검토하여 대학 문제에 관한 식민사회의 관심을 고취시켰다.

제2절 경성제국대학의 설립과 운영

1) 경성제국대학의 설립 경위

교육령 전면개정을 통해 대학 설립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 식민당국은 1922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설립 작업에 돌입했다. 먼저 대학의 예비 교육기관 설립에 관해서는 이미 1921년 초, 임시교육조사위원회의 소집 단계에서 대학 예과를 부속기관 형태로 설립하는 방침을 정했다. 사실 일본 본토의 '대학령'에 근거해서 식민지에 대학을 설립하려면, 대학 이전의 예비 교육기관도 함께 설립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의 대학은 원칙적으로 5년제 중등학교 4년 수료자는 3년 과정의 대학 예비교육[2]을 거친 후에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는데, 이른바 일본 본토에 있

2 1918년 일본에서 대학령이 전면개정될 당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대학을 졸업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며, 따라서 예비 교육기관인 구제 고등학교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논의였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지지하는 기득권층의 저항이 강해서 결국 실현되지 못하고, 고등학교의 입시 자격을 중학교 4년 수료자로 정해 교육연한을 형식적으로는 1년 줄이는 변통에 그치고 말았다. 이미 당시 고등학교 입시가 극심해서 재수, 삼수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4년 수료자가 입학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5년제 중학교의 졸업자를 입학 대상자로 설정하는 경우, 대학 예비 교육기관의 수업연한을 2년으로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후술하겠지만 경성제국대학이 예과를 2년 과정으로 설정한 것은 여기에 근거한 것으로, 흔히 비판되듯이 반드시 식민지라서 가능했던 차별은 원칙적으로는 아니었다.

는 구제(舊制) 고등학교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총독부는 애초 식민지에 구제 고등학교를 짓는 것도 생각했지만, 곧 포기하고 대학 예과 설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우선 구제 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졸업자는 원칙적으로 어느 제국대학이든 입학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한국인 학생들의 일본 본토 유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꼴이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당시 일본 본토 지성계는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풍조를 넘어서 사회주의 사상이 퍼지고 있었고, 조선총독부도 이를 매우 경계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한국인이 일본에 유학하여 이런 급진사상을 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제 고등학교를 대신해서 경성제국대학에만 입학할 수 있는 대학 예과를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일시동인'의 이념을 선전하고, '내선공학'의 실현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신생 대학에 일본 본토의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여 한국인 학생들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구제 고등학교를 설립했을 경우 졸업자들이 한국인, 일본인 가리지 않고 모두 본토 제국대학으로 진학해 버리는 한편, 본토 고등학생 중에는 아무도 조선의 대학에 지원하지 않아 대학 운영 자체가 안 될 위험성도 있었다. 대학 예과 설립은 대학에 진학할 학생을 미리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식민당국은 판단했다.

조선총독부는 일단 식민지에서 확실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국대학령에 근간한 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제국대학이 식민지에 세워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구제 고등학교의 설립은 신설 대학과의 진학 경로가 완전히 끊길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예과 설립이 여러모로 안전한 선택이었다.

이처럼 조선총독부는 여러 가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먼저 대학 예과의 형식을 확정한 후, 다음 단계로 대학의 교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도 마련한다. 1921년 4월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총독부재외연구원규정'[3]이 그것인데, 조선총독부 전문학교 교원 또는 총독이 인정한 자가 해외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했다. 당시 제국대학 교수들은 정부 지원으로 1~2년간 관비 유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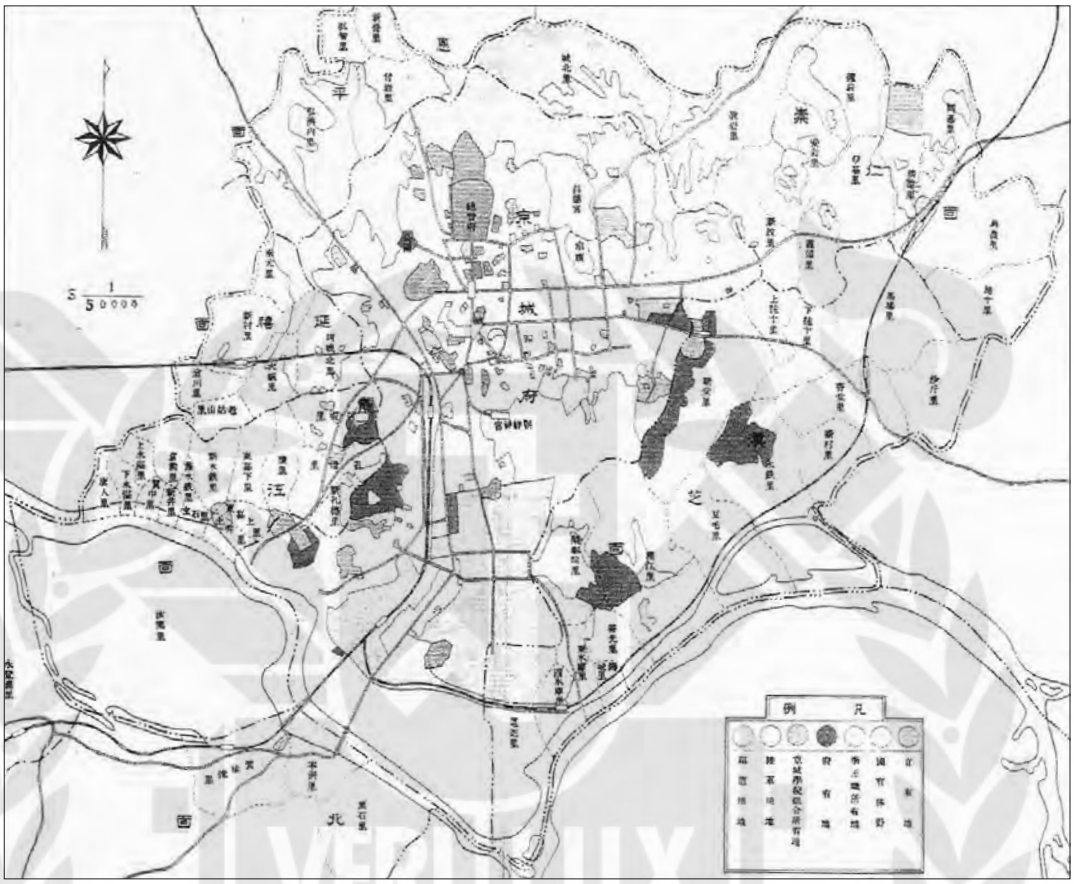
3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일본의 '문부성재외연구원규정'(1920, 칙령 393)을 준용하고 있으며, 1922년 각 부서의 재외연구원규정을 통합한 '재외연구원규정'의 제정으로 동일하게 통합되었다.

떠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를 '재외연구원'이라는 명목으로 조선총독부가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었다(이충우·최종고, 2013: 43).

이처럼 1922년 이전 단계에서 대략의 제도를 정비한 조선총독부는 1922년 2월부터 1923년 대학 예과 설립, 1925년 학부 개교를 목표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대학 예과 부지 확보와 건물 설립이었다. 1922년 7월에는 지금의 청량리역 인근에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문제는 예산이었다. 1922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조선총독부는 일본 대장성과의 교섭에서 가까스로 예산을 확보하여 1923년 4월 착공했고 같은 해 12월에야 657,482원을 투입하여 예과 본관을 완공했다. 대학 예과가 있던 청량리 일대는 1928년 경성부(京城府)가 작성한 『경성도시계획조사서(京城都市計劃調査書)』에 따르면 청량리의 관공유지는 모두 771,573평(관유지: 489,516평, 철도용지: 41,746평, 이왕가용지: 240,311평)이다(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편, 2016: 214, 216). 이 공사에는 서대문형무소 복역자들이 동원되었다고 한다(이충우·최종고, 2013: 43).

예과 건물의 착공이 목전에 다다른 1923년 10월, 식민당국은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교수인 핫토리 우노키치(服部宇之吉)를 대학의 초대 총장 내정자로 초빙했고, 11월 27일에는 '조선제국대학창설위원회' 조직을 마쳤다. 위원회는 "총독의 자문에 따라 조선제국대학 창설 준비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정무총감 아리요시 주이치(有吉忠一)를 위원장으로 위시하여 학무국장 나가노 간(長野幹), 재무국장 와다 이치로(和田一郎), 참사관 야나베 에이사부로(矢鍋永三郎), 경무국장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 토목부장 하라 시즈오(原靜雄), 사무관 하야시 시게조우(林繁藏), 기사 이와이 쵸조로(岩井長三郎), 비서관 마쓰무라 마쓰모리(松村松盛), 나가무라 도라노스케(中村寅之助) 등(서울대학교병원사편찬위원회 편, 2015: 199) 고위 관료들이 참여했고, 총장 내정자 핫토리 우노키치, 의학부장 내정자 시가 기요시(志賀潔), 예과부장 내정자 오다 쇼고(小田省吾)와 학생감 내정자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등 대학의 내용을 채워갈 핵심 인물들이 여기에 덧붙여졌다. 이 중에서 총장 내정자인 핫토리와 의학부장을 맡게 되는 조선총독부의원장 시가는 신설 대학의 학부, 특히 법문학부와 의학부의 강좌 구성과 교수 인선을 사실상 전담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경성제국대학 창설의 실질적인 산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발족으로 당시까지 여러 명칭으로 불리던 신설 대학의 명



출처: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편(2016: 201).

[그림 2-3-2] 경성부와 부근의 관공유지

칭('조선')과 형식('제국대학')이 일단 공식화되었다. 하지만 이 명칭은 이후 일본 법제국이 문제삼게 된다. 창설위원회는 1923년 12월 6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① 대학은 '대학령'에 의거한 제국대학, ② 교명은 '조선제국대학', ③ 당분간 법문학부와 의학부, 2개 학부" 등 대학관제의 대략적인 골격을 이 자리에서 확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문과계는 법학부와 문학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법문학부로 합쳐 각과병학제(各科并學制)를 채택하기로 정했다. 창설위원회는 식민통치의 관점에서, 조선의 지식인을 정치적·사회적 위험 사상에 경도시킬 우려가 있더라도 법과 계열 학과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인이 법률, 경제, 정치를 선호하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만약 법문학부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신설 대학을 외면하고 일본이나 외국으로 유학해 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

이다. 한국인 지식인이 불온사상을 접하게 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처음부터 일본 본토와 마찬가지로 식민지에서도 법학을 가르치는 것이 대국적 차원에서는 통치에 도움이 된다고 식민당국은 보았던 것이다.

한편 식민지 조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사, 사상, 문화에 관해 포괄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문과 계열의 설치도 필요했다. 식민당국은 중등학교가 증설되면서 생기는 교원 부족 현상에도 문과 계열 학과의 설치가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의학전문학교가 있음에도 신설 대학에 의학부를 설치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의 의학전문학교만으로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한방의인 의생(醫生)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약초 등을 기반으로 조선의 독자적인 의학 연구를 추진할 필요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창설위원회는 신생 대학이 제국대학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도, 식민지 조선에 설립된다는 입지성에서 비롯되는 특성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기를 바랐다. 대학 사명의 차원에서 "조선대학의 특성"을 정립하는 데 고심했던 이유도 여기 있었다. 동양 고서 연구, 약학 연구 등 식민지의 신설 대학에서 가능한 '독특한 연구'가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중요한 연구 성과를 구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1920년 1월 도쿄제국대학의 '중진' 교수들이 식민지에 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이 대학의 사명은 "식민지에서 문화를 연구하는 동시에 식민지 사람들을 문화에 접촉시켜 융화를 꾀하는 데" 있다고 역설했던 것도 이런 사정에 기인했다. 따라서 연구는 결코 연구로서 끝나지 않는 것이며 식민지배의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은 이들의 건의서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물론 대학 신설에 대해 당시 식민지의 여론, 심지어 '식민자'인 재조 일본인에게조차도 그저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 사회의 여론은 낙후된 조선의 현실을 상기시키며 산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공학부와 농학부의 설치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농학부와 공학부의 필요성은 심지어 재조 일본인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지금 조선의 민도(民度)로 보면 농학부나 공학부는 설치해도 한국인 지원자가 없을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4] 하지만 당시 조선총독부의 재정 상태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해

4 1930년대에도 논란이 되어 공학부는 1941년에 설치되었지만, 농학부는 끝내 설치되지 않았다.



출처: 『경성백경(京城百景)』(1930년 판).

[그림 2-3-3] 경성의학전문학교(위)와 경성제국대학 예과(아래)의 전경

보면 조선총독부의 이런 태도에 은폐되어 있는 실질적인 이유 하나가 드러난다. 대학 설립을 서둘렀던 식민당국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학부 2개의 소규모 대학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정선이, 2002: 103~106).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는 사이에 일은 상당한 진척되어, 1924년 1월 학무국 내에 예과개설준비사무소가 설치되기에 이른다(조선총독부고시 9). 예과 교수의 인선과 첫 예과 생도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가 검토되었고, 3월 18일 예과 입학시험이 드디어 실시되었다. 날짜는 일본의 고등학교 입시와 동일했는데, 신설 대학이 제국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과 또한 고등학교에 준해야 한다는 조선총독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모집 정원은 문과 80명(A40, B40), 이과 80명, 도합 160명이었다. 하지만 합격 후 입학 포기자도 감안해서 계열당 10명씩을 더 뽑아 일단은 180명의 합격자를 3월 30일 발표했다. 최종적으로는 문과 90명, 이과 80명, 총 170명이 입학 예정자가 되었다(정준영, 2009: 101~102).

1924년 3월 말 예과 교사(校舍)가 드디어 완공되었으며, 3월 18일 진행된 신입생 선발도 대략의 윤곽을 드러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아직도 신생 대학의 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조선총독부는 대학창설위원회의 자문 등을 반영해 조선총독부 안(案)을 마련한 후, 1924년 3월 말부터 제국 정부와 본

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먼저 법제국에서는 '조선제국대학'이라는 조선총독부의 칙령안이 기존의 법체계와 충돌하거나 모순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 식민지에 제국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사실 조선총독부는 그보다 몇 개월 전에 이미 대학설립안을 법제국에 제출한 바 있었다. 그때는 제국 의회의 해산으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법제국은 이를 이유로 심의하지 않고 각하했다. 일본 대장성과의 의견 조율, 제국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가까스로 거쳐서 다시 제출된 칙령안에 대해서, 법제국은 이번에는 근거 법령과 교명 등 두 가지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우선, 신설 대학이 꼭 제국대학이어야 하는지의 문제였다. 1919년 '대학령'이 공포되어 2개 이상의 학부를 가진 대학의 설립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식민지에 설립된 전례가 없는 제국대학의 신설을 강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법제국의 견해였다. 오히려 조선총독부령의 관립대학 설립이 제국대학의 위상을 유지하려고 여러 제약을 감내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이미 입학 예정자까지 뽑아 놓은 상황에서 대학 설립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식민 사회 안팎에서 대대적인 비난에 직면할 위험이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립대학 설립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법제국의 입장을 수용하여 제국대학의 계획은 포기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본 본토의 핵심 권력자들 내부에서는 '내지연장주의'를 식민지 한국인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고, 별도의 대학 설립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제국대학'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또한, 법제국 심의로 칙령안이 반려되었을 경우, 입학생들의 개학 시기와 맞추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 문제는 결국 원안대로 통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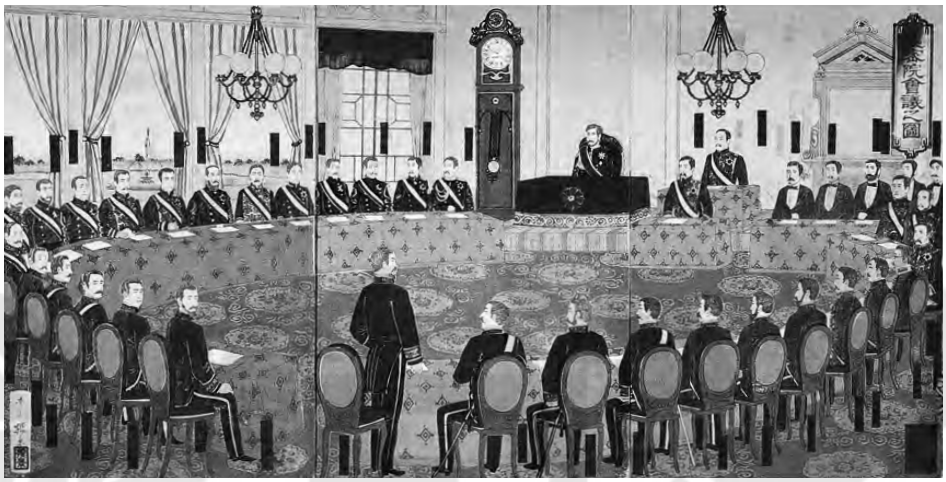
대학의 명칭도 문제였다. 조선총독부가 제출한 '조선제국대학'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법제국은 이것이 자칫하면 '조선제국'을 상기시킬 수도 있음을 지적하며 교명 변경을 요구했다. 사실 '조선제국대학'이라는 명칭은 기존의 제국대학이 도쿄, 교토를 제외하고 도시 이름이 아니라 '도호쿠(東北)', '규슈(九州)', '홋카이도(北海道)' 등 지역 이름으로 대학 명칭을 지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원칙과 관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식민지의 명칭과 '제국대학'을 같이 썼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는 확실히 법제국의 지적대로이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도쿄', '교토' 등 도시 이름을 썼던 초기 제국대학의 관례로 돌아가 대학의

명칭을 '경성제국대학'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법제국의 결정과 조선총독부의 수용은 이후에 설립되는 제국대학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성제국대학 이후의 제국대학은 '타이페이(臺北)',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등 모두 도시 이름으로 명칭을 정하게 된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법제국의 심의를 통과한 조선총독부의 칙령안은 일본 내각회의를 거쳐 4월 19일, 칙령 선포 직전 단계인 추밀원 회의에 상정되었다. 추밀원은 천황의 자문기관으로 군사, 외교, 교육 등 천황대권의 영역에 속하는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천황을 보좌하여 검토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했다. 천황대권의 사안들이란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긴급하고도 중요한 결정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제국 의회의 견제 없이 천황이 직접 칙령으로 선포할 수 있었다. 메이지 헌법이 형식적으로는 입헌군주제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었지만, 결국 국가의 주권은 천황에게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이 천황대권이다. 그리고 이 천황대권의 사항을 표면적으로는 '자문'이라는 형태로 사실상 결정하는 존재가 추밀원의 고문관(顧問官)들이었다. 고문관들은 이른바 국가 원로들이 맡았는데, 이들은 추밀원에서 제국 의회의 견제로부터 자유롭게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 당시 일제는 교육도 군사나 안보와 같이 가장 긴요한 국가 중대사로 간주하여 천황대권의 사안에 포함시켰는데, 그 결과 조선교육령을 개정할 때도,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할 때도 추밀원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사실 대학 설립이 본회의에 앞서 열린 추밀원 심사위원회에 상정될 당시만 해도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추밀원 고문관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다. 일부 고문관은 "학생까지 뽑아 놓고 이제 와서 추밀원 심사를 받으려는 것은 명백히 추밀원을 능멸하는 처사"라고 크게 반발했고, 한때 추밀원 심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미온적인 분위기는 4월 20일 가까스로 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4월 30일 '경성제국대학은 제국대학령에 의할 건', '경성제국대학 학부에 관한 건'[5]으로 추밀원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 추밀원 고문관들은 당시 여론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던 쟁점들, 예컨대 법문학부의 설치 이유, 의학부의 중복 문제, 농·공학부의 필요성 등을 거론했다.

5 '학부에 관한 건'은 공포된 관보상으로는 추밀원 고문의 자순(諮詢)을 거쳤다는 표현은 없다(『조선총독부관보』, 1924. 5. 2).



출처: 일본 우정박물관(郵政博物館) 소장.

[그림 2-3-4] 1888년에 그려진 추밀원 회의 모습(枢密院会議之図)

특히 대학의 설립이 조선의 전통적 문화와 사상을 위축시켜 사회혼란을 야기할 위험성도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회의에 참여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은 이른바 문화통치정책이 실제로는 "신학문"의 보급과 "전래의 온건한 사상"의 보존을 병행하고 있으며, 대학의 설립이 오히려 보존할 필요가 있는 조선의 전통과 사상을 연구하여 "건전한 기풍의 진작"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논란은 있었지만 경성제국대학의 설립 건은 추밀원 심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이처럼 좌초될 위험이 컸던 대학 설립 안건이 법제국과 추밀원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총독부의 '문화통치'를 지지했던 세력이 내각과 추밀원 안팎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 내각의 내무대신은 1919년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부임해서 대학 설립의 기초를 마련했던 미즈노 렌타로(水野錬太郎)였고, 그의 자문역을 맡으며 일본 정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호즈미 노부시게(穗積陳重, 1856~1926)는 추밀원 고문관이었는데, 이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내지준거주의(内地準據主義)'를 표방했던 문화통치정책에서 식민지의 대학이 상징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경비 절감과 통제의 용이성도 중요하지만, 식민지의 대학은 무엇보다도 동화정책의 상징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견해였다.[6] 특히 호즈미는 추밀원 본회의석상에서 경성

6 1924년 4월 30일 추밀원 본회의에 제출된 심사보고서에는 "종합제 관립대학은 실질이나 형식에서

제국대학이 "조선 통치의 근본적 시설(根本的 施設)"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보불전쟁에서 승리한 독일이 점령지인 알자스, 로렌 지역에 적극적인 대학 육성 정책을 실시하여 지배를 공고히 했던 사례를 소개했으며, 영국이 식민지 인도에 대학을 세운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민통치의 강화에 있어서 교육이 중시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그는 식민지 대학의 설립은 식민통치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문화 발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선총독부를 옹호했다(정준영, 2009: 107~112). 초대 총장으로 내정된 도쿄제국대학 교수 핫토리 우노키치(服部宇之吉, 1867~1939)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추밀원 원장 하마오 아라타(濱尾新)를 움직이는 등 여러 가지 '공작'이 전개되었다(이충우·최종고, 2013: 53~55).

추밀원 심의를 통과한 대학 설립 안건은 1924년 5월 2일 드디어 천황의 칙령으로 선포되었다. 조선총독부도 즉시 예과규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규정을 조선총독부령으로 공포했고, 5월 13일에는 수업 개시를 조선총독부 고시(告示)로 통보했다.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설립 당시 공포된 경성제국대학 관련 법령과 규칙은 다음과 같다.

① 경성제국대학관제(칙령 제103호): 경성제국대학의 기본적인 조직과 인적 구성을 규정하는 법령. 총장 및 교원, 직원의 정원,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925년 1월 첫 개정 후 1944년까지 26차의 개정이 있었다.

② 경성제국대학 학부에 관한 건(칙령 제104호): 법문학부와 의학부 2개 학부 설치를 규정했으며, 1938년 4월 15일 이공학부 설치를 위한 개정을 했다(제251호; 1941. 1. 1. 시행).

③ 경성제국대학에 관한 건(칙령 제105호): 경성제국대학의 근거 법령이 '제국대학령'임을 명시했다. 이로써 경성제국대학은 '대학령'에 의해 규정된 대학 중에서 제국대학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④ 경성제국대학 예과규정(부령 제21호): 교육의 목적, 학과과정, 학년과 시수, 입학 등 교육 전반에 대해 규정했다. 1928년 2월 첫 개정 후 1943년까지 11차례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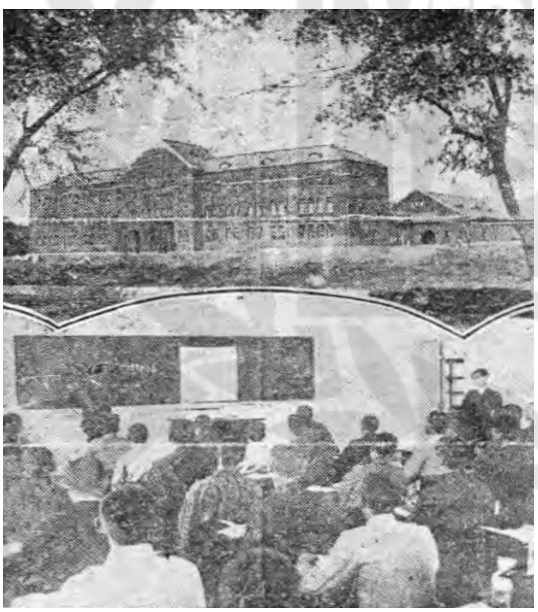
도 내지의 제국대학령에 의한 제국대학에 이를 필적하게 만들어야 하며, 양자 사이에는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조선 통치의 판국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를 경성제국대학으로 칭한다"고 하여 동화주의를 분명히 했다.

정되었다.

⑤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위치 및 수업개시 시기(고시 제102호):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崇仁面, 현 청량리)에서 5월부터 수업하게 됨을 고시했다. 대학 본부와 학부는 '토지수용령'(1911. 4. 17; 제령 3)에 의해 토지수용공고(1925. 4. 1)로 수용하고, 본부와 법문학부는 경기도 경성부 동숭동, 의학부는 연건동으로 고시했다(1926. 4. 1). 이공학부는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蘆海面) 공덕리(孔德里)와 하계리 일대를 수용했다(1941. 4. 16).

이처럼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이 공식 확정되자, 식민당국은 5월 3일 경성제국대학의 부속기관인 예과를 책임지는 예과부장으로 학무국 편찬과장인 오다 쇼고를 임명했고, 다음 날에는 이미 내정되어 있던 예과 교수 10명에게 발령장을 주었다(『조선일보』, 1924. 5. 5). 다음날인 5일에는 청량리 예과 낙성식을 가졌고, 9일에는 신입생 선서식, 10일에는 입학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5월 1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되었다.

이처럼 개교를 서둘렀던 것은 입학 예정자 전형을 이미 마친 상태에서 설립 확정이 신학기가 시작되는 4월을 넘긴 탓이었다. 5월 12일 열린 개교식은 경성제국대학 총장의 사무를 대행했던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아리요시 주이치(有吉忠一)가 주관했다. 이완용이 축사를 했고, 예과 수석 입학생인 유진오가 입학생 대표로 발언을 했다(이충우·최종고, 2013: 55~57). 입학식을 참관했던 한국인 기자는 그 소회를 『개벽』 1924년 7월호에 다름과 같이 썼다.



출처: 『동아일보』, 1924. 5. 13, 2면.

[그림 2-3-5] 1924년 경성제국대학 개교 당일의 예과 건물과 수업 풍경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개교식을 보고서」: 이날로 말하면 조선에서 경사스러운 날이라 할 수 잇다. 서양식 교육이 수입된 지 30여 년에 아직것 최고 학부를 가지지 못하야 중학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외국에 유학을 가

> 지 안으면 그 이상 연구를 하기 어렵던 조선에서 대학을 가지게 된 것은 문화상은 물론이거니와 기타 각 방면으로 보아 대단히 반갑고 깃분 날이다. 그러나 나는 문간을 드러가면서부터 이상스러운 늣김을 가지게 되엿다. 말하면 반갑고 즐겁다는 것보다도 가이업고 애닯다는 말할 수 업는 비애를 가지게 되얏다. 그 이유는 일언으로 폐지하면 '이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1924년 5월 경성제국대학이 이처럼 공식 출범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수업 시작은 부속기관인 대학 예과에만 해당되었다. 즉, 대학 교육이 아니라 그 예비 교육이 이 시점에 시작된 것이다. 제국대학의 부속기관이지만 대학 예과는 성격상 일본 본토의 구제 고등학교와 동일했다. 따라서 경성제국대학의 본과, 즉 대학 과정은 이 예과가 수료생을 배출하면 이를 받아들이면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대학 예과는 2년제였으므로 1926년 4월에 학부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다. 이처럼 당시 경성제국대학은 부속기관만 있고 실체에 해당되는 학부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전임 총장 대신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대학 총장의 업무를 대행했던 것도 아직 대학이 출범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전제한 것이다. 이 사이에 총장 예정자인 핫토리는 도쿄에 머물면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강좌 구성 및 교수 인선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는 핫토리가 재직하는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와 문학부의 인적·학적 네트워크가 주로 동원되었다. 의학부의 강좌 구성과 교수 인선은 조선총독부의원의 원장이자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장이며 학술적으로는 세균학의 대가로서 세계적으로 저명했던 시가 기요시가 담당했다.

그리고 1926년 5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와 의학부가 공식 출범했다. 학부 출범에 앞서 4월 도쿄제국대학 교수와 겸임 형태로 초대 총장에 취임한 핫토리는 서울에 도착한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성제국대학은 물질적으로 빈약하지만 내용적으로 충실하고 싶다. 교육시설은 다른 대학과 손색없도록 하겠다. 조선문학·사학 2강좌를 설치한 것이 특색이다. 현재는 한국인 교수가 없지만, 대학생이 졸업하면 연구자가 생길 것이므로 교수도 나올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이충우·최종고, 2013: 107~108). 하지만 한국인 교수, 특히 강좌를 맡는 정교수에 한국인이 취임하는 경우는 경성제국대학이 존속되는 동안에 전무하다시피 했다. 의학부는 짧은 기간 재직한 조교수가 두 사람 있었을 뿐이고, 법문학부는 교

수는커녕 조교수 한 사람도 없었다. 전쟁 말기 이공계 인력 수급의 필요성이 급증하면서 이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 전개되자, 지질학·광산학 분야의 한국인 학자를 교수로 임명했지만 1개월이 갓 지나서 일본은 패전을 맞이한다.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이었다.

2) 경성제국대학의 조직과 운영

(1) 일본 제국대학 조직의 특징과 경성제국대학

당시 제국대학의 기본 조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학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조직, 대학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할하는 관리 운영 조직, 그리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및 교육 활동을 다양한 수준에서 보조하는 부속 조직이 그것이다. 경성제국대학은 '경성제국대학에 관한 건', 즉 "'제국대학령'에 의해 설립된 대학"임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국대학의 조직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먼저 제국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으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학부와 강좌였다. 강좌가 개별 전문 분야의 전문가인 강좌교수를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기본 세포라고 한다면, 학부는 학문 분야별로 강좌들이 모여서 교육과 연구의 자치가 실제로 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국대학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중심 조직이라 하겠다. 제국대학에는 대학원도 있었지만, 오늘날과는 달리 정규 교과과정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다. 당시 연구자 지망생들은 스승인 교수의 연구와 교육을 도와가면서 '어깨 너머로 배우는' 도제적인 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대학원보다는 학부와 강좌가 후속세대 양성 측면에서 여전히 중심적인 조직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런 제도적 특징은 경성제국대학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경성제국대학 또한 강좌를 기본 단위로 교수의 신분과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법문학부, 의학부, 이공학부 3개 학부가 교육과 연구가 반(半)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이 중심이었다. 학부 단위의 아래에는 학과와 전공이 있었지만, 법학과나 의과처럼 학부와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 학과가 많았고, 실제 학사 운영도 강좌의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학부 단위에서 결정, 운영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대학만큼 중요성은 크지 않았다.

둘째, 제국대학의 관리 운영 조직은 한편으로는 문부대신의 감독을 받아 대학의 일반 업무를 통독(統督)하는 대학 총장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강좌를 책임지는 교수가 중심이 되어 학부 단위의 학사 운영을 자치적으로 하는 교수회가 있었다. 대학 총장은 판임관 이하의 대학 직원에 대해서 직권으로 진퇴를 결정할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등관에 해당하는 교원(교수, 조교수)과 직원(사무관, 사서관)에 대해서도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절차만 거치면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수들의 자치조직인 교수회와 대학의 상급 기관 사이에서 대학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중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총장은 자문기관으로 각 학부에서 차출된 중진 교수로 구성된 평의회를 두었는데, 평의회는 총장과 학부 단위의 교수회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이러한 관리 운영 조직의 특징은 식민지의 제국대학인 경성제국대학에서도 대부분 관철되는 양상을 보인다. 학부 교수회는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에서는 '자치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아 일부 교수들의 거취를 간섭했지만, 반제동맹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재정학 강좌 교수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930년대 말까지 경성제국대학은 인사권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본토의 제국대학과는 달리 문부대신을 대신해서 조선총독의 감독을 받는 경성제국대학 총장은 관등상으로는 조선총독부에서 정무총감 다음에 놓일 정도로 높은 위상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경성제국대학의 총장 선임도 1930년대 들어서면 본토의 제국대학과 마찬가지로, 학부의 교수회가 주도권을 가지는 등 일정 수준의 '대학자치'가 실현되는 영역이었다.

셋째, 제국대학의 부속 조직 중 대표적인 것은 부속도서관과 부속의원이다. 도서관은 각 학부-강좌가 교육, 연구에 필요한 서적들을 수집, 등록, 관리하는 역할을 했으며, 부속의원은 의학부의 연구, 임상교육 및 실습의 공간이었다. 독립된 연구 조직, 즉 연구소도 있었다. 이 중에는 대학에 설치되어 있지만 천황의 칙령을 받아 예산과 운영이 독립적인 부치(附置) 연구소가 있는가 하면, 학부에 소속된 연구소도 있었다.

이와 같은 부속 조직의 구성 방식에서도 경성제국대학은 다른 제국대학과 크

게 다르지 않았다. 1926년 학부 설립과 동시에 출범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의욕적으로 서양의 장서와 잡지를 입수하여 구축하는 한편,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보관하고 있던 규장각 장서도 이관받아 1945년 패전 직전에는 조선총독부 도서관을 넘어서는 조선 최대의 도서관으로 성장했다. 부속도서관을 비롯해 경성제국대학의 도서관 시설이 소장한 장서들은 경성제국대학의 연구자들이 조선은 물론 만주, 몽골, 중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가 되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는 연구소의 설립도 활발해졌다. 1939년 의학부의 부속 연구소로 생약연구소가 설립되었고, 1942년에는 결핵문제를 다루는 고지요양연구소가 부치 연구소로 설립되었다. 1945년 6월에는 1932년부터 경성제국대학이 전학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해 왔던 만몽문화연구회와 대륙문화연구회의 연장선상에서 대륙자원과학연구소가 부치 연구소로 설립되었다. 이처럼 경성제국대학의 연구소는 식민지 조선에 설립된 제국대학이라는 입지조건을 십분 감안해 여기서 개발된 학술적 지식을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학문봉공(學問奉公)'의 이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경성제국대학은 일본 제국대학 특유의 조직 구조를 공유하고 있었고, 대학의 위상과 졸업생의 특권도 최소한의 수준에서는 다른 제국대학과 다르지 않았다. '신생' 대학이라는 불리함, '식민지' 대학이라는 (일본인 입장에서의) 취약성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경성제국대학이 일본 본토의 제국대학들과 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경성제국대학이 본토의 다른 제국대학들과 차별화되는 특색은 오히려 제국대학을 식민지에 배치했다는 입지적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았다. 제국 일본의 '지식-권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 관점은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2) 대학 예과와 식민지의 고등교육

그런 의미에서 경성제국대학의 조직 중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대학 예비 교육을 담당하는 예과가 대학에 부속되었다는 점이다. 1924년 설립이 확정된 경성제국대학은 우선 2년 과정의 대학 예과를 개설했고, 졸업생 배출을 기다려 법문학부는 3년 과정, 의학부는 4년 과정의 학부 교육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앞에서 설명했다. 이것은 일본 본토의 제국대학에서 홋카이도제국대학을 제외하고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제도적 특징이었다. 경성제국대학이 개설한 대학 예과는 대학 조직의 일부지만, 사실 교육의 수준과 내용으로 보면 학부 교육과는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대학과는 성격이 다른 교육기관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일본 본토에서 대학 예비 교육을 담당하는 엘리트 교육기관이었던 구제 고등학교에 비견될 수 있다. 관련 연구자들 중 일부가 경성제국대학의 실질적인 시작을 칙령이 선포된 1924년이 아니라 학부가 개설된 1926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와 같은 대학 예과와 학부의 성격 차이에 주목한 결과다.

◆ 대학 예과의 설립 경위

경성제국대학이 대학 예과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1919년 공포된 '대학령'과 관련이 있다. 이 칙령 12조에는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 예과를 둘 수 있"으며, "고등학교 고등과 정도의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실 이 조항은 제국대학이 아닌 대학으로 새로 승격된 학교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었다. 일본 정부는 어떤 형태든 대학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제국대학과 마찬가지로 최소 13년의 교육기간을 이수한 학생들을 입학생으로 받도록 강제했다. 그 결과 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생긴 2~3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겼다. 새로 승격된 대학은 더 이상 예전처럼 중등학교 수료자를 입학생으로 받을 수 없었고, 전문학교나 구제 고등학교의 수료자를 입학생으로 선발하든가 아니면 공백 기간을 메울 수 있는 예비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령'의 예과 규정은 바로 후자에 대한 법적인 설립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구제 고등학교 수료자의 진학 지원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문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즉 전문부)을 존속시켜 그 수료자 중 진학 희망자를 입학생으로 전형하거나, 아니면 대학 예과를 개설하여 중등학교 수료자들을 받아 '고등보통교육'을 시킨 후 대학에 진학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 결국 대학 예과란 입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을 위해 허용해 준 임시변통적인 교육 조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제국대학은 입학생 확보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대학들처럼 대학 예과를 두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다. 다만 당시로서는 유일한 예외가 1918년 설립된 홋카이도제국대학이었다. 여기에 대학 예과가 설치

된 이유는 일본 본토라 하더라도 홋카이도가 워낙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인 만큼, 구제 고등학교 수료자들이 진학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정근식 외, 2011: 467). 조선총독부는 일단 홋카이도제국대학을 참조해서 경성제국대학에 대학 예과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 설치 이유가 홋카이도제국대학과는 상당히 달랐다.

조선총독부는 그 이유를 ① 이미 '입학난(入學難)'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과 경쟁하는 것은 불리하니 한국인 학생을 보호해야 하며, ② 한국인의 열악한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유학 비용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조선총독부가 예과 설립을 통해 실제로 노린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인 학생들이 일본 본토 유학을 통해 반일·혁신적인 사조(思潮)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목적이었다. 1919년 3·1 운동이 조선과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사실상 주도했음을 목도했던 조선총독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지극히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당연했다.

이런 곡절을 거쳐 대학 예과는 경성제국대학 설립 안건에 포함되어 1924년 5월 경성제국대학관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설립이 확정되었다. 칙령 공포 직후 청량리 교사에서 첫 수업을 시작한 대학 예과는 1926년 4월, 2년 만에 1회 졸업생을 배출한다. 일본 본토의 구제 고등학교와는 달리, 2년 과정이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예과 2년제를 '식민지적 차별'의 증거라고 지적하는데, 확실히 교양 교육과 외국어 교육이 중심인 대학 예비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특히 외국어 교육은 교과과정에 수업시간을 많이 편성하더라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영역이다. 서구의 발달된 전문적인 학술지식을 수용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일본 제국대학의 전통을 고려했을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은 확실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2년제가 특별히 식민지를 겨냥한 차별은 아니었다. 구제 고등학교의 3년제는 이미 1910년대 후반 일본의 교육계 내부에서도 너무 길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1919년 '대학령'은 구제 고등학교의 입학 자격을 중등학교 졸업자에서 4년 수료자로 1년 단축하여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입학 자격을 중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할 경우, 예과 교육은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도 와세다대학과 같은 사립대학은 중등학교 4년 수료자가 지원하는 3년제 예과와 졸업자가 지원하

는 2년제 예과를 모두 운영하기도 했다.[7]

2년제 예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부 교육을 담당하는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의 비판이 두드러졌다. 법문학부의 중진 하야미 히로시(速水滉),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는 『경성일보』 등 신문지상에 예과 교육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결국 대학 예과는 1934년 3년제로 연장되어 전시체제기의 교육 단축 조치가 있기까지 유지되었다(정준영, 2009: 131).

◆ 대학 예과의 교과과정과 교육 내용

대학 예과의 교육 목표와 교과과정,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령 '경성제국대학예과규정'(1924. 5. 2; 부령 21)을 통해서 그 대략을 확인할 수 있다. 1924년 2년제로 출발했던 대학 예과는 법문학부 진급 예정인 문과와 의학부 진급 예정인 이과로 구분해서 운영했는데, 학생들은 대학 예과에 지원할 때부터 법과 계열, 문과 계열, 의과 계열 중 하나를 선택했으며 원칙적으로 지망 계열은 바꿀 수가 없었다. 조선총독부와 대학당국은 원활한 학부 교육을 위해서는 예과 교육의 단계에서 미리 '전문성'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기간은 처음에는 논란 많은 2년제였다가 1934년에 3년제로 연장되어(1934. 3. 31; 부령 35), 일본 본토의 구제 고등학교와 동일해졌다. 1942년에는 수업연한의 변경 없이 교과목이 대폭 변경되었고,[8] 1943년에는 예과를 2년으로 단축하는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지만(1943. 5. 7; 부령 138), 이것은 일본 본토의 교육정책 변화와 보조를 맞춘 결과였다.

예과 교육의 목표는 "경성제국대학 예과는 같은 대학 각 학부에 입학할 자에 대해 고등보통교육을 완성시키고 특히 국민 도덕의 충실에 힘씀을 목적으로 한다(§1)"이다. 이에 따라 교과목 전체(§3)와 문·이과의 교과목 및 시간표를 규정했다(§5, §6). 예과 문과와 이과 교과목의 변천은 [표 2-3-1], [표 2-3-2]와 같다.

대학 예과 각 교과목의 내용 및 교과 구성은 '고등학교규정'(1919, 문부성령 4) 제5~8조, 제10~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했는데(§4), 예를 들어 대학 예과가 3년제로 늘어난 1934년의 교과 시간표를 보면, 문과의 경우에는 국어·한문이 1학

7 와세다대학은 이들 예과를 각각 '第一早稲田高等學院', '第二早稲田高等學院'로 명명했다.

8 '경성제국대학 예과규정의 임시조치에 관한 건'(1942. 9. 2; 부령 220) 참조.

[표 2-3-1]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 교과목 변천 단위: 시수

과목	1924		1934			1938		
	1년	2년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수신(§5)[1]	1	1	1	1	1	1	1	1
국어 · 한문(§6)	5	5	5	5	6	5	5	6
제1외국어[2](영)(§7)	8	10	10	9	9	10/4	9/4	9/4
제2외국어(독)(§7)	4	4	4	4	4	4/10	4/9	4/9
역사(§8)	4	4	3	5	4	3	5	4
지리(§9)	-		3	-	-	2	-	-
철학개론(§10)		3	-	-	3	-	-	3
심리 · 논리(§11)	2	2	-	2	2	-	2	2
법제 · 경제(§16)	2	2	-	2	2	-	2	2
수학(§12)	2	-	3	-	-	3	-	-
자연과학(§13)	2	-	2	3	-	2	3	-
체조[3](§18)	3	3	3	3	3	3	3	3
계	33	34	33	34	34	33	34	34

주: 1) 과목(§)은 '고등학교규정'의 해당 조문
2) 1938년 영어(제1), 독어(제2) 지정 - ① 영어: 갑류 10/9/9; 을류 4/4/4, ② 독어: 갑류 4/4/4; 을류 10/9/9
3) 1928, 1938년 야외 교련의 시수는 체조 시수에서 제외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24. 5. 2; 1928. 9. 13; 1934. 3. 31; 1938. 4. 19.

년에 5시간, 3학년에 6시간을 배정한 것, 그리고 제1외국어(영어)가 매년 1시간이 더 많은 것을 제외하면 구제 고등학교의 교과 시간표와 동일했다. 이과의 경우에는 제1외국어(영어)는 매년 2시간, 제2외국어(독일어)는 매년 1시간, 수학은 7시간, 물리, 화학은 각 1시간이 더 많으며,[9] 일본 고등학교에는 없는 역사와 법제 · 경제는 2시간이 더 많았다(정준영, 2009: 173~174).

이처럼 대학당국은 예과 입시부터 교과목, 교육 시간, 교육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일본 구제 고등학교와 최소한 동등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조선이 제국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 학교의 외국어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을 것을 우려한 대학당국은 외국어 교육의 비중을 크

9 광물 · 지질은 1938년에 신설되었으며 시수(時數)는 같다. 도화는 1934년에 폐지되었다가 1938년에 부활되었는데 시수는 같다.

[표 2-3-2] 경성제국대학 예과 이과 교과목 변천 단위: 시수

과목	1924		1934			1937			1938		
	1년	2년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수신(§5)[1]	1	1	1	1	1	좌동			1	1	1
국어 · 한문(§6)	2	-	4	2	-	좌동			4	2	-
제1외국어(영)(§7)	10	10	10	10	8	10	9	9	7/3	7/3	7/3
제2외국어(독)(§7)	4	4	3	3	3	좌동			4/10	4/9	4/9
라틴어(§7)	-	1	-	-	1	좌동			-	-	0/1
수학(§12)	4	3	4	4	3	좌동			4	5/4	6/3
물리(§14)	3	5*	2	2	5*	좌동			2	2	5*
화학(§14)	3	5*	2	2	5*	좌동			2	2	5*
식물 · 동물(§15)	3	4*	2	5	3*	2	4	4[2]	2	2/4	0/4
광물 · 지질(§15)	-								-	-	2/0
심리(§11)	2	-	-	-	2	-	2	-	-	2	-
도화(§17)	1	-	폐지						2/0	2/0	2/0
역사(§8)	-		2	-	-	좌동			2	-	-
법제 · 경제(§16)	-		-	2	-	좌동			-	2	-
체조[3](§18)	3	3	3	3	3	좌동			3	3	3
계	34	34	33	34	34	33	34	34	33	34	34

주: * 강의와 연습[2시간] 구성
1) 과목(§)은 '고등학교규정'의 해당 조문
2) 식물/동물식물(연습강의)/동물(연습강의)
3) 1928, 1938년 야외 교련의 시수는 체조 시수에서 제외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24. 5. 2; 1928. 9. 13; 1934. 3. 31; 1937. 2. 2; 1938. 4. 19.

게 늘려서 일본 본토에 많이 뒤처지지 않도록 애썼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학(共學)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어 교육, 즉 국어·작문의 교육 비중도 높였다. 식민통치에 관한 상황 인식의 필요성 때문인지 이과에 역사 과목과 법제·경제 과목을 추가하기도 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기초학문 분야, 특히 과학 분야의 교육은 상당히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제국대학 입학을 보장받은 예과 생도들의 정체성은 대체로 '우리는 구제 고등학교 생도와 다르지 않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당시 구제 고등학교는 일본 엘리트의 산실로서 장래의 엘리트들에게 상당히 폭넓은 사유와 활동의 자유를 허용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정선이, 2002: 72~77). 이것은 구제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이 도쿄제국대학 법학부나 의학부와 같이 일부 초인기 분야를 제외하고는 무시험으로 제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덕분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이미 구체적인 대학 진학을 결정해 놓고 있었던 경성제국대학 예과 생도들도, 본토의 고등학교 생도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지적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 가령 1932년 예과에 입학했던 고재호는 학창시절에 조선에서 상영된 영화는 거의 다 보았으며, 진보 성향의 잡지인 『중앙공론』, 『개조』, 그리고 가와가미 하지메(河上肇)의 『제2가난이야기』, 『자본론』 등을 탐독했는데, 외국어만은 영어를 매주 10시간, 독일어는 4시간을 공부했다고 회고한다(고재호, 1985: 220~223). 1934년 예과 입학생 홍진기는 그 시절을 교과 이외의 학문, 문학과 철학 등의 독서로 사유의 폭을 넓힌 낭만의 계절로 떠올렸다(간행위원회, 1993: 20~21). 이것은 사상과 행동의 자유가 심각한 수준으로 제약·훼손되었던 학교 밖의 식민지 공간과 극렬하게 대비된다.

◆ 대학 예과의 교원

대학 예과의 교원은 1924년 출범 당시 주임관인 교수 15명, 판임관인 조교수 2명, 총 17명으로 출발하여 이듬해 2명이 증원된 후, 1936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 이후 교육 기간의 연장, 이공학부 설립에 따른 교과 증설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일본의 구제 고등학교에 비해서 규모로는 매우 작은 수준이었다. 교원은 주로 교수 위주로 채용되었는데, 식민지로의 부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해서 직급을 올려주는 특혜 등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다만 제국대학의 부속기관이었기 때문에 학부 교수들이 강사 자격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장점은 있었다. 대학 예과 교수·조교수의 정원 및 교원의 구성은 [표 2-3-3], [표 2-3-4]와 같다.

예과 교수들 중 부장인 오다 쇼고(小田省吾, 1871~1953)는 1926년 학부가 개설되면서 법문학부 조선사 제2강좌의 교수로 부임했으며, 재외연구원들도 기본적으로는 학부의 교수 자원으로, 예과 교원의 신분으로 해외유학을 마친 이후에는 모두 법문학부 조교수로 부임했다. 예과 교수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당시의 신문, 잡지 등에서 일화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가령 영어 담당의 블라이스(R. H. Blyth) 교수는 채식주의자이며 반전사상가로 제1차 세계대전에 징집을 거부하여 2년간 복역한 바 있고, 음악을 좋아하여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도 했

[표 2-3-3] 경성제국대학 예과 교수와 대학 조수 정원 변천(1924~1944) 단위: 명

연도	교수	조교수	계	연도	교수	조교수	계
1924	15	2	17	1936	23	2	25
1925	18	1	19	1938	25	2	27
1926	-	-	-	1939	27	2	29
1927	-	-	-	1940	28	3	31
1928	-	-	-	1941	29	3	32
1929	19	1	20	1942	31	3	34
1932	18	1	19	1943	32	3	35
1934	19	1	20	1944	-	-	-

주: 같은 해 최고치 제시, 변동이 없으면 미기재

출처: 『조선총독부관제』 각 연도.

[표 2-3-4] 경성제국대학 예과 교원의 구성

직위	교원(담당)
예과 부장	오다 쇼고(小田省吾*; 수신 · 조선사)
예과생도감	구로타 간이치(黑田幹一*; 독일어), 노리다 사카에(律田榮*; 화학 · 수학)
예과 교수	가이노 요시시게(械能義重*; 영어), 모리 다메조(森爲三; 식물 · 동물 · 자연과학) 오지마 다카이치(尾島鷹市; 독일어), 후쿠도미 이치로(福富一郎*; 심리 · 논리) 곤도 도키시(近藤時司*; 국어[일어]), 다카다 신지(高田眞治*; 한문) 나코시 나가지로(名越那珂次郎; 동양사 · 서양사), 야마나베 아키유키(山邊曉之*; 물리) 고타마 사이조(兒玉才三*; 독일어), 요코다 쇼사부로(橫田將三郎*; 수신 · 철학개론 · 윤리) 아베 긴지(阿部欣二*; 물리), 후지이 아키오(藤井秋夫; 영어) 야마모토 로쿠로(山本六郎; 수학 · 물리), 고니시 에이이치(小西英一; 화학)
예과 조교수	도키토 마쓰오(時任文夫; 체조 · 검도)
예과 강사	노구치 리이치로(野口理一郎; 체조, 육군보병 소령), 야자와 히로시(矢澤浩; 식물) 이토 노리오(尹藤憲郎; 법제 · 경제, 판사), 윤태동(尹泰東; 조선어) 도오타 운유(遠田運雄; 도화), 요제프 후스(독일어), R. H. 블라이스(R.H. Blyth; 영어)
재외연구원	야마다 후미오(山田文雄; 경제학), 기요미야 시로(淸宮四郎; 법학)

주: *는 1924년 대학 예과 개설과 동시에 임명된 교수들.

출처: 『경성제국대학일람(京城帝國大學一覽)』, 1927.

던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자비로 장학금을 주는 등 학생들의 신망이 컸으며, 조선과 일본의 고미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부인과의 이혼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 태평양전쟁 직후 외국인 수용소에 감금되기 직전까지 대학 예과의 강사로 근무했다(『동아일보』, 1939. 12. 14). 블라이스

와 미국인 선교사 케르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는 날에도 수업을 하고 있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 수업 도중에 연행되었는데 케르는 평온한 태도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는 일화도 있다(이충우 · 최종고, 2013: 98~101, 315).

(3) 학부의 교육과 연구: 법문학부와 의학부

◆ 학부의 조직과 강좌의 편제

1926년 경성제국대학은 법문학부와 의학부, 2개의 학부로 출발했다. 이 중 법문학부는 다시 법과 계통의 법률학과와 정치학과, 문과 계통의 철학과, 사학과, 문학과 등 모두 5개 학과가 있었다. 다만 정치학과는 1927년 폐지되어 법학과로 통합되었다.[10] 법문학부의 설립은 사상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인 학생의 강한 법학 지향[11]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다만, 법학부의 설치마저 허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조선총독부는 규슈제국대학이나 도호쿠제국대학이 설치했던 법문학부, 즉 법과계와 문과계 강좌들을 묶어서 하나의 학부를 만드는 방법을 채용했다. 학문분과주의의 폐단을 막고 문과와 법과가 결합된 통합적인 교육을 지향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馬越徹, 2001: 146~148; 정선이, 2002: 104~105; 이준식, 2014: 57). 하지만 실제 법문학부가 정말 학문분과주의의 폐단을 넘어섰는지는 의문이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법과계와 문과계가 다시 분리되어 운영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정준영, 2009: 146~148).

제국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의 기본 단위는, 앞서 설명했듯이 '강좌제(chair system)'다. 각 학부의 교육 내용과 연구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그리고 교수의 정원을 정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칙령을 통해 강좌의 종류와 수를 정함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강좌'는 번역어로 채택된 한자어[講座]가 일상적인 맥락에서는 강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혼동이 있기도 하지만, 제국대학에서 '강좌'라는 것은 실제로는 독일 학계로부터 수용될 당시의 원래 의미, 즉 '자리'에 가까웠다. 다시 말해, 강좌는 연구자이면서 동시에 교육자인 교수의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연구와 교육 활동을

10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 법률학과, 정치학과, 철학과, 사학과 급 문학과 설치의 건'(1926. 4. 1; 부령 31) 및 개정(1927. 3. 18; 부령 15).

11 관료 진출 등을 이유로 일본인 역시 법과 선호 경향이 강했다(정근식 외, 2011: 474).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였다(정근식 외, 2011: 311~312). 실제로도 제국대학에서 강좌는 천황의 칙령에 의해서 보장받았고,[12] 따라서 이 강좌를 담임하는 교수도 최상위 고등관에 버금가는 높은 지위를 보장받았다.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강좌를 담당하지 않는 교원, 즉 조교수 및 강사와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수가 강좌 담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전문 분야에서 봉건 영주처럼 군림하는 폐해가 생겨나기도 했다.

경성제국대학도 강좌를 기본 단위로 학부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른 제국대학과 동일했다. 출범 당시 23개 강좌로 출발했던 법문학부는 애초 계획했던 강좌들이 개설되면서 1928년 49개의 강좌 편제가 완성되었다. 법문학부와 같이 출범했던 의학부는 기초의학 계열 강좌 35개를 먼저 개설했고, 2년 뒤 임상강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나머지 강좌가 개설되어 모두 75개의 강좌 편제가 정착되었다. 1940년 방사선의학 강좌가 개설되면서 의학부의 강좌는 76개로 늘어났다. 1941년 신설된 이공학부는 24개 강좌로 시작해서 계속 강좌 수를 늘려갔는데, 1945년 패전 당시 모두 39개 강좌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1926년 2개 학부, 35개 강좌로 출발한 경성제국대학은 1945년 8월 현재 3개 학부, 115개 강좌로 성장했다. 칙령에 규정된 강좌의 규모는 곧 강좌를 담임하는 교수의 정원을 의미하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공석(公席)인 강좌도 존재했다. 이 경우에는 유사 전공의 강좌 교수가 '분담'하거나 겸담을 하기도 했다. 조교수가 강좌를 맡는 사례도 보이는데, 이 경우 대부분은 강좌 교수

[표 2-3-5] 경성제국대학 학부 강좌 수 추이 단위: 개

연도	법문	의학	전체	연도	법문	의학	이공	전체
1926	23	12	35	1941	49	27	24	100
1927	38	15	53	1942	49	27	37	113
1928	49	26	75	1943	49	27	38	114
1929~1939	49	26	75	1944	49	27	39	115
1940	49	27	76	1945	49	27	39	115

출처: 정근식 외(2011: 318).

12 최초의 칙령은 '경성제국대학 각 학부의 강좌의 종류 및 수에 관한 건'(1926. 4: 47)으로, 이는 1944년까지 9차례 개정되었으며, 마지막은 '경성제국대학강좌령'(1943. 10: 597)이었다.

의 내정자로 학문적 경력이 짧아서 일단 조교수로 발령을 한 사례였다. 이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수로 진급하여 정식으로 강좌를 맡았다(정선이, 2002: 106~109; 정근식 외, 2011: 340).

◆ 법문학부 법학과의 강좌 편제와 교과과정

경성제국대학에서 법학과는 문학과, 사학과, 철학과와 더불어 법문학부를 구성하는 학과 중 하나지만, 학문의 성격이나 교육의 목적, 학생의 규모 등 여러 면에서 다른 세 개의 학과와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진다. 도쿄와 교토의 제국대학이었다면 법학과는 법학부, 문·사·철학과는 문학부에 속했을 학과로, 경성제국대학에서는 법문학부로 한데 묶인 형태로 있지만 실제의 학사 운영은 상당히 별개로 이루어졌다. 실제로도 법학과는 연구 활동 측면에서는 독일 학계의 영향으로 국가학, 관방학적(官房學的) 전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편, 교육 측면에서는 국가 엘리트, 즉 관료 양성을 지향하면서 고등문관시험을 예비하는 교과과정을 구축하고 있었다. 개별 강좌의 연구실을 중심으로 교원과 학생의 밀착된 관계를 통해 소수 정예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경향이 강했던 문과 계열의 학과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러한 법학과의 특징은 법문학부 법과 계열의 강좌 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13] 1928년에 대략 완성된 법문학부 강좌 49개 중에서 법과 계열 강좌는 22개인데, [표 2-3-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헌법, 민법, 형법, 국제법 등 전통적인 법률 관련 강좌가 있는가 하면, 정치학, 정치사, 외교사 등 정치학 관련 강좌, 재정학, 경제학, 통계학 등 경제학 관련 강좌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의 법학이 좁은 의미의 법(률)학을 중심으로 관련 사회과학 분야를 국가(과)학의 범주 아래 묶어 놓은 종합과학의 성격이 강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일본 제국대학에서 정치학과는 법학부의 핵심 학과였고, 1919년 경제학부로 분리되기 이전에 경제학과도 법학부의 학과였다.

경성제국대학도 1926년에는 법학과와 더불어 정치학과를 설치했지만, 식민지

13 여기서 주의할 것은 경성제국대학 관련 법령 및 규칙 중에서 강좌와 학과의 관련성을 규정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당시 학과라는 조직은 학생 교육 및 교과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대학의 학사 운영 및 인사의 결정은 (강좌를 기본 단위로 하는) 학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표 2-3-6] 법문학부 법과 계열 강좌 변천 단위: 개

강좌명	1926	1927	1928	강좌명	1926	1927	1928
헌법·행정법	1	2	2	법제사	-	-	1
민사·민소법	1	3	4	경제학	1	1	2
상법	-	1	2	재정학	-	-	1
형법·형소법	1	2	2	통계학	-	-	1
국제공법	-	1	1	정치학·정치사	1	2	2
국제사법	-	-	1	외교사	-	-	1
로마법	1	1	1	계(과목/강좌)	6/6	8/13	14/22
법리학	-	-	1	* 1929년 의학부에 법의학 강좌 개설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26. 4. 1; 1927. 6. 7; 1928. 4. 23; 1929. 4. 23.

상황에서는 '정치학'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듬해인 1927년 법학과로 통합된다. 하지만 정치학과의 폐지로 법문학부의 강좌 편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국가학'이었던 제국대학의 정치학은 연구 주제와 대상의 측면에서 법학 분야, 특히 공법학 분야와 상당 부분이 겹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규슈제국대학 등 본토 제국대학의 법문학부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것은, 경성제국대학의 경우 경제학 계열 강좌가 규슈제국대학의 절반 수준인 4개뿐이었고, '경제학사'의 학위도 수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당시 마르크스주의가 유행하던 상황에서 이러한 불온사조와 연관이 많았던 경제학을 식민지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식민당국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14]

법과 계열의 강좌 편제는 경제학 분야를 제외하면 일본 본토 제국대학의 법문학부에 뒤지지 않을 정도였지만, 정작 강좌를 담임할 교수 충원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규슈제국대학 법문학부가 마침 1924년에 설치되었는데, 특히 법과 계통의 경우에는 교수로 염두에 두었던 상당수의 연구자가 식민지로의 부임을 사양하고 규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결국 경성제국대학의 법과 계통 강좌에는 연구 경력이 짧은 소장학자들이나 학문에 뜻을 두었던 젊은 관

14 경성제국대학의 경제학 강좌는 비록 소규모였지만 '경제연구실'을 중심으로 조선경제사 및 재정사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정준영, 2009: 160~161).

료 및 판사들 중에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강좌 담임으로 부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과 계열의 교수진에 비해 법과 계열의 교수진이 연령대가 현격하게 낮은 양상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따라서 법과 계열 교수들은 부임 초기에는 고등문관시험을 통과했던 경력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강의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고문문관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데 신경을 쓰는 한편, 부임 이후 비슷한 처지의 동료 교수와 강독모임 등 적극적인 연구 협력을 통해 성과를 축적해나가는 경향이 강했다. 전후 일본의 공법학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이른바 '경성공법학자'[15]로 지칭된 일련의 법학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경성제국대학의 교수 시절은 연구자로 성장해가는 인큐베이터 시기였다. 물론 이들 일본인에게 식민지가 어떠한 의미를 가졌으며 학자로서 어떻게 성찰적으로 접근했는지를 묻는다면 이들이 거둔 학문적 성취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조선이란 천황제 파시즘으로 엄혹했던 시절, 몸을 낮추고 실력을 쌓아가는 절호의 공간 이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를 식민지의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학문적으로 풀어내려 애쓴 연구자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법문학부 법학과의 실질적인 교육 목표는 국가 관료 양성에 있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고등문관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게 하는 동시에, 국가 관료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키워낸다는 것이다. 이런 법학과의 교육 목표는 창설 당시부터 표방되었던 경성제국대학의 대학 이념, 즉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는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동양문화, 조선문화 연구의 권위"로 자리 잡는다는 지향(정선이, 2002: 111~112)과는 얼핏 배치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관료 양성이 일본의 제국대학이 전통적으로 맡아왔던 역할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법학과의 '고시에 편중'된 교육과정이야말로 제국대학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과 교과과정의 변천은 [표 2-3-7]과 같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초창기 법학과는 로마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외국어 과목을 강조하는 등 법학자의 양성도 염두에 두고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있

15 '경성공법학자'에 관하여는 김효전, 2013,「경성제대 공법학자들의 빛과 그림자」,『공법연구』(한국공법학회) 41, 4; 石川健治, 2006,「コスモス-京城學派公法學の光芒」, 岩波講座『「帝國」日本の學知』, 第1卷 酒井哲哉編,『「帝國」編成の系譜』(岩波書店).

[표 2-3-7]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교과과정 변천

교과목	1926년		1927년 세부 교과목	1930년 세부 교과목	1935년 세부 교과목(모든 세부 과목은 1단위임)		
	법	정(政)			제1류	제2류	제3류
헌법	⦿1	⦿1	헌법	좌동	⦿헌법	⦿헌법	⦿헌법
행정법	◇2	⦿2	총론/각론	좌동	◇총론/각론	⦿총론/각론	◇행정법
민법	⦿5	⦿5	총칙/물권/채권총론[1]/채권각론/친족 · 상속[5]	좌동	⦿민법[1-4] ◇민법[5]	⦿민법[1-3] ◇민법[4 · 5]	⦿민법[1-4] ◇민법[5]
상법	⦿2	◇2	총칙 · 회사법 · 상행위법/어음법 · 보험 · 해상법[2]	좌동	⦿총칙 · 상행위법/회사법/어음 · 수표법/보험 · 해상법	◇상법	⦿상법[1-3] ◇상법[4]
민사소송법(파산법 포함)	⦿2		총칙 · 제1심소송절차 · 상소/강제집행 · 특별절차 1/파산법	총칙 · 제1심소송절차 · 재심 · 상소 · 독촉절차/강제집행/파산법 ◇파산법	⦿총칙 · 판결절차/집행 · 집행보전절차		
형법	⦿1	◇1	총론/각론	좌동	⦿총론/각론	⦿총론/각론	◇총론 각론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좌동	⦿형사소송법		
국제공법	◇2	⦿2	평시/전시	국제공법2	◇평시/전시	⦿국제공법[2]	◇국제공법[2]
국제사법	◇1	◇1	국제사법	좌동	◇국제사법	◇국제사법	◇국제사법
법리학	◇1	◇1	법리학	좌동	⦿법리학		◇법리학
로마법	⦿1		로마법	좌동	⦿사법◇공법	◈사법/공법	
법제사	◇2	◇2	서양/동양	좌동	◇동양/서양	◇동양/서양	◈동양/서양
법의학			법의학	좌동	◇법의학		
연습 · 특강[3]					▣연습 · 특강	▣연습 · 특강	▣연습 · 특강
정치학		⦿1	정치학	좌동	◇정치학	⦿정치학	⦿정치학
정치사		⦿1	정치사	좌동		⦿정치사	◇정치사
정치학사		◇1	정치학사	좌동		◇정치학사	◇정치학사
외교사		⦿1	외교사	좌동		⦿외교사	◇외교사
경제학	◇3	⦿3	경제학	좌동	⦿경제원론	⦿경제원론	⦿경제원론
재정학		⦿2	재정학	좌동	◇재정학	⦿재정학	⦿재정학
통계학		◇1	통계학	좌동		◇통계학	⦿통계학
경제정책			경제정책	상공/농업	◇농업/상공	◈경제정책[4]	⦿경제정책
경제학사							◇경제학사
경제사							⦿경제사
화폐금융론					◇1화폐 · 2금융	◈화폐금융론	◈화폐금융론[4]
사회법					◇사회법	◇사회법	◇사회법
사회정책						⦿사회정책	⦿사회정책
외국어	⦿1	⦿1	①	좌동	⦿강독연습	⦿강독연습	⦿강독연습
단위 필수	14	19	34	35	18	19	19
단위 전체	25	28			37	35	35

※ 가) [세부] 교과목 및 부호 다음의 숫자는 단위
나) 좌측은 교과목, 우측은 세부 교과목임(예: 행정법[교과목], 총론 · 1부, 각론 · 2부[세부 교과목])
① 외국어 참고서 강독 등의 이수 단위는 교수회의 결의로 결정
⦿: 필수, ◇: 선택, ◈: 제1, 2부 중 1과목 이수, ▣: 필수 · 선택 모두 개설
1926, 1927, 1930년: 철학과, 사학과, 문학과 소속 과목 2단위 이상 필수 이수

주: 1) 담보물권법은 채권법 총론에서, 1935년 이후 물권법 이전 2) 교과목 평시 · 전시 구분, 수학규정 통합
3) [연습 · 특수강의]: 필수 · 선택과목의 구분 학년 개시 전 지정 4) 필수로 수학하지 않은 자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26. 4. 23; 1927. 4. 4; 1930. 4. 21; 1935. 1. 30.

었다. 하지만 1935년이 되면 교과과정을 세부전공 3개로 나누어, 제1류는 기본 육법과 법리학, 로마법 등이 필수인 점에서 사법 관료를, 제2류는 행정법이 필수이고 소송법과 법리학이 없는 대신 정치학과 외교학이 필수인 점에서 행정 관료를, 제3류는 민사법이 중간에 위치하고 경제학을 강조한 점에서 경제 관료를 양성하는 교과과정으로 특화하는 조치가 이어졌다(이항녕, 2011: 46~47). 다시 말해, 법문학부는 교과과정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및 행정과의 시험과목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편했던 것이다(通堂あゆみ, 2008).

당시 경성제국대학을 다녔던 한국인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법학과 수업은 대체로 이런 교과과정의 원칙을 충실히 따랐던 모양이다. 1934년 4월 법학과에 진입한 고재호는 "법학과는 3년 동안 법률학·정치학·경제학 계열 강좌에서 19단위를, 문학과·철학과·사학과 계열 강좌에서 2단위를 따야 졸업할 수 있었고, 필수와 선택과목은 없었다"고 회고했다(고재호, 1985: 228~229). 1937년 4월 법학과에 진입한 이항녕은 "법학과는 제1류(법률학), 제2류(정치학), 제3류(경제학)로 세분되고 법학과 전체에서 해당 과목을 수강하면 되었으며, 27단위를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었는데, 각 류에서는 필수가 19단위, 선택이 8단위였다. 법률학 위주인 제1류에서는 6법과 법철학, 로마법, 경제원론이 필수였으나, 이수 학년과 취득 단위의 제한이 엄격하지 않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이항녕, 2011: 46~47).

그리고 일본의 제국대학과 마찬가지로 경성제국대학에서는 교수도 자기의 관심 분야나 연구 주제를 자유롭게 강의했으며, 병으로 강의를 거의 못하는 교수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별도로 고등문관시험 준비를 해주기도 했다(이항녕, 2011: 60~64). 이는 1935년의 교과과정 개편은 한편으로는 고등문관시험 합격자 수가 제국대학의 위상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빨리 '실적'을 내고 싶었던 신생 제국대학의 초조함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1930년대 초반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취업난으로 학생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된 고시열풍이 당시 사회상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이충우·최종고, 2013: 174; 장세윤, 2007: 55~57). 실제로 한국인 학생들의 고등문관시험 합격도 1931년 장후영 이후 계속 이어진다. 경성제국대학이 일본 본토의 다른 제국대학에 비해 규모가 현격하게 작았고 역사도 짧았기 때문에, 합격자 수 자체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합격률은 전체에서 3, 4위권이 될 정도로 높았다. 참고로 경성법학전문학교도 15위권 안이었다(장신, 2013: 190~192). 경성제국대학 출신자들은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고등문관시험 행정과를 합격하면 본토에 연고를 가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조선총독부에 들어가 관료로서 경력을 쌓아갔다. 조선총독부의 사법관 중에서도 한국인의 출신 학교는 경성제국대학 출신이 98명 중 22명으로 가장 많았다(전병무, 2012: 138~141).

◆ 법문학부 철학과·사학과·문학과의 강좌 편제와 교과과정

법학과를 제외한 법문학부의 세 학과는 다른 제국대학이었다면 문학부에 속하는 영역으로 실제로 조직 형태, 강좌 편성, 교과과정 등은 같은 학부의 법학과와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문학, 사학, 철학으로 구분되는 학과 구별은 구체적인 학제(discipline)라기보다는 인문학에 대한 통념에 가까운 구분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중요했던 것도 학과가 아니라 그 하위 범주인 세부 전공이었다. 철학과에는 철학, 윤리학, 심리학, 종교학, 미학, 교육학, 지나철학 등 7개의 세부 전공이 있었고, 사학과는 국사학, 조선사, 동양사 등 3개의 세부 전공, 그리고 문학과에는 국어·국문학, 조선어·조선문학, 지나어·지나문학, 영어·영문학 등 4개의 세부 전공이 있었다.

문과계 교육도 기본적으로는 '학과' 단위보다는 '세부 전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학생들의 소속감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943년 3월 법문학부가 문·사·철 3과를 문학과로 통합해 법학과-문학과 2과 체제로 전면 개편했던 것도 사실상 학과가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개편으로 기존의 14개 세부 전공은 문학과에 속하게 되었고, '사회학'이 세부 전공으로 추가되어 모두 15개 전공이 되었다. 문과계의 전공 구성은 대체로 초대 총장이 표방한 경성제국대학의 대학 이념, 즉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는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를 기반으로 "동양문화, 조선문화 연구의 권위"로 자리 잡는다는 지향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일본-조선-중국'을 중심으로 역사, 어문학, 철학(미술사)의 교육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다만 철학 등의 기초 분야에는 일본 본토의 학계에서도 저명했던 중진급 연구자들, 예컨대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 등을 교원으로 다수 배치하여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문과계의 강좌 편제도 이러한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강좌 편제는 학과 체계와는 무관하지만, 강좌의 구체적인 전문 분야가 학과의 세부 전공 및 그 교과과정과 실질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같이 묶어서 정리해 보면

[표 2-3-8]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문과계 강좌 편제 단위: 개

철학과와 관련 강좌				사학과와 관련 강좌			
강좌명	1926	1927	1928	강좌명	1926	1927	1928
철학 · 철학사	1	2	2	국사학	1	1	2
				조선사학	2	2	2
중국철학	1	1	1	동양사학	1	2	2
윤리학	1	2	2	서양사학	-	1	1
심리학	1	2	2	계(과목/강좌)	3/4	4/6	4/7
종교학 · 종교사	1	1	1	문학과와 관련 강좌			
				국어학 · 국문학	1	2	2
미학 · 미술사	1	2	2	중국어학 · 중국문학	1	1	1
교육학	1	1	2	조선어학 · 조선문학	2	2	2
사회학	1	1	1	외국어학 · 외국문학	1	2	2
계(과목/강좌)	8/8	8/12	8/13	계(과목/강좌)	4/5	4/7	4/7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26. 4. 1; 1927. 6. 7; 1928. 4. 23; 1929. 4. 23.

[표 2-3-8]과 같다.

강좌 편제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조선 관련 '강좌'가 천황의 칙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개설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사학 강좌 2개, 조선어학·조선문학 강좌 2개, 모두 4개의 강좌였다. 다시 말해, 조선사 및 조선문학 전문가 4명이 제국대학 교수로 취임할 수 있도록 정원이 확보된 것이다. 이것은 조선 연구가 제국대학으로 대표되는 일본 관학아카데미즘에 편입되어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으며, 대학 설립을 통해 식민지 조선에 대한 '학지'를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기구를 구축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들 강좌의 연구자들은 일본사, 일본어·일본문학 강좌와 함께 조선 연구의 핵심이 되었으며 조선총독부의 지원으로 방대한 자료에 바탕을 둔 실증적 연구 성과를 산출했다.

다른 제국대학에 비해서 중국 관련 강좌가 많은 것도 강좌 편제의 특징이다. 지나철학과 문학, 그리고 동양사학 강좌 2개, 합해서 4개의 강좌였다. 경성제국대학이 대륙 진출의 길목에 있다는 제국 내의 지정학이 반영되어 있는 학문의 전략적 배치였다. 그리고 종교학, 미술사,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의 강좌도 식민지 및 대륙 진출 상황에 대한 현지조사 및 연구가 가능한 일본인 전문가가 교수로 초빙되어 1930년대 이후 조선 및 만주 연구를 수행했다.

[표 2-3-9]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3전공 교과목

학과	구분	과목 및 단위
철학과	개설(51)	철학 · 철학사 7, 윤리학 7, 심리학 7, 종교학 · 종교사 7, 미학 · 미술사 7, 교육학 · 교육사 7, 중국철학 7, 사회학# 2
	수강(§8)	필수: 전공 7, 어학 2, 선택: 필수 외 철학 8, 기타 4
사학과	개설(23)	국사학 7, 조선사학 7, 동양사학 7, 서양사학# 2
	수강(§8)	필수: 전공 7, 어학 2, 선택: 필수 외 사학 6, 기타 6
문학과	개설(33)	국어학 · 국문학 7, 조선어학 · 조선문학 7, 중국어학 · 중국문학 7, 영국어학 · 영국문학 10, 언어학# 2
	영어	필수: 전공 10, 영어 외 어학 1, 선택: 필수 외 전공 6, 기타 4
	기타	필수: 전공 7, 어학 2, 선택: 필수 외 문학 6, 기타 6
외국어(§1)		독일어학, 프랑스어학
법학과 과목		2단위 이상 필수

주: # 사회학, 서양사학, 언어학: 전공과목이 아니나 필수 수강 과목(§6, 7).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26. 4. 23.

서양의 학문적 조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좌가 적게 배정되었는데, 그래도 철학·사상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본토 학계에서 다이쇼 교양주의를 대표했던 중진급 철학자들이 강좌의 교수를 맡으면서 부분적이나마 취약점을 상쇄하고자 했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이들의 강의는 특히 한국인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정준영, 2009: 158~159).

교육과정은 처음에는 법문학부의 창설 취지, 즉 학문분파주의의 극복에 초점을 두고, 각 학과별로 필수 및 선택 단위를 정했다. 특별한 과목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개설된 강의 중에 최소 몇 단위 이상을 듣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유도가 무척 높았던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법학과의 개설 과목도 반드시 2단위 이상 듣도록 규정해서, 문과 계열의 다른 분야 과목뿐만 아니라 법과 계열의 과목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당시 2년제로 운영되던 예과과정의 취약점을 감안해 외국어 과목 이수를 강조했다. 학부 창설 당시의 교과과정은 [표 2-3-9]와 같다.

그리고 1927년부터 세부 전공이 개설되기 시작하면서, 교과과정 또한 세부 전공을 기준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1927년에는 철학과 5개(철학, 윤리학, 심리학, 교육학, 지나철학), 사학과 3개(국사학, 조선사학, 동양사학), 문학과 3개(국문학, 조선문학, 지나문학), 모두 11개의 세부 전공이 개설되었으며, 종교학이 1928년, 영어학·

[표 2-3-10] 1927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3전공 교과목

과	구분	과목 및 단위
철학과	철학	철학개론, 서양철학사개론 2, 윤리학 · 인식론, 철학연습 3, 철학특강 2, 희랍어 · 라틴어 · 철학 중 8, 타 전공 2
	윤리학	윤리학개론, 윤리학사 2, 윤리학특강 2, 윤리학강독 · 연습 2, 철학과 · 법학과 11
	심리학	심리학개론, 심리학연습 4, 심리학실험연습, 심리학특강 2, 철학과 6, 생리학 · 정신병학 · 생물학 2, 타 전공 2
	교육학	교육학개론, 교육사개설, 각과교수론, 교육행정, 교육학연습 2, 교육학특강, 철학과 · 생리학 · 정신병학 · 생물학 10, 타 전공 1
	중국철학	중국철학사개설, 중국윤리학개론, 중국철학 · 철학사특강 3, 중국철학 · 윤리학강독 · 연습 3, 중국어 1, 타 전공 10
	종교학 (1928)	종교학개론, 종교사개설, 종교철학, 종교학 · 종교사특강(불교사 · 기독교사 포함) 4, 종교학 · 종교사강독연습 3, 타 전공 8
	(1930)	종교학 · 종교사특강(불교사 · 기독교사 포함) 4 → 종교학 · 종교사특강 4
	미학 · 미술사 (1938)	미학개론, 미학연습 2, 미학특강, 서양미술사 2, 동양미술사 2, 타 전공 10
사학과	국사학	국사학개설 · 국사학특강 · 국사학연습 8, 사학과 6, 타 전공 5
	조선사학	조선사학개설 · 조선사학특강 · 조선사학연습 8, 사학과 8, 조선어 · 문학 1, 타 전공 2
	동양사학	동양사학개설 · 동양사학특강 · 동양사학연습 8, 사학과 8, 타 전공 3
문학과	국문학	국어학개론 · 국어학특강 · 국어학연습 · 국문학개론 · 국문학특강 · 국문학연습 9, 타 전공 9
	조선어문학	조선어학개론 · 조선어학사 · 조선어학강독 · 조선사상 및 신앙사개설 · 조선유교사 · 조선문학강독 8, 타 전공 및 동양어학 10(조선어 미해득자 3)
	중국어문학	중국문학개론, 중국문학사 2, 중국문학강독 · 연습 5, 중국어 2, 타 전공 10
	영어문학	영어학(발달사, 문법, 음성학) · 영문학개론 · 영문학사 · 영문학강독 · 연습 9, 타 전공 7, 희랍어 · 라틴어 중 1 영어문학 전공자는 독일어 · 프랑스어 중 1, 기타 영어 · 독일어 · 프랑스어 중 1
외국어(§1)		독일어학, 프랑스어학, 희랍어, 라틴어, 조선어, 동양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 선택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27. 4. 4.

영문학이 1930년, 미학·미술사가 1938년, 사회학이 1943년 개설된다. 다른 세부 전공의 과목 수강은 각 세부 전공의 특징에 따라 수강의 한도가 정해졌다.

그리고 1935년에는 각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하여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이 시기 법학과의 교육과정이 철저하게 관료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편되었다면, 문과 3과의 교육과정은 개별 세부 전공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진행되었다.

[표 2-3-11] 1935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3전공 교과목

과	구분		과목 및 단위
철학과	과목(§22)		철학, 윤리학, 심리학, 종교학, 미학, 미술사, 교육학, 중국철학, 사회학
	공통강의(§24)		철학강의(철학개론, 서양철학사개설), 윤리학강의(윤리학개론, 서양윤리학사개설, 일본도덕사), 심리학강의(심리학개론, 심리학사), 종교학강의(종교학개론, 불교개론, 종교사개설), 미학·미술사강의(미학개론, 미술사), 교육학강의(교육학개론, 교육사개설, 각과교수론), 중국철학강의(중국철학사개설, 중국윤리학개론), 사회학강의(사회학개론, 사회학사개설), 사학개론, 문학개론
	필수선택(§25)	철학	철학강의 2, 윤리학강의, 철학특강·연습 5, 희랍어·라틴어, 문과 4
		윤리	윤리학강의 2, 윤리특강·연습 5(사회학강의, 사회학특강 연습 대체), 중국윤리학개론, 불교개론, 사회학, 문과 3
		심리	심리학강의 2, 심리특강·연습 6, 심리학실험연습, 생리학, 정신병학, 문과 3
		종교	종교학강의 2, 종교학특강·연습 5, 문과 6
		미학	미학·미술사강의 3, 미학·미술사특강·연습 4, 고고학, 문과 5
		교육	교육학강의 2, 교육학특강·연습 4, 교육행정, 철학강의 2, 심리학실험연습, 생리학·정신병학, 문과 2
		중국철학	중국철학강의, 중국철학특강·연습 6, 중국어, 동양사강의, 국어학·국문학·조선문학 2, 중국문학 2
사학과	과목(§22)		사학개론, 국사학, 조선사학, 동양사학, 서양사학, 고고학, 지리학
	공통강의(§26)		국사학강의(개설), 조선사학강의(개설), 동양사학강의(개설), 서양사학강의(개설), 고고학, 지리학, 교육학강의
	필수선택(§27)	국사	국사학강의(시대사) 2, 국사학특강·연습 4, 조선사학, 동양사학, 서양사학, 미술사(일본) 1, 국어학·국문학강의, 타 전공 1
		조선	조선사강의(시대사) 2, 조선사학특강·연습 4, 국사학·동양사학(각 1) 3, 서양사학, 조선어학·조선문학강의, 타 전공 1
		동양	동양사강의(시대사) 2, 동양사학특강·연습 4, 국사학, 조선사학, 서양사학, 미술사(동양), 중국철학강의·중국문학, 중국어·동양어
문학과	과목(§22)		문학개론, 언어학, 국어학, 국문학, 조선어학, 조선문학, 중국어학, 중국문학, 영어학, 영문학, 조선어, 중국어, 노어, 희랍어, 라틴어, 동양어
	공통(§28)		문학개론, 언어학개론, 철학강의·심리학강의·미학·미술사강의, 교육학강의
	필수선택(§29)	국문학	국어학·국문학강의 2, 국어학·국문학특강·연습 5, 조선어학·조선문학, 중국철학강의, 국사학강의, 타 전공 2
		조선	조선어학·조선문학강의 2, 조선어학·조선문학특강·연습 5, 중국어학·중국문학 3, 국어학·국문학 3, 중국철학강의, 조선사강의·동양사강의, 타 전공 1(조선어 3)
		중국	중국어학·중국문학 2, 중국어학·중국문학특강·연습 5, 중국어 2, 국어학·국문학 3, 조선어학·조선문학, 중국철학 2, 동양사학, 타 전공 1
		영어	영어학·영문학강의 3, 영어학·영문학특강·연습 7, 영어(전공자), 희랍어·라틴어, 국어학·국문학, 타 전공 4
외국어			영어, 독어, 프랑스어 중 택 1

주: '보통강의'는 '강의'로, '특수강의'는 '특강'으로, 전공도 약칭했다.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35. 1. 30.

학생들이 다른 전공 영역의 과목을 듣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되었지만, 애초 지향했던 법과와 문과 사이의 결합, 즉 문과계 학생이 법과의 개설 과목을 수강할 여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법문학부 설립 당시의 취지는 1935년의 개편을 계기로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문과 계열의 학생들 중에서도 고등문관 응시 등을 목적으로 법학과의 수업을 체계적으로 듣고자 하는 학생은 문과를 졸업한 후, 다시 법학과에 편입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이것은 불황에 따른 '고시열풍' 탓도 있겠지만, 교육과정 차원에서 법학과와 비(非)법학 사이의 차별화가 커지면서 "문과, 법과에 상관없이 원하는 강의를 듣고, 요구하는 최소 단위의 과목을 이수할 경우, 문학사든 법학사든 경제학사든 원하는 학위를 준다"는 법문학부의 이상과 너무나 멀어진 것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16]

◆ 의학부의 강좌 편제와 교과과정

법문학부와 더불어 1926년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의 학부 중 하나다.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식민지의 상황, 조선 특유의 풍토병, 전염병 등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일본인 거류민을 보호하고 질병의 본토 유입을 막아낼 필요성, 식민지의 위생조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식민통치에 기여할 필요성, 특유의 한의학 및 재래 약초들에 대한 연구를 통한 신약 개발 등 여러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설치되었다. 설립이 추진될 당시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대학에 의학부를 추가로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본토 입장에서도 위생적 관점에서 조선은 적지 않게 중요했으며, 식민지 내부에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의과대학 설립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의학부 설립이 확정되었다. 제국대학 의학부는 다른 학부와 달리 수업연한이 1년 더 긴 4년이었다. 따라서 의학부의 첫 졸업생은 법문학부보다 1년 늦은 1931년 배출된다.

의학부의 각 강좌는 실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실'과 대응하는데, 연구인력의 수급이 어려워 강좌 교수가 담당하지 않지만 필요한 분야를 가르치는 역

16 이러한 수업과 학위 취득 방식은 규슈제국대학 법문학부가 1920년대에 채택했던 교과과정의 형태였다.

할을 맡았던 법문학부의 조교수들과 달리 의학부 조교수들은 교실마다 배치되었다. 따라서 각 강좌=교실은 '교수 1명-조교수 1명-(강사 1명)-조수 약간명-부수 약간명'의 인적 구성을 갖추게 된다. 의학부의 강좌는 학문적 성격에 따라 기초의학 강좌와 임상의학 강좌로 나눌 수 있다. 해부학, 생리학, 의화학, 약물학, 병리학, 미생물학 등 기초의학 계열 강좌는 1926년 의학부 교육이 시작될 당시에 개설되며, 나머지 임상의학 강좌들은 관련 수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추어 1927년부터 1929년 사이에 개설되었다. 1929년이 되면 26개 강좌로 구성된 의학부 강좌 편제의 대략이 완성된다. 1940년 방사선의학 강좌가 추가로 개설되지만 강좌 교수가 배정되지 않았고 교과목도 추가되지 않은 채 다른 교실의 교수, 조교수가 분담하여 운영하는 수준에 머문다. 치과학은 강좌는 없었지만 처음부터 교과목이 개설되었고, 임상의학이 아닌 것은 처음부터 외래강사로 강의를 개설했다. 의학부는 대상이 분명하고 관립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교육과 임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교과목을 쉽게 확정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변동도 없었다.

조선총독부의원장과 경성의학전문학교장 출신인 시가가 의학부 개설을 주도했다. 개설과 함께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거의 모든 시설이 이전되었고, 임상병원조차 빼앗길 우려가 있어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의 불만이 컸다. 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의 강의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도 컸다. 결국 양자는 임상의의 양성과 의학 연구의 병행으로 타협되었다. 의학부 시설은 상당히 훌륭했으며, 단백질, 비타민 등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다(이충우·최종고, 2013: 117~122). 또한 조선의 특징을 살려 인삼 등을 연구했다. 1925년에는 개성 약초재배원을, 1939년에는 생약연구소를 설치했으며, 구충제 등을 연구했다. 생약연구소 제주시험장에서는 디기탈리 등 약초를 재배했다(이충우·최종고, 2013: 302~303).

한편,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의 강좌 편제와 규모는 다른 제국대학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을까. 도쿄, 교토 등 핵심 제국대학과 같은 식민지의 제국대학인 타이베이제국대학을 함께 비교해보면 [표 2-3-12]와 같다.

[표 2-3-12]에서 알 수 있듯이, 강좌 편제는 제국대학의 정점에 있는 도쿄제국대학 의학부를 제외하고는 규모나 편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미생물학 강좌는 도쿄제국대학이나 교토제국대학이 1개 강좌에 머물렀던 반면, 경성제국대학은 2개가 개설되어 있었다. 경성제국대학의 미생물학 제2강좌는 통칭

[표 2-3-12] 제국대학 의학부의 강좌 구성과 경성제국대학 단위: 개

의학부 강좌	경성제국대학 (1940)	도쿄제국대학 (1938)	교토제국대학 (1932)	타이베이제국대학 (1940)
해부학	3	3	3	2
법의학	1	1	1	1
의화학	1	1	1	1
생리학	2	2	2	2
병리학	2	2	2(병리해부학)	2
약리학	2(약물→약리)	2(약리학)	2(약물학)	1(약리학)
미생물학	2(세균 · 기생충)	1(미균학)	1(미생물)	2(세균/미생물)
위생학 · 예방의학	1	1(위생학)	1(위생학)	1(위생학)
혈청화학	-	1	-	-
기초의학 합계	14	14	13	12
정신과 · 신경과	1	1(정신병학)	1(정신병학)	1(정신병학)
산과학 · 부인과	1	2	1	1
내과학	3	4	3	3
내과물리요법학	-	1	-	-
외과학	2	3	2	2
정형외과학	1	1	1	-
방사선의학	1	1	-	-
피부비뇨기과	1	2(피부비뇨기)	2(피부병)	1
안과학	1	1	1	1
이비인후과	1	1	1	1
소아과학	1	1	1	1
치과학	0(치과진료부)	1	-	1
약학	-	1	-	-
약품제조학	-	1	-	-
장기약품화학	-	1	-	-
임상의학 합계	13	22	13	12
강좌 총수	27	36	26	24

출처: 정준영(2009: 113)에서 재인용.

'기생충학교실'로 불렸는데, 병원체인 기생충과 이를 매개하는 곤충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이른바 기생충병의 통제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교실로 제국대학 의학부 중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강좌였다(정준영, 2009: 113). 초대 학장인 시가 기

요시가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위생학 강좌의 경우, 당시 위생의학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는 미국 위생학의 영향을 크게 받아 질병 확산의 방지라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서 질병 예방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모색하고 있었고, 2개의 약물학 강좌 중 제2강좌는 조선 및 만주에 자생하는 전통 한약과 약초에 초점을 맞춰 기존 의약품을 대체하는 새로운 약물 개발을 지향했다(신창건, 2007). 해부학, 법의학 등의 교실에서는 엄밀한 생체계측 등을 통해서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차별성을 식별하는 체질인류학적 작업을 진행했으며(정준영, 2009: 161~164), 이런 체질 차이가 구체적인 질병의 발현에 있어서 어떤 민족적 차이를 낳는지에 대한 임상 연구들이 개별 교실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의학부의 교과과정은 법문학부와는 달리 학생들이 선택할 여지가 없이 학년별, 학기별로 꽉 짜여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주로 1학년에는 해부학, 생리학, 의화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으며, 2학년에는 미생물학, 약리학, 병리학, 위생학 등 나머지 기초의학과 내과·외과 등 핵심 임상의학의 기초가 교육되었다. 3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는 본격적인 임상의학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강의실 이외에 학생들이 분반을 조직해 부속의원을 돌면서 실습하는 수업들이 이루어졌다. 의학사, 의료 관련 법제, 사회의학 등의 과외 강의는 수시로 행해졌다. 이상, '경성제국대학의학부규정'(관청사항, 1926. 4. 24)에 나와 있는 관련 교과목을 강좌별로 묶어보면 [표 2-3-13]과 같다.

(4) 경성제국대학의 연구 활동과 그 명암

제국대학이 교육보다는 연구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제국대학의 '지방 분산'의 형태로 설립된 경성제국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당시에도 식민지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했다. 식민당국은 철저하게 '식민 교육의 완성'에, 대학당국자는 식민당국의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동양 연구의 메카'로 발전하여 국가를 위한 제국대학이 되기를 바랐다. 일부 교수들 중에는 '학문적 자율성'과 '연구 중심'의 관점에서 조선총독부의 입장을 비판하기도 했다(정근식 외, 2011: 45). 그러나 핫토리 우노키치 초대 총장이 1926년 5월 1일 학부 개설의 시업식 훈시에서 "국가의 기초를 동요시키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연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듯이, 경성제국대학은 식민지 대학이라는 한계가 분명 존재했다(馬越徹, 2001: 125~126). 학문의 자

[표 2-3-13]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강좌별 관련 교과목

강좌명(개설 연도)	관련 교과목([ ]는 학년)
해부학(1926)	계통해부학[1], 조직학[1], 해부학실습[1~2], 조직학실습 · 현미경사용법[1], 태생학/국소해부학(1934 신설)[1]
생리학(1926)	생리학[1], 생리학실습[2]
의화학(1926)	의화학[1], 의화학실습[1]
미생물학(1926)	미생물학[1~2], 기생충학[1~2], 기생충학실습[2], 면역학 · 면역학실습[2~3]
약물학(1926)	약물학(처방학 포함)[1~2], 약물학실습[2], 임상약물학[2]
병리학(1926)	병리총론[1~2], 병리각론[2], 병리조직학실습[2], 병리해부학실습[2~4, 수시]/부검시설(1938 신설)
위생학 · 예방의학(1927)	위생학 · 예방의학[1~2], 위생학 · 예방의학실습[1~2]
법의학(1929)	법의학[4]
내과학(1927)	진단학 및 실습[2], 내과각론 · 임상강의[3~4], 외래환자임상강의[3~4]
외과학(1927)	국소해부학[2], 외과총론[2], 붕대실습[2], 외과각론 · 임상강의[3~4], 외래환자임상강의[3~4], 외과수술실습[2]
정형외과학(1928)	정형외과학임상강의[3], 외래환자임상강의(1928. 8 신설)[3~4]
산과학 · 부인과학(1928)	산과학 · 부인과학[3~4], 산과 · 부인과임상강의[4], 외래환자임상강의[4], 산과모형연습[4]
피부과학 · 비뇨기과학(1928)	피부과학[3], 비뇨기과학[3], 피부과학 · 비뇨기과학임상강의[4], 피부과학 · 비뇨기과학외래환자임상강의[3~4]
안과학(1928)	안과학[3], 안과임상강의[4], 외래환자임상강의[4], 검안법 · 시기(視機)검사법실습[3]
이비인후과학(1928)	이비인후과학[3], 이비인후과임상강의[4], 외래환자임상강의[4], 이비인후검사법실습[3]
소아과학(1928)	소아과학[3], 소아과학임상강의[4], 외래환자임상강의[4], 종두실습[4]
이학적 요법과학	이학적 요법과학임상강의[4]
신경과학 · 정신과학(1928. 2)	신경과학 · 정신과학[3~4], 신경과임상강의[4], 정신과임상강의[3~4], 외래환자임상강의[3~4]
치과학	치과학 · 임상강의[3~4]
과외 강의(수시)	의학사, 의사법제, 사회의학, 비교해부학, 인류학, 유전학, 의심리학, 특별강의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26. 4. 24; 1928. 2. 22; 1928. 8. 3; 1934. 1. 30; 1938. 2. 21.

유란 것은 어디까지나 제국대학과 국가가 일심동체를 이룰 때만 허용될 뿐이다. 핫토리는 당시 유행하는 마르크시즘을 경계하여 연구의 실천성을 부인했고, 도쿄제국대학 중심의 관학아카데미즘에서 경성제국대학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즉 정책 과학으로서의 식민지학을 추구했던 것이다(이수일, 2013: 52~54). 조선총독부와 대학당국은 일본에서 할 수 없는 조선의 문화·역사 그리고 한약 연구 등

에 중점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일본 문화의 향상 도모를 경성제국대학 설립의 목적으로 했고(정준영, 2009: 155~156), 결국 조선학·동양학 연구는 '제국의 지역학'으로 자리매김했다. 나아가 문명의 근원지인 중국과 일본을 매개한 조선에 대한 학문 연구와 그 대학의 본질은 가교적인 것으로, 조선의 대학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결국에는 대륙침략의 첨병이 되어야 하는 운명이었다(이충우·최종고, 2013: 108~109).

◆ 법문학부의 연구 활동

법문학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 활동은 앞서 살펴보았던 식민지 제국대학의 궤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대학이 표방했던 조선 연구의 거점은 1930년대 들어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등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륙침략을 자행하게 되자, 점차 연구의 범위를 만주와 몽골까지 넓혀 가면서 대륙 진출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교두보로 역할이 바뀌어갔다. 법문학부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인수한 규장각 소장 도서를 해제·복간하는 한편,[17] 『법문학부기요(法文學部紀要)』 및 각종 조사 책자의 부정기적인 간행과 『논집』의 정기적인 간행을 통해서, 엄밀한 실증적 방법론에 입각한 '조선 및 만몽'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학계 안팎에서 학문적 권위를 확립해 나갔다. 조선총독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런 연구 활동의 이면에는 한국인 연구자들이 배제되고 철저하게 일본인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제점도 분명했다. 법문학부의 학술 활동 중 조선과 직접 관련되는 논저는 61편으로 전체 215편의 약 28%였지만, 한국인 저자는 당시 법문학부의 조수 박문규 단 한 사람에 불과했다(정선이, 2002: 111~117).

사실 제국대학이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비해 '연구본위'를 강조했고 실제로 당시 일본의 학술지식 생산에 있어서도 독점적인 위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지식 생산이 강좌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강좌제의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 대단히 권위주의적이고 분파주의적 성격이 강했다는 사실

17 조선총독부에서는 규장각 소장 도서를 비롯한 전적을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했으며, 복각본 9종 38책, 규장각총서 10종 9책을 간행했다. 경성제국대학에서는 자료의 보급에 중점을 두어 각종 자료를 복간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1929년 11월에서 1933년 3월에 완성한 『조선왕조실록』 영인본 30질을 간행한 것이다.

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였다(정준영, 2009: 52~53). 요컨대 전전 일본에서 제국대학은 근대적 아카데미즘의 디딤돌이자 걸림돌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학아카데미즘의 이중성은 특히 식민지의 맥락과 결합하여 본토 이상의 모순성을 드러내게 된다.

경성제국대학에 부임한 교수들은 훈련받은 전문적 연구자라는 자신들의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식민지 조선에 대한 학술적 지식 생산을 독점할 채비를 갖추게 된다. 부임 직후부터 교수들은 이전부터 활동하던 재조 일본인 지식인들과 접촉하여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있었다. 특히 문과계 교수들 중 조선사, 조선어학, 조선문학 등의 전공자들은 진작부터 재조 일본인 연구자들과 조선총독부 주도의 반도사·조선사 편찬에 관여해 왔는데, 특히 경성제국대학 결성을 계기로 조선사편수회와의 결합이 본격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했다. 1926년 조선사편수회 관련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조선사학동고회(朝鮮史學同攷會)', 1927년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경성독사회(京城讀史會, 1927~1938)'의 뒤를 이어, 1930년 5월 조선에 관한 아카데믹한 연구의 본격적인 등장을 표방하며 '청구학회(靑丘學會)'가 결성되었다. '청구학회'는 이후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청구학총』을 간행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받쳐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1930년대 이후 조선 연구의 주도권을 도쿄에서 경성으로 옮겨놓는 결과를 낳았다(장신, 2014: 86~92). 이들의 연구 작업은 어디까지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역사 서술을 표방하고 있지만, 식민지라는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체가 사상된 타자의 역사를 넘어서지 못했던 것도 분명하다(박광현, 2005: 300).

한편 법과 계열 교수들도 부임 이후 '국제관계조사회', '민사판례연구회', '법률연구회' 등 공부 모임을 결성해서 급변하는 제국의 경계 내부에 존재하는 조선의 현실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장신, 2013: 208~209). 특히 1928년 시카타 히로시(四方博, 경제학 강좌), 오우치 다케지(大內武次, 통계학 강좌) 등 경성제국대학 경제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조선경제연구소'는 방대한 통계 자료를 구축해 "과거의 조선은 봉건제가 결여된 정체된 사회였으며, 식민통치하에서 성장했다"는 종래 후쿠타 도쿠조(福田德三)의 견해를 보다 정교하게 구성해 내는 동시에, 현재와 장래의 조선에 대해서는 '이식자본주의론'과 '일만(日滿)블록론'에 입각해 분석함으로써 식민통치의 불가피성을 도출해 냈다. 물론 이들 중에는 명시

적으로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입각해서 강점 이후 조선의 자본주의화를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예속 과정으로 파악했던 미야케(재정학 강좌)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있었다. 시카타 등도 은밀히 이에 동조하는 바가 없지는 않았지만, 현재 조선의 자주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정체성론에 입각하기는 매한가지였다(이수일, 2013: 58~67).

경성제국대학의 법문학부 교원들은 학부 차원에서도 정기적인 연구회를 통해 상호 학문적 교류를 강화하고자 했다. 1926년 학부 개설 직후에 결성된 법학회와 학회 주최로 매월 열리는 연구회는 점차 문과계 교원들에까지 확대되어 1929년 법문학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이미 경성법학회의 이름으로 1928년 『경성법학회논집』이 출간된 상태고, 법과 계열과 문과 계열은 학문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산하에 1부(법과 계열)와 2부(문과 계열)로 나누고, 원칙적으로는 매년 하반기에 『경성제대법문학회 1부 논찬』과 『경성제대법문학회 2부 논찬』이란 제호를 걸고 출간하도록 했다. 『1부 논찬』은 1928년 발간된 『경성법학회논집』을 1책으로 삼고 1929년 9월 2책을 발간하기 시작하여 1933년 12월까지 모두 6책의 논찬을 발간했다. 한편 『2부 논찬』은 문·사·철 3과가 번갈아 편집하는 형식으로 1929년 9월 1집이 출간되었는데 이후 1934년까지 모두 5집을 발간했다.

1934년이 되면 애초의 법문학부라는 학문 융합적 취지가 많이 약해진 가운데, 사실상 분리 운영되고 있던 1부와 2부의 현실을 감안해서 법문학회는 다시 법학회와 문학회로 분리된다. 법학회는 분리된 이후에도 1940년까지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11책까지 논집을 발간하다가 1941년 12책부터는 계간지로 형식을 바꾼다. 다만 1년에 4호를 발간한 것은 1942년의 13책과 1943년의 14책이었고, 첫해 12책과 1944년의 15책은 3·4호 합본의 형태로 1년에 세 번 논집을 발간하는 데 그친다. 계간지로 형태를 전환한 이후에는 교원들의 논문 이외에도 민사판례연구소의 「고등법원판사판례연구」가 12책 1호부터 14책 4호까지 연재되었고, 독일의 역사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의 주저, 『로마법의 정신(*Der Geist des römischen Rechts*)』의 번역문도 12책 1호


京城帝國大學
法學會論集
第十二冊 第一號
昭和十六年九月一日發行

출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 편(2004: 35).

[그림 2-3-6] 경성제국대학 『법학회논집』

부터 14책 1호까지 수록되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법문학부 조교수인 아리이 즈미 도루(有泉亨, 민법)와 이토 히데오(伊藤俊夫, 농업정책), 그리고 조수였던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인류학)가 참여했던 『남한조사대보고』를 14집에 두 번에 걸쳐서 수록한 것이다.

한편, 1934년 독립한 문학회는 1935년 3월 『경성제국대학문학회논찬』이라는 논집 제목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다시 1집으로 출발한 문학회는 법문학부 창립 10주년에 해당하는 1936년 기념논문집 3권을 비롯하여 모두 5권을 출간했다. 그리고 출판사를 변경한 문학회는 1938년부터 1941년까지 4권의 논찬(7~10집)을 편찬한 뒤 사실상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 1945년 4월 조교수 고노 로쿠로(河野六郎)의 저서 『조선방언학시고-'鋏'어고(朝鮮方言學試攷-鋏語考)』를 11집으로 발간한 것을 마지막으로, 12집으로 예정된 조교수 아베 요시오(阿倍吉雄)의 저서 『이퇴계와 야마자키 안사이(李退溪と山崎闇齊)』는 결국 미간행으로 남게 되었다.

경성제국대학 법학회와 문학회는 이와 같은 논집 이외에도 교원들의 연구 저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여러 형태로 지원했다. 먼저 법학회는 교수들의 연구서 혹은 번역서를 「법학회총간(叢刊)」의 형태로 출간하도록 지원했다. '총간'은 모두 7책이 출간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책, 奥平武彦 著, 『朝鮮開國交涉始末』, 東京: 刀江書院, 昭和 10年 3月(1935).
2책, 船田享二 編, 『羅馬元首政の起源と本質』, 東京: 岩波書店, 昭和 11年 11月(1936).
3책, 尾高朝雄 著, 『國家構造論』, 東京: 岩波書店, 昭和 11年 12月(1936).
4책, 松坂佐一 著, 『履行補助者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昭和 14年(1939).
5책, 藤本直 著, 『斷種法』, 東京: 岩波書店, 昭和 16年(1941).
6책, 西原寬一 著, 『手形交換法論』, 東京: 岩波書店, 昭和 17年(1942).
7책, 尾高朝雄 著, 『實定法秩序論』, 東京: 岩波書店, 昭和 17年(1942).

그 외에 법학회 번역 총서가 있었는데, 기요미야 시로(淸宮四郎) 교수가 번역한 한스 켈젠(Hans Kelsen)의 『일반국가학(一般國家學)』(岩波書店, 1936)이 그것이다. 문학회는 법학회와 분리되기 이전에 법문학부의 이름으로 몇 권의 연구서 출간을 지원했다. 대표적인 것이 『법문학부기요』라는 타이틀을 걸고 간행된 오쿠라

신빼이(小倉進平) 교수의 『향가 및 이두의 연구(鄕歌及び吏讀の硏究)』(경성제국대학, 1929)와 『법문학부조사책자』라는 타이틀로 간행된 오쿠라 신빼이의 『평안남북도의 방언(平安南北道の方言)』(경성제국대학, 1929)과 『함경남도 및 황해도의 방언(咸鏡南道及び黃海道の方言)』(경성제국대학, 1930),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교수의 『근대일본중국조선관계의 연구: 천진조약부터 청일전쟁 개전까지(近代日支鮮關係の硏究: 天津條約より日支開戰に至る)』(경성제국대학, 1930)가 그것이다. 문학회는 단행본 저서의 출간 지원과 별도로 산하의 학회들, 예컨대 영문학회와 국어국문학회, 사학회의 회보, 경성심리학회의 휘보, 그리고 문학회가 편찬했던 『학총(學叢)』의 출간도 지원했다.

◆ 의학부의 연구 활동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의 교실은 같은 강좌제에 기반했던 법문학부의 연구실에 비해 강좌 교수 이외의 구성원들이 충실히 갖추어진 것이 특징이었다. 애초라면 교수와 조교수가 1 대 1이어야겠지만, 식민지가 연구자를 유치하기에는 열악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는 오히려 교원의 다수가 강좌 교수인 반면 조교수는 교과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강좌가 설립되지 않은 분야에 한정해서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법문학부의 연구실은 2~3개의 강좌 및 관련 전공 조교수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법문학부의 연구실은 1929년부터 1942년 사이에 모두 16개가 설치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표 2-3-14]와 같다.

그런데 의학부의 교실은 기본적으로 교수와 조교수가 거의 결원 없이 부임한 것은 물론, 강사와 2명 이상의 조수 및 부수가 근무했다. 이는 의학부 교실이 교육과 연구의 단위이면서 동시에, 임상 강좌의 경우에는 부속의원의 진료-치료의 단위라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의학부는 제국대학이었기 때문에 의학박사 학위를 줄 수 있었고, 따라서 의학부 출신의 의학사는 물론 경성의학전문학교 및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출신의 의학사들도 의학박사의 취득을 위해 해당 교실의 연구와 의료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학부의 연구 활동이 주로 교실을 단위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실 단위의 학술 저널을 발간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교실 단위의 학술지 혹은 논집은 현재 남아 있는 것만 확인하더라도

[표 2-3-14]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연구실(1929~1942)

명칭	주임 교수	설립 연월일
정치공법 연구실	鵜飼信成(조교수, 행정법)	1929. 2. 20
심리학 연구실	黑田亮(교수, 심리학 2강좌)	상동
영문학 연구실	中島文雄(조교수, 영문학)	상동
동양사학 연구실	玉井是博(조교수, 동양사학)	상동
조선사학 · 조선어학 · 조선문학 연구실	高橋亨(교수, 조선어학 1강좌)	상동
미학 · 고고학 연구실	田中豊藏(교수, 미학미술사 2강좌)	상동
경제 연구실	鈴木武雄(교수, 경제학 2강좌)	상동
사법 연구실	西原寬一(교수, 상법 2강좌)	상동
국제법 연구실	長谷川理衛(교수, 국제사법 강좌)	상동
국사 · 국문 연구실	時枝誠記(교수, 국어국문 2강좌)	1930. 9. 17
형법 연구실	不破武夫(교수, 형법형사소송 2강좌)	1930. 10. 8
철학 연구실	田邊重三(조교수, 철학 · 철학사)	상동
지나철 · 문학 연구실	辛島驍(조교수, 지나어학 · 철학)	1931. 5. 13
윤리 · 교육 연구실	田花爲雄(교수, 교육학 2강좌)	1932. 3. 10
사회학 · 종교학 연구실	秋葉隆(교수, 사회학 강좌)	상동
고대법 연구실	內藤吉之助(교수, 법제사 강좌)	1932. 5. 25

출처: 정준영(2015c: 138, 주 30).

『스기하라약리학교실 업적집(杉原藥理學教室業蹟集)』, 『이와이내과교실 업적집(岩井內科教室業績集)』, 『법의학교실 업적(法醫學教室業績)』, 『약리학교실 제1강좌논문집(藥理學教室 第1講座論文集)』, 『법의학해부미생물학 업적(法醫學解剖微生物學業績)』, 『의화학교실 업적(醫化學教室業蹟)』, 『논문집: 경성생리학교실(論文集: 京城生理學教室)』, 『조선지치계(朝鮮之齒界)』 등이 있으며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과 기타 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과 제1강좌의 이와이내과교실과 외과 제2강좌의 오가와(小川)외과교실의 경우에는, 당시 이들이 식민지 임상 의료에서 가지고 있던 독보적인 위상을 기반으로 상당히 체계적인 정규 의학 저널을 발행하기도 했다. 『임상내과학(臨床內科學)』은 1933년 6월 제1권 제1호를 발간한 이래 1939년 제7권 제9호로 종간하기까지 모두 291편의 글을 수록했는데, 그중 임상 논문 203편, 강연 44개, 강좌가 37개였다(유형식, 2011: 166). 교실 주임, 즉 강좌 담임인 이와이는 매 호마다 내과 특수질환에 대한 강좌와 내과 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을 소개하는 강연을 수록했

다. 『임상외과(臨床外科)』는 1934년 제1권 제1호가 나온 후 1934년 제2호로 종간되었지만, 원저, 종설, 논설, 임상 지견, 문헌 소개, 문헌 초록 등 당시 주요 의학 잡지들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임상내과학(臨床內科學)』과 더불어 주목할 만하다.

한편 의학부 전체 차원의 기요는 일본어가 아닌 외국어 잡지인데, 흥미로운 것은 1928~1929년에 발간된 기요 *Acta medicinalia in Keijo*는 권호를 제11권 제1호로 정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1910년부터 1927년까지 총 10호를 발행했던 *Mitteilungen aus der Medizinischen Akademie zu Keijo*를 계승하겠다는 의미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연합하여 수준 높은 학술지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하지만 부속의원의 이관 등 두 학교 사이의 갈등이 커져가는 가운데, *Acta medicinalia in Keijo*는 1928년 11권과 1929년 12권, 2년간만 계속되었고, 1930년을 기점으로 다시 원래대로 분리, 발간하게 되었다. 경성의학전문학교는 1931년 원래 저널 제목으로 돌아와 *Mitteilungen aus der Medizinischen Akademie zu Keijo*를 발간했는데, 권호는 다시 제1권 제1호로 하여 1941년까지 계속되었다.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는 저널 제목을 *The Keizyo Journal of Medicine*으로 바꾸어 1930년 제1권 제1호를 발행했는데, 이 잡지는 1942년 제10권 제4호까지 계속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은 *Acta medicinalia in Keijo* 시절까지 포함하면 모두 295편에 달하는데, 언어는 독일어가 절대적으로 많고 영어, 프랑스어 논문이 약간 있었다. 주제는 기초의학 교실의 연구들, 특히 해부학, 기생충학, 약리학, 병리학 분야의 논문이 많이 게재되었다. 법문학부의 논집에 한국인 연구자가 거의 포함되지 않았던 반면, 의학부의 기요에는 한국인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30%에 가까운 비중으로 수록되었다. 이것은 의학부의 각 교실에는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한국인 연구자들이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를 기요에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학부의 사정이 다소 낫다고 하더라도, 경성제국대학의 학술 활동이 철저하게 강좌 교수 중심, 일본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는 큰 변함이 없었다. 초대 총장 핫토리 우노키치는 1926년 4월 21일 서울에 도착하여 "경성제국대학은 물질적으로 빈약하지만 내용적으로 충실하고 싶다. 교육 시설은 다른 대학과 손색없도록 하겠다. … 현재는 한국인 교수가 없지만, 대학생이 졸업하면 연구자가 생길 것이므로 교수도 나올 것이다."(이충우·최종고, 2013: 107~108)라는 장래

포부를 밝혔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달랐다. 20년의 대학 역사가 짧다면 짧겠지만, 본교 출신이 모교의 강좌 교수로 취임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일 수 있다. 하지만 경성제국대학은 사라질 때까지 단 한 명의 본교 출신 강좌 교수를 배출하지 않았다. 학문의 '자가 생산'이라는 점에서는 전혀 진전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졸업생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예컨대, 1942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수 홍진기(洪璡基)는 『논집』 제13권 제1호에 「회사합병에서의 교부금」이란 연구논문으로 일본 상법학계의 태두인 다케다 쇼(竹田省, 1880~1954) 교수의 이론을 비판했다. 이에 다케다 교수는 그해 12월 『민상법잡지(民商法雜誌)』 제16권 제6호에 「다시 회사합병에 대하여」라는 반박 논문을 썼고, 홍진기는 다시 1943년 1월 『민상법잡지』 제17권 제5호에 「주식회사 합병의 본질: 다케다 박사의 고견에 관련해서」라는 재반박 논문을 발표했다. 그 후 일본의 회사법 주요 저술에 계속 홍진기의 이 논문이 참고문헌으로 인용되는 등 그의 학설이 통설로 인정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는 공산당 사건 때문에 조교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결국 한국인은 교수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연구자의 길을 단념한 후 법관이 되었다(김영희, 2011: 86~89).

의학부는 경성제국대학 출신자뿐 아니라, 조교수, 강사, 혹은 조수(부수)로서 경성제국대학 의국(醫局)에서 연구와 임상치료의 경력을 쌓은 사람들조차도 교수로 승진하는 길은 막혀 있었다. 윤일선은 1928년 4월 조교수로 임명되어 1년간 재직했지만, 결국에는 경성제국대학을 단념하고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1928년 12월 조교수로 임명된 고영순은 2일 만에 물러나 서울에 병원을 개업했다. 심지어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일본인들에게조차도 모교의 교수가 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였다. 1940년대 초, 즉 전쟁 말기가 되면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출신자들이 각 교실의 조교수를 차지하면서 착실하게 세력을 키워갔지만, 결국에는 단 한 사람도 강좌 교수가 되지 못했다. 요컨대 경성제국대학의 '학문적 재생산'은 식민사회는 물론 경성제국대학 학부 '경력' 및 교실 '경력'과도 단절된 채 철저하게 '외부 수입'에 의존했다. 경성제국대학은 '제국보편'의 기준에만 집착하여 학문의 자생적 재생산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했으며, 그 결과 지식 생산 과정의 파편화와 식민화를 제도적 수준에서 정착시키고 말았다. 이는 경성제국대학이 한편으로는 식민지 당국으로부터 대학의 자

치를 지켜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쿄를 향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한계에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정준영, 2009: 154). 이런 이중적 한계 상황은 앞서 초대 총장의 기대를 그저 한갓 장한몽에 지나지 않게 만들었다.

제3절 각급 전문학교의 개편과 위상 강화

1) 관립 전문학교의 위상 강화와 학교 운영

일제는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공포를 전후하여 이른바 '내선공학(內鮮共學)' 체제로 돌입함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전문학교 체제를 구축하면서 전신학교의 경비, 학생 및 교직원 정원을 대폭 조정하기 시작했다. 이는 일본인 학생의 입학 정원과 매우 밀접했다. [표 2-3-15]는 일제가 1922년 제2차 교육령 제정 이래 1938년 제3차 교육령 제정 직전까지 전신학교에 배정한 경비와 학생·교직원의 현황이다.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경우, 1920년에는 경비에서 커다란 변동이 보이지 않은 반면에 교직원 정원이 1927년에 들어와 크게 증가했다(조선총독부, 1926a). 교직원이 부족해 수업은 물론 실험실습이 어렵다는 학교 측과 학생들의 요구를 조선총독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매일신보』, 1926. 7. 14). 이후 경비는 1930년대 중반 이전만 하더라도 1933년을 제외하고는 변동이 별로 없다가 193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증가하는데 시설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1936~1937년에 교사(校舍)와 도서관을 신축했을 뿐더러 각종 시설물을 보강했기 때문이다(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80년사편찬위원회 편, 1986: 328; 조선총독부, 1936b, 1936c, 1937). 이러한 노력은 일본인 학생의 증가에 따른 교사 신축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1937년 수의축산학과를 증설하면서 교육시설 투자가 증가해 더욱 그러했다(『동아일보』, 1937. 12. 25). 이러한 양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인 위주의 선발로 굳어지는 현상과 매우 밀접하다. 즉 1922년에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비율이 1:1.5였는데 1937년에 가면 1:2.6으로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이 기간 학교 경비는 3배

[표 2-3-15] 1922~1937년 전신학교의 경비, 학생 수, 교직원의 현황 경비 단위: 원(圓)

연도	수원고등농림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1922	89,704 (43:67/23)	49,483 (129:3/12)	151,658 (46:53/50)	111,499 (205:148: 59)	90,000 (0:197/25)
1923	132,430 (58:106/22)	55,844 (163:5/12)	148,182 (37:81/51)	88,110 (227:181/51)	146,683 (17:193/42)
1924	115,808 (59:130/18)	55,301 (157:15/10)	147,402 (40:81/44)	87,536 (192:198/58)	83,134 (29:211/39)
1925	86,681 (63:117/28)	57,001 (118:34/11)	124,822 (43:75/42)	95,664 (119:161/65)	89,782 (33:213/36)
1926	101,987 (67:104/34)	61,156 (116:46/16)	137,494 (92:60/60)	83,538 (133:219/78)	101,372 (33:213/41)
1927	128,346 (74:94/55)	73,902 (115:60/14)	156,618 (48:116/58)	102,651 (105:235/74)	110,334 (32:192/44)
1928	134,926 (56:95/50)	61,849 (127:63/15)	154,862 (39:138/61)	296,104 (101:250/105)	108,710 (38:195/45)
1929	149,711 (56:104/60)	65,928 (130:68/14)	90,597 (31:147/50)	303,704 (93:253/111)	126,194 (45:212/43)
1930	135,289 (53:115/47)	59,189 (130:68/14)	150,456 (28:152/55)	292,152 (94:253/66)	106,930 (41:220/24)
1931	117,062 (53:126/38)	53,124 (132:59/13)	126,744 (30:157/49)	307,157 (93:252/34)	96,535 (47:225/18)
1932	113,298 (46:135/47)	49,192 (133:52/12)	118,775 (32:155/45)	317,177 (87:253/46)	118,775 (45:222/22)
1933	132,214 (58:144/23)	49,983 (138:37/14)	120,840 (33:155/33)	318,008 (70:265/40)	92,187 (52:226/36)
1934	110,882 (55:152/22)	49,288 (138:52:/11)	123,834 (40:143/21)	328,067 (68:255/43)	91,853 (40:143/21)
1935	106,927 (49:157/38)	50,260 (141:48/12)	121,227 (49:147/33)	350,473 (76:257/39)	92,689 (58:231/23)
1936	244,636 (57:156/36)	53,512 (149:54/13)	121,227 (64:141/29)	359,746 (78:250/111)	95,940 (61:230/25)
1937	271,818 (63:168/42)	143,360 (155:49/14)	156,851 (66:156/35)	392,415 (88:252/129)	97,199 (65:230/24)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각각 한국인 학생 수:일본인 학생 수와 교직원을 가리킴.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경우 1933년부터는 부속 실업보습, 교원양성소가 포함됨.

출처: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 연도판.

이상 증가했다. 결국 학교 경비 급증은 교육시설 등 여타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인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비 확충의 결과다.

경성고등공업학교의 경우도 수원고등농림학교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학생 수와 일본인 학생 수의 비율이 1:1.16에서 1:2.3으로 바뀔 정도였는데 학교 경비는 수원고등농림학교와 달리 별로 변함이 없다. 이러한 양상은 일제가 조선을 원료 공급지로 설정하고 농업 부문을 확충하고자 한 반면, 일본인 학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공업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업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으려 한 시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1934년 당시 경성상공회의소는 기계과, 도안과 등 학과 신설의 시급함을 지적하고 일본 고등공업학교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의 교수 충원 상태를 비판할 정도였다(京城商工會議所, 1934: 99~107). 특히 학생당 1년 경비 300원은 공업기술 교육을 감안하고 일본 본국 동종 학교와 비교할 때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했다(京城商工會議所, 1934: 106).

경성법학전문학교의 경우, 교사가 광화문에서 청량리로 이전되는 1937년을 제외하고는 학교 경비가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는 반면, 한국인 학생 수와 일본인 학생 수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 편, 2004: 146). 이는 일본 본토 출신들 중 경성법학전문학교 지원자가 증가하자 이를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인 학교'로 불리고 있다(『동아일보』, 1937. 12. 20). 그러나 일제는 학교 경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을 하급 사법행정관리로 양성하면서도 투자는 매우 인색했다.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경우, 이 기간에 학교 경비가 무려 3.5배 증가되었으나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비율은 1:0.72에서 1:2.86으로 바뀌었다. 15년 사이에 한국인과 일본인의 재학생 수가 역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격차 역시 커졌다. 그 결과 1927년 이래 경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물론 시설 투자도 경비 증가의 요인이었다. 예컨대 1928년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처음으로 자체 부속의원을 부설하기에 이르러 경비가 급증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속 병원이 일본인 학생의 증가와 매우 밀접하다는 점에서 일본인 위주의 학교 운영이 이러한 시설 투자를 더욱 증가시킨 요인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들 일본인 중 많은 수가 일본 현지에서 시험을 치러 합격했다. 1933년에는 합격자 84명 가운데 한국인 학생이 단 12명인 데 반해 일본에서 건너온 학생은 63명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동아일보』, 1933. 3. 26). 그리하여 일부 재조선 일본인마저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도쿄로 옮기

고 문부성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조선총독부의 '용비(冗費) 절약상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성고등상업학교의 경우, 1923년부터 한국인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하면서 이른바 일선공학의 취지를 살리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23년에만 경비가 급증했고 이듬해인 1924년에는 예전의 금액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아 한국인 학생의 증가보다는 1923년 학교 시설의 추가 설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비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이 역시 일본인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경성고등공업학교와 마찬가지로 일본 본국의 상업과 경쟁하지 못하도록 투자를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관립 전문학교들이 명실상부한 전문학교로 승격하면서 도서관 시설도 이즈음에 개편되었다. 물론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경우, 1909년 9월에 이미 농림학교도서관이 설립되어 있었다(서울대학교도서관 50년사편집위원회 편, 1996: 113). 그러나 1920년대 초에 학생들의 요구와 학교 측의 노력으로 다수의 관립 전문학교 도서관이 재건축됨으로써 도서관에도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다(정해성·여지숙, 2007: 412~415).

특히 경성법학전문학교에는 도서관과 별도로 교우회기념도서관이 설립되어 교우회원과 동창회원들이 도서 대출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경성고등상업학교도 1907년 개교 즈음에 도서관을 개관한 것으로 보이며 1920년에 신축되었다. 이 건물은 112평의 1층 벽돌건물로 교실과 인접하여 학생들의 도서 활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다. 1938년 당시 직원이 4명으로 여타 관립 전문학교 도서관보다 많았을 뿐더러 도서관 직원 4명 가운데 3명이 교수이거나 교수를 겸한 것으로 보아 당시 경성고등상업학교에서 도서관의 비중이 상당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소장 도서는 대략 7,000여 권으로 파악되며 광복 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도서관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인계되었다. 이들 도서 중에는 재정학, 상업학, 중국학 등의 분야에서 손꼽히는 도서들이 적지 않다. 당시 일제가 일본인 학생이 다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귀중한 도서들을 대거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경성고등공업학교 도서관에도 우량 전공 서적들이 입수되었다. 예컨대 영국의 캠브리지대학출판부가 1917년에 간행한 *Fossil Plants: A Text-Book for Students of Botany and Geology*(A. C. Seward 저)가 대표적이다(이정·임종태, 2015: 14).

2) 일제식 사범 양성의 전문화와 경성사범학교·경성여자 사범학교의 설립

1919년 3·1 운동으로 인해 일본의 당국자들은 10년간 지속되어 온 조선통치 방침에 모순이 있음을 인정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했다. '일시동인(一視同仁)'을 강조하면서 통치정책을 무단통치에서 소위 문화통치로 변경하고자 했다. 통치정책의 이러한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 동안 보통학교의 교원들은 제복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차고서 교단에 서도록 했는데 신임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 총독의 훈시로 조선총독부에 부임한 직후인 1919년 9월 3일부터 이러한 착용이 폐지되었다.

나아가 사이토는 조선교육령을 개정하는 일에 착수했다. 이때 사범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보통 사범학교제와 고등 사범학교제가 거론되었다. 그만큼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사범교육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다. '조선교육령'이 개정되고 곧이어 1922년 2월 23일 '사범학교규정'(부령 제17호)이 제정되어 이러한 사범학교 체제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사범교육에서의 변화는 그 동안 각종 고등보통학교에 단기 양성과정을 부설해 운영해 오던 교원 양성 교육이 이제는 약화되고 대신에 관·공립 사범학교가 교원 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관립 사범학교의 경우, 소학교 교원과 보통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각각 제1부와 제2부를 둘 수 있었고, 수업연한 1년의 연습과를 설치할 수 있었다. 보통과는 심상소학교(6년)를 졸업한 정도의 학력을 지닌 자가 입학할 수 있었고, 연습과는 보통과를 수료하거나, 중학교(5년) 졸업 정도의 학력을 지닌 자가 입학했다.

1921년 4월에 이미 설립된 조선총독부사범학교는 1922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제학교관제'(칙령 제151호)에 따라 경성사범학교로 개칭되어 조선에서 유일한 관립 사범학교가 되었다. 이어서 1929년 4월 18일 '조선교육령'의 부분개정(칙령 82호)에 따라 '조선총독부제학교관제'(칙령 83호)와 '사범학교규정'이 개정(부령 제35호)되면서 관립 경성사범학교 편제는 유지되었으나 각 지방의 도지방비로 설립되고 운영되었던 13개의 공립 사범학교는 모두 폐지되었다. 대신 대구와 평양에 관립으로 사범학교가 신설되었다. 1929년 전후 경제 공황과 경제 피폐로 일제가 내세웠던 '1면 1교' 계획이 차질을 빚어 보통학교를 확충할 수 없게

되자 교원 과잉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얼마 안 되어 교원 부족 현상을 초래해 단기간(6개월 또는 1년)의 강습과를 3개 관립 사범학교 내에 증설하기에 이르렀다(안홍선, 2004: 27~29).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성여자사범학교를 설립하고자 했다. 또한 1933년에 연습과의 수업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중등학교 출신 졸업자를 수용하기 위해 연습과 학급이 증가했다.[18] 그 결과 [표 2-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3년 경성사범학교의 교직원이 전년도에 비해 6명이나 늘어났다.

한편, 경성여자사범학교는 조선에서 최초로 설립된 여자사범학교였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여자사범학교에 대한 논의는 여성 교육을 주목하는 분위기 속에서 당국의 교육시책과 맞물려 진전되고 있었다.

> 전 조선 학무과장회의에서 여자 교육의 보편화에 대한 건을 주요 토의 안건으로 논의했는데, 각 도 학무과장들은 조선 교육의 문제가 남녀 다같이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 각 가정의 불평이 중대하여 이것이 곧 사회에 반영된다고 했다. 현재의 전 조선 공립보통학교의 입학률로만 본다면 금년 4월의 현재가 지원자 총수 34만 6,660명으로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남녀별로 본다면 입학자는 10만 4,014명이고 여자는 2만 9,646명으로 남자 4명에 여자 1명의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공립 보통학교에 관한 것뿐이오, 각종 사립 학교를 통하면 남학생 50명에 여학생 1명의 표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 까닭에 농촌진흥운동이니 무엇이니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남녀가 손을 마주잡고 활동하지 아니하면 소기한 목적을 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지식을 가진 남자와 전연 문맹인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가정적 비극이 연출되어 불상사건이 속출한다는 것이다. 그 까닭에 이번 학무과장회의에서는 우선 여자 사범교육을 확장하여 여자 교원의 양성을 증가시키고 여학생의 입학을 증률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봉착되는 어려운 문제는 의무교육은 아직 아니라고 하더라도 1면 1교제조차 실현되지 못한 조선 현상에 비추어 본다면 일정한 학교의 수를 도저히 바라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동시에 여자의 입학을 더 많이 시키

18 『묘가타니[茗荷谷]문서』[26] 17릴 3, '조선총독부제학교관제 중 개정의 건 청의안(척무대신내각총리대신앞 소화 8년 4월 10일).

[표 2-3-16] 1922~1937년 경성사범학교 및 경성여자사범학교의 경비, 학생 수, 교직원 현황

경비 단위: 원(圓)

연도	경성사범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1922	370,044 (21:303/30)	-
1923	370,951 (33:384/34)	-
1924	267,616 (54:462/49)	-
1925	334,580 (235:557/73)	-
1926	332,975 (146:648/51)	-
1927	328,030 (161:619/62)	-
1928	327,283 (174:585/58)	-
1929	313,582 (186:576/49)	-
1930	288,042 (194:572/41)	-
1931	271,807 (214:559/45)	-
1932	152,280 (211:563/34)	-
1933	293,683 (283:669/40)	-
1934	247,150 (417:683/45)	-
1935	237,890 (236:627/44)	119,044 (205:140/17)
1936	240,619 (247:665/46)	146,735 (364:234/27)
1937	336,469 (275:833/50	361,772 (273:272/191)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각각 한국인 학생 수:일본인 학생 수와 교직원을 가리킴.

출처: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 연도판.

기 위해 남자의 입학을 감축시킬 수 없는 형편이므로 본 문제는 교육기관의 대대적 증설과 아울러 의무교육제도를 실현하지 아니하여서는 일개의 공상화하지나 아니할까 관측된다고 한다(『동아일보』, 1934. 6. 22).

1930년대에 낮은 여아 취학률이 문제시된 이유는 당시 농촌진흥운동 등의 사업에서 농촌 여성 노동력의 동원이 강조되었고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보통교육 수준의 교육 보급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당시 한 보통학교의 교장은 여성 교육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교육을 받은 남자가 무교육인 여자에게 멀미가 나서 마침내 이혼하는 가정적 비극은 조선 각지에 무수히 나타나는 사회 문제이다. 부인의 처리하는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자제 교육에서 양모가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을 생각할 때에 여자 교육의 보급 철저를 기함은 조선의 중요사항이다. 특히 농촌에 대한 여자 교육의 문제는 세인으로부터 전혀 등한시되어 있는지라 농촌 부인의 교육 문제는 도시의 여자 교육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농사 진흥이 부인의 힘에 기인하는 바는 도시 상공업에서 부인의 힘에 기인함보다 더 크다 하겠고, 다른 산업에 비해 농업은 가정에서 행하고 따라서 주부는 가정을 담당하는 동시에 농업에도 크게 기여하므로 남자와 동양으로 직업 도야가 농촌 부녀자에게까지 보급되면 병폐 곤란에 시달리는 농촌진흥사업도 용히 해결될 것이다. 여아를 가르치는 보통학교가 여자 교육상 중요한 역할을 띠고 있는 가사, 재봉 등 과목을 여교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학습시키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다. 조선에 있어서 여교원 수가 부족한 것은 잘 아는 바이지만 여교원이 부족한 고로 여자 교육의 철저를 기하고 … 여자 특유의 교과목으로 제정된 가사의 지도와 여자로서의 훈육 지도를 철저히 해서 어느 학교에서든지 여교원을 확충시키기를 바란다(『매일신보』, 1935. 7. 11).

이처럼 농촌에서 여성 교육의 보급은, 농촌 부녀자들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통치 정책에 충실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해 추진되었다. 따라서 여성 교원의 역할은 농촌일과 함께 가사 노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여성을 길러내는 것이었으며, 그들에게는 가사를 담당하여 가르치는 역할을 기대했다. 1930년대 경기도에서는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부녀자들의 '옥외 노

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내의 초등학교 여교원으로 하여금 강습회를 열고 농업과 양잠, 가사, 의례준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업과(職業科) 강습을 시키기도 했다. 당시의 기사들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여교원이 동원, 소집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매일신보』, 1936. 4. 13; 1936. 6. 21).

이러한 여성 교원에 대한 기대는 1935년에 세워진 경성여자사범학교의 교육 방침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① 국체에 관한 명확한 관념과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제국 국민으로서의 지조를 길러낸다.
② 일시동인의 성지(聖旨)를 체득하여 알고 상근(桑槿) 혼연일체와 동아의 지도자된 기백을 양성한다.
③ 교육에 대한 심후한 흥미와 열렬한 아동애를 환기하여 천직을 깨달아 여성 독자의 사명을 자각한다.
④ 순량한 인격 특히 우아하고 강하고 경건한 온량 청초한 윤택을 지켜나가며 여성 인격의 도야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
⑤ 각 학과 특유의 강령과 그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에 밝고 사회 정세와 생활의 실제에 상고하여 두루 미치고 통일된 교수를 시행하여 나아가며 풍부한 학식과 식견을 양성함에 노력한다.
⑥ 연령과 체질을 고려하여 체력의 보정과 증진을 도모하며 강건한 신체의 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⑦ 노동을 애호하는 여성의 분야에서 흥업치산제가(興業治産齊家)의 실질을 거행하여 정신과 지능을 양성한다(경성여자사범학교, 1935: 2).

여기에서 5조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 교원을 양성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며, 그 사회적 요구는 4조와 7조에 따르면 노동을 하면서도 '여성 인격'이 동시에 강조되는, 순량한 여성이 목표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범 관련 학교의 운영 실태는 어떠했는가. 앞의 [표 2-3-16]은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에 걸친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의 경비, 학생 수, 교직원 현황을 보여준다.

경성사범학교의 경우, 같은 기간에 학생 수의 민족별 비율이 1:14.4에서 1:3.03

으로 변하면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격차가 대폭 줄어들었다. 그것은 1929년 조선총독부가 사범학교 정비라는 이름으로 분산식 사범교육에서 집중식 사범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한국인 위주의 도립 사범학교를 폐지하자 이에 따른 한국인 교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인 학생 정원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1929. 1. 18). 그러나 이처럼 학생 정원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비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양상은 일제가 저비용으로 많은 교사를 양성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사범교육의 열악화 방향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반면에 1935년 4월 1일 경성사범학교의 여자 연습과와 부속여자보통학교의 학생을 이관받아 설립된 경성여자사범학교는 당시 국내 유일의 여자 초등교사 양성기관이었기 때문에 교사 수급을 위해 애초부터 한국인 여학생이 일본인 여학생보다 많았다(강영미, 2007: 20~23). 그러나 1937년에는 일본인 학생 수가 한국인 학생 수에 근접하기에 이른다. 이는 이후 전자가 후자를 넘어설 가능성을 예고한다. 실제로 1940년에는 일본인 여학생이 563명인 데 비해 한국인 여학생은 477명에 지나지 않았다(『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40년판: 275).

전신학교로 대표되는 관립 전문학교들의 경비 증가율은 이처럼 한국인 학생 수의 증가율과 반비례하는 반면 일본인 학생 수의 증가율과는 비례하고 있다. 그 밖의 학교 경비가 별로 증가되지 않는 학교는 졸업생의 종사 분야가 일본 본국의 종사 분야와 경쟁이 되는 학교였다.

요컨대 제2차 교육령 시기에 일제는 '서울대학교 전신학교'를 관립 전문학교로 승격시켰으나 본국-조선의 농공 분업 체제를 전제로 하여 고등교육시책을 강구하되 이를 뒷받침하는 일본인 학생 위주의 학사 운영 기조를 취했다.

3) 경성치과의학교의 설립·변화와 조선약학교의 승격

(1) 경성치과의학교의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의 승격

우리나라에서 치의학 전문 교수기관으로 제일 먼저 설립된 경성치과의학교는 1922년 4월 1일 개교했으며, 초대 교장으로는 조선총독부의원에 근무하던 치과장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가 취임했다(신재의, 2005: 부록). 이 학교 설립 논의는 1921년 8월에 이미 시작되었다. 1914년 3월 조선총독부의원 치과에 근무하게

된 나기라가 1921년 8월 20일 치과의사시험위원장에 임명된 뒤, 치과의사들로부터 치과의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치과의사강습소의 설립을 권유받았다. 또한 1922년 3월 현재 치과의사는 겨우 10여 명에 지나지 않은 반면에 치과 치료자는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매일신보』, 1922. 3. 6),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재조선 치과의사개업시험이 1921년 가을 제1회가 이미 실시되었지만 이러한 시도는 임시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낮고 응시자 수가 적기 때문이었다. 근본적으로는 치과의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교육기관이 전무했던 것이다(『매일신보』, 1921. 12. 26).

당시 나기라는 1921년 5, 6월경에 진남포의 실업가 도미타 기사구(富田儀作)와 사카가미 기요히코(板上淸彦) 등과 만나 치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한 터였다(도미타 세이이치, 2013). 그러나 이들이 적당한 강당을 구하지 못하자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장 시가 기요시(志賀 潔)가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강당을 일시 대부해 주었다. 이에 12월 26일 경성부를 거쳐 설립원을 조선총독부에 제출했다. 또한 조선총독부 역시 1921년 7월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교장과 연희전문학교 교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올리버 에비슨(Oliver R. Avison)이 종합대학을 설립하려는 계획으로 치과의학교 설립신청서를 제출하자 일본인의 체면에 관한 일이라고 판단하여 일단 보류 형식으로 청원을 지연시킨 상태였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1923년 12월 26일 제출한 나기라와 도미타의 설립신청서를 바로 인가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추진하든, 민간에서 추진하든 예산 및 건물 확보, 강사 초빙 문제로 미뤄오다가 이때에 치과의학교가 설립된 것이다(『동아일보』, 1922. 1. 13). 즉 치과의학교는 예산 문제로 사립 형태로 개교했지만 애초에는 조선총독부가 설립 주체인 관립으로 하고자 했다(『매일신보』, 1922. 1. 12; 2. 9). 따라서 학교 건물은 조선총독부의원 부근의 민간 건물 외에도 조선총독부의원 건물의 일부,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사 일부가 포함되었다. 아울러 강사는 조선총독부의원에 위촉했다. 이 점에서 치과의학교는 민간인이 주도했지만 조선총독부의 물적·인적 지원이 더해진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학교라 할 수 있다.[19] 그리고 일선공학 원칙에 따라 학생은 한국인, 일본인 모두 수용했다.

1922년 4월 1일 경성치과의학교는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4일 신입생

19 당시 『동아일보』는 경성치과의학교를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 치과의학교로 불렀다.

입학시험을 치렀다. 학제는 야간수업, 남녀공학 2년제이고, 입학 정원은 50명이었다. 주간으로 알고 입학했으나 개강에 앞서 교사 문제로 야간제로 발표되자 학생들의 동요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입학 시험과목은 물리, 화학, 미술 등이었다. 드디어 1922년 4월 15일 경성의학전문학교 강당에서 개교식과 입학식을 치렀다.

교과과정은 전공과정 분야는 물론 수신, 국어(일본어), 체조 등으로 구성되었다. 수업은 하루 평균 3시간 내지 3시간 30분 정도였다.

이후 치과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전문성 확보가 절실해지면서 1924년 3월 3년제 치과의학교로 승격했다. 따라서 1924년 신학기부터 야간 교육이 주간 교육으로 변경되었다. 제반 설비도 개선되었다. 시험과목은 일어, 산술, 물리, 화학 등이 포함되었다(『동아일보』, 1923. 3. 10). 같은 해 5월 3학년 학생들의 진료실습을 위해 조선총독부의원 시료환자진료소 안에 치과의학교 부속의원을 개설했다. 5월 26일부터 일반 환자를 진찰하기 시작했다(『매일신보』, 1924. 5. 20). 아울러 학생들은 1924년 11월 다음해 봄에 졸업할 예정인 경성치과의학교 3학년 학생 약 20여 명의 졸업시험을 의사시험으로 대치하도록 진정했다(『동아일보』, 1924. 11. 18). 조선총독부는 진정서를 받아들여 1925년 4월 2일 치과의사규칙에 따라 조선총독의 지정교가 됨으로써 1925년 3월 졸업생들은 무시험으로 개업할 수 있게 되었다. 1925년 4월 15일 제1회 졸업생 한국인 23명, 일본인 5명 모두 치과의사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 2002: 30). 따라서 입학 지원자가 급증했으며(『동아일보』, 1925. 3. 2) 입학 자격도 강화되어 중학교, 고등여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자, 전문학교 입학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에 국한되었다.

한편, 애초 치과의학교는 관립으로 설립할 계획이었으므로 창립자와 교장은 1926년 10월 관립화운동을 벌였다. 이에 학무국에서는 개교 당시 논의대로 1927년부터 관립으로 이관할 요량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재무국에 회부했다(『매일신보』, 1926. 10. 26). 그러나 재무국에서는 법학전문학교 신축 문제로 학생맹휴사건이 일어난 것을 명분으로 관립 이관을 거부했다. 한편 1926년 5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발족함에 따라 이제까지 사용했던 경성의학전문학교 건물과 조선총독부의원 건물을 반환해야 했다. 따라서 당국은 보조금을 배로 증가시켜 1927년에는 10,000원에 이르렀다(『동아일보』, 1927. 3. 31; 8. 5). 또한 교사 건축을 위해 1927

년 3월 조선총독부로부터 관유지인 저경궁 궁터(장곡천정, 현재 중구 소공동 111) 662평을 학교부지로 무상 양여받았다. 같은 해 6월 6일 저경궁 궁터에 교사 및 부속병원을 착공하고 1927년 11월 17일 상량식을 가졌으며 1928년 9월 2일 4층, 1,600평의 교사가 준공되어 부속병원을 이전하고 같은 해 9월 29일 낙성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다. 이로써 완전한 치의학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고 1928년 10월 2일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교로 인가되었다(경성치과대학동창회, 1964: 248). 이는 경성의학전문학교로의 승격을 예고하는 일이었다.

이어서 경성치과의학교가 1928년 4년제로 승격한다고 전해지자 당시 학생들은 3년제로는 조선에서만 개업할 수 있었지만, 4년제로는 일본 내에서도 개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예정되었던 1928년 3월에 예산 사정으로 승격이 되지 않자 졸업 예정인 학생들이 동요했다(『매일신보』, 1928. 3. 29). 학생들은 강력하게 학교당국에 승격을 요구했지만 학교당국이 거부하면서 분규로 발전했다(『매일신보』, 1928. 3. 31). 이에 학교당국과 학생이 3년 말 학과시험을 폐지하고 실기시험이라 할 실지시험으로 변경했으며, 1928년 졸업생도 승격한 후의 졸업생과 동일한 자격을 주는 것으로 절충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29년 1월 25일에는 치과의학전문학교로 승격했다(『조선총독부관보』, 1929. 2. 5). 수업연한은 본과 4년, 별과 4년, 연구과 1년이며, 남대문통 3정목에 위치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면서 국가시험을 별도로 치르지 않고 학교에서 담당교수가 책임지고 교육하며 진급 시 시험과 졸업시험의 성적을 당국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면허를 허가했다. 1931년 3월 13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일본 문부성 지정학교로 인가되었다. 이것은 치과의사법 제1조에 의거해 제64호로 고지되었다. 이는 교육기관으로서 손색이 없음을 의미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교육 목적은 학칙에 잘 드러나 있듯이 "치의학에 관한 고등의 학술과 기예를 교수하고, 특히 황국의 도에 따라 국체 관념의 함양과 인격도야에 유의하며 국가 필수의 인재가 될 수 있는 황국신민을 연성함"에 두고 있다. 따라서 수신은 4년 동안 매 학기 1시간씩 설정되었으며 교련 역시 4년 동안 매 학기 4시간씩 설정되었다. 특히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된 뒤에는 일본인 위주의 전문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이때부터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많은 학교로 탈바꿈했다(신의재, 2005: 32). 즉 1930년에는 한국인 학생이 19명인 데 반해 일본인 학생은 53명이었다.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져 1937년에는

각각 18명, 67명이었다(기창덕, 1995: 375).

(2) 조선약학교의 경성약학전문학교로의 승격

조선약학교는 설립되자마자 곧 재정 위기에 봉착했다(『동아일보』, 1922. 6. 6). 무엇보다 재원이 기부금에 국한되었고 기본재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약학교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고 조선총독부에서 매년 3,000원을 보조받기도 했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略歷略; 『동아일보』, 1920. 5. 28). 1927년 학생들의 수업료와 실습비는 각각 연 70원, 36원이었다(『동아일보』, 1927. 2. 12). 당시 쌀 한 가마니가 20원가량이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비싼 학비인 셈이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비로는 학교 운영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에 학교 대표자 아라이 도라타로(荒井虎太郎)가 6월 5일 경성부청에 출두하여 폐교하지 않을 것이라면 관립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동아일보』, 1922. 6. 6). 그러나 이후 관립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시도는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22년 조선약제사 자격 변경에 따라 학교 규칙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학교가 조선총독부에 특별과를 설치한다는 조직 변경을 신청했으나 당국이 허가하지 않았다(『매일신보』, 1923. 2. 20; 『동아일보』, 1923. 7. 5). 대신에 조선총독부는 1922년 8월 보조금 8,000원을 교부했다. 이후 비슷한 수준의 교부금이 매년 지원되었다.

그런 가운데 경성법학전문학교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당국에 대학으로 승격시켜달라고 요구하자 조선약학교도 여기에 고무되어 전문학교로 승격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매일신보』, 1923. 2. 20; 『동아일보』, 1923. 7. 5). 그러나 이 역시 불발에 그쳤다.

이후 조선약학교는 조선약학전문학교 설립을 목표로 재단을 구성하여 1929년 5월 28일 재단법인 조선약학교 설립을 인가받았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略歷略). 그리고 1929년 10월 14일 경성약학전문학교 설립을 인가받았다. 이어서 1929년 10월 18일 조선약학교는 개교 건을 인가받아 1930년 4월 1일 경성약학전문학교로 개교했다. 이에 조선약학교 학생 82명을 경성약학전문학교에 편입시켰다. 아울러 학교 건물에 필요한 토지로 4월 19일 경성부 황금정 6정목 18번지 14호, 1,780평 4홉의 땅을 양여받았다. 이때도 조선총독부로부터 7,500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다. 이어서 9월 26일 '약품영업취체령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약학교로 지정되었다.

같은 해 7월 24일 도서실, 기계실, 표본실, 조제실, 현미경실습실 등 증축 공사가 준공되었다. 아울러 1932년 5월 1일 조선약학교 폐지를 신청했다. 그리고 1932년 8월 조선총독부로부터 최초로 교련보조금 500원을 받았다. 이후 이러한 보조금은 지속되었다. 또한 1933년 2월 28일 경성약학전문학교는 '약제사법' 제2조에 따라 문부대신의 지정을 받았다. 이로써 1933년 이후의 본과 졸업자는 일본 문부성의 약제사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30년 4월 경성약학전문학교 개교 이래 1935년까지 재적생 현황은 [표 2-3-17]과 같다. 1930년 조선약학교에서 경성약학전문학교로 승격된 이후 한국인 학생의 비중이 감소되는 데 반해 일본인 학생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 시기 민족별 지원자 수와 두 민족의 입학률을 보면 초창기에는 일본인 학생이 약간 우위를 차지하다가 1934년에 들어와 각각 54.0%, 23.2%로 그 격차가 벌어짐으로써 일본인 학생의 우위가 굳어져 갔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128). 이것은 매년 신입생의 민족별 숫자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1930년에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비중이 각각 31.7%, 68.3%였지만 1935년에는 26.1%, 73.9%로 바뀌었다. 이 역시 여타 관립 전문학교와 마찬가지로 민족별 할당제가 작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했다. 사립의 경우도 전문학교로 승격됨으로써 일본인 위주의 고등교육이 강해져 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17] 경성약학전문학교 재적 학생 수 현황(1930~1935) 단위: 명

학년별 / 연도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계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총계
1930	26	56	15	23	11	19	58	90	148
1931	19	60	23	42	15	22	57	124	181
1932	37	76	15	44	21	36	73	156	229
1933	35	84	25	71	16	41	76	196	272
1934	27	87	28	59	24	62	79	208	287
1935	30	85	24	65	26	52	80	202	285

주: 1935년 총계에는 1학년 타이완인 1명과 만주인 2명이 포함됨.

출처: 경성약학전문학교(1935: 127).

그럼에도 한국인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인 최초의 약학사 도봉섭(都逢涉, 1904~?) 교수의 지도 아래 더욱 높아져 갔다. 도봉섭은 1930년 경성약학전문학교에 부임한 이래 조선의 특색을 담은 식물을 채집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심학진을 비롯한 한국인 학생이 주축이 된 약전식물동호회가 여기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북한산을 비롯하여 광릉의 식물을 채집했으며, 인천 문학산 일대를 탐사, 채집하면서 처음으로 퉁퉁마디를 관찰할 수 있었다. 1932년 제1회 약용진기식물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는 약용 식물 110점, 진귀 식물 250점이 전시되었으며 입장자가 600여 명을 넘어섰다. 그 결과 1932년 이시도야 즈도무(石戶谷勉)와 공저로 「경성부근식물소지」를 『조선박물학회지』에 발표했다. 이 논문은 서울의 식물 전체를 종합 정리한 첫 문헌이다. 이후 1936년에 『조선식물목록』 제1권 중부조선 편이 발간되었다. 여기에는 금강초롱꽃을 비롯하여 왕제비꽃, 금강인가목 등의 사진도 수록되어 있으며, 그 동안 활동 내역과 채집한 식물 목록이 수록되어 있어 우리 식물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나아가 그와 약전 제자들은 한국인들에게 특산식물 연구 상황을 소개하면서, 식물을 통해서 민족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불어넣으려고 했다. 그들의 이러한 활동은 민족운동으로서 당시 과학 대중화와 자립적인 산업화에 목표들 두고 전개된 '과학 조선' 운동의 일환이었다(이정, 2013: 107~108). 예컨대 이들은 조선 식물 4,000여 종 가운데 1,600여 종은 일본에 없으며 그중 5속 500여 종은 세계에서 오직 조선에만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조선의 독자적 식물학의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었다.

제4절 고등교육기관 한국인 학생의 연학과 활동

1) 전문학교 한국인 학생의 학업과 활동

(1) 학업

전문학교가 명실공히 고등교육기관으로 승격하자 전문학교 학생들은 입학하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야 했다. 이전보다 교과목이 줄어들었지만 이채로운 과목도 신설되어 학문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었다.

경성전수학교가 경성법학전문학교로 승격하면서 교과목도 개정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1924. 6. 14). 1922년 영어가 신설된 이래 1924년 수업 시수가 늘어나 3년 동안 10시간이었다. 영어 교육의 강화를 의미한다(오세향, 1980: 72~78). 대신에 법학통론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다. 당시 제2차 교육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영어 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법이 2시간에서 5시간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공용문, 상용문, 부기, 계산, 통계 기타 등의 실무 연습 과목이 폐지되었다. 대신에 상업학이 신설되었지만 선택과목이므로 사실상 법률 과목의 비중이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교과목이 법률학 중심으로 재편성되면서 법학전문학교로서의 전문성이 확충되었다.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경우, 1922년 이전과 비교하여 교과과정이 크게 달라진 점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특이한 점은 조선어 과목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인 위주의 학교 운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를 잘 보여준다(『조선총독부관보』, 1926. 8. 10: '경성의학전문학교교과표').

이후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이면서 같은 학교 조교수인 박창훈(朴昌薰)이 「목양봉과직염에 취하여」라는 논문으로 교토제국대학 의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조선일보』, 1925. 2. 17). 또한 고수선(高守善)과 윤보명(尹保明) 두 여의사가 배출되었다(『조선일보』, 1925. 3. 13). 이들은 각각 조선총독부의원 내과와 동대문부인병원에 취직했다. 아울러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정석태(鄭錫泰)는 베를린대학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가 제출한 논문이 1927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전독일의사대회에 통과되었고 인쇄된 이 논문은 전 세계에 배포되었다. 이전만 하더라도 박사나 학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세계적으로 의학계에 많은 공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논문은 대중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조선일보』, 1927. 6. 15). 세 논문은 「장질부사균(腸窒扶斯菌)의 변태성」, 「장질부사균의 수납체(受納體)」, 「균에 대한 생존경쟁현상」이었다.

경성고등상업학교의 경우, 1922년 교과과정은 17과목이었다. 이 가운데 3년간 영어 과목을 23시간으로 배정했다. 경제학 계통 과목이 11시간인 데 반해 상학 계통 과목은 38시간이었다. 그 밖에 법률학 9시간, 공학이 2시간이었다. 1931년에는 34과목으로 증가했다. 교과별 전문성이 강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즉 상학

계가 총 64시간, 경제학계가 2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경제원론, 경제정책(상공정책), 화폐금융론이 신설되었다. 이것은 당시 경제사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20] 그리하여 재정학이나 회계학, 상업작문이 독립 과목이 되고, 은행론, 거래소론, 창고론, 교통론, 해상보험론이 생겼는가 하면 상학은 상업부기와 회계과목을 상업부기, 은행부기, 원가계산, 회계학으로 분화했다. 법률학은 법학통론, 민법, 상법으로 구분되었다. 수리과학이 강조되어 상업수학, 수학, 통계학이 있고 영어의 비중은 여전히 1922년 수준을 유지했다. 경성고등상업학교는 동양협회 경성분교의 위치에서 탈피하여 고등상업학교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갔다.

경성약학전문학교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교육과정이 강화되었다. 기초 학문이라 할 수학이 신설되었으며 영어도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수강해야 했다. 특히 실습이 대폭 증가하여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비중이 늘어났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따라서 수업료 외에 실습비가 부과되었다. 수업료가 매 학기 50원인 데 반해 실습비는 12원에 이르렀다.

한국인 졸업생은 병원 약국, 위생시험소, 생약연구소, 기타 관청 및 개인 약국 등에 취직했다. 이 중 일부 학생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기도 했다. 1936년에 졸업한 이남순은 도쿄제국대학에 진학하여 1943년 한국인 최초로 약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매일신보』, 1943. 11. 16).

학생들의 수업료에 관해서는 1934년 4월 개정된 관립 학교 수업료 규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년 50원을 납입해야 했다(『조선총독부관보』, 1934. 4. 1). 1924년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무려 15원이나 증가했다. 당시 각 전문학교 학생들의 학비 전체를 알 수 없어 경성법학전문학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면 [표 2-3-18]과 같다.

[표 2-3-18]에 따르면 생활비를 제외한 학비가 141원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30년대 쌀값과 생사 가격 등이 하락하여 임금이 깎인 반면에 오히려 학비는 증가했던 것이다(이병례, 2015: 207~208). 1936년 당시 쌀 한 가마니(80kg)가 17.8원임을 감안할 때 학비는 쌀 8가마니에 해당했다(한국경제 60년사편찬위원회 편, 2010). 당시 한국인 순사 월급이 25~30원, 즉 연봉이 300~360원임을 감안

20 보성전문학교의 경우, 1920~1930년대 법률 과목이 축소되고 경제학, 상학 과목이 늘어났다. 김균·이헌창(2005: 85).

[표 2-3-18] 경성법학전문학교 학생 학비 계산 내역

항목		비용	비고
수업료		50원	4월 20원, 9월 20원, 1월 10원
교우회 입회비		5원	
교우회비		18원	4월 6원, 9월 6원, 1월 6원
피복비	하복	20원 내외	
	동복	25원 내외	
	외투	15원 내외	
	교모	4원 내외	
	교련복	4원 내외	

출처: 경성법학전문학교 편(1936).

할 때 학비는 매우 비쌌던 셈이다.

학용품비와 교과서 값은 합쳐서 15원가량이다(『동아일보』, 1926. 3. 12). 당시 교과서 사용이 적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다. 하숙비가 매달 15~20원이어서 매년 180~240원이 하숙비로 지출되었다. 하숙비는 1910년대 후반 연 96원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동아일보』, 1940. 4. 5). 그 밖에 양복과 모자 가격이 합쳐서 20~25원, 교련복은 4원가량, 전차비, 이발비, 목욕비, 극장비 등을 포함한 잡비는 최소한 72원 이상이다.

결국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은 1인당 매년 적어도 432~472원을 지출해야 했다. 여기에 경성의학전문학교처럼 교과서 값이 60원, 실습시계 7원을 합치면 500원을 훌쩍 넘는다. 이러한 지출액을 쌀값으로 환산하면 28가마니에 해당한다. 여타 전문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따라서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면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중도 퇴학자가 늘어나는 이유도 학생운동, 사회 활동 등으로 인한 징계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형편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1926년 통계지만 남자전문학교의 경우, 학비를 제외한 매달 생활비의 각종 항목 내역은 [표 2-3-19]와 같다.

(2) 학생 문화와 기타 활동

◆ 학생 문화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은 교수진의 빈곤, 교육시설의 불충 등 열악한 조건이지만

[표 2-3-19] 1920년대 후반 남자전문학교 학생의 생활비 단위: 원

항목	비용
식비	15.00
서적비	3.00
연필	0.10
잉크	0.20
양말	0.40
목욕	0.14
통신비	0.30
이발료	0.25
노트	0.60
철필	0.30
세탁석렴	0.10
세면석렴	0.20
계	19.15

주: 수업료 기타 8.00원 제외
출처: 『조선일보』, 1926. 3. 18.

학업 이외 자치 활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 중에는 학생들 자신의 학술 활동도 포함되었다. 당시 교과과정이 불비한 가운데 학술 활동을 통해 이러한 부족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특히 준전문학교에서 전문학교로 승격하면서 그러한 필요성이 절실했다.

경성법학전문학교의 경우, 경성법학전문학교 승격을 앞둔 1919년에 『육조(六曹)』를 발간했다. 현재 남아 있는 1931년 제12호부터 1937년 제18호에 이르기까지 필자들을 보면 일본인 교수를 제외하고는 한국인 학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법 이론에 관한 글이 주류를 이루거나 간혹 사회 문제나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예컨대 훗날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역임한 김성칠의 경우 제16호(1935. 2. 26)에 「농촌문제 서론」을 투고했으며, 제17호(1936. 2. 25)에는 「전제론(田制論)」을, 제18호(1937. 1. 25)에는 「보(寶)와 계(契)」를 투고했다.

1921년 4월에 졸업하는 경성전수학교 김응모(金膺模)는 『개벽』 10호(1921. 4)에 「법률의 사회화를 논함」이란 글을 발표했다. 논지는 법률의 발달 과정을 일별

하면서 법률의 도덕화 또는 법률의 사회화를 절규하여 법률과 도덕이 서로 접근하거나 합일하는 곳에 현대 문화 아래 법률의 의의 및 가치가 명료케 된다는 것이다. 당시 사회협동론의 시각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또한, 학생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여러 주제를 두고 강연하기도 했다. 1936년 12월 12일 인천공회당에서 주종환과 변달초, 김성칠이 각각 '서반아내란을 보고', '녹색(綠色)을 구(求)하야', '농촌을 보고'를 주제로 강연했다(『매일신보』, 1936. 12. 13).

이들 학생 가운데는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에 탐닉하기도 했다. 예전 전수학교 시대에는 법전류 책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이 시기에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나 유물론 관련 책을 탐독했고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세간에는 관립 전문학교 중에서 "미래의 맑스, 미래의 레닌을 자처하는 학생이 제일 많다"고 할 정도였다.[21] 그러나 이렇게 '씩씩한' 경성법학전문학교 학생들 중 상당수는 졸업만 하면 재판소 서기나 경무보 한 자리 얻는 것을 최상책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비판도 따랐다.

그 밖에 경성법학전문학교 학생들은 교우회를 조직하여 각종 특별 활동을 벌였다. 여기에는 정구부, 유도부, 검도부, 축구부, 야구부, 육상부, 회보부, 변론부, 도서부를 두었다.

정구부를 비롯한 스포츠 서클들은 전국을 돌면서 각종 대회에 참가했다. 정구부는 1923년 전국정구대회 결승전에 오르기도 했다(『동아일보』, 1923. 10. 18). 심지어 만주로 원정을 가기도 했다(『동아일보』, 1931. 7. 26). 또한 조선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전선전문학교연합정구대회에 참가했다(『동아일보』, 1924. 6. 28). 유도부의 경우, 1929년 11월 학생들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큰 소리로 지나가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자 폭행하기도 했다(『매일신보』, 1929. 11. 17).

변론부는 1924년 이래 관립 전문학교 연합웅변대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는 경성법학전문학교는 물론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등 여러 관립 전문학교 출신의 변사들이 참가해 웅변했다(『매일신보』, 1930. 12. 4). 1930년 제7회 웅변대회에서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7명 중에서 4명이 한국인 학생이었다. 경성법학전문학교 김윤식은 '사랑과 정의 및 힘의 수반성'이

21 법전평(法專評)은 의전 박룡이(朴龍伊), 「육전문학교학생륜평(六專門學校學生輪評)」, 『별건곤』 제35호(1930. 12. 1).

웅변 제목이었다. 1931년에는 변론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되었다(『매일신보』, 1931. 12. 7).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의 경우, 경성법학전문학교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그것은 당시 세인들의 눈에도 그대로 비쳤다. 당시 세간에서는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을 취직하는 데 아무런 걱정이 없는 '부잣집 사위'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22] 물론 대다수가 의학 전공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전문성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운동이나 학생으로서의 상호 사회적 관계에서 비협동적이라고 일갈했다.

모든 학생들이 오로지 실험실과 학교 도서관에만 있지는 않았다. 1920년대 초반에 졸업한 이성용(李星鎔)은 1921년 『개벽』 10호에 「의학적 가치」라는 글을 발표하여 의학이 철학으로부터 분리되어 과학으로 성립해 가는 과정을 일별하면서 문명의 진보에 기여하는 의학의 가치를 논했다. 그 밖에 경성의학전문학교에는 한국인 학생으로 구성된 경성의학전문학교 음악부가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1924년 6월 중앙기독교회관에서 연주회를 열기도 했다(『조선일보』, 1924. 6. 14). 이 연주회에는 김영환, 고문 홍영후(홍난파), 독일인 등이 출연했다. 또 위생 사상 선전에 적극 나섰다(『조선일보』, 1924. 6. 21).

경성공업전문학교의 경우, 흔히들 사회 현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기술 전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지만,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3·1 운동에 참여한 김대우(金大羽)의 졸업 논문 일부 「조선광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발전책에 대한 사견 부(附) 일반 조선 광산 기업자에 대한 희망」이 『개벽』 10호(1921. 4)에 수록되었다.[23] 여기서 그는 조선 광업의 역사를 일별하면서 조선 광산의 현재를 점검하고 그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미래 발전책을 모색했다. 특히 조선 광산의 실태를 소개하면서 덕대의 역할을 서술하고 있다. 광산 경영자로서 덕대를 주목한 것은 이 글이 최초로 보인다. 나아가 그는 조선총독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22 의전평(醫專評)은 연전(延專) 유근석(柳根錫), 「육전문학교학생륜평(六專門學校學生輪評)」, 『별건곤』 제35호(1930년 12월 1일).

23 김대우는 그후 규슈대학(九州大學) 야금학과(冶金學科)를 졸업했으며 경성부 사회과장을 역임하고 전라북도 도지사로 승진했다. '황국신민서사'의 입안자로 알려져 있으며 광복 후 반민족특별위원회 재판정에 서기도 했다(반민특별조사위원회, 1949).

① 한국인 광산가에게 광산 지식을 충분히 학습케 할 것. 이 조목을 만족히 하려면 제일 학교를 증설할지라.

② 광산중앙시험소를 설치할 것. 이 시험소에서는 일반 광업자 청구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할지라.

③ 조선 재적자에게 한하여 광업권을 설정함을 득할 것. 이 조목을 실행하면 일본으로부터 대자본가의 유입함을 방치함을 득할지라.

④ 한국인 소자본가는 기업동맹 혹은 동업조합을 조직할 것. 기업동맹으로 인하야 대규모적 광업을 개시함을 득하며 동업조합으로 인하야 생산의 과잉과 동업자 간에 무리한 분쟁을 면함을 득할지라.

⑤ 일반 광산 기술가는 정신상, 육신상으로 조선 광업계를 위하야 희생적 활동을 할 것.

⑥ 조선 광업의 주관을 장악한 조선총독부 광무국은 일반 경영자에게 일층 관후(寬厚)한 대우를 할 것. 이 조목에 의하야 오인(吾人)은 일층 신속히 광업권을 득하며 제반 광세를 면제 혹은 감소함을 득할지라.

[부] 광업자에게 희망하는 바는 충분한 설계하에서 경영함으로 실패가 무(無)키를 희망하는 동시에 여(余)의 평소 연구 중이던 「여차히 하면 실패가 무하다」 하고 자신하는 바를 수조(數條)에 분(分)하야 일반 아(我) 광업가 제씨(諸氏)에 공포함으로 여의 희망을 달(達)코저 하노라.

광산과 졸업생으로서 조선 광산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당시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이 광업 기술뿐만 아니라 광산 행정 전반에 대한 안목과 식견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성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1907년 공업전습소 시절 이래 개최해 온 전람회를 1922년 경성고등공업학교로 승격한 이후에도 매년 지속했다. [표 2-3-20]과 같이 경성고등공업학교 이전 시기 전람회를 포함하면 1934년까지 개최된 전람회는 총 26회에 이르렀다. 특히 1920년대 고등공업학교의 성적품전람회(이후 고공전람회)는 학생들의 작품 전시는 물론이고 실용품을 판매하기도 하여 많은 사람이 참가했으며, 입장권을 별도로 배부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동아일보』, 1924. 10. 28). 일반인들의 관람을 돕기 위해 이러한 전람회는 대부분 10월 중순의 일요일에 개최되었다.

[표 2-3-20] 경성고등공업학교 전람회 현황(1921~1934)

차수	연도	일자	시간
13회	1921	10. 23	9~16시
14회	1922	10. 22	〃
15회	1923	10. 21~22	〃
16회	1924	10. 26	9~17시
17회	1925	10. 11	9~16시
18회	1926	10. 24	9시 30분~16시
19회	1927	10. 29	9~16시
20회	1928	10. 7	〃
21회	1929	10. 26	〃
22회	1930	10. 26	〃
23회	1931	10. 25	〃
24회	1932	10. 23	〃
25회	1933	10. 22	9시 30분~16시
26회	1934	10. 21	9~16시

출처: 『매일신보』, 1922. 10. 23; 1923. 10. 2; 1924. 10. 6;1926. 10. 21; 1927. 9. 9; 1931. 10. 10; 1932. 10. 16; 『동아일보』, 1925. 10. 8; 1928. 10. 2; 1929. 10. 11; 1930. 10. 22; 1933. 10. 20; 1934. 10. 14.

전람회에 출품되는 품목들은 주로 도자기, 직물, 화장품뿐만 아니라 목조 가옥의 골조, 향수 등에 이르기까지 해가 갈수록 그 품목이 다양해졌으며, 특히 판매되는 품목 중 일부 인기 제품은 추첨을 통해 매수자를 결정할 정도였다(『동아일보』, 1924. 10. 21). 또한 부대행사로 여러 문화 공연도 마련하여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전람회는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뿐만 아니라 고등공업학과 및 공업학교, 중앙시험소의 실습시설을 안내하고 생도들의 실험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최신 공업 지식 홍보와 조선총독부의 공업 교육의 충실성을 알리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동아일보』, 1931. 10. 24). 유명한 전문학교이기는 하지만 일개 학교의 행사를 해마다 빠지지 않고 유명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것으로 보아 조선총독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1931년 전람회 개최 당시 교통 불편을 해결하고자 종로와 전람회 행사장을 연결하는 임시 버스 노선을 운행하기도 했다(『동아일보』, 1931. 10. 23).

이처럼 조선총독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개최되어 온 이른바 고공전람회는 관람객 수나 판매 금액, 전시 품목 면에서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 조선 최대의 행사 중 하나였다. 이는 한국인들의 높은 교육열과 최신 기술 습득에 따른 민족의 실력 양성 욕구가 일제의 통치 체제 홍보 및 조선 통치에 필요한 기술 인력 확보라는 서로 다른 의도가 만나 더욱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산업계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전람회를 개최하고자 했다. 이후 고공전람회는 산업계 주최 전람회로 발전했다.

아울러 학생들은 많은 서클을 조직하여 과외 활동을 벌였다. 연극반은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한 서클이었다. 여기서 이상(본명 김해경)은 건축가로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학창 시절 연극반에서 여성으로 분장하여 무대에 출연할 정도로 연극과 문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은 일찍부터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진 터라 늘 일제 당국을 긴장시켰다. 그들은 무엇보다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전신인 농상학교가 대한제국기 민산(民産)과 국계(國計)의 증대를 위해 설립된 학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민족적 자부심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일본인 학생과 달리 상명하복의 학교 문화에 빠지지 않고 선후배 간의 신뢰와 우애를 중시했다. 1933년 수원고등농림학교에 입학한 류달영(柳達永)은 한국인 학교 생활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출처: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 졸업앨범』(1929, 영인문학관 소장)

[그림 2-3-7] 1929년 경성고등공업학교 연극반원[아랫줄 원 표시 인물이 이상(본명 김해경)]

고농은 삼년제였는데 일본인 학생들은 하급생들이 상급생의 종노릇을 하면서 지내는 군대식 생활을 했다. 상급생들은 하급생들이 고분고분 말을 잘 듣도록 신입생들을 모아놓고 스톰이라는 몰매를 때리는 연중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인 학생들은 일본인 상급생에게도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일이 없었고 상급생들은 신입생에게도 이형, 박형 등 형자를 붙여서 불렀고 모든 일에서 민주적으로 생활하여 일본인들과는 학교 생활이 전연 달랐다.

동료(東寮, 한국인 동쪽 기숙사)의 한국인 학생 선배들의 환영회는 특유한 것이었다. 그 가난하던 시절에도 술과 떡과 고기 등 많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수원 남쪽 용주사 근처에 정조와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숲 속으로 모였다. 하늘도 안 보이는 노송의 숲이었다. 한국인 학생들은 이 숲 속에 자리를 펴고 신입생의 자랑스러운 입학을 축하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흥겹게 놀다가 그것이 끝나면 자리를 정돈하고 나서 제2부의 행사를 했다. 선배들은 동료의 내력과 동료의 전통적 생활 방식과 아울러 조선이 일본에 병탄된 역사와 한국 정부가 세운 농림학교를 오늘에 일본이 차지하여 주객이 전도된 고농의 현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류달영, 1998: 84).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와 경성약학전문학교 학생들도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1924년 여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에서는 구강위생 계몽을 위해 강연부를 결성하여 사리원, 평양, 진남포, 신의주 등에서 강연했으며, 한국인 학생들도 하기 순회 강연을 갖기도 했다. 문경옥 외 여러 명은 위생 강연대를 조직하여 여름 동안 남도 지방을 거쳐 북도 지방을 순회할 예정이었다(『동아일보』, 1924. 7. 12). 또한 경성약학전문학교 학생들은 제2회 브나로드 운동에 가담했다(『동아일보』, 1932. 7. 17). 여기에는 윤중영, 고로모, 황한전 등이 참가했다. 1930년 10월 경성약학전문학교 축구팀은 대구로 원정하여 계성학교와 축구 경기를 벌이기도 했다(『동아일보』, 1930. 10. 22).

그 밖에 전문학교끼리 연대하여 학생 강연을 전개했다. 예컨대 조선학생회는 1922년 10월 30일 전문학교학술강연회를 종로청년회에서 열었는데 여기에는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이원식과 경성법학전문학교의 나충하가 각각 '고대 공예(古代工藝)를 논하여 오인의 각성을 촉함', '법률안으로 본 우리 사회' 등을 강연했다(『동아일보』, 1922. 10. 29). 또한, 1924년 10월 26일 종로청년회관에서 제2회 전문

학교연합학술대강연회를 개최했다(『동아일보』, 1924. 1. 26). 이 자리에는 경성법학전문학교의 최긍이 '법과 력(力)', 경성의학전문학교 이심종이 '인의학(人醫學)'을 강연했고, 그 밖에 연희전문학교 학생 이경렬이 '과학과 철학', 보성전문학교 학생 한영황이 '인생과 법률'을 강연했다.

아울러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은 사립 전문학교 학생들과 더불어 전문학교 웅변대회에 적극 참가했다. 1930년 12월 제1회 웅변대회에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학생 강약수가 '나의 발치록'을 웅변하여 전문적인 의학적 식견을 발휘했을 뿐더러 발치과정을 통해 본 조선의 차별적 현실을 폭로하여 만장의 청중을 마취시켰으나 임석한 경관이 중지시켰다. 경성약학전문학교 학생 고기현은 '과학적 기류(氣流)에 살자'를 웅변했다(『조선일보』, 1930. 12. 17; 12. 18). 특히 경성법학전문학교 학생 정성진과 이관용은 학교 당국과의 문제로 출연하지 못할 정도였다. 당시 이러한 활동은 관립 전문학교 학생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임석한 경관에게 중지를 당할 정도로 사회 현안 문제에 관해 발언했던 것이다. 이 가운데 강약수는 치과의학전문학교 학생으로서 '성대반제동맹사건(城大反帝同盟事件)'에 가담하여 1932년 11월에 재판에 회부되어(『매일신보』, 1932. 11. 17),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중앙일보』, 1932. 11. 25; 『사상월보』 제2권 제9호, 1932. 12. 15). 당시 최고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조선학생회 집행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다(『동아일보』, 1931. 11. 4; 『조선일보』, 1931. 11. 4). 나아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4년생 오효선과 윤은식을 대상으로 교섭을 진행시키기도 했다(박한용, 2013: 151).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전문학교 학생들의 타락한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1925년 『개벽』에 일부 전문학교 학생에 대해 비판한 차상찬의 글이다.

> … 말숙한 감색 세루양복에 네뿔난 모자를 푹 숙여 쓰고 반들반들한 구쓰 등만 굽어보고 다니는 전문학생도 잇고 … 전문학생들은 호떡 먹기도 창피해서 황교 일본인의 경편양요리집 그럿치 안으면 화개동 황추탕집 또는 두방맹이골(송현동) 비밀음식



[그림 2-3-8] 『개벽』 58호, 1925. 4. 1, 「형형색색의 경성 학생상」

점이니 남대문 외 자암 내외 음식점으로 몰켜간다(다 그런 것은 물론 안이). 그리고 월사금은 못 내서 정학을 당할지언정 활동사진 구경은 의례 가고 부모형제에게 문안편지는 잘 안이 하야도 촌수도 업는 녀학생 누이에게 편지 거래가 빈번하다. 또 하숙옥에 가보면 아모리 고학생이라도 전일처럼 석유상자 책상은 업고 의례 5, 6원자리 책상에다 책상(冊箱), 필용(筆箑), 사진첩을 다 노왓다. 교과서 참고서는 한 권 업서도 연애소설과 유행창가 한 권식은 다 가지고 설합 속에는 여학생에게 편지하는 꼿봉투 꼿전지와 춘서도(春書圖)도 각금 나오며 벽에는 행(行)내거리로 빠요링 라겟트를 걸어 두엇다. 길만 나서면 여학생 히야까시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집에 도라오면 면도하너라고 밥도 제때에 잘 못 먹는다. 또 뇌 속과 배 속을 드려다 보면 조선총독부 관리 그럿치 안으면 어느 은행 회사원, 또는 엇던 부호의 노예가 되야서라도 몸 편하고 배부르게 지내라는 허영이 잔뜩 차서 졸업시험도 치르기 전에 직업 구하기에 분주하며 졸업 후에는 첫 정사가 앙복치레 요리점 출입, 본처 이혼이다(부자 학생에 한하야). 이 외에도 할 말이 만티만은 이만하고 후기를 또 기다려 보자(기자, 「형형색색의 경성 학생상」, 『개벽』 58, 1925. 4)

차상찬은 당시 일부 전문학교 학생들이 활동사진과 연애 풍조 신문물에 매몰되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식자층은 경성제국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이 서구 문물과 오락물에 침잠해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면서 조선의 진로와 민중에 대한 계몽을 깊이 고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학생들이 관심할 바는 취직운동이 아니다. 취직은 이상, 탐구한 진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운동은 공부할 준비에 지나지 못한다. 진리 특히 한계적 지위에 있는 사상, 학설의 연구일 것이다. 소위 최고 학술부에 다니는 조선 학생들은 무엇을 금일하고 있느냐?

교수의 강의보다 운동, 가두의 향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구돌장, 극장, 끽다점, 카페 등 오락기관에 밤마다 사각모에 제복을 입은 최고 학술부에 학적을 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 알 것이다. 이것이 한심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학생들이 제일 먼저 연구할 것은 영어, 불어, 독어가 아니다. 과거에 조선이 여하한 경로를 밟았으며 현재 어떠한 과정에 있는가, 이것이다. 학생 제씨여! 최고 학술부

에 다닌다는 무용한 우월감을 버려라. 그리고 진실한 태도로 꾸준히 진리를 탐구하여라. 졸업 후 지적 수준이 낮고 자포자기의 분위기 가운데 신음하는 민중을 여하한 수단으로 여하한 코스에 지도할가, 이것을 연구하여 장차 실천을 바란다(『동아일보』, 1930. 10. 22).

이러한 투고문에서 최고 학술부에 다니는 학생들이 엘리트 의식과 퇴폐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조선의 진로와 민중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에 정진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 스포츠 활동

관립 전문학교는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스포츠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각종 대회를 개최했다. 1925년 10월 경성제국대학 예과 및 5개 관립 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조직된 '대학예과관립전문교체육연맹'은 각종 대회를 주최했다. 당시 스포츠 열기가 점점 오르고 경성운동장이 건설되자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비롯하여 시내 전문학교 사이에서 스포츠에 관한 통일된 기관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의사소통과 친분을 도모하고 이른바 운동가의 품격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매일신보』, 1925. 10. 29). 여기에는 학교 당국자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이의 의견 조율이 수반되었다. 참가 대상 학교는 경성제국대학 예과,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였다. 임원은 총재, 고문, 평의원, 이사 등을 여러 방면의 명사로 망라하고자 했다.

애초에는 육상운동회, 육상경기회, 무도대회(검도, 유도), 야구대회, 정구대회 등에 국한되었다(『동아일보』, 1927. 11. 13).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축구대회는 제외되었는데, 한국인 학생만 축구를 하기 때문이었다(『동아일보』, 1929. 1. 6). 당시 축구는 『개벽』의 「산아이거든 풋뿔을 차라」(『개벽』 5, 1920. 11)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듯이 장비가 타 종목에 비해 저렴하고 협동심, 희생정신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스포츠 종목이었다. 아울러 축구 경기를 통해 일본팀에 승리함으로써 민족적 자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1926년 7월에는 조선축구단이 일본 원정경기에서 우승하기까지 했다(『조선일보』, 1926. 8. 1). 또한, 1927년 9월 극동 올림픽 우승팀인 일본 와세다 축구팀이 원정을 와

1승 2패의 성적을 거두는 데 그쳤다(『조선일보』, 1927. 3. 30). 특히 1926년 6·10 만세운동을 앞두고 한국인 학생들은 5월 23일 삼선동에서 각 학교의 대표자 모임을 가질 때 명분이 학교 대항 축구시합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동아일보』, 1926. 5. 17; 천정환, 2010: 215).

이처럼 관립전문학교체육연맹이 축구 종목을 넣지 않자 관립 전문학교 한국인 학생들은 1926년 봄 사립 전문학교 학생들과 함께 조선전문학교 싸카(축구)연맹을 조직했다(『동아일보』, 1926. 10. 28; 1927. 11. 13). 여기에는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등이 참가했다(『동아일보』, 1927. 11. 13). 제1회 '전문학교 싸카 도나멘트' 대회를 1926년 11월 7, 8일 양일간 경성에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축구 경기 규칙에 대한 몰이해로 경기는 파행으로 치닫고 말았다. 연희전문학교의 탈퇴 선언이 나왔다. 그럼에도 전문학교 간의 경기가 진행되어 경성고등공업학교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3:2로, 경성법학전문학교가 수원고등농림학교를 2:0으로 이겼다(『동아일보』, 1926. 11. 8). 1926년 11월 6일 개회사에서 조선일보 사장 이상재는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

> 세계는 지구를 가지고 많은 칼과 총, 기타 무기로 싸워 적지 않은 생명과 물질을 희생케 한다. 그러나 우리는 칼도, 대포도, 아무 무기도 없이 다만 발로, 축구란 이 경기로 싸우게 되었다. 아무쪼록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약한 자를 도와서 참다운 경기를 행하기를 바란다(『조선일보』, 1926. 11. 7).

제1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의 전쟁을 비판하면서 식민지인 조선은 무기 없이 다만 축구로 싸운다는 것이다. 축구는 국가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민족을 단결케 하고 실력을 준비하는 수단이었다(변성호, 2010: 54).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연설을 들으며 축구를 스포츠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에 국가를 찾기 위한 실력 양성의 방법으로 생각했다. 이미 이상재는 "세상 사람들은 '지구'를 가지고 싸운다. 그러나 우리 조선 청년은 '축구'를 가지고 싸우기를 제일 잘한다"(『조선일보』, 1927. 1. 26)고 언급한 터였고, 기자도 이 말이 "반도축구사, 그것을 그대로 그려놓은 '노트'"라고 파악했으며, "실로 반도운사(半島運史)가 있은 이래 쇠약하여가는 우리 민족의 생기를 진작시킨 것은 오직 축구 이것뿐"이

라고 선언했다. 당시 일반 한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1929년 방정환이 창간한 『학생』에서도 축구가 '민중의 경기'라고 두 번 언급될 정도였다(『학생』, 1929년 9월호: 54~56; 1929년 11월호: 3~5; 변성호, 2010: 55~56). 조선의 축구는 민족 내부에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내세울 만한 것, 자존심을 세우고 조선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되었다.

이에 관립전문학교축구연맹은 이러한 열기에 질세라 제1회 전문학교 축구대회를 이듬해인 1927년 11월 5, 6일 양일간 경성운동장에서 개최했다(『동아일보』, 1927. 10. 15). 출전교는 경성제국대학 예과와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등 5개 관립 전문학교였다. 이 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오로지 한국인 학생뿐이었다. 이는 '축구만은 위의 운동으로 완전히 점령된 것'을 깨닫게 했다. 당시 일본인 학생들이 주도해 관립전문학교체육연맹을 조직했지만 한국인 학생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산하에 축구연맹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인들이 선수로 참가함으로써 축구는 한국인 관립 학교 학생들의 아성이 되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한국인 관립 학교 학생들이 축구를 통해 민족의 자부심을 제고하는 것이 못마땅했다. 이에 11월 12일 개최 예정이던 제2회 전조선전문학교 축구대회를 앞둔 11월 9일 관립 전문학교 교장 6명이 모여 관립 측 체육연맹 이이사회를 열고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이 다른 단체 주체의 운동대회에 절대 출전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삼았다(『동아일보』, 1927. 11. 13; 1928. 1. 1). 다만 1927년 전문학교 축구연맹전에 기어코 출전하고 싶은 학교는 학과를 마친 후 출전하기로 했다. 단, 경성고등상업학교와 경성법학전문학교는 당해에도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 이듬해인 1928년에는 전문학교 축구연맹전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일제 당국이 관립 전문학교 한국인 학생들이 축구를 통해 사립 전문학교 학생들과 연대하는 것을 극히 꺼려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27년 제2회 전조선전문학교 축구대회에서는 연희전문학교와 보성전문학교가 결승전에서 붙었고 연희전문학교가 승리했다(『동아일보』, 1927. 11. 15). 1928년 전문교축구연맹 주최 제3회 축구대회에도 보성전문학교, 연세전문학교, 경성제국대학 예과,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법정(法政)전문학교만이 참가했다(『동아일보』, 1928. 11. 16). 그럼에도 전문학교 한국인 학생들은 축구부에 들어가길 희망했고 학생운동의 거점으로 삼으려 했다. 당시 관립 전문학교의 축구부는 한

국인들만이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정선이, 2014: 350).

관립전문학교체육연맹이 주최하는 각 종목의 당번은 관립 전문학교들이 돌아가면서 맡았다(『동아일보』, 1933. 5. 18). 1933년의 경우, 대운동회는 경성고등공업학교, 야구대회, 정구대회는 경성고등상업학교, 무도대회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육상경기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축구대회는 경성법학전문학교가 당번을 맡았다.

이 가운데 단연코 축구 경기가 주목을 끌었다. 축구가 국망 이후 민족적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동아일보』, 1928. 1. 1). 특히 결승전에 오른 경성고등공업학교와 경성의학전문학교는 3시간 12분 동안 최장 접전을 벌여 조선에서 처음 보는 연장전을 치렀다. 결국 경성의학전문학교가 3:1로 승리했다(『동아일보』, 1927. 11. 8). 이때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승리하는 데 수훈을 세운 선수는 주장 정재웅이었다. 당시 신문 지면에서는 '모교 등지는 선수들'이라는 기획 연재 기사 중의 하나인 「그들의 동(動)하는 곳은 어대 관전축구계 유일한 선구 경성의전」에서 그가 육상에서도 200미터와 400미터 선수로 명성이 자자했으며 졸업 이후 조선총독부 부속의원에서 연구를 할 것이라고 보도할 정도로 학원가 스포츠 선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동아일보』, 1929. 3. 22). 물론 관립 전문학교 축구대회에 관한 각종 정보가 신문에 반드시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 선수의 명단이 상세하게 실렸다.

그 밖에 관전체육연맹의 축구대회에서 연속 3년 우승한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조선 대표로서 일본 규슈대학 주최 제5회 고등전문학교축구대회 출전을 위해 원정을 가기도 했다(『동아일보』, 1929. 12. 20). 그 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와 교대로 우승을 했다(『동아일보』, 1934. 11. 14). 또한 1928년 정구대회에서는 경성고등상업학교가 우승했다(『동아일보』 1928. 6. 8). 1930년 11월 조선전문학교축구연맹 주최 제5회 축구대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치과의학전문학교, 법정전문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 등이 참가했다(『동아일보』, 1930. 11. 7).

이들 전문학교는 조선체육회가 주최하는 동아일보 후원 전조선야구대회, 전조선정구대회 등에 참가했다. 정구대회의 경우, 청년단 소속으로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가 참가했다(『동아일보』, 1931. 6. 10). 또 추계럭비연맹전에 수원고등농림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등이 참가했는데 수원고등농림학교와 경성

고등상업학교가 각각 2위와 3위를 했다(『동아일보』, 1931. 12. 18). 당시 보성전문학교는 우승하여 전일본고전(高專)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1932년에도 마찬가지여서 경성사범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등이 참가했다(『동아일보』, 1932. 9. 21). 그리고 여기서는 수원고등농림학교가 보성전문학교를 누르고 우승했다(『동아일보』, 1932. 12. 17).

1933년 전문학교 육상대회에서는 경성고등상업학교가 보성전문학교를 누르고 우승했다(『동아일보』, 1933. 6. 9). 3위는 경성제국대학, 수원고등농림학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순이었다.

(3) 학생운동

◆ 대학 승격 운동

경성법학전문학교는 조선대학 설립 소식에 맞추어 법학전문학교를 조선대학 법과로 승격하려는 노력을 다시 펼쳤다(『매일신보』, 1923. 7. 13). 즉 조선대학이 단과대학이 아니라 의과, 문과, 법과를 포함할 예정이니 경제적 면에서도 법학전문학교가 조선대학 법과로 전환 승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동창회와 재학생들이 기존의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승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우선 경성법학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1923년 7월 초에 경성법학전문학교 동창생과 재학생이 경성법학전문학교의 대학 승격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승격 운동의 이유는 법학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것과 일본의 관립 전문학교가 모두 대학으로 승격되었으므로 한반도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평등의 논리였다. 이어서 1924년 경성제국대학 개교와 관련하여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결의는 더욱 강해졌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24년 3월 경성제국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존치 결정으로 대응했다. 나가노 간(長野幹) 학무국장은 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조선대학 설치에 관하여 현재의 의학전문학교와 법학전문학교에서 대학 승격의 희망이 있다 함은 신문지상에서 보았으나 아직 정식으로 이들 요망을 구진한 자는 없으므로 상세히 그 의향을 알기 어려운 바 대체로 양교를 승격하여 바로 조선대

학으로 함으로 요망함이라 추찰되는 바 일반적으로 주지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도 각종 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격되어 금일에는 일본의 관립 전문학교는 일교(一校)도 없는데 이와 같은 관계상 조선도 이에 모방하여 결(決)함이 가하다 말함이 있음과 같으나 일본에서도 열망하여 승격한 것 중에 곤란과 불편을 느끼는 자가 많은 모양이라. 조선에서는 크게 그 취지가 다름을 사고치 아니함이 불가한 바이요. 또 조선대학은 전혀 별개의 자로 대학의 계획을 진보한 것이오, 전문학교 정도를 승격케 하여 대학을 설치함과 같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전문학교는 전문학교로써 내용의 충실을 도모하여 초기의 목적을 달함에 노력치 아니함이 불가할지요. 조선의 현상에 비추어 전문학교는 더욱 필요를 느껴 존치할 바인 즉, 대학 설치와 관련하여 승격을 제창함과 같은 견해가 근본적으로 상위(相違)된 것이라.

생각하노라. 사립치과와 약학의 양교를 관립 전문학교로 승격함도 필요하다면 생각하는 바이나 경비 관계로 충분히 고려를 요할 바이며 남자의 중등학교는 비교적 보급되었다 하나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오. 여자의 중등학교는 아직 초기에 속함으로써 더욱더 시대에 순응하여 증설할 방침이라(『동아일보』, 1924. 3. 10).

즉 나가노 학무국장은 일본에서도 승격한 대학 중에 곤란과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전문학교는 전문학교로서 내용의 충실을 기해 초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나아가 당국은 양 전문학교 존속 이유로 '양교 입학자의 주요한 자는 한국인이며, 그 학부형은 속히 사회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므로 대학의 법과, 의과 6년에 비해 양교는 현재 3, 4년이므로 요망함'이라고 설명했다(『동아일보』, 1924. 3. 10).

한편,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승격 운동을 벌여나갔다. 이들은 1924년 11월 22일 학생대회를 개최했다. 즉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여 오던 바 이즈음에 이르러 운동을 구체화하고자 학년마다 준비위원 5명씩을 선정했다. 아울러 조선의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수백 명의 졸업생에게 격문을 날려 내외가 보조를 같이 하고자 했다(『동아일보』, 1924. 11. 15). 나아가 경성제국대학이 본과를 갖추게 되면,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장래가 실상 관건이 되는 문제였다. 경성제국대학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면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불안함도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자격을 갖춘 교수들이

경성제국대학으로 전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은 이를 큰 문제로 여겨 요구 조건을 토의하기에 이르렀다. 경성의학전문학교 승격 운동은 1, 2학년 일본인 학생이 발의했는데, 이는 곧 한국인 학생에게까지 파급되었다. 19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동교 휴게실에서 1, 2, 3학년 이귀홍, 김병선, 이쿠미(井波), 오카노(岡野) 등이 논의한 결과 본 전문학교를 경성제국대학 의과 전문부로 승격한다는 주제로 학생대회를 열기로 했다(『조선일보』, 1924. 11. 17). 그러나 오히려 경성의학전문학교 폐교설만 난무한 가운데 대학 승격 운동은 당국의 완강한 거부로 좌절되었다(『조선일보』, 1925. 12. 26).

대학 승격 운동은 좌절되었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조선일보』의 경우, 1925년 5월 15일 자 기사에서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대한제국기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시설 미비와 교수진의 전임에 대한 우려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동교는 구한국 시대부터 행림계(杏林界)의 준재 등을 양성키 위하여 한국 정부에서 설립한 역사 깊은 학교로 처음 창설할 때 제반의 설비가 완전치 못함은 물론이어니와 조선총독부로 넘어온 이후에도 십칠 년 동안에 다소 설비의 완성과 교육의 선택에 노력한다 했으나 대개 불완전한 점도 있지 않아 그 학교를 졸업하고도 한 사람 몫의 상당한 의사가 되려면 또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더 연구를 하게 되는 중 겸하여 지금으로부터 사년 전에 시외 청량리에 대학 예과 또한 금년 봄에 동 본과가 생긴 이후 자격 있는 교수들은 모두 대학으로 전임케 하여 불완전한 설비로 자격 있는 교수들까지 빼앗기고 보면 그 학교에 다니어야 공연한 심력을 허비하게 될 뿐이라는 물의가 학생들 사이에 몰게 되어 그와 같이 모여 협의를 한 것이라는데 전기회합에서 요구 조건과 대표위원을 결정한 후 학교 당국자와 조선총독부학무 당국에 제출하리라는 바 당국의 답변 여하에 따라 학생들은 태도를 결정하리라더라.

이어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300여 명은 학생대회를 개최했다. 학제의 내용 충실과 교사의 보충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가 기요시 교장에게 여러 번 진정했으나 실현된 바 없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신설된 후에는 교수들의 전임에다가 경성의학전문학교 실습장과 조선총독부의원까지 의대 부속병원이 되

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 대회에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구 사항을 결의했다.

① 시가 교장 불신임안, ② 의전에 전임교장을 둘 일, ③ 학제와 내용의 충실, ④ 졸업생의 대우 개선

이에 학무과장은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실습기관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이 생길 것이며,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이므로 학생들의 지나친 생각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926년 5월 16일 전교생 400여 명을 대표하는 48명의 학생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공부는 의연하게 계속하면서도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요구 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당국에 제출했다. 그 내용은 앞서 결의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이번 사안은 경성제국대학과 경성의학전문학교 차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재학생과 졸업생이 연합하여 150여 명 정도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학무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다시 회합하여 각 사안을 제출하고 심의하기로 정했다.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은 학무당국에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졸업생들에게는 성명서를 보내 이번 사안에 더 많은 졸업생이 동참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어서 학생들은 1926년 5월 23일 만일 학교 당국이 끝까지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 모두 퇴학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교장에게 보내기로 결의했다(『조선일보』, 1926. 5. 25).

그런데 이즈음 사회주의 계열이 순종 인산일을 기화로 준비하고 있던 6·10만세운동이 사전에 일경에게 발각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종로 고등 경찰계의 검거가 시작되었다. 이때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 한 명도 경찰부로 잡혀 들어갔다. 그럼에도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은 경찰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6월 28일 학생대회를 열고 4개 조건을 결의했다. 첫째, 목적의 관철을 위해 협력일치로 정정당당히 맹진한다. 둘째, 청원서에 대하여 당국에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생도다운 본분을 준수하지만, 당국에서 성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퇴학원을 제출한다. 셋째, 서중(暑中) 휴가 중 전교생도의 귀성을 금지한다. 넷째, 재경성 부형

의 집합을 정하고 사회 유력 인사의 응원을 청한다. 학생들의 이러한 청원에 시가 교장이 동의했고, 학생들도 교장을 신뢰하여 일단은 모두 학교의 향상을 위해 진력하기를 맹세했다(『조선일보』, 1926. 6. 30). 덧붙여서 학생들은 학교 운영과 시설의 개선에도 다음과 같이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동아일보』, 1926. 7. 2).

① 장래는 의전의 건물을 부속병원의 부근에 이전할 사
② 당교의 특색인 임상 제1주의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가장 권위 있는 임상 대가를 초빙할 사
③ 대학 겸임의 선생을 많이 두지 말고 의전 전임 선생을 둘 사

이러한 요구 사항에는 의학 강의와 임상의 유기적인 결합, 학교의 특색을 잘 살린 임상주의의 강화, 교수진의 확충 등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 사항이 대학 승격 운동에 비해 낮은 수준의 요구 사항이지만 당시 학교 운영과 시설의 열악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인 학생들의 의학 전공에 대한 열의가 매우 뜨거웠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의 대학 승격 운동은 애초에 일본인이 시작했지만 실상 근대 개혁기 이래 경성의학전문학교를 대한제국기 고등교육기관으로 계승했다고 여기던 한국인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희원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비록 이러한 승격 운동이 여러 장애로 인해 좌절되었지만 학교 시설과 운영의 개선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성법학전문학교 학생들도 학교 시설 개선 운동을 벌여나갔다. 1926년 7월 6일 경성법학전문학교 학생회는 경성법학전문학교의 설비가 불충분해서 운동장이나 도서의 비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는 구한국 시대에 건축한 목조 건물로 비가 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교사를 신축할 것, ② 학과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정치, 경제 과목을 증설할 것, ③ 본교 졸업생을 우대할 것(『동아일보』, 1926. 7. 7).

요구 사항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사 신축 예산이 1927년 예산안에서도

삭제되자 1926년 10월 18일 학생회는 109명이 혈서로 교사 신축을 결의했고, 이날부터 동맹휴학에 들어가기로 했다(『동아일보』, 1926. 10. 27). 김준원 등 학생 측 대표 5명이 학무당국과 교섭했으나 당국은 여전히 냉담했고, 학생은 강경한 태도로 맹휴를 계속했지만 10월 27일 총독이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교사 신축을 하겠으니 복교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해 일단락되었다. 교사 신축 문제는 이듬해에도 재연되었는데 결국 1937년 전 경성농업학교 자리(현 청량리중학교)에 신축 공사를 착수해 1938년 4월 준공, 세종로에서 이전하게 된다.

◆ 일본인 위주의 학교 운영 반대 운동

한국인 학생들은 일본인 학생이 늘어나면서 학교 당국의 차별 정책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경성법학전문학교와 달리 수원고등농림학교나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경우, 일본인 학생의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그 차별은 더욱 커졌다. 이는 한국인 학생과 학교 당국의 갈등으로 번졌다.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경우, 한국인 학생들과 학교 당국 사이의 질시 반목이 날로 더하여 학부형들이 이를 해소하고자 주선했지만 학교 측의 완강한 거부로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동아일보』, 1921. 5. 16). 그리하여 일제의 차별적인 학사 운영에 반발하여 '한국인 본위'를 주장하는 학생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일제의 '내선공학' 방침으로 민족별 비율이 역전된 수원고등농림학교는 한국인 학생들의 저항 의식이 점차 제고되었다.[24] 『조선일보』는 제2차 조선교육령 직후인 1923년 5월 일제의 '내선공학' 시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수원고등농림학교에서 벌어진 일본인들의 차별대우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 한국인 학생 일동은 오래 학교에 대하여 적고 큰 불평과 일본인 학생에 대한 악감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데 제일 그 학교는 한국인을 본위 삼는 학교이건만은 지금 현상으로 보면 한국인 본위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본인 본위라 하겠으며 그 이유는 현금 재학하는 학생의 수가 일본인이 한국인의 3배 이상이 된다 하며 목하 조선 사회에서 농림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수험자가 적음은 또한 학교의 방침이 일본인을 본위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얼

24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의 저항의식과 학생운동에 관해서는 박환(1998); 장용경(2014) 참조.

> 마나 한국인에 대한 태도가 가랭성하면 그러하냐 함이요, 둘째는 기숙사 설비에 관한 것이니, 즉 현재 한국인 학생을 수용하는 소위 동료(東寮)라 하는 기숙사와 일본인 학생들을 수용하는 기숙사, 즉 서료(西寮)와 비교하면 그 설비가 소양(霄壤)의 차가 있는지라 이것만 보아도 학교 당국자가 그 얼마나 한국인 학생을 차별하는지 충분히 증명할 수 있고 또는 일본인 학생의 기숙사인 서료에 한국인 학생을 무리하게 강제로 입사케 함이니 그리하는 내막의 이유는 일본인 학생 기숙사와 한국인 기숙사의 설비가 전기와 같이 한번 보아도 얼른 알게 되었으므로 학교 당국자는 각 참관자에게 대하여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고 표방하는 구실을 삼고자 강제로 입사케 함이라더라(『조선일보』, 1923. 5. 10).

여기서 민족별 정원, 기숙사 차별 등에서 보이는 일제의 민족 차별이 제2차 조선교육령에 의한 '내선공학' 공작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차별은 같은 공간에서 겪는 문화 갈등과 연계되면서 더욱 부각되었다.

그러나 한국인 학생들의 이러한 시정 요구에도 입학과 대우의 차별은 여전했다. 1934년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경우, 일본 본토 출신 학생은 합격자 비율이 70%인 데 반해 한국인 학생은 30%에 머물렀다(『동아일보』, 1936. 2. 8). 더욱이 한국인들의 생활 수준 하락으로 자연스럽게 지원을 단념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인 학생들의 입학 경쟁률은 더욱 하락했다. 한국인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력이 있음에도 시험조차 응시할 수 없는 처지로 몰리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 학생이 이처럼 증가하면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갈등이 커져가는 학교가 늘어났다.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경우, 일본인 학생이 "조선 사람은 야만"이라고 모욕한 뒤 패싸움으로 번져갔다. 이 싸움은 '제2의 구보사건'이라 불릴 만큼 파장이 컸다(『동아일보』, 1923. 7. 9). 당시 일본인 학생이 주머니칼로 한국인 학생의 머리를 찔렀던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총독부의원 당직 일본인 의사가 진단서 작성을 거부하고, 타 병원에서는 진단서 비용이 많이 들어 포기하려 하자 한국인 학생들이 분개했다. 이에 당사자인 일본인 학생은 한국인은 야만인이라고 모욕을 주었다. 결국 두 민족끼리 싸움에 이른 것이다. 당시 한국인 학생들은 일본인 학생의 퇴학을 요구했고 나머지 일본인 3명은 무기정학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무성의와 경찰의 방조로 인해 이 사건은 흐지부지되었다

(『동아일보』, 1923. 7. 9). 이 사건은 일본인 학생의 차별대우와 학교 측의 차별 교육을 목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천도교의 종합잡지이자 한국인 식자층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개벽』 57호(1925년 3월)에서 다음과 같이 '일선인공학(日鮮人共學)'의 허구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 조선 현재의 교육 중 특히 전문교육에 잇서 한국인에게 일대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일선인공학이라는 그것이다. 즉 일선공학이란 것은 조선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제에게 전문교육을 주기 위하야 일즉히 대정 5년 4월에 조선총독부 당국으로브터 한국인 취학의 몃 개 전문학교를 차용하다십히 하든 것인대 이것이 대정 8년 이후로 소위 일선인(日鮮人) 간 차별을 철폐한다 하며 실업전문학교급 대학 예과에 대한 공학의 원칙을 규정해 놋차브터는 각 전문학교에 일본인 입학생이 격증하야 작년 5월 말 현재 각 전문교의 일선인 학생별을 보면 대학 예과에 일본인이 124명, 한국인이 44명, 경성의전에 일본인이 199명, 한국인이 198명, 경성고공에 일본인이 83명, 한국인이 44명, 경성고상에 일본인이 214명, 한국인이 29명, 수원고등농림에 일본인이 143명, 한국인이 63명이오, 단 경성법학에만 한국인 학생 179명이 잇슬 뿐으로써 이를 총계하면 일본인이 785명, 한국인이 532명인 바 일본인 학생이 총 학생 수의 근 3분지 2를 점하는 형세이며 특히 근년에 와서는 일본 내지로부터 건너오는 일인 학생을 밧는 바 조선 안에 현존한 몃 개의 전문학교가 일본인 전용이 될 날도 몃 해가 못가리운 듯 십다(이대로만 간다하면). 이런 현상은 대정 8년 이전의 조선총독부 교육방침에서도 그러케 볼 수 업던 – 달리 말하면 재등선정(齋藤善政) 이후의 산물이라. 일시동인, 차별철폐, 문화정책의 묘미가 대개 이러한 데에 잇는 것인가.

또한 일제가 벌인 일본인 위주의 입시 방책은 당장 일본인들의 입학 경쟁률보다는 한국인들의 입학 경쟁률을 높였다. 『조선일보』는 1927년 4월 14일 자 보도에서 일본인 위주의 전문학교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 조선 사람은 학문에까지 자유가 없다 함은 지금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선 안에 있는 각 관립 전문학교로 말하면 사실에 있어서 재조 일본인만을 수용

하는 기관에 지나지 못했었고 한국인은 불과 몇 사람씩 섞이어 겨우 색채를 갖출 뿐이었는데 금년에는 한층 더 나아가서 조선 사람의 지원자가 절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지 각처까지 선전지를 돌려가지고 그 지방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조선 사람은 가급적 수용치 않을 방침을 취하게 되었으니 그 학교들은 조선총독부 경비로 한국인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 사실인데 이와 같은 방침으로 진행하는 데 대하여 일반의 비난이 많다. …

그 증거로 1927년 민족별 지원자와 입학자 현황을 [표 2-3-21]과 같이 공개했다.

이듬해인 1928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한국인의 입학자 비중을 보도했다.

「많아도 3할 5푼 … 고상은 겨우 1할 7푼」: 시내와 수원의 6개 관립 전문학교 한국인 입학률을 볼 때, 법전의 7할가량이 최고로, 대개가 3할가량 밖에 모집(『동아일보』, 1928. 4. 2).

당시 한국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에 비해 다수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매우 낮았던 것이다. 특히 지원자 수를 통해 비교할 때 한국인 학생은 지원자의 10%만 입학할 수 있는 반면에 일본인 학생은 지원자의 10%만 입학하지 못했다(『동아일보』, 1930. 3. 20). 그리하여 『동아일보』를 비롯한 한국 언론들은 한국인 학생이 겪는 이러한 입학난의 원인을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 찾았다. 즉 제1차 조선교육령과 제2차 조선교육령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표 2-3-21] 1927년 4개 관립 전문학교 민족별 지원과 입학 현황 단위: 명, %

구분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지원자(a)	104	255	80	304	160	50	165	413
입학자(b)	15	40	15	87	45	31	16	80
합격률(b/a)	14.4	15.7	18.8	28.6	28.1	62.0	9.7	19.4

출처: 『조선일보』, 1927. 4. 14.

「한국인 학생의 관전 입학난」: 대정 11년도(1922)까지는 한국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인 학생이 많았으나, 조선교육령 개정 후, 법전의 경우를 제외하면 입학자의 대다수가 일본인이 되어 한국인 입학률이 격감(『동아일보』, 1929. 12. 22).

제2차 교육령 시기의 한국인 입학률이 제1차 교육령 시기에 비해 훨씬 떨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언론들은 일본인 학생들이 본국에서의 입학난을 피해 조선에 들어왔음을 비판하면서 '한국인 본위'의 관립 전문학교 운영을 주장했다(『동아일보』, 1928. 9. 30). 즉 본국에서 오는 일본인 학생의 입학 제한을 주장하며(『동아일보』, 1931. 2. 25) 이른바 '학교 먼로주의'를 주창했다. 나아가 '한국인 학생과 전문학교, 진정한 기회 균등을 달라'고 요구했다(『동아일보』, 1929. 2. 22; 1931. 2. 14). 이러한 요구는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인 전반의 정서였다. 당시 『동아일보』는 "조선에 있는 전문 이상 학교가 한국인의 자제를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오, 주로 일본인의 자제를 교육하는 기관의 감이 있다"고 보도했다(『동아일보』, 1931. 3. 15). 『조선일보』 역시 "사실에 있어서 일본인만을 수용하는 기관에 지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조선일보』, 1927. 4. 14). 그리고 당시 이른바 일선공학의 허구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공학(共學)이란 미명하에서 사실상으로 한국인의 입학은 제한을 당하고 있으며 무차별의 외식(外飾)하에 중대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 금일의 조선의 전문 이상 교육과 실업교육의 현실의 정책이다(『동아일보』, 1931. 3. 15).

일제가 민족 공학을 통해 전문학교의 내실화를 이끌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결국 한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을 전제로 펼친 고등교육시책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25] 나아가 한국인 본위의 교육 방침이 배제된 채 한국인 학생들은 이른바 교육내지연장주의(教育內地延長主義)에 희생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동아일

25 『조선일보』는 1927년 1월 18일 기사에서 이런 현상을 '공학제 미명하 입학은 극난'이라고 비판했다.

보』, 1931. 12. 2).

심지어 이들 언론은 한국인 입학자가 적은 것은 민족별로 비율을 정한 내규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표명했다(『동아일보』, 1930. 3. 11; 1931. 3. 15). 그 밖에 일제 경찰이 한국인 입학 지원자의 신원을 조사하여 '불령적 경향(不逞的 傾向)'을 가진 한국인 자제는 입학을 불허한다고 의심하기에 이르렀다(『동아일보』, 1931. 2. 14; 1931. 3. 15).

나아가 한국 언론들은 입학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즉 이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한국인이 부담했던 조세액에 비해 관립 학교의 한국인 입학자 수가 일본인 입학자 수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이다.

> 즉 관립 학교라는 것은 그 경비가 소위 국세로 납세하는 돈 중에서 나오는 것이니 국세의 비례를 조금 해석을 하여보자. 소위 국세로 납입된 금액을 14년도의 예산에 따라 보면 총액이 44,740,000원가량이오, 그중에 일본인 편에서 납세한 것이 5,428,462원이오, 한국인 측에서 납세한 것이 43,308,645원이니 일본인과 한국인의 비례를 보면 한국인은 국세로 일본인보다 약 30배 이상을 납세하는 터이니 일본인은 한국인에 비하여 30분의 1이 못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국세를 내는 비례로, 즉 한국인이 국세를 내는 정도와 일본인이 국세를 내는 정도에 따라 각각 그에 상당한 학생을 교육시킨다 하면 관립 학교에서는 반드시 한국인 학생이 일본인 학생보다 30배 이상이 되는 형편에 있어서야 상당할 것이다(『동아일보』, 1926. 8. 16, 사설).

이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표 2-3-22]와 같다. 결국 이처럼 조세액과 비교하여 양 민족의 비중을 따져보면 한국인 1명에 대해 일본인 218명이 관립 학교에 재학한 셈이다. 나아가 관립 학교만 일본인이 그 분에 넘치는 금전, 즉 한국인이 납세하여 당연히 한국인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일본인 교육을 위해 매년 772,918원 내외의 거액을 쓴 것이다. 당시 『동아일보』는 이를 두고 "부당한 이득을 매년 772,000여 원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하여 한국 일부 언론에서는 경성제국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한국인 학생이 전체 학생에서 50% 이상 차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동아일보』, 1931. 3. 15).

[표 2-3-22] 1925년 민족별 국세 납입액과 관립 학교 학생 수

	한국인	일본인	합계	비고
관립 학교 학생 수(명)	792(100)	5,593(700)	6,385	한국인을 기준으로 비율 산정
국세납입액(원)	43,308,645 (100)	1,428,462 (30)	44,740,000	

주: 괄호 안 수치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해당 항목 비율
출처: 『동아일보』, 1926. 8. 16.

또한, 일본인 본위의 경성제국대학 설립 이후 전문학교의 우수 교직원들이 대학으로 이동하고 시설물 투자와 더불어 재외연구원 파견을 비롯한 교직원 처우가 열악해졌다. 1927년 당시 5개 관립 전문학교 1년 경비는 5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였는데 평균 경비액으로 환산하면 1개 일본인 중학교 경비와 차이가 없었다(『조선일보』, 1927. 6. 19).

이에 조선총독부는 일선공학의 취지를 내세워 경성고등상업학교의 도쿄시험장을 철폐하여 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입학을 제한하고자 했다(『동아일보』, 1923. 1. 29; 4. 11). 이 역시 당시 한국인들의 입학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일제가 취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시책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 애초부터 한국인 학생의 입학난을 해소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전체 관립 전문학교 입학생 중 일본인 학생이 180명인 반면, 한국인 학생은 1/4도 되지 못했다(『조선일보』, 1928. 4. 2). 한국인 사회에서는 일제가 민족별 정원의 내막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선일보』, 1928. 4. 2).

이듬해인 1929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전문학교의 입학난은 더욱 심각해져 갔다.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경우 최고로 높았는데 1:11이었다. 당시 의학, 공학, 상학, 법학 순으로 입학률이 높았다(『동아일보』, 1929. 3. 21). 평균 1:7~8이었다. 특히 한국인 학생의 경우는 더욱 심했다. 당시 일선공학의 기치 아래 일본인들을 대거 선발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한국인의 '전문학교 입학 지옥'이었다(『동아일보』, 1931. 2. 14).

이후에도 이러한 사정은 [표 2-3-23]과 같이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입학 경쟁률 격차는 더욱 커져갔다. 이러한 민족별 입학 경쟁률 격차는 한국인 학생들이 한국인 본위 운동을 벌였음에도 일제는 이를 수

[표 2-3-23] 1930년대 전반 관립 전문학교의 민족별 입학 경쟁률

민족 / 학교	1931년		1934년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경성법학전문학교	4.5	2.5	7.1	2.9
경성의학전문학교	14.3	7.7	7.7	9.1
경성고등공업학교	3.3	4.2	5.0	5.9
수원고등농림학교	3.3	4.0	7.7	6.3
경성고등상업학교	5.3	4.7	9.1	4.5
합계	5.5	5.0	7.1	6.3

출처: 『동아일보』, 1931. 4. 7; 1934. 3. 29.

용치 않고 일본 본국에서 입국하는 일본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민족별 정원제를 내밀하게 운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제가 민족별 정원제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학력의 차이에 따른 선발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한국인 식자층은 당시 재학 한국인의 우수한 성적을 근거로 일제 당국의 이러한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조선일보』, 1936. 3. 22).

그리하여 1936년 7월에는 동아일보 주최로 입학난 문제를 둘러싼 좌담회가 열리기도 했다(『동아일보』, 1936. 2. 7). 이 자리에 참석한 김준연(金俊淵), 이여성(李如星), 김상용(金尙鎔) 등은 전문학교와 대학 입학 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고 자유경쟁으로 공정하게 선발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한국인 입학 비율은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의 경우, 각각 74.2%, 27.5%, 30.3%, 32.3%, 19.1%였다.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제외하고는 30%가량 내지 그 이하였다. 이에 한국인 학생들은 일제의 불평등 대우를 예상하여 지원을 단념하기까지 했다.

◆ 학교 시설, 교수 학습 여건 개선 운동

1920년대에 들어와 학생운동은 3·1 운동에 이어서 결코 약화되지 않았다. 초창기에는 주로 학교 시설, 교수 학습 여건에 국한되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사회운동,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그것은 처음에는 일본인과 함께 학생운동을 전개했지만 점차 한국인 위주로 전개되었음을 의미했다.

우선 전문학교로 승격한 이후에도 관립 전문학교 한국인 학생들은 여전히 학

교 시설의 불비와 교수 학습의 불충이 학생운동의 가장 큰 이유였다. 1922년 10월 19일 교장의 행동과 학교 운영에 불만을 품은 학생 100여 명은 그 전날 시내 황금정 2정목에 있는 강도관(講道館)에 모여 학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다음과 같은 10개조의 요구 조건을 채택했다.

① 학교의 설비를 완전히 할 일
② 학교 기구와 기지를 중앙시험소, 공업학교와 완전히 구별할 일
③ 현재 조교수 5명을 11명으로 증가할 일
④ 기숙사를 건설할 일
⑤ 운동장을 확장할 일
⑥ 교내 도서관을 개방할 일
⑦ 폐지한 요업과를 부흥할 일
⑧ 학교 전체를 모두 확장할 일
⑨ 무조건으로 이전 공업전문학교 생도를 고등공업학교 생도로 편입할 일
⑩ 시험지를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 둘 일(『동아일보』, 1922. 10. 22)

다음날인 1922년 10월 20일 경성고등공업학교의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 일동은 일본인 교장에게 전날 의결한 10가지 조건을 제출하고 갑종공업학교 승격을 요구하는 동맹휴학을 단행하고자 했다.

이에 학교 당국은 10월 20일 교수회에서 운동장과 도서관 관련 요구 사항은 수용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항은 예산 문제라고 거절했다. 학생들은 10월 21일 재차 동맹휴학에 들어갈 것임을 역설했다. 즉 24일까지 그들의 요구 조건에 대해 학교에서 원만한 회답이 없으면 단연히 퇴학계를 제출하고 모두 학교를 떠나겠다고 했다(『동아일보』, 1922. 10. 25). 당시 학생들은 1922년 초부터 동맹휴학에 들어가려 했으나 일본인 학생과 연락이 안 되어 늦어졌던 것이다. 또 교장의 독단적이고 관료적인 태도가 문제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학부형회가 관여하여 조정하기 시작했다. 21일 학부형회가 열리고 학생 측 대표자와 회견하여 타협한 결과 공업학교 3학년 졸업생은 고등공업학교 선과(選科)에 무시험으로 입학할 일, 동맹휴학한 생도를 처벌하지 아니할 일, 학교에 주사를 두고 개선책을 도모하는 등 세 가지 조건이 허락됨으로써 동맹휴학이 중단되었다(『동아일보』, 1922. 10. 22).

이 사건은 공업전문학교에서 고등공업학교로 승격되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특히 한국인 학생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본인 교장의 독단적이고 관료적인 태도에 맞섰다는 점에서 학생자치의 실마리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이 여의치 않자 학생들은 다시 일어났다. 즉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이후 우량 학교 교직원은 대부분 대학으로 전근 가거나 겸임이 되어 있었다. 시가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장은 의학부장과 조선총독부 부의원장을 겸임했고 미야마(三山) 경성고등공업학교 교장이 중앙시험소장을 겸임했으며, 가토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장이 권업모범장장을 겸하고 있었다(『조선일보』, 1927. 6. 19). 전임 교장은 경성고등상업학교와 경성법학전문학교뿐이었다. 따라서 교직원의 정원 부족과 함께 학교 품격의 저하가 우려되었다. 더욱이 시설 방면에서도 한산하여 교직원의 해외 유학이나 파견, 각종 조사 연구에 대한 비용도 극도로 절약하는 까닭에 전문학교로서 학문적 직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현재 조선의 실정에 비추어 최고 학부의 시설 충실보다도 차라리 전문학교 교육을 보급해 실무적 인재를 다수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초미의 긴급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학교의 시설 상태가 빈약함에도 5개 관립 전문학교에 대한 일년간 경비가 5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최고 역시 12만 원으로 경비상으로 보면 중학교 2개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10월 7일 교직원들이 총독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① 전임 교장을 둘 것
② 교사와 설비를 완비할 것
③ 교직원 정원을 증가할 것
④ 비품과 실험비를 증가할 것
⑤ 도서비를 증가할 것
⑥ 운동장의 설치와 설비할 것
⑦ 재외연구원 파견과 외국 출장에 관한 경비를 증가할 것
⑧ 교직원의 대우를 조선 내의 일반 관리와 동일하게 할 것

이러한 요구는 학생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학습권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

라 이들 학생을 지도하거나 지원하는 교직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발로였다.

이러한 사정은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26년 17일과 18일 6·10 만세운동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은 학예회를 개최하면서 학교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비밀 회합을 가졌다. 그리고 6월 21일 20여 명의 학생들이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동아일보』 1926년 6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생도에게 친절하게 해줄 것
② 입학시험을 연 2회로 할 것
③ 교사를 신축할 것

요구 사항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학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학교는 전교생 150여 명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여론은 학생 측에 동정적이었고 학부형들도 학교 측의 처사에 항의하면서 상황은 학생들에게 유리해져 갔다(『동아일보』, 1926. 7. 1). 7월 1일 학부형 측의 노력으로 학교와 학생 측이 원만하게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① 교사 개축 내용 충실 문제는 교장에게 일임할 사
② 생도의 요구를 인정하고 이를 이행에 노력할 사
③ 생도의 의지를 인정하고 교장이 전 책임을 질 사
④ 무기정학 처분을 철회할 사
⑤ 희생자를 내지 말 사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학부형들의 중재 노력으로 학교 시설을 개선할 길이 열리기에 이른 것이다. 신문에서도 조선총독부 학무당국의 말을 전하면서 학생들의 동맹휴학으로 인해 1927년도 예산이 증액될 것임을 보도했다(『동아일보』, 1926. 11. 1). 그 결과 앞의 [표 2-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7년 학교 예산이 증액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학생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희구와 학업에 대한 열정이 교육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다.

◆ 학생운동에서 사회운동, 민족운동으로

192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사회과학 독서 서클이 증가해 학생운동도 시설 개선, 교수학습 조건의 확충 등 학내 문제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운동, 민족운동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특히 1926년 6·10 만세운동은 비록 초기에 일경의 체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침체했던 학생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관립 전문학교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6·10 만세운동 때 학교의 엄한 처벌 규정으로 참가하지 못했던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은 독서회 등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일제 당국은 학교가 현하 조선의 사회운동과 그 계통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하여 1927년 1월 1일 오후 3시 경성고등상업학교 회의실에서 경성제국대학,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등을 위시한 십수 명의 전문학교 이상의 학교감들을 회합한 후, 조선의 사회운동과 계통을 제일 잘 안다는 종로경찰서 요시노(吉野) 경부보와 본정서 다루사키(樽崎) 경부보의 설명을 들었다(『조선일보』, 1927. 2. 3). 당시 일제는 학생운동의 중심이 고등보통학교 등 중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기관인 전문학교 학생들이 관여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일제의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이 그 선구였다. 이들이 조직한 건아단은 이 시기의 다른 학생비밀결사와 달리 민족주의 계열의 결사라는 데 특징이 있었다(『김찬도 일지』; 신한풍, 2015).

건아단의 결성은 1926년 여름 김찬도, 권영선 등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이 학교 안에 천도교 조선농민사 지부를 설치하고, 수원군 안룡면 고견리 일대에서 농민야학을 운영한 데서 비롯되었다. 김찬도와 권영선은 수원고등농림학교 기숙사의 학생들을 다수 야학 교사로 끌어들이는 한편, 1927년 6월 학생 활동가들로 건아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했다(『동아일보』, 1928. 9. 18; 조성운, 1995: 125).

건아단은 단군기년을 연호로 사용하며, '농민 대중을 개발시켜 신조선을 건설함'이라는 강령 아래 동지를 규합했다. 주요 활동은 농민야학이었는데, 단원들은 야학을 통해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한글 작문을 지도하면서 야학생들의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했다(『조선일보』, 1930. 3. 6). 그리고 1927년 9월 수학여행 도중에 경원선 일대의 일본인 대농장을 시찰하고 돌아와서는 그에 자극을 받아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광대한 미간지를 개척하여 이상농촌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했다. 이상농촌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단원들은 1927년 3월 수원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하고 김해농업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선배 김성원의 지도를 받았다(『동아일보』, 1928. 9. 16).

1928년 5월 27일 일본 유학생들이 농촌 연구와 농민 계몽을 목적으로 조선농우연맹을 결성하자, 건아단은 농우연맹에 가맹하여 7월 6일 동래에서 시작된 전국 순회강연에 지부 대표로 임과 2년생 한전종을 파견했다. 그러나 농우연맹의 순회강연단은 도처에서 강연 중지와 금지를 당해 결국 조치원에서 해산하고 말았다. 이 일로 한전종은 학교 당국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으나, 다행히 비밀결사의 실태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 무렵 단원들은 학교에서 공인한 한국인 학생담화회를 이용하여 운동의 발전책을 거듭 강구하다가 계림농흥사(鷄林農興社) 조직으로 개편했다.

한편, 앞서 건아단에서 추진하던 이상농촌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1928년 4월 신학기부터 수원 서호 호반의 여기산(麗妓山) 숲속 정자에서 밀의를 거듭하며 구체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가 6월 하순경 초안을 작성했다. 그리고 7월 여름방학 동안 비어 있는 기숙사 등에서 수차례 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전 인구의 8할을 차지하는 "농민으로 더불어 조선○○운동을 일으키자"는 취지로 조선개척사라는 결사 조직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를 지도하던 김해농업학교 교사 김성원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한 혐의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와 수원고등농림학교 3학년 우종휘 사이에 오간 서신이 발단이 되어 비밀결사의 존재가 탄로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8월 말 기숙사를 급습한 고등계 경찰에 의해 비밀결사에 참여한 2, 3학년생 10여 명이 검거됨으로써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의 비밀결사운동은 일단락되었다.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건아단-계림농흥사는 전문학교 학생 비밀결사 사건으로는 처음인 만큼 일반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은 이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에 대한 학교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928년 9월 21일부터 동맹휴학에 들어가 10월 3일까지 이어졌다. 당시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의 이러한 동맹휴학을 예의 주시하여 그들의 발간물에 이 사건을 기록했다(조선총독부 경무국, 1929: 102).

이어서 1929년 11월 3일 발생한 광주학생운동은 당시 일제의 엄혹한 감시와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경성에 소재하고 있던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일제는 경성제국대학을 비롯하여 시내 각처에 비밀문서가 배포되자 12월 3일 각 교장들을 소집하고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동아일보』, 1929. 12. 6). 특히 조선총독부는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등의 교장들을 초치하여 장시간 회의할 정도로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미연에 막고자 했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노력은 허사였다.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은 12월 13일 광주학생운동에 관한 세 가지 요구 조건을 학교 당국에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했으며, 경성법학전문학교 학생들은 2학년 한국인 학생 전부가 등교하지 않았다(『동아일보』, 1929. 12. 28). 심지어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들은 1930년 1월 3학기가 시작될 즈음 다시 동맹휴학을 벌여 1월 14일부터 휴교 상태에 들어가기에 이르렀다(『중외일보』, 1930. 2. 1; 1930. 2. 19).

경성사범학교 학생들도 1929년 광주학생운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와 민족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심은 당시 경성사범학교 학생들의 70% 이상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사실상 일제는 기숙사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김성학, 2013: 180~181). 즉 사생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군대식 점호를 받으며, 식사 시간에 지각할 경우에는 미리 취사위원에게 보고해야 하고, 수시로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겨울철에는 실내 적정 온도를 10도로 정해 놓고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갈 때만 석탄을 배급받았다. 평일의 외출은 방과 후 오후 6시까지 허용되었으며, 우편물은 사감의 검열을 받으며 모든 통신문은 일본어로 작성해야 했고, 극장에는 허가된 경우 외에는 출입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일부 학생은 일본인 교사와 연대하여 일제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했다. 1930년 10월 경성사범학교 학생이었던 조판출(趙判出)은 함안고등보통학교 시절의 스승이었던 죠코 요네타로(上甲米太郎)의 반제국주의 교육노동자 조합결성운동에 그의 친구들과 적극 참여했다가 1930년 12월에 체포되었다(이준식, 2006: 27~28). 당시 일제는 광주학생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성사범학교 학생들의 동향을 예의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사물을 검사하다가 죠코가 조판출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하여 이른바 '교원공산당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사건화했던 것이다. 그 결과 죠코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되었고 조판출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언도받았다.

이후 일제는 경성사범학교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상의 경향을 엄격하게

조사했다. 예컨대 1929년에는 연습과 지원자가 제출하는 학교장 소견표에 적혀 있는 '사상의 경향'을 평가했지만, 1934년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보통과와 강습과 지원자의 소견표로 확대함은 물론이고 본인 이외 부모, 형제, 친족, 친구의 사상까지도 평가했다(김성학, 2013: 184~185). 또한 입학고사 가운데 하나인 구술시험에서도 사상을 검증했으며 학생 징계도 강화했다. 1934년 이전만 하더라도 학생 징계는 계칙(戒飭), 근신, 정학 등 세 가지였는데 1934년에는 정학이 가정근신으로 명칭이 바뀌고 방교(放校, 제적)가 추가되었다.

한편, 경성법학전문학교 학생 김대용(金大用, 1913~?)은 1934년 2월 당시 조선공산당 재건에 앞장선 이재유 그룹의 정태식(경성제국대학 조수)의 지도 아래 학생부문 조직 활동에 참여하여 공청그룹 법전반(法專班)을 결성했다. 그는 정태식을 통해 경찰에서 탈출한 이재유에게 물품과 운동자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1934년 5월 경기도 경찰부에 검거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강만길·성대경 엮음, 1996).

광주학생운동 후 동맹휴학사건이 이처럼 빈발하고 비밀결사단체들이 증가하자 일제는 관·공립 전문학교에 전임 학생주사를 임명했다. 즉 사상 단속과 학생 풍기 단속을 명분으로 교수가 겸임했던 학생주사제도를 확장하여 경성제국대학과 동 예과, 기타 각 관·공립 전문학교에 전임 학생주사와 주사보를 두게 되었다. 1935년 9월에는 제1회 학생주사회의를 열고 학생 사상 단속과 풍기 단속에 관한 회의를 열었으며(『조선일보』, 1935. 7. 23), 이후 고등계 형사마저 참석했다(『조선일보』, 1935. 10. 27). 아울러 학교 당국은 미리 경찰 측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협의했다. 이는 학생주사와 학생감의 경찰화를 의미했다.

(4) 졸업 후 취직 실태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 취직이 다른 학교에 비해 쉬웠다.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경우, 의학 전문직이어서 초임급(初任給)이 70~80원 내지 123원이었고 특별할 때는 200원 이상이기도 했다. 당시 쌀 한 가마니가 20원이었으니 매우 높은 급여였다. 공의(公醫)나 관·사립 병원 의사의 수요가 매우 많아 이를 수응치 못할 정도였다(『조선일보』, 1927. 11. 4). 반면에 경성법학전문학교의 경우, 예전과 달리 재판소 서기나 관청 고원 등에 취직했다. 보수도 50~60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취직도 만만치 않았다. 경성고등상업학교는 조선 각지의 은행, 회

사 등에 2,000여 통의 소개장을 학교 당국이 발부할 정도로 졸업생들의 취직에 힘을 기울였다. 월급은 일본인 초급이 75~120원 정도이고 한국인은 대략 50원 가량이었다. 경성고등공업학교의 경우, 기술자인 까닭에 특수한 방면밖에 취직할 곳이 없었다. 이 중 응용화학, 방적과 광산이 더욱 어려웠다. 보수는 60~100원쯤 되었다.

취직률은 어떠한가. 1927년 초반의 경우, 경성고등상업학교는 75명 중 68명이 취직했다. 경성의학전문학교는 85명 중 85명이었다. 전원 취직한 셈이다. 경성고등공업학교는 24명 중 21명이었다. 경성법학전문학교는 45명 중 33명이었다. 수원고등농림학교는 53명 중 45명이었다(『조선일보』, 1927. 7. 2). 당시 전문학교 졸업자들 중 30%가 취직을 하지 못했고 중학교 졸업생 중 70%가 취직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의 취직률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동아일보』, 1926. 8. 4).

그러나 1929년 대공황 이후 전문학교 학생들마저 졸업 이후 취직을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경기 불황으로 취직하기가 어려웠던 데다가 공황 이전만 해도 경기 호황으로 가려져 있었던 민족 차별이 전면으로 드러났던 것이다(『조선일보』, 1933. 1. 21; 정선이, 2015: 22). 무엇보다 관청 및 은행, 회사 등에서 일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정책을 폈다. 즉 이러한 일본인 취직 우선 정책은 단지 조선 내 거주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본 거주 일본인 졸업생의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조선은행의 경우, 일본 본국의 일본인은 모두 채용 대상으로 삼았으되 조선 내 대학과 전문학교 출신들은 아예 채용하지 않았다.

당장 경성고등상업학교의 한국인 졸업생마저 취직하는 데 많은 난관을 거쳐야 했다. 경기가 불황인 데다가 민족 차별이 컸기 때문이다. 1935년 3월 경성고등상업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이필석(李珌奭)의 경우, 일본인은 모두 취직하는 가운데 한국인 수석 졸업자에게 으레 부여되는 식산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했지만 병치레에 따른 체력의 열세로 한국인 학생에게도 밀려 취직하지 못하고 1년을 헛되이 보내야 했다(이필석, 1984: 30~35). 그는 "무엇 때문에 죽도록 공부했으며 나의 재주는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라고 통탄해 하며 통치 받는 민족의 차별을 뼈저리게 느꼈다. 결국 그는 지인의 후원으로 조선신탁주식회사 평양지점에 취직했다. 물론 한국인 고등학력자라면 다들 도전했던 고등문관 시험도 건강 이상으로 포기해야 했다.

한편 일부 학생들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하기도 했다.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안동혁은 1926년 졸업한 뒤 일본 규슈대학 응용화학과를 거쳐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경성고등공업학교의 교수와 교장을 역임했다. 이균상은 1925년 졸업한 뒤, 경성공업전문학교 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학부 본관, 경성광업전문학교 교사 같은 현대 건축물을 설계했다. 1929년 졸업한 건축과 이상(본명 김해경)은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입학한 후 수석으로 졸업했고,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수로 근무했다. 그 후 조선건축학회지 『조선과 건축』에 일어로 쓴 시를 발표하며 문학 활동을 시작했으며 1931~1932년 사이에만 시작(詩作) 2,000여 점을 쏟아내는 등 시인·소설가·수필가로 활동했다. 1927년 졸업한 응용화학과 최황은 경성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시라큐스 대학 화학공업부를 거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오노다(小野田) 시멘트 공장에서 기수로 근무했고 시라큐스 대학·오하이오 주립대학 화학기계학과 강사를 지냈으며, 전미 공학상, 전미 대학 우등상, 국제과학연구상을 수상했다.

2) 경성제국대학 한국인 학생의 학업과 활동

(1) 입시전쟁과 민족별 쿼터

1924년 경성제국대학은 조선총독부의 일방적 '독주' 속에서 단기간에 설립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뿐 아니라 재조 일본인의 여론도 무시했기 때문에 '신생' 대학의 탄생에 대한 시선도 결코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을 기점으로, 식민당국은 식민지 사회 안팎에서 모색하던 다양한 수준의 대학 설립 움직임을 좌절시키고 일절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실망감과는 별도로, 경성제국대학이 식민지의 최고 학부로 등장하게 되면서 식민지의 한국인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기대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도 확실한 사실이었다. 이전까지 식민지에서는 고작 전문학교가 '최고 학부'였기에, 그 이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고향을 버리고 유학을 떠나야 했으며,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중등학교에 편입해서 어린 일본인 학생들과 더불어 생

[표 2-3-24] 1926년의 예과 입학시험 과목

과목(총점)	문과	이과
국어 · 한문(250)	일문해석(85), 작문(50), 받아쓰기[書取] · 국문법(30), 한문해석(85)	문과와 동일
외국어(200)	해석(100), 국문 영역 · 독역(70), 받아쓰기(30)	문과와 동일
수학	대수, 평면기하	대수, 평면기하, 삼각법
역사(100)	서양역사 · 일본역사(100)	-
박물(博物)(100)	-	식물(40), 물리(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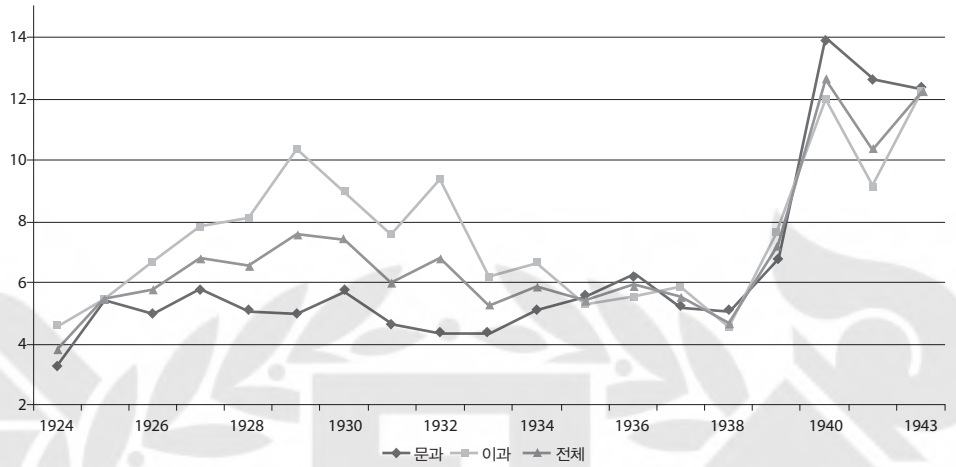
출처: 『동아일보』, 1925. 3. 25.

활하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든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의 학력 차별을 형식적이나마 철폐했고, 경성제국대학의 설립과 더불어 이제 유학생활 없이 조선에서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되었다.

◆ 진학열의 정점, 경성제국대학 예과

게다가 문화통치를 내세웠던 조선총독부는 많은 재원을 투여해 가까스로 설립한 경성제국대학이 당국이 표방하는 동화 이념의 구현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랐다. 본토 제국대학 특유의 제도와 관행은 표면적으로는 경성제국대학에 도입되었고, 실력으로 난관을 뚫고 제국대학생이 되면 최소한 대학시절까지는 민족과 상관없이 엘리트로 인정받는 사회의 분위기도 형성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국대학은 연구 본위의 대학이며, 따라서 조선에 세워진 대학에서 근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이것을 다시 조선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게 되었다. 신임 총장 핫토리 우노키치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했던 말, 즉 "머지않은 장래 한국인 교수도 생길 것"이라는 단언은 설령 빈말일지라도 조선의 청년 학생들을 자극하는 데에는 충분했다. 3·1 운동 이후 불이 붙기 시작한 '진학열'과 '입시난'은 보통학교를 넘어서 중등교육기관으로,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을 기점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 퍼져나갔다. 식민지 학력 경쟁의 단초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경성제국대학 예과 시험은 합격자에게 제국대학 입학을 사실상 보장한다는 점에서 입학 경쟁의 정점이라 불릴 만했다. 대학 설립이 확정되지도 않았던 1924년 1월 거행된 입학시험에는 이미 659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어 4.1:1의 경쟁



출처: 정근식 외(2011: 510).

[그림 2-3-9]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입학경쟁률(1924~1943)

률을 보였다. 그리고 1930년 7.45:1이 될 때까지 경쟁률은 가파르게만 올라갔다. 이후 경쟁률은 여러 사정에 따라 다소간의 부침을 겪지만[26] 1940년대가 되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해 최대 12.69:1까지 치솟고 만다. 확인 가능한 자료에서 가장 낮은 경쟁률이 바로 1924년 예과 개설 당시였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식민당국은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을 통해 한국인 청년 학생을 학력 경쟁과 입시 지옥으로 점철된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데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률은 '내선공학'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인과 재조 일본인, 본토 일본인의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조선총독부와 대학 당국의 개입을 도입하면 더욱 극악한 상황으로 바뀐다.

◆ 내선공학의 허상과 민족별 쿼터

제3장 2절에서도 설명했지만, 사실 조선총독부는 예과 모집을 앞두고 몰려든 지원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본토 일본인이 너무 많으면 조선 거주 학생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한국인 사회의 비난, 즉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일본 내부의 진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난에 직면

26 1933년을 기점으로 전체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입시일을 일본과 다르게 해서 본토 일본인의 지원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며(『조선일보』, 1933. 2. 4), 1940년에 경쟁률이 급증한 것은 영어가 폐지되어 본토 일본인이 많이 지원했기 때문이다(『조선일보』, 1940. 2. 7).

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본토 일본인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경성제국대학이 일본 본토에서는 '제국대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한다는 것을 의미해 제국대학의 위상에 치명적인 손상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한편으로는 경성제국대학 예과 입시를 본토의 구제 고등학교 입시와 같은 날에 실시하여, 양자가 같은 수준의 학교이며 수험생은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려고 했다. 마침 일본 본토에는 심각한 입시지옥이 펼쳐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지(外地)일지라도 '제국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신생 대학 예과에 대한 지원이 쇄도했다(『동아일보』, 1924. 1. 30). 조선총독부는 일단 지원 결과에 안도했지만, 『동아일보』는 의학부 입학 예정의 이과에 일본인이 쇄도했던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드러냈다(『동아일보』, 1924. 2. 17). 일본 본토의 엄청난 입시 압력 속에서 신생 대학이 그 압력을 완화하는 우회로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였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예과 입시의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였다. 합격자는 애초 고지(告知)된 정원보다 많은 170명이었는데 한국인 합격자는 모두 45명으로 전체 합격생의 26.5%에 해당했다. 일본인 합격자는 재조 일본인이 59명, 본토 일본인이 65명, 비율은 각각 34.7%, 38.2%다. 일본인 사이의 균형은 절묘하게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추가 합격자 10명은 경쟁이 치열했던 이과[醫]가 아니라 문과에서 충원되었다. 문과에 한국인 합격자가 많았던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한국인 합격자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낮추어서 생긴 결과였다(이충우·최종고,

[표 2-3-25] 1924년 제1회 경성제국대학 예과 시험 결과 단위: 명, %

	민족	지원	응시	합격	합격률
문과	일본인	154	128	61	47.7
	한국인	141	119	29	24.4
	전 체	295	247	90	36.4
이과	일본인	263	218	64	29.4
	한국인	101	91	16	17.6
	전 체	364	309	80	25.9
합계	일본인	417	346	125	36.1
	한국인	242	210	45	21.4
	전 체	659	556	170	30.6

출처: 馬越徹(2001: 139), 〈표 4-3〉.

[표 2-3-26] 1924년 제1회 경성제국대학 예과 합격자 민족별 구성 단위: 명, %

		한국인	일본인			계
			재조	재일	기타	
문과	A(法)	10	18	17	0	45
	B(文)	19	15	11	0	45
이과(醫)		16	26	37	1	80
합계/%		45/26.5	59/34.7	65/38.2	1/0.6	170/100

출처: 馬越徹(2001: 141), 〈표 4-4〉.

2013: 44~45). 많은 한국인이 의심했던 대로, 학력 경쟁 이전에 한국인과 재조 일본인 그리고 본토 일본인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맞추는 이른바 민족별 쿼터가 실제로 존재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당연히 『동아일보』 등 식민지의 언론은 재조 일본인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인 한국인이 예과 정원의 1/4만 합격한 것에 대해서 고등교육의 기회 박탈이자 차별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馬越徹, 2001: 138~141).

실제로 이후 대학 예과 입학자의 민족 비율을 추적해 보면, 다소의 수치 변동은 있지만 '민족 쿼터'가 시종 작동했던 것이 확인된다. 1924년 1회부터 『경성제국대학일람』에서 확인이 가능한 1943년 20회까지 대학 예과의 입학생은 총 3,343명이었는데, 이 중에 한국인은 1,113명으로 33.46%, 재조 일본인은 2,541명으로 41.19%, 본토 일본인은 799명으로 24.26%였다(정근식 외, 2011: 471~477). 본토 일본인이 현해탄을 건너 조선에 '유학'오는 것은 아무래도 일본 내의 '진학 상황', 지원자의 조선 연고 여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아무리 조선총독부라도 본토 학생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인, 재조 일본인, 본토 일본인을 '1:1:1' 비율로 받는 민족별 쿼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다. 물론 시기별로는 다소의 차이가 확인된다. 가령 1924~1925년의 첫 2년간 본토 일본인의 입학률이 40% 가까이 육박했던 것은 본토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의 산물이었다. 한국인은 이과보다는 문과를 더 많이 지망했고 합격률도 문과 쪽이 더 높았는데, 한국인이 선호하지 않았던 이과(이공학부)의 추가 개설 이전까지의 비율을 살펴보면 대략 30~40%대에 평균 33.5%, 즉 1/3이었다. 한편, 본토 일본인은 본토에



京城帝大豫科
入學試驗問題

(理科) 國語及漢文 (總點六十)

漢文解釋 (總點六十)

(一) 左ノ文章ニ適當ナル附ケ且ツ之ヲ解釋セヨ

(二) 非ニ復吳下阿蒙ニ

(三) 幷年光陰

(四) 脩己敎人

(五) 盛觴

(六) 以相從老

(七) 以

(八) 先王大道

(九) 以

(十)

(一) 左ノ語句ヲ解釋セヨ

(二) 五常

(三) 左ノ文章ニ適當ナル附ケ且ツ全文ノ意味ヲ解釋セヨ

(注意) 答案ハ答案紙ニ縦書スベシ

(一) 左ノ文章ヲ平易ナル國語

(二) 同前

(三) 左ノ文章中傍線ヲ附シタルトコロヲ解釋シ且ツ全文ノ意味ヲ解釋セヨ

(注意) 答案ハ答案紙ニ縦書スベシ

(一) 左ノ文章ヲ平易ナル國語

(二) 同前

(三) 左ノ文章中傍線ヲ附シタルトコロヲ解釋シ且ツ全文ノ意味ヲ解釋セヨ

(注意) 答案ハ答案紙ニ縦書スベシ

英語作文 (總點七十)

(一) 拜啓先般大阪朝日新聞に廣告相成候處『支那辭典』一部至急御送附被下度右代金及郵稅として拾圓爲替封入御送付申上候敬具

昭和三年二月一日
京城本町一丁目三番地
吉田一郎
K アンド W 會社
御中

(二) What would you say on seeing the following people?

1. A friend just back from a holiday.
2. An acquaintance who has recently been unwell.
3. A doctor whom you wish to consult for a bad head-ache.
4. A shop-keeper from whom you wish to buy a pair of boots.
5. A visitor who has called to see you.

英語解釋 (總點百)

(注意) 答案ハ答案紙ニ縦書スベシ

1) It has been well said that, if we would study ahe subject properly, we must study it as something that is alive and growing and consider it with reference t its growth in the past. As most of the vitel forces and movements in modern civilzation had their origin in Greec, this means that, to study them properly, we must get back to Greece.

(2) The world we live in is a fairyland of exquisite deauty, our very existence is a miracle in itself, and yet and yet few of us enjoy as we might, and none as yet appreciate fully, the beauties and wonders which surround us.

(3) My heart was beating fiercely, when we two set forth in the cold night upon this dangerous venture. A full moon was beginning to rise and peered redly through the upper edges of the fog, and this increased our haste, for it was plain, before we came forthn again, that all would be bright as day, and our departure exposed to the eyes of any watchers.

(4) He never smiled, he never frowned, he never betrayed the slightest suspicion of enthusiasm; but all through the interminable narrative there ran a vein of impressive earnestness and sincerity, which showed me plainly that, so far from his imagining that there was anything ridiculous or funny about his story, he regarded it as a really important matter.

출처: 『조선일보』, 1928. 3. 27.

[그림 2-3-10] 1928년 경성제국대학 예과 시험 문제

돌아가서도 통용될 수 있는 의학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 당시에는 민족별 쿼터에 대해서 침묵했지만, 패전 이후 동창회가 주관하는 좌담회에서 민족별 쿼터가 실재했다고 증언하는 교수도 있었다(정준영, 2009: 128).

(2) 일상생활과 학생 문화

◆ 재학생의 자격: 생도, 학생, 선과생, 청강생

같은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해도 예과와 학부는 엄연히 교육 단계가 달랐기 때문에 재학생을 부르는 호칭부터가 달랐다. '고등보통교육'을 받는 예과생들은 '생도(生徒)', 학부에서 전공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학부생들은 '학생(學生)'으로 불렀다. 다만 경성제국대학은 다른 제국대학들과는 달리 예과 교육과 학부 교육이 연속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두 시기를 굳이 구분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았다. 하지만 학부 학생들 중 일부는 예과를 거치지 않고 학부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가령 본토의 고등학교 혹은 거기에 준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학부생으로 입학한 경우가 그것인데, 경성제국대학은 학부 정원과 예과 정원이 동일하고, 예과 수료자를 우선적으로 입학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구제 고등학교 출신자들 중에서는 의학부에 입학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다.[27] 한편 정규 학생은 아니지만 학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류도 있었는데, 학과의 일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선과생',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수강할 수 있었던 '청강생', 그리고 학부의 허가를 받고 특수 분야의 연구를 수행했던 '전공생'이 있었다. 선과생과 청강생은 엄격한 시험을 거쳐서 선발되었는데, 대학 예과 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했지만 학부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지적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교수회가 판단을 해야 수강이 가능했다. 청강생 혹은 선과생으로 있으면서 검정고시 등을 통해 대학 예과 수료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게 되면 정식으로 학부 학생으로 인정을 받게 되며 학사 학위도 취득할 수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당시의 교육체제에서는 정식 학생이 되기가 쉽지 않았는데, 1920년대 들어 일본 사상계에 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일부 제국대학에서 여학생의 본과 입학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성제국대학의 초대 총장 핫토리는 일본 본토에서 남녀공학 대학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을 들어 여학생이 학부 수업을 듣는 것을 반대했다(『조선일보』, 1925. 6. 1). 하지만 1930년이 되면서 경성여자고등사범학교 졸업생 및 여자중학교 졸업생에게 본과와 선과 입학 자격을

27 1938년 11월에 조사된 경성제국대학 〈학생생활보고〉에 따르면 당시 대학 예과 출신이 아닌 사람은 법문학부 10명, 의학부 32명이었는데, 이들 중 고등학교 출신자는 모두 33명으로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의학부로 진학한 사람들이다.



출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 편(2004: 34).

[그림 2-3-11] 정규빈(鄭圭斌) 동문의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제13회 졸업증서(1941. 3)(왼쪽), 이영섭(李英燮) 동문의 경성제국대학 예과 제14회 수료증서(1940. 3)(오른쪽)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조치가 내려졌다(『동아일보』, 1930. 11. 21, 26). 이후 도쿄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여학생의 지원이 이어졌지만(『동아일보』, 1930. 12. 26), 학교 당국이 예과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과생으로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이충우·최종고, 2013: 316). 경성제국대학 선과생으로는 이광수(문학), 현준혁, 김용하(철학) 등이 있으며(이충우·최종고, 2013: 115), 이숭녕은 중학 재학생으로 선과에 입학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조선일보』, 1935. 3. 5).

한편 193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한국인 학생들 중에서 문학사를 취득한 후 법과에 재입학해서 법학사를 취득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 이것은 학부 규정에서 대학 졸업자의 재입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더욱이 1934년 대학 예과가 3년제로 바뀌면서 입학 때부터 학부와 학과를 정하던 방식도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인 학생들의 법과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그리고 결원이 많았던 문과계 학과는 선과생들로 채워지는 사태가 생기기도 했다(정선이, 2002: 138).

◆ 학생들의 일상: 낭만주의, 방카라, 그리고 과외 활동

경성제국대학 예과생은 엄청난 경쟁을 뚫고 입학을 했지만 수료 후에는 자동으로 학부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의 압박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학생 생활을 보냈다. 출신자들이 예과 생활을 낭만적인 시절로 회상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자유로움 때문이었다(이충우·최종고, 2013: 315). 일본인보다 일본어를 더 유창하게 하고, 일본인과 같은 시험에서 경쟁해 대학 예과에 입학한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당시부터 자타가 인정하는 바였다. 따라서 이들의 학창 생활은 "공부도 잘하고, 노는 것도 멋있게"라는 당시 예과생들의 모토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갈 예비 엘리트로서 '도량'과 '대범함'을 드러내는 데에 있었다. 대학 예과에 상당하는 본토의 구제 고등학교에서 이른바 '방카라'[28] 문화가 한 세대를 풍미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구제 고등학교의 청년 엘리트들은 입학시험을 통해 근대 지식을 몸에 익히는 데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했던 만큼, 앞으로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예비 지도자로서 "대범함, 사내다움, 근검질박(勤儉質朴), 씩씩함"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이런 욕망의 유치한 발현이 '방카라'라는 문화였던 것이다. 이들은 일부러 찢어지고 해진 제복(制服) 차림에 뜯겨진 모자를 쓰고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대낮에 음주와 고성방가, 전찻길에 드러눕기 등 각종 기행을 일삼았으며, 제지하러 온 경찰관을 모욕하고 조롱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예비 엘리트들의 처사에 대해 사회는 대체로 관대했고,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의 선망을 받은 문화로 자리 잡기도 했다.

방카라의 유행은 대학 예과도 예외가 아니어서 '료(寮)'라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일본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로에서 무리지어 음주가무와 고성방가를 하는가 하면, 훈계하는 경찰에게 대들고 파출소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런 예과생들의 추태에 대해 『경성일보』가 신랄하게 비판하자, 이들은 심지어 신문사를 습격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정선이, 2002: 130~132). 대학 예과를 다니는 한국인 학생들은 대체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일본인 학생들과 달리 하숙과 자취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방카라에 휩쓸리기보다는 방관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이충우 · 최종고, 2013: 76~80). 하지만 이들도 방카라 문화 자체는 예비 엘리트의 특권으로 생각해서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한국인 예과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것은 방학 중에 두세 명이 짝을 이루어 하는 '무전여행'이었다. 이 여행의 추억은 예과시절 회고에서 곧잘 나타나는데 이희승은 예과시절 관동팔경을 걸어서 주파했다고 회고했고, 김계숙과 이득영은 삼남지방을 여행하

28 '방카라(蛮カラ)'는 서양식의 세련된 생활양식인 '하이칼라'의 '안티테제'(蛮)로써 구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 의해 창출된 특유의 엘리트적인 생활양식이었다. 유진오는 "방카라식 행동은 옷이나 모자를 일부러 찢어 입는 풍속인 '폐의파모(敝衣破帽)', 기숙사[寮] 특유의 난폭한 통과의례인 '스톰', 백주대로에서 행해지는 각종 치기 어린 행동"으로 회고했다(정준영, 2009: 16).

기도 했다(이충우·최종고, 2013: 92~97).

이런 예과 생활의 자유분방함은 전공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학부과정에서는 다소 누그러들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예과시절의 교우관계가 학부시절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활 환경의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민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엘리트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 사회의 현실을 엄밀한 학문적 분석틀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던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창설 당시의 약속과는 달리 아카데미즘으로의 길은 한국인 학생들에게는 굳게 닫혀 있었고, 졸업 이후 겪게 될 민족 차별의 현실도 명확했기에, 이들이 겪게 될 좌절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인 학생들은 일본인 교수 중심의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도 한국인 학생들과 활발한 과외 활동을 전개했다. 경성제국대학은 교직원과 학생, 생도의 친목 조직으로 학우회를 두었는데, 검도부, 유도부, 궁도부, 정구부, 탁구부, 야구부, 축구부, 럭비부, 농구부, 단정부(端艇部), 수영부, 빙활부(氷滑部), 육상경기부, 승마부, 음악부, 강연부, 공제부, 산악부가 산하단체였으며, 『학우회보』를 간행했다(정근식 외, 2011: 499). 1933년에는 과외활동부를 총괄하는 학우회 이사를 전부 한국인이 차지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이듬해 이사제가 폐지되는 헤프닝도 있었다(이충우·최종고, 2013: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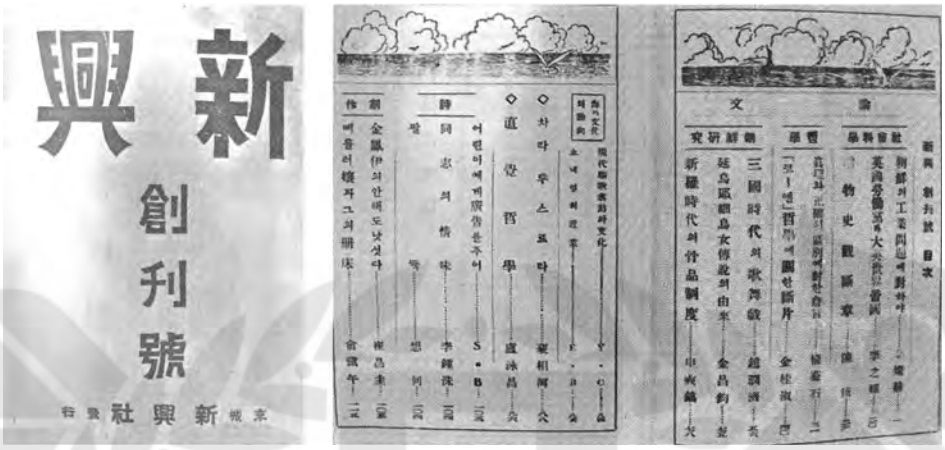
괴외활동부 중에서도 한국인 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활동 중 하나가 축구였다. '학우회(學友會)' 산하의 축구부는 회지 『문우』를 간행한 문우회(文友會)와 더불어 한국인 학생들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단체였다. 문우회는 학우회와는 별도로 한국인 학생들이 결성한 문학단체였는데, "조선 문예의 연구와 장려"를 표방했지만, 학교 당국과 경찰은 이를 한국인 학생회로 의심하기도 했다. 이들이 만든 잡지 『문우』는 시, 소설 등 문학작품을 수록했는데, 100부 한정으로 1년에 한 번 발간했다(이충우·최종고, 2013: 68~69). 1926년 6·10 만세운동 이후까지 활동하면서 5호까지 발행했지만, 외부의 견제로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이충우·최종고, 2013: 145~150). 문우회 해산 이후 한국 학생들의 구심점은 축구부로 옮겨갔다. 축구부는 규슈제국대학과 경쟁 관계로 정기전을 열었으며, 만주 순회 원정을 다니기도 했다(이충우·최종고, 2013: 163~169).

(3) 학술과 사상 운동

탄생 과정에서 논란은 많았지만 경성제국대학은 일본이 패망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식민지 '최고 학부'로 군림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식민주의로 수렴되겠지만 근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동원해 조선에 대한 학술적 지식을 산출해 내는 중심 기관이기도 했다. "일본인보다도 더 일본어를 잘한다"는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했기만, 그래도 경성제국대학의 한국인 학생은 자타가 인정하는 '수재'들이었고, '민족'의 기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예비 엘리트들이기도 했다. 이들은 제국대학을 통해 배운 분과 학문의 전문성과 연구 방법론의 엄밀함에 입각해서 그들의 '선배'인 한국인 지식인들의 비과학성, 관념성을 비판하는 한편, 식민지의 한국인 지식인이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그들의 '스승'인 일본인 관학자(官學者)들의 조선에 대한 무지와 식민주의적 편견을 폭로했다. 경성제국대학 출신 지식인들은, 1920년대 후반 이후 급진적인 사조가 유행했던 일본, 유럽에서 학술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던 유학파 지식인들과 함께, 엄밀한 학문 체계에 입각한 과학적 조선학의 가능성과 현실 조선 사회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려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지향은 이미 예과와 학부 시절에 모색했던 여러 가지 학술과 사상의 시도에서도 확실히 드러난다. 법문학부 조선어문학 전공의 조윤제, 이희승, 김재철, 이재욱, 일본문학 전공의 서두수, 중국문학 전공의 김태준 등이 중심이 되어 1931년 결성한 '조선어문학회', 법문학부 철학 전공의 신남철, 권세원 등이 일본 및 구미 유학파 지식인들인 윤태동, 이종우, 안호상, 최현배, 김두헌, 김법린과 함께 1932년 결성한 '철학연구회'(정종현, 2010: 396) 등은 여전히 척박했던 식민지의 지성계에 엄밀한 학문 분과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조선의 문화와 현실을 고찰하려는 시도였다.

한편, 예과 첫 수석 입학자였던 법학과의 유진오는 이미 1926년 학부에 진학할 무렵 1920년대 일본에서 시대사조로 유행했던 좌익사상에 대한 관심으로 동기생인 이종수 등과 '경제연구회'라는 강독회를 조직했다. 여기에 이강국, 박문규, 최용달, 신남철 등 2회, 3회 후배들이 참여하면서 점차 하나의 단체로 정착해 갔다. 그런데 1930년, 학교 당국이 이정우가 외부 단체와 연계했다는 이유로 '경제연구회'를 해산해 버리자(이충우·최종고, 2013: 217), 연구회의 핵심 멤버들이 '비합법'적으로 새로 조직했던 것이 '조선사정연구소'다. 일본 관헌의 조사에 따르



출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 편(2004: 35).

[그림 2-3-12]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생들이 발행한 『신흥(新興)』 창간호 표지와 제9호(종간호) 목차

면, 조직은 "총무부(공동책임), 조사연구부: 제1부 정치부(이강국·김광진), 법률부(유진오), 경제부(박문규), 제2부 노동운동부·농민운동부(최용달), 제3부 교육부(신남철), 문화부(이종수) 제4부 해외부"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소는 식민지 조선의 모순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들의 '조선경제연구소'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지하' 단체였던 조선사정연구소는 경성제국대학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방면에서 '새로운 과학적 방법에 입각해서 조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경성제국대학 졸업자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낙산구락부'는 언더인 조선사정연구소의 문제의식에 공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천적 학술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물이 1929년 7월 첫 발간된 종합학술지 『신흥(新興)』이었다(이충우·최종고, 2013: 195~198). 1년에 두 번 나온 이 학술 잡지는 1937년 1월까지 9호를 간행했다. 학술지를 간행하면서 편집인들은 신흥의 목표는 "조선 사회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행동의 지표를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진정한 학술논문으로 당면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조선에 대한 "과학 비판의 주관적 원천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양심'이라고 자부했다. 실제로 『신흥』에 수록된 54명의 필자가 쓴 96편의 글은 그들이 관학아카데미즘에서 몸에 익힌 학지(學知)를 조선 사회에 적용해,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 학술을 구축하려는 시도들이었다(정종현,

2010).

이처럼 1930년대 초반 경성제국대학 출신들이 중심이 되었던 '경제연구회', '조선사정연구소', '낙산구락부', 『신흥』, '조선어문학회', '철학연구회' 등은 인적 연결망에 의해 상호 간에도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성제국대학 출신 한국인의 인적 네트워크는 예과 혹은 학부 내부에 지하 독서회, 연구 모임 등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동력이 되었으며, 1931년 적발되어 대대적인 검거에 들어갔던 경성제국대학 반제동맹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공산당 재건그룹이 당 청년회의 하부 조직으로 학생반제동맹을 조직하고자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중등 이상의 각 학교에서 학생반제동맹을 조직하여 기존의 학우회를 대체한 후,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각 학교가 연결되는 '반제동맹'을 통해서 학생 대중을 당원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공산주의의 확산을 위한 대중운동을 실현하겠다는 발상이었다(박한용, 2013: 142~143). 하지만 조직 구축 과정에서 발각되어 무산되고 말았는데, 경성제국대학 학생을 비롯한 가담자 27명이 검거되고 그중 17명이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초기 단계에 검거되었고 학생임을 감안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지만, 향후에 미친 파급, 특히 민족운동에 끼친 영향은 만만치 않았다. 반제동맹 조직과 관련된 권영태, 정태식, 최상규, 최용달, 이강국 등은 경성제국대학 네트워크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물들로 1930년대 적색노동조합운동 등 국내 민족운동의 흐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박한용, 2013: 278, 298).

(4) 졸업 후 취직 실태

식민지 조선의 최고 학부, 경성제국대학의 학생들은 학창시절 '제대생(帝大生)'으로서 많은 특권을 향유했지만, 학교를 벗어난 이들이 직면한 것은 민족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냉혹한 식민지의 현실이었다. 당시 고등교육을 받은 이는 일제 강점기 내내 전체 학생 인구의 0.2%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였고, 그들 중에서도 희귀한 것이 경성제국대학 졸업생이었지만, 당시 식민지 사회는 이들마저도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불황에 빠져 있었다. 고등유민(高等遊民), 문화예비군, 지능노동후보군 등의 별칭으로 불렸던 고등실업 인력은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까지 심각한 취업난을 경험해야 했다(『동아일보』, 1924. 3. 10; 『조선일보』, 1928. 9. 30).

[표 2-3-27]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생의 취업 현황(1929~1941) 단위: 명

연도	졸업생 수		취업자 수												기타	
			관공서		학교		은행/회사		금융조합		신문/잡지		기타 취업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1929	25	43	5	13	6	12	3	10	-	1	-	1	10	2	-	-
1930	25	44	9	9	5	14	2	13	-	2	-		6	2	-	-
1931	31	39	14	10	10	12	-	5	-	2	-	2	4	1	-	3
1932	20	45	5	13	4	17	2	6	-	-	1	1	2	6	5	-
1933	27	38	9	14	6	14	4	7	-	-	2	-	-	-	6	1
1934	30	36	13	14	5	9	2	7	3	1	1	-	-	-	4	1
1935	25	32	12	7	6	13	1	8	-	-	-	-	-	-	5	1
1936	38	41	9	10	15	16	4	8	1	-	1	-	1	1	5	5
1937	28	48	13	9	3	13	3	16	-	-	-	-	1	3	7	2
1938	29	38	9	7	3	13	6	14	-	-	-	-	2	-	8	2
1939	12	13	1	2	3	3	1	4	-	-	-	-	-	1	3	1
1940	25	30	6	5	3	7	7	15	1	-	-	-	1	1	7	1
1941	20	41	3	7	2	7	9	23	-	-	-	-	-	1	6	2
계	335	488	108	120	71	150	44	136	5	6	5	4	27	18	56	19

출처: 정선이(2002: 152), 〈표 7〉.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전쟁특수' 덕분에 취업난은 점차 개선될 여지가 보였지만, 일본 본토의 취업난 해결을 우선시하는 일본인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취업 시장의 민족 차별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취직 이후에도 외지가봉(外地加俸)에 따른 경제적 차별까지 더해서 한국인 고등 인력들은 굴욕을 감수해야 했다. 당시 경성제국대학 졸업생을 비롯하여 대학까지 졸업한 한국인 지식인들이 상당수 사회주의에 경도되는 가운데, 은둔·퇴폐 생활을 하거나 관료로서 출세를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도 이러한 상황 때문이었다(정선이, 2002: 141~151). 그렇다면 경성제국대학 졸업생들은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 1941년까지 법문학부 졸업생의 취업 현황은 [표 2-3-27]과 같다.

먼저 법문학부를 살펴보면, 법문학부 졸업생 중에서 한국인은 66.5%, 일본인은 83.1%가 관공서나 은행/회사, 그리고 학교로 진출했다. 여기서 한국인은 '관공서 〉 학교 〉 은행/회사'의 순서인 반면, 일본인은 '학교 〉 은행/회사 〉 관공서'

[표 2-3-28]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졸업생 취업 현황(1930~1941) 단위: 명

연도	졸업생 수		관공서		학교		공립 병원		사립 병원		군의		개업		회사		기타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1930	12	43	-	1	3	4	1	10	1	1	-	5	7	12	-	6	-	-
1931	14	57	1	4	1	15	3	12	2	4	-	4	6	11	-	5	-	-
1932	21	44	-	7	9	7	2	5	1	5	1	5	6	8	2	3	-	4
1933	18	43	1	3	2	14	1	6	1	5	2	5	7	1	2	6	1	1
1934	29	42	-	3	12	13	4	4	3	3	1	8	5	4	2	4	1	2
1935	15	50	-	6	5	18	1	5	-	1	-	10	8	3	-	4	-	1
1936	12	54	1	3	8	14	-	11	-	1	1	6	1	2	1	13	-	3
1937	22	54	2	2	10	16	1	7	2	2	-	13	5	-	1	11	-	2
1938	12	58	3	3	2	23	1	2	1	-	-	24	3	1	1	3	-	3
1939	16	50	1	-	12	11	1	6	1	2	-	23	1	-	-	6	-	-
1940	7	22	-	-	3	8	-	1	1	3	-	10	-	-	-	2	-	-
1941	20	50	1	-	18	30	-	2	-	2	-	11	-	-	1	3	-	1
계	198	567	10	32	85	173	15	71	13	29	5	124	49	42	10	66	2	17

출처: 정선이(2002: 154), 〈표 8〉.

의 순서였다. 취업에 있어서는 차라리 조선총독부 등 관공서가 대체로 공평한 편이며 정치적 고려로 한국인이 취직하기에 유리하기도 했던 상황이 반영된 탓이다.

의학부를 졸업한 의사들은 대부분 개인병원을 개업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남아 연구와 의료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사들 중에는 군의(軍醫)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일본인이었다(정선이, 2002: 151~154). 법문학부 문과 계열의 경우 조선총독부는 애초에 중등교원 수급을 염두에 두었는 데 실제로도 전체 122명(한국인 56명) 중 11명(한국인 9명)만이 관공서에 취직했으며, 66명(한국인 22명)은 중등 이상의 학교 교원이 되었다. 일부지만 전공을 살려 조선사편수회와 이왕직사료편찬소에 취직한 사람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학과를 예를 들어보면, 1926~1943년 사이 졸업자는 한국인 34명, 일본인 61명, 총 95명이었다. 한국인 졸업자 중에서 국사, 즉 일본사 전공자는 없었으며, 조선사와 중국사 전공이 반분했다. 전체적으로는 국사 전공이 25%, 조선사 전공이 34%, 그리고 중국사 전공이 41%였다. 애초 사학과로 진로를 정했던 한국인 학생들은 장래 학

자를 꿈꾸었던 이들이 적지 않았을 터이고 실제로 이들은 '경성제국대학 사학회'에서 주관하는 일련의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대체로는 중등교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장신, 2014: 93~99).

학부를 가리지 않고 한국인 학생은 졸업 이후에도 학교에 남아서 장래 모교 교수를 꿈꾸는 이가 없지는 않았지만, 예과 1회 수석 입학, 수석 졸업에 빛나는 유진오조차도 교수는커녕 조교수도 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좌절하여 보성전문학교로 떠나는 것(이충우·최종고, 2013: 201)을 목격한 후배들 입장에서는 학자의 길이 식민지 상황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법문학부에서는 학부 강사가 최대치였고, 의학부에서는 짧은 기간 조교수로 부임했던 사람이 두어 명 있었을 뿐이었다. 법문학부에는 최재서, 의학부에는 이인규, 김성진 등 학문적 명성이 식민지를 넘어서는 사람도 있었지만, 누구도 모교에 남아 있지를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선배의 좌절을 보고 성장한 후배가 연구자 대신에 관료의 길을 선택한 것을, 단지 일신의 안녕을 위한 출세주의로 단정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학자의 길이 좌절된 제국대학에서, 문과 계열에게 남겨진 진로의 선택지란 교원이 되든가 고등문관시험을 통과해서 관료가 되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다.

1931년 장후영이 고등문관시험을 통과한 것을 시작으로(이충우·최종고, 2013: 173~175), 경성제국대학 출신의 한국인이 고등문관시험을 통과하여 관료로 진출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1934년 5명, 1936~1939년 사이에는 39명의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를 배출했다. 고등문관시험의 전체 평균 합격률은 9% 내외였는데 경성제국대학 출신자의 합격률은 1939년 15.6%, 1940년 17.5%로 합격률로는 일본 전체에서도 3, 4위권 정도였다(장신, 2013: 191~193).[29] 1942년까지 경성제국대학 출신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는 졸업자 239명 중 53명으로 22%를 차지했다.

29 경성제국대학보다 상위는 도쿄상과대학과 도쿄제국대학이다.

제4장

중일전쟁 발발 후 일제의 고등교육시책 전환과 고등교육기관의 변화

제1절 일제의 전시 동원 교육 체제 구축과 고등교육시책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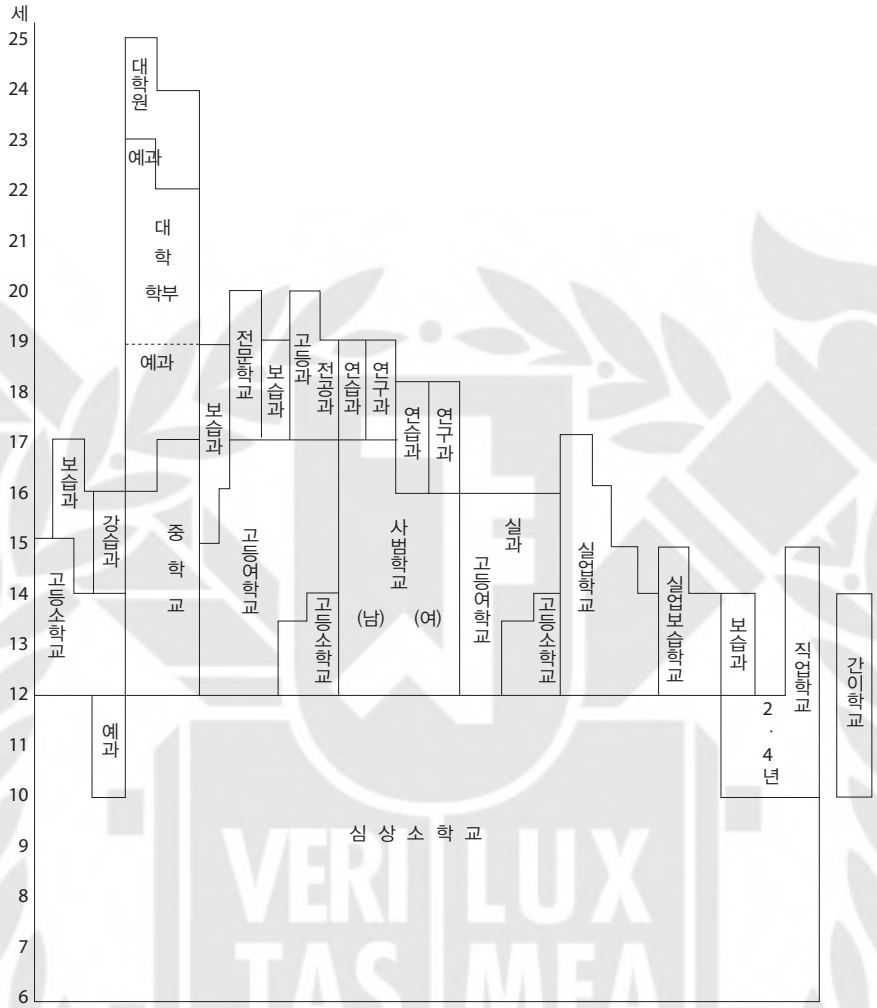
1) 전시 동원 교육 체제 수립과 '민족말살 교육' 시도

(1) 제3차 교육령 시기(1938. 8~1943. 4)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일으킨 직후 1938년 4월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했다(안자코 유카, 2006: 67~77). 타이완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5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조선의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인력 양성이 전쟁에 필요한 인적 동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가혹한 동원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인을 일제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황국신민으로 양성해야 했다. 그 핵심은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대립을 은폐하는 민족말살 정책이었다.

우선 일제는 1937년 10월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辭)〉라는 것을 아동용과 성인용을 따로 만들어 일본어로 외우도록 강요했다. 이어서 '궁성요배(宮城遙拜)'라 하여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일본 본국에 있는 황궁을 향해 절을 하도록 강요했다.

다음으로 일제는 이러한 황국신민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



출처: 정재철(1989: 93).

[그림 2-4-1]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학제도(1938. 8~1943. 4)

조선교육령을 제정, 공포했다. 그 취지는 이른바 '국체명징(國體明徵)', '내선일체(內鮮一體)', '인고단련(忍苦鍛鍊)'으로 집약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종래의 일본인 교육과 한국인 교육 사이의 차별 대우를 철폐할 것을 공언하고, 보통교육의 보급을 강화하여 의무교육까지 끌고 갈 것을 약속했다. 참고로 [그림 2-4-1]은 제3차 교육령 시기의 학제를 보여준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공언은 한국인을 전쟁터와 공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학무과장이었던 야기 노부오(八木信雄)는 다음과 같이

황국신민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일본의 신동아 건설의 이념이 여기에 있는 이상 … 조선은 대륙 전진의 병참기지로서 군사경제상의 임무를 완전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상·문화 방면에서도 대륙 진출의 기지적(基地的)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근본적으로 그 실(實)을 올리기 위해서는 통일된 교육 방침에 의한 황국신민교육에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八木信雄, 1939: 54~57).

일제로서는 그들의 대륙 침략을 위해서 한국인의 민족성을 없애고 황국신민으로 양성하는 동시에 전쟁에 한국인을 동원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제는 한 민족을 묶어 주는 주요 요소인 한국어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일본어를 '국어'라 하며 이것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이어서 한국인의 문자인 한글을 없애기 위해 1937년 8월 30일 조선총독부령 131호로 공·사립 고등보통학교의 조선어 및 한문독본 중 순한문 과정을 9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한국인 학생들의 성명을 창씨개명하도록 강요했다. 경성법학전문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의 학적부를 보면 한국인 학생의 성명이 창씨개명된 시점이 적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졸업 이후 창씨개명된 경우가 적지 않거니와 졸업할 즈음에 창씨개명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일부 학생은 입학하자마자 1년도 안 되어 창씨개명하기도 했다. 사립 학교인 보성전문학교도 1940년 9월 재적생 543명 가운데 창씨개명을 한 학생이 70%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의 비율은 그 이상이라고 추정된다(고려대학교 100년사편찬위원회 엮음, 2008: 559~560).

일제의 이러한 황국신민화 정책은 초·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의 시책에도 영향을 미쳤다(정재철, 1989). 즉 일제는 1940년 4월 1일 기존의 '대학규정'(1926. 4. 1)을 개정했다(『조선총독부관보』, 1940. 4. 1, 「조선총독부령 제79호 대학규정」). 두 규정을 비교하면 후자에 없었던 조항을 1조로 삽입했다. 제1조는 다음과 같다.

> 대학은 국가에 수요(須要)한 학술의 이론 및 응용을 교수하고 아울러 그 온오(蘊奧)를 공구(功究)하며, 특히 황국의 도에 기초하여 국가 사상의 함양 및 인격의 도야에 유의함으로써 국가의 주석(柱石)다움이 될 수 있는 충량유위(忠良有爲)한 황국신민을 연성하는 데 힘쓴다.

고등교육 역시 이른바 '충량유위(忠良有爲)한 황국신민의 연성'에 목적을 두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물론 '경성제국대학예과규정'도 이처럼 개정했다(『조선총독부관보』, 1940. 4. 1, 「조선총독부령 제80호 경성제국대학예과규정」). 이에 조선총독부 학무 당국자는 대학의 교육 방침 변경을 다음과 같이 정당화했다.

> 학술의 이론 및 응용의 교육에 대해서도 '국가에 수요한'이라는 수식어를 부가하여 엄밀하게 그것을 한정하고, 소위 자유로운 학문의 교수는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자유의 한정은 대학의 사명이 여하히 국가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를 명시한 것이었다(八木信雄, 1939: 51).

이와 같이 일제는 황국신민의 연성이라는 명분 아래 대학의 자유로운 학문 연구와 교수까지도 억압했다. 나아가 이러한 취지는 전문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 전문학교에서도 역시 전문적 지식의 교수와 함께 특히 국체와 일본 정신에 관한 교양, 체인(體認) 등에 중점을 두고, 진정한 전문적 지식의 교수와 함께 특히 국체와 일본 정신에 관한 기능을 통하여 국가의 지도자다운 인물의 양성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의 지식편중적 교수의 폐해를 배제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인격의 존중과 덕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더욱 더 일본인으로서의 국민적 성격을 도야하여 세계문화를 지도할 수 있는 일본 문화의 건설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조선에서 대학 및 전문학교 학도는 후술한 대륙전진문화화 기지로서의 조선의 사명 달성에 특히 공헌해야 한다고 확신한다(八木信雄, 1939: 53).

각 관립전문학교규정에도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삽입했다. 대표적으로 경성법학전문학교의 경우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경성법학전문학교는 법률에 관한 고등의 학술을 교수하며 특히 황국의 도에 기초한 국체 관념의 함양과 인격의 도야에 유의함으로써 국가 수요의 재(材)에 충족할 충량유위의 황국신민을 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선총독부관보』, 1940. 4. 1, 「조선총독부령 제82호 경성법학전문학교규정」).

이제 고등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고등의 학술을 전수하고 취직을 위한 학업을 마치는 데 앞서 황국신민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일제는 관·사립을 불문하고 전문학교 교수들에 대한 통제도 이른바 교학쇄신을 내세워 강화했다. 이 가운데 이전의 조치와 달리 학설, 강의 등이 이른바 국책선(國策線)에 맞지 않는다는 조항을 설정하여 관련 교수를 학원에서 축출하고자 했다(『동아일보』, 1940. 3. 30). 이에 일상적으로 교수, 강사 등의 언동을 감시하여 경고하는 한편 일제가 설정한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는 교수와 강사를 퇴직 처분했다.

한편, 일제는 학생들을 각종 공사에 동원하기 위해 1938년 6월 13일 '학교근로보국대 요항(學校勤勞報國隊 要項)'을 발표했다(강명숙, 2008: 5). 각 항목은 목적, 방법, 사업의 예정, 노동의 기간 및 생활 일반, 지휘기관의 조직 및 임무와 학도근로보국대의 편성, 실시학교 및 학생의 범위, 실시의 주의사항, 경비, 본 운동 실시에 대한 협력, 실시 순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을 근로 동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이 사실상 망라되어 있다.

우선 학교근로보국대 활동은 "학생 생도로 하여금 엄격한 규율 통제하에 공익에 관한 집단노동을 하게 하여 근육노동에 대한 존중의 생각의 함양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고지구(忍苦持久)의 체력을 연마하여 국가 봉사의 정신을 실천에 체득케 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 있게 하며 또한 강건한 황국신민의 성육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목적을 두었다(『동아일보』, 1938. 6. 14). 이러한 활동은 이른바 '국가 경제 기여'와 '황국신민 육성'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력 동원이 학교의 활동으로 전개되는 이상 교육적 수식이 필요했던 당시 학무국장은 "집단적 노동운동은 국민의 자각운동, 교화 내지 교육 활동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라고 하여 교육 활동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학생근로봉사가 "엄격한 규율 통제하의 단체생활"로 이루어지도록 하되, 임도(林道) 혹은 도로 공사, 개간 공사와 같은 사방 공사, 황무지나 연못 등의 개간, 매립 공사, 수로 공사 등으로 근육노동의 신성함을 체험시킬 필요에 비추어 기계류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했다(조선총독부, 1938: 89~94). 각 지방에서 일꾼을 구하기 어렵고 또 기계적 작업이 어려운 것 중에서 단순, 단체 노동으로 가능한 일들을 학생들이 한 것이다. 하기 방학 등을 주로 활용해 학생이 일정 기간 농산어촌에서 규율적인 단체생활을 하도록 했다. 이는 교육적 목적보다는 근로봉사라는 미명 아래 노동력 보

충의 일환으로 학생을 동원한 것임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리하여 중등학교를 위시하여 각급 학교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다. 남학생은 토목 사업에 종사케 하고, 여학생은 실습림의 손질, 신사의 청소, 관·공립 병원의 간이 보조 등 공익에 관한 작업에 종사케 했다(『동아일보』, 1938. 6. 18).

전문학교, 사범학교 학생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문학교의 경우, 이러한 근로보국대 결성을 계기로 전문학교 학생들의 '풍기 문란'을 문제 삼아 학원가를 긴장시키며 적극 관여하고자 했다(『동아일보』, 1938. 6. 15; 6. 23; 7. 19). 따라서 경성제국대학 및 전국 각 관·공·사립 학교 학생 7,000여 명이 방학 기간에 근로보국 작업에 적극 동원되었다. 1938년에 동원된 전신학교 근로보국 작업 현황은 [표 2-4-1]과 같다.

[표 2-4-1]에 따르면 학교 신축 건물의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거 동원하거나 인근 군사시설 설비를 정비하는 데 이들 전신학교 학생을 동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때로는 임시로 학생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경성약학전문학교의 경우, 1938년 10월 비상시 공동우물의 위생 검사를 위해 근로보국대를 편성한 뒤 수질을 검사했다(『동아일보』, 1938. 10. 17). 그리고 근로보국대 결성을 독려하기 위해 근로 참가를 입학과 취직에 참작하기 시작했다(『동아일보』, 1939. 1. 12).

아울러 이러한 동원의 목적이 규율 강화를 통한 황국신민의 양성에 있기 때문에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의식을 거행했다. 경성사범학교의 행사 의식과 작업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성사범학교 근로보국대 역시 반을 나누어 구성하고 반에는 조를, 조에는 분대를 두어 군대식 체계로 조직했고 구성원 각자에게 역할과 사무를 분담시켜 단위별 통제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근로보국대 활동은 '○○년도 근로보국대 결성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근로 작업이 모두 끝난 뒤에 해대식을 반드시 거행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우선 학생들은 작업지에 집결하여 매일 복장 검사, 출석 점검, 황거요배(皇居遙拜)와 신궁요배, 황국신민서사 제창, 공구 점검, 주의 사항 전달, 대가(隊歌) 합창으로 이어지는 조례를 거행했다. 이어서 학생들은 반기를 앞세우고, 작업복과 작업모나 제복과 실습모를 착용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작업했다. 동원 작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감상록을 작성하여 조주임(보통은 담임)을 거쳐 대장(보통은 학교장 혹은 교무부장)에게 제출했으며, 학

[표 2-4-1] 1938년 근로보국 노동에 동원된 전신학교 학생들의 작업 현황

학교	기간	인원(명)	작업 내용
경성제국대학 본과	7. 1~7. 7	302	본교 운동장 정지 작업 부전고원(赴戰高原) 도로공사 개성약초원 손질 작업
경성제국대학 예과	7. 11~7. 17	60	중앙철도 공사 작업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
	7. 7~7. 9	510	본교 운동장 신설 공사
	7. 6~7. 10		
경성법학전문학교	8. 25~8. 31	50	본교 교지 정비
경성의학전문학교	7. 11~7. 17	전원	광장리 본교 운동장 정비 부속병원에서 임상실습
경성고등공업학교	7. 16~7. 25	80	본교 내 하수거 축조 공사
경성고등상업학교	7. 13~7. 19	60	청량리정 임업시험장 부근 본교 신교사 부지 정비 공사
수원고등농림학교	7. 15~7. 19	45	본교 토병(土塀)의 축조 공사
	8. 27~8. 31	52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7. 16~7. 21	440	육군 창고
경성약학전문학교	7. 13~7. 17	약 80	남산주회 도로 개축 공사
경성사범학교	7. 21~7. 30	890	창경원 지굴(池堀) 조선신궁 광장사리(廣場砂利) 교체 본교 교지 정비 및 농업 실습 앵구(櫻丘) 부근 임간도로(林間道路) 공사 용산 및 여의도 연병장 잡목굴채(雜木掘採) 정지
경성여자사범학교	7. 23~7. 29	약 560	용두정 신교사 부지 및 운동장 정지

주: 전신학교는 현재 서울대학교를 구성하는 단과대학의 전신을 가리킴.
출처: 『동아일보』, 1938. 7. 17.

교에서는 이를 토대로 근로 작업 이력 사항을 기재하고 수료 증서를 부여했다(강명숙, 2008: 10). 그리고 학생들은 노역하는 과정에 틈틈이 '근로보국대가'라는 노래를 불러야 했다(『동아일보』, 1938. 7. 21).

한편, 일제는 러일전쟁 승전식 등의 육군기념행사를 개최할 때 여러 학교 학생들을 신궁참배에 동원하고 시가행진에 적극 참가하도록 독려했다(『동아일보』, 1940. 3. 7). 특히 근대 시가전의 개념을 알릴 목적으로 경성역 앞, 화신백화점 앞, 미쓰코시 백화점 앞, 장충단공원 등 4개소에서 전투 연습을 하는데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 학생들이

각 장소에 남군, 북군의 이름으로 참가했다.

일본 문부성은 1941년부터는 학도동원계획을 수립하여 정례화했다. 그것은 춘계, 하계 방학을 단축하여 30일을 확보한 뒤 농번기에 투입하는 것이었다(『매일신보』, 1941. 2. 5). 그리고 덧붙여 30일 근로작업 시간을 정규 수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일요일, 제일(祭日)이 추가되어 총 100일을 확보했다. 당시 일제 당국은 이러한 인력을 식량증산계획에 동원하면 비상시국의 식량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제는 같은 해 11월 '국민근로보국협력령'(칙령 제995호)을 반포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조선총독부관보』, 1941. 12. 1; 강명숙, 2008: 14). 이는 14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와 14세 이상 25세 미만의 여자로 조직된 국민근로보국대(國民勤勞報國隊)의 협력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정무총감이나 학무국장의 통첩 형태로 이루어지던 학생근로 동원은 '근로보국협력령'이라는 법적 기반을 갖고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41년 이후 학생근로보국대가 상설화되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침략전쟁에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할 준비를 했던 것이다.

『매일신보』 등 관제 언론에서는 일본 본국의 이러한 법령화를 다음과 같이 합리화했다.

> 학도의 근로봉사는 한편 신체를 단련하여 건전한 신체를 만드는 동시에 다른 한편 종래 빠지기 쉬운 궤상(机上) 이론을 실천에 옮기어 생명이 있는 지식을 만들게 할 뿐 아니라 사회국가에 바치는 희생적 정신을 함양하는 데 극히 효과가 많은 것이다. 이 정신은 종래에도 수신 또는 윤리에 삽입되어 그 양성에 노력하여 왔으나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수양에 불과하여 국민생활의 육과 혈이 되지 못했었다. 그것은 금후로는 국민생활의 전 분야에 보편화 침투시켜서 국민생활과 개인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혼연히 일치시켜서 국민도덕의 근간으로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자유주의적 개인존중의 사상을 양기(揚棄)시켜서 개인의 인격을 어느 정도 존중하나 이와 동시에 전 국민 혹은 전 사회를 위한 국가 내지 사회적 봉사행위를 우위에 두자는 것이다. 그럼으로 개인적 요청을 훨씬 초월한 국가적 요청으로 전면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특히 국제정세가 현재와 같이 긴박한 때에는 국가의 총력을 통합하는 데 있어 이 정신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 금반의 학도동원계획은

> 추상적 봉사정신에 구체적 내용을 넣은 생명 있는 교육이라 하겠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주입뿐만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구체적 내용을 가진 지식을 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비로소 지적 체계도 완성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금반 문부성의 태도는 종래의 공허한 지식편중주의 개인주의적 교육 방침을 극복하고 '국가 최고 도덕'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하여 일본적 정신에 구체적 내용을 부여하는 교육 내용 재편성이라고는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요망되는 것은 농업 방면뿐만 아니라 공업 방면 또는 기타에 적당히 배분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매일신보』, 1941. 2. 5).

그런데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 본국의 이러한 법령화 이전에 근로보국의 제도화가 1938년 말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상시적인 노동력 동원이 절박해지자 학무국장은 1941년 6월 '학생 생도의 집단근로 작업 실시에 관한 건'을 하달하여 농번기를 포함해 30일 이내로 근로동원이 가능하도록 근로동원 기간을 연장했다(강명숙, 2008: 14). 물론 학교에서는 근로 작업에 출결을 확실히 하고 근태(勤怠) 성적을 매겨 상급학교의 입학과 졸업 후 취직에도 참고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매일신보』, 1939. 6. 16). 또한 학무국은 동원으로 인한 수업 일수 부족을 해결하고 나아가 부족한 인력을 시급히 보충하기 위해 대학, 전문학교, 중등학교 등의 재학 연한을 3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조치를 취했다. 이제 학생 대상의 근로 작업은 일시적인 단순한 노동력 동원 이상의 차원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강명숙, 2008: 14).

이어서 일제는 1941년 6월 12일 경성제국대학 예과부장과 공·사립 전문학교 교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대학 진급을 중지하고 직접 사회 제일선에 나가 산업전사로서 각 방면으로 배운 바 특수기술을 발휘하여 생산력 확충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술자 부족에 대한 보충책에 진력하라고 지시했다(『매일신보』, 1941. 6. 13). 이러한 조치는 총동원 체제를 학원에서부터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나아가 국민개로운동(國民皆勞運動)에 적극 참가하여 기존 30일간의 근로 작업 외에도 동원령이 내리는 대로 언제든지 근로 작업에 임하도록 했다(『매일신보』, 1941. 9. 6). 그리고 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은 그 명령 계통을 국민총력조선연맹에 두기로 했다.

나아가 일제는 전시동원을 위해 졸업생의 수업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즉 조

선총독부는 본국과 마찬가지로 1941년 12월 23일 각 대학 전문학교에 통첩을 보내 1942년 졸업생의 수업기간 중 6개월을 단축하여 1942년 9월에 졸업하도록 실시요강을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一. 학과과정과 수업 시수

⑴ 1942년 1월 이후 졸업까지에 매일 1시간을 한도로 하여 수업시간 수를 증가하되 토요일은 3시간을 한도로 증가할 것

⑵ 학과 과목은 시국에 즉응한 학과과정을 편성하여 적당히 실시할 것

⑶ 최고 학년의 다음 학년의 학과과정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끝내고 명년 4월 정식으로 최고 학년에 진급하기 전부터 최고 학년의 과정을 당겨 교수할 것

⑷ 최고 학년의 수업은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하되 3월 16일부터 말일까지에는 보조강의를 할 것

二. 휴업일

⑴ 겨울방학은 졸업식 익일부터 익년 1월 5일까지의 12일간. 봄방학은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20일간. 여름방학은 1주간 내지 3주간의 범위에서 적의 실시할 것

⑵ 실업전문학교에서는 매월 일요일 중 2일만은 수업할 것

(『매일신보』, 1941. 12. 27)

이러한 단축은 학무국장의 말을 빌리면 여러 가지 취지를 담고 있었다. 첫째, 한국인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대우받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인 학생에게는 병역 의무가 없으므로 한국인 학생은 주로 산업전사로 출동하여 병역 이상의 의기를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1942년 여름 방학 기간 중에서 10일을 단축했다(『매일신보』, 1942. 5. 7). 그러면서도 이 방학 기간에 근로봉사와 체력 조성에 치중할 것을 하달했다. 그리고 전문학교는 입학시험은 종전대로 3월에 치렀지만 졸업은 9월에 시행했다(『매일신보』, 1942. 7. 4).

한편, 일제는 경성제국대학과 관립 전문학교 졸업생들을 만주로 보내 만주의 부족한 고급 기술 인력을 충당하고자 했다. 1941년부터 만주국과 화북 각 방면

의 각 국책회사로 진출시키기로 결정했다(『매일신보』, 1941. 3. 13). 물론 이전부터 만몽개척민이라는 이름 아래 농민들을 만주로 보냈으며 산업전사로서 근로봉사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전문학교와 대학 출신을 보낸다는 점에서 이전과 달랐다. 즉 이전만 하더라도 만주국과 중국 화북 지역 소재 국책회사에서는 조선에서 오는 전문학교·대학 출신을 채용하지 않았던 터라 오래 전부터 이 문제가 조선총독부와 국책회사 관계자 사이에 거듭 현안이 되어 오다가 이 시점에 작정된 것이다. 당시 일제는 '인텔리' 청년들에게 대륙으로 진출하는 길이 열렸다고 선전했다(『매일신보』, 1941. 3. 13). 즉 일제는 1941년에 10명 내외가 될 것이라 전망했고 그곳 성적에 따라 1942년부터는 100여 명 이상을 추천하여 대륙 개척에 활동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앞당겨져 1941년 7월에 이른바 만주건설근로보국대의 학생대가 조직되었으며 각 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 그리고 사범학교 대표자 100명이 여기에 참가했다. 특기반은 광업, 공업, 의학의 기술을 가진 학교에서 선발하여 파견한 48명으로 구성되었다. 광·공업학교 학생의 경우, 만주국 각지 공장과 광산에 들어가 '함마'와 곡괭이를 들고 만주국의 지하자원 개발과 생산력 확충에 봉사하도록 했다(『매일신보』, 1941. 6. 27). 의학부는 청진기와 메스, 붕대를 가지고 각지 개척 부락을 찾아가서 근무하며 한국인 동포들의 보건위생을 돌보아 주며 혹은 만주의 독특한 지방병을 연구해 돌아올 예정이었다. 이러한 특기반의 각 학교 학생 현황과 근무지는 [표 2-4-2]와 같다.

그 밖에 일반반에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와 예과,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혜화전문학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평양사범학교, 대구사범학교 등 문과계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 58명이 포함되었다. 이들 학생은 8월 12일 출발했다.

1928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와 관립 전문학교 5개교를 필두로 실시된 교련 교육은 1930년대 이후 해마다 각급 학교로 확대해 가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1941년 5월 들어 학생군사교련을 대폭 고치고 사범학교에 국한되었던 군사강습을 전문학교에도 실시하고 시간을 배정했다. 그 결과 군사 교수 시간이 증가하고 '독가스' 등 기타 근대적 신병기 또는 기갑 부대 등의 신전투 양식에 대한 교수 내용의 대폭적인 개편을 중시했다(『매일신보』, 1941. 5. 15). 심지어 학교 교련 요강을 개정하여 학생 전원이 반드시 습득케 했다. 이 성적은 독립적으로 채점하게

[표 2-4-2] 1943년 만주건설근로보국대의 학생대 특기반 만주 파견 현황

학교	인원(명)	출동지	학교	인원(명)	출동지
경성고등공업학교	4	신징(新京)	경성광업전문학교	3	둥볜도(東邊道) 다리지(大栗子)
대동공업전문학교	6	둥볜도(東邊道) 다리지(大栗子)	경성의학전문학교	6	수란(舒蘭)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6	옌지(延吉)	대구의학전문학교	6	닝안(寧安)
수원고등농림학교	6	헤이허(黑河)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6	퉁화(通化)
평양의학전문학교	6	후린(虎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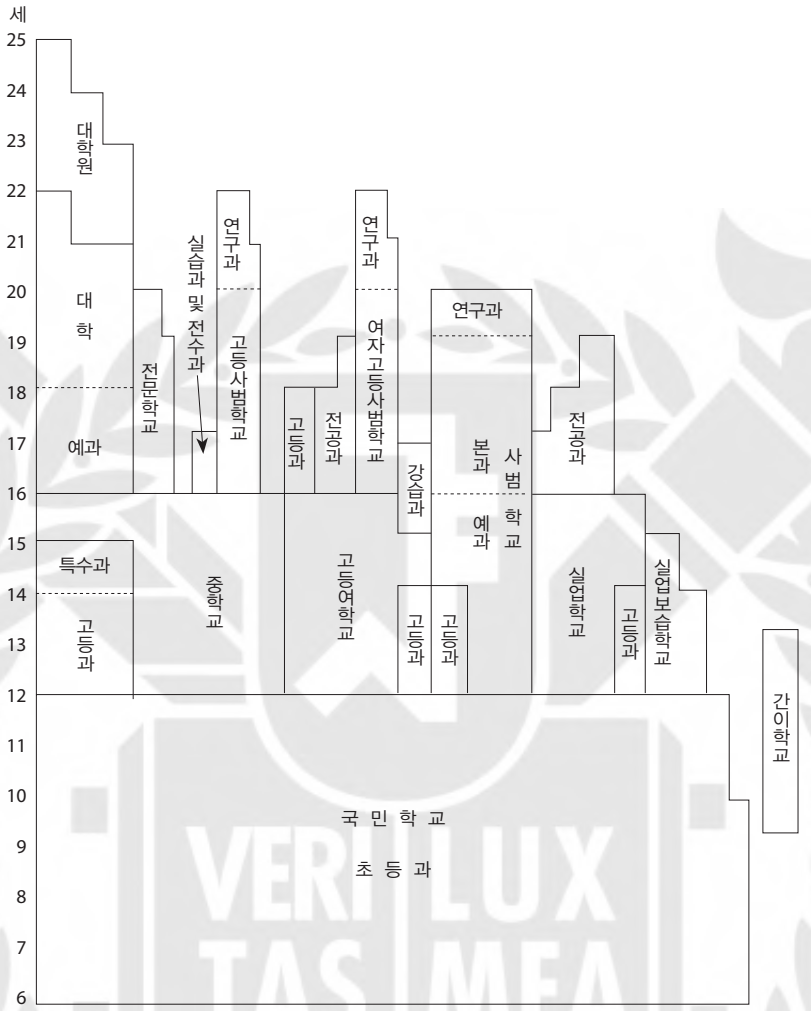
출처: 『매일신보』, 1941. 6. 27.

되는데 그 채점은 다른 실습 과목과 같이 학생 생도의 진급 또는 졸업의 급락을 좌우했다(『매일신보』, 1941. 9. 1). 또한 대학 고전(高專) 연합 연습이 매년 개최되었다. 이런 자리를 빌려 경성제국대학 예과,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경성사범학교 등 4,000명의 학생 생도들이 10월 20일 경성비행장에 집결하여 야영을 하고 다음날 새벽에 경성에서 추격전을 한 다음 오전 8시 돈암정 부근에서 백병전을 하도록 했다(『매일신보』, 1941. 10. 9).

(2)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1943. 4~1945. 8)

일제는 1941년 12월 하와이 진주만 습격으로 승기를 잡는 듯했지만 미군의 반격으로 점차 패색이 짙어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조선에서도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1943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한 '제4차 조선교육령'을 제정, 공포했다. 개정 목적은 황국(皇國)의 도(道)에 따른 국민연성(國民鍊成)에 있었다. 고등교육과 관련한 중요 내용을 보면, 일제는 전문학교의 교육 목적 역시 고등한 학술·기예(技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되,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국가 유용의 인물'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조선총독부, 1943c: 23). 참고로 [그림 2-4-2]는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 학제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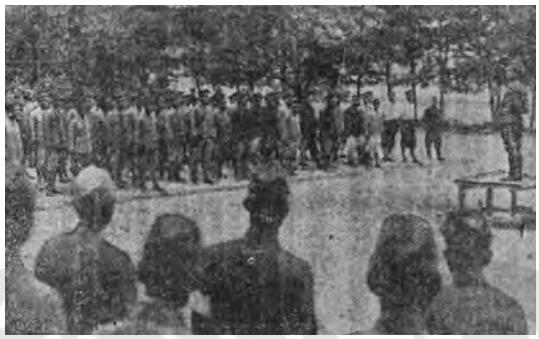
그 결과 일제는 1943년 4월 1일부터 '제4차 조선교육령' 시행에 들어가 수업연한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교육 부문에서 전시 인력 확보 시책을 강화했다. 이러한 교육령은 소위 '황국의 도에 기초한 국민의 연성'을 위한 것으로 교육의 전시



출처: 정재철(1989: 105).

[그림 2-4-2]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학제도(1943~1945)

체제화를 의미했다. 또한 '제4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이제까지 형식상 선택과목으로만 존속했던 조선어 교과를 초등학교에 이어 중등학교 및 사범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해 버렸다. 이에 반해 일본어, 일본도덕, 일본지리 등의 교과는 '국민과'라고 하는 종합적인 교과로 통일시켜 종전보다 더욱 중시했다. 또한 군사적 가치가 학교 교육을 전면적으로 지배함에 따라 군사교련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활동이 강건한 병사를 양성하는 데 맞추어졌다.



출처: 『매일신보』, 1943. 6. 27.

[그림 2-4-3] 수원 서호 준설 작업 광경

그리하여 학생들은 이른바 '행학일체(行學一體)'라는 명분 아래 군수공장과 여러 종류의 작업장에 강제로 투입되었다(변은진, 2013: 113). 잇달아 총독부 학무국에서 발표한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령'(1943), '학도전시동원체제확립요강'(1943),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1944) 등을 통해, 중등 고학년 이상은 360일, 저학년은 180일가량 동원하려 했다. 이른바 근로동원이라는 명분으로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의 이공계 학생은 각각 전문의 생산 공장에 강제 동원되고, 문과계 학생과 사범학교생은 식량증산과 국방시설 건설에 투입되고, 고등여학생은 방직공장에 동원시켜 육체노동을 강요했다(김호일, 2005: 344).

이 중에는 경성제국대학 학생과 5개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도 포함되었다. 우선 1943년 제1학기 근로동원은 4월 12일 경성제국대학생들이 수원 서호(西湖) 준설 공사에 동원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조선총독부, 1943a: 64~66, 1943b: 64~67). 16개의 대학, 고등, 전문학교 학생은 6월 26일까지 매번 500명에서 700명씩 숙식을 하며 1주일간 동원되었으며, 9월에는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동원이 계획되어 있었다(『매일신보』, 1943. 6. 27). 여기에는 경성제국대학 본과 및 예과,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광업전문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아사히(旭)의학전문학교(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후신, 1942),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명륜전문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 혜화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본과 학생들이 동원되었다. 동원된 학생 수는 무려 3만 5,000여 명이었다. 근로 작업은 모두 10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매일신보』, 1943. 6. 27). 이 가운데 경성사범학교 학생들과 보성전문학교 학생들의 작업능률이 높았다고 평가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학생은 서호의 1만 5,000평(5정보) 면적을 모두 평균 두 자리씩 파내려갔다. 이것은 장차 제2차 계획의 6

정보 준설 작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22장척(丈尺, 70여 cm)의 물이 항상 채워져 5만 4,900평의 논에 물을 대 366석의 벼를 수확하리라 예상되었다.

1943년 7월 22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하달한 '학도전시동원체제 확립 요강'을 계기로 근로동원은 동원 기간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났고, 동원 내용도 단순 육체노동에서 군수 공장 동원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제 학생 근로동원은 노동동원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근로동원의 교육적 수식은 더 이상 의미를 갖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성도 없었다.

일제 강점 말기로 갈수록 전시 체제 수립을 위한 인력 동원의 성격을 강화하는 정책적 의도는 실제 학생 동원 실태에서도 나타났다. 그리하여 전술한 것처럼 '비상조치방책'을 계기로 전쟁 수요에 맞게 학교를 재편하는 한편, 학생의 근로동원을 강화하기 위해 1년 중 4개월을 조직적으로 동원할 계획이었다. 이를 더욱 명확히 한 조치가 2월 25일 자 '결전비상조치요강'이란 내각의 결정이었다. 이 요강의 15개 항목 가운데 첫 번째 사항으로 내세운 "학도동원 체제의 철저"란 방침은 '결전시방조치에 기초한 학도동원실시요강'(3. 7)이란 결정으로 구체화되었다(신주백, 2001: 86).

조선에서도 3월 18일 자 정무총감의 통첩으로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과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에 따른 학도동원비상실시요강'에서 대략 4개월 동안 학도를 동원한다고 확정했다(조선총독부, 1944a: 10~13). 일제는 두 요강을 통해 학교의 종류, 학생의 연령과 성별, 특히 이공과계의 학생을 전공에 따라 군 관련 공장이나 사업장에 배치하고, 여학교의 교사 등을 군수공장, 식량의 제조장, 저장소 등으로 이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제2차 학도출진'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상시동원이 시작된 1940년 이래 경성제국대학, 전문학교, 사범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근로 작업에 동원되었다. [표 2-4-3]은 1944년 전반기 학생의 동원 실태를 보여준다.

심지어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외 이공학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일제는 의학부 4학년 전원을 군위생부로 만들기 위해 육군병원에 입대시키고, 3학년은 경찰관과 경병대의 혈액검사에, 1, 2학년은 육군 창고의 정지 작업과 도로 보수 작업 등에 투입했다. 징집 면제 대상인 이공학부 학생은 단축수업을 마친 뒤 소총 깎기, 조병창, 해군 공창 등으로 동원되었다(이충우, 1980: 260~261). 조병창에 동원된 이공학부 1학년 강명순은 "3년 중 공부는 1년 반만 하고 나머지 1년 반은

[표 2-4-3] 학생 동원 실시 개황(1944년 전반기)

학교급별	학교 종별	학교 수(개교)	출동 인원(명)	출근처 또는 작업	출근 기간
대학, 전문학교	광공업계	5	1,412	항공창, 교통국, 공장, 광산	연중 또는 임시
	농수산계	3	698	농축산지도 어로수산공장	
	의약계	10	3,214	도립 병원, 교통국 병원 등	
	문과계	7	1,938	조병창, 항공창, 사업장 등	
	소계	25	7,262		
사범학교	교육동원	16	1,278	전 조선 각 국민학교	2~6개월
	일반동원		10,820	식량증산, 국방시설, 토건공사, ○○가공작업, 군피복 보수	임시
	소계	16	12,908		

출처: 강명숙(2008: 16), 〈표 4〉 재인용.

전시에 동원이 됐어. 나는 부평조병창 기계설비과로 동원되었는데 동원된 와중에 해방이 된 것이야"라고 회고했다(이상의, 2006: 30 재인용). 즉 일제 강점 말기에는 근로 작업이 바로 학교 수업이었으며, '근로봉사'는 전시 인력 동원 수단이었다. 성적은 교과 성적과 근로보국사업 및 사상 등을 토대로 산출되었고, 1945년부터는 진학시험도 필기고사 대신 근로 성적을 반영하도록 조치했다(『매일신보』, 1945. 2. 5). 그야말로 인력 동원이 학교의 기능이고 노동이 학교 교육의 내용이었다.

나아가 1944년 3월 7일 '결전비상조치에 따른 학도동원실시요강'이 발표되었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 학과의 종류와 정도(초등학교 고등과, 중등학교, 대학, 전문학교)에 따라 동원 방향을 정하며, 대학, 전문학교는 전공학과와 일치시킨다.
② 일요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강구한다.
③ 여자의 동원은 되도록 학교의 공업화에 의해 근로의 효과를 발휘한다.
④ 근로동원 기간의 학도에게 식량과 물자를 배급한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44년 4월 28일에 '학교별동원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이공계 학생은 광업 관계, 의학 및 치과의학 관계, 약학 관계, 농학 관계로 세분하여 전공에 맞게 동원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3, 4학년은 연중 동원,

[표 2-4-4] 대학·전문학교 학생 동원 실시 개황

학교 종별	농공 관계	농수산 관계	의약 관계	문과계	계
학교 수(개교)	5	4	9	8	26
출동 인원(명)	1,412	748	2,766	2,126	7,062
출동처	항공창, 교통국, 공장, 광산 등	농축산지도, 어로 수산 가공장 등	도립병원, 교통국, 병원, 기타	조병창, 항공창, 비행장 등	
출동 기관	연중 또는 임시	연중 또는 임시	연중 또는 임시	연중 또는 임시	

출처: 近藤釰一 · 조선사료편찬회(1964: 160).

2학년은 집단 배치를 전제로 한 연중 동원, 1학년은 때에 따라 긴급 배치한다는 방침이 일반적이었다. 문과계 전문학교생은 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식량증산, 국방시설 건설, 운반사업에 동원되었으며, 공장과 사업장에 동원된 학생은 연중 동원을 원칙으로 하고, 고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를 적용했다. 사범학교생은 문과계 전문학교를 기준으로 동원하도록 했다. 경성제국대학·전문학교 학생들의 1944년 8월 1일 동원 실태는 [표 2-4-4]와 같다.

1945년 3월 일제는 '결전교육조치요강'에 따라 아예 수업을 중지시키고 학생들을 작업장으로 총동원했으며, 7월 1일에는 '전시교육령시행령'을 공포하여 모든 학생을 학급별·지역별로 학도연합대 등에 편성하고자 했다. 이미 모든 학교 시설은 군용으로 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패전을 눈앞에 둔 8월 15일 직전의 급박한 상황에서는 아예 학교를 흡수, 통폐합하거나 목적에 맞게 개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일제는 중일전쟁의 발발과 침략전쟁의 확대로 한국인 병력 동원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1938년 2월 2일 '육군특별지원병령'(칙령 제95호)을 공포하여 한국인 병력 동원을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1942년 5월 8일 조선에서의 징병제 실시가 일본 각의에서 결정되면서 만 20세가 되는 한국인 남자는 일제의 전쟁 수행을 위한 병력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표영수, 2002: 115~116). 아시아·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일제가 필요로 하는 병력 규모는 1941년 약 250만, 1942년 350만, 1943년 250만, 1944년 200만, 1945년 150만, 1946년 150만 명으로 산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병력 유지가 일본인만으로는 불가능했으므로 한국인을 전선에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했던 것이다.

이에 일제는 이러한 병력 동원에 대비한 교련 교육을 강화했다. 교련 교육의

결과는 모의 전투와 사열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1943년 5월 21일 경성제국대학 학생 및 전문학교 학생 6,000명이 연합 연습에 투입되었다. 이 연습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 전투가 거행되었는데 학생들은 동·서양군으로 나누어 연습을 했다(『매일신보』, 1943. 3. 23; 조선총독부, 1943b: 68~70). 5월 22일에는 용산연병장에서 칙어봉재(勅語奉載)를 기념하는 모임이 열렸다. 또한 1943년 7월 1일 경성사단(京城師團) 관하(管下)로 대학·전문학교 교련에 대한 사열이 경성제국대학을 시작으로 19개교에서 7월 말까지 실시되었다(『매일신보』, 1943. 7. 2). 여기서는 분열행진에 이어 총검술, 소총 사격, 돌격 연습, 실포(實包) 사격과 중기관총부대의 대공 사격, 전투교련 등이 이루어졌다. 학병으로 끌어내기 위한 기초 군사훈련 과정인 셈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1943년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생 76명(한국인 39명, 일본인 37명)이 해군예비학생 모집과 육군특별조종견습사관 모집에 응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진충보국(盡忠保國)을 강조하는 마스다 미치요시(增田道義) 교장의 엄격한 지도가 크게 작용했다(『매일신보』, 1943. 7. 25). 선병(選兵)과 그 외 사정으로 결석한 3명을 빼면 실제 징병자는 73명에 이르렀다. 심지어 일제는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생 중 일부가 취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하고 학병에 지원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매일신보』, 1943. 7. 15).

그러나 전쟁 동원의 절박함이 더욱 심각해지자 일제는 먼저 문과계 대학생과 전문학교 학생의 징집 유예조치를 정지시켰다. 이공계와 사범계를 제외한 한국인 문과계 대학생은 1943년 10월 20일 '소화 18년 육군특별지원병임시채용규칙'에 따라 일본군에 입대해야 했다(조선총독부, 1943e: 22~23). 이른바 학도지원병제가 실시되었다. 해당 학생들은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학교 소재지 소관 군사령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마감일까지 서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서에 본인의 서명 날인만으로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더욱이 해당 학생은 규칙을 발표한 지 얼마 안 된 10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하고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징병검사를 받은 후 1944년 1월 20일까지 입영해야 했다. 그 결과 1944년 1월 20일 한국인 학생 6,203명의 적격자 가운데 70%인 4,385명이 입대했다(姜德相, 1997: 370).

처음에는 강제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선전했으나 점차 적격자 100% 지원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각종 선전 및 회유 아닌 회유, 종용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표 2-4-5] 학도지원병 지원 상황 단위: 명

구분	해당자 수	입대자 수	비율(%)
조선 내 전문학교, 경성제국대학 재학생 관계	1,000	959	96
외지(일본, 만주, 중국) 유학생 관계	2,929	2,150	77
그해 미취업자 관계	1,574	941	60
졸업 중 기취업자 관계	700	335	48
합계	6,203	4,385	70

출처: 1 · 20 동지회(1987: 97).

[표 2-4-6] 경성제국대학 및 5개 관립 전문학교 학도지원병 지원 상황 단위: 명

출신 학교	지원자 수	출신 학교	지원자 수
서울대학교*	28	경성고등상업학교	5
경성법학전문학교	21	수원고등농림학교	5
경성제국대학**	18	경성경전	1
합계	78명		

주: 1 · 20 동지회에 등록된 수에 의거함.
* 서울대학 학생 28명 중에는 해방 후에 재학으로 서울대학교 출신도 있으나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출신도 포함됨.
** 경성제국대학은 서울대학교가 아닌 일제 강점기 경성제국대학 출신을 말함.

출처: 1 · 20 동지회(1987: 99~100).

강행했다. 그 결과 [표 2-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 내의 적격자 가운데 해당 학생의 96%가 지원해야 했고 일본과 만주, 중국에 유학하고 있던 유학생들도 학도지원병으로 지원해야 했다.

이때 1944년 1월 20일에 입대한 경성제국대학 본과와 예과 및 5개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의 구체적인 상황은 [표 2-4-6]과 같다.

이 수치는 지원병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고 조선으로 귀환하여 등록된 사람에 한해 산정했으므로 상당수 학생들이 누락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일제의 주장대로 징집률이 96%에 달했다면 더 많은 학생이 학병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관립 학교는 그 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학병 응소(應召)가 형식은 지원 방식이었지만 실제로는 징병 방식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입영 후에 관련 지원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한다든가, 법령 공포 후 3개월 만에 입영이 이뤄진 점, 징집 대상자의 100% 지원을 목표로 한 점에서 '지원'의 성

격보다는 강제 성격을 띠었다. 학도지원병은 일반 지원자들과 달리 상징적 의미가 컸기 때문에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이 직접 나서서 지원을 독려하기까지 했다.

이때 학병으로 끌려간 경성제국대학 본과 학생 김익권은 학병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도피했다가 결국 학병으로 끌려간 사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 밤에 집에 도착하여 백형(伯兄)을 뵈오니 "민족을 생각하는 너의 심정을 이해하나 동양 사람은 뭇 도덕 가운데 효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네가 떠난 후 아버님이 밥상에 뜨거운 국만 보시면 "이 놈이 엄동설한에 어데 가서 얼어 죽지나 않았나" 하시고 우시며 밥을 제대로 드시질 않으니 그보다 더 큰 불효가 있겠느냐! 또 고등경찰이 뻔질낭게 찾아와서 너를 찾아내라고 호통을 치니 어디 살 수 있니! 한 집안이 망하겠구나!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는 셈치고 네가 지원해 다오. 내가 대리로 지원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하신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분부대로 하지요" 하고 말았다(1·20 동지회, 1987: 113).

이들 한국인 학생은 일제가 가족을 인질로 삼아 강압하거나 회유하자 학병에 지원해야 했던 것이다. 그 사이 일제는 '대학 전문의 교양'을 갖추고 '배운 자라는 신뢰' 아래 '육군특별지원병 채용규칙'을 발표하면서 "지원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징용할 것"이라 협박했다(『매일신보』, 1943. 10. 28, 「학도여 궐기하라」). 심지어 일제는 "지원하지 않으면 남양 등지에 징용해서 출병하는 것보다 더 생명의 보장이 없는 곳으로 처리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리하여 경성제국대학 및 5개 관립 전문학교 학생을 비롯한 학도지원병은 3,893명에 이르렀다(표영수, 2008: 90~96). 이 가운데 30%는 자살특공대라 할 가미카제로 동원되는 비극을 겪었다(이향철, 2006: 300~309). 한국인 병사 18명 가운데 경성법학전문학교 출신인 노용우가 대표적인 예다. 노용우가 다니던 경성법학전문학교는 한국인 학도병의 접수 기간이 절반 정도 지나도 지원자가 거의 없는 가운데, 전술한 바와 같이 마스다 미치요시 교장의 적극적인 권유로 일찍부터 48명의 적격자 전원이 단체로 지원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인 학교였다(『경성일보』, 1943. 11. 6). 이 가운데 노용우에 관한 『한겨레신문』 2010년 2월 17일 자의 기획기사는 강제로 끌려가야 했던 꿈 많던 동창의 비극적인 삶과 오늘날에도 해결되지 않는 한·일 간 과거사 미청산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어 장문이지만 인용한다.

1941년 경성법전의 교장으로 취임한 마츠다 미치요시(도쿄제국대학 졸업, 경시청 경부, 평양 전매국장, 경상남도 내무국장 등 역임)는 철저한 황민화 교육의 신봉자였다. 그는 "입학시험에서 황국국민으로 지성진충(至聖盡忠)의 정신이 어느 정도 있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 졸업하면 바로 지원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실제 노용우 등 경성법전 재학생 76명 전원을 특별지원병에 지원시켰다. 같은 시기 연희전문(지금의 연세대학교) 교장이었던 가라시마 다케시는 1965년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에 "1943년 11월이 되니 (경성의) 각 전문학교장은 다시 소집돼 결정적인 통고를 받았다. '지원이지만 적격자 전원을 지원시킬 것.' 미지원자는 이유를 엄중히 추궁당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되면 강제나 마찬가지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노경자 씨는 2005년 6월 16일 일본 후생노동성과 한국 보건복지부를 통해 오빠 노용우의 유골을 인수받았다. 한·일 양국 정부는 언론 취재를 극구 피했다고 한다.

육군에 지원한 노용우는 1943년 10월 육군특별조종견습사관(특조) 1기로 선발돼 전투기 조종사의 길에 발을 들여놓는다. 1,800명에 이르는 특조 1기생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인은 노용우(경성법전), 김상필(연희전문), 탁경현(교토약학전문학교), 이시바시 시로(石橋志郎) 등 4명뿐이다. 역시 '한국인 특공대'로 목숨을 잃은 김상필의 형수 여태순(작고) 씨는 1996년에 펴낸 『그날 오키나와 하늘에서』에서 "특별조종견습사관 시험은 경성과 도쿄에서 1·2차로 나눠 치를 만큼 매우 어렵고 까다로워 연희전문 출신 가운데 합격자는 김상필이 유일했다"고 적었다.

노용우는 규슈 후쿠오카 현에 본부가 있던 다치아라이 비행학교 군산 분교 등에서 비행 훈련을 받고 1944년 10월 1일 정식 소위로 임관했다. 노용우가 배치된 곳은 '하늘의 요새'라 불리던 B-29 폭격기의 수도권 공습의 길목에 해당하는 아이치 현 기요스 비행기지 제5전대였다. 경자 씨는 "그 무렵 오빠가 사진과 일기장 세 권을 보내오며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일기를 다 태우라'고 편지로 일렀다"고 말했다.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평생 황민화 교육을 받고 이제는 죽음 앞에 선 24살 엘리트 청년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생각은 무엇이었을지 우리는 짐작만 해볼 뿐이다.

1945년 5월 29일이 밝았다. 이날 오전 8시 노용우는 B-29 편대의 기습 통보를 받고 출격했다. 시즈오카 현 가와네초 부근에서 B-29 대부대와 조우한 노용우의

비행기는 적기의 공격으로 날개가 꺾인 상태에서 M. R. 클라크 주니어 중위가 조종하는 B-29를 몸체로 들이받아 격추시켰다. 노용우는 살고 싶었던 듯 추락 직전에 탈출했지만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이틀 뒤 히가시가와네 마을 남쪽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의 가슴 주머니 속에는 "부탁한 옷이 되었으니 곧 가져다주겠다"는 여동생의 엽서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여동생 경자 씨는 "우리는 그런 엽서를 보낸 적이 없으니 아마도 엽서의 주인은 오빠의 애인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그에게 오빠의 죽음은 북아현정 동네 골목을 가득 채웠던 갑작스런 조화의 물결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뭐든 다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후 노용우의 유골은 일본인들과 달리 유족에게 전해지지 못했다. 그의 유골은 패전 때까지 하늘을 지키는 '군신'으로 중부군사령부 등에 쪼개져 안치되다가 1958년 11월 후생성 원호국에 이관됐다. 다른 조선 출신 군인·군속들의 유골과 함께 후생성 2층 창고에 방치되던 그의 유골은 1971년 6월 도쿄 메구로구의 사찰 유텐지로 옮겨졌다. 1970년대 한국 외무부가 작성한 유골 관계 문서철에서 찾아낸 '태평양전쟁 한국인전몰자 유골 명부' 속에 그의 이름은 '1036번'(관리번호)으로 기록돼 있다. 경자 씨는 2005년 6월 16일 일본에서 오빠의 유골을 가져다 천안 망향의 동산에 모셨다.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노경자 씨는 올해 일흔넷이다. 그는 해방 이후 서울사범(지금의 서울 교대)을 나와 40여 년 동안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는 "이따금 오빠가 살아 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오빠는 똑똑했으니까 안 죽고 어디 외국에서 지금도 살아 있을 것"이라 믿다가 1988년에 숨졌다. 살아생전 남편을 보며 "당신은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었다"며 자주 울었다고 한다.

그런데 일제의 이러한 학병징집은 병력 보충 말고도 다른 속셈이 있었다. 후방에서 이들 학생이 항일 운동을 전개할 것을 예방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최근의 전국(戰局)에 따라 잠재한 패전적 사상이 농후해지고 … 그들 자신의 환경 및 국가의식이 희박한 것에 상응하여 반국가적 민족의식에 빠져드는 자가 있다.

> 심지어는 의연히 적인 영, 미의 경제력이 강대함을 과대평가하여 정기전의 결과, 제국 국력이 저하함에 따른 패전과 이에 따른 조선 독립을 꿈꾸는 자가 있고 혹은 일, 소의 개전 시기야말로 조선 민족 해방의 야망을 달성할 절호의 기회인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자가 적지 않다. … 그 대부분이 민족사건에 속하며 정신적 단결의 강화와 지력·체력·경제력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조선 독립의 날을 대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최근 전국의 추이에 따라 제국의 패색이 짙다고 망단불기(妄斷不羈)를 획책하는 경향이 있다(近藤釰一, 1961).

이에 따르면 한국인 중 일부가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고 저항운동을 일으키려 하자 이들을 침략전의 희생물로 삼음으로써 저들에게 닥쳐올 것이 예상되는 불리한 후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제는 학도지원을 거부하는 학생을 '비국민(非國民)'이라 매도하고 징용에 기꺼이 응하는 전사라는 뜻의 '응징사(應徵士)'라는 이름으로 강제징용으로 끌고 갔다. 이른바 학도징용, 응징학도제도였다(정혜경, 2010: 82~85). 즉 이때의 응징사는 단순한 '징용에 가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비지원에 따른 벌칙과도 같은 것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오노 겐이치(大野謙一)는 "학도지원병 총해당 학생 가운데 1할의 미지원자와 9월 문과 졸업생으로서 뚜렷한 직업이 없는 자는 비록 무상(無上)의 광영에 욕(浴)할 기회는 놓쳤다 할지라도 금번 산업 전사로 부름에 이 기회마저 놓치면 비국민의 오명을 띠게 될 것을 깊이 깨달으라. 미참자는 국가총동원법에 의하여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고 위협적인 발표를 했다.

그리하여 일본인 학생의 경우 조선, 타이완, 관둥저우 및 만주국에 재류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금(科金)에 처한다고 규정한 반면에 지원하지 않은 한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1943년 11월 28일 조선총독이 징용 명령을 내리고, 이어서 도지사에 의한 징용명령서가 미지원들자에게 송부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1943. 10. 13, 「소화 18년 임시징병검사규칙」).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1943년 12월 5일부터 2주간의 특별연성과정을 거쳐 '산업전사'로서 전력증강상 가장 긴요한 조선 내 중요 공장에 취로시켰다. 『제85회 제국의회설명자료』에 따르면 당시 학도병 지원거부자는 125명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조선총독부 제1육군병지원자훈련소(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 소재)에 수용하여 2주간의 연성과정을 거친 후 교통국 광산철도공장, 오노다

시멘트해주공장 및 조선조야봉산공장(朝鮮朝野鳳山工場) 등에 배치되었다. 징용된 학생들은 이런 공장의 가혹한 작업 환경 속에서 견디기 힘든 강제 노동에 혹사당했다. 특히 이들은 '황국신민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며 훈련 기간에 군사훈련과 사상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강연자인 친일 인사에게 "너희는 병역을 기피했으므로 천황폐하의 쌀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질책을 듣기도 했다. 특히 동원 작업장에서는 이들이 일반 노무자들에게 반일 사상을 전파할 것을 우려해 별도 관리했다. 오노다 시멘트 회사가 남긴 자료에 따르면 매일 교육 일정 및 작업 시간, 근무 상황은 물론 체중 변화까지 일일이 기록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수 한국인 학생들이 지원을 거부해 도피하거나 입영 후 탈출을 감행하기도 했다. 우선 한국인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경성제국대학의 이혁기는 보성전문학교의 이철승 등과 더불어 서울 시내 11개 전문학교 이상의 학교 대표들과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학병 지원을 거부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시위행진을 모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의는 일제 측에 탐지되어 해당 학생들이 총독에게 불려가 협박과 회유를 당하는 과정에서 무산되고 말았다(홍석률, 1990: 40). 심지어 병영에서 탈출하여 광복군에 입영하는 학병들도 있었다. 1944년 4월에 강제 징병을 피하기 위해 징병 연기가 가능했던 경성사범학교 강습과로 입학한 김영관(1924~, 포천 출신)은 사범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할당으로 1944년 9월 학병으로 징집되었지만 1944년 12월 3일 중국 저장 성(浙江省) 동양(東陽)에서 끝내 탈출하여 광복군 제1지대 제2구대에 입대했다(김영관 애국지사 증언). 당시 그가 보통학교 때 임시정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도 나라 없는 백성은 아니구나"라고 흥분했으며 선린상업학교 재학 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주변 학우의 이야기로 이미 알고 있었던 터였다. 따라서 그는 징병되어 중국전선에 배치된다면 탈출할 것을 결심했다.

반면에 학도지원병에 응하지 않다가 징용으로 끌려간 학생들은 힘든 노역으로 사망하거나 겨우 살아서 돌아왔다. 경성제국대학 재학 중에 끌려갔던 계훈제(1921~1999)는 그의 회고록 『흰 고무신』에서 당시 일본 최대의 시멘트 회사였던 오노다 시멘트 회사의 해주 공장에 징용당한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 벽돌 운반 작업이 한 달 계속된 다음에 더욱 고약한 일이 맡겨졌다. 설비가 낡고 고장이 잦아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한 회사는 몇 년 전에 과잉 생산으로 방치되었

> 던 반(半)제품 시멘트를 가공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크랑카'라고 부르는 이 반제품을 상승기에 퍼 넣는 작업이 주어진 것이다. 허파를 메우고 눈을 헐게 하고 땀과 뒤범벅이 되어 얼굴 피부에 달라붙은 크랑카 밑의 노란 독성 가루는 젊은이들의 육체와 영혼을 콘크리트로 만들기에 알맞았다. 잡부들도 한사코 기피하는 이 일은 인간이 해낼 수 없는 한도 밖의 것이었다(계훈제, 2002).

결국 계훈제는 이 고약한 일로 폐결핵을 얻어 한쪽 폐를 떼어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환은 오히려 적었다. 많은 학생이 이처럼 학병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혹한 노동 작업장으로 끌려가 사망함으로써 해방 후 한국 사회는 신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지성인들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2) 고등교육시책의 전환과 고등교육기관 개편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일제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고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본 본토에서는 전쟁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의 진흥 및 동원, 그리고 과학기술자의 체계적인 양성이 본격적인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 동원을 위한 시책과 이를 담당하는 제도 및 기구들이 속속 등장한 한편, 대학 및 전문학교에서 인문, 사회, 법학 교육을 가급적 억제하고 공학부, 공업전문학교의 증설을 유도하는 정책적 조치들이 점차 강화되었다(정준영, 2015: 310). 그 밖에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수원고등농림학교에도 수의축산과를 설치하려고 했으며 1937년 9월 31일부로 '수의사규칙'을 공포했다(『동아일보』, 1937. 9. 1). 드디어 1939년 2월 수원고등농림학교에 축산과를 신설하고 20명을 모집했다(『조선일보』, 1939. 2. 14).

이러한 과학 동원의 양상은 이미 1931년 만주사변 직후에 나타났다. 1930년대에 들어와 조선총독부는 조선 광물 자원의 가치에 주목해서 적극적인 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금광 등 광산 개발 붐으로 이어지자, 기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조선 사회 내부의 관심도 높아졌다(전봉관, 2005). 1935년을 전후해서 본격화되었던 공업학교 설립 운동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김근배, 2005: 338~358).

따라서 이러한 방침은 이전의 농업 중심 정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즉 1936년에 취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이전의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의 농공 병진 정책에서 공업 우선 정책으로 전환했다. 미나미 총독이 부임한 직후인 1936년 10월 21일 조선산업경제조사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조선 산업경제개발에 관한 일반 방침'이 확정되었는데 "가급적 빨리 경성제국대학에 이어 이, 농, 공 등에 상당하는 학부를 설치할 것"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었다(조선총독부, 1936a: 593~594; 조선총독부, 1936d: 40). 이에 따라 고등기술교육기관으로 1938년에 경성고등공업학교에 기계·전기과가 확충되었고, 광산과는 분리되어 1939년 4월 경성광산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이병례, 2012: 128~136). 이 가운데 경성광산전문학교의 설립에는 조선총독부의 의지도 담겨 있지만 일본인 광산 자본가의 요청이 작용했다. 당시 광업 자본가들은 조선총독부에 학교 설립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기부금 형태로 제공했다. 따라서 이 학교에는 채광학과, 광산기계학과, 야금학과 등 3개 학과가 설치되었으며, 수업연한은 3년이었다. 또한 채광학과에 한해 수업연한 1년의 전수과를 부설했다. 특히 경성고등공업학교 광산학과 2·3학년 재학생을 이관받아 이들을 경성고등공업학교 광산학과의 기존 교과과정에 준하여 교육했다. 그리고 이공계 전문학교로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1939), 대동공업전문학교(1938), 부산고등수산학교(1941)가 설립되었다. 다음 경성제국대학에 이농학부가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이공학부로 변경되어 1941년에 설치되었다. 한반도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군수산업이 확충되면서 이러한 자원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할 인력을 양성해야 했기 때문이다(이병례, 2012: 128~129).

일제의 이러한 이공계 학교 육성 방침은 학생들의 전문학교 지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1938년 3월 입학지원 현황을 보면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비롯하여 관·사립 전문학교 가운데 법학, 문학, 농림 등의 전공 분야가 중등학교 및 실업학교와 달리 격감했다(『조선일보』, 1938. 3. 7). 이러한 현상은 조선교육령 실시 이후 처음이었다. 그것은 문과계 대학과 전문학교가 무엇보다 수업료 부담과 생활의 중압은 더욱 커지는 데 반해 중학 출신이나 전문학교 출신이나 실제 사회에 나가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공계 전문학교에는 전공 외 교과과정에서도 변화가 수반되었다. 경성광산전문학교의 경우, 중국어가 추가되어 매주 2시간을 들어야 했다. 이러한

변경은 중국 침략을 통해 확보한 광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어에 능통한 기술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여타 관립 전문학교의 경우에도 중국어 교과과정이 적용되었다. 경성법학전문학교 3시간, 경성의학전문학교 12시간, 수원고등농림학교 3시간, 경성고등상업학교 7시간으로 각각 차등해서 적용·시행되었다(신윤희, 2009: 92~93). 대륙을 침략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기술뿐만 아니라 전 부문에서 중국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일제는 전시 체제 아래 물적 동원과 병행하여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자 1938년 8월 '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과 '의료관계자직업능력신고령'을 제정했다. 그것은 평화산업이 군수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업실업자(轉業失業者)가 속출하는 한편 군수산업의 확장에 수반하여 기술자와 숙련공의 기근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자들의 자유로운 취업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동아일보』, 1938. 8. 27). 특히 전자의 내용을 보면 대학의 이공학부, 공업전문학교, 전문학교의 공과, 갑종공업학교 등에서 기계, 조선, 항공, 전기 등의 학과를 마친 졸업자를 고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이상의, 2006: 198~199; 이병례, 2012: 34). 학교를 졸업한 당사자에 대한 통제가 아니고 사용주의 기술자 고용을 제한한 것이지만 결국은 학교 졸업자가 선택할 사업장의 폭이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 그 결과 경성고등공업학교의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응용화학과, 광산학과의 4개 과가 사용제한령 학교 및 학과로 지정되었다. 이 제도는 취업 선택에서 졸업생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제가 졸업 후의 직장을 선택, 강요하는 것이었다.

또한 일제는 조선 내 군수산업의 생산력 확충을 위해 한정된 기술노동자를 확보·고정하기 위해 1939년 6월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제정했다(이상의, 2006: 199~200). 이 법령에 근거하여 이른바 국민등록제도가 실시되었는데, 이것은 국가총동원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인의 직업 능력을 평소부터 등록·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안자코 유카, 2006: 131). 등록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는 공광(工鑛) 관계의 대학, 전문학교,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마친 자도 포함되었다. 그 밖에 일제는 1939년 '학교기능자양성령', '공장사업장기능자양성령', '선박운항기능자양성령' 등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기술자, 기능공들을 양성, 통제하기 시작했다.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과학동원계획'의 요강을 확

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갔다. 과학동원이란 과학기술 기능을 국가의 목적과 요구에 따라 능률적으로 집중, 통제, 동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자원 개발과 기능 인력의 양성, 즉 물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 그리하여 1940년 1월 16일 '총동원연구령시행규칙'을 발표했다(『동아일보』, 1940. 10. 17). 이 규칙에 따르면 총동원 물자의 생산 수리를 그 임무로 하는 자나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 총동원물자에 관한 사항, 기타 국가 총동원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연구를 명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사상을 고취한다는 명분 아래 학교의 교육 목적을 국가에 필요한 인재와 황국신민의 양성에 중점을 둔다는 내용으로 바꾸었다. 이어서 경성고등공업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이 의무적으로 가입했던 교우회를 해산하고 이 조직을 전시체제에 편입된 '국민총력경성고등공업학교연맹'으로 개편했다(경성고등공업학교, 1942: 5~6, 22).

한편, 1941년 경성전문학교 교장이었던 오야마 잇토쿠(小山一德)가 경성고등공업학교 교장이자 중앙시험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과교원양성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이공계 직업학교의 증설로 중등학교의 교원이 매우 부족해지자, 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고등사범학교의 설립이 시급히 요구되나 경비 조달이 어려우므로 경성고등공업학교와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부설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小山一德, 1944: 22~23). 따라서 그해 4월 경성고등공업학교에 이과교원양성소가 개설되어 수학, 물리, 화학을 가르칠 중등학교 교원이 양성되기 시작했다. 이과교원양성소는 수업연한이 3년이었고 수학과와 물리화학과 2개 과에 각각 20여 명을 입학시켜 졸업 후에는 의무적으로 1년간 조선총독이 명하는 학교에 근무하도록 했다(『매일신보』, 1941. 4. 12). 이듬해인 1942년 수원고등농림학교에 지리박물과 교원양성소를 설치했다(『매일신보』, 1942. 4. 9).

경성고등공업학교는 신설 학과와 부속 교원양성소의 설치로 교수와 학생이 크게 증가했으며 1942년에는 교수 30명, 조교수 14명, 학생주사 1명, 서기 4명으로 총 직원이 49명에 이르렀고, 학생 수는 경성고등공업학교 학생 406명과 이과교원양성소 학생 96명으로 총 502명에 달했다(경성고등공업학교, 1942: 1~6, 104~105).

이어서 전시태세 강화라고 해서 전문학교 이상은 수업 단축을 하는 통에 전문학교도 수업기간을 6개월 단축해 9월 26일에 학생들을 졸업시켰다. 이러한 9월

졸업은 병역을 유예시켜 주었던 일본인 학생을 징집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전문학교들은 일제의 시책에 맞추어 교외 중견 청년 교육에도 관여해야 했다.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경우, 매년 중견청년강습회를 시행했다. 1938년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수원고등농림학교에서 개최된 제14회 중견청년강습회의 강사와 강습 과목은 다음과 같다(『동아일보』, 1938. 10. 11).

① 황국정신과 농도(農道): 야마자키 노부요시(山崎延吉)
② 청년단의 운영과 근로보국: 본부 촉탁 오쿠야마 센조(奥山仙三)
③ 농진흥과 청년단: 본부 야히로 이쿠오(八尋生男)
④ 신흥독을(新興獨乙)과 청년운동: 경성일보(京城日報) 주필 이케다 시게노리(池田林儀)
⑤ 자연과학과 정조도야(情操陶治): 쓰다 사카에(津田榮)
⑥ 금주금연의 생활: 법학박사 모도오카 다모스(諸岡存)
⑦ 물자의 소비절약: 총독부 니시모토 다케조(西本計三)
⑧ 국민정신총동원에 대하여: 총독부 김대익(金大羽)
⑨ 시국추이에 대하여: 총독부 이사카 게이이치로(井坂圭一郎)
⑩ 자원의 애호와 그 개발: 총독부 단게 이쿠타로(丹下郁太郎)
⑪ 지원병제도에 대하여: 훈련소 주사 가이다 가나메(海田要)

이후 예상과 달리 일본군의 거듭된 패퇴로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장기화되자, 일제는 새로운 시책을 강구했다. 1943년 2월 일본군이 6개월에 걸친 태평양 군도의 하나인 과달카날 섬의 전투에서 미군에 패배하면서 일제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전쟁 수행을 뒷받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일제로서는 '거국일치'하여 '부동의 체제'를 정돈함으로써 모든 힘을 더욱 결집할 필요가 있었다(조선총독부, 1943f: 8). 고이소 쿠니아키(小磯國昭) 조선총독도 1943년 1월 4일 시무식 때 '국체본의의 투철을 기저로 하는 도의조선의 확립'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양 연성의 철저한 실천"을 3대 시정의 하나로 내세웠다(조선총독부, 1943g: 17; 신주백, 2001: 77). '황민연성의 각종 제도 기관을 증강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그 방법의 하나였다.

드디어 과달카날 공방전이 끝날 무렵인 1943년 2월 17일 일본 추밀원 본회의

에서는 조선의 중등학교와 사범학교에 새롭게 적용할 교육정책의 대강을 정리한 '조선교육령개정안요강'을 통과시켰다(신주백, 2001: 77). 또 같은 날 내각에서는 대학, 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을 단축시켰다.

그리하여 일제는 1943년 2월 본국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학제개편이 논의되면서 신교육령 준비에 들어갔다(『매일신보』, 1943. 2. 20). 추밀원에서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유위(有爲)한 인재를 하루 빨리 실사회에 내보내기 위해 대학 예과와 중등학교의 수업연한을 1년간 단축할 것', 또 황국신민연성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의무교육제도에 대비하여 교원의 소질을 향상시키고자 사범학교를 전문학교 정도로 승격하고 본과와 예과를 신설함으로써 이른바 '황국도(皇國道)에 의한 황민연성'이라는 근본 정신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어서 각 학교의 규정을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 결과 중학교, 고등여학교, 실업학교는 중학교령에 따라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되고 사범학교는 새로이 수업연한 2년, 4년 두 가지 종류의 예과와 더불어 갑, 을의 본과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4년 예과와 2년 본과로 구성되었으므로 중등학교 수준의 사범학교에서 전문학교 수준의 사범학교로 승격되었다고 하겠다. 다만 현재에 있는 심상과와 강습과는 그대로 두었다. 또 특례로 1944년 이후에는 중학교 제4학년 수료 정도로도 본과와 연습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1943년 3월 8일 발표된 '제4차 조선교육령'(칙령 제113호)은 수업연한 단축과 학생근로동원에 중점을 두었다. 즉 일제는 군 간부 요원의 충족 및 노무동원계획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임시조치'로 중등학교는 5년에서 4년으로, 대학 예과는 3년에서 2년으로, 대학 본과와 고등, 전문학교는 6개월씩 수업연한을 단축시켰다(신주백, 2001: 78). 졸업식 날짜도 변경되었다. 경성제국대학의 경우 9월 20일로 바뀌었다(『매일신보』, 1943. 9. 16). 이때 경성광산전문학교가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전 서울공대 위치)로 이전했다.

한편, '제4차 조선교육령'은 사범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일제는 1943년부터 조선에서 사범교육도 본토의 사범교육령에 준해 실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만 1946년부터 의무교육제를 실시해야 함에도 교원이 부족한 반면, 교원 양성 기관을 증설할 재원이 없는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임시조치를 취했다. 즉 초등학교 초등과를 수료한 사람을 입학 자격으로 하는 수업연한 4년의 예과와 심상과를 설치하고, 단기간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강습과도 당

분간 그대로 두기로 했다(조선총독부, 1944b: 202~203). 또한, 1946년도 사범학교 졸업 예정자까지 수업연한을 6개월씩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교육 현장에 배치하여 교원 부족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했다.

더구나 사범교육은 황민연성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징병제 실시에 호응하도록 1946년부터 추진되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에 대비해야 했다. 실제 1944년 5,812명, 1945년 5,016명, 1946년 5,501명의 교원이 필요했다(신주백, 2001: 79). 이에 따라 일제는 사범학교가 없던 함경북도의 청진, 황해도의 해주, 충청남도의 대전에 심상과를 기본으로 하고 강습과를 부설로 하는 남자사범학교를 신설했다(신주백, 2001: 79). 또한 한국인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교육계에 종사할 우수한 인재와 이공과계 교원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자, 일제는 1943년에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를 일본의 전문학교 수준으로 승격시켜 사범교육의 위상을 본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조치를 일부 취했고, 부족한 수학, 물리, 화학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경성고등상업학교 부설로 35명 정원의 이과교원 양성소도 설치했다(신주백, 2001: 79). 그럼에도 일본 본국과 마찬가지로 남녀공학제도를 취하지 않고 경성사범학교는 남자부, 경성여자사범학교는 여자부만을 두기로 했다. 또 경성사범학교에는 2년제와 4년제의 예과를 비롯해 본과 연구과를 두기로 하고 현재의 보통과와 연습과는 각각 적당히 개조하며 강습과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경성여자사범학교는 본과와 전공과를 설치하고 현재의 연습과는 본과로 개조하고 심상과와 강습과는 그대로 두게 했다(『매일신보』, 1943. 3. 18).

일제는 이처럼 '제4차 조선교육령' 제정을 통해 각급 학교의 수업연한을 단축하고, 사범교육과 이공계 계통의 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즉 수업연한을 6개월~1년간 단축시켜 교원을 시급히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양성이 중요해졌고, 전쟁 수행의 필요에 따른 군수산업 계통의 중견 노동력 확충을 위해 이공계 계통의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일제는 조선의 대륙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이 전황으로 인해 더욱 부각되면서 군수산업과 식량증산 부문에서 중추적으로 활약할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자 했다. 이에 수원고등농림학교에 농업토목과를 신설하고, 농학과와 임학과의 학생을 각각 10명씩 증원했고,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정원을 70명이나 늘렸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학제 개편 때문만이 아니었다.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증원은 조선의 의료 수요와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대륙과 남방 지역의

위생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농업토목과 신설은 식량증산의 일환인 토지개량사업에 종사할 고급기술요원 확보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리고 농학과와 임학과의 증원은 군수산업의 급격한 확장에 따라 군수와 식량증산에 필요한 고급기술요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신주백, 2001: 80).

고이소 총독은 1943년 7월 11일 학무 관련 모임에서 기존의 자유주의적 풍조 아래 대학의 학문 기능이 교육과 무관한 채 현실에서 유리된 '편지주의(偏知主義)'에 빠져 사회사상 혼미의 요인이 되었으며 전문 교육이 고도의 직업 교육에 편중하여 지도적 황국민 양성이라는 일본적 교학 본래의 사명에서 이탈했다고 비판했다(『매일신보』, 1943. 7. 16; 조선총독부, 1943d: 22~24). 교수들에게는 학문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면서 교수와 학생의 접촉 빈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고, 학도전시동원체제의 확립을 위해 조선 교학의 쇄신을 기하고 발랄하고 통제되는 전 학원(學園)의 행동 전개를 촉구했다. 그리하여 학교 체육은 전력 강화의 일점에 집중하고 보통전기(普通戰技) 외 항공, 기갑, 통신, 해양, 마사 등의 여러 종목에 걸친 특수 훈련까지도 실시했다. 나아가 고이소 총독은 군사기술의 발전을 위해 과학과 기술의 고도화·보편화를 전 학원에서 기도해야 할 상황이므로 전문학교의 과학 부문을 강화해야 함을 역설했다(『매일신보』, 1943. 7. 16). 그리고 학원 일부에 침투한 개인적인 자유공리의 사상을 불식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편협한 소민족주의', '천부(淺膚)한 공산주의'에 빠져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거나 기독교적인 영향 아래 '미영(美英) 맹배(猛拜)'의 관념을 품고 "불궤(不軌)를 기도하여 몸을 암흑계에 던지는 자들의 출현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고등교육일수록 교수의 학생 지도가 적어져 학생들이 '사상의 황야'를 방황케 했음을 비판했다. 이 회의에는 경성제국대학 총장, 법문학부장, 이공학부장, 예과부장, 법학전문학교장, 경성의학전문학교장, 경성고등공업학교장, 경성광업전문학교장, 수원고등농림학교장, 경성고등상업학교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관·공·사립 교장이 참석했다. 이어서 전시학도동원체제요강을 발표했다(『매일신보』, 1943. 7. 27).

나아가 일제는 1943년 10월 12일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방책'을 발표하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개편을 추진했다(『매일신보』, 1943. 10. 26). 이는 전쟁 수행력의 증강이라는 이름 아래 각급 학교에 대해 비상조치를 취한 것이다. 특히

경성제국대학과 전문학교에 관해서는 전시하의 노동력 수급을 위해 문과계를 축소하고 이공계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 방책은 당시 교육에 관한 그 어떤 규정보다도 우선하는 것이었다. 그 방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방침

현 시국에 대처하는 국내태세강화방책의 일환으로서 학교 교육에 관한 전시 비상조치를 강구하여 시책의 목표를 유구한 국운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당면한 전쟁 수행력의 증강을 도모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치

학교 교육의 전반에 걸쳐 결전하에 대처할 학행일체의 본의에 투철하고 교육 내용의 철저한 쇄신과 능률화를 도모하고 국방훈련의 강화, 근로동원의 적극 및 철저한 실시를 위해서 다음의 조치를 강구한다.

…

(5) 대학 및 전문학교

① 대학 및 전문학교에서는 징병적령에 달하지 않은 자 및 입영 연기의 조치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수업은 계속한다.

② 이과계 대학 및 전문학교는 이를 정비 확충함과 동시에, 문과계 대학 및 전문학교의 이과에로의 전환을 꾀한다.

③ 문과계 대학 및 전문학교는 징집 유예의 정지에 수반한 수업상의 관계, 방공상의 견지에 따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장소로 이전 정리를 한다. 사립의 문과계 대학 및 전문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의 정비 개선을 도모함과 함께 상당수의 대학은 전문학교로 전환시키고, 전문학교의 입학 정원은 대체로 종전의 2분의 1 정도가 되도록 통합 정리한다.

…

3. 교육 실천의 일환으로서 학도의 전시근로동원을 고도로 강화하여 재학기간 중 1년 동안에 대체로 3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이를 실시한다.
4. 재학 중 징집된 자의 졸업 자격 부여에 관해서는 특별한 취급을 고려한다.
5. 재학 중 징집된 자의 제대 후의 복학은 특별한 편의를 도모함과 함께, 그리고 통합·정리된 학교의 구 재학자의 경우는 임시로 필요한 시설을 강구한다.

6. 학교의 통합·정리에 수반한 교직원의 조치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배치를 도모하여 전환하는 학교 기타 필요한 부면에 충당하며, 특히 대학·전문학교 등의 교직원에 관해서는 가급적 그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7. 본 요강의 실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및 학과의 폐지·수업의 정지·정원의 감소·학교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제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8. 학교의 정리·전환·이전 등을 명했을 경우 정부는 보조 혹은 필요한 방도를 강구한다. 특히 사립의 이과계 대학 및 전문학교의 경우는 당해학교의 경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정부는 경상비에 한해서 적당한 보조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방책'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총독부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을 밝혔다.

① 경성제국대학의 예과는 문과의 정원을 감소하고 이과의 정원을 증가시킨다.
② 경성제국대학의 이공 및 의학 등 양부(兩部)의 정원을 증가시킨다.
③ 이과계 전문학교의 확충과 관련하여 기설의 이과계 전문학교의 학생 정원 증가 및 학교 신설 등의 적극적 조치를 강구한다.
④ 문과계 사립 전문학교의 이과계 전문학교로의 전환을 고려한다.
⑤ 문과계 전문학교는 적의(適宜) 이를 정리한다.
⑥ 문과계 여자전문학교는 그 교육 내용의 개선을 도모하고 여자 교원·여자 실무자 및 여자 지방 보도원(補導員)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⑦ 이과 교원은 극도로 부족한 현상을 감안하여 기설의 이과 교원 양성기관을 확충·정비한다.

이와 함께 남녀 문과계 전문학교에 대해 "법문계 전문교육으로 하여금 경제생산 부문의 사무담당 직원 및 대동아 여러 지역에 진출하여 건설공작에 정신(挺身)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각하(刻下)의 긴급한 국가적 요청에 부응시키기 위해선"이라는 취지 아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① 관립 전문학교인 경성법학전문학교와 경성고등상업학교는 모두 1944년부터 학

생의 모집을 정지하고 새로이 경성경제전문학교를 설립한다.

② 사립 전문학교인 보성전문학교·연희전문학교 및 혜화전문학교 등 3개교는 1944년도부터 학생의 모집을 정지하고, 새로이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 및 경성공업경영전문학교 등의 2개교를 설립한다.

③ 혜화전문학교와 명륜전문학교는 불교계 또는 유교계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색 있는 교육기관인 실정을 감안하여, 이에 수반된 선당적(禪堂的) 또는 학숙적인 인재양성기관을 별도 구상한다.

④ 숙명여자전문학교와 이화여자전문학교는 여자청년연성소의 전임지도양성기관으로 개조한다.

일제는 학교의 병영화 방침에 따라 이공계 이외 학과는 정리에 들어갔다. 이공과계 학교를 확충하고 법문과 계통 교육은 철저히 줄이기로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매일신보』, 1943. 10. 14). 10월 12일 '조선에 있어서의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 방침에 따라 법문과계 학생은 '공책과 연필 대신에 총과 괭이를 메고 전선으로 공장, 광산으로', 이공과계 학생들은 과학전사로서의 새로운 결의로 총진군할 것을 강조했다. 이른바 적전교육(敵前敎育)이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1944년 1월 22일에 이공과계와 사범학교, 2월 8일에 전문학교와 중등학교의 구체적인 교육방침을 발표했다(『매일신보』, 1944. 1. 23; 2. 9). 문과계 대학, 전문학교의 신입생 정원은 이공과계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1943년에는 830명, 1944년에는 610명으로 220명을 감축하는 대신에 이공과대학, 전문학교의 신입생 정원은 1943년에는 1,234명, 1944년에는 2,275명으로 1,041명이나 증가시켰다. 학무국은 또한 조선에 없던 전기화학과, 전기통신과, 공작기계과를 경성공업전문학교에, 금속공업과, 조선학과, 항공기계과는 신설된 평양공업전문학교에 각각 설치했다. 이는 전력 증강을 위한 이공과 계통 학생의 대량 양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매일신보』, 1944. 1. 25).

이러한 방책에 따라 법계통 학교의 학과 및 정원은 감소시킨 반면, 이공계 학교의 학과와 정원은 늘리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우선 1944년 4월 경성법학전문학교와 경성고등상업학교를 통합하여 '경성경제전문학교'로 개편했다(『매일신보』, 1944. 1. 23; 4. 9). 또한, 경성고등공업학교를 경성공업전문학교로 교명을 바꾸었고 6월에 학과를 증설하여 방직과, 화학공학과, 전기화학과, 토목과, 건축

과, 기계과, 원동기과, 전기과, 전기통신과의 9개 학과를 설치했다(이원배, 1991: 312). 이 가운데 전기화학과, 원동기과, 전기통신과는 신설된 학과였다. 특히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장이 교장을 겸임하던 관례를 바꾸어 중앙시험소 소장과 (후)경성공업전문학교 교장을 별도로 임명했다. 아울러 경성광업전문학교도 학과 명칭을 채광과, 야금과, 광산기계과로 개칭했고, 교과과정도 대폭 축소했다. 또한 이공계 전문학교와 사범학교를 신설했고, 일반 중등학교를 농업 또는 공업학교로 전환했으며, 이공학과를 증설하고 여자농업학교와 상업학교를 신설했다. 1944년 보성, 연희, 혜화, 명륜 등 전문학교의 학생모집을 정지시키는 한편 보성전문학교를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연희전문학교를 경성공업경제전문학교로 재편하고, 숙명전문학교와 이화전문학교를 여자청년연성소 지도원양성기관으로 전환했다.[1]

이어서 경성고등공업학교에 부속되어 있던 이과교원양성소가 1944년 4월 27일 경성제국대학에 이속되어 운영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1944. 4. 27; 조선총독부, 1944a). 그것은 경성고등공업학교가 이과교원양성이라는 추가 업무로 말미암아 본래 기능인 기술자 양성에 지장이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양성소에는 교수 10명, 조교수 5명이 배치되어 생도를 교육했으며 장소는 법문학부 교사의 1층이었다. [표 2-4-7]은 이과교원양성소 교과목 현황이다.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도의, 교련, 체조 등이 전공 교과목과 비교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매년 1,442시간 중 252시간이 배정되어 있어 그 비율은 17%를 상회하고 있는 셈이다. 이공계 교사 양성 교육도 군국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패색이 짙어오는 1945년 3월 18일 일제는 '전시교육특별조치요강'을 발표하면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학과를 전공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고등과 이상은 1년간 수업을 정지하기로 했다(『매일신보』, 1945. 4. 7). 이러한 조치는 고등교육을 비롯한 전 교육의 단절을 의미했다.

---

1 '관립공업전문학교규정'(부령 제260호), '관립농업전문학교규정'(부령 제261호), '관립의학전문학교규정'(부령 제262호), '관립경제전문학교규정'(부령 제263호)이 각각 공포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1944. 6. 30).

[표 2-4-7] 경성제국대학 부속 이과교원양성소 교과목 및 시수

수학과				물상과				지리과			
과목	1년 시수	2년 시수	3년 시수	과목	1년 시수	2년 시수	3년 시수	과목	1년 시수	2년 시수	3년 시수
도의	70	70	70	도의	70	70	70	도의	70	70	70
인문	70	35		인문	70	35		인문	70	35	
교련	112	112	112	교련	112	112	112	교련	112	112	112
체조	70	70	70	체조	70	70	70	체조	70	70	70
교육	140	70	70	교육	140	70	70	교육	140	70	70
교육	70	70	70	**교육**	70	70	70	**교육**	70	70	70
심리	70			**심리**	70			**심리**	70		
철학		70		철학		70		철학		70	
외국어	105	35		외국어	105	35		외국어	105	35	
수학	700	630	700	수학	210	70	70	수학	105		
강의 및 연습	700	630	630	물상	665	840	875	지리 · 지리연습	420	455	525
기구학			70	**물리**	190	210	140	역사 · 역사연습	175	175	175
물상	175	280	210	**화학**	195	140	175	지질광물 · 실험	175	175	175
물리	175	70	70	**지질광물**	70	70	70				
천문기상			70	**천문기상**			70	천문 · 기상			70
실험		210	70	**기계공작**		70		조경		35	
측량			105	**실험**	210	350	410	생물		70	
생물		70		생물		70		산업개론		70	70
교육연습			105	공업개론			70	교육연습			105
				교육연습			105				
계	연 1,442, 총 4,326 실: 1,015, 980×2 계: 2,975			계	연 1,442, 총 4,326 실: 805, 910, 935 계: 2,650			계	연 1,442, 총 4,326 실: 140, 70, 70 계: 280		

주: 진한 글씨는 실습시간으로 시수 제외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44. 7. 14.

제2절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한국인 학생의 활동

1) 전문학교 · 사범학교의 운영 실태

일제는 1938년 제4차 교육령을 제정·공포한 뒤, 여기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실행은 당시 전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배정과 학생·직원 정원에서 잘 드러났다. [표 2-4-8]은 일제가 '제3차 조선교육령' 제정을 눈앞에 둔 1937년 이래 1942년 '제4차 조선교육령' 직전까지 전신학교에 투입한 경비와 학생, 교직원 정원의 현황을 보여준다.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경우,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37년과 '제4차 조선교육령' 직후 1938년을 비교하면 학생과 교직원의 정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나 1936년과 1937년에 건물 신축이나 개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비가 대폭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수원고등농림학교 역시 여타 전문학교와 마찬가지로 시설 확충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특히 1942년에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가 1.5배에 이

[표 2-4-8] 1937~1942년 전신학교 경비, 학생 수, 교직원의 현황 경비 단위: 원(圓)

연도	수원고등농림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1937	271,818 (63:168/42)	143,360 (155:49/14)	156,851 (66:156/35)	392,415 (88:252/129)	97,199 (65:230/24)	336,469 (275:833/50)	361,772 (273:272/34)
1938	177,055 (65:178/46)	58,360 (158:44/14)	496,889 (96:215/41)	410,602 (86:251/129)	97,199 (67:228/24)	297,394 (347:840/55)	184,470 (432:354/35)
1939	173,490 (61:190/42)	60,288 (167:46/13)	349,800 (81:219/36)	378,280 (82:255/148)	96,633 (84:215/23)	255,667 (282:799/51)	188,768 (440:400/42)
1940	185,664 (65:196/44)	69,470 (150:65/13)	359,816 (95:271/50)	408,236 (79:266/150)	89,762 (94:222/24)	272,921 (399:700/50)	196,487 (477:563/31)
1941	207,585 (69:216/48)	65,056 (154:94/12)	297,121 (82:347/51)	554,917 (73:258/147)	100,491 (107:215/23)	396,621 (428:657/52)	243,264 (473:532/36)
1942	364,184 (79:246/61)	79,108 (137:122/13)	299,000 (80:425/64)	657,098 (70:272/151)	89,913 (96:238/22)	639,875 (459:641/54)	418,045 (430:479/43)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각각 한국인 학생 수:일본인 학생 수와 교직원을 가리킴.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경우 1933년부터는 부속실업보습, 교원양성소가 포함됨.

출처: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 연도.

르렀다. 이는 전시체제에서 식량 증산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938년 당시 일제는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벌였는데 그 중심 교육기관은 수원고등농림학교였다. 10월에는 중견청년강습회를 수원고등농림학교에서 개최했다. 1939년 2월에는 조선농학회를 창립할 정도였다(『동아일보』, 1939. 2. 11).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체 학생 정원이 증가함에도 한국인 학생의 증가율이 일본인 학생의 증가율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일제가 농업보다는 공업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펴는 가운데 일본인 학생들이 농업보다는 공업에 몰렸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반면에 경성고등공업학교의 경우도 수원고등농림학교와 마찬가지로 전체 정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한국인 학생 수의 비율이 1937년에 비해 1938년을 제외하고는 하향 추세다. 심지어 1942년에는 입학생 비율이 15.8%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경비는 1937년 이래 증감률이 일정하지 않지만 증가 추세다. 재정이 매우 부족한 1942년의 경비가 1937년 경비의 배나 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시설 확충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이듬해 전기과와 기계과를 신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동아일보』, 1938. 1. 11). 경성고등공업학교 역시 일본인 학생 위주로 학교를 운영했고, 예산 투입을 통해 학생당 경비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국가의 산업 발전과 연관이 있는 고등 기술이나 과학 그리고 실업교육을 한국인들에게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였다(정재철, 1989: 94).

경성법학전문학교의 경우, 교사가 광화문에서 청량리로 이전된 1937년 이후 경상비가 일정하게 배정되어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동아일보』, 1938. 1. 11; 1938. 3. 29). 다만 1942년에는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경비 역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성법학전문학교는 한국인 위주의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학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1939년에는 78.4%였지만, 1940년과 1941년에는 각각 69.8%, 62.1%로 감소되더니 1942년에는 52.9%로 내려앉았다. 자료 부족으로 원인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국인 학생들의 경제적 형편이 더욱 열악해지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경우, 1937년에서 1942년 사이에 학교 경비가 무려 70% 가까이 증가했다. 그것은 무엇보다 부속의원의 설비 확충이 매년 이루어져야 했

기 때문이다(『동아일보』, 1938. 1. 11). 반면에 한국인 학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1937년에는 25.9%였으나 1942년에는 20.5%에 지나지 않았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본인 중 많은 수가 일본 본국에서 시험을 치러 합격했다. 이러한 현상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제가 '제3차 조선교육령'을 제정·공포한 가운데 내선일체의 일환으로 학생 입학을 민족별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언명과 배치된다(『조선일보』, 1937. 7. 2; 『동아일보』, 1938. 3. 2).

경성고등상업학교의 경우, 1937년 이래 경비 금액이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그것은 전시체제에 들어가면서 학교 건물 이전의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은 데다가 전시체제에서 문과계라 할 상업학교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937년에는 22.0%에 지나지 않았지만 1941년에는 33.2%에 이르고 있다. 민족공학의 명분을 충족하는 가운데 일본인 학생들이 여타 학교와 달리 징병이 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경성사범학교의 경우, 같은 기간에 경비가 90% 이상 증가했고 한국인 학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일제로서는 이른바 의무교육을 통해 황국신민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학생들의 증가에 맞추어 교사 양성의 필요성이 컸다. 따라서 한국인 학생의 비율이 1937년에는 22.0%에 지나지 않았지만 1942년에는 41.7%에 이르렀다.

반면에 경성여자사범학교는 경성사범학교와 달리 경비가 증가하면서 한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다가 1940년대에 들어와 그 비율이 감소되기에 이르렀다. 자료 부족으로 원인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시체제 아래 여성 교육이 감소되는 추세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경성광산전문학교는 경비 금액이 1939년 136,726원에서 1940년 167,039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학생 수도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1939년에는 각각 53명과 88명이었으나 1940년에는 각각 147명과 11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교직원 수 역시 22명에서 3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1941년에는 각각 199,707원, 117명(한국인 학생)과 158명(일본인 학생), 교직원 38명이었지만, 1942년에는 각각 172,041원, 95명(한국인 학생), 174명(일본인 학생), 교직원 수 53명이었다.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경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한국인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일본인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다.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발발한 이래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경성제국대학 및 전문학교 입학에서 드러나는 한국인 차별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자유로운 입장에서 경쟁시켜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이에 따라 입학의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수차례 언명했다(『조선일보』, 1937. 12. 2, 1938. 3. 18; 『동아일보』, 1938. 3. 2). 이전의 민족 차별을 인정한 뒤 앞으로는 '내선일체'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확인한 바대로 5개 관립 전문학교에서 한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내선일체'라는 명분 아래 민족 평등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일본인 학생 위주의 차별적 운영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동화 논리는 민족 차별을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2) 한국인 학생의 학업과 활동

(1) 전문학교

◆ 학생들의 학업과 학생 문화

일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문학교 교과과정을 개편하고자 했다. 우선 일제의 대륙 침략에 맞추어 중국어 수요가 많아지는 데 반해 영어는 실생활에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공통적으로 중국어 시수를 증가하되 영어 시수를 단축했다(『조선일보』, 1938. 1. 16). 그러나 실상은 일제가 1936년 11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나치 독일과 방공협정(防共協定)을 맺고 이후 미국 및 영국과 적대 관계로 들어가면서 영어 시수를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 1939년 7월에는 영어를 경성제국대학 및 전문학교 입시 과목에서 제외했다(『조선일보』, 1939. 7. 15). 이유는 영어 학습이 단지 시험을 위한 학습에 지나지 않으며 나아가 '견실한 일본관'을 확립하고 '국민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영어 폐지가 학부형의 입시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에 나치 독일과 가까워지면서 독일어 시수를 증가시키기도 했다. 경성법학전문학교의 경우, 학교 규정을 개정해 '일본학'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추가하여 교장 자신이 강의하기 시작했다(『동아일보』, 1940. 5. 18). 또한 종래의 법률과 경제 등 각 과목의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러한 교과목 시수 변경은 여타 전문학교도 마찬가지여서 중국어

와 독일어는 각과 공통 과목이었다.

심지어 경성고등상업학교는 일제의 대륙 침략에 맞추어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어를 일본어보다 6시간이나 많은 14시간을 배정했다. 또한 1939년부터 상학과 경영학 과목을 축소하는 반면에 경제학 과목을 대폭 증가했으며 선택 과목에서도 중국최근사, 중국화폐금융론 등 중국 관련 과목을 대폭 확충했다. 이후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에 들어와서는 학교 설립의 목적과 대륙 침략의 추세에 맞추어 교과과정을 대폭 개정한 결과 조선어, 러시아어, 프랑스어를 폐지하고 대신에 일본산업론, 동아경제론을 신설했다. 물론 전쟁이 막바지로 이를수록 교련 과목이 대폭 증가하여 전공 선택 과목이 더욱 줄어들기에 이르렀다.

또한 일제는 입학제도 역시 손질하고자 했다. 필기시험을 통한 학력시험에서 벗어나 학교 추천서에 의해 근로와 교련 성적을 참작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매일신보』, 1944. 7. 7). 이러한 조치는 관립 학교만이 아니라 사립 학교에도 적용되도록 강요했다.

한편, 중일전쟁 직후인 1937년 11월 경성 각 관립 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에 학생 생활과 관련하여 각종 지시를 하달하기 시작했다. 우선 학무 당국은 각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단발령을 내리고 사치한 풍조를 일소한다는 명분으로 금주와 금연을 요구했다(『동아일보』, 1937. 11. 7). [표 2-4-9]는 당시 일제가 파악한 경성제국대학과 5개 관립 전문학교 학생들의 두발 상태를 보여준다.

[표 2-4-9]에 따르면 경성제국대학,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등 세 학교에서는 학생의 대부분이 축발, 즉 하이컬러 머리를 했다. 다만 수원고등

[표 2-4-9] 1937년 전신학교 학생들의 축발자(蓄髮者) 현황 단위: 명

학교	재적 인원	축발자	삭발자	축발자 비율(%)
경성제국대학 본과	415	399	20	98
경성제국대학 예과	449	조만간 실시 예정		
경성법학전문학교	203	186	17	91
경서의학전문학교	340	310	30	91
경성고등공업학교	217	180	37	83
수원고등농림학교	205	81	124	39
경성고등상업학교	287	245	33	88

출처: 『동아일보』, 1937. 11. 7.

농림학교 학생들은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에 일제는 11월 9일부터 일제히 단발하도록 하여 2,116명 중에서 1,406명의 새로운 중머리 학생이 나왔다. 이것은 관립 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에만 해당되었지만 곧이어 보성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 등 각종 사립 전문학교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역시 황국신민 양성에 목표를 두고 규율을 강화하려는 방침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일제 당국자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이들 학생이 청년의 모범으로써 스스로 그 생활을 철저히 개혁함으로써 일체의 유약한 "데카탄"적 기분을 일소하여 생활의 쇄신을 도모하고 내재한 강력적 국민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우선 종래의 과격한 장발을 군대식의 중머리로 하고 또 금주금연을 실행하자는 놀라운 운동이 벌어졌다(『동아일보』, 1937. 11. 7).

학생들에 대한 이러한 통제는 '강력적 국민정신을 표현'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특히 전 조선 관·공·사립 전문학교 학생들에게 검소한 풍기를 조장한다는 명분 아래 삭발령을 하달하기에 이르렀다. 『동아일보』는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을 두고 "90%의 하이컬러 머리를 빡조 흡연에 중독된 학생에 한하여서만 끽연면허장을 부여하기로 되어 한동안 신사 행세하던 전문대학생에게는 정말 비상시가 오게 되었다."라고 보도했다(『동아일보』, 1938. 1. 1).

1938년 6월 학무국에서는 경성부 내 전문학교 학생들을 긴장 분위기로 몰아가기 위해 전문학교의 주사를 불러 학원의 긴장을 촉진시킬 방책과 지도방침에 합의했다(『동아일보』, 1938. 6. 15). 학생들에 대한 규제의 범위는 신체와 복장, 사용하는 언어는 물론 학교 밖 일상생활까지 확대되었다. 예컨대 학생들은 일제의 훈시에 따라 군대식으로 두발을 삭발해야 했고 교복도 국방색으로 바꾸었으며(『매일신보』, 1939. 3. 12), 전문학교 학생들은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동아일보』, 1939. 5. 10). 심지어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는 "만약 가죽 가방을 들고 오는 학생이 있으면 적당히 처벌한다"는 규정을 학교 게시판에 공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는 학생들이 당국의 금지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나아가 이전에는 흡연이 학교 내 위험 지역에서만 금지되었지만 1940년에 들어와서는 학교 밖에서도 흡연이 금지되었고 음주도 마찬가지였다(『동아일보』, 1940.

3. 15).

이즈음에 제정된 경성법학전문학교의 '생도심득'은 일제 당국의 학생들의 일상생활 통제를 잘 보여준다(경성법학전문학교, 1941).

〈생도심득〉

제1조 본교 생도는 메이지 23년[1891] 10월 30일 교육에 관한 칙어 및 소화 14년[1939] 5월 21일 청소년 학도에게 내린 칙어를 마음에 깊이 새겨 잠시라도 이를 잊지 않아야 한다.

제2조 본교 생도는 다음의 게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항

1. 황국의 도에 기초한 국체관념의 함양, 인격의 도약 및 법률에 관한 학술의 깊은 연구에 노력한다.
2. 국가가 필요한 재주에 족하는 충량유위의 황국신민이 되기를 기한다.

제2항

1. 등교·하교 시에는 어진영봉안고(御眞影奉安庫)에서 경례를 한다.
2. 매일 아침 수업 시작 때에는 궁성요배 및 황국신민의 서사를 일제히 암송한다. 정오에는 황군무운장구 및 영령을 위해 묵도를 한다.

7. 두발은 환예(丸刈)한다.

8. 교내외를 막론하고 올바른 국어[조선어]를 사용하는 데에 노력한다.

10. 교내외를 막론하고 음주, 흡연을 할 수 없다.

이전의 '생도심득' 조항과 비교하면 바뀐 조항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조항의 대부분이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어진영봉안고'는 천황을 그린 초상화의 사진을 보관한 일종의 사당으로 교육칙어등본이 함께 비치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이곳에 경례를 하고 수업이 시작할 때에는 천황의 궁성이 있는 동쪽을 향해 요배를 해야 했다. 또한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마음을 다해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하고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다"는 내용의 황국신민의 서사를 수시로 암송해야 했다. 즉 이 시기 학교는 천황제와 관련된 각종 우상들과 그에 대한 숭배 의식으로 가득찬 일종의 종교적인 공간이 되었다. 또한 "교내외를 막론하

고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는 데에 노력한다."라는 규정은 학습 언어를 넘어 일상 언어에서까지도 일본어의 사용을 강요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일제는 1939년 7월 경성제국대학, 전문학교, 고등보통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된 조선학생정신연맹을 결성했다(『동아일보』, 1939. 7. 2). 그리고 각 학교에 지부를 설치했다. 여기에는 경성제국대학,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상공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광업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 불교전문학교 등이 포함되었다(『동아일보』, 1939. 7. 2). 이 연맹에서는 동아신질서 건설을 내걸고 국민정신총동원을 실시했다.

경성법학전문학교 교우회를 비롯한 각 학교 교우회도 전시체제에 들어가면서 조직이 변화했다. 조선총독부는 각 부문의 여러 운동을 통합하여 국민총력조선연맹을 결성하고 전쟁 수행에 총력을 결집하기 위해 국민총력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다(전상숙, 2004: 604~637).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각 학교의 교우회 조직을 교내 여러 단체와 통합하여 '국민총력○○학교연맹교우회'를 조직할 것을 강제했다. 1941년 6월 12일에서 20일 사이 이른바 "시국하 총후반도의 전문교육 쇄신책을 협의한다"는 이름 아래 경성제국대학 예과부장, 관·공·사립 전문학교장 회의를 소집한 조선총독 미나미는 훈시를 통해 교우회 재조직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내부적으로 종래 왕왕 청소년 학도를 오염시킨 그릇된 자치 혹은 자유주의를 철폐하고 학교장을 중핵으로 하는 강력한 신체제를 조직하여 거교일체(擧校一體), 사제동행(師弟同行), 황국신민으로서의 고도국방국가체제에의 참가를 기하고, 외부적으로는 국민총력운동의 일익으로 참가하여 각종의 시국행사, 증산계획 등에 참가함으로써 국민총력연맹원으로서의 책무 완수의 자각을 촉진함에 있다.
>
> 요컨대 각위의 주재하는 학교는 각각 전문적 입장을 가지며 또한 그 역사적 특성을 달리하는 것은 물론이나 직원과 학도로 하여금 충량한 황국신민이 되도록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 학교의 부동의 총칙으로서 일치하고 있다. 각위는 본직의 의도하는 바를 양찰하여 본 회동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교학진작에 매진하여 각교의 교풍강기의 발양에 노력하기를 바란다(『매일신보』, 1941. 6. 13).

그리하여 총독부의 계획에 따라 여러 관립 전문학교는 교우회를 개편했다. 경성법학전문학교의 경우, '국민총력경성법학전문학교연맹규약'으로 변경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성법학전문학교, 1941).

〈국민총력경성법학전문학교연맹규약〉

제2조 본 연맹은 국체의 본의에 기초하여 황도정신의 앙양, 심신의 단련, 국방 기술의 습득, 문화적 교양의 세련을 하여 내선일체, 협심육력(協心戮力)으로써 국방국가체제의 완성 및 동아신질서의 건설에 매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연맹은 경성법학전문학교 내에서 전 직원과 생도로 조직한다.

제4조 본 연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각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2. 체련부, 3. 국방훈련부, 4. 근로보국부, 5. 문화부, 6. 후생부, 7. 풍기부

제5조 총무부는 각 부서의 사업을 기획하고 일반사무와 회계를 담당하며 보도에 임무를 행한다. 본 부서에는 다음의 여러 반을 둔다.

1. 기획반, 2. 서무반, 3. 보도반, 4. 회계반

제6조 체련부는 강력하고 지구적인 심신의 연마에 힘써 국방의 기초적 연성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부서에는 다음의 여러 반을 둔다.

1. 검도반, 2. 총검도반, 3. 유도반, 4. 구기반, 5. 상박반(相撲班), 6. 강보반(强步班)

제7조 국방훈련부는 국방력의 기술적 훈련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부서에는 다음의 여러 반을 둔다.

…

제9조 문화부는 고매한 교양과 전아한 정조의 함양에 힘써 국민적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부서에는 다음의 여러 반을 두고 별도로 도서관을 설치한다.

1. 법제연구반, 2. 경제연구반, 3. 동아연구반, 4. 강연반, 5. 음악반, 6. 영화반

제10조 후생부는 보건, 위생, 피복학용품, 숙사, 학비 등 학생생활 전반에 걸쳐 지도, 감독, 알선에 힘씀과 동시에 신국민생활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풍기부는 교내 및 교외에서 풍기진작과 풍상쇄신(風尙刷新)을 도모하여 강건하고 도의적인 생활의 실천에 힘써 교풍의 작흥을 계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3조 이사장은 학교장이 맡아 본 연맹을 대표하고 각 부를 통할한다.

…

제17조 생도는 유지비로서 연액 18원을 수업료와 함께 분납한다.

…

제20조 본 연맹규약의 변경은 의견을 모아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생도는 모든 체련부 또는 국방훈련부의 어느 하나의 반에 속해야 한다.

이처럼 교우회가 전시국방국가체제에 부합하도록 재조직됨으로써 연맹의 규약상 학생들은 체련부나 국방훈련부 중 어느 하나의 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또한 실전적인 국방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들은 추운 겨울에도 점심시간 전 약 20분 동안 교장 이하 전 교직원과 함께 교정에서 나체로 체조를 하기도 하고, 각 학년 대항으로 교련, 총검도, 검도 경합을 수시로 벌였다(『매일신보』, 1942. 1. 5).

교우회 내부의 풍기부는 동료 학생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고 밀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즉 일제는 이를 통해 일본 정신의 철저한 수양, 국방력에 필요한 기초 체련, 전력 증강을 위한 국방훈련, 견인지구와 인고단련의 근로보국, 황국신민화의 교풍진작 등을 성취하고자 했다(손종현, 1993: 284). 이어서 교우회가 연맹으로 개편되면서 임원회에 대한 조항은 사라졌다. 이전에 학생들은 간사로서 교우회의 의사결정에 일부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후 연맹의 규약에 대한 변경은 전부 학교장의 권한이었다. 즉 연맹은 학교장의 집권적인 통제방식 아래 관리되었고 학생들은 회비 납부의 의무 외에는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했다(손종현, 1993: 282~283).

교우회가 이처럼 변질되면서 전문학교연합체육대회의 성격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전문학교학생연맹의 주최로 전문학교연합체육대회가 개최되었으나 1941년 교우회 조직 개편 이후에는 조선체육협회가 대회를 주최했다. 제1회 대회는 1941년 10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열렸는데 대회 명칭은 '조선학생전력증강종합체육대회'였다(『매일신보』, 1941. 10. 7). 이 대회는 전문학교 이상 학생들이 참가했는데, 학생들의 국방전력을 연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여기에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와 예과를 비롯하여 관립 전문학교와 공·사립 전문학교 학생들 3,000여 명이 참가했다. 당시 일제는 이러한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장차 국가의 중견으로서 사회의 지도자가 될 경성제국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 국방사상을

함양하고 체육단련을 국방 목적에 합치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매일신보』, 1942. 6. 18). 따라서 대회의 종목도 무도(검도, 유도, 총검, 상박), 국방훈련(활공, 기계훈련, 국방경기 등), 운동경기(육상, 수상, 축구, 농구 등)의 세 종목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매일신보』, 1941. 10. 7,「국방체육의 제전」). 특히 스스로 밝힌 바대로 무도와 국방체육에 중점을 두었다. 그 주최는 교우회가 아니라 조선체육협회여서 자치적인 성격이 사라졌다. 이어서 조선학교체육위원회가 창설되고 여기에 대학 전문의 체육진흥회지부가 설치되었다(『매일신보』, 1942. 6. 22). 여기서는 체육대회에서 공을 사용하는 구기를 폐지하고 수많은 사람이 출장할 수 있는 국방경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매일신보』, 1942. 6. 22). 명칭도 국방체육에 맞게 바뀌었다.

그 결과 제1회 대학전문학교종합체육대회가 6월 21일부터 개최되었다. 출전 선수가 3,500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선수 본위의 경기를 폐지하고 전 학생을 경기에 참가시키자는 새 지도방침 때문이었다. 경기 종목은 국방경기, 수영, 활공, 유도, 씨름 등으로 전부가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적을 이기고야 말 필승의 국방전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전시색이 농후한 경기는 더위를 무릅쓰고 진행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전래 행사들이 대거 폐지되고 새로운 종목들이 대신했다.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경우, 연중행사로 봄·가을 2회 운동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때 농악놀이와 가장행렬, 조선학생역전경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으나 1941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까지는 정상적인 운동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대신 승마, 검도, 사격 등 전쟁과 관련되는 괴외 활동만 허용되었다(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80년사편찬위원회 편, 1986: 56).

아울러 경성제국대학 및 전문학교 학생 1만 명은 방학 때 조선신궁에 가서 봉사하도록 했다. 제1회는 7월 하순 10일간, 제2회는 8월 하순 10일간이었다(『매일신보』, 1942. 7. 5). 이들 학생은 조선신궁의 참도(參道)와 경내의 각처에서 땅을 고르고 돌을 운반하여 경내를 한층 삼엄하게 하는 근로 작업이었다. 일제의 언급대로 그 취지는 단순히 근로 작업을 수행하기보다 땀을 흘리는 실천을 통해 '비상시 학도로서의 굳은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자는 것이었다.

이어서 1942년 7월 27일 이른바 총력연맹운동의 별동대로서 전선대학전문학교학도총력위원회(全鮮大學專門學校學徒總力委員會)가 경성제국대학 본과와 예과,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등

각 관·공립 전문학교 학도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일제는 제1차 사업으로 동년 가을 대표자 60여 명을 전후 1주일간에 걸쳐 교학연수소에서 합숙 연수한 뒤 점차 확대하여 총후 학도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경성부 내를 비롯한 전선 각지의 중요 관·공·사립의 남녀 전문학교 이상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켰다(『매일신보』, 1943. 2. 17).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연성회, 강연회, 좌담회, 음악회 또는 그 밖의 행사를 통해 활발한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철저적 단결'을 통한 '내선일체'의 추진, 각 학교 공동의 문화적 사업을 통한 '총후학원태세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일제로서는 한국인 학생들의 협력 없이는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양 민족 학생의 단결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41년 7월 12일 이들 특기반과 일반반은 오후 1시 조선신궁에 정식 참배를 하고 나서 황국신민서사 석주(皇國臣民誓詞柱) 밑에서 선서식을 거행했다(『매일신보』, 1941. 7. 11).

한편, 전시체제에 들어가고 물가가 앙등하면서 학생들의 중도 퇴학이 늘어났다. 생활비를 살펴보면 하숙비와 구두 가격, 양복 가격이 각각 1.2할, 6할, 3할이나 증가했고 노트, 잡화 가격이 모두 올라 종전대로 40원 내외의 학비로는 도저히 학창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동아일보』, 1938. 6. 8). 1938년 1월부터 6월 상순까지 경성부 내 전문학교 이상 학생 중 퇴학, 휴학 제명 학생은 [표 2-4-10]과 같다.

[표 2-4-10]에서 수치로 표시된 퇴학생 중 2, 3명은 신병 때문이고 나머지는 모두 집안 형편이었다. 휴학생의 대부분은 신병요양을 목적으로 휴학했으며 그 중에는 학업을 단념할 용기가 없어 신병을 핑계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제명된 학생 중에는 진급하지 못한 채 학교에 나오지 않아 제명당한 '텅빈 머리'의 소유자도 있으나 수업료를 변출하지 못한 학생과 가사 관계로 그만두면서도 퇴학원,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이화여자전문학교 학생 중에는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어 학원으로부터 영원히 취직하는 이른바 '꼴인'한 학생도 많았다. 당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수재들이 물가고로 학업을 중지하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료는 이후에도 여러 요인으로 인상되었다. 1943년 2월 경성제국대학 예과와 관립 전문학교는 수업료를 인상했다. 그 명분은 '반도교학쇄신(半島教學刷新)', '결전학원체제확립(決戰學園體制確立)'을 기하는 동시에 일본 내 수업료

[표 2-4-10] 경성부 내 13개 전문학교 학생 중 퇴학 제명 현황(1938. 1~6) 단위: 명

학교	퇴학	휴학	제명
경성고등공업학교	6	2	-
경성고등상업학교	5	4	-
경성제국대학 예과	1	8	-
경성제국대학 본과	4	1	-
이화여자전문학교	5	5	19
보성전문학교	4	1	5
경성법학전문학교	-	1	-
세브란스전문학교	-	-	-
경성의학전문학교	7	13	-
경성약학전문학교		미상	
연희전문학교	18	6	16
중앙불교전문학교	1	1	7
경성치과전문학교	21	7	11
계	72	49	58

출처: 『동아일보』, 1938. 6. 8.

와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 아래 수업료가 결정되었음을 강조했다. 그 결과 1943년 4월 1일부로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경우, 1년 수업료가 75원에서 80원으로, 전문학교는 50원에서 80원으로 인상되었다(『매일신보』, 1943. 3. 23). 다만 새로이 전문학교로 승격되는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는 학생 모두가 관비생이므로 이 수업료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밖에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식량 사정이 악화되면서 학생들의 식량 부족은 물론 학생 하숙난이 심해져 갔다(『매일신보』, 1941. 6. 27). 당시 큰 방에는 5~6명씩, 작은 방에는 3~4명씩 하숙하여 위생상 위험했고 하숙비가 나날이 인상되었던 것이다(『매일신보』, 1942. 2. 28). 심지어 하숙집이 모자라 비싼 여관에 투숙하여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전문학교 학생들도 속출했다(『매일신보』, 1941. 7. 19). 그런데 이러한 하숙난은 단지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는 차원에 국한되지 않았다. 일제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하숙난으로 인해 학생 훈련과 사상 선도가 요원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에 학무 당국과 관련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현황을 조사한 뒤 각 학교의 자구 노력과 사회 유지들의 지원에 힘입어 공동 합동기숙사 등 다

양한 형태의 기숙사를 증설함으로써 보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이른바 자유주의 사상을 일소하고자 했다(『매일신보』, 1941. 8. 12; 11. 5). 그 결과 경성학료경영주식회사(京城學寮經營株式會社)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회사는 청량리에 600명을 수용할 제1호 학료를, 명륜정과 성북정 사이에는 300명을 수용할 제2호 학료를, 효자정과 세검정 부근에 300명을 수용할 제3호 학료를 건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시체제에서 궁핍한 재정과 부족한 물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난망이었다.

◆ 학생들의 저항

일제는 한국인들이 전시체제 아래 후방에서 저항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물샐틈없는 감시와 통제를 가했다. 그러나 전시체제 속에서 다수의 한국인 학생들은 해방을 전망하면서 저항의 대열에 합류했다.

우선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박도명 등 5명은 1937년 '한글연구회'를 조직하여 여기에 동료(東寮)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학생들을 가입시켰다. 이들 주동자는 조선어 폐지에 맞서 조선문화와 조선어를 지키기 위해 한글연구회를 조직한 것이었다(문한별, 2014: 352~357). 이러한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동자의 자백대로 민족의식의 앙양과 조선민족의 독립인 셈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동료 학생들과 함께 농촌 계몽과 관련하여 한국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거나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인 작가들의 문학 작품을 윤독하고 토론했다.

1940년 9월 경성법학전문학교 출신의 윤명의(尹命儀), 조재옥(趙載鈺), 조희영(趙僖英)은 박헌영이 이끌었던 경성콤그룹에 가입하면서 학생 부분 조직사업이 본격화되었다(신주백, 1991: 278~279). 특히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와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일부 학생은 경성콤그룹 이종갑(李鍾甲)의 지도 아래 독서회 활동을 전개했다(강만길·성대경, 1996). 이러한 독서회에 가입한 학생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이진영(李軫榮), 망오치국(亡吾治國), 유태진(柳太璡), 방인식(方寅植), 최일근(崔一根) 등이며, 경성고등공업학교는 방용모(方容模), 주홍성(朱紅星), 김효직 등이었다. 그 밖에 보성전문학교는 김상준, 여권현, 김순원 등이며, 연희전문학교는 심재봉, 임순섭 등이었다. 이들의 활동은 일제의 촉수에 걸려 좌절되었지만 많은 학생이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일부 학생들은 비밀결사단체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에 적극 나섰다. 흑백당(黑白黨)의 항일운동은 엄혹한 통제 속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학생운동으로서 경성사범학교 학생들이 가담했다.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제의 통제와 훈육으로 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흑백당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고자 했다. 경성사범학교 학생인 김성근(金盛槿)과 이경춘(李慶春)은 1939년 경복중학교 학생인 이현상(李賢相) 외 10명과 같이 조국광복운동(祖國光復運動)을 결의했다. 1941년 9월 독립운동단체인 흑백당을 창당하여 특공대를 조직하고 소총 2정 등 무기를 확보한 후 이광수, 최린 등의 반민족배와 일본인 고관 등을 암살하며 악질 일인의 주택가를 방화하고, 전단을 살포하며 학병징집을 반대하는 등의 일을 도모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1944년 12월 6일 대전지법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받았다[경성사범학교 학생의 흑백당 가담 사건 판결문(공훈전자사료관); 김호일, 2005: 346~359]. 특히 흑백당은 중앙상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했다.

> 첫째, 학병을 결사적으로 거부한다.
> 둘째, 학병이 현재는 인문계 학생만이라고 하지만 머지않아 이공계도 해당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일부는 국내에 남고 일부는 충칭임시정부에 망명하여 광복군에 입대, 광복군이 국내 진공 시 국내 잔류파와 호응해서 투쟁한다.

이러한 결의는 일시적인 저항이 아니라 국내외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장기적인 투쟁에 돌입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이러한 저항이 일제의 엄혹한 감시로 실패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았다. 일부 학생들은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가운데 비밀결사를 조직하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경성약학전문학교 축구부 학생들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941년 2월 12일 축구부 총회를 개최하여 간부를 선출하고, 한국인의 국기라 할 축구부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고, 축구와 상관없이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을 축구부에 서약서를 받아 가입시키기로 했으며, 조직의 강화를 위해 비용을 모금했다. 그러나 1941년 10월 이러한 회합이 발각되어 14명의 학생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의 취조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표 2-4-11]은 1941년 취조를 받은 경성약학전문학교 축구부

[표 2-4-11] 194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성약학전문학교 축구부 학생 현황

성명	입학 연도	졸업 연월	비고
위선환(魏善煥)	1938	1941. 3	
김시연(金蒔淵)	1938	1941. 3	
오상흠(吳相欽)	1938	1941. 3	
오은성(吳恩星)	1938	1941. 3	
박중호(朴中鎬)	1938	1941. 3	
김승만(金承萬)	1939	1945. 9	주장
장원흠(張源欽)	1939	중퇴	감독
김유철(金裕哲)	1939	중퇴	
황자영(黃自英)	1939	1944. 9	
김순덕(金淳德)	1939	1943. 9	
송웅규(宋雄奎)	1940	1944. 9	2학년 지도원
박한덕(朴漢德)	1940	1943. 9	
김영수(金永壽)	1940	1943. 9	
김철용(金喆龍)	1940	중퇴	1학년 지도원

출처: 「축구를 표현단체로 하는 민족적 비밀결사 발각에 관한 건」 경서경고비(京西警高秘) 제6465호의 2(1942. 3. 13);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경서고비 제1459호, 경성약학전문학교 학생사건 송국에 관한 건(1942. 3. 24)」, 『사상에 관한 정보(경찰서장)』.

회원들의 현황이다.

이들 축구부 회원은 오랫동안 축구 훈련과 경기를 통해 모교 축구부의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주장 위선환을 비롯한 다수의 졸업생들이 민족운동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매일신보』, 1941. 2. 19).

그 밖에 다수의 한국인 전문학교 학생들은 일제의 학도병 강요와 징용으로 제대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거나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나머지 생존자들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노력했다. 1936년 졸업생인 이남순(李南淳)은 도쿄제국대학에 진학하여 1943년 한국인 최초로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다(『매일신보』, 1943. 11. 16). 그는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한 직후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인수했을 뿐더러 부산 전시연합대학 시절 사립서울약학대학을 서울대학교로 편입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경향신문』, 1974. 4. 3, '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160〉'; 『경향신문』, 1979. 10. 19, '사우(思友) 잊을 수 없는 그때 그 친구〈24〉'].

(2) 경성제국대학

◆ 일상생활과 사상 통제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었다. 하지만 대학 학생들의 통제는 이미 193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대학과 전문대학에 좌경사상의 전파를 막기 위해 사상 감독관으로 예과에는 학생주사, 본과에는 생도주사 1명과 학무국에도 전임직원을 배치했다(『동아일보』, 1933. 8. 30). 1935년에는 전문학교 학생감회의에 학생감, 보도회(輔導會) 주사, 경찰서 고등계 주임 등이 모여서, 풍기와 사상 관계 학생의 퇴학·정학은 학교와 경찰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엄중히 단속할 것을 밝혔다(『동아일보』, 1935. 10. 27). 1936년 황국신민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학에도 국체 관념을 적극적으로 주입했다. 5월 15일에 하야미 히로시(速水滉) 총장, 법문학부, 의학부의 학부장 등 19명의 교장이 참가하여 '대학·전문학교 교장 교육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국체 관념을 명징하고 국가 사회의 실정에 적응한 인물을 배양할 것"을 결의했고(『매일신보』, 1936. 5. 9), 이 자리에서 우가키 총독은 "국가사상의 함양, 국체 관념의 양성이 목적인 대학에서 그 교육이 이를 실현하지 않고 원리의 주입과 이론의 기억만 강조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적 능력과 국가 흥패의 핵심인 인격의 도야에 노력해야 한다. 또 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이 아닌 현실에 필요한 교육을 강조하고, 전시에는 국체 관념을 전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국민임을 자각하여 이를 학생과 생도의 뇌리에 주입시키는 교육을 할 것"을 훈시했다(『매일신보』, 1936. 5. 16). 그리고 제국 전체에 사상 통제를 통일하기 위해 1938년 6월 문부성에서는 16~18일 직할 학교 학생생도주사회의를 개최했고, 경성제국대학 관계자도 참석했다(『동아일보』, 1938. 6. 3).

전시동원체제의 확립은 대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1940년 10월 조선총독부에서는 황국신민화정책을 실현시키고 전시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인 '국민총력조선연맹'을 결성했다. 1941년 4월에는 경성제국대학에도 학우회를 대신하여 그 하부 조직으로 '국민총력경성제국대학연맹'이 결성되었다. 대학 동맹의 연맹규약은 "대학령의 본지에 따라 본학의 사명을 감안하여 전학일치(全學一致), 심신연마(心身研磨), 교양의 향상, 단체정신의 발휘에 노력하여 국가유위의 지도적 인격을 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실제로는 중앙집권적 통제로 학생들의 교육, 연구, 문화 활동 전반에 대한 집단적 감독을 시도했다. 각 학부는 학

생 10명과 지도교관 1명을 1조로 구성했으며, 학생들의 활동도 문화사업과 단련사업에 소속되었다. 문화사업은 대륙연구부, 사회조사부, 위생조사부, 방공조사부, 수양부, 문예부, 음악부, 연극영화부로, 단련사업은 무도부, 국방훈련부, 연기부(錬技部), 체육부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학생 활동 조직은 학생 중심의 연구·조사사업을 활성화하기도 했지만, 제국대학 특유의 교양문화를 말살하고 자유로운 사고의 기반을 없애버렸다(정준영, 2009: 226~227). 1941년 10월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경성제국대학은 3월, 12월 그리고 이듬해 9월에 졸업생을 배출했다. 10월에는 학생총력대를 결성하고, 12월에는 '국민근로보국령'을 공포했다. 1942년 9월에는 임시로 예과 교육을 6개월 단축하고, 1943년부터는 3년을 2년으로 단축했다(이충우·최종고, 2013: 311).

이 시기에 들어서면 자유주의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하여 금주, 가죽가방 사용 금지 등의 훈시가 계속되었고, 가장 심한 것은 교련시간의 단발과 창씨개명 강요였으며, 그 이전의 약간은 관용적인 방침도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전쟁이 지속되자 학생들의 모든 것을 규제했다. 우선 중학교와 전문학교 정문에는 천황 사진을 걸어두고 참배하도록 했는데, 예과에도 그렇게 되자 학생들은 이를 피해 일부러 뒷문으로 다녔다. 조선총독이 대학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도열해서 환영하지 않았으며, 조용한 도서관에서는 발소리를 죽이고 지나간 적도 있었다(이충우·최종고, 2013: 313). 경성제국대학 학생문화단체에서는 시국의 정신을 일반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전시회를 개최하고 입장료는 황군위문금으로 보내기로 했으며(『동아일보』, 1937. 11. 11), 경성제국대학생 등 3만여 명은 칙어봉대(勅語奉戴)를 기념하여 시가행진에 동원되기도 했다(『동아일보』, 1940. 5. 23).

1937년 11월 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에 단발령 및 금주·금연을 강제했다. 학무국장은 "장발은 사치, 퇴폐로 보이며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복장부터 간소강건(簡素剛健)해야 하며, 이는 비상시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외면만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간소강건해야 함"을 강조하여 관립 전문학교 학생 전체 2,116명 중 1,406명이 일제 단발을 하여, 이후는 장발이 없을 것을 기대했지만 경성제국대학 학생은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동아일보』, 1937. 11. 7, 9, 11). 1940년 시오바라 도키사부로(鹽原時三郎) 학무국장은 '학생, 생도의 기풍진작에 관한 건' 통첩으로 금주와 금연을 지시하고 엄중히 단속하도록 했다(『동아일보』, 1940. 2. 22). 그러나 1941년까지는 단발을 강제하지 않아 한국인 학생은 핑계를

대고 하지 않았다. 급기야 학생감 와타나베 도운(渡邊洞雲)은 머리로 학생을 구분하기도 했는데, 이에 반발했던 정방훈 등 한국인 학생들은 퇴학 조치를 당했다. 심지어 법문학부의 니시하라 간이치(西原寬一, 상법) 교수는 단발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을 금지해서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오타카 도모오(尾高朝雄) 같은 교수는 솔선해서 단발하기도 했다(이충우·최종고, 2013: 288~290).

1944년 5월 2일에는 예과 20주년 기념식이 예정대로 개최되었다. 당시 학생들의 평일 일과는 오전 수업과 오후 실습을 기본으로 했는데, 주 2일은 군사훈련·근로봉사를 해야 했다. 예과생은 김포비행장 건설에 동원되었는데, 1945년이 되면서 예과 2학년은 함흥의 공장으로 분산되었다. 여름에는 방공호 정리 작업을 했고, 게릴라 훈련도 했다(이충우·최종고, 2013: 334~336).

◆ 군사동원과 민족운동

1943년 8월에는 한반도에도 징병제가, 1944년 1월에는 학병제(學兵制)가 시행되었다. 한국인 학생 징집에 대한 첫 공식 발언은 경성제국대학 졸업식장에서 나왔다. 1943년 9월 30일 법문학부 제16회 졸업식에서 고이소 구니아키 총독은 "조선 학생도 군문에 지원할 수 있는 영광을 부여한다"며 "다만 당국의 알선으로 산업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1943년 11월 5일 당시 야마가 신지(山家信知) 경성제국대학 총장대리는 법문학부 학생들의 '출진학도 장행회'에서 "대동아전쟁은 물적 전력을 과시하는 미영의 총반격으로 시시각각 처절무비한 결전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반도인(한국인) 학생 제군은 지금까지 받은 교육으로 반도가 나갈 길이 오직 반도인이 황국신민으로서 육성되고 도의조선을 확립하며 천황의 품 아래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절대적인 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훈화했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는 1943년 7월 27일 자 기사에서 "반도 250만 학도들에게 돌격명령이라고 할 '전시학도 동원체제확립 요강'이 마침내 내려졌다. 광영의 징병제와 해군특별지원병제 실시의 역사적 감격을 앞두고 대기의 자세를 취하고 있던 반도 학원(學園)에도 이제야말로 우렁찬 진군의 나팔소리가 힘차게 울리였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1944년 3월 20일 자 『매일신보』는 구체적으로 총독부가 19일에 발표한 '학도동원 실시요강'을 보도하면서 4월 신학기부터 국민학교 4학년 이상부터 1년에 4개월을 기준으로 '근로동원'하며 연인원이 1억 2,0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

했다(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 편, 2004: 215~216).

전쟁의 지속으로 일제는 극심한 병력 자원 부족을 겪고 있었는데, 1943년 9월 동맹국의 한 축이었던 이탈리아가 항복하자, 급기야 '육군임시특별지원령'을 공포하여 한국인의 입대를 강요했다. 동원 대상은 주로 법문학부의 한국인 학생들이었다. 한국인 학생들은 허약 등을 이유로 학병을 거부하기도 했고 징병을 피해 몸을 숨기기도 했다. 식민 당국은 교수들을 동원하여 권유하거나 부모를 윽박질러 지원을 강요했다. 징병자들은 1943년 12월 훈련을 받고 1944년 1월 배치를 받았다. 경성부민관에서 징병장행회(徵兵長行會)가 개최되었는데, 총독이 연설하는 중에 일부 학생이 "학병으로 전쟁에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치자. 그다음에는 우리 민족에게 자치권을 주고 앞날을 보장하겠느냐"고 소리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이충우·최종고, 2013: 318~324).

의학부는 전체가 전쟁에 동원되었다.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은 연구 동원 체제에 편입되었다. 연구 주제는 전쟁에 응용 가능한 주제로 한정되었다. 의학부 제1연구반의 과제는 [표 2-4-12]와 같았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 1978: 79).

방학이 되면 의학부 교수들은 성대인술부대(城大仁術部隊)를 결성해야 했다. 조선총독부 및 외무부의 지원을 받은 인술부대는 1939년 3~4월 만주 및 간도에 파견되어 의료 활동, 풍토병 등 과학적 조사를 수행했으며(『조선일보』, 1939. 3. 15), 한국인 김용필, 홍학진, 황용수 등도 여기에 참가했다(『매일신보』, 1939. 3. 19). 1940년 11월 만주에서 페스트가 퍼지자 군부는 방역부대 119명을 조직했는데, 경성제국대학에서도 78명이 참가했다(『매일신보』, 1940. 11. 2). 또 경성제국대학과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국방상 중요한 가스방호와 위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을 과외로 개설하고 군의를 파견했다(『동아일보』·『조선일보』, 1937. 12. 10). 1943

[표 2-4-12]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제1연구반 구성 단위: 명

과제명	반장	반원	과제명	반장	반원	과제명	반장	반원
항공의학	大澤	12	말라리아	小林	6	작업능률	大塚	7
결핵	岩井	16	나병	北村	7	영양	和泉	1
실지(實地)의학	本名	6	페스트	篠崎	7	근시	今村	5
고지(高地)의학	德光	2	발진티푸스	工藤	4	류머티즘	和泉	1
혈액·수혈	佐藤	6	생약	大澤	2	14과제	12명	82

출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1978: 79).

년 4월, 5월 의학부는 학생들을 제1, 2진을 편성하여 식량증산을 위해 수원 서호 농사시험장에서 준설 작업을 해야 했으며, 6월부터는 기초·임상 의사들도 동원체제에 투입되었다. 1944년 3월에는 의학부 학부생 전원을 군위생 간부로 입대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 1978: 79~80).

이공학부의 경우에도 의학부와 마찬가지로 교수진은 연구동원체제, 학생들은 후방 기술지원동원체제에 투입되었다. 교수진의 연구반으로는 '조선희귀원소의 개발이용반[이와세 에이이치(岩瀨榮一) 교수, 반원 5명], 레이더연구반[다카다 미노루(高田實), 반원 6명], 경금속연구반[후지오카 다다히토(藤岡忠仁) 교수 반원 3명], 콘크리트 구조물 급속시공[신고 고이치(新鄕高一), 반원 6명], 코발트선광제련[다마루 간지(田丸完爾), 반원 7명], 카바이트유기 합성[다카하시 다케오(高橋武雄), 반원 5명], 관개용 저수지[나가이 슈시치로(永井莊七郎), 반원 1명]' 등이 있었다. 또한 이공학부의 교실은 관동군의 하청연구소 역할을 수행하여, 1944년에는 '대전차로켓트포의 연구, 로켓탄약 원료인 농축과산화수소수 안정제, 항공기의 재료인 가볍고 강한 알루미늄, 석유 대체연료' 등에 대한 연구 개발에 투입되었으며, 비밀리에 원자탄 제조를 위한 방사성 물질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이성규, 2005: 20~24). 일본인 학생들이 대거 징병되면서 연구 보조 인력이 부족해지자, 경성제국대학은 1944년 10월 수업료를 내지 않고 급료를 받는 대학원 특별연구생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전쟁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인을 기피했지만, 나중에는 인력 부족으로 고등여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여성을 채용하기도 했다. 해방 당시 20명 정도가 이공학부에 근무하고 있었다(김근배, 2005: 473~475).

학병징집을 회피한 학생은 징용으로 노무 작업에 투입되었다. 1944년 초 징용된 학생들은 경기도 노무과를 거쳐 태릉의 지원병 훈련소에서 2주간 호된 훈련을 받았다. 징용학생은 모두 120여 명이었는데, 황해도 해주·봉산, 함경도 원산 등지의 시멘트 공장에 배치받았다. 징집을 기피해 도주한 학생들은 더욱 심한 고생을 하기도 했다. 고석구(高錫龜)는 철공소에 취직했다 잡혀 유치장에 8개월이나 갇혀 있었으며, 김평옥은 만주로 도망하려다가 국경 근처에서 잡혀 낮에는 노동, 아침저녁에는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다(이충우·최종고, 2013: 325~327). 학병지원 대상이 된 법문학부 학생들은 전선에 투입되어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충우·최종고, 2013: 327~331).

• 참고문헌

자료

『각성호외보(覺醒號回報)』, 『경성일보』, 『경성제국대학일람(京城帝國大學一覽)』, 『권업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반도의 목탁』, 『신한국보』, 『신한민보』, 『조선일보』,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중외일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_view.asp).

조선총독부 자료

조선총독부 경무국, 1929, 『조선에서 동맹휴학의 고찰』.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 편, 1915, 『조선교육요람(朝鮮教育要覽)』,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

조선총독부 문서과, 1922, 「임시교육조사위원회(臨時教育調査委員會)」, 『조선』 85.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 1926, 『조선교육요람(朝鮮教育要覽)』, 조선총독부 학무국.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 1990, 『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영인본), 대학서원.

조선총독부, 1912, 『조선총독부시정연보(朝鮮總督府施政年報)』.

조선총독부, 1915, 「조선총독부의원부속의학강습소교육상황」, 『조선휘보』, 10월호.

조선총독부, 1921, 『관립학교장과 공립고등여학교장 회의자문사항답신서』.

조선총독부, 1936a, 『조선산업경제조사회회의록』.

조선총독부, 1936b, 『수원고등농림학교부지성토공사사양서(水原高等農林學校敷地盛土工事仕樣書)』.

조선총독부, 1936c, 『수원고등농림학교부속교원양성소관사기타전등공사』.

조선총독부, 1936d, 「역사적 의의를 보여준 조선산업경제조사회」, 『조선』, 11월호.

조선총독부, 1937, 『수원고등농림학교부속교사증축기타공사설계도』.

조선총독부, 1938, 「학생생도의 애국노동봉사작업실시」, 『문교의 조선』 155, 7월호.

조선총독부, 1943a, 「대학전문학교생도 전시식량증산출동계획」, 『문교의 조선』 210, 4월호.

조선총독부, 1943b, 「대학전문학교생도 전시식량증산출동상황(그 1)」, 『문교의 조선』 211, 5 · 6월 병합호.

조선총독부, 1943c, 「대학전문학교장사무타합회에서 총독훈시」, 『문교의 조선』 213, 8월호.

조선총독부, 1943d, 「대학전문학교장 사무타합회 지시사항」, 『문교의 조선』 213, 8월호.

조선총독부, 1943e, 「육군특별지원병임시채용규칙」, 『문교의 조선』 216, 11월호.

조선총독부, 1943f, 「수양연성의 철저적 실천요강」, 『문교의 조선』 209, 2월호.

조선총독부, 1943g, 「시국즉응의 학교태세정비강화요항」, 『문교의 조선』 209, 3월호.

조선총독부, 1944a,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에 관한 건 통첩 각도지사, 각도직할학교장에게(소화 19년 3월 18일)」, 『문교의 조선』 222, 5월호.

조선총독부, 1944b, 『조선사정』.

조선총독부수원고등농림학교 편, 1931, 『조선총독부수원고등농림학교일람(朝鮮總督府水原高等農林學校一覽)』, 조선총독부수원고등농림학교.
조선총독부의원, 1928, 『조선총독부의원 20년사』, 조선총독부의원.

단행본 및 논문

가타기리 요시오 · 기무라 하지메 외 저, 이건상 옮김, 2011, 『일본 교육의 역사: 사회사적 시각에서』, 논형.
간행위원회, 1993, 『유민 홍진기 전기』, 중앙일보사.
강덕상 · 梶村秀樹 편, 1966, 「高警 제25435호, 민정휘보-시내각학교의 개교상황」, 『현대사자료 25』-《조선 1》.
강만길 외, 2004,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 선인.
강만길 · 성대경 엮음, 1996, 『한국 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강명숙, 2008, 「일제말기 학생 근로 동원의 실태와 그 특징」, 『한국교육사학』 30권 2호.
강명숙, 2009,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개편」, 『한국교육사학』 31권 1호.
강명숙, 2009, 「일제시대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 과정 연구」, 『교육사상연구』 23권 3호.
강영미, 2007, 「日帝時代 官公立 普通學校 한국인 여교원의 양성과 사회의 인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경성고등공업학교, 1942, 『경성고등공업학교일람』,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편, 1939, 『경성고등상업학교일람(京城高等商業學校一覽)』.
경성여자사범학교, 1935, 『경성여자사범학교일람』, 경성여자사범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편, 1936, 『경성법학전문학교일람』,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편, 1941, 『경성법학전문학교일람』,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편, 1934, 『경성사범학교총람(京城師範學校總覽)』, 경성사범학교.
경성상공회의소, 1934, 『조선공업기본조사개요』, 경성상공회의소.
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경성약학전문학교일람』, 경성약학전문학교.
경성치과대학동창회, 1964, 『경성치과대학연혁사』, 경성치과대학동창회.
계훈제, 2002, 『흰 고무신』, 삼인.
고려대학교 100년사편찬위원회 엮음, 2008, 『고려대학교 100년사 I』, 고려대학교출판부.
고재호, 1985, 『법조반백년: 고재호 사고록(四顧錄)』, 박영사.
곽의영, 1987, 『어둔 밤 촛불을 밝히며』,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구자옥, 2010, 「서둔벌의 근대농학 교육과 과학기술 전개」, 『농업사연구』 9권 1호.
국사편찬위원회 편, 1987, 『한민족독립운동사 3: 3 · 1 운동』,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0,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2, 『한민족독립운동사 11: 한민족독립운동의 기본흐름』, 국사편찬위원회.
기창덕, 1995, 『한국근대의학교육사』, 아카데미아.
김광규, 2013, 「일제강점기 조선인 초등교원 시책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균 · 이헌창 편, 2005, 『한국경제학의 발달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출판부.
김근배, 1996, 「일제시기 조선인 과학기술인력의 성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근배, 2005,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문학과지성사.
김기주, 2010, 「광주학생운동 이전 동맹휴학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김대상, 1969, 「3 · 1 운동과 학생층」, 『3 · 1 운동 50주년기념논문집』, 동아일보사.
김도형, 2015, 「언더우드의 교육 활동과 '화충의 연세학풍' 전사」, 연세학풍사업단 · 김도형 외 편, 『일제하 연세학풍과 민족교육』, 혜안.

김동환, 1988, 「무오독립선언의 역사적 의의」, 『국학연구』 2.
김상태 편역, 2001, 『윤치호일기 1916~1943 :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역사비평사.
김성학, 2013, 『한국 근대교육의 탄생』, 교육과학사.
김영희, 2011, 『이 사람아, 공부해』, 민음사.
김인덕, 1995, 「식민지시대 서울지역 민족해방운동가 연구 : 차금봉을 중심으로」, 『향토서울』 55.
김진호, 2014, 「총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편,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 3 · 1 운동(I)』,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김한종, 2007,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 일선공학(日鮮共學) 정책과 조선인의 반응」, 『호서사학(湖西史學)』 48.
김호연, 2011, 「일제하 경성법학전문학교의 교육과 학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호일, 2005, 『한국근대학생운동사』, 선인.
나카바야시 히로카즈(仲林裕員), 2013,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통치논리와 교육정책-'동화'의 의미와 '제국신민'화의 전략」, 『한국사연구』 161.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2015,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동화주의의 변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도미타 세이이치 엮음, 우정미 옮김, 2013, 『식민지 조선의 이주일본인과 지역사회 : 진남포의 도미타 기사쿠』, 국학자료원.
도정애, 2003, 『도봉섭 : 탄생 100주년기념 자료집』, 자연문화사.
동양협회, 1917, 『식민전문학교학칙』.
류달영, 1998, 『소중한 만남 : 나의 인생 노트』, 솔.
馬越徹 저, 한용진 옮김, 2001, 『한국 근대대학의 성립과 전개 : 대학 모델의 전파연구』, 교육과학사.
문만용, 2012, 「도봉섭」, 『과학기술인명사전』, 한국연구재단.
문중양, 2006, 『우리역사 과학기행』, 동아시아.
문한별, 2014, 「일제강점기 후반 수원고등농림학교 한글연구회 사건 공판 기록을 통해서 살펴본 한글 문학 텍스트와 검열의 관계」, 『국제어문』 62.
박광현, 2005, 「경성제국대학 안의 "동양사학" : 학문제도, 문화사적 측면에서」, 『한국사상과 문화』 31.
박윤재, 2002, 「한말 · 일제 초 근대적 의학체계의 형성과 식민 지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지원, 2014, 1910년대 일제의 중등 농업학교 운영과 조선인 졸업생의 진로」, 『역사교육』 130.
박찬승, 2003, 「1910년대 도일유학(渡日留學)과 유학생활」, 『역사와 담론』 34.
박한용, 2013, 「일제강점기 조선 반제동맹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환, 1998, 「1920년대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비밀결사 : 건아단과 조선개척사를 중심으로」, 『수원문화사연구』 2, 수원문화원.
반민특별조사위원회, 1949, 『민족정기의 심판』, 혁신출판사.
백낙환, 1999, 「한국 외과학의 뿌리, 백인제박사와 백인제트리의 성장」, 『인제의학(仁濟醫學)』 20-1S.
변성호, 2010, 「스포츠를 통한 인정투쟁 : 일제 식민지 시기 축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변은진, 2013, 『파시즘적 근대체험과 조선민중의 현실인식』, 선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농학80년사편찬위원회 편, 1986, 『수원농학80년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서울대학교도서관 50년사편집위원회 편, 1996, 『서울대학교도서관 50년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 편, 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백년사 : 1895~1995』, 서울대학교법과대학동창회.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2009, 『사진과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 의료문화사 1879~1960』, 웅진지식하우스.
서울대학교병원사 편찬위원회, 1993, 『서울대학교병원사』,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사 편찬위원회, 2015, 『서울대학교 병원 130년을 담다, 꿈, 일상, 추억』,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사편찬위원회 편, 2015, 『서울대학교병원사 사료집: 1885~2015』,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 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1885~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 2002, 『서울대학교치과대학사』,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편, 2016, 『서울2천년사: 일제강점기 서울의 교육과 문화』,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손종현, 1993, 「일제 제3차 조선교육령기하 학교교육의 식민지배 관행」,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신국주, 1998, 『한민족 독립운동과 3 · 1 운동』, 국사편찬위원회.
신영숙, 1989, 「일제하 한국여성사회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신영전 · 윤효정, 2005, 「보건운동가로서 춘곡 양봉근(春谷 楊奉根 1897~1982)의 생애」, 『의사학』 14(1).
신용하, 1990, 「3 · 1 독립운동의 역사적 동인(動因)과 내인(內因) · 외인론의(外因論) 제 문제」, 『한국학보』 16(1).
신윤희, 2009, 「일제 말 제3차 조선교육령기의 중국어교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재의, 2005, 『한국근대치의학교육사』, 참윤.
신주백, 1991, 「박헌영과 경성콩그룹: 최초 발굴 재판기록을 통해서 본 경성콩그룹의 조직과 활동」, 『역사비평』 13.
신주백, 2001, 「일제의 교육정책과 학생의 근로동원(1943~1945)」, 『역사교육』 78.
신창건, 2007, 『경성제국대학에 있어서 한약연구의 성립」, 『사회와 역사』 76.
신한풍, 2015, 「조선전문학교 최초의 비밀사건: 한국 최초 수원고농 학생들의 항일투쟁 3차례」, 『New Daily』 2015. 2. 5.
안자코 유카, 2006,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안홍선, 2004,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오세향, 1980, 「개화기와 일제시대의 영어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오수열, 2011, 「근촌 백관수의 생애와 정치이념」, 『한국동북아논총』 60.
유형식, 2011, 『한국근대의학연구사: 1910~1945』, 한국의학원.
윤선자, 2007, 「이관용(李灌鎔)의 생애와 민족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30.
윤재근, 1996, 『근촌 백관수』, 동아일보사.
이미륵 저, 전혜린 역, 1973, 『압록강은 흐른다』, 범우사.
이병례, 2012, 「일제하 전시 기술인력 양성정책과 한국인의 대응」,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병례, 2015, 「1930년대 초반 생활물가 동향과 물가 인하 운동」, 『사림』 54.
이상의, 2006,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혜안.
이성전 저, 서정민 · 가미야마 미나코 [공]옮김, 2007, 『미국 선교사와 한국 근대교육: 미션스쿨의 설립과 일제하의 갈등』, 한국기독교연구소.
이수일, 2013, 「1930년대 전반 '성대그룹'의 반관학 이념과 사회운동론」,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원배, 1991, 『한국기술교육사』, 문음사.
이윤상, 2009, 『3 · 1 운동의 배경과 독립선언』, 독립기념관.
이정, 2013, 「식물 연구는 민족적 과제?: 일제강점기 조선인 식물학자 도봉섭의 조선 식물 연구」, 『역사와 문화』 25.
이정 · 임종태, 2015, 「서울대 도서관 고문헌 자료실 이공계 도서에 관한 조사」, 규장각 조사보고서.
이정식 면담, 김학준 편집 · 해설, 1988,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김성숙 · 장건상 · 정화암 · 이강훈의 독립투쟁』, 민음사.

이정은, 2009,『3 · 1 운동의 지방 시위에 관한 연구』, 국학자료원.
이준식, 2006,「재조(在朝) 일본인교사 죠코(上甲米太郎)의 반제국주의 교육노동운동」,『민족운동사연구』49.
이충우, 1980,『경성제국대학』, 다락원.
이충우 · 최종고, 2013,『(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 푸른사상.
이충호, 2011,『일제 암흑기 의사교육사』, 국학자료원.
이필석, 1984,『단암이필석회고(丹菴李珌奭回顧)』, 서울대학교상과대학동창회.
이항녕, 2011,『작은 언덕 큰 바람: 소고 이항녕 선생 유고집』, 나남.
이향철, 2006,「카미가제 특공대와 한국인 대원」,『일본연구논총』24.
이현희, 1993,「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이유필 연구」,『국사관논총』47.
1 · 20 동지회, 1987,『1 · 20 학병사기(學兵史記)』1.
임경석, 2008,『잊을 수 없는 혁명가들에 대한 기록』, 역사비평사.
임광수 엮음, 2009,『정통과 정체성: 서울대학교 개교 원년, 왜 바로 세워야 하는가』, 삶과꿈.
장규식, 2002,「YMCA 학생운동과 3 · 1 운동의 초기 조직화」,『한국현대사연구』20.
장세윤, 2007,「경성제국대학의 한국인 졸업생과 고등문관 시험」,『향토(鄕土)서울』69,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장신, 2013,「조선에서 법학의 교육과 연구」,『서울과 역사』85.
장신, 2014,「경성제국대학 사학과의 자장(磁場)」,『역사문제연구』15(2).
장용경, 2014,「제4장 '사건'을 통해 본 일제하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의 의식세계」, 수원시사편찬위원회 편,『수원시사 10: 수원의 종교와 교육』,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전병무, 2012,『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 역사공간.
전봉관, 2005,『황금광시대』, 살림.
전상숙, 2004,「일제 군부파시즘체제와 식민지 파시즘」,『동방학지』124.
정근식 · 박명규 · 정진성 · 정준영 · 조정우 · 김미정, 2011,『근대지식과 식민권력: 경성제국대학연구』, 서울대출판문화원.
정긍식, 2015,「근대 한국 법학교육 제도사」,『법교육연구』10권 3호.
정긍식, 2016,「한국 근현대 법학교과과정 변천사」,『법학논총』36권 1호.
정선이, 2002,『경성제국대학 연구』, 문음사.
정선이, 2009,「1910년대 기독교계 고등교육의 특성: 숭실과 연희전문으로 중심으로」,『교육사학연구』19(2).
정선이, 2015,「식민지 상황하의 학생문화: 전문학교 학생을 중심으로」,『한국교육사학』37(1).
정세현, 1975,『항일학생민족운동사연구』, 일지사.
정연태, 1988,「1910년대 일제의 농업정책과 식민지 지주제: 이른바「미작개량정책(米作改良政策)」을 중심으로」,『한국사론』20.
정인경, 1994,「일제하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설립과 운영」,『한국과학사학회지』16권 1호.
정재철, 1989,「일제하의 고등교육」,『한국교육문제연구』5.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정종현, 2010,「신남철과 '대학' 제도의 안과 밖: 식민지 '학지(學知)'의 연속과 비연속」,『한국어문학연구』54.
정준영, 2009,「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정준영, 2010,「식민지 의학교육과 헤게모니 경쟁: 경성제대 의학부의 설립과정과 제도적 특징을 중심으로」,『사회와 역사』85.
정준영, 2011a,「경성제국대학의 유산: 일본의 식민교육체제와 한국의 고등교육」,『일본연구논총』34.
정준영, 2011b,「식민지제국대학의 존재방식: 경성제대와 식민지의 '대학자치론'」,『역사문제연구』15권 2호.
정준영, 2015a,「공업조선(工業朝鮮)의 환상과 "학문 봉공(學問奉公)"의 현실: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탄생」,『한

국과학사학회지』 37(1).
정준영, 2015b,「군기(軍旗)와 과학: 만주사변 이후 경성제국대학의 방향전환」,『만주연구』 20.
정준영, 2015c,「제국일본의 도서관체제와 경성제대 도서관」,『사회와 역사』 105.
정해성 · 여지숙, 2007,「일제강점기 한국 대학 및 전문학교 도서관 현황 연구」,『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38(3).
정혜경, 2010,『조선 청년이여 황국신민이 되어라』, 서해문집.
조동걸, 1970,「3 · 1 운동의 지방사적 성격: 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역사학보』 47.
조미은, 2013,「조선교육령과 재조선 일본인 교육제도」,『역사교육』 125.
조성운, 1995,「일제하 수원고농의 학생운동과 상록수운동」,『경주사학』 14.
조은진, 2015,「1910~20년대 조선의 관립 전문학교 학제 형성과 운영」,『한국사론』 61.
천정환, 2010,『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뽈을 차라』, 푸른역사.
최규진, 2011,「식민시대 지식인, 유상규(劉相奎)의 삶의 궤적」,『의사학』 18권 2호.
최규진, 2011,「이의경(李儀景)의 삶을 통해 본 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한 모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규진 · 황상익 · 김수연, 2009,「식민시대 지식인, 유상규(劉相奎)의 삶의 궤적」,『의사학』 18권 2호.
최재건, 2012,『언더우드의 대학 설립: 그 이상과 실현』,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표영수, 2002,「일제말기 병력동원정책의 전개와 평양학병사건」,『한국민족문제연구』 3.
표영수, 2008,「일제강점기 조선인 지원병제도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학교법인 인제학원, 1999,『한국 현대의학의 개척자 선각자 백인제』, 창작과비평사.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10,『한국경제 60년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역사연구회 · 역사문제연구소 편, 1989,『3 · 1 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홍석률, 1990,「1940~45년 학생운동의 성격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황상익, 2010,「근대 의료의 풍경 · 57 김용채와 이만규」,『프레시안』, 2010. 9. 13.
姜德相, 1997,『朝鮮人學徒出陳』, 岩波書店.
弓削幸太郎, 1923,『朝鮮の教育』, 自由討究社.
近藤釰一 編, 1961,「太平洋戰下 終末期朝鮮の 治政」,『朝鮮近代史料朝鮮総督府関係重要文書選集; 第2』, 朝鮮史料編纂会.
近藤釰一 · 朝鮮史料編纂會, 1964,「第85回帝國會議說明資料」,『太平洋戰下の朝鮮』. I.
小山一德, 1944,「朝鮮に於ける科學技術の根基啓培と道義朝鮮の確立」,『朝鮮』 344.
帝国青年指導会 編, 1913,『官費貸費入学案内』, 明進堂書店.
朝鮮教育會, 1913,「朝鮮教育の概要」,『朝鮮教育會雜誌』 1-16.
朝鮮教育會, 1916,「專門學校の設立について」,『朝鮮教育會雜誌』 4-7.
佐藤剛藏, 1956,『朝鮮醫育史』, 佐藤先生喜壽祝賀會.
八木信雄, 1939,「学制改革と義務教育の問題」,『今日の朝鮮問題講座』, 禄旗聯盟.
通堂あゆみ, 2008,「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の再檢討: 組織 · 人事 · 學生動向を中心に」,『史學雜誌』 117-2.
『植民地朝鮮教育政策史料集成: 朝鮮篇』, 1990, 龍溪書舍.

VERI
LUX
TAS
MEA

제3부

광복 이후

VERI
LUX
TAS
MEA

제1장

해방 이후 미군정 아래 고등교육과 한국사회 (1945~1948)

제1절 해방 후 관립 전문학교의 현황과 변화

1) 해방과 남북 분단

군국주의 일본이 1945년 7월 연합국의 〈포츠담선언〉을 전격적으로 수락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은 종결되었고 당시 식민지 상태였던 한국은 해방을 맞았다. 그러나 1945년 2월 소련령 얄타에서 논의되었고 이후 독일 포츠담에서도 논의된 한국 문제는 결국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것만 정해졌을 뿐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점령정책은 결정되지 않았다. 즉, 한국에 대한 전후 상세한 정책은 해방 후 다시 연합국 수뇌부가 만나서 결정할 문제였고 이마저도 신탁통치기구와 한국인들의 '임시정부'가 함께 협의할 문제였다.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고 만주와 북한에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갔다. 한국 전체를 점령할 수도 있는 소련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군사점령을 제안했고 소련이 이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8월 말 소련군은 38선 이북에 진주했고, 9월 8일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하면서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당시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의 미·소 협조 외교가 아직도 작동되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1945년 8월의 해방은 일시적으로 권력의 공백을 가져왔

는데 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 부문은 미군정이 일찍부터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했다. 해방 후 조선에는 한 개의 제국대학교와 몇 개의 전문학교가 고등교육의 바탕이 되었고 재학생은 약 8,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해방 후 한국 사회는 1920년대 민립대학기성회를 연상시킬 정도로 고등교육 시설의 운영을 강하게 지지했다. 대학의 설립과 확장이라는 명제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동의했지만 어떠한 내용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었다.

한국에 진주한 미군정은 파시즘과 전쟁에 동원된 한국의 교육기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초등교육을 제외한 중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에 폐쇄를 명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8일이 되어서야 초기의 교육기관 폐쇄 방침을 바꾸어 재개교를 명했다. 그 결과 중등학교들은 대체로 10월 1일에 개교하도록 했으나, 그 시점은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각각 달랐다.

2) 미군정 아래 식민지 교육제도의 청산 문제

미군정 아래 한국 사회는 식민지 교육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했다. 특히 식민지 관료에 준했던 제국대학의 교수들과 각급 중등, 초등학교 교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 요구는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식민지 교육 내용, 특히 군사교육이라든가 노무동원 등에 대한 비판적 청산도 자연스럽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너무 적었다는 점 등이 인적 청산에 대한 반대편 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초기 미군정 아래 식민지 교육의 청산 문제는 내용 면에서는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를 청산하는 것임과 동시에 인적 구성 면에서는 전시에 협력했던 주요 한국인 엘리트들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했다. 교육에 있어 친일적 내용의 청산은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했기에 교과서에서 천황과 일본 군국주의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지우고 급하게 다시 사용하는 방향을 취했다. 그렇지만 인적 구성 면에서는 이후 서울(경성)대학으로 바뀌었을 때도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당시 고등교육기관의 수장급 사람들이 많지 않았음과 더불어 당시 학무부(1946년에 문교부로 개칭)를 유억겸, 오천석, 백낙준 등 주로 기독교계 인사들이자 전시에 협력

한 인사들이 이끌게 되었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미군정 측의 인사, 예를 들면, 미군정 자문관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 1890~1951, 한국명 원한경) 등이 추천한 인사들이었다.

3) 경성제국대학에서 서울(경성)대학으로

경성제국대학은 '제국'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일본 식민정책의 핵심 구성 중 하나였다. 따라서 전후 한국 사회의 자생적인 비판의 목소리에 따라 우선 학교 이름에서 '제국'을 떼고 새롭게 '경성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재등장하게 된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16일 미군정 법령 제15호로 경성제국대학에서 서울대학으로 바꾸는 조치를 취했다(『미군정관보』, 1945. 10. 16).

서울대학으로 바꾸는 법령 제15호 제1조에서는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을 '서울대학'으로 변경하고, 제2조에서는 공자묘경학원(孔子廟經學院)을 오늘날의 '성균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광복 직후 누군가 '경성제국대학' 교명 현판에서 '제국'이라는 두 글자를 지워 '경성대학'이라고 불렀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사람들은 경성대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오제연, 2009: 175~176).

미군정이 설치된 후 경성제국대학 건물에는 군이 상주하게 되었다. 당시 군이 상주할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군대가 먼저 공공건물, 특히 학교 건물을 징발해서 사용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서울대학의 총장으로 교육 전문가인 알프레드 드 크로프츠(Alfred Crofts)가 임명되었다(『미군정관보』, 1945. 10. 17). 그는 미군정이 한국에 들어온 직후인 9월 24일부터 학무국에서 고등교육 업무, 특히 경성대학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다. 크로프츠는 1903년 8월 미국에서 태어나 초기에 중국에서 성장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 스탠퍼드 대학에서 1935년에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35년부터 일본의 진주만 공습 후인 1942년까지 콜로라도와 뉴멕시코 소재 대학에서 가르쳤고 학교 경영에 관계했다. 1942년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 군정학교(CATS)에서 일본어를 교육받고 전후 일본에서의 활동을 준비했다.

그는 존 하지(John Reed Hodge) 중장이 이끄는 제24군의 조선 진주가 결정되어

급히 군정요원을 모집했을 때 50명 중 한 명으로 자원했고, 한국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들어보았다는 이유로 한국 고등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1945년 9월부터 연말까지 서울대학의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고 1월부터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군정부대의 교육정보과에서 고등교육국장을 지냈다. 1946년 2월 말부터 3월 초에 걸쳐 대일미국교육사절단 방문 시 일본의 고등교육에 대해 강연을 했고, 사절단의 제4분과인 고등교육분과에서 회의를 주도했다. 이후 1946년 9월에 덴버로 돌아가 덴버 대학(University of Denver)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미국 내의 동아시아 관련 전문가로 연설과 저술 활동에 종사했고 특히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을 미국인 독자들에게 알렸다.[1]

크로프츠가 서울대학 책임자로 있을 때 국립서울대학교안(이하 '국대안')이 작성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국대안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46년 2월 말에 작성된 국립종합대학교안이 최초인 듯하지만, 당시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 한국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적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로운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크로프츠는 2월에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 국대안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관립 전문학교 현황과 새로운 방향 모색

해방 이전 관립 전문학교들은 전쟁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각 학교들은 폐쇄 명령을 받았고 1945년 10월 1일 이후 차례대로 다시 개교하게 되었다. 후일 국립서울대학교로 통합되는 각 전문학교의 재개교 일자와 각 학교의 책임자로 임명된 이들은 [표 3-1-1]과 같다.

전문학교들은 재개교하면서 새로운 국가 수립에 대비하고자 했다. [표 3-1-1]에 언급된 전문학교와 고등교육기관들은 1946년 8월 22일 미군정 법령 제102호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로 통합되었다.

해방 이후 각 전문학교는 공백 기간 동안 한국인 직원과 연고자 및 졸업생들

1 미국 남가주대학 디지털 아카이브, http://digitallibrary.usc.edu/cdm/compoundobject/collection/p15799coll126/id/19634/rec/1

[표 3-1-1] 서울 소재 공립 고등교육기관의 재개교 현황

학교명	설립 연도	재개교 일자	책임자	비고
서울대학 법문학부	1926	1946. 2. 19	백낙준	
서울대학 의학부	1926	1945. 10. 1	윤일선	
서울대학 이공학부	1926	1946. 3. 5	최규남	
서울대학 예과	1924	1945. 10. 20	현상윤	
경성법학전문학교	1922	1946. 2. 23	고병국	1895년 법관양성소에 기원
경성의학전문학교	1916	1945. 10. 8	심호섭	1899년 의학교에 기원
경성공업전문학교	1916	1945. 9. 29	안동혁	1904년 농상공학교에 기원
경성광업전문학교	1939	1945. 10. 1	최용식	공업전문학교에서 분리
경성사범학교	1922	1946. 1. 26	장리욱	1895년 한성사범학교에 기원
경성여자사범학교	1935	1946. 1. 26	손정규	
수원농림전문학교	1918	1945. 10. 1	조백현	1904년 농상공학교에 기원
경성음악학교		1945. 12. 25	현제명	개교

출처: 정태수 편저(1992).

을 중심으로 자치회가 조직되어 재산을 관리했다. 이 자치회는 점차 운영권까지 주장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어떤 학교는 학무국이 임명한 책임자의 취임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했다. 즉, 보기에 따라서는 각 전문학교가 기존 학교의 연고자와 졸업생을 중심으로 진영을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배타적 색채를 보였다. 학무당국으로서는 이것이 각 학교의 이기주의로 해석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학교의 자치권과 학무 당국의 감독권의 경계선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였다. 또한 경성대학을 포함하여 각 학교들의 교수진을 모두 한국인으로 조직해야 했는데 많은 교수를 한꺼번에 각 학교별로 채용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므로 인적 자원과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안을 이때부터 학무 당국이 생각해냈던 것 같다(손인수, 1992: 374~375).

학무국에서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통합안이었다. 아마도 이는 국대안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던 것 같다. 이에 경성대학 의학부 측에서는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을 받아들이면 경성대학 의학부의 격이 떨어진다고 반대했고, 경성의학전문학교 측은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를 없앨 수 없다고 맞섰다. 이렇게 각 전문학교와 경성대학과의 통합은 많은 갈등이 있었다.

경성대학 각 학부의 책임자와 총장 임명을 전후하여 교수 충원 문제도 함께 논의되었다. 해방 당시 경성대학 교수는 의학부 교수 한 명과 교수로 갈 수 있는 조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인이었다. 특히 해방 후 한국인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학교 시설과 운영을 담당하면서 기존의 교수들은 관망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인 교수들은 패전에도 불구하고 얼마 동안 교육 업무를 담당하리라고 보았던 것 같다. 이는 10월 초가 되어서야 일본인 교수들이 자치위원회의 눈치를 보면서 일제히 교수직에서 퇴진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경성대학 교수진의 편성은 서로 다른 두 방향에서 모색되고 있었다. 한 방향은 미군정이 각 단과대 학장(학부장)을 임명하고 그 임명자의 책임 아래 미군정 측과 협의하면서 교수를 인선, 충원하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한 방향은 각 학부마다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교수진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다. 전자와 후자의 갈등은 초기 교수 충원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이후 국립서울대학 초기의 갈등과도 연결된 문제였다. 특히 각 자치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총장을 선출하려 했고 미군정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를 들면 조선어문학회를 꾸린 김태준을 젊은 조교들이 총장으로 선출하려고 했지만, 하지 중장 등은 격하게 반대했고 이숭녕 같은 소장 교수들도 이를 선배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보았다(손인수, 1992: 369).

보성전문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 재편성에 참가했던 유진오는 법문학부 교수 인선 과정의 갈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경성대학 문제에 관해서는 백낙준 씨가 나를 찾아왔던 다음다음 날인 10월 3일에 주재황, 이명선, 김수경 등 해방 당시 연구실에 있던 사람들로 조직된 대학자치위원회 사람들이 보전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가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성대학의 재건도 우선 교수진을 편성하는 일부터 착수했음은 물론인데, 보전과 달라서 경성대학의 일은 주인 없는 학교에 새로 주인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 처음부터 용이치 않을 것이 예상은 되었지만 백남운 씨의 거취 문제로 한층 복잡해졌던 것이다. 백남운 씨는 그때 재빠르게 좌익계 사람들을 규합해서 '학술원'과 '신민당' 두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한쪽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었지만, 박극채 씨가 주도하는 공산당계의 '과학자동맹'과는 달리 미군정과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런 까닭에 나는 신생 경성대학 법문학부에는 반드시 그를 참가시킬

>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차 그를 만나 절충한 결과 그도 참가할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학자치를 관철할 것을 조건으로 그의 협력을 약속받았던 것인데, 그러한 내용을 모르는 미국인(크로프츠 소령 등)은 뜬소문만 믿고 백씨를 과대평가하여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진 편성의 전권을 그에게 맡길 것 같은 말을 흘림으로써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저러나 11월 중순까지 백낙준, 백남운, 이병도, 조윤제, 유진오 5인의 손으로 법문학부 교수 인선을 하는 데까지 끌어간 것은 일단 성공했다. 인선의 기준을 과거의 실적에 두다가 보니 일정하게 보전 교수로서 경성대학 법문학부로 옮기게 된 사람이 유진오, 이채원, 윤행중, 박극채, 안호상, 손진태 6인이나 되었다(유진오, 1977: 170~171; 오제연, 2009: 180~181 재인용).

이는 학내 자치위원회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미군정 학무국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던 것 같다. 미국인이 과대평가한 인물인 백씨가 백남운인지, 백낙준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정황상 아마도 후자로 보인다. 그는 1927년 예일대학교에서 한국기독교선교사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듬해 1928년부터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한 인물이다. 미국인들은 백남운보다 아무래도 영어가 잘 통하는 백낙준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잘 알려진 대로 백낙준은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의 전쟁 수행에 협력한 인물로 '친일' 논란에 휩쓸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미군정의 후원을 통해서 법문학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위의 인용문은 또한 당시 부족한 인력 환경에서 식민지 시기 전문학교 교원이었던 인물들이 국립대학의 교수로 승진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서울대학에 대한 이러한 미군정의 움직임에서 중요한 인물은 앞서 언급한 호러스 언더우드인데 그는 1945년 말에 서울로 돌아와 학무부의 자문관으로 활동했다. 그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할 때도 식민지 조선에 남아 있다가 1942년 6월에 미 · 일 포로교환 때 미국으로 가게 된 인물로, 1928년부터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하면서 백낙준과 당시 문교부장인 유억겸 등과 함께 활동했다(An, 2010). 그가 문교부장 유억겸과 함께 활동하면서 전후 한국 고등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한다.

제2절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 공포: 관립 전문학교와 경성대학의 통합

1) 미군정의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 공포

국립종합대학교안(이하 '종대안')은 1946년 2월경에 확실히 등장하는데 그 대강의 안은 다음과 같다.

> 1945년 12월 12일 현재로, 대학(경성대학)을 담당하고 있는 한 장교가 모든 대학 업무를 직접 책임지도록 학무국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는데, 그는 학무국에서 전임되어 학장으로서 일하고 있었다. 이 장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미국식 대학에 기초를 둔 종합대학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현재 고려 중에 있는 이 계획은 앞으로 약 8,000명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165명의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현 대학 조직에는 법문학부, 이학부, 이공학부 및 예과의 4개 학부로 나뉘어져 있다. 새로운 조직에는 법과대학, 의과대학, 문과대학, 사범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및 대학원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단과대학의 행정은 학장이 맡고, 각 학장은 또한 부총장이 수반인 행정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총장은 교무위원회를 직접 관할한다. 교수회의는 각 단과대학의 대표들을 포함하며 자문 기능을 갖는다. 대학원은 각 대학의 시설을 활용하고 연구소에는 연구 목적으로 전임연구원을 둔다(정태수 편저, 1992: 107).

이러한 안은 7개 대학과 1개의 대학원을 두는 것으로 사실상 서울시 각 전문학교를 합치고 종합대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대안에서 예술대와 치과대를 제외한 7개 대학이다. 총장, 부총장, 학장 및 각 위원회, 교수회의 역할이 설명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종래와 달리 교수회의는 각 단과대학의 대표를 포함하며 자문 기능을 갖는 것이다. 이는 국대안과는 차이가 있는데 뒤에 설명하기로 한다.

종대안의 특징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대학원과 의학부에다 법문학부를 법과대학과 문과대학으로 나누고, 이공학부를 이과대학과 공과대학으

로 나누고, 사범대학과 농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법문학부를 법과대학과 문과대학으로 분리하는 것은 백남운이 조선교육심의회나 경성대학 교수진에 참여하면서 주장했던 것이다. 즉 기존 학부를 두 단과대학으로 나누어서 종합대학의 단과대 수를 늘리고 시설을 확대한다는 것은 당시 큰 무리 없이 종합대학을 건설하는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강명숙, 2004: 16~17).

둘째, 종대안에서는 대학 관리 방법으로 총장 산하에 부총장, 행정위원회, 교무위원회, 교수회의 등의 행정기구를 두고, 이 기구에서 모든 대학 업무를 관장토록 했다. 즉 학내 구성원들이 대학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후에 살펴보겠지만 국대안에서 학외자 참여 아래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이사회 제도와는 현격히 다른 제도다(강명숙, 2004: 17). 그리고 이는 1945년 10월 18일 학무국에서 있었던 대학운영제도, 즉 대학 운영을 학무국 산하에 두는 안을 반영하고 있다.[2]

종대안은 결국 실시되지 못하고 폐기된다. 1945년 12월 12일 '종대안'을 구체적으로 기획한 인물은 누구였을까? 크로포츠는 아니었을 것이다(강명숙, 2004: 14~16). 왜냐하면 그는 12월에 사임하고 이듬해 1월 일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관리들은 일본식 제국대학이 문제가 많았고 민주적이지 않다고 여기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미국과 같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식 종합대학으로 가는 길은 자명했다. 따라서 사실 누가 기안을 했는지 밝히는 것보다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학무국은 경성대학에 한국인 총장을 임명하려고 했지만 결국 군정 장관에 의해 거부되자 1946년 2월 2명의 미국인 후보자가 추천되어 1946년 2월 20일 해리 엔스테드(Harry Bidwell Ansted, 1893~1955)가 임명되었다. 그는 이후 국립서울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그에 대해서는 미시간 출생에 워싱턴 주에 있는 작은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로 활동한 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 외에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3] 그는 사우스 다코타(South Dakota) 주에 있는 휴런 대학(Huron College)의 총장을 역임했다(Devine, 2001: 103). 휴런 대학은 한국과 인연이 깊은 학교인데, 식민지 시기 평양 지역의 민족운동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조지 매큔(George S. McCune, 1873~1941, 한국명 윤산온)이 학장으로 있었고

2 Hitory of Bureau of Education: From 11 September 1945 to 28 February 1946, p. 28.

3 그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http://www.findagrave.com/cgi-bin/fg.cgi?page=gr&GRid=81128996을 참고.

한국 학생들이 유학생으로 있었던 학교다. 그러나 어떤 인연으로 엔스테드가 서울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추천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그가 있을 때 오늘날 서울대학교의 모토인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가 채택되었다.

2) 관립 전문학교의 통합 경위

사실 1946년 초에 등장한 '종대안'은 당시 존재하던 경성대학을 확대·개편하여 종합대학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경성대학의 확대·개편이 아니라 경성대학과 여러 전문학교를 통합하는 국립서울대학교안, 즉 국대안이 결정되었다.

1946년 3월경부터 국대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오천석의 회고에 따르면 1946년 3월경 조선교육심의회가 끝난 직후부터 고등교육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학 설립의 방법으로는 경성대학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여러 전문학교 시설들을 통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통합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선 1946년 4월,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통합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학교 및 병원의 불충분한 시설과 경성대학 병원 시설의 미사용 때문에 두 학교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동아일보』, 1946. 5. 1).

결국 최종적으로 1946년 7월 13일, 미군정의 한국인 문교부장 유억겸과 미국인 문교부장인 오브리 피팅거(Aubrey O. Pittinger) 중령이 국대안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 문교부로서는 일정시대로부터의 유물인 기존 고등교육기관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할 아므런 의무감도 느끼지 않엇다. 이는 기존 고등교육기관은 일정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예속화하려는 식민지정책의 잔재요, 우리 민족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닌 까닭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상하는 신국가에 적합한 고등교육기관을 건설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사(四). 이러한 정신과 원칙 하에서 신중히 연구하여 본 결과 기존 고등교육기관을 그대로 두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의 목적하는바 이상적, 능률적 교육을 실시할 수 없음을 발견하엿다. 기설 일정시대의 고등교육기관

> 에는 일관한 교육적 안도 계획도 없이 조선의 진정한 복리를 무시하고 그때그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만드러진 잡연(雜然)한 산물에 불과한 것을 보앗다. 거기에는 무용한 중복과 경쟁이 있서 국가의 재정을 낭비한 형적이 심하고 나아가서는 적은 독립한 기관들이 각기 소왕국을 형성하고 군웅할거하여 있서 피차간에 아모런 연락도 협력도 없음을 차젓다. 이상과 같은 불행한 현실을 발견한 문교부로서는 드디어 경성과 그 부근에 있는 관립전문대학을 **전부 폐지**하고 새 이념과 새 구상 아래 우리 국가의 전 학계를 대표할 만한 **거대한 종합대학교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강조는 필자; 문자는 원문 그대로)(『동아일보』, 1946. 7. 14).

즉 종래 경성제국대학의 식민지성을 비판하고 탈식민의 성격을 강조하여 해방 후 새로운 국가에 필요한 "거대한 종합대학교"의 새로운 설립이라는 성격을 강조했던 것이다. 종합하자면 첫째, 각 학교의 기존 건물과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재정적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둘째, 교수 및 기타 전문 기술자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셋째, 각 방면의 교수와 다채로운 시설과 행사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이를 통해 우수한 학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강명숙, 2004: 19).

비슷한 시기인 1946년 7월 18일 자 『조선인민보』에 따르면, 같은 해 9월 개교를 목표로 북한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 설립을 위한 사무에 착수했다고 한다. 김일성대학은 1946년 9월 1일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설립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0월 1일 개교하여, 1947년 농학부, 의학부, 공학부 등 3개 학부가 설치되었고, 1948년 7월 3개 학부가 각 단과대학이 되었다고 한다(손인수, 1992: 367). 남과 북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열망이 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으로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는 자명하듯이 결국 북한 체제, 특히 김일성 체제를 옹호하는 엘리트를 배출하는 기관이었다.

3) 국립서울대학교의 종합대학교로서의 면모

결국 1946년 8월 22일 미군정은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법령 제102호)을 공포했다. 제1조에서 "본령은 조선 국민에게 우수한 고등교육시설을 제공하

고 활용케 하여서 조선 청년으로 하여금 개인으로서의 조선인 자신 및 현대사회의 국민으로서의 조선 인민의 향상을 위하여 그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온갖 이익과 기회를 적의(適宜) 이용케 함으로써 목적함"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기존의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대학, 경성여자사범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등 10개교를 '국립서울대학교'로 흡수하고 이들을 새로운 대학 안에서 농림과대학, 상과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법과대학, 문리과대학, 의과대학 등 9개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설치하도록 했다(제5조와 제6조). [표 3-1-2]는 미군정 측이 내정한 서울대학교 총장과 학장의 명단이다.

총장은 이전에 경성대학 총장으로 임명된 해리 엔스테드가 그대로 있었지만 단과대학은 기존의 전문학교 교장이 그대로 학장이 된 경우가 많았다. 의과대학의 심호섭, 법과대학의 고병국이 그러한 예다. 특히 경성대학과 전문학교가 합쳐져서 단과대학이 구성된 경우, 전문학교 출신들이 주가 되는 경향이 강했고 특히 교수진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해방 이전에 경성제국대학 한국인 교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성법학전문학교의 고병국 교수만이 아니라 유기천, 박관숙 등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옮겨왔다.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온 심호섭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들이 자연스럽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와서 활동하게 되었다.

[표 3-1-2] 초대 서울대학교 총장과 학장 명단

직위	이름
총장	해리 엔스테드
대학원장	윤일선
문리과대학장	이태규
의과대학장	심호섭
법과대학장	고병국
공과대학장	김동일
농과대학장	조현백
상과대학장	이연기
사범대학장	장리욱
치과대학장	박명진

출처: 정태수 편저(1992).

한편 결국 국대안 파동 때 쟁점이 된 부분은 바로 학내 운영 혹은 '대학자치'와 관계된 문제다. 물론 이후에 이념적 문제가 가세한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출발은 대학 운영과 관련된 것임에 틀림없다(최혜월, 1988). 제7조에 구성된, 이사회에 참여할 사람들은 문교부장(직권으로),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직권으로) 및 동 대학교를 구성하는 각 대학에서 한 명씩이었는데, 여기에는 문교부의 추천과 군정 장관의 임명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단 본대학교의 교직원 및 정부 직원은 여하한 시(時)를 물론하고 본회의 임명 이사로서 본회에 근무할 자격이 없음"이라고 못

박고 있었다. 즉 교수나 학교의 구성원들은 총장과 단과대학의 대표를 통해서만 이사회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 더구나 미군정 기간 동안은 이마저도 구성되지 않고 임시이사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이사회는 문교부장, 조선인 문교부장, 문교부 차장, 조선인 문교부 차장, 그리고 문교부 고등교육국장과 문교부 조선인 고등교육국장으로 구성되어야 했다.

국대안의 구상이 알려지면서 통합 대상으로 지목된 학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최소한 1947년 3월까지 분규로 이어졌는데 이를 보통 '국대안 파동'이라고 부른다. 국대안 문제의 핵심은 사실상 '대학자치'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미군정 측의 임시이사회가 사실상 관선이사회로서 학내 문제에서 고분고분하지 않은 교수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었고 교수평의회와 학생회 등의 발언권이 거의 상실되었다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물론 이념 문제라든가 경성제국대학의 전통과 각급 전문학교 간 인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 등도 분명 존재했겠지만 대학 운영에서의 비민주성에 대한 입장 차이를 두고 이념적 갈등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식으로 그해 9월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통상 일제 강점기에는 3월에 입학시험을 보고 4월에 입학을 했던 것에 비해 짧아진 입시 대비 기간 등도 중학교(당시 6년제 중학) 학생들의 불만을 사는 데 한몫 했을 것이다.

국대안을 이렇게 밀어붙이게 된 배경은 정치적으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1946년 8월경 해산되었고 남과 북에서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미군정 아래 남쪽에서 고등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정부의 통제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 당국의 입장이 있었다.

서울대생들이 등록을 시작한 1946년 9월부터 학생들이 돌아오면서 국대안 파동은 본격화되었다. 먼저 9월 5일 이공학부 교직원 일동 38명은 신설 학교에 봉직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학생들도 이에 따랐다. 의학부 학생들은 학생대회를 개최하고 학원관료화와 비민주화 등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경제학부 학생대회, 5개 전문학교 학생회, 법과대학 학생회, 공과대학 학생회 등도 국대안 반대를 결정했다. 이들 국대안 반대 학생들은 학원 자유와 민주화를 외치면서 등록을 거부했다. 9월 등록 기간에 전체 등록 예정 학생 8,200여 명 중 미등록자만 3,000명을 넘었다. 학생 등록 기간 직후인 9월 18일 8개 각 단과대

학이 개교했고 10월 10일에는 상과대학이, 14일에는 의과대학이 각각 개교했다. 학기 기간에도 국대안 반대 학생들은 각종 집회와 시위, 동맹휴업 등을 계속했고 이는 1947년 2월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이는 서울대학교를 넘어서 서울과 지방의 중·고등학교로 확산되었는데 1947년 2월 동맹휴업에 참여한 학생 수는 57개교, 4만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제적 등의 처벌로 대응했다.

국대안 파동은 1947년 3월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중지하는 한편, 미군정이 관선이사회를 폐지하고 한국인 총장 이춘호를 임명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제적 학생 1,500명 이상이 복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학교 당국의 불허로 학교를 떠났고 300명 이상의 교수들도 파면 또는 사임함으로써 남은 교수는 140여 명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전에 있었던 종대안과 국대안의 차이는 무엇인가? 강명숙(2004)의 연구에 따르면 몇 가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종대안은 기존의 경성대학을 확장하여 종합대학을 만들려고 했다. 언급한 대로 법문학부를 법과대학과 문과대학으로 나누고 이공학부를 이과대학과 공과대학으로 나누는 것으로 실질적인 확장은 사범대학과 농과대학의 신설뿐이었다. 반면 국대안은 종합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여러 학교를 통합하는 방식을 취했다.

둘째, 종대안은 새로운 학교의 평가에 대해 종합대학안이라는 관점에서만 언급되어 있지만, 국대안은 기존의 경성제국대학을 '일본제국주의 교육'의 산실로 규정하면서 일제 잔재 청산을 공식적으로 내걸고, 서울(경성)대학을 폐지하고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재편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셋째, 그럼에도 대학 운영과 관리 방법에서는 국대안이 후퇴한 감을 준다. 종대안에서는 대학 관리 방법으로 총장 산하에 부총장, 행정위원회, 교무위원회, 교수회의 등의 행정기구를 두고, 이 기구에서 모든 대학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이는 학내 구성원이 대학을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국대안이 학외자 참여에 주안점을 두고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금지한 것과는 차이를 보여준다. 차라리 종대안은 교수평의회의 기능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경성제국대학의 대학 관리 방식과 유사한 지점이 있다. 그리고 이는 1945년 10월 18일 학무국에서 있었던 대학 운영권을 둘러싼 논의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면, 국대안이 나오게 된 배경, 즉 누가 국대안을 주도했는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종합대학으로서의 국립서울대학교를 어떻게 볼 수

[표 3-1-3] 국립종합대학교안과 국립서울대학교안의 주요 차이점

준거	국립종합대학교안	국립서울대학교안
개편 목적 및 방향	경성제국대학을 청산의 대상으로 인식하지는 않음.	일본 제국주의 극복을 위해 제국대학 청산과 전면적 개혁 천명
설립 및 개편 방법	기존 교육기관 존속, 경성대학 학부의 수 증대를 통한 종합대학화	경성대학 및 기존 고등교육기관 일단 폐지와 통합을 통한 종합대학 신설
대학 운영 방식	대학 구성원에 의한 관리로, 자치제도 인정	대학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의한 관리로, 이사회 제도 도입(내부인 참여 제한)
단과대학 구성	미국식 대학 천명, 그러나 주로 기초학문 중심의 제한된 학부로 구성된 4년제 종합대학	전문 직업교육 분야도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는 복합적인 종합대학

출처: 강명숙(2004: 20).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우선 누가 국대안을 주도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오천석은 학무국(문교부)에서 중요한 위치인 문교차장이었는데, 그는 국대안은 한국인에 의해 주도되었고 미국 측은 수동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자신들의 주장에 군정 장관이 동의했다고 한다(오천석, 1964: 416). 그러나 한국인 주도보다는 미군정 측의 주도에 비중을 두는 입장에서는 오천석의 발언을 부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누가 발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동기에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동의하는 인물이 많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국대안을 내게 된 이유는 오천석이 밝히고 있듯이 ① 정부 재정 낭비의 방지, ② 종합대학의 교육적 이점, ③ 종합대학 건설에 대한 바람 등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상 당시 신탁통치 문제로 좌우 대립이 격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통제는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의 학교로 합치는 안이 더욱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문교부 부장이었던 유억겸의 의견도 반영되었고 유억겸과 연희전문학교 시절부터 깊은 관련이 있었던 문교부 자문관인 호러스 언더우드의 입김도 있었을 것이다. 언더우드는 문교부 자문관으로 1946년 초부터 1947년까지 있었는데 유억겸과 백낙준 등 연희전문학교 출신들을 미군정에 추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군정 최고 책임자인 존 하지와 미군정 장관이었던 아치볼드 아놀드(Archibald V. Arnold) 등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An, 2010: 238~239). 문교부 자문관으로 있으면서 그는 미국 언어학교를 만드는 것이라든가 6-3-3-4제라는 초등-중학-고등-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원일한 박사(Horace G. Underwood Jr.)도 서울대학교 교무처장으로 1946년 가을 무렵 종합대학교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했다(Devine, 2001: 104~108). 그런 점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국대안은 한국인이 주도한 것(강명숙, 2004: 20~21)이라든가, 미국 측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양자의 입장과는 다른 한 · 미 간의 합작품일 가능성도 높다.

한편 국대안 반대로 지속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에서는 국대안에 관한 법령 제102호를 일부 수정하여 1947년 5월 6일 공포했다. 이날 이사회에 관련된 법령 제7조를 개정해서 국립대학 이사 9명이 결정되고 이들에게 총장과 민간 이사 선임을 위임했다. 한두 대학을 제외하고는 등록에서 제명당한 학생들의 원칙적 · 무조건적 복교를 1947년 6월 13일의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그 후 1년간이나 분규를 거듭하던 학교에서 1947년 7월에 제1차 졸업생 200여 명을 배출했다. 그리고 복적생들도 약간을 제외하고는 추가 시험으로 졸업하게 되어, 제1차 졸업생 중 9월부터 개원하는 대학원 시험을 치른 사람도 많았다. 이사회 구성 문제의 개선, 즉 이사진의 한국인 구성 및 행정 당국자의 간섭 배제, 제적 학생의 복적, 한국인 총장 선출 등으로 조치가 취해진 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다(손인수, 1992: 397~398).

다음으로 국립서울대학교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잘 알려져 있듯이 국대안에 따라 다양한 학교들이 통합되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 초기 서울대학교는 독특한 분위기와 문화가 있었다. 첫째, 각 단과대학이 인사 및 재정에서 상당 기간 독자적인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서울대학은 사실상 '연합대학'의 성격이 강했다. 특히 1975년 관악으로 캠퍼스가 이전하기 전까지 분산된 캠퍼스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각 단과대별로 상이한 기질과 분립 의식이 남아 있었다. 여전히 동숭동의 법문학부와 의과대, 즉 법과대학, 문리대학, 의과대학 등의 독자적인 엘리트 의식이 남아 있었던 것은 그 단적인 예다.

국립서울대학교는 언급한 대로 1946년 8월 미군정 법령 제102호를 통해서 설립되었고 그것은 경성제국대학의 연속이나 계수가 아닌 신설, 혹은 통합으로 세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자체의 탄생은 1946년을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1966년에 간행한 첫 공식 교사(校史)의 제목은 『서울대학교 20년사』였고, 2006년에 출간된 책도 『서울대학교 60년사』로 매년 10년 단위로 출간되

었다. 가장 먼저 간행된 『서울대학교 20년사』의 「서설(緖說)」에서 "서울대학교의 창설은 실로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보고, 고구려 태학(太學) 창설 이래, 1,600년간의 우리나라 국학 역사 전반을 살폈다. 즉 전근대 국학의 전통이 서울대학교로 이어졌다는 인식인데, 각 단과대학의 연혁도 그 전신이 되는 학교들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했다. 1986년의 『서울대학교 40년사』부터는 전근대 시기에 대한 서술은 줄이고 근대 개항 이후 교육에 대한 서술 비중을 높였다.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 50년사』까지는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의 역사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 전근대 시기의 국학 전통이나 근대 교육에 대한 서술은 전사적 의미를 넘지 않았고 직접 서울대학교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006년 『서울대학교 60년사』부터는 「서장」의 제1절 제목을 "서울대학교의 전사(前史): 한국 근대의 국립대학 구상과 경성제국대학"으로 하여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의 역사를 교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특히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온 고종 시대 대학 설립 구상 문제와 일제 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서울대학교 역사의 폭을 넓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특히 한국 근대 고등교육 시설의 설립에 고종과 민비의 관심, 그리고 선교사들과의 관계 등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사실 식민지 시기나 개화기의 역사를 다루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각 단과대학, 특히 법과대학, 의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등이 자신의 단과대 역사를 이전으로 소급해서 이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법과대학은 2004년에 동창회가 간행한 『서울법대 100년사』를 통해 1895년 법관양성소를 자신들의 출발지로 설정하고 이후 법관양성소가 어떻게 변천하여 오늘날 법과대학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정리했다. 이 법관양성소가 이후 법학교 → 경성전수학교 → 경성법학전문학교로 개편되었는데 이는 경성법학전문학교 동창회 규칙 제2조에도 나타나 있다. 제2조는 동창회 회원 자격을 ① 법관양성소, 법학교, 경성전수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의 졸업생, ② 법관양성소, 법학교, 경성전수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의 직원 및 강사였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1926년 『경성법학전문학교일람』에도 경성전수학교 직원과 경성법학전문학교 구직원의 명단이 게재되어 있다. 경성법학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 법학과라는 두 줄기가 해방 후 하나로 합쳐졌기에 이들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의과대학이나 농업생명과학대학, 그리고 사범대학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과대학의 역사와 서울대학교 자체의 역사 인식이 불일치하는 모순의 해결 방안은 하나의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구한말의 황제와 선교사의 관계, 혹은 정부의 독자적인 반(半)관립고등교육기관의 역사가 각 전문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세계적으로 교사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현재 제도적 창립일을 기준으로 삼는 대학도 있지만, 대학 교육이 처음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삼는 기관도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립서울대학교의 전신으로 구한말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도 있고, 교육의 시작점을 적극적으로 학교의 창립년으로 보는 관점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립서울대학교와 관련해서 민주주의, 민족주의, 탈식민화의 과제는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통해 고등교육이 파행을 겪으면서 초기의 안정화도 함께 사라졌고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으로 명맥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후 서울 캠퍼스로 올라온 1950년대 서울대학교-미네소타 대학 협정에 의해 의학, 공학, 농학 분야의 충실이 한 · 미 양 교육기관을 통해 도모되었고, 교원 양성과 관련해서는 이후 피버디 계획에서 미국식 교수법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었다. 결국 미국의 원조로 1950년대 물적 토대를 다시 확보했고 인적 교류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기술 원조도 얻어냈다. 이러한 제도는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의 주체적인 노력, 특히 식민지와의 일정한 단절을 추구한 점, 그리고 미국의 원조가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아베 히로시 외 편, 1987: 193~197).

제2장

국립서울대학교 출범의 터전: 각 전문학교 캠퍼스 종관

제1절 개교 당시의 캠퍼스

1946년 8월 22일 미 군정청 문교부는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경성대학과 9개의 관공립 전문학교가 1개의 대학원과 9개의 단과대학을 갖춘 거대 종합대학인 국립서울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모이게 되었다([표 3-2-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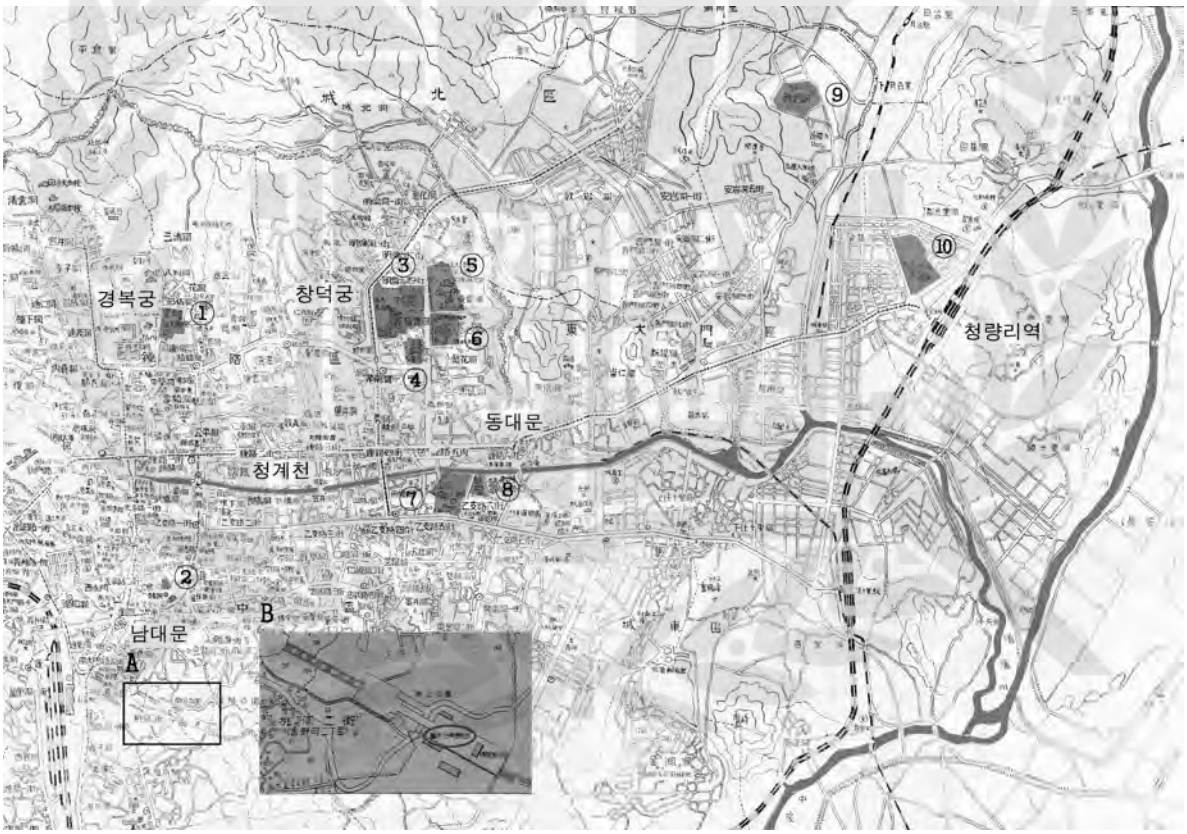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설립이 위와 같이 각기 역사와 전통을 달리하는 여러 학교의 물리적 통합을 배경으로 한 만큼, 서울대학교의 초창기 캠퍼스는 서울 안팎 각지에 흩어져 있었다. [그림 3-2-1]은 1946년에 간행된 『서울특별시가도』의 일부분으로, 당시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위치해 있던 농과대학과 공과대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의 캠퍼스를 표시한 것이다.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경복궁 동쪽 건춘문 밖의 ①은 소격동의 서울대학교 의대제2부속병원이다. 그리고 광화문 앞에서 지금의 세종로를 따라 남대문을 향해 내려오다 소공로로 들어선 ②에는 치과대학이 위치했다. 한편 대학로를 사이에 두고 왼편의 ③과 ④는 의과대학, 의대제1부속병원, 대학 예과, 오른편의 ⑤와 ⑥은 동숭동의 대학원, 문리과대학, 중앙시험소, 법과대학 자리다. 대학로 아래쪽으로 종로를 지나 청계천변에 연접해 있는 ⑦은 을지로 5가의 사범대학, ⑧은 을지

[표 3-2-1] 서울대학교 개교 당시 단과대학과 그 연원

단과대학	연원
문리과대학	경성대학 법문학부 문과 계통과 동 이과 계통의 통합 개편
법과대학	경성대학 법문학부 법과 계통과 경성법학전문학교의 통합 개편
공과대학	경성대학 이공학부 공과 계통과 경성공업전문학교 및 경성광산전문학교의 통합 개편
의과대학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통합 개편
농과대학	수원농림전문학교의 개편
상과대학	경성경제전문학교의 개편
치과대학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개편
사범대학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의 통합 개편
예술대학	신설(미술부 · 음악부)

출처: 서울대학교(1955).



출처: 『서울특별시가도』(1946)(서울역사박물관, 2006: 79)의 일부분 위에 필자가 작업한 것이다. B 부분은 『서울특별시정도』(1947)(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2013: 204~205)의 일부분이다.

[그림 3-2-1]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각 캠퍼스의 위치

로 6가의 경성약학전문학교(1950년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으로 편입)다. 그리고 다시 청계천 이북으로 시선을 돌리면 ⑨에는 종암동의 상과대학, 청량리역 맞은편의 ⑩에는 문리과대학 예과가 위치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술대학 미술부와 음악부는 서울대학교의 설립과 함께 신설되었다. [그림 3-2-1]의 1946년 지도에는 예술대학이 동숭동의 ⑤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미술부의 경우 창설 당시 따로 교사가 없어 문리과대학 3층과 부속박물관 동북편의 목조 건물을 교사로 사용하다가 1949년에 경성공업전문학교 자리([그림 3-2-1]의 ⑥)로 이전했다. 음악부는 조선신궁 자리를 교사로 이용했다. [그림 3-2-1]에는 음악부의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1946년 지도의 A 부분(구 조선신궁 자리)이 1947년에 간행된 『서울특별시정도』에는 B와 같이 예술대학 음악부로 정확히 표시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위치는 각 단과대학의 전신이 된 학교들의 위치와 대체로 일치한다. 예컨대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 공과대학은 전신인 경성대학 법문학부 및 이공학부 캠퍼스를 계승하고, 상과대학은 경성경제전문학교, 치과대학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캠퍼스를 계승하는 식이다. 그런 까닭에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역사를 살펴보려면 서울대학교 설립 이후만으로 그 대상 시기를 한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역사는 국립서울대학교의 설립과 함께 각 단과대학을 구성하게 된 전신 학교들의 캠퍼스까지 거슬러 올라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전신이 된 학교들의 캠퍼스(이하에서는 이를 '원 캠퍼스'라고 칭한다)는 어떤 연유에서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던 것일까. 이하에서는 이에 답하기 위해 어떤 장소들에 학교가 설립되었고 또 그 장소들이 겪어온 변천을 시기와 장소별로 서술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캠퍼스 공간의 기원과 변천

1) 성내 중부 및 북부 지역의 원 캠퍼스(1895~1907)

조선 도성으로서의 서울 도시공간은 『주례(周禮)』의 좌묘우사(左廟右社) 면조후시(面朝後市) 원칙과 조산(祖山), 주산(主山)과 안산(案山),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와 같은 풍수지리 원리에 따라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또한 성곽이라는 물리적 시설에 의해 도성 안과 도성 밖 성저십리로 구분되었으며, 행정적으로는 방위에 따라 중, 북, 남, 동, 서의 5부로 나뉘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부는 청계천 남북 지역 일대, 북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남부는 광희문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남산 아래 지역과 성 밖의 뚝섬, 두모포, 한강진 지역을 포괄했고, 동부는 동대문과 혜화문 일대의 성 안과 성 밖 지역, 그리고 서부는 광화문 앞 육조거리의 서쪽으로부터 성 밖의 마포, 서강 등 경강변 지역까지를 포괄한다. 북부는 북촌이라고 불리는 지역과 대체로 일치했는데, 이곳에는 주로 집권 양반 세력인 노론이 집단으로 거주했다. 이에 반해 남산 아래의 남촌에는 무반과 더불어 실세한 남인과 소론 세력이 살았으며, 북촌과 남촌 사이의 중촌에는 역관, 의관, 율관 등의 기술직 관리나 아전, 그리고 시전상인들이 다수 거주했다(고동환, 2006).

다만 위와 같은 공간 구조 속에서도 서울은 일정한 변화를 보여 왔다. 초기의 서울 공간은 남북 방향을 국가의 상징 축으로 삼아 북부 지역에 주요 시설들이 입지했으나, 17세기 이후로는 동서로 잇는 종로가 도시의 주축을 이루는 한편, 도성 내 서남부 지역이 도시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했다(권영상, 2003: 150~151). 이와 같은 서남 방향으로의 발전 경향은 관료들의 거주 실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관료들 중에서도 상급 관료에 해당하는 칙임관(勅任官)·주임관(奏任官)·영관(領官) 등은 북촌이라 불린 ①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외에도, ② 경복궁·사직·세종로로 둘러싸인 서부 지역, ③ 종로를 중심으로 한 중부 일대에 집거했다. 이러한 분포 형태는 관료들이 독자적인 거주 구역을 형성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서울 내 거주 구역의 형성에 맞추어 거주지를 선택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吉田光男, 2009: 202~207).

초창기 원 캠퍼스의 위치는 이러한 서울의 공간 구조에 영향을 받았다. 고위 관료들(특히 실세한 인물)의 저택이나 관청의 건물들이 학교나 병원, 외국 공관 등과 같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요구되는 시설들의 용도로 제공되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갑신정변의 주도자로서 정변 실패와 함께 목숨을 잃어야 했던 홍영식의 재동 저택은 1885년에 개원하는 제중원 건물로 제공되었으며, 또 한 명의 갑신정변 주도자인 김옥균의 화동 저택 터에는 1900년에 관립중학교가 들어섰다. 서울대학교의 초창기 원 캠퍼스 또한 이러한 영향 밖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캠퍼스의 역사는 이와 같은 이유로 고위 관료의 저택이나 관청들이 모여 있던 북부 및 중부 지역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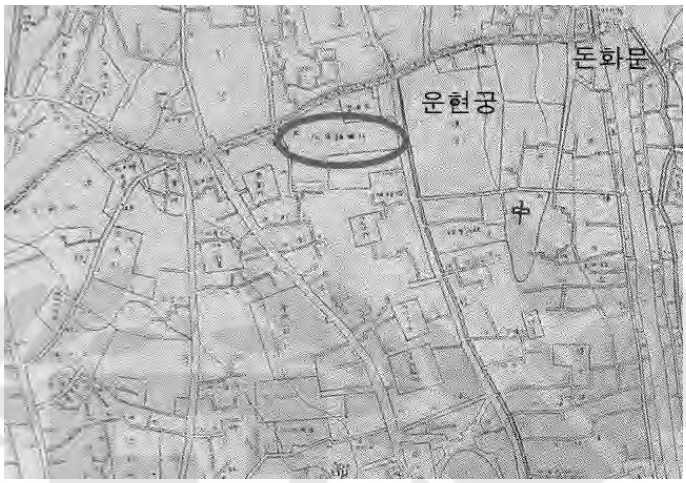
(1) 종로구 관훈동과 경운동: 의학교

1898년 11월 7일 지석영은 의학교 설립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학부대신 이도재는 이틀 후 수용의 뜻으로 답했고, 실제로 이듬해 3월 24일 대한제국 정부는 '의학교관제'를 공포했다. 근대식 의원 양성을 위해 관립교육기관이 설립된 것은 의학교가 최초이며, 그 점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뿌리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의학교의 개학은 관제 반포 6개월 뒤인 1899년 9월 4일이다. 의학교는 아관파천 때 살해당한 전 총리대신 김홍집의 저택에 설립되었으며, 이후 1907년 3월 15일 대한의원으로 통·폐합되어 같은 해 11월 21일 연건동의 새 교사로 이전할 때까지 사용되었다. 김홍집의 저택은 여러 사료를 통해 관인방(寬仁坊) 훈동(勳洞)에 위치했던 것이 확인된다(『프레시안』, 2010. 12. 13, 「최초의 의과대학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훈동의 경계조차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학교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먼저 『관립한성외국어학교일람』(1909)의 다음 기술은 의학교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 이상 대략 기술한 것과 같이 관립한성외국어학교는 구(舊) 관립한성일어학교 외에 4개 외국어학교를 합병하여 성립된 것이니, 교사(校舍)는 구 관립한성일어학교, 구 관립의학교 두 학교의 교사 및 그 인근에 있는 은언군(恩彦君)의 저택을 구입·수리하여 가까스로 개교해 수업했다(관립한성외국어학교, 1909: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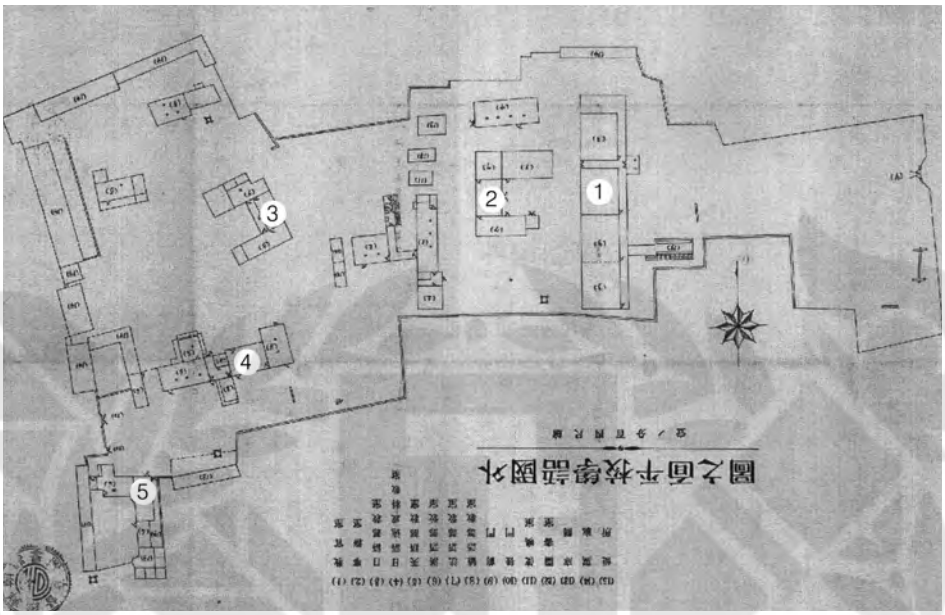
출처: 『경성부시가도』(1911)(허영환, 『정도(定都) 600년 서울지도』, 1994: 96~97)의 일부분 위에 필자가 작업한 것이다.

[그림 3-2-2] 경운동 관립한성외국어학교 위치

즉 기존의 5개 외국어학교를 통·폐합한 관립한성외국어학교는 관립한성일어학교[1]와 관립의학교 교사, 그리고 그에 인접해 있던 은언군의 저택을 구입하여 수리 후 교사로 활용했다는 내용이다. 1911년의 『경성부 시가도』에 표시된 관립한성외국어학교의 위치가 현재의 종로경찰서와 서울노인복지센터 일대에 해당한다고 한다면([그림 3-2-2] 참고), 결국 이 학교 부지 안에 일어학교와 의학교, 그리고 은언군 저택이 모두 위치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관립한성외국어학교일람』에 수록된 학교 평면도([그림 3-2-3])는 교사의 배치 상황을 상세하게 보여 준다. [그림 3-2-3]에는 일어, 법어(프랑스어), 영어, 덕어(독일어), 한어(중국어) 등 각 외국어교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곳들 중 어느 곳이 일어학교 및 의학교 교사이고 어느 곳이 은언군의 저택이었을까. 관립한성외국어학교의 설립이 일어학교가 본래 있던 자리에 인접 부지를 확보하여 다른 학교들을 수용한 형태를 취했음을 고려할 때, 일어교실은 일부 변동이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는 기왕의 일어학교 교사를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덕어교실이다. 본래 관립한성덕어학교는 북부 대안동에 있었는데, 이후 북부 박동(현 수송동, 1906년 12월에 이전)과 다시 대안동(1907년 5월에 이전)을 거쳐 1907년 11월 22일에 중부 훈동의 의학교 자리로 이전했다

1 일어학교는 1891년에 설립되었다. 1895년 5월 10일 칙령 제88호로 6개 외국어학교(일어, 영어, 법어, 덕어, 아어, 한어)를 설립함에 따라 '관립일어학교'로 불리게 되었으며, 이듬해인 1896년에 중부 교동, 즉 관립한성외국어학교 자리에 교사를 세우고 이전해 왔다.



출처: 관립한성외국어학교(1909).

[그림 3-2-3] 관립한성외국어학교 평면도(① 일어학교, ② 법어학교, ③ 영어학교, ④ 덕어학교, ⑤ 한어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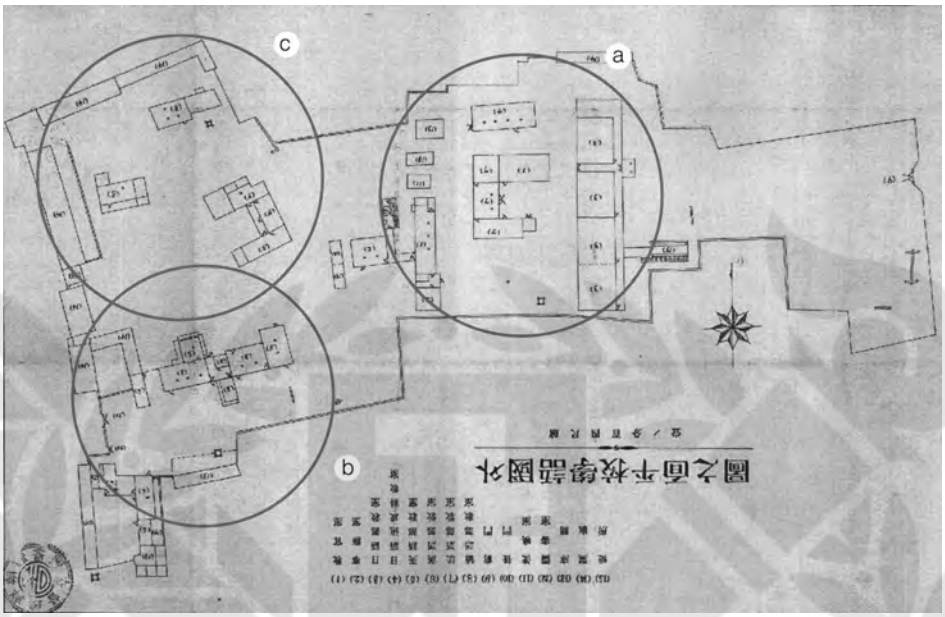


출처: 『한국경성전도』(경부철도주식회사, 1903) 위에 필자가 작업한 것이다.

[그림 3-2-4] 1903년 『한국경성전도』의 경운동 일대(Ⓐ), Ⓑ는 Ⓐ 위에 관립한성외국어학교 평면도를 겹쳐 놓은 것이다.

가 그대로 관립한성외국어학교에 흡수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덕어학교 또한 일어학교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교사를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덕어학교가 의학교 자리가 된다.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그림 3-2-3]을 1903년에 제작된 『한국경성전도』([그



출처: [그림 3-2-3] 참고.

[그림 3-2-5] 관립한성외국어학교 부지 내 구 일어학교(ⓐ), 구 덕어학교(=의학교, ⓑ), 구 은언군 저택(ⓒ) 권역

림 3-2-4-Ⓐ])와 같은 비율로 겹쳐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2-4-Ⓑ]를 보자. [그림 3-2-3]의 일어학교, 덕어학교 자리와 일치하는 곳에 텅 비어 있는 주변과 달리 일정의 부지와 건물들, 곧 [그림 3-2-4-Ⓑ]의 ⓐ와 ⓑ가 위치해 있고, 그것은 각각 일어학교와 의학교 교사 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 및 ⓑ와 중첩되지 않는 [그림 3-2-3]의 나머지 부분, 곧 영어학교 자리를 은언군의 저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요컨대 [그림 3-2-5]와 같이 관립한성외국어학교 부지 내에서 ⓐ권역(현재의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열린사이버대학교 일부)이 구 일본어학교, ⓑ권역(현재의 서울 종로경찰서 건물 자리)이 구 덕어학교, ⓒ권역(현재의 서울 종로경찰서 주차장 일대)이 은언군의 저택 자리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덕어학교는 중부 훈동의 의학교 자리로 이전했던 것인 만큼, ⓑ권역의 덕어학교가 바로 의학교 자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며, 이곳이 곧 의학교가 세워진 김홍집의 저택 자리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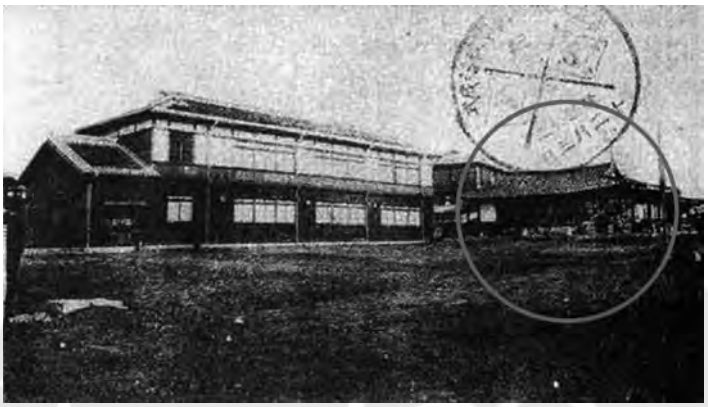
(2) 종로구 수송동: 한성사범학교

1894년 10월(음력 9월)에 학무아문은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한성에 사범학교 및 소학교를 개설했다. 이듬해 관제 개편으로 학무아문에서 그 이름을 바꾼 학부는 5월 10일(음력 4월 16일) '한성사범학교관제'(칙령 제79호)를 공포했고, 이에 따라 사범학교도 그 모습을 일신했다(후루카와 아키라, 2006: 141).

사범학교 교사는 당초 중부 교동(현 교동초등학교 자리)의 소학교 교사를 빌려 야학으로 출발했다가(후루카와 아키라, 2006: 141), 1905년 9월 북쪽으로 인접한 땅의 민가를 개축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경성사범학교, 1929: 1). 1906년 2월에 개청한 통감부는 곧 '보통학교령'과 '사범학교령' 등을 공포하여 기존의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변경하고, 우선 한성에 관립 9개교와 공립 1개교, 그리고 각 관찰부 소재지에 공립 13개교를 개설했다. 이때 설립된 관립교동보통학교가 1906년 9월 1일 관립한성사범학교로 개칭한 사범학교의 부속보통학교로 대용되었고, 1907년 9월부터는 관립안동보통학교가 그를 대신했다(후루카와 아키라, 2006: 71~74).

한편 관립한성사범학교는 1907년 4월에 중부 수진동(현 수송동)의 구 농상공학교 교사로 이전했다가, 인접 부지를 확보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이듬해에 다시 옮겨 갔다(경성사범학교, 1929: 1). 신축된 교사는 4,400여 평 부지에 목조 2층의 교사와 물리화학교실, 우천체조장, 식당, 기숙사 등을 합친 건평 610여 평과 부속보통학교 교사 80여 평의 규모로, 당시 다른 학교들을 압도하는 위용을 자랑했다고 한다(후루카와 아키라, 2006: 163~164). 이후 관립안동보통학교 또한 사범학교 구내로 이전하여 관립한성사범학교 부속보통학교가 되었다(경성사범학교, 1929: 1~2).

그런데 관립한성사범학교가 신축 건물로 이전할 때까지 사용했던 구 농상공학교 교사는 본래 왕실에 필요한 의복이나 식품 등을 관장하던 제용감 건물이었다. 제용감은 관리서(管理署)에서 잠시 사용하다가 황성신문사가 1904년 4월에 이전하여 약 4개월간 신문을 발행했다. 이후 농상공학교에서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서 황성신문사는 종로로 사옥을 옮겼다(오인환, 2008: 5장 2절). 교사의 신축 이전 후에도 제용감 건물이 철거된 것은 아니다. [그림 3-2-6]은 신축한 사범학교의 부속보통학교 건물을 촬영한 것인데, 부속보통학교 건물과 연결되어 있는 원안이 제용감 건물이며, 그 뒤편으로는 사범학교 건물도 보인다. 교사 신축 당시의 평면도인 [그림 3-2-7]을 보면, 교지의 확장은 제용감 건물로부터 동북 방향



출처: 이정우 · 심우갑(2008: 226). 오른쪽 원은 필자가 표시.

[그림 3-2-6] 수송동의 관립한성사범학교 부속보통학교 신축 교사와 제용감(원 안)

으로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 사범학교 본관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관립한성사범학교 및 부속보통학교 부지 내에는 일찍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협판으로 활동하던 묄렌도르프의 저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임오군란 때 피살된 민겸호의 집이 묄렌도르프에게 하사되었던 것인데, 1885년에 묄렌도르프가 청국으로 소환된 이후 독일영사관, 육영공원, 법어학교 및 아어학교가 그 자리를 거쳐 갔다(이순우, 2012: 158~161).



출처: 사진은 통감부(1910), 평면도는 이정우 · 심우갑(2008: 226).

[그림 3-2-7] 관립한성사범학교 및 부속보통학교의 평면도. 왼쪽 상단 사진은 교문 쪽에서 본 한성사범학교 교사. 원 안은 제용감 건물

(3) 종로구 광화문 앞 세종로: 법관양성소

법관양성소는 1895년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됨에 따라 재판소에서 사법 실무를 담당할 사법관의 조기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다. 법관양성소가 개학한 곳은 서대문 밖의 '놋전거리'라 불렸던 유동(鍮洞) 지역으로(김효전, 2014: 21), 현재의 신한은행 서대문역지점 일대에 해당한다([그림 3-2-8] 참고). 1년간 두 번의 졸업생을 낸 이후 법관양성소는 생도 모집을 하지 않게 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다. 법관양성소가 다시 문을 연 것은 1903년으로 2월 25일 자 『구한국관보』를 통해 모집 광고를 냈다(최기영, 2001: 2~3장). 3월 10일 『황성신문』은 법관양성소가 "신문 외 유동 신판서가"에서 다시 개소했다고 소식을 전했다(『황성신문』, 1903. 3. 10; 김효전, 2014: 22 재인용).

이후 법관양성소는 1907년 12월 농상공부가 위치해 있던 육조앞길 자리(현 세종로 KT 광화문지사)로 이전했다([그림 3-2-9] 참고). 농상공부는 을지로 2가 구리개의 구 제중원에 들어선 대동구락부(현 KEB하나은행 영업부지점 동쪽 부지) 자리로 이전했다(이순우, 2012: 138~140). 법관양성소는 1909년 법부 폐지와 함께 학부 소관의 법학교가 되었다가, 1911년에는 경성전수학교로 개칭되었으며, 1916년에 전문학교로 승격된 후 1922년에는 교명을 경성법학전문학교로 바꾸었다. 그렇지만 교사는 1938년 4월 청량리의 구 경성공립농업학교 자리로 이전할 때까지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지켰다(이순우, 2012: 294~295).



출처: 『경성용산시가도』(朝鮮駐箚憲兵隊司令部, 1911).

[그림 3-2-8] 서대문 밖 유동의 위치(1911)



출처: 서울역사박물관(2009: 26).

[그림 3-2-9] 1908년경 육조앞길(원 안이 법관양성소)

2) 성내 동부 지역 설치기(1907~1926)

1905년 11월 을사늑약의 체결로 이듬해 2월 통감부가 설치된 후로는 서울대학교 원 캠퍼스들의 위치와 성격에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위치를 보자. 이전에는 북부 및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었으나, 통감부 설치 이후로는 동부 지역에 원 캠퍼스들이 설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청계천의 이북, 창덕궁과 종묘의 이동 지역에 해당하는 동부 일대는 개발이 가장 늦은 지역이었다. 한말의 호적을 직업별로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동부 지역에 양반이 가장 적고 또 농업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다(조성윤, 1998;

이헌창, 1997; 주상훈, 2012: 134~135). 앞서 언급한 대한제국기 관료 거주지 분석에 따르더라도, 동부는 전체적으로 관료의 수가 적고 그나마 종로에 인접한 연화방에 거의 반수가 모여 사는 까닭에 그 이외 지역에서의 관료 비율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조선 후기 서울 공간의 발전이 서남 방향을 향하고 있던 사실에 대한 반증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성내 동부 지역에 원 캠퍼스들이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장소의 성격 또한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의미했다. 즉 더 이상 고위 관료들의 저택이나 관청 건물을 교사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이제 황실의 땅, 국유지에 근대의 모습을 한 건물들이 들어섰다.

(1) 종로구 대학로 일대: 대한의원, 공업전습소,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 법문학부

1906년 4월 9일 '한국 시정 개선에 관한 협의회' 제3차 회의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광제원, 의학교부속병원, 대한국적십자병원 등 기왕의 병원시설이 보잘것없다면서 신설된 대한국적십자병원을 중심으로 이들을 모두 통합하여 대규모 현대식 병원을 지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토 통감은 황실 병원인 적십자병원 대신 정부 병원인 광제원을 중심으로 통합할 것을 다시 제시했다. 이때 경희궁 터, 탑골공원, 용산 등이 병원 위치로 검토되었으나 결론을 맺지 못했다.

1907년 3월 10일 '대한의원관제'가 공포되었다. 대한의원은 황실이 아닌 의정부 직속 기관으로 정해졌으며, 병원의 부지는 경모궁 남쪽에 마련되었다. 경모궁은 정조 즉위 후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신위를 모시는 사당으로 지어진 곳이었다. 그러나 대한의원 설립 당시의 경모궁은 대한제국 설립 후 역대 왕들을 추존하면서 사도세자 신위도 종묘로 옮겨간 까닭에 빈 채로 남아 있었다. 건물 공사는 1906년 9월에 시작되어 이듬해 11월에 준공되었다. 대한제국 황실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형태의 통·폐합이었으나, 진료와 의학 교육을 담당하는 근대적 종합병원의 탄생은 결국 황실 재산의 터 위에서 이루어졌다(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2009: 40~43).

한편 같은 시기에 대한의원 맞은편 자리에는 실업교육을 위한 공업전습소가 들어섰다. 일찍이 대한제국 정부는 의학교가 설립되던 1899년에 '관립상공학교 관제'를 공포하고 실업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을 준비한 바 있었다. 본래 이듬해



출처: 통감부(1910).

[그림 3-2-10] 대한의원



출처: 통감부(1910).

[그림 3-2-11] 공업전습소

개설이 기대되었으나 편성된 예산의 취소로 신입생의 모집도 없이 한동안 이름만 유지되고 있었는데, 1904년에 이르러 관립 농상공학교로 개편되면서 실질적인 출범을 보았다(김근배, 1996: 425~427, 436).

관립 농상공학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송동의 제용감 건물을 사용했다. 그러나 1906년 8월 농상공학교의 농과가 농림학교로 독립해 나가면서 이듬해에 수원으로 이전했고, 상과는 선린상업학교로 분리되어 명동의 구 경성학당으로 옮겨갔으며, 공업과는 공업전습소의 개설과 함께 흡수·폐지되었다. 1908년 탁지부 측량과에서 제작한 한성의 지적도([그림 3-2-12])에는 동숭동과 이화동의 당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동서(東署) 숭신방도(崇信坊圖)」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이 지적도의 왼쪽 경계는 해방 후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들에 의해 '세느강'이라고 불렸던 흥덕동천(대학천)이며, 점선 안의 대형 필지가 일찍이 효종의 동생인 인평대군의 사저(조양루) 자리였다는 공업전습소 부지다(서울역사박물관, 2015b: 28~29, 191).

이후에도 이 일대에 계속해서 학교들이 세워졌다. 일제에 의한 강제 병합 이후인 1912년에는 공업전습소와 흥덕동천 사이의 부지에 중앙시험소가 설립되었다. 이어서 1916년에는 공업전습소와 중앙시험소 부지 내에 경성공업전문학교가 세워졌고, 연접한 남북도로(대학로)의 남쪽 끝 이화동 사거리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또한 1918년에 이르면 남북도로의 북쪽 끝 혜화동 로터리에 후에 경성고등상업학교로 개편되는 동양협회전문학교가 들어섰다. 그뿐만 아



출처: 『서울지도』(서울역사박물관, 2015b: 28~29)의 지도 위에 필자가 작업한 것이다.

[그림 3-2-12] 한성부 지적도에 표시된 공업전습소 부지

니라 1926년에는 경성제국대학 캠퍼스가 남북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편으로 자리하게 된다.

일제는 도쿄, 교토, 도호쿠, 규슈, 홋카이도에 이어 6번째 제국대학을 식민지 조선에 건립했다. 1924년에는 경성제국대학의 예비 단계로 대학 예과를 설치하고 당시 허허벌판과 같았던 청량리에 3층 벽돌 건물을 올렸다. 예과 개설 직후부터 제국대학 학부 개설을 위한 부지 물색이 이루어졌고, 결국 연건동과 동숭동 일대가 낙점되어 각각의 장소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와 법문학부가 개설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1920년대까지 현재의 대학로 일대에는 대한의원과 공업전습소를 시작으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및 의학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교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기존의 북부와 중부를 대신하는 관학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었다.



출처: 평면도는 서울대학교병원 역사문화센터(2009: 84), 사진은 서울대학교병원사편찬위원회(2015: 362~363).

[그림 3-2-13] 1924년 당시 조선총독부의원 평면도(원 안은 경모궁 내 영희전)와 동숭동에서 바라본 경모궁

(2) 중구 을지로 5가, 6가: 경성사범학교, 약학교

1911년에 공포된 '조선교육령'은 사범학교를 따로 두지 않고 당초 경성과 평양에 세워졌던 고등보통학교에 조선인 교원양성과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1914년 4월부터는 새롭게 위의 두 고등보통학교와 더불어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사범과를 설치하고, 이를 보통학교 조선인 교원의 양성기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관립한성사범학교와 부속보통학교는 폐지되고 부속학교는 관립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속보통학교로 개칭되었다. 한편 일본인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이와 별도로



[그림 3-2-14] 경모궁 자리에 들어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와 맞은편의 법문학부

각 고등보통학교 및 경성중학교 내에 임시교원양성소를 설치했다(경성사범학교, 1929: 2).

1921년에 이르러 임시교원양성소는 폐지되고 다시금 관립인 경성사범학교가 창설되었다. 일찍이 경성중학교 부속임시교원양성소 생도들의 교육 실습을 위해 경성종로공립심상고등소학교 분교장으로 설립되었다가 1915년 4월 1일 경성중학교에 이관된 경성중학교 부설단급소학교는 경성사범학교 부속단급소학교로 이관되었다. 나아가 제일고등보통학교 부설임시교원양성소의 생도에 관한 사무 및 직원의 감독 또한 경성사범학교가 담당하게 되었다. 연습과 및 양성소 생도의 수업을 경성중학교 가교실에서 시작했고, 새로 모집한 보통과 생도의 수업은 구 숭정전(조계사 본당 자리) 내 가교실에서 개시했다. 가교실 생활은 구 훈련원 자리인 황금정 5정목(현재의 을지로 5가)에 신축 교사 3동이 준공되기까지, 즉 1921년 4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경성사범학교, 1929: 5).

[그림 3-2-15]는 1929년 현재 경성사범학교 및 부속학교의 소재지를 표시한 지도다. 을지로 5가에는 경성사범학교(①)와 부속소학교(②)가 위치해 있고, 경성중학교 내에는 여전히 부속단급소학교(⑤)가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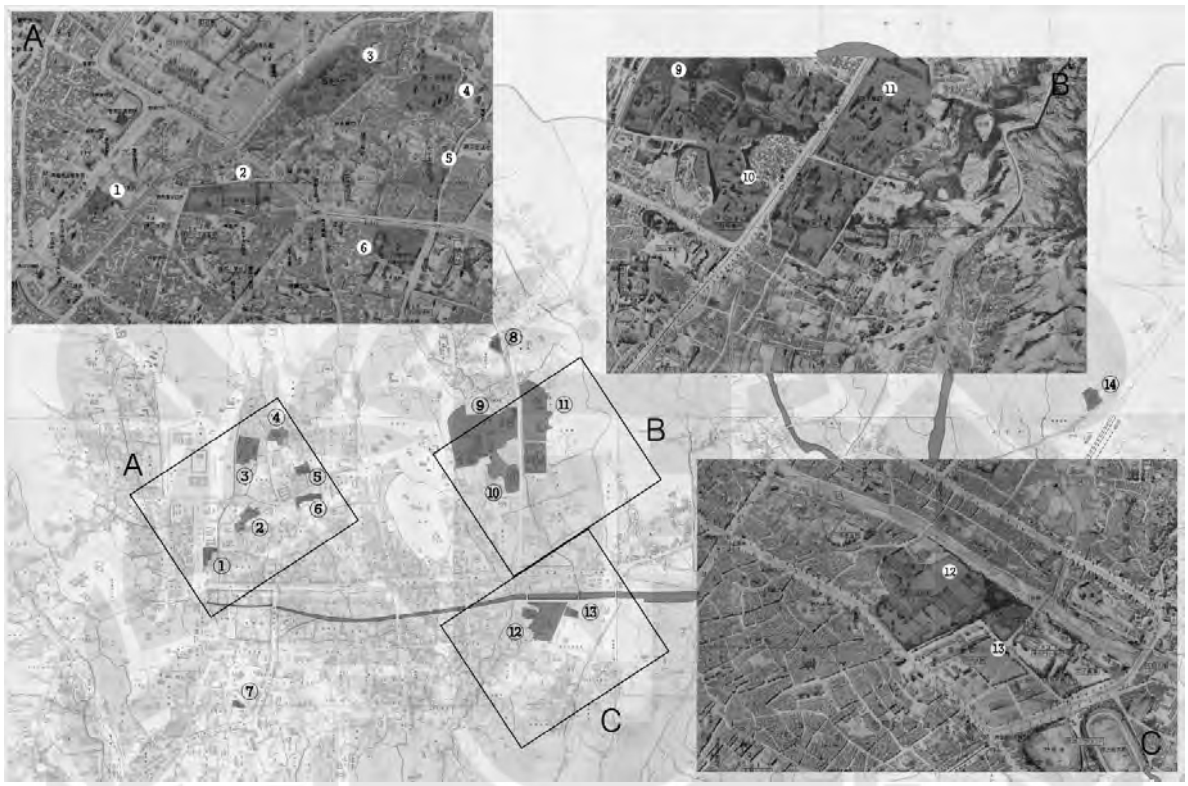


출처: 경성사범학교(1929)에 실린 지도의 일부분 위에 필자가 작업한 것이다.

[그림 3-2-15] 경성사범학교 및 부속학교의 소재지

성사범학교가 을지로 5가로 이전함으로써 관립 학교의 동부로 중심 이동은 보다 명확해졌다. 그밖에 부속보통학교(④)와 부속여자보통학교(③) 자리는 각각 한성사범학교와 의학교가 있던 경운동 및 관훈동 일대와 수송동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이 시기에 대학로 일대가 새로운 관학의 중심지로 부상했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북부 및 중부의 학교 부지들에도 여전히 학교 시설이 들어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16]은 1936년 현재 서울대학교의 원 캠퍼스 부지에 참고를 위해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의 부지를 추가로 표시한 것이다. 북부와 중부 지역을 나타내는 A권역에는 법학전문학교(①), 경성여자사범학교(②) 및 부속보통학교(⑥),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③) 등이 보이고, 화동의 관립 중학교 자리엔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④)가, 그리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과 제중원이 있던 재동에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⑤)가 자리하고 있다. 한편 B권역과 C권역은 모두 동부 지역에 해당한다. 먼저 B권역에서는 연건동 쪽의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및 부속병원(⑨), 경성의학전문학교(⑩)와 더불어, 길 건너 맞은편 동숭동의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공업전습소, 중앙시험소, 경성고등공업학교(이상 ⑪)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B권역 위로는 경성고등상업학교(⑧), 아래로는 경성사범학교(⑫)와 그를 이웃한 약학교(⑬)를 볼 수 있으며, A권역 아래 장곡천정(현 소공동 일대)에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⑦)가 자리했다.



출처: 『대경성정도(大京城精圖)』(1936)(서울역사박물관, 『서울지도』, 2006: 58~59)의 일부분 위에 필자가 작업한 것이다. A, B, C 세 구역의 그림은 『대경성부대관(大京城府大觀)』(1936)(서울역사박물관, 2015a)의 일부분 위에 필자가 작업한 것이다.

[그림 3-2-16] 1936년 당시 서울대학교 원 캠퍼스의 위치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⑭번 위치의 경성제국대학 예과다. 1926년의 시점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서울대학교 원 캠퍼스들은 수원의 농림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도성 내에 위치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예외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경성제국대학 예과다. 이것은 1930년대 후반 이후 명확하게 나타날 새로운 경향성, 곧 동대문 밖 동교(東郊) 지역으로의 학교 이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3) 성 밖 동교 지역 및 경성 밖 설치기(1924~1945)

동쪽 교외, 즉 동대문 밖 일대의 동교 지역에는 조선왕실 최대의 묘역인 동구릉이 형성되어 있었다.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시작으로 현릉(문종과 현덕왕후 권

씨), 목릉(선조와 의인왕후 박씨 · 인목왕후 김씨), 휘릉(인조의 계비 장열왕후 조씨), 숭릉(현종과 명성왕후 김씨), 혜릉(경종 비 단의왕후 심씨), 원릉(영조와 계비 정순왕후 김씨), 경릉(헌종과 효헌왕후 김씨 · 계비 효정왕후 홍씨), 수릉(추존왕 익종과 신정왕후)이 차례로 조성되어, 조선시대에는 이 일대를 '동릉'이라 불렀다. 역대 왕들은 이곳으로의 행행(行幸)을 통해 선왕의 기억과 권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으며, 동시에 능행은 교외 백성들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동교 지역에는 동릉 외에도 동대문을 통해 갈 수 있는 능이 여럿 있었다. 정릉(태조 계비 신덕왕후 강씨), 강릉(명종과 인순왕후 심씨), 태릉(중종 계비 문정왕후 윤씨), 의릉(경종과 계비 선의왕후 어씨) 등의 왕릉과 사도세자의 영우원, 순조 어머니인 수빈 박씨의 휘경원 등의 왕실 묘소들이 그것이다.

대한제국 성립 후 황후로서 국장이 치러진 명성황후의 홍릉(현재의 숭인원) 또한 동교 지역인 청량리에 마련되었다. 1919년 고종의 죽음 이후 명성황후는 금곡(현재의 홍유릉)으로 이장되어 고종과 함께 묻혔는데, 이때 경운궁에서 홍릉에 이르는 길은 왕실의 의례적 장소가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한민족의 새로운 정치적 장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김지영, 2009).

1924년에 숭인원 남쪽, 지금의 청량리역 맞은편에 경성제국대학 예과가 들어선 이후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여러 학교가 동교 지역으로 옮겨 갔다. 1936년 경성 시역의 확장을 전후로 하여 이루어진 일이었다. 시역의 확장으로 교외 지역의 개발이 중요해지고, 또 반대로 관립 학교의 이전은 교외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주상훈, 2012).

(1) 동대문구 제기동: 경성여자사범학교

동교 지역에는 왕릉뿐만 아니라 여러 의식을 치르기 위한 왕실의 제단들도 존재했다. 그중 하나가 현재의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선농단이다. 농사의 신에게 제를 올리는 국가 제사처인 선농단은 풍년을 기원하는 기곡제나 해갈을 비는 기우제의 장소가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국왕이 친경을 행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농사를 권하고 태평성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 고종은 100여 년간 거행되지 않았던 친경례를 친경식으로 부흥시켰으나, 1908년 제사제도의 개정과 함께 선농단의 위폐가 사직단으로 옮겨지면서 사실상 제사처로서의 의미는 상실되었다.

이후 선농단은 오랜 기간 방치 상태에 있다가 1934년에 선농단 일대 국유지 21,583평이 경성여자사범학교의 부지로 선정되었다. 선농단 자체는 경성여자사범학교 교사가 신축되는 1937년까지도 그대로 존속했으나, 1939년 학교 기숙사가 신축되면서 단의 위치 등에 변경이 가해졌다.

선농단과 그 일대는 1945년까지 경성여자사범학교가 자리를 지켰다. 이후 1946년에 경성여자사범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듬해에는 국립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가 들어섰다. 1951년 신학제에 따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가 되었다가 1954년부터 1975년까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용두동 캠퍼스로 이용되었다(박희성, 2012).

(2) 동대문구 청량리동: 경성제국대학 예과, 경성법학전문학교

청량리 일대는 농사짓기에 적합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왕실 소유의 토지인 적전(籍田)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적전은 국왕이 농경의 시범을 보이기 위한 의례용 토지로 조선시대에 개성과 한성 두 곳에 설치되었는데, 개성의 것을 서적전이라 불렀던 까닭에 한성의 적전에는 동적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서울역사박물관, 2012).

이 지역에 경성제국대학 예과 이전에도 학교는 들어서 있었다. 1918년에 잠업종묘장의 시설 일부를 차용해 개교한 경성공립농업학교가 그것이다. 개교 후 두 달여 만에 정식 교사를 마련하여 현재의 청량고등학교 부지에 정착했다. 경성공립농업학교는 1937년에 다시금 총 경비 40만 원으로 9만여 평의 땅에 새로운 교사를 설립하여 이전했다. 교사의 규모는 당시 농업학교로서는 동양 제일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현재의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가 바로 이 자리에 해당한다(박윤석, 2014: 148~150).

경성공립농업학교가 떠나간 자리에는 오랜 기간 광화문 앞에 자리하고 있던 법학전문학교가 이전했다. 1937년 9월 18일 교사 이전을 위한 신축 공사가 시작되어 이듬해 4월 15일 준공과 함께 교사 이전이 이루어졌다(경성법학전문학교, 1941: 3).

(3) 성북구 종암동: 경성고등상업학교

1900년 타이완협회의 회두인 가쓰라 다로(桂太郎)는 대만 및 화남지방에서 공사

(公私)의 사업에 종사할 인력 양성을 목표로 도쿄에 타이완협회학교를 설립했다. 이후 타이완협회는 동양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교명 또한 동양협회전문학교[현 일본의 다쿠쇼쿠대학(拓殖大學)의 전신]로 개칭했다. 1907년 10월에는 현재의 서울 필동에 경성분교를 세웠다. 그러나 1918년 도쿄의 본교와 완전히 독립했고, 1919년에는 숭이동([그림 3-2-16]의 ⑧)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했다. 1920년에 사립 경성고등상업학교라고 개칭했고, 2년 뒤에는 조선총독부에 이관되어 관립 학교가 되었다(경성고등상업학교, 1923: 3~6).

한편 전라도의 부호 김종익 가문은 간호선교사인 루이스의 사택(현 종로구 창신동)에 세워진 경성여자의학강습소(1928년 조선여자의학강습소로 개교)를 인수하여 1938년 4월 재단법인 우석학원을 설립하고 같은 해 5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개교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전용 교사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병리학교실을 빌려 사용하는 한편(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2009: 169~171), 경성부 종암정(현 성북구 종암동)에 교사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1939년 종암정 교사에는 경성고등상업학교가 건물을 차용하는 형태로 들어섰고,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는 경성고등상업학교가 떠난 숭이동 교사로 이전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0년에 우석학원은 종암정의 신축 교사와 부속 건물을 경성고등상업학교에 헌납했다(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06: 61).

(4) 노원구 공릉동: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경성광산전문학교

1941년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가 당시의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에 세워졌다. 이 시기 다른 교사들의 이전과 설립이 1936년에 확장된 서울 시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과 달리,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는 같은 동교 지역이라고 해도 서울의 시역을 넘어서고 있었다. 어째서 당시로서는 서울과의 거리가 상당했던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가 경성제국대학 개교 후 17년이나 지난 시점에 설립된 것은 일제가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기초과학 분야의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경성제국대학의 교사가 공덕리에 자리한 것 또한 이러한 설립 목적과 연관된다. 즉 질소비료공장이 있던 평남 흥남시, 수력발전소가 있던 평남 부전군 등 일제 시대 최대 공업지대와의 연계가 용이했던 것이다(『한국일보』,



출처: 『大京城精圖』(1936)의 일부분 위에 필자가 작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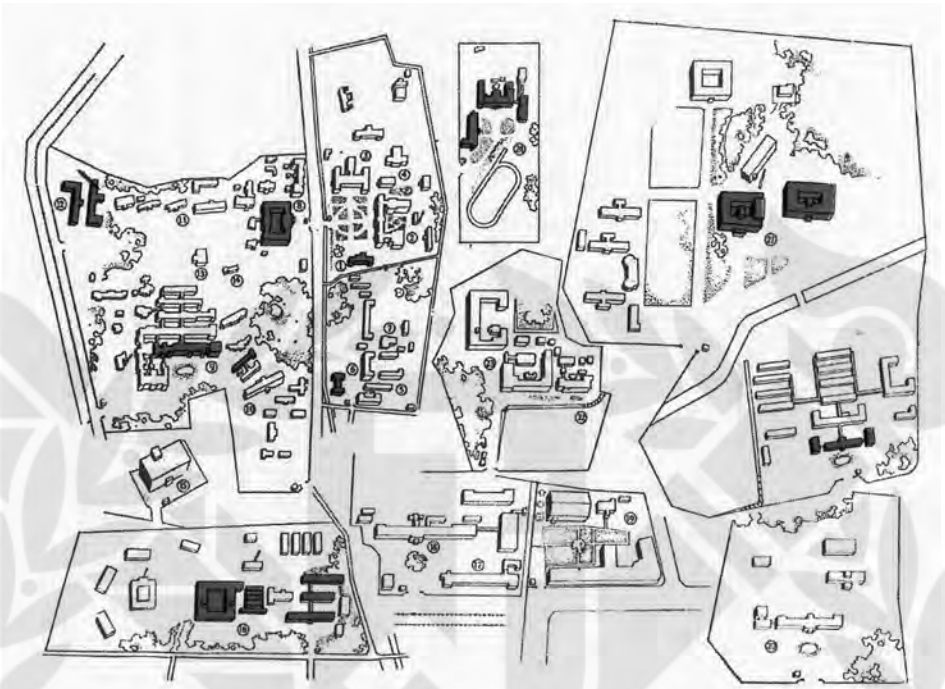
[그림 3-2-17] 동교 지역 서울대학교 원 캠퍼스의 분포

2010. 3. 9, 「식민지 엘리트 교육, 경성제대의 흔적들」).

1939년 4월에는 조선총독부령 제65호로 동숭동 경성고등공업학교 구내에 경성광산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또한 일제의 전쟁 수행 여파로 조선의 광산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수요가 급증한 탓이었다. 1943년에 경성광산전문학교가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가 있는 공덕리로 이전하게 되면서 두 학교는 서로 이웃하게 되었다.

제3절 구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현재

국립서울대학교의 창설 이후 캠퍼스 위치는 크고 작은 변동을 겪었다. 특히나 개교 후 불과 4년 뒤에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각 캠퍼스들은 전란을 피해 남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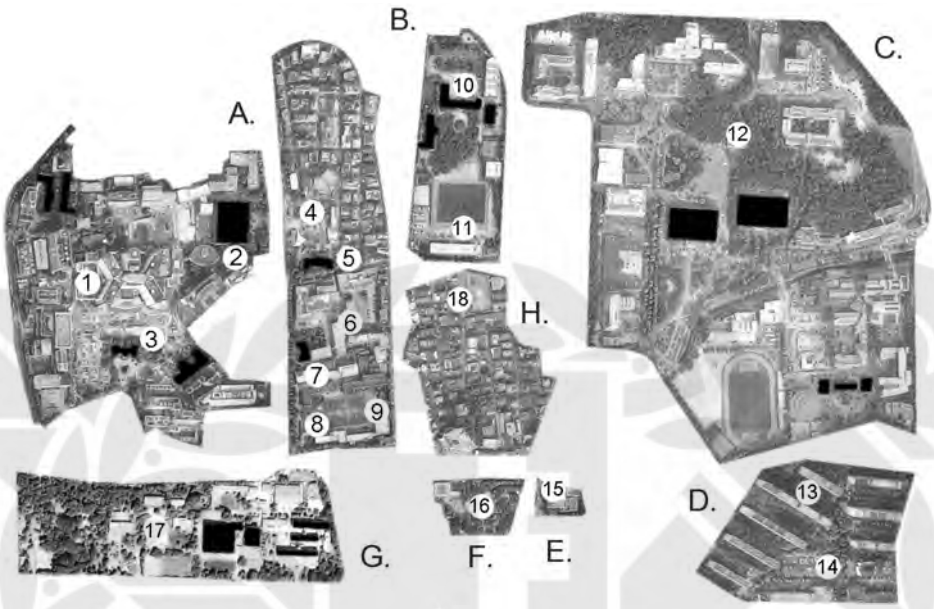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1960)에서 인용.

[그림 3-2-18] 서울대학교 소속 기관 조감도(① 본부, ② 문리과대학, ③ 부속도서관, ④ 박물관, ⑤ 미술대학, ⑥ 법과대학, ⑦ 행정대학원, ⑧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생약연구소, ⑨ 의과대학 부속병원, ⑩ 수의과대학, ⑪ 약학대학, ⑫ 의과대학 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 ⑬ 교육회관, ⑭ 대학신문사, ⑮ 치과대학, ⑯ 농과대학, ⑰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 ⑱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⑲ 음악대학, ⑳ 문리대학 이학부, ㉑ 공과대학, ㉒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㉓ 사범대학, ㉔ 상과대학)

대이동을 해야 했다. 전쟁이 끝난 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휴전 협정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53년 8월 7일 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들은 환도를 위한 복귀 업무를 시작하여 10월 17일에 완료했다. 8월 2일 미8군 사령부는 1951년 5월 이후 사용해 오던 동숭동 캠퍼스를 반환하고 용산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의과대학은 여전히 미5공군이 사용 중이었고, 음악대학 등의 교사는 완전히 불타 없어진 상태였다. 캠퍼스가 파괴되거나 아직 인수받지 못한 단과대학들은 다른 캠퍼스에 임시 수용되었다. 공덕리의 본교사가 미군 병원으로 사용되던 공과대학은 용두동의 사대부속중학교 임시 교사에, 수의과대학과 음악대학은 동숭동 법과대학에, 의과대학은 문리과대학 임시 교사에 세를 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공과대학이 본 교사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1954년 8월 6일의 일



출처: 『서울대학교일람(1959~1960)』

[그림 3-2-19] 서울대학교 구 캠퍼스의 현재(검은색은 남아 있는 건물을 표시한 것이다)[A. 연건동 및 동숭동, B. 종암동, C. 하계동(공릉동), D. 청량리동, E. 광희동(을지로 6가), F. 광희동(을지로 5가), G. 수원, H. 제기동(구 용두동), ① 서울대학교병원, 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③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의원 본관(구 대한의원), ④ 마로니에 공원, ⑤ 예술가의 집(구 서울대학교 본부),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기록관(구 중앙시험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⑧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⑨ 서울사대부설여자중학교, ⑩ 서울사대부설중학교, ⑪ 서울사대부설고등학교, ⑫ 서울과학기술대학교, ⑬ 미주아파트, ⑭ 한림대학교 치과병원 부속건물(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이학부), ⑮ 중구 구민회관, ⑯ 훈련원공원, ⑰ 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⑱ 선농단]

이다(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06: 66~67).

1960년대에 들어서부터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캠퍼스들을 한 곳에 모으는 종합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했다. 1975년에 관악캠퍼스가 조성됨에 따라 의과대학의 연건캠퍼스 및 농과대학의 수원캠퍼스와 더불어 3대 캠퍼스 체제가 이루어졌다. 이후 수의과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각각 2002년과 2003년에 관악캠퍼스 내로 이전함으로써 서울대학교가 추진한 종합화계획은 최종적인 완결을 보았다. 그 결과 관악과 연건 2대 캠퍼스 체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종합화 이후 남겨진 캠퍼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림 3-2-18]은 『서울대학교일람(1959~1960)』에 수록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소속 기관 조감도다. 연건동 및 동숭동, 종암동, 공릉동, 청량리동, 을지로 5가 및 6가, 수원, 제기동의 캠퍼스 모습이 한 곳에 모아져 있다. [그림 3-2-19]는 [그림 3-2-18]을 기준으

로 해당하는 부지들의 현재 위성사진을 같은 방식으로 배치한 것이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살펴보면, 연건동(A의 왼편)에는 여전히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가 자리하고 있으나, 맞은편 동숭동(A의 오른편)에는 마로니에 공원과 방송통신대학이 들어섰다. 상과대학이 있던 종암동(B)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부설중학교와 부설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공릉동(C)의 공과대학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되었고, 청량리(D)의 문리과대학 이학부(구 경성제국대학 예과) 자리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예과 건물 자체는 한림대학교 치과병원의 부속 건물로 남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최근 철거되어 사라지고 말았다. 을지로 6가(E)의 음악대학(구 약학교) 자리에는 중구 구민회관이 들어섰으며, 을지로 5가(F)의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 및 부속고등학교 자리는 원래의 이름을 찾아 훈련원공원이 되었다. 수원(G)의 농과대학 자리는 캠퍼스가 이전해 간 채로 남아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기동(H)(구 용두동 캠퍼스)의 사범대학 캠퍼스는 교내에 있던 선농단을 제외하고는 개인 주택과 상가 건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는 2018년 예정으로 시흥캠퍼스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어떤 구상 아래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진 바 없다. 그렇지만 종합화를 목표로 해 온 기왕의 구상과는 또 다른 방향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금까지 겹겹이 쌓여 온 공간의 역사 위에 새로운 미래를 꿈꾸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참고문헌

자료

『프레시안』, 『황성신문』, 『한국일보』, 『동아일보』, 『구한국관보』, 『미군정관보』

단행본 및 논문

강명숙, 2004, 「국립서울대학교 설립과정에 대한 재론」, 『한국교육사학』, 26(1).

경성고등상업학교, 1923, 『경성고등상업학교일람』 제1권,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1941, 『경성법학전문학교일람』,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1929, 『경성사범학교총람』.

고동환, 2006, 「조선후기 서울의 공간구성과 공간인식」, 『서울학연구』 26.

관립한성외국어학교, 1909, 『관립한성외국어학교일람』.

권영상, 2003, 「조선후기 한성부 도시공간의 구조: 주요시설과 도로체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근배, 1996, 「대한제국기-일제 초 관립공업전습소의 설립과 운영」, 『한국문화』 18.

김지영, 2009, 「근대기 국가 의례의 장으로서의 동교(東郊)」, 『서울학연구』 36.

김효전, 2014, 『법관양성소와 근대한국』, 소명출판.

박용희, 2013, 「전후 고등교육의 재개와 미국의 역할: 독일과 한국 대학교육 재편과정에 대한 비교」, 『독일연구』 26.

박윤석, 2014, 「경농(京農) 연대기: 1918~1937: 경성공립농업학교의 일면사를 통해 본 서울시립대학교의 역사사회학적 장소성」, 『도시인문학연구』 6.

박희성, 2012, 「조선 선농단(先農壇) 훼손과정으로 본 동교(東郊)의 도시재편 양상」, 『향토서울』 81.

서울대학교, 1955, 『서울대학교일람』,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1960, 『서울대학교일람(1959~1960)』,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06, 『서울대학교 60년사』,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2009, 『사진과 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 의료문화사 1879~1960』, 웅진지식하우스.

서울대학교병원사 편찬위원회, 2015, 『꿈, 일상, 추억 서울대학교병원 130년을 담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2013, 『지도: 20세기 동아시아 역사를 말하다』,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2006, 『서울지도』,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2009, 『광화문 연가(年歌)』,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2012, 『청량-일탈과 일상』,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2015a, 『대경성부대관(大京城府大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2015b, 『1908 한성부 지적도』, 서울역사박물관.

손인수, 1992, 『미군정과 교육정책』, 민영사.
아베 히로시(阿部洋) 외 편, 1987, 『해방 후 한국의 교육개혁: 미군정기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원.
오인환, 2008, 『100년 전 한성을 누비다』, 한국학술정보.
오제연, 2009, 「광복 후 국립서울대학교의 설립과 개교 인식」, 이태진 편, 『국립서울대학교 개교 원년 재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오천석, 1964, 『한국신교육사』, 현대교육총서출판사.
유진오, 1977, 『양호기』, 고려대출판부.
윤영도, 2006, 「2차 세계대전 후 남한과 대만(臺灣)의 국립대학의 초기 형성 연구」, 『중국현대문학』 40.
이광호, 1985, 「미군정의 교육정책」, 강만길 편,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이순우, 2012, 『광화문 육조앞길』, 하늘재.
이순우, 2012, 『정동과 각국공사관』, 하늘재.
이정우 · 심우갑, 2008, 「통감부기 임시학사확장사업에 의한 관공립 보통학교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4(6).
이헌창, 1997, 『민적통계표(民籍統計表)의 해설과 이용 방법』,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정태수 편저, 1992, 『미군정기 한국교육사자료집』, 홍지원.
조성윤, 1998, 「조선후기 서울주민의 신분 및 직업 구성」, 서울학연구소 편, 『조선후기 서울의 사회와 생활』, 서울학연구소.
주상훈, 2012, 「일제강점기 경성의 관립 학교 입지와 대학로 지역의 개발 과정」, 『서울학연구』 46.
최기영, 2001, 「한말 법관양성소의 운영과 교육」, 『한국근현대사연구』 16.
최혜월, 1988, 「미군정기 국대안반대운동의 성격」, 『역사비평』 6-30.
통감부, 1910, 『일한병합기념 대일본제국조선사진첩』.
한국법제연구회 편, 1971, 『미군정법령총람』, 한국법제연구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2001,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인식" 자료』, 선인.
후루카와 아키라 저, 이성욱 역, 2006,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 경인문화사.
吉田光男, 2009, 『近世ソウル都市社會研究: 漢城の街と住民』, 草風館.
An, Jong-Chol, 2010, "No Distinction between Sacred and Secular: Horace H. Underwood and Korean-American Relations, 1934-1948,"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3(2), December 2010.
Devine, Michael J., edited and annotated, 2001, *Korea in War, Revolution and Peace: The Recollections of Horace G. Underwood*, Yonsei University Press.
Seth, Michael J., 2002, *Education Fever: Society, Politics, and the Pursuit of Schooling in South Korea*,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1988, "History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Manuscript in Office of the Chief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 C. (Seoul and Tokyo, 1947, 1948)(『주한미군사(HUSAFIK)』, Vol. 1-4).

제4부

각 대학 전사(前史)

VERI
LUX
TAS
MEA

제1장

간호대학 전사

간호교육은 구한말 개화기부터 시작되어 간호사와 산파라는 전문 직업 활동을 통해 여성과 간호사의 지위 향상과 독립운동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신여성 지도자를 양성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으로 발족하기까지 많은 변화와 시련 속에서도 교육, 연구, 봉사 분야에서 간호계를 이끄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학문으로 성장하여 2016년 현재 간호대학 개학 110주년을 앞두고 있다.

1945년 8 · 15 광복 전까지는 간호과와 산파과가 동일한 학교체제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산과정도 간호대학 역사의 일부라는 데 의견을 모아 졸업생 또한 간호대학 동문으로 인정하여 간호대학 역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간호교육은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간호과에서 교육을 시작해,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간호부과와 산파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간호부양성과, 산파양성과를 거쳐 광복이 될 때까지 학교 명칭, 수업연한, 입학과 졸업, 교과목 등에서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도 꿋꿋하게 성장해 왔다. 광복 후 간호고등학교에서 다시 출발하여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졸업생과 교사들이 납북되는 시련을 겪고 의과대학 간호학과를 거쳐 현재의 간호대학으로 성장했다. 1907~1945년까지 간호사와 조산사 포함 졸업생 509명을 배출하여 여러 분야에서 활동함으로써 여성 전문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본 대학 전사 기술은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30년사(1945~1975년)』, 『서울대학

교 간호교육 90년사(1907~1997년)』,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1907~2007년)』에서 자료와 내용을 인용했음을 밝혀 둔다.

제1절 개학기의 간호교육

1) 관립 간호교육의 시작(1907)

서양의 근대의학과 간호 지식에 근거한 우리나라 관립 간호교육은, 1906년 6월 1일 광제원(대한의원 이전) 자료에 의하면 일본인 간호부 3명을 임명해 운영함으로써 병원에서 간호업무가 시작되었다(서울대학교병원 편, 1993). 1907년 3월 10일 대한제국이 의정부 산하에 대한의원을 설립하면서 공포한 '대한의원관제(大韓醫院官制)'(칙령 제9호)에 "대한의원의 설립 목적은 위생(衛生), 의육(醫育), 치병(治病)의 3가지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치료부, 교육부, 위생부를 두었으며 그중 교육부에서 의사, 약제사, 산파, 간호부를 양성하고 이에 필요한 교과서를 편찬하는 것"이었다(『구한국관보』, 1907. 3. 13, [그림 4-1-1]).

관제 반포 이후 대한의원과 그 교육 시설은 점차 모습을 드러냈다. 운영비는 47,952원이 책정되어 이 중 교육비로 6,535원이 할당되었다[『각공문래안(各公文來案)』(규, 17824), 1907. 3. 28; 신동원, 1996: 382;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90년사 편찬위원회 편, 1997: 43에서 재인용]. 학교 건물은 관제가 시작된 3월 15일부터 대한의원에 임시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다가 경성 동소문 내의 함춘원 남쪽에 병원 본관 건물로 11월에 이전하여 사무를 통합했다(서울대학교병원 편, 1993).

대한의원 교육부에서는 1907년 4월 처음 학원모집 공고를 냈으나 한 명도 졸업하지 못했다. 1908년에는 "대한의원에서 간호부 견습생을 모집한다는데 이에 주의하는 사람은 이 병원에 문의하기를 요한다"(『대한매일신보』, 1908. 6. 28)와 "대한의원에서 우리나라[我國] 여인 중 간호부 견습생을 다수히 모집 중"이라는 신문기사(『황성신문』, 1908. 7. 31)를 게재했다. 대한의원의 업무 확장에 간호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간호부를 양성하고자 한국 여성 중에서 견습생을 모집한



官報 第三千七百十二號 光武十一年三月十三日 水曜 議政府官報課

宮廷錄事

詔曰金弘文館副學士閔泳徽等十四人ハ學識優贍ニシテ文行相孚ルヲ以テ特ニ侍講院侍講官ニ擬ス

三月十一日

詔曰近來各學校ノ學生ニシテ往往新知識ヲ抱持シ自ラ高ク標置シテ政府ノ法令ヲ蔑視スルノ弊アリ

勅令

勅令第九號

大韓醫院官制

第一條 大韓醫院ハ議政府ニ直隸シ內外人ノ疾病ヲ治療シ兼テ醫生ヲ養成スルヲ掌ル

第二條 大韓醫院ニ左開職員ヲ置ク

院長 一人
顧問 一人
醫員 十七人
教官 七人
書記 九人
通譯官 三人
通譯官補 五人
書員 十人
校夫 三人

第三條 院長ハ奏任ニシテ醫員以下職員ヲ率督シ院務ヲ掌理ス

第四條 院長ハ內部大臣ノ指揮ヲ承ケ院務ヲ掌理ス

第五條 院長ハ內部ノ委任ヲ受ケ醫生ノ入學及卒業ニ關スル事務ヲ掌理ス

第六條 大韓醫院ハ左開三部ヲ分ツ

一 治療部
二 教育部

布達

宮內府官制中改正ヲ左ノ件ヲ左ノ如ク定ス

光武十一年三月九日 勅 宮內府大臣侯爵 朴齊純

布達第一百五十一號

宮內府官制第三十四條ニ準據シ內部大臣ノ主事中ヨリ任十一等ヲ一人ヲ奏任ニ入ル

叙任及辭令

宮內府主事 弘文館修撰 金鶴秀

光武十一年三月九日 勅 宮內府大臣侯爵 朴齊純

布達第一百五十一號

宮內府官制第三十四條ニ準據シ內部大臣ノ主事中ヨリ任十一等ヲ一人ヲ奏任ニ入ル

叙任及辭令

弘文館修撰 金鶴秀

侍講院侍講官 弘文館副學士 閔泳徽 宋完燮 金永喆 宋元會 李泰莊

侍講院侍講官 弘文館副學士 閔泳徽 宋完燮 金永喆 宋元會 李泰莊

命宮內府特進官叙勳一等 任弘文館修撰叙奏任官四等

命宮內府特進官叙勳一等 任弘文館修撰叙奏任官四等

[그림 4-1-1] 『구한국관보』, 1907. 3. 13.

것이다. 그 결과 1908년 3명, 1909년 6명의 조선인 여성이 대한의원의 간호부 견습생으로 있었으나, 이들도 정식 학생이 아니어서 졸업은 하지 못했다(『구한국관보』, 1907. 4. 11).[1]

2)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간호과와 산파과 설치(1909. 2~1910. 9)

대한의원은 1909년 2월 4일 '대한의원관제'(칙령 제10호)를 개정하여 의사, 약제사, 산파와 간호부의 양성을 위해 따로 부속의학교를 두도록 함으로써 빈약한 의료인력 양성 기능을 강화했다. 1910년에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규칙을 제정했다(『구한국관보』, 1909. 2. 26). 1910년 2월 1일에는 '대한의원부속의학교규칙'을 내부령(內部令) 제5호로 제정하여 부속의학교의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확하고 자

1 [부록 1]의 칙령 제9호 대한의원 관제(1907. 3. 10) 제16조를 참조한다.

세하게 규정했다.[2]

규칙은 5장 31조로 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학과의 명칭을 부여하여 의학과, 약학과, 산파과와 간호과를 설치하고, 산파과와 간호과의 수업연한은 각 2년이며, 입학 정원은 간호과 20명, 산파과 10명이었다. 한 학년을 2학기로 나누어 전학기(4. 1~10. 20)와 후학기(10. 21~다음해 3. 31)라 했고, 봄(4. 1~10), 여름(7. 21~8. 31), 겨울(12. 29~다음해 1. 7)에 휴업하도록 했다.

제2장은 '입학, 퇴학, 징계, 출학(黜學)'에 관한 것으로 최종 학력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입학 자격을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품행이 방정하고 신체검사 및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로 했다. 입학시험 과목은 산파과와 간호과는 독서(국문 오륜, 행실)와 작문(간단한 국문 작문)이었다. 18조에서 20조까지는 퇴학, 징계, 출학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했다.

제3장은 시험과 졸업에 관한 것으로 학기시험, 학년시험, 졸업시험을 두도록 했으며, 한 과목을 100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총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졸업한 사람에게 대한의원장이 졸업증서를 주었다.

제4장은 학비와 의무에 관한 조항이다. 수업료는 따로 받지 않고 수업료, 식비, 피복비, 잡비 일체를 관비로 지급하고 졸업 후 간호과와 산파과는 1년을 의무적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했다. 퇴학이나 출학의 경우, 그리고 졸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재학 중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도록 했다.

제5장은 원외(員外) 학생에 관한 조항이다. 사비(私費) 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정원 외로 산파과 10명이 가능하며, 이들은 의무연한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1) 교과과정

공통으로 일제 식민교육의 기초과목인 수신(修身: 국민윤리)과 일어를 매 학기 배웠다. 그러나 입학 시에 일어가 필요하지는 않았다.

---

2 [부록 2]의 내부령 제5호 대한의원부속의학교규칙으로 총 5장과 부칙으로 된 간호과 관련 31조를 『구한국관보』에 1910년 2월 1일 내부대신 박제순이 공포했다.

간호과 1학년은 공통으로 수학, 해부학대의, 생리학대의를 배웠고 소독법 및 실습, 간호학 및 실습, 붕대학 실습, 기계취급법을, 2학년은 수술 보조[介補] 및 소독법, 구급법, 병실장치법, 붕대학 및 실습, 간호학 및 실습, 기계취급법을 배웠다.

산파과 1학년은 수학, 해부학대의, 생리학대의, 산파학을, 2학년은 태생학(胎生學), 소독법 및 실습, 산파학 및 실습, 육아법을 배웠다([표 4-1-1]).

(2) 입학

간호과와 산파과는 각각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했다. 간호과, 산파과 학생 모집 관련 자료는 『황성신문』 1910년 2월 4일 자에 실린 "대한의원에서는 간호부 10명을 모집한다는데 모집기한은 본월 15일 내로 정하고 연령은 18세로부터 30세까지이며, 시험은 신체검사, 편가명(片假名, 가타카나) 교용(交用)한 한문독서, 수학은 가감승제(加減乘除)라더라"라는 기사만 나와 있다. 이는 부속의학교규칙에서 정한 입학 자격 연령 및 시험과목과 달라, 학생이 아니라 병원 직원인 간호부를 모집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0년의 간호과 모집생들은 졸업은 하지 못했다.

[표 4-1-1]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간호과와 산파과 학과표

• 간호과

학년	학기	학 과
1학년	전학기	수신, 해부학대의, 생리학대의, 소독법 및 실습, 수학, 일어
	후학기	수신, 해부학대의, 생리학대의, 간호학 및 실습, 붕대학 실습, 기계취급법, 수학, 일어
2학년	전학기	수신, 수술 보조 및 소독법, 병실장치법, 간호학 및 실습, 붕대학 실습, 기계취급법, 일어
	후학기	수신, 수술 보조 및 소독법, 구급법, 간호학 및 실습, 붕대학 실습, 기계취급법, 일어

• 산파과

학년	학기	학 과
1학년	전학기	수신, 해부학대의, 생리학대의, 수학, 일어
	후학기	수신, 해부학대의, 생리학대의, 산파학, 수학, 일어
2학년	전학기	수신, 태생학, 소독법 및 실습, 산파학 및 실습, 일어
	후학기	수신, 육아법, 산파학 및 실습, 일어

출처: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편찬위원회 편(2007).

(3) 졸업

1911년 3월에 대한의원부터 연결되어 조선총독의원에서 조선인 간호부 견습생 9명이 일본어와 간호학을 배워 1911년 3월에 졸업했고(『조선총독부월보』 제1권 제5호), 1911년 4월에 대한의원 부속학교에서 교육받은 간호부과 졸업생 7명이 수업증서를 받은 기록이 있다(『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1회, 1911). 이러한 기록들은 1910년 이전에 대한의원에서 모집한 조선인 간호부 견습생이 1911년에 조선총독부의원에서 졸업했음을 확인해 준다. 이들은 견습생으로 정식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관립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생'으로 불리며 증서를 받은 최초의 간호부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4) 교사(校舍)

대한의원의 일부를 사용하다 1909년 11월 16일 교실 15개가 구비된 2층 양옥과 해부실 1동을 갖춘 부속의학교 건물이 병원 정문 왼편에 준공되어 낙성식을 거행했다. 이 건물은 후에 조선총독부 시료 외래 진료실로 사용하다가 한국전쟁 당시 건물이 파괴되었으나 현재의 치과대학 건물로 재건축했다.[3]

제2절 일제 강점기의 간호교육

1)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간호부과, 조산부과 (1910. 10~1916. 4)

일제는 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8호를 반포하여 조선총독부의원에 부속의원 강습소를 두어 의사, 산파, 간호부를 양성하게 했다. 이는 일제의 대한제국 합병으로 1910년 당시 대한의원 초대 원장인 후지다(藤田) 의무감이 조선은 부속의학교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 하여 이름을 변경한 것이다.

3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낙성식급 졸업식, 『중외의사신문』, 1909. 12. 30; 기창덕(1995: 137)에서 인용.

1911년 2월 20일에는 '조선총독부의원부속의학강습소규칙'(조선총독부령 제19호)을 공포해, 간호와 조산 관련 교육에 대한 규칙을 규정했다. 이 규칙을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규칙과 비교해 보면 '총칙'에서 학과 명칭을 간호과에서 간호부과로 변경했다. 이는 부속의학교를 부속의학강습소로 격하한 방침이 학과 명칭에 반영된 것이지만, 간호과(看護科)를 간호부과(看護婦科)로 변경한 것은 간호를 여성의 업무로 간주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부록 4], 『조선총독부관보』, 1911. 2. 20).

(1) 입학

정원은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모두 각 학년당 20명이었다. 입학 자격은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모두 조선인 여자로, 나이는 17세에서 25세 이하로 신체 건강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 했다. 입학에 필요한 기본 학력은 간호부과는 보통학교 3년 수료, 조산부과는 보통학교 4년 수료였으며 모두 무시험 입학이었다. 이 학력에 미달되는 자는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시험과목은 국어(일본어), 강독, 회화였다. 강독은 간호부과는 보통학교 학도용 일어독본 5, 6을, 조산부과는 보통학교 학도용 일어독본 7, 8을 시험 보도록 했다. 간호부과와 조산부과의 학생 선발 기준으로 일본어 능력이 가장 중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간호부가 되려면 총 4년 반 정도, 조산부는 총 6년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했다([부록 4], 『조선총독부관보』, 1911. 2. 20).

1912년 12월 '조선총독부의원부속의학강습소규칙'을 개정하여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모두 30명 정원으로 했으며 조산부과도 학기제 운영을 했다.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입학 자격은 내지인(일본인) 또는 조선인으로 일본인의 입학을 허가했다. 무시험 입학 허가 수준은 간호부과는 심상소학교나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이며, 조산부과는 간호부과를 졸업한 자다. 따라서 간호부는 총 5년 반, 조산부는 6년 반 정도의 교육기간이 필요했다.

입학시험에서도 간호부과는 국어(일본어), 산술, 이과(理科)를, 조산부과는 간호부과에서 교습하는 과목을 응시하도록 했다([부록 5], 『조선총독부관보』, 1912. 12. 5).

(2) 졸업생

1911년 12월 간호부과의 재학생은 한정혜(韓貞惠, 15, 경기), 박종은(朴鐘恩, 23, 황

해), 김봉원(金奉元, 25, 강원), 이숙현(李淑賢, 21, 전북), 김옥성(金鈺聲, 20, 경기) 등 5명이다. 조산부과는 박채홍(朴采鴻, 20, 전남), 윤신명(尹信明, 22, 경기), 최애도(崔愛道, 18, 경기), 최효신(崔孝信, 15, 경기), 경흥선(慶興善, 25, 경기), 조윤덕(曹允德, 17, 평남), 마정희(馬貞熙, 20, 경기), 장은도(張恩道, 25, 평남), 정순옥(鄭順玉, 17, 경기), 황정희(黃貞熙, 16, 경기) 등 10명이다(『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1회, 1911). 여성의 사회생활이 극히 제한되어 있던 시절에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졸업생들은 전문직 여성으로서 직업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에도 간호부과와 조산부과를 합친 정원은 매 학기 30명으로 규정되었지만, 두 과의 재적인원은 1913년 19명, 1915년 12명, 1916년 19명으로 학과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2~4회, 1912~1916). 이처럼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간호부과와 조산부과의 학생 모집이 부진했던 것은 이 시기가 일제 강점 초기로 보통학교를 비롯한 제반 시설이 아직 체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지원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이 부족하여 입학시험을 실시한 이후 지원 접수를 추가로 받기도 하고 학생을 더 모집하기도 하는 등 학사과정이 불규칙하게 운영되었고, 일단 선발된 사람들도 일본어 능력이 부족하면 졸업이 어려웠다. 초기의 학사 관련 기록들이 부정확한 것도 이러한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졸업생 활동

◆ 최애도와 최효신 자매(부속의학강습소 간호부 양성소[조산부과] 1회)[4]

최애도(18세)는 부속의학강습소 간호부 양성소[조산부과] 졸업 후 즉시 개업하려 했으나 졸업 당시 성년이 못 되어 산파 면허를 얻지 못했다. 이에 당시 언니 최은경의 남편 이창우가 조선총독부 의학교[부속의학강습소 의과]를 졸업하고 개성에서 개업한 곳에서 1년 동안 간호원으로 일한 후에 면허를 얻어 개업했다. 그 후 1917년 가을 서울 와룡동에서 개업했고, 1926년까지 800여 명의 신생아를 받아내 '조선 산파계의 시조'로 불렸다(『동아일보』, 1926. 1. 20).

최효신(17세)은 간호부 양성소[조산부과]를 졸업하고 창덕궁에서 1개월 정도 근

4 최애도와 최효신은 자매로 부속의학강습소 간호부 양성소와 조산부과를 1회로 졸업 후 산파로 일했다. 기록마다 나이, 졸업연도 등이 다르게 알려져 있어 구체적인 상황 파악은 무리가 있으나, 간호사로서 산파계의 시조 역할로 간호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판단한다.

무하고 나서 1918년 7월 덕수궁에 입궁, 고종황제의 승하를 지켰다. 그 후 개성에서 개업했다가 수덕당(의친왕 후궁)의 산고가 있어 불려온 후로 월급 30원을 받으며 효강공의 저택 내에서 근무했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 활동이 극히 제한되었던 시절에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학생들은 졸업 후 전문직 여성으로 직업 생활을 시작한 시조라고 할 수 있다[국사편찬위원회 편, 대동단사건(大同團事件) 1, 최효신(崔孝信) 신문조서(訊問調書)].

(4) 교과과정

'조선총독부부속의학강습소에서의수업연한'(조선총독부령 19호)에 따라 간호부과는 2년에서 1년 반으로 단축되었고, 조산부과는 2년을 유지했다(『조선총독부관보』, 1911. 2. 20).

간호부과는 1학기에 수신, 국어(일본어), 해부학대의, 생리학대의, 간호학, 붕대학대의, 실습, 수학을, 2학기에 수신, 국어(일본어), 소독법, 간호학, 기계취급법, 수술보조[개보]법, 실습, 수학을, 3학기에 수신, 국어(일본어), 위생학대의, 간호학, 구급법, 실습, 수학을 배웠다. 조산부과는 1학년 1학기에 수신, 국어(일본어), 해부학대의, 생리학대의, 수학, 2학기에 수신, 국어, 해부학대의, 소독법 및 실습, 수학을 배웠다([표 4-1-2]).

[표 4-1-2]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학과표

• 간호부과

학기	학과
제1학기	수신, 국어(일본어), 해부학대의, 생리학대의, 간호학, 붕대학대의, 실습, 수학
제2학기	수신, 국어(일본어), 소독법, 간호학, 기계취급법, 수술보조[개보]법, 실습, 수학
제3학기	수신, 국어(일본어), 위생학대의, 간호학, 구급법, 실습, 수학

• 조산부과

학년	학기	학과
제1학년	전학기	수신, 국어(일본어), 해부학대의, 생리학대의, 수학
	후학기	수신, 국어(일본어), 해부학대의, 생리학대의, 소독법 및 실습, 수학
제2학년	전학기	수신, 국어(일본어), 태생학, 산파학, 산파학 및 실습
	후학기	수신, 국어(일본어), 육아법, 산파학 및 실습

출처: 조선총독부의원 편(1928).



출처: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 (2007).

[그림 4-1-2] 1915년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과 수업 광경

[표 1-4-3] 간호부과 졸업 후 1년 과정 조산부과 학과표

학기	학과
제1학기	수신, 국어(일본어), 해부 및 생리학, 태생학, 소독법, 조산부학
제2학기	수신, 국어(일본어), 조산부학, 조산부학 실습, 육아법

출처: 조선총독부의원 편(1928).

1912년 간호부과와 조산부과의 학력 연계를 골자로 규정을 변경하여 간호부과를 졸업한 자에게 조산부과 입학을 허가해 1년 과정으로 했다.

조산부과는 간호부과 졸업 후 입학하여 1년간 수업한 경우는 1학기에 수신, 국어(일본어), 해부 및 생리학, 태생학, 소독법, 조산부학, 2학기에 수신, 국어(일본어), 조산부학, 조산부학 실습, 육아법을 배웠다([표 4-1-3]). [그림 4-1-2]는 그 당시 수업 광경이다.

(5) 수업료

'조선총독부의원부속의학강습소생도학자급여규칙'(조선총독부령 제20호)을 보면, 수업료는 전원 면제이나 학자금(식비, 피복비, 잡비)은 정원의 1/2 이내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월 5원 이내를 현금이나 현물로 받았다. 퇴학할 경우에는 재학 중에 받은 학자금을 반환하도록 했으나, 의무연한규정은 없었다(『조선총독부관보』, 1911. 2. 20).

1912년 12월 생도 학자급여 규칙을 변경하여 학자급여는 일본인 학생을 제외하고 조선인 학생에게만 시행하도록 했고, 간호부과와 조산부과의 월 급여액을 6

원 50전(의과의 7원 이내) 이내로 했다. 그리고 급비생의 의무연한제도를 부활시켜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졸업자는 2년간 의원장이 지정하는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했다([부록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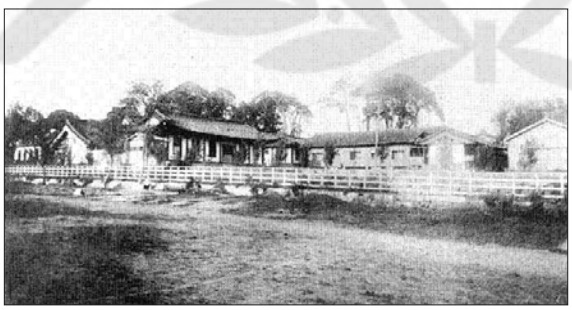
(6) 교사

부속의학강습소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학생은 처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다. 1911년 9월 1일에는 기숙사에서의 생활수칙을 담은 '조선총독부의원간호부기숙사규정'이 제정되어 교사와 기숙사가 같은 곳에 세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숙소의 내외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준수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며 신애(信愛)를 중시하고 부덕(婦德)을 발양하는 데 힘쓰도록 했다.

교사는 조선총독부의원 본관 서남쪽 저지[구(舊)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안쪽 조선식(온돌식) 건물(현 치과대학 부근)]에 있는 기숙사에 학생들을 수용하고 일본인 여성을 사감으로 두었다. 그러나 환자 수의 증가로 병원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간호부 기숙사 3개 동을 개조하여 분(分) 5, 6, 8동이라 이름붙이고 이를 부족한 병실로 전용했다. 간호부 기숙사는 함춘원 내 영희전을 수리하여 일부를 그곳으로 이전(함춘원의 북동쪽, 현 간호대학 신관 부근)하고, 1911년 12월에는 건평 100여 평에 일본식(다다미식) 기숙사를 본관 동남쪽 부근(현 연건기숙사 부근)에 신축하여 간호부 및 학생 98명의 숙소로 사용했다(서울대학교병원 편, 1993). 이 두 곳은 1945년 광복까지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학생과 간호부의 기숙사로 사용되었으며 광복 후에도 고등간호학교의 교사 겸 기숙사로 이용되었다([그림 4-1-3]).

(7) 간호사 면허제도 도입

1914년 '산파규칙'(조선총독부령 제108호)과 '간호부규칙'(조선총독부령 제154호)이



출처: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2007).

[그림 4-1-3] 조선총독부의원 초기의 간호부 기숙사

공포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산파와 간호부의 면허제도가 도입되었다. 산파 면허 자격은 20세 이상의 여자로 조선총독부의원의 조산부과를 졸업한 자이다. 간호부 면허는 18세 이상 여자로 조선총독부의원의 간호부과를 졸업한 자로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를 받았다(『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2회, 1912~1913, [부록 6]). 졸업생들은 졸업 후 조선총독부의원 또는 각 도 자혜의원에 간호부로 채용되었는데, 일본인 간호부와 비교해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8) 졸업생

1915년과 1916년에는 부속의학강습소 의과, 간호부과, 조산부과 졸업생 명단을 『조선총독부관보』에 실었다. 이는 당시 조선 최고의 관립 의학교육기관 졸업생들의 희소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915년 3월 31일에는 간호부과에서 이유봉(李有鳳, 경남)이 졸업했고, 10월 19일에 조산부과에서는 권업이(權業伊, 경남, 우등생), 강도원(姜道源, 평남), 김창엽(金昌燁, 충북), 김숙경(金淑瓊, 경기) 등 4명이, 간호부과에서는 엄군선(嚴君善, 함남, 우등생), 이순복(李順福, 경기), 이창순(李昌淳, 함남),[5] 백인원(白仁源, 평북) 등 4명이 졸업했다. 1916년 3월 31일에는 조산부과에서 전년도에 간호부과를 졸업한 이유봉이 졸업하고, 간호부과에서는 허금복(경기, 우등생), 박유감(경기) 2명이 졸업했다.

조선총독부의원이 공식 집계를 통해 부속의학강습소가 배출한 졸업생 수는 간호부과가 1912년 3월 졸업생 1명을 배출한 이후 1916년 4월 이전까지 7회 동안 34명이 졸업하고, 조산부과는 1913년 5월 9명을 시작으로 1916년 3월까지 4회 동안 25명이 졸업했다.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졸업생 59명은 모두 조선인이었다(조선총독부의원 편, 1928).

2) 조선총독부의원 의육과(1916. 4~1920. 10)

1916년 4월 25일 '조선총독부의원관제'(칙령 제119호)를 개정하여 조선총독부의

5 이창순 동문에 대한 사실은 고인의 장남인 배병주 박사(전 서울적십자병원장)가 제공한 고인에 관한 자료와 고인의 졸업장 및 면허장을 통해 밝혀졌다.

원의 기능에 '조산부와 간호부 양성'을 추가했으며, 이를 의육과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같은 날 '조선총독부의원및도자혜의원조산부간호부양성규정'(총독부령 제35호)을 반포하여 조선총독부의원을 정점으로 전국 자혜의원의 간호부와 조산부 양성과정을 통일했다. 이 규정은 조선총독부의원과 각 도 자혜의원의 간호부와 조산부 교육을 포괄하여 형식적으로 통일하면서도 그 규모와 수준에는 일정한 차이를 두었다. 조선총독부의원에는 간호부과와 조산부과를, 도 자혜의원에는 간호부과, 조산부과, 속성조산부과를 두었다. 정원은 조선총독부의원만 두 과를 합쳐 각 학기 30명에서 40명으로 늘렸고, 입학 자격에 여자일 것을 추가했으며, 학력 수준과 수업연한, 급비생의 의무연한 등은 변함이 없었다([부록 7]).

(1) 입학

'조선총독부의원및도자혜의원조산부간호부양성규정'은 이후 입학 연령의 하향 조정과 학자급여의 상향 조정을 중심으로 몇 차례 개정되었다. 1916년 4월부터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도 입학하여 조산부과와 간호부과 모두 일본인과 조선인의 공학 시설이 되었다. 1917년 조산부과는 간호부과와 동일하게 1년에 두 번(4월과 10월) 학기를 시작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입학 연령을 만 17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1916년부터 1919년까지 간호부과와 조산부과에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지만 두 과에 입학하는 학생들 모두가 졸업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 조산부과의 졸업률이 더 낮고 일본인 자비생이 더 많았던 점을 통해 조산부과의 수업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간호부과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조선인들도 조산부과를 선호하여 간호부과를 졸업한 조선인들은 대부분 조산부과에 다시 입학했다. 1918년부터는 학생 정원을 조선총독부의원장이 정하도록 융통성을 두어([표 4-1-4]), 1920년 5월에는 입학 연령을 간호부과 만 14세

[표 4-1-4] 1916년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과, 조산부과의 입학 자격, 시험과목, 수업연한

	입학 자격	시험과목	수업연한	급비생 의무연한
간호부과	보통학교 4년 졸업	일어, 산술	1년 6개월	2년
조산부과	간호부과 졸업	일어, 산술, 해부생리, 간호법	1년	2년

출처: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2007).

이상, 조산부과 만 1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2) 학자금

학자급여는 조선인 학생은 1인당 한 달에 7원 이내로 상향 조정되었고 일본인 학생도 급여 대상에 추가하여 월 8원 이내를 지급하도록 해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 간에 차별을 두었다. 1918년 학자급여를 1인당 월 12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면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차별을 없앴으며, 1920년 5월에는 학자급여를 1인당 20원 이내로 다시 상향 조정했다([부록 7]).

(3) 교과과정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과와 조산부과에서 이전에는 일본어만을 배우도록 했으나, 조선인은 일본어를, 일본인은 조선어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한 점이 커다란 변화였다. 수업연한은 간호부과는 2년이고, 조산부과는 간호부과를 졸업 후 입학하도록 해 1년 과정이었다.

간호부과 1학기는 수신, 간호법, 국어 또는 조선어, 해부 및 생리, 산술을, 2학기는 수신, 산술, 국어 또는 조선어, 실습, 소독법, 간호법을, 3학기에는 수신, 산술, 국어 또는 조선어, 실습, 위생대의, 간호법을 배웠다([표 4-1-5]). 조산부과 1학기는 수신, 소독법, 국어 또는 조선어, 조산법, 해부 및 생리, 실습을, 2학기는 수신, 실습, 국어 또는 조선어, 조산법, 육아법를 배웠다([부록 7]).

조선총독부의육과는 교육 내용의 충실과 인격의 도야를 위해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학생에게도 학과시간 이외에 별도의 임상실습을 부과했다. 간호부과

[표 4-1-5] 조선총독부의원 의육과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학과표

과	학기	학과
간호부과	제1학기	수신, 간호법, 국어 또는 조선어, 해부 및 생리, 산술
	제2학기	수신, 산술, 국어 또는 조선어, 실습, 소독법, 간호법
	제3학기	수신, 산술, 국어 또는 조선어, 실습, 위생대의, 간호법
조산부과	제1학기	수신, 소독법, 국어 또는 조선어, 조산법, 해부 및 생리, 실습
	제2학기	수신, 실습, 국어 또는 조선어, 조산법, 육아법

* 국어(일본어)는 조선인에게, 조선어는 일본인에게 부과함.

출처: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2007).

학생은 각 진료소 및 병실에서 간호 및 치료 보조를 실습하도록 했다. 조산부과 학생은 분만실에서 임신, 분만 및 산욕에 대한 처치와 이상분만에 대처하는 법 등을 실습하여, 졸업 후 조산부와 간호부로서의 실용에 적당하도록 했다.

실습시간의 증가는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학생들이 졸업 전에 다양한 상황을 접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규 학과시간 외에 학생들을 병원 업무에 동원하여 병원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있었다(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 2007).

(4) 입학생과 졸업생

1916년 10월 20일 조산부과 3명 이순복(李順福, 경기, 우등생), 이창순(李昌淳, 함남), 백인원(白仁媛, 평북)이 졸업하고, 간호부과는 최군자(崔君子, 경기), 종은점(宗銀點, 경기), 김봉순(金鳳順, 경기), 이순득(李順得, 경기), 박자혜(朴慈惠, 경기), 이갈당(李葛堂, 충북) 등 6명이 졸업했다. 1917년 10월 간호부과는 일본인 6명과 조선인 4명, 총 10명이 졸업했다. 조산부과는 3월과 10월에 각각 3명, 7명이 졸업했는데, 일본인 2명은 자비생이었고 조선인 8명은 급비생이었다.

1917년 3월에는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로부터 간호부 양성을 위촉받아 4월에 일본인 학생 30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졸업생들의 출신 지역과 부형의 직업, 연령은 간호부과 30명 중 경기도 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형의 직업은 관공리 12명, 상업 10명, 농업 5명, 의업 1명, 잡업 2명이었다. 연령은 역시 17세가 12명이고 16세, 18세, 19세가 각 5명씩, 그리고 21세, 22세, 25세가 각 1명씩이었다. 조산부과 10명은 모두 경기도 사람으로 부형의 직업은 농업 7명, 상업 2명, 잡업이 1명이었으며, 연령은 17세가 4명, 20세가 2명, 16세, 18세, 19세, 27세가 각 1명씩이었다.

1917년 간호부과 입학생 10명 중 일본인 7명, 조선인 2명, 총 9명이 1918년 10월 졸업하고, 이 중 조선인 2명은 다시 조산부과에 입학했다. 조산부과 입학생 10명 중 급비생 조선인 3명, 자비생 일본인 1명, 총 4명이 1918년 10월 졸업했다(『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5~7호, 1916~1918).

1918년 조산부과에 급비생 조선인 2명, 자비생 일본인 1명, 간호부과에는 일본인 34명, 조선인 7명이 입학했는데, 이들 중 1919년에 졸업한 사람은 조산부과 일본인 1명, 간호부과 조선인 2명, 일본인 22명이었다.

(5) 졸업생 활동

◆ 이창순(1915년, 간호부과 졸업, 1916년 10월 조산부과 졸업, [그림 4-1-4])

1914년 만 15세의 나이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간호부과에 입학해 1년 반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후, 조산부과에 입학하여 1년 과정을 마쳤다. 1916년 10월 20일 조산부과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의원에서 간호부로 근무했으며, 근무 중에 고종의 다리 통증 치료를 위해 창덕궁에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 1920년에는 고향 함남으로 귀향하여 산파로 개업했고, 공산파, 철도국 촉탁 산파 등을 역임했다. 해방 후 1965년까지 조산원을 개업해 활동하다 1994년 작고했다.

◆ 박자혜(1916년 10월 간호부과 졸업, 1917년 10월 조산부과 졸업 [그림 4-1-5])

간호사 독립단체 간우회의 설립자로 간호부와 산파라는 직업에 충실하면서 일제에 강점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에도 뜻을 둔 인물이다. 조산부과를 졸업한 후 조선총독부의원에서 조산원으로 근무하던 중 1919년 3·1 운동이 발발하자, 병원 조산원과 간호원으로 조직된 간우회 회원들과 함께 유인물을 배포하고, 3월 10일 비밀리에 간우회원들을 규합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했다. 이어 같은 병원 동료들과 조선인 의사 등을 규합하고 시내 국·공립 병원 직원들의 동조를 얻어 태업을 주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0년 같은 병원의 김용채 등 3명의 의사가 사직하자 병원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건너가 단재 신채호와 결혼한 후 각지를 전전하면서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을 도왔고, 1924년 신채호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다롄 감옥에 갇히자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등지의 독립운동가와 국내 인사들과의 연락 임무를 띠고 귀국했다. 귀국 후에는 신채호와의 사이에 둔 아들 둘을 데리고 인사동에서 산파원을 개업하는 한편, 1926년 12월 나석주 의사가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파 의거를 일으켰을 때 안내를 맡는 등 독립지사들 간의 연락과 편의를 지원하는 데 힘썼다(『동아일보』, 1928. 12. 12). 이 때문에 일본 경찰에 여러 차례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고 신채호



출처: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2007).

[그림 4-1-4] 1915년 이창순 조산부 졸업증서





출처: 『동아일보』, 1928. 12. 12(왼쪽); 독립기념관 소장(오른쪽)

[그림 4-1-5] 박자혜 산파원(왼쪽), 박자혜와 신채호(오른쪽)

가 뤼순(旅順) 감옥에서 순국한 후 병을 얻어 1943년 49세로 사망했다.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1977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받았다.

3)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조산부 양성소(1920. 10~1928. 6)

1920년부터 조선총독부의원과 19개 자혜의원에서는 간호부가 부족해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였다. 1920년 당시 콜레라가 크게 유행하여 전국적으로 2만 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방역사업이 시행되면서 간호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

조선총독부에서는 부족한 간호부를 늘리는 방안으로 첫째, 간호부의 입학 연령을 낮추어 소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간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학자급여비 확대와 피복 지급, 셋째, 관립 의원마다 소수의 간호부를 양성하던 것을 5개 관립 의원으로 집중하여 전체 정원 확대, 넷째, 교육 내용 면에서 예비 간호부를 위한 직업 교육뿐만 아니라 예비 주부를 위한 여성 교육 실시와 시설 강화, 다섯째, 기숙사 완비와 봉급 인상을 중심으로 한 간호부 대우 개선 등의 5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간호부 부족 해결책으로 주로 교육의 개선과 확충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 2007).

조선총독부의원은 1920년 10월 의육과를 '간호부와 조산부 양성소'로 개칭하고, 1921년 5월에는 간호부과와 매주 교수 시수를 개정했다. 1922년 5월 2일 '간호부규칙'(총독부령 제77호)의 전문 개정과 맞물려 '조선총독부의원및도자혜의원간호부조산부양성규정'도 전문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5개 관립 간호교육기관에 '간호부와 조산부 양성소'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하면서 입학 조건을 상향하고 간호부과 양성기간 연장 등이 주요 골자였다(『조선총독부관보』, 1922. 5. 2, [부록 8]).

(1) 입학

'간호부규칙'과 '조선총독부의원및도자혜의원간호부조산부양성규정'의 개정은 의원 수의 증가에 따라 수준 높은 간호부가 더욱 필요하게 된 상황을 반영하여(조선총독부 편, 1940: 212~214), 보통교육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의 수업연한을 일본 본토와 비슷한 정도로 연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입학 자격은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모두 고등여학교나 여자고등보통학교의 2학년 수료 정도 또는 고등소학교 혹은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 정도로 상향 조정해 통일하고, 이에 따라 입학 연령도 만 16세 이상 30세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조산부과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동일했으나 간호부과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연장하여 간호부과의 총 수업연한이 조산부과보다 길게 되었다. 당시 제2차 조선교육령으로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가 각각 6년과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4~5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조산부과는 9년 정도, 간호부과는 총 10년 정도의 교육기간을 요구하게 되었다(강만길 외, 1994: 273).

이러한 제도 개정을 통해 조선의 관립 간호교육은 일본 본토의 간호교육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9월 1일에는 일본 내무성령 제23호로써 조선의 간호부 면허증을 조선뿐 아니라 일본과 타이완(臺灣), 관둥저우(關東州) 등 일본의 여타 식민지에서도 통용되도록 했고,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 양성소 졸업생은 일본제국의 판도 내에서 모두 통용되는 간호부 면허증을 받았다(조선총독부의원 편, 1928: 66). 이는 조선에서의 간호교육이 이전보다 수준이 한층 높아졌음을 반영한 조치였다.

(2) 교과과정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와 조산부 양성소의 교육은 『조선총독부의원연보』에 잘 나타나 있다. 정규 수업 교과목은 1920년 이래 '좋은 간호부'이자 '좋은 가정부인'의 양성을 교육의 2대 강령으로 삼은 것을 반영하여, 일반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부과하는 학과목을 교과과정에 추가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직접적인 업무인 '좋은 간호부' 교육에 관련되도록, 가사과(家事科)에서는 환자 취급상 가장 필요한 병자의 음식물, 기호품 등의 조리, 감식(鑑識) 등의 실습지도에 주의하며, 예법·재봉·세탁 등도 병실·외래에서 바로 유용한 사항을 주로 가르치도록 했다(『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13회, 1926: 157~160).

이로써 교과목은 교양과목 7개, 전공과목 17개로 총 24개가 되었다. 교양과목의 강의는 조선어를 제외하고는 주로 주사나 촉탁이 담당하고, 전공과목은 대부분 의사가 담당했다. 실습은 병원 간호부에서 담당했으며, 간호부장은 안마를, 실습지도는 간호부 부장이 실습과 기본간호를 담당했다.

1922년 11월부터는 간호부과와 조산부과의 교과과정이 합쳐져 간호부과 학생에게 1년간 조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재는 정규 교과서를 사용하고 교과서의 부족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1926년에 약물제조과목은 등사 인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1927년에는 의원 관용어, 약어[略方], 성씨, 동네 지명[町洞名], 원어(原語) 등 11항(項) 30쪽[頁]의 소책자를 만들어 실습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도 했다(『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14~15회, 1927~1928, [표 4-1-6], [표 4-1-7] 참조).

간호학 실습은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운다'라는 교육 취지에 따라 병실과 외래의 실무에 종사하도록 했다. 이는 병원에서 환자 취급, 치료, 간호방법 등을 배우고 연습하는 기회를 주어 학과목에서 습득한 일반적 이론을 실제와 완



출처: 조선총독부 편(1922).

[그림 4-1-6] 조선총독부의원 간호학생의 재봉 실습 모습

[표 4-1-6]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학과표

• 간호부과

학기	학과
제1학기	수신, 국어, 조선어, 산술, 가사, 재봉, 해부학 및 실습, 붕대, 간호, 치료 및 수술의 개보, 위생, 환자의 운반
제2학기	수신, 국어, 조선어, 산술, 가사, 재봉, 체조, 해부학 및 실습, 간호, 치료 및 수술의 개보, 소독, 전염병 및 기타의 질병, 의료기계, 외상 및 구급법, 환자의 운반, 실습
제3학기	수신, 국어, 조선어, 산술, 가사, 재봉, 안마, 약물 및 조제, 실습
제4학기	수신, 실습

• 조산부과

학기	학과목
제1학기	수신, 국어 또는 조선어, 해부 및 실습, 소독, 조산법, 실습
제2학기	수신, 국어 또는 조선어, 조산법, 육아법, 실습

출처: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2007).

전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1924년 제3학기 학생 3명을 외래진료소 접수계[受付系]에 배속하여 환자 접수, 안내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그림 4-1-7]), 접수 마감 후에는 조제 및 약제의 교부를 돕도록 했다. 외래진료소에도 학생 1명을 배속하여 환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2월 중순부터 입원환자에 대해 아침, 저녁 2회 약 1시간의 위문실습을 시행하도록 하고, 제1·2학기 학생을 각 병동에 여러 명 배당하여 환자를 위한 봉사노동에 복무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창가, 오르간, 금(琴), 독본, 담화, 댄스, 가극 등 학생이 학업 여가에 연습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환자위안회를 개최하여 병자를 정신적으로 위안해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11회, 1926).



출처: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2007).

[그림 4-1-7] 조선총독부의원 외래 접수 창구

실습은 1926년의 경우 입학 초기부터 제1학기는 매일 오전·오후 2회 2시간 이상, 제2학기에는 여기에 반일근무 2회를 더하고, 제3학기에는 매일 오전 중, 제4학기에는 한 달에 1회 수신(修身)을 제외하고는 병실과 외래의 실무연습에 종사했다. 실

[표 4-1-7] 1924년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매주 교육 시수표 단위: 시수

과목	간호부과				조산부과		담임자 관직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제4학기	제1학기	제2학기	
수신(윤리)	1	1	1	2	(1)	(1)	주사
작법(예의범절)	1	1	1	-	-	-	촉탁
국어(일본어)	5	5	2	-	(5)	(5)	주사
산술	2	1	-	-	-	-	주사
조선어	2	2	2	-	-	-	의원(조선인)
가사	2	2	2	-	-	-	촉탁
재봉	5	5	2	-	-	-	촉탁
해부학 및 실습	4	-	-	-	(4)	-	의원
붕대	3	-	-	-	-	-	서기
간호법	-	4	-	-	-	(4)	서기
치료 및 수술 보조	2	1	-	-	-	-	의원
소독	-	1	-	-	(1)	-	의원
안마	-	1	3	-	-	-	간호부 부장
전염병 및 기타 질병	-	2	-	-	-	-	의원
위생	2	-	-	-	-	-	의원
의료기계	-	2	-	-	-	-	의원
외상 및 구급	-	3	-	-	-	-	의원
약물 및 조제	-	-	2	-	-	-	약제사
환자운반 및 체조	2	-	-	-	-	-	서기
조산법	-	(2)	(3)	-	2	3	의원
육아법	-	-	(1)	-	-	1	의원
적십자사업	1	-	-	-	-	-	주사
육해군제규	1	-	-	-	-	-	서기
의원 복무	-	-	1	-	-	-	서기
실무	-	6	18	전부	-	9	간호부 부장, 생도감 및 외래병실 근무 간호부

출처: 『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13회, 1926.



출처: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 (2007).

[그림 4-1-8] 간호부가 환아(患兒)의 체중을 재는 모습

습지도의 교재도 전적으로 실지 업무에서 수집·조사한 105항을 체계적으로 제1·2·3학기에 고루 나누어 각 학기마다 1주일에 1시간의 특별시간을 실지, 실물에 따라 이를 취급한 간호부 부장 3명이 지도하게 함으로써 기술의 통일·연습을 도모했다. 실습 결과는 제1·2학기는 각 병동별로, 제3학기는 각 사람별로 실무일지를 기록하도록 하여 각 사람의 업무와 수업에 대한 비판 및 지도를 했다([표 4-1-8]).

병원실습과 더불어 사회에서도 필요하고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의료 사항에는 학생들을 파견하여 수요에 부응하게 했다. 그 예로 제3학기 전 학생을 관립 학교의 신체검사와 11~12월의 서울 각 학교의 성홍열 예방주사 보조에 교대로 파견했다(『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13회, 1926).

조산부과 학생의 실습은 매주 모형실습을 할당하는 외에 제2학기에는 부인과 병실 및 외래 수술장의 실무연습을 시켜 입원자의 분만 시 보조, 견학을 시키는 등 가급적 많은 임산부를 대하도록 하여 각자에게 충분한 임상실습을 경험하게 했다. 1927년부터는 일반 산부인과 질병의 치료 및 그 취급과 소아과 질병 등의 취급에도 익숙해질 필요를 인식하여 산부인과와 소아과 외래 및 병실 등에도 학생을 배당해 연습하도록 했다(『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14~15회, 1927~1928).

이 외에도 '부덕(婦德)'을 함양하여 환자를 돌보는 간호부와 산파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기르고자 했다. 즉, 일상생활의 통상적이고 실제적인 사항에서 시작하여 나아가서는 참 인간으로서의 덕목에 이르고, 또 부인의 숙덕(淑德)에 중점을 두어 외형에 나타나는 예의범절, 말씨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미덕을 함양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교실, 기숙사, 병실, 외래를 막론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간호부로서 또는 장래 한 사람의 부인으로서 책임을 그르침이 없도록 노력하게 하고, 그 언행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동시에 각자 병실 및 외래 일기를 쓰도록 하여 교육 목적의 달성을 꾀했다(『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13회, 1926).

이러한 교육 내용을 통해서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와 조산부 양성소가 '좋은 간호부'와 '좋은 가정부인'의 양성을 동시에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인성과 교양을 겸비하

[표 4-1-8] 1926년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매주 교육 시수표 단위: 시수

과목	매주 교수 시간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제4학기
수신(도덕)	1	1	1	2(매월)
국어(일본어)	6	2	1	
산술	2	1	-	
조선어	2	2	2	
가사	2	2	1	
재봉	5	2	1	
작법(예의범절)	2	1	1	
해부생리	3	-	-	
붕대	3	-	-	
간호법	-	3	-	
치료보조	2	-	-	
외과보조	-	1	-	
소독	-	1	-	
안마	-	-	3	
전염병	-	2	-	
세균 및 기생충학	1	-	-	
의료기계	-	2	-	
응급요법	-	1	-	
위생	-	1	-	
약물조제	-	-	2	
환자운반	2	-	-	
실습지도	1	1	1	
조산법	3	4	-	
육아법	-	1	-	

출처: 『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13회, 1926.

도록 교양과목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실제 업무에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외래와 병실실습을 강화했다.

(3) 입학생과 졸업생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와 조산부 양성소 시기 간호부과 지원자 수가 크게 증가

했다. 이는 간호부 수를 늘리기 위해 시행한 교육제도의 변경과 조선에서 취득한 간호부 면허를 일본 제국 전체에 통용되도록 한 조치의 결과였다. 간호부과에는 1924년 4월 84명, 10월 51명, 1926년 4월 94명, 10월 58명, 1927년 4월 126명, 10월 77명, 1928년 4월 107명이 각각 지원했는데, 그중 매 학기 20명 내외만을 선발했다. 조산부과에는 1924년 4월 14명, 10월 16명, 1926년 4월 26명, 10월 17명, 1927년 4월 19명, 10월 13명, 1928년 4월 23명이 각각 지원한 가운데 매 학기 10명 내외로 선발했다.

간호부의 수요 급증 속에서도 이처럼 간호부과와 조산부과 학생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한 것은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와 조산부 양성소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수준 높은 학생을 양성하고자 한 결과였다.

입학 지원자의 학력 수준도 점차 상승하여, 지원자 중 일본인은 고등소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심상소학교 졸업자가 소수 있었고, 조선인은 보통학교 4, 5학년 수료자가 주를 이루었다(『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11회, 1924).

1927년 4월에는 간호부과 신입생 23명 중 고등여학교 졸업생이 7명, 조산부과 신입생 9명 중 고등여학교 졸업생이 2명,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생이 4명으로 간호부·조산부 양성소 개설 이래 가장 많은 여자중등학교 졸업생이 입학하는 신기록을 세웠다(『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14~15회, 1927~1928).

입학 지원자의 거주지를 보면, 간호부과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중심이 되었고 소수의 일본 거주자, 조선인이 포함되었다. 조산부과의 입학 지원자는 모두 조선에 거주하는 조선인과 일본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간호부 면허가 일본 제국 전체에 통용된 데 비해, 산파 면허는 조선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4) 졸업생의 독립운동 참여: 정종명(鄭鍾鳴, 1895~?, 1921년 산파양성소 졸업)

정종명은 여성 독립운동가이며 간호사로 세브란스병원의 간호부양성소를 졸업한 후, 조선총독부의원 조산부과에 입학하여 1921년 10월 제11회로 졸업했다. 졸업 후 안국동에 조산원을 개업해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운동에 나선다. 1922년에는 '빈곤과 고독에 우는 여자 고학생을 상부상조하자'는 취지 아래 '조선여자고학생상조회'를 조직하여 모금 겸 순회강연 활동을 각지에서 전개하고, 1924년 4월에는 이 단체의 집행위원장이 되었다. 또한, 1924년 1월 26일 서울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간호부 8명의 발기로 창립된 '조선간호

부협회'의 발기인 중 한 명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정종명의 이러한 활발한 활동 배경에는 당시 급속하게 확산된 사회주의 조류가 있었다. 정종명은 조선 혁명의 전위당을 결성하기 위해 1923년 6월경 지하에 조직된 '꼬르뷰로 국내부' 공산청년회(청년뷰로)에 초창기 가입한 유일한 여성 회원이었다. 1924년 5월에는 여성 문제 해결을 사회 변혁과 연결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최초의 여성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를 결성한다. 1927년 5월에는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를 망라한 민족협동전선단체인 근우회가 '전 여성의 통일기관'을 표방하며 조직되었다. 근우회 창립대회에서 정종명은 중앙집행위원 21명 중 한 명으로 선출되어 선전조직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다가 1928년에는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실천투쟁에서 근우회가 갖는 한계에 직면하고 근우회 해소투쟁을 벌였고, 근우회가 해소된 이후에는 조선공산당 재건 등에 힘쓰다 체포되어 복역한다. 광복 후 함경남도 지역에 거주하며 1945년 12월에 결성된 '조선부녀총동맹'에 함경남도 대표로 중앙위원에 선출되었다. 이처럼 정종명은 간호와 조산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서 사회주의 여성해방운동에 앞장선 인물이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이꽃메, 2012).

4)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조산부 졸업생 누계와 취업 현황

(1) 졸업생 누계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의원이 배출한 전체 졸업생 누계를 보면, 간호부과는 27회 졸업생 420명 중 조선인이 106명이었고, 조산부과는 24회 128명 졸업생 중 조선인이 64명이었다. 그 외에도 1917년 4월부터 1926년 9월까지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의 위탁으로 간호부과는 12회에 걸쳐 일본인 졸업생 65명을 배출했다(『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14~15회, 1927~1928).

(2) 졸업생 취업 누계

1926년 말 간호부과 졸업생은 총 24회, 356명에 달한다. 이들의 조선 내 취직 상황은 [표 4-1-10]과 같고 그중 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총독부의원 재직 간호부과

[표 4-1-9]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 · 조산부 양성소 졸업생 수[6]

• 간호부과 졸업생 누계 단위: 명

졸업 횟수	입학 연월	졸업 연월	졸업생 수		
			조선인	일본인	계
제1회	1911. 4	1912. 3	1	-	1
제2회	1911. 4	1912. 3	9	-	9
제3회	1912. 4	1913. 3	11	-	11
제4회	1913. 4	1914. 10	6	-	6
제5회	1913. 10	1915. 3	1	-	1
제6회	1914. 4	1915. 10	4	-	4
제7회	1914. 10	1916. 3	2	-	2
제8회	1915. 4	1916. 10	6	-	6
제9회	1916. 4	1917. 10	4	6	10
제10회	1917. 4	1918. 10	2	7	9
제11회	1918. 4	1919. 10	2	22	24
제12회	1918. 10	1920. 3	-	2	2
제13회	1919. 4	1920. 10	2	14	16
제14회	1919. 10	1921. 3	-	7	7
제15회	1920. 4	1921. 10	7	17	24
제16회	1920. 10	1922. 3	2	15	17
제17회	1921. 4	1923. 3	4	29	33
제18회	1921. 10	1923. 10	6	21	27
제19회	1922. 4	1924. 3	9	22	31
제20회	1922. 10	1924. 10	5	15	20
제21회	1923. 4	1925. 3	4	19	23
제22회	1923. 10	1925. 10	3	14	17
제23회	1924. 4	1926. 3	4	24	28
제24회	1924. 10	1926. 10	4	24	28
제25회	1925. 4	1927. 3	2	17	19
제26회	1925. 10	1927. 9	3	17	20
제27회	1926. 4	1928. 3	3	22	25
총계			106	314	420

6 졸업생 통계는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조선총독부의원연보』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이 있고, 초반의 기록은 특히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졸업생의 누계를 개관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여 전재한다.

[표 4-1-9]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 · 조산부 양성소 졸업생 수(계속)

• 조산부과 졸업생 누계 단위: 명

졸업 횟수	입학 연월	졸업 연월	졸업생 수		
			조선인	일본인	계
제1회	1912. 4	1913. 5	9	-	9
제2회	1913. 4	1914. 3	11	-	11
제3회	1914. 10	1915. 10	4	-	4
제4회	1915. 4	1916. 3	1	-	1
제5회	1915. 10	1916. 10	3	-	3
제6회	1916. 4	1917. 3	2	1	3
제7회	1916. 10	1917. 10	6	1	7
제8회	1917. 10	1918. 10	3	1	4
제9회	1918. 10	1919. 10	-	1	1
제10회	1919. 10	1920. 10	1	1	2
제11회	1920. 10	1921. 10	1	-	1
제12회	1921. 4	1922. 3	2	-	2
제13회	1921. 10	1922. 10	2	1	3
제14회	1922. 4	1923. 3	4	2	6
제15회	1922. 10	1923. 10	1	1	2
제16회	1923. 4	1924. 3	2	6	8
제17회	1923. 10	1924. 10	1	2	3
제18회	1924. 4	1925. 3	1	6	7
제19회	1924. 10	1925. 10	2	10	12
제20회	1925. 4	1926. 3	-	10	10
제21회	1925. 10	1926. 9	1	7	8
제22회	1926. 4	1927. 3	1	5	6
제23회	1926. 10	1927. 9	4	5	9
제24회	1927. 4	1928. 3	2	4	6
총계			64	64	128

출처: 조선총독부의원 편(1928: 67~68).

[표 4-1-10] 간호부과 졸업생의 조선 내 취직 상황(1926년 말 기준) 단위: 명

재직 기관	조선총독부 의원	도립의원	적십자 병원	육군위술 병원	학교 간호부	사립병원	간호부회	상급학교 입학자	합계
인원	120	17	3	1	2	4	6	4	157

출처: 『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13회, 1926.

[표 4-1-11] 조선총독부의원 재직 간호부과 졸업생의 근속 상황(1926년 말 기준) 단위: 명

졸업 후 경과연수	8년 반	6년	3년	2년 반	2년	1년 반	1년	반년	졸업 당시	합계
취직 인원	1	3	7	7	19	18	21	16	28	120

출처: 『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13회, 1926.

졸업생의 근속 상황은 [표 4-1-11]과 같다.

조선총독부의원 근속 상황은 2년의 의무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는 간호부가 상당수 존재했으며, 의무복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하는 간호부는 많지 않았다. 조선총독부의원은 이에 대해서 졸업자 대부분이 혼기에 해당하는 연령에 있는 여성이고 동시에 장시간의 힘든 업무에 비해 적은 급여, 봉사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근무 환경과 병원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도 병원 간호부가 오래 근무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로 인식했다(이꽃메, 2002: 149~157).

1928년 상반기까지 간호부과 졸업생 중 취업자는 154명이었는데, 조선총독부의원 108명, 도립의원 34명, 개업의에 고용된 자 6명, 학교 간호부 2명, 간호부회 근무 5명으로 집계되었다. 졸업 경과연수는 최장 11년에서 점차 체감하여 의무종료자가 65명이었고 나머지 89명은 의무연한 중이었다. 조산부과 졸업생 중 취업자는 관·공·사립 병원 재직자 3명, 개업의에 고용된 자 5명, 개업자 20여 명이 주요했고 다수는 결혼 후 가정 부인이 되었다(『조선총독부의원연보』 제14~15회, 1927~1928).

5)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간호부양성과, 산파양성과(1928. 6~1945. 8)

1928년 6월 1일 조선총독부의원이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이관됨

에 따라 조선총독부의원의 간호부와 조산부 교육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이관되었다.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은 개원과 동시에 산파양성과 규정과 간호부양성과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 요원의 자가충당 계획을 세웠다(『경성제국대학학보』 제16호, 1928).

(1) 입학

간호부양성과는 2년 과정이었다. 입학 자격은 15세 이상, 25세 이하의 미혼 여성으로 고등소학교 또는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를 받아들여 2년간 교육시킨 후 간호부로 배출했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모집에서 1기에 30명을 선발하여 교육했는데 그중 조선인은 3~4명 내외에 불과했고, 이들도 조선인 간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본어 통역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선발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인 학생이었던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인은 그 수는 적었으나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고 한다(서울대학교병원 편, 1993: 190~192).

산파양성과는 2년제 과정으로 시작해 2년제인 본과와 1년제인 특과로 나누어 운영하여, 이전의 조산부과 졸업자와 특과 졸업자는 본과 2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과보다 본과를 높은 수준에 두었다(서울대학교병원 편, 1993: 192~195). 입학 조건으로는 연령 18세 이상, 35세 이하로 통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학비를 지급하지 않고 월 2원의 수업료를 내도록 함으로써 의무연한제도는 폐지되었다.

1939년에는 간호부양성과 규정을 개정하여 고등여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자 정도의 학력을 요구하던 것에서 '동등 내지 그 이상'으로 올렸고, 그 정도의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만 내면 입학을 허락했던 것을 바꾸어 졸업성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경성제국대학 부속의원 간호부와 산파양성과의 입학생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2) 학자금

간호부과 학생들에게는 학자금을 지급하고 병원 기숙사를 제공하는 대신 졸업 후 2년간 의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1939년에는 간호부양성과 규정을 개정하여 간호부양성과 생도에게 1인당 월 18원의 학자(금)를 급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1941년에는 그 금액을 월 20원으로 올리면서 입학과 교

과과정에 변화를 주었다(『경성제국대학일람』, 1942: 121~126).

(3) 교과과정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간호부양성과 규정과 산파양성과 규정은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다.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침략전쟁을 점차 확장함에 따라 간호부의 대량 공급을 위해 전반적으로 간호교육의 수준을 저하시켰는데,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간호부양성과는 그 와중에도 최고의 수준을 유지했다(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 2007: 83~84).

1941년에는 교과과정을 개정하는데, 전쟁 상황을 반영해 강의를 대폭 줄이고 실습을 늘렸다. 간호부양성과 주당 강의시간은 제1학기는 23시간에서 26시간으로 늘었으나, 2학기는 18시간에서 10시간으로, 3학기는 15시간에서 월 2시간으로, 4학기는 월 3시간에서 월 2시간으로 줄었다. 산파양성과도 주당 강의시간이 제1학기는 22시간에서 19시간으로, 2학기는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3학기는 14시간에서 월 2시간으로, 4학기는 월 3시간에서 월 2시간으로 줄었다. 이는 전쟁의 확대와 더불어 간호부의 전선 유출 등으로 생긴 인력 공백을 학생으로 대신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과 모두 일본인 학생은 조선어를, 조선인 학생은 일본어를 배우던 것을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 일본어만 배우도록 하는 등 일제의 강경해진 정책을 반영하는 교과목 변동이 있었다.



출처: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2007).

[그림 4-1-9] 1933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간호부양성과

[표 4-1-12]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간호부양성과 학과목 및 주별 교수 시간 수 단위: 시수

학과목 \ 시기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제4학기
수신, 위생법규	1	1	1	월 3
일본어, 조선어	3	3	3	-
해부학	3	-	-	-
생리학	4	-	-	-
약리학, 조제학	2	-	-	-
소독법	1	-	-	-
환자운반법, 체조	2	1	1	-
위생학, 세균학	2	1	-	-
일반간호법	2	5	5	-
내과적 간호법, 전염병간호법	-	-	4	-
치료개보	-	2	-	-
구급처치	-	2	2	-
외과적 간호법	2	2	2	-
의료기계취급법	-	2	2	-
붕대법	1	1	-	-
실습	수시	수시	수시	수시
계	학과 23	18	15	월 3

주: 과외 활동으로 요리, 재봉, 작법 등을 교육받을 수 있다.
출처: 『경성제국대학일람』, 1929.

학과목은 요리, 재봉, 작법 등은 과외 활동으로 하여 실습을 포함한 12과목으로 축소하고, 제1학기 주 23시간, 제2학기 주 18시간, 제3학기 주 15시간, 제4학기 월 3시간의 수업을 듣도록 했다. 간호부양성과의 입학 자격과 수업연한 등은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조산부 양성소와 유사했다([표 4-1-12]).

1939년 '경성제국대학의학부부속의원간호부양성과및산파양성과직무규정'을 마련하여 교육 기반을 더욱 확고히 했다. 즉, 의원장이 두 양성과를 담당하도록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직원은 강사, 주사, 주사보, 사감을 두도록 하고, 강사는 교육을 담당하며, 주사는 서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생도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며, 주사보는 주사의 직무를 돕고, 사감은 사생의 감독 및 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경성제국대학일람』, 1942: 121~126).

산파양성과 학과목은 본과의 경우 실습을 포함해 모두 13과목으로 제1학기 주

[표 4-1-13]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산파양성과 학과목 및 주별 교수 시간 수(본과) 단위: 시수

학과목 \ 시기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제4학기
수신, 위생법규	1	1	1	월 3
일본어, 조선어	3	3	3	-
해부학	3	-	-	-
생리학	4	-	-	-
소독법	1	-	-	-
일반간호법	2	-	-	-
치료개보	-	-	4	-
정규임신, 분만, 산욕 및 취급법	4	4	-	-
이상임신, 분만, 산욕 및 취급법	4	4	-	-
육아법 및 소아병대의	-	-	2	-
부인과질병, 일반취급법	-	-	2	-
모형실습	-	2	2	-
실습	-	수시	수시	수시
계	학과 22	14	14	월 3

주: 〈특과〉(생략: 본과의 제1, 2학기와 같음)
출처: 『경성제국대학일람』, 1929.

당 22시간, 제2학기 14시간, 제3학기 14시간, 제4학기 월 3시간 수업을 받도록 했다. 1939년부터 전쟁으로 인한 간호사 전선 유출로 제1학기 주당 19시간, 제2학기 7시간, 제3학기 월 2시간, 제4학기 월 2시간 수업을 받았다([표 4-1-13]).

특과의 수업교과는 본과의 제1학기, 제2학기와 거의 같았다. 이와 같이 산파교육 수준을 향상시킨 결과 1929년부터 경성제국대학 부속의원 산파양성과의 본과 졸업생은 일본 본토에서도 통용되는 산파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선, 타이완, 관둥의 산파 시험에 합격한 산파에게 일본제국 전체에서 통용되는 면허를 부과한 것이 1933년 1월이었는데, 경성제국대학 부속의원 산파양성과 졸업생은 이보다 4년이나 앞서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다(이꽃메, 2002: 115~116).

(4) 일본인과 조선인 학생 차별과 일제 강점기 간호와 조산교육의 파탄

간호부양성과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했는데, 그 중 조선인은 3~4명이고 대부분 일본인 학생이었다. 1931년 경성제국대학 간호

부양성과에 입학한 임혜영의 회고담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알 수 있다[7](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 2007: 85~86).

애초에 간호부와 산파의 양성은 정규학교가 아니라 병원에 부속된 특수기관에서 담당했으며 조선인들은 민족 차별까지 심하게 경험해야 했다. 이러한 교육마저도 1930년대 이후에는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함에 따라 제대로 지속되지 못하고 실습에만 치중함으로써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전문적인 간호와 조산교육은 파탄에 이르고 광복 후 국립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발전하는 데 저해요소가 되었다(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 2007: 87).

(5) 졸업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양성소는 1929년 3월 28일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간호부 양성과 19명, 산파 양성과 8명이었다. 이후 1945년 광복까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간호부와 산파양성과 졸업생은 총 980명이었다. 이후 산파과는 1946년 3월에 특과 36회 졸업생을, 간호부과는 1947년 3월에 36회 졸업생 배출을 끝으로 그 과정이 폐지되었다.

(6) 졸업생 활동

◆ 박범숙(朴範淑, 1935년 경성제국대학 산파양성소 수료, 1914~1991)

박범숙은 1914년 평남 평원군 부농집안에서 태어났다. 1935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설 간호학과를 수료하고 해방 후인 1946년 이화여자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했다가 주위의 주선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 1949년 미국 인디아나 주 노트르담 성 마리아 대학교에 입학하여 조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1950년에 귀국하여 그해 2월 광주의과대학교에 편입해 1952년에 졸업했다.

졸업 후 부산 서구 대신동 시장통에 텐트를 치고 전쟁고아 20여 명을 돌보는 것을 시작으로 평생 동안 사회봉사활동에 진력했다. 낮에는 미군 부대에서 세탁물을 수거해 밤새도록 세탁하고 부대에서 나오는 잔반을 얻어 돼지를 키우며 틈틈이 미국의 통역까지 담당하는 등 근면하게 노력하여 모은 기금으로 1955년 7

7 임혜영은 1932년 간호부양성소를 졸업했으며 1971년까지 간호사 기숙사 사감을 역임했다. 임혜영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한국인 학생은 일본인의 1/10 정도이며, 한국인은 입학도 어려웠고 취업과 승진에도 차별을 받았다. 간호부 면허는 통용되었고 2년 교육 후 2년을 의무연한으로 근무했다.

월 부산에 사회복지법인 성가보육원을 창설하여 전쟁고아 200명을 돌보기에 이르렀다. 1984년 6월에는 부산시 남구 망미동 774-269번지에 사재 약 80억 원으로 사회복지법인 로사사회봉사회를 창설했고, 1985년 5월 로사사회봉사회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을 창설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헌신했다.

1990년 간암 진단을 받고 평생 근검절약하여 모은 30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같은 해 11월 7일 천주교 마산교구에 "나의 모든 재산을 불우한 사람을 위한 복지사업과 수녀회 설립에 써달라"는 말과 함께 헌납했다. 1991년 78세로 박범숙이 타계한 뒤 천주교 마산교구청은 창녕 나사렛예수수녀회와 사회복지법인 범숙재단을 설립하여 고인의 뜻을 실천하고 있다. 고인의 삶은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2010년에는 '로사 박범숙 할머니의 숨은 삶'이라는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다.

◆ 조귀례(1945년 경성대학 간호부양성소 졸업, 1926~)

조귀례는 1926년 전남 장성군에서 출생했으며, 1945년 9월 경성대학 간호부 양성과(제33회)를 졸업했다. 해방 이후 1948년 국군 간호장교 1호로 임관하여 한국전쟁 당시 육군병원에 근무하면서 많은 전상자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했다. 1961년 육군예비역으로 제대했으며 한국군 간호장교의 산 역사로 불린다. 2007년에는 회고록 『전장의 하얀 천사들』을 펴냈다.

6)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간호부양성소(1929. 5~1945. 8)

경성의학전문학교는 1916년 개교한 이래 부속병원을 따로 두지 않고 직제상 별개의 기관인 조선총독부의원을 임상실습 장소로 사용했다. 그런데 1928년 6월 1일 조선총독부의원이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이 됨에 따라,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새로 부속의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한다. 부속의원은 의학의 교수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환자 진료와 동시에 간호부 양성에 관한 사항도 담당했다.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현 국군서울지구병원)은 1928년 11월 30일에 2층 벽돌 건물로 서울 소격동에 개원했다.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은 개원한 다음해인 1929년 간호부양성소 규정을

[표 4-1-14] 경성의학전문학교 간호부과 학과목 및 주별 교수 시간 수 단위: 시수

학과목 \ 시기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제4학기
수신, 위생법규	1	1	1	월 3
일본어, 조선어 및 산술	3	3	3	-
해부학	3	-	3	-
생리학	4	-	-	-
약리학, 조제학	-	2	-	-
소독법	1	-	-	-
환자운반법, 체조	2	1	1	-
위생학, 세균학	2	1	-	-
일반간호법	2	-	-	-
내과적 간호법, 전염병간호법	2	3	5	-
치료개보 및 수술의 개보	-	2	4	-
구급처치	-	2	-	-
외과적 간호법	2	2	2	-
의료기계취급법	-	2	2	-
식이학, 식양법	-	1	-	-
붕대법	1	1	-	-
실습	수시	수시	수시	수시
계	학과 23	19	18	월 3

주: 과외 활동으로 요리, 재봉, 작법 등을 교육받을 수 있다.
출처: 『경성의학전문학교일람』, 1929.

마련한다.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의사 양성을 주된 임무로 삼아, 의원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의 하나로 간호부를 양성하고자 하여 조산부는 양성하지 않았다. 당시는 간호부 양성에 관한 표준이 확립되어 있던 시기라, 입학 지원 자격이나 수업연한, 교과목 등은 경성제국대학 부속의원과 비슷했으나 강의시간 수는 많았다([표 4-1-14]).

1930년에는 학자금 지급, 기숙사 생활, 졸업 후 2년간 의무연한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생도 중 30명에 한해 1인당 월 18원 이내로 학자(금)를 지급하고, 급여액 및 지급 방법은 별도로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학생들은 원내 기숙사에 숙박하도록 했다(제19조). 졸업 후에는 만 2년간 소정의 급료를 받고 본원의 간호부로 근무할 의무를 정했으며 의무기간 중 간호부로서 불합

리한 행위를 하거나 복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제20조). 중도 퇴학을 하거나 퇴학의 명을 받은 자, 졸업 후 제20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에게 그 정황을 살펴 강습 중에 급여한 학자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상환 받도록 하는(제21조) 규정을 만들었다.

1934년에 이 규정은 다시 개정되어, 고등소학교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는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입학할 수 있었던 규정을 없애고 입학 지원자는 모두 시험을 치르도록 했고, 학과목 및 교수 시간 수를 약간 변경했다(『경성의학전문학교일람』, 1935: 60~68).

경성의학전문학교 간호부양성소의 교직원은 1930년 강사 19명, 생도 감독 1명으로 모두 겸직이었고, 잡부가 1명 있었다. 1940년 강사는 19명으로 1명은 소장을 겸직하고 다른 1명은 주사를 겸직하며, 사감, 부사감, 생도 감독이 각 1명으로 교직원은 도합 22명이었다(『경성의학전문학교일람』, 1930: 125~127).

경성의학전문학교 간호부양성소는 4월과 10월의 2회 학생 선발 규정에 따라 1929년 10월에 첫 입학생 14명을 받아들였다. 그중 10명이 조선인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2년 후인 1931년에 졸업했다. 현재 확인 가능한 1929년에서 1940년까지의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간호부양성소의 졸업생은 모두 123명이며, 1940년에는 1학년 15명과 2학년 21명으로 총 36명이 재학 중이었다(『경성의학전문학교일람』, 1940: 212~216).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은 광복을 맞았다. 이후 미군정기인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가 창설되면서 경성대학(경성제국대학의 개칭)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를 통합한 의과대학이 설립되었다. 이로써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물적 토대를 활용하되 해방된 한국인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 그리고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 간호교육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제3절 광복 이후 간호교육(1945. 8~1946. 12)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 광복을 맞았다. 해방 직후 한반도 남부 지역

의 통치를 담당한 미군정은 학무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제도를 추진했으나, 일제 강점기에 정식 학교 제도로서 자리잡지 못했던 간호교육의 개편은 학무국이 아닌 보건후생부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학무국의 후신인 문교부가 1946년 7월 13일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국대안)'을 발표한 지 이틀 후인 7월 15일, 보건후생부는 전국의 병원에 설치된 기존의 간호부, 조산부 양성소를 폐지하고 이를 '고등간호학교'로 개칭했다. 중학교 졸업자가 입학 대상이었으며 3년 동안 간호과 및 조산과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간호사와 조산원 두 가지 면허를 발급했다.

미군정은 1945년 8월 22일, 미군정령 122호로 국립서울대학교를 발족했다. 이때 의과대학 관련 규정에 '간호 및 간호교육학교를 포함함'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고등간호학교'가 창설되었다. 초대 교장으로는 당시 미군정청 행정부에서 간호교육 자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송인애가 취임했다. 송인애 초대 교장은 이화여자전문학교 가정과를 졸업한 후 일본 성누가간호전문학교에서 간호교육을 받았고, 1945년 미군정 간호고문관 루카(Mildred Lucka)의 추천을 받아 문교부에서 추진하던 서울대학교 고등간호교육기관 설립준비위원으로 발탁되었다가 초대 교장으로 부임했다.

한편, 해방 후 8월 17일 각급 학교 당국이 연합군의 한국 진주까지 임시 휴교를 결정하고 경성대학 부속병원의 일본인 간호부와 학생이 귀국하자, 기존의 간호부양성소는 교육시킬 사람도 배울 학생도 없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일손이 부족하자 1946년 봄에 일 년간 단기과정을 모집해 교육을 실시하고 1947년 70여 명에 대한 졸업식을 실시했다.

서울대학교 부속 고등간호학교의 첫 졸업생은 1946년 9월 5일 입학해 3년 과정을 이수한 후 1949년 7월 28일 졸업한 29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중학교 3년 내지는 4년 졸업자였다. 입학생은 단기 양성소 편입생을 합해 총 60명이었으나 학업 도중 건강상의 문제, 결혼 등으로 29명이 졸업했다. 고등간호학교의 학생들이 수학한 교사는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숙사 자리에 1층 학생 기숙사와 간호원 기숙사 사이에 있었다.

교과과정의 기록은 한국전쟁 때 모두 소실되었지만 1946년 미군정청에서 하달한 고등간호학교 간호원과 조산원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1946년 고등간호학교 간호학 및 조산원 교과과정은 [표 4-1-15]를 참

[표 4-1-15] 1946년 고등간호학교 간호원과 조산원 교과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교양과목	국어, 영어, 음악	영어	영어
전공과목	영양학, 약물학, 해부학 및 생리학, 세균학, 약물조제학, 간호사, 개인위생학, 간호도덕, 붕대학, 내과간호, 외과간호, 수술실수기	식이영양, 병리학, 내과간호, 외과간호, 소아과간호, 이비인후과간호, 간호술, 응급간호, 치과학, 산과학, 전염병관리, 임상술어	간호도덕, 간호술, 산과간호, 내과간호, 조산학, 보건간호, 결핵간호, 소아과간호, 물리요법, 병실간호, 수술실수기
임상실습	실습 포함 1일 8시간 2학기부터 임상실습	실습 포함 1일 8시간	실습 포함 1일 8시간 조산실습 20건 이상 실습(10건 이상 관찰)

출처: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2007).

고한다.

간호학 교수 중 송인애 교장이 간호학 전공과목과 간호윤리, 영양학을, 장기광 교수가 내외과간호학을, 이귀향 교수가 간호사와 간호윤리를 담당했다. 의과학 과목 중 안과는 김선준 교수, 이비인후과는 김홍기 교수, 피부과는 이준 교수, 산부인과는 나건영 교수, 내과는 송호성 교수와 이문호 교수, 외과는 한격부 교수, 정신과는 진성기 교수가 담당했다.

1948년 5월 송인애 교장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미국 밴더빌트 대학(Vanderbilt University)으로 유학을 떠나, 1950년 6월 4일 한국인으로서는 1호로 미국에서 간호학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곧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귀국하지 못했다. 송인애 교장 후임으로 1948년 6월 취임한 장기광 교장서리는 간호대학을 초급대학 수준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전 기숙사를 간호대학 교사로 사용하고 제1부속병원 정문 옆에 있던 문교부 소속 2층 벽돌 건물을 교사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많은 일을 추진했으나 한국전쟁 시 재직 교원, 학생들과 함께 납북되어 돌아오지 못했다. 그 외 교원으로는 세브란스 간호학교를 졸업한 김세재 교수와 성누가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한 어인애, 엄금례 교수 등이 있었다.

그 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1959년 간호고등학교에서 4년제 간호학과로 승격했다. 1990년에는 단과대학인 간호대학을 발족하여 한국의 간호계를 이끄는 국내 최고의 간호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부록: 1907~1945년 학사 관련 법규

[부록 1] 칙령 제9호 대한의원관제(1907. 3. 10)

제1조 대한의원은 의정부가 직할하며 이를 한성에 설치하고 위생, 의육(醫育), 치료의 일을 담당한다.

제2조 대한의원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원장 1인　　고문 1인　　의원 1인

교관 17인　　약제사 7인　　통역관 3인

통역관보 5인　사무원 10인　기사 3인

단,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 이하의 직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제3조~제5조(생략)

제6조 대한의원은 아래의 3부를 둔다.

1. 치료부
2. 교육부
3. 위생부

제7조 치료부는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질병치료
2. 빈민시료(貧民施療)

제8조 교육부는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의사양성
2. 약제사양성
3. 산파 및 간호부 양성
4. 교과서 편찬

제9조 위생부는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의사, 약제사 및 산파의 업무와 약품의 매매 및 취급 관리
2. 전염병 및 지방병(地方病)의 예방, 종두(種痘) 등 공중위생에 관한 조사
3. 검징(檢徵), 검역(檢疫) 및 정선(停船)에 관한 조사
4. 위생회 및 지방병원에 관한 조사

제10조~제14조(생략)

부칙

제15조 본령은 광무 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본령 시행일부터 광무 9년 칙령 제10호 광제원(廣濟院) 관제 및 광무 3년 칙령 제7호 의학교 관제를 함께 폐지한다.

광무(光武) 11년 3월 10일

[부록 2] 내부령 제5호 대한의원부속의학교규칙(『구한국관보』, 1910. 2. 7)

제1장 총칙

제1조 대한의원은 부속의학교에 의학과, 약학과, 산파과 및 간호과를 둔다.

제2조 수업연한은 의학과 4년, 약학과 3년, 산파과 2년 및 간호과 2년으로 한다.

제3조 각 과 각 학년의 학과는 별표와 같다. 매주의 수업 시수는 원장이 정한다.

제4조 본교 1학년의 학생 수는 의학과에 50인, 약학과에 10인, 산파과에 10인, 간호과에 20인으로 한다.

제5조 본교에서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6조 의학과와 약학과의 교수는 일어로 한다.

제7조 학년은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끝난다.

제8조 학년을 나누어 다음 2학기로 정한다.

전학기(前學期): 4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후학기(後學期): 10월 2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제9조 교수 일수는 매 학년에 200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휴업일은 융희 2년 각령(閣令) 제6호로 정한 휴가일 외에 다음과 같다.

춘계휴업: 4월 1일부터 동월 10일까지

하계휴업: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계휴업: 12월 29일부터 다음해 1월 7일까지

제11조 전염병의 예방, 비정상적인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한의원장이 인가를 얻어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입학, 퇴학, 징계, 출학(黜學)

제12조 입학을 허가할 만한 자는 나이 18세 이상 25세 미만으로 품행이 방정한 자로 신체검사 및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한다.

제13조 입학시험의 과목 및 정도는 다음과 같다.

의학과, 약학과

국한문(사서강독, 작문), 산술(사칙연산, 분수), 일어(일어고등소학독본의 강독, 회화, 번역)

대한의원장은 필요할 때에는 물리학, 화학을 추가할 수 있다.

산파과, 간호과

독서(국문오륜, 행실), 작문(간단한 국문의 작문)

제14조 학생의 모집 정원 및 시험 일자는 대한의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입학 지원자는 별지 서식의 입학원서에 이력서를 첨부하여 본교에 제출한다.

제16조 입학이 허가된 자는 별지 시석의 서약서를 본교에 제출한다.

제17조 보증인은 입학자의 친족이나 일체의 책임을 부담할 만한 자 2인으로 정하되 그중 1인은 경성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8조 학생은 자기의 사정으로 퇴학을 청원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퇴학코저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보증인이 연서하고 본교에 요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대한의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실시할 수 있다. 징계는 경고, 근신 및 정학으로 한다.

제20조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한의원장이 출학을 명한다.

1. 성행(性行)이 불량(不良)한 자.
2. 질병이나 또는 학력이 부진하여 성업(成業)의 소망(所望)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연속 결석한 자 또는 출석이 일정하지 않은 자.

제3장 시험, 졸업

제21조 시험을 나누어 학기시험, 학년시험 및 졸업시험으로 함. 학기시험은 각

학기 내에, 학년시험은 각 학년말에, 졸업시험은 최종 학년말에 시행한다.

대한의원장은 학년시험의 시행 형편에 의해 후학기 시험을 생략할 수도 있다.

제22조 시험의 성적은 1학과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과목에 40점 이상으로 하여, 총 평균 60점 이상에 달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23조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자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고, 보증인이 연서한 후 본교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의원장은 이 경우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 대한의원장은 의학과, 약학과의 졸업자에게는 제3호 서식, 산파과와 간호과의 졸업자에게는 제4호 서식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25조 대한의원장은 의학과의 졸업자는 의학진사(醫學進士), 약학과의 졸업자는 약학진사(藥學進士)의 칭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4장 학비, 의무

제26조 학생은 관비로 식비, 피복 및 잡비를 지급한다. 기숙사에 기숙한 자에게는 식비를 주지 않는다.

제27조 학생이 위의 조항에 의해 퇴원할 때나 출학을 명할 때는 재학 중 지급받은 학비의 전부나 일부분을 상환케 하고, 학업이 부진하여 출학을 당할 때는 현재 소지한 급여품을 반환케 한다.

제28조 학생은 졸업한 후, 다음 기간 내에 각기 습득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의학과 3년
2. 약학과 2년
3. 산파과 및 간호과 1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항(前項)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재학 중 지급한 학비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케 한다.

제5장 원외 학생

제29조 사비로 입학을 청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대한의원장은 학생 정원 외에 원외 학생으로 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원외 학생은 의학과에 20인, 약학과에 10인, 산파과에 10인으로 한다.

제30조 원외 학생에게는 학비 등의 지급과 의무연한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31조 본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1호, 2호, 3호, 4호 서식과 의학과 학과표, 약학과 학과표 생략)

융희(隆熙) 4년 2월 1일

내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부록 3] 칙령 제368호 조선총독부의원관제(『조선총독부관보』, 1910. 9. 30)

제1조 조선총독부의원은 조선총독의 관리에 속하고, 질병의 진료에 관한 일을 맡는다.

제2조 의원에 부속의학강습소를 두고, 의사, 산파, 간호부의 양성에 관한 일을 맡는다.

제3조 의원에 다음 직원을 둔다.

원장	칙임(勅任)	
의관(醫官)	전임 9인	주임(奏任, 이 중 2인은 칙임으로 임명할 수 있음)
교관(教官)	전임 1인	주임
사무관	전임 1인	주임
약제관(藥劑官)	전임 1인	주임
의원(醫員)	전임 10인	주임 및 판임(判任)
서기		
교원(教員)		
조제수	전임 24인	판임
조수		
통역생		

제4조 원장은 조선총독부의 지휘감독을 받아, 원무(院務)를 관리하고, 부하 직원

을 감독한다.

제5조 의관은 원장의 명을 받아, 진료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제6조 교관은 원장의 명을 받아 의사, 산파, 간호부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제7조~제10조 (생략)

제11조 교원은 상관의 명을 받아 의사, 산파, 간호부의 양성에 종사한다.

제12조~제14조 (생략)

부칙

본령은 메이지(明治) 4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4] 조선총독부령 제19호 조선총독부의원부속의학강습소규칙(『조선총독부관보』, 1911. 2. 20)

제1장 총칙

제1조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에 의학과, 조산부과(助産婦科) 및 간호부과(看護婦科)를 설치한다.

제2조 수업연한은 의학과 4년, 조산부과 2년 및 간호부과 1년 반으로 한다.

제3조 학생의 정원은 의과 각 학년 75명, 조산부과 각 학년 20명, 간호부과 각 학기 20명으로 한다.

제4조 의과, 조산부과 각 학년 및 간호부과 각 학기의 학과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의과 및 조산부과 학년은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끝난다. 학년을 나누어 다음 2학기로 한다.

전학기(前學期): 4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후학기(後學期): 10월 2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간호부과의 수업연한은 이를 3학기로 나누어 각 학기의 기간은 전항(前項) 학기의 기간에 준한다.

제6조 교수 일수는 1학년 약 42주로 한다. 단 간호부과에 있어서는 약 63주로 한다.

각 과의 교수시수는 매주 약 30시간으로 한다.

각 학과의 수업 시수는 의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생략)

춘계휴업: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하계휴업: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계휴업: 12월 29일부터 다음해 1월 4일까지

(생략)

제8조 수업료는 당분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 학자(學資)는 의학과에 있어서는 학생 정원의 3분의 1, 조산부과 및 간호부과에 있어서는 학생 정원 절반에 한해,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입학, 퇴학, 징계

제10조 의과학생은 조선인 남자, 조산부과 및 간호부과는 조선인 여자로 하고, 의과, 조산부과 1학년 또는 간호부과 제1학기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여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 나이 17세 이상, 25세 이하의 자
2. 신체건전하고 품행방정한 자

고등학교 제1학년을 수료한 자는 의과에, 보통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조산부과, 보통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간호부과에 시험을 보지 않고 입학을 허가한다.

제11조 전항의 입학시험은 의원장이 이를 시행하고, 그 과목 및 정도는 다음과 같다.

의과

한문: 사서강독(四書講讀), 작문

산술: 사칙(四則), 분수(分數)

국어: 강독, 회화, 번역

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험과목에 이과(理科)를 보탤 수 있다.

조산부과

국어: 강독, 회화

간호부과

국어: 강독, 회화

제12조~제17조(생략)

제3장 시험, 졸업

제18조~제21조(생략)

제22조 의과를 졸업한 자는 의학진사(醫學進士)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메이지(明治) 4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에 즈음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제9조에 구애 없이 학자(學資)를 지급한다.

(제1, 2, 3호 서식, 의학과 학과표 생략)

[부록 5] 조선총독부령 제20호 조선총독부의원부속의학강습소생도학자급여규칙

(『조선총독부관보』, 1911. 2. 20)

제1장 총칙

제1조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학생에게 주는 학자(學資)는 식비, 피복비 및 잡비의 3종으로 하고, 그 금액은 1인에 의과에 있어서는 월액 3원 이내, 조산부과 및 간호부과에 있어서는 월액 10원 이내로 하고, 그 지급 구분 및 급여 금액은 조선총독부의원장이 정하며, 전항의 학자는 의원장의 의견에 따라 현품으로 급여할 수 있다.

제2조 급비생(給費生)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보증인 2인이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한다.

(이하 생략)

제3조 급비생은 의학강습소 규칙 제15조에 의해 퇴학되었을 때, 또는 동 17조 제1호 혹은 제3호에 의해 퇴학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는 재학 중 지급한 학자(學資)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고, 동 17조 제2호에 의해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급여품을 반납한다.

부칙

본령은 메이지(明治) 4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6] 조선총독부령 제154호 간호부규칙(『조선총독부관보』, 1914. 10. 13)

제1조 간호부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의 여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조선총독이 정하는 간호부 시험에 합격한 자
2. 조선총독부의원 또는 도 자혜의원의 간호부과를 졸업한 자
3.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간호부학교 또는 간호부양성소를 졸업한 자
4. 도(道)·부(府)·현(縣)의 간호부 시험에 합격한 자
5. 관립·부현립 또는 일본적십자사의 간호부양성소를 졸업한 자

제2조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간호부의 면허를 주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정신에 이상이 있어서 간호부의 업무를 견디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죄 또는 간호부의 업무에 관한 죄를 범한 자

제3조 간호부의 면허를 받은 자는 본적, 주소, 씨명, 생년월일을 기입한 서면에 이력서 및 제1조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서류를 첨가하여 경무부장(경성 내에서는 경무총장, 이하 같음)에게 신청한다.

경무부장은 전항의 신청자에 한하여 면허를 줄 때는 간호부면허증을 발급한다.

제4조 간호부의 씨명(氏名)을 변경하거나 면허증을 훼손·망실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적어 15일 이내에 경무부장에게 그 서환(書換) 또는 재교부를 신청한다.

망실한 면허증을 발견하는 때는 즉시 경찰서(결찰분서 및 경찰서의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 헌병분유소를 포함, 이하 같음)에 제출한다.

제5조 간호부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인지로서 수수료 1원, 서환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50전을 납부한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환부하지 않는다.

제6조~제10조(생략)

제11조 간호부 시험은 도장관이 행한다. 시험기일 및 장소는 고시한다.

제12조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법
2. 해부, 생리 대의
3. 소독법
4. 실지에 관한 사항

제13조(생략)

제14조 간호부의 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기입한 서면에 이력서를 첨가하여 도장관에 제출한다.

제15조 간호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 생략)

부칙

본령은 다이쇼(大正) 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록 7] 조선총독부령 제35호 조선총독부의원및도자혜의원조산부간호부양성규정(『조선총독부관보』, 1916. 4. 25)

제1조 조선총독부의원에 조산부과(助産婦科) 및 간호부과(看護婦科)를 두고 도 자혜의원에 조산부과, 간호부과, 속성조산부과를 둔다.

제2조 생도의 정원은 조선총독부의원에 있어서는 각 과를 통하여 40인으로, 도 자혜의원에 있어서는 도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 자혜의원장이 정한다.

제3조 조산부과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며 아래의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4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2학기 10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간호부과의 수업연한은 1년 반으로 하며 아래의 3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4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또는 10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학기 10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4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3학기 4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또는 10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속성조산부과 수업기간은 5개월 이상이며 그 기간 및 시기는 모집 도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 자혜의원장이 정한다.

제4조 조산부과, 간호부과 및 속성조산부과 각 학기의 학과는 별표에 의한다.

제5조 수업일수는 조산부과 및 간호부과는 매 학기 21주이며 속성조산부과의 교수일수는 각 과의 교수 시간은 매주 약 30시간이며 각 학과의 교수 시간은 의원장 또는 도 자혜의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6조 조산부과 또는 간호부과에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연령 만 17세 이상 30세 이하의 신체건전, 품행방정한 여자로서 입학시험에 급제한 자일 것을 요한다.

속성 조산부과의 입학을 허가받은 자의 자격은 도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 자혜의원장이 이를 정한다.

간호부과를 졸업한 자는 조산부과로, 심상소학교 또는 수업연한이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는 간호부과에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다.

제7조 입학시험은 조산부과에 있어서는 간호부과 졸업 정도, 간호부과에 있어서는 심상소학교 또는 수업연한이 4년의 보통학교 졸업 정도에 의하여 아래의 과목에 의원장 또는 도 자혜의원장이 이를 행한다.

조산부과　국어, 산술, 해부 및 생리, 간호법

간호부과　국어, 산술

제8조 입학 지원자는 제1호 양식의 입원원서를 제출(이하 생략)

제9조 의원장 또는 도 자혜의원장은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생도에 대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10조 졸업시험에 합격하는 자에게는 제4호 서식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11조 속성조산부과의 졸업생에 한하여 만 2년 이상 조산부의 업무에 종사하며 본인의 원출이 있을 때는 도 자혜의원장은 그 기량을 참조하여 제5호 서식의 조산부적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생도에는 학자를 급여하는 것이 있다. 조선총독부의원에 있어서는 조선총독의 인가, 도 자혜의원에 있어서는 도장관의 인가를 받아 의원장 또는 도 자혜의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13조 학자는 조선인 생도는 1인 월액 7원 이내, 내지인 생도는 월액 7원 이내 그 급여액 및 지급 방법은 의원장 또는 도 자혜의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14조 급비생은 조산부과 및 간호부과 생도에 있어서는 졸업의 날로부터 만 2

년간, 속성조산부과 생도에 있어서는 졸업의 날로부터 만 1년간 의원장 또는 도장관이 지정하는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제15조 급비생이며 자기의 편의에 따라 퇴학 또는 퇴학의 처분을 받거나 또는 전조의 의무에 위배하는 경우 의원장 또는 도 자혜의원장은 재학 중 급여한 학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받을 수 있다.

부칙

본령은 반포의 날부터 시행한다.

조선총독부의원부속의학강습소규칙, 조선총독부의원도자혜의원조산부및간호부양성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이하 생략)

[부록 8] 조선총독부령 제77호 조선총독부의원및도자혜의원조산부간호부양성소 규정 개정(1922. 5. 2)

제1조 조선총독부의원과 대구, 평양, 함흥 및 광주의 자혜병원에 간호부, 조산부 양성소를 두고 간호부과 및 조산부과로 나눈다.

제2조 생도의 정원은 조선총독부의원에 있어서는 조선총독부의원장, 도 자혜의원에 있어서는 도 자혜의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조 간호부과(看護婦科)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되 이를 4학기로 나눈다. 조산부과(助産婦科)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며 아래의 2학기로 나눈다.

제4조 각 과, 각 학기의 학과는 별표에 의한다.

• 간호부과 학과목

학기	학과목
제 1학기	수신, 국어, 조선어, 산술, 가사, 재봉, 해부 및 실습, 붕대, 간호, 치료 및 수술의 개보, 위생, 환자의 운반
제 2학기	수신, 국어, 조선어, 산술, 가사, 재봉, 해부 및 실습, 붕대, 간호, 치료 및 수술의 개보, 소독, 전염병 및 기타의 질병, 의료기계, 외상 및 구급법, 환자의 운반, 실습
제 3학기	수신, 국어, 조선어, 산술, 가사, 재봉, 안마, 약물 및 조제, 실습
제 4학기	수신, 실습

• 조산부과 학과목

학기	학과목
제 1학기	수신, 국어, 조선어, 해부 및 실습, 소독, 조산법, 실습
제 2학기	수신, 국어, 조선어, 조산법, 육아법, 실습

제5조 각 과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20일로 한다.

각 과의 수업시간은 매주 약 33시간으로 하되 각 학과의 교수 시간 수는 조선총독부의원장, 도 자혜의원에 있어서는 도자혜의원장이 이를 정한다. 단, 하계 및 동계에는 필요에 따라 교수 시간 수를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각 과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자는 연령 만 16세 이상, 30세 이하의 신체건전, 품행방정한 여자로서 입학시험에 급제한 자이어야 한다. 단 고등여학교 혹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제2학년 수업자 또는 고등소학교 혹은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행하지 않고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각 과의 입학시험은 고등여학교 혹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제2학년 수업자 또는 고등소학교 혹은 보통학교 고등과의 졸업 정도에 의하여 국어 및 산술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의원장 또는 도 자혜의원에 있어서는 도 자혜의원장이 이를 행한다.

제8조 입학 지원자는 제1호 양식의 입원원서를 제출한다.

입학이 허가된 자는 보증인 2인의 서명으로서 자비생(自費生)에 대하여는 제2호 서식의 보증서, 급비생(給費生)에 있어서는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조선총독부의원장 또는 도 자혜의원장은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생도에 대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다(이하 생략).

1. 성행(性行)이 불량하고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2. 질병 또는 성적 불량으로 성업(成業)의 전망이 없는 자

제10조 졸업시험에 합격하는 자에게는 제4호 서식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11조 생도에는 학자를 급여할 수 있다.

학자는 1인 월액 20원 이내로 하되 그 급여액 및 지급방법은 조선총독부의원장 또는 도 자혜의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12조 급비생은 졸업 후 조선총독부의원장 또는 도지사의 지정에 따라 만 2년

간 업무에 종사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급비생이며 자기의 편의에 따라 퇴학 또는 퇴학의 처분을 받거나 또는 전조의 의무에 위배하는 경우 의원장 또는 도지사는 재학 중 급여한 학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반포의 날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하는 현재 간호부과 또는 조산부과에 재학하는 생도는 본령에 의하는 간호부과 또는 조산부과에 생도로 간주한다(제1호~제4호 서식 생략).

[부록 9] 경성제국대학의학부부속의원간호부양성과규정(『경성제국대학일람』, 1929)

제1조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에 간호부양성과를 둔다.

제2조 간호부양성과는 간호부에게 필요한 학술 및 기능을 가르친다.

제3조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이를 4학기로 나누고, 1학기는 6개월로 한다.

제4조 휴업일은 아래와 같다(생략).

제5조 생도의 입학 시기는 4월 및 10월로 한다.

제6조 입학 지원자는 아래의 자격을 지닌 자로 한다.

1. 신체 건전할 것
2. 품행이 방정하고 지조가 건실할 것
3. 고등소학교 혹은 보통학교의 고등과 졸업자 혹은 이와 동등의 학력을 가질 것
4. 연령 15세 이상 25세 이하일 것
5. 배우자가 없고 가사와 관계가 없을 것

제7조 입학 지원자는 제1호 서식의 입학원서에 이력서 및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의원장에게 제출한다. 제2항의 시험 면제자는 학교장의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입학시험은 고등소학교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 정도에 준해 실시하며, 과목은 일본어(강독, 작문, 받아쓰기 등), 산술, 구두시험, 체격검사이다. 고등여학

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자는 구두시험과 신체검사만 실시하고 다른 사람은 면제한다.

제9조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입학 기일까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서의 연대 보증인 중 1인은 본인의 부모형제나 후견인으로 하며, 다른 1인은 경성에 거주하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한다.

제10조 연대보증인이 이사하거나 사망하였을 때는 신속히 의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수속을 한다.

제11조 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기일 내에 입학할 수 없을 때는 입학연기원을 제출하고, 입학유예기간은 입학기일부터 2주간으로 한다.

제12조 학과목 및 매주 수업 시간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수업 시간 수는 계절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학과목 및 주별 교수 시간 수

학가목 \ 시기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제4학기
수신, 위생법규	1	1	1	월 3
일본어, 조선어	3	3	3	-
해부학	3	-	-	-
생리학	4	-	-	-
약리학, 조제학	2	-	-	-
소독법	1	-	-	-
환자운반법, 체조	2	1	1	-
위생학, 세균학	2	1	-	-
일반간호법	2	5	5	-
내과적 간호법, 전염병간호법	-	-	4	-
치료개보	-	2	-	-
구급처치	-	2	2	-
외과적 간호법	2	2	2	-
의료기계취급법	-	2	2	-
붕대법	1	1	-	-
실습	수시	수시	수시	수시
계	학과 23	18	15	월 3

주: 과외 활동으로 요리, 재봉, 작법 등을 교육받을 수 있다.

제13조 실습은 각 과의 외래진찰실 및 병실에서 시행한다.

제14조 각 학기말에 학기시험을 치르고 그 성적을 평균하여 졸업성적으로 한다. 졸업생에게는 제3호 서식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15조 시험성적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한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

점 이상을 급제로 한다.

제16조 학생에게는 학자금을 지급하고, 원내 기숙사에 기숙시킨다.

제17조 학생은 졸업 후 2년간 의원장의 지정에 따라 간호부로서 근무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18조 의원장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휴학 기간 중에는 학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의원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성행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
2. 질병이나 성적이 불량하여 학업을 마칠 수가 없는 자

제20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재학 중에 지급한 학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단, 정상을 참작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중도 퇴학을 한 자
2. 퇴학을 명 받은 자
3.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의무 기간 중 복무할 가망이 없거나 불손한 행위로 인해 해직된 자

부칙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양성과 규정에 따라 현재 교육 중인 학생은 본 규정에 따라 입학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3호 서식 생략).

[부록 10] 경성제국대학의학부부속의원산파양성과규정(『경성제국대학일람』, 1929)

제1조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에 산파양성과를 두고 이를 본과 및 특과로 나눈다.

제2조 산파양성과는 간호부에게 필요한 학술 및 기능을 가르친다.

제3조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이를 4학기로 나누고, 특과의 수업연한은 1년이며 이를 2학기로 구분하며, 1학기는 6개월로 한다.

제4조 휴업일은 아래와 같다(생략).

제5조 생도의 입학 시기는 4월 및 10월로 한다.

제6조 입학 지원자는 아래의 자격을 지닌 자로 한다.

1. 신체가 건전할 것
2. 품행이 방정하고 지조가 견실할 것
3. 고등소학교 혹은 보통학교의 고등과 졸업자 혹은 이와 동등의 학력을 가질 것
4. 연령 15세 이상 35세 이하일 것
5. 가정 사정상 통학에 지장이 없을 것

제7조 입학 지원자는 입학원서에 이력서 및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의원장에게 제출하고 8조 2항의 지원자는 학교장의 졸업증명서를 첨부한다.

제8조 입학시험은 다음의 과목을 고등소학교 및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 정도에 따라 실시한다.

일본어(강독, 작문, 받아쓰기 등)

산술

구두시험

신체검사

고등여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자는 신체검사만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특과의 졸업자나 전 조선총독부의원 조산부 양성소 졸업자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본과의 제2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

제9조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기일 내에 입학할 수 없을 때는 입학연기원을 제출하고, 입학유예기간은 입학기일부터 2주간으로 한다.

제11조 본과 및 특과의 학과목과 매주 수업하는 수업 시간 수는 아래와 같다. 수업 시간 수는 계절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학과목 및 주별 교수 시간 수(본과)

학과목 \ 시기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제4학기
수신, 위생법규	1	1	1	월 3
일본어, 조선어	3	3	3	-
해부학	3	-	-	-
생리학	4	-	-	-
소독법	1	-	-	-
일반간호법	2	-	-	-
치료개보	-	-	4	-
정규임신, 분만 및 산욕 및 취급법	4	4	-	-
이상임신, 분만 및 산욕 및 취급법	4	4	-	-
육아법 및 소아병대의	-	-	2	-
부인과질병, 일반취급법	-	-	2	-
모형실습	-	2	2	-
실습	-	수시	수시	수시
계	학과 22	14	14	월 3

주: 〈특과〉(생략: 본과의 제1학기, 2학기와 같다)

제12조 실습은 부인과 외래진찰소 및 병실에서 이를 시행한다.

제13조 각 학기 말에 학기시험을 치르고 그 성적을 평균하여 졸업성적으로 한다. 졸업생에게는 제3호 서식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14조 시험성적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한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급제로 한다.

제15조 학생의 수업료는 월 2원으로 하고, 매월 5일에 징수한다. 단, 기일 내에 수업료를 내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학생에게는 별도로 납기일을 지정한다. 전월(前月)에 걸쳐 결석 또는 휴학 중인 자에게는 수업료를 면제한다.

제16조 학생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휴학 또는 퇴학하고자 할 경우 보증인이 연서한 서류를 의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의원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성행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
2. 질병이나 성적이 불량하여 학업을 마칠 수가 없는 자
3. 출석이 불량한 자
4. 수업료를 체납한 자로서 정상 참작이 어려운 자

부칙

조선총독부의원조산부양성소규정에 따라 현재 교육 중인 학생은 본 규정에 의해

특과생으로 간주한다.

[부록 11] 조선총독부경성의학전문학교부속의원간호부양성과규정(『경성의학전문학교 일람』, 1929)

제1조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에 간호부양성과를 둔다.

제2조 간호부양성과는 간호부에게 필요한 학술 및 기능을 가르친다.

제3조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이를 4학기로 나누고, 1학기는 6개월로 한다.

제4조 휴업일은 아래와 같다(생략).

제5조 학생의 입학 시기는 4월 및 10월로 한다.

제6조 입학 지원자는 아래의 자격을 지닌 자로 한다.

1. 신체건전할 것
2. 품행이 방정하고 지조가 건실할 것
3. 고등소학교 혹은 보통학교의 고등과 졸업자 혹은 이와 동등의 학력을 가질 것
4. 연령 15세 이상, 25세 이하일 것
5. 배우자가 없고 가사와 관계가 없을 것

제7조 입학 지원자는 제1호 서식의 입학원서에 이력서 및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의원장에게 제출한다. 제2항의 시험 면제자는 학교장의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입학시험은 고등소학교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 정도에 준해 실시하며, 과목은 일본어(강독, 작문, 받아쓰기 등), 산술, 구두시험, 체격검사이다.

고등여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자는 구두시험과 신체검사를 함으로써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입학기일까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전항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은 본인의 아버지, 남자형제 또는 후견인으로 하며, 다른 1인은 경성 내에 거주하는 신원이 확실한 자라야 한다.

제10조 연대보증인이 이사하거나 사망하였을 때는 신속히 의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수속을 한다.

제11조 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기일 내에 입학할 수 없을 때는 입학연기원을 제출하고, 입학 유예기간은 입학기일부터 2주간으로 한다.

제12조 학과목 및 매주 수업 시간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수업 시간 수는 계절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학과목 및 주별 교수 시간 수

학과목 \ 시기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제4학기
수신, 위생법규	1	1	1	월 3
일본어, 조선어 및 산술	3	3	3	-
해부학	3	-	3	-
생리학	4	-	-	-
약리학, 조제학	-	2	-	-
소독법	1	-	-	-
환자운반법, 체조	2	1	1	-
위생학, 세균학	2	1	-	-
일반간호법	2	-	-	-
내과적 간호법, 전염병간호법	2	3	5	-
치료개보 및 수술의 개보	-	2	4	-
구급처치	-	2	-	-
외과적 간호법	2	2	2	-
의료기계취급법	-	2	2	-
식이학, 식양법	-	1	-	-
붕대법	1	1	-	-
실습	수시	수시	수시	수시
계	학과 23	19	18	월 3

주: 과외 활동으로 요리, 재봉, 작법 등을 교육받을 수 있다.

제13조 실습은 각 과의 외래진찰실 및 병실에서 시행한다.

제14조 각 학기 말에 학기시험을 치르고 그 성적을 평균하여 졸업성적으로 한다. 졸업생에게는 제3호 서식의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15조 시험성적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한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급제로 한다.

제16조 학생은 졸업 후 2년간 의원장의 지정에 따라 간호부로서 근무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17조 의원장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휴학기간 중에는 학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의원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성행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
2. 질병이나 성적이 불량하여 학업을 마칠 수가 없는 자

(제1호, 제2호 서식 생략)

• 참고문헌

자료

『경성의학전문학교일람(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 『경성제국대학일람(京城帝國大學學報)』, 『경성제국대학학보(京城帝國大學學報)』,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조선총독부월보(朝鮮總督府月報)』, 『조선총독부의원연보(朝鮮總督府醫院年報)』, 『조선총독부 통계연보(朝鮮總督府統計年報)』

단행본 및 논문

강만길 외, 1994, 『한국사』, 한길사.

국사편찬위원회 편, 1988,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 국사편찬위원회.

기창덕, 1995, 『한국근대의학교육사』, 아카데미아.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출판위원회 편, 2007,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100년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서울대학교간호교육 90년사 편찬위원회 편, 1997,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90년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서울대학교병원 편, 1993, 『서울대학교병원사』, 서울대학교병원.

신동원, 1996, 「한국 근대 보건의료체제의 형성, 1876~1910」, 서울대학교 이학박사학위논문.

이귀향, 1975, 『서울대학교 간호교육 30년사(1945~197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이꽃메, 2002, 『한국 근대간호사』, 한울.

이꽃메, 2012, 「일제강점기 산파 정종명의 삶과 대중운동」, 『의사학』 21(3).

조귀례, 2007, 『전장의 하얀 천사들』, 한국문화사.

조귀례 저, 문창재 편, 2007, 『전장의 하얀 천사들, 조귀례 회고록』, 한국문화사.

조선총독부 편, 1940, 『시정 30년사』,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의원 편, 1928, 『조선총독부의원 20년사』, 조선총독부의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2장

공과대학 전사

제1절 개화기의 공학 교육

1) 상공학교, 농상공학교

고종은 1895년과 1899년 두 차례에 걸쳐 부강한 근대국가 건설을 위하여 실업교육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칙유(勅諭)를 내렸고, 이를 계기로 1899년 6월 '상공학교관제'[『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제1299호, 1899. 6. 28]가 반포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실업교육기관인 상공학교는 상업과, 공업과로 구분하여 상업, 공업에 필요한 실학을 가르쳤던 교육기관이다. 수업연한은 예과 1년과 본과 3년을 합해 모두 4년이었고, 학과의 교육 내용과 기타 제반 규정은 학부대신(學部大臣)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입학 자격은 예과의 경우 만 17세 이상, 25세 이하로 국문과 한문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했으며, 본과는 예과 수료자와 적합한 학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했다. 교과목은 예과의 경우 한국사, 한국지리, 만국역사, 만국지리, 화학, 물리학, 경제학, 산술, 도화(圖畵), 외국어를 가르쳤고, 본과의 교과목은 임시로 의정(議定)한다고 함으로써 전문성에 입각한 융통성을 두었다. 교직원은 학교장 1명, 교관 10명 이하, 서기 2명으로 구성되었고, 외국인도 교관이 될 수 있었다.



출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1987).

[그림 4-2-1] 농상공학교 (구한국 시대)

정부는 '상공학교관제'를 반포하면서 정황에 따라 지방에도 공·사립 상공학교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상공학교는 1904년 6월 '농상공학교관제'(칙령 제16호)가 반포되면서 농업과를 증설해 농상공학교로 개편되었다. 원래 지방에도 농상공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실업교육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때였으므로 지방은 물론 서울에도 더 이상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상공학교는 당시 유일한 실업학교였으나 학생 수는 한 과에 10~30명에 불과했다. 교사(校舍)는 서울 중구 명동 소재였고 농업과만 따로 훈동에 있었으나, 나중에 모두 종로구 수송동으로 이전했다. 그 뒤 공업과는 경성공업전습소(京城工業專習所), 농업과는 수원농림학교(水原農林學校), 상업과는 경성상업학교(京城商業學校)로 개편되었다가 1915년 공포된 '전문학교규칙'에 따라 각각 경성공업전문학교(1916), 수원농림전문학교(1918), 경성고등상업학교(1922)로 승격되었다. 우리나라 근대 공학교육기관의 효시를 1907년 설립된 관립 공업전습소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며, 비록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이보다 앞서 공학 교육을 수행했던 상공학교와 농상공학교의 존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관립 공업전습소

1907년 3월 '관립 공업전습소규칙'(농상공부령 제50호)이 반포됨으로써(『구한국관보』 제3708호, 1907. 3. 8) 당시 한성 동서(東署) 이화동에 2년제 관립 공업전습소가 설립되었다. 모두 6개 과에 13개 전습과정이 설치되었는데, 과별 전습과정은 다음과 같다.

- 염직과: 색염, 기직(機織)
- 도기과: 도기, 자기
- 금공과: 주공(鑄工), 단공(鍛工), 판금가공
- 목공과: 조가(造家), 가구
- 응용화학과: 화학제품, 분석
- 토목과: 측량, 제도

관립 공업전습소는 학년 초를 4월 1일, 학년 말을 이듬해 3월 31일로 정하고, 전문 학과목 외에 물리, 화학, 수학, 도화, 일어, 간이영어 등을 보조 학과목으로 가르쳤다. 모집 정원은 설립 당시 50명이었으며, 매년 4월에 모집하되 형편에 따라 임시모집도 가능했다. 입학 자격은 "공업가(工業家)의 자제와 장래 공업에 종사하거나 공업에 관한 직무에 종사할 지망(志望)이 공고한 자"로 규정되었으며, 연령 제한(만 15세 이상, 25세 이하)이 있었다. 입학시험 과목은 국·한문, 일어, 산술(간단한 가감승제) 등이었다. 모든 전습생에게 수당이 지급되었고, 졸업 후 1년간 전습 받은 기술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했다. 교관은 설립 당시부터 일본인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는 관립 공업전습소가 을사조약 체결(1905) 이후인 1907년 설립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우리나라의 주권을 사실상 일본에 빼앗긴 후 설립되었기에 한국인 교관이 교육을 주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관립 공업전습소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 이후 여러 차례 개편 과정을 거쳤다. 우선 1912년 4월 경성부 동숭동에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가 설립되면서 이 시험소 부설 공업전습소로 귀속되었다. 1915년 설치된 특별과에서는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한국인과 중학교를 졸업한 일본인에게 3년간 공업 관련 학술과



출처: 2014. 4. 18. 필자 촬영.

[그림 4-2-2] 1907년 3월 준공된 구(舊) 공업전습소 본관(왼쪽)과 공업전습소 본관 준공 기념 식수비(오른쪽)

기계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 특별과는 보통학교 졸업자에 한해 2년간 교육을 실시한 본과에 비해 한 단계 승격된 교육체계였다. 관립 공업전습소는 1916년 4월 경성공업전문학교가 설립되면서 이 학교 부속 공업전습소로 개편되었다가 1922년 3월 경성공업전문학교가 경성고등공업학교로 개편될 당시 경성공업학교라는 명칭으로 분리·독립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1910년 국권피탈까지의 35년간을 우리나라 근대 공학 교육의 여명기로 본다면 국권을 보전한 채 우리의 주체적인 의지로 설립한 공업 교육기관은 상공학교와 농상공학교 둘뿐이었던 셈이다. 즉, 우리나라는 개화기에 선진 과학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학 교육을 추진했지만, 외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함으로써 우리 손으로 공학 교육의 확고한 뿌리를 내릴 기회를 잃고 말았다.

제2절 일제 강점기의 공학 교육

대한제국 시기에 태동한 우리의 근대 공학 교육은 뿌리도 내리기 전에 '국권피

탈'에 의해 단절되었고, 그 후 공학 전문교육의 계통은 1916년 4월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경성공업전문학교로 이어졌다. 이 학교는 1922년 3월 경성고등공업학교로 개편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4년 4월 다시 옛 이름인 경성공업전문학교로 개칭되었다.

1930년대 말에 접어들어 일본은 한국 내 이공계 고등교육기관을 확충하거나 신설했다. 1931년 만주사변 이래 군사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군수 경기가 크게 신장했고,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이공계 고급 인력의 수요가 날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1938년 4월 '경성제국대학학부에관한건'(칙령 제251호)을 개정하여 경성제국대학(1924년 5월 설립)에 이공학부를 추가하고, 1941년 3월 조선총독부령 제29호에 의해 공학 관련 대학 교육기관으로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에 물리학과, 화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응용화학과, 광산야금학과 등 7개 학과를 신설하는 한편, 경성고등공업학교에는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를 새로 두었다. 또한 1939년에는 일본 고바야시(小林)광업이 기부한 300만 원을 기금으로 경성고등공업학교 광산학과를 모체로 경성광산전문학교를 설립했다.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및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운영에서 일본인들이 관리직·교수진을 독점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입학 정원도 한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전체 학생의 30% 이내)을 두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학교가 근본적으로 일본인을 위한 교육기관이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41년 경성고등공업학교 부설기관으로 이과교원양성소가 설립되었고, 1944년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되었다. 1938년 이종만(李鍾萬)이 평양에 설립한 사립학교인 대동공업전문학교는 1944년 4월 칙령 제236호에 의해 관립 평양공업전문학교(기계과, 조선과, 항공기과, 금속공업과 설치)로 개편되었다.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및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의 연혁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의 공학 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후)경성공업전문학교

1916년 4월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제'(칙령 제80호)와 '경성공업전문학교규정'(조선총독부령 제28호)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경성공업전문학교(이하 '경성공전')가 당시 경성부 동숭동에 설립되었다. 이때 경성공전은 1907년 설립된 관립 공업전습소(1912년 4월 이후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부설 공업전습소)를 부속기관으로 흡수한다. '경성공업전문학교규정' 제1조('본교의 교육강령') 제1항에 의하면 경성공전은 '조선교육령'에 기초한 공학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의 공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자 또는 경영자를, 경성공전 부속 공업전습소는 공업에 종사할 도제(徒弟)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경성공전의 교육 방침은 "공업교육은 반드시 정확한 일신(日新)의 과학을 기초로 삼고 실지(實地)에 활용할 기술을 연마하여 산업 발달에 힘쓸 것, 또한 교수는 고매한 학리(學理)에만 치우치지 말고 간명하고도 실지에 유용한 지식을 전수함과 아울러 실험실습을 숭상하여 응용(應用) 자재(自在)케 할 것" 등이 강조되었다.

경성공전에는 수업연한 3년의 염직과, 응용화학과, 요업과, 토목과, 건축과가 설치되었고, 부속 공업전습소에는 수업연한 2년의 목공과, 금공과, 직물과, 화학제품과, 도기과가 설치되었다. 학년 기간은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세 학기로 이루어졌다. 각 과의 교과목은 [표 4-2-1]과 같다.

경성공전의 입학 자격은 16세 이상의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일본인의 경우 17세 이상의 중학교 졸업자), 공업전습소의 경우는 14세 이상의 보통학교 졸업자(일본인의 경우 심상소학교 졸업자)로 규정되었다.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장이 겸임하도록 한 경성공전 교장에는 당시 중앙시험소장 도요나가 마리(豊永眞理)가 초대 교장으로 취임했는데, 이러한 관례는 1944년 4월까지 계속되었다. 설립 당시 교수 5명, 조교수 26명이 교원 정원이었으나, 1919년 4월 교수 9명, 조교수 25명으로 조정되었다. 1917년 1월 경성공전 졸업생에게 문관 임용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었고, 3월에는 광산과가 신설되었다. 1918년 3월에는 제1회 졸업생 18명이 배출되었다.

1922년 3월 '조선총독부제학교관제'(칙령 제151호)가 공포되고, 4월 '경성고등공업학교규정'(조선총독부령 제51호)이 제정됨에 따라 경성공전은 경성고등공업학

[표 4-2-1] 경성공업전문학교 설립 당시의 각 과 교과목

과	교과목
각 과 공통	수신(修身), 일본어, 조선어, 영어, 수학, 체조, 물리학 및 물리실험, 화학, 공업위생 및 공업부기
염직과(染織科) · 응용화학과 · 요업과(窯業科) 공통	공업경제 및 법령, 분석화학실험, 기계공학일반, 전기공학일반, 공장건축법, 원료 및 제품 시험감정, 설계 · 제도 · 공장실습 및 실험
토목과 · 건축과 공통	공업경제 및 토목행정, 지질학, 측량
염직과	도화(圖畵), 직물원료, 기직법, 염직사상(染織仕上) 및 정리법, 분해 및 의장(意匠), 염색법 및 염색, 제조용 제기계, 방적기구
응용화학과	광물학, 야금학 및 시금술(試金術), 제조용제기계, 응용전기화학, 응용화학대의, 제조화학
요업과	광물학 및 지질학, 야금학, 도자기제조법, 제조화학, 초자(硝子) 및 법랑(琺瑯), 건축용품제조법, 제조용제기계, 축요법(築窯法)
토목과	가옥구조, 응용역학, 기계공학일반, 전기공학 및 실험, 공업용금속, 토목공학, 재료실험, 설계 · 제도 및 실습
건축과	도화, 건축용재료, 재료강약 및 구조강약, 가옥구조, 시공법 설계 및 장식법, 건축사, 규구법(規矩法), 특수건축, 건축제도 및 실습

출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편(1987).

교(이하 '경성고공')로 개편되었다. 또한 경성공전 부속 공업전습소는 경성공업학교라는 명칭으로 분리 · 설치되었다. 경성고공의 수업연한은 3년이고, 학과 조직은 방직학과, 응용화학과, 토목학과, 건축학과, 광산학과로 개편되었으며, 응용화학과에는 요업부, 색염부 및 응용화학부의 3분과가 설치되었다. 경성고공으로 개편될 당시의 교과과정은 [표 4-2-2]와 같다.

경성고공 졸업생이 이미 이수한 학과목을 다시 연구하고자 할 때는 2년 이내에 한해 연구생으로 재학할 수 있었고, 몇 과목의 선택전수(選擇專修)를 원하는 자는 선과생(選科生)으로 수학할 수 있었다. 설립 당시 교원 정원은 교수 11명, 조교수 11명이었고, 이듬해 교수 정원이 12명으로 조정되었다.

1923년 7월 '조선총독부사립학교교원자격규정'에 따라 경성고공 졸업생에게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 교원 자격이 부여되었다. 12월부터는 경성고공 졸업생이 '경성고등공업학교 공학사'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경과조치로서 경성공전 또는 구법령에 의한 졸업생도 논문 심사에 합격하면 같은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다. 경성고공은 1925년 4월 일본 문부성 교원 무시험 규정 학교로 지정되었다.

[표 4-2-2] 경성고등공업학교로 개편 당시의 교과과정

과	교과과정
각 과 공통	수신 1-1-1, 일본어 3-0-0, 영어 3-3-3, 수학 5-0-0(단, 응용화학과는 3-0-0), 물리학 3-0-0, 기계학 0-3-0(단, 건축학과 제외), 전기공학 0-0-2(단, 건축학과 제외), 공업경제 0-0-1, 공업법령 0-0-1(단, 광산학과 제외), 체조 1-1-1
방직학과	화학 2-0-0, 방직원료 2-0-0, 기직법(機織法) 0-2-4, 방직 0-2-2, 염색법 0-2-4, 염직물사상(染織物仕上) 0-0-1, 조직법 2-0-0, 분해 및 의장 0-4-6, 도안 3-0-0, 제도 3-4-3, 공업건축 0-0-1, 실습 11-16-13
응용화학과	지질광물학 1-0-0, 무기화학 3-0-0, 유기화학 3-0-0, 물리화학 0-1-0, 응용화학 제1 3-6-1, 응용화학 제2 0-0-5, 전기화학 0-0-2, 야금학 및 철야금학 0-0-2(응용화학부, 요업부), 요업특별강의 0-0-6(요업부), 도안 0-0-2(요업부, 색염부), 염색특별강의 0-0-2(색염부), 기직법 0-0-1(색염부), 염직물사상 0-0-1(색염부), 제도 3-4-0, 화학분석 및 실습 12-20-19(단, 요업부 18)
토목학과	지질학 1-0-0, 응용역학 2-4-0, 수력학 0-1-0, 측량학 4-2-0, 건축재료 1-0-0, 석공학(石工學) 3-1-0, 도로 2-0-0, 철도 0-2-2, 교량 0-2-2, 하해공학(河海工學) 0-2-2, 위생공학 0-1-2, 철근콘크리트 0-0-2, 가옥구조 0-0-1, 제도 및 실습 10-16-19
건축학과	건축목재 1-1-0, 응용역학 1-2-0, 건축구조 3-0-0, 철근콘크리트철골 0-2-0, 규구법(規矩法) 0-1-0, 건축사 3-0-1, 위생건축 0-0-1, 특수건축 0-2-0, 건축장식법 0-1-0, 시공법 0-0-1, 측량학 2-0-0, 자재화(自在畵) 3-3-0, 제도 및 실습 10-22-30
광산학과	광물암석학 3-0-0, 무기화학 3-0-0, 시금술(試金術) 및 취관분석(吹管分析) 0-4-3, 화학분석 10-0-0, 지질학 및 광상학(鑛床學) 0-3-0, 측량학 4-4-0, 수력기계 및 광산기계 0-0-2, 화약학 0-0-1, 채광학(採鑛學) 0-4-4, 선광학(選鑛學) 0-3-3, 야금학 0-4-3, 철야금학 0-0-2, 전기야금학 및 제조야금학 0-0-2, 제도 3-9-8, 공장건축 0-0-1, 광업법령 0-0-1

주: 1. 매 학년 주당 수업 시수는 39시간
2. 교과목 뒤의 숫자는 1학년-2학년-3학년 수업 시수
출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편(1987).

1929년 교수 정원이 13명으로 증원되었고, 1932년 7월에는 교수 12명, 조교수 9명, 1937년 4월에는 교수 15명, 조교수 9명으로 거듭 조정되었다. 1938년 4월 경성고공에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가 신설되었고, 토목학과와 건축학과가 각각 토목공학과와 건축공학과로 개편되었다. 광산학과는 2학년부터 채광부, 야금부로 분과되었다. 교원 정원은 교수 19명, 조교수 10명으로 조정되었으며, 1939년 3월 교수 21명, 생도주사 1명, 조교수 7명으로 재조정되었다. 1939년 4월에는 경성광산전문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광산학과를 이 학교에 이관했다. 1941년 4월 현재 각 과의 교과과정은 [표 4-2-3]과 같다.

1941년 3월 '조선제학교관제'(칙령 제281호)가 개정되면서 수학, 물리 및 화학 담당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이과교원양성소가 경성고공 부설기관으로 설치되었는데, 이 양성소의 수업연한은 제1부 3년, 제2부 1년이다. 1941년 10월 칙령 제924호 및 조선총독부령 제292호로 전문학교 수업연한 임시단축 조치가 공포됨

[표 4-2-3] 경성고등공업학교의 1941년 4월 현재 교과과정

과	과목
각 과 공통	수신 1-1-1, 체조 및 무도 2-2-2, 교련 2-2-2, 일본어 3-0-0, 지나어(支那語) 0-0-2, 영어 2-2-1, 독일어 1-1-1, 수학 5-2-0(단, 방직학과, 응용화학과 제외), 물리학 및 실험 3-2-0, 공업실제 0-0-1
방직학과	화학 2-0-0, 응용화학 0-2-0, 기계공학 0-3-0, 기계제작법 1-0-0, 전기공학 0-0-2, 방직원료 및 시험법 2-1-0, 방적 0-2-3, 기직법 2-2-2, 조직법(組織法) 2-2-0, 문직법(紋織法) 0-1-0, 직물분해(織物分解) 및 의장 0-3-4, 막대소(莫大小) 0-0-2, 색염법 0-2-0, 염직물사상 0-0-2, 도안 3-0-0, 방직기계제도 0-2-5, 제도 3-4-0, 공장건축 0-0-1, 공업법령 0-0-1, 실습 6-6-8
응용화학과	무기화학 및 물리화학 4-0-0, 유기화학 3-0-0, 전기화학 0-2-0, 기계공학 0-3-0, 전기공학 0-0-2, 지질광물학 1-0-0, 산 · 알칼리비료 0-2-0, 연료 · 광유(鑛油) 및 건류(乾溜)공업 0-1-1(응용화학부), 유지(油脂) · 도료 · 고무 및 방향유(芳香油) 0-0-2(응용화학부), 직유소공업(織維素工業), 폭발물 0-0-2, 제혁(製革) 및 단백공업(蛋白工業) 0-0-1(응용화학부), 설탕 전분 및 양조(釀造) 0-0-2(응용화학부), 타알공업, 의(義) 및 색염 0-2-0, 요업 0-2-0, 야금학 0-0-1(응용화학부, 요업부), 도자기 및 연와(煉瓦) 0-0-2(요업부), 초자(硝子) · 법랑(琺瑯) · 시멘트 0-0-2(요업부), 축요법(築窯法), 요업기계 0-0-2(요업부), 도안 0-0-1(요업부, 색염부), 정련(精練) 및 표백 0-0-2(색염부), 침염(浸染) 및 날염(捺染) 0-0-1(색염부), 기직법 0-0-1(색염부), 염직물사상 0-0-2(색염부), 제도 3-4-0, 공업건축 0-0-1, 공업법령 0-0-1, 화학분석 및 실습 12-14-16(단, 응용화학부 17)
토목공학과	응용역학 2-4-0, 기계공학 0-3-0, 전기공학 0-0-2, 지질학 1-0-0, 수리학 0-1-0, 위생공학 0-1-2, 측량학 3-2-0, 토목재료학 1-0-0, 시공법 3-0-0, 도로공학 및 도시계획 2-0-0, 철도공학 0-2-2, 교량공학 0-2-3, 하해공학 0-2-2, 발전수력공학 0-0-1, 철근콘크리트공학 0-1-2, 건축구조학 1-0-0, 토목행정 0-0-1, 측량실습 및 실험 4-4-0, 설계 및 제도 4-6-9, 졸업설계 0-0-6
건축공학과	건축재료 2-0-0, 철근콘크리트구조 0-2-0, 철골구조 0-2-0, 건축사 0-2-2, 건축부대설비 0-0-2, 건축계획 2-1-0, 건축장식법 0-0-1, 시공법 0-0-1, 측량학 0-0-1, 자재화(自在畵) 3-3-0, 건축법령 0-0-1, 제도 및 실습 9-16-21
기계공학과	응용역학 2-2-0, 기구학 2-0-0, 공작법 2-2-0, 공작재료 2-0-0, 기계설계 0-2-0, 수력학 및 수력기계 0-2-1, 열역학 0-0-2, 증기 · 원동기 0-3-2, 내연기관 0-0-2, 공기기계(空氣機械) 0-0-1, 난방 및 냉동 0-0-1, 운반기계 0-0-1, 차량 0-0-1, 공장건축 0-0-1, 전기공학 및 실험 0-3-2, 설계제도 7-7-8, 실험 및 실습 6-7-8
전기공학과	화학 및 실험 4-0-0, 응용역학 2-0-0, 기계공작법 및 실습 3-0-0, 열기관 0-2-0, 수력 및 수력기계 0-2-0, 전기자기학 3-0-0, 전기자기측정법 2-0-0, 교류이론(交流理論) 0-2-0, 전기기계 0-4-2, 전기기구 및 재료 0-2-0, 전기철도 0-2-0, 전등 및 조명 0-0-2, 전송 및 배전 0-0-2, 발전소 및 변전소 0-0-2, 전기화학 0-0-2, 고주파공학 0-0-2, 전기통신 0-0-2, 전기법규 0-0-1, 공장건축 0-0-1, 설계제도 4-6-1, 실험 및 실습 3-8-7

주: 1. 매 학년 주당 수업 시수는 40시간
2. 교과목 뒤의 숫자는 1학년-2학년-3학년 수업 시수
출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편(1987).

에 따라 경성고공은 3학년의 수업연한을 1941학년도에 3개월, 1942학년도에 다시 6개월 단축했다. 1942년 3월 교원 정원이 교수 30명, 생도주사 1명, 조교수 12명으로 조정되었고, 4월에는 부설 이과교원양성소 제1부가 수학과, 물리 · 화학과 2개 과로 분리되었다.

1944년 4월 칙령 제236호에 의해 경성고공은 다시 경성공업전문학교[이하



출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편(1987).

[그림 4-2-3] 경성공업전문학교 · 경성고등공업학교 · (후)경성공업전문학교 본관

'(후)경성공전']로 개칭되었고, 6월에 '관립공업전문학교규정'(조선총독부령 제260호)이 공포되면서 (후)경성공전의 학과 조직 및 교과과정이 대폭 개편되었다. 수업연한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3년이었으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후반부에 수세에 몰리면서 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까닭에 교과과정이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기존 학과 명칭이 방직과, 화학공학과, 토목과, 건축과, 기계과, 전기과로 개칭되었고, 전기화학과, 원동기과, 전기통신과가 신설되었다. 관립 공업전문학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공업 관련 특수사항을 다시 연구하고자 할 때는 연구생으로 2년 이내, 몇 과목의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선과생으로 3년 이내에 한해 재학할 수 있었다.

1944년 4월에는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장이 교장을 겸임하던 관례가 바뀌어 시마자키 기요시(島崎潔)가 (후)경성공전 전임교장에 취임했으며, 교원 정원도 교수 33명, 생도주사 1명, 조교수 11명으로 조정되었다. 7월에는 부설 이과교원양성소가 경성제국대학에 이관되었다. (후)경성공전은 1945년 9월, 조선총독부 학교로서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고 30년 역사를 마감한다. 그동안 재직한 한국인 교수는 안동혁(安東赫, 응용화학), 이균상(李均相, 건축학), 나익영(羅益榮, 응용화학),

최윤식(崔允植, 수학), 박동길(朴東吉, 지질학·광물학), 김원택(金元擇, 응용화학) 등 6명이었다.

1916년 4월 경성공전이 설립된 이래 경성고공과 (후)경성공전을 거치면서 배출한 졸업생은 요업과 15명(이 중 한국인 6명, 이하 괄호 안 숫자는 한국인 졸업생 수), 염직 또는 방직학과 242명(84), 광산학과 149명(52), 응용화학과 328명(92), 토목공학과 347명(65), 건축학과 301명(61), 기계공학과 165명(20), 전기공학과 157명(32), 합계 1,704명(412)으로 한국인 졸업생 수는 전체 졸업생의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인 졸업생은 일제 식민통치의 시련 속에서 배출된 우리나라 고급 기술인력 중 수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하여 8·15 광복 후 우리나라 공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요컨대 경성공전과 경성고공 및 (후)경성공전은 일제의 식민통치 일환으로 설립되었고 일본인을 위한 공학 교육기관으로서 한국인에게 문호가 제한되었지만, 이 땅에서 공학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기능했다는 역사적 의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1) 주요 한국인 교수

◆ 박동길[운암(雲巖), 1897~1983]

일본 오사카(大阪)고등공업학교 응용화학과 및 도호쿠(東北)제국대학 지질광물학과를 졸업하고, 경성고등공업학교·경성광산전문학교·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인하공대 교수, 미군정청 상무부 지질광물연구소장, 대한지질학회장 등을 지냈으며, 운암 지질학상을 제정했다.

◆ 안동혁(1906~2004, 경성고공 응용화학, 1926년 졸업)

일본 규슈(九州)제국대학 응용화학과 졸업 및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경성고공 교수, 경성공전 교장, 한양공대 교수, 한국화학회장, 중앙공업연구소장, 상공부 장관, 한국과학원 이사장 등을 지냈다.

◆ 이균상(1903~1985, 경성고공 건축, 1925년 졸업)

경성공전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학장, 대한건축학회장, 서울시문화재보존위원장 등을 지내고, 한국인 최초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학부 본관, 경성광산전문학교 교사 등 현대 건축물을 설계했다.



출처: 운암지질학상 운영위원회(1981).

[그림 4-2-4] 지질광물 실습 여행길에서 박동길 교수가 경성공업고등학교 광산과 학생들과 함께(1934)

(2) 주요 졸업생

◆ 독립운동 참여 학생

- 박찬익(1884~1949): 1904년 상공학교 재학 중 국권회복 모의 발각으로 퇴학, 1908년 관립 공업전습소에 입학하여 1910년 졸업하고, 1911년 만주 망명 후 독립운동, 1919년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9명 중 한 명이다. 대한독립의군부 창설 시 총무 겸 외무총장으로 관여했으며, 임시정부 국무위원·법무부장을 지냈다.
- 이준열[송강(松崗), 1896~1987, 경성공전 응용화학, 1919년 졸업]: 교내 항일투쟁 비밀결사 '공우회(工友會)' 회장, 동맹휴학위원장으로 1919년 3·1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무산자를 위한 사립 중학교인 고학당을 설립, 초대 교장을 지냈다. 1929년 조선공산당 재조직 사건으로 체포돼 8년간 서대문교도소, 대전교도소 등지에 수감된다. 만기 출소 후 대동광업㈜ 전무직을 맡고 대동광업전문대 설립 운영, 해방 후 조선공업기술연맹 초대 이사장, 건국공업박람회 개최, 조선광업회 초대 이사장, 조선발명장려회 초대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기준 서울대학교 전 총장의 부친이다.
- 곽상훈(1896~1979): 1917년 경성공전 입학 후 3·1 운동 참가, 인천과 부산 동

래에서 학생운동 조종, 동래고등보통학교 학생의거 배후 참모 역할, 8개월간 미결수로 옥고를 치렀고, 1920년 신간회 가입 후 중앙 간부·검찰위원, 상하이 한인청년동맹 간부로 독립운동을 했으며, 1~5대 국회의원, 국회의장, 통일주최국민회의 운영위원장을 지냈다.

◆ 경성공업전문학교(1916~1922) 주요 졸업생

- 박길룡(건축, 1919): 1932년 첫 조선인 사설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조선건축기사협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화신백화점, 경성제국대학 본부 등을 설계한 근대 건축의 선구자였다.
- 김대우(광산, 1921): 규슈제국대학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일반관리로 시작하여 조선인 최고 위치인 도지사까지 승진했다.
- 민한식(토목, 1921): 토목기술자 면허제도를 창시(토목기술자 면허 제1호 취득)하고, 전남 여수 및 북한 성진 축항을 건설했으며, 조선총독부 내무국 토목과, 교통부 항만국 근무 및 서울시 건설국장, 해무청 시설국장, 내무부 토목국장, 토목학회장, 국토계획심의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 등을 지냈다.
- 이순용(응화, 1918): 동래고등보통학교 교사, 연희전문학교 강사, 내무부·체신부 장관, 대한해운공사 사장, 금융통화위원을 지냈고, 서울컨트리클럽 초대 이사장 등 한국 골프계의 대부로 불린다(이순용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 경성고등공업학교(1922~1944) 주요 졸업생

- 박동진(건축, 1926): 조선총독부 기수를 지냈고,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본관·도서관, 조선일보 사옥을 설계했다.
- 김해경[이상(李箱), 건축, 1929]: 경성고공 건축과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입학 후 수석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내무국 건축과 기수로 일했으며, 조선건축학회지 『조선과 건축』에 일어로 쓴 시를 발표하며 문학활동을 시작하여 1931~1932년 사이에만 시작(詩作) 2,000여 점을 쏟아내는 등 시인·소설가·수필가로 활동했다.
- 김희춘(건축, 193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대한건축학회장, 한국건축가협회장을 지내고,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마스터플랜, 정신문화연구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숙사 등을 설계했다.

- 신무성(건축, 1938): 문통부 철도건설국장, 서한건축기술연구소 대표, 대한건축학회장을 지내고, 국회, 대우빌딩, 가봉백화점 등을 설계했다.
- 김재홍(건축, 1943): 서울산업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를 지냈다.
- 김학서(섬유, 1923): 우리나라 최초로 양단을 생산하고 자수 제품을 수출했으며, 최초의 문직 전문서적 『문직의 정해(精解)』를 집필하는 등 우리나라 문직계(紋織界) 개척자로 일본 '가네보' 근무, 서경염직소·대아산업공사를 경영했다.
- 유홍(섬유, 1924): 경성방직 도감독, 2·4대 민의원, 민정당 비례대표를 지내고, 자서전 『유홍』을 집필했다.
- 원용석(섬유, 1929): 농림부 장관, 경제기획원장, 4대 민의원, 자유당 원내총무, 유엔식량농업기구총회 대표, 식량농업연구소장, 한국타이어·동양나이론·혜인중기 사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한국능률협회장 등을 지냈다.
- 김문상(섬유, 1934): 평양 '메리야스' 공업조합 기술주임,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 교수 및 학장서리,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기술사관리위원 등을 지냈다.
- 진재홍(섬유, 1934): 일본 '가네보' 광주 공장 근무, 경성방직 이사·상무·고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창회장 등을 지냈다.
- 김병운(섬유, 1935): 경성방직 이사·상무·전무 등을 지내고, 미국 '오토 게테크' 방직회사에 타면(打綿) 기술 지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출강, 동인염색가공(주) 직영, 대한합성섬유(주) 건설 참여 등의 활동을 했으며, 『면방직학』을 집필했다.
- 우범식(섬유, 1939):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 전효섭(섬유, 1939): 상공부 공업국장, 쌍용그룹 이사를 지냈다.
- 김지봉(섬유, 1940): 경성방직 의정부 공장 차장, 금성방직 상무이사·공장장, 흥한화섬 공장장, 섬유공학회 부회장, 한국섬유시험검사소 부이사장을 지내고, 온·습도 관리기술 도입, 염색 가공기술 개발, 군복지 국산화에 기여했다.
- 박용철(전기, 1941): 상공부 전기국장, 한국전력공사 이사, 경인에너지 부사장을 지냈다.
- 신기조(전기, 1943): 한국화력 건설부장, 조선전업 급전과장 및 전기부 차장, 한전화전 이사를 지냈다.
- 김종석(토목, 1923): 일본 규슈제국대학 공학부 채광과를 졸업하고, 동성상업학

교 수학 교사, 일본질소광업 관리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상공부 광무국장, 광업진흥공사 상임이사, 광산학회장 등을 지냈으며, 『측량학 통론』, 『광산 기계 및 시설 설계』 등을 집필했다.

- 김해림(토목, 1927): 조선총독부 토목출장소 기수, 삼랑진·하남 공사장 책임, 미군정청 서울시 공영부 차장, 교통부 해운국 항만과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내무부 항만과장·토목국장·건설국장, 도화종합설계 사장, 기술용역협회장, 기술사회장, 토목학회장 등을 지냈다.
- 원태상(토목, 1927): 조선총독부 토목과 근무, 경성공전·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를 지내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학박사(1952, 논문 「배수곡선의 신합리적 해법」) 및 도쿄대학 공학박사(1955) 학위를 받았으며, 『하천공학』, 『위생공학』 등을 집필했다.
- 이봉인(토목, 1928): 교통부 시설국장, 내무부 건설국장, 대한토목학회장, 동화기술단 사장 등을 지내고, 도시계획위·수자원종합개발위·외자도입촉진위·기술사관리위 등에 참여했다.
- 박길수(토목, 1930): 교통부 건설국장·시설국장, 한국종합기계공 부사장, 대한토목학회장 등을 지냈고, 대표작으로 남해대교, 낙동대교, 성수대교, 제1한강교 등이 있다.
- 최황(응화, 1927): 미국 시러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 화학공업부 졸업 및 오하이오 주립대학(Ohio State University)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오노다(小野田)시멘트 기수, 시러큐스 대학·오하이오 주립대학 화학기계학과 강사를 지냈으며, 전미공학상, 전미대학우등상, 국제과학연구상을 수상했다.
- 나익영(응화, 1928): 서울대학교 응용화학과 교수, 인하공업전문대학 학장 등을 지냈다.
- 최호영(응화, 1929): 일본 규슈제국대학에서 야금학을 전공하고, 조선총독부 기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대한금속학회장, 상공부 지질광물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 이범순(응화, 1931): 국립공업연구소장, 특허국 심사관, 서울시 중소기업지도위원, 조달청 규격제정위원, 공업표준심의위원, 계량심의위원, 노동청 직업훈련심의훈련위원 등을 지내고, 우리나라 발명특허 1호인 '유화염료의 제법' 외 4가지 특허를 취득했다.

- 전풍진(응화, 1931): 우리나라 박사 1호(논문 「참나무를 원료로 한 펄프 제조에 관한 연구」)로 일본 오사카제국대학 응용화학과에서 수학하고, 합성유기화학회·종이펄프공학회를 창립했으며, 만철시험소 기사, 종이펄프공학회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한양대학교 공과대학·광운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대학장·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 오신섭(응화, 1939):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중앙공업연구소 제2부장·소장, 국립공업연구소장, 한국종합화학공업 창립이사·부사장, 한국화학연구소 초대 소장 등을 지냈다.
- 성좌경(응화, 1940): 도쿄대학 공학사 및 서울대학교 박사, 국립공업연구소 유기학과장, 국방부 과학연구소 부소장, 경성공전 교수,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및 경영공학대학원장, 인하공업전문대학 초대 학장·총장, 원자력연구소 소장·부이사장, 원자력청장, 대한화학회장, 한국화학연구소장, 과학기술처 장관 등을 지냈다.
- 김순경(응화, 1941): 일본 오사카제국대학 화학과 졸업 및 미국 예일 대학(Yale University) 석·박사,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를 지냈다.
- 김원택(응화, 1941):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2) 경성광산전문학교

1939년 4월 조선총독부령 제65호에 의해 경성부 동숭동 경성고공 구내에 경성광산전문학교(이하 '경성광전')가 설립되었다. 경성광전의 설립은 일제가 한국의 광업자원을 양적·질적인 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약탈할 목적으로 광업 분야 전문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공급을 의도한 데 따른 것이었다.

(1) 교과과정과 조직

경성광전에는 채광학과, 광산기계학과, 야금학과 등 3개 학과가 설치되었으며, 수업연한은 3년이다. 또한 채광학과에 한해 수업연한 1년의 전수과를 부설하여, 특히 경성고공 광산학과 2·3학년 재학생을 이관받아 이들을 경성고공 광산학과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교육했다. 졸업생이 원할 경우 2년 이내에 한해 연구생으



출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편(1987).

[그림 4-2-5] 경성광산전문학교 전경

로 재학할 수 있었고, 선과생 제도를 두어 특정 학과목의 선택적 전수를 허용했다. 교원 정원은 교장 1명, 교수 16명, 생도주사 1명, 조교수 8명이었으며, 1939년 8월 고이케 마키타로(小池在太郎)가 초대 교장으로 취임했다.

1940년 3월 경성광전은 경성고공 광산학과로부터 이관받은 학생 12명을 제1회 졸업생으로 배출하고, 같은 해 말 채광학과 부설 전수과를 폐지했다. 1941년 3월에는 경성고공에서 이관받았던 광산학과 마지막 졸업생(채광부 22명, 야금부 4명)을 배출했고, 같은 해 10월 수업연한 임시단축 조치에 따라 학기를 1941학년도에 3개월, 1942학년도에 6개월 단축했다. 이에 따라 1941년 12월 경성광전의 첫 입학생들이 졸업했으며, 1942년에는 9월에 졸업식을 거행했다.

1943년 4월 교원 정원이 교장 1명, 교수 15명, 생도주사 1명, 조교수 8명으로 조정되었으며, 교사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위치)로 이전했다.

1944년 6월 '관립전문학교규정'(조선총독부령 제260호)이 공포됨에 따라 경성광전은 기존 학과의 명칭을 채광과, 야금과, 광산기계과로 개칭했고, 교과과정도 대폭 축소했다. 수업연한은 종전대로 3년이었으며, 연구생 및 선과생 제도도 그대로 시행했다.

경성광전에 재직한 한국인 교수는 박동길(지질학, 광물학), 최윤식(수학), 이시현(기계공학) 등 3명이고, 강사는 김용, 호정근 등 2명이었다.

1939년 4월 설립 이래 배출한 졸업생은 광산학과(경성고공에서 이관받은 학생) 12명(이 중 한국인 4명, 이하 괄호 안 숫자는 한국인 졸업생 수), 채광학과 231명(80), 야금학과 146명(35), 광산기계학과 66명(18), 합계 455명(137)으로 한국인 졸업생은 전체 졸업생의 30% 내외였다. 한편, 1940년 3월과 1941년 3월에 배출한 채광학과 부설 전수과 졸업생 70명 중 한국인은 53명이었다. 경성광전은 1945년 9월 조선총독부 학교로서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한 뒤 6년간의 짧은 역사를 마감했으나 졸업생들은 훗날 우리나라 광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2) 주요 졸업생

- 이민우(광산기계, 1941): 국산자동차(주) 전무이사, 신진자동차공업 부사장, GMK 부사장, 한국기계공업 대표이사장 등을 지냈다.
- 최학(광산기계, 1942): 흥신금속 사장을 지냈다.
- 정선모(광산기계, 194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 손병찬(광산, 1940): 대명광업 광무과장, 인하공과대학 광산학과 교수를 지냈다.
- 김봉빈(광산, 1941): 함흥광산 기사, 대한철광 상무 등을 지내고, 옥방중석광산을 운영했다.
- 김유선(광산, 1941): 강원탄광 소장, 강원산업 대표 등을 지냈다.
- 박경만(광산, 1941): 대한중기 기술상담역, 대한제철 기술고문, 상공부 공업연구심의위원, 대한중공업 상무, 한전기계 사장 등을 지냈다.
- 이강문(광산, 1941): 전북대학교 자원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 박응봉(광산, 1942): 조선제철 생산부장, 삼화제철소 이사, 인천제철 건설 시 기술진, 인천중공업 상무이사 등을 지냈다.
- 유원상(광산, 1942): 장항제련소장, 한국종합제철 이사, 인천제철 전무, 인천중공업 상무, 부사장 등을 지냈다.
- 이승이(광산, 1942): 성균관대학교 금속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 박평주(야금, 1942):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 백사익(광산, 1942): 광업진흥공사 이사를 지냈다.
- 허병구(광산, 1942): 삼마광업 사장을 지냈다.

- 정영식(광산, 1943): 대명광업주식회사 광무과장, 한양대학교 자원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 심중섭(광산, 1944): 대명광업주식회사 조사기획원,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를 지냈다.
- 박희선(야금, 1941): 과학기술총연합회 고문, 석천선원 원장을 지냈다.
- 염희택(야금, 1944):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교수, 한국수면처리연구소 대표를 지냈다.

3)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1919년 3·1 운동은 비록 일제의 무력으로 진압되었지만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서 우리 겨레의 민족적 각성과 단결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3·1 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저력을 확인한 일제는 '문화통치'를 표방하고 정치, 교육, 언론 등 전 분야에 걸쳐 유화 정책을 취함으로써 국면전환을 꾀했다. 그러나 일제의 문화통치는 우리 민족을 기만하면서 민족분열을 부추기기 위한 고도의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문화통치는 '무단통치'보다 한 차원 높은 식민지 지배정책이었던 것이다.

우리 민족은 3·1 운동 전개 과정에서 더욱 성숙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는데, 그중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대표적이다. 본래 민족적 실력 양성을 위한 교육진흥은 개화기부터 꾸준히 계속되어 온 계몽운동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더욱이 3·1 운동 이후 전국적으로 교육열이 한층 높아지면서 한국인의 대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자는 논의가 우리 민족의 공감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설립·운영하는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전수학교와 사립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등이 있었을 뿐 단 하나의 정규 대학도 없었다. 마침내 1923년 한규설, 이상재 등 명망인사들이 '민립대학기성회'를 결성하고 5개 학부(문리학, 농학, 상학, 공학, 의학)로 구성된 종합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후 민족의 호응 속에 1,000만 엔 기금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일제는 직·간접적으로 기금 모금을 방해하는 한편, 민립대학 설립 무마책으로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

제대') 설립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경성제대 설립도 사실상 식민지 지배정책의 일환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23년 11월 '제국대학창립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경성제대 설립을 가시화했다. 당초 일제는 '조선제국대학'으로 명칭을 정하려 했으나, 이 명칭을 사용하면 조선이 식민지가 아니라 하나의 제국으로 오인될까 우려하여 서둘러 '경성제국대학'으로 바꾸었다.

마침내 일제는 1924년 5월 '경성제국대학관제'(칙령 제103호)를 공포하고, 칙령 제104호를 통해 1926년부터 법문학부, 의학부를 개설한다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24년 5월 '경성제국대학예과규정'(조선총독부령 제21호)을 공포하고 일본인 학생과 소수의 한국인 학생을 선발하여 당시 경기도 고양군 승인면 청량리 신축 교사에서 수업연한 2년으로 예과 수업을 시작했다. 총장 사무는 일단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담당했다. 1926년 4월 경성제대 초대 총장에 핫토리 우노키치(服部宇之吉)가 취임했다. 5월에는 경성부 동숭동에서 법문학부가, 연건동에서 의학부가 수업을 시작했다. 1934년 3월에는 예과 수업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1) 교과과정과 조직

1936년 1월 제5대 총장에 취임한 하야미 히로시(速水滉)는 취임 초부터 이공학부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며, 일본 정부는 1938년 4월 '경성제국대학학부에관한건'(칙령 제251호)을 개정하여 1941년부터 이공학부를 증설한다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경성제국대학예과규정'(조선총독부령 제84호)을 개정하여 기존의 이과를 이과 갑반(이공계), 이과 을반(의학계)으로 나누고, 갑반 학생 42명(이 중 한국인 12명)을 선발했다. 1941년 3월 '경성제국대학이공학부규정'(조선총독부령 제29호)이 제정됨에 따라 경성제대 이공학부에 물리학과, 화학과, 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응용화학과, 광산야금학과 등 7개 학과가 설치되었다. 개설 강좌 수는 모두 24개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리학 2, 화학 4, 열공학 1, 토목공학 3, 기계공학 2, 전기공학 3, 응용화학 2, 광산학 1, 야금학 1, 응용역학 1, 수학 1, 응용물리학 1, 분석화학 1, 광산지질학 1

1941년 4월 경성제대 이공학부는 신입생 37명(이 중 한국인 13명)을 선발해 수업을 시작했다. 당시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에 이공학부 교사를 신축 중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첫 1년은 법문학부 및 의학부 교실을 빌려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연한은 3년이며, 재학 허용 기간은 6년 이하로 제한했다. 과목제와 학년제를 절충했으며, 필수과목 3/4 이상 합격해야만 진급을 허용했다. 필수과목은 학과별로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

경성제대 이공학부의 학사학위는 이학사(물리학과, 화학과)와 공학사(토목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응용화학과, 광산야금학과)로 구분되었다.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면 규정상의 과목시험(50단위 이상) 및 학사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학사시험은 논문계획, 실험실습 보고 등의 심사 및 구두시험이었다. 대학원 재학 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였고, 2년 이상 재학하는 자는 재학 중 또는 퇴학 후 1년 이내에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다.

교수진은 학부장 야마가 신지(山家信次)를 포함하여 교수 23명, 조교수 16명, 강사 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야마가 신지 교수는 1940년 열공학 강좌 담당 교수로 부임하여 이듬해 1월 학부장에 임명된 이래 이공학부 발족 준비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1941년 10월 대학 학부 등의 재학연한 또는 수업연한 단축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경성제대 이공학부는 이듬해 2월 1942학년도 제1차 학년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예과는 1942학년도에 3학년만 학년 기간을 6개월 단축하여 9월에 졸업시키고, 1·2학년의 경우는 종전대로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했다. 1943년 5월 '경성제국대학예과규정'(조선총독부령 제138호)이 개정됨에 따라 예과 수업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다. 한편 1944년 7월 칙령 제272호로 경성제대 부설 이과교원양성소가 설치되었다. 이 양성소는 경성고공 부설 이과교원양성소 재학생을 이관받아 수학과, 물상과, 지리과로 분과했으며, 수업연한은 3년이었다.

경성제대 이공학부 교원 중 교수, 조교수는 일본인만으로 구성되었고, 한국인은 최호영, 김종원, 이재병 등 강사 3명이 있었다.

경성제대 이공학부는 1945년 9월 조선총독부 학교로서 마지막 졸업생 45명(이 중 한국인 12명)을 배출했다. 1943~1945년 3회에 걸쳐 경성제대 이공학부가 배출한 공학계 졸업생은 토목공학과 20명(이 중 한국인 1명, 이하 괄호 안 숫자는 한국인 졸

업생 수), 기계공학과 29명(9), 전기공학과 24명(11), 응용화학과 23명(7), 광산야금학과 14명(3), 합계 110명(31)으로 한국인은 전체 졸업생의 30% 미만에 불과했다. 8·15 광복 당시 한국인 재학생은 3학년 25명, 2학년 19명, 1학년 17명, 합계 61명이었다.

경성제대 이공학부는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공계 대학으로서 그 조직 체계나 교육 내용 및 수준이 종래의 전문학교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러나 수적으로 볼 때 일본인을 위한 교육기관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나마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 짧은 역사를 마감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이나 산업 발전과의 연관성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다만 소수이기는 하나 한국인에게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이공계 대학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고, 광복 당시의 재학생까지 포함해 불과 92명이 광복 후 우리나라 학계·산업계의 매우 귀중한 인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존재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 졸업생

- 김재근(기계, 1943): 국립해양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교수, 조선학회장, 한국선급협회장, 상공부 표준형선설계위원회 위원장, 선박연구소 부이사장 등을 지냈고, 저서로 『조선왕조 군선 연구』, 『거북선의 신화』 등이 있다.
- 김희철(기계, 194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교수 및 학장, 인하대학교 교수·대학원장·총장, 대한기계학회장, 자동차공학회장 등을 지냈다.
- 전계상(기계, 1943):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공학박사이고, 미국 보잉사 제트엔진 조정연구실 계장으로 초음속여객기 SST 개발 연구를 했다.
- 정기호(기계, 1945):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를 지냈다.
- 송용봉(야금, 1943): 미국 특허청 수석심사관을 지냈다.
- 신용철(전기, 1943): 체신부 중앙전화국장·전무국장, 전기통신연구소장, 대한통신공업 부사장을 지냈다.
- 한만춘(전기, 1943): 서울대학교·전북대학교·인하대학교 공대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이공대학장·산업대학원장, 한국전기학회장 등을 지냈다.
- 김동희(전기, 1944): 한국전력공사 기술부장·화력건설부장·건설부장·이사, 코리아 카이저 엔지니어링 사장 등을 지냈다.

- 최준식(전기, 1945): 전기통신연구소 개발연구부장, 체신부 공무부장, 한아기술연구소 전무국장, 기술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 남기동(응화, 1943): 상공부 요업과장·기감, 동양시멘트 사장, (사)한국세라믹총협회 명예회장을 지냈다.
- 최한석(응화, 1943):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학장, 한국화학공학회장을 지냈다.
- 박종면(응화, 194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삼양사 울산공장장(이사)·상무·전무·부사장, 참의원 등을 지냈다.
- 정보영(응화, 1944): 삼화사 대표, 롯데칠성음료 전무·사장, 롯데제과 상무·전무·사장, 호남석유화학(주) 사장 등을 지냈다.
- 양동수(응화, 1945): 삼척화학 사장을 지냈다.
- 이종근(응화, 1945): 한양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 교수 및 산업대학원장을 지냈다.

제3절 8·15 광복 직후의 공학 교육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고, 우리나라는 만 35년 동안의 일본 식민통치에서 벗어났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해 서울에 진주하고, 9월 12일 미군정청이 설치되어 남한 전역에서 군정이 실시되었다. 이 무렵 관·공립 학교들은 여전히 일본인 관리 아래 있었고, 9월 하순 미군정청 학무국은 각급 학교에 10월 1일 정식 개교하도록 지시했다.

9월 29일 경성공전에서는 일본인 교원 전원이 해임되고 한국인 교수로 재직 중이던 안동혁 교수가 교장에 임명되었다. 10월 2일 경성광전에서도 일본인 교원이 전원 해임되고 한국인 교수로 재직 중이던 최윤식 교수가 교장에 임명되었다. 경성제대에서는 10월 7일 미군정청 알프레드 크로프츠(Alfred Crofts) 중위(영문학 박사)가 총장으로, 최규남 박사가 이공학부장 대리로 임명되었으며, 10월 17

일에는 학교 명칭을 경성대학으로 변경했다. 10월 말에는 해리 앤스테드(Harry B. Anstead) 대위(법학 박사)가 경성대학 총장으로, 이태규 박사가 이공학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일본인 교원 전원이 해임되었다.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설치령'(미군정법령 제102호)이 공포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설치됨에 따라 경성대학 이공학부 공학계와 경성공전 및 경성광전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으로 통합·발족하게 되었다.

1) 경성대학 이공학부

경성대학은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일본인 교원과 간부급 직원이 전원 물러남으로써 불가피하게 관리 부재의 공백기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이공학부의 경우는 미군 진주 직후 교사를 미군이 징발해 야전병원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실험·실습 기자재가 철거·방치되는 비운을 겪었다.

1945년 11월 미군정청 학무국은 다음과 같이 경성대학 이공학부 교수 및 조교수 19명을 임명하고, 그 후 이승기, 전풍진, 유농석, 이재병 등이 교수 또는 강사로 부임했다.

교수: 도상록(都相祿), 김봉집(金鳳集), 김종원(金鍾遠), 문원주(文源柱), 최호영(崔浩英), 김동일(金東一), 김지정(金志政), 조인석(趙仁錫), 황갑성(黃甲性), 김재을(金在乙), 여형구(呂炯九), 최창하(崔彰夏), 이시현(李時鉉), 최성세(崔成世) (14명)

조교수: 이성준(李聖濬), 전평수(全平水), 정근(丁根), 이세훈(李世勳), 김인문(金仁文) (5명)

한편, 전체 학생의 2/3 이상을 차지하던 일본인 학생이 모두 퇴거해 한국인 학생 60여 명만 남게 되었다. 유자격 편입생 보완이 시급해짐에 따라 11월 하순 편입생 고사를 거쳐 각 과마다 약간의 편입생을 선발했다. 이때 학병 관계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우선적으로 편입되었고, 주로 일본 본토의 제국대학이나 정규 사립대학 이공계 학과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일본 치하의 외지(만주, 타이완 등)



출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편(1987).

[그림 4-2-6] 8·15 광복 후 촬영한 경성대학(구 경성제국대학, 왼쪽), 이태규 이공학부장(1945. 10~1946. 8. 22, 오른쪽)

대학 재학생 그리고 국내와 일본 본토 및 외지의 이공계 전문학교 졸업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경성대학 이공학부가 수업을 시작한 것은 12월 중순이었으며, 교사를 미군에게 징발당했으므로 법문학부 교사, 광업진흥공사 연구소 등에서 수업했다.

1946년 7월 3일 경성대학 이공학부 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 토목공학과 2명, 기계공학과 7명, 전기공학과 8명, 응용화학과 14명, 광산야금학과 6명, 합계 37명이었다.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설치령'이 공포됨에 따라 경성대학 이공학부는 1년간의 짧은 역사를 마감하고, 재학생들은 자동으로 서울대학교 학부 과정으로 이관되었다.

◆ 주요 졸업생

- 김봉균(광산, 1946):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 대한지질학회장, 동남아지구과학협력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 신병우(광산, 1946): 한양대학교 자원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출처: 필자 촬영.

[그림 4-2-7] 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서울시 노원구 공릉 2동 172번지, 위),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제1호관(등록문화재 제12호, 아래)

- 오항기(광산, 1946): 전남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 윤석규(광산, 1946): 연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를 지냈다.
- 이상익(광산, 1946): 한양대학교 금속과 교수를 지냈다.
- 강명순(기계, 1946):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및 부총장, 기능올림픽 기술위원장을 지냈다.
- 김경식(기계, 1946): 국내 기술사 1호로 변리사, 부산공작창장, 울산공단 공장건설국장, 국립공업연구소 연구부장, 과학기술처 심의실장, 한국기술검정공단 감사 등을 지냈다.
- 민병찬(기계, 1946): 경인에너지 부사장, 태평개발 대표를 지냈다.
- 김규태(토목, 1946): (주)가야기술단 대표, 한국측량협회장을 지냈다.
- 김석배(응화, 1946): 고려대학교 이공대 교수, 경기화학 부장을 지냈다.



출처: 서울대학교 기록관 소장.

[그림 4-2-8] 경성대학 이공학부 제1회 졸업 기념(1946. 7. 3). 총 60명이 기념 촬영. 앞의 두 줄은 교수진과 주한 미군 고위 관계자, 뒤의 두 줄은 학생.

- 김성희(응화, 1946): 함흥화학공업대학 교수를 지냈다.
- 박기채(응화, 1946):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교수·총장 등을 지냈다.
- 신병식(응화, 1946):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 이재성(응화, 1946):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및 공과대학 학장을 지냈다.

2) 경성공업전문학교

1945년 9월 29일 안동혁 교수는 경성공전 교장에 취임하자마자 일본인 교원을 전원 해임한다. 10월에는 방직과장 장석윤 교수, 화학공업과장 나익영 교수, 토목과장 원태상 교수, 건축과장 이균상 교수, 기계과장 이량 교수, 전기과장 신택희 교수, 교무과장 이균상 교수(겸임), 서무과장 나익영 교수(겸임) 외에 교수 13명, 조교수 8명, 강사 19명을 임용하고 수업을 계속했다. 1945년 11월부터 1946년 6월까지 추가로 임용된 교원은 교수 7명, 조교수 1명, 강사 27명이었으며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945년 10월 임용

교수: 이균상(李均相), 원태상(元泰常), 박경찬(朴敬贊), 나익영(羅益榮), 신택희(申宅熙), 박상현(朴相鉉), 이량(李樑), 김용호(金勇虎), 김재철(金在哲), 박정장(朴鼎場), 장석윤(張碩潤), 박종수(朴鍾洙), 성좌경(成佐慶), 황의준(黃儀俊), 성혁용(成赫鏞), 김옥순(金玉淳), 김종철(金鍾喆), 이용달(李容達), 심윤섭(沈胤燮)

조교수: 김원택(金源澤), 홍성해(洪性海), 김면식(金冕式), 염영하(廉永夏), 박정규(朴正圭), 윤화순(尹和旬), 유정목(俞政穆), 우지형(禹志亨)

• 1945년 11월~1946년 6월 임용

교수: 권영대(權寧大), 양주동(梁柱東), 유기연(劉基燕), 전계상(全啓相), 신영묵(辛永默), 김영근(金英根), 우범식(禹範植)

조교수: 오국환(吳國煥)

경성공전 역시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설치령'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흡수되었다. 당시 졸업반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부로 진학하고, 기타 학생들은 전문부로 이관되었다.

3) 경성광산전문학교

1945년 10월 2일 최윤식 교수가 교장에 취임하자마자 일본인 교원 전원을 해임했다. 이어 10월 5일 개강 후, 10월 중순 편입고사를 거쳐 학생들을 채광과(광산학과), 야금과(금속공학과), 기계과(기계공학과)에 각각 편입시켰다. 교수진은 다음과 같다.

교수: 최윤식(崔允植), 박동길(朴東吉), 이시현(李時鉉)

조교수: 이재창(李載昌)

경성광전도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설치령'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으로 흡수되었다. 이때 재학생들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으로 자

동 편입되어 졸업반 학생들은 학부로 진학하고, 기타 학생들은 전문부로 이관되었다.

8·15 광복 후 서울대학교가 설립되기까지 시간은 불과 1년의 단기간이었으나 민족의 대전환기였으며, 격동과 혼란 속에 대학과 전문학교를 우리 손으로 재건하려고 몸부림치던 시기였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한 채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이 등장함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남긴 이들 학교의 운명은 1년 만에 끝날 수밖에 없었다.

• 참고문헌

김근배, 1996a, 「일제시기 조선인 과학기술 인력의 성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근배, 1996b, 「대한제국기: 일제 초 관립 공업전습소의 설립과 운영」, 『한국문화』 18.
김근배, 2005,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문학과지성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편, 198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사(학과사 중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50년사 편찬위원회 편, 199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50년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0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60년사: 1997~200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운암지질학상 운영위원회, 1981, 『교수생활 50년: 운암 박동길 박사전』, 정우사.
이준열 글 · 이달호 편저, 2012, 『선각자 손강 이준열의 삶: 3 · 1운동, 고학당 교육, 광주학생운동, 대동사업의 증언』, 혜안.
이충우, 1980,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이충우 · 최종고, 2013, 『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 푸른사상.
정인경, 1994, 「일제하 경성공업고등학교의 설립과 운영」, 『한국과학사학회지』 16.

제3장

농업생명과학대학 전사



[그림 4-3-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교명 변화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상공학교를 설립하고 여기에 농업과를 증설하여 1904년 농상공학교를 설립한 지 110년이 넘었다. 우리나라의 근대 농학교육이 시작된 지 110년이 넘은 것이다. 대한제국의 농상공학교는 농림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후)수원농림전문학교[1]를 거치며 1945년 광복을 맞았다. 광복과 함께 미군정청이 서울대학교를 설치하면서 (후)수원농림전문학교는 1946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되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은 1992년 교명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변경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농상공학교에서부터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설립되기 전까지, 즉 1904년부터 1946년까지 42년간 농학교육 반세기를 돌아본다.

1 1918년 개교한 수원농림전문학교와 구분하기 위해 '(후)수원농림전문학교'로 표기한다.

제1절 대한제국기

1) 농상공학교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1895년과 1899년 두 번에 걸쳐 과학교육과 실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칙서를 내리고, 1899년 지금의 서울 명동 자리에 실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상공학교를 설립했다. 상공학교는 1904년 6월 관제 개편(칙령 제16호)으로 농업과를 증설하여 농상공학교로 개편되었으며, 농상공학교는 같은 해 9월 21일 개교했다. 농상공학교는 오늘날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모태가 되었다.

농상공학교의 농업과는 처음 훈동(勳洞)의 작은 집을 교사로 사용했으나 그 뒤 수송동인 중부 수진동(壽進洞) 제용감(濟用監) 자리로 이전한다. 농업과를 증설한 다음 해에는 실습농장으로 현재의 성수동 뚝섬 자리에 80정보의 밭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실습과 각종 농사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었다.

농상공학교의 학제는 예과 1년, 본과 3년의 4년제였으며, 모집 정원은 농업과, 상업과, 공업과 각 과별로 10~30명으로 학생 수는 약 80명이었다. 입학 자격은 예과의 경우 나이에 제한을 두어 만 17세 이상, 25세 이하였으며, 입학시험은 국문독서, 작문과 한문독서, 작문이었다. 본과는 예과 수료자 또는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선발했다. 예과에서는 대한역사지지(地誌), 만국역사지리, 물리학, 화학, 경제학, 법학통론, 도화, 산술, 일어를 이



출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편(1976).

[그림 4-3-2] 농상공학교 농업과 교사(1904)

수하도록 했으며, 본과에서는 농업과, 상업과, 공업과에 따라 전문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했다.

학교에는 교장 1명, 교관 10명 이하, 서기 2명을 두었으며 외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했다. 개교 당시 농업과의 교관은 일본 구마모토농업학교(熊本農業学校)를 졸업한 이장노(李章魯) 교관과 일본인 아카카베 지로(赤壁次郎) 교관 2명이었다. 농업과 교과목은 주로 아카카베 교관이 강의했으나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장노 교관은 자신의 강의뿐만 아니라 일본인 교관의 강의도 통역했다.

농업과 실습은 뚝섬의 실습농장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회 실시했다. 거리가 멀어 학교에서 출발해 실습농장에 도착하면 2시간 정도 실습할 수 있었으며, 점심 후에는 대부분 귀가했다. 실습은 주로 채소, 원예에 관한 것이었으며, 실습이라 하지만 육체적인 노동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일당 20전의 실습비를 지급했다. 여름방학에도 학생들은 실습비를 받으며 풀베기 등의 실습을 했다.

2) 농림학교

농상공학교는 성격이 서로 다른 농업과, 상업과, 공업과 3개의 학과를 운영했기 때문에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교실은 좁고 부족했으며 교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였다. 특히 뚝섬에 있던 농업과 실습농장은 확장의 여지가 없었고 거리가 멀어 실습하는 데 불편함이 컸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실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고종은 1906년 8월 학부에 소속되었던 농상공학교의 농업과를 독립시켜 농상공부 소속의 농림학교를 설립하고(속령 제39호), 농상공부의 농무국장이었던 서병숙(徐丙肅)을 초대 교장으로 임명하여 겸임하도록 했다. 농업과의 독립은 고종이 당시 도쿄제국대학 농학부 교수였던 도요나가 마리(豊永眞里)를 초빙해 일본인 농학자들과 함께 사전에 계획한 것이었다.

농림학교는 1906년 9월 1일 농상공학교의 예과 교실에서 개교했다. 구 농상공학교의 농업과 학생(1904년 12월 입학생) 25명과 한성학당(일본어 교육을 위한 보통학교)의 농업 속성과 학생 8명을 합하여 모두 33명을 수업 연한 2년의 본과 1학년에 편입시켜 9월 10일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이



출처: 수원농학 80년사 편찬위원회 편(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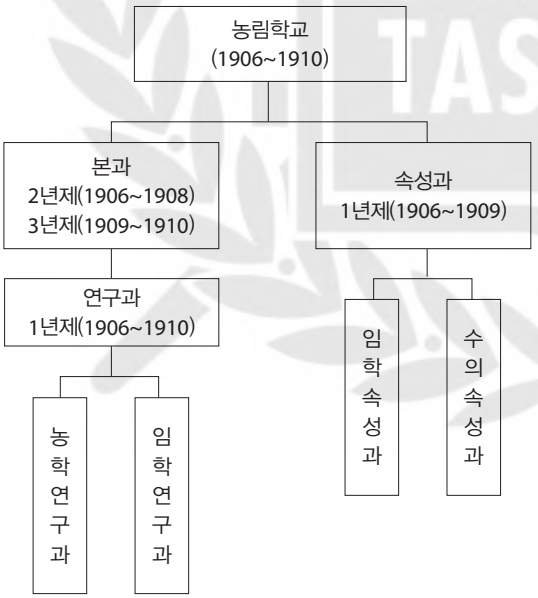
[그림 4-3-3] 농림학교 초기 학생들

날을 개교기념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한편 고종은 경기도 수원의 서둔동(西屯洞) 일대에서 민유지 12정 5만 보를 매수하여 농림학교를 위한 교사, 기숙사, 관사 등 560평의 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1907년 1월 당시 농무국장이었던 정진홍(鄭鎭弘)이 2대 교장에 취임하여 학교를 수원으로 이전했다. 학생들은 관비로 제공된 교복과 실습복을 입었으며, 연필, 노트 등 학용품도 관비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학비가 없어도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농림학교의 수원 이전은 일본이 수원에 권업모범장을 설치하여 뚝섬의 농업시험장을 수원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 학사조직

농림학교의 기본 학제는 본과 2년제로 시작했으며, 본과를 졸업한 학생에 한하여 농학과 임학을 더 깊게 연구하기 위한 1년 과정의 연구과를 두었다. 또한 농림학교에는 당시 사회에서 필요한 임업 관련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1906년 10월부터 6개월 과정의 임학속성과를 운영했으며, 1908년 3월에는 수의속성과를 추가로 설치했다. 2년제 본과는 1909년부터 3년제로 변경되었으며, 임학속성과는 2년간, 수의속성과는 1년간 존속하다 각각 1908년 4월과 1909년 4월에 폐지되었다. 3년제의 본과와 1년제의 연구과를 기본으로 한 농림학교의 학제는 한일병합으로 관제 개혁이 이루어진 1910년 12월까지 유지되었다.



[그림 4-3-4] 농림학교의 학사 구성(1906~1910)

(2) 교과과정

농림학교의 교과과정은 농림업에 관한 기본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고, 덕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과목과 실습 시간으로 편성되었으며, 외국의 새로운 지식을 도입하기 위한 일본어 교육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2년제 본과에서는 1학년과 2학년의 공통과목으로 인륜, 도덕, 일어, 수학을 공부했으며, 기초과목은 1학년에서 물리, 화학, 기상을, 2학년에서 경제 및 법규를 공부했다. 전공과목은 농학대의, 작물, 양잠, 임학대의를 1학년과 2학년에서 나누어 공부했으며, 2학년에서는 토양 및 비료, 축산, 농산제조, 조림학, 수의학대의를 전공과목으로 공부했다. 실습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실시했다. 실습 시간을 제외한 1학년과 2학년의 수업 시수는 모두 주당 24시간이었다.

3년제 본과에서는 새로운 교과목으로 국어, 지리를 추가하고 물리, 화학, 박물, 토양 및 비료, 농학대의, 임학대의, 수의학대의 등을 세분화했으며, 주당 시간 수

[표 4-3-1] 농림학교 본과 2년제 교과과정(1906)

1학년		2학년	
교과목	주당 시간	교과목	주당 시간
수신(인륜, 도덕)	1	수신(인륜, 도덕)	1
일어(회화, 서취, 독서)	6	일어(회화, 서취, 독서, 작문)	4
수학(필산, 주산)	3	수학(대수, 기하, 측량)	3
물리, 화학, 기상	3	경제 및 법규	1
박물(식물, 동물)	3	-	-
농학대의	2	농학대의	1
작물(작물재배)	2	작물(작물재배, 원예병충해)	2
양잠	1	양잠	1
임학대의	3	임학대의	1
-	-	토양 및 비료	2
-	-	축산	1
-	-	농산제조	1
-	-	조림학	3
-	-	수의학대의	3
계	24	계	24
실습	부정(不定) 시간	실습	부정 시간

출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편(1976).

[표 4-3-2] 농림학교 본과 3년제 교과과정(1909)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목	주당 시간	교과목	주당 시간	교과목	주당 시간
수신(인륜, 도덕)	1	수신(인륜, 도덕)	1	수신(인륜, 도덕)	1
일어(회화, 서취, 독서)	4	일어(회화, 독서, 작문)	4	일어(회화, 독서, 작문)	3
수학(주산, 필산)	4	수학(대수, 기하)	4	수학(측량)	3
국어(독서, 작문)	2	국어(독서, 작문)	2	-	-
-	-	-	-	경제 및 법규	2
지리(내국지리, 외국지리)	2	지리(외국지리)	2	-	-
물리(역학, 열학, 물리학, 광학, 음향학)	2	물리(자기학, 전기학, 기상학)	1	-	-
화학(무기화학, 유기화학)	2	화학(유기화학)	1	-	-
박물(식물, 동물, 광물)	3	박물(식물, 동물, 인체생리)	3	-	-
작물학(농학통론, 보통작물)	2	작물학(원예작물론)	2	작물학(공예작물학)	1
잠사학(잠사해부 및 생리사육법)	1	잠사학(사육법, 잠채 병리, 제종법)	1	잠사학(재상학, 제사법)	1
삼림생산학(조림학, 조림보호학)	2	삼림생산학(조림학, 이용학, 임산제조학)	3	삼림생산학(조림학)	1
임학통론	1	-	-	-	-
-	-	작물병충학(작물해충학)	2	작물병충학(작물병리학)	2
-	-	수의학대의(해부학 및 생리학)	1	수의학대의(병리학, 위생학)	2
-	-	토양학	1	-	-
-	-	-	-	비료학	2
-	-	-	-	축산학	2
-	-	-	-	농산제조학	1
-	-	-	-	삼림경영학(측수학, 경리학)	2
계	26	계	28	계	23
실습	부정 시간	실습	부정 시간	실습	부정 시간

출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편(1976).

도 늘렸다. 주당 시간 수는 1학년 26시간, 2학년 28시간, 3학년 23시간으로 3년간 주당 총 77시간을 공부하도록 했다.

연구과의 농학연구과 교과과정은 주당 18시간으로 토양학, 비료학, 작물생리 및 작물병충해, 축산학, 양잠 및 제사, 농산제조학, 농정학, 실습 시간으로 편성했

[표 4-3-3] 농림학교 연구과 교과과정(1906)

농학연구과		임학연구과	
교과목	주당 시간	교과목	주당 시간
토양학	2	삼림수학	5
비료학	4	조림 및 삼림보호학	5
식물생리 및 작물병충해	3	심림경리학	3
축산학	3	삼림이용학	3
양잠 및 제사	3	임정학	3
농산제조학	1	-	-
농정학	2	-	-
계	18	계	19
실습	부정 시간	실습	부정 시간

출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편(1976).

으며, 임학연구과는 주당 19시간으로 삼림수학, 조림 및 삼림보호학, 삼림경리학, 삼림이용학, 임정학, 실습 시간으로 편성했다.

농림학교의 교과과정은 비록 100여 년 전에 편성되었지만, 현재의 농학 교육기관에서도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주요 교과목으로 편성되었으며, 비교적 근대적인 교과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입학과 졸업

농림학교에는 전임교장을 두지 않고 겸임교장을 두었다. 1906년 초대 서병숙 교장과 1907년 2대 정진홍 교장은 모두 농상공부의 농무국장이었으며, 1908년 3대 교장은 일본 도쿄제국대학 농학부 교수로서 당시 수원 권업모범장의 장장(場長)이었던 혼다 고스케(本田幸介)가 겸임했다. 따라서 학교의 업무는 주로 수석교관이 대행했다. 강의는 대부분 일본인 교관이 담당했으며 일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연과학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농림학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 33명으로 수업을 시작했으나 2년제 본과의 정원은 80명, 연구과의 정원은 40명이었고, 본과가 3년제로 개편되면서 본과의 정원은 120명으로 증가되었다. 입학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25세 이하의 보통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신체 건강하고 가사에 무관한 사람으로 제한

했으며, 입학시험은 교장이 필요에 따라 시험과목을 정하여 실시했다. 그러나 입학시험은 대리시험과 부정행위가 많아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몇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학교에서 직접 선발하는 방식을 택했다. 본과 2회 입학생은 각 도의 군수가 일어, 한문, 수학 시험으로 약 50명의 성적 우수자를 1차로 선발하고, 한성부의 관립 고등학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2차 시험으로 선발한 29명이었다. 이 입학시험제도는 제도적으로는 우수했으나, 복잡하고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폐지되었고, 3 · 4회 입학생은 한성부에서, 5회 입학생은 농림학교 자체에서 선발했다.

농림학교는 학생들에게 관비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제복과 학용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학비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학년 진급과 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전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 학년시험에서 각 교과목은 40점 이상, 전 교과목의 평균은 60점 이상, 실습 60점 이상으로 했다. 농림학교는 1908년 본과 1회 졸업생 21명을 배출했으며, 1909년에는 2회 졸업생 20명을 배출했다. 3년제 본과 졸업생에게는 학부대신이 판임문관(判任文官)의 자격을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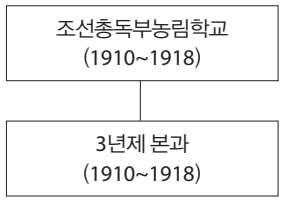
1906년 10월에 설치한 임학속성과는 약 100명의 지원자 중에서 12명을 선발해 6개월간 교육시킨 후 1907년 4월에 1회 졸업생 12명을 배출했으며, 1908년 4월에는 2회 졸업생 7명을 배출했다. 졸업생은 대부분 지방의 수묘(樹苗)양성소에 취업했다. 1908년 3월에 설치한 수의속성과는 1909년 4월에 졸업생 20명을 배출하고 폐지되었다. 농림학교는 속성과 학생들에게도 관비를 지급하고, 관비 지급 일수의 2배 기간을 지정된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제2절 일제 강점기

1) 조선총독부농림학교

1910년 8월 27일 한일병합을 한 일본은 그해 10월 1일 관제 개혁을 통해 농림학교를 조선총독부농림학교로 개칭하고 권업모범장의 장장인 혼다 고스케를 교장

으로 계속 겸임토록 했다. 입학 자격, 학사조직, 교과과정의 일부는 개편했다. 입학 자격은 일본의 4년제 소학교에 해당하는 4년제 또는 3년제 보통학교 졸업자로 제한했으며, 학사조직은 1910년 10월 교칙을 개정하여 지원자가 많지 않은 연구과를 폐지하고 본과만으로 구성했다. 이에 따라 교과과정도 본과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국어를 일본어로 대체하여 수업 시간을 대폭 늘리고, 토지개량론과 도구론을 추가했으며, 측량을 수학에서 분리하여 측량 수업을 강화했다. 한편 지리학은 폐지했다. 총 교과목 시간도 농림학교 때보다 3시간이 증가되어 1학년 28시간, 2학년 27시간, 3학년 25시간으로 총 80시간을 편성했다.



[그림 4-3-5] 조선총독부농림학교 학사 구성(1910~1918)

입학 자격은 농림학교 설립부터 실시했던 급비제를 폐지할 목적으로 1914년부터는 전답 2정보 이상의 자산을 가진 집안의 자제로 제한했으며, 1915년부터는 급비제를 폐지했다. 후에 대한민국 부통령과 국무총리를 지낸 장면(張勉)은 급비제의 마지막 해인 1914년에 입학한 조선총독부농림학교 학생이었다.

총독부는 조선총독부농림학교 졸업생에게 관립 고등보통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여 판임문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13년부터는 판임문관에 채용되는 경우 교관과 기술관으로 특별 임용하거나, 이를 원치 않을 때는 견습시험을 통해 1년 이상 행정사무를 견습하도록 했다.



출처: 『조선농회보』, 1916, 11권 5호

[그림 4-3-6] 조선총독부농림학교 입학 지원자 점검(1916)

[표 4-3-4] 조선총독부농림학교 교과과정(1910~1918)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목	주당 시간	교과목	주당 시간	교과목	주당 시간
수신(인륜, 도덕)	1	수신(인륜, 도덕)	1	수신(인륜, 도덕)	1
국어(독서, 작문, 회화, 서취)	6	국어(독서, 작문, 회화, 서취)	6	국어(독서, 작문, 회화, 서취)	5
이과(물리화학)	2	이과(기상)	1	-	-
박물(동물, 식물, 광물)	3	박물(인체생리)	1	-	-
수학	3	-	-	-	-
-	-	-	-	경제 및 법규	2
작물론(보통작물론)	3	작물론(원예작물학)	3	작물론(공예작물학론)	2
잠사학(잠사해부 및 생리사육법)	1	잠사학(사육법, 잠채병리, 제종법)	1	잠사학(재상학, 제사법)	1
작물병충학(작물해충학)	1	작물병충학(작물해충학)	2	작물병충학(작물병리학)	2
삼림생산학(조림학, 조림보호학)	2	삼림생산학(조림학, 이용학, 임산제조학)	4	삼림생산학(조림학)	1
도구론(농구론)	3	-	-	-	-
토양학	2	-	-	-	-
임학통론	1	-	-	-	-
-	-	비료학	2	비료학	1
-	-	축산학	1	축산학	2
-	-	측량	2	측량	3
-	-	토지개량론	1	-	-
-	-	수의학대의	2	-	-
-	-	-	-	농산제조학	2
-	-	-	-	삼림경영학(측수학, 임가산법, 경리학)	3
계	28	계	27	계	25
실습	부정 시간	실습	부정 시간	실습	부정 시간

출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편(1976).

2) 수원농림전문학교

조선총독부는 칙령 제48호에 의거해 1918년 3월 30일 조선총독부농림학교를 수원농림전문학교로 승격시키고 4월 15일 개교식을 거행했다. 당시 일제는 제1차 산미증산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개발을 추진하면서 농업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에 농업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또한 중앙에는 지방의 농업학교보다 높은 수준의 농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농업계 고등교육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수원농림전문학교는 일제가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개발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따라서 일제는 조선총독부농림학교의 본과를 폐지하고,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칭한 후 전문과를 신설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농림학교는 1918년 신입생을 농림전문학교 전문과 학생으로 선발하고, 농림학교의 마지막 졸업생인 12회 졸업생을 1919년에 배출함으로써, 설립 12년 만에 농림학교에서 수원농림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승격과 동시에 수원농림전문학교는 권업모범장 소관에서 학무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교장은 여전히 권업모범장의 장장이 겸임했다.



本年四月ヨリ入學セラルヽ本校高門科第一學年生徒ヲ左記要項ニ依リ募集ス

大正七年二月　京畿道水原郡日判面

朝鮮總督府農林學校

一、修業年限　三年

二、募集定數　四十名（朝鮮人三十名內地人十名）

三、入學資格　朝鮮人ハ年齢十六年以上ニシテ朝鮮ニ於ケル普通學校ヲ卒業シタル又ハ之ト同程度以上ノ學力ヲ有スル者

內地人ハ年齢十七年以上ニシテ內地ニ於ケル中學校ヲ卒業シタル又ハ之ト同程度以上ノ學力ヲ有スル者

四、選拔方法　朝鮮人及內地人ニシテ高等普通學校又ハ中學校ヲ卒業シタル者ニ對シ內地人ニシテ朝鮮總督府中學校ヲ卒業シタル者ニ對シ內地人及朝鮮人ニシテ其ノ他ノ學校ヲ卒業シタル者ニ對シ學力試驗ヲ行ヒ其ノ成績ニ依リ選拔ス

五、試驗科目及程度　試驗科目　國語、漢文、數學、物理、化學、動物、植物

程度　朝鮮人ニ在リテハ高等普通學校、內地人ニ在リテハ中學校卒業程度

六、入學試驗期日及場所　大正七年三月二十一日及四月一日午前九時ヨリ本校ニ於テ施行ス

其他詳細ハ本年二月二十五日以後ニ朝鮮總督府報又ハ本校ニ於テ掲示スルニ付照會アリタキ

출처: 『조선농회보』, 1918, 13권 2호.

[그림 4-3-7] 수원농림전문학교 학생 모집 광고(1918)



출처: 『교우회보』, 1918, 11호.

[그림 4-3-8] 수원농림전문학교 개교 기념식(1918. 4. 15)

(1) 교육 내용

수원농림전문학교는 개교와 함께 농학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교육 요강을 발표했다.

1. 본교는 조선교육령에 기초를 둔 농림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하기 위한 곳으로서 조선에 있어서 농림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자 또는 경영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농림업은 각종 산업의 원천으로서 국운 발전의 기초이며 그 성패 여부는 국가의 부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학리에 의한 실지 기능을 적절히 적용함으로써 농림업의 개량 진보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3. 농림업에 있어서 가장 존중해야 할 것은 실리실익에 있으므로 교수를 하는 데 있어서 학리에 기초를 두는 것은 물론이나 이상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하며 항상 기예의 습득 내용의 충실을 기할 것과 동시에 실제 경험을 중시하는 데 있다.
4. 농업에 충실검소한 자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교육에 있어서 이 점에 유의하여 장래 건실한 실업가가 되는 소질을 길러주는 데 있다.
5. 전문학교는 고등 학술 및 기술을 교육하는 곳이므로 학생은 이 점에 유의하여 모든 행실에 있어서 자중을 요하며 일반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 목표와 방향에 따라, 수원농림전문학교는 전문학교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 어학, 수학, 물리학, 화학, 기상학, 체조 등 기초 교과목을 강화하고, 전공 교과목도 농림학교 때보다 더욱 세분화했다. 수업 시수는 1학년이 농림학교보다 19시간 많은 47시간, 2학년이 21시간 많은 48시간, 3학년이 23시간 많은 48시간으로 늘었다. 어학에서는 일본어를 국어로 하고, 조선어와 영어를 국어와 같이 주당 2시간씩 3년간 배우도록 했다. 또한 농림학교는 실습 교과목의 이수 시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수원농림전문학교는 각 학년에서 19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수원농림전문학교는 1년 교육과정을 전학기와 후학기로 구분하여 일부 교과목은 그 내용을 전학기와 후학기로 나누어 교육했다. 즉, 1학년 교과목인 물리학 및 기상은 전학기에 물리를, 후학기에 기상을 이수하게 했으며, 3학년 교과목인

[표 4-3-5] 수원농림전문학교 교과과정(1918~1922)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목	전학기 주당 시간	후학기 주당 시간	교과목	전학기 주당 시간	후학기 주당 시간	교과목	전학기 주당 시간	후학기 주당 시간
수신	1	1	수신	1	1	수신	1	1
국어(일어)	2	2	국어	2	2	국어	2	2
조선어	2	2	조선어	2	2	조선어	2	2
영어	(3)	(3)	영어	(2)	(2)	영어	(2)	(2)
체조, 교련	1	1	체조, 교련	1	1	체조, 교련	1	1
무기화학	3	3	유기화학	2	2	-	-	-
실용수학	4	4	-	-	-	-	-	-
물리학 및 기상	3	3	-	-	-	-	-	-
작물통론 및 보통작물	2	2	보통작물	2	2	보통작물, 특용작물	2	2
제상 및 사육	2	2	참체해부, 생리, 원리	2	2	제종 및 제사	1	1
조림범론	2	2	조림각론, 삼림보호	3	3	조림각론	2	2
측량 및 제도	1	1	측량 및 제도	2	2	-	-	-
지질	1	1	토양	2	2	-	-	-
식물	2	2	식물병리	2	2	-	-	-
동물	2	2	곤충	2	2	-	-	-
-	-	-	-	-	-	농업경제 농업법규	2	2
-	-	-	원예범론	1	1	채소, 과수	2	2
-	-	-	축산범론	1	1	축산각론	2	2
-	-	-	삼림수확	2	2	삼림경리	2	2
-	-	-	비료범론 각론	2	2	-	-	-
-	-	-	-	-	-	농구토지개량 경지 정리	2	2
-	-	-	-	-	-	산림이용 임산제조	3	3
-	-	-	-	-	-	발효화학, 각종 제조법	2	2
-	-	-	-	-	-	식물생리, 화학	1	1
-	-	-	-	-	-	가축사양학	1	1
-	-	-	-	-	-	세균학	1	1
실습 및 실험	19	19	실습 및 실험	19	19	실습 및 실험	19	19
계	47(3)	47(3)	계	48(2)	48(2)	계	48(2)	48(2)

출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편(1976).

농업공학은 전학기에 농구토지개량을, 후학기에 경지정리를 이수하게 했다.

(2) 교육 시설

수원농림전문학교는 조선총독부농림학교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했으나, 점차 건물과 시설의 증축과 신축을 통해 보통 교실, 이화학교실, 이화학준비실, 강당, 교장실, 교관실, 사무실, 도서실, 제도실, 표본실, 동·식물실험실, 화학실험실, 농산제조실, 축사, 농장사무실, 농구사, 비료사, 창고, 실습실, 양잠실, 기숙사, 관사 등 전문학교로서의 시설을 갖추었다. 1919년 12월 3일에는 전라북도로부터 전남 전주군 소양면(所陽面) 대흥리(大興里) 소재 국유림 875만 310평을 인수하여 연습림을 설립하고 임업실습에 활용했다.

1922년 수원고등농림학교로 이름을 변경할 당시, 수원농림전문학교의 규모는 교사, 기숙사, 관사, 실습포장, 임업묘포, 식물원, 임목견본원 등을 포함해 교지가 약 24정보였으며, 건물은 약 30여 동이었다.

(3) 입학과 졸업

수원농림전문학교는 일본인도 입학을 허용했으며, 일본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신축했다. 또한 재학생에게는 징집유예의 특전을 부여하고, 성적이 우수한 모범학생에게는 특대생이라 하여 생도장려비를 지급했다. 졸업 후에는 교관 임용령에 의해 판임문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1918년 3월 30일~4월 1일 시행한 수원농림전문학교 제1회 입학시험에는 143명이 지원해 22명이 합격했으며, 그중 7명이 일본인 학생이었다. 학생 정원은 각 학년별 40명으로 총 120명이었으나, 1919년의 3·1 독립만세, 1919년 3월 5일 고종황제의 국상 등 당시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과 학비 부담 등으로 정원을 채우지는 못했다.

입학 자격은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별하여 한국인은 16세 이상으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일본인은 17세 이상으로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 했으며, 입학시험은 학과시험, 구두시험, 신체검사로 나누어 실시했다. 학과시험은 국어, 한문, 수학, 물리, 화학, 동물, 식물이고,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할 때는 학과시험을 면제했다.

수원농림전문학교는 1920년 3월 25일 제1회 졸업생 18명을 배출했으며, 한국


入學試驗問題
漢文科
國語科
物理學
植物科
動物科
化學科
數學科

출처: 『매일신보』, 1921. 4. 11.

[그림 4-3-9] 수원농림전문학교 입학시험 문제

인이 11명, 일본인이 7명이었다. 1921년 제2회 졸업생은 한국인 5명과 일본인 5명으로 모두 10명이었다. 졸업생들은 대부분 관청으로 진출했으나, 회사원, 자가 영농 등으로도 활동했다. 제1회 졸업생 중 조백현(趙伯顯)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초대 학장을 역임했으며, 이훈구(李勳求)는 미군정청 농림부장을 역임했다.

(4) 교칙

수원농림전문학교의 교칙은 입학 시기, 학년과 학기의 시작과 종료, 수업연한, 퇴학, 수료, 졸업 인정 성적, 시험, 결석, 휴학, 복학, 상벌, 제복과 제모, 교과과정과 시수 등을 규정했다.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학년은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이며, 전학기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후학기는 9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2개 학기로 구분했다. 입학생은 보증인 2명이 필요했다. 그중 1명은 경기도 수원 또는 경성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했으며, 사고, 질병 등으로 5일 이상 결석할 때는 보증인 연서로 결석계를 제출해야 했다. 성적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고, 징계에는 퇴학, 근신, 정학을 두었다. 다음과 같은 학생은 퇴학으로 징계했다.

-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학칙 등 학교의 명령을 어기고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학력이 열등하여 성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1개월 이상 결석한 자

학생의 제복과 제모는 [표 4-3-6]과 같이 상세히 지정했으며, 이러한 제복과 제모를 착용한 학생들은 당시 많은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표 4-3-6] 수원농림전문학교 제복과 제모 규정(1922)

명칭	소재	제식	교표	단추
상의	검정 또는 짙은 감색의 무명이나 모직, 하복은 희끗희끗한 무명 또는 서지 모직	세운 형태로 일렬 단추, 자켓 소맷부리에 단추 2개 붙임	교표의 좌우에 A라는 금색 글자를 부착	경7푼, 색동장 2, 은색 A자를 표시
하의	상의와 같음	보통 하의		
모자	검정 또는 짙은 감색의 모직	각형, 검은 가죽 차양 및 폭 1.2cm의 검은 가죽 턱끈 부착	앞부분은 금속재로 세로 2.88cm, 가로 2.57cm의 '農'자를 월계수가 감싸도록 함	
외투	검정 또는 짙은 감색의 모직	깃, 일렬로 4개의 숨은 단추를 부착하고, 좌우 허리 부분에 1개씩 주머니 부착		
각반	다갈색의 운제	권각반		

출처: 『수원학보』, 1922, 임시호.

(5) 학비

1922년 당시 수원농림전문학교 재학생의 학비는 크게 수업료, 기숙사비, 교우회비, 수학여행 적립금, 문구비, 참고서비와 교복, 교모, 실습복, 각반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경비와 학교 내에 조직되어 있던 협동조합인 자강조합의 회비로 구성되었다. 기숙사의 10개월 식비는 한국인 학생보다 일본인 학생이 30원 더 많았다. 3년간 학비는 [표 4-3-7]과 같이 한국인 학생은 1학년 455원, 2학년 269원, 3학년 283원으로 총 1,007원이었으며, 일본인 학생은 각 학년마다 식비가 30원이 더 많아 3년간 총 1,097원이었다. 당시 쌀 한 가마니(80kg) 가격이 20원 정도였으므로 현재의 쌀값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인 학생의 3년간 총 학비는 1,000여 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수원고등농림학교

일제는 1922년 개정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조선총독부제학교관제'(칙령 제151호)에 따라 1922년 3월 31일 수원농림전문학교의 교명을 수원고등농림학교로 개칭한다. 즉, 수원농업전문학교는 개교한 지 4년 만에 수원고등농림학교로

[표 4-3-7] 수원농림전문학교 학비(1922) 단위: 원

비목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경상비	수업료		24	24	24	72
	식비(10개월 평균)	일본인	150	150	150	450
		한국인	130	120	120	360
	기숙사비		12	12	12	36
	교우회비		6	6	6	18
	수학여행비 적립금		18	18	18	54
	문구 기타		50	50	50	150
	소계	일본인	260	260	260	780
		한국인	230	230	230	690
일시비	참고서류		35	35	35	105
	하복		55	-	-	55
	동복		55	-	-	55
	외투		45	-	-	45
	모자		5	-	-	5
	실습복		3	-	-	3
	각반		5	4	4	13
	구두		14	-	14	28
	자강조합비		3	-	-	3
	소계		225	39	53	317
총계	일본인		485	299	313	1,097
	한국인		455	269	283	1,007

출처: 『수원학보』, 1922, 임시호.

교명이 변경되었다. 수원고등농림학교는 교명 변경과 함께 농업전문교육기관으로서 입학 자격을 5년제 고등보통학교 또는 중학 졸업자로 강화했으며, 종래의 단일 학과를 농학과와 임학과로 분리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수원고등농림학교는 1944년 4월 7일까지 22년간 유지되었다.

수원고등농림학교는 다음과 같은 5개 항의 교훈을 공포하고, 이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지침이 되도록 했다.

• 스스로 힘써 노력하여 오로지 학업에 분발함으로써 입신보국의 토대를 세운다.

-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항상 떳떳하고 바른 국민의 길을 따르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다.
- 겸손하고 교우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며 서로 공경하고 도와 친분을 돈독히 한다.
- 책임을 중시하고 절제하여 견인불발의 정신을 기른다.
- 위생을 중시하고 몸을 단련하여 실로 강건한 기풍을 기른다.

또한 교가를 제정하여 학교 행사 때마다 제창하도록 했다([그림 4-3-14] 참조).

수원고등농림학교는 농림전문학교의 시설 확충을 위해 1934년 도서관과 기숙사를 신축했으며, 현미경실험실 등 일부 실험실 시설을 개선했다. 또한 1937년에



출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편(1976).

[그림 4-3-10] 수원고등농림학교 정문



출처: 『교우회보』, 1933, 89호.

[그림 4-3-11] 수원고등농림학교 신축 도서관(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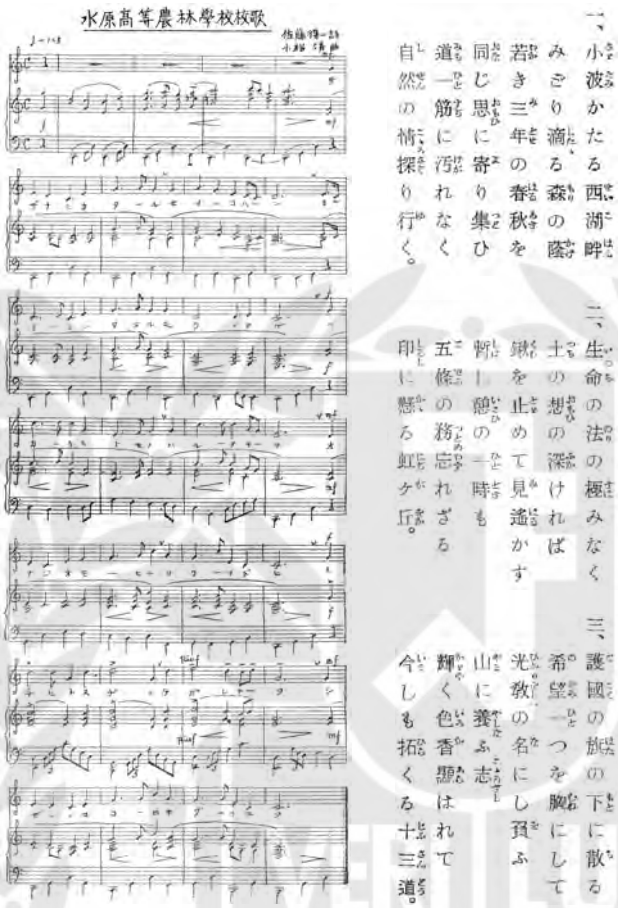


출처: 『교우회보』, 1933, 89호.

[그림 4-3-12] 수원고등농림학교 신축 기숙사(1933)



출처: 『교우회보』, 1936, 92호.

[그림 4-3-13] 수원고등농림학교 신축 교사 상량식(1936. 10. 29)



출처: 수원고등농림학교 편(1934).

[그림 4-3-14] 수원고등농림학교 교가

1. 작은 파도 찰랑대는 서호 호반
초록빛 젖는 숲의 그림자
젊음 3년의 봄가을을
한마음으로 기대어 모여
길 한 줄기에 부끄럼 없이
자연의 정 찾으며 간다.

2. 생명의 가르침에 끝은 없으며
대지의 마음이 깊을수록
괭이질 멈추고 먼 하늘 본다.
잠깐의 휴식 한 순간에도
다섯 가지 책무 잊지 않도록
표시해 두는 무지개 언덕

3. 호국의 깃발 아래 흩어져 간다.
희망 하나를 가슴에 품고
빛의 가르침 이름을 짊어지고
산에서 키운 뜻
빛나는 색과 향이 나타나서
바야흐로 열리는 13도

는 1, 2, 3 본관 교사의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1938년에 완성했다.

(1) 입학

수원고등농림학교 개교 당시에는 입학 자격이 한국인은 5년제 고등보통학교 졸업자, 일본인은 중학교 졸업자였고, 학생이 학비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학생을 모집했으나 성적이 나빠 2차 모집까지 실시했다. 개교 당시 학생은 농학과 25명, 농학특과 5명, 임학과 17명, 임학특과 5명으로 모두 52명이었다. 입학시험은 무시험과 시험으로 구분하여 무시험 응시자격은 고등보통학교, 중학교, 농업학교 재학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품행이 단정

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으며, 무시험 입학 정원은 학과 정원의 1/5 이내였다. 초기에는 무시험으로 입학한 한국인 학생이 많았으나 점차 일본인 학생 수가 증가했다. 개교부터 광복을 맞기까지 한국인 학생의 비율은 25~40% 정도였다.

(2) 교과과정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교과과정은 농학과와 임학과로 분리되어, 수원농림전문학교 때보다 상급 학년에서 경제학, 법학통론, 교육학, 행정대의, 식민학 등 다수의 교양 교과목을 포함했다. 어학에는 독일어가 3학년에 개설되었으며, 국어 시간에 한국인 학생은 일어를, 일본인 학생은 조선어를 배웠다. 조선어 강의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폐지되었다. 주당 수업 시수는 농학과가 1학년 전·후학기 27시간, 2학년 전학기 28시간, 후학기 25시간, 3학년 전학기 20시간, 후학기 19시간이었으며, 임학과는 1학년 전·후학기 28시간, 2학년 전학기 27시간, 후학기 26시간, 3학년 전·후학기 21시간이었다. 실험 및 실습은 농학과와 임학과 모두 주당 5회였으며, 임학과에는 부정시간의 삼림연습이 있었다. 또한 선택과목을 두어 2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수원고등농림학교는 1937년에 수의축산학과를, 1943년에는 농업토목학과를 증설하여 1945년까지 농학과, 임학과와 함께 4개 학과를 유지했다.

수원고등농림학교 졸업생은 전문학교 졸업자로서 판임문관의 자격이 부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사립 학교의 교원 자격을 취득했다. 농학과 졸업생은 동



출처: 『교우회보』, 1935, 91호.

[그림 4-3-15] 수원고등농림학교 야외 교련(1935)



출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편(1976).

[그림 4-3-16] 수원고등농림학교 과수실습

[표 4-3-8] 수원고등농림학교 농학과 교과과정(1922)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목	전학기 주당 시간	후학기 주당 시간	교과목	전학기 주당 시간	후학기 주당 시간	교과목	전학기 주당 시간	후학기 주당 시간
수신	1	1	수신	1	1	수신	1	1
영어	4	4	영어	3	3	영어	2	2
체조	1	1	체조	1	1	체조	1	1
국어	3	3	국어	2	2	법학통론	2	2
화학	3	3	화학	1		교육학	(1)	(1)
물리학 및 기상학	2	2	경제학	2	2	행정법대의	(1)	(1)
-	-	-	수학	(1)	(1)	독일어	(4)	(4)
-	-	-	-	-	-	식민학	-	(2)
육종학 및 작물학	2	2	육종학 및 작물학	2	2	육종학 및 작물학	2	2
곤충학 및 동물학	2	2	곤충학 및 동물학	2	2	-	-	-
식물병리학 및 식물학	3	3	식물병리학 및 식물학	2	2	-	-	-
양잠학	2	2	양잠학	2	2	-	-	-
지질학 및 토양학	3	3	-	-	-	-	-	-
농구론	1	1	-	-	-	-	-	-
-	-	-	농업공학	2	2	농업공학	2	1
-	-	-	원예학	2	2	원예학	2	2
-	-	-	축산학	2	2	축산학	2	2
-	-	-	비료학	2	2	-	-	-
-	-	-	실험유전학	2		-	-	-
-	-	-	-	-	-	농산제조학	2	2
-	-	-	-	-	-	농업경영학	2	2
-	-	-	-	-	-	농정학	2	2
-	-	-	-	-	-	세균학	(1)	(1)
-	-	-	-	-	-	생리화학	(2)	(2)
-	-	-	-	-	-	가축사양학	(2)	(2)
-	-	-	-	-	-	수의학대의	(1)	(1)
-	-	-	-	-	-	임학대의	(2)	(2)
계	27	27	계	28(1)	25(1)	계	20(14)	19(16)
실험 및 실습 횟수	5	5	실험 및 실습 횟수	5	5	실험 및 실습 횟수	5	5

주: ( ) 안은 선택과목: 선택과목은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출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편(1976).

[표 4-3-9] 수원고등농림학교 임학과 교과과정(1922)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목	전학기 주당 시간	후학기 주당 시간	교과목	전학기 주당 시간	후학기 주당 시간	교과목	전학기 주당 시간	후학기 주당 시간
수신	1	1	수신	1	1	수신	1	1
국어	3	3	국어	2	2	법학통론	2	2
독일어	4	4	독일어	3	3	독일어	3	3
체조	1	1	체조	1	1	체조	1	1
화학	3	3	화학	1		교육학	(1)	(1)
수학	4	4	경제학	2	2	농학대의	(3)	(3)
물리학 및 기상학	2	2	-	-	-	재정학	(1)	(1)
지질학 및 토양학	3	3	-	-	-	식민학	-	(2)
영어	(2)	(2)	영어	(2)	(2)	-	-	-
조림학	1	1	조림학	2	2	조림학	2	2
동물학 및 곤충학	2	2	동물학 및 곤충학	2	2	-	-	-
산림식물학 및 수병학	2	2	산림식물학 및 수병학	2	2	-	-	-
삼림측량	2	2	삼림측량	2	2	-	-	-
-	-	-	삼림보호학 및 수렵술	2	2	-	-	-
-	-	-	삼림이용학	3	3	-	-	-
-	-	-	임산제조학	2	2	-	-	-
-	-	-	삼림수학	2	2	삼림수학	1	1
-	-	-	-	-	-	임정학	2	2
-	-	-	-	-	-	삼림법률 및 삼림관리학	3	3
-	-	-	-	-	-	삼림토목 및 치수학	3	3
-	-	-	-	-	-	삼림경리학	3	3
계	28(2)	28(2)	계	27(2)	26(2)	계	21(5)	21(7)
실험 및 실습 횟수	5	5	실험 및 실습 횟수	5	5	실험 및 실습 횟수	5	5
삼림연습	-	-	삼림연습	부정 시간	부정 시간	삼림연습	부정 시간	부정 시간

주: ( ) 안은 선택과목: 선택과목은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출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편(1976).

물, 식물, 화학, 농업 교원의 자격을, 농업특과 졸업생은 농업, 동물, 식물 교원의 자격을, 임학과 졸업생은 동물, 식물, 수학 교원의 자격을, 임학특과 졸업생은 동물, 식물 교원의 자격을 받았다. 1925년 3월부터 수원고등농림학교는 무시험 검정학교로 지정되어 농학과 졸업생은 중등학교 농학과에 한하여 무시험으로 교원 자격을 취득했다.

(3) 교원

개교 당시 교수 6명, 조교수 7명이었으나 1931년까지 교수 11명, 조교수 9명, 교유 3명으로 증가해 광복 때까지 유지되었다. 교장은 권업모범장장이 겸임했으며, 조선총독부 기사, 권업모범장 기사도 일부 교과목 강의를 담당했다.

4) (후)수원농림전문학교

일제는 1944년 4월 7일, 3년제 수원고등농림학교를 2년 6개월제의 (후)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편했다. (후)수원농림전문학교는 개교 1년 4개월 후 일제가 패망하여 광복을 맞는다. 1945년 9월 미군정청은 (후)수원농림전문학교의 교장 요카와 마타오(陽川又夫)에게 학교를 조백현 교수에게 인계할 것을 명령해 9월 30일 조백현 교수가 교장에 취임한다. (후)수원농림전문학교는 광복 후 1년간 큰 혼란을 겪었으며, 1946년 8월 22일 공포된 '국립서울대학교설치령'(미군정 법령 제102호)에 따라 그해 10월 15일 서울대학교가 창립되어 서울대학교 산하 단과대학으로 흡수되었으며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은 (후)수원농림전문학교의 농학과, 임학과, 수의축산학과, 농업토목학과와, 1946년 3월 1일 증설된 농화학과, 1946년 8월 22일 증설된 농경제학과 및 농생물학과를 포함하여 7개 학과로 구성되었으며, 초대 학장으로 조백현 교수가 취임했다.

제3절 교원과 학생

1) 교원

1904년 9월 1일 개교한 농상공학교 농업과에서부터 1946년 8월 22일 (후)수원농림전문학교가 폐교되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설치될 때까지 42년간 농상공학교, 농림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후)수원농림전문학교에 재직한 교원은 총 106명이었다. 이 중 한국인 교원은 21명, 일본인 교원은 85명이다. 농상공학교 농업과와 농림학교의 교원 수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농림학교가 일본인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한 1918년 이후에는 한국인 교원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일본인 교원은 크게 증가했다.

한국인 교원이 가장 많았던 농림학교는 14명이 재직했으며, 수원농림전문학교에는 이윤재(李允載), 이종오(李鐘旿) 2명, 수원고등농림학교에는 조백현, 박영목(朴榮穆), 이태종(李台鍾) 3명이 재직했다. 따라서 농과대학 이전 반세기의 농학 교육은 대부분 일본인 교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교장은 농림학교의 서병숙 초대 교장과 2대 정진홍 교장을 제외하면 1908년부터 1945년까지 37년간 5명의 일본인이 역임했다. 서병숙 교장은 양지(陽智) 현감, 연일(延日) 군수, 중추원(中樞院) 의관을 거쳐 농상공부 농무국장이 되었으며, 농림학교의 교장을 겸임했다. 정진홍 교장은 성균관 진사에 합격하여 제중원(濟衆院) 주사가 되었으며, 그 후 일본의 야마구치고등상업학교(山口高等商業學校) 촉탁, 권업모범장 촉탁으로 근무하다 농상공부 농무국장이 되어 농림학교 교장을 겸임했다.

한국인 최초의 교원은 농상공학교 농과의 이장노 교관이었다. 이장노 교관은 일본 구마모토농업학교를 졸업하고 농상공학교에 부임했으며, 자신의 강의 과목 외에도 일본인 강의를 통역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강단에 서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장노 교관은 실습가를 작곡하여 실습농장으로 나갈 때 학생들이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장노 교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농림학교의 교원도 대부분 기록이 없으며 일부 교원에 대한 자료만 전해진다. 변국선은 농상공부 기수에서 농림학교 교수보로 임용되었으며, 한정교(韓廷敎)는 무과에 합격한 통신 사무원에서 농림학교 교수보로 임용되었다. 윤태중(尹泰

重)은 일본 구마모토 현(熊本縣) 현립 농업학교와 도쿄농업학교를 졸업하고 농림학교의 교수보가 되었다. 농림학교 2회 졸업생인 임한룡(林漢龍)은 농림학교 조교유를 지냈으며 후에 전만조선인민연합회 부회장, 봉천조선인공조회 회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림학교 3회 졸업생인 원홍구(元洪九)는 일본 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鹿兒島高等農林學校)를 졸업하고 교수보가 되었으며, 광복 후 북한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생물학부 교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지냈으며, 『조선조류원색도설』(1958), 『조선조류지』(1963~1965), 『조선짐승류지』(1968) 등을 저술했다. 이종오는 사립 오산학교 교원으로 있다가 수원농림전문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농림전문학교 1회 졸업생인 조백현은 일본 규슈제국대학(九州帝國大學)을 졸업하고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광복 후 일본인 교장 요카와 마타오로부터 (후)수원농림전문학교를 인수했으며 (후)수원농림전문학교 교장,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조교수, 교수를 지냈던 이태종은 학교를 떠난 후 젠다오 성(間島省) 농림학교 부교장, 만주국 민생국 교학과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다.

[표 4-3-10] 농과대학 교원 수(1904~1945) 단위: 명

재직 학교 및 기간	한국인	일본인
농상공학교 농과(1904~1906)	1	1
농림학교(1906~1918)	14	18
농림학교-수원농림전문학교(1906~1922)	1	11
농림학교-수원고등농림학교(1906~1944)	-	1
농림학교-(후)수원농림전문학교(1906~1945)	-	4
수원농림전문학교(1918~1922)	-	7
수원농림전문학교-수원고등농림학교(1918~1944)	2	7
수원농림전문학교-(후)수원농림전문학교(1918~1945)	-	1
수원고등농림학교(1922~1944)	3	24
수원고등농림학교-(후)수원농림전문학교(1922~1945)	-	11
계	21	85

출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편(1976: 200~203), 「구교직원명단(舊敎職員名單)」을 참고하여 정리.

[표 4-3-11] 농과대학 교장(1906~1946)

학교	재직 기간	이름
농림학교	1906~1907	서병숙(徐丙肅)
	1907~1908	정진홍(鄭鎭弘)
	1908~1919	혼다 고스케(本田幸介)
수원농림전문학교	1919~1923	하시모토 사고로(橋本左五郎)
수원고등농림학교	1923~1926	다이쿠하라 긴타로(大工原銀太郎)
	1926~1932	가토 시게모토(加藤茂苞)
	1932~1945	요카와 마타오(陽川又夫)
(후)수원농림전문학교	1945~1961	조백현(趙伯顯)

출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편(1976: 200~203), 「구교직원명단」을 참고하여 정리.



출처: 수원농학 80년사 편찬위원회 편(1986).

[그림 4-3-17] 농림학교 3대 교장 혼다 고스케(1908~1919)



출처: 수원농학 80년사 편찬위원회 편(1986).

[그림 4-3-18] 수원고등농림학교 7대 교장 요카와 마타오(1932~1945)



출처: 수원농학 80년사 편찬위원회 편(1986).

[그림 4-3-19] 수원농림전문학교 8대 교장 조백현(1945~1946)

2) 학내 활동

농림학교는 1913년부터 매년 5월에 교내 운동회를 개최했으며, 학생들이 100미터, 300미터, 500미터 경주, 계산경주, 배달경주, 변장경주, 장애물경주 등 각종 육상경기에 참여했다. 운동회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교직원, 지역의 유지, 소학교 재학생, 보통학교 재학생 등도 경주에 참여했으며, 만국기가 펄럭이고 폭죽을 쏘아 올리는 분위기에서 가장행렬, 기마경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

[표 4-3-12] 서울대학교 통합개교 이전 농과대학 한국인 교원(1906~1945)

학교	재직 기간	이름	직위	담당 교과목
농상공학교 농과	1905~1906	이장노(李章魯)	교관	
농림학교	1906~1907	서병숙(徐丙肅)	교장	
	1906~1907	변국선(卞國璿)	교수보	
	1906~1921	윤태중(尹泰重)	교수	조선어, 기상, 작물, 실험 및 실습
	1907~1908	정진홍(鄭鎭弘)	교장	
	1907~1910	한정교(韓廷敎)	교수보	
	1908~1909	조정환(曺鼎煥)	교수보	농상공학교 예과 졸업생
	1909~1909	양진앙(梁鎭昻)	교수부	
	1909~1910	송병태(宋秉泰)	교수보	
	1909~1917	이용훈(李容勳)	교수보	
	1910~1911	이정규(李貞圭)	교수보	
	1910~1912	원홍구(元洪九)	교수보	
	1910~1915	임한룡(林漢龍)	교유	양잠
	1911~1913	김규승(金奎承)	조교유	
	1911~1916	허흥룡(許興龍)	조교유	실습지도
	1914~1914	윤병섭(尹丙燮)	조교유	
수원농림전문학교	1918~1924	이윤재(李允載)	조교수	조선어, 농산제조, 작물, 토양, 실험 및 실습
	1921~1924	이종오(李鐘旿)	조교수	조림, 조림보호, 삼림이용, 측량, 실험 및 실습
수원고등농림학교	1925~1961	조백현(趙伯顯)	교수	화학, 토양학, 농산제조학, 농예화학
	1919~미상	박영목(朴榮穆)	교유	
	1930~미상	이태종(李台鍾)	조교수	작물학, 조선어

출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편(1976).

행되었다. 운동회 외에도 정기적인 정구대회, 경수(京水)마라톤 등을 개최했으며, 각종 운동부를 운영해 지역 및 전국적인 경기대회에 출전했다. 또한 농림학교는 매년 학년별로 5~7일간의 수학여행을 실시하여 각 지역의 영농 현장과 농업 관련 기관 등을 견학했으며, 봄·가을로는 가까운 화산, 천안 등지로 원족회도 가졌다. 운동회와 수학여행은 수원고등농림학교에서도 계속되었으며, 수원고등농림학교 시절에는 운동부가 더욱 활성화되어 경기부, 야구부, 정구부, 유도부, 축구부, 승마부, 럭비부, 탁구부를 두었다. 특히 축구부는 한국인 학생만으로 구성되었다. 각 운동부는 당시 조선전문학교체육연맹이 개최한 육상경기대회, 야구대



출처: 『교우회보』, 1920, 13호.

[그림 4-3-20] 수원농림전문학교 전선(全鮮)정구대회 우승 선수 환영(1920)



출처: 『수원학보』, 1929, 80호.

[그림 4-3-21] 수원고등농림학교 제7회 운동회 장애물 경기(1929)



출처: 『수원학보』, 1929, 81호.

[그림 4-3-22] 수원고등농림학교 조전(朝專)육상경기대회 우승 기념(1929)



출처: 『교우회보』, 1932, 86호.

[그림 4-3-23] 수원고등농림학교 10회 운동회 사이클 경기(1932)



출처: 『교우회보』, 1935, 91호.

[그림 4-3-24] 수원고등농림학교 승마부(1935)



출처: 『교우회보』, 1935, 91호.

[그림 4-3-25] 수원고등농림학교 유도부(1935)

회, 정구대회 등 각종 전국 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승하기도 했다. 특히, 매년 실시하였던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 등 전문학교 사이의 경기대회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았다.

수원고등농림학교는 운동부 외에도 강연부, 변론부, 만돌린오케스트라, 하모니카밴드 등을 두어 학생들이 다양한 교내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교내 학생연주회,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등을 개최했다.

3) 학생 항일운동

수원농림학교의 학생은 모두 한국인이었으며 1909년 10월에 건축한 기숙사에서 규율이 엄격한 기숙사 생활을 했다. 1918년 농림학교를 농림전문학교로 승격시킨 일제는 일본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해 농림전문학교에서는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또한 일제는 일본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따로 신축하여 한·일 학생을 차별함에 따라 한·일 학생 간에는 민족적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처음에는 홍료(虹寮)라고 했으나, 동쪽에 있는 한국인 학생 기숙사를 동료(東寮)라 하고, 서쪽에 있는 일본인 학생 기숙사를 서료(西寮)라고 불렀다.

한·일 학생 간의 차별과 민족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인 학생 기숙사 동료에는 독립을 향한 단결과 민족정기, 민족혼을 선양하기 위한 동료정신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1919년 3·1 독립운동과 1926년 순종 인산일의 6·10 만세사건 이후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더욱 심화되었다. 1927년 6월 동료의 학생들은 건아단(健兒團)이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하여 조기체조, 냉수욕, 등산, 도보여행 등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이대위(李大爲), 홍병선(洪秉璇), 이요환 등 당시 유명 인사를 초빙하여 강연회와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상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3·1 독립운동 기념일에는 비밀리에 기념식을 거행하고 독일 국가(國歌)에 최남선(崔南善) 선생이 곡을 붙인 동료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또한 농촌 계몽대를 조직하여 서둔리(西屯里), 고색리(古索里) 등 학교 부근 마을에서 야학을 실시하는 등 농촌 계몽활동을 실시했다.

일제가 1927년 12월 동료의 남쪽에 다다미식 기숙사를 신축하여 남료라 하고 동료의 한국인 학생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으나, 학생들은 동료라는 호칭을 고수하고 동료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회에 빠짐없이 참석할 것, 강의시간 외에는 일본어를 사용하지 말 것, 축구부 이외의 운동부에는 가입하지 말 것, 경어를 쓸 것, 게다(下駄)나 조리(草履)를 신지 말 것, 규정된 석차 내에 들 것 등을 비밀로 서약했다. 일제는 이러한 동료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1936년에는 동료와 서료의 식당을 합하여 한식과 일식을 교대로 급식했다. 1940년에는 동료를 해산하고,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을 강제로 합방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인 학생들의 항일운동이었던 제1, 2, 3차 수원고등농림학교 사건은 이러한 동료정신에 그 기반을 둔 것이었다.

(1) 제1차 수원고등농림학교 사건

1928년 8월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3학년 김찬도(金燦道)와 권영선(權寧善)은 1926년부터 몇 차례의 비밀 모임을 거쳐 재학생 김익수(金益洙, 농과 9회 졸업), 황봉선(黃鳳善, 농과 10회 졸업), 김문찬(金汶贊, 비동창), 남영희(南榮熙, 농과 10회 졸업), 고재천(高在千, 농과 24회 졸업), 우종휘(禹鍾徽, 농과 7회 졸업), 김봉일(金奉日, 농과 9회 졸업), 백세기(白世基, 임과 9회 졸업), 육동백(陸東百, 임과 9회 졸업) 등 9명과 함께 수원 서호(西湖)에서 조선개척사(朝鮮開拓社)를 조직했다. 조선개척사는 농민운동과 농민봉기를 통해 민족의 자유와 정치적 독립을 찾겠다는 최초의 순수한 학생 조직이었다. 이들은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직 인가를 받기 위해 조선개척사를 계림흥농사(鷄林興農社)로 위장했다. 즉, 조선개척사의 정관과 취지문에서 정치적인 표현은 삭제하고, 당시 중국에서 체포된 독일군 포로를 수용한 강원도 난곡(蘭谷)의 독일식 농장을 모방하여 근대식 농장을 건설한다는 목적의 조직으로 위장했다. 그러나 이 조직은 그해 6월 김해공립농업학교에 재직하던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6회 졸업생 김성원(金聲遠)이 김해읍 어린이날 행사에서 한 축사가 학생들에게 독립사상을 전파한 것이라는 혐의로 구속되면서 가택수색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개척사의 일원이었던 우종휘가 보낸 흥농사의 조직에 관한 편지가 발견되어 발각되었다. 경찰은 동료를 수색하여 김찬도의 방에서 조선개척사 초안, 취지문, 흥농사 결성 절차 등을 발견하고 조선개척사를 결성한 11명의 재학생을 검거했다. 이 사건을 제1차 수원고등농림학교 사건이라고 하며, 수원고등농


秘密結社組織後
裏面活動三個星霜
朝鮮初有의學生結社事件
水原高農事件顚末
農民大衆을啓發
新社會建設計劃
最初엔健兒團組織
朝鮮의事情을
國際的的問
生命을賭한前
山谷을震

출처: 『동아일보』, 1928. 9. 18.

[그림 4-3-26] 제1차 수원고등농림학교 사건 보도

림학교의 학사록에는 소화 3년 불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검거된 11명은 치안유지법과 보안법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무료 변론을 자청한 이인(李仁), 김병로(金炳魯), 신태악(辛泰嶽), 김용무(金用茂) 등 변호인의 노력으로 대부분은 면소되었다. 그러나 김찬도와 권영선은 모든 책임을 지고 기소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았으며, 11명도 예심에서 판결 때까지 18개월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권영선은 출옥 후 옥고로 사망했으며, 김성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감형으로 1년 6개월 만에 출옥했다. 이 사건으로 졸업하지 못한 김찬도와 고재천은 광복 후 수원농림전문학교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라 1946년 (후)수원농림전문학교 농과 24회 졸업생으로 졸업했다.

(2) 제2차 수원고등농림학교 사건

제1차 수원고등농림학교 사건 이후 학생들의 항일운동은 잠시 주춤했으나 투쟁정신을 계승한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10회 졸업생 김종수(金鍾洙)는 재학 시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야학을 실시하고, 방학 중에는 전국 각지의 선배들과 제휴하여 문맹퇴치와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상록수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교내에서는 일제의 농업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독서회를 조직하고 한국인 학생들의 정신적 통일을 도모했다. 이들은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이 농촌지도를 위한 여명의

아들이라는 긍지를 가지며, 동료의 취사부를 자치제로 운영하고 한국인 학생만으로 축구부를 구성하여 정신과 체력을 단련하여, 농민의 단결과 봉기를 통해 항일투쟁과 조국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상록수운동과 독서회 활동은 전국적인 동지 규합과 조직 확대를 추진하던 중 1935년 7월 농과 12회 졸업생 이용필(李容必)이 김천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학을 조종하다 검거되면서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김종수(농과 10회 졸업), 이용필(농과 12회 졸업), 김광태(金光泰, 농과 12회 졸업), 최홍기(崔弘基, 농과 12회 졸업), 김재곤(金在琨, 농과 13회 졸업), 김준강(金浚綱, 농과 13회 졸업), 유재환(劉在煥)은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 불경죄 등으로 기소되어 대구형무소에서 1년 6개월~3년을 복역했다. 이치영(임과 14회 졸업), 최태환(崔泰煥, 농과 13회 졸업), 이근복(李近馥, 임과 14회 졸업), 배정규(裵丁奎, 임과 14회 졸업), 손창규(孫昌奎, 임과 14회 졸업), 이연산(농과 14회 졸업), 임기즙(林基楫, 농과 14회 졸업)은 기소유예되었다. 이필규(李弼奎, 농과 12회 졸업), 신근철(申瑾徹, 농과 14회 졸업), 유달영(柳達永, 농과 14회 졸업) 등도 민족주의 학생으로서 독서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나, 당시에는 김종수, 이용필, 김광태, 김준강 등이 도입한 사회주의 계열의 학생들만 투옥되었다.

이 사건을 제2차 수원고등농림학교 사건이라고 하며, 수원고등농림학교에서 일제를 타도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사회주의 학생운동이 나타난 최초의 사건이었다.

(3) 제3차 수원고등농림학교 사건

일제는 식민지배 말기에 학생들의 농촌계몽운동 전면금지, 창씨개명, 한글 신문과 잡지의 폐간 등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한글과 한국어를 없애기 위한 문화적 탄압을 가중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1939년 4월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정주영(鄭周泳, 수의축산과 18회 졸업)이 학내에 재학생 10여 명과 함께 한글연구회를 설립하고 그해 10월 한글연구회 회원은 한글을 사용할 것, 조선어 철자법통일안 및 중등 정도의 조선 문법을 연구할 것, 매주 수요일 연구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실행할 것 등을 결의했다. 또한 이들은 동료의 자치 운영비로 한국인 학생들이 모은 10원을 항일 투쟁사업의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글연구회 회원이었던 졸업생 김중면(金重冕, 농과 19회 졸업)이 함북 갑산농업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전파했다는 밀고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주동자 정

주영을 비롯하여 민병준(閔丙駿, 농과 18회 졸업), 임봉호(林鳳鎬, 수의축산과 18회 졸업), 박도병(朴道秉, 농과 18회 졸업), 김상태(金相泰, 임과 19회 졸업)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년 6개월 내지 3년을 복역했으며, 장정현(張定鉉, 농과 16회 졸업), 남정근(南定謹, 임과 17회 졸업), 임병현(농과 18회 졸업) 등은 불구속으로 석방되었다. 이 사건을 제3차 수원고등농림학교 사건이라고 한다.

제4절 졸업생과 교우회보

1) 졸업생

농림학교에서부터 (후)수원농림전문학교에 이르기까지 42년간 졸업생은 총 2,049명이며, 그중 한국인 학생은 1,052명, 일본인 학생은 1,042명이다. 일본인 학생은 대부분 1920년부터 1945년 사이에 졸업한 수원농림전문학교와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졸업생이며, 이 기간 동안 한국인 졸업생은 493명으로 일본인 졸업생의 47% 수준이다.

농림학교의 졸업생은 본과생이 328명이며, 임학속성과와 수의속성과 졸업생은 모두 39명이다. 관비제가 폐지되고 일본인 입학생을 허용했던 수원농림전문학교는 한국인 졸업생 21명, 일본인 졸업생 21명을 배출했으며, 수원고등농림학교는 한국인 졸업생 418명, 일본인 졸업생 1,021명을 배출했다. 1944년부터 입학한 (후)수원농림전문학교 학생은 1947년부터 졸업했으나, 일본인 학생은 일본의 패망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한국인 학생만 1949년까지 총 246명이 졸업했다.

졸업생은 농림학교 교사, 관공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으며, 다수는 항일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다. 또한 광복 후 전국의 농과대학 교수로 진출하여 한국의 농업 교육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졸업생을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수원농학 70년사』와 당시의 언론 자료 등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졸업생의 일부를 [표 4-3-14]에서와 같이 이름, 졸업 연도, 주요 활동을 간략히 소

[표 4-3-13] 농과대학 졸업생(1907~1949) 단위: 명

학교	연도	과정	한국인	일본인	계
농림학교	1907~1908	임학속성과 1~2회	19	-	19
	1909	수의속성과 1회	20	-	20
	1908~1919	본과 1~12회	328	-	328
수원농림전문학교	1920~1922	1~3회	21	21	42
수원고등농림학교	1923~1946	농학과 1~24회	269	522	791
	1925~1946	임학과 3~24회	116	339	455
	1940~1945	수의축산학과 18~24회	30	146	176
	1945	농업토목과 1회	3	14	17
(후)수원농림전문학교	1947~1949	농학과 1~3회	93	-	93
	1947~1949	임학과 1~3회	50	-	50
	1947~1949	수의축산학과 1~3회	62	-	62
	1947~1949	농업토목과 1~3회	41	-	41
계			1,052	1,042	2,094

출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편(1976).

개한다. 특히 광복 후 학계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졸업생은 별도로 나타냈다. 확인하지 못한 졸업생과 주요 활동은 추후 보완되기를 바란다.

2) 『교우회보』

농림학교는 1908년부터 오늘날 동창회와 같은 교우회를 창립하고 다음해 9월부터 『교우회보』를 발간했다. 『교우회보』는 농림학교가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교명이 변경된 후에도 1920년까지 1년에 한 번씩 총 13호를 발간했다. 1921년 8월부터 그 명칭을 『수원학보』로 변경하고 발간 횟수도 연 1회에서 월 1회로 늘렸다. 수원고등농림학교는 1927년부터 『수원학보』의 발간 횟수를 월 1회에서 연 2회로 줄이고 6월과 12월에 발간했으며 1931년까지 총 85호를 발간했다. 1931년부터는 『수원학보』를 다시 『교우회보』로 그 이름을 변경하고 1933년까지 연 2회 발간했으나, 1934년부터 1940년까지는 연 1회 발간했다. 1941년 2월 교우회가 해체되고 국민총력 수원고등농림학교연맹이 조직됨에 따라 『교우회보』도 1940

[표 4-3-14] 주요 졸업생의 활동

이름	졸업 연도	주요 활동
정태현(鄭台鉉)	임학속성과 2회(1907)	한국 식물분류학계의 산 사전, 『조선삼림식물감요』(1923), 『조선산야생약용식물』(1936), 『조선식물형명집』(1936), 『만선실용임업편람』(1944), 『한국식물도감』 상 · 하(1956)
임한룡(林漢龍)	농림학교 2회(1909)	농림학교 조교유(1910~1911, 1914), 전만조선인민연합회 부회장(1931), 봉천조선인공조회 회장(1934)
홍순영(洪淳寧)	농림학교 3회(1910)	제주농림학교 부교수(1910), 건국준비위원회 제주도 부위원장(1945), 제헌국회의원(1945)
원홍구(元洪九)	농림학교 3회(1910)	일본 가고시마고등농림학교 유학, 김일성종합대학 생물학부 교수(194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선조류원색도설』, 『조선조류지』, 『조선짐승류지』
송주순(宋柱淳)	농림학교 6회(1913)	평남 강동 · 평원 · 대동 군수, 조선총독부 관리
백남운(白南雲)	농림학교 8회(1915)	최고인민회의대의원, 북한 교육상,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강용구(姜龍九)	농림학교 8회(1915)	대종교 중진, 북로군정서 경신국장
이희순(李熙淳)	농림학교 9회(1916)	함북 경원 · 명천 군수
유흥식(柳興湜)	농림학교 9회(1916)	유자명(柳子明)으로 알려짐, 무정부주의자,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충청도 대표의원, 대한민국임시정부 학무부 차장, 후난(湖南)농업대학 원예학과 명예주임, 중국 원예학회 명예이사장
최태용(崔泰瑢)	농림학교 10회(1917)	기독교 목사, 농민회 부회장, 국민훈련원 원장
장면(張勉)	농림학교 10회(1917)	제헌, 제5대 국회의원, 초대 주미대사, 제2, 7대 국무총리, 제4대 부통령
박정근(朴定根)	농림학교 10회(1917)	전라북도 도지사
한근조(韓根祖)	농림학교 10회(1917)	국회의원
김경재(金璟載)	농림학교 12회(1919)	사회주의운동가, 언론인, 독립신문 기자, 신한공론 주필, 조선지광사 기자, 상해시보사 사장
이훈구(李勳求)	농림전문학교 1회(1920)	도쿄대학 농학과 3년 수료, 위스콘신 대학(University of Wisconsin)에서 박사학위 취득, 조선일보 주필 겸 부사장, 미군정청 농림부장, 국회의원, 『조선농업론』
이태종(李台鍾)	농림전문학교 3회(1922)	수원고등농림학교 조교수, 교수, 젠다오 성 농림학교 부교장(1936), 만주국 민생국 교학과(1940)
황숙현(黃淑玹)	수원고농 임과 6회(1928)	국회의원
김종린	수원고농 농과 8회(1930)	원예시험장장
한창우(韓昌愚)	수원고농 농과 11회(1933)	경향신문 2대 사장(1949~1961), 대한사격협회 회장(1960)
이양호(李養浩)	수원고농 농과 15회(1937)	내무부 차관
이승윤(李承潤)	수원고농 임과 15회(1937)	임업시험장장
김영준(金榮俊)	수원고농 임과 16회(1938)	농림부 장관
신두영(申斗泳)	수원고농 농과 17회(1939)	총무처 차관(1964), 감사원장(1976)
정남규(鄭南圭)	수원고농 농과 17회(1939)	농림부 차관
한창렬(韓昶烈)	수원고농 농과 17회(1939)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민관식(閔寬植)	수원고농 농과 18회(1940)	국회의원, 문교부 장관(1971)
김주만(金宙晩)	수원고농 농과 18회(1940)	경상북도 교육감
조광희(趙洸熙)	수원고농 농과 18회(1940)	국회의원
김인환(金寅煥)	수원고농 농과 19회(1941)	농촌진흥청장(1969)
최현옥(崔鉉玉)	수원고농 농과 19회(1941)	작물시험장장
채관식(蔡寬植)	수원고농 농과 23회(1945)	농산물검사소 소장

출처: 저자 작성.

[표 4-3-15] 학계로 진출한 졸업생

이름	졸업 연도	재직 학교
육중균(陸重均)	농림전문학교 1회(1920)	서울시립농대 교수
황운성(黃雲性)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2회(1924)	진주농과대학 학장
송재철(宋在哲)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2회(1924)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학장
이휘재(李徽載)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4회(1926)	서울농업대학 학장
구재서(具在書)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5회(1927)	서울농업대학 교수
이영호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5회(1927)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김성원(金聲遠)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6회(1928)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학장
김하득(金夏得)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7회(1929)	부산교육대학 학장
지용하(池鏞夏)	수원고등농림학교 임과 7회(1929)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민승복(閔承福)	수원고등농림학교 임과 9회(1931)	경희대학교 교수
강진형(姜鎭馨)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10회(1932)	충남대학교 총장
양인석(楊麟錫)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10회(1932)	경북대학교 대학원장
황봉선(黃鳳善)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10회(1932)	충남대학교 교수
김동호(金東湖)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11회(1933)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김준석(金駿錫)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14회(1936)	서울농업대학 교수
정병재(丁丙載)	수원고등농림학교 임과 15회(1937)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김준보(金俊輔)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16회(1938)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홍두표(洪斗杓)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16회(1938)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김용철(金鏞喆)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17회(1939)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공원택(孔元澤)	수원고등농림학교 임과 17회(1939)	이리농림고등학교 교장
홍기창(洪基昶)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19회(1941)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출처: 저자 작성.

년 12월 제96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교우회보』는 『수원학보』에서 다시 『교우회보』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발간 횟수도 연 1회, 월 1회, 연 2회, 연 1회로 변경되었으나 발간 번호만은 연속으로 유지되어 총 96권이 발간되었다.

『교우회보』와 『수원학보』는 당시의 학교 시설, 교육 내용, 교원 활동, 학생 활동, 논설, 교직원과 학생의 논문, 문예 작품 등을 기록했으며, 개학 반세기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 그러나 일부분은 분실되고 『교우회보』 9~13호, 『수원학보』 14~70호, 72~75호, 78~82호, 『교우회보』 86호, 89~93호, 96호만이 서울대학교 농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표 4-3-16]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로 재직한 졸업생

이름	졸업 연도	최종 직급
조백현(趙伯顯)	농림전문학교 1회(1920)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장
지영린(池泳鱗)	농림전문학교 1회(1920)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김호식(金浩植)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2회(1924)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장
이창구(李昌九)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6회(1928)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현신규(玄信圭)	수원고등농림학교 임과 11회(1933)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이승규(李升圭)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11회(1933)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유달영(柳達永)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14회(1936)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백운하(白雲夏)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15회(1937)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이춘녕(李春寧)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17회(1939)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장
심종섭(沈鐘燮)	수원고등농림학교 임과 20회(1942)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장
표현구(表鉉九)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22회(1944)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장
이창복(李昌福)	수원고등농림학교 임과 22회(1944)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육종릉(陸鍾隆)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의축산과 22회(1944)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임경빈(任慶彬)	수원고등농림학교 임과 23회(1945)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이은웅(李銀雄)	수원고등농림학교 농과 24회(1946)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장
현재선(玄在善)	수원농림전문학교 농과 1회(1947)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박태식(朴泰植)	수원농림전문학교 임과 1회(1947)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송계원(宋啓源)	수원농림전문학교 수의축산과 2회(1948)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오봉국(吳鳳國)	수원농림전문학교 농과 3회(1949)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장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3-27] 『수원학보』와 『교우회보』 표지

• 참고문헌

『동아일보』
농림학교, 『교우회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편, 1976, 『수원농학 70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편, 1986, 『수원농학 80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우회보』.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원학보』.
수원고등농림학교, 1934, 『홍료가집』.
수원농림전문학교, 『교우회보』.
수원농림전문학교, 『수원학보』.
조선농회, 『조선농회보』.

제4장

법과대학 전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역사는 1895년 5월 6일 법관양성소를 개교하면서 시작되었다. 인간을 다루는 법을 학문적으로 교육했다는 것은 국립서울대학교 최초의 개학이었다는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근대 한국 교육사와 학술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관양성소는 서구적 학문으로서의 법학으로 근대 국가의 초석을 놓으려 했던 조선의 국가적 의지 속에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10년 국권 상실과 함께 일제에 의한 간섭과 축소 정책으로 수난 속에서 연명해야 했다. 그렇지만 법학의 내용에 큰 변화는 없었고, 법관양성소에서 법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로 개칭되면서도 졸업생들의 정신은 면면히 계승되었다. 1926년부터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와 이원(二元) 교육이 시행되었고, 광복되면서 경성대학을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통합·발전되었다.

제1절 법관양성소

1) 설립과 운영

동학혁명과 갑오개혁이 있었던 1894년이 저무는 12월 16일 법무대신 서광범(徐光範)이 "인재를 양성하고 법률을 익혀 지방재판관으로 선보(選補)하기 위하여" 법관양성소의 설립을 주청한다. 고종은 바로 윤허했고, 이듬해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었다. 동시에 '법관양성소규정'(법률 제49호)이 공포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법학 교육기관이자 오늘날 국립서울대학교의 기원이 설립되었다. 1895년 음력 4월 15일 서대문 밖 유동(놋전거리, 현재의 서대문 우체국 뒤)에서 개소하고, 일주일 후 '법학통론'의 강의를 시작으로 개강했다. 초대 소장은 법부 참서관 피상범(皮相範)이 겸임했는데, '현행법률' 강의를 맡기도 했다. 처음 수업연한은 6개월이었다.

다음해인 1896년 갑신정변으로 폐쇄되었다가 7년 만인 1903년에 광화문 오른쪽 방면으로 옮겨 다시 개교했다. 법학 교육은 출발부터 민족적 아픔과 맥을 같이했다. 단기간 속성 교육에 따른 수준 문제도 제기되어 재개교부터는 1년 6개월, 1904년부터는 2년으로 수업연한이 조정되었다가 1907년부터는 예과와 본과의 3년으로 연장했다. 1906년의 '법관양성소규정'에는 "본소는 … 내외국 법률을 교수함"이라고 하여 서구의 근대적 법학도 교수할 것임을 밝혔다.

입학 자격은 20세 이상 35세 미만의 신체 건강자였다. 입시과목은 한문, 국문작문, 조선역사, 지리다. 사범학교와 외국어학교 졸업자에게는 시험이 면제되고 입학이 허가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거제 폐지와 신분제 철폐가 이루어진 후 중인, 무관, 향리의 30세 전후 젊은이들이 법관양성소 입학을 관직 진출의 기회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입학 정원은 처음에 50명이었다가 1903년부터 90명으로 늘었다. 1909년 4월 법학교 예과 정원이 100명이었는데 700여 명이 응시하기도 했다.

1904년 3월 12일 공포된 '법관양성소관등및봉급령'(칙령 제7호)에 따르면, 교관이 1개월 내에 결근 3일 이상이면 견책, 7일 이상이면 1개월 감봉하고, 지각 10일이면 견책하고 그럼에도 다시 5일 지각이면 반개월분을 감봉했다. 그뿐만 아

니라 학생의 성적이 취열(取劣)하면 그 반에서 교수한 교관은 경고를 받도록 규정했다. 한편 학생 3분의 1 이상이 우등하면 그 반을 교수한 교관을 법부대신에게 알려 포상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한, '법관양성소감독에관한규칙'에는 소장과 교관, 학생의 정치 참여 및 수업 거부를 금지하고, 학생이 소장을 거치지 않고 법부대신에게 직접 청원서를 낼 수 없도록 금지했다.

1903년 재개소 이후 소장은 법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부소장은 심상익(沈相翊)이 맡을 만큼 중요한 법학 교육기관이 되었다. 그러나 『통감부연보』는 "법관양성소의 당연직 소장인 법부대신이나 협판, 공소원 판사는 법학의 착실한 연구를 증진시키기보다는 빈번히 정치적 동요를 야기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사법개혁과 동시에 1907년 7월 협정 체결 이후 법부고문 노자와 다케노스케(野澤武之助)가 법관양성소 소장에 임명되고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법관양성소가 조선인에 의한 골칫거리 기관임을 알고 있었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법관양성소 교관 정명섭(丁明燮), 조세환(曺世煥), 고익상(高翊相), 김종호(金鍾濩), 윤태영(尹泰榮), 윤광보(尹光普)는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교관직을 사직했다. 재학생들도 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평리원에 고발했는데도 검사가 심리하지 않자 여론이 들끓었다.

일본에서 유학한 이면우(李冕宇)가 소장이 되면서 구학문을 중심으로 교수한 정명섭(丁明燮), 윤태영(尹泰榮), 김종호(金鍾濩), 고익상(高翊相), 조세환(曺世煥)이 해임되고, 일본 유학파인 홍재기(洪在箕), 유동작(柳東作), 유문환(劉文煥), 나진(羅瑨), 윤헌구(尹憲求), 석진형(石鎭衡)을 교관으로 임명했다. 이 젊은 법률가들은 하루 5시간씩 열심히 강의했다(『대한매일신보』, 1905. 12. 15).

역대 소장을 보면, 초대 피상범(1895. 5. 10~1896), 2대 이인영(李寅榮, 1903. 1. 21~1904. 6. 4), 3대 심상익(1904. 6. 4~7. 5), 4대 이지용(1904. 7. 5~10. 11), 5대 김규희(金奎熙, 1904. 10. 13~1905. 2. 21), 6대 이근상(李根湘, 1905. 2. 21~3. ?), 7대 김낙헌(1905. 3~12. 11), 8대 이면우(1905. 12. 11~1906. 6. 13), 9대 민형식(閔衡植, 1906. 6. 13~6. 30), 10대 김낙헌(1906. 6. 30~1907. 7), 11대 노자와 다케노스케(1907. 7~1908. 1. 1)였다.

2) 교수진

법관양성소의 교수진은 [표 4-4-1]과 같다.

권병훈은 갓 쓰고 도포를 입고 강의했는데, 한문을 가르치면서 『육서심원(六書尋源)』이라는 방대한 저술을 하여 중국의 둥쭤빈(董作賓)이 감탄하는 글을 보내기도 했다. 변영만(卞榮晩) 또한 동생 변영태(卞榮泰), 변영로(卞榮魯)와 함께 문재를 떨친 인물로 석진형과 함께 법관양성소의 인문학적 전통의 기초를 놓았다. 양대경은 후일 대법관이 되었고, 홍재기는 제1호 변호사가 되었다. 석진형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의 법률고문 우메 겐지로(梅謙次郎)가 토지조사사업을 할 때 통역을 하고 후일 도지사를 지냈다. 김상연은 『상법요의』(1906), 『국법학』(1907), 『헌법』(1908), 『경제학』(1910) 같은 교과서들을 저술했는데, 당시 교관들은 일종의 번역법학으로 전공이 불명한 저서들을 출간했다. 유문환은 1920~1921년에 조선일보사 제2대 사장이 되었고, 경성조선인변호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장도는 관립의학교와 한성사범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쳤고, 외부의 번역관을 하기도 했다. 192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회 범태평양지역 국제변호사대회에 조선변호사 단장으로 참석했고, 『형법총론』(1907) 교과서도 썼다. 최진은 1915년 법학협회가 재결성되었을 때 회장을 지냈고, 한일병합으로 폐간된 『법학협회지』

[표 4-4-1] 법관양성소 교수진

국적	교수
한국	고익상(高翊相), 공면주(孔冕周), 구건서(具健書), 권병훈(權丙勳), 권중한(權重漢), 김계형(金桂瀅), 김교명(金敎明), 김돈명(金敦明), 김병선(金秉璇), 김상연(金祥演), 김영구(金永九), 김영숙(金榮淑), 김우식(金宇植), 김정식(金廷植), 김종관(金鍾琯), 김종호(金鍾護), 나진(羅璡), 류동작(柳東作), 박규순(朴圭淳), 박만서(朴晩緖), 박희용(朴羲用), 방승헌(方承憲), 배동렴(裵東濂), 서상영(徐相永), 석진형(石鎭衡), 송태환(宋台煥), 신우선(申佑善), 안치윤(安致潤), 안택중(安宅重), 양대경(梁大卿), 원직상(元稷常), 유문환(劉文煥), 유진명(俞鎭明), 육종면(陸鍾冕), 윤광보(尹光普), 윤방현(尹邦鉉), 윤병순(尹秉純), 윤성보(尹性普), 윤일영(尹馹榮), 윤태영(尹泰英), 윤헌구(尹憲求), 윤호영(尹昊榮), 이강연(李康演), 이보연(李輔淵), 이성묵(李聖默), 이신우(李信宇), 이용설(李容卨), 이용재(李龍在), 이원국(李源國), 이종우(李種雨), 이한길(李漢吉), 이항종(李恒鍾), 장도(張燾), 정구섭(丁九燮), 정기학(鄭基學), 정명섭(鄭明燮), 정언조(鄭彦朝), 정영택(鄭永澤), 정학수(丁學秀), 조경구(趙慶九), 조세환(曺世煥), 최병옥(崔炳玉), 최진(崔鎭), 최창래(崔昌來), 허식(許植), 허정(許定), 홍재기(洪在祺), 홍태형(洪泰衡)(68명)
미국	클래런스 그레이트하우스(Clarence R. Greathouse, 具禮)(1명)
프랑스	로랑 크레마지(Laurent Crémazy, 金雅始), 클레망세(E. Clémencet, 吉盟世)(2명)
일본	구사가베 산쿠로(目下部三九郎), 다카다(高田), 조 쓰라쓰네(長連恒), 이와마 료(岩間亮), 아키야마 유키에(秋山幸衛), 가코 데타로(加古貞太郎), 오카다 가쓰도시(岡田勝利), 아오키 요시유(靑木好祐), 호리구치(堀口)(9명)

출처: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를 이어 『법학계』를 발간하는 등 많은 활동을 했으나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다.

로랑 크레마지(Laurent Crémazy)는 근대일본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리대학 교수 귀스타브 브아소나드(Gustave Emile Boissonade de Fontarabie, 1825~1910)[1]의 제자다. 보와소나드의 추천으로 대한제국 법률고문으로 취임하여 '법국율례(法國律例)'라는 프랑스법 강의를 했다. 1905년에 제정된 『형법대전』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한국법을 최초로 서양에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나폴레옹이 만든 『민법전(*Code Civile*)』을 한문으로 번역해 교재로 사용했는데, 필사한 이 교과서들이 다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로랑 크레마지는 관립 법어학교의 우등생 김정식(金廷植), 김우식(金迂植), 정기학(鄭基學), 이신우(李信宇), 최병옥(崔炳玉) 등 5명을 개인 교수하여 법관양성소 교수로 키우기도 했다.

3) 교과목

법관양성소의 매 수업은 1시간 반 동안 진행했다. 법학통론이 주당 3시간, 민법 및 민사소송법이 4시간 반,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3시간, 현행 법률과 소송 연습이 1시간 반이었다. 1904년 교과목은 법학통론, 민법, 형법, 민형사소송법, 헌법, 행정법, 국제법, 상법, 현행 법률, 산술, 작문, 외국율례, 경제학으로 구성되었다. 1906년 3월 30일 자 개정 규칙에 따르면, 새로 제정된 『형법대전』과 종래의 『대명률』, 법의학서 『무원록(無寃錄)』 등 전통과목을 추가했고, 외국어로 프랑스어가 추가되었다.

일본처럼 처음에는 독일 법학보다 프랑스 법학의 영향이 컸다. 1907년의 진급증(進級證)에 나타난 교과목과 담당 교수는 법학통론 석진형, 형법총론 윤태영, 민법 이한길, 상법 이항종, 형사소송법 장도, 민사소송법 류동작, 경제학 박만서, 국제공법 나진, 일본어 유문환이다. 이듬해 1908년에는 법학통론 장도, 민법총론 신우선, 민사소송법 홍재기, 형법총론 장도, 형사소송법 유문환, 상행위법 나진, 채권법 1부 석진형, 채권법 2부 신우선, 물권법 1부 류동작, 물권법 2부 양대경,

1 문헌은 Nadar Hakin, 2015, "Boissonade de Fontarabie," in: Patrick Arabeyre et al. (dir.), *Dictionnaire historique des juristes français XIIe-XXe siècle*, 2e éd.,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pp. 129~131.

평시국제공법 석진형, 상속법 박만서, 경제학 박만서 등으로 나타난다. 아직 학자별 전공화보다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편의에 따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가 상황으로는 국제법이 강조되었는데 법관양성소에서는 별로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처음에는 교과서가 없어서 일본 책을 교재로 쓰기도 하고 붓으로 필기하여 공부했다. 1903년 7월 법관양성소가 의정부에 청구한 예산에 『대전회통』, 『대명률』, 『각국약정』 등 서적 150질의 인쇄와 『법국율례』 초사비(抄寫費)로 2,400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신설 경비 7,800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비용이다. 1904년 6월에는 『무원록』 160질을 인쇄했다. 법학 교과서들은 1905년 이후에 양정의숙(養正義塾)과 보성전문학교에서 출간되기 시작한다. 법관양성소와 양정의숙, 보성전문학교는 법학 교육의 3대 지주였는데, 1913년 10월 양정의숙은 양정고등보통학교로 격하되었다. 법관양성소는 무상으로 교과서를 지급하고 매월 대금을 징수했다. 법관양성소에는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이 있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고 당시의 장서인이 찍힌 서적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제1회 연준(延浚)이 정갈하게 붓으로 적은 '법학통론' 노트도 법대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다.

1906년부터 졸업생에게 법부대신이 성법학사(成法學士) 칭호를 주고 계속 남아 공부한 자에게는 법관양성소박사 칭호를 주어 사법관을 비롯하여 법관양성소 교관이 되기도 했다. 1903년 9월 4일자 『관보』에는 '법관양성소규정'에 졸업생을 박사로 하여 교관으로 서임하다가 사법관으로 채용한다고 발표되었다. 오늘날의 학위명과는 다른 관직명이었다. 1903년의 법관양성소박사는 윤상직(尹相直), 이완영(李完榮), 원용만, 정섭조(鄭燮朝)였다. 우등 졸업생에게는 외국 유학의 특전도 부여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재학 시 학생의 규율은 대단히 엄격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에 희생된 동포를 위해 법관양성소 재학생들은 조난동포구조금을 보내기도 했다. 1907년 법부에서 형법개정안에 대해 법관양성소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으로 일본인 사법관을 다수 채용하여 통역과 번역을 맡았다. 1909년 법부는 재판소번역관보 채용시험을 법관양성소에서 실시했다. 180명이 응시하여 40명이 선발되었다. 로랑 크레마지(Laurent Crémazy)는 관립 법어학교 출신을 취직시키려 노력했고, 각국 외교관들의 이권 쟁탈전이 전개되었다.

1908년 3월 15일에는 양정의숙에서 한국 최초의 법률가 111명이 모여 법학협회가 창립되었다. 초대 회장은 법관양성소 교관 홍재기, 평의원은 장도, 석진형, 이면우, 유문환, 유승겸, 박만서, 조성구, 류동작, 신우선, 장헌식이 맡았다. 여기서는 매월 토론회를 열고 『법학협회지』라는 최초의 법학 전문지를 매월 발간했다. 그러나 1909년이 되면 법부와 군부가 폐지되고 인심이 흉흉한 가운데 사법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법관양성소도 폐지되고 법학교로 개칭되었다.

4) 졸업생

1895년 개교 이래 1909년 법학교로 바뀔 때까지 법관양성소의 졸업생은 제1회 47명, 제2회 39명, 제3회 28명, 제4회 20명, 제5회 22명, 제6회 54명, 총 210명이었다. 1909년 2월 10일자 『관보』는 총 졸업생 210명 중 10명은 사망, 동궁무관(東宮武官) 1명, 판사 21명, 검사 3명, 변호사 12명, 주사 9명, 재판소 서기 75명, 일본 유학생 3명, 기타는 미상이라고 발표했다. 1909년 마지막 졸업식에는 법부대신 고영희(高永喜), 검사총장 고쿠부 산카이(國分三亥), 법부차관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郎), 형사국장 김낙헌(金洛憲), 민사국장 이시영(李始榮), 법관양성소장 노자와 다케노스케, 교수 석진형 등이 참석했다.

'법관임용규정'은 1900년 4월 반포된 '무관및사법관임명규칙'에 의해 개정되어 사법관은 법률학 졸업생 중에서 법부시험을 거쳐 임명토록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법부시험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1894년 과거제도 폐지 후 사법관의 인력수급은 대개 천거로 충원되고 있었다. 일본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온 자들도 한동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법 아닌 다른 분야에 근무해야 했다.

1906년 10월 26일 '법관전고규정'(칙령 65호)이 공포되어 각 재판소의 판사와 검사는 전고시험을 거쳐 임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06년 12월 5일 발표한 법관전고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은 김종호, 윤헌구, 김돈희(金敦熙), 이한길, 박준성(朴準性), 안병찬(安秉瓚), 홍우기(洪祐夔), 홍면희(洪冕憙), 홍순용(洪淳瑢), 심종대(沈鍾大), 권혁채(權赫采), 변영만 등 12명이다. 모두 법관양성소 출신이고 평균 30세였다.

[표 4-4-2] 법관양성소 졸업생

졸업 횟수	졸업생
제1회(1895. 11)	고은상(高殷相), 구건서(具健書), 권재정(權在政), 권흥수(權興洙), 김면필(金勉弼), 김병제(金丙濟), 김익희(金翼熙), 류지연(柳志淵), 류학근(柳學根), 이긍수(李兢洙), 이도상(李道相), 이린상(李麟相), 이선재(李璿在, 李僊으로 개명), 이용복(李容福), 이용설(李容卨), 이용성(李容成), 이종우(李種雨), 이철승(李徹承), 이풍의(李豐儀), 이행선(李行善), 임병응(林炳應), 박빈병(朴斌秉), 박정환(朴廷煥), 서상희(徐相喜), 서인수(徐寅洙), 연준(延浚), 오세준(吳世俊), 원용설(元容卨), 유학주(俞鶴柱), 윤상직(尹相直), 윤성보(尹性普), 윤형중(尹衡重), 윤희형(尹熙衡), 이완영(李完榮), 정낙헌(鄭樂憲), 정섭조(鄭燮朝), 정신교(鄭藎敎), 정영택(鄭永澤), 정운철(鄭雲哲), 조세환(曺世煥), 조한위(趙漢緯), 최래학(崔來鶴), 한성윤(韓成潤), 한용교(韓鏞敎), 함태영(咸台永), 홍용표(洪龍杓), 홍종한(洪鍾翰) 등 47명
제2회(1986. 9)	고익상(高翊相), 공면주(孔冕周), 권봉수(權鳳洙), 김돈희(金敦熙), 김상참(金相參), 김세학(金世鶴), 김영묵(金永默), 김영수(金永洙), 김종응(金鍾應), 김현익(金顯翼), 이강호(李康浩), 이동진(李東鎭), 이면용(李冕容), 이용면(李用冕), 이원국(李源國), 이헌의(李憲儀), 임병선(林炳璿), 서병성(徐丙星), 서정좌(徐廷佐), 오치길(吳致吉), 유문규(柳文珪), 유태영(柳台永), 윤병순(尹秉純), 윤영일(尹榮馹), 윤일영(尹馹榮), 이봉(李俸), 임윤재(任胤宰), 장연창(張然昌), 장윤규(張潤圭), 정운탁(鄭雲倬), 정제현(鄭濟賢), 최창래(崔昌來), 한지연(韓止淵), 한헌(韓憲), 허식(許植), 홍긍섭(洪肯燮), 홍종준(洪鍾駿), 황진국(黃鎭菊) 등 39명
제3회(1904. 7)	구승회(具升會), 권중근(權重瑾), 권태정(權泰珽), 김정학(金正學), 김종호(金鍾灝), 남보원(南輔元), 노종빈(盧鍾彬), 유용균(柳龍均), 박준성(朴準性), 배영균(裴瑛均), 성기영(成夔永), 신정식(申正植), 심종대(沈鍾大), 안정기(安廷夔), 윤광보(尹光普), 윤달영(尹達永), 윤태영(尹泰榮), 윤헌구(尹憲求), 이한구(李漢求), 이한길(李漢吉), 임면순(任冕淳), 정우흥(鄭雨興), 조동숙(趙東肅), 홍면희(洪冕憙), 홍우기(洪祐夔) 등 28명
제4회(1905. 12)	구자경(具滋景), 권혁재(權赫采), 김근현(金近鉉), 김낙순(金洛純), 김석호(金奭鎬), 남성우(南晟祐), 목원용(睦源容), 변영만(卞榮晩), 서병설(徐丙卨), 송석회(宋錫會), 송태현(宋泰顯), 심재근(沈在根), 심학근(沈學根), 윤충수(尹忠秀), 이문세(李文世), 이원희(李源禧), 이재영(李載榮), 정규승(丁奎昇), 조기연(趙箕衍), 홍순용(洪淳瑢) 등 20명
제5회(1907. 12)	권태형(權泰亨), 김기현(金基賢), 김원배(金元培), 김응섭(金應燮), 김종협(金鍾協), 남정규(南廷圭), 남춘희(南春熙), 임정규(林正奎), 민형기(閔衡基), 송주학(宋柱學), 안긍수(安肯洙), 유해창(柳海昌), 이경의(李敬儀), 이근국(李根國), 이기찬(李基燦), 이종연(李鍾淵), 이필은(李弼殷), 정석조(鄭奭朝), 조양원(趙良元), 조태환(趙台煥), 한상희(韓相羲), 홍종국(洪鍾國) 등 22명
제6회(1908. 12)	강세형(姜世馨), 권영보(權寧普), 권철상(權轍相), 길승연(吉昇淵), 김각선(金珏善), 김기정(金淇正), 김대경(金大經), 김병직(金炳稙), 김봉흠(金鳳欽), 김찬영(金瓚泳), 김형숙(金亨淑), 김사집(金思潗), 김영욱(金永旭), 김종덕(金鍾悳), 노재승(盧載昇), 노흥현(盧興鉉), 류국현(柳國鉉), 류근목(柳根穆), 류정렬(柳定烈), 류지형(柳志衡), 이규남(李圭南), 이돈성(李敦性), 이석호(李奭鎬), 이우정(李愚正), 이조원(李祖遠), 이중황(李中璜), 이춘섭(李春燮), 이풍구(李豐求), 이한린(李漢麟), 이환규(李煥奎), 문택규(文澤圭), 박용구(朴容九), 박용근(朴容瑾), 변영호(卞榮鎬), 소동식(蘇東植), 송태용(宋泰用), 신석정(申錫定), 안만수(安晩洙), 안승복(安承馥), 안종순(安鍾洵), 오희섭(吳熙鑷), 유원준(俞爰濬), 장석기(張錫驥), 정지연(鄭志衍), 조건호(趙建鎬), 조덕승(曹德承), 조세희(趙世熙), 조재선(趙載璿), 조종철(趙鍾哲), 심상직(沈相直), 홍명후(洪明厚), 홍순욱(洪淳頊), 홍순철(洪淳哲), 황필주(黃苾周) 등 54명

출처: 『구한국관보』.

1909년 4월에는 새로 '법관임용령'이 제정되어 사법시험제도가 도입되었다. 1909년 10월 13일 제1회 사법시험이 광화문의 법관양성소에서 실시되었다. 김기현(金基賢), 정준모(鄭浚謨), 류완영(柳完永), 엄식(嚴湜), 이규남(李圭南), 윤세영(尹世榮), 이종하(李琮夏) 등 7명이 합격했고, 대부분 구(區)재판소 판사로 임명되었다. 변호사법은 1905년 11월 법률 제8호로 제정되었는데, 1907년 6월 24일 실시된 최초의 변호사시험에 20명이 응시하여 이항종(李恒鍾), 장택환(張宅煥), 허헌(許憲), 옥동규(玉東奎), 계명기(桂命夔), 이종성(李鍾聲) 등 6명이 합격했다. 한일병합 전까지 약 100명의 한국인 변호사가 활동했다.

졸업생 중 이준(李儁)과 함태영(咸台永)이 특히 유명하다. 함태영은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대한제국에서는 판사를 지내고 일제 강점기에는 목사로 활동했다. 제1공화국에서 부통령까지 지냈다. 이준은 졸업 후 검사가 되었는데, 국제법에 관심이 많아 고종황제에 의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로 파견되었다. 법관양성소 출신 중에 가장 훌륭한 인물로 알려져 '자랑스런 법대인'으로 선정되고, 2012년 4월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정에 동상이 세워졌다.

제2절 법학교

1) 설립과 운영

14년 동안 존속해온 법관양성소는 1909년 10월 28일 '법학교관제'(칙령 제84호)에 의해 11월 1일부터 법학교로 개칭되고 법부에서 학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체계적 법학을 가르치는 학문적 교육기관처럼 보이는 이름에 비해 실제적인 발전은 없었다. 10월 28일 학부대신 이용직(李容稙)이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에게 보낸 조회에, "법학교관제의 시행과 동시에 법관양성소 소장은 폐관되었으나 다시 법학교장으로 계속 임명할 것"이므로 종전과 같은 관등으로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입학시험 과목도 법관양성소 때와 같았고, 교직원도 교장 1명, 교수 3명, 조교수 8명, 학감 1명, 서기 2명으로 대부분 그대로 계승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으로 사법권이 일본에 강제 위임되고 법학교는 조선총독부 산하에 귀속되면서 조선인은 판검사가 될 희망도 없는 법학교는 일반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학생모집 광고에도 법학교라는 정식 명칭 대신 전 법관양성소라고 기재할 정도였다. 1909년 조선총독부 보고에 보면 재학생이 138명으로 되어 있다. 1911년 10월 10일 칙령 제257호에 의해 3년이 채 못 되어 법학교는 폐지되고 11월 1일부터 경성전수학교로 다시 개칭되었다.

2) 교과목

'법학교학칙'은 본과와 예과를 두고 학생 정원은 본과 150명, 예과가 100명이며, 수업연한은 예과 1년, 본과 3년으로 입학 연령은 18세 이상이었다. 법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성법진사(成法進士)라는 호칭을 부여했다. 예과와 본과의 교과목을 보면, 역사, 지리, 수학, 한문, 부기, 일어, 체조, 윤리, 논리학, 법학통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국법학, 행정법, 국제공법, 국제사법, 명률, 경제학, 실무연습 등이었다. 일본어 교육에 대해 사람들은 졸업 후 일본으로 데려가 병졸이나 노예로 삼으려 한다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3) 교수진

교장 노자와 다케노스케는 독일 공사 수행원으로 가서 공부하고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법률가였다. 그는 1908년에 법관양성소 소장에 임명되었다가 법학교 초대 교장이 되었다. 1909년 11월 1일 같은 날짜로 법관양성소 교수, 조교수, 주사 등 9명을 법학교 교수, 조교수, 서기로 임명했다. 이 중 한국인은 교수 석진형(石鎭衡), 조교수 김교명(金敎明)과 양대경(梁大卿) 등이 있었다. 일본인 교수로는 조 쓰라쓰네(長連恒), 이와마 료(巖間亮), 가코 데이타로(加古貞太郎), 조교수 아오키 요시유(靑木好祐), 아카야마 유키에(秋山幸衛), 오카다 가쓰토시(岡田勝利)가 있었다.

4) 졸업생

법관양성소는 1909년 1월 제6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같은 1909년 11월부터는 '법학교'로 명칭을 바꾼다. 이 법학교는 1911년 3월 29명의 졸업생을 내고 다시 교명을 바꾸었다. 한번으로 끝난 졸업생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법학교 제1회 졸업생(1911. 3. 20) 29명〉

尹希誠, 朴東勳, 朴容夏, 朴容九, 朴容瑾, 朴雲龜, 朴榮來, 朴榮根, 李鍾洛, 柳定烈, 郭炳弼, 曺德承, 吳德三, 吳熙鑷, 洪明厚, 洪淳頊, 鄭雲洛, 鄭彦謨, 崔奉柱, 金鳳欽, 金德濬, 金鎭台, 金浩煉, 金基俊, 金振玟, 俞爰濬, 徐廷翊, 薛基夏, 趙建鎬

이 명단은 일본어 가나(いろは)순으로 되어있으며, 박용구 · 박용근 · 류정렬 · 조덕승 · 오희섭 · 홍명후 · 홍순욱 · 김봉흠 · 유원준 · 조건호 10인은 법관양성소 제6회 졸업생 명단에도 들어 있다.

그중 김기준(金基俊), 김진민(金振玟), 박영근(朴榮根), 박운구(朴雲龜), 오덕삼(吳德三), 정운락(鄭雲洛), 정언모(鄭彦謨)가 군수 등 관직 이력이 있었다. 특기할 인물은 전의(典醫)의 아들인 1890년생 박영래(朴榮來)다. 그는 은행가로 활약하는 한편 관수동(觀水洞)의 자기 집 사랑방을 화가들의 활동처로 내어주는 후원자 역할을 하고 김은호(金殷鎬), 나혜석(羅惠錫) 등과 고려미술회를 조직해 화가로 활동했다. 김은호는 『서화백년』에서, "박영래는 다문박식한 교양인이고 화가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유화를 그리곤 했다"고 적고 있다.

제3절 경성전수학교

1) 설립과 운영

법학교는 1911년 11월 1일 경성전수학교로 명칭이 바뀐다. '경성전수학교규

정'(조선총독부령 제11호)은, "조선인의 남자에게 법률 및 경제에 관한 지식을 수(受)하야 공사의 업무에 종사코자 하는 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이라 했다. 입학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정했다. 일제는 법률을 전공하여 법률가를 양성하는 길을 차단하려고 교명에서 아예 법자를 빼고 전수학교라고만 불렀다. 일반적으로 구(舊) 경성전수학교로 불린다.

1916년 4월 1일 '전문학교관제'의 반포에 따라 경성전수학교라는 이름으로 전문학교로 새출발했다. 명칭은 같지만 새로이 관립 전문학교로서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와 함께 승격되었다.

2) 교과목

경성전수학교에서 가르친 교과목은 1학년에는 수신, 국어, 법학통론,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제공법, 국제사법, 경제, 실무연습, 체조였다. 2학년은 수신요지, 읽기와 작문, 행정법, 상법, 형법각론, 민사소송법, 은행론, 공용문, 교련, 3학년은 수신요지, 읽기와 작문, 조선행정법규, 민법 4·5편, 상법 3편, 형법 2편, 형사소송법, 국제사법, 재정학, 부기계산, 체조와 교련이었다.

3) 교수진

구 경성전수학교 초대 교장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세키야 데자부로(關屋貞三郎)였는데 그는 후일 궁내부 차관을 거쳐 추밀원 고문관이 되었다. 1913년 6월에 2대 교장으로 조선총독부 사무관 오다 쇼고(小田省吾)가 임명되었는데, 그는 후일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되었다. 신(新) 경성전수학교의 교장은 아비코 마사루(吾孫子勝) 판사가 임명되었다. 그는 1916년 4월 1일부터 1922년 3월 31일까지 재임했다. 역대 경성전수학교 재직 교원의 명단은 [표 4-4-3]과 같다.

특기할 점은 1915년 9월부터 1919년 4월까지 후일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이 되는 김병로가 조교수로 재직한 사실이다. 박용희는 후일 중앙학교 교장이 되어

[표 4-4-3] 역대 경성전수학교 교원 명단

순서	이름	직명	재직 기간
1	세키야 데자부로(關屋貞三郎)	교장사무취급	1911. 11~1913. 6
2	아키야마 유키에(秋山幸衛)	교유	1911. 11~1912. 11
3	석진형(石鎭衡)	교유	1911. 11~1913. 3
4	가와타 하루카즈(川田治一)	교유	1911. 11~?
5	시게타 간지로(重田勘次郎)	교수	1911. 11~1918. 4
6	아다치 다이스케(安達大壽計)	조교수	1911. 11~1919. 2
7	양대경(梁大卿)	교유	1911. 12~1914. 10
8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眞太郎)	교유	1912. 4~1914. 12
9	사토 시게하루(佐藤重治)	교유	1912. 5~1916. 7
10	오다 쇼고(小田省吾)	교장사무취급	1913. 6~1916. 3
11	박용희(朴容喜)	교유	1914. 10~1916. 7
12	다카마쓰 류다네(鷹松龍種)	교수, 교장	1912. 8~1940. 3
13	다카하시 도라히코(高橋虎彦)	조교수	1915. 3~1921. 4
14	김병로(金炳魯)	조교수	1915. 9~1919. 4
15	스도 분키치(須藤文吉)	교수	1916. 8~1919. 3
16	나카무라 에이스케(中村榮助)	교수	1918. 5~1921. 5
17	김명수(金命洙)	교유	1919. 3~1923. 3
18	하라 다카시로(原 孝司郎)	교수	1919. 4~1921. 12
19	도미나가 시호시(富永四方司)	교수	1919. 4~1925. 4
20	다케다니 나오미(竹谷直彌)	조교수	1921. 4~1924. 3
21	사카 요시히코(坂 義彦)	교수	1921. 6~1923. 9
22	마루야마 케이지로(丸山敬次郎)	교수	1921. 6~1928. 3
23	정욱(鄭煜)	조교수	1921. 11~1922. 9

출처: 김효전(2016).

평생 민족교육에 이바지했다.

4) 졸업생

구 경성전수학교는 1912년 3월 25일 제1회 졸업생 24명을 필두로 제5회까지 총

[표 4-4-4] 구(舊) 경성전수학교 졸업생

졸업 기수	졸업생
제1회(1912)	강헌주(姜憲周), 길승점(吉昇漸), 김교봉(金敎鳳), 김구영(金九永), 김균조(金均祚), 김영렬(金永烈), 남정숙(南廷琡), 류복영(柳福永), 류중학(柳重鶴), 문석규(文錫圭), 박승묵(朴勝默), 백철수(白徹洙), 송원호(宋元鎬), 윤선호(尹善浩), 이명섭(李明燮), 이우익(李愚益), 이장한(李璋漢), 이홍종(李弘鍾), 이희춘(李禧春), 장기상(張基相), 주정환(朱正煥), 한기황(韓基璜), 허환(許煥), 황명석(黃命錫) 등
제2회(1913)	곽한선(郭漢善), 김사용(金思鎔), 민정식(閔禎植), 손영(孫英), 신석균(申晳均), 안상림(安商林), 양제박(梁濟博), 원병희(元炳喜), 윤동식(尹同植), 이관용(李灌鎔), 이기련(李起鍊), 이봉서(李鳳瑞), 이희규(李熙奎), 장기덕(張基悳), 한국종(韓國鍾), 한규용(韓奎鏞), 홍낙구(洪洛龜) 등 17명
제3회(1914)	강병준(姜炳駿), 김동욱(金東昱), 김정배(金貞培), 김항규(金恒圭), 민병성(閔丙晟), 신문현(申汶鉉), 유태설(劉泰卨), 윤광희(尹光熙), 이재승(李載昇), 조종설(趙鍾卨), 채규진(蔡奎辰), 채용묵(蔡容默), 최봉오(崔鳳梧), 한익제(韓翊濟) 등 14명
제4회(1915)	강인중(姜仁中), 계명수(桂明壽), 고순흠(高順欽), 김병호(金炳虎), 김종근(金鍾根), 김종진(金鍾振), 김진중(金進重), 노상구(盧相龜), 노상린(盧相麟), 노정근(盧貞根), 류래항(柳來恒), 류해문(柳海文), 류희섭(柳熙燮), 박린종(朴麟鍾), 박종호(朴鍾浩), 백윤화(白允和), 서홍선(徐鴻善), 성세용(成世鏞), 유진한(俞鎭翰), 이범구(李範求), 이석연(李奭衍), 이완규(李完珪), 이용우(李用右), 이유필(李裕弼), 이정준(李楨準), 이원우(李洹雨), 임병은(林炳殷), 장기식(張驥植), 장두식(張斗植), 조학주(趙學柱), 최영숙(崔永塾), 한필덕(韓弼德) 등 32명
제5회(1916)	강익하(康益夏), 공홍원(孔洪源), 권태영(權泰榮), 김병교(金秉校), 김사영(金思永), 김영택(金泳宅), 김완규(金完圭), 김요현(金堯現), 김재경(金在經), 김종국(金鍾國), 김중희(金仲熙), 김창진(金彰鎭), 김태곤(金台坤), 나재승(羅在昇), 류근필(柳根弼), 마양수(馬良秀), 민범식(閔範植), 민영우(閔泳宇), 박남규(朴南圭), 박병익(朴炳翊), 박용순(朴容淳), 박태성(朴泰成), 백관수(白寬洙), 서승모(徐承模), 석의순(石義純), 손창희(孫昌熙), 송원홍(宋元泓), 신석휴(申錫休), 안영학(安永鶴), 양홍기(梁洪基), 오일영(吳馹泳), 오종수(吳鍾洙), 오정옥(吳楨玉), 윤영식(尹泳軾), 윤태휴(尹泰休), 이기연(李基衍), 이동찬(李東燦), 이병천(李柄千), 이석헌(李錫憲), 이숭준(李崧駿), 이의형(李儀珩), 이종수(李宗壽), 이종훈(李鍾壎), 이효은(李孝殷), 임용상(林龍相), 임흥재(任興宰), 정면조(鄭冕朝), 정석우(鄭錫禹), 정원섭(丁元燮), 정천종(鄭千鍾), 조병칠(趙炳七), 조종춘(趙鍾春), 조태로(趙泰魯), 최탁(崔鐸), 탁중섭(卓重燮), 함승호(咸升鎬) 등 56명

출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2004).

143명이 졸업했다. 그리고 신 경성전수학교는 제1회부터 제6회까지 총 360명이 졸업했다.

『경성법학전문학교일람』(1926)에는 전 경성전수학교 졸업생 상황을 1916년 4월 말 현재 판사 9명, 검사 2명, 재판소 서기 18명, 행정관서 13명, 경찰관서 5명, 교원 1명, 변호사 21명, 은행·회사원 4명, 신문기자 3명, 가업 55명, 사망 11명으로 통계하고 있다.

[표 4-4-5] 신(新) 경성전수학교 졸업생

졸업 기수	졸업생
제1회(1917)	구자관(具滋觀), 김규장(金奎章), 김선영(金璿永), 김영환(金榮煥), 김익진(金翼鎭), 김제진(金濟鎭), 김진긍(金鎭兢), 김형재(金炯在), 류성희(柳垶熙), 류영(柳瑛), 문응명(文膺命), 박준호(朴準鎬), 백용구(白溶龜), 변진갑(邊鎭甲), 석종구(石鍾九), 송명진(宋明進), 신형섭(申亨燮), 오영선(吳寧善), 오완수(吳完洙), 오중락(吳中洛), 유영섭(劉永燮), 윤용섭(尹用燮), 이건호(李乾鎬), 이긍종(李肯鍾), 이기주(李基周), 이달중(李達中), 이종우(李鍾禹), 이혁(李爀), 이현종(李炫琮), 장강선(張剛善), 장화윤(張和潤), 전준범(全濬範), 정규혁(丁奎赫), 정찬호(鄭燦鎬), 정태호(鄭泰澔), 조인환(曺仁煥), 지영구(池永九), 진재성(陳在成), 함성욱(咸晟昱), 현석준(玄錫俊), 홍순구(洪淳球) 등 41명
제2회(1918)	강영철(康永喆), 강용건(姜龍乾), 권영탁(權寧倬), 김봉제(金鳳濟), 김선득(金瑄得), 김용배(金用培), 김윤호(金潤昊), 김은현(金殷鉉), 김응식(金膺植), 김홍국(金洪國), 독고백(獨孤柏), 박승준(朴承俊), 박인하(朴仁夏), 박유양(朴惟陽), 배병모(裵秉模), 서기홍(徐基弘), 송인모(宋寅模), 송인태(宋寅台), 송화식(宋和植), 이교홍(李敎洪), 이기원(李祺遠), 이명세(李明世), 이사수(李思秀), 이영승(李英承), 이춘두(李春斗), 이화종(李和鍾), 정연규(鄭然圭), 정운시(鄭雲時), 조태선(趙泰善), 주범순(朱範淳), 채규명(蔡奎明), 탁창하(卓昌河), 허용원(許龍源), 홍우방(洪祐邦) 등 34명
제3회(1919)	고희승(高羲升), 구형서(具瀅書), 김국한(金國翰), 김동현(金東炫), 김병수(金秉秀), 김세완(金世玩), 김영규(金濚圭), 김용찬(金溶燦), 김훈채(金訓采), 남정직(南廷稷), 믄병호(文炳虎), 박승덕(朴承德), 박재욱(朴在郁), 박필희(朴弼羲), 신풍균(申豐均), 심상매(沈相玫), 양승훈(梁昇勳), 오원탁(吳元鐸), 오태경(吳泰慶), 유석(劉錫), 윤교순(尹敎舜), 윤종건(尹鍾建), 이경회(李慶晦), 이수현(李守鉉), 이정혁(李晶爀), 임한선(林漢瑄), 장봉호(張鳳鎬), 정구영(鄭求瑛), 정규철(鄭奎轍), 정문모(鄭文謨), 정창섭(鄭昌燮), 조봉구(趙鳳九), 조성렬(趙誠烈), 조영복(趙榮福), 조용세(趙鏞世), 최부식(崔富植), 최원균(崔元均), 허진(許璡), 현감(玄堪), 홍인석(洪仁錫), 황리현(黃履鉉) 등 41명
제4회(1920)	강공승(姜公承), 강신규(姜信奎), 강제동(姜濟東), 강태두(姜泰斗), 구자극(具滋克), 김기환(金基煥), 나상규(羅相奎), 문승모(文昇謨), 민영태(閔泳台), 박상욱(朴商彧), 박세균(朴世均), 박재숙(朴在淑), 백기조(白基肇), 신상휴(申常休), 신언호(申彦浩), 오필린(吳弼麟), 원일(元一, 본명은 鍾麟), 윤일순(尹佾淳), 이공후(李公厚), 이상범(李相範), 이수근(李壽根), 이재복(李在馥), 이정근(李正根), 이한기(李漢基), 이호정(李浩呈), 임도근(林道根), 조희대(曺禧大), 지순명(池淳明), 차균경(車均卿), 최영길(崔榮吉), 최창순(崔昌舜), 최창렬(崔昌烈), 홍치국(洪致國), 황경준(黃景駿) 등 34명
제5회(1921)	김응모(金膺模), 김만봉(金萬鳳), 김재관(金在瓘), 김종욱(金鍾煜), 김창권(金昌權), 남택선(南澤善), 류심희(柳潯熙), 문기선(文夔善), 박용석(朴瑢錫), 박응무(朴應茂), 성락영(成樂榮), 손홍팔(孫洪八), 신낙현(申洛鉉), 오성근(吳成根), 오일형(吳一衡), 오재각(吳在珏), 원종억(元鍾億), 유찬(俞燦), 윤세병(尹世炳), 이남규(李南圭), 이상각(李尙珏), 이상익(李相益), 이성일(李誠一), 이전호(李典鎬), 이종락(李鍾洛), 임명순(林明珣), 임석규(林淅圭), 최정묵(崔鼎默) 등 28명
제6회(1922)	구택서(具擇書), 권용옥(權龍玉), 김민희(金敏熙), 김병조(金秉兆), 김사영(金思榮), 김일룡(金一龍), 김종석(金鍾錫), 김창현(金彰鉉), 김홍언(金鴻彦), 문치선(文致善), 문태선(文泰善), 류홍석(柳弘錫), 박규원(朴奎遠), 박승옥(朴勝玉), 박영배(朴英培), 박영봉(朴泳鳳), 서정국(徐廷國), 송태호(宋太鎬), 신창균(申昌均), 유재준(俞在濬), 윤숙(尹塾), 이영진(李英珍), 이종국(李鍾國), 이종림(李宗林), 이종택(李鍾澤), 장경선(張景璇), 정구철(鄭求喆), 정연직(鄭然直), 정한길(鄭漢吉), 조용순(趙容淳), 조헌식(趙憲植), 진직현(晉直鉉), 진태구(陳泰龜), 최세진(崔世鎭), 최종언(崔宗彦), 한계(韓桂), 홍수만(洪壽萬), 황각로(黃珏老), 황응면(黃膺冕) 등 39명

출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2004).

제4절 경성법학전문학교

1) 설립과 운영

1922년 4월 1일 '경성법학전문학교규정'(조선총독부령 제49호)으로 경성전수학교를 계승한 경성법학전수학교가 설립되었다. 8월 24일에는 '경성법학전문학교학칙'이 제정되었다. 법관양성소에서 법(法)자가 빠진 이후 11년 만에 복구된 셈이다. 국가 없는 법학 교육은 허망한 것이지만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과 민립대학운동이 군부 출신 관료들에게 조선 통치의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결과로 보인다. 학칙에 따르면, 입학 자격은 중학교 또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와 전문학교 입학검정시험에 합격한 자이며, 선과생(選科生)은 교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자격전형한 후에 허가했는데 교모와 교복은 착용하지 못하게 했다.

역대 교장의 면면을 살펴보면, 제1대 아비코 마사루(吾孫子勝), 제2대 다카마쓰 류다네(鷹松龍種, 1882~1944), 제3대 사토 시치타로(佐藤七太郎), 제4대 히라이 사부로(平井三郎), 제5대 시게타 간지로(重田勘太郎), 제6대 다카마쓰 류다네, 제7대 마스다 미치요시(增田道義), 제8대 기무라 쓰네노부(木村常信)였다. 교장도 교수를 겸임하여 강의를 했다.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1923년 7월 초에 졸업생과 재학생은 경성법학전문학교의 대학승격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다(『동아일보』, 1923. 7. 14). 이유는 법학교육을 보다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일본의 관립 전문학교가 모두 대학으로 승격했으므로 한반도도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나가노 간(長野幹)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은 전문학교가 전문학교로서의 충실을 기해 초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불가 의사를 표명했다(『동아일보』, 1923. 7. 16). 이리하여 대학승격운동은 민립대학운동으로 발전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일본 정부는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으로 대응했다. 1926년 7월 경성법학전문학교 학생회는 학교 설비가 낙후되어 비가 샐 정도라면서 교사 신축을 요구했다. 1927년 예산에서 탈락되자 학생회는 109명의 혈서를 받고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교사 신축 문제는 1937년에 전 경성공립농업학교 자리(현 청량리중학교 자리)에 신축하여 1938년에 준공하고 세종로에서 이전했다.

1940년대에 들어서 일본의 군국주의 전시체제는 격심해져 1941년 3월에 사상범 예비구금령이 발효되었다. 1941년 10월 28일 조선총독부에서 열린 전문학교 장회의에서 교육 단축을 결정하고, 전문학교 졸업생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자는 5년간의 실적을 산출하여 선발하도록 했다. 교육은 사실상 군사교육으로 바뀌었다. 1943년 9월 제22회 졸업생 69명이 졸업하고 한반도에도 징병제가 적용되었으며, 1944년 1월 학병제가 실시되었다. 1944년 3월 마침내 '전시임시조치령'에 따라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7월에는 마스다 미치요시 교장이 퇴임하고 기무라 스네노부 교수가 교장사무취급에 임명되었다. 1945년 5월에는 '전시교육령'이 공포되었다.

2) 교과목

1922년의 교과목은 수신, 국어(일본어), 영어, 법학통론, 헌법, 행정법 1·2부, 민법 1·2·3·4·5부, 상법 1·2부, 파산법, 형법 1·2부, 민사소송법 1·2부, 형사소송법, 국제공법, 국제사법, 경제원론, 경제정책, 재정학, 상업, 체조였다. 1940년 교과목은 수신, 일본학, 국어(일어), 중국어, 독일어, 영어, 헌법, 행정법 1·2부, 민법 1·2·3·4부, 상법 1·2·3부, 어음수표법, 형법 1·2부, 민사소송법 1·2부, 강제집행법 및 파산법, 형사소송법, 국제공법, 국제사법, 경제원론, 경제정책, 재정학, 상업(상업학, 회계학), 교련, 체조 및 무술로 되어 있다. 여기서 보면, 27개 과목에 95시간이, 32개 과목에 102시간으로 늘어났다. 일본학과 교련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조선황민화 정책의 반영으로 보인다. 1939년 3월에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재학생은 26세까지 징집을 연기할 수 있었다.

수업료는 '관립학교수업료규칙'에 따랐다. 수업료는 1년에 141원으로, 이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이었다. 수업료 징수기일은 각 납기의 첫 달로 하고 징수기간 후 체납 1개월이 된 자는 출석을 정지시키며, 2개월에 이르면 퇴학처분을 할 수 있었다.

3) 교수진

1926년 교수진은 학교장 사토 시치타로와 다카마쓰 류다네(민법), 사카지 히데모도(坂路英知, 형법), 마루야마 게이지로(丸山敬次郎, 민법연습), 이소베 쇼스케(五十部章助, 상법연습), 사카 요시히코(坂義彦, 민법과 법학통론), 소노베 사토시(園部敏, 헌법과 행정법), 다카하시 다카지(高橋隆致, 국어), 기타시마 도시에(北島壽衛, 체조) 교수가 있고, 데라가와 스에지로(寺川末治郎, 경제원론), 아이가와 도미사부로(相川富三郎, 영어), 이주연(李周淵, 조선어)이 교원촉탁으로 있었다.

그 외에도 교수로 김명수(金明洙), 도미나가 시호시(富永四方司), 마쓰오카 슈타로(松岡修太郎), 사카 요시히코(坂義彦), 하야미 히로시(速永滉), 사카지 히데도모(坂路英知),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 나코시 나가지로(名越那珂次郎), 하나무라 미키(花村美樹), 소노베 사토시(園部敏), 데라가와 스에지로(寺川末治郎), 기무라 쓰네노부(木村常信), 구루마타 아쓰시(車田篤), 나카무라 요시아키(中村義明), 에구치 이요키치(江口己與吉), 마쓰나미 고사부로(松波港三郎), 오타니 에이이치(大谷英一), 시노다 다카하루(篠田隆治), 마쓰자와 쥬이치(松澤壽一), 오카모도 요시쓰구(岡本好次), 스키모도 나가오(杉本長夫), 이케가키 데지로(池垣定次郎), 다카무라 스스무(高村晉) 등이 있어 총 25명이었다.

심리학자였던 하야미는 1926년 이후 경성제국대학 총장이 되었고, 미쓰오카, 다카하시, 하나무라, 나고시는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되었다. 이밖에 조교수 9명과 촉탁 8명, 시간강사 약 50명이 있었는데, 조선인은 교수 김명수, 조교수 정욱(鄭昱), 이주연, 촉탁교원 이긍종(李肯鍾), 이윤희(李允熙), 연전윤(延田允)이었다.

1919년부터 교수와 학생들의 글을 담은 『육조(六曹)』지가 발간되었다. 전부 남아 있지는 않지만, 후일 서울대학교 동양사 교수가 되어 법과대학에서 조선법제사를 강의하기도 한 김성칠(金聖七)이 1930년대에 농촌문제, 전제(田制)론, 보와 계에 관한 글을 수차례 게재한 것이 주목된다.

[표 4-4-6]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생

졸업 횟수	졸업생
제1회(1923)	조진만(趙鎭滿, 대법원장), 백한성(白漢成, 국무총리), 오필선(吳弼善), 유영준(俞永濬), 이건혁(李健赫), 이덕용(李德容), 이학천(李學泉), 정순석(鄭順錫), 한세복(韓世復) 등 34명
제2회(1924)	방준경(方俊卿, 대법관), 장윤식(張潤植), 이원희(李元熙), 한격만(韓格晩), 윤기학(尹基鶴), 양윤식(楊潤植), 오학근(吳學根), 박팔양(朴八陽, 시인), 최긍(崔兢) 등 43명
제3회(1925)	홍긍식(洪兢植), 정의호(鄭懿鎬), 이종대(李鍾臺), 임종관(林鍾寬) 등 39명
제4회(1926)	송영국(宋榮國), 최윤권(崔允權), 강선형(姜善馨), 이우식(李愚軾, 대법관), 박용진(朴容珍, 목사), 신도순(申道淳), 홍재경(洪在卿), 조남석(趙南石) 등 47명
제5회(1927)	송탁성(宋鐸星), 이종오(李種澳), 이방우(李芳遇), 김준원(金埈源), 김영배(金英培), 윤준영(尹峻榮) 등 34명
제6회(1928)	강석복(姜錫福), 김봉태(金鳳泰), 김기석(金基奭), 금용국(琴容國), 강협모(姜協模) 등 29명
제7회(1929)	송재오(宋在五), 이순구(李舜九), 이병용(李炳瑢), 홍재화(洪載和), 이홍규(李弘圭), 이상로(李相魯), 고희린(高羲麟) 등 37명
제8회(1930)	전재원(全載元), 김윤근(金潤根), 한통숙(韓通淑), 안정근(安定根), 정규현(鄭珪鉉) 등 39명
제9회(1931)	이석기(李錫基), 이은식(李殷植), 김기현(金琦鉉), 구태회(具泰會), 박훈식(朴薰植), 김희주(金喜周) 등 42명
제10회(1932)	김치걸(金致傑, 대법관), 홍재선(洪在善, 전경련 회장), 신의식(申義湜), 이정우(李玎雨), 신중식(申重植), 김동욱(金東旭), 이상하(李相夏), 김봉일(金鳳逸) 등 42명
제11회(1933)	박천식(朴天植, 원불교 교령), 김지호(金智鎬), 유진령(俞鎭靈), 사광욱(史光郁), 홍순엽(洪淳曄), 심종석(沈宗錫), 강용권(康用權), 박상운(朴商雲) 등 43명
제12회(1934)	민동식(閔瞳植), 김완규(金完奎), 주신곤(朱信坤), 김윤수(金潤壽), 조세신(趙世新) 등 43명
제13회(1935)	방순원(方順元, 대법관), 김형철(金炯澈), 변기엽(邊基燁), 황동준(黃東駿), 김덕주(金德柱), 이운근(李雲根), 김귀남(金龜南) 등 44명
제14회(1936)	태완선(太完善, 부총리), 위청용(韋靑龍), 송영규(宋永揆), 안기영(安基榮), 김윤수(金潤洙), 신효선(申孝善), 김정기(金貞基), 곽의영(郭義榮) 등 42명
제15회(1937)	이보형(李寶衡), 소진섭(蘇鎭燮), 신태권(申泰權), 조창희(趙彰熙), 현명섭(玄明燮), 이수녕(李隨寧), 최재호(崔在鎬) 등 43명
제16회(1938)	홍남표(洪南杓, 대법관), 이봉성(李鳳成, 법무장관), 조태형(趙台衡), 임석준(林錫春), 박인각(朴仁珏), 김대용(金大容), 민문기(閔文基), 김용달(金容達) 등 52명
제17회(1939)	강동진(姜東鎭, 재일 사학자), 신형균(申瀅均), 김동수(金東洙), 이병호(李丙浩), 오군평(吳君平), 명순겸(明順謙) 등 43명
제18회(1940)	이경호(李坰鎬, 장관), 장기환(張驥煥), 양병호(梁炳皓), 이범돈(李範暾), 김형훈(金熒薰), 안장호(安章鎬), 민재조(閔載祚) 등 52명
제19회(1941)	이범호(李範鎬), 송명관(宋明寬), 김현태(金顯泰), 임건묵(林健默), 김경석(金景碩), 김태청(金泰淸), 김창희(金昌熙), 여운상(呂運尙) 등 42명
제20회(1941)	김대진(金大鎭), 유병억(劉秉億), 최병길(崔秉吉), 손석창(孫錫昌), 최재형(崔在衡), 황성희(黃聖熙), 강원길(康元吉) 등 58명
제21회(1942)	오범식(吳範植), 서정귀(徐廷貴), 김동욱(金東旭), 김윤도(金允燾), 유재방(劉載邦), 한만춘(韓萬春), 권순영(權純永), 홍은표(洪殷杓) 등 44명
제22회(1943)	석은만(石銀万), 황은영(黃銀永), 임항준(任恒準), 윤운영(尹雲永), 고원증(高元增) 등 31명
제23회(1944)	이종성(李鍾聲, 충남방직 회장), 김용배(金容培, 육군대장), 박승유(朴勝裕), 장예준(張禮準), 김병휘(金炳徽), 이승택(李昇澤) 등 35명

주: 위 명단은 일본인 졸업생을 제외한 것임.

출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2004).

4) 졸업생

1923년 3월 제1회 졸업생 34명을 배출한 이후 1945년 9월 제24회 40명, 1946년 9월 제25회 46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총 졸업생 수는 1,044명이다. [표 4-4-6]에는 일제 강점기에 배출된 졸업생의 대략을 표시했다.

제5절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1) 설립과 운영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를 계기로 조선총독부의 통치 방식은 무단정치에서 이른바 문화정치로 바뀌었다. 그해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부임하면서 재빨리 조선총독부관제를 개정하여 총독이 문무의 권한을 동시에 갖는 제도와 헌병경찰제도가 폐지되었다. 1920년 1월에 도쿄제국대학 교수 몇 명이 조선(경성) 및 만주[뤼순(旅順) 또는 다롄(大連)]에 대학을 설립할 것을 총리대신, 문부대신 및 조선총독과 관동도독부장관에게 건의서로 제출했다. 중의원에서는 법학자 출신인 호즈미 노부시게(穗積陳重) 의원은, 독일이 알자스로렌(Alsace-Lorraine)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 슈트라스부르크(Strassburg) 대학[2]을 활용했듯이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제국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에서 연설했다.

1923년 11월 27일 조선총독부는 훈령으로 조선제국대학창설위원회를 설치했다. 여기에서 늦어도 1926년까지 개교하기로 결정하고, 명칭을 조선제국대학으

2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은 1631년 프랑스령 알자스로렌에서 프랑스 왕립대학으로 창립되었다. 보불전쟁 후인 1871년 알자스로렌은 독일 영토가 되었으며, 이 대학은 '빌헬름황제대학(Kaiser-Wilhelms-Universität)'이 되었다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다시 프랑스의 관할로 귀속되어 지금에 이른다. 국가와 대학의 관계를 강조했던 호즈미의 연설과는 달리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은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발전해온 것이다.

로 하느냐 경성제국대학으로 하느냐 논의하다가 원안대로 조선제국대학으로 낙착되었다. 심의 결과를 가지고 조선총독부는 대학관제안을 준비하고 내각 법제국에 심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법제국에서 대학명에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조선총독부는 경성제국대학이라 명칭을 수정하여 관제안을 통과시켰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개설로 경성법학전문학교와 이원(二元) 체재로 법학 교육이 시행되었고, 이것은 광복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설립으로 통합·극복되었다.

1926년 3월 15일 예과 수료식이 거행되고, 4월 1일 도쿄제국대학 교수 핫토리 우노기치(服部宇之吉)가 경성제국대학 총장으로 취임했다. 칙령 47호로 법문학부 23강좌, 의학부 12강좌가 규정되었고, 조선총독부령 30호로 대학규정이 반포되었다. '경성제국대학학부및학과설치에관한칙령'(총독부령 제31호)에 의해 법문학부는 법률학과, 정치학과, 철학과, 사학과, 문학과의 5개 학과로 구성되었다. 5월 1일에 법문학부와 의학부가 개강했다.

1931년 9월 8일 이른바 성대반제동맹(城大反帝同盟) 사건이 일어났다. 신현중(愼弦重) 등 재학생들이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반제동맹의 지부를 조직한 사건으로 신현중 등 3명이 실형을 받고 19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934년에는 재정학과 상공정책 담당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 교수가 공산주의 학생 이재유(李載裕)를 40일간 은닉한 이른바 '미야케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반일의 표현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경도를 볼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 '경성제대 사회주의'라 부르기도 했다. 제국대학이지만 일제 통치에 대한 한국인 학생들의 민족의식 갈등과 긴장이 표출되곤 했고, 일본인 학생보다 열심히 하여 성적을 높이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2) 교수진

교수진으로는 하나무라 미키(花村美樹, 형법과 형사소송법), 이즈미 데쓰(泉哲, 국제공법), 다케이 야스시(竹井廉, 상법), 야스다 미키타(安田幹太, 민법과 민사소송법), 후나다 교지(船田享二, 로마법), 나이토 요시노스케(內藤吉之助, 법제사), 하세가와 리에이(長谷川理衛, 국제사법), 후지타 도조(藤田東三, 민법과 민사소송법), 후와 다케오(不破武

夫, 형법과 형사소송법), 기요미야 시로(清宮四郎, 헌법과 행정법), 마쓰자카 사이치(松坂佐一, 민법과 민사소송법), 오다카 도모오(尾高朝雄, 법리학), 마쓰오카 슈타로(松岡修太郎, 행정법), 쓰마가리 구라노조(津曲藏之丞, 사회법), 니시하라 간이치(西原寬一, 상법), 우카이 노부시게(鵜飼信成, 행정법), 소가와 다케오(祖川武夫, 국제공법), 야마나카 야스오(山中康雄, 민법과 민사소송법), 구리하라 가즈오(栗原一男, 민법과 민사소송법), 아리이즈미 도오루(有泉亨, 민법과 민사소송법) 등이 있었다.

비교적 젊고 진취적인 학자들이어서 '경성제대법학파'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였다. 특히 오다카 도모오 교수의 법철학 강의가 인기였고, 이항녕(李恒寧), 황산덕(黃山德) 같은 제자를 배출했다. 이 외에 법조계의 현직 판사들이 강사로 나왔으며, 조선인 강사로는 어윤적(魚允迪), 정만조(鄭萬朝)가 조선문학을, 최재희(崔載喜)가 철학을 가르쳤다. 교수들은 1928년부터 연보『경성제국대학 법학회논집』을 11권까지 내고 1941년부터 계간으로 발간했다. 1942년 조수로 있던 홍진기(洪璡基)가 일본 상법학계의 거두 다케다 사토루(竹田省)의 이론을 반박하는 논문을 발표하여 논쟁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학생들은 1930년부터『신흥(新興)』이란 인문사회지를 발간했는데, 법학과의 유진오(俞鎭午), 이강국(李康國), 최용달(崔容達), 서재원(徐載元) 등이 글을 썼다. 또한『문우(文友)』지도 발간했고, 낙산문학회도 있었다.

3) 교과목

법문학부에는 법학과, 철학과, 사학과, 문학과가 있었고, 이후 경제과도 추가되었다. 법학과의 과목은,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사회법, 국제공법, 국제사법, 로마법, 법리학, 법제사, 법의학, 정치사, 정치학사, 정치사, 외교사, 재정학, 경제학, 경제학사, 경제사, 경제정책, 사회정책, 금융론, 통계학 등 다양한 과목이 있었다.

[표 4-4-7]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생

졸업 횟수	졸업생
제1회(1929)	강성태(姜聲邰), 유진오(俞鎭午), 전승범(全承範), 주병환(朱秉煥) 등 10명
제2회(1930)	김종렬(金鍾烈), 변정규(卞廷奎), 박용익(朴容益), 임문석(林文碩), 최병주(崔丙柱), 이강국(李康國), 최용달(崔容達) 등 11명
제3회(1931)	사경욱(史敬郁), 유헌열(柳憲烈), 정창운(鄭暢雲), 최순문(崔淳文) 등 12명
제4회(1932)	배정현(裴廷鉉, 대법관), 김영재(金寧在), 박원선(朴元善), 장후영(張厚永) 등 11명
제5회(1933)	김성환(金聖煥), 김태욱(金泰旭), 부운봉(夫雲鳳), 신기석(申基碩), 신순언(申淳彦), 이흥배(李興培), 조평재(趙平載), 최식(崔栻) 등 16명
제6회(1934)	김창의(金義昌), 박승하(朴勝夏), 상대식(尙大植), 손석도(孫錫度), 원흥균(元興均), 현석호(玄錫虎) 등 20명
제7회(1935)	계철순(桂哲淳), 김갑수(金甲洙), 박영화(朴永華), 윤태림(尹泰林), 최해태(崔海泰) 등 19명
제8회(1936)	금영우(琴榮祐), 서재원(徐載元), 양정수(楊正秀), 오진영(吳震泳), 이근칠(李根七), 이천상(李天祥), 임한경(林漢璟), 홍봉진(洪鳳珍), 홍영표(洪永杓), 홍익표(洪翼杓) 등 19명
제9회(1937)	고재호(高在鎬), 김병화(金炳華), 민복기(閔復基), 윤동직(尹東直) 등 17명
제10회(1938)	남상학(南相學), 이도영(李道榮), 이명섭(李明燮), 임규손(林奎孫), 정운갑(鄭雲甲) 등 17명
제11회(1939)	김영균(金永均), 전영수(全永壽), 남흥우(南興祐) 등 8명
제12회(1940)	계창업(桂昌業), 문홍주(文鴻柱), 이항녕(李恒寧), 전봉덕(田鳳德), 정근영(鄭近永), 차낙훈(車洛勳), 홍진기(洪璡基) 등 19명
제13회(1941)	박재섭(朴在燮), 황산덕(黃山德) 등 17명
제14회(1941)	김봉관(金鳳官), 박광서(朴光緖), 박상일(朴商鎰), 부완혁(夫玩赫), 선우종원(鮮于宗源, 선우중호 서울대학교 총장 부친) 등 20명
제15회(1942)	김영선(金永善), 박일경(朴一慶), 이영섭(李英燮, 대법원장), 주재황(朱宰璜) 등 25명
제16회(1943)	김정진(金晸鎭), 배용광(裵龍光), 신현확(申鉉碻), 조경희(趙敬熙), 진의종(陳懿鍾), 채형석(蔡炯錫), 현승종(玄勝鍾) 등 30명
제17회(1944)	김경성(金庚星), 김성희(金成熹), 김증한(金曾漢), 박동운(朴東雲), 송용기(宋容綺), 우형규(禹亨圭), 유민상(劉敏相), 한철훈(韓喆勳) 등 17명
제18회(1945)	고광림(高光林), 김경수(金敬洙), 김기범(金箕範), 서임수(徐壬壽), 서일교(徐壹敎), 이대원(李大源, 화가, 홍익대학교 총장), 이춘수(李春秀), 조동재(趙東宰) 등 12명
1946년[1]	고문석(高文錫), 김기선(金基善), 김명윤(金命潤), 김형수(金炯洙), 서돈각(徐燉珏), 정희철(鄭熙喆) 등 42명

주: 1)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했으나 교명이 개정되어 경성대학으로 졸업한 학생

2) 위 명단은 일본인 졸업생을 제외한 것으로 법문학부 전체가 아닌 법학과 졸업생만을 적은 것임.

출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2004).

4) 졸업생

경성제국대학 법학과 졸업생은 모두 714명인데, 그중 한국인은 328명이었다. 제16회 졸업생 중에는 국무총리가 세 명이나 배출되었다.

1895년 법관양성소에서 출발해 194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서기까지 법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자는 1,641명에 이른다. 이들 중 다수가 한국의 사법부와 행정, 경제, 학계에서 지도적 역할을 했다.

5) 도서관

로마법 담당 교수인 후나다 교지(船田亨二)가 도서관장을 두 번 지내면서 법학 서적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구비하려고 노력했다.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여 특히 산둥반도(山東半島)에 정착시킨 독일식민지의 장서를 전쟁배상금 예산으로 대량 구입한 사실도 주목된다. 그리하여 오늘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법학 관련 장서를 보면 서양의 어느 대학 도서관 못지않게 풍부한 고서와 희귀본들로 차 있다. 독일의 저명한 로마법 교수 페르디난트 크니프(Ferdinand Kniep)의 장서 5,639권을 1937년 3월에 구입했고, 1937년 10월에는 오스트리아의 헌법 교수 프리드리히 테즈너(Friedrich Tezner)의 헌법 및 행정법 관련 장서 967권을 구입했다. 독일의 저명한 민법학자인 에른스트 지텔만(Ernst Zitelmann) 교수의 민법학 관련 장서 879권을 구입하기도 했다. 이 도서들은 오늘날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국제적 위상을 자랑하는 자산이 되고 있다.

• 참고문헌

자료

『구한국관보』, 『조선총독부관보』

단행본 및 논문

김증한, 1989, 『한국법학의 증언』, 교육과학사.

김효전, 2014, 「법관양성소와 근대한국」, 소명.

김효전, 2016, 「경성전수학교의 법학교육: 새 출발 10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원논문집』5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법대동창회 편, 1994a, 『진리는 나의 빛』, 경세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법대동창회 편, 1994b,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경세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 1987, 『서울법대 백년사 자료집: 광복 전 50년』, 법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 1989, 『서울법대 백년사 자료집 제2집: 1945~1987』, 법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 2004, 『서울법대 100년사: 1895~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

유진오, 1977, 『양호기』, 고려대학교출판부.

이충우 · 최종고, 2013, 『경성제국대학』, 푸른사상사.

임광수 편, 2009, 『정통과 정체성』, 삶과 꿈.

최종고, 1995, 『한국법학사』, 박영사.

최종고, 2007, 『한국의 법학자』, 서울대학교출판부.

최종고, 2013, 『서울법대시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京城帝国大学同窓会, 1974, 『紺碧遙かに』, 東京: 京城帝国大学同窓会,

제5장

사범대학 전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군정청 법령 제102호)에 의해 9개 단과대학의 하나로 설립되었다. 이 법령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흡수된 10개의 학교들은 폐지되고, 그 재산, 설비, 문서, 자금 및 인원 등은 서울대학교에 이관되었으며, 사범대학은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의 물적·인적 자원을 이관받아 신설되었다.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는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중등 수준의 학교로 유지되었고, 1943년 4월부터 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 사범대학은 중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정규 대학 안에 새롭게 설립되었다. 이처럼 두 기관의 관계는, 법제상 폐지와 신설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형식적으로는 단절되었지만, 물적·인적 자원의 흡수와 이관이라는 절차를 따랐기에 내적으로는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 글은 사범대학의 설립과 운영에서 위와 같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의 역사를 개관하려고 한다. 사범대학의 전사(前史)를 이루는 두 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실제에 관한 종합적인 서술과 해석이 가능할 만큼 연구 성과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서술했다. 남아 있는 관련 기록과 자료들도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 추후 발굴과 복원 그리고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이들 두 사범학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말기에 해당하는 근대 개혁기의 교육 개혁으로 이루어진 사범학교의 설립과 운영, 이후 일제 강점기에 이루



출처: 정상윤(1974).

[그림 4-5-1] 경성사범학교 본관



출처: 정상윤(1974).

[그림 4-5-2] 경성여자사범학교 정문

어진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근대 개혁기에 만들어진 새로운 교원양성제도로 성립된 사범학교가 진화해 가는 과정 속에서 두 사범학교를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다루지 못하지만 일본에서 진행된 근대 교원양성제도의 수립과 정착 과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근대 개혁기에 새로운 법제를 만드는 데에 근대 일본의 경험과 제도 수립은 주요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상의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에 운영되었던 교원양성기관들은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일본인 대상으로도 운영되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학제에 의해 사범학교가 설립되고, 일제 강점기에 변화를 거치면서, 광복 직후 미군정 아래 사범대학이 신설되는 과정을 법제를 중심으로 개관한다. 그리고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의 운영과 그 실상에 대해 기록과 자료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리, 서술한다.

제1절 근대 개혁기의 사범학교

1) 사범학교 설립

조선사회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1894년 9월 18일(양력 10월 16일) 사범학교를[1]

1 사범학교의 설치 목적은 소학교 교원 양성이었다.

설치함으로써 근대적인 교원양성기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조선사회에서 관료가 되는 것은 사범(師範)으로서 국가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과(대과와 소과)에 합격하는 것이 교관직으로 임용되는 기본적인 조건이었다. 관료의 역할에는 교관의 직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즉, 관사일치(官師一致)의 원리에 의해 관료가 양성되고 등용되었다. 그러므로 사범학교를 별도로 설립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관직 체계에서 교관직이 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한성사범학교의 설립일인 1895년 5월 1일(양력 5월 24일)을 새로운 사범교육의 시작으로 간주해 왔다(김영우, 1987). 조선의 학부가 발의하고, 1895년 4월 16일 고종의 재가를 얻어 공포된 '한성사범학교관제'(칙령 제79호)에 따른 것이다. 이어서 7월 23일 '한성사범학교규칙'(학부령 제1호)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초를 마련했다고 본다.

그러나 1895년 '한성사범학교관제'가 마련되기 전인 1894년에 이미 한성에는 사범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894년 학무아문의 고시를 포함한 정부의 공식 문서,[2] 박정양의 일기, 당시 일본의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공문편안(公文編案)』 6, 1894. 9. 14; 『통서일기(統署日記)』 1894. 9. 14, 18; 김경미, 2009; 김성학, 2015]. 따라서 1894년에 운영되고 있던 사범학교가 '한성사범학교관제'에 의해 법제를 갖추게 되면서 1895년 5월 1일에 한성사범학교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교과 운영

학부는 1895년 7월 23일 '한성사범학교규칙'을 제정하여 관련 규정을 완비했다. 7월 19일에는 '소학교령'(칙령 145호)을 제정·공포하여, 소학교의 교원에 관한 일반 규정도 마련했다.

'한성사범학교규칙'에는 [표 4-5-1]과 같이 교수해야 할 학과목과 각 학과목의 교수 정도를 명시하고 있다. 본과는 수신, 국문 및 한문, 교육, 역사, 지리, 수학, 물리, 박물, 화학, 습자, 작문, 체조 등이었고, 속성과는 수신, 교육, 국문 및 한

2 사범학교 관제 등 핵심 공식문서들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표 4-5-1] 한성사범학교 설치 학과 및 학과목(1895)

학과	수업연한	학과목	학과목
본과	2년	수신	인륜도덕의 요지 및 그 교수법
		국문 · 한문	강독
		교육	내외 교육의 연혁 및 저명한 교육가의 전기로부터, 교육 및 교수의 원리, 원칙을 교수하고, 부속소학교에서 실지 수업의 방법을 연습함
		역사	본국 및 만국 역사
		지리	본국 및 만국의 정치지리와 지문(地文)의 초보
		수학	산술 및 대수, 기하의 초보와 그 교수법
		물리	물리 상의 긴요한 현상 및 정률(定律)
		박물	동식물의 생리와 위생
		화학	보통화학 상의 현상, 긴요한 원소 및 무기화합물의 성질
		습자	해행초(楷行草)의 삼체(三體) 및 그 교수법
		작문	일용서류 기사문 및 논설문
		체조	보통체조 및 병식체조
속성과	6개월	수신	인륜도덕의 요지 및 그 교수법
		교육	내외 교육사 및 저명한 교육가의 전기로부터 실지 수업을 연습함
		국문 · 한문	강독
		역사	본국 및 만국 역사 대요
		지리	본국 및 만국 지리 대요
		수학	산술
		이과	대의(大意)
		습자	해행초의 삼체 및 그 교수법
		작문	일용서류 기사문 및 논설문
		체조	보통체조

출처: 한성사범학교규칙(漢城師範學校規則, 1895).

문, 역사, 지리, 수학, 이과, 습자, 작문, 체조 등이었다.

수신, 국문 및 한문 과목은 물론, 새로운 교과목이라 할 수 있는 교육학이나 물리, 박물, 화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편제는 앞서 제정된 소학교의 학과목에 상응하여 편성된 것이다. '소학교령'(1895)에 따르면, 심상과(尋常科, 3년) 학과목은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로 하고 본국지리, 본국역사, 도화, 외국어, 재봉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고등과(2, 3년)는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본국지리, 본국역사, 외국지리, 외국역사, 이과, 도화, 체조로 하고, 재봉을 추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은 이러한 규정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사범학교 교육이 여전히 한학 중심이었고, 일본의 교과서를 번역한 초급 산술, 지리[萬國地誌], 역사[萬國歷史] 등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교육시론(教育時論)』 364, 1895].

초기 한성사범학교의 교육은 점차 교과서를 마련하고 교수를 초빙하면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갖추어 나갔다. 1897년 미국인 호머 베잘렐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가 부임하면서 새로운 역사 및 지리 교과서가 채택되었고 영어 과목이 추가되었다. 1903년에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김창제의 회고(김창제, 1933, 1936)에 따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 지리, 물리 등에 대하여 비상한 흥미와 열심"을 갖고 있는 학생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대수와 기하'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공전, 회전' 문제를 두고 교관과 밤새도록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신학문이 새로운 교과로 자리 잡아 갔다.

이 시기 교육학 교육에는 당시 한성에 거주하던 일본인 기무라 도모지(木村知治)가 편찬한 『신찬교육학(新撰教育學)』(1895)을 교재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거의 한문 문장에 가까운 한문현토체(漢文懸吐體)로 서술되었으며, 편찬과 간행에 학부의 관료가 협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과 2장이 서론과 총론이고, 3장 지육론, 4장과 5장이 덕육론, 6장이 체육론이다. 서론과 총론은 1890년대 일본에서 유행하던 독일의 요한 프리드리히 헤르바르트(Johann Friedrich Herbart) 교육학과 덕육 중심의 국가주의 교육론에 기초하고 있다. 각론은 1880년대 미국을 통해 수용된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의 『교육론』에 입각하여 구축된 이른바 삼육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삼육에 관련된 심리적인 요소와 교육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김성학, 2015). 이것은 당시 일본까지 수용되어, 변형된 서구의 교육학 지식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3) 입학과 졸업

'한성사범학교규칙'에 의하면 한성사범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은 본과(2년) 20~25세, 속성과 22~35세로 제한되어 있었다. 지원 자격으로는 학력 제한이 명

[표 4-5-2] 한성사범학교의 졸업자 수(1895~1905)

졸업 연도	이수과정	졸업자 수(명)
1895	속성과	37
1896	속성과	41
1897	속성과	44
1899	본과	26
1902	본과	9
1903	본과	24
1905	본과	23
계		204

출처: 김성학(2015).

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만 응시 원서에 별도로 학업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기재 항목으로는 국문(國文), 경전(經傳), 본국역사지리(本國歷史地理) 등에 대한 학업 정도를 서술하도록 했다. 한성사범학교는 개교에 앞서 1895년 4월 19일 정식으로 학생 모집 광고를 냈는데 입학시험 과목으로 본과는 '국문의 독서와 작문', '한문의 독서와 작문' 두 과목으로 하고 있으며, 속성과는 '조선지리'와 '조선역사'를 추가하고 있다.

학생들의 졸업 현황은 [표 4-5-2]와 같다. 졸업자는 대부분 소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그렇지만 교직 이외의 다른 부문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899년부터는 임용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졸업시험을 응시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후남, 2002).

제2절 일제 강점기의 사범교육

1) 통감부 시기의 한성사범학교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종래의 대한제국 학제가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표 4-5-3] 관립한성사범학교 졸업생 현황(1906~1911) (단위: 명)

연도	본과	교원임시양성과	강습과	속성과	계
1906	3	31	-	-	34
1907	-	32	-	-	32
1908	27	30	-	-	57
1909	-	29	31	-	60
1910	29	-	-	53	82
1911	23	-	-	65	88
계	82	122	31	118	353

출처: 김영우(1987).

1906년 8월 27일 '사범학교령'(칙령 제41호)을 제정하고, 이어서 '사범학교시행규칙'(학부령 제20호)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06년 9월 1일 한성사범학교는 관립한성사범학교로 개편되었고 시설 확충을 통해 1907년에는 면모를 일신했다. 본교사, 기숙사, 부속보통학교 등을 갖추고 도서, 기기, 표본 등의 교구도 완비하여, 당시 관료들이 '한국 제일류의 학교'로 평가하며 '관·공립 학교의 모범'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관립한성사범학교는 1909년 4월 19일 '사범학교령'(칙령 제51호)이 개정되고, 7월 5일에는 '사범학교령시행규칙'(학부령 제3호)이 개정되면서 부분적인 변화를 겪었다.

관립한성사범학교의 교과목 편제나 교수요목 등은 이전보다 체계화되었다. 본과(3년 과정)의 학과목은 수신, 교육, 국어, 일어, 역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박물, 도화, 음악, 체조 등이었으며, 필요에 따라 농업, 상업, 수공 중에서 몇 과목을 추가할 수 있었다. 이전에 없었던 도화, 음악 등이 추가되어 보통학교의 교과목에 상응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리고 초빙한 일본인 교관(교수)에 의해 교육학과 교수법도 본격적으로 가르쳤다. 시대 상황에 따라 외국어가 폐지되고 일본어의 비중이 커지고, 실업 교과목이 새롭게 등장했다.

관립한성사범학교는 관련 규정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정규의 본과 이외에도 교원임시양성과, 속성과, 강습과를 설치하여 운영했다(교원임시양성과규칙, 1906. 5. 17; 강습과규정, 1908. 9. 14; 속성과규정, 1909. 10. 20). 이를 통해 전국에 걸쳐 증설되는 보통학교의 교원 수요에 충당하고자 했다. 이 시기에 배출된 졸업생 현황은 [표 4-5-3]과 같다.

2) 고등보통학교 부설 형태의 교원양성 과정

일제 강점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1년 8월 23일 '조선교육령'(칙령 제229호)을 제정하여 관립한성사범학교를 폐지했다. 이어서 1911년 10월 20일 '고등보통학교규칙'(부령 제111호)과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부령 제112호)을 제정하고 사범과와 교원속성과를 부설하여 교원을 양성하도록 했다.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독립적인 학교를 운영해 오던 사범학교 제도를 폐지하고 중등학교에 단기간의 양성과정을 부설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1910년대 교원양성교육은 단기간의 수업연한으로 여러 가지 양성과정이 운영되는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보통학교(조선인 학생 대상) 교원과 소학교(일본인 학생 대상)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이 달랐으며, 보통학교의 교원이라도 조선인 교원과 일본인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이 각각 달랐다. 이렇듯 다양한 1910년대 교원양성 과정은 [표 4-5-4]와 같다.

1911년 10월 경성과 평양의 고등보통학교에 교원속성과가 설치되었다. 1913년 4월에는 이 두 고등보통학교와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사범과가 신설되고 교원속성과는 폐지된다. 또한 1911년 10월 경성고등보통학교에 보통학교 교원이 될 조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성사범학교를 계승한 임시교원양성소를 부설했다. 임시교원양성소는 1913년 3월 보통학교 교원이 되고자 하는 일본인과 조

[표 4-5-4] 1910년대 교원양성 과정 현황

대상	양성 과정(기관)	설치 기관	수업연한	비고
보통학교 교원이 될 조선인	임시교원양성소*(1부)	경성고등보통학교에 부설	3년	1911. 10~1916. 5
	교원속성과	고등보통학교에 부설	1년 이내	1911. 10~1914. 3
	사범과	고등보통학교에 부설	1년	1913. 3~1926. 3
	임시교원양성강습소(회)	전국 각 도	6월, 1년	1920. 5~1922. 3
보통학교 교원이 될 일본인	임시교원양성소*(2부)	경성고등보통학교에 부설	1년	1913. 4~1921. 3
	임시여자교원양성소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부설	1년	1919. 4~1922. 3
소학교 교원이 될 일본인	임시소학교교원양성소	조선총독부(경성)중학교 부속	1년	1911. 5~1921. 3

주: *임시교원양성소는 1911년 이전의 본과를 이어받아 설치되었고, 1913년 1부(조선인 교원)와 2부(일본인 교원)로 개편했으며, 1914년 1부를 폐지하고 2부만 존치하여 일본인 교원을 양성했다. 1921년 조선총독부 사범학교 설립으로 폐지되었다.

출처: 안홍선(2004).

선인을 동시에 양성하는 기관으로 개편되었다가, 1916년 5월에는 보통학교 교원이 되려는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 외에도 지방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각 도에 임시교원강습소(또는 강습회)를 설치하여 보통학교 교원이 될 조선인을 대상으로 단기 과정을 운영했다. 그리고 보통학교 교원이 되려는 일본인 여성을 위해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임시여자교원양성소를 부설했으며, 일본인이 다니는 소학교에서 근무할 일본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임시소학교교원양성소를 운영했다.

3) 관·공립 사범학교의 설립과 운영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자문기관으로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선 교육계의 형식적인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1922년 '조선교육령'을 개정(칙령 19호)했다. 여기에서 새로운 학제 개정안이 구상되고 있었는데, 특히 사범학교를 독립적인 교육기관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서 1922년 2월 23일 '사범학교규정'(부령 17호)을 제정하여 사범학교의 기본적인 학제를 마련했다.

이것은 그동안 고등보통학교에 부설된 단기 양성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던 사범교육이 독립적인 관립과 공립의 사범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중등학교의 교원 양성에는 관심이 없었다. 관립 사범학교는 조선총독부 직할 기관으로서 서울(경성)에 설립되었고, 지방에는 도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공립 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표 4-5-5]는 당시 관립 사범학교와 지방 공립(도립) 사범학교의 목적과 학과 편제 등을 정리한 것이다.

경성사범학교는 1922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제학교관제'(칙령 151호)에 따라서 유일한 관립 사범학교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1921년부터 조선총독부가 운영해온 조선총독부 사범학교를 개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1921년 4월 19일 '조선총독부사범학교규칙'(부령 67호, 1921. 4. 19)을 제정하여 당시 경성중학교에 부설되어 있던 교원양성소를 이관받아 사범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학교는 일본인 아동이 다니는 소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이것을 소학교뿐만 아니라 보통학교 교원이 되고자 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양

[표 4-5-5] 관립 사범학교와 공립(도립) 사범학교의 목적과 편제(1922)

	관립 사범학교	공립(도립) 사범학교
목적	소학교 교원과 보통학교 교원이 될 자를 양성	보통학교 교원이 될 자를 양성
편제	보통과(5년) 및 연습과(1년): 제1부(소학교 교원)와 제2부(보통학교 교원) *연구과, 강습과 설치 가능 *여성의 경우 보통과 1년 단축	특과(2년 또는 3년): 제2부(보통학교 교원) *연습과, 연구과는 설치할 수 없음 *강습과 설치 가능 *1925년 이후 모두 3년제
입학	보통과: 심상소학교 졸업자 또는 조선총독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연습과: 보통과를 수료한 자, 중학교 혹은 수업연한 4년의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특과: 고등소학교(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 또는 조선총독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졸업	본과 정교원(1종 훈도)	심상과 정교원(2종 훈도)

출처: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 1922); 사범학교규정(師範學校規定, 1922).

성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관립 사범학교인 경성사범학교와 지방의 공립 사범학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관립 사범학교는 소학교 교원과 보통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각각 제1부와 제2부를 두었으며, 수업연한 5년의 보통과와 수업연한 1년의 연습과(演習科)를 연계하여 운영했다. 보통과는 심상소학교(6년)를 졸업한 정도의 학력을 지닌 자가 입학했으며, 연습과는 보통과를 수료하거나 중학교(5년) 졸업 정도의 학력을 지닌 자가 입학했다. 이에 비해 지방의 공립 사범학교는 보통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수업연한 3년의 특과만을 설치했고, 보통학교 고등과(2년)를 졸업한 정도의 학력을 지닌 자가 입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습과와 연구과를 둘 수 없었다. 이와 같이 1920년대 사범학교는 관립 사범학교와 공립 사범학교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교원양성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이원 체제였다.

관립과 공립 사범학교 체제에서 학교에 따라 교원 자격에 차이가 있었으며, 일반적으로는 제1종, 제2종, 제3종 등으로 나뉘었다. 관립 경성사범학교는 보통과와 연습과가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졸업자에게 소학교 본과 정교원(제1종 훈도)의 자격이 인정되었다. 도립의 공립 사범학교에는 특과만이 설치되어 졸업자에게 심상과 정교원(제2종 훈도)의 자격이 주어졌다. 이 외에 단기 양성 과정을 마친 경우는 준교원(제3종 훈도)의 자격이 주어졌고, 전과 교원와 촉탁 교원 등이 있었다(소학교및보통학교교원시험규칙, 1916. 10. 13; 안홍선, 2015).

[표 4-5-6] 공립 사범학교 재학생 현황(1928) 단위: 명

	특과			합계	비고
	1년	2년	3년		
경기	48	51	90	189	강습과(25명)
충북	30	29	29	88	
충남	30	41	49	120	강습과(20명)
전북	33	41	40	114	
전남	51	51	46	148	
경남	90	69	62	221	
경북	74	76	71	221	강습과(27명)
황해	40	39	39	118	
평남	40	31	29	100	
평북	30	29	40	99	
강원	26	30	29	85	
함남	35	38	28	101	
함북	30	30	26	86	
합계				1,690	강습과(72명)

출처: 『조선제학교일람(朝鮮諸學校一覽)』(1928).

1928년 현재 공립 사범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현황은 [표 4-5-6]과 같다. 1926년 관립 경성사범학교에는 보통과(5년) 492명, 연습과(1년) 280명이 재학 중이었다(『조선제학교일람』, 1926).

4) 사범학교의 체제 정비(1929~1945)

조선총독부는 1929년 4월 18일 '조선교육령'의 일부를 개정(칙령 제82호)하고, 이어서 '조선총독부제학교관제'(칙령 제83호)와 '사범학교규정'(부령 제35호)을 개정하여 사범학교 체제를 바꾸게 된다. 이것은 1928년 6월부터 임시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수정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관립 경성사범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지방의 13개 공립 사범학교는 모두 폐지했다. 다만 재학생을 위해 1931년 3월까지 잠정적으로 유지되

[표 4-5-7] 관립사범학교 현황(1942)

	설립 연도	학급 수 (개)	교직원 수(명)			학생 수(명)		
			조선인	일본인	계	조선인	일본인	계
경성사범학교	1922	25	10	44	54	459	641	1,100
대구사범학교	1929	18	6	26	32	586	247	833
평양사범학교	1929	18	6	26	32	591	119	710
경성여자사범학교	1935	18	12	31	43	430	479	909
전주사범학교	1936	15	5	30	35	651	48	699
함흥사범학교	1937	15	3	29	32	624	80	704
공주여자사범학교	1938	13	6	23	29	321	364	685
광주사범학교	1938	16	5	23	28	632	62	694
춘천사범학교	1939	11	5	23	28	518	27	545
진주사범학교	1940	12	1	24	25	580	46	626
청주사범학교	1941	8	2	14	16	376	24	400
신의주사범학교	1942	8	1	8	9	265	-	265
총합		177	62	301	363	6,033	2,137	8,170

출처: 『조선제학교일람』(1942).

었다. 다른 한편, 대구와 평양에 관립 사범학교를 신설하여 운영했다. 신설되는 관립 사범학교에는 심상과를 설치했다. 심상과는 경성사범학교의 보통과처럼 보통학교 졸업자가 입학하여 5년 연한의 교육을 받는 과정이었다. 심상과는 제2부만 설치하여 보통학교의 교원이 될 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한정했고, 졸업 후에는 심상과 정교원(제2종 훈도) 자격만을 부여했다.

이제 관립 사범학교와 공립 사범학교로 이원화되었던 양성 체제를 3개의 관립 사범학교 체제로 단일화한 것이다. 이후 3개의 관립 사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원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자 이들 사범학교 세 곳에 단기간(6개월 혹은 1년) 강습과를 설치하고 정원 증원을 통해 수요를 충당했다.

그러나 결국 사범학교를 다시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왜 3개 관립 사범학교 체제로 축소하여 운영했는지는 추후 검토해야 할 문제다. 우선 1935년 경성여자사범학교를 설립한 것을 필두로 매년 관립 사범학교를 증설해 나갔다. 1936년 전주사범학교, 1937년 함흥사범학교, 1938년 공주여자사범학교와 광주사범학교, 1939년 춘천사범학교, 1940년 진주사범학교, 1941년 청주사범학교,

1942년 신의주사범학교, 1943년 대전사범학교, 해주사범학교, 청진사범학교, 그리고 1944년에는 원산여자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광복 직전까지 전국에 모두 16개 남·여 관립 사범학교가 운영되었다.

이후에도 관립 사범학교의 운영은 몇 차례에 걸쳐 제도적인 변화를 겪는다. 1933년에 연습과의 수업연한이 2년으로 연장되어, 경성사범학교의 경우는 전문학교 수준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1938년 '조선교육령'(칙령 103호)이 개정되어 제1부(소학교 교원 양성)와 제2부(보통학교 교원 양성)로 나뉘었던 과정이 하나로 통합·운영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1943년 '조선교육령'(칙령 113호, 1943. 3. 8)의 개정에 따른 변화다. 이후 '사범학교규정'(부령 62호, 1943. 3. 27)이 개정되어, 사범학교가 4년의 예과(豫科) 과정과 3년의 본과(本科) 과정으로 구성된 전문학교로 승격되도록 했다.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는 1943년 본과를 갖춘 전문학교로 승격되었고, 1944년에는 대구사범학교와 평양사범학교가 전문학교가 되었다. 그 외의 12개 사범학교는 광복 직전까지도 본과(혹은 연습과)가 설치되지 않았고, 심상과와 일부 강습과만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제3절 신국가건설기의 사범대학 설립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여 1945년 9월 9일 군정 실시를 포고하고 9월 11일 군정 업무를 시작했다. 학무국의 미군정 책임자는 락카드(E. N. Lockard) 대위였다. 학교를 재개하는 것과 일본인 인원을 대체할 한국인 채용이 당면 과제였다. 미군정은 각급의 교육기관을 폐쇄하고 통제권을 장악한 후 재개하고자 했다. 교원과 교육 관계자는 자격을 심사하여 재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갔다.

먼저 미군정 학무국은 1945년 9월 24일부터 모든 초등학교를 개학하고, 10월 1일부터는 중등학교 이상 각급 학교를 개학하도록 했다. 사범학교에 대해서는 "남녀 사범학교 본과는 중등교원 양성기관으로 하고, 학생을 편입 또는 모집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제시했다(『서울신문』, 1945. 9. 31). 일제 강점기에 초등교원을

양성했던 사범학교의 본과를 중등교원 양성기관으로 재편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 남한에는 10개의 사범학교가 있었고, 그 가운데 경성사범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대구사범학교에만 본과 과정이 있었다. 이들 학교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적과 기능이 초등교원 양성에서 중등교원 양성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 미군정 학무국 기록에 그 명칭이 'Normal School'에서 'Normal College'로 바뀌고 있다. 또한, 1946년 2월 학무국장 락카드는 한시적으로 유지될 새로운 교육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대학 수준의 학교를 'great school',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학교를 'normal great school',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학교를 'normal school'로 명명했다(정태수 편, 1992). 이들 학교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 실태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미군정은 새로운 교육제도를 준비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조선교육심의회를 조직하고, 1945년 11월 13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1945년 12월 5일 제2분과위원회(교육제도)가 결의한 내용에 따르면 중등 수준에 사범학교를, 고등 수준에 사범대학을 포함하고 있었다(『자유신문』, 1945. 12. 7). 곧 이어 '현행 교육제도에 대한 임시조치안'을 발표하여, 당시 제도를 1946년 8월까지 연장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는 1946년 9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서 사범학교 본과 재학자는 신제 사범대학의 상당 학년에 편입할 수 있었다(『동아일보』, 1945. 12. 5). 1946년 초 조선교육심의회 제7분과위원회(사범교육)는 최종적인 심의 내용을 학무국에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범교육의 목적은 민주주의와 애국심, 국제협력에 기초한 교육제도 안에서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지식, 기술을 완전하게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2. (a) 초급중학교 수준의 사범학교 폐지
   (b) 각 도에 고급중학교 수준의 남녀 사범학교 각 1교씩 설립
   (c) 사범대학 설립
   (d) 사범학교와 사범대학에 단기의 교사 양성 과정 설치
   (e) 모든 사범학교에 부속 유치원과 부속 초등학교 설립, 사범대학에 부속 유치원, 부속 초등학교, 부속 중등학교 설립
3. 월 25원씩 재학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장학금제도로

대체하며, 현재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이를 계속 받게 할 것.

이와 같이 조선교육심의회와 사범교육분과위원회는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학교와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대학이라는 이원 체제를 제안했다. 미군정 학무국은 1946년 3월 7일 사범대학의 신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조선일보』, 1946. 3. 8). 사범대학은 6년간의 중등교육과 연결되는 고등교육 단계의 4년제 대학으로 1946년 9월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군정청 법령 제102호)이 제정됨으로써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가 폐지되고, 그 인적 · 물적 자원을 이관받아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신설되었다.

제4절 경성사범학교

1) 설립과 운영

경성사범학교는 1921년부터 조선총독부가 운영하던 조선총독부 사범학교를 1922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개편한 것이다.

조선에서 독립된 교원양성기관의 설립 문제는 1919년 일본의 제국의회에 발의되어, 1921년 초부터 추진되었다. 1921년 4월 18일 '조선총독부사범학교관제'를 발표하고, 다음날 '조선총독부사범학교규칙'을 제정했으며, 평양중학교장 아카키 만지로(赤木萬二郎)를 교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경성중학교 부속 교원양성소 학생 31명을 연습과로 편입시키고, 경성제1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학생 74명을 받아들여 5월 5일에 수업을 시작하고, 보통과 학생 86명을 선발하여 수업을 듣게 함으로써 사범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바로 다음해인 1922년 초에 '조선교육령'(칙령 제19호, 1923. 2. 4)을 개정하고, 이어서 '사범학교규정'(부령 제17호, 1923. 2. 23)을 제정하여,

‘조선총독부제학교관제’(칙령 제151호, 1923. 3. 31)를 발표했다. 이러한 법제의 변화에 따라 4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 사범학교를 경성사범학교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경성사범학교는 공식 연혁에서 1921년을 설립연도로 보고, 5월 5일을 개교기념일로 삼고 있다.

1921년 2월 22일부터 평양중학교 교장이던 아카키 만지로가 사범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를 위촉받아 진행했던 점에서, 이 두 학교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닌 연속성을 지닌 학교로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은 6년제 초등교육의 보급이 완성단계에 있었는 데 비해, 조선은 4년제 보통학교를 통한 초등교육의 보급이 초기단계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의 명칭, 교원 자격과 교과과정의 수준 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서 법제의 제정과 정비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성사범학교는 “특히 덕성의 함양에 힘쓰고, 소학교 교원이 될 자와 보통학교 교원이 될 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초대 교장 아카키 만지로는 “그 이면[剖貳]의 목적으로 널리 보통교육에 관한 제반의 연구를 수행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또 연구과를 특설하여 장차 중등교원 양성을 예비하고자 했던 것에서, 일본의 고등사범학교 수준의 학교 건립에 대한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赤木萬二郎, 1922).

경성사범학교는 수업연한 5년의 보통과와 수업연한 1년의 연습과를 두었다. 이 두 과정은 긴밀하게 연계하여 운영되었다. 보통과는 심상소학교(6년)를 졸업한 정도의 학력을 지닌 자가 입학했으며, 연습과는 보통과를 수료하거나 중학교(5년) 졸업 정도의 학력을 지닌 자가 입학했다. 연습과의 경우 1933년 이후 2년제로 운영되었다. 경성사범학교 연습과는 5년 정도의 중등교육을 마치고 입학하기 때문에 전문학교 수준으로 인정받았다.

경성사범학교는 1943년 3월 ‘조선교육령’의 개정, ‘사범학교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문학교 수준의 초등교원 양성기관으로 개편되었다. 예과와 본과를 갖춘 전문학교로 승격된 것이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초기부터 다른 사범학교와 구분되는 전문학교로 인정받아 왔다.

경성사범학교는 학교 시설과 재정,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운영 체제에서 특별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성사범학교는 지도적 위치에 있

는 규정적 성격의 기관이자, 동시에 다른 모든 사범학교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기관이었다.

2) 교과과정과 실습

(1) 교과과정

교기에 새겨진 '대애(大愛)'와 대강당에 걸려 있던 액자 속에 쓰인 '대애지순(大愛至醇)'은 경성사범학교의 교육 이념이자 일종의 교훈에 해당한다. 이것은 초대 교장인 아카키 만지로가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는 전통적인 사도(師道)의 의미에 자신의 일본 국체에 대한 관념, 자신이 수용한 서구의 근대적인 교육사상이 결합된 것이다. 대애 또는 대애지순이 의미하는 모호함은 당시 천황주의 제국 이념에 입각한 국가적 관심과 기대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신념과 이상이라는 가치 아래 학생들의 의식과 행동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 많은 졸업생의 회고에서 이 교훈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등 자신의 학업과 교사 의식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자부하고 있었다. 이 교훈의 복합적인 의미가 구체적인 방침으로 드러난 것이 다음의 '사도 3조'다.

1. 사도를 현팽(顯彭)하고 대애지순의 교풍(校風)을 수립하여, 감은봉사(感恩奉仕)의 정신을 발양하는 데 힘쓴다.
2. 교원심득(教員心得)의 요지를 체현하여, 충용(忠勇)하고 효순(孝順)한 신민(臣民)을 육성하는 데 힘쓴다.
3. 품행을 숭상하고 세계의 공도(公道)를 존중하는 대국민(大國民)의 금도(襟度)를 포회(抱懷)한 인사를 육성하는 데 힘쓴다(『경성사범학교총람』, 1929).

이와 같이 '충용(忠勇)하고 효순(孝順)한 신민(臣民)을 육성'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이른바 사도의 바른 길로 규정하고 있다.

사범학교 보통과는 기본적으로 중등학교였다. 교육과정에 있어 당시의 고등보통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사범학교 보통과에는 음악(창가)과 실업 과목이 전 학년에 걸쳐 편제되었고, 4학년부터 교육학 과목이 추가되었으며, 상대

적으로 영어 과목의 수업 시수가 적게 편성되었다. 그리고 고등보통학교 5학년에 부과된 법제 및 경제 과목이 사범학교에서는 연습과에 편성되어 있었다. 조선어의 경우 제1부(소학교 훈도 과정)에 부과되고, 제2부(보통학교 훈도 과정)에는 일본인에게는 조선어를, 조선인에게는 조선어 및 한문을 부과했다. [표 4-5-8]은 보통과와 고등보통학교 학과목 및 주당 교수 시수를 비교한 것이다.

당시 일본의 사범학교는 고등소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한 자를 곧바로 본과에 수용하여 처음부터 교원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비해 조선에서는 대체로 중학교(고등보통학교)의 교과과정에 준하는 보통과를 설치하여 일반 교양을 습득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교원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하도록 했다. 우선 보통과 5년의 교육으로 기초 소양을 배양하고 더불어 고등보통교육을 완료하게 하고, 그 위에 1년의 연습과를 통해서 본래의 목적인 사범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보통과가 일종의 예비과라면 연습과는 본과에 해당한다. 본격적인 교원양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편성한 과정이던 경성사범학교 연습과의 교과과정은 [표 4-5-9]와 같다.

경성사범학교 학과목 편제에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덕성 교육의 문제다. 개정된 '조선교육령'(1922)에서 사범학교는 학생들의 "특히 덕성의 함양"에 힘써야

[표 4-5-8] 사범학교 보통과와 고등보통학교 학과목 및 교수 시수(1922) 단위: 시수

	학년	수신	교육	국어 및 한문	조선어	영어	역사 지리	수학	박물	물리 및 화학	도화	음악 (창가)	체조	실업	법제 및 경제	계
사범학교 보통과	1	1	-	8	2(3)	5	3	4	2	-	1	1	3	1	-	31(32)
	2	1	-	8	2(3)	5	3	4	2	-	1	1	3	1	-	31(32)
	3	1	-	6	2(3)	6	3	5	2	2	1	1	3	1	-	33(34)
	4	1	2	5	2(3)	4	3	4	2	4	1	1	3	1	-	33(34)
	5	1	3	5	2(3)	4	3	4	-	4	1	1	3	2	-	33(34)
고등보통학교	1	1	-	8	3	6	3	4	2	-	1	1	3	-	-	32
	2	1	-	8	3	7	3	4	2	-	1	-	3	-	-	32
	3	1	-	6	2	7	3	5	2	2	1	-	3	-	-	32
	4	1	-	5	2	5	3	4	2	4	1	-	3	2	-	32
	5	1	-	5	2	5	3	4	-	4	1	-	3	2	2	32

주: ( )는 제2부 학생.

출처: 사범학교규정(1922); 고등보통학교규정(1922).

[표 4-5-9] 사범학교 연습과 학과목 및 주당 교수 시수(1922) 단위: 시수

학과목	남자	여자	학과목	남자	여자
수신	2	2	법제 및 경제	2	-
교육	8	8	도화, 수공	3	3
국어 또는 국어 및 한문	3	3	재봉	-	3
조선어 또는 조선어 및 한문	2(4)	2(4)	음악	2	2
역사, 지리	2	2	체조	3	3
수학	2	3	농업 또는 상업	2	-
박물 또는 물리 및 화학	3	3	계	34(36)	34(26)

주: ( ) 안은 제2부 학생.
교육실습은 적합한 시기에 약 10주간 부과.

출처: 사범학교규정(1922).

한다고 규정하며, '사범학교규정'(1922)에서도 학생 교양의 요지는 "언제나 덕성의 함양"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것은 근대 일본의 사범학교 모델을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모리 아리노리(森有禮)가 중심이 되어 제정한 '사범학교령'(1886)에서 지식교육보다는 도덕교육을 강조했던 것에 연원을 두고 있다. 이른바 교원의 '3기질'[순량(順良), 신애(信愛), 위중(威重)] 함양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질(氣質)이라는 말은, 1897년 '사범교육령'을 개정하면서 덕성(德性)이란 표현으로 바뀌어 강조되었다. 이러한 덕성교육은 일반적인 교양 교과가 아니라 의례와 훈육의 과제였다. 이것은 치밀하게 의식화(儀式化)되고 일상화된 학교 의례와 규범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범학교의 보통과와 연습과의 교육과정은 이후에도 '조선교육령'이 부분적으로 개정되면서 변화되었다. 1929년에는 학과목으로 직업과가 추가되고, 1933년에는 공민과(公民科)가 추가되었으며, 연습과(을)의 수업연한이 2년으로 연장된다. 1938년에는 연습과(갑)의 수업연한도 2년이 되고, 제1부와 제2부의 구별이 폐지된다. 한편 1943년에는 예과(4년)와 본과(3년)로 개편되어 전문학교로 승격되었으며,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었다. 1938년의 사범학교 학과목과 주당 교수 시수 현황을 나타낸 [표 4-5-10], [표 4-5-11]에서 당시 경성사범학교의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10] 사범학교 보통과 학과목 및 주당 교수 시수(1938) 단위: 시수

구분	수신	공민과	교육	국어 한문	조선어	역사 지리	외국어	수학	이과	직업	도화 수공	음악	체조	계
1년	2	-	-	8	2	3	3	4	2	2	2	1	5	34
2년	2	-	-	8	2	3	3	4	2	2	2	1	5	34
3년	2	-	-	6	2	3	2	5	4	2	2	1	5	34
4년	1	2	1	5	1	2	2	4	6	3	1	1	5	34
5년	1	2	3	5	1	2	2	4	4	3	1	1	5	34
계	8	4	4	32	8	13	12	21	18	12	8	5	25	170

출처: 사범학교규정(1938).

[표 4-5-11] 사범학교 연습과 학과목 및 주당 교수 시수(1938) 단위: 시수

구분	수신	공민과	교육	국어 한문	조선어	역사 지리	수학	이과	직업	도화 수공	음악	체조	계
1년	2	1	6	4	2	2	2	2	4	2	2	5	34
2년	2	1	6	4	2	2	2	2	4	2	2	5	34
계	4	2	12	8	4	4	4	4	8	4	4	10	68

출처: 사범학교규정(1938).

(2) 교육학 교육

경성사범학교에서는 교육학을 보통과에서부터 가르쳤다. 교육학의 기초 교과에 해당하는 교육사, 심리학, 윤리학 등이 그것이다. 연습과는 교육학통론, 교수법, 정신검사법, 논리, 보육법, 학교위생 및 교육, 병리, 교육법규, 교육연구 등이었고, 학교 현장과 실제에 관련된 과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교수 시수는 연습과의 경우 주당 35(37)시간 중 약 8시간이었다.

교육학 교과목은 심리학, 논리학, 교육사, 교육학 등 이론적 교과목과 교육제도, 학교관리, 학교위생, 교수법, 정신검사법, 보육법, 교육 실제에 관한 제 문제, 교육에서의 심리학의 응용 등 다양한 교육 실천에 관한 교과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과목 구성에서 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차 이론적 교육학 일반에서 교육 실천과 관련된 교육학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9년의 경우 보통과와 연습과를 합쳐서 교수 시수를 비교해 보면, 이론적 교과(심리학, 논리학, 교육학, 교육사 등)가 11시간, 교육 실천 교과(교육제도, 학교관리, 학교위생, 교육 실제에 관한 제

[표 4-5-12] 경성사범학교 교육학 교과목의 편성과 주당 교수 시수(1934)

편성		학년	학과과정	교수 시수
보통과		4	교육사, 논리학	2
		5	교육사, 교육심리학	3
연습과(남)	갑	1	교육학통론, 교수법, 정신검사법, 논리, 보육법, 학급위생 및 교육, 병리, 교육법규, 교육연구	7
	을	1	교육학통론, 심리학, 논리학, 교육사	6
		2	교육학통론, 심리학, 논리학, 교육사, 각과 교재연구, 학교위생, 보육법, 교육병리, 교육법규	6
연습과(여)		1	교육학통론, 심리학, 논리학, 교육사	6
		2	교육학통론, 심리학, 논리학, 교육사, 각과 교수법, 학교위생, 보육법, 교육병리, 교육법규	6
강습과(남)			교육학통론, 교육사, 교수법, 심리학, 논리, 학교위생, 관리법	7

출처: 『경성사범학교총람(京城師範學校總覽)』(1934).

[표 4-5-13] 경성사범학교 교육학 교과목의 편성과 주당 교수 시수(1939)

편성		학년	학과과정	교수 시수
보통과		4	심리학	1
		5	심리학 논리학	2 1
연습과	갑	1	교육학 근세교육사	3 3
		2	교육제도, 학교관리, 학교위생 교육사 교육 실제에 관한 제 문제 교육에서 심리학의 응용	3 1 1 1
	을	1	교육학 심리학 논리학	2 3 1
		2	근세교육사 교육제도, 학교관리, 학교위생 교육 실제에 관한 제 문제	3 2 1
강습과			심리학 교육학 및 보육법 교육사 교육제도, 학교관리, 학교위생	2 2 2 1

출처: 『각과학습지도강요(各科學習指導綱要)』(1939); 오성철(2000: 255) 재인용.

문제, 교육에서의 심리학의 응용 등)가 5시간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교육 실천과 관련된 교과는 주로 연습과 2학년에 배정되었다. 따라서 교과의 구성에서 보면 기본적이고 이론적인 교과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3) 실습

경성사범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육실습은 중요한 부분이다. 학생들의 교육실습 기간은 10주였다. 남자 연습과는 1934년부터 12주로 연장되었다. 이 기간에 사범학교 학생들은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조밀한 일정을 감당해야만 했다. 학생들은 매일 연습록(演習錄)을 기록해야 했고, 수업에 필요한 직관 교수용 교구[教辨物]를 제작해야 했다. 실제로 담당하는 모든 수업에 대해서는 매 시간의 교안[指導案]을 미리 작성해야 했다. 학생들은 학과 수업지도와 관련한 것 외에도 양호와 학교 행정의 업무 등도 실습했다. 학교 비품 취급, 출석부, 성적고사부, 통신부, 학적부, 성적일람표, 개성조사부, 조행(操行)조사부, 당번일지, 게시기록, 신체검사표, 각종 통계보고 등 실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행정 실무에 익숙하도록 지도받았다. 실습 기간 동안 이러한 모든 활동에 대해 지도학급의 담임 훈도는 인물소견(人物所見)을 포함한 평가를 했다. 그리고 교생 실습 동안의 연구와 성과들은 전람회와 발표회 형식으로 보고되었다(『경성사범학교총람』, 1929).

교육실습에서는 수업지도, 일반적인 학교 행정업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습과 훈련이 이루어졌지만 무엇보다도 수업지도가 중심이었다. 학생들은 지도 학급의 담임 훈도에게 지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급 담임의 훈도가 진행하는 수업도 참관했다. 이것은 부속학교의 훈도마다 각기 전공으로 하는 학과목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성사범학교 부속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 수업도 참관했다. 나아가 부속학교에서는 교생의 수업지도는 물론이고 모범적인 수업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수업도 이루어졌다. 특히 지도 수업은 보통학교 각 학과목의 주임 훈도가 교생 전원을 참관하게 하여 각과 수업의 요지와 실제를 지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수업은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하기 위한 수업으로써 여기에는 사범학교 교생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이 참관했으며, 이후에 비평회도 진행했다. 실습 교생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이처럼 부속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범적인 수업을 참관하며, 자신들이 진행하는 실제 수업을 연구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진행하는 실제 수업을 위해서 미리 교안[指導案]을 작성하고 지도 학급 담임 훈도의 검열을 받도록 했다. 당시 사범학교 학생들은 실습 과정에서 부여되는 여러 과제나 일정 가운데 교안 작성에 대단히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3) 학교 생활

(1) 학교 의례와 규율

일제 강점기의 학교 교육은 교과 이외에 학생들의 생활과 행동을 규율하기 위한 활동이 엄밀하게 규정되어 있고, 또 엄격하게 준수되었다. 이것은 훈육 또는 훈련으로 명시되어 독자적인 교육 활동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사범학교 교육은 이 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경성사범학교는 교풍의 진작, 질서 및 풍기의 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종류의 규정이 있었다. '경성사범학교규정'(1929)에는 '경성사범학교규칙' 이외에도 60여 개에 달하는 일반 규정과 각 학교 부서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다. 그 가운데 학생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는 9개의 각종 심득(心得)이 포함되어 있다. 학칙(學則), 규정(規定), 심득 등의 순서로 내려오면서 학생 행동에 대한 미시적인 지침까지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포함되지 않는 행동은 없다고 볼 만큼 포괄적이며 상세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 자세, 용의, 행동을 넘어서서 정서와 생각까지를 통제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그 한 예로 '보통 교실에서 지켜야 할 학습심득(學習心得)'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 제7조 수업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에 따라 정숙 민활하게 교실에 출입한다.
> 제8조 수업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1. 심신을 곧게 하고 허리를 깊게 하여 앉는다.
> 2. 양발은 곧게 마루를 디디고, 양손은 가볍게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 3. 단전에 힘을 모아 학습에 전념한다.
> 4. 책을 읽거나 글씨를 쓸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한다.
> 5. 학용품 및 기타 휴대품은 바르게 정해진 위치에 놓는다.

6. 질문, 응답 등을 할 때는 오른손을 들어 교관의 지명을 기다리고, 활발하게 기립하여 그 언어는 명석하게 한다.
7. 교과서는 정중하게 취급하고 교관의 명이 없는 한 그것에 글씨를 쓰지 않는다.
8. 필기장에 과업의 요점을 적기해 놓고 복습의 자료로 삼는다.
9. 공연히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지식을 확실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0. 수업을 마칠 때는 민활하게 학용품을 정리한다.

(『경성사범학교총람』, 1929, 1934)

학생들의 행동과 생활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학생 조직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학생 조직은 학우단(學友團)과 요우단(寮友團)이라는 두 조직이 있었다. 두 조직 모두 전체 학생을 구성원으로 했으며, 위계적인 특성이 있다. 학우단은 학교와 교실에서, 요우단은 기숙사에서 질서 유지와 통제의 기제로 활용되었다.

학우단의 경우 각 학년 단위로 편제되었다. 제1학우단은 남자 연습과 학생, 제2~6학우단은 보통과 학생, 제7학우단은 여자 연습과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각 학우단에는 학년을 대표하여 급생장(級生長) 1명을 두고, 각 학급에는 조생장(組生長) 1명과 임원[役員]으로 몇 명의 급위원(級委員)을 두었다. 급생장은 조생장들이 매주 윤번제로 담당했으며, 조생장과 임원은 학급의 학생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학교장이 임명했다. 요우단의 경우 총 책임을 맡는 생도감(生徒監)이 있고, 교관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했다. 각 요(寮)마다 요생장(寮生長)과 부요생장(副寮生長)을 두었고, 각 실(室)에는 실장(室長)을 두었다.

학우단과 요우단은 편제와 운영에서 차이가 있었다. 학우단이 동급생 간에 위계 구조로 학교의 규율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면, 요우단은 학년 간의 위계 서열 위에서 일상적인 생활에 밀착되어 규율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학교와 교실, 기숙사의 운영, 질서 유지나 풍기 확립을 위해 학생들의 자치 조직이 활용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과 활동은 통학생들에게도 적용되었다. 통학생들은 통학생도단(通學生徒團)을 구성하고 분단(分團)으로 편성되어 각 분단장(分團長)이 통솔했다.

학교 의례와 의식은 학생들의 행동과 생활을 규율하는 중요한 기제였다. 어영

[표 4-5-14] 경성사범학교의 학사력(1934)

월	일	행사 내용	월	일	행사 내용
4	1일	학년 시작	9	1일	육상운동대회
	3일	기념 식수		상 · 중순	수학여행
	4일	연습과 을조 생도 입학식 연습과 갑조, 을조 2년 시업식	10	중순	조선초등교육연구대회
	5일	연습과 생도 수업 개시		13일	무신조서 하사 기념일
	8일	보통과 · 여자연습과 1년 입학식 보통과 · 여자연습과 생도 시업식		30일	교육칙어 하사 기념일
	29일	천장절 배하식	11	3일	명치절 배하식 남자생도 봉축 단체 장거리 경주
	30일	초혼제 참배		10일	국민정신작흥조서 하사 기념일
5	5일	개교기념식 입학선서식		상순	학예발표회
	중순	가정방문 실행			보통과 5년 군사 강습
	27일	해군기념일 남자생도 단체 장거리 경주		하순	학교 교련사열
	하순	학우순화회 총회	12	24일	제2학기 종업식
6	상 · 하순	농촌위탁실습 시행	1	1일	신년배하식
	10일	시간기념일		8일	제3학기 시업식
	14일	농민데이 모내기		중순	무도(武道) 한계고(寒稽古)[겨울 훈련]
7	상순	단축수업, 하기 체육, 작업시행	2	11일	기원절 배하식
	20일	제1학기 종업식	3	상 · 중순	입학고사 시행
	하순	하계 강습회 개최		10일	육군기념일
		동창순화회 총회		중순	순화회(醇和會) 총회
	21일	남자연습과 갑조, 을조 2년 시업식		23일	졸업식
	하순	연습과 군사 강습		25일	수업식
8	1일	제2학기 시업식		31일	학년 종료
	중순	연습과 생도 교육연습 개시			

출처: 『경성사범학교총람』(1934).

봉재(御影奉齋), 신궁참배(神宮參拜), 선서식(宣誓式), 조회선언(朝會宣言) 등과 같이 의식화된 학교 의례 외에도, 여러 행사와 국가의 특정 기념일 의식들이 학교의 학사 일정을 채웠다. 국가의 특정 기념일 행사는 감은봉사(感恩奉仕)의 생활을 체현시키고 천황에 대한 숭배와 군국주의 의식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가의 특정 기념일로는 우선 4대절(四大節)이 있다. 4대절이란 신년배하식(新

年拜賀式, 1. 1), 기원절(紀元節, 2. 11), 천장절(天長節, 4. 29), 명치절(明治節, 11. 3)을 가리킨다. 4대절에는 어영봉안소를 기념식장에 따로 설치하여 어영배하식을 진행했고, 교육칙어를 봉독했으며, 기미가요(君が代)를 부르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4대절 이외에도 기념식수일(記念植樹日, 4. 3), 초혼제일(招魂祭日, 4. 30), 해군기념일(海軍記念日, 5. 27), 시간기념일(時間記念日, 6. 10), 총독부시정기념일(總督府施政記念日, 10. 1), 육군기념일(陸軍記念日, 3. 10), 무신조서(戊申詔書) 하사 기념일(10. 13), 교육칙어(教育勅語) 하사 기념일(10. 30), 국민정신작흥조서(國民精神作興詔書) 하사 기념일(11. 10) 등이 있었다.

당시 학사 일정에 포함된 여러 가지 행사와 의식들은 [표 4-5-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학생 활동

경성사범학교는 학생들의 과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과외 학생 활동을 하는 단체는 크게 교육연구부, 학예부, 운동부 등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이들 학생 단체는 형식상 학우순화회(學友醇和會) 아래 편성된 학생들의 자치 조직이었으며, 교직원이 특별회원 자격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지도했다. 이들 과외 학생 단체 현황은 [표 4-5-15]와 같다.

당시 학생들은 교육연구부나 학예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운동부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 가운데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단연 운동부였으며, 졸업생들은 이것을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여겼다. 학예부와 운동부는

[표 4-5-15] 경성사범학교의 과외 학생 단체 현황

구분	단체명
교육연구부	수신연구회, 불교연구회, 동화연구회, 심리연구회*
학예부	문예연구회, 국어한문연구회, 수학연구회, 주산연구회, 직업연구회*, 미술연구회(桐葉畵會), 서도(書道)연구회, 음악연구회(바그너 소사이어티), 물화(物化)연구회, 지리역사연구회, 영어연구회, 조선어연구회, 원예연구회, 가정연구회, 강연연구회
운동부	검도부, 유도부, 체조연구부, 경기부[육상부], 야구부, 정구부, 축구부[럭비부], 배구부, 농구부, 상박부(相撲部)[스모부], 수영부, 빙상부*, 궁도부*, 사격부*, 승마부*, 탁구부*
기타 학생단체	골공부(滑空部)[글라이더부], 자동차부, 박물연구부, 응원단, 구매부(購買部)

주: '기타 학생단체'는 '경성사범학교순화회칙'에는 보이지 않으나, 다른 기록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된 단체임.
*는 1934년 '경성사범학교순화회칙'에서 신설됨. '직업연구회'는 '공업연구회'로 개칭됨.

출처: 『경성사범학교총람』(1929, 1934); 醇和會 編(1987).

대외 경연에서 많은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 가지 특기할 점은 학예부 가운데 조선어연구회(朝鮮語研究會)의 활동이다. 당시 교수어와 생활언어가 일본어였기 때문에 조선인 학생들의 경우 조선어 수업 이외에는 조선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조선인 학생들은 조선어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조선어연구회는 조선어과 교유가 학생들을 지도했으며,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이희승(李熙昇)과 조윤제(趙潤濟)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희승이 재직하던 시절에는 조선어 철자법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았으며,『경사문예』등의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조윤제는 1933년 이희승이 이화여자전문학교로 옮겨 가던 해 후임으로 와서, 1937년 보성전문학교로 옮겨 가기 전까지 근무했다. 조윤제가 지도하던 이 시기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어연구회에 소속된 학생들은 그의 지도를 받으면서『청계(淸溪)』라는 계간지를 간행했으며,『조선민요집』과『조선방언집』을 출판하기도 했다(정태시, 1992; 심재완, 1992). 조선어연구회는 학내에서 주목을 받는 모임은 아니었지만, 조선인 학생들이 참여하여 조선어 연구를 목적으로 하면서, 조선어 서적이나 잡지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곳이었다.



출처: 한기언(2007).

[그림 4-5-3] 경성사범학교 평양박물관 참관(1939)

4) 학생 현황

경성사범학교 학생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쳐 진학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택된 집단이라는 자부심과 높은 엘리트 의식이 있었다. 1921년부터 1934년까지 경성사범학교 각 과정의 입학 경쟁률은 [표 4-5-16]과 같다. 보통과 입학시험은 12:1 이상의 입학 경쟁률을 보였다. 보통과에 지원한 학생은 8.2% 정도만이 입학할 수 있었다. 남자 연습과(을)의 입학률도 12.0% 정도였다. 여자 연습과도 지원자 4명 중 1명(26.0%)만이 입학할 수 있었다. 조선인의 입학은 경쟁이 훨씬 더 치열했다. 보통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조선인 응시자는 44:1(2.3%)의 경쟁을 거쳐야 했다. 그래서 "청량리(경성제국대학 예과)보다 훈련원(경성사범학교) 쪽이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경성사범학교 입학생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다. 학비를 면제받고, 피복과 매월 생활비에 해당하는 관비를 받았다. 경성사범학교는 1929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월 10원을 관비로 지급했다. 당시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원이 되어 받는 초임이 47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였다(김인수, 1985). 그래서 성적은 우수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최고의 진학 기회였다. 1929년 경성사범학교 재학생 755명 가운데 관비생은 569명으로 75% 정도를 차지했다.

경성사범학교는 재학생 수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다. 1935년 전체 학생 수가 863명이었는데, 당시 평양사범학교와 대구사범학교는 각각 599명, 627명이었다. 1942년에는 대구사범학교가 833명, 평양사범학교가 710명이었지만, 경성사범학교는 1,100명에 달했다. 물론 이러한 규모의 차이는 재정, 교직원 수 등 학교 운영 전반에 해당된다.

경성사범학교 연도별 학생 수의 현황은 [표 4-5-17]과 같다. 『조선제학교일람』에 의거해 연도별, 과정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1943년 전문학교로 승격되기 이전까지 수업연한 5년 보통과의 경우, 매년 100명 정도를 선발하여 500명 내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연습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 변화들이 있었다. 1934년부터는 수업연한이 2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렇지만 1930년대 말까지는 1년제 과정도 동시에 유지했다. 또한, 1935년부터는 여자 연습과가 경성여자사범학교로 이관되었다. 1926년 이후 연습과 남학생 총수는 매년 200명 내외를 선발하고, 1930년대 후반은 300명 가까운 인원을 선발했다. 1940년대 들어서는 220

[표 4-5-16] 경성사범학교 입학 지원 현황(1921~1934) 단위: 명, %

연도	구분	보통과			연습과(을)			여자 연습과		
		지원자	입학자	입학률	지원자	입학자	입학률	지원자	입학자	입학률
1921	계	564	86	15.2	530	105	19.8	-	-	-
	(조선인)	(326)	(8)	(2.5)	(352)	(74)	(21.0)	-	-	-
1922	계	733	102	13.9	530	139	26.2	-	-	-
	(조선인)	(221)	(10)	(4.5)	(10)	(1)	(10.0)	-	-	-
1923	계	1,670	100	6.0	545	142	26.1	-	-	-
	조선인	(996)	(17)	(1.7)	(5)	(1)	(20.0)	-	-	-
1924	계	1,816	101	5.6	627	142	22.6	-	-	-
	(조선인)	(1293)	(16)	(1.2)	(20)	(3)	(15.0)	-	-	-
1925	계	1,675	98	5.9	848	136	16.0	273	68	24.9
	(조선인)	(1,154)	(17)	(1.5)	(80)	(10)	(12.5)	(64)	(34)	(53.1)
1926	계	1,559	98	6.3	1,115	127	11.4	410	83	20.2
	(조선인)	(1,163)	(19)	(1.6)	(116)	(14)	(12.1)	(128)	(41)	(32.0)
1927	계	1,492	100	6.7	1,301	95	7.3	373	70	18.8
	(조선인)	(1,060)	(19)	(1.8)	(157)	(12)	(7.6)	(88)	(45)	(51.1)
1928	계	1,564	102	6.5	981	92	9.4	350	67	19.1
	(조선인)	(1,191)	(26)	(2.2)	(98)	(15)	(15.3)	(121)	(45)	(37.2)
1929	계	1,786	99	5.5	1,245	76	6.1	394	88	22.3
	(조선인)	(1,361)	(18)	(1.3)	(196)	(14)	(7.1)	(114)	(57)	(50.0)
1930	계	970	99	10.2	1,617	96	5.9	285	88	30.9
	(조선인)	(654)	(19)	(2.9)	(112)	(24)	(21.4)	(112)	(57)	(50.9)
1931	계	664	99	14.9	1,488	100	6.7	344	50	14.5
	(조선인)	(418)	(20)	(4.8)	(127)	(22)	(17.3)	(163)	(25)	(15.3)
1932	계	650	101	15.5	1,488	82	5.5	412	100	24.3
	(조선인)	(365)	(25)	(6.8)	(127)	(23)	(18.1)	(203)	(67)	(33.0)
1933	계	850	92	10.8	522	174	33.3	410	200	48.8
	(조선인)	(509)	(19)	(3.7)	(74)	(38)	(51.4)	(197)	(125)	(63.5)
1934	계	680	95	14.0	529	100	18.9	261	99	37.9
	(조선인)	(344)	(21)	(6.1)	(105)	(23)	(21.9)	(135)	(60)	(44.4)
합계	계	16,673	1,372	8.2	13,366	1,606	12.0	3,512	913	26.0
	(조선인)	(11,055)	(254)	(2.3)	(1,579)	(274)	(17.4)	(1,325)	(556)	(42.0)

출처: 『경성사범학교총람』(1934).

[표 4-5-17] 경성사범학교 연도별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과정	학급(개)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계
1922	보통과	7	-	107(13)	80(7)	-	-	-	187(20)
	연습과	-	-	138(1)	-	-	-	-	138(1)
	계	7	-	245(14)	80(7)	-	-	-	325(21)
1926	보통과	-	-	98(19)	103(16)	95(16)	103(18)	-	399(80)
	연습과	-	남	218(41)	-	-	-	-	218(41)
		-	여	62(42)	-	-	-	-	62(42)
	계	-	-	378(102)	103(16)	95(16)	103(18)	-	679(163)
1929	보통과	-	-	99(18)	104(27)	81(18)	104(21)	92(16)	498(100)
	연습과	-	남	173(27)	-	-	-	-	173(27)
		-	여	90(58)	-	-	-	-	90(58)
	계	-	-	362(103)	104(27)	81(18)	104(21)	92(16)	761(185)
1931	보통과	10	남	100(20)	102(18)	98(20)	102(24)	98(17)	500(99)
	연습과	5	남	187(40)	-	-	-	-	187(40)
		-	여	50(25)	-	-	-	-	50(25)
	강습과	1	남		-	-	-	-	-
		-	여	50(50)	-	-	-	-	50(50)
	계	16	-	387(135)	102(18)	98(20)	102(24)	98(17)	787(214)
1932	보통과	10	-	104(25)	105(19)	94(18)	97(20)	101(24)	501(106)
	연습과	4	남	177(39)	-	-	-	-	177(39)
		2	여	100(67)	-	-	-	-	100(67)
	계	16	-	381(131)	105(19)	94(18)	97(20)	101(24)	778(212)
1933	보통과	10	-	96(20)	91(24)	101(18)	92(19)	95(19)	485(100)
	연습과	6	남	258(58)	-	-	-	-	258(58)
		4	여	200(125)	-	-	-	-	200(125)
	계	20	-	554(203)	91(24)	101(18)	92(19)	95(19)	943(283)
1934	보통과	10	-	95(21)	98(21)	81(24)	101(17)	89(19)	464(102)
	연습과	6	남	191(41)	90(23)	-	-	-	281(64)
		4	여	99(60)	98(60)	-	-	-	197(120)
	계	20	-	385(122)	286(104)	81(24)	101(17)	89(19)	942(376)
1936	보통과	10	-	101(29)	95(22)	94(19)	87(19)	95(23)	472(112)
	연습과	2	갑	99(19)	-	-	-	-	99(19)
		6	을	199(58)	102(24)	-	-	-	301(82)
	강습과	1	-	40(34)	-	-	-	-	40(34)
	계	19	-	439(140)	197(46)	94(19)	87(19)	95(23)	912(247)

[표 4-5-17] 경성사범학교 연도별 학생 수(계속)

연도	과정	학급(개)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계
1938	보통과	10	-	100(32)	103(30)	97(29)	90(21)	91(19)	481(131)
	연습과	2	갑	82(19)	-	-	-	-	82(19)
		10	을	198(48)	292(67)	-	-	-	490(115)
	강습과	2	1년	96(50)	-	-	-	-	96(50)
		1	6개월	38(32)	-	-	-	-	38(32)
	계	25	-	514(181)	395(97)	97(29)	90(21)	91(19)	1,187(347)
1940	보통과	10	-	104(42)	100(31)	95(30)	89(28)	94(26)	482(157)
	연습과	4	갑	91(22)	84(18)	-	-	-	175(40)
		8	을	133(40)	170(34)	-	-	-	303(74)
	강습과	2	1년	101(97)	-	-	-	-	101(97)
		1	6개월	38(31)	-	-	-	-	38(31)
	계	25	-	467(232)	354(83)	95(30)	89(28)	94(26)	1,099(399)
1941	보통과	10	-	110(36)	100(41)	101(31)	92(30)	89(25)	492(163)
	연습과	6	갑	91(26)	85(21)	-	-	-	176(47)
		6	을	120(42)	148(29)	-	-	-	268(71)
	강습과	3	6개월	149(147)	-	-	-	-	149(147)
	계	25	-	470(251)	333(91)	101(31)	92(30)	89(25)	1,085(428)
1942	보통과	10	-	110(39)	107(37)	103(40)	97(30)	89(28)	506(174)
	연습과	6	갑	88(26)	84(24)	-	-	-	172(50)
		6	을	147(72)	135(37)	-	-	-	282(109)
	강습과	1	1년	34(20)	-	-	-	-	34(20)
	특설 강습과	2	1년	106(106)	-	-	-	-	106(106)
	계	25	-	485(263)	326(98)	103(40)	97(30)	89(28)	1,100(459)
1943	본과	6	갑	91(28)	83(27)	305(67)	-	-	479(122)
	본과	11	을	127(50)	146(69)	-	-	-	273(119)
	강습과	3	-	124(112)	-	-	-	-	124(112)
	예과	10	4년제	111(20)	107(37)	104(34)	106(37)	91(30)	519(158)
	예과	1	2년제	55(9)	-	-	-	-	55(9)
	계	31	-	508(219)	336(113)	409(111)	106(37)	91(30)	1,450(520)

주: ( ) 안은 조선인 학생 수

출처: 『조선제학교일람』(각년판).

[표 4-5-18] 경성사범학교 졸업생의 보통학교와 소학교 임용 현황 단위: 명

졸업 연도	임용된 학교	연습과 갑		연습과 을		남자 (연습과) 졸업	여자 (연습과) 졸업	남·여 (연습과) 졸업자 합계	
		1부	2부	1부	2부			인원 수	비율(%)
1929	소학교	17	14	12	14	57	13	70	29
	보통학교	17	43	2	49	111	53	164	69
	기타*	-	1	-	3	4	-	4	2
	계	34	58	14	66	172	66	238	100
1934	소학교	-	-	-	-	44	23	67	24
	보통학교	-	-	-	-	109	75	184	67
	기타*	-	-	-	-	21	2	23	8
	계	-	-	-	-	174	100	274	100

주: *는 미취직, 사망, 자료 누락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
출처: 『경성사범학교총람』(1929, 1934).

명 내외를 선발하고 있다. 1930년대 후반의 경우를 예외로 본다면, 200명 내외로 선발 인원을 유지했다.

전체 재학생 가운데 조선인 학생의 비율은 20%에서 35% 정도를 차지하며,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만 6개월에서 1년의 단기 양성 과정인 강습과는 대부분이 조선인이었다. 1930년대 후반 연습과 학생 선발이 대폭 증가하는 현상의 배경을 포함한 학생 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추후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소학교와 보통학교에 어떻게 임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표 4-5-18]과 같다. 이것은 경성사범학교 졸업생들이 해당 연도 7월 현재 재직 중인 학교명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1929년의 경우 경성사범학교의 남·여 연습과를 졸업하고 교원으로 임용된 총 238명 가운데 일본인 아동이 다니는 소학교 훈도로 임용된 경우는 70명으로 29% 정도다. 조선인 아동이 다니는 보통학교 훈도로 임용된 경우는 164명으로 69% 정도다. 1934년 졸업생 274명 가운데 소학교 훈도로 임용된 경우는 67명(24%), 보통학교 훈도로 임용된 경우는 184명(67%)이다. 이와 같이 경성사범학교 졸업생들은 70% 정도가 보통학교의 훈도로 임용되었다.

소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제1부 학생도 졸업 후 보통학교 훈도로 임용되었으

며, 제2부 학생도 소학교 훈도로 임용되었다. 이 점에서 제1부와 제2부의 구분이 임용 과정에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성사범학교 졸업생들은 전국의 13도 모든 공립 보통학교와 소학교의 훈도로 고르게 분산되어 임용된 것으로 보인다. 매년 전체 졸업생의 임용 현황과 임용률의 변화는 앞으로 추가 확인과 정리가 필요하다.

5) 교직원 현황

경성사범학교는 일제 강점기에 초등교원 양성기관으로서 가장 먼저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줄곧 지도적인 위상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역할은 초등교원 양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1920년대 이후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초등교육계 전체를 주도했으며, 중등교육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독립된 기관이 없었던 현실에서 교육계의 구심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성사범학교는 재학생 대상의 교원양성교육 이외에도 강습회 형태로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재교육과 연수도 실시했다.

경성사범학교는 초등교육의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회도 조직하여 운영했다. 부속학교 교원을 회원으로 조선초등교육연구회를 조직하여 『조선의 교육연구』라는 월간 잡지를 간행함으로써 그들의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했다.

경성사범학교가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학교장을 위시한 교유(교수)와 부속학교 훈도들이 특별히 선발된 우수한 인재들이었기에 가능했다. 초대 교장 아카키 만지로와 2대 교장 와타나베 신지(渡邊信治)는 모두 도쿄고등사범학교 출신이었다. 특히 와타나베 교장은 일본에서 이미 히로시마사범학교와 니가타사범학교(新潟師範學校)의 교장을 역임한 일본 교육계의 중진이었다. 이들의 지도력 아래 경성사범학교의 학풍이 조성되고, 교원양성기관의 전형으로 정착되었다. 이들은 조선총독부와 협력하여 우수하고 충실한 교원을 충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이들이 어떤 원칙과 방법에 의해 선발되었는지, 선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는 앞으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

경성사범학교의 교직원 수는 다른 사범학교에 비해 훨씬 많았다. 1935년의 전

[표 4-5-19] 경성사범학교 교직원 수 현황

	1925년	1938년	1943년
학교장	1	1	1
교유	35	44	10
교수	-	-	6
교원촉탁	6	8	-
강사촉탁	1	-	-
훈도	31	36	-
서기	6	3	-
촉탁교의	-	1	-
계	80	93	17

출처: 『조선제학교일람』(1925, 1938, 1943).

[표 4-5-20] 경성사범학교 교직원 명부

연도	학교장	교유(교수)
1925	赤木萬二郎	三宅右祐, 鈴木文夫, 鎌塚扶, 延原壽賀, 山野井喜重, 河津彦四郎, 河野宗一, 矢野八百藏, 宮原眞太, 武田誓藏, 上田槌五郎, 向井虎吉, 寺田常治, 日笠護, 山本禧一, 福田豊吉, 砂田孝次郎, 松本隆太郎, 吉田正男, 岡久, 松本眞英, 梅澤慶三郎, 廣瀨哲盛, 齋藤英三郎, 赤木萬二郎, 小林致哲, 福富一郎, 白神壽吉, 設樂利雄, 朴寬洙, 大石信, 深水好雄, 林正得, 土肥實, 阿部ヱク(35명)
1938	渡邊信治	鹽飽訓治, 松澤壽一, 신준범(愼駿範), 宮崎五十騎, 鹽崎光藏, 三田訓治, 조윤제(趙潤濟), 松本啓一郎, 齋藤信康, 上田常一, 日高秀吉, 樋口節春, 岡本好次, 이인기(李寅基), 篠田隆治, 吉岡三郎, 정순택(鄭淳宅), 今井嘉一, 平山孝忠, 江田忠, 根本通夫, 依田德藏, 黑木一男, 伊藤雄, 猿山博喜, 北岡龍水, 佐藤月二, 上田槌五郎, 龜谷敬三, 福田豊吉, 日笠護, 久保次助, 吉澤實, 吉田正男, 田中浩造, 信廣靜一, 道菅亮一, 菊池新二, 田中政吉, 只野尙, 梶原政治, 馬渡勝義, 朝岡寬一郎, 秋月孝久(44명)
1943	高橋濱吉	교수: 鹽崎光藏, 眞山驥範, 宮崎五十騎, 高田哲太郎, 上田常一, 豊谷源一(6명) 교유: 丸勝良, 吉澤實, 兒玉東一, 田中浩造, 島崎孫二, 松生利直, 淸水正紀, 廣戶惇, 白木進, 西豐(10명)

주: 밑줄은 조선인 교유(추정).

출처: 『조선총독부직원록』.

체 교직원이 106명이었는 데 비해 평양사범학교는 77명, 대구사범학교는 81명이었다. [표 4-5-19], [표 4-5-20]은 세 시기 교직원 수의 변화와 해당 연도 교장과 교유(교수)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훈도는 부속학교의 교원으로 교육 실습에서 지도 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38년은 44명의 교유 가운데 4명 정

도가 조선인 교유로 추정된다. 신준범[신기범(愼驥範)의 오기로 보임 - 필자], 조윤제(국어학자), 이인기(교육학자), 정순택 등이 그들이다. 1939년 '조선민사령'의 개정으로 단행된 창씨개명으로 1940년대 이후 조선인 교유나 교수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1943년 전문학교로 승격되면서 교수직이 설정되었다. 그렇지만 학교의 규모는 그대로인 데 반해 교유와 교수의 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제5절 경성여자사범학교

1) 설립과 운영

경성여자사범학교는 1935년 4월 1일 신설되었다. 경성사범학교에서 운영하던 여자 연습과와 부속여자보통학교가 폐지되고, 경성여자사범학교는 제반 시설과 인원을 이관받았다. 학과 과정은 연습과(2년) 이외에 심상과(4년), 강습과(1년)를 추가로 설치했고, 4월 10일 수업을 시작했다(고시 214-215호, 1935. 4. 1).

최초의 여자 초등교원 양성기관으로 출발한 경성여자사범학교는 입학 정원이 심상과 100명, 연습과 100명, 강습과 50명 정도였지만 매년 변경되었다. 입학 지원자는 도지사의 추천을 받도록 했으며, 모든 과정의 30% 학생을 관비생으로 뽑아 장학금을 지급했다.

경성여자사범학교는 1943년 3월 '조선교육령'의 개정, '사범학교규정'의 개정에 따라 2년제의 본과를 설치함으로써 전문학교 수준의 초등교원 양성기관으로 개편되었다. 개편된 경성여자사범학교에는 이외에 심상과(4년), 강습과(1년) 과정을 유지했다.

경성사범학교의 여자 연습과를 이관받은 경성여자사범학교는 학교의 법제와 운영의 실제가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전의 관례나 관행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경성여자사범학교 나름의 독자적인 모습을 형성해 갔을 것이다. 이러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록과 자료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

에 의한 기본적인 관찬 기록이 대부분이어서 실태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경성사범학교의 경우 『경성사범학교총람』이라는 일종의 학교 백서가 1929년과 1934년 2회에 걸쳐 간행된 바 있다. 또한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1987년 『대애지순』이라는 제목으로 학교사를 간행한 바 있다. 이 자료들은 경성사범학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록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성여자사범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종합적인 기록이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실상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근래 졸업생의 구술 자료를 수집해서 엮은 도서가 간행되고 있어서(혼마 치카게, 2011), 앞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경성여자사범학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조선총독부의 기본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경성사범학교와 부분적으로 비교하면서 간략하게 서술한다.

2) 교육과정

1930년대 말 경성여자사범학교의 모든 학생은 교훈을 암송했다. 1939년 대구고등여학교 5년을 졸업하고 경성여자사범학교 연습과에 입학한 스기야마 토미(杉山とみ, 1921년생)는, 당시 모든 학생이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암송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1. 우리는 은혜를 받아 황국에 태어났다. 군주는 민을 근본으로 하여 절대적으로 사랑하며, 백성은 군주를 근본으로 하여 받들며 절대적으로 믿을 것이다. 군민일체, 상하조합, 이것을 우리는 국체의 정화(精華)로 하여 그 존엄, 만방에 견줄 바 없다. 우리는 더욱더 군주를 공경하고 나라를 사랑하여, 이로써 천양무궁(天壤無窮)의 황실을 받드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대의이다.
2. 우리는 서로 맺어져서 상근일체(桑槿一體)가 된다. 모두 같이 성지(聖旨)를 받들면, 두루두루 천황의 은혜가 닿아 평등하게 이슬을 적시게 될 것이다. 고난은 없을 것이다. 세간의 평가에도 연연하지도 말라. 동포끼리 더욱더 친화가 깊어져 보다 더 결맹을 굳건하게 하여, 이로써 동양 평화의 기초를 쌓아 올리자. 이것이 우리의 결의다.

3. 우리는 선택되어 이 학원에서 배운다. 학원은 인생의 도장. 배우는 것은 성스러운 스승의 길. 그 책무는 무겁고, 그 앞길은 드넓은 것이다. 우리는 성훈에 따라 더욱더 지덕(知德)의 병진(倂進)과 신체의 단련에 정진하여, 우아하면서도 강하고, 경건하면서도 온화한 부덕(婦德)을 함양케 노력하여, 이로써 초지를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맹서다(혼마 치카게, 2011).

이것은 이른바 사도(師道)를 '부덕(婦德)'과 황민화 이데올로기로 포장하고 있고, '대애지순'으로 상징되는 경성사범학교의 교훈보다는 구체적이다. 이를 통해 경성여자사범학교는 1935년 경성사범학교에서 분리·신설된 이후, 여성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독자적인 학교로서의 학풍을 적극 조성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40년에 교가를 만든 것은 그 일환이었다.

경성여자사범학교의 교과과정은 기본적으로 경성사범학교를 따른 것이었다. 1922년 경성사범학교에는 여성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수업연한 1년의 여자연습과를 설치했다. 1926년에 62명(조선인 학생 42명)을 선발하는데 이 무렵부터 여학생을 선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남자 연습과는 2년제로 운영되었다. 1933년 여자 연습과의 수업연한도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이 과정이 1935년 경성여자사범학교로 이관되었다. [표 4-5-9]의 초기 규정에 따르면 경성사범학교 여자 연습과는 남자 연습과에 비해서 학과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이 배우던 '법제 및 경제'와 '농업 및 상업'을 배우지 않은 대신 '재봉'이 추가되고, 수학을 1시수 더 배웠다.

1935년 경성여자사범학교가 신설되면서 수업연한 2년의 연습과 이외에 수업연한 4년의 심상과를 설치하여 운영했다. 심상과는 경성사범학교 보통과에 비해 수업연한이 1년 짧았으며, 과목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외국어 과목이 빠진 대신 가사와 재봉 두 과목이 추가되었다([표 4-5-21] 참조).

연습과는 기본적으로 경성사범학교와 동일하다. 다만 교과목의 비중이 약간 다르다. 체조 과목(10 > 6)과 직업 과목(8 > 6)의 배정 시간이 줄고, '가사·재봉' 과목이 추가되었으며, '역사·지리' 과목이 1시간 더 배정되었다([표 4-5-22] 참조).

1938년 이후 이러한 교육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앞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심상과 4년, 연습과 2년, 총 6년제로 편성된,

[표 4-5-21] 사범학교 심상과 주당 교수 시수(1938, 여학생)

구분	수신	공민과	교육	국어	조선어	역사지리	수학	이과	직업	도화수공	가사	재봉	음악	체조	계
1년	2			8	2	3	2	2	2	3	1	3	2	3	33
2년	2			7	2	3	3	2	2	3	1	3	2	3	33
3년	2	1	2	6	2	3	2	2	2	2	2	3	2	3	34
4년	2	1	5	5	1	2	3	2	2	2	3	3	1	3	35
계	8	2	7	26	7	11	10	8	8	10	7	12	7	12	135

출처: 사범학교규정(1938).

[표 4-5-22] 사범학교 연습과 주당 교수 시수(1938, 여학생)

구분	수신	공민과	교육	국어한문	조선어	역사지리	수학	이과	직업	도화수공	가사재봉	음악	체조	계
1년	2	1	6	4	2	2	2	2	3	2	3	2	3	34
2년	2	1	6	4	2	3	2	2	3	2	2	2	3	34
계	4	2	12	8	4	5	4	4	6	4	5	4	6	68

출처: 사범학교규정(1938).



출처: 정상윤(1974).

[그림 4-5-4] 경성여자사범학교 체조시간(1931)

여성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표준적인 교육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3) 학생 현황

1935년 경성사범학교 여자 연습과 학생 197명을 이관받아 시작한 경성여자사범학교는 심상과와 강습과도 설치하여 운영했다. 강습과는 1938년부터 6개월이던 수업연한을 1년으로 연장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심상과는 매년 100명 정도 선발하여 총 인원이 400명 정도를 유지했다. 이 가운데 조선인 학생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1943년에는 112명을 선발하면서 조선인 학생 수가 42명(37.5%)으로 줄어들었다.

연습과는 초기 100명 정도 선발하다가, 1938년에는 150명, 이후에는 선발 인원이 200명 정도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조선인 학생 수는 60% 정도에서 40% 이하로 점차 감소한다. 1943년 전문학교로 승격되면서 연습과를 대신해 수업연한 2년의 본과가 신설되었다. 그해 본과 학생 196명을 선발하면서 조선인 학생이 26명(13.2%)으로 줄어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강습과는 1937년 150명, 1938년 75명, 1942년에는 99명을 선발하고 있듯이 선발 인원이 불규칙하다. 아마도 단기 양성 과정이어서 200명 이내에서 수요에 따라 선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선발된 조선인 학생 수의 비중은 65%에서 35% 정도로 점차 감소한다. 1943년에는 196명을 선발하면서 91명(46.4%)을 조선인 학생으로 선발했다.

1939년부터 2년간 연습과에 재학했던 스기야마 토미의 회고에 따르면 학생의 민족별 구성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비율이 6:4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일본인 학생은 이 비율을 믿지 않았다고 하지만 통계 자료는 대체로 일치한다.

[표 4-5-23]는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경성여자사범학교의 연도별 학생 수의 변화다. 1938년 모든 학과가 완편되었을 때의 학생 수가 800명 가까이 되었고, 1940년대에는 약 1,000명의 학생이 재학했다.

[표 4-5-23] 경성여자사범학교 연도별 학생 수(1934~1943) 단위: 명

연도	과정	학급(개)	1년	2년	3년	4년	계
1934	경사연습과(여)	4	99(60)	98(60)	-	-	197(120)
1936	심상과	4	100(60)	110(57)	-	-	200(117)
	연습과	4	100(60)	98(57)	-	-	198(117)
	강습과	1	200(130)	-	-	-	200(130)
	계						598(364)
1937	심상과	6	100(60)	99(59)	96(54)	-	295(173)
	연습과	4	101(51)	99(59)	-	-	200(110)
	강습과	1	150(90)	-	-	-	150(90)
	계						645(373)
1938	심상과	8	100(60)	102(61)	97(58)	92(53)	391(232)
	연습과	5	150(75)	95(50)	-	-	245(125)
	강습과	3	75(75)	-	-	-	150(75)
	계						786(432)
1940	심상과	8	110(65)	102(60)	93(55)	103(59)	408(239)
	연습과	7	220(82)	141(56)	-	-	361(138)
	강습과	5	271(100)	-	-	-	271(100)
	계						1,040(477)
1941	심상과	8	113(68)	112(66)	93(54)	91(54)	409(242)
	연습과	8	197(77)	201(74)	-	-	398(151)
	강습과	4	198(80)	-	-	-	198(80)
	계						1,005(473)
1942	심상과	8	112(67)	109(66)	108(63)	90(51)	419(247)
	연습과	8	201(74)	190(74)	-	-	391(148)
	강습과	2	99(35)	-	-	-	99(35)
	계						909(430)
1943	본과	8	196(26)	190(72)	-	-	386(98)
	심상과	8	112(42)	110(62)	106(65)	106(62)	434(231)
	강습과	4	196(91)	-	-	-	196(91)
	계						1,016(420)

주: ( ) 안은 조선인 학생 수

출처: 『조선제학교일람』(각년판).

4) 교원 현황

경성여자사범학교 교직원도 경성사범학교 못지않게 우수한 인력으로 충원했을 것이다. 여성 초등교원 양성을 이유로 수업연한 등에서 경성사범학교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최초로 서울에 설립된 독립적인 여자사범학교로서의 위상도 있어 조선총독부의 지원도 특별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성여자사범학교 교장직은 경성사범학교 교장직 다음가는 중요 보직으로 인정받았다. 경성여자사범학교 교장이던 다카하시 하마키치(高橋濱吉)는 조선총독부 독학관을 거쳐서, 1943년 전문학교로 승격된 경성사범학교의 교장에 취임했다. 다카하시는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출신으로 교장 임용을 놓고 도쿄고등사범학교 출신 후보와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醇和會 編, 1987).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면 경성여자사범학교 교원들도 우수한 인재가 선발되었을 것이다.

학생들은 당시 교원들이 각자 개성이 있고, 정열적이며, 진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다(혼마 치카게, 2011). 아마도 선발하고 임용하는 데에 학력과 경력 이외에도 인성과 품행이라는 특별한 기준이 중요했을 것이다.

[표 4-5-24], [표 4-5-25]은 두 시기 교직원 수와 교직원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1938년 경성여자사범학교가 완편된 시점에 학교장과 28명의 정식 교원이 임용되어 있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8명 정도로 경성사범학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 시기 28명의 교유 가운데 3명은 조선인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조재호는 경성사범학교에서도 훈도 겸 교유로 활동했다. 1943년 전문학교로 승격되던 시점에 학교 규모가 3개 학과, 20개 학급, 1,000여 명의 재학생을 유지했다. 그런데 교원 수가 교장 1명, 교수 5명, 교유 1명으로 대폭 감축되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점이다.

[표 4-5-24] 경성여자사범학교 교직원 수 현황 단위: 명

	1938년	1943년
학교장	1	1
교유	28	1
교수	-	5
촉탁교원	3	-
훈도	7	-
생도주사	-	1
촉탁교의	1	-
서기	2	-
후도(後圖)	1	-
계	43	8

출처: 『조선제학교일람』(1938, 1943).

[표 4-5-25] 경성여자사범학교 교직원 명부 일람

연도	학교장	교유
1938	高橋濱吉	草野勳夫, 渡邊勝也, 行德八郎, 長澤隆次, 若山尙, 碓井隆次, 서경렬(徐京烈), 兵頭正, 安藤芳亮, 永田美津惠, 高田喜代子, 김분옥(金粉玉), 北村梅子, 篠原茂雄, 米谷知惠子, 黑岩駒男, 高山實, 栗原春信, 長花ゐい, 眞部助信, 江口敬四郎, 岡毅, 池山松雄, 唐澤勝太郎, 조재호(曺在浩), 桑垣隆人, 福田安樹, 中野己之吉(28명)
1943	安岡源太郎	교유: 利川京烈(1명) 교수: 若山尙, 濱武健二郎, 渡邊勝也, 兵頭正, 渡邊彰(5명)

주: 밑줄은 조선인 교유(추정)
출처: 『조선총독부직원록』.

제6절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교원양성교육의 전개과정은 근·현대 역사의 부침과 정확하게 궤를 같이한다. 분단으로 인해 남한에 국가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크게는 세 번의 혼란을 겪었다. 근대 개혁기에는 사범학교를 세워 새로운 교원양성교육을 실시했고, 일제 강점기에는 제국 일본의 사범학교 체제가 정착되었으며, 미군정 아래에서는 사범학교와 사범대학을 통한 새로운 교원양성제도

를 모색했다.

이 글에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전사를 이루는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의 역사를 개관했다. 여기에서 두 기관이 사범대학의 전사를 이룬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가리킨다. 우선 법제에 있어서 폐지와 신설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형식적으로는 단절되었다. 또한 신설된 사범대학이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다만 물적·인적 자원의 흡수와 이관이라는 절차로 진행된 결과 내적인 관련도 맺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는 대표적인 교원양성기관이었다. 두 학교의 역할과 의미는 단순히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모든 사범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였다. 학교 규모와 시설, 재정 지원은 물론, 특별히 선발된 교직원과 우수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최고의 학교였다. 또한 조선에서 중등 이상 수준의 학교들 가운데 최고의 학교이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사범학교 체제는 식민지배기구 가운데 제도적으로 가장 잘 완비되어 운영된 대표적인 이념 기구였다. 이 두 학교는 바로 이런 체제 속에서 그 체제를 이끌고 지도하며 규정하는 역할을 했다. 말하자면 교원사관학교였다. 일본에는 고등사범학교가 중등교원을 양성한 반면, 조선에는 이를 위한 독립된 기관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학교는 조선 교육계의 구심적 역할을 했다.

두 학교의 교장은 교육계와 학계의 중진이자 식민제국 일본의 지도자였다. 교원들은 특별히 선발된 우수한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다. 법제와 관례, 학교 운영, 교육과정, 교육 활동 등은 일본에 정착된 선진의 모델을 따를 수 있었다. 기숙사를 포함한 학교 시설도 조선에서는 최상이었다. 바로 이런 기반과 조건 위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고 철저한 교육과 훈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두 학교에 재학한 학생들은 우수한 인재들이었다. 조선인 학생은 최우등생들이었고, 높은 경쟁을 뚫고 입학했다. 중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경성사범학교 보통과는 매년 100명을 선발하는데 이 가운데 20~30여 명이 조선인이었다. 이에 비해 경성여자사범학교 심상과는 100명 중 60명 내외가 조선인으로 선발되었다. 경성사범학교 연습과는 200~300명 정도 선발하는데 20~25% 정도가 조선인 학생이었고, 경성여자사범학교는 100~200명 정도 선발하는데 조선인 학생 비율이 35~55% 정도로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단기 양성 과정에 해당하는 강습과의 경우 경성사범학교는 선발 인원이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150명 내외를 선발했

고, 대부분이 조선인이었다. 그렇지만 경성여자사범학교는 200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선발했다. 이 가운데 조선인 학생 비율이 65%에서 35%까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경성여자사범학교가 설립되면서 중등학교를 마친 일본인 여학생의 진학이 늘어나고 또 선호도가 높아지던 경향과 관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학교 졸업생들은 대부분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장에서 활동했다. 또한 장학과 학교 관리 등에서 교육계의 지도자로 성장해 갔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들 학교 졸업생들이 준비된 역량 있는 교원으로 선호되었고, 실제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교원이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졸업생들의 임용 현황과 임용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 아마도 두 학교 졸업생의 20~55%에 해당하는 조선인들은 광복 이후 한국 교육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의 한계와 앞으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성여자사범학교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록과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관찬 자료를 가지고 소략하게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음은 두 학교의 법제와 규정, 시설과 재산, 교직원의 구성과 경력 현황, 입학과 졸업(진로) 현황과 명단, 교육과정의 구성과 실제 운영 등을 포괄하는 백서 수준의 종합적인 정리와 서술이 필요하다. 여기에 졸업생들의 전기와 구술 자료를 더한다면 종합적인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예로 조선총독부의 관찬 자료에다 현재 서울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적부, 동창회 명부 등을 활용한다면 학생 현황(입학, 졸업, 진로)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가 가능해 보인다. 특히 두 사범학교의 학생들이 신설된 사범대학에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편입하고, 수학하며, 졸업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역사 서술에 두 사범학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포함할 것인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30년사』(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975)에도 사범대학의 설립에 두 학교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세 가지 서술이 혼재되어 있다. 법령에 의해서 두 학교를 통합·개편했다거나, 두 학교가 새로 설립된 사범대학의 전신(前身)이라거나 혹은 두 학교가 사범대학의 모체(母體)라는 등의 서술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법제에 의한 단절에도 불구하고, 두 사범학교의 인적 · 물적 자원이 흡수·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내적인 관련을 형식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법제가 변화되는 과

정, 두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이 어떻게 이관되고 정리되어 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석하는 것이 과제다.

• 참고문헌

자료

『공문편안(公文編案)』, 『교육시론(教育時論)』, 『동아일보』, 『서울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조선제학교일람(朝鮮諸學校一覽)』, 『조선총독부직원록(朝鮮總督府職員錄)』, 『통서일기(統署日記)』, 『한성일보』

『각과학습지도강요(各科學習指導綱要)』, 1939, 경성사범학교.

『경성사범학교총람(京城師範學校總覽)』, 1929; 1934, 경성사범학교.

『박정양전집』, 1984, 한국학문헌연구소.

『조선학사예규(朝鮮學事例規)』, 1938, 조선총독부학무국(朝鮮總督府學務局).

단행본 및 논문

김경미, 2009, 『한국 근대교육의 형성』, 혜안.

김광규, 2011, 「대한제국기 초등교원의 양성과 임용」, 『역사교육』 119.

김성학, 1996, 『서구교육학 도입의 기원과 전개』, 문음사.

김성학, 1999, 「경성사범학교 학생훈육의 성격」,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5.

김성학, 2013, 『한국 근대교육의 탄생』, 교육과학사.

김성학, 2015, 「개화기 교원양성체제의 변천과 그 성과」, 『교원양성체제의 역사적 전개와 과제』(한국교육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김영우, 1987, 『한국근대교원교육사 1』, 정민사.

김인수, 1985, 『한 교육자의 삶: 자전』, 한울.

김창제, 1933, 「한성사범학교시대」, 『신동아』, 3월호.

김창제, 1936, 「30년전 학교와 학생기풍」, 『신동아』, 1월호.

노인화, 1989, 「대한제국 시기 관립학교 교육의 성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975, 『민주교육의 요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삼십년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997,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오십년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1977, 『동문종합앨범』.

송병기 · 박용옥 · 박한설 편저, 1970~1972,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IX, 대한민국국회도서관.

심재완, 1992, 「도남 조윤제 박사의 회고: 경성사범학교 시절」, 『문학한글』 6.

안홍선, 2004,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안홍선, 2005, 「경성사범학교의 교과과정과 교수방법론 연구」, 『교육사학연구』 15.

안홍선, 2007, 「식민지시기 사범교육의 경험과 기억」, 『한국교육사학』 29(1).

안홍선, 2015, 「일제시대 교원양성제도의 변천과 시사점」, 『교원양성체제의 역사적 전개와 과제』(한국교육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오성철, 2000,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우용제 · 안홍선, 2006,「근대적 교원양성제도의 변천과 사범대학의 설립」,『아시아교육연구』7(4).
이길상 · 오만석 편, 1997,『한국교육사료집성: 미군정기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임후남, 2002,「대한제국기 초등교원의 양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정규영, 2003,「일제 시대 사범학교의 역사」,『청주교육대학교 논문집』41.
정상윤, 1974,『한국신교육백년사료』, 서울문예사 출판부.
정산윤, 1976,『한국신교육백년사료(韓國新教育百年史料)』, 교육개발공사.
정태수, 1992,『미군정기 한국교육사료집성』, 홍지원.
정태시, 1992,『분필로 그리다만 어느 자화상』(정태시 회고록), 흥일문화사.
한국교육십년사간행위원회, 1959,『한국교육십년사』.
한기언, 2006,『두 손을 비워 두어라』(한기언교육학전집 51), 한국학술정보(주).
한기언, 2007,『사진으로 본 나의 삶』, 한국학술정보(주).
혼마 치카게 저, 신호 역, 2011,『스기야마 토미』(한국민중구술열전 47), 눈빛.
木村知治, 1895,『新撰教育學』.
醇和會 編, 1987,『京城師範學校史: 大愛至醇』.
赤木萬二郎, 1922,「師範學校の使命と其の特色」,『朝鮮』, 朝鮮總督府, 1922. 3.

제6장

상과대학 전사

제1절 개화기의 상학 교육

1) 상공학교와 농상공학교

(1) 설립과 운영

1899년 4월 27일(광무 3년) 고종황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학교 교육이 중요하며, 특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공학교 설립이라고 강조했다(『구한국관보』, 1899. 4. 27). 이에 따라 '상공학교관제'(칙령 제28호)가 공표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실업학교가 설립되었다. '상공학교관제'는 다음과 같다.

〈칙령 제28호 상공학교관제〉

제1조 상공학교는 상업과 공업에 필요한 실학을 교육하는 곳으로 정한다.

제2조 상공학교에 상업과와 공업과를 나누어 설치한다.

제3조 상업과와 공업과의 수업연한은 4개년으로 정하여 처음 1년은 예과에 이습(肄習)하고, 이후 3년은 본과에 졸업한다.

제4조 상공학교에 학과급 정도(程度)와 기타 규칙은 학부대신이 정한다.

제5조 상공학교에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학교장 1인(주임)

교관 10인 이하(주임 혹은 판임)

서기 2인(판임)

제6조 학교장은 학부대신의 명령으로 주무국장의 지휘를 따르고 일체 교무를 장리(掌理)하며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7조 교관은 생도의 교수를 담당하며 또 생도를 감독한다.

제8조 서기는 상관의 명을 받아 서무 회계에 종사한다.

제9조 학교장은 시의(時宜)에 따라 학부 주임관으로 겸임할 수 있다.

제10조 교관은 혹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나 그 인원 수는 학부대신이 결정한 것을 따른다.

제11조 교관은 외국인으로써 충당할 때에는 교수만 담당한다.

제12조 지방 정황에 따라 상공학교를 지방에도 설립한다.

제13조 지방에 공·사립 상공학교를 설치함도 허가한다.

제14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광무 3년 6월 24일(『구한국관보』, 1899. 6. 28)

'상공학교관제'에 따르면 상공학교는 "상업과 공업에 필요한 실학을 교육하는 곳"으로 규정되었으며, 상업과와 공업과로 구성되었다. 수업연한은 예과 1년, 본과 3년으로 총 4년 수업 후 졸업하게 했다(제4조). 교직원은 학교장 1명과 교관(교수) 10명 이하, 서기 2명으로 구성하고(제5조), 외국인 교관의 채용을 허용했다. 또한, 지방에도 공·사립 상공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12조). 이에 따라 부산상업고등학교(공립 부산실업학교, 1909. 4), 인천상업학교(관립 인천실업학교, 1909. 5), 덕수상업고등학교(공립 수하동 실업보습학교, 1910. 4) 등이 각각 부산, 인천, 서울에 설립되었다. 당시에 많은 사립 학교가 전국에 세워졌지만 실업학교는 드물었다. 그리고 학교의 재정 자립이 어려워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관립 학교가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관립 학교는 국가가 학비를 지급하고 졸업생은 국가 관리로 임용될 수 있다는 기대로 인기가 있었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있었던 기술자 양성기관인 철도학교, 우무(郵務, 우편사무)·전무(電務, 전신업무)학교 등의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했다. 상공학교 입학시험은 예과에서 주관했으며, 만 17세 이상, 25세 이하인 자

로서 국문과 한문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했다. 입시 자격 연령으로 미루어 볼 때 상공학교는 당시에 설립된 각종 기술자 양성소와 같이 전문인 양성 학교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공학교는 서울 시내 중심에 있는 명례방(현재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동편과 명동성당 서편)에 위치했다. 1904년 '농상공학교관제'(칙령 제16호)에 따라 농상공학교로 개편되어 농업과가 추가되었다. 농업과만 따로 훈동에 있었으나, 나중에 통합하여 종로구 수송동으로 이전했다. '농상공학교관제'는 다음과 같다.

〈칙령 제16호 농상공학교관제〉

제1조 농상공학교는 농업과 상업과 공업에 필요한 실학을 교육하는 곳으로 정한다.

제2조 농상공학교에 농업과와 상업과와 공업과를 나누어 둔다.

제3조 농업과와 상업과와 공업과의 수업연한은 4개년으로 정하되 처음 1년은 예과에 이습하고 이후 3년은 본과에 졸업한다.

제4조 농상공학교에 학교급 정도와 규칙은 학부대신이 정한다.

제5조 농상공학교에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학교장 1인(주임)

교관 10인 이하(주임 혹은 판임)

서기 2인(판임)

제6조 학교장은 학부대신의 명령으로 주무국장의 지휘를 따르고 일체 교무를 장리(掌理)하며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7조 교관은 생도의 교수를 담당하며 또 생도를 감독한다.

제8조 서기는 상관의 명을 받아 서무 회계에 종사한다.

제9조 시의(時宜)에 따라 혹시 외국인을 교사로 고빙하여 충당할 수 있으나 그 인원 수는 학부대신이 결정한 것을 따른다.

제10조 지방 정황에 따라 농상공학교를 지방에도 설립한다.

제11조 지방에 공·사립 농상공학교를 설치함도 허가한다.

제12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하고 광무 3년 6월 24일 칙령 제28호 상공학교관제는 폐지한다.

광무 8년 6월 8일(『황성신문』, 1904. 6. 13)

'농상공학교관제'는 '상공학교관제'에 농업과 설치 규정을 더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 산업 대부분이 농업이었으므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농업과를 추가했다. 농상공학교는 농업과와 상업과, 공업과로 구성되고 수업연한은 상공학교와 같았다. 그러나 농업과를 증설했음에도 교직원 수를 상공학교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따로 증원하지는 않았다.

1904년 9월 21일 열린 농상공학교 입학식의 첫 입학생은 모두 80명이었다. '농상공학교규칙'(학부령 제16호)에 따르면, 입학시험 과목은 국문과 한문으로 독서와 작문을 보았다. 수업에서는 이론 학습과 기술을 같이 가르쳤으며, 예과 과목은 한국역사, 한국지지(地誌), 세계사, 세계지리, 화학, 물리학, 경제학, 산술, 미술, 외국어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학용품이 지급되었다.

수업시간은 매일 5시간이었다. 학년은 9월 1일에 시작하고 다음해 6월 30일에 마치도록 했는데, 이는 서양식 학제를 도입한 것이다. 학기는 두 학기로 봄학기(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가을학기(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나누었다. 여름방학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고, 겨울방학은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다. 음력 명절이 음력 12월 30일부터 정월 15일까지였다.

재학 중 시험은 학기말과 학년말 시험이 있고 낙제제도가 있었다. 졸업시험은 최종 학년 말에 전체 교과를 시험보고 정해진 성적 이상이어야 통과했다. 학년말 시험을 통과하면 진급 증서를 발급하고 우등생은 『관보』에 게재했다.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반대로 낙제하면 해당 과목의 수업을 다시 받아야 했다.

농상공학교의 교직원은 근무기간이 매우 짧아 빈번하게 임명과 퇴직이 되풀이되었음을 『관보』를 통해 알 수 있다. 신분계급 서열이 있었던 당시에는 기술자가 비인기 직업이었으며, 상인이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타이완(臺灣)에 설립된 동양협회 타이완 분교와 다른 점이었다.[1]

[표 4-6-1]에서 볼 수 있듯이, 농상공학교의 예산은 대체로 2만 원 미만이었

1 1917년 3월에 제1회로 모집한 동양협회 타이완 분교는 일본인과 함께 타이완 인을 같이 모집했으며 일본인에게는 공과, 타이완 인에게는 상과가 인기였다. 응모자 수와 합격자 숫자도 이에 비례하여, 상과 합격자는 타이완 인이 29명, 일본인이 18명인 데 비해, 공과 합격자는 타이완 인이 5명, 일본인이 28명이었다(江旭本, 1999: 62).

[표 4-6-1] 농상공학교 보조금 예산표 단위: 원(圓)

	1905년	1906년	1906년(특별회계)
예산	16,208	10,974	2,441
봉급	5,640	3,880	690
청비(廳費)	1,450	750	315
교과책비 및 기기비 (1905년에는 교과책비만 있음)	500	1,350	20
교사 수리비	-	50	-
잡급 및 제급	-	-	36
외국인 제급	8,280	4,800	1,380
농사시험장비	-	-	72,924
농사시험장소 설비	-	-	23,865

출처: 『대한매일신보』, 1905. 2. 27; 1906. 1. 19; 1906. 11. 22에서 인용하여 작성.

는데, 시간이 갈수록 예산이 세분화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제급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외국인(주로 일본인) 교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한국인 봉급 예산보다 많은 점으로 볼 때 급여가 상당히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농상공학교의 분리

1906년 칙령 제40호에 따라 관립 학교의 관제가 바뀌었다. 학부 직할학교와 농상공부 직할학교로 나뉘면서 농상공학교는 다시 농림학교와 공업학교, 상업학교로 분할 설립되었다. '농림학교규칙'(농상공부령 제48호, 1906. 9. 10)에 의거하여 관립농림학교(후에 농림전문학교)가 설립되고, 1907년 수원으로 옮기면서 후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전신이 된다. 같은 시기인 1907년 '관립공업전습소규칙'(농상공부령 제54호)에 따라 관립 공업전습소가 분리 설립되어(후에 경성공업전문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신이 되었다. 그러나 상업과의 후신으로 설립된 관립 상업학교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당시 대한제국 정부의 상업교육기관 설립 시도로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보성(普成)전문학교였다.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는 1905년 5월 5일 대한제국 대장원경 대신(재무장관) 이용익(李容翊)이 고종 황제의 지원을 받아 개교했으며 법률학 전문과와 이재학(理財學) 전문과로 구성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과 1907년 고종 강제 퇴위로 인해 그 추진이 마무리되

지 못했으나 보성전문학교의 설립은 대한제국 황실의 상업교육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농상공학교의 상업과는 재정 문제로 유명무실해지다가 일본 재벌 오쿠라 기하치로(大倉喜八郎)가 20만 원을 출연하여 1907년 3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사립 학교로 바꾸어 12세 이상이 입학할 수 있는 중등교과과정이 개설되고 1907년 4월 1일 선린상업학교로 개명했다. 바로 후일의 선린상업고등학교의 전신이다.

제2절 일제 강점기의 상학, 경제학 교육

1) 경성고등상업학교와 경성경제전문학교

(1) 동양협회 경성전문학교의 설립

관립 농상공학교가 해체된 이후 관립 계통의 상업전문학교는 보성전문학교밖에 없었다. 그나마 1915년 3월 '전문학교규칙'에 따라 보성법률상업학교로 격하되었다.[2] 일제는 상공학교에서 시작된 한국의 관립 상업교육을 무시하고 식민지 경영을 위한 인재 양성 목적으로 상업교육을 도입하려 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1907년 10월 1일 동양협회 전문학교 경성분교를 개설했다.

이 학교는 경성 대화정(현재 서울 중구 필동 1가 24)에 있는 700평 대지 위에 건평 280평의 교사를 건립하고, 학생은 도쿄의 동양협회 본교에 재학하는 조선어과 제3학년 38명과 연구생 5명을 보내 시작했다.[3] 교수 및 강사는 당시 경성의

2 1905년 고종황제의 보조금과 당시 대장원경(재무대신) 담당이던 이용익이 출연하여 설립한 보성전문학교는 1910년 천도교의 손병희 등이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사립이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3월 '사립학교규칙'과 '전문학교규칙'을 공포하고 이 규칙에 의해 설치하는 전문학교가 아니면 전문학교라 칭할 수 없다고 했다. 이로 인해서 보성법률상업학교로 격하되었다가 1921년 12월 18일 전 국민의 출연으로 조선총독부령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보성전문학교를 부활시킨 후 고려대학교의 전신이 되었다.

3 연구과는 본과 3년을 수료한 일본인만 입학할 수 있었다. 제1부는 도쿄에 설치하여 연구생은 조선어를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제2부는 경성분교가 담당하는데 교과목은 매주 수업시간 기준으로 영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한국 통치와 개발에 필요한 교육을 했다. 제1회 졸업식은 1908년 4월 10일에 거행되었다. 이들은 반년 내지 1년을 경성분교에서 교육받았다. 이후 동양협회 식민학교로 개칭한 후 역시 경성분교를 두었다가, 1918년 4월 학교 이름을 척식대학(拓殖大學)으로 개칭하면서 경성분교를 도쿄 본교와 완전 분리하여 동양협회 경성전문학교를 설립했다.

1918년 6월 6일 개교한 동양협회 경성전문학교는 수업연한 3년에 행정과와 고등상업과로 구성되었다. 입학 자격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한국과 동양에 관한 전문교육을 했다. 1919년 동양협회 식민전문학교 본교 파견 학생들이 전부 졸업했으며, 12년 동안 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전부 조선총독부 관리, 은행 및 금융조합, 철도국, 전매국 등과 산업 부문의 경영자로 취업했다.

동양협회 경성전문학교는 1919년 5월 경성부 숭이동(현재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으로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했다. 1919년 조선상업회의소 연합회와 부산상업회의소의 청원을 받은 일본 문부성의 인가에 따라 1920년 5월 1일 동양협회 경성전문학교가 재단법인 사립 경성고등상업학교로 개칭되었다. 여기에는 조선총독부, 조선은행,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공동출자했다. 인가 당시 교수 및 강사는 32명이었고, 학생 수는 1년생 71명, 2년생 32명, 3년생 37명, 총 140명으로 전원 일본인이었다(趙仁錫, 1999: 21; 이정호, 2008: 12).

(2) 관립 경성고등상업학교의 설립

사립 경성고등상업학교는 1922년 3월 31일 관립 경성고등상업학교로 변경되었다(칙령 제151호에 따른 조선총독부령 제53호). 관립 경성고등상업학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수학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22년 한국인이 최초로 입학했고, 1925년 3월 한국인 5명이 최초로 졸업했다. 이는 타이완에 있는 동양협회 타이완 분교에서 1917년 초창기부터 일본인과 타이완 인이 공학을 시작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동양협회 경성전문학교, 사립 경성고등상업학교 등에서는 식민지 지배를 위해 관리 중심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한국인을 배제했고, 일

어 (3), 조선어 (6), 조선사정 (6), 실무 강습 (5)로 구성했다(趙仁錫, 1999: 20).

본인이 한국인에게 상업기술을 보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15년 3월에 제정된 전문학교규정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학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22년에 와서야 개정 조선교육령에 따라 한국인 입학이 허용되었다. 그에 따라 관립 경성고등상업학교에도 한국인이 입학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한국인 입학 비율은 10~20% 정도로 다른 학교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4] 1945년까지 경성고등상업학교의 총 졸업생 2,084명 중에 한국인 학생은 416명으로 19.9%에 불과했다.

192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 설립된 관립 전문학교는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고등공업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등 5개교에 지나지 않았다. 사립으로는 보성전문학교(법과, 상과),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문과, 신학과, 상과, 수물과), 숭실전문학교(문과), 이화여자전문학교(문과, 음악과) 등 5개교가 있었다. 한편 1924년 6월 12일 경성제국대학이 개교하여 법문학부 제3류에 경제학 전공을 두었다. 하지만 한국인 졸업생은 1938년에 가서야 배출된다.[5] 그 이후 설립된 전문학교로는 대구의학전문학교, 평양의학전문학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중앙불교전문학교와 경성고등공업학교에서 분리된 경성광산전문학교 등이 있었다.

1939년 10월 경성고등상업학교는 경성부 종암정(현재 서울 성북구 종암동 19)에 새 교사를 건립하여 이전했다. 이후 1975년 서울대학교 종합화에 의해 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들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할 때까지 상과대학의 역사는 이 종암동 교사에서 이어지게 된다.[6]

1944년 4월 6일 칙령 제236호로 고등상업학교는 전시교육의 비상조치로 수업연한을 2년 6개월(9월 졸업)로 단축하면서 경성법학전문학교(정원 60명)와 통합하여 경성경제전문학교로 개칭·개편한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더불어 경성경

4 예를 들어 늦게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의 한국인 학생 비율이 의학부와 이공학부는 1/3, 법문학부는 1/4이었던 데 비해 경성고등상업학교는 1/5 미만이었다(이충우·최종고, 2013: 39).

5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는 법학과와 문학부(철학과, 사학과, 문학과)로 전공을 나눌 수 있는데, 경제학 전공 졸업생은 1934년 입학생부터 나온다. 문과 을류 15명 중 6명이 경제 전공이었다(이충우·최종고, 2013: 431).

6 서울대학교 종합화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은 상학과와 경영학과, 경영대학원이 경영대학으로 통합되고 경제학과와 무역학과는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된다(추후 두 학과는 경제학부로 통합된다).

제전문의 일본인 교수는 전부 물러가고 한국인 교수진이 최초로 구성되었다.

◆ 교과과정의 변화

경성고등상업학교의 교과과정은 경제 전문으로 개편될 때까지 5회에 걸쳐 바뀌었는데, 사회 환경이나 경제 환경 변화와 학문의 발전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

1922년 교과과정은 [표 4-6-2]에 나와 있듯이 17과목[그중 4과목은 복수과목으로 서법(書法)과 상업작문, 부기와 회계학, 상업학과 상업실습, 경제학과 재정학이었는데, 후에 이들 과목은 각각 독립 과목이 된다]에서 1931년에는 [표 4-6-3]과 같이 34과목으로 늘어난다. 매주 수업시간은 1학년 35시간, 2, 3학년은 34시간이다. 그러나 1931년부터는 1학년도 34시간으로 조정되어 학기당 102시간, 연간 204시간이 되었다.

[표 4-6-2] 경성고등상업학교 1922년 교과과정 단위: 주간 시수

학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수신	1	1	1
국어(=일본어)	2	2	1
영어	7	8	8
서법, 상업작문	1	-	-
상업수학	2	2	1
부기, 회계학	4	2	2
상업학, 상업실습	4	5	8
상업지리	2	1	-
상업사	-	-	2
공학	2	-	-
상품학	-	2	-
법률학	3	3	3
경제학, 재정학	3	3	2
통계학	-	1	-
동양경제사정	-	-	2
제2외국어	2	2	2
체조	2	2	2
계	35	34	34

출처: 경성고상규정 제2조(총독부령 제42호), 『조선총독부관보』, 1931. 4. 9.

[표 4-6-3] 경성고등상업학교 1931년 교과과정 단위: 주간 시수

학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수신		1	1	1	1	1	1
일본어	(상고 출신)	2	2	-	-	-	-
일어와 한문		2	2	2	2	-	-
영어		9	9	8	7	7	6
상업통론	(중학 출신)	2	2	-	-	2	2
화폐금융론		-	-	-	-	-	-
은행론		-	-	2	2	-	-
거래소론		-	-	-	-	-	2
창고론		-	-	-	-	-	2
교통론		-	-	2	2	-	-
해상보험론		-	-	-	-	2	2
경영학		-	-	-	-	2	2
상업부기	(중학 출신)	3	3	-	-	-	-
은행부기		-	-	2	1	-	-
원가계산		-	-	-	2	-	-
회계학		-	-	-	-	2	1
상업수학	(중학 출신)	3	3	1	1	-	-
상업작문	(중학 출신)	1	1	-	-	-	-
상업실천		-	-	-	-	2	2
상품학		-	-	2	2	-	-
상업지리		2	2	-	-	-	-
동양경제사정		-	-	-	-	2	2
경제원론		3	3	-	-	-	-
상공정책		-	-	2	2	2	-
상업사		-	-	2	2	-	-
재정학		-	-	-	-	2	2
법학통론		3	-	-	-	-	-
민법		-	3	3	3	-	-
상법		-	-	-	-	3	3
근세사	(상고 출신)	2	2	-	-	-	-
이화학	(상고 출신)	2	2	-	-	-	-
수학	(상고 출신)	2	2	-	-	-	-
체조		3	3	3	3	3	3
선택과목		2	2	4	4	4	4
합계		34	34	34	34	34	34

출처: 경상고상규정 제2조(총독부령 제42호), 『조선총독부관보』, 1931. 4. 9.

1922년 교과과정의 특징은 영어를 주간 시간수로 3년간 23시간 배정하여 주력한 것과 경제학 계통이 11시간인 데 비해 상학 계통에 38시간을 배정한 것이다. 이밖에 법률학 9시간, 공학이 2시간이었다(학기제로 하면 시간 수를 2배로 가산해야 한다).

상업학교 출신은 상업수학에서 2시간과 부기·회계학에서 4시간을, 수학 3시간과 이화학 3시간으로 대체하여 보강하게 했다. 일본인은 국어(일본어)를 대신해 조선어를 수강할 수 있게 하고, 제2외국어는 러시아어, 독일어, 중국어 중에서 선택하여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한 언어를 수강하게 했다.

이에 비해 1931년 교과과정은 학기별로 구분하여 상학계가 총 64시간, 경제학계가 20시간으로 변모하면서 경제원론, 경제정책(상공정책), 화폐금융론이 신설되었다. 한편,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한 깃카와 요시히로(吉川義弘) 교수가 경영학을 개설했다.

1931년 교과과정에서는 각 과목이 업무 영역별로 분화했다. 예를 들어, 재정학이나 회계학, 상업작문이 독립과목이 되고, 은행론, 거래소론, 창고론, 교통론, 해상보험론이 생겼는가 하면, 상학은 상업부기와 회계학 과목을 상업부기, 은행부기, 원가계산, 회계학으로 분화했다. 법률학은 법학통론, 민법, 상법으로 구분되었다. 수리과학이 강조되어 상업수학, 수학, 통계학이 있었다. 영어의 비중은 여전히 1922년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어 경성고등상업학교 출신이 영어를 잘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였다. 특히 교수나 강사를 외국인으로 채용한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

또한, 일본인의 경우 조선어를 선택하고, 상업학교 출신에게는 일어 및 한문을 총 4시간으로 배정해 중학교 출신보다 더 많이 수학하도록 했다. 체조에 교련이 포함되는데 야외연습은 시간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4-6-3]에서 볼 수 있듯이 1931년 교과과정의 특징은 선택과목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상학은 회계감사, 시장론, 신탁론, 보험론, 상업경제서 강독에서 선택하도록 했고, 경제학은 경제학사, 농업정책, 교통정책, 통계학 중에서 선택, 법률학은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중에서 선택하게 했다.

또한, 어학은 조선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에서 골라 배우게 되었다. 그밖에 논리학, 심리학, 철학개론, 교육학, 문명사, 공학 등을 2, 3학년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표 4-6-4] 경성고등상업학교 1938년 교과과정 단위: 주간 시수

학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수신		1	1	1	1	1	1
일본어		2	2	2	2		
중국어		3	3	2	2	2	2
영어		8	8	8	7	7	6
상업통론	(중학 출신)	2	2	-	-	-	-
화폐금융론		-	-	-	-	2	2
은행론		-	-	2	2	-	-
거래소론		-	-	-	-	-	2
창고론		-	-	-	-	-	2
교통론		-	-	2	2	-	-
해상보험론		-	-	-	-	2	2
경영학		-	-	-	-	2	2
상업부기	(중학 출신)	3	3	-	-	-	-
은행부기		-	-	2	1	-	-
원가계산		-	-	-	2	-	-
회계학		-	-	-	-	2	1
상업수학	(중학 출신)	3	3	-	-	-	-
상업작문		1	1	-	-	-	-
상업실천		-	-	-	-	2	2
상품학		-	-	2	2	-	-
상업지리		2	2	-	-	-	-
동양경제사정		-	-	-	-	2	2
경제원론		3	3	-	-	-	-
상공정책		-	-	2	2	2	-
상업사		-	-	2	2	-	-
재정학		-	-	-	-	2	2
법학통론		3	-	-	-	-	-
민법		-	3	3	3	-	-
상법		-	-	-	-	3	3
근세사	(상고 출신)	3	3	-	-	-	-
이화학	(상고 출신)	2	3	-	-	-	-
수학	(상고 출신)	3	2	-	-	-	-
체조		3	3	3	3	3	3
선택과목		-	-	2	2	2	2
상업수학	(전체)	-	-	1	-	-	-
합계		34	34	34	34	34	34

출처: 경성고상규정 제2조(총독부령 제105호), 『조선총독부관보』, 1938. 5. 21.

학교장은 사정에 따라 이들 과목을 선정하고 수강 학생이 적으면 개설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광범한 선택과목의 개설은 1970년대의 상과대학 커리큘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1938년 교과과정([표 4-6-4])은 이전과 비슷했지만, 중일전쟁 후 일본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그에 발맞추어 중국어를 일본어보다 6시간이나 많은 14시간을 배정한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상업학교 출신 중 은행부기 시험에 통과한 자는 은행부기 대신에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했다.

1939년([표 4-6-5])부터는 상학과 경영학 학과목이 줄면서 경제학 과목이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다. 동양경제사와 대륙경제정책이 필수과목이 되고 중국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선택과목에 중국 최근사, 중국 사회사정, 중국 화폐금융론 등이 들어갔다. 화폐금융론은 은행과 금융론, 화폐 및 외국환 이론으로 나누어졌다. 교통론은 해운과 육운, 공운으로 나누어지고, 상품실험, 배급조직론, 물가론, 세관 및 창고론, 협동조합론, 경기변동론, 경제통계론, 세계근세사, 상사관계법, 국제법, 경제심리학 등 최근에도 볼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학에서는 다른 제2외국어와 함께 조선어가 선택과목이 되었다.

1943년에 와서는([표 4-6-6]) 제1외국어와 제2외국어가 선택과목이 되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중에서 선택하게 하고, 조선어 말살정책으로 조선어와 러시아어, 프랑스어가 사라졌다. 경제학에서는 일본산업론과 동아경제론이 신설되고, 선택과목이 특수과목으로 변경되어 경제통제법, 세계경제론, 식민론 등이 신설되어 상학, 경영학과 비중이 비슷해졌다. 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체조에 포함되었던 교련이 독립하고, 체조시간에 항공 기초훈련이 실시되었다.

1944년에 관립 경제전문학교로 변모하면서 교과과정은 [표 4-6-7]과 같이 많이 단순해졌다. 이는 전쟁이 격화되면서 각종 동원으로 인해 충실한 수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 교과과정의 특징을 보면, 선택과목이 대폭 축소되어 증과 시간에 경제나 경영 또는 법률이나 수학과목을 선택하게 했다. 외국어도 1개 국어나 2개 국어를 수강하게 했지만 시간은 많이 배정했다. 전시라는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으로는 교련 시간이 많이 배정되어 총 시간 수로 3년 동안 420시간이나 되었다. 여기에 야외연습을 더하면 대단한 비중이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다양한 선택과목을 설정할 수 없었다.

고등상업학교부터 경제전문학교에 이르기까지, 전체 교과과정에서 실업학교

[표 4-6-5] 경성고등상업학교 1939년 교과과정 단위: 주간 시수

학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수신	1	1	1	1	1	1
일본학	2	2	1	1	1	1
일본사	2	2	-	-	-	-
일본어	1	1	-	-	-	-
중국어	6	6	6	6	5	5
영어	4	4	3	3	2	2
상업통론 (중학 출신)	2	2	-	-	-	-
화폐금융론	-	-	-	-	2	2
교통론	-	-	-	2		
보험 및 해상보험	-	-	-	-	2	2
경영학	-	-	2	2	-	-
부기 (중학 출신)	3	3	3	-	-	-
원가계산	-	-	-	3	-	-
회계학	-	-	-	-	2	2
상업수학	-	-	2	2	-	-
상품학	2	2	-	-	-	-
상업지리	2	2	-	-	-	-
상업문(商業文)	1	1	-	-	-	-
상업실천	-	-	-	-	1	1
상업사	2	-	-	-	-	-
주산	1	1	-	-	-	-
경제원론	-	2	2	2	-	-
통계학	-	-	2	-	-	-
동양경제사정	-	-	-	-	2	2
동양경제사	-	-	2	2	-	-
상업정책	-	-	-	-	2	2
공업정책	-	-	-	-	2	-
대륙경제정책	-	-	-	-	-	2
재정학	-	-	-	-	2	2
법학통론	2	-	-	-	-	-
민법	-	2	3	3	-	-
상법	-	-	-	-	3	3
이화학 (상고 출신)	2	2	-	-	-	-
수학 (상고 출신)	2	2	-	-	-	-
선택과목	-	-	2	2	4	4
체조	3	3	3	3	3	3
일본어 (상고 출신)	2	2	-	-	-	-
합계	34	34	34	34	34	34

주: 상고 출신은 상업통론과 부기를 면제하는 대신 이화학과 수학을 수강함.

출처: 경성고등상업학교규정 제2조(총독부령 제74호), 『조선총독부관보』, 1939. 5. 5.

[표 4-6-6] 경성고등상업학교 1943년 교과과정 단위: 주간 시수

학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수신		1	1	1
일본학		-	2	2
체조 및 무도		2	2	2
교련		2	2	2
일본사		2	-	-
일본어 한문		1	-	-
수학 이화학	(상고 출신)	2	-	-
제1외국어		6	6	5
제2외국어		-	-	3
법학 헌법		2	-	-
민법		-	3	-
상법		-	-	3
경제원론		3	-	-
경제정책		-	3	2
경제사		2	-	-
경제지리		2	-	-
재정학		-	2	-
금융론		-	2	-
통계학		-	-	1
일본산업론		-	-	2
동아경제론		-	2	-
상업개론		2	-	-
경영경제학		-	2	-
교통론		-	2	-
보험론		-	-	2
부기	(중학 출신)	4	-	-
회계학		-	-	2
주산 상업문	(중학 출신)	1	-	-
상업수학		-	2	-
상품학		2	-	-
공업개론		2	-	-
연습		-	-	2
특수학과목		-	-	5
합계		34	31	34
특별강의		(*부정기적. 시수에 포함되지 않음)		
*상고 출신은 일본어, 한문		2		
수학, 이화학		2	부기 1	
		부기 3시간 공통		

출처: 경성고등상업학교규정 제2조(총독부령 제185호), 『조선총독부관보』, 1943. 6. 28.

[표 4-6-7] 경성고등상업학교 1944년 교과과정 단위: 주간 시수

학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수신	70	-	70	-	70	-
일본어	70	-	70	-	-	-
수학물리	140	-	-	-	-	-
교련	196	-	112	-	112	-
체조	70	-	70	-	70	-
경제	245	-	210	-	245	-
상업경제	-	105	-	-	-	-
경제사	-	70	-	-	-	-
경제지리	-	70	-	-	-	-
경제학	-	-	-	70	-	70
경제통제	-	-	-	70	-	70
동아경제	-	-	-	-	-	105
재정	-	-	-	35	-	-
통계학	-	-	-	35	-	-
경영	175	-	280	-	350	-
경영총론	-	-	-	70	-	-
공장경영	-	-	-	-	-	105
부기회계	-	105	-	70	-	70
원가계산	-	-	-	-	-	70
공업개론	-	-	-	70	-	70
실무실습	-	70	-	70	-	35
법학	105	-	105	-	70	-
외국어	210	-	210	-	210	-
실습	-	-	70	-	70	-
증과	-	-	35	-	35	-
합계	1,281	-	1,232	-	1,232	-

주: * 상고 출신은 부기회계 시간을 줄이고 국어 및 수리 시간을 늘릴 수 있다.
** 증과 시간은 경제, 경영에 관한 과목이나 법률 또는 수학 1과목에 배당할 수 있다.
*** 외국어는 교장이 지정하는 1개 국어나 2개 국어를 수강하게 한다.

출처: 경성고상규정 별표 1(총독부령 제263호), 『조선총독부관보』, 1944. 6. 30.

로서 특이한 것은 출신 학교에 따라 이수시간이 다르다는 점이다. 중학교 또는 고등보통학교 출신자와 상업학교 출신자에게 요구하는 이수시간이 각각 달랐다. 상업학교 출신자는 상학 계열 과목 이수가 적은 대신에 교양과목 이수가 늘어난다. 그에 비해 중학교 또는 고등보통학교 출신자는 상학 계열 과목 이수가 늘어나는 대신에 교양과목 이수가 줄어든다. 1922년부터 1938년까지는 각각 8시간, 1939년부터 1942년까지는 6시간, 1943년에는 4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상업학교에서 가르치는 상학 계열 과목과 전문성 수준에서 차이가 생기기도 했지만 경제학 과목의 증가에 따라 상업학교에서 배운 과목이 전문학교에서 폐지된 것과 연관이 있다. 그러나 그 후 1944년부터 광복 때까지는 수강신청에서 출신학교별 차이가 없어졌다.

일제 강점기의 고등상업학교와 경제전문학교 교과과정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6차에 걸쳐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령에 따르면 주간 시간 수로 발표하다가 1944년부터는 학년별 총 시간 수로 발표하므로 이를 알기 쉽게 주간 수업시간 수로 정리하여 비교했다.

앞의 표들에서 알 수 있듯이 상학과 경영학이 개설 초기에는 경제학에 비해 3배 이상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경제학 비중이 높아져 1943년 이후에는 비슷해졌다. 그렇지만 중학교 출신은 상학 과목을 미리 배우지 않았으므로 상학, 경영학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주목할 점은 외국어 교육인데, 초기에는 경제학 시간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국인 강사를 채용해서 강의하고, 중국 대륙으로 침략이 강화된 시기에는 중국어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서 영어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외국어의 전체 비중은 크게 줄지 않았다.

고등상업학교 개학 초기에는 일어 대신에 조선어를 수강할 수 있었다. 나중에는 제2외국어가 되었다가 조선어 말살정책으로 아예 교과목에서 사라졌다. 교과목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선택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었는데, 수강생 수가 적으면 개설하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과목 구성은 상과대학 설립 이후까지 영향을 주었다.

◆ 교수

경성고등상업학교가 개설된 1920년 당시의 교수진은 교장 1명, 교수 5명에 강사

[표 4-6-8] 경성고등상업학교 교수 및 강사

	이름	재임 기간	담당 교과목
교수	오쿠다 사다이치로(奧田定一郎)	-	공학, 경성고공 교수 겸임
	요코야마 도미키치(橫山富吉)	-	영어, 경성의전 교수 겸임
	야마모토 도모미치(山本智道)	-	영어
	이시무라 야스사부로(石村保三郎)	-	영어
	가네야스 린타로(兼安麟太郎)	1922~1938	법학통론, 상법, 재정
	곤도 에이조(近藤英三)	1922~1929	회계학, 부기, 상업수학
	도미나가 요모지(富永四方司)	1922~1925	-
	니시하라 미네지로(西原峰次郎)	1922~1938	보험론, 교통론, 해상보험
	무라사키야마 노보루(紫山 昇)	1922~1938	상업사, 경제원론, 화폐금융론
	가토 렌페이(加藤廉平)	1922~1943	상업정책, 공업정책, 상업실천, 상업 지리
	미요시 모리하루(三好守治)	1922~1938	상업통론, 은행론, 상공경제
	이지마 시게지로(飯島滋次郎)	-	독일어, 경성의전교수 겸임
	요시카와 요시히로(吉川義弘)	1922~1938	상공경영론, 회계학, 매매론, 통계학
	와타우에 히코타로(渡植彦太郎)	1929~1931	경제원론, 상업사, 근세사
	야마구치 다케오(山口武夫)	1930~1945	은행론, 상업부기, 통계학
	야마구치 쇼고(山口正吾)	1931~1938	동양경제, 경제학사, 영어강독, 거래소론
	아마노 신이치(甘濃信一)	1932~1938	상업통론, 은행론, 근세사, 화폐금융론
	사이토 도시아키(齊藤俊章)	1934~1945	상업지리, 창고론
	오이카와 간(及川 完)	1938~1945	상업통론, 상공정책, 상업사
	야마다 나가오(山田長夫)	1938~1943	경제학사, 은행론, 근세사
	스에마츠 겐로쿠(末松玄六)	1939~1943	-
	야스다 미츠루(安田 充)	1939~1945	화폐금융론, 은행론, 거래소론
	미자와 데루히코(三澤輝彦)	1939~1945	보험론, 교통론, 창고론
	우에키 소(植木 總)	1939~1945	-
	야마모토 마사노부(山本正誠)	1922~1931	동양경제사정, 경성의전 교수 겸임
강사	이토 야스시(伊藤 靖)	-	영어
	후지쿠라 료지(藤倉良知)	-	서법
	오지마 미타카시(尾島鷹市)	-	독일어
	호리 쓰루오(堀 鶴雄)	1922~	상품학, 상업수학, 부기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1927~1930	동양경제사정
	윌리암스 게일(W. Gale)	-	영어

[표 4-6-8] 경성고등상업학교 교수 및 강사(계속)

	이름	재임 기간	담당 교과목
강사	에밀 마텔(Emile Martel)	-	불어
	이와사 시게카즈(岩佐重一)	1922~	회계학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1922~1927	-
	데라카와 마쓰지로(寺川末次郎)	1922~1928	-
	아사카와 노리다카(淺川伯敎)	1922~1926	상품학
	이케다 이나기(池田稻城)	1922~미상	상품학
	사토 사쿠로(佐藤作郎)	1927~미상	교통론
	도야마 기요시(遠山 淸)	1927~미상	교통론, 보험론
	미즈타 나오쿠라(水田直倉)	1928~미상	재정학, 헌법, 조선행정
	토미나가 요모지(富永四方司)	1931~1934	상업수학, 은행부기
	야마네 미노루(山根 穗)	1933~1938	협동조합
	사누이 겐스케(讚井源輔)	1933~1938	은행론, 외환론
	오우치 다케지(大內武次)	1938~1945	동양경제사정
	스즈키 다케오(鈴木武雄)	1938~1945	화폐금융론
	시카타 히로시(四方 博)	-	경제학
	모리타니 가쓰미(森谷克己)	1944~1945	경제학
	M. 헵토레루 (マキシミリアンフヨフトレル)	-	러시아어
	니헤이 히사시(二瓶 久)	-	이화학
	사에키 구니하루(佐伯國治)	-	이화학
	유우지 에쓰조(勇士悅造)	-	주산
	가토 노부오(加藤昇夫)	-	민법
	가마쓰카 다스쿠(鎌塚 扶)	-	수신
	구도 시게오(工藤重雄)	-	체조, 교련 / 육군소위
	오누마 코토(大沼 事)		
	R. H. 블라이스(R. H. Blyth)	-	영어
배속장교	요시에 교쥬(吉江協中)	-	육군 중령

출처: 『경성고등상업학교 일람』(1920); 이기준(1983: 167~168); 趙仁錫(1999: 27~28).

25명이었다. 교수들이 두 과목 내지 세 과목을 가르치는 데 비해, 강사들은 한 과목만 담당했다. 영어 시간 비중이 높은 만큼 영어 교수 2명에 강사가 2명이었고, 그중 1명은 미국인이었다. 유일한 한국인 강사는 조선어 교과였으나 뒤에 가서는 일본인이 담당했고, 그나마 조선어 말살정책에 따라 교과과정에서 사라진다. 중국어는 중국인 강사 1명이 있었으며 중일전쟁 중에는 중국어 시간과 관련과목이 증가했다.

요시카와 요시히로 교수는 미국 브라운 대학 MBA로서 1922년부터 강사로 재직한 이래 1938년까지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성고등상업학교에서 상공경영, 회계학, 상업지리, 통계학을 가르쳤다. 1926년에는 경성법학전문학교의 조교수로 임명되어 상업학을 담당했다. 그는 1927년 경성고등상업학교 교수를 겸임하다가 1928년부터 경성고등상업학교 전임교수가 되었고, 1931년부터는 정식으로 경영학 강의를 개설하여 1938년까지 강의했다. 광복 후에는 일본에 귀국해서 일본 경영학회 회장이 된다.

학교가 성숙기에 들어선 1939년에는 교장 1명, 교수 5명, 조교수 4명, 강사 21명이 있었다. 초기와 숫자상으로는 같지만 학사학위 소지자가 대부분이었다. 교수와 조교수들은 보통 네 과목을 담당하고 교내 강사는 두 과목 내지 네 과목을 가르쳤다. 이에 비해 외부 강사는 한 과목만을 가르쳤는데, 대부분 경성제국대학 교수나 경성제국대학 예과 교수들이었다. 특히 영어는 교수 1명에 강사 3명이었고, 그중에 영국인 1명, 미국인 1명이 있었다.

전쟁이 심해지면서 교련은 체육에서 분리하고 시간 수는 더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학교 배속장교는 육군 대령이 맡고 교관은 소위가 담당하면서 야외 교련 시간이 크게 증가했다.

◆ 졸업생의 사회 진출

졸업생의 사회 진출 현황을 보면 학교에 대한 사회의 평가와 학교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자료가 남아 있는 1회 졸업부터 13회 졸업까지 경성고등상업학교 전반기에 졸업한 802명의 취업 현황을 보면, 조선은행(한국은행) 18명, 식산은행(산업은행) 31명, 시중은행 63명, 금융조합(농협) 100명으로 집계되어, 금융기관이 총 212명으로 26.4%였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이 총 116명으로 14.5%였다. 철도국과 전매국이 현재는 정부 산하 공기업이지만 당시

는 공무원에 가깝고 보수가 좋은 직장이었는데, 이 철도국과 전매국은 97명으로 12.1%에 이르렀다. 기업에 취직한 회사원은 모두 198명으로 24.7%, 자영업은 11.2%였다. 입학생들 부모의 직업으로 미루어 가업을 물려받거나 자신이 직접 창업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분류되었다.

교육기관 취업은 실업교육학교인 상업학교 교원 33명, 일반 중등교육기관인 중학교 또는 고등보통학교 교원이 18명으로 총 51명, 6.4%였다. 그밖에 일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로서 당시 일본의 명문대학인 도쿄제국대학, 도쿄상과대학, 고베(神戸)상과대학, 규슈(九州)제국대학으로 진학했다. 이들 중 한국 사람은 전예용(全禮鎔, 10), 최경진(崔慶進, 12), 김유택(金裕澤, 12), 임병균(林炳均, 18), 김동조(金東祚, 20), 김종대(金鐘大, 21), 윤당(尹塘, 22) 등 7명이 규슈제국대학으로 진학했다. 도쿄상과대학에는 이병석(李炳奭, 13), 김세련(金世鍊, 15), 신태환(申泰煥, 16), 김지욱(金址郁, 17), 남인호(南寅鎬, 19), 허동(許東, 19), 이동환(李東煥, 20), 이해동(李海東, 22), 김영근(金永根, 23) 등 9명이 진학했다. 이들 중 고등문관시험(오늘날 행정고시와 사법시험) 합격자도 있었다. 도쿄상과대학 출신인 이병석, 이동환, 이해동, 규슈제국대학 출신인 전예용, 최경진, 김동조 등 6명이 있다.

경성고등상업학교 출신들이 사회 요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은 관립 고등상업학교 출신이라는 희소성과 우수학생이라는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인에 대해서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조선은행, 식산은행, 상업은행 등 은행에는 입행원서부터 국적 차별이 있어 일본인을 우선으로 배정했다.[7] 한국인들이 경성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하기 시작한 초기인 1926년부터 1929년까지 전체 졸업생의 취업 상황과 한국인의 취업 상황을 보면 일본인과의 차별을 알 수 있다. 전체 졸업생 265명 중 한국인은 36명으로 13.5%인데, 졸업생이 선호하는 국책은행인 조선은행에는 한국인 취업생이 한 명도 없다. 식산은행에 1명 있을 뿐이고 상급 대학에 진학한 사람 또한 한 명도 없다. 단지 일반은행에 많이 진출했는데 이들은 주로

7 이필석 씨(고상 15회)의 증언에 따르면 학년 수석이었던 본인이 위의 은행들에 지원했다 낙방했던 경험을 「은사를 생각하며」에서 서술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건국 이후 그는 상업은행장과 산업은행 총재가 되었다(숭릉회, 1999: 155).

[표 4-6-9] 초기 졸업생 전체의 취업 동향 단위: 명

졸업 횟수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졸업 연도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졸업 인원	60	75	65	65
조선은행	2	2	-	2
식산은행	2	3	3	4
일반은행	7	7	4	7
금융조합	5	9	9	7
철도국	5	3	6	4
전매국	1	4	5	3
행정기관	10	7	9	9
상업학교	2	4	3	1
고등보통	3	1	3	-
회사원	13	24	18	16
자영	4	7	3	9
진학	-	1	-	1
사망	3	3	2	2

출처: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 편(1977).

[표 4-6-10] 한국인 졸업생의 취업 동향 단위: 명

졸업 횟수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합계
졸업 연도	1925년	1926년	1927년	1928년	1929년	1930년	
졸업 인원	3	7	12	9	8	13	52
조선은행	-	-	-	-	-	-	-
식산은행	1	-	-	1	-	1	3
일반은행	2	3	3	2	4	3	17
금융조합	-	1	3	1	1	2	8
전매국	-	-	1	-	-	-	1
행정기관	-	1	2	-	1	2	6
상업학교	-	-	1	2	-	2	5
고등보통	-	1	-	-	-	-	1
회사원	1	1	2	2	2	3	11
외국	-	-	-	1	-	-	1

출처: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 편(1977).

[표 4-6-11] 경성고등상업학교 말기와 경성경제전문학교 한국인의 취업 상황 단위: 명

구분	경성고등상업학교		경성경제전문학교		
졸업 연도	1943. 3	1943. 9	1944. 9	1945. 8	1946 .6
졸업 인원	30	36	30	40	25
일반은행	2	1	2	4	-
공무원	-	2	2	3	1
군인	-	1	-	-	-
실업학교	-	1	-	-	1
중고학교	1	2	1	-	1
대학	-	1	2	2	1
연구소	1	-	-	-	-
회사원	7	12	2	4	-
자영	-	-	-	2	-
언론기관	-	-	-	-	1
협회	-	-	-	1	-
공인회계사	-	-	-	2	-
외국	3	2	3	1	-
월북	7	4	6	8	6
미상	4	5	10	7	11
사망	5	5	2	6	2

출처: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 편(1977).

상업은행, 한성은행 등 한국계 은행에 취업했다. 자영을 하는 한국인이 없는 데 비해 일본인은 많다. 이는 일본인들이 가업을 승계하거나 자본 조달에 유리해 자영을 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행정기관과 전매청, 철도국의 취업도 어려웠다. 학교 진출도 한국인은 상업학교뿐인 데 비해 일본인은 중학교나 고등보통학교에 취업하고 있다. 초기 4년간 한국인과 전체 졸업생 사회 진출을 비교하면 [표 4-6-9], [표 4-6-10]과 같다.

한국인들의 취업 상황을 경성고등상업학교 말기와 해방 직전인 경성경제전문학교 시절을 비교해 보면 해방으로 인해 새로운 직종으로 진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교수, 공인회계사(과거에는 계리사), 언론계로도 진출했다. 단지 남북 분

단으로 인해 많은 졸업생이 북한에 남거나 월북했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도 많았다.

경성고등상업학교의 졸업생은 제1회(1922년)부터 제24회까지 총 1,824명이 졸업하여 동창회인 숭릉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학교명이 경성경제전문학교로 바뀌어 4회를 추가해 총 28회가 되었으나, 1945년 광복으로 1944년에 졸업한 경성경제전문학교 1회(숭릉회 제25회)를 제외하고는, 제2회는 일본이 패망한 후 1945년 8월에 졸업하고, 제3회(경제전문 2학년 재학)와 제4회(경제전문 1학년 재학)는 이후 국립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전문부 제1회(1947년 7월 졸업)나 전문부 2회(1948년 8월 졸업)로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발족하자 1947년 7월 제1회가 졸업했고, 제2회는 1948년 8월에 졸업했다. 이에 따라 경성경제전문학교 2년 재학생은 상과대학 제4회로, 경성경제전문학교 1년 재학생은 상과대학 제5회로 졸업했는데, 한국전쟁으로 인해 실제로는 1951년 9월에 졸업했다.

그러나 개인사정과 전란으로 말미암아 경성경제전문학교 출신들의 졸업시기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승보 씨가 「길고 긴 대학시대 – 상과대학 7년생」(1990: 216~218)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경성고등상업학교에 입학해서 경성경제전문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했다. 휴학이나 낙제도 하지 않았는데 광복과 학제 변경으로 인해 전문부 3년, 다시 학부 2년에 편입해서 4년제 학부를 졸업했으며, 학기가 4월에서 9월로 바뀌는 바람에 6개월을 더 다녔다고 한다. 1944년 4월 6일 입학해서 1950년 5월 12일 졸업한 것이다.

다음 기수는 한국전쟁 때문에, 그나마 운 좋은 사람이 부산에서 1951년 9월에 졸업할 수 있었다. 대신에 이들은 광복과 건국 이후 경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정부 고위관리, 국회의원 등과 기업의 임원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는 중등교원으로 주로 임용되었으나 광복 이후에는 대학 교수로도 많이 진출했다.

◆ 학생 활동

경성고등상업학교와 경성경제전문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실업교육과 함께 강조한 것은 영어, 중국어를 비롯한 어학 교육이었다. 이에 못지않게 강조한 것은 체육

과 교련이었다. 체육은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 3년 동안 계속했고, 교련은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야외 훈련 시간이 대폭 늘어나 징병 후에 초급 장교를 목표로 한 육군 대령과 소위가 교관으로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청년들의 낭만적인 활동은 이루어졌는데 각종 운동과 음악 관련 동아리 활동이다.

개교 초기부터 야구, 축구, 정구, 유도, 검도, 수영, 육상, 럭비 등의 스포츠 동아리가 있었으며, 승마부, 등산부, 미술부(회화 동호회) 등의 취미 동아리도 있었다. 음악 관련 동아리로는 만도린 클럽, 하모니카밴드가 있다. 그 외에 영화연구회와 변론부가 인기 있었고, 일본 특유의 하이쿠 동호회도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현재 일본의 여러 대학에 있는 동아리 구성과도 비슷하다.

체육부는 전국 전문학교 대회에 출전해 우승하면 일본에 가서 경쟁했다. 경성고등상업학교는 수적 열세를 딛고 여러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는데, 1927년 가을 전국 대학 전문학교 유도대회에서 우승하고 1941년에는 전 일본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다. 1932년에는 전국 고교 전문학교 수영경기대회(인터칼리지)에서 우승했다. 검도부는 1932년에 우승한 이래 전국 대표로 출전했다. 1941년에는 일본육상선수권대회에서 김유택이 단거리에서 우승하고, 팀은 중·단거리 부문에서 우승했는데, 특히 트랙 경기에 강했다.

정구부는 1923년부터 전국 중학교 대항 정구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전통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와서도 1970년대까지 전국 고교 테니스대회로 전통을 이어갔다. 여러 운동부 중에서도 특히 축구부는 한국인 학생의 클럽으로 여겨졌다. 축구부는 민족 단결의 상징이었고 부원들의 실력도 우수했기에 광복 이후까지 대학 경기에서 결승에 진출할 정도였다. 그밖에 글라이더부는 체육시간에 항공 기초훈련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운동경기는 전문학교, 고등실업학교, 대학예과가 국내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우승교가 일본에 가서 전국 규모로 다시 경기하는 형식이었으며, 경성고등상업학교는 종종 일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2) 경성제국대학과 경성대학 법문학부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 일본이 경성(서울)에 설립한 여섯 번째 제국대학이다. 이

후 광복과 더불어 경성대학이 되었다가 미군정에 의해 폐교되었다.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를 설립하는 데 경성대학의 시설이 활용되었고 경성대학 재학생들은 서울대학교로 편입되었다. 학부는 법문학부, 의학부, 이공학부로 구성되었으며, 법문학부에서는 법학 전공과 행정학, 정치학, 철학, 국문학, 중문학, 사학 및 경제학을 전공했다.

경성제국대학의 문과에는 갑류와 을류가 있었으며 다양한 전공이 가능했다. 학위는 법학사로 수여했다. 이후 경성대학을 거쳐 서울대학교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들 전공들은 학과로 독립했다. 이에 따라 경제학 전공 재학생은 상과대학으로 편입해 졸업하면서 경제학사 학위를 받았다.

1935년 경성제국대학 시절부터 법학과는 전공 이수 코스로 제1류(순수법학, 사법학), 제2류(정치학, 공법학), 제3류(경제학)로 구분해서 운영했다. 경제학 과정의 교과과정은 전공필수 9단위와 선택과목 8단위로, 선택과목은 전공필수과목에서 이수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중에서 이수할 수 있었다.

- 전공필수(9단위)
  헌법, 민법 1~4, 상법 1~3, 정치학, 재정학, 경제원론, 경제사, 화폐금융론 1 또는 화폐금융론 2, 경제정책, 사회정책, 통계학, 강독연습 1단위, 연습 또는 특강 1단위
- 선택과목(8단위)
  행정법, 민법 5, 상법 4, 형법, 사회법, 국제공법, 국제사법, 법철학, 동양법제사, 서양법제사, 정치학사, 정치사, 외교사, 경제학사, 화폐금융론(전공필수과목에서 이수한 교과목 제외), 연습 또는 특강 1단위

교수는 법문학부의 경우 전부 일본인이었으며, 어학은 외국인 교수가 있었다. 학생 선발은 중학교나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가 입학시험을 거쳐 예과에서 2년간 공부한 후 본과로 진입했다. 한국인 학생은 대체로 전체 학생의 30% 수준으로, 경성고등상업학교의 선발 비율보다 높았다.

그중에서 경제학 전공은 1934년 예과 입학생으로 6명, 1935년 3명, 1936년 7명, 1937년 5명, 1938년 11명, 1939년 1명, 1940년 2명이 있다. 1941년 이후 입학생 중 경제학 전공자는 상과대학 제1기로 1947년 7월 졸업했는데 조영휘(趙英

徽), 서우택(徐禹澤), 송겸호(宋謙鎬), 최형규(崔亨奎) 등 4명이 확인된다.

제3절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의 설립

태평양전쟁이 막바지가 되면서 경성경제전문학교는 징병자원으로 3학년을 조기 졸업시키고, 2학년은 함경도 성진에 있는 고주파 공장에 근로자로 동원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자 경성경제전문학교 시설은 일부 파손된 채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위원회에 이관된다.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일 접수하지는 못했지만, 일본인 교수가 전부 귀국하여 교직원이 없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한국인 교수를 모셔 와야 했는데 이인기(李寅基) 교장을 제외한 교수 대부분이 좌익계였다. 그중에는 자본론을 우리나라 최초로 번역한 교수들도 있었다.[8] 일제 강점기에는 영미경제학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반면 식민지 통치와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팽배했으며 이를 애국이라고 여겼다.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느닷없이 제기된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론은 좌·우익을 확실하게 갈라놓았다. 좌익계가 신탁통치를 찬성하고 우익계가 반대한 이 파동은, 서울 시내에 있는 경성대학과 10개 관립 전문학교를 통합해서 1개 대학원과 9개의 단과대학으로 통합하는 국립서울대학교안(이하 '국대안')에 대한 찬반론으로 이어졌다.

1946년 5월 국대안이 세상에 알려지자 좌익을 중심으로 반대론이 격심하게 제기되었다. 경성경제전문학교를 필두로 경성사범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가 동맹휴교에 들어가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서울 민주학원 공동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또한 각 전문대학 교수 50여 명은 '전문대학 교수단 연합회'를 조직하여 국대안을 조직적으로 반대했다.

---

8 김세련 교수가 교무과장이었는데 노동당 책임자였으며 전석담, 허동 교수 등 좌익 교수가 대부분이었다(이철승, 1980; 정인승, 1982).

그 후 8월 22일에 미 군정청에 의해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법령 제102호)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르면 국립서울대학교는 경성대학,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여자사범힉교, 수원농림전문학교, 경성치과전문학교 등 10개의 공·사립 대학과 전문학교를 종합하여, 상과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치과대학, 예술대학 등 9개의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이 되는 것이었다. 상과대학은 박용하(朴容夏) 교수가 초대 학장으로 1946년 10월에 취임하고 상학과와 경제학과로 구성했다. 그러나 국대안 반대에 따른 학생들의 동맹휴교와 군정청의 휴교령으로 국립서울대학교는 창립 시기 1년 동안 매우 험난한 시련을 겪었고 정상적인 대학으로 활동하기 어려웠다.

상과대학은 설립 초기 혼란의 중심에 있었다. 1946년 4월 7일 동맹휴교의 선봉에 섰다가 10월 10일에 가서야 개교했는데 이는 다른 대학에 비해 한 달 정도 늦은 것이었다. 그리고 12월 10일 다시 동맹휴업에 들어가 다음해 3월 6일에 등교하기로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광복 직후 대학 강단에 섰던 많은 교수가 국립대학 발족 시 교수에 임용되지 못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월북하여 김일성대학 경제학부 교수가 되었다.

4년제 대학과 3년제 전문학교가 4년제 대학으로 새출발을 하면서 복합학제가 마련되었다. 상과대학의 경우 전문학교의 개편으로 전문부가 부설되어 1947년 7월 제1회 졸업을 했다. 1945년 4월 경제전문학교로 입학한 학생은 1948년 8월에 전문부 2회로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때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전문부 4회에 졸업하거나 대학(학부라고 부름)으로 진학할 수 있었다.

전입생으로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을 보충하기 위해 일정한 시험을 치르고 편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편입생들은 이전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여석이 있을 때 실력고사를 거쳐 청강생으로 입학이 허용되었는데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정규 학생으로 편입할 수 있었다.

경성제국대학 예과로 입학한 학생들과 광복으로 귀국한 여러 대학의 재학생은 구제 정책에 따라 상과대학 1회, 2회, 3회로 졸업할 수 있었다. 경성대학(교명에서 제국이 빠짐) 법문학부 학생들은 해당 전공에 따라 법과대학이나 문리과대학의 정치학과나 문학부로 전입했는데,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상과대학으로 전입하여 1회에 4명, 2회에 10여 명이 졸업했다. 이들은 졸업할 때 상학사의 학위를 받

았으나 후에 경제학사로 변경하여 받았다.

1946년에는 연이은 혼란으로 국립서울대학교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했고 상과대학은 10월 10일에 가서야 입학식을 거행했다. 1947년 7월에는 상과대학 제1회 졸업식이 개최되어 24명이 졸업했는데 그중에는 경성제국대학 출신 4명과 경제전문학교 출신 1명[황병준(黃炳晙)]이 있었다.

상과대학은 1975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학칙 개정으로 경영학과는 경영대학원과 함께 경영대학으로 변경되고 경제학과와 무역학과는 사회과학대학 소속으로 분리되었다.

1) 교과과정

서울대학교는 개교 이전부터 개교 후 1년에 걸쳐 신탁통치 파동, 국대안 파동에 의해 교육이나 연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파동이 수습되었다 해도 건국 초기의 혼란과 능력 있는 교수의 절대 부족, 열악한 경제 수준 등으로 대학 운영이 안정되지 못한 채 과거 일제 강점기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당시 학적부를 통해 본 교과과정은 경제전문학교 시절과 큰 차이가 없다. 단지 국어가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바뀌었지만 주간 시수는 2시간으로 같다. 전체적인 교과과정을 보았을 때 전문학교 시절에 비해 영어 과목 시간 수가 대폭 줄어들고 제2외국어 시간도 줄었다. 또한, 체육 과목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었다. 한편 경성고등상업학교 시절 대륙 진출을 위해서 설치되었던 중국어 교육이나 중국화폐금융론, 대륙경제정책, 동양경제사 등의 교과목은 폐지되었다.

상과대학의 경제학과와 상학과는 선택과목을 학생이 선택하기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교과과정은 거의 같았다. 광복 이후는 경제전문학교 시절과 과목 이름은 같지만 교수가 전원 한국인으로 바뀌고 교재도 충분치 않아 충실한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한, 국대안 반대 등 각종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동맹휴학 등으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교수 수가 아주 적고 교과서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으로 개편된 뒤 4년제로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교수

[표 4-6-12] 국립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의 교과과정

1948년	1학기	2학기	1949년	1학기	2학기	1951년	1학기	1952년	
국어	2	2	농업정책	4	-	국사	2	체육 교련	1
통계학	4	-	상법1부	4	-	채권법	2	교통정책	4
경제정책	4	-	협동조합	4	-	형법총칙	4	산업심리학	4
경제학사	2	-	사회정책	4	-	경제원론	8		
부기원리	4	-	영어강독	2	-	경영학	4		
영어강독	4	-	세계경제	4	-	경제영어	4		
독어강독	2	-	재정학	4	-	경제정책	4		
물권법	4	-	체육교련	1	1				
체육교련	1	1	회계학	-	4				
화폐금융론	-	2	공업정책	-	4				
민법총칙	-	4	경제특강	-	4				
경제사	-	4	사회사상사	-	4				
경영경제	-	4	경제철학	-	4				
제2외국어	-	4	경기변동	-	4				
응용부기	-	4	비교헌법	-	2				
금융론	-	2	상업사	-	2				
			한국경제사	-	4				
			상업영어	-	4				
			정치학	-	4				

주: 1951년과 1952년은 부산 피난 시절로 더욱 열악한 상황이었다.
출처: 서울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 편(1986).

법(4학점)을 택해 중등학교 교원으로 진출이 가능했다. 또한 졸업논문 6학점을 통과해야 학사 학위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 총 이수 학점이 180학점으로 되자 과거 선택과목이 그대로 필수과목화되고 외국어는 영어와 제2외국어가 있지만 비중이 낮아졌다. 체육 교련은 한 학기당 1시간으로 줄었다. 전공은 6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부전공은 25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인정을 받았다. 대학 예과 시절에 중점을 두었던 교양과목이 개설되지 못해 전공과목과 법률학, 어학 일색이었다. 전입생, 편입생들은 과거 이수 학점이 그대로 인정되고 교과과정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각자 수강한 성적에 따라 인정받았다.

당시의 학적부를 참고로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표 4-6-12], [표 4-6-13], [표

[표 4-6-13] 국립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상학과의 교과과정

1948년	1학기	2학기	1949년	1학기	2학기	1950년	1학기	2학기	1952년	
국어	2	2	재정학	4	-	군사학	8	4	체육	1
경제사	2	2	상법1부	4	-	전시금융	-	4	특수경제	4
통계학	4	-	체육교련	1	1	한국정치사	-	4	교수법	4
경제정책	4	-	상법2부	2	-	시사영어	-	4	무역실천	4
부기원리		4	농업정책	4	-	영어	-	4	국제공법	4
체육	1	1	은행론	2	-				사회학	4
상업정책	2	-	영어강독	4	-				외국환	4
영어	2	-	어음수표	-	4				상업영어	4
회계학	4	-	채권법	-	4				졸업논문	6
사회정책	4	-	사회사상사	-	4					
물권법	-	4	헌법	-	2					
금융론	-	2								
경제학사	-	2								
민법총칙	-	4								
한국경제사	-	4								

출처: 서울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 편(1986).

[표 4-6-14] 국립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전문부의 교과과정

1946년		1947년	1948년
국어		통계학	상법2부
영어		화폐론	체육
경제원론		민법총칙	회계학
상학통론		영어	외국환
철학개론		영어강독	보험론
제2외국어	독어, 불어 중 선택	경영경제	영어영문학
경제사		농업정책	상업영어
상업부기		논리학	채권법
상품학		은행부기	무역영어
상업산술		재정학	경제학사
민법		상법	협동조합
경제지리		제2외국어	상업정책
교통론		금융론	제2외국어
		무역실천	

출처: 서울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 편(1986).

4-6-14]와 같다.

2) 교수와 졸업생

상기한 것처럼 국립대학이 발족되면서 좌익 교수들은 모두 물러났고 교수진은 다시 공백 상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교수들과 일본의 도쿄상과대학, 규슈제국대학 졸업생들이 교수, 강사로 임용되었다. 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상훈(李常薰, 회계학, 회계감사, 무역실천)
권세원(權世元, 철학, 경제철학, 사회학)
고승제(高承濟, 경제원론, 한국경제론, 한국경제사)
유진순(劉鎭舜, 협동조합론, 경제정책, 경제특강)
이해동(李海東, 재정학, 부기원리)
구병수(丘秉洙, 법학통론, 헌법, 국제공법)
이상구(李相球, 외환론, 국제경제, 외서강독)
육지수(陸芝修, 경제지리)
신태환(申泰煥, 경제원론)
전예용(全禮鎔, 상법)

이 외에도 김주희, 정래길, 한홍재, 정영술, 이지성, 최성준, 권명수 교수 등이 재직한 바 있다.

한편 경제전문학교 출신 학생들은 광복과 군정기를 거쳐 서울대학교가 개교하는 과정에서 수업과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후 상과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원과 외국 유학 등을 통해 상과대학 교수로 활약한 인물들도 다수 있었다. 경제전문학교 졸업 기수별로 상과대학 교수로 재직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황병준(黃炳俊, 경제전문 1944년 졸업, 상대 1회, 경영대학원장 역임)
차병권(車軿權, 경제전문 1944년 입학, 상대 4회 졸업)

변형윤(邊衡尹, 경제전문 1945년 입학 상대 5회 졸업, 상대 7, 8, 9대 학장 역임)

오상락(吳相洛, 경제전문 1945년 입학, 상대 7회 졸업, 경영대학 초대 학장 역임)

이 밖에도 다른 대학에서 서울대학교로 출강한 교수도 많았다. 김철호(홍익대학교), 임인영(우홍, 숙명여자대학교), 차기벽(성균관대학교), 송재만(홍익대학교), 유호선(성균관대학교), 권영찬(건국대학교), 박동섭(명지대학교), 안태호(인하대학교), 김계수(외국어대학교), 구하서(성균관대학교) 등이 그들이다.

경제전문학교 출신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교수 외에도 학계뿐만 아니라 정계, 관계, 금융계 등에 많이 진출했고 기업체 최고경영자도 많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광복과 한국전쟁의 격동기 속에서 납북되거나 월북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전쟁 중 사망한 경우도 빈번했다.

3) 학생 활동

해방과 군정하의 격동기 속에 좌·우익이 갈려 투쟁하는 중에도 새로운 학교에 대한 기대와 청춘의 낭만으로 학생들의 활동은 활발했다. 동맹휴학이 끝나고 학교가 안정을 찾아가자 과거에 발행하다 중단된 『상대학보』와 교지 『문화탐구』가 재발간되었다. 면학 분위기가 높아지자 각종 연구 동아리도 생겼다. 영어 원강반을 통해 영미 경제 서적을 번역했으며 이 과정에서 슘페터 연구반이 생겼다. 응원가와 상과대학 배지도 새로 만들었다.

경성고등상업학교와 경제전문학교 시절의 전통인 스포츠는 광복 후 열악한 사정으로 힘들었지만 축구팀과 야구팀은 활발한 활동으로 대학연맹전에서 결승에 진출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운동장에서 상과대학 측이 고려대학교 응원단을 기습하여 다음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상과대학을 습격하고 기물을 파괴해 나중에 변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한국전쟁의 발발로 이러한 재기의 노력과 청춘의 낭만은 다시 전화 속에 휘말리고 말았다.

부록: 상과대학 연혁

1899. 6. 24	상공학교 설립(칙령 제28호)
1904. 6. 8	농과를 증설하여 농상공학교로 개편(칙령 제16호)
1906	농상공학교 분리(칙령 제40호)
1907. 10	동양협회 경성분교 개설(일본인 전용 학교)
1918. 4	동양협회 경성전문학교로 개칭
1920. 5. 1	사립 경성고등상업학교로 개칭
1922. 3. 31	관립 경성고등상업학교 설립(총독부령 제53호), 한국인과 공학(共學) 개시
1944. 4. 6	경성경제전문학교로 개칭
1945. 10. 22	해방 후 이인기(李寅基) 교수 교장 취임, 한국인 교수 임용 시작
1946. 8. 22	'국립대학교설치령' 공포에 따라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설립(상학과와 경제학과 설치), 경성대학 법문학부 경제학 전공 학생 전입
1947. 7	상과대학 전문부 및 학부 제1회 졸업생 배출

• 참고문헌

자료

『구한국관보』, 『대한매일신보』, 『조선총독부관보』, 『황성신문』

단행본 및 논문

경성고등상업학교 편, 1923~1941, 『경성고등상업학교일람』, 경성고등상업학교.

덕수 백년사 편찬위원회 편, 2010, 『덕수 백년사』, 덕수고등학교 총동창회.

서울대학교40년사편찬위원회 편, 1986, 『서울대학교 40년사, 1946~1986』, 서울대학교4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 편, 1959,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보』,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 편, 1977,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명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

선린중고등학교 총동문회, 2010, 『선린 백년사』, 선린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이기준, 1983, 『교육한국경제학 발달사』, 일조각.

이승보, 1990, 「길고 긴 대학시대 — 상과대학 7년생」, 崇陵会 編, 『京城高等商業学校創立70年 記念文集; 一粒の麦』, 崇陵会.

이정호, 2008, 『서울상대는 어떻게 태어난 학교인가? 송림의 정기』, 기파랑.

이철승, 1980, 「해방기와 나」,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보』 겨울 44호,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

이충우 · 최종고, 2013, 『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 푸른사상.

인고백년사편찬위원회(仁高百年史編纂委員會) 편, 1995, 『인고 100년사(仁高 百年史): 1895~1995』, 상인천중 · 인천고등학교 동창회.

정경학, 1979, 「나의 학창시절」,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보』 여름 41호,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

정인승, 1982, 「우리의 대학시절」,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보』 여름호 47호,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

江旭本, 1999, 「台湾商工学校の創立前後: 『台湾時報』を中心として」, 『拓殖大学百年史研究』 3, 拓殖大学.

趙仁錫, 1999, 「京城高等商業学校の足跡」, 『拓殖大学百年史研究』 3, 拓殖大学.

VERI LUX
TAS MEA

VERI LUX
TAS MEA

제7장

약학대학 전사

1915년 6월 12일 개교한 조선약학강습소(朝鮮藥學講習所)는 1918년 조선약학교(朝鮮藥學校)로 발전했으며, 1930년 경성약학전문학교(京城藥學專門學校)로 승격되었다. 광복 이후 1946년 8월 서울약학대학(사립)으로 재개교한 이후 1950년 9월 30일 국립서울대학교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조선약학강습소, 조선약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는 광복 직후까지 우리나라의 유일한 근대 약학 교육기관이었다.[1]

경성약학전문학교 시절에 이르기까지 이들 교육기관의 재학생은 일본인이 다수였고 상대적으로 한국인은 소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서나마 근대 약학 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이 존재했기에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약학 교육과 제약 및 약업이 공백기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약학대학이 국립서울대학교에 편입되기 이전까지 조선약학강습소, 조선약학교, 경성약학전문학교, 서울약학대학(사립)의 약학 교육제도와 한국인 졸업생의 활동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1945년 10월 22일 이화여자대학교 행림원(杏林院)에 신설, 개강된 약학과가 우리나라의 두 번째 근대 약학 교육기관이다(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1995: 8).

제1절 조선약학강습소의 설립 전후(前後)

1) 1910년 대한의원부속의학교 약학과 설립의 무산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약학 교육은 대한제국의 대한의원(大韓醫院)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1907년 서양 의학에 따른 의료와 의학 교육제도를 확충할 목적으로 대한의원에 치료부, 위생부, 교육부 등 3부를 설치하고, 교육부에서 의사, 약제사, 산파와 간호부를 양성하고자 했다. 1910년에는 대한의원 교육부를 대한의원부속의학교로 개편하고 부속의학교 내에 약학과도 설립하기로 했다. 약학과 설립은 대한의원 약제관(藥劑官)으로 초빙된 고지마 다카사토(兒島高里)와 당시 대한제국의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이던 자작(子爵) 조중응(趙重應)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매일신보』, 1919. 8. 27). 설치 안에 따르면 약학과의 정원은 10명, 수업연한은 3년[전학기(4월 1일~10월 20일), 후학기(10월 21일~3월 31일), 총 6학기]이다. 학비는 전액 관비(官費)로 부담하고, 졸업할 때 약학진사(藥學進士)라는 칭호를 수여하기로 했다(『구한국관보』, 1910. 2. 7. 내부령 제5호).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약학 교육기관인 약학과의 설립 시도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으로 부속의학교가 폐지되면서 무산되었다. 대한의원부속의학교 약학과가 계획했던 학과 교육 내용은 [표 4-7-1]과 같다.

[표 4-7-1] 대한의원부속의학교 약학과 학과표

학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학과	물리학	물리학	약국법	약품감정실습	약품감정실습	위생화학 및 실습
	화학	화학	생약학	생약학실습	조제학 및 실습	조제학 및 실습
	광물학	약용식물학 및 실습	-	제약화학 및 실습	제약화학 및 실습	재판화학 및 실습
	동물학	분석학 및 실습	분석학 및 실습	-	-	-
	수학	수학	-	-	-	-
	일어	일어	일어	일어	일어	일어
	체조	체조	체조	체조	체조	체조

출처: 『구한국관보』, 1910. 2. 7: 대한의원부속의학교규칙(내부령 제5호).

2) 1914년 약품취급강습회의 개최

한일강제병합 이후인 1912년, 조선총독부는 약제사(藥劑師)와 약종상(藥種商), 제약자(製藥者), 매약업자(賣藥業者)를 정의·규제하기 위한 '약품및약품영업취체령'(조선총독부제령 제22호, 1912. 3. 28)을 발포했다. 전통적으로 한약(漢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 소위 양약(洋藥)을 취급하는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취체령에 규정된 약종상과 약제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약학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개설이 불가피했다. 우선 양약을 판매하는 약종상을 양성하기 위한 강습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마침내, 한국인 한약업자들의 모임인 조선약업총합소[朝鮮藥業總合所, 대표 이석모(李碩模)]의 주도로 국내 최초의 근대적 약학 지식을 교육하기 위한 약품취급강습회(藥品取扱講習會)가 1914년 7월부터 3개월간 장교정(長橋町, 현 을지로 1가 장교빌딩 부지)에 있던 장훈학교(長薰學校)에서 개최되었다(『매일신보』, 1914. 7. 17).

3) 1915년 조선약학강습소의 설립

약품취급강습회는 4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강습회의 성공을 계기로 근대적 약학 교육기관인 조선약학강습소의 개설이 추진되었다. 조선약업총합소의 소장이자 약품취급강습회의 주최자였던 조선매약(朝鮮賣藥)의 이석모 사장을 비롯한 한국인 약업자들은 강습소 개설을 위해 자작 조중응을 소장으로 내세웠고, 일본인 약학사(藥學士)인 고지마와 요시키 야조(吉木彌三)가 고문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조중응을 내세운 것은 비록 그가 정미칠적(丁未七賊)이자 경술국적(庚戌國賊)에 포함된 친일 인물이었지만, 대한제국에서 농상공대신으로 재임 시 약학과 설립을 위해 노력한 바 있고, 조선총독부 내에 인맥이 넓어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석모는 간사로 활동했다. 평의원으로는 황금당약방의 유한표(劉漢杓), 화평당약방의 이응선(李應善), 한국인 최초의 약제사이자 대한제국 시기에 약제관으로 활동한 유세환(劉世煥), 조선제약주식회사의 최영철(崔永哲) 사장, 이철희(李哲熙), 건재약국의 최흥모(崔興模) 등 한국인 약업자들 외에, 아라이 도라타로(新井虎太郎), 야마기시 류타로(山岸祐太

郎), 가와마타 류타로(河又隆太郎)와 같은 일본인 약업자들이 참여했다(『매일신보』, 1915. 6. 2; 『의약월보』, 1915. 6. 1).

조선약학강습소는 1915년 5월 28일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같은 해 6월 12일 문을 열었다. 비록 1년제였지만 조선약학강습소가 개학한 1915년 6월 12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약학 교육기관의 역사가 시작된 기념비적인 날이다. 이날 장훈학교에서 신입생 80여 명과 다수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거행했다. 개교식에서 소장 조중응은 "비록 (강습소가) 완전한 교육기관인 '학교'는 아니지만, 약명(藥名)에 대한 개요라도 우선 교육해야 하며 앞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매일신보』, 1915. 6. 16).

4) 조선약학강습소의 운영과 강의 내용

조선약학강습소는 모집 인원 100명 이내로 한국인, 일본인을 함께 모집했다. 물리학, 화학, 약용식물학, 생약학, 화한약학(和漢藥學), 국어(일본어), 일본 약국방(藥局方), 조제술, 약품감정법, 약품취급규칙을 1년간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수업했다. 강사로는 약학사 후지무라 가즈아키(藤村顯一)와 나카지마 쇼조(中嶋省三), 약제사 다케다 모토스케(武田基助), 미야모토 기치지(宮本吉次), 오카다 후미오(岡田文雄) 등의 일본인과, 한국인 한의(漢醫) 홍종철(洪鐘哲), 조병근(趙炳瑾) 등이 참여했다(『매일신보』, 1915. 6. 2).

5) 조선약학강습소 졸업생의 사회 진출 상황과 활동

1916년 4월 3일, 조선약학강습소의 제1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1년간 수업을 받은 졸업생은 한국인 35명, 일본인 5명이었다(『매일신보』, 1916. 4. 5). 조선약학강습소는 1918년 봄까지 3년에 걸쳐 세 번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매일신보』, 1917. 3. 31), 졸업식과 졸업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주로 약종상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일부는 뒷날 조선약제사 시험에 응시하여 면

허를 받아 활동하거나 조선약학교에 진학하기도 했다.[2]

제2절 조선약학교

1) 조선약학교의 설립과 발전

(1) 1916년 '조선약제사시험규칙' 공포와 1918년 2년제 조선약학교의 설립

조선총독부는 1916년 4월 '조선약제사시험규칙'을 공포하고(『매일신보』, 1916. 4. 29), 같은 해 10월 11일 제1회 약제사 면허시험을 실시했다. 이 시험에는 조선약학강습소 출신의 한국인 3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이 응시했으나(『매일신보』, 1916. 8. 17), 강습소 출신 수험생은 전원 불합격되었다.[3] 이로써 약종상 양성을 위한 1년간의 강습소 교육만으로는 약제사 시험에 합격할 만한 실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결국 약제사 양성을 위한 정식 교육기관으로 2년제 조선약학교(朝鮮藥學校)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32명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장은 조중응, 고문은 고지마와 요시키였으며, 아라이, 야마기시, 이응선, 방규환(方奎煥)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매일신보』, 1918. 4. 19).

조선약학교는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고, 종로 5정목(丁目)에 있는 관유(官有) 건물[구 동대문 분서(分署)]을 대부받아 임시 교사(校舍)로 사용하기로 하고 개교 준비를 했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부산일보』, 1918. 4. 20).

조선약학교 초대 교장에는 조선약학강습소 소장 조중응이, 명예고문에는 하가 에이지로(芳賀榮次郎), 단바 게이조(丹波敬三), 나가이 나가요시(長井長義)가, 그

2 대표적으로 황호연(黃虎淵)은 종로 6정목(丁目)에서 약국을 경영했다(『동아일보』, 1935. 4. 11). 또한, 이정재(李楨宰)는 강습소 졸업 후 조선약학교에 진학해 1921년 조선약제사시험에 합격하여 약국을 경영했다(『동아일보』, 1921. 6. 12; 1927. 10. 15).

3 약제사 시험 합격자 명단에 한국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응시한 강습소 출신 한국인 3명은 모두 탈락한 것 같다(『매일신보』, 1916. 10. 25).

리고 이사에는 아라이, 야마기시가 취임했다. 또한 상의원(常議員)에는 이응선(화평당약방 및 조선매약 2대 사장), 민강(閔橿, 동화약방), 최성필(崔聖弼, 영창당 건재약방), 이옥인(李玉仁, 모범매약), 이익열(李益烈), 방규환(동아상회) 등 한국인 약업자들이 대거 취임했다. 이 밖에 기타하라 마사히토(北原正人), 이시카와 시게다이라(石川茂平) 등 일본인도 상의원에 취임했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출처: 홍현오(1972).

[그림 4-7-1] 조선약학교 교사(황금정 6정목 18번지 소재, 촬영 연도 미상)

조선약학교는 1918년 6월 16일 첫 입학시험[과목: 국어(일본어), 이과(과학), 산술(수학) 3과목]을 실시하여 수험자 125명 중 80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매일신보』, 1918. 6. 25). 여기에 일부 조선약학강습소 출신을 추가한 9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6월 20일 입학식을 거행하고, 6월 21일에 수업을 개시했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조선약학교의 교사는 1918년 6월 21일 개교한 옛 동대문 분서에서, 1918년 8월 1일 남미창정(南米蒼町) 284번지(현 남대문 시장 부근)로 잠시 이사한 다음, 1919년 5월 23일 황금정(黃金町) 6정목 18번지의 옛 훈련원 부지(현 을지로 6가 중구 구민회관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했다([그림 4-7-1]). 을지로 캠퍼스는 1959년에 연건동 캠퍼스로 이전할 때까지 약 40년간 우리나라 근현대 약학 교육의 요람으로 사용되었다.

(2) 1923년 조선약학교에 3년제 교육과정 신설

1923년 조선약학교는 일본 문부성이 시행하는 약제사 시험의 응시 자격[4]을 얻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학칙 개정을 요청한(『매일신보』, 1923. 2. 20) 다음, 수업연한이 3년인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수업연한 3년 과정을 본과, 기존의 2년 과정을 특별

4 문부성 약제사 시험 응시 자격은 중학을 졸업하고 3년간 약학교를 수학한 자다. 그러므로 2년제 약학교를 졸업한 기존 졸업생에게는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동아일보』, 1924. 2. 2).

과라고 불렀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1926년의 학생 모집 광고에 따르면 본과 응시 자격은 만 17세 이상의 남녀(여자는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였으며 3일에 걸친 입학시험(국어, 수학, 영어, 물리, 화학, 체격검사, 구두시험)을 통해 약 50명의 신입생을 선발했고, 입학금은 5원이었다(『조선총독부관보』, 1926. 2. 10).

(3) 1925년 조선총독부의 조선약학교 지정과 무시험 약제사 면허 취득

1925년 조선총독부는 '약품및약품영업취체령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을 개정했다. 기존의 1912년 법령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조선약학교의 졸업생은 조선약제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약제사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25년 이 조항이 "사립약학교가 조선총독의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졸업증서만으로 약제사 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고 개정된 것이다.[5] 법령 개정에 이어 조선총독은 조선약학교를 정식 약학교로 '지정(指定)'했다.[6] 이로써 조선총독의 지정을 받은 직후인 1925년 3월 20일 제2회 본과 졸업생부터 졸업증서 수령 후 무시험으로 약제사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특별과와 청강생 과정 졸업생은 여전히 약제사 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7]

---

5 '약품및약품영업취체령 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55호, 1912. 3. 28) 제1조 ①항 약제사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연령 만 20세 이상으로 조선총독이 정한 약제사 시험에 급제한 자에 한한다. ②항 의과대학 약학과·관립공립 의학전문학교 약학과 또는 약학교 및 고등중학교 의학부 약학과를 졸업한 자는 그 졸업증서로, 내부성의 규정에 의한 약제사 시험에 급제한 자는 그 증서로 약제사 면허증의 교부를 원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지 아니하고 면허증을 수여한다. ③항 외국의 대학 약학과 또는 약학교를 졸업한 자나 외국에서 약제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약제사 면허증의 교부를 원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증서에 의하여 시험을 치르지 아니하고 약제사 면허증을 수여할 수 있다.

6 '약품및약품영업단속령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따라 조선총독은 조선약학교를 '약학교'로 지정했다(『조선총독부관보』, 1925. 3. 16).

7 조선약학교 생도모집 광고의 참고란에 3년제 졸업자는 무시험으로 조선에서의 약제사 면허를 교부 받을 수 있고, 청강생은 조선약제사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조선총독부관보』, 1926. 2. 10).

2) 조선약학교의 학사 운영

1918년 개교 당시 조선약학교의 입학 자격은 일본인의 경우 고등소학교 졸업, 조선인의 경우 보통학교 졸업 정도였다. 초기에는 주간반과 야간반이 있었는데, 정원은 각각 70명과 30명 정도였다.[8] 주간반은 매일 5시간, 야간반은 매일 3시간씩 총 2년간 수업했다. 주간, 야간 모두 1년 수업료는 1원 50전, 실습비는 1원이었다. 각 학년은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2학기제로 운영되었다. 야간반 제도는 1919년 2월 20일 폐지되었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阿部辰之助, 1918: 189~191). 학급 수는 2개, 교원의 정원은 5명이었다(『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21). 조선약학교 개교 당시의 2년제 교과과정은 [표 4-7-2]와 같고, 1923년 학칙이 개정되어 신설된 3년제 본과의 교육과정은 [표 4-7-3]과 같다.

1926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1년간의 수업료는 학년에 관계없이 70원, 실습료는 36원이었으며, 그 외에 학용품비는 한 달에 약 3원, 교과서 비용은 1년에 약 20원, 교복 비용은 남학생의 경우 약 25원이었다. [표 4-7-4]는 조선약학교의 수업료와 실습비를 정리한 것이다.[9]

1918년 6월 개교 당시 조선약학교의 교원은 교장 및 교감 1명, 교원 5명, 강사 1명으로, 교장 조중응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인이었다. 이후 교원과 강사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그들은 주로 일본인이었다. 한국인으로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후 교토(京都)제국대학 의학부에서 의학박사를 받은 박창훈(朴昌薰)이 강사로 근무한 바 있다(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2009). [표 4-7-5]는 1918년 6월 조선약학교 개교 당시 교원과 강사의 주요 인적사항이다.

초대 교장 조중응은 개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19년 8월 신병(身病)으로 작고했다. 조중응이 사망하자 조선약학교의 일본인 고문이었던 고지마가 1920년 5월에 2대 교장으로 취임했다. 고지마의 취임을 계기로 개교 때부터 상의원으

8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조선약학교 1학년생 박희창(朴喜昌)은 "약학교는 본과와 특별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본과는 주간에 수업이 있으나 특별과는 야학교다. 나는 야학교에 다녔으며 생도 수는 30명 정도 된다."라고 대답했다. 첫 입학생이 약 100여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여 필자가 산출했다(『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7권).

9 조선약학교의 학기는 1918년 개교 당시 2학기제로 운영되다가 3학기제로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조선총독부관보』, 1926. 2. 10).

[표 4-7-2] 조선약학교 2년제 교과목

교과목 \ 학년	제1학년	제2학년	교과목 \ 학년	제1학년	제2학년
수신(修身)	○	-	약국방	-	○
수학	○	-	조제학	-	○
독일어	○	-	제약화학	○	○
화학	○	-	생약학	○	○
광물학	○	-	약품감정	-	○
물리학	○	-	분석실습	-	○
식물학	○	-	제약실습	-	○
분석학	○	○	조제실습	-	○
위생화학	-	○			

출처: 조선약학교 1회 졸업생 신경휴(申敬休)의 학적 참고.

[표 4-7-3] 조선약학교 3년제(본과) 교과목(1930년 기준)

교과목 \ 학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교과목 \ 학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독일어	○	○	○	제약화학	○	○	○
화학	○	-	-	생물화학	-	-	○
광물학	○	-	-	재판화학	-	-	○
물리학	○	-	-	약품공업학	-	-	○
기계학	-	○	-	약물학	-	-	○
약용식물학	○	-	-	약제학	-	-	○
분석화학	○	○	-	세균학	-	-	○
생화학	-	○	-	약품상업학	-	-	○
위생화학	-	○	○	물리화학	-	○	○
약국방	-	○	-	체조	○	○	○
조제학	-	○	-	한약	-	-	○

출처: 조선약학교 본과 7회 졸업생 박진원(朴震遠)의 학적 참고.

[표 4-7-4] 조선약학교 학기별 수업료와 실습비(1926년 기준) 단위: 원

학기	수업료	실습비	계	납부기일
1학기	30	12	62	4. 11~22
2학기	20	12	52	9. 11~22
3학기	20	12	52	1. 21~31
합계	70	36	106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26. 2. 10: 조선약학교 생도모집(광고)

[표 4-7-5] 조선약학교의 개교 당시 교원과 강사(1918년 6월 1일 기준)

취임연월	직명	이름	퇴임연월	비고
1918. 6	교원	다나베(田邊精三)	1918. 7	
1918. 6	교원	기시마(貴島善兵衛)	1918. 11	가나자와(金澤)의학전문학교 약학과 졸업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조교수 출신
1918. 6	교원	하가(芳賀榮次郎)	1920. 4	도쿄(東京)제국대학 의학과 졸업 의학박사,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장 역임
1918. 6	교원	오카다(岡田文雄)	1919. 2	조선총독부 위생시험 사무 촉탁
1918. 6	교원	가와이(河合清逸)	1919. 2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기수(技手)
1918. 6	교감	무라타(村田康太郎)	1918. 12	육군 삼등 약제관
1918. 6	강사	요시키(吉木彌三)	1924. 1	도쿄제국대학 의과대학 약학과 졸업 육군 일등 약제관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 역임

출처: 경성약학전문학교(1935).

로 재직하던 한국인 운영진이 모두 퇴임했다.[10] 1925년 2대 교장 고지마가 사임하자, 강사였던 야스모토(安本義久)가 교장 대리에 위촉되었다. 이후 구니미네(國峰專吉)가 3대 교장에 취임했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3) 조선약학교 학생의 3·1 운동 참여

1919년 3·1 운동이 발생했다. 1918년 개교 당시에는 100여 명의 입학생 중 60여 명을 차지하던 한국인 학생은[11] 3·1 운동으로 인해 상당수가 퇴학을 당하거나 수업을 중단하게 되었다(한구동, 1964;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 1984: 7). [표 4-7-6]에서 보듯 3·1 운동과 관련하여 검거된 조선약학교의 학생 수는 최소한

10 원로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신문기자 홍현오가 기록한 『한국약업사』를 보면, 초대 교장 조중응이 있을 때에는 한국 사람의 입김이 다소 있었으나 그의 사후에는 그나마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다(홍현오, 1972: 33). 실제로 개교 당시부터 상의원으로 재직하던 한국인 약업자의 이름이 1920년 6월부터 조선약학교의 직원 명부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11 3·1 운동으로 신문을 받은 조선약학교 1학년 학생인 김유승(金裕昇)과 김광진(金光振)은 1919년 당시의 조선약학교 1학년 학생 중 한국인은 60명, 일본인은 20명이라고 증언했다(『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4권).

[표 4-7-6] 3·1 운동에 참여하여 체포된 조선약학교 학생에 대한 판결 내용

이름#이명	당시 나이	판결	졸업 여부 및 졸업 연도
강일영(姜日永)	19세	• 징역 7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판결 날짜 1919. 11. 6. 경성지방법원)	1921년 졸업
김광진(金光振) #김복성(金福成)	21세	•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판결 날짜 1919. 11. 6. 경성지방법원)	졸업 여부 불명
김공우(金公瑀)	18세	• 징역 2년(판결 날짜 1919. 5. 6. 경성지방법원) • 법원 판결 중 피고 관련 부분 취소, 징역 1년 6월 (판결 날짜 1919. 6. 23. 경성복심법원) • 상고 기각(판결 날짜 1919. 9. 4. 고등법원형사부)	졸업 여부 불명
김용희(金用熙,)	19세	• 징역 10월,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판결 날짜 1919. 11. 6. 경성지방법원) •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판결 날짜 1920. 2. 27. 경성복심법원)	졸업 여부 불명
김유승(金裕昇)	26세	•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판결 날짜 1919. 11. 6. 경성지방법원)	졸업 여부 불명
김정오(金正悟)	22세	• 면소방면(판결 날짜 1919. 8. 4. 경성지방법원)	1921년 졸업
박병원(朴炳元)	23세	•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판결 날짜 1919. 11. 6. 경성지방법원)	졸업 여부 불명
박준영(朴俊榮)	23세	•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판결 날짜 1919. 11. 6. 경성지방법원)	1921년 졸업
박흥원(朴興源)	23세	•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판결 날짜 1919. 11. 6. 경성지방법원)	졸업 여부 불명
박희창(朴喜昌) #박희봉(朴喜鳳)	21세	•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판결 날짜 1919. 11. 6. 경성지방법원)	졸업 여부 불명
오충달(吳忠達)	22세	•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판결 날짜 1919. 11. 6. 경성지방법원)	졸업 여부 불명
이용재(李龍在)	25세	• 징역 10월,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판결 날짜 1919. 11. 6. 경성지방법원) •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판결 날짜 1920. 2. 27. 경성복심법원)	졸업 여부 불명
이인영(李寅永)	19세	• 징역 10월,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판결 날짜 1919. 11. 6. 경성지방법원) •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판결 날짜 1920. 2. 27. 경성복심법원)	졸업 여부 불명
전동환(全東煥)	34세	• 징역 7월,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판결 날짜 1919. 11. 6. 경성지방법원) •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판결 날짜 1920. 2. 27. 경성복심법원)	졸업 여부 불명
정태화(鄭泰和)	24세	•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판결 날짜 1919. 11. 6. 경성지방법원)	졸업 여부 불명

출처: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참조.

15명에 이른다. 이들은 일제 경찰에게 신문받을 때 자신의 신분을 조선약학교 학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기록에 나와 있는 이름까지 합치면 3·1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검거된 조선약학교 학생 수는 적어도 25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체포된 조선약학교 학생 14명은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3·1 운동으로 인해 휴학한 한국인 학생 수는 38명에 이르렀으며(『매일신보』, 1919. 6. 8), 이들 대부분은 학교로 되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91년 국가보훈처는 3·1 운동에 참여한 박규상(朴奎相)을 애국장에 추서하기도 했다.[12]

4) 조선약학교 졸업생의 사회 활동

조선약학교는 1920년 5월 1일 제1회 졸업식을 시작으로 1932년 3월 17일까지 총 13회의 졸업식을 거행했다. 전술했듯이 2년제(1924년 이후 특별과), 3년제 본과, 청강생 과정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총 385명이 졸업했는데, 그중 한국인 졸업생은 150명이었다. 이는 전체 졸업생의 40%에도 못 미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과는 전체 졸업생의 39%, 본과는 36%, 청강생 과정은 45% 정도가 한국인이었다. 조선약학교의 졸업생 중 한국인과 일본인 졸업생 통계는 [표 4-7-7]과 같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조선약학교를 졸업한 한국인은 주로 약제사 또는 약종상으로 활동했다. 특히 1920년 제1회 졸업식에서 배출된 10명은 한국인 약제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대표적으로 이호벽(李浩壁)과 신경휴(申敬休) 두 사람은 1920년 10월에 실시된 조선약제사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조선약학교 출신의 한국인 최초 약제사가 되었다(『매일신보』, 1920. 11. 10). 1921년 6월에 실시된 약제사 시험에서는 1920년에 실시된 시험에서 불합격했던 이정재(李楨宰)와 이중규(李仲珪)까지 합격했다

12 국가보훈처의 공적조서에 의하면 조선약학교 학생 박규상이 경성에서 3월 1일 만세시위에 참여한 이후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가지고 고향인 전라남도 영암으로 돌아가 4월 10일 읍내 지사인 조극환(曺克煥), 정학순(鄭鶴順), 최민섭(崔旻燮)과 만세운동을 벌였다. 박규상은 광장에 모인 군중에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다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1년 6월의 형을 받고 복역 중 고문으로 병을 얻어 보석방되었으나, 집으로 돌아오던 중 서호강(西湖江) 배 가운데서 사망한 인물이다(『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 605~607; 영암군지편찬위원회, 1998;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표 4-7-7] 조선약학교 졸업생 통계 단위: 명

과정 / 졸업 일자	2년제 (1924년 이후 특별과로 명칭 변경)				3년제(본과)				청강생			
	구분	한	일	합	구분	한	일	합	구분	한	일	합
1920. 5. 1	제1회	10	16	26	-	-	-	-	-	-	-	-
1921. 3. 23	제2회	12	24	36	-	-	-	-	-	-	-	-
1922. 3. 25	제3회	9	19	28	-	-	-	-	-	-	-	-
1923. 3. 22	제4회	14	20	34	-	-	-	-	-	-	-	-
1924. 3. 22	제5회	13	30	43	제1회	0	2	2	-	-	-	-
1925. 3. 20	제6회	21	21	42	제2회	0	6	6	제1회	2	0	2
1926. 3. 20	제7회	23	31	54	제3회	1	4	5	제2회	1	1	2
1927. 3. 26	-	-	-	-	제4회	0	5	5	제3회	0	3	3
1928. 3. 24	-	-	-	-	제5회	4	9	13	제4회	5	7	12
1929. 3. 23	-	-	-	-	제6회	7	8	15	제5회	5	2	7
1930. 3. 27	-	-	-	-	제7회	15	17	32	제6회	1	0	1
1931. 3. 28	-	-	-	-	제8회	5	6	11	제7회	2	2	4
1932. 3. 17	-	-	-	-	제9회	1	1	2	-	-	-	-
	합계	102	161	263	합계	33	58	91	합계	16	15	31

출처: 경성약학전문학교(1935).

(『동아일보』, 1921. 6. 12). 이정재는 조선약학교 출신으로는 최초의 약국인 삼우당 약방(三佑堂藥房)을 1922년 낙원동에 개설했다. 그러나 1년 후 경영 악화로 폐업하고 조선총독부의원 약국에 취직했다가, 당시 한국에 진출해 있던 일본 로슈 사의 학술영업사원(MR: medical representative)이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MR이 탄생한 것이다(『동아일보』, 1927. 10. 15; 홍현오, 1972: 37~41). 1921년 조선약학교 출신 한국인 졸업생들은 약제사의 이익과 단합을 위해 조선약우구락부(朝鮮藥友俱樂部)를 결성했고, 1928년에는 이를 한국인 최초의 약사회인 고려약제사회(高麗藥劑師會, 초대 회장 이정재)로 발전시켰다(대한약사회, 1970: 24~30; 『동아일보』, 1928. 2. 13).

[그림 4-7-2]는 조선약학교 제1회 졸업식 기념 사진이다. 1920년 제1회 졸업부터 1926년 제7회 졸업(특별과 103명, 청강생 14명)에 이르기까지 2년제 졸업생들은 반드시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하는 조선약제사 시험에 합격해야 약제사 면허



출처: 在鮮日本人薬業回顧史編纂会(1961).

[그림 4-7-2] 조선약학교 제1회 졸업식(1920. 5. 1)

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25년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약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의 3년제 본과 졸업생(본과 2회)은 무시험으로 약제사 면허를 받게 되었다. 1925년 특별과 6회 졸업생 나찬수(羅贊洙) 등은 본과에 편입하여 1년 더 수학한 다음, 즉 본과를 3회로 졸업한 1926년에야 무시험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13]

조선약학교는 남녀공학제였다. 1924년 3월 특별과 5회 졸업생 김순복(金淳福), 차순석(車純錫), 김려운(金麗雲)을 비롯한 총 15명의 여자 졸업생을 배출했다(『동아일보』, 1924. 3. 23). 김순복은 같은 해 10월부터 동대문 부인병원에 근무하다가[14] 1927년 신간회(新幹會) 간부가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항일 여성 비밀결사인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에 소속되어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왜정시대인물사료』 2권). 김려운은 당시 중국에서 약종상을 운영했으며, 차순석은

13 함경남도 출신 나찬수는 1925년 특별과 6회를 졸업하고, 1926년 본과 3회를 마쳤다. 이후 1926년 조선약제사면허를 받아 경성 당주동에서 삼선당(三仙堂)약방을 경영한 인물이다(『삼천리』, 1935; 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그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나운용 교수의 부친이기도 하다.

14 김순복은 기록에 따라 金淳福 또는 金順福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조선약학교에도 이 두 가지 한자로 된 학적이 존재하나, 두 학적의 입학 및 졸업 연월일, 생년월일, 본적 및 거주 주소 그리고 보증인[최진기(崔大珍): 당시 묘동교회 목사]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金淳福 학적, 金順福 학적).

함흥 자혜병원(慈惠病院)에서 근무했다(『별건곤』, 1927).

제3절 경성약학전문학교

1) 전문학교로 승격

(1) 1930년 전문학교령에 의한 3년제 전문학교로 승격과 개교

조선약학교는 1923년부터 전문학교로 승격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매일신보』, 1923. 7. 5; 『동아일보』, 1923. 7. 25). 우선 과도기적 조치로 1925년 조선총독의 지정을 받아 3년제 본과 과정을 병설함으로써 1925년 본과 졸업생부터 무시험으로 약제사 면허를 받게 했다. 그 후 '사립학교규칙'에 따라[15] 1929년 3월 25일 재단법인 설립을 신청하여 5월 28일에 설립 인가를 받고, 같은 해 7월 재단법인 자격으로 전문학교 승격운동을 재개했다(『조선일보』, 1929. 7. 10; 『부산일보』, 1929. 7. 11). 결국 1929년 9월 2일 경성약학전문학교 설립을 신청하고, 10월 10일 설립 인가를 받은 후, 10월 18일 개교 인가를 받았다. 마침내 1930년 4월 1일에 경성약학전문학교를 개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약학교는 1932년 3월 제9회 본과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5월 1일에 폐교되었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1930년 개교 당시에는 본과와 별과가 병설되었다. 본과의 입학 자격은 중학교,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였으며, 별과의 입학 자격은 고등여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여자였다. 즉, 별과는 여학생을 위한 과정이었다. 『조선총독부관보』에 게재된 경성약학전문학교의 학생 모집 광고에 따르면, 본과와 별과 모두 3일간의 입학시험(물리, 화학, 국어, 수학, 외국어, 체격검사와 인물 조사 등)을 실시하여 약 100명을 선발한다고 했다(『조선총독부관보』, 1930. 2. 6; 1937. 1. 25). 그러나 경성약학전문학교는 1934년 7월 17일 여학생을 위한 별과 제도를 폐지했

15 '사립학교규칙'(초)(1920. 3. 1, 총령 제21호): 제4조 사립 전문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보통학교의 설립자는 그 학교를 설립, 유지하는 데에 충분한 재산을 가진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2) 1933년 일본 문부성 지정에 의한 약제사 면허의 국제화

1932년 9월 19일 경성약학전문학교는 '약제사법'에 따라[16] 일본 문부대신(文部大臣)의 '지정'을 신청하여 1933년 2월 28일에 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1933년 이후의 본과 졸업자는 일본 문부성의 약제사 면허를 받게 되었다.[17] 당시 일본 문부성의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조선은 물론 일본과 만주 등지에서도 약제사로 활동할 수 있었다(『조선일보』, 1936. 1. 3).

1932년 6월 14일에는 문부성 지정을 받기 전의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전수과(專修科) 과정을 개설하여, 1931년 제1회 본과 및 1932년 제2회 본과 졸업생 일부를 전수과에 편입시켜 1년간 수업 후 1933년에 졸업시킴으로써 문부성의 약제사 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1933년 3월 18일 전수과는 폐지되었다.[18]



출처: 경성약학전문학교(1933).

[그림 4-7-3] 경성약학전문학교의 신축 교사

16 '약제사법'(초)(1925. 4. 14, 법률 제14호): 제2조 약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내무대신의 면허를 받아 약제사 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전 항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학령에 따른 대학에 있어서 약학을 수양하여 학사를 취득한 자, 관립·공립의 약학전문학교 의과대학 부속 약학 전문부 혹은 의학전문학교 약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문부대신이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고 지정된 학교를 졸업한 자.

17 처음에는 졸업하면 곧 약사면허 자격을 취득했으나 몇 해 안 가서 일본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약사면허를 취득하게 되었다(한구동, 1964).

18 전문학교 승격 당시 전수과는 연구과 2년으로 처음 개설되었으나 1933년 1월 전수과로 개칭했다(『조선총독부관보』, 1929. 10. 18; 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그림 4-7-3]은 1933년에 신축된 경성약학전문학교의 교사 모습이다.

2) 경성약학전문학교의 학사 운영

경성약학전문학교는 약학 연구와 약제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본격적인 교육기관이었다. 남학생을 위한 본과, 여학생을 위한 별과 모두 수업연한은 3년, 학생 정원은 300명이었다. 학기는 4월 1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3월 31일에 끝났으며, 한 학년을 3학기로 나누고(경성약학전문학교, 1944), 3학급을 운영했다(『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30). 또한, 당시 조선약학교의 2학년과 3학년 학생에게는 시험을 통해 경성약학전문학교에 편입할 기회를 주었으며, 편입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은 1931년과 1932년에 각각 조선약학교 졸업생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했다(『매일신보』, 1929. 10. 26). 경성약학전문학교의 1944년 교과과정은 [표 4-7-8]과 같다. 1935년에 비해 수업시간이 40시간에서 42시간으로 늘어났으며, 일본학, 국어, 방공화학(防空化學) 등의 과목이 추가 개설되었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경성약학전문학교의 학비는 수업료와 실습비 외에 입학금 10원, 교우공비(校友公費), 교과서대 등이 필요했다. 당시로서는 비싼 수업료였다(『동아일보』, 1935. 3. 12). [표 4-7-9]는 경성약학전문학교의 1935년과 1944년의 수업료와 실습비를 학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경성약학전문학교 개교 당시의 교직원(교수 및 교원 등) 수는 20명이었으며, 그 중 한국인 교수로는 독일어 담당 조희순(曹喜淳, 문학사)과 생약학 담당 도봉섭(都逢涉, 약학사)이 있었다. 특히 도봉섭은 도쿄제국대학 의과대학 약학과를 졸업하고 1930년 5월 19일 부임했는데, 그는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한 전공과목 담당 교수였다. 이후 영어와 독일어 담당의 배상하(裵相河), 약용식물학 담당의 심학진(沈鶴鎭) 등이 교수로 부임했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1944). 1930년 전문학교 개교 당시의 교원은 [표 4-7-10]과 같다. 이 중 대부분이 조선약학교 때부터 근무해 온 교원임을 알 수 있다.

1930년에 개교한 경성약학전문학교의 초대 교장으로는 조선약학교 3대 교장이었던 구니미네가 취임했다. 1938년 5월 구니미네 교장이 사망하자 그해 9월에 야스모토가 2대 교장으로 취임했다. 야스모토 교장이 1940년 1월 사망하자 그해

[표 4-7-8] 경성약학전문학교 교과과정(1944년 기준) 단위: 시수

교과목 \ 학년·학기		매주 교수시간 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3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수신(修身)	국민도덕	1	1	1	1	1	1	-	-	-
	윤리학	-	-	-	-	-	-	1	1	1
일본학		1	1	1	1	1	1	1	1	1
국어		1	1	1	1	1	1	1	1	1
체조(교련체조)		2	2	2	2	2	2	2	2	2
외국어	독일어	7	7	7	3	3	3	3	3	3
	영어	2	2	2	1	1	1	1	1	1
	라틴어	-	-	-	-	1	1	1	1	1
수학		2	2	2	-	-	-	-	-	-
물리학		3	3	3	-	-	-	-	-	-
무기화학		5	3	-	-	-	-	-	-	-
무기약품제조학		-	-	5	5	-	-	-	-	-
무기화학실습		-	-	-	15	-	-	-	-	-
유기화학		-	3	3	5	-	-	-	-	-
유기화학제조학		-	-	-	-	4	6	-	-	-
유기화학실습		-	-	-	-	-	15	-	18	
광물학		1	1	1	-	-	-	-	-	-
약용식물학		3	3	3	-	-	-	-	-	-
약용식물학실습		6	-	-	-	-	-	-	-	-
분석화학		3	2	-	-	-	-	-	-	-
분석화학실습		5	11	11	-	-	-	-	-	-
위생화학		-	-	-	3	3	3	-	-	-
위생화학실습		-	-	-	-	8	-	-	-	-
세균학		-	-	-	-	-	2	-	-	-
세균학실습		-	-	-	-	-	-	5	-	-
재판화학		-	-	-	-	2	1	-	-	-
재판화학실습		-	-	-	-	-	-	5	-	-
생약학		-	-	-	3	3	3	1	1	1
생약학실습		-	-	-	-	7	-	-	-	-
약국방		-	-	-	-	-	-	2	2	2
약국방실습		-	-	-	-	-	-	-	-	18
조제학		-	-	-	-	-	-	5	-	-
조제학실습		-	-	-	-	-	-	8	-	-
생리학		-	-	-	-	-	-	2	2	2
약리학		-	-	-	-	-	-	2	2	2
장기약품화학		-	-	-	-	-	-	1	1	1
이론화학		-	-	-	-	-	-	2	2	2
약사법령		-	-	-	-	-	-	1	1	1
상품학		-	-	-	-	-	-	2	2	1
화학기계학		-	-	-	2	2	2	-	-	-
방공화학		-	-	-	-	-	-	1	1	1
계		42 (실습:11)	42 (실습:11)	42 (실습:11)	42 (실습:11)	42 (실습:11)	42 (실습:11)	43 (실습:18)	43 (실습:18)	43 (실습:18)

출처: 경성약학전문학교(1944).

[표 4-7-9] 경성약학전문학교 학기별 수업료와 실습비 단위: 명

학기	1935년 기준		1944년 기준		납부기일
	수업료	실습비	수업료	실습비	
1학기	50	12	80	20	4. 11~22
2학기	40	12	80	20	9. 1~12
3학기	40	12	80	20	1. 11~20
합계	130	36	240	60	

출처: 경성약학전문학교(1935, 1944).

[표 4-7-10] 경성약학전문학교 개교 당시의 교원(1930년 4월 1일 기준)

취임연월	직명	이름	퇴임연월	비고
1919. 1	교감	이케다(池田近義)	1932. 3	조선약학교에서 교감 취임
1923. 6	강사	모리타(森田貞士)	1930. 6	조선약학교에서 취임
1924. 4	강사	야스모토(安本義久)	1940. 1	조선약학교에서 취임 도쿄제국대학 의과대학 약학과 졸업
1925. 1	강사	가라이(加来天民)	1932. 5	조선약학교에서 취임 규슈약학전문학교 졸업
1925. 4	강사	안도(安藤源次)	1932. 5	조선약학교에서 취임 도쿄제국대학 이과대학 화학과 졸업
1925. 9	강사	이시도야(石戸谷勉)	1942. 10	조선약학교에서 취임
1925. 11	강사	구니미네(國峰專吉)	1938. 5	조선약학교에서 취임 도쿄제국대학 의과대학 약학과 졸업
1926. 5	강사	마구마(眞熊義彦)	1932. 5	조선약학교에서 취임
1927. 4	교원	마츠무라(松村久吉)	1930. 6	조선약학교에서 취임
1928. 1	교수	이노우에(井上重男)	1932. 5	조선약학교에서 취임
1928. 1	강사	아마기시(天岸敏介)	1934. 1	조선약학교에서 취임 오사카부립의과대학 졸업
1928. 5	강사	나카무라(中村亥一)	1931. 2	조선약학교에서 취임
1929. 2	교수	이누야마(犬山喜一)	1941. 10	조선약학교에서 취임
1929. 3	강사	곤도(近藤東一郎)	1931. 12	조선약학교에서 취임
1929. 4	강사	가시와바(柏葉繁太郎)	1931. 11	조선약학교에서 취임
1929. 9	강사	히나타(日南田義治)	1933. 4	조선약학교에서 취임
1929. 9	강사	나리타(成田不二生)	1935. 4	조선약학교에서 취임
1930. 4	강사	아카마츠(赤松唯義)	1931. 9	
1930. 4	교수	고사카(小坂嘉一郎)	1932. 3	
1930. 4	교수	조희순(曹喜淳)	1933. 12	도쿄제국대학 독문학과 졸업
1930. 4	강사	마구마(眞熊義彦)	1935. 4	

출처: 경성약학전문학교(1935, 1944).

3월에 다마무시(玉虫雄藏)가 3대 교장에 취임했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44). 다마무시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때까지 재임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 메이죠약과대학(名城藥科大學)의 초대 학장을 역임했다.

3) 1941년 경성약학전문학교 축구부의 비밀결사 발각 사건

일본인이 대다수이던 경성약학전문학교에서 한·일 학생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인 학생들은 종종 일본인 교수들에게 민족 차별적인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반일감정이 형성되고 한국인 학생만으로 이루어진 경성약학전문학교 축구부 내에 비밀결사가 조직되었다. 1938년 11월 축구부 1학년 이영진(李榮珍), 위선환(魏善煥), 김시연(金時淵), 오상흠(吳相欽), 오은성(吳恩星), 박중호(朴中鎬), 신현우(申鉉禹), 전기찬(田基燦), 김성익(金星翊), 김병조(金秉朝) 등이 중심이었다. 이들은 "조선인으로서의 기개를 잊지 말고, 학업에 정진하여 한 명의 낙오자도 나오지 않도록 하며, 우리 조선 민족의 문화 수준 앙양을 도모하고 모든 점에서 저들 일본인을 능가할 만한 노력"을 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조선을 일본 제국의 굴레로부터 독립시켜 옛날의 굴욕을 보복하는 것을 목표로 민족적으로 일치단결하여 내지인(內地人)에 대해 의식적으로 대항할 것"을 도모했다.

이와 같은 한국인을 중심으로 한 비밀결사 회합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이들은 1941년 2월 12일 축구부 총회를 개최하여 간부를 선출하고, 축구부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고, 축구와 상관없이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을 서약서를 받아 축구부에 가입시키기로 했으며, 조직 강화를 위해 비용을 모금했다. 그러나 1941년 10월경 한국인 학생들의 회합이 발각되어 14명의 학생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의 취조를 받았다. 취조 받은 학생의 명단은 [표 4-7-11]과 같다. 대부분의 학생은 1942년 7월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19] [그림 4-7-4]는 1941~1942년경의 축구부 모습이다.

19 〈高山欽藏[오상흠]의 판결문〉(관리번호 CJA0000001)(판결 날짜: 1945. 7. 23, 경성지방법원).

[표 4-7-11] 1942년 3월 13일에 일경(日警)의 취조를 받은 경성약학전문학교 축구부 관련자(14명)

이름#창씨명	입학 연도	졸업 연도	비고
위선환(魏善煥)#長川善煥	1938	1941. 3	
김시연(金蒔淵)#金山 通	1938	1941. 3	
오상흠(吳相欽)#高山欽藏	1938	1941. 3	
오은성(吳恩星)#豊川一石	1938	1941. 3	
박중호(朴中鎬)#松田中鎬	1938	1941. 3	
김승만(金承萬)#阿部博	1939	1945. 9	주장
장원흠(張源欽)#李鈑	1939	중퇴	감독
김유철(金裕哲)#金本裕哲	1939	중퇴	
황자영(黃自英)#黃田英次	1939	1943. 9	
김순덕(金淳德)#望月淳德	1939	중퇴	
송응규(宋雄奎)#宋村雄奎	1940	1944. 9	2학년 지도원
박한덕(朴漢德)#新井漢德	1940	1943. 9	
김영수(金永壽)#金本永壽	1940	1943. 9	
김철용(金喆龍)#金海喆龍	1940	중퇴	1학원 지도원

출처: 〈蹴球를 表現團體로 하는 民族的 秘密結社 發覺에 관한 건〉 京西警高秘 제6465호의 2(1942. 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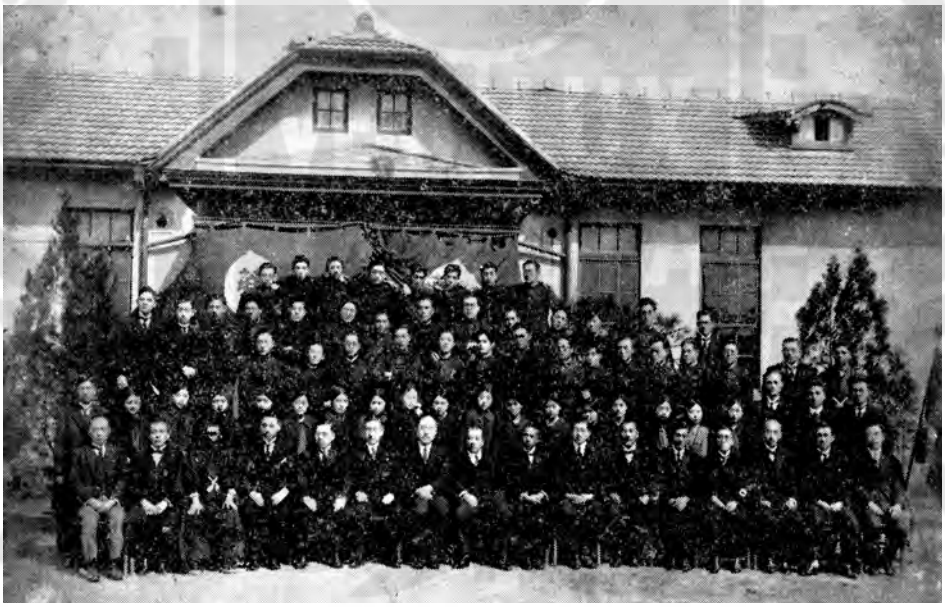


출처: 경성약학전문학교(1942).

[그림 4-7-4] 경성약학전문학교 축구부(1941년경)

4) 경성약학전문학교 졸업생의 사회 활동

경성약학전문학교는 1931년 3월 28일 제1회 졸업식을 시작으로 1947년 7월 10일에 이르기까지 18회의 본과 졸업식(여학생을 위한 4회의 별과 졸업식은 별도)을 거행했다. [그림 4-7-5]는 제1회 본과 졸업식의 모습이다. 본과, 별과 및 전수과를 졸업한 학생은 1,300여 명으로 그중 한국인은 38% 미만이었다. 또한 과도기적 조치로 설치되었던 전수과를 졸업한 한국인 4명은 모두 각각 1931년과 1932년에 본과를 졸업했다. [표 4-7-12]는 경성약학전문학교의 졸업생 통계다. 전수과를 졸업한 한국인 학생들은 모두 본과도 졸업했으므로 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특이한 사항은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타이완과 만주국 출신의 졸업생도 30여 명 있었다는 사실이다.[20] 이들은 당시 일본 문부성의 지정을 받은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하면 일본의 식민지국 내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약제사 면허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온 것으로 짐작된다.



출처: 대한약사회(1970).

[그림 4-7-5] 경성약학전문학교 제1회 졸업식(1931. 3. 28)

20 경성약학전문학교의 학적부 참고.

[표 4-7-12] 경성약학전문학교 졸업생 통계 단위: 명

과정 / 졸업 일자	본과(3년제)				별과(3년제) (여학생 과)			
	졸업 횟수	한	일 (일본인 외 포함)	합	졸업 횟수	한	일	합
1931. 3. 28	제1회	17	11	28	제1회	0	6	6
1932. 3. 17	제2회	15	21	36	제2회	0	9	9
1933. 3. 17	제3회	21	26	47	제3회	0	4	4
1934. 3. 17	제4회	15	36	51	제4회	1	5	6
1935. 3. 16	제5회	18	53	71	-	-	-	-
1935. 7. 9	제5회	5	9	14	-	-	-	-
1936. 3. 23	제6회	26	49	74	-	-	-	-
1936. 6. 27	제6회	0	4	4	-	-	-	-
1937. 3. 23	제7회	16	37	53	-	-	-	-
1937. 4. 28	제7회	0	1	1	-	-	-	-
1937. 7. 3	제7회	4	15	19	-	-	-	-
1938. 3. 23	제8회	24	48	72	-	-	-	-
1938. 5. 3	제8회	0	1	1	-	-	-	-
1938. 7. 4	제8회	1	2	3	-	-	-	-
1939. 3. 15	제9회	26	55	81	-	-	-	-
1939. 6. 28	제9회	1	2	3	-	-	-	-
1940. 2. 8	제9회	0	1	1	-	-	-	-
1940. 3. 22	제10회	36	43	79	-	-	-	-
1940. 7. 1	제10회	0	2	2	-	-	-	-
1941. 3. 18	제11회	32	40	72	-	-	-	-
1941. 12. 23	제12회	36	63	99	-	-	-	-
1942. 2. 6	제12회	1	3	4	-	-	-	-
1942. 9. 23	제13회	22	60	82	-	-	-	-
1942. 12. 19	제13회	0	1	1	-	-	-	-
1943. 6. 5	제13회	0	1	1	-	-	-	-
1943. 9. 21	제14회	39	68	107	-	-	-	-
1943. 10. 29	제14회	1	3	4	-	-	-	-
1944. 9. 22	제15회	37	76	113	-	-	-	-
1945. 9. 15	제16회	30	80	110	-	-	-	-
1946. 3. 5	-	5	0	25	(보습과 20명 포함)			
1947. 7. 10	제17회	59	0	59				
	합계	487	811	1,297	합계	1	24	25

출처: 경성약학전문학교(1935; 1944).

[표 4-7-13] 경성약학전문학교 졸업자의 직장별 취업 현황(1935년 11월 기준) 단위: 명

종별 / 연차	관공사 기술원	병원 조제원	회사 상점 근무	제약 기술원	약국 개발자	연구 중인 자	상급 학교 재학자	병역 복무자	취업 미정자	가사 종사자	사망	합계
1931년 제1회	-	5	11	-	6	-	-	-	1	3	2	28
1932년 제2회	2	11	8	1	11	-	-	-	-	2	1	36
1933년 제3회	9	10	13	3	7	1	-	-	1	2	1	47
1934년 제4회	7	18	12	-	3	-	1	5	2	2	1	51
1935년 제5회	7	34	24	5	7	3	-	-	2	3	-	85
합계	25	78	68	9	34	4	1	5	6	12	5	247

출처: 경성약학전문학교(1935).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한국인은 병원 약국, 위생시험소, 생약연구소, 관청이나 개인 약국 등에 취업했다. [표 4-7-13]은 1930~1935년에 경성약학전문학교 졸업생(일본인 포함)의 취업자 수를 직장별로 정리한 것이다. 당시 상급학교로의 진학은 드물었으나 1936년 졸업생인 이남순(李南淳)은 도쿄제국대학에 진학하여 한국인 최초로 1943년에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다(『매일신보』, 1943. 11. 16).

5) 부속기관

경성약학전문학교의 교무분장 규정에 따르면 당시 경성약학전문학교의 조직은 교무과, 생도과(生徒課), 서무과, 회계과, 도서과(圖書課), 기계약품과, 약원과(藥園課)의 7개 과로 구성되었으며, 각 과는 주임 1명과 과원을 두었다. 그중 도서과는 도서실을, 약원과는 약초원을 부속기관으로 운영했다.

(1) 도서실

전문학교 규정에 따라, 1931년 7월 24일 증축공사를 마치고 도서실을 준공하여 부속기관으로 두었다. 도서실은 학교와 관련된 도서 및 잡지를 보관하는 곳으로 직원과 학생 이외에는 도서과 주임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했다. 도서실을 관리하는 도서과는 도서와 잡지의 구입 정리 및 보관, 열람, 대출, 열람실의 관리,

그리고 도서 목록 통계, 도서과에 속하는 문서 기안 및 보고, 기타 도서에 관한 업무 일체를 수행했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2) 약초원

경성약학전문학교는 1940년 4월 약초원을 신설(경성부 성동구 행당정 65번지 소재)했다. 이전부터 경성약학전문학교에 약원을 관리하는 약원과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 약초원은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약원과에서는 약초원의 정비 관리, 약용식물 재배시험, 약용 식물의 품종 개량 및 종묘 보관, 약용 식물 생산의 조사, 생산품의 가공, 임시 인부의 고용, 문서의 기안 및 보고, 기타 약초원에 관한 업무 일체를 수행했다(경성약학전문학교, 1944). 또한 본교 교우회(校友會)의 하나였던 약초부(藥草部)는 약초원과 관련된 활동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제4절 서울약학대학

1) 서울약학대학(사립)의 설립

(1) 일제로부터 경성약학전문학교의 인수와 재개교

1945년 8·15 광복 이후 경성약학전문학교의 한국인 교수 도봉섭과 교직원 및 재학생들은 미군정청에 학교를 넘기려던 3대 교장 다마무시를 비롯한 일본인 이사진을 압박하여 1945년 9월 학교 재단을 인수받고(이민재, 1987; 홍현오, 1972: 225~227; 한구동, 1964), 10월 13일 학교를 재개교했다(김용일, 1999: 110). 재개교한 경성약학전문학교의 교장으로 도봉섭, 교무과장으로 이남순, 학생과장으로 심학진(沈鶴鎭)이 취임했고, 교직원으로는 신덕균(申德均), 민태원(閔泰鵷), 이길상(李吉相) 등이 취임했다.

재개교를 하자 광복 이전의 졸업자 30여 명 중 20명이 일제의 근로동원으로 인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며 3학년으로 다시 다니기를 요청했다(홍현오, 1972: 225~226; 이민재, 1987). 학교 측은 이들을 위해 보습과(補習科)를 개설하고, 일본인

이 빠져나간 자리에 보결생(補缺生)을 모집하여 수업을 재개했다. 그리하여 1946년 3월 5일 보습과생 20명과 보결생이 졸업했다.[21]

광복 이후 경성약학전문학교는 식물생약교실, 유기교실, 무기교실, 분석교실, 위생화학교실, 해부학교실로 나뉘어 있었지만, 교수로는 도봉섭, 이남순, 이민재, 이길상(李吉相), 심학진 등 5명밖에 없었다. 그 외에 임시 조교수로 위생화학에 심길순(沈吉淳), 유기제약에 서만석(徐晩錫), 분석에 민태원, 식물에 정인조(鄭寅朝) 등이 있었다. 이들은 당시까지 일본어로 표기하던 의약품명, 동·식물명 등의 학술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한다(이민재, 1987;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 1972: 15).

(2) 1946년 3년제 서울약학대학으로 승격, 1948년 4년제 학부과정으로 전환

재개교한 경성약학전문학교는 1946년 6월 대학설립 기성회를 조직하고 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학교 측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위생시험소에 근무하다가 광복 이후에는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국립화학연구소에 근무하던 한구동(韓龜東), 고인석(高仁錫)과, 도쿄제국대학 약학과에 유학 중이던 김영은(金泳垠) 등을 채용하여 교수진을 강화했으며, 식민지 교육의 한계를 지닌 전문학교 시대의 교과 내용을 개선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그 결과 1946년 7월 신입생 입학시험을 실시한 후, 같은 해 9월 경성약학전문학교를 3년제 서울약학대학(사립)으로 승격시킬 수 있었다(『동아일보』, 1946. 6. 14). 서울약학대학의 초대 학장으로는 도봉섭이 취임했다. 서울약학대학으로 승격되기 전인 1945년 4월 경성약학전문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서울약학대학 전문부(3년제)에 편입되었다. 서울약학대학은 3년제로 출범했으나, 1948년에는 4년제 학부과정으로 전환되었다.

---

21 보습과를 수료한 제16회 졸업생 20명은 다음과 같다. 강형태(康炯泰), 구정회(具廷會), 김영기(金泳棋), 김영일(金英一), 김택형(金澤亨), 남극원(南極光), 방은호(方恩鎬), 방자원(方子源), 백근제(白槿濟), 송종훈(宋鍾勳), 심영섭(沈英燮), 양현동(楊賢东), 윤환수(尹煥秀), 이명연(李明然), 이완하(李琓夏), 이용균(李龍均), 조광래(趙光來), 최응주(崔應洙), 최택규(崔澤圭), 홍사악(洪思岳)(가나다 순). 경성약학전문학교의 학적부 참고.

(3) 서울약학대학의 혼란과 국립서울대학교로 편입

서울약학대학 초대 학장 도봉섭은 1947년 12월 학교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이진수(李鎭洙)의 개인 재산 기부를 약속 받고 재단법인 세화학원(世和學園)을 설립했다(『독립신문』, 1947. 12. 19; 『중앙신문』, 1947. 12. 19). 이후 문교부로부터 서울약학대학으로 정식 승격 인가를 받아(『민중일보』, 1947. 12. 27), 학장 도봉섭, 이사장 이진수, 전무이사 신태수(申泰洙), 학감 한구동 등으로 학교 운영진을 구성했다(『동아일보』, 1947. 12. 27). 그러나 재단 이사장 이진수는 학교 경영 유지비를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48년 7월 그가 기부하기로 한 개인 재산액이 허위임이 판명되었다. 또한, 학부형회 기금 등 학교 재산을 본인의 국회의원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학교 이사진이 모두 퇴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자유신문』, 1948. 7. 11; 『조선일보』, 1948. 7. 16).

결국 1948년 9월 문교부는 세화재단에 설립 취소 명령을 내리고, 서울약학대학을 휴교 조치했다(『국민신문』, 1948. 9. 23). 사태가 이에 이르자 약학대학 동창회, 국립대학 연합회장 및 서울약학대학 학생회[학생회장 이의제(李義濟)]는 자연과학 교육기관이자 한국 약학교육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울약학대학의 휴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진정서를 국회와 문교부에 제출했다(『동아일보』, 1948. 10. 17). 이에 1948년 12월 6일 제122차 국회 본회의에 약학대학 문제가 상정되어 서울약학대학의 재개교를 가결하고, 12월 11일 임시총회에서 "학교를 급속히 재개할 것과 동교를 국립서울대학교에 편입"시키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동아일보』, 1948. 12. 15). 결국 1949년 1월 국회는, 국립 대학으로 편입하는 것을 전제로 약학대학을 재개교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김기우(金基禹)[22]가 학장서리로 취임했다(『동아일보』, 1949. 1. 19; 『자유신문』, 1949. 1. 19; 『자료대한민국사』 제11권: 499~ 500). 같은 해 2월 김봉주(金奉周), 남기정(南基政), 정건모(鄭建模) 등이 출자하여 재단법인 서울약학학원이 창설되었다(『남조선민보』, 1949. 2. 16; 『경향신문』, 1949. 2. 16).

그러나 1949년 3월 학장 문제로 분쟁이 반복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 1949. 3. 4; 『동아일보』, 1949. 3. 15). 문교부는 학장서리 김기우를 해임 통고하고, 이사장 남기

22 김기우는 1936년 독학으로 조선약제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조선총독부 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다 도쿄제국대학에 재학했지만 광복으로 학위를 마치지 못한 인물이다. 한국전쟁 중 납북되었다(홍현오, 1972: 93).

정을 학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학생회와 학부형, 약창회, 교직원회, 대한약제사회 등은 약학계에 학식이 없는 남기정이 학장에 취임하는 것을 반대했다. 마침 새롭게 설치된 재단인 서울약학학원의 재산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자 서울약학학원의 인가가 취소되었고, 약학대학을 국립대학에 편입시키자는 안이 다시 국회 문교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제2회 국회속기록 제77호, 1949. 4. 16). 이 시기를 전후로 당시 문교부 과학교육국 기감(技監)이었던 박철재(朴哲在) 박사가 약학대학의 학장서리로 취임했다(한국물리학회, 1965).

정부는 학교의 운영난과 더불어 당시 국립서울대학교에 약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서울약학대학을 국립서울대학교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경향신문』, 1950. 6. 8). 그러던 중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당시 문교부 장관인 백낙준(白樂濬)과 약학대학 학생 및 재단 이사들은 국립대학 편입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따라 9·28 수복 후 문교부의 김두헌(金斗憲) 고등교육국 이사관과 한구동 교수의 교섭으로 1950년 9월 30일 국립서울대학교에 약학대학으로 편입되었으며(홍현오, 1972: 227), 한구동이 임시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국립서울대학교에 편입된 직후의 교수로는 한구동과 김성환(金星煥), 부교수로는 이길상, 조교수로는 홍문화(洪文和), 강사로는 임기흥(林基興)과 백남호(白南豪)가 부임했다(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950).

2) 서울약학대학의 학사 운영

서울약학대학은 고급 중학교 졸업자를 입학 자격으로 하여 3일간의 입학시험(국어, 사회생활, 영어 또는 독일어, 수학, 화학, 식물)과 구두시험, 신체검사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했다(『경향신문』, 1948. 8. 8).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이어받아 3년제로 출범한 서울약학대학의 교과목은 [표 4-7-14]와 같다. 서울약학대학은 1946년에 3년제로 출범했으나, 1948년에는 4년제 학부과정으로 전환되었다.

서울약학대학의 역대 교수는 경성약학전문학교 출신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내 좌우 분열과 교수들의 월북 혹은 납북으로 인해 정확한 명단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파악한 교수의 명단은 [표 4-7-15]와 같다.

[표 4-7-14] 서울약학대학 3년제 전문부의 교과과정

교과목 \ 학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국사	-	-	-
윤리학	-	-	-
영어	○	○	○
독일어	○	○	○
라틴어(羅甸語)	-	-	-
수학	○	-	-
물리학	○	-	-
무기화학	○	-	-
무기약품공업학	-	○	-
무기화학실습	-	-	-
유기화학	○	○	-
유기약품공업학	-	-	○
유기화학실습	-	-	-
약용식물학	○	○	-
약용식물학실습	○	○	-
분석화학	○	○	-
분석화학실습	○	-	-
위생화학	-	○	-
위생화학실습	-	-	-
세균학	-	○	-
세균학실습	-	-	-
감정화학	-	-	○
감정화학실습	-	-	-
생약학	-	○	-
생약학실습	-	-	-
약국방	-	-	○
약국방실습	-	-	-
조제학	-	-	○
조제학실습	-	-	-
생리학	-	-	○
약리학	-	○	-
호르몬화학	-	-	○
이론화학	-	-	○
법약학	-	-	-
화학기계학	-	-	-
체조	-	-	-
식물화학	-	-	○

출처: 1948년 서울약학대학 전문부 제1회 졸업생 서정규(徐廷規)의 학적.

[표 4-7-15] 서울약학대학의 역대 교원

성명	직위	재직기간	담당과목	비고
도봉섭(都逢涉)	초대 학장	1945. 10~1948. 7	생약학, 약용식물학	도쿄제국대학 약학과 졸업
김기우(金基禹)	학장서리, 교수	1949. 1~1949. 12	유기화학	조선총독부 위생시험소 출신 도쿄제국대학 약학과 유학 중 귀국
박철재(朴哲在)	학장서리	1949. 12~미상	미상	교토제국대학, 이학박사
민태원(閔泰鴛)	강사	1945. 10~미상	미상	경성약학전문학교 13회 졸업
정인조(鄭寅朝)	강사	1945. 10~미상	미상	미상
서만석(徐晩錫)	교수	1945. 10~미상	조제학	미상
이길상(李吉相)	조교수	1945. 10~1946. 10	분석화학	경성약학전문학교 6회 졸업
이민재(李敏載)	교수	1945. 10~1947. 8	약용식물학	경성약학전문학교 9회 졸업
심길순(沈吉淳)	교수	1945. 10~1950. 6	호르몬화학	관립 지바(千葉)의과대학 약학부 졸업
심학진(沈鶴鎭)	교수	1945. 10~미상	생약학, 약용식물학	경성약학전문학교 3회 졸업
한구동(韓龜東)	교수, 학감	1946. 2~1948. 12	위생화학	조선약학교 본과 7회 졸업 조선총독부 경무국위생시험소 연구원
김영은(金泳垠)	미상	1946. 3~1950. 9	미상	경성약학전문학교 11회 졸업 도쿄대학 약학박사
고인석(高仁錫)	강사	1946. 5~1950. 6	법화학	경성약학전문학교 9회 졸업
김남기(金滇淇)	교무과장	1948. 12~미상	조제학	경성약학전문학교 9회 졸업 나가사키(長崎)의과대학 졸업, 의학박사
박흥수(朴興秀)	강사	1948. 4~1950. 12	수학	도쿄물리학교 이화학부 졸업
백남호(白南豪)	부교수	1949. 2~1950. 9	분석화학	경성약학전문학교 12회 졸업
이선주(李善宙)	강사	1949. 4~1950. 9	생약학	경성약학전문학교 5회 졸업
우종학(禹鍾鶴)	부교수	1949. 5~1950. 9	약제학	경성약학전문학교 6회 졸업
이남순(李南淳)	강사	1949. 5~1950. 4	유기약품공업학	경성약학전문학교 6회 졸업
손보기(孫寶基)	강사	미상	미상	미상
남기용(南基鏞)	강사	미상	생리학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조수 출신
이인기(李寅基)	강사	미상	교육학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교육학과 졸업
그리제 여사	강사	미상	미상	미상
김영근(金英根)	강사	미상	영어	미상
김영일(金英一)	강사	미상	미상	경성약학전문학교 16회 졸업
김종만(金鍾晩)	강사	미상	미상	서울약학대학 전문부 3회 졸업
서원규(徐元圭)	강사	미상	미상	미상
손치무(孫致武)	강사	미상	미상	경성대학 이학부 채광학과
신덕균(申德均)	강사	미상	미상	경성약학전문학교 4회 졸업
이승훈(李承薰)	강사	미상	미상	미상
전규방(全圭芳)	강사	미상	약학법규	조선약학교 청강생 5회 수료

[표 4-7-15] 서울약학대학의 역대 교원(계속)

성명	직위	재직기간	담당과목	비고
한남구(韓南龜)	강사	미상	독일어	미상
허금(許鈐)	강사	미상	미상	가나자와(金澤)의과대학 부속 약학전문부 졸업
홍문화(洪文和)	강사	미상	무기약품공업학	경성약학전문학교 7회 졸업
조재한(曺在漢)	교수	미상	물리학	미상
임기흥(林基興)	부교수	미상	약용식물학	만주의과대학부속 약학전문부 졸업
김동원(金東源)	전임강사	미상	무기약품공업학	경성약학전문학교 10회 졸업
심상복(沈相福)	학생과장	미상	미상	미상
김윤호(金允浩)	교관	미상	미상	미상
김영수(金永壽)	미상	미상	미상	경성약학전문학교 14회 졸업
김준용(金俊容)	미상	미상	이론화학	경성약학전문학교 14회 졸업
김표섭(金豹燮)	미상	미상	미상	경성약학전문학교 12회 졸업
오태호(吳泰鎬)	미상	미상	미상	미상
이희재(李喜載)	미상	미상	미상	미상
장건형(張健型)	미상	미상	미상	경성약학전문학교 14회 졸업

출처: 서울약학대학 문예부(1950: 99); 서울약학대학(1980);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1972: 15).

3) 서울약학대학의 학생 활동

1945년 광복 이후 경성약학전문학교 시절의 좌·우 분열과 혼란은 대학 승격 이후까지도 계속되었다. 서울약학대학에는 기존 좌익 학생을 중심으로 대학자치회(大學自治會)가 조직되어 있었다. 우익 학생들은 좌익 학생 중심의 대학자치회를 반대하고 우익 중심의 학생회(學生會)를 구성하고자 했다(『독립신문』, 1947. 7. 15). 1948년에는 교내 모 청년단체원 수명이 여학생 두 명을 납치, 감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독립신문』, 1948. 4. 3), 이를 통해 당시 학생 내 좌우 분열상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다.

(1) 최초의 학보 『약우』 창간

이와 같은 혼란에도 불구하고 1949년 6월 서울약학대학 문화부 학생들은 광복 후 전국 대학 가운데 최초로 학보 『약우(藥友)』를 창간[발행편집자: 전병충(全炳忠)]



출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1980).

[그림 4-7-6] 『약우』 창간 멤버



출처: 가산약학역사관 소장.

[그림 4-7-7] 1950년 발간된 서울약학대학 학보 『약우』 2호의 표지

했다(정진석 외, 2010: 321). [그림 4-7-6]은 『약우』 창간호를 발간한 서울약학대학 문화부 학생들의 기념사진이다. 1950년에 발간된 『약우』 2호는 논설, 생약교실 소개, 수상기행(隨想紀行), 약대문원(藥大文苑)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4-7-7]은 『약우』 2호의 표지 사진이다. 표지 그림(벤젠링)과 제호(題號) '藥友'의 글씨는 홍문화 교수가 썼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약우』는 1950년 5월 2호 이후에는 발행되지 못했다.

(2) 제1회 연극 〈큐리 부인〉 공연 개최

서울약학대학 학생들은 연극반을 조직하여 1949년 11월 7~8일 명동의 시공관(市公館)에서 〈큐리 부인〉을 공연했다. 공연의 취지는 과학자 큐리 부인(Marie Curie)의 탄생일인 11월 7일을 기념하고 일반인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이었다. 전문 연출가 이진순(李眞淳)이 연출하고 이무영(李無影)이 각색했으며 경향신문사가 후원했다(『경향신문』, 1949. 11. 8). 당시 시공관은 이틀간 관람자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림 4-7-8]과 [그림 4-7-9]는 각각 연극이 공연된 시공관의 외부 모습과 공연의 한 장면이다.



출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1980).

[그림 4-7-8] 서울약학대학 학생들의 제1회 연극 〈큐리 부인〉의 공연 장소인 시공관의 외부 모습



출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1980).

[그림 4-7-9] 연극 〈큐리 부인〉의 한 장면

4) 서울약학대학 졸업생의 사회 활동

1945년 4월 경성약학전문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1946년 전문학교가 서울약학대학으로 승격되자 서울약학대학 전문부(3년제)에 편입되어 1948년 6월 서울약학대학 전문부를 제1회로 졸업하게 되었다. 1948년에는 서울약학대학에 4년제 학부과정이 개설되었다. 서울약학대학은 1950년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전문부 졸업생 393명과 총 2회에 걸쳐 학부 졸업생 22명을 배출했다. 전문부 졸업생 중 일부는 학부에 편입하여 학부 졸업증까지 받기도 했다. 예컨대 1945년 4월 경성약학전문학교에 입학한 서정규(徐廷規)는 수학 중에 학교가 서울약학대학으로 바뀌어 1948년 서울약학대학 전문부를 제1회로 졸업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서울약학대학에 4년제 학부과정이 개설되자 다시 학부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1950년 3월에 4년제 학부도 제1회로 졸업했다. [표 4-7-16]은 서울약학대학 졸업생 수에 대한 통계(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 2015)이고, [그림 4-7-10]은 서울약학대학의 졸업(1950) 기념사진이다.

[표 4-7-16] 서울약학대학 졸업생 통계 단위: 명

과정 / 졸업 일자	전문부(3년제)				학부(4년제)			
	졸업 횟수	남	여	총	졸업 횟수	남	여	총
1948. 6. 17	제1회	92	-	92	-	-	-	-
1949. 2. 19	제2회	96	1	97	-	-	-	-
1949. 7. 29	제3회	83	11	94	-	-	-	-
1950. 3. 11	-	-	-	-	제1회	11	-	11
1950. 5. 11	제4회	81	29	110	제2회	10	1	11
	합계	352	41	393	합계	21	1	22

출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2015).



출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1980).

[그림 4-7-10] 서울약학대학 졸업 기념(1950. 5)

제5절 맺음말

1914년 7월부터 3개월간 개최된 약품취급강습회를 기점으로 하여 1915년 6월 12일에 개교한 조선약학강습소는 1918년 6월 20일 조선약학교의 개교, 1930년 4월 1일 경성약학전문학교로 승격을 거쳐, 1945년 광복 후 경성약학전문학교의 재개교, 1946년 서울약학대학(사립)으로 승격, 1950년 9월 30일부로 국립서울대학교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수업연한은 3개월, 1년, 2년, 3년, 4년을 거쳐, 최근에는 6년(약학대학 입학 전 2년 이상 수학 후 약학대학에서 4년 수학)으로 연장되어 2015년 2월 6년제 팜디(Pharm. D.) 졸업생을 처음 배출했다. 학교 캠퍼스는 서울 중구 장교동 39번지(1915~1918), 종로(5정목) 및 남대문 부근[남미창정(南米倉町) 284번지, 현 남대문 시장 남쪽](이상 1918), 을지로 캠퍼스(황금정 6정목, 현 중구구민회관 부지, 1919. 6. 2~1959. 8. 16까지 40년간), 연건동 캠퍼스(종로구 연건동 28번지,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부지, 1959. 8. 17~1975. 8. 25까지 16년간)를 거쳐 197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현재까지 40년 이상 관악캠퍼스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 약학 교육 100여 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선배들의 불굴의 정신과 각고의 노력이 새겨 있음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일제에 의한 압제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1950년 한국전쟁의 참화와 그 전후의 혼란의 와중에도 약학 교육의 맥을 면면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들의 숭고한 희생과 열정 덕분이었다. 예컨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학교의 임시책임자로 임명받았던 한구동 교수는 자신의 피난에 앞서 실험 기자재와 시약 등의 교육 자료를 꼼꼼히 챙겨 트럭에 실어 부산으로 보냈다. 그 덕택에 약학대학은 피난지 부산에서도 충실한 실험 실습 교육을 할 수 있었다. 부산에서의 면학 분위기는 그 후의 어떤 시기보다도 열정적이었다고 한다.

약학대학 선배들의 민족정기와 정의감도 주목할 만하다. 1919년 3·1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는가 하면, 1960년 자유당의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선배들은 4월 19일 백색 가운을 입고 연건동 캠퍼스를 나와 경무대(景武臺)로 향하는 시위대의 일원이 되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약대생들의 데모 사진을 게재하고 그 밑에 "白衣를 입은 醫大生"이라는 설명(『동아일

보』, 1960. 4. 20. 석간)을 달았는데, 이는 '약대생'의 명백한 오기(誤記)였다. 돌아보면 광복 직후 서울대학교 교수진의 학문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미네소타 프로젝트'[23]에 약학대학이 참여하지 못한 일 등 아쉬운 점도 많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약학대학이 최근 가파른 성장을 성취하게 된 것은 연구와 교육 역량이 분명하게 검증된 과학자만을 교수진으로 채용하는 한편, 대학원생들의 학위 취득 필수 요건으로 수준 높은 국제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요구하는 등, 서울대학교 내에서도 가장 먼저 연구의 질을 상향화, 객관화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이미 수년 전부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은 서울대학교 내의 단과대학 중에서는 물론, 세계의 유수한 약학대학 중에서도 교수 1인당 발표 논문 수가 가장 많고 논문의 인용 횟수가 세 번째로 많은 대학으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 강국의 비전을 품게 된 것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비롯한 우리나라 약학계의 연구 능력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후학들은 불치병 및 난치병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의약품의 창제개발(創製開發)과 의약품의 적정사용기술(適正使用技術) 개발을 통해 약학 고유의 숭고한 사명, 즉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만이 선배들께 보답하는 길일 것이다.

23 미 국무부 지원으로 1955년부터 서울대학교의 의학, 농학 및 공학계의 젊은 학자들을 미네소타 대학에서 연수받게 한 프로젝트

부록: 약학대학 연표

1914. 7	약업총합소(1909년 설립, 소장 이석모)가 약품에 대한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장훈학교(을지로 입구 장교 빌딩 부지)에서 약품취급강습회를 개최, 성황을 이룸.
1915. 6	약품취급강습회를 계기로 약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약업총합소는 조중응을 앞세워 장훈학교에 조선약학강습소를 개소
1918. 4	조선총독부로부터 2년제 조선약학교의 설립 인가 받음.
1918. 6	동대문 분서(종로 5정목)에서 조선약학교 개교(6월 20일), 초대 교장에 조중응 취임
1919. 3	다수의 조선약학교 한국인 1학년생들이 3 · 1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체포됨.
1919. 5	훈련원 관유지인 경성부 황금정 6정목 18번지(현 중구 구민회관 부지)를 무상 대부받아 신축교사를 낙성하여 조선약학교 이전
1920. 3	조선약학교 제1회 졸업식 개최(3. 23)
1920. 11	조선약학교 제1회 한국인 졸업생인 이호벽, 신경휴가 조선총독부 약제사 시험에 합격
1923	조선약학교에 3년제 교육과정(본과) 신설
1924. 3	조선약학교 3년제 본과 제1회 졸업생 배출
1925. 3	'약품및약품영업단속령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조선총독이 조선약학교를 공식 '약학교'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졸업생이 무시험으로 약제사 면허 받게 됨.
1929. 10	조선약학교를 3년제 경성약학전문학교로 승격 설치 및 개교 인가 받음.
1930. 4	3년제 경성약학전문학교 개교(4월 1일)
1930. 9	'약품및약품영업단속령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따라 조선총독이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약학전문학교로 지정함.
1931. 3	경성약학전문학교 제1회 졸업식 개최(3월 28일)
1933. 3	경성약학전문학교가 일본 문부성의 지정을 받음으로써 한국, 일본, 만주 등에서 사용 가능한 일본 문부성 교부의 약제사 면허를 받게 됨.
1933. 11	신축 교사 낙성식 겸 문부성 지정 축하회 개최
1941. 9	축구부로 위장한 경성약학전문학교 내 비밀단체가 일제에 발각됨.
1943. 11	경성약학전문학교 졸업생인 이남순, 한국인 최초로 도쿄제국대학 약학박사 학위 취득
1945. 10	8 · 15 광복 이후 일본인 이사진으로부터 경성약학전문학교 재단을 인수 받음. 교장에 도봉섭, 이사장에 이동선 취임. 10월 재개교
1946. 6	경성약학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약학대학 설립 기성회 조직
1946. 9	경성약학전문학교가 3년제 서울약학대학(사립)으로 승격되어 첫 신입생 입학
1947. 12	이진수의 사재 기증으로 세화재단을 설립 후 서울약학대학이 문교부의 정식 인가받음.
1948. 9	세화재단 비리로 문교부가 인가 취소 및 휴교, 재개교의 혼란을 겪음.
1948	서울약학대학, 4년제 학부과정으로 전환
1949. 1	국회는 국립대학으로의 편입 추진을 전제로 서울약학대학 재개교(학장서리에 김기우 취임). 2월에 서울약학학원 재단법인 설립

1949. 3 학장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자 문교부가 김기우를 해임하고 이사장 남기정을 학장에 임명. 그러나 학생, 교직원, 약제사회가 취임 반대. 재산이 허위임이 밝혀져 재단법인 서울약학학원의 인가가 취소됨. 4월에 국회의 문교사회위원회가 국립대학 편입을 재논의. 문교부 과학교육국 기감 박철재가 약학대학 학장 서리로 취임함.

1950. 3 서울약학대학, 제1회 4년제 학부 졸업생 배출

1950. 9 서울약학대학이 국립서울대학교에 편입되어 국립서울대학교 약학대학으로 개칭됨. 한구동 교수를 임시책임자에 임명(9월 30일). 이어 한구동을 1951년 5월 학장서리에, 1951년 12월 20일 초대 학장에 임명

• 참고문헌

자료

『경향신문』, 『구한국관보』, 『국민신문』, 『남조선민보』, 『동아일보』, 『독립신문』, 『매일신보』, 『민중일보』, 『부산일보』, 『서울신문』, 『의약월보』, 『자유신문』, 『조선일보』, 『중앙신문』, 『조선총독부관보』,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왜정시대인물사료』(출처: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국회속기록〉, 『자료대한민국사』, 국사편찬위원회(출처: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약품 및 약품영업 취체령〉 [조선총독부제령 제22호, 1912. 3. 28](출처: 법제처)

〈약품 및 약품영업 취체령 시행규칙〉 [조선총독부령 제55호, 1912. 3. 28](출처: 법제처)

〈약품 및 약품영업 취체령 시행규칙〉 [조선총독부령 제14호, 1925. 3. 16](출처: 법제처)

〈조선약학교의 학적〉(제공: 서울대학교 학사과)

〈경성약학전문학교의 학적〉(제공: 서울대학교 학사과)

〈서울약학대학의 학적〉(제공: 서울대학교 학사과)

「약제사 언파렛트」, 1935, 『삼천리』 제7권 제6호.

「海內 海外에 헛허저 잇는 朝鮮女醫師 評判記」, 1927, 『별건곤』 제5호.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 http://people.aks.ac.kr)

단행본 및 논문

경성약학전문학교, 1933, 『 교우회지』 3호.

경성약학전문학교, 1935, 『경성약학전문학교일람』(『식민지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 50, 대학서완, 1990)

경성약학전문학교, 1944, 『경성약학전문학교일람』.

경성약학전문학교 졸업앨범, 1942.

국사편찬위원회 편, 1986~2007,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출처: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김용일, 1999, 『미군정하의 교육정책 연구』,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대한약사회, 1970, 『대한약사회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인사발령대장』(1950~1971).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 1972, 『동창회명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 1980, 1950년 졸업기념앨범 「추억」.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 1984, 『동창회보』.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 2015, 『동창회명부』.

영암군지편찬위원회, 1998, 『영암군지』, 전라남도 영암군.

이민재, 1987, 「원로교우기」, 『주간 매경』(7월 13일).

이화약학50년편찬위원회 편, 1995, 『이화 약학 50년』,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정진석 외, 2010, 『근대문화유산 신문잡지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보고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편, 2009,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한구동, 1964, 「약대 50년 약사(略史)」, 『약원』 제7호.
한국물리학회, 1965, 『송원 박철재 박사 논문집』.
홍현오, 1972, 『한국약업사』, 한독약품공업주식회사.
阿部辰之助, 1918, 『大陸之京城』, 巖松堂.
在鮮日本人薬業回顧史編纂会, 1961, 『在鮮日本人藥業回顧史』, 在鮮日本人薬業回顧史編纂会.

제8장

의과대학 전사

제1절 의학교

1) '의학교'의 설립

(1) 설립 배경 및 주체

1899년 조선 정부에 의해 '의학교(醫學校)'가 설립되어 근대식 정규 의학 교육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1896년 초 조선 정부는 의학교와 부속병원 설립을 위해 2만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으로 의학교 설립 계획은 성사되지 못했다. 2년 후 근대적 의학 교육기관과 병원에 대한 요구가 민중들로부터 나왔다. 1898년 7월 15일 종로에서 열린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의 대중집회에서는 의술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학부대신에게 건의서를 보냈으나 학부대신 서리 고영희는 예산 문제로 현재는 어려우나 형편이 나아지면 의술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해 11월 7일 지석영(池錫永)이 의학교 설립을 요청하는 건의서[上學部大臣書]를 학부대신 이도재(李道宰, 1848~1909)에게 보냈고, 이틀 만인 11월 9일 학부대신 이도재는 이를 수용하는 답장을 보냈다. 즉, 정부는 의학교 설립을 위한 비용을 1899년도 예산에 포함시키고 1899년 봄에 의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회신서[學部大臣答書]를 보낸 것이다. 1899년 정

부 예산안에 의학교 설립과 운영 비용 6,030원이 포함되었고, 1899년 2월 28일자로 대신 신기선(申箕善)의 명의로 '의학교 관제 청의서'가 제출되어 3월 24일 '의학교관제'(칙령 제7호)가 반포되었다.

(2) 설치 법령

'의학교관제'에 따라 설립된 의학교는 관제가 반포된 1899년 3월 24일을 설립일로 본다. 관제에 따라 의학교의 교장과 교관 등을 선임하고 교사(校舍)와 설비를 갖추어 학생들을 선발했다. '의학교관제'는 제1조에서 의학교를 "국민에게 내외(內外) 각종 의술을 전문으로 교수하는 곳[處]"이라고 했다. 내외 각종 의술이란 내과와 외과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술을 뜻하며 근대 서양의학을 가르치되, 내과는 동·서양 의학의 장점을 취해 교육함을 의미한다. 의학교의 학과목은 동물, 식물, 화학, 물리, 해부, 생리, 약물, 진단, 내과, 외과, 안과, 부인과와 소아과[婦嬰], 위생, 법의, 종두, 체조 등 16과목으로, 기초과학, 기초의학, 임상의학이 골고루 포함되었다. 의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이었다. 관제 제5조에 따라 의학교의 직원으로 학교장 1명, 교관 3명 이하, 서기 1명을 두었고, 제6조에 학교장은 의학에 숙련된 사람으로서 학교 업무 일체를 관장하도록 했으며, 제7조에는 교관에게 학도를 가르치고 감독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관제 제4조 "의학교에 학과 및 정도(程度)와 기타 규칙은 학부대신이 정함이라"에 따라 7월 5일 '의학교규칙'(학부령 제19호)이 공포되었다. 학교 운영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한 '규칙'은 제1관 총칙(6개 조), 제2관 학과 및 정도(3개 조), 제3관 학급·학기·학년(3개 조), 제4관 입학·휴학(7개 조), 제5관 재학·퇴학·출학(黜學)·처벌(3개 조), 제6관 시험·졸업(3개 조), 부칙(3개 조) 등 총 6관 31조, 부칙 3조로 구성되었다.

학기는 1월 6일부터 여름방학 시작 때까지인 봄학기와, 개학일부터 12월 25일까지 가을학기로 나누었고, 입학일은 봄학기 초와 가을학기 초 두 차례였으며 새 학년은 가을학기의 첫날에 시작했다. 입학시험은 한문(독서, 작문), 국문(독서, 작문), 산술[비례(比例), 식답(式答)] 세 과목이며, 중학교 졸업장이 있는 사람으로 입학 자격을 제한했다. 처벌 규정이 엄격하여 졸업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경우, 품행이 좋지 않아 여러 차례 경고[屢度戒飭]했는데도 뉘우치지 않는 경우, 교칙을 위반한 경우, 학업이 부진해서 연속 3학기를 진급하지 못한 경우, 무단결석이 일

주일을 넘는 경우 등에는 교장이 출학을 명한 뒤 학부에 보고하여 관보에 싣도록 했다. 출학 처분을 받으면 관립뿐만 아니라 각종 사립 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각 관청[府部院廳]에 알려 취업도 못하게 했다.

시험은 월종(月終) 시험, 학기말 시험, 학년말 시험 세 가지이며 모든 시험 결과를 학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학기말 시험과 학년말 시험에서 진급하지 못한 생도와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한 생도는 유급을 시켰다. 의학교의 하루 수업 시간은 체조 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이었으며 일주일에 30시간이었다. 월말 시험에 연속 세 차례 우등한 학생과 학기말 시험 우등생에게는 포장을 부여하고, 학년 시험 우등생에게는 특별한 상을 시상했다. '의학교규칙'에 따르면 "졸업장을 부여한 후에 내부대신이 의술개업면허장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2) 교수진

(1) 교수 현황

1899년 3월부터 1907년 3월까지 8년 동안 활동한 의학교 교수진은 [표 4-8-1]과 같다. 8년 동안 교장은 지석영(池錫永)이었으며, 교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18명이다. 안상호(安商浩)는 임명받았으나 실제로 취임하지 않았고, 경태협(景台協), 홍종덕(洪鍾德), 윤태응(尹泰應), 김하영(金夏永), 이승현(李昇鉉), 이주환(李周煥) 등 6명은 3~17일 정도만 재임했기 때문에 실제 활동한 의학교 교관은 11명이다. 이들 중에 남순희(南舜熙), 김익남(金益南), 장도(張燾), 유세환(劉世煥), 최규익(崔奎翼) 등 5명은 일본 유학생 출신이며, 김교준(金敎準)과 유병필(劉秉珌)은 의학교 제1회 졸업생 출신으로 모두 1년 이상 근무했다. 일반 관료 출신인 전용규(田龍圭)는 4년 동안 재임했으나 그 외 심영섭(沈瑛燮), 이병선(李炳善), 박승원(朴承源)은 3~4개월 정도 근무했다.

(2) 주요 교수의 이력과 활동

김익남(1870~1937)은 갑오개혁 정부에서 실시한 일본 유학 시험에 합격하여 오늘날의 중학교 과정인 도쿄의 게이오의숙(慶應義塾) 보통과를 마치고 1899년 7월 4년제 학교인 도쿄지케이의원의학교(東京慈惠醫院醫學校)를 졸업했다. 졸업 후 정

[표 4-8-1] 의학교(1899~1907) 교수진[1)]

	이 름	재임 기간	비 고
교장	지석영*	1899. 3. 28~1907. 3. 14	종두술 보급, 의학교 설립 건의
교관	경태협	1899. 3. 29~1899. 4. 11	1895년 콜레라 유행 때 치료 공적
	남순희*	1899. 3. 29~1901. 8. 2	1898년 도쿄공수학교(東京工手學校) 졸업
	심영섭**	1900. 1. 8~1900. 4. 13	1894년 14세 때 식년시 진사 3등 합격, 외부 참서관 전임
	김익남*	1900. 4. 2~1904. 9. 23	1899년 도쿄지케이의원의학교(東京慈惠醫院醫學校) 졸업 1900년 8월 2일 근무 시작 군부 의무국 제1과장으로 전임
	홍종덕	1900. 4. 17~1900. 4. 19	
	윤태응	1900. 4. 21~1900. 5. 1	
	이병선**	1900. 5. 1~1900. 9. 25	1899. 11. 4~1900. 5. 1: 의학교 서기 상공학교 교관으로 전임
	김하영	1900. 11. 28~1900. 12. 4	
	이승현	1900. 12. 4~1900. 12. 7	군의(軍醫)로 전임, 한의사(?)
	전용규*	1900. 12. 11~1904. 12. 8	1904. 12. 8~1907. 3. 14: 의학교 서기
	박승원**	1901. 8. 6~1901. 11. 14	1898년 관립 일어학교 졸업 중학교 교관(경제과)에서 전임
	이주환	1901. 11. 14~1901. 11. 30	한국인 최초의 측량 전문가
	장도*	1901. 11. 30~1904. 10. 14	1899년 도쿄법학원 졸업
	김교준*	1903. 2. 21~1904. 9. 23	1902년 의학교 제1회 졸업
	유세환*	1904. 10. 13~1907. 3. 14	1900년 도쿄약학교 졸업 1902년 도쿄제국대학 선과(選科) 졸업
	안상호	1904. 10. 18~1905. 1. 16	1902년 도쿄지케이의원의학교 졸업 실제로는 취임하지 않음
	유병필*	1905. 1. 19~1907. 3. 14	1902년 의학교 제1회 졸업
	최규익*	1906. 1. 15~1907. 3. 14	1899년 도쿄고등공업학교 화학공예부 졸업 1901~1906년 의학교 제약원(製藥員)
외국인 교사	후루시로 바이케이(古城梅溪)*	1899. 5. 16~1900. 5. 21	1883년 오이타현립의학교(大分縣立醫學校) 졸업
	고다케 다케지로(小竹武次郎)*	1899. 6~1907. 3. 14	1885년 내무성 의술개업면허 취득

주: 1) 외국인 교사는 '의학교관제'에 따라 학생 교육만 할 뿐 학교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었다.

*1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

출처: 황상익(2015: 60).

부로부터 의학교 교관을 제의 받은 김익남은 1년 동안 일본에서 모교인 지케이의원에서 당직의사로 근무한 뒤 귀국해 1900년 8월 교관에 취임했다. 1904년 9월부터는 군의장(軍醫長)으로 복무했으며, 1908년 11월 15일 안상호와 의학교 제자인 유병필 등과 함께 일본인들의 계림의학회(鷄林醫學會)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의사단체인 의사연구회(醫事研究會)를 만들고 회장에 취임했다. 근대 정규 의학 교육을 받은 최초의 한국 국적 의사인 김익남은 국내 최초의 근대 의학 교육기관인 의학교의 교관으로서 의사 양성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최초의 근대적 의사단체를 만들었다.

1899년 의학교에 최연소 입학하여 3년을 공부한 김교준은 1902년 7월 5일 확정된 제1회 졸업생 19명 중에서 5등으로 우등 졸업생이었다. 부속병원이 뒤늦게 완공되어 졸업 확정 후 8월부터 다섯 달가량 부속병원에서 임상실습을 마친 뒤 1903년 1월 9일 졸업식을 했다. 김교준은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월 21일 열여덟 살의 나이로 의학교 교관에 임명되어 1904년 9월 23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약물학과 생리학을 가르쳤다. 모교의 교관으로 활동한 의학교 졸업생은 제1회 졸업생인 김교준과 유병필 두 사람뿐이었다. 김교준에 이어 두 번째로 의학교 교관이 된 유병필은 1905년 1월 19일부터 1907년 3월 의학교가 대한의원으로 통·폐합될 때까지 교관으로 활동했다. 그 후 1909년 초까지 대한의원 교수로 교육과 환자 진료를 했으며 1908년 만들어진 의사연구회 총무로서 김익남과 함께 조선인 의사단체에서 활동했다.

3) 학생 현황

의학교 제1회 졸업생들은 1902년 7월 졸업증서를 받은 한 달 뒤에야 겨우 병원 건물이 완공되어 8월부터 병원에서 임상교육을 받았다. 졸업 후 의학교 졸업생의 사회 진출은 원활하지 않았다. 졸업생 가운데 김교준과 유병필만이 의학교 교관으로 취임했고, 다른 이들은 임시위생원 위원이나 유행병 예방위원, 검역위원 등으로 활동했지만 임시직에 지나지 않아 의사로서 생계를 이어나가기는 어려운 처지였다. 학생들도 이탈자가 늘어나 의학교가 개교했을 무렵에는 50여 명이던 학생이 점차 줄어 결국 19명만이 졸업했다. 1900년에 입학한 제2회 학생들은 12

[표 4-8-2] 의학교 졸업 횟수별 졸업생 현황

졸업 횟수	졸업생 명단 공고일	졸업 인원(명)	주요 졸업생	활동 상황
제1회	1902. 7. 4	19	유병필	의학교 교관, 대중 강연, 『실용해부학』 편찬, 중외의약신보, 의사연구회, 대정친목회
			김교준	의학교 교관, 육군 2등 중위, 만주 대종교 활동
제2회	1903. 7. 7	13	지성연	1910년 오카야마(岡山)의학전문학교 수료, 조선총독부의원 내과 조수, 조선중앙위생회 촉탁
			최국현	1905~1907년 가네자와(金澤)의학전문학교 수학, 유행병 예방위원, 대한의원 의원, 의관, 교수, 조선의사연구회 간사
			강원영	총독부의원 외과 조수, 조선의사연찬회 강사
제3회	1905. 12. 13	4	장기무	『중외의약신보』 발간, 한방의학 논쟁 주도
			홍종은	세브란스의학교 졸업
			홍석후	세브란스의학교 졸업, 『신편 생리교과서』 출판
제4회 (대한의원)	1907. 7. 9	13	박계양	1912년 교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 의학부 이비인후과학교실 유학, 한성의사회 조직, 한국인 최초의 이비인후과 의사
제5회	1908. 7. 9 (졸업식은 1909. 11. 16)	5	-	-

출처: 황상익(2013: 599~633).

명이 졸업했고, 1901년에는 입학생을 뽑지 않았으며, 1902년 입학생 중에는 4명만 졸업했다. [표 4-8-2]는 의학교의 졸업 횟수별 졸업생 수와 졸업생 명단 공고일 그리고 주요 졸업생들이다. 의학교 졸업생들은 1904년 무렵부터 대개 군의관으로 관직 생활을 했고, 군대 해산 뒤에는 의원이나 진찰소, 약국 등에서 일했다.

4) 의학교의 의의

1899년 조선 정부가 설립한 의학교는 지식인과 민중의 근대 의학 도입의 염원이 정부의 의지와 만나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의학 교육기관이다. 정부는 의학교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지 않고 기숙사, 교과서와 필기도구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제공하여 근대 의사 양성에 힘썼다. 비록 근대화의 격동기에 생겨나 8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어려움 속에서 운영되었으나, 의학교는 이

땅에서 자주적인 힘으로 근대식 의사들을 최초로 양성했고, 배출된 졸업생들은 군대에서, 민간에서 의사로, 지식인으로 활동했다. 의학교는 무엇보다도 근대화의 의지를 가진 조선 정부와 선각자들이 주도하여 자주적으로 근대 의학 교육을 시작한 의학 교육기관의 효시로서 그 의의가 있다.

제2절 대한의원 의육부와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1) 대한의원 의육부

광무 11년(1907) 3월 10일 '대한의원관제(大韓醫院官制)'(칙령 제9호)가 발표되면서 이 병원에 대한의원 교육부가 생겼다. 최초의 근대적 의학 교육기관인 의학교는 대한의원 교육부에 흡수되고, 교관으로 지석영 · 유세환 · 유병필 · 최규익 · 박태길 등이 취임했다. 대한의원 교육부가 되면서, 학부 직할에서 의정부 직할로 격상되고, 교수진도 보강되고, 예산도 늘고, 근대적인 서양 의학 교육기관으로서의 미비점도 보충되었다. 수업료는 전액 무료이며 그 대신 졸업 후 3년간 국가에서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원외생(員外生)을 두어 사비로 공부할 사람을 정원 외에 따로 모집했다. 1907년 4월에 첫 신입생을 모집했고, 7월에는 13명의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의학교로 입학해서 교육받은 학생들로, 학교가 병합되어 편입되면서 졸업은 대한의원 교육부에서 한 학생들이었다.

[표 4-8-3]은 대한의원관제의 변천에 따른 교육부서의 변화를 보여준다. 같은 해 12월 27일 관제(칙령 제73호)를 개정하면서 교육부를 의육부로 바꾸고 원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했다. 교수직은 교수 전임 6명, 부교수 전임 3명으로 증가했다. 12월 20일에는 다음해(1908)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액수는 149,566원(元)이었다. 1908년 제4대 원장으로 기쿠치 죠사부로(菊池常三郎)가 부임하고 대한의원의 일부를 교사로 사용하던 것을 교실 15개의 총건평 194평 4홉과 33평짜리 해부실 1동을 준공하고 11월 16일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제2회 졸

[표 4-8-3] 대한의원관제 변천에 따른 교육 부서 변화

1907. 3. 10		1907. 12. 27		1909. 2. 4	
치료부	• 질병구료 • 빈민시료	치료부	• 질병구료 • 빈민시료	부속의학교	의사 약제사 산파 및 간호부 양성
교육부	• 의사 양성 • 약제사 양성 • 산파 및 간호부 양성	의육부	• 의사 양성 • 약제사 양성 • 산파 및 간호부 양성	-	-
위생부	• 의사, 약제사 및 산파의 업무, 약품 취제에 관한 조사 • 전염병 및 지방병의 예방 종두 기타 • 검미검역	위생시험부	• 전염병 기타 병원의 검사 예방 및 치료방법 • 위생 분석 및 검사 • 두묘 제조	-	-

출처: 『구한국관보』, 1907. 3. 13, 12. 27, 1909. 2. 26.

업식을 겸한 낙성식이 있었다.

2)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1909년 2월 4일 다시 '대한의원관제'(칙령 제10호)가 개정되어, 대한의원 의육부는 부속의학교가 되었다. 3월에는 관비생 28명을 포함하여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제1학년 50명을 모집했다. 교육부를 대한의원 부속의학교로 개칭하면서 원장 사토 스스무(佐藤進)가 사임하고 임시서리로 내부 차관 오카키 시치로(岡喜七郎)를 발령했다. 이때 조선인 교수로는 유세환, 최규익만 남고, 강의도 일본어로 가르치게 되었다. 당시 학생감 지석영은 의학 교수는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일이므로 강의 내용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일어 강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서를 학무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석영의 건의는 묵살되고 1909년 반포한 '대한의원부속의학교규칙' 제6조에 "의학과, 약학과의 교수는 일본어로 행함"이 명문화되었다. [표 4-8-4]는 대한의원 교육부, 의육부, 부속의학교의 교관과 교수(1907~1910) 명단이다.

1910년 2월 7일 '대한의원부속의학교규칙'(내부령 제5호)이 공포되었다. 의학과·약학과·산파과·간호과 등 4개 과가 설치되고, 의학과 4년, 약학과 3년, 산파과와 간호과 2년으로 수업연한이 정해졌다. 1학년 학생 정원은 의학과 50명, 약

[표 4-8-4] 대한의원 교육부, 의육부, 부속의학교의 교관과 교수(1907~1910)

	교육부	의육부	부속의학교
	부장 고다케 다케지(小竹武次) (1908. 1. 1. 교수, 1909. 4. 26. 교수 겸 의관)		
교관, 학감	지석영(1907. 3. 15. 교관, 1907. 5. 31. 학감, 1908. 1. 1~1910. 9. 학생감)		
교관	유세환(1907. 3. 15. 교관, 1908. 1. 1. 교수, 1909. 4. 26~1910. 9. 교수 겸 의관)		
교관	유병필(1907. 3. 15. 교관, 1908. 1. 1~1909. 1. 31. 교수)		
교관	최규익(1907. 3. 15. 교관, 1908. 1. 1~1910. 9. 교수)		
		교수	구보 다케시(久保武, 1908. 1. 1. 교수, 1909. 4. 26. 교수 겸 의관)
		교수	하세가와 후쿠지로(長谷川鮑四郎, 1908. 1. 1. 교수)
		교수	무라카미 류조(村上龍藏, 1908. 1. 1. 교수, 1909. 4. 26. 교수 겸 의관)
		교사	스크랜튼(W. B. Scranton, 1908. 1. 1~1910. 9)

주: 퇴임 일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취임 일자만 기록했음.

출처: 기창덕(1995: 59).

[표 4-8-5]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의학과 학과표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학과목	물리학	물리학	국소해부학 및 실습	국소해부학 및 실습	내과각론 임상강의	내과각론 임상강의	내과각론 임상강의	내과 임상강의
	화학	화학	생리학	생리학 및 의화학	외과각론 임상강의 붕대학	외과각론 임상강의	외과각론 임상강의	외과 임상강의
	해부학	해부학 및 실습	병리해부조직학 및 실습	병리해부조직학 및 실습	안과학 및 임상강의	안과학 및 임상강의	안과학 및 임상강의	안과 임상강의
	조직학	조직학실습 및 태생학	약물학	약물학처방조제학 및 실습	부인과학 및 임상강의	부인과학 및 임상강의	부인과학 및 임상강의	부인과학 및 임상강의
	수학	수학	진단학	진단학	세균학 및 실습	세균학 및 실습	산과학 및 임상강의	산과학 및 임상강의
			외과총론	외과총론		위생학	소아과학 및 임상강의	정신과학 및 임상강의
							피부과학 및 임상강의	이비인후과학 및 임상강의
	일어	일어	일어	일어	일어	일어	일어	일어
	체조	체조	체조	체조	체조	체조	체조	체조

출처: 『구한국관보』, 1910. 2. 7.

학과 10명, 산파과 10명, 간호과 20명으로 되어 있다. 교재와 강의는 모두 일어로 하고, 한글로 통역을 했다. 1910년 반포된 부속의학교규칙을 보면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 4-8-5]는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의학과 학과표다.

대한의원과 관련된 의학 교육기관에서는 졸업생을 두 번 배출했다. 1907년에 대한의원 교육부에서 13명을, 1908년 대한의원 의육부에서 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이들은 의학교로 입학한 학생들이며, 정작 대한의원 부속의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1910년 8월 29일 이후 대한의원 부속의학교가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로 바뀌면서 강습소 수료자로 졸업하게 되었다. 따라서 1907년에 설립된 대한의원의 의학 교육기관도 겨우 3년 반의 짧은 역사를 남기고 문을 닫았다.

3)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조선총독부는 1911년 2월 20일 '조선총독부의원부속의학강습소규칙'(조선총독부령 제19호)을 공포했다. 대한의원 부속의학교의 제6회 졸업식(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제1회)이 1911년 3월에 있었는데, 대한의원 부속의학교에서 4년간 의학 교육을 받은 27명의 졸업생은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명의의 졸업증서를 받았다. 대한의원 부속의학교를 흡수하여 만든 부속의학강습소에는 의과와 조산과, 간호과를 두고 약학과는 제외되었다. 수업연한은 의과 4년, 조산부과 2년으로 종전과 다름없었으나, 간호부과는 1년 반으로 줄었다. 학생 정원은 의과가 75명으로 25명 증원했고, 조산부과도 20명으로 두 배 증원되었으며, 간호부과는 20명 그대로 두었다. 교과과정이나 과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대한의원 부속의학교 학생들을 모두 계승하고, 평양과 대구의 동인의원이 자혜의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폐교로 학교를 잃은 평양과 대구의 동인의원 부속의학교 학생들도 희망자에 한해 받아들였다. 의과 신입생은 고등학교 4년을 수료한 자로 한문, 산수, 국어(일본어: 심상소학교 학도 일어독본 9·10의 강독, 번역, 회화)의 입학시험을 거쳐 선발되면 42주의 교수로 4년의 수업을 받았다. 수업료는 당분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종전의 전원 관비 부담과는 달리 학자금의 지급도 조선총독부령 제20호로 규정된 '학자급여규칙'에 따라 정원의 1/3에

[표 4-8-6]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의과 학과표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학과목	물리학	물리학	국소해부학 및 실습	국소해부학 및 실습	내과각론 임상강의	내과각론 임상강의	내과각론 임상강의	내과 임상강의
	화학	화학	생리학	생리학 및 의화학	외과각론 임상강의 붕대학	외과각론 임상강의	외과각론 임상강의	외과 임상강의
	해부학	해부학 및 실습	병리해부조직학 및 실습	병리해부조직학 및 실습	안과학 및 임상강의	안과학 및 임상강의	안과학 및 임상강의	안과 임상강의
	조직학	조직학 실습 및 태생학	약물학	약물학 처방조제학 및 실습	부인과학 및 임상강의	부인과학 및 임상강의	부인과학 및 임상강의	부인과학 및 임상강의
	수학	수학	진단학	진단학	세균학 및 실습	세균학 및 실습	산과학 및 임상강의	산과학 및 임상강의
			외과총론	외과총론		위생학	소아과학 및 임상강의	정신과학 및 임상강의
							피부과학 및 임상강의	이비인후과학 및 임상강의
	국어(일어)	국어(일어)	국어(일어)	국어(일어)	국어(일어)	국어(일어)	국어(일어)	국어(일어)
	수신	수신	수신	수신	수신	수신	수신	수신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11. 2. 20.

게 식비, 피복비, 잡비 등 3종과 월액 7원 이내로 하는 학자금을 원장이 지급 구분과 급여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11년 12월 5일에는 '부속의학강습소규칙'(조선총독부령 제37호)을 개정 · 공포했다. 의과생의 입학 자격을 고등보통학교 졸업자로 기준을 올려 학생의 질을 높였으며 시험과목에 이과가 첨부되었다. 수업 시간을 전 학기에 42주로 연장하며, 학자급비생은 3년간 의무복무의 조건이 신설되었다. 점차 의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면서 의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급증하여 1913년 신입생 모집에는 75명 모집에 354명이 지원했다.

부속의학강습소는 1912년 3월 24일 제2회(대한의원 기준으로는 제7회) 의과 졸업생 6명을 배출했다. 제3회(1913) 졸업생은 28명, 제4회(1914) 졸업생은 38명, 제5회(1915) 졸업생은 24명, 제6회(1916) 졸업생은 35명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모두 6년에 걸쳐 158명의 의사를 배출했다. 1914년부터는 강습소 출신자에게 졸업과 동시에 의사면허를 주도록 했다.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

[표 4-8-7]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졸업생

졸업 횟수	졸업생 수 (명)	졸업 연월	주요 인물
제1회	27	1911. 3	김용채(도쿄제국대학 병원 내과 수련, 조선총독부의원 조선인 의원, 한성의사회 회장) 김태진[조선인 최초 규슈제국대학(九州帝國大學) 의학부 졸업]
제2회	6	1912. 3	-
제3회	28	1913. 3	심호섭(도쿄제국대학 의학부 박사, 한성의사회 회장,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조선의학협회 초대 회장)
제4회	38	1914. 3	-
제5회	24	1915. 3	-
제6회	35	1916. 3	김현주(경성의학전문학교 병리학 교수)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11~1916.

학강습소는 1916년 4월,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제'(일황 칙령 제80호)에 따라 새로 설립된 경성의학전문학교에 계승되었다.

제3절 경성의학전문학교

1) 설립과 운영

1914년 12월, 총독의 명으로 조선총독부 전문학교위원회가 조직되어 전수학교 5명, 의학강습소 6명, 공업전습소 6명 등 학교별로 위원을 촉탁했다. 의학강습소의 경우는 의학전문학교창립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에는 조선총독부의원 의육과장 사토 고조(佐藤剛蔵), 조선총독부 참사관 법학박사 아키야마 마사노스케(秋山雅之助), 조선군 군의부장 의학박사 사토 간마루(佐藤桓丸), 조선총독부의원 의관 의학박사 모리야스 렌키치(森安連吉)와 이 외에 당국의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세키야 데자부로(關屋貞三郎), 학무과장 다사쿠 고타로(多削幸太郎) 등 6명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학무국원 니시자와 신조(西澤新藏) 등을 임명했다.

(1) 설치 법령

1916년 4월 1일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제'(칙령 제80호)가 공포되고, 전문학교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소관으로 옮겨지면서 조선총독부에서는 '경성의학전문학교 규칙'(부령 제27호)을 공포했다.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제' 제1조에 조선총독부 전문학교는 경성전수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이며, 제3조에 경성의학전문학교는 의술에 관한 지식, 기능을 교수한다고 규정했다. 제6조에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직원은 학교장, 교수전임 3명(주임), 조교수 1명(판임), 서기 1명(판임)으로 하고 학교장은 조선총독부의원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6조의 직원에서 전수학교 교수의 수는 같으나 조교수는 3명이고 공업전문학교의 교수는 5명, 조교수는 62명으로 의학교의 수준이 전수학교나 공업전문학교보다도 낮게 책정되었다. 당시 일본 국내의 의학전문학교 직원 수에 비하면 1/10도 안 되는 숫자였으며, 조선총독부의원의 부속의학강습소에서 실시한 교육 정도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경성의학전문학교규칙'(부령 제27호) 제1조는 교육의 강령으로 조선교육령을 기본으로 하는 윤리적이며 수준 높고 충실한 교과과정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2조 이하의 수업연한이나 시간 수, 교과 과목에 있어서 의학강습소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제6조에 새로이 명시된 일본인과의 공학(共學)으로 일본인을 위한 조선어가 들어 있고, 외국어로는 독일어가 1학년에서 주 4시간, 2학년부터는 주 2시간씩 이수하게 되어 있다. 부칙에 의학강습소에 재학 중인 생도는 의학전문학교의 해당 학년에 편입시키고 급비 및 의무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2) 운영

경성의학전문학교는 1916년 4월 1일부로 승격과 동시에 개편되었고 4월 20일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이 참여하는 개교식이 있었다. 의학강습소가 경성의학전문학교로 분리되면서 예산과 조직이 분리, 변경되어 1916년 6월에는 실습용 기구, 기계를 갖춘 시료외래진료소(施療外來診療所)의 서북쪽 공터에 해부학교실을 건축하고, 계단식 강의실 1동을 신축하는 등 시설을 확장했다. 1917년에는 조선총독부의원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연지동의 밭 약 6,000평을 구입하여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받아 순차적으로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사토 고

죠 교수와 조선총독부 영선관계기사 이와이 나가사부로(岩井長三郎) 공학사가 일본의 의료계 건축물을 조사하여 의화학교실 1동, 해부학교실의 이전 개축, 생리학교실, 병리학교실과 강의실, 학생회관, 생도관, 조직학실습실, 해부표본실 등 매해 한 건물씩 건축해 나갔다.

교수진은 하가 에이지로(芳賀榮次郎) 원장이 교장을 겸임하고 의육과에는 사토 고죠(의화학), 이나모토 가메고로(稻本龜五郎, 병리학), 대한의원 교수로 근무한 적이 있는 구보 다케시(久保武, 해부학)가 기초학 교수로 임명되고, 임상과목은 조선총독부의원의 의관들이 겸직했다. 1917년 1월 22일 문부성 고시 제4호에 따라 경성의학전문학교는 문관임용령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인정되고, 3월 1일에는 의사규칙에 제1조 제1항 제2호를 "경성의학전문학교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의학교를 졸업한 자"로 개정·공고했다. 1913년 4월 8일 입소하여 다음날부터 수업을 받은 의과 학생 110명 중 48명이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 후 제1회 졸업생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장의 졸업증서가 수여되었다. 이 졸업증서는 의학교가 대한의원 교육부로 개정된 이후 10년 만에 독립된 의학교육기관인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이름으로 수여한 것이며, 법적으로 보장된 조선총독부 관리에 임용되는 자격과 의사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증서였다.

경성의학전문학교는 남녀공학의 조항이 없지만, 미국인 여의사 로세타 홀(Rosetta S. Hall)이 요청하여,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 후지타 쓰구아키라(藤田嗣章) 원장의 특별한 배려로 청강생으로 수업을 받고 있던 조선 여성 안수경(安壽敬), 김해지(金海志), 김영흥(金英興) 등이 1918년 3월 26일 제2회 졸업생 47명에 포함되어 졸업증서를 받아 조선 여성으로 국내에서 의학 교육을 받은 최초의 여의사들이 되었다.

(3) 조선인 차별과 조선 학생들의 저항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는 일본인 학생은 5년제 중학교 졸업자이고 조선에서의 중등교육은 4년제 고등보통학교이므로, 당시 중등교육 수학 연수에 1년의 차이가 있어 일본인 학생들의 불평이 컸다. 1918년 8월 13일 칙령으로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제' 중 개정을 공포하여 일본인 학생을 위한 특별의학과를 설치하는 한편, 부령으로 교과과목 및 매주의 교수 시간표도 조선인 학생은 '시간표-갑', 일본인 학생은 '시간표-을'로 구별하는 차별 수업을 했다. 조선인 학생들이

차별 철폐를 요구하자 학교에서는 이에 대해 3일 정학 처벌을 내렸다. 1921년 6월 해부학교실에서 분실된 두개골 문제를 논의하던 중 구보 교수는 "조선 사람은 원래 성격이 흐릿하고 야만인이라서 분명히 조선인 학생의 행위"라고 폭언을 하고 나갔다. 구보 교수는 해부학 시간마다 "조선 사람은 해부학상으로 야만인"이라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주장하곤 했는데, 조선인 학생들은 1학년 교실에 모여 두개골 분실이 조선 학생의 행위라는 증거와 조선 사람의 흐릿한 성격에 대하여 확실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학칙 위반으로 판단하고 9명에게는 퇴학, 180명에게는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무기정학에 처해진 학생들은 동맹퇴학을 결의하고 학교에 퇴학원을 제출하려고 갔지만, 학교에서는 접수를 거절하여 우편으로 보냈으나 역시 접수해주지 않고 도리어 7~8명의 학생을 연행하여 밤 12시까지 심문을 했다. 이 문제는 동창 선배, 학부형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학교에서 퇴학·정학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졸업 후에도 조선인은 제한된 지역에서만 개업이 허락되는 한지의사 격인 조선총독부면허가 발급되고, 일본인은 경성의학전문학교 의학사의 칭호와 문부성 면허가 수여되는 엄청난 차별을 받았다. 이러한 차등 교육은 1922년 2월 4일 개정된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어 고등보통학교가 5년제로 변경되면서 경성의학전문학교 규칙이 개정되어, 특별의학과를 폐지하고 과거 본과 4년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서 구본과(舊本科)라는 보충과를 신설했다. 이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특별의학과 졸업생과 같은 자격을 인정하고, 이수한 자에게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의학사의 칭호도 주었다.

2) 교수진

(1) 교수 현황

경성의학전문학교 이전의 교수진은 의육과 직원만 교관으로 칭하고 임상의관이나 의원에게는 조선총독부의원의 관명을 사용하고 교수직을 부여하지 않았다. 1916년 4월 1일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면서 관제 개정에 따라 교수의 정원이 증원되고 종래의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를 계승하여 조선총독부의원에서 분립해 조선총독부의원의 의관이나 의원이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교수로

[표 4-8-8] 경성의학전문학교 재직 조선인 교수

관급	학위	과목	성명	발령일	퇴임일	출신 학교
교수	-	병리학	김현주(金顯周)	1919. 4. 1	1924. 1. 29	1916년 의학강습소 졸업
	의학박사	외과학	박창훈(朴昌薰)	1923. 11. 15	1928. 3. 31	1919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의학사	내과학	정민택(鄭民澤)	1927. 6. 6	1928. 5. 30	1926년 규슈제국대학 졸업
	의학박사	미생물	유일준(俞日濬)	l925. 10. 1	1932. 8. 12	1918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의학박사	외과학	백인제(白麟濟)	1928. 6. 1	1941. 12	1921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조교수	-	정신과	심호섭(沈浩燮)	1916. 4. 1	1917. 10. 30	1913년 의학강습소 졸업
	-	부인과	김달환(金達煥)	1925. 4. 1	1925. 7. 20	1917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	피부과	오원석(吳元錫)	1926. 11. 30	1928. 5. 31	1919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	내과학	임명재(任明宰)	1925. 4. 1	1931. 8. 31	1919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	병리학	신성우(申聖雨)	1928. 4. 23	1931. 12. 31	1925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	내과학	신용균(申龍均)	1931	1939	1925년 지바(千葉)의학전문학교 졸업
배속장교	육군중좌	교련	이응준(李應俊)	1936. 8	1937. 12	-
강사	의학박사	의화학	윤치형(尹治衡)	1924. 6. 11	1927. 12. 27	1918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	안과학	윤치로(尹致魯)	1928. 10. 4	1929. 12. 1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	피부과	홍진구(洪震求)	1929. 3. 31	1930. 4. 1	1925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	외과학	이병훈(李炳勳)	1929	1930	1923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의학사	내과학	정민택(鄭民澤)	1929. 4. 16	1930. 12. 22	1926년 규슈제국대학 졸업
	-	약리학	박희준(朴熙俊)	1930. 5. 1	1930. 12. 22	1923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의학박사	비뇨기	오원석(吳元錫)	1928. 5. 31	1932. 3. 25	-
	-	피부과	김성환(金星煥)	1933	-	1928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의학박사	이비과	강일영(姜日永)	1932	1936	1925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	내과학	김철수(金哲洙)	1934. 4. 24	1935. 1. 31	1930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	소아과	김광현(金光鉉)	1935. 3. 31	1935. 3. 31	1929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	안과학	공병우(公炳禹)	1935. 4. 5	1935. 4. 18	연도 미상, 평양의학강습소 졸업
	-	생리학	이종륜(李鍾綸)	1936	1937	1924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	외과학	유상규(劉相奎)	1929. 9. 28	1936. 7. 18	1927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	외과학	장기여(張起呂)	1937. 4. 30	1939. 12. 31	1932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의학박사	안과학	신성우(申聖雨)	1933. 12. 31	1940. 7. 20	1925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의학박사	외과학	이재복(李在馥)	1937	-	1931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	안과학	김희준(金希俊)	1940	-	1932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

출처: 「구직원(舊職員)」(『경성제국대학일람』 1940: 157)과 『조선총독부관보』에서 발췌 · 정리했음. 기창덕(1995)에서 재인용.

서임되었다.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된 후 조선인 교수들의 참여도를 살펴보면 [표 4-8-8]과 같다. 또한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교수한 교과목 내역은 [표 4-8-9], [표 4-8-10]과 같다.

(2) 주요 교수의 이력과 활동

유일준 교수는 1918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7월에 교토제국대학 의학부에서 병리학과 내과를 공부했다. 1921년 7월 24일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Universität Freiburg)으로 유학하여 우렌흐트 교수 밑에서 세균학(미생물학)을 연구했다. 1923년 7월 26일 학위를 받고 9월에 귀국하여, 일본 게이오의숙 의학부 병리세균학교실에 들어가 연구 업적을 쌓았다. 1926년 10월 1일부로 모교의 교수로 서임 발령되어 경성의학전문학교 미생물학 초대 교수로 학생들의 존경을 받으며 봉직했다. 그러나 1932년 8월 12일 가족과 같이 한강에 나갔다가 익사했다.

1919년 졸업생 박창훈(외과학)은 서울 태생으로 1915년 12월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에 입학하여 1918년 졸업하고 우에무라(植村) 외과에 입국(入局)했다. 1920년에는 관비생으로 교토제국대학 외과에 유학하여 외과학을 연구했다. 1921년 다시 조선총독부의원에 돌아와 우에무라 외과에서 외과의사로 일하는 동안 당시 원장인 시가 기요시(志賀潔) 박사의 호의로 미생물학교실에서 연구한 학위논문이 1925년 2월 16일 교토제국대학 교수회에서 통과되어 의학박사가 되었다. 박창훈 박사는 1923년에 경성의학전문학교 조교수에 서임되고 교수로 승진되어 1928년까지 봉직했다.

1921년 졸업생 백인제(외과학)는 평안북도 정주 출신으로 학생 때 3·1 운동에 참여하여 퇴학 처분을 당했으나 당시의 교장 사토 교수의 노력으로 복교되어 우에무라 외과에 입국하여 1927년 강사에 임명되고 1928년 6월 1일에는 교수로 승진되면서 외과과장이 되었다. 백인제는 20여 명의 일본인과 조선인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1938년 우에무라 교수가 귀국하면서 백인제에게 자영하던 병원을 양도해 우선은 인계를 받았으나, 1941년 12월 학교를 사직하고 백(白)외과라는 명칭으로 우에무라 외과를 인수·운영했다.

조교수로는 정신병과의 심호섭(1913년 졸업생)이 1916년 4월 서임되었으나, 1917년 10월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로 옮겼다. 산부인과학의 김달환(1917

[표 4-8-9] 경성의학전문학교 교과표(1916)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수신	1	수신의 요지	1	상동	1	상동	1	상동	1	상동	1	상동	1	상동	1	상동
국어	4	독방(讀方), 해석, 회화, 서취(書取), 암송, 작문	4	상동	2	상동	2	상동	2	상동	2	상동	-	-	-	-
조선어	4		4		2		2		2		2					
독일어	4	독방, 해석, 회화, 서취, 암송, 작문	4	상동	2	상동	2	상동	2	상동	2	상동	-	-	-	-
수학	2	대수, 기하, 삼각법	2	상동	-	-	-	-	-	-	-	-	-	-	-	-
물리학	4	강의 및 실습	4	상동	-	-	-	-	-	-	-	-	-	-	-	-
화학	4	강의 및 실습	4	상동	-	-	-	-	-	-	-	-	-	-	-	-
해부학 조직학	6	해부학 강의	6	상동	-	-	-	-	-	-	-	-	-	-	-	-
	4	조직학강의 및 실험	2	상동	-	-	-	-	-	-	-	-	-	-	-	-
		현미경 사용법	2	해부학 실습	-	-	-	-	-	-	-	-	-	-	-	-
생리학	3	강의 및 실험	3	상동	3	상동	3	상동	-	-	-	-	-	-	-	-
의화학	-	-	-	-	3	강의 및 실험	3	상동 및 실습	-	-	-	-	-	-	-	-
위생학	-	-	-	-	2	강의 및 실험	1	상동	-	-	-	-	1	위생법규 및 위생시험법	1	상동
세균학	-	-	-	-	3	강의 및 실험	2	상동 및 실습	-	-	-	-	1	법정 전염병 및 풍토병	1	상동
병리학	-	-	-	-	6	병리총론 및 병리해부학 강의	6	상동	2	병리 조직학 실습	-	-	-	-	-	-
약물학	-	-	-	-	3	강의 및 실험	2	강의 및 실습	1	조제 실습	-	-	-	-	-	-
							1	처법조제학 강의 및 실험								

[표 4-8-9] 경성의학전문학교 교과표(1916)(계속)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시수	과정
내과학	-	-	-	-	3	진단학 강의 및 실험	3	상동	3	내과각론 강의	3	상동	-	-	-	-
									1	임상강의	1	상동				
외과학	-	-	-	-	3	외과총론 강의	3	상동	3	외과각론 강의	3	상동	-	-	-	-
							1	붕대실습	3	임상강의	3	상동				
소아과학	-	-	-	-	-	-	-	-	1	강의 및 임상강의	1	상동	-	-	-	-
피부과학 매독과학	-	-	-	-	-	-	-	-	1	강의 및 임상강의	1	상동	-	-	-	-
이비인후과학	-	-	-	-	-	-	-	-	1	강의 및 임상강의	1	상동	-	-	-	-
안과학	-	-	-	-	-	-	-	-	2	강의 및 임상강의 검안경 실습	2	강의 및 임상강의	-	-	-	-
산과학 부인과학	-	-	-	-	-	-	-	-	3	부인과 강의	2	상동	2	산과 강의	2	상동
	-	-	-	-	-	-	-	-	-	-	1	산과 강의	2	임상강의	2	상동
	-	-	-	-	-	-	-	-	-	-			(2)	산과 모형연습	(2)	상동
정신병과학	-	-	-	-	-	-	-	-	-	-	1	강의	3	상동 및 임상강의	3	상동
치과학	-	-	-	-	-	-	-	-	-	-	1	강의	1	상동 및 임상강의	1	상동
외래환자 임상강의	-	-	-	-	-	-	-	-	(8)	내과 외과	(8)	상동	(10)	내과, 외과, 소아과, 피부과, 매독과, 이비인후과, 안과, 산과부인과, 치과	(10)	상동
법의학	-	-	-	-	-	-	-	-	-	-	1	강의 및 실습	1	상동	1	상동
체조	3	체조, 교련	3	상동	2	상동	2	상동	1	상동	1	상동	1	상동	1	상동
합계	35		35		33		33		27 (8)		27 (8)		29 (14)		29 (14)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16. 4. 1.

[표 4-8-10] 경성의학전문학교 교과표(1926)

학과목	교수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신	윤리	1	1	1	1
국어	-	4	2	-	-
독일어	-	4	4	2	-
영어	-	2	2	-	-
화학	강의 및 실험실습	4	-	-	-
해부학	계통해부학강의	6	-	-	-
	실습	2, 3학기 부정기	1학기 부정기	-	-
	국소해부학강의	-	1	-	-
	조직학강의 및 실습	2	-	-	-
	태생학강의	3학기 1	-	-	-
생리학	강의 및 실습	3	3	-	-
의화학	강의 및 실험실습	3	2	-	-
위생학	강의 및 실습	-	-	1	-
미생물학	강의 및 실험실습	-	2	1학기 2	-
병리학	총론, 병리해부학강의	-	-	6	-
	병리조직학 실습	-	-	1, 2학기 각 2	-
약리학	강의 및 실습	-	1학기 3, 2, 3학기 2	-	-
조제학	강의 및 실습	-	3학기 1	1학기 1	-
내과학	진단학강의	-	1, 2학기 각 3	-	-
	각론강의	-	3학기 2	2	2
	임상강의	-	-	2	2
	외래환자임상강의	-	-	부정기	부정기
외과학	총론강의	-	3	-	-
	각론강의	-	-	2	2
	임상강의	-	-	3	3
	붕대실습	-	3학기 1	-	-
	외래환자임상강의	-	-	부정기	부정기
소아과학	강의 및 임상강의	-	-	1	1
	외래환자임상강의	-	-	-	부정기
피부·비뇨기과학	강의 및 임상강의	-	-	2	1
	외래환자임상강의	-	-	-	부정기

[표 4-8-10] 경성의학전문학교 교과표(1926)(계속)

학과목	교수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비인후과학	강의 및 임상강의	-	-	2	1
	외래환자임상강의	-	-		부정기
안과학	강의 및 임상강의	-	-	2	2
	외래환자임상강의	-	-	-	부정기
산과부인과학	산과강의	-	-	3학기 1	2
	부인과강의	-	-	1학기 3, 2, 3학기 2	-
	임상강의	-	-	-	2
	산과모형연습	-	-	-	1학기 부정기
	외래환자임상강의	-	-	-	부정기
정신과학	강의	-	-	3학기 1	-
	임상강의	-	-	-	2
치과학	강의	-	-	1학기 1	-
	임상강의	-	-	1	-
	외래환자임상강의	-	-	부정기	-
법의학	강의 및 실험	-	-	-	1학기 2, 2, 3학기 1
체조		3	3	2	1.5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26. 8. 10.

년 졸업생)은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하면서 졸업하고 곧 산부인과에 입국하여 1925년 4월 1일부로 조교수에 서임되었으나, 그해 7월 사임했다. 임명재(1919년 졸업생)는 1925년에 조교수에 서임되어 1931년 8월까지 모교에서 봉직했다. 내과에서 1928년부터 강사로 있던 신용균(지바의전 1925년 졸업생)이 임명재 조교수의 뒤를 이어 1931년 조교수에 서임되었으나, 교수로 승진하지 못하고 1939년까지 조교수로 근무하다 사임했다. 병리학의 신성우(1925년 졸업생)는 졸업하자 병리학교실에 입국하여 조수로 근무하다 1928년 4월 강사로 승진하고, 1931년 조교수로 승진되었다. 1932년 2월 교토제국대학 의학부에서 학위논문이 통과되어 의학박사가 된 후 병리학교실에서 안과학교실로 옮겨 1940년 7월까지 강사로 봉직했다. 피부·비뇨기과의 오원석(1919년 졸업생)은 조수와 강사를 거쳐 1928년 11월 조교수로 승진하고 1929년 5월부터 강사로 출강했으나, 1931년 임명재 박

사와 합동으로 개업을 하면서 1932년에 사임했다. 이상과 같이 조교수로 임명되어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일한 조선인 학자는 6명이었다.

3) 졸업생의 학술 활동

함경남도 장진 출신의 윤치형(1896~)은 1918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제2회로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관비생으로 규슈제국대학 제2외과로 유학하여 공부했다. 1922년 규슈제국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독일 브레슬라우 대학(Universität Breslau)으로 유학하여 학위를 받고 1924년에 돌아와 다시 규슈제국대학 제2외과 의원으로 일하는 중에 일어와 독일어로 된 「건강폐와 폐결핵에 미치는 기흉의 작용」이라는 학위논문이 통과되어 조선에서 최연소 의학박사가 되었다. 윤치형 박사는 최초로 일본과 독일에 유학한 사람이다.

1921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평양 출신 이석신이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도쿄제국대학 병리학교실에 입국했으나, 같은 해 8월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세균학교실에서 아우구스트 폰 바써만(August von Wassermann) 교수의 지도를 받아 1924년 학위를 받았다. 1925년부터 1년간 독일 국립병원 소아과에서 임상조수로 일하다 1926년 8월 귀국했다.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서는 생화학을 전공하여 1932년 교토제국대학에서 「조선인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받고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생화학 교수로 재직했다.

1922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박주병도 1923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약물학을 연구하고 학위를 취득하여 돌아왔고, 1918년 제2회 졸업생 안남규도 박주병과 같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한편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 통계는 [표 4-8-11]과 같다. 그리고 경성의학전문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 학생들로서 3·1 독립만세운동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금당한 인원을 조사한 결과가 [표 4-8-12]다.

[표 4-8-11] 경성의학전문학교 졸업생 수

졸업 횟수	연도	인원
제1회	1917	48명
제2회	1918	44명
제3회	1919	39명
제4회	1920	본과 28명(한국인), 특과(1회) 22명
제5회	1921	본과 22명(한국인), 특과(2회) 14명
제6회	1922	본과 36명(한국인), 특과(3회) 21명
제7회	1923	본과 35명(한국인 16명), 구본과 24명(한국인)
제8회	1924	본과 60명(한국인 29명), 구본과 20명(한국인)
제9회	1925	본과 61명(한국인 33명), 구본과 14명(한국인)
제10회	1926	본과 68명(한국인 13명), 구본과 33명
제11회	1927	85명(한국인 41명)
제12회	1928	본과 59명(한국인 8명), 구본과 18명
제13회	1929	본과 53명(한국인 8명), 구본과 36명
제14회	1930	본과 79명(한국인 21명), 구본과 6명
제15회	1931	76명(한국인 15명)
제16회	1932	81명(한국인 25명)
제17회	1933	77명(한국인 30명)
제18회	1934	82명(한국인 23명)
제19회	1935	60명(한국인 12명)
제20회	1936	78명(한국인 17명)
제21회	1937	63명(한국인 10명)
제22회	1938	78명(한국인 20명)
제23회	1939	77명(한국인 17명)
제24회	1940	6명(한국인 20명)
제25회	1941. 3	70명(한국인 18명)
제26회	1941. 12	74명(한국인 20명)
제27회	1942. 3	70명(한국인 16명)
제28회	1943. 3	70명(한국인 13명)
제29회	1944. 9	71명(한국인 16명)
제30회	1945. 10	100명(한국인 21명)

출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동창회 회원명부』, 2010.

[표 4-8-12] 3·1 독립만세운동 때 구금된 서울 지역의 학교별 학생 수 단위: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경성전수학교(관립)	4	5	3	-	12
경성의학전문학교(관립)	10	9	5	7	31
경성공업전문학교(관립)	4	9	1	-	14
경성고등보통학교(관립)	3	5	9	5	22
연희전문학교	3	-	-	1	4
배제고등보통학교	3	2	1	1	7
휘문고등보통학교	1	1	-	2	4
보성고등보통학교	-	8	5	2	15
보성법률상업학교	1	1	2	-	4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	1	1	-	2

출처: 일본 육군성(1919).

제4절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1) 설립 배경 및 주체

1922년 1월 1일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시바타 다카사부로(紫田善三郎)는 2년제 예과대학 신설을 발표했다. 조선총독부는 1922년 6월부터 대학 예과의 부지를 물색하여 청량리 역전으로 결정했다. 1923년 5월 30일 기공식[地鎭祭]을 하고 1만 5,800평의 부지에 공사비 18만 3,800원의 예산으로 1차 건축을 시작했다. 1923년 11월 25일 '조선제국대학창설위원회규정'이 발표되고 11월 27일에는 조선대학창설위원이 임명되었다. 위원장에는 아리요시 쥬이치(有吉忠一) 정무총감, 위원은 학무국장 나가노 간(長野 幹), 재무국장 와다 이치로(和田一郎), 참사관 야나베 에이이치로(失鍋永一郎), 경무국장 마루야마 쓰루요시(丸山鶴吉), 토목부장 하라 시즈오(原靜雄), 사무관 오다 쇼오고(小田省吾), 하야시 긴조(林 緊藏), 기사 이와이 나가사부로, 비서관 마쓰무라 마쓰모리(松村松盛), 나카무라 도라노스케(中村寅之助) 등이 임명되고 도쿄제국대학 교수 핫토리 우노키치(服部宇之吉), 조선총독부

의원 원장 시가 기요시, 경성법학전문학교 교장 아비코 마사루(吾孫子勝) 등이 촉탁되었다. 이들은 11월 29일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제1회 조선대학창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했다.

1. 오는 대정 15년(1926)부터 경성에 설치할 대학은 제국대학령에 의하여 종합대학으로 하고 그 명칭은 조선제국대학이라 칭한다.
2. 조선제국대학에는 우선 법문학부 및 의학부를 설치한다.

조선대학창설위원회 개최 후 1924년 1월 10일부터 대학 예과 학생 모집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 2월 20일 지원자 수는 법문학부에 일본인 152명, 조선인 141명, 총 293명인데 그중 법학과는 214명, 문학과는 79명이었다. 이과(의과)에는 일본인 254명, 조선인 100명, 총 354명이 지원했다. 조선인의 경우는 경찰의 엄중한 신원조사와 입학시험을 거쳐 선발되었는데, 법문과는 정원이 80명이었지만 실제로는 90명을 선발하여 그중에 문 A 10명, 문 B 19명, 즉 29명이 조선인이고 이과의 80명 중에는 조선인 17명이 합격되었다. 조선인 합격 비율은 문과 32%, 이과 21%였다.

1923년 12월 15일 본관이 준공되고, 1924년 4월 21일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설치되어 있던 대학 예과 준비사무실을 청량리의 신축 교사로 이전하여 개교 준비를 완료했다. 1924년 5월 2일 '경성제국대학관제'가 공포되고 그 다음날인 5월 3일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교수들을 임명했다. 교수는 모두 일본인으로 와다 학무국장의 "조선대학의 교수는 조선인을 많이 채용할 것"이라는 담화와는 매우 다른 현실이었다. 5월 10일 경성제국대학 시업식을 하고 청량리의 대학 예과는 5월 12일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2)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설립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는 병명을 포함한 모든 전문 용어에 독일어를 사용하고 의학 교육을 독일식으로 강의했다. 경성제국대학 예과에서도 독일어를 제1외국어로 일주일에 10시간씩 2년간 가르쳤다. 이과(의과)의 예과 시간표를 살펴보면, 수

신, 국어 및 한문, 제1외국어(독일어), 제2외국어(영어), 라전어, 수학, 물리, 화학, 식물 및 동물, 심리, 도화, 체조 등의 과목을 1학년과 2학년에서 각각 34시간씩 수업하도록 되어 있다. 1924년 이과에 합격한 학생은 정원 80명 중 조선인이 17명이었다.

경성제국대학의 위치는 조선총독부의원의 동쪽에 의학부와 본부관을 건축하도록 정무총감의 결재를 얻었다. 동숭동에 세울 본부관과 조선총독부의원 동쪽에 세워질 의학부 자리를 정지(整地)하고 1925년 7월 18일 기공식을 했다. 20만 원의 예산으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의학관과 해부학실을 짓고, 동숭동에 본부관과 법문학교실을 고딕식으로 지었다.

1926년 1월 15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내에 설치되어 있던 경성제국대학 창립사무소를 동숭동의 신축 본부관으로 이전했다. 3월 30일에는 각의(閣議)에서 도쿄제국대학 문학부장 핫토리 교수가 경성제국대학의 총장으로 결정되어 법문학부장을 겸직하고, 의학부장에는 조선총독부의원 원장이며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장이던 시가 박사가 4월 1일부로 임명되었다. 법문학부는 25강좌, 의학부는 12강좌로 교수의 인선이 이루어졌다. 1926년 이과의 경우 조선인 학생의 예과 제1회 수료생 15명이 5월 1일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3) 의학부 기초의학 강좌 교수진과 수업

1926년 3월 31일 공포된 '경성제국대학관제'에는 총장, 교수, 조교수를 두게 되고, 교수는 강좌를 단임하고, 조교수는 교수를 도와 수업 실험에 종사하고 강좌를 분담하게 했다. 또한, 제8조에 "조수는 각 학부에 분속(分屬)시켜 교수, 조교수의 지휘를 받아 학술에 관한 직무를 보게 한다"고 되어 있다. 4월 1일 관제에 따라 강좌와 교수, 조교수가 임명되었고 조수도 발령했다.

설립 당시 의학부는 해부학 제1강좌 교수 우에다 쓰네키치(上田常吉), 제2강좌 교수 쓰자키 다카미치(津崎孝道), 제3강좌 조교수 이마무라 유타카(今村豊), 생리학 제1강좌 교수 나카니시 마사카네(中西政周), 제2강좌 교수 오쓰카 도키치(大塚藤吉), 의화학 제1강좌 교수 사토 고죠(佐藤剛藏), 약물학 제1강좌 교수 오자와 마사루(大澤勝), 제2강좌 교수 스기하라 도쿠유키(杉原德行), 병리학 제1강좌 교수

[표 4-8-13] 경성제국대학 교원 연누계(延累計) 수(1927~1942) 단위: 명

	교수	조교수	강사	촉탁	조수	부수(副手)	수업촉탁	계
기초의학	190(0) 0%	155(1) 1%	70(15) 21%	9(0)	350(65) 19%	3(1)	9(0)	786(82) 10%
임상의학	151(0) 0%	139(1) 1%	29(6) 21%	-	299(90) 30%	-	26(6) 23%	644(103) 16%
연누계	341(0) 0%	294(2) 1%	99(21) 21%	9(0)	649(155) 24%	3(1)	35(6) 17%	1,430(185) 13%

주: ( ) 안은 조선인

출처: 『경성제국대학일람』, 소화 6~18년.

도쿠미쓰 요시토미(德光美福), 제2강좌 교수 고스기 도라이치(小杉虎一), 미생물학 제1강좌 교수 와다비키 아사미쓰(綿引朝光), 제2강좌 교수 고바야시 세이지로(小林晴治郎) 등 모두 12강좌에 11명의 교수와 2명의 조교수가 일본인으로만 임명되었다.

의학부의 의화학교실, 해부학교실이 1926년 4월 23일 준공되어 입주하면서, 5월 10일 '경성제국대학부수규정'이 조선총독부 인가로 실시되어,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1924) 이종륜(李鍾綸, 생리학)이 조선인으로는 최초로 5월 5일 조수로 발령되었다. 6월 21일에는 교토제국대학 출신 윤일선[尹日善, 병리학, 1921년 2월 28일 조수 발령, 1928년 3월 30일 조교수 발령, 5월 15일 종칠위(從七位) 서임, 1929년 4월 18일 사직], 7월 6일에는 오카야마 의전 출신 이갑수(李甲洙, 생리학)가 부수로 입국하게 되었다. 1921년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으로 민병기(閔丙祺, 약물학, 1월 14일), 김중화(金重華, 병리학, 4월 8일), 김상태(金尙泰, 약리학, 4월 26일), 정윤용(鄭潤鎔, 위생학, 5월 9일, 10월 25일 조수 발령) 등이 부수로 추천되고, 교토제국대학 출신 문목규(文穆圭)가 조수로 발령되었다. 다음해인 1928년에는 2월 20일 부수에 이석신(李錫申, 의화학, 1929년 3월 31일 조수 발령)이, 4월 1일에는 윤기녕(尹基寧, 약물학)이 추천되고 정일천(鄭一千, 해부학)은 같은 날짜로 조수에 발령되었다. 5월 8일에는 박종영(朴鍾榮)이 부수로 추천되었다.

1926년(다이쇼 15) 4월 24일 공포된 '경성제국대학의학부규정'은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제1학기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3학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우선은 최초로 준공된 해부학교실과 의화학교실에서 제1학년의 해부학과 생리학, 의화

[표 4-8-14]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교수진

해부학	제1강좌	담임교수 우에다 쓰네키치(1926. 4. 1), 조교수 스즈키 기요시(鈴木清, 1926. 9. 13)
	제2강좌	담임교수 쓰자키 다카미치(津崎孝道, 1926. 4. 1), 조교수 하기무라 마사요시(梶村正義, 1926. 8. 26~1931. 3. 28), 조교수 고하마 모토쓰기(小濱基次, 1926. 9. 13~1932. 5. 12), 조교수 마쓰모토 기요시(松本清, 1935. 4. 13)
	제3강좌	조교수 이마무라 유타카(1925. 4. 1), 조교수 아라세 스스무(荒瀬進, 1929. 4. 24~1933. 9. 22), 조교수 시마 고로(島五郎, 1936. 7. 24)
생리학	제1강좌	담임교수 나카니시 마사카네(1926. 4. 1), 조교수 하시모토 데쓰기(橋本程次, 1931. 3. 16),
	제2강좌	담임교수 오쓰카 도키치(1926. 4. 1), 조교수 에토 다다오(衛藤忠雄, 1926. 4. 1~1933. 5. 30), 조교수 야노 마코토(矢野眞琴, 1940. 5. 3~1941. 6. 20)
의화학	제1강좌	담임교수 사토 고죠(1926. 4. 1~1935. 3. 30), 교수 나카지마 타쿠(中島拓, 1931. 4. 23), 조교수 아카오 아키라(赤尾晃, 1926. 7. 19~1938. 3. 31), 조교수 구로다 가이치로(黒田嘉一郎, 1926. 9. 13)
약물학	제1강좌	담임교수 오자와 마사루(1926. 4. 1), 조교수 시오야 노부오(鹽谷信男, 1928. 4. 11~1930. 4. 19), 조교수 기타하라 시즈오(北原靜雄, 1930. 4. 16~1932. 7. 6), 겸조교수 하자마 분이치(狹間文一, 1935. 7. 11~1936. 6. 11), 조교수 우에다 시게로(上田重郎, 1938. 7. 19)
	제2강좌	담임교수 스기하라 도쿠유키(1926. 4. 1), 조교수 가쿠 텐민(加來天民, 1927. 12. 23~1939. 4. 7)
병리학	제1강좌	담임교수 도쿠미쓰 요시토미(1926. 4. 1), 조교수 윤일선(尹日善, 1928. 3. 30~1929. 4. 18), 조교수 아카누마 준시로(赤沼順四郎, 1930. 10. 18~1940. 10. 30), 조교수 니시오 나오토(西尾直인, 1941)
	제2강좌	담임교수 고스기 도라이치(1926. 4. 1), 조교수 미도리카와 반(翠川盤, 1928. 5. 25~1929. 5. 16), 조교수 우메다 가오루(梅田薫, 1929. 10. 7~1941. 8. 28), 조교수 다치바나 시게루(橘茂, 1941)
미생물학	제1강좌	담임교수 와다비키 아사미쓰(1926. 4. 1~1937. 6. 2), 담임교수 시가 기요시(1927. 6. 2~1930. 6. 11), 담임교수 나카무라 게이조(中村敬三, 1930. 6. 11~1935. 7. 18), 교수 호소카와 세이이치(細川正一, 1937. 4. 13)
	제2강좌 기생충학	담임교수 고바야시 세이지로(1926. 4. 1), 조교수 타나베 미사오(田邊操, 1927. 4. 18~)
위생학 (예방의학)	제1강좌	담임교수 와다비키 아사미쓰(1927. 6. 2), 조교수 미즈시마 하루오(水島治夫, 1927. 4. 5~1940. 9. 26), 강사 스가와 유카타(須川豊, 1940. 11. 4), 교수 기무라 세이이치(木村正一, 1941), 겸조교수 시바 요시야(椎葉芳彌, 1928. 1. 10~1928. 10. 21, 1931. 2. 26~2. 27), 조교수 오카미 모리마사(大神盛正)
법의학	제1강좌	담임교수 사토 다케오(佐藤武雄, 1929. 4. 27), 조교수 쿠니후사 지조(國房二三, 1931. 5. 22~1940. 7. 27)
내과학	제1강좌	담임교수 이와이 세이시로(岩井誠四郎, 1927. 4. 6)
	제2강좌	담임교수 이토 마사요시(伊藤正義, 1927. 5. 11)
	제3강좌	담임교수 시노자키 데쓰시로(篠崎哲四郎, 1929~1943), 조교수 나리타 가이스케(成田夬介, 1927. 4. 5), 조교수 고영순(高永珣, 1928. 12. 23~12. 26) 조교수 이나다 요시오(稻田宜男, 1928. 2. 9~1940. 6. 10), 조교수 후로나카 후지오(風呂中不二夫, 1929. 4. 24~1938. 5. 31), 조교수 미키 사카에(三木榮, 1933. 2. 24~1935. 8. 13), 조교수 유타니 도모조(油谷友三), 조교수 노자카 산기(野坂三技, 19?~1938. 1. 17)
외과학	제1강좌	담임교수 마쓰이 곤페이(松井權平, 1927. 4. 5)
	제2강좌	담임교수 오가와 시게시(小川蕃, 1927. 4. 5~1939. 9. 1), 담임교수 혼나 후미노리(本名文任, 1940. 1. 30), 조교수 이와노 겐지(岩野權治, 1938. 7. 19), 조교수 나카노 유우(中野祐, 1940. 8. 2)

[표 4-8-14]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교수진(계속)

안과학	제1강좌	교수 하야노 류죠(早野龍三, 1927. 5. 10), 교수 진 가쓰조(任勝三, 1940. 8. 2), 조교수 나카지마 쇼(中島墝, 1928. 6. 23~1933. 9. 15), 조교수 에나미 도모다카(江波知隆, 1935. 4. 13~1939. 10. 6), 조교수 기쓰카와 아쓰시(橘川篤, 1940. 8. 2), 조교수 모리타 카이로(森田回郎, 1943. 4)
소아과	제1강좌	담임교수 쓰치바시 고타로(土橋光太郎, 1927. 5. 11~1941. 4. 5), 교수 와다 시게유키(和田成之), 조교수 하라 고오키(原弘毅, 1928. 12. 20~1931. 6. 30), 조교수 다카이 도시오(高井俊夫, 1932. 7. 20)
부인과	제1강좌	담임교수 다카쿠스 사카에(高楠榮, 1927. 5. 11~1941. 4. 5), 교수 야스키요 사부로(泰淸三郎), 조교수 요코야마 시게키(橫山茂樹, 1927. 5. 26~1929. 9. 14), 조교수 이노우에 시게로(井上繁, 1929. 4. 24~1942. 9. 21)
정신신경과학	제1강좌	담임교수 구보 기요지(久保喜代二, 1927. 5. 11~1941. 6. 4), 담임교수 와타나베 미치오(渡邊道雄), 조교수 핫도리 로쿠로(服部六郎, 1928. 12. 20~1942. 1. 31), 조교수 이토 고라이진(伊東 高麗人)
이비인후과학	제1강좌	담임교수 고바야시 시즈오(小林靜雄, 1928. 3. 20), 조교수 히로타 간지(廣田寬治, 1927. 7. 19~1935. 5. 29), 조교수 미야게 아키라(三宅彰, 1940. 4. 13~1944), 조교수 스에 케이지로(須江奎二郎)
피부비뇨기과	제1강좌	담임교수 히로타 야스시(廣田康, 1928. 3. 20~1938. 7. 9), 담임교수 기타무라 세이치(北村晴一, 1939. 3. 25), 조교수 이시와타 쥬타로(石渡忠太郎, 1928. 8. 3~1939. 3. 25)
정형외과학	제1강좌	담임교수 나카무라 료조(中村兩造, 1928. 3. 20~1940. 12. 19), 담임교수 스즈키 쥬이치로(鈴木忠一郎), 조교수 스즈키 모토하루(鈴木元晴, 1928. 4. 18)
치과	-	조교수 이쿠다 신보(1929)
방사선과	-	조교수 스즈키 모토하루(1940. 5. 25)

주: 퇴임 일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취임 일자만 표기했으며, 취임 및 퇴임 일자를 모두 알기 어려운 경우 따로 표시하지 않았음.
출처: 기창덕(1995: 89~93).

학을 교수하고 1927년 8월 27일 의학부의 본관과 도서관이 준공되어 해부, 생리, 위생, 미생물학교실이 10월 7일 이전되었다.

당시 제1학년과 제2학년의 교과목과 일주일 수업 시간 수는 [표 4-8-15]와 같다.

4) 의학부 임상 강좌의 교수진과 수업

1928년에 예과에서 진학한 학생들이 기초의학 과목을 마치고 임상과목을 배우게 되면서 실습을 위해 1928년 칙령 제96호에 따라 경성제국대학에 부속의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 법령에 따라 조선총독부의원이 의학부의 부속의원으로 개편되어 '조선총독부의원관제'를 폐지하고 6월 1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

[표 4-8-15]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1, 2학년의 기초의학 교과목

학년 / 학과목	제1학년			제2학년		
	1학기	2학기	3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해부학						
계통해부학	8시간	6시간	6시간	-	-	-
조직학	3시간	2시간	-	-	-	-
해부학실습(3시간씩)	-	2회	2회	2회	-	-
조직학실습(3시간씩)	-	2회	2회	-	-	-
태생학	1시간	1시간	1시간	-	-	-
생리학						
생리학	6시간	6시간	6시간	-	-	-
동 실습(3시간씩)	-	-	-	2회	-	-
의화학						
의화학	4시간	2시간	2시간	-	-	-
동 실습(3시간씩)		2회	2회	-	-	-
미생물학 및 기생충학						
미생물학	-	-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기생충학	-	-	1시간	1시간	1시간	
동 실습(3시간씩)	-	-	-	2회	2회	2회
면역학, 실습	-	-	-	-	2시간	2시간
약물학(1931. 4. 18. 약리학으로 개칭)						
약물학	-	-	2시간	4시간	2시간	2시간
동 실습(3시간씩)	-	-	-	-	1회	-
임상약물학	-	-	-	3학년부터	-	-
병리학						
병리총론	-	-	4시간	4시간	-	-
병리각론	-	-	-	2시간	4시간	-
병리조직실습(3시간씩)	-	-	-	-	1회	2회
임상병리학	-	-	-	3학년부터	-	-
병리해부실습	-	-	-	때때로 실시	4학년까지	-
위생학 및 예방의학						
위생학, 예방의학	-	-	-	2시간	2시간	2시간
동 실습(2시간씩)	-	-	-	-	1회	1회
내과학						
진단학, 실습	-	-	-	2시간	2시간	3시간
외과학	-	-	-	-	-	-
국소해부학	-	-	-	2시간	-	-
외과학총론	-	-	-	3시간	3시간	3시간
붕대실습	-	-	-	-	-	-

출처: 기창덕(1995).

[표 4-8-16]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3, 4학년 임상과목 단위: 시간

학년 / 학과목	제3학년			제4학년		
	1학기	2학기	3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내과학						
내과각론 및 임상강의	6	6	6	6	6	6
외과학						
외과각론 및 임상강의	6	6	6	6	6	6
정형외과학 임상강의	1	1	1	-	-	-
산부인과학						
산과학 부인과학	3	3	3	3	-	-
산부인과 임상강의	-	-	-	2	2	2
피부비뇨기과학						
피부과학	2	2	2	-	-	-
비뇨기과학	1	1	1	-	-	-
피부비뇨기과 임상강의	-	-	-	1	1	1
안과학						
안과학	3	3	3	-	-	-
안과임상강의	-	-	-	1	1	1
이비인후과학						
이비인후과학	2	2	2	-	-	-
이비인후과 임상강의	-	-	-	1	1	1
소아과학						
소아과학	2	2	2	-	-	-
소아과 임상강의	-	-	-	1	1	1
이학적요법학						
이학요법 임상강의	-	-	-	-	-	-
신경정신과학						
신경정신과학		1	1	-	-	-
임상강의	-	-	-	2	2	2
치과학						
치과학 및 임상강의	-	-	-	1	1	1

출처: 기창덕(1995).

원으로 개원식을 가졌다. 부속의원에는 내정되어 서구에 유학을 보냈던 조선총독부의원의 의관이나 의원들을 의학부의 교수 또는 조교수 등으로 임명하고 나머지는 새로이 일본에서 교수, 조교수를 선발·임용하여 보충했다. 임상과목의 강좌별 교실을 구성하고 교수를 임명했다. 내과에는 3강좌를 두어 제1강좌 이와이 세이시로, 제2강좌 이토 마사요시, 제3강좌 시노자키 데쓰시로(篠崎哲四郎)이고, 외과는 2강좌로 제1강좌 마츠이 곤페이, 제2강좌 오가와 시게시, 안과 강좌 하야노 류죠, 소아과 강좌 쓰치바시 고타로, 산부인과 강좌 다카쿠스 사카에, 이비인후과 강좌 고바야시 시즈오, 신경정신과 강좌 구보 기요지 등이 교실의 주임이 되고, 치과는 이쿠다 신보(生田信保)가 과장으로 학생의 교육을 담당했다. 1928년 8월 정형외과 강좌가 신설되어 나카무라 료조가 부임했다. 부속의원 각 강좌의 주임이 결정되고 대학의 부속병원으로 진료가 시작되었다.

총독부의원에서 진료와 교육을 담당했던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임상교수나 직원들 중 대학의 교수로 발령되지 않은 나머지 직원들은 1928년 6월 1일부터 의학부 부속의원 의무촉탁으로 그해 11월 30일까지 당분간 근무하게 했다. 조선총독부의원에서 근무하던 조선인 중에서 1928년 3월 31일 발령받은 고영순[高永珣, 이토(伊藤) 내과 촉탁], 박창훈(朴昌薰, 외과 촉탁), 정민택(鄭民澤, 이토 내과 의관) 등은 의학부 강사에 촉탁되었고, 그 후에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교수 백인제(白麟濟, 외과), 조교수 임명재[任明宰, 이와이(岩井) 내과], 강사 신용균(申龍均, 이토 내과), 오원석(吳元錫, 피부과), 조수 유상규(劉相奎), 이예원(李禮源), 홍진구(洪震求) 등은 6월 1일부로 의학부 부속병원 의무촉탁으로 발령되었다. 이 중에서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강사로서 1919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오원석과 1923년 졸업하고 의원으로 근무하던 이병훈(李丙勳, 외과), 1924년 졸업한 김동익(金東益, 이와이 내과), 김명학[金明學, 오가와(小川) 외과], 박병래(朴秉來, 이토 내과), 이선근(李先根, 소아과), 허신(許信, 부인과) 등은 임상 각 과의 조수로 발령되어 부속의원에서 근무했다.

1928년 4월부터 시작된 3, 4학년의 임상과목은 [표 4-8-16]과 같다.

5) 의학부 제1기 졸업생의 활동

의학부 학생들은 4년간 교육과정을 마치고 학기시험과 학년시험에서 학과당

100점 만점에 각 학과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되었다. 또한 재학 기간은 8년을 넘지 못했다. 이 규정에 따라 조선인 학생 15명이 4년간의 수업을 마치고 제1기로 1930년 3월 25일 졸업을 했다. 졸업자 명단에는 김임빈(金林斌)과 어철(魚徹), 김종호(金鍾昊) 3명이 빠진 12명이었다. 이들은 졸업 후 4월 1일부로 의학부 부수로 발령되어 각 과로 입국했다. 각 과에 입국한 조선인 부수 중 1930년에 박천규(朴天圭, 10월 31일), 1931년에 함원영(咸元英, 4월 30일), 김능기(金能基, 8월 10일), 김용업(金龍業, 8월 31일)이 사직했다. 그리고 1931년에 박건원(朴乾源, 1월 31일), 이세규(李世珪, 4월 17일), 이의식(李義植, 7월 7일), 김봉응(金鳳應, 9월 30일), 명주완(明柱完, 1932년 1월 31일) 등이 조수로 임명되고, 윤봉헌(尹鳳憲)은 1933년 4월 30일부로 안과학 수업에 촉탁되었으며, 김성진(金晟鎭, 1934년 4월 30일), 이정복(李正馥, 1936년 5월 31일)은 늦게 조수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김성진은 1936년 1월 15일 경성제국대학에서 44번째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해 8월 31일부로 사직했으며, 이정복은 1938년 7월 31일 의학부의 강사 촉탁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이세규(李世珪, 1936년 10월 6일), 김능기(金能基, 1937년 4월 23일)도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건원(朴乾源)은 1934년 4월 10일 강원도 도립강릉의원의 외과과장으로 부임했다.

6) 전시체제로 전환

1934년 3월 31일 '경성제국대학 예과규정'(부령 제35호)의 개정으로 2년제 예과 과정이 3년제로 바뀌고, 1936년에는 의학부에 진학 학생이 없어 의학부 학생을 따로 모집했다. 1936년 3월 25일과 26일 2일간 도쿄와 경성에서 입학시험을 실시했는데 응모자 240명 중 도쿄에서는 42명이 응시해 25명이 합격했고, 경성에서는 18명이 응시해 7명이 합격하여 합격자 32명이 4월 20일 신입생 선서식을 했다. 이때 합격한 조선인은 윤창현(尹昌鉉), 김자중(金自重), 이개방(李開榜), 임덕향(林德鄕) 등이었다.

의학부에서는 학부 출신은 물론 전문학교 출신도 교수나 조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무보수의 부수로 추천했다. 1934년 6월 14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수보규정이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얻어 제정·시행되면서 의학

전문학교, 치과의학전문학교 및 약학전문학교 졸업자로서 학술연구 종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무보수로 부수보에 추천·임명하게 되었다. 1934년부터는 의학전문학교나 기타 전문학교 출신의 연구생은 모두 무보수의 부수보로 임명되는 한편 의학부 출신은 부수로 임명되었다. 이러한 제도에서 조선인 연구생은 부수보에서 부수, 겨우 조수에 임명되었다가 곧 해임되곤 했다. 그들이 경성제국대학을 운영하던 20년간 이런 식으로 조선인 연구생은 그들의 동화정책과는 정반대로 도외시되고 있었다. 다만 극히 적은 몇몇 조선 사람이 조수에서 겨우 강사 촉탁까지 진급된 예가 있고, 조교수로는 교토제국대학 의학부 출신인 윤일선(尹日善, 1928년 3월 30일 발령, 1929년 4월 18일 사임) 조교수와 오사카제국대학(大阪帝國大學) 의학부 출신인 고영순(高永珣, 1928년 12월 24일 발령, 동년 12월 26일 퇴임) 조교수가 있을 뿐이다. 이 두 사람 외에는 경성대학이 한국인에 의해 운영될 때까지 20년간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철저한 식민지 정책 아래 조선 사람의 성장을 억제하던 일본이 1940년 12월 8일 미국에 선전포고했다. 아시아로 전쟁이 확대되면서 인력 부족과 특수기술자 및 고급 인력의 필요성에 따라 1941년 10월 16일 '대학학부등의재학년한또는수학년한의임시단축에관한건'(칙령 제924호)이 공포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이 칙령에 따라 1942년 1월 7일 '대학학부 등의 재학년한 또는 수학년한의 소화 17년도 임시단축에 관한 건'(부령 제5호)을 공포하여 대학 예과와 의학부의

[표 4-8-17]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졸업생 수와 한국인 졸업생 수 단위: 명

졸업 횟수(연도)	졸업생 수(한국인 졸업생 수)	졸업 횟수(연도)	졸업생 수(한국인 졸업생 수)
제1회(1930)	55(12)	제10회(1939)	66(16)
제2회(1931)	71(14)	제11회(1940)	29(4)
제3회(1932)	64(21)	제12회(1941. 3)	69(20)
제4회(1933)	63(18)	제13회(1941. 9)	62(18)
제5회(1934)	70(29)	제14회(1942)	60(24)
제6회(1935)	65(15)	제15회(1943)	62(29)
제7회(1936)	67(12)	제16회(1944)	60(18)
제8회(1937)	76(22)	제17회(1945)	61(27)
제9회(1938)	70(12)	계	763(311)

출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편(2010).

[표 4-8-18]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의학 박사학위 수여자 수(1932~1945) 단위: 명

연 도	한국인	일본인
1932	1	5
1933	5	17
1934	6	12
1935	2	9
1936	2	16
1937	7	16
1938	5	16
1939	7	27
1940	11	33
1941	11	24
1942	9	40
1943	7	11
1944	5	6
1945년 광복 이전	3	4
소 계	81(26%)	236(74%)
광복 이후	70	71
총 계	151(33%)	307(67%)

출처: 『경성제국대학일람』(1933~1934); 大日本博士錄編輯部(1956).

졸업 예정자 및 재학생의 수업을 6개월 단축하여, 의학부 4년 수업을 3년 반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1941년 졸업은 3개월을 단축해 12월에 식을 거행하고 1942년부터는 6개월을 단축하여 9월에 졸업식을 했다.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서 배출된 학생 수는 16년간 17회에 걸쳐 1,067명인데 그중 한국인 학생이 314명으로 29%를 차지했고, 의학부의 학위규칙이 승인되고 13년간 학위를 수여한 447명 중 한국인은 140명이었다. 이 140명 중에는 1945년 패전으로 폐교되자 학위논문 심사를 미루고 있던 연구생 75명에게 수여한 학위 수가 포함되어, 1944년까지는 이 75명을 뺀 65명이 12년간 받은 의학박사 수이고 이는 의학부 학위 수여자의 22%에 해당한다.

7) 일본의 패전과 경성대학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하여 38선 이남에 미군이 진주하고 미국의 군정이 시작되자, 경성제국대학을 우선 동창회에서 임시 인수하여 일본인 책임자와 같이 학교를 지키다가 10월 8일에야 경성대학의 총장과 각 학부장이 결정되었다. 총장에는 알프레드 크로프츠(Alfred Crofts) 중위가 취임하고 의학부장에는 윤일선(尹日善) 박사, 법학부장에는 백낙준(白樂濬) 박사, 이공학부장에는 최규남(崔奎南) 박사, 예과부장에는 현상윤(玄相允) 선생 등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의학부의 교수 요원 전원이 일본인 교수였기 때문에 조선인 교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유능한 교수 자격자가 이북지역이나 일본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학을 미루다가 10월 22일에야 개학하게 되었다. 따라서 외지 의과대학생의 전학을 위해 10월 17일까지 입학 수속을 하기로 했다.

이 무렵 일본인 교수 중 책임자들은 출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1월 5일 군정장관 아치발드 아놀드(Archibold V. Arnold) 소장은 일본인 교수 22명, 조교수 26명을 파면하고 조선인 교수 16명을 임명했다. 이로써 경성제국대학의 간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셈이다. 조선인 교수들에 의한 의학 교육을 위해 11월 10일에는 윤일선, 최성재(崔成在), 최동(崔棟), 이용설(李容卨), 유의겸(俞意兼), 심호섭(沈浩燮), 고병간(高秉幹), 정구충(鄭求忠), 박병래(朴秉來), 정인보(鄭寅普) 등으로 의학교육평의회가 조직되어 의과대학의 설립, 각 의학교 교수의 통일, 졸업생 연구기구의 설립, 입학시험의 표준 설정 등을 제의하고 논의했다.

그동안 경성대학의 부장 중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학부장의 시비로 순조로운 학사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1월 15일 이공학부에 이태규(李泰圭) 박사가 부임하면서 대학본부 도서관 2층에 대학본부 사무실을 설치하고 과도기적 사무가 이루어졌다. 여기까지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종합대학에 편성되기 이전까지의 과정이다.

• 참고문헌

자료

『경성제국대학일람』, 『조선총독부관보』

단행본 및 논문

기창덕, 1995, 『한국근대의학교육사』, 아카데미아.

사토 고조(佐藤剛藏), 이충호 역, 1993, 『조선의육사』, 형설출판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동창회 편, 201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동창회 회원명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동창회.

이충호, 1998, 『일제통치기 한국 의사 교육사 연구』, 국학자료원.

일본 육군성, 1919, 「소요사건보고순보(騷擾事件報告旬報) 제2」,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1』.

황상익, 2013, 『근대 의료의 풍경』, 푸른역사.

황상익, 2015, 『한국 최초의 근대식 의사 교육기관 의학교와 그 사람들』, 여백.

大日本博士錄編輯部, 1956, 『學位大系博士錄』, 大日本博士錄編輯部.

제9장

치과대학 전사

근대적 서양 치과의학이 일본인에 의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876년 2월 병자수호조약 이후다. 일본인 노다 오지(野田應治)는 일본 다카야마치과학원(高山齒科學院, 현 東京齒科大學)을 졸업하고,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893년 6월 30일 인천 제물포에서 개업했다. 그는 다음해인 1894년 4월 서울로 옮겨 남대문 2가에서 개업을 했는데 정규 치과의학을 교육받고 우리나라에서 개원한 최초의 일본인 치과의사다.

서양 치과의사로서 최초로 한국에 와서 진료한 사람은 1897년 중국 상하이에 주재하면서 출장 온 로빈슨(Robinson)이었고, 그 후 1906년 1월 북감리교 선교치과의사로 부임한 데이비드 에드워드 한(David Edward Hahn, 1874~1923) 대위(大尉)가 한국에 처음 상주한 치과의사였다. 1915년 8월 30일에는 윌리엄 쉐플리(William J. Scheifley)가 한국에 도착한 후 조선총독부 치과의사 면허(제5호)를 받고 세브란스병원에 11월 1일 부임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미국 치의학이 정식으로 소개된 최초의 사례로 추정된다.

한일병합 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치과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치과의사법'과 '치과의사규칙'(조선총독부령 제101호, 1913. 11. 15. 공포)에 의해 치과의학교를 졸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국에 치과의학교도 없었고 조선총독부 치과의사시험제도도 없었기에,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일본 유학생들을 중

심으로 치과의사가 배출되었다. 그중 함석태(咸錫泰)는 1912년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日本齒科醫學專門學校)를 졸업하고, 2년 후 서울 삼각동 제창국 자리(현 조흥은행 본점 동쪽)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개업함으로써 정규 치과의학교육을 받은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였으며, 조선총독부 면허 제1호를 취득한 치과의사였다. 1921년 10월 조선총독부령 제27호에 의한 치과의사검정시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었다. 제1회 시험에 고상목(高相穆)이 합격하여 우리나라에서 검정시험을 통해 최초로 합격한 한국인 치과의사가 되었다.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칙령 제354호에 따라 조선총독부의 경무국 총감부에 위생과가 설치되어 위생사업을 관장했고, 1913년에는 '조선치과의사규칙' 및 '입치영업자규칙'이 발포되어 1914년 3월 1일부터 이 법령이 시행되었다. 1916년 6월 9일에는 '치과의사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치과의사의 자격이 확충되었다. 이어서 1921년 2월 14일에는 '조선치과의사시험규칙'(조선총독부령 제27호)이 공포되었다. 1925년 2월에는 사립 경성치과의학교가 조선총독부 지정학교로 인가되어 치과의사규칙 제1조에 의해 그 본과 졸업자에게는 치과의사 면허를 졸업과 동시에 교부했다. 각 규정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선총독부 제정 '치과의사규칙' 중 치과의사 자격에 관한 조항〉

제1조 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가지고 조선총독의 면허를 얻을 것을 요함.

1. 치과의사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치과의술개업시험에 합격한 자
2. 조선총독이 지정한 치과학교를 졸업한 자
3. 외국의 치과의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외국에서 치과의사의 면허를 얻은 자로서 치과의업을 영위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내무대신이 하부한 치과의사면허증 또는 치과의술개업면허를 가진 자는 본령에 의해 면허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

조선총독부령 제101호, 1913년 11월 15일(『조선총독부관보』, 1913. 11. 15)

〈일본 정부 제정 '치과의사법' 중 치과의사 자격에 관한 조항〉

제1조 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가지고 내무대신의 면허를 얻을 것을 요함.

1. 문부대신이 지정한 치과의학교를 졸업한 자
2. 치과의사 시험에 합격한 자
3. 외국 치과의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외국에서 치과의사의 면허를 얻은 자로서 명령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

일본법률 제48호, 1906년 5월 2일(『일본관보』, 1906. 5. 2)

〈'조선총독부 치과의사시험규칙' 중 응시 자격에 관한 조항〉

제1조 치과의사시험은 매년 경성에서 시행한다.

시험기일은 이를 고시한다.

제2조 시험을 나누어 제1부 시험 및 제2부 시험으로 한다.

제1부 시험은 다음의 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해부학(조직학 포함)
생리학
약리학
병리학(세균학 포함)
구강외과

이상 각 과목의 시험은 치과의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및 정도로 한다.

치과치료학(치과교정학 포함)
치과기공학

제2부 시험은 실지시험(實地試驗)으로 아래 과목에 대해 실시한다.

구강외과학
치과치술학
치과기공학

제3조 제1부 시험 및 제2부 시험은 나누어 수험할 수 있다.

제1부 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제2부 시험을 볼 수 없다.

제4조 치과의사시험은 수학연한 3년 이상의 치과학교를 졸업했던가 또는 5년 이

상 치과의술을 수업한 자가 아니면 수험할 수 없다.

(…)

조선총독부령 제27호, 1921년 2월 14일(『조선총독부관보』, 1921. 2. 14)

제1절 경성치과의학교

1) 설립 배경

1921년 7월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교장과 연희전문학교 교장직을 겸하고 있던 올리버 에비슨(Oliver R. Avison)이 종합대학을 설립하려는 계획으로 치과의학교 설립 신청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미국인이 치과의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일본인의 체면 문제도 있어 일단 보류 형식으로 청원을 지연시켰다. 그리고 일본인 치과의사로 조선총독부의원 치과과장이며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인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에게 경성치과의사강습소 설립 청원서를 제출하게 했다.

나기라 다쓰미는 1914년 3월 24일부터 조선총독부의원 치과과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경성에서 개업한 일본인 치과의사들 또한 치과의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치과의사강습소 설립을 나기라에게 권유했다. 나기라는 1921년 3월 진남포의 실업가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를 만나 치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리고 1921년 8월 20일 조선총독부는 나기라를 치과의사시험위원장에 임명하는 한편 그에게 경성치과의사강습소 설립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1921년 11월 22일 나기라는 경성치과의사강습소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경기도청과 의논했다. 이때 당국은 강습소가 아닌 치과의학교 설립 신청서로 변경하여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 결과 윤덕영(尹德榮), 민병석(閔丙奭)을 위시하여 안상호(安商浩), 민영찬(閔泳瓚), 원덕상(元悳常) 등 한국인과 우에바야시 케이지로(上林敬次郎) 이왕직차관을 고문으로 하고 도미타 기사쿠와 나기라 다쓰미

두 사람을 창립자로 하여 12월 26일 경성치과의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1922년 4월 1일부로 경성치과의학교가 인가되었고 같은 해 4월 15일 신입생을 모집하여 내외 귀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가졌다.

2) 학사 운영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설립된 사립 경성치과의학교는 초대 교장으로 조선총독부의원에 근무하던 치과과장 나기라 다쓰미가 취임했다. 교사는 조선총독부의원 건물의 일부, 조선총독부의원 부근의 일반 가옥과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사 일부를 사용했다. 1922년 4월 4일 제1회 신입생 입학 선발 시험을 치렀다. 남녀공학 2년제였고 입학 정원은 50명이었다. 입학 당시에는 주간 수업으로 모집되었으나 개강에 앞서 교사 문제 때문에 야간제로 발표되자 학생들의 동요가 있기도 했다. 입학 시험 과목은 물리, 화학, 미술 등이었다.

(1) 교과과정

교과과정은 수신(修身), 국어(일본어), 화학, 해부학, 조직학, 병리학, 생리학, 약리학, 세균학, 위생학, 내과총론, 외과총론, 치과해부학, 치과조직학, 치과병리학, 치과치료학, 치과충전학, 교정치과학, 치과계속가공학, 총의치학, 치과외과학, 치과기공학, 체조 등이었다. 수업은 하루 평균 3시간 내지 3시간 30분 정도 교육했다. 당시는 교습에 필요한 교과서가 미비했기 때문에 강의는 주로 노트에 필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초학 교수진은 경성의학전문학교의 기초과목 담당 교수들이 겸임했고, 치과 관계 학문은 일본 오사카치과의학전문학교와 도쿄의과전문학교를 졸업한 교수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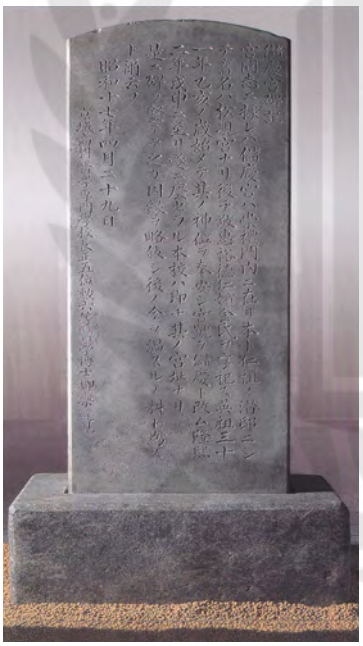
1923년 5월 8일, 2년제 야간 교육으로는 충분히 교육할 수 없어 학칙을 개정하여 3년제로 변경하고 입학 정원은 50명으로 유지했다. 3년제의 교과과정 중 1년 반은 주로 기초의학의 강의 및 실습을 했고, 나머지 1년 반은 임상실습을 주로 했다. 학생 임상실습은 1924년 4월 1일부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의원 외래 진료실 일부를 사용했으나 진료 시설은 치과 치료용 의자 2대뿐이었다. 환자 진료는 주로 보존치료와 치아 발거였고, 보철은 거의 하지 못했으며 임상 전 단계

실습은 금관 및 의치 제작 정도였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매우 빈약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수준이었다.

1933년 8회까지 배출한 졸업생 181명 중 한국인 학생은 93명이었다. 경성치과의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는 다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1928년 1월 25일 4년제로 승격)에서 1년을 더 수학하여 치의학사 학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치과의사의 위상은 다른 직종에 비해 대단한 것이었으나 그럼에도 기술 천시 풍조는 여전했다.

(2) 교사

1924년 10월 15일 경성치과의학교 부속병원을 일본인이 경영하던 일류 음식점 화월식당(花月食堂) 2층에 개설했다(현 을지로 입구 한국전력공사 건물 옆). 진료 시설은 치과 치료용 의자 15~16대와 독일 지멘스 제품 치과용 렌트겐 1대가 설치되었다. 1926년 5월 26일에는 치료용 철제의자를 최신 승강식(昇降式)으로 대치했다. 1925년 2월 28일 조선총독부 지정학교로 인가되어(치과의사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 본교 졸업생은 무시험으로 한국과 만주에서 개업할 수 있게 되었다. 제1회 졸업생은 1924년에 졸업할 예정이었으나 3년제가 되면서 1925년에 첫 졸업생 28명이 배출되었다.



출처: 치의학박물관 소장.

[그림 4-9-1] 1942년 나기라 다쓰미가 세운 저경궁 비기(碑記). 저경궁이 경성치과의학교에 양여된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

1927년 3월 조선총독부로부터 관유지(官有地)인 저경궁 궁지(儲慶宮宮趾) 662평을 학교 부지로 무상 양여받았다. 그리고 1927년 6월 6일 저경궁 궁지에 교사 및 부속병원을 착공하고(시내 중구 소공동 111, 대지 662평, 철골 및 철근 건물 1,600평, 지상 4층, 지하 1층, 건축비 및 내부 시설비 45만 원) 1927년 11월 17일 상량식을 가졌으며, 1928년 9월 2일에 4층, 1,600평의 교사가 준공되어 부속병원을 이전하고 같은 해 9월 29일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했다. 이로써 완전한 치의학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 1928년 10월 2일 재단법인 경성치과의학교로 인가되고, 이어서 1929년 1월 25일에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3) 교수진

경성치과의학교의 초창기 교수진은 나기라 다쓰미(치과병리학), 이쿠다 신포(生田信保, 치과생리학), 미시나 게이키치(三品敬吉), 야오 타로(矢尾太郎, 병리약리학), 오카다 다다시(岡田正, 기공학), 오카다 시로(岡田四郎, 보존학), 히라마 겐지(平馬健兒), 다카지마 요시토(高島義人, 보철학), 니시야마 유키오(西山幸男, 구강외과학), 후쿠이 마사루(福井勝), 모리 데쓰로(森哲郎, 보존학 및 교정학), 히로세 분시쓰(廣瀨文質, 치과해부학 및 기공학), 박창훈(朴昌薰, 해부학), 우에다 쓰네키치(上田常吉, 해부학), 무토 다다쓰쿠(武藤忠次, 병리학), 도쿠미쓰 요시후쿠(德光美福, 병리총론), 우에무라 슌지(植村俊二, 내과총론), 오가와 아키로(小川秋郎, 외과총론), 김현주(金顯周, 조직학), 구지 나오타로(久慈直太郎, 생리학), 나리타 오스게(成田夫介, 세균 및 위생학), 후로나카 후지오(風呂中不二夫, 내과), 가타후치 히데오(片淵秀雄) 등이다. 조선총독부 정책에 따라 당시 일본인 교수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나, 한국인의 경우는 일본인 봉급의 절반 수준이었다. 일본인 교수에게는 식민지 근무수당이 있어 본토의 교수들보다도 대우가 좋았다.

3) 학술 활동

당시에는 경성치과의사회(京城齒科醫師會, 1912. 1. 16. 설립)와 조선치과의사회(朝鮮齒科醫師會, 1921. 10. 2. 설립)가 있었는데, 1925년에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 졸업생들의 제안으로 한국인만으로 조직된 한성치과의사회(漢城齒科醫師會)가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회원은 7명으로 회장은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인 함석태가 추대되고, 총무에는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 졸업생인 안종서(安鍾書)를 선임했다. 한성치과의사회는 회원이 증가하고 회의 체계가 확립되면서 회의 목적이 친목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 구강 위생 계몽, 회원 복리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조선치과의학회는 1919년 조직되어 초대 회장에 나기라 다쓰미가 선임되었고, 1920년부터 매년 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치과의학 분야 학술모임의 시초가 된다. 매년 학술대회에는 일본에 있는 저명한 교수들을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했고, 임상보고가 대부분이었다.

4) 졸업생

[표 4-9-1] 경성치과의학교 졸업생(1922. 4. 1~1933) 단위: 명

졸업 연도	졸업 횟수	인원	
		한국인	일본인
1925	제1회	23	4
1926	제2회	18	18
1927	제3회	16	8
1928	제4회	17	22
1929	제5회	5	8
1930	제6회	10	3
1931	제7회	10	8
1933	제8회	2	2
계		101	73
총계		174	

출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1991).

제2절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 설립 배경

경성치과의학교는 1928년 9월 새로운 교사를 신축했다. 그리고 1928년 10월 2일 학교재단법인으로 인가(이사 3명, 감사 2명)를 받았다. 이사장에는 진남포의 실업가 도미타 기사쿠가 취임했다. 이어서 전문학교 인가를 신청하여, 1929년 1월 25일 조선총독부로부터 4년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로 인가를 받아 같은 해 4월 15일 개교했다. 경성치과의학교를 개교한 지 꼭 7년 만에 전문학교로 승격한 것이다.

전문학교로 인가받을 당시의 교수진은 나기라 다쓰미, 오카다 다다시(기공학), 야오 타로(약리병리학), 모리 데쓰로(보존학, 교정학), 다카지마 요시토(보철학), 오카

다 시로(보존학), 니시야마 유키오(구강외과학, 병리조직학) 등이었다. 그런데 본교가 일본 문부성의 지정 학교로 될 때 인가 조건이 교수진 강화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히로타 세이이치(弘田精一, 보철학), 가키미 요죠(坦見庸三, 구강외과학), 호리 다케시(堀武, 보존학) 등 3명의 교수가 새로 부임했다. 이는 나기라 다쓰미 교장이 대단한 정치수완과 사교력을 겸비한 인사로서 경성치과의학교 창립 때부터 8·15 광복 당시까지 재임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1929년 4월 10일 학칙을 변경하여 당시의 전문학교와 제국대학 학생들의 상징인 사각모를 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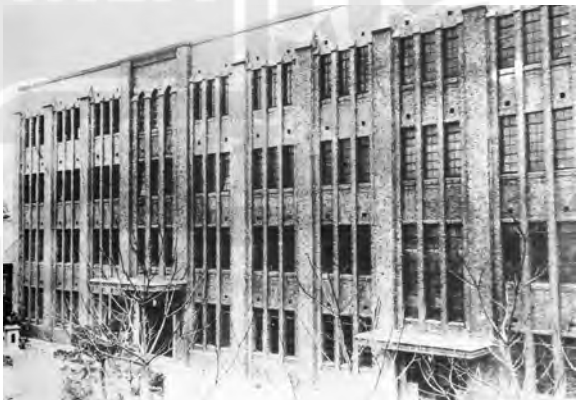
2) 교사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신축 교사(낙성식: 1928. 9. 29)는 지상 4층과 지하 1층으로 완공되었다. 1층에는 교장실, 교무실, 서무실, 회의실, 특진실, 기공실습실, 재료상실, 2층은 부속병원으로서 예진실, 보존부, 외과부, 보철부, 수술실, 약제실, 임상강의실, 각 과 의국, 3층은 강당, 계단교실, 각 과 연구실, 도서실, 4층에는 강의실, 기공실습실, 그리고 각 과 연구실, 지하 1층은 보일러실이 있었다.



출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1991).

[그림 4-9-2]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신축 교사 및 부속병원(1928. 9. 29)



출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1991).

[그림 4-9-3] 일부만 4층이었던 교사를 전부 4층으로 증축 후의 교사(1933. 7)

3) 학사 운영

1930년 3월 25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한반도에 처음으로 치의학사가 탄생했다. 제1회 졸업생으로 한국인 17명, 일본인 22명 등 모두 39명이었으며 당시로는 상당이 많은 수다. 1930년 8월 18일 당시 전문학교로는 이례적으로 일본 육군의 현역 배석장교가 배치되었다. 1931년 3월 13일에는 일본 문부성 고지 제64호, 치과의사법 제1조 제1호에 의거하여 지정학교로 인가됨으로써 본교 졸업생은 무시험으로 일본 본토와 만주 어디에서나 개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위상이 당시 전문고등교육기관으로서 손색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1933년 7월 1일 교사 일부만 4층이던 것을 전체 4층으로 증축했고, 1934년 7월 10일에는 학칙을 개정하여 여학생의 입학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 점은 일본 문부성의 지정학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었다. 일본 내에는 남녀공학인 전문학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의 치의학 교육은 독일식 치과의학이 첨가된 일본식 교육이었다. 한국인 학생은 일본인 학생 수의 3분의 1 내지는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8·15 광복 직전에는 그 비율이 다소 완화되었다.

1943년 11월 1일에는 본교사 서쪽에 창고용 2층 건물을 신축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면서 달라진 것은 일본 후생성에서 실시하는 소위 국가시험이었다. 이 시험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실시했다. 1부 시험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혹은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때 기초 4과목(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을 치렀는데, 학년말의 각 과목 시험 성적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인정했다. 2부 시험은 4학년 졸업 전에 3과목(보철학, 구강외과학, 보존학)에 대한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대신했다. 이렇게 국가시험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학교에서 담당교수가 책임지고 교육하며, 그 성적은 국가에서 그대로 인정해 면허를 주는 제도였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한국 학생 중에는 모교 또는 종합병원에 남아 수련·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광복 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초대 학장을 역임한 박명진(朴明鎭) 박사는 모교에서 수련하며 연구했고, 이유경(李有慶), 정보라(鄭保羅) 등은 세브란스병원 치과에서 근무했다. 또한 정보라(경치전 1932년 졸업)는 미국 노스웨스턴 치과대학에서, 이유경(경치전 1930년 졸업)은 미국 피츠버그

[표 4-9-2] 기초과목 주당 시간표 단위: 시수

학과목	과정 \ 학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수신		1	1	1	1	1	1	1	1
독일어		10	10	8	8	4	4	-	-
물리	이론 및 실험	2	2	-	-	-	-	-	-
화학	이론 및 실험	3	2	-	-	-	-	-	-
	실험	-	3	-	-	-	-	-	-
교련		2	2	2	2	2	2	2	2
해부학	계통해부학이론	5	4	-	-	-	-	-	-
	동 실습	-	3	3	-	-	-	-	-
	조직학이론	2	2	-	-	-	-	-	-
	동 실습	-	-	2	-	-	-	-	-
	치과해부학이론	2	1	-	-	-	-	-	-
	동 실습	-	2	-	-	-	-	-	-
	치과조직학이론	2	2	-	-	-	-	-	-
	동 실습	-	-	1	-	-	-	-	-
	태생학	-	2	-	-	-	-	-	-
생리학	이론 및 실험	4	4	-	-	-	-	-	-
의화학	이론	-	2	2	-	-	-	-	-
	실험	-	-	2	-	-	-	-	-
세균학	이론	-	-	2	2	-	-	-	-
	실험	-	-	-	-	2	-	-	-
위생학	위생학 · 구강위생학	-	-	-	-	1	1	1	1
병리학	병리학이론	-	-	2	2	2	-	-	-
	동 실습	-	-	-	-	2	-	-	-
	치과병리학	-	-	2	2		-	-	-
	동 실습	-	-		2	2	-	-	-
약물학	약물학이론	-	-	2	2	-	-	-	-
	치과약치학	-	-	-	-	1	1	-	-
	조제 실습	-	-	-	-	-	-	1	1
재료학	재료야금학	2	2	1	1	-	-	-	-

출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1991).

[표 4-9-3] 임상과목 주당 시간표 단위: 시수

학과목	학년 / 과정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제4학년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전학기	후학기
충전학	치료학이론	-	-	-	2	2	-	-	-
	동 임상실습	-	-	-	-	2	2	-	-
	충전학이론	-	-	-	2	2	-	-	-
	동 실습	-	-	-	-	3	3	-	-
	도재학이론	-	-	-	-	1	1	-	-
	동 실습	-	-	-	-	-	2	-	-
외과학	외과학총론	-	-	2	2	-	-	-	-
	구강외과학	-	-	-	2	2	-	-	-
	임상강의	-	-	-	-	2	2	-	-
내과학	진단학이론	-	-	-	-	2	2	-	-
	동 실습	-	-	-	-	-	-	1	1
X선학	이론 및 실습	-	-	-	-	1	1	-	-
보철학	유상의치학	-	-	3	3	-	-	-	-
	동 실습	-	2	6	6	4	4	-	-
	계속가공학	-	-	2	2	-	-	-	-
	동 실습	-	-	-	4	4	4	-	-
	임상강의	-	-	-	-	-	2	2	-
교정학	이론 및 강의	-	-	-	-	2	2	-	-
	임상실습	-	-	-	-	-	1	-	-
법의학		-	-	-	-	-	-	1	1
임상실습		-	-	-	-	-	8	36	36
합계		35	46	43	45	44	43	45	43

출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1991).

치과대학에서 각각 수학하기도 했다.

부속병원에는 44대의 치료대와 독일 지멘스제(製) 방사선 촬영기가 있었고, 보철부, 외과부(방사선과 포함), 보존부(치주과, 소아치과 포함), 교정부 등 4부를 두어 치료했다. 학생들은 1학년 기초과목 실습을 비롯해 기공 실습 및 환자 진료에 필요한 기구들을 직접 구입하여 경제적 부담은 되었지만 자기 기구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되어 기술 숙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4학년 임상실습은 매우 엄격했고 현재의 원내생 제도와 거의 유사한 케이스제

도를 운영했다. 1년 동안 취득해야 할 케이스는, 외과부에서는 발치 30개, 절개 5개, 수술 1명, 방사선 촬영 40개, 보존부에서는 충전 10개, 근관충전 10개, 아말감충전 10개, 금박충전 1개, 발수 10개, 치석 제거 20개, 치주 수술 3개, 보철부에서는 금관 및 계속치 5개, 가교치 3개, 의치 3개, 교정부에서는 환자 1례이다. 당시에는 환자의 수나 경제력이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소했기 때문에 원내생이 이러한 실습을 모두 마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명실공히 치과전문 교육기관에 걸맞는 충실한 교수진과 좋은 시설을 갖추게 된다. 교사도 4층을 증축해서 기공실습실과 계단식으로 된 조직·병리실습실을 마련했다. 1930년대 초의 교수진은 모두 76명이었으며 나기라 다쓰미 교장, 호리 다케시 부속병원장, 외과부 가키미 요죠 교수 외 5명, 보철부에는 히로타 세이치 교수 외 10명, 보존부에는 호리 다케시 교수 외 14명, 교정부 모리 데쓰로 교수 외 27명, 특진 담당 나기라 다쓰미 교장 외 5명, 약국 담당 1명 등이었다. 기초의학에는 병리·약리 담당 야오 타로 교수 외 2명, 병리·조직 담당 니시야마 유키오 교수 외 2명, 해부학 1명, 치과재료학 1명, 의화학 1명, 군사교관 4명이었고, 그 외에 시간강사가 34명이었다. 시간강사 중에는 외과총론 박창훈 교수, 병리학 도쿠미츠 요시후쿠 교수, 생리학 오쓰카 도키치(大塚藤吉) 교수, 해부학 쓰자키 다카미치(津崎孝道) 교수, 세균학 마쓰모토 가즈오(松本一夫) 교수, 약리학 스기하라 도쿠유키(杉原德行) 교수, 의화학 히로카와 코사부로(廣川幸三郎) 교수 등 각 교실의 주임교수급이 포함되어 있었다.

4) 학술 활동

1930년대에는 치과의학회 활동도 매우 활발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중심으로 한 경성치과의학회는 매년 가을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대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경성제국대학 치과학교실 이쿠다 신포 교수를 중심으로 한 조선치과의학회는 연 1회 학술대회를 가졌다. 두 학회는 항상 경쟁 관계였고 학회지도 각각 발간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중심으로 한 경성치과의학회가 회원도 많고 학회지 발간도 활발했다. 학술대회 때에는 일본에서 교수들을 초청하

[표 4-9-4]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교직원의 변동 상황

학과목	직위	교수명(취임~퇴임)
원장	교수	후쿠이 마사루(1924~1926), 노자와 히토시(野澤鈞, 1926~1930)
수신(修身)	강사	후쿠토미 이치로(福富一朗, 1922~1928)
독일어	-	마에다 세이지(前田正次)
물리	-	-
화학	강사	히나미 기샤쿠(日南義借, 1922~1932), 야마카미 이치카(山上一香)
기공학	교수	사카가미 기요시(坂上潔, 1922~1932), 오카다 다다시(1923*)
조직학	강사	우에히라 마사오(植平正男, 1922~1932)
해부학	교수	구와야마 구니마츠(桑山邦松)
	강사	사카모토 도키치(坂本藤吉, 1924), 쓰자키 다카미치(1930*)
생리학	강사	고영순(高永珣, 1923~1929), 오쓰카 도키치(1930*), 이갑수(李甲洙*)
의화학	강사	이나다 스스무(稻田進, 1923~1929), 사토 코죠(佐藤剛藏, 1924~1926), 히로카와 코사부로(1927*)
세균학	강사	오가와 마사이치(細川正一*), 진주현(晉宙鉉*)
위생학		미즈시마 하루오(水島治夫, 1924~1940)
병리학	교수	니시야마 유키오(1924*)
	강사	김현주(1922~1924), 도쿠미쓰 요시후쿠(1922*), 아카누마 슌시로(赤沼順四朗*)
약물학	교수	히라오카 다쓰지(平岡辰二, 1922~1924), 야오 타로(1923~1944)
	강사	오자와 마사루(大澤勝, 1924~1926), 나가오 스스무(中尾進, 1925~1932), 스기하라 도쿠유키(1932*)
	조교수	박명진(1937~1941)
	조수	박명진(1930~1937)
치료학	강사	미시나 게이키치(三品敬吉, 1922~1932)
충전학	강사	히로세 분시츠(1922~1927), 와타나베 마사오(渡邊政雄, 1923~1928)
보존학	교수	오카다 시로(1924~1931), 모리 데쓰로(1924*), 호리 다케시(1929*)
	조교수	히로에 다쓰오(廣江達雄*)
	조수	김인환(金仁煥, 1934), 안정호(安正浩, 1934~1940)
구강외과	교수	니시야마 유키오(1924), 가키미 요죠(1929*)
	조교수	마키야마 마사후미(牧山正文*), 이춘근(李春根, 1945*)
	조수	홍종환(洪鐘桓, 1935*), 이춘근(1941~1945)
내과학	강사	시다 노부오(志田信男, 1924~1927), 이와이 세이시로(岩井誠四郎), 후로나카 후지오
외과총	강사	후지모토 신이치(藤本甚一, 1924)
외과학	강사	오가와 시게루(小川蕃, 1922~1924), 모리하라 신이치(桐原眞一, 1924~1925), 박창훈(1926*)
보철학	교수	다카지마 요시토(1924~1931), 히로타 세이이치(1929*)
	조교수	이나카와 에이이치(稻川英一*) 안정호(1940*)
	조수	윤기병(尹麒炳, 1936), 유의광(劉義鑛, 1936), 나종영(羅鐘榮, 1937)
교정학	교수	무라사와 아키라(村澤晃, 1922~1926), 모리 데쓰로(1924*)
	조교수	요코다 세이조(橫田成三*)
	조수	정남진(丁南鎭, 1934~1935)

주: 노구치 사부로(野口三郎, 1925~1937)와 헤이마 겐지(平馬健兒, 1924~1925)의 소속은 불명.
퇴임 일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취임 일자만 표기했으며, 취임 및 퇴임 일자를 모두 알기 어려운 경우 따로 표시하지 않았음.
* 1940년경까지 근무한 직원

출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1991).

여 특강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는 조선 내의 공직자나 개업의는 물론이고 일본, 만주에서 온 참석자도 있었다. 특히 치과 재료 및 기자재 전시도 있어서 지방 회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5) 학생 생활

1928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은 본과(本科)와 별과(別科)로 나뉘어 졸업했다. 본과는 중학교 5년, 별과는 중학교 3년을 각각 마치고 입학한 학생이다. 1928년에는 본과, 별과를 합쳐 많은 수의 학생이 졸업했으며, 1935년부터는 별과가 없어지고 본과만이 존속하게 되었다. 1930년대 중반의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일본 본토의 7, 8개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시설과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에 거주하던 일본 학생들도 많이 지원했고 한국 학생들도 지원자가 점차 늘어나 경쟁률이 높아졌다. 또한, 소수의 타이완 학생들도 입학해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한·중·일 세 민족 학생들이 어울려 강의를 듣는 학교가 되었다.

1937년 7월 일본은 중일전쟁(中日戰爭)을 일으켜 본격적으로 대륙을 침략했다. 그 결과 조선 내에서도 일본의 강압은 점차 심해졌다. 그해 11월 1일을 기해 조선 내의 전문학교 전 학생들에게도 단발령이 내려졌다. 본래 전문학교 학생들은 머리를 기르고 대학생을 상징하는 사각모를 썼는데 전쟁 체제로 들어간 표시로 단발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 조치는 학생들 간에 큰 물의를 일으켰지만 모두 머리를 깎지 않을 수 없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기념사진을 찍고 나서 깎기도 했다. 이 단발령은 일본 내에서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오직 조선인에게만 강요되었다. 이 외에도 일본은 전쟁 준비를 위해 전문학교 학생들에게 교련훈련을 강요했고 봄, 가을 야영훈련에서는 실탄 사격까지 시켰다. 교내에서는 우리나라 말은 일체 금지되었고 일본어만 사용할 수 있었다.

1941년 12일 8일 일본군은 진주만(珍珠灣)을 기습 공격하는 동시에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각국을 침공했다. 전쟁이 날로 심해지고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자 조선 청년들에게도 지원병제도가 실시되었다. 병력 부족이 점차 심해지자 다음해 봄에 졸업 예정이던 4학년 학생들을 12월 말 급작스럽게 졸업시켜

군 입대를 서둘렀다. 1941년에는 3월에 한 반이, 또 12월에도 한 반이 졸업하여 한 해에 두 학년이 졸업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는 4년제 치과 교육과정을 3년 반으로 단축시켰다.

태평양전쟁[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이 일어나자 일본인만으로는 병력을 충당하기 어려워 1942년부터는 내선일체라는 미명 아래 한국 청년들에게도 징병제가 실시되었다. 단지, 의(醫), 치(齒), 약(藥), 공[工: 광산과(鑛産科)] 학생에게 징병소집이 면제되자 의과·치과전문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치과를 지원했는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1회 졸업생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보통 100명 모집에 400~500명이 지원했으나 1943년에는 1,000여 명이 지원했다. 당시 소공동 교사로는 시험장이 좁아 남대문소학교(南大門小學校)를 빌려서 시험을 치렀고, 그 다음해인 1944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져 무려 2,7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 시험장으로는 소공동 교사(小公洞 校舍), 남대문소학교 및 용산중학교(龍山中學校)를 사용했고, 시험 감독도 전 직원 40여 명으로는 부족하여 소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때 입학생 180명 중 조선인 학생은 40명으로, 그 이전에 비하면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1944년부터 전문학교 학생들의 징집 유보 혜택이 폐지되었다. 때문에 1944년 가을부터 학업을 중단하고 징병을 피하기 위해서 숨는 학생들도 있었으나 대개의 재학생들은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군에는 치과 군의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반 병과의 신병으로 입대해야만 했으며, 위생병이 되면 행운으로 여겼다.

1944년 수업은 오전 8시에 시작하여 오후 7시까지 진행했고 점심시간을 빼고 매일 10시간씩을 두 시간 연속 강의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쉬는 시간이 있었다. 1944년 1학년의 수업은 교양과정으로 독일어, 철학, 물리화학이 있었고, 기초의학으로는 해부학, 생리학, 의화학, 치과해부학, 치아형태학 등이 주로 강의되었다. 독일어는 경성제국대학 출신의 교무과장을 맡고 있던 마에다 세이지(前田正次) 교수, 철학은 경성제국대학 예과의 아카마쓰 지조(赤松智城) 교수, 해부학은 쓰자키 다카미치(경성제국대학 교수), 생리학은 오쓰카 도키치(경성제국대학 교수), 의화학은 히로카와 코사부로(경성제국대학 교수) 등의 교수들로부터 착실한 강의를 받았다. 본교의 교수로는 물리화학은 오리타 다케오(折田武雄) 교수, 치과

해부학은 구와야마 구니마츠 교수[만주의대(滿洲醫大) 출신], 조직학은 도쿠마루 사다키(德丸定樹) 교수가 담당했다. 교련은 아라키(荒木) 대좌와 오키시오(置鹽) 중위 등이 교관으로 용산연병장 또는 한강 둑 등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1945년에는 일본 학생은 물론 한인 학생 중에서도 군에 소집되는 학생들이 생겨 결석자가 늘고 있었다. 이 현상은 심각한 전황에 따른 인력의 필요로 1945년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가 군 입영 연기 대상 학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1945년 당시의 2학년 수업은 병리학 도쿠미쓰 요시후쿠 경성제국대학 교수를 위시하여 약리학, 내과학, 외과학, 법의학을 전공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전임 교수들의 임상치과학 강의가 있었다. 특히 일본군의 필요에 따라 외과학에 중점을 두었다.

당시에는 교직원들도 소위 국민복이라는 복장을 하고 배석장교의 지휘에 따라 1주일에 한두 차례는 일찍 출근하여 거리를 뛰어야만 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가리지 않고 소집 대상이 되어 많은 학생이 입대하면서 학생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게 늘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소집도 잦아 강의나 실습도 휴강되는 일이 많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라는 중대 발표가 나온 직후 일본인들 대부분이 12월까지 귀국을 서둘렀다. 학교에서 해방을 맞이한 한국인 직원은 보철부에 안정호(安正浩), 심태석(沈泰錫), 선덕영(宣德英), 권오범(權五範), 보존부에 김인환(金仁煥), 엄흥섭(嚴興燮), 김철용(金喆庸), 외과부에 이춘근(李春根), 송재향(宋在珦), 양승범(梁承範), 병리학에 김동순(金東順) 등이 있었고,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 치과에는 조호연(趙昊衍), 반태수(潘泰脩),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치과에 정용국(鄭佣國) 등이었다.

8·15 광복 당시 한국 치과의학계는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조선총독부 통치 아래 조선인의 사회 진출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차별대우를 받으면서도 일본인 학생보다 우수한 조선인 학생이 치과를 많이 지원했고, 또 당시까지 일본의 치과의학 수준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당시로서는 교과과정이 대단히 충실했으며 독일이나 미국의 교과과정과 비교해도 거의 손색이 없었다. 다만 한국 치과계에 미흡한 부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초의학 부문에서 학문적인 기반이 빈약했던 점뿐이다. 그러나 조선인으

[표 4-9-5] 학교 등 연구기관에 진출한 한국인 졸업생

졸업 기수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제국대학 치과
치의교 1		안종서(安鍾書)		
4		이유경(李有慶)		
5		김철용(金喆庸)		
6			이창우(李昌鍝)	
경치전 1	조명호(趙明鎬) 박명진(朴明鎭)	이동환(李東煥) 이유경(李有慶)	이정환(李定煥)	은중기(殷仲基)
2	문평국(文平國)			
3	이동환(李東煥)	정보라(鄭保羅)	정용국(鄭用國)	
4		박용덕(朴鎔德) 김종환(金鍾煥)	안두호(安斗濩)	조호연(趙昊衍) 손홍태(孫洪兌)
5	안정호(安正浩) 김인환(金仁煥) 정남진(丁南鎭)			
6	이기선(李淇銑) 홍종환(洪鐘桓)	이양숙(李良淑) 유기형(劉基亨) 윤두형(尹斗亨)	고의룡(高義龍)	
7	윤기병(尹麒炳)		허목(許沐) 김찬규(金讚圭)	
8	라종영(羅鍾榮)	이종구(李鍾九) 정동모(鄭棟謨) 장원인(張元仁)	정해영(鄭海永) 조의석(趙毅錫)	김종구(金鍾九)
9			한택동(韓宅東)	이형주(李迥珠) 반태수(潘泰收) 이성민(李聖民)
10		최종선(崔宗善)	조래혁(趙來爀) 오현민(吳鉉敏)	이세근(李世根)
11	김영룡(金永龍)	노정진(盧貞鎭) 김만수(金萬壽)	김윤숙(金允淑) 김영룡(金永龍)	
12	이춘근(李春根)	이영옥(李永玉) 김정규(金貞圭)		문동선(文東先)
14	송재향(宋在珦)			김영창(金永昌)
15		이동섭(李東燮)		
16	김동순(金東順) 양승범(梁承範) 선덕영(宣德榮) 심태석(沈泰錫)	노세윤(盧世允) 박응기(朴應基) 김철용(金喆庸)		

주: '치의교'는 경성치과의학교, '경치전'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약칭임.

출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1991).

로서는 학교에 남아 연구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당시까지는 한정되어 있었다. 식민지 정책으로 조선인에 대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경성치과대학 전문학교 17회(1945년 졸업)까지 졸업생 수는 총 1,423명이었고, 그중 한국인 학생은 450명이었다.

6) 한국인 치과의사 의학박사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치과의학계에서는 일본인들로부터 소외된 상태로 극히 소수의 조선인 연구생이 천대와 무시 속에서 나름의 연구를 하고 있었다. 특히 유일한 연구기관인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는 대부분 일본인 위주였으며 한국인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1934년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경성제국대학부 보수규정 중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나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해당되는 규정에 따르면, 무보수로 지정된 연한도 없이 교수 또는 조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학술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실의 사역원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나마 치과는 임상과인데다 조선인을 받아주지 않아 조선인 학생이 연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다. 반면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는 임상 연구는 충실하나 학술 연구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경성의학전문학교나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일본인만을 상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인이 연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조선인 치과의사로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다음과 같다.

배진극(裵珍極): 1922년도 조선총독부 치과의사시험 제2회에 합격하고 해주도립병원 치과과장 의관으로 재직 중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병리학교실에서 도쿠미츠 요시후쿠 교수의 지도를 받아 「구강점막에 미치는 광역학적 작용의 연구」 논문을 일본 도호쿠(東北)제국대학 의학부에 제출하여 1940년 12월 교수회에서 통과되고, 1941년 1월 23일 자로 일본 문부성 박사록에 등록되어 우리나라 치과의사로서 최초의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명진(朴明鎭): 중앙고등보통학교 출신으로 1928년 경성치과의학교 제4회로 졸

[표 4-9-6]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졸업생 수(1929. 1. 25~1945. 10. 31) 단위: 명

졸업 연도	졸업 횟수	인 원	
		한국인	일본인
1930	제1회	17	22
1931	제2회	2	29
1932	제3회	14	38
1933	제4회	15	55
1934	제5회	20	48
1935	제6회	16	66
1936	제7회	15	89
1937	제8회	17	59
1938	제9회	20	55
1939	제10회	17	52
1940	제11회	38	50
1941	제12회	49	47
1941*	제13회	40	34
1942	제14회	54	37
1943	제15회	59	27
1934	제16회	24	38
1945	제17회	14	50
계		431	796
총 계		1,227	

주: *전시 동원령에 의해 2회 졸업
출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1991).

업했다. 이후 학교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된 후 다시 4학년에 들어가 1939년 제1회로 졸업하고 모교의 조수로 남아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1935년부터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약리학 교수 스기하라 도쿠유키(杉原德行)의 지도를 받아 약리학을 전공하고 「창연제 및 연제투여가토의 구강 내 기관에 있어서의 창연 및 연 침착에 관한 분광경적 검색」이란 논문을 교토(京都)제국대학에 제출하여 1943년 2월 9일 일본 문부성 박사록에 등록되었다.

조호연(趙昊衍):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제4회(1933년) 졸업생으로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 치과에 근무하며 「삼차신경자격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로 1945년 10월 2일 문부성 박사록에 등록되었다.

반태수(潘泰收):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제9회(1938년)로 졸업하고 그해 5월 5일부로 경성제국대학 부수보에 임명되어 부속병원 치과에서 활동하며 연구한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한 치아 및 그 지지조직의 병리조직학적 연구 및 소위 구루병양치아 변화에 대하여」란 논문이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교수회에서 통과되어 1945년 11월 8일 일본 문부성 박사록에 등록되었다.

제3절 경성치과대학

1) 설립 배경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던 날 한국인 교직원과 학생들은 모두 기쁨에 들떴으나 일본인 교수들과 학생들은 몇몇씩 모여 있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8월 15일 이후 일본인 교수들은 매일 학교에 나와 각자가 얻은 정보와 상황을 보고했고, 나기라 다쓰미 교장도 매일 출근했으나 병원은 거의 휴진 상태였다. 응급환자 및 수술환자와 그 후처치로 구강외과만이 약간 활동하는 정도로 2개월여를 보냈다. 그동안 일본인 교수들은 거의 귀국하고 11월 중순경 나기라 다쓰미 교장과 구강외과의 가키미 요죠 교수도 귀국했다.

1945년 9월 중순 일본인들이 한국인에게 학교를 인계하도록 미군정청에서 미군 치과 군의관 일행이 당국의 위촉을 받고 학교를 방문했다. 미군 치과 군의관과 나기라 다쓰미 교장이 만날 때는 미국 텍사스(Texas) 치과대학 출신인 일본인 하라다 고이치(原田幸一) 교수가 통역하고, 우리 측에서는 박명진, 이유경(李有慶), 정보라(鄭保羅), 이춘근(李春根) 등이 참석했다.

미군정 아래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인수문제를 맡았던 미군 치과 군의관은 로버츠 슐츠(Roberts Schultz) 대령이었다. 정보라는 미국에서 이미 수학한 바 있

어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인수과정에서 주도적 활동을 했다. 미군정청에서 인수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한국인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동창회에 인계되었다. 동창회는 이때 문기옥(文箕玉), 박명진, 이유경, 정보라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에는 문기옥, 교장에 박명진이 취임하여 그해 11월 1일 경성치과대학(京城齒科大學)을 개교했으며, 이와 더불어 부속병원의 개원식도 가졌다. 한국인만으로 운영하는 한국 정규 치과교육의 역사적 출발이었다.

한편, 당시에 학교명으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창덕의 『증보 한국치과의학사(增補 韓國齒科醫學史)』(1995)에 따르면 "당시 학교명은 경성(京城)과 한성(漢城)으로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로 결정하고 교수진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박명진 학장의 이력서에 "단기 4278년(서기 1945년) 10월: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장 피명(被命)"이라는 기록이 있다.

2) 학사 운영

당시의 인계 서류 중에는 1945년 예산서도 있다.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년 총 예산은 당시로서는 거액인 약 20만 원(圓)인데 수입 내역은 병원 수입이 약 10만 원, 학생 등록금이 약 5만 원, 조선총독부 보조금이 연 4만 5,000원이었다. 8·15 광복 당시 학교 자산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현금은 일본인 교수들의 퇴직금으로 이미 거의 지출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인 직원들은 나기라 다쓰미 교장에게 항의했으나 미군정청에서는 인도적 견지에서 10~20년 봉직한 교수들에게 귀국 여비라도 주어야 한다면서 문제삼지 않았다.

당시의 교수진은 다음과 같다.

학장: 박명진(朴明鎭)

병원장: 이유경(李有慶)

보철부: 정보라(鄭保羅), 김정규(金貞奎), 심태석(沈泰錫), 김조항(金朝恒), 허태운(許泰雲), 선덕영(宣德英), 장완식(張完植)

보존부: 이유경(李有慶), 박유신(朴逌信), 김만수(金萬壽)

구강외과부: 이춘근(李春根), 송재향(宋在향), 양승범(梁承範)

교정부: 이기선(李基銑)

병리학: 배진극(裵珍極), 반태수(潘泰收), 김동순(金東順)

위생학: 김문조(金文祚)

교장에 임명된 박명진과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치과학교실 출신의 이유경, 정보라, 경성대학 약국에 근무하던 김붕순(金鵬栒) 등이 교수로 새로 부임하고, 부교수로 박유신, 이영옥(李永玉), 오재인(吳在仁) 등이 발령받아, 1945년 11월 1일 개학한 새 학교에서 강의와 병원 실습을 지도하게 되었다.

당시 각 학년의 학생 수는 20~40명 내외였다. 오랫동안 일본어로만 강의를 들어왔기에 우리말 강의는 어쩔 수 없이 서툴렀고 많은 의학 용어를 우리말로 옮기기조차 힘들었다. 우리나라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수진으로 전 학년의 강의와 실습 그리고 부속병원에서의 환자 진료를 수행하기가 초기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질서를 잡았다.

1946년 봄부터는 학교와 병원의 체제가 잡히고 한층 활기를 띠었다. 기초학교실에서는 새로 실습표본을 제작했고, 임상 분야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의 제도, 진료 등을 새롭게 개선해 나갔다. 예를 들면, 보철시술을 할 때 광복 전에는 볼 수 없던 교합면만 따로 주조한 금관을 사용한다던가, 귀금속을 이용해 국소의치를 제작했고, 지대치는 무조건 그 치수를 발수하던 것을 지양하고 건강치아 그대로를 지대치로 삼아 보철했다. 이러한 점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미국식의 진보된 방법이었다.



출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1989).

[그림 4-9-4] 태평양전쟁이 끝난 다음날 교정에 모인 교수와 학생들(1945. 8. 16)

한편 8·15 광복을 맞아 한국 사회는 신탁통치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가 하면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요인들이 암살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었다. 당시 경성치과대학 재단은 관계 서류상 및 행정상의 형식 요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에 불과했고 자산도 전무하여 학교 운영은 재정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학교를 사립으로 운영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재단 측에서는 일부의 반대도 있었으나, 때마침 미군정청이 국립 종합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많은 단과대학이 여기에 참가하길 바랐기에 경성치과대학도 국립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좌익계의 국립대학안 반대 투쟁이 심하여 서울대학의 수업은 한동안 중단되었고, 치과대학 강의실까지 반대파의 습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대학 참여 결정은 그 후 한국의 치과의학 교육기관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1947년에는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고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2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제4절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

1) 국립서울대학교의 출범

미군정청 문교부는 1946년 7월 13일 재정상 이유와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서울과 그 부근에 있는 관립 고등교육기관을 전부 폐지하고 새로운 이상과 구상 아래 모든 학교를 대표할 만한 종합대학을 신설키로 하는 요지의 '국립대학안'을 내놓았다. 경성치과대학은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 관한법령'(미군정 법령 제102호)에 의거하여 국립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으로 정식 편입되었다.

한편 '국립대학안'(이하 '국대안')에 일부 교육계와 학생들이 반발해 동맹휴학을 일으키는 등 소위 '국대안반대운동'이 일어났다. 국대안을 반대하는 교수들이 대학을 떠나고 동맹휴학은 전국 400여 개 대학으로 번졌다. '국대안 파동'이라 불리는 이 사태는 광복 후 최대의 학원 파동으로 꼽힌다. 이 국대안 반대운동은 미

군정 문교 당국의 일방적 처사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지만 기존 학교의 전면적 폐지 계획이 곧 좌익계 교수를 축출하기 위한 방책으로 인식되어 특히 좌익계 학생과 교수들에 의해 더욱 거세게 번져나갔다. 다만 국립서울대학교로 편입되면서 여학생(남녀공학)이 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된 점은 특기할 만하다.

국립대학안이 발표되자 정보라 교수는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문교부 장관에게 병합을 제안하여 내락을 받자, 자신과 안종서(安鍾書) 교수, 박명진 교장, 이유경 병원장 등으로 구성된 재단의 결의로 경성치과대학의 국립대학 편입을 성사시켰다. 정보라 교수는 "나는 학교를 재단의 결정으로써 신설될 서울대학교에 병합키로 결정하고, 문교부 장관을 방문하여 한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치과대학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서울대학교가 치과대학을 병합해 주도록 요청했다. 문교부 장관은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고 속히 신청서를 제출토록 권유했다"고 당시의 사정을 기록했다.

1947년 7월 11일 국립서울대학교 제1회 졸업생 수는 37명이었다. 이때 수여된 졸업장은 미국인 '해리 비드웰 앤스테드(Harry Bidwell Ansted)' 총장 명의로 되어 있어 학교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외국인 명의의 졸업증서를 받았다. 이후 1949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교육법이 공포되면서 국립서울대학교의 '국립' 두 글자가 삭제되어 '서울대학교'로 개칭됨에 따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이 되었다.

한편 미군정 초기 미국 유학을 했던 정보라, 이유경 교수 등의 대외적인 여러 활동을 단독 활동으로 느껴오던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동창들은 동창회를 소집하여 국대안 반대를 결의하고 반대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치과계는 분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여러 사정이 겹쳐 한성치과의사회는 끝내 둘로 갈라졌다.

이 시기 학교 교육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 교수진은 23명이었고 부속병원의 진료과목은 보존부, 외과부, 보철부 3개 부에 불과했으며 기초의학의 경우는 약리학, 조직학, 병리학, 위생학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각각 1명씩 있었다. 그 시절 대부분의 교수들은 개인병원을 갖고 있었으나 박명진 학장은 오후 늦게까지 전적으로 학교 문제에만 매달리면서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2) 학술 활동

당시 교수들의 연구논문을 보면 보존학, 구강외과학 및 보철학 분야의 증례보고가 대부분이고 원저는 드물었다. 연구 기자재와 연구비 등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수들의 연구는 계속되어 『조선치계(朝鮮齒界)』(원저 1, 증례보고 3, 1946)와 『조선치과의보(朝鮮齒科醫報)』(증례보고 6, 1947)에 논문이 발표되었고, 조선치과의학회가 주관하는 제1회 학술강연회(원저 10, 증례보고 9, 1947. 5. 18), 제2회 학술강연회(원저 3, 증례보고 7, 종설 10, 1948. 5. 23), 제3회 학술강연회(1949. 5. 28)에서도 논문을 발표했다. 이러한 교수들의 활발한 연구의 첫 결실로, 1949년 7월 15일 김동순(金東順) 전임강사(구강병리학)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비산호제에 관한 치수태도」라는 논문으로 본 대학 직원으로는 처음으로 의학석사(병리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이것은 후학들의 대학원 진학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보면 화농성치근단염, 교두이상 결절, 하악돌출 교정, 봉와직염, 섬유종, 육종, 법랑종, 누포성치아낭종, 악골 골절, 구강암, 원피스주조의치 제작법, 무치악기능인상법, 과로경사도, 쌍생아 구강 소견, 반상치 및 무의촌 구강검진 소견 등이 있었다. 당시의 국내 사정을 고려한다면 매우 놀랍고도 훌륭한 내용들이다. 다른 학계에서는 아직 학술지조차 거의 없던 시기였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박명진〉



출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1991).

[그림 4-9-5]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박명진

박명진 학장은 1903년 7월 3일 서울 관철동에서 출생했으며, 서울중앙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경성치과의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4학년에 편입하여 1930년 4월 26일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본과 제1회로 졸업했다. 이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교원을 역임했고, 광복 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를 인수해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교장과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학장을 역임하면서 대학 발전과 한국 치과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 약력

1930. 4. 28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조수
1934. 10. 10 경성제국대학 약리학교실에서 연구
1937. 12. 6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조교수
1938 한성치과의사회 회장
1943. 11. 12 일본 교토제국대학 의학박사학위 취득
1945. 10. 1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교장
1946. 9. 1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초대 학장
1946. 8 조선치과의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 전신) 회장
1946. 10. 22 국립서울대학교 교수
1947. 5 조선치과의학회 회장
1953. 1. 17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제2대 학장
1954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1955. 3~8 미국 각 주 치과의학 및 교육행정 시찰
1957. 12. 27 55세를 일기로 서울대학교 부총장 공관에서 별세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부속병원 원장 이유경〉

이유경 병원장은 1907년 서울 중구 다동에서 출생했으며, 평양 숭실대학 3학년을 수료하고 1928년 경성치과의학교를 졸업한 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4학년에 편입하여 1930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본과를 제1회로 졸업했다.

1930년 미국 피츠버그 대학(University of Pittsburgh)을 입학하여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치과교정학을 연구했다. 귀국 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치과과장과 경성치과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광복 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부속병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대학 발전과 병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출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 편찬 위원회 편(1991).

[그림 4-9-6]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부속병원 원장 이유경

• 약력

1945. 10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국립서울대학교 치과대학부속병원 초대 원장
1946. 10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부속병원 원장
1956. 5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1964. 10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1967. 4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협회 회장
1970. 4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회장
1975. 4	대한치과의사협회 명예회장



출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1991).

[그림 4-9-7] 국립서울대학교 제1회 졸업 기념(1947. 7. 11)



출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1989).

[그림 4-9-8] 서울대학교 치과대학기

부록: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연혁

1921. 11. 22	나기라 다쓰미(柳樂撻見), 경성치과의학교 설립인가 신청
1922. 4. 1	경성치과의학교 설립(남녀공학 2년제, 야간수업, 총 2학급 정원 100명)
4. 4	신입생 입학선발 시험
4. 15	개교식 겸 입학식(경성의학전문학교 강당에서 강의 진행)
1923. 5. 8	학칙 개정(수업연한 3년제, 주간수업, 1 · 2 · 3학년 총 3학급 정원 150명)
1924. 4. 1	총독부의원 외래진료실 일부를 빌려 임상실습 개시
10. 15	경성치과의학교 부속병원 개설(일본 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지점 2층에 개설)
1925. 2. 28	조선총독부 지정학교로 인가(졸업생은 무시험으로 한국 내에서 개업 허가)
4. 15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 졸업식(졸업생 28명)
1927. 6. 6	교사 신축 착공(서울 중구 소공동 111, 대지 662평, 건물 1,600평, 지상 4층 지하 1층)
1928. 9. 29	신축 교사 및 부속병원 낙성식
10. 2	학교 재단법인 인가[이사 3명, 이사장 도미타 기사쿠(富田儀作), 이사 나기라 다쓰미 외 감사 2명]
1929. 1. 25	4년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로 승격 (부속의원: 외과부, 보존부, 보철부, 특진실, 약국, 수납 기초의학부: 병리약리학교실, 병리조직학교실, 해부학교실, 기공학교실, 화학교실, 교무교관실, 서무 회계과)
1930. 3. 25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제1회 졸업식
1933. 9. 1	건물 전체 4층으로 증축
1934. 7. 10	학칙 개정하여 남녀공학제 폐지
1943. 11. 1	본교사 서쪽에 창고용 2층 건물 준공
1945. 10.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교장에 박명진 교수 취임
11. 1	경성치과대학으로 발족(한국인만으로 운영되는 치과교육 시작)
1946. 8. 22	'국립서울대학교설치령'(미군정법령 제102호)에 의거 국립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으로 개편 외과부, 보존부, 보철부의 임상 진료과목 3개 부로 진료 시작
9. 1	제1대 치과대학 학장에 박명진 교수 취임
10. 20	제1대 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이유경 교수 취임
1947. 7. 10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제1회 졸업식

• 참고문헌

자료

『서울대학교동창회보』, 『서울대학교병원 병원보』, 『조선치과의학회지』, 『후생일보(厚生日報)』

단행본 및 논문

기창덕, 1987, 『한국치과의학사(상)』, 민족문화문고간행회.

기창덕, 1995, 『증보 한국치의학사』, 아카데미아.

김규식, 1986, 「제4편 학과, 연구소의 활동과 업적: 치과대학 치의학과」, 『서울대학교 40년사』.

김규식, 1996, 「근대 한국 치의학교육의 발전」,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학술심포지엄.

김명국, 1987, 「서울대학교 학문연구 40년의 회고와 전망 〈치과연구〉」, 『서울대학교 학문연구 40년(I)』.

대한치과의사협회, 1982, 『대한치과의사협회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박명진, 1960, 「한국의 치과의학」, 『대한치과의사연구회지』 1.

박명진, 1961, 「Dentistry in Korea(1893~1955)」,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2.

서울대학교 50년사편찬위원회 편, 1996, 『서울대학교 50년사(1946~1996)』,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2011, 『서울대학교치과대학 동창회 회원명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창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1989,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화보(畵報)(1922~1989)』,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 1991,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사(1922~1991)』.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신인철, 1960, 「한국근대치과의학의 연혁」,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

신재의, 1972, 「한국에 치의학의 전래와 초창기의 치과계: 그 문헌적 고찰」, 『치원』 7.

신재의, 1990, 「최초의 한국인치과의사」, 『서울시치과의사회보』.

신재의, 1998, 「독립신문에 나타난 치과의사의 기록」,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7(1).

신재의, 2002, 「서양치과의학의 도입과 의식의 전환」, 『대한치과의사협회지』 40(9).

신재의, 2003, 「한성치과의사회와 구강위생계몽활동」, 대한치과의사회 학술집담회.

신재의, 2005, 『한국근대치의학교육사: 부록 경성치과대학연혁사』,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회고 좌담회」 1~3회, 참윤.

유양석, 1991, 「동창회순례(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편 〈18〉)」, 『보건신문』 제253호.

윤계찬, 1968, 「한국 치과의학 발달과정의 고찰 1, 2, 3」, 『치계』 제2권 제9, 10, 12호.

이춘근, 1982, 「치대병원 60년사」. 『서울대학교병원 병원보』 13, 14, 15.

이한수, 1987, 「한국의 일본식민지시대 치과의학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8(1).

이한수, 1988, 『치과의사학』, 연세대학교출판부.

이한수, 1988, 『한국치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치과임상 편집부, 1986, 「한국 치의학 100년의 재조명」, 『치과임상』 6(57).

柳樂達見, 「경성치과의학교의 창설기」, 1962, 『대한치과의사학회지』 3.

坦見庸三, 1961,「경성치과의학교의 연혁대요(沿革大要)」,『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2.
坦見庸三, 1961,「조선치과계의 회상」,『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2.

• **집필진**

김경욱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교수
4부 3장(농업생명과학대학)

김금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4부 1장(간호대학)

김상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교수
1부 1~2장 중 의학교육 부분

김종준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1부 2장 중 성균관 부분

김태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2부 1~2장, 2부 3~4장 중 전문학교 부분

박준형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교수
3부 2장

백대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4부 9장(치과대학)

심창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4부 7장(약학대학)

안종철 튀빙겐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3부 1장

우용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4부 5장(사범대학)

윤계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4부 6장(상과대학)

이태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명예교수
서장, 1부 3장

전효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
4부 2장(공과대학)

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학대원 법학과 교수
2부 3~4장 중 경성제국대학 부분 공동집필

정준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2부 3~4장 중 경성제국대학 부분 공동집필

정준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교수
4부 8장(의과대학) 공동집필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교수
4부 8장(의과대학) 공동집필

최종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4부 4장(법과대학)

홍문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강사
1부 1~2장

서울대학교 개학 120년 기념

국립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사

(1895~1946)

2016년 12월 20일 초판 제1쇄 인쇄
2016년 12월 25일 초판 제1쇄 발행

편집 국립서울대학교 개학반세기역사편찬위원회
발행인 성낙인 · 서정화

주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880-5114 / 02-702-2233
팩스 02-885-5272 / 02-703-0755
홈페이지 http://www.snua.or.kr

인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전화 02-880-5220
팩스 02-871-9473

비매품

ⓒ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2016

VERI
LUX
TAS
MEA